圓佛教七十二年總覽

中央總部·機關團體

圓佛教 創立大宗師誕生百周年 聖業奉贊會

법신불 일원상

하나이며 두렷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
모든 종교의 근원이요, 모든 성현과 중생의 본래 마음
원래 생멸이 없으나 돌고 돌아 인과의 변화가 끊임이 없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곧 부처이며, 우주가 한 집안이요,
온 생령이 한 권속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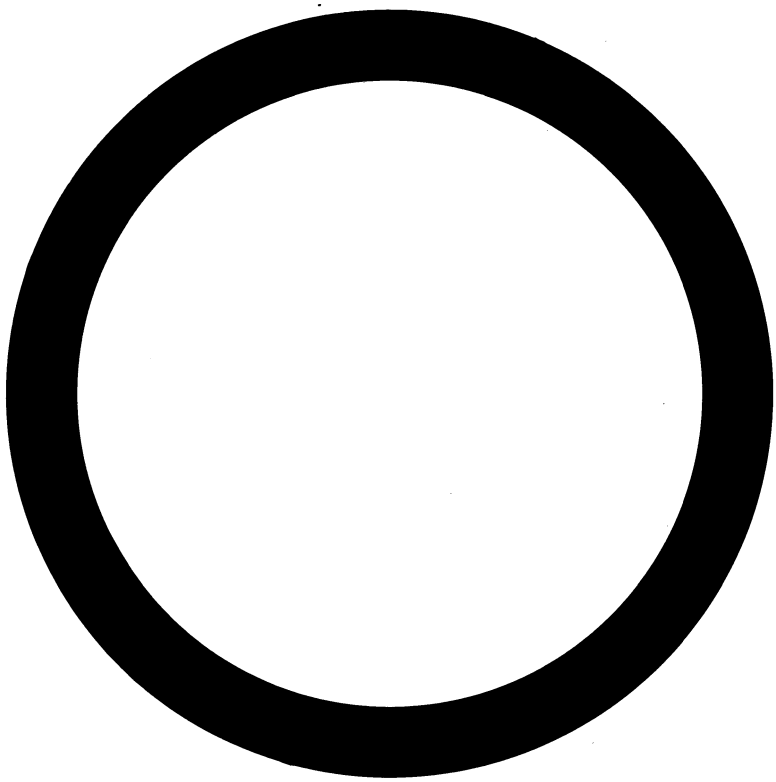

원불교를 창립하신 少太山 大宗師(朴重彬)

(1891. 5. 5~1943. 6. 1)

전남 영광에서 탄생하시어, 어려서부터 자연현상과 인생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시고
구도 고행 끝에 1916년 4월 28일 스스로 대각을 이루시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외치시며 제자들과 저축조합을 설립하시고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들며 인류구제를 위한 기도로 진리의 인증을 받아 새 회상을 창립하셨다.
일제의 온갖 핍박 속에서도 새로운 문명세계 건설에 대한 희망을 제시 하시고
교화·교육·자선사업을 진흥시키며 중생교화에 헌신하시다가
"有는 無로 無는 有로 돌고돌아 지극하면, 有와 無가 俱空 역시 具足이라"는
게송을 설하시고 열반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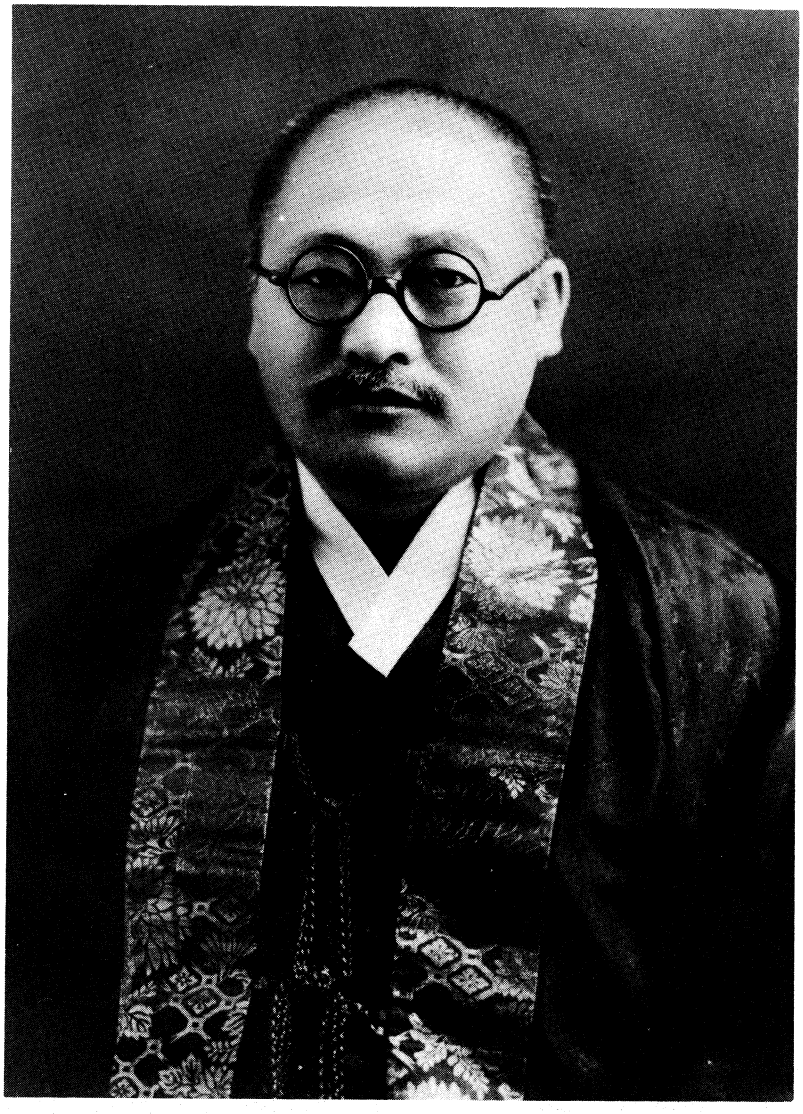

鼎山 宗師(宋奎)
(1900.4.8~1962 1.24)

경북 성주에서 출생하시고
원기 2년(1917) 소태산대종사의 수제자가 되셨다.
원기 28년(1943) 6월 소태산대종사 열반 후
법통을 이어 후계 종법사가 되시고 「원불교」로 교명을 선포하신 후
교재정비, 기관확립, 정교동심, 달본명근의 사대경륜을 실천 하시다가
「한 울안 한 이치에(동원도리) 한 집안 한 권속이(동기연계)
한 일터 한일꾼으로(동척사업) 일원세계 건설하자」는
게송을 설하시고 열반하시었다.

大山 宗法師(金大擧)

(1914.3.16~)

전북 진안군 좌포에서 출생하시어 원기14년(1929)에 출가하시고,
원기47년(1962)1월 24일 정산종사 열반 후 법통을 이어 후계 종법사가 되신 후
안으로 교단체제 정비와 교화, 교육, 자선, 산업, 문화,
봉공, 훈련, 복지의 8대사업을 확장하시고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일원세계」의
기치아래 종교연합운동을 제창 하시고 계시다.

원기13년(1928) 제1대 제1회 기념총회

원기20년(1935) 4월 중앙총부 대각전 준공기념

원기 38년(1953) 원불교 창립 제1대 성업봉찬회 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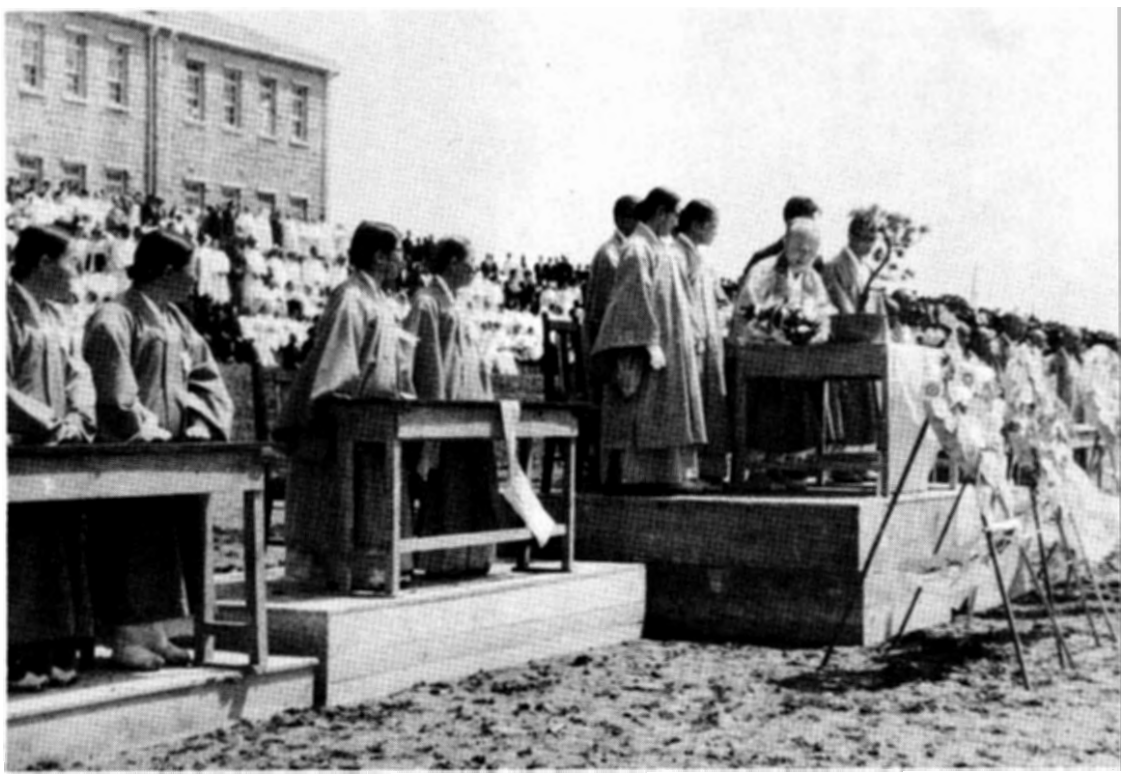

원기 42년(1957) 법훈증 수여식

원기 56년(1971) 원불교 반백주년 기념대회 상징 아취

원불교 반백주년 기념대회 대회장

원기62년(1977) 제2대 2회 기념총회 대회장

제2대 2회 기념총회 종법사 기념법문

원기 73년(1988) 원불교 창립 2대말 기념대회 대회장

기념대회장에서 종사의 법훈을 서훈 받으신 교단의 원로님들

일 러 두 기

1. 이 책은 원기원년(1916) 원불교의 개교에서부터 원기72년(1987) 원불교 창립 제2대말까지의 발전 과정과 현황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따라서 모든 서술 및 자료는 원기72년(1987) 12월로 마감하였다.
2. 이 책은 원불교 72년의 역사 자료를 총편, 중앙총부편, 교구·교당편, 기관·단체편, 인물편과 부록으로 분류 정리 하였는 바, 자료의 분량에 따라 총편, 중앙총부편, 기관단체편을 모아 중앙총부·기관단체편의 1권과 교구·교당편을 2,3권 그리고 인물편과 부록의 4권으로 나누어 묶었다.
3. 각 편의 자료 정리는 다음의 원칙으로 정리하였다.
   가. 총편은 교조인 소태산대종사와 원불교 약사, 교서, 교리, 제도의 변천을 편년체로 각각 정리하였다.
   나. 중앙총부편은 중앙총부 기구의 위상별로 종법사부터 법인체까지 8장으로 나누어 각각 개관을 쓰고 자료를 정리 편집하였다.
   다. 교구·교당편은 각 교구와 교당으로부터 보고서와 주변 자료를 종합하여 설립, 교화, 활동으로 구분하여 서술을 마친 후 가나다 순으로 해외 교구까지 총 21장으로 편집하였다.
   라. 기관·단체편은 교단내 각 기관과 단체를 13개 범주로 나누어 각각 개관을 쓰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정리하였다.
   마. 인물편은 법훈자, 전무출신, 재가정사, 거진출진 입묘자로 구분, 정리하였는 바 법훈자와 전무출신, 재가정사는 사진 자료로 수록 하였다.
   단, 법훈자, 재가정사는 2대말 결산에 의한 원기73년(1988) 승급자까지를 포함하였다.
   바. 부록에는 교단 연표와 각종법규, 보도자료를 수록하였는데 보도자료는 소태산대종사 재세시의 보도자료 원문과 72년간의 보도목록을 정리하여 실었다.
   단, 일제하의 일문은 번역하였다.
4. 이 책의 내용은 평이한 문체로 간편하게 서술하되 고유 명사와 교리용어는 한문으로 표기하고 편찬의 범주를 사실 자료의 망라에 두었으며 각종 도표는 가능한 전편에 통일을 기하였다.
5. 경어와 존칭은 모두 생략하였으며 연도는 원기로 통일하고 서기를 괄호에 넣었으며 생년월일은 편의상 서기로 하였다.

6. 화폐 단위는 유통당시 그대로를 썼고 길이는 미터, 넓이는 평(坪) 단위로 통일하였다.
7. 외래어 표기는 가능한 한 피했으나 이미 알려져 익히 쓰이는 것은 관용대로 사용 하였다.
8. 교당·기관·단체의 설립년도, 전무출신의 출가년도, 재가정사의 승급년월일, 거진출진과 입묘자 등은 교정원 총무부의 자료를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9. 이 책에 수록된 사진 자료 중에는 수집 절차상 원기72년 이후의 사진도 편집 되었다.
10. 이 책의 체제 통일을 위하여 편집진에서 전체 지면 배열을 하였으며 수차의 수정, 보완 및 윤문을 하였다.
11. 교구·교당편 초교는 해당 교구·교당의 역임 교무와 현 각 교구·교당 교무에 회람을 하여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기관 단체편도 해당 기관에 초교를 보내 보완 작업을 한 후 감수 위원회를 거쳐 보완 작업을 완료하였다.

기 념 법 문

오늘 이 거룩한 식전을 당해서 위로 法身佛 四恩과 大宗師님 성령과 鼎山宗師님 성령의 가호하심과 三世 諸佛諸聖과 역대 선영 열위의 음조와 人天大衆의 합력과 그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오늘이 있도록 힘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 새 시대 새 회상 건설의 개벽 설계를 하실 때 그 운영방법을 36년으로 1代를 정하시고 매 대를 三回로 나누어 개벽의 새 역사를 이루도록 해주셨읍니다.

창립 第一代에는 大宗師님께서 혈인성사와 방언역사를 통해 교단 창업의 정신적 축을 세워 주신 후 숙겁의 인연을 만나시고 만고의 대법을 제정해 주셨으며 교단의 기초 동량을 훈련시킴으로써 교단 만대의 터를 튼튼히 다져주셨습니다.

창립 第二代에는 鼎山宗師님을 모시고 교재정비·기관확립·정교동심·달본명근의 四大經綸을 받들면서 결실을 맞이하는 佛事를 통하여 大法位向上과 인재육성으로 道冠德旺의 成年世界를 맞이하는 성숙한 교단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二代를 결산하면서 4만여명이 꽃다운 법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었고 그중에도 천여명의 법강항마위와 수많은 종사, 대봉도, 대호법의 법훈자가 나와 이 법을 크게 봉대하게 되었으니, 이는 대종사님과 鼎山宗師님께 大報恩을 한 것이며 교단과 국가 세계에는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大佛事를 이룬 것이요, 인류와 일체 생령에게는 大佛供으로 공양을 올린 것입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장하며 오늘의 이 경사에 기쁨만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재가 출가 전 교도는 마음껏 오늘을 경하하면서 무량세계 무량겁을 통하여 이 도운이 무궁하기를 염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법훈을 받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숨어서 殺身成仁의 대정성을 뭉쳐주신 수많은 재가 출가, 유명 무명의 창립 공훈을 일일이 말할 수 없거니와 남녀노소가 모두 법과 회상과 스승님을 위하여 신명을 불사했던 그 눈물겨

운 노력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영명하신 진리가 소소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이날을 맞이하여 적수공권으로 일어나서 오늘의 교단이 있게 한 창립의 정신을 다시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제 교단 三代에는 하나의 세계를 향해 몰려오는 국가세계의 대운을 마음껏 활용하여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셨던 광대무량한 대 낙원으로 인도하는데 가일층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3년후의 大宗師님 탄생 백주년을 기하여 세계가 함께 받드는 大宗師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報本事業에 우리의 있는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자기훈련·교도훈련·국민훈련·인류훈련을 통해 다같이 대진급하여 참문명세계 건설의 주인들이 되게 하고 교화를 위주한 교단의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세계 만방에 이 교법을 전파하고 종교연합운동으로 政教同心을 이루어 인류가 대화합함으로써 무궁한 佛國土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새희상 기틀을 세운 꽃다운 법훈을 높이 기리고 억만년 뻗어나갈 우리의 교운을 心祝하며 法身佛 四恩과 대종사님 성령과 정산종사 성령과 선영 열위 전에 새로운 대서원과 대신성을 다지고 하나에서 열, 열에서 백, 천, 만, 영생, 영겁을 한 마음 한 서원으로 나아가 교단 三代의 거룩한 공덕주들이 다같이 되시기를 심축드리는 바입니다.

원기 73년 11월 6일

宗法師 金 大 擧

回발 간 사回

少太山大宗師님의 聖靈 전에 이 책을 올립니다.

圓佛敎 創立 第二代末 및 大宗師誕生 百周年 聖業奉贊會
會長 李 共 珠

회상 창립 제1대를 마감하면서 발족한 제1대 성업봉찬사업회는 4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원기 38년(1953) 4월 성업봉찬기념식을 올리게 됩니다.

4년의 준비기간 속에는 6·25사변을 겪어야 했고, 화폐개혁도 치루어야 하는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업봉찬사업은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사업의 개요들을 지금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때 네가지 목표사업을 세웠는데, 하나는 편집사업이요, 둘은 건설사업이며, 셋은 경축행사, 넷은 선전사업이었습니다.

편집사업에서는 ① 대종경 ② 창건사 ③ 지부 지소 및 각 기관 연혁 ④ 창립유공인 역사 ⑤ 기념문집 ⑥ 성가집 ⑦ 기념사진첩의 발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편집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었지만, 기념대회때는 40개 지부와 10개지소 및 12개 기관의 역사를 정리한 『圓佛敎 沿革』만이 발간되었습니다.

제1대 성업기념대회가 열릴 때 교세는 재가교도 20여만명, 출가교도 260여명, 교당 50여개소, 12여개의 교육 자선기관이 발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교당 50여개소와 12여개의 기관 역사를 정리한 것이 『圓佛敎 沿革』입니다.

제1대 성업봉찬사업을 세우면서 할일이 태산처럼 많던 시기에 편집사업에 이처럼 큰 비중을 둔 것은 우리 회장의 자랑이며, 이때 저는 대회장으로서, 특히 편집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7,8인의 후진들과 함께 지부와 지소 및 각 기관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여 직접 쓰기도 하고, 편집도 하고, 교정을 보고 하면서 발간한 것이 『圓佛敎 沿革』입니다. 이 책이 一代의 교당과 기관의 역사를 정리하여 놓은 유일한 책 입니다. 이후 다른 편집사업은 차례로 다 이루어졌는데, 창립유공인의 역사를 정리하지 못해 대종사

님 성령과 역사를 보지 못하고 열반에 든 창립유공인들에게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았으며 어떤 때는 내 손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나까지 떠난다면 이 죄스럼을 어쩔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전에 『圓佛教 第一代 創立有功人』까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圓佛教 第一代 創立有功人』은 사업계획을 세운지 1대 기간인 37년이 지나서 제2대성업봉찬기념대회를 2년 앞두고 원기71년(1986) 9월 발간되었습니다.

『圓佛教 弟一代 創立有功人』에는 제1대를 총 결산한 결과, 교단 창업에 공덕을 쌓은 창립유공인으로 전무출신(출가교도) 258명과 거진출진(재가교도) 1498명 등 1756명의 공로와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창립유공인은 창립제1대내에 공부와 사업성적을 합한 원성적이 준5등 이상입니다. 이 속에는 준정사 이상의 법위자 26인, 정사 이상 법위자 9인, 준특등 유공인 9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봉도 2명, 대호법 2명, 종사위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립제2대를 마감하는 성업봉찬 기념대회를 준비하며 대회장을 또 맡게 되었으며 『圓佛教 七十二年 總覽』 발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후진들을 보면서 4백개가 넘는 교당과 교당에 부설된 1백여개 유치원과 기구, 1백여개의 기관, 각종 단체, 5천여명의 교역자, 1백만명의 교도, 72년의 역사등 헤아릴 수 없는 자료를 집대성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을 하는 후진들이 대견스럽습니다. 모아진 자료들을 보면서 지금은 불필요한 것 같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 귀중한 사료들은 먼 뒷날에 오는 후진들의 것입니다. 모아서 묶어놓은 창립 2대말 성업봉찬의 일꾼들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료를 소중하게 알고, 보관하고, 기억한 사람들, 그 흩어진 자료들을 모은 사람들, 그 자료들을 정리하며 사료화한 사람들, 오류를 바로 잡아 감수한 사람들 모두 대종사님 성령전에 자랑스런 제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圓佛教七十二年總覽』에 모아진 귀중한 사료들이 오만년 교운의 우리 회상에 초석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少太山大宗師님의 탄생백주년을 앞두고 발간되어 또 한번 대종사님 성령 앞에 보은이 될 것입니다.

원기75년(1990) 12월

中央總部 修道院에서

創立弟二代 決算聖業의 意義

少太山大宗師께서 일찌기 새회상의 창립한도를 정하여 주시기를 1代를 36年으로 하고 다시 매회 12년으로 區分하여 3회 36년이 되게하여 주신 것은 교단의 경륜을 보다 계획적 합리적으로 달성키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二代決算聖業의 참된 의미는 지난 36년간을 마무리하는 행사나 대회를 갖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매듭과 형식을 통하여 과거를 反省對照하고 이를 거울삼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전망하는데 있다.

한 인간이나 인간이 이루어 놓은 집단은 대단히 현명한 것 같으면서도 일정한 기간과 계기를 통하여 자신을 근본정신과 목표에 비추어 철저히 반성치 않으면 일상적 타성에 빠져서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제2대를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결산했으며,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찾을 것인가를 개관해 보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1代가 幼兒期라면 2代는 成年期이다. 2代는 成年을 위한 몸부림과 발전, 고뇌와 영광이 함께 한 代이다.

1代 결산성업은 6·25동란으로 한해 뒤인 원기38년(1953) 4월에 개최되었고 그때 아쉬웠던 결산을 원기42년(1957) 법훈증여식과 각종 경축행사로써 보완하였다.

원기48년(1963)의 2代 제1회 결산은 정산종법사의 열반과 개교반백년기념사업회의 발족으로 회석되었고, 원기60년(1975) 제2회의 결산도 전교도의 공부와 사업성적 사정만으로 간략히 치루어 졌다. 긍정적으로 보아 1회와 2회의 중간에 든 개교반백년기념사업에 그 영광을 양보한 셈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원기72년(1987) 2대 제3회의 마지막 결산성업도 공부 사업 결산잔치는 푸짐히 하였으나 모든 경축행사는 3년 뒤에 개최되는 대종사탄생백주년기념대회로 미루어 진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2대의 결실을 수치상으로 1대와 비교해 보자면 36년동안에 6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많게도 보고 적게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수량의 다과에 있다기 보다 그 내용에 있다.

내외역사의 격동속에서도 우리는 이 기간에

1) 재단법인 원불교의 설립인가(원기32년)를 받아 교명을 공식 선포(원기33년 4월) 하였고 원기47년(1962년 7월)에는 본 교단이 불교재산관리법에 통제를 받지않는 독자적 교단으

로서의 공인을 받게되였다.

2) 정전 재편과 아울러 대종경을 편수하여 기본경전을 확립하고 예전 교사 교헌 성가 정산종사법어(세전) 등 7종교서를 완비하였다.

3) 교헌제정(원기33년)과 수차의 개정을 통하여 교단의 기본 통치체제를 확립하고 각종제도와 조직, 법규를 정비시행하여 법치교단으로서의 기틀을 다져왔다.

4) 원기50년(1965)부터는 법의 정한 바에 따라 法位査定을 실시하여 교단의 생명인 工夫風土조성과 법위향상을 촉진하여 많은 佛菩薩을 배출하고 소태산대종사의 慧命의 등불을 이어받는 血心弟子가 繼繼承承케 하였다.

5) 유일학림을 시작으로 원광대학교·원광중고등학교 등 원광학원군을 이루었으며 영산·동산·중앙의 3대선원을 비롯하여 각처 요지에 많은 훈련기관을 설립하고 교역자는 물론 일반교도와 비교도까지 소태산대종사의 훈련법으로 참된 자아를 회복하고 실현케 하였다.

6) 보육원 양노당을 비롯하여 수양 요양 등 자선기관을 확장하였고 봉공기관을 발족시켜 대사회 봉공활동을 강화하였다.

7) 언론·출판·문화를 진흥시켜 문화교화의 체제와 문호를 넓혔으며 특히 출판문화는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여 크게 발전시켜 왔다.

8) 많은 藥業 醫療기관을 확장하여 靈과 肉을 아울러 구제하는 기틀을 다졌으며 농장과 상사·금융·묘원기관을 설립하여 교단 기간산업을 육성하기에 노력하였다.

9) 청소년 어린이단체를 조직 육성하고 특히 유치원·유아원을 많이 설립하여 청소년교화와 교단의 미래 꿈나무를 넓혀 나갔다.

10) 한국종교인협의회 창립 당시부터 꾸준한 활동을 통하여 국내 유수한 종교로서의 기반이 확립되었으며 해외 교당설립과 교화, 국제종교활동과 종교연합운동을 통하여 세계종교로서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11) 이러한 모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육영사업회를 비롯하여 법은·교화·유지훈련·문화·자선·후생사업회·원창회 등을 설립하여 재정적 밑바침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鼎山宗師의 4대경륜과 현 大山宗法師의 경륜과 지표, 의지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었다.

교단에서는 원기68년(1983) 2월 2代를 알차게 결실하기 위하여 교단 창립제2대 및 대종사 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를 발족하였다.

그러나 성업봉찬회에서는 탄생백주년성업과 아울러 주로 기념사업을 하게 되었고 공부 사업 성적사정 등은 교정원에서 주관하여 결국 결산총회도 교정원 주관하에 치루었다.

성업봉찬회에서는 총부 건설장엄으로 정문 담장 및 포장공사, 보존건물 복원, 대종사성탑

장엄과 정사종사성탑 중건, 영산성지 보존건물 복원 및 대각지 장엄 등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부지가 확장되였다.

편찬 문화사업으로 『圓佛敎 七十年 精神史』의 발간과 72년총람 작업이 진행되었고 영문교전이 재편되었으며 「개벽의 북소리」 전국 순회공연으로 교단사상 최대의 문화예술교화가 이루어졌다.

제주국제훈련원을 비롯하여 각지 훈련원 신축을 지원하고 동경을 비롯하여 각지 해외교당 개척설립을 지원하여 훈련과 해외교화의 뒷바침을 하였다.

또 3대설계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교단의 현안문제를 6개부문으로 나누어 자료와 의견을 모은후 바람직한 정책지침 방향을 설정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이 자체로도 충분한 의의와 가치가 있는 작업이었다.

우리 교단의 더욱 큰 자산과 자랑은 이러한 사업의 성공과 실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안으로는 교단의 인재들이 개인적으로는 설사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교단의 대의와 공의에는 물과 같이 합하여 법과 교단을 살려나가는 데 있고, 또한 개인이 교단을 버린일은 있으나 교단은 개인을 살려써서 교단내에서 살면서 크게 후회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또한 밖으로는 격동하는 역사와 사회환경 속에서도 교단이 일반 사회의 신뢰와 신망을 얻고 있는 점이다. 한때의 실수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저력과 역량에 있다. 교단의 이러한 모습과 평가는 교단의 어떠한 자산보다도 값진 것이며, 훌륭한 유산과 전통으로 이어가야 되리라 믿는다.

교단에 이러한 저력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첫째 소태산대종사의 법의 圓滿通達 함이며, 둘째 9인선진의 훌륭한 교단 創立精神이며, 셋째는 당대 主法이신 종법사의 광대한 지도력이며, 넷째는 정기 상시훈련을 통한 인격의 거듭남이며, 다섯째는 私를 버리고 法과 公을 위해서 바치고 희생하는 전무출신과 거진출진 정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긍적적인 면만 보아서는 안된다.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건실하고 신뢰받는 교단으로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도 훌륭한 자랑이 될 수 있지만 현대의 36년이면 과거의 360년 보다도 더한 황금같은 시기이다.

이 기간에 우리는 교단의 이념과 소태산대종사의 경륜을 어떻게 실현하여 왔는가 교단의 목표를 얼마나 착실히 달성해 왔는가를 냉정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1) 우리는 믿음과 이념공동체로서 확고한 신념과 方向을 함께하고 제 길을 걸어왔는가, 제 길을 벗어나 때로는 방향 없이 일만 벌려 왔는가.
2) 9인선진의 교단창립정신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키고,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재현시키고 있는가, 小我가 大를 위해 희생하기보다 小我때문에 大가 희생되는 일은 없었는가.

3) 역사가 흐름에 따라 우리의 훌륭한 주체성과 전통성을 상실하지는 않았는가, 완고와 타성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인심을 향도하여 왔는가.

4) 교단의 성장에 따른 방대한 조직과 기관들이 제자리에서 합리적 생산적으로 움직여 왔는가, 비합리적인 문제를 청산치 못하고 낭비만 하고 있는가.

5)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 민족문화와 접목시키며 새로운 값진 문화를 창조해 왔는가, 문화로서 축적 될 수 없는 타성적인 일을 되풀이 하여 왔는가.

6) 역사의 매듭과 고비마다 다짐하고 맹세한 결의안과 연구하고 검토한 정책들이 얼마나 어떻게 시행되여 왔는가, 시행되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7) 교단의 모든 이념들이 교단내에서 먼저 시행되어 일반사회의 모범이 되고 부끄럼이 없는 낙원공동체로서 살아 왔는가, 이념과 사상만 외쳐왔는가.

우리는 분명히 많은 성장을 하여왔다. 그러나 성장이라는 업적에 가려 더욱 소중한 생명을 잃어서도 안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 하여 변화와 발전에서 낙오되어도 안된다.

우리는 통일 통합을 이루어야 하지만 획일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원화 개방화를 시도해야 하나 이것이 대립과 혼란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룩한 36년간의 업적이 진정 교단의 훌륭한 문화유산과 전통으로서 후진만대에 길이 전해줄 만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유산이 얼마나 되고 개선 폐기해야 할 유산이 얼마나 되며, 특수화된 문화가 얼마이고 보편화가 된 문화가 얼마나 되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3대가 보다 밝게 열려질 것이라 믿는다.

聖 業 奉 贊 會

事務總長 金 仁 喆

목 차

題字 : 三國遺事 執字

* 일 원 상
* 소태산대종사 진영
* 정산종사 진영
* 대산종법사 진영
* 화 보
* 일러두기 ····· i
* 법 문 ····· iii
* 발 간 사 ····· v
* 창립 제2대 결산성업의 의미 ····· vii

총 편

Ⅰ. 소태산대종사 ····· 2

1. 탄생/2 2. 구도/3 3. 깨달음/4
4. 교단 창립 준비/6 5. 익산총부 건설/7 6. 소태산과 서가모니불/8
7. 한국의 장래와 미륵세계/9 8. 일원대도/11 9. 만고일월/12
10. 인품/15

Ⅱ. 원불교 약사 ····· 18

1. 원불교 창립/18 2. 원불교의 개혁운동/24 3. 교단의 발전/28
4. 성업의 계승/33 5. 삼대사업목표/40 6. 개교1백년대를 향한 좌표/42

Ⅲ. 교서와 교리의 변천 ····· 44

1. 교서의 변천/44 2. 교리의 변천/64

Ⅳ 제도의 변천 ····· 74

1. 교명의 변천과 의의/74 2. 교단 통치조직의 변천/76
3. 교단 통치기구 변천과정/90

중 앙 총 부 편

○ 개 관 ……104
1. 그 의미와 기능／104　2. 중앙총부의 형성과 발전／105

Ⅰ. 종법사 ……108
1. 종법사제도의 변천／109　2. 역대종법사／112

□ 법무실……116

Ⅱ. 수위단회 ……121
1. 수위단회의 정신／121　2. 수위단회의 기능／122　3. 수위단회의 운영 및 조직／122
4. 수위단회 제도의 변천／130　5. 수위단회 연혁／133　6. 수위단 계보／138
7. 수위단회 결의사항／144

□ 수위단회 사무처 ……116

Ⅲ. 중앙교의회 ……198
1. 연혁／198　2. 기능／199　3. 역대의장단／199
4. 연도별의원수／200　5. 결의사항초록／201　6. 중앙교의회법／208

Ⅳ. 교정위원회 ……210
1. 연혁／210　2. 기능／211　3. 역대의장단／211
4. 연도별의원수／212　5. 결의사항초록／213　6. 교정위원회법／235

Ⅴ. 교정원 ……237
□ 개관/237
1. 기획실／244　2. 총무부／250　3. 교화부／264　4. 재무부／283
5. 교육부／303　6. 훈련부／313　7. 문화부／315　8. 공익부／319
9. 국제부／325　10. 원의회／336

Ⅵ. 감찰원 ……413
1. 감찰원／413　2. 감찰위원회／414　3. 감찰원 사무처／415

Ⅶ. 총부출장소 ……418
1. 서울사무소／418　2. 영산사무소／427

Ⅷ. 법인체 ……432
1. 법인／432　2. 재단법인 원불교／433　3. 학교법인 원광학원／452
4. 사회복지법인 삼동회／475　5. 사회복지법인 창필재단／480
6. 사회복지법인 개성유린관／483　7. 학교법인 해룡학원／490
8. 재단법인 영모묘원／500

기 관·단 체 편

Ⅰ. 교육기관 ……510

□ 교역자 양성기관 ……511

1. 총부선학원/511 2. 유일학림/517 3. 중앙선원/520
4. 동산선원/523 5. 영산선원/534 6. 원불교학과/546

□ 교립학교 ……580

1. 원광대학교/580 2. 원광보건전문대학/588 3. 원광중학교/592
4. 원광고등학교/597 5. 원광여자중학교/606 6.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611
7. 해룡중학교/623 8. 해룡고등학교/626 9. 영산성지학교/629
10. 원광고등공민학교/634

□ 유치·유아원 ……637

〔1〕 유치원……638

1. 정주원광유치원/638 2. 창원원광유치원/640 3. 광주원광유치원/642
4. 이리원광유치원/643 5. 압해원광유치원/644 6. 성덕유치원/645
7. 영광원광유치원/646 8. 오수원광유치원/648 9. 강화원광유치원/649
10. 부산중구원광유치원/650 11. 북일원광유치원/652 12. 인후원광유치원/653
13. 성주원광유치원/654 14. 화포원광유치원/655 15. 삼천포원광유치원/657
16. 서울원광유치원/658 17. 제주남원원광유치원/659 18. 금산원광유치원/660
19. 마산원광유치원/662 20. 대구원광유치원/663 21. 원남원광유치원/664
22. 청주원광유치원/666 23. 다대원광유치원/667 24. 북광주원광유치원/669
25. 군산원광유치원/670 26. 상주원광유치원/671 27. 진북원광유치원/673
28. 동산원광유치원/674 29. 수원원광유치원/675 30. 밀양원광유치원/676
31. 연산원광유치원/678 32. 장흥원광유치원/679 33. 속초원광유치원/680
34. 통영원광유치원/681 35. 삼랑진원광유치원/682 36. 남춘천원광유치원/683
37. 강남원광유치원/685 38. 당리원광유치원/686 39. 울산원광유치원/687
40. 포항원광유치원/688 41. 해남원광유치원/689 42. 남서울원광유치원/690

〔2〕 유아원……691

1. 대연원광새마을유아원/691 2. 유린새마을유아원/693 3. 이리원광새마을유아원/694
4. 애월원광새마을유아원/695 5. 영암새마을유아원/697 6. 신태인평화유아원/698
7. 장학새마을유아원/699 8. 양정원광유아원/701 9. 운봉원광새마을유아원/702
10. 서면원광새마을유아원/704 11. 관촌원광새마을유아원/705
12. 함열원광새마을유아원/707 13. 황등원광유아원/1708
14. 강경새마을유아원/709 15. 청학원광유아원/711 16. 혜화새마을유아원/712

17. 안동원광새마을유아원／713　18. 혜중새마을유아원／715
19. 도순원광새마을유아원／716　20. 영산새마을유아원／717
21. 원평원광유아원／719　22. 한림원광유아원／720
23. 감곡원광새마을유아원／721　24. 평화원광새마을유아원／723
25. 좌포새마을유아원　26. 진안월랑유아원／726
27. 담양천변새마을유아원／727　28. 금일새마을유아원／729
29. 신정3동 새마을 유아원／730　30. 덕진원광새마을유아원／732
31. 고창원광새마을유아원／733　32. 종로원광새마을유아원／734
33. 약대원광새마을유아원／735　34. 태인육리유아원／737
35. 문산원광새마을유아원／738　36. 남군산원광유아원／739
37. 우아원광새마을유아원／740　38. 좌산새마을유아원／742

〔3〕 기타학원……743

1. 논산원광미술학원／743　2. 남춘천원광웅변학원／744　3. 원일미술학원／744

□ 사회교육기관 ……745

1. 개관／745　2. 사회교육기관／746　3. 야학원／750　4. 노인학교／763

Ⅱ. 자선기관 ……766

□ 아동복지기관 ……767

1. 서울보화원／767　2. 익산보화원／769　3. 이리보육원／771
4. 한국보육원／775　5. 개성유린관／778

□ 노인복지기관 ……778

1. 중앙수양원／778　2. 전주양로원／781　3. 장수양로원／784
4. 원광노인요양원／785　5. 제주원광요양원／787

□ 장애자 복지기관 ……787

1. 이리자선원／787　2. 삼정원／789

□ 상담복지기관 ……791

1. 삼동청소년 상담실／791　2. 혼인삼당소／794　3. 아동상담소／796

□ 기타 ……797

1. 영모묘원／797　2. 보은동산회／797

□ 원불교 자선사업의 발전과 전망 ……800

Ⅲ 문화기관……802

□ 언론기관 ……802

1. 월간『원광』／803　2. 원불교 신문사／805

□ 출판기관 ……809

1. 정화사／809　　2. 원불교 원광사／818

□ 문화기관 ……828

1. 원불교 중앙문화원／828　2. 중앙박물관／831　3. 서울회관／834

Ⅳ. 훈련기관……839

1. 중앙상주선원／840　2. 중앙훈련원／842　3. 삼동원／849
4. 제주국제훈련원／854　5. 하섬훈련원／857　6. 수계훈련원／800
7. 동명훈련원／862　8. 만덕산훈련원／865　9. 소남훈련원／868

Ⅴ. 연구기관 및 단체 ……870

□ 연구소·연구원 ……871

1. 해외포교문제연구소／871　2. 종교문제연구소／884　3. 원불교사상연구원／893
4. 교화연구소／905

□ 연구단체 ……919

1. 교학연구회／919　2. 신룡교학회／929

Ⅵ. 수양·요양기관 ……937

□ 수도원 ……938

1. 서울수도원／941　2. 우이동수도원／943　3. 익산수도원／944　4. 원로원／946

□ 수양원 ……947

1. 이리수양원／947　2. 동래수양원／949　3. 마산수양원／951
4. 하섬수양원／952　5. 봉래수양원／955　6. 개성 및 당리수양원／957

□ 요양원 ……957

1. 중앙요양원／957　2. 원평요양원／960　3. 불목요양원／960
4. 금산요양원／961

Ⅶ. 의료·약업기관 ……962

□ 원광의료원 ……963

1. 의과대학 부속병원／967　2. 의과대학 부속 제2병원／975
3.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980　4.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984
5. 한의과대학 부속 광주한방병원／989

□ 한의·약업 ……993

1. 이리보화당한의원·보화당 건재약방／994　2. 북일원광한의원／1002
3. 서울보화당한의원／1008　4. 보화당역전한의원／1012
5. 부산보화당한의원／1015　6. 대전보화당한의원／1018
7. 전주보화당한의원·보화당건재도매／1021　8. 대구원광한의원／1025
9. 성남보화당한의원／1029　10. 경동보화당한의원／1032

11. 영등포보화당한의원／1034
12. 군산원광보화당한의원／1036
13. 부산원광한의원／1038
14. 제주원광한의원／1042
15. 이리보화당 제약사／1043

Ⅷ. 산업기관 ……1047

1. 총부농원／1048
2. 영산과원／1058
3. 황등과원／1059
4. 만덕산농원／1060
5. 이홍과원／1064
6. 수계농원／1066
7. 유일정미소／1075
8. 삼창공사／1076
9. 완도농원／1078
10. 원광상사／1081

Ⅸ. 신협·금고 ……1088

1. 저축조합／1088
2. 영산상조조합／1089
3. 신용협동조합／1091
4. 마을금고／1103

Ⅹ. 청소년단체 ……1106

1. 원불교청년회／1107
2. 원불교대학생연합회／1125
3. 학생회／1129

Ⅺ. 신행·봉공단체 ……1134

1. 수덕회／1134
2. 정토회／1137
3. 원덕회／1165
4. 정화단／1167
5. 청운회／1178
6. 원불교교수협의회／1195
7. 의료인협의회／1202
8. 중앙교우회／1205

Ⅻ. 각종사업회 ……1122

1. 은산육영사업회／1213
2. 육영사업회／1219
3. 법은사업회／1227
4. 교화사업회／1238
5. 후생사업회／1246
6. 중앙총부유지사업회／1249
7. 자선사업회／1253
8. 해산국제육영사업회／1258
9. 문화사업회／1260
10. 국제교화사업회／1264
11. 원창회／1266
12. 훈련사업회／1275
13. 중앙봉공회／1278

ⅩⅢ. 특별기구 ……1281

1. 제1대성업봉찬회／1281
2. 개교반백년기념사업회／1303
3. 남한강대책위원회／1335
4. 영산성지사업회／1347
5. 원불교창립 제2대 및 대종사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1352
6. 교단 제3대 설계특별위원회／1406

* 발간위원
* 편집후기

總　　編

Ⅰ. 소태산대종사／2
Ⅱ. 원불교 약사／8
Ⅲ. 교서와 교리의 변천／44
Ⅳ. 제도의 변천／74

Ⅰ. 少太山大宗師

1. 탄　　생

원불교의 교조 少太山大宗師(朴重彬)는 1891년 5월 5일(음3월 27일)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영촌 마을에서 탄생하였다.

밀양 박씨 문중에서 부친 朴成三과 모친 劉定天의 4남 1녀 중 세째 아들이었고, 어릴 때의 이름은 鎭燮이라 불렀으며 청년시절에는 處化라 했다. 중빈은 호적명이고, 少太山大宗師라는 호칭은 일원의 진리를 크게 깨치고 원불교를 창립한 후에 제자들이 높여 받들어 부르던 존칭이다.

소태산대종사의 家系는 멀리 신라 시조 박혁거세의 후예이고, 신라 54대 경명왕의 장자인 밀성대군(彦忱) 때에 본관을 얻었다. 13대조인 淸齋公(審問)은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사육신과 함께 순절하여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忠貞公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영월과 해남의 충렬사에 배향되었다. 그 후로 소태산대종사의 선조들은 경기도 양주군에 이주하여 살다가, 7대조인 九溪公(憶) 때에 이르러 전남 영광으로 옮겨와 이곳 저곳을 전전하다가, 소태산대종사가 탄생하기 7년전에 백수면 길룡리로 이사하였다.

부친 박성삼은 어려서 가난한 살림으로 인하여 글을 배우지 못하였으나, 관대한 인품과 명석한 천성으로 근동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모친 유정천도 또한 인자하고 후덕한 성품으로 이웃사람들로부터 德人이라는 말을 들었다. 소태산대종사가 탄생한 영촌마을은 당시 10여호 남짓한 궁벽산촌이었고, 소태산대종사의 집안 역시 당시에는 명문거족 아닌 평범한 농민이었다.

소태산대종사가 탄생한 시기는 동양의 경우에는 봉건주의가 무너져가는 과정에 있었고, 서양의 경우에는 프랑스 대혁명 이래 개인과 민족의 자유를 추구해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두를 가져왔다. 선진열강 제국에서는 국가적 이기주의와 독존적 민주주의가 대두되는 한편 17·8세기 重商主義 시대에 번성하였던 식민주의가 부활하여 帝國主義 시대가 출현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조선왕조 5백여년 역사가 밀려드는 외세의 압력과, 1876년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신흥 일본제국의 강압적 요구에 굴복하여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부터 근대 한국의 비극은 시작되었고 1882년에는 임오군란, 1884년에는 갑신정변, 1894년에는 동학혁명과 청일전쟁·갑오경장, 1895년에는 을미사변, 1896년에는 아관파천

의 급격한 역사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불과 20여년 사이에 한국은 청국·일본·러시아의 3국 사이에서 간섭과 혼란을 겪었고, 선진제국의 침략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마침내 1910년에는 나라까지 빼앗기게 되고 말았다.

2. 구 도

비록 가난한 산골에서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탄생하였으나 소태산대종사는 어려서부터 사물을 대할 때에 주의심이 깊었으며, 기상이 늠름하고 도량이 활달하였다. 한번 하기로 결심한 일은 반드시 실행하는 용단력도 있었다.

소태산대종사의 구도생활은 7세 경부터 시작되어 약 20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7세 되던 해 어느 날씨 화창한 봄날, 동녘 하늘에 붉게 타오르는 해를 붙잡으려고 마을 뒷산 옥녀봉 위로 올라갔다. 이때 소태산대종사는 마음속에 하늘을 발견하게 된다. 한없이 맑고 끝없이 넓은 하늘을 놀라움과 신비로움으로 바라보게 된다.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넓은 것일까? 어찌하여 저렇게 맑고 깨끗한가? 저 하늘의 끝은 과연 어디쯤이나 될까? 거기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구름 한점 없이 맑고 깨끗한 저 하늘에서 무슨 까닭으로 갑자기 먹구름이 끼이고 사나운 비바람이 휘몰아 치게 될까?」 춘하추동 사시의 변천과 해와 달과 별의 운행, 밤과 낮의 변화와 꽃피고 새우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주자연현상의 온갖 이치에 대해 깊은 의심과 경건한 사색에 잠기게 된다.

소태산대종사는 9세 경부터는 다시 우주의 자연현상 뿐만 아니라 인간세상의 복잡미묘하고 불가사의한 온갖 일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선인과 악인, 생로병사와 희로애락,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등 인간세상의 온갖 일들에 대해 마음속에 큰 의심을 갖게 된다. 이때부터 소태산대종사는 우주의 근본이치와 인간의 본성에 관한 관심, 곧 性理에 대해 깊은 의심을 갖게 되고, 성리에 대한 관심이 곧 소태산대종사의 구도생활의 출발점이 된다. 「누가 이 모든 이치들을 다 알고 있어서 나에게 확실히 가르쳐 줄 사람이 없을까?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소태산대종사는 마음속에 스승을 찾기 시작하고, 의문을 깨치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기 시작한다.

소태산대종사는 10세 경부터 부모의 말씀에 따라 한문서당에 다니게 되나 글공부에는 별 뜻이 없었다. 11세 되던 해 가을에는 부친을 따라 문중의 시향제에 참석했는데, 이때 山神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산신은 이 산의 주인이다. 한없이 신령스러운 존재여서 그 조화와 능력을 말로써는 다 형용할 수 없다.」 이처럼 큰 조화와 능력을 가진 산신이지만 지극한 정성을 가진 사람은 만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약 5년간 구수산 삼밭재 마당바위에서 산신을 만나기 위한 기도를 올리게 된다. 한편 15세 되던 해에 소태산대종사는 제주 梁氏 문중의 규수(夏

雲)와 결혼하게 된다. 16세 되던 해 음력 정초에 소태산대종사는 새해 인사차 처가에 다니러 간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사랑방에 모여 고대소설을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주인공이 불가사의한 위력을 가진 道士를 만나 큰 재주를 배워 마침내 입신양명하고 소원성취한다는 것이었다. 소태산대종사는 이때부터 다시 도사를 만나려는 노력을 약 6년간 계속하게 된다.

22세 경부터 소태산대종사는 산신이나 도사 만나려는 생각을 차츰 단념하게 된다. 「산신이나 도사를 만나겠다는 생각이 다 부질없고 허망한 것이로구나. 산신은 현실세계에 존재하지도 않고, 도사도 역시 이야기책 속에서 가공으로 그려보는 인물에 지나지 않는구나. 10여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구나. 아!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만 좋을 것인가?」

소태산대종사가 산신과 도사를 만나서 진리에 대한 의심을 풀어보겠다는 생각은, 당시 한국인들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한계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소태산대종사는 산신과 도사 만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서부터 차츰 일상적인 생활궤도를 잃어가기 시작한다. 「내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날이 계속된다. 때로는 우연히 머리속에 떠오르는 呪頌을 외우기도 하고, 무엇인가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안타까움에 가슴은 더욱 답답하기만 하게 된다. 이 무렵 소태산대종사는 상식적 인간이 갖고 있는 일체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무슨 일을 해도 하는 줄을 몰랐고, 어디를 가도 가는 줄을 몰랐다. 바람이 부는 지, 비가 오는 지, 앉아 있는 지, 서 있는 지, 먹는 지, 굶는 지도 모르는 망각의 세계 곧 入定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거기다가 온 몸에는 부스럼이 가득했고, 咳嗽病이 그치지 않았다. 주위사람들은 문둥병 환자라 하면서 가까이 오기도 꺼려하였다. 거기다가 20세 경에는 이미 부친이 세상을 떠났고, 손위의 두형은 친척집으로 入養된 관계로 소태산대종사가 가정을 이끌어야 할 상황이었으나 입정 상태에서 가정살림을 관리하지 못한 관계로 가정형편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소태산대종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막다른 골목에 다달은 것이다.

3. 큰 깨달음

소태산대종사의 나이 26세 되던 1916년 4월 28일(음3월26일) 이른 새벽 마침내 소태산대종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동이 트는 새벽과 함께 정신이 문득 밝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道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소태산대종사는 스승의 지도없이 스스로 깨친 진리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맑은 바람 솔솔 불어 밝은 달이 두둥실 떠오르니, 우주의 삼라만상이 저절로 밝게 드러나도다」 소태산대종사는 진리를 깨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별빛 하나없는 캄캄한 밤중에 어디에서 한줄기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솔솔 불어 구름이 걷히고 밝은 달이 허공에 두둥실 드러나면, 우주에 가득 찼던 어둠은 물러가고 삼라만상의 모습이 형형색색으로 훤히 드러난다. 먹구름이 끼어 별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중이란 중생들의 무명번뇌, 곧 삼세업장을 말한다. 맑은 바람 솔솔 불고 밝은 달이 두둥실 떠올라 삼라만상이 훤히 드러난다는 것은 곧 자성의 지혜광명이 빛나 시방삼세의 모든 진리를 확실히 깨친다는 것이다. 소태산대종사에게 있어서 진리를 깨치기 전까지의 오랜 구도생활, 그것은 별빛 한점없이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힌 캄캄한 밤하늘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시절인연이 되어 1916년 4월 28일 이른 새벽 밝아오는 서광과 함께 정신이 상쾌하고 맑아져서 마음달(자성의 지혜광명)이 두둥실 떠오른 것이다. 허공에 가득찬 마음달로 시방삼세를 비추어 보니 인과보응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진리가 손바닥위의 구슬처럼 훤히 드러난 것이다. 큰 깨달음을 얻은 소태산대종사의 마음은 한없이 기뻤다. 지난 날의 모든 의심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모두 한생각을 넘기지 않고 확연히 드러났다. 하루 이틀 차차 날이 지날수록 온몸에 가득찼던 부스럼도 저절로 씻은 듯이 없어졌다. 피골이 상접하던 몸도 건강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진리를 깨쳤다. 내가 깨친 이 진리를 세상에 널리 펴서 고해중생을 낙원세계로 인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는 아직 아무런 기초가 없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상사람들은 나를 폐인이라 조롱했다. 나는 지난 날에 어떠한 종교와 관련을 맺었거나 큰 스승밑에서 공부한 일도 없었다. 20여년에 걸친 나의 구도생활을 누가 알아 줄 것인가. 나는 본래 권문세가나 명문거족의 출신도 아니다. 부모님의 유산도 이미 탕진하였으니 회상 창립에 필요한 물질적 토대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실생활의 대도정법은 알지도 못하고 呼風換雨하고 移山渡水하는 허구맹랑한 미신에만 정신이 빠져가고 있으니 이 일을 장차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인가. 진리를 깨치기 전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이 큰 한이 되더니, 이제는 이처럼 큰 깨달음을 얻었으나 이해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 이것이 참 큰 한이로구나.」 소태산대종사는 이렇게 한탄하였으나 진리를 깨친 지 몇달 후에는 40여명의 신자를 얻게 된다. 이들 중에서 신심이 굳고 진실한 이재철·이순순·김기천·오창건·박세철·박동국·유건·김광선 등 여덟사람을 선택하여 표준제자로 삼는다. 이들은 다 같은 마을이나 또는 이웃마을에 사는 농부들이었고, 이들보다 약 2년후에 송규를 만나게 된다. 이들 아홉사람들을 구인제자라 하며 송규가 수제자가 된다. 구인제자들은 서가모니의 십대제자, 공자문중의 十哲, 예수의 십이사도와 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교단 창립 준비

원불교 교단사를 말할 때에는 소태산대종사가 큰 깨달음을 얻은 1916년을 교단 창립 元年으로 하고, 1916년 4월 28일을 원불교 개교의 날로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익산총부를 건설한 원기9년(1924) 이후에야 교단으로서의 면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소태산대종사는 구인제자들과 더불어 처음 교단창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축조합운동·방언공사·법인기도가 그것이다.

원기2년(1917) 8월경에 소태산대종사는 구인제자들과 더불어 저축조합을 창설하고 미신타파, 허례폐지, 근검저축, 금주단연, 공동작업 등을 통한 새 생활운동을 전개한다. 이 운동으로 재산을 저축하고 단결과 화합을 이루며 인간개조를 가져오게 된다. 원기3년(1918) 3월부터 1년간 길룡리 앞 간석지를 막는다. 이 방언공사로 2만6천여 평의 새 농토가 조성된다. 방언공사는 원기4년(1919) 삼일운동이 일어날 무렵 끝나게 된다. 방언공사가 끝날 무렵 제자들이 소태산대종사에게 물었다. 「대종사님, 지금 삼천리 방방곡곡에 만세운동이 크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때를 당하여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삼일운동은 일본의 압정에 대한 단순한 항쟁만은 아니다. 백의민족 자각의 외침이요 나아가 새 세계의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소리다. 지금 우리는 때가 급하고 바쁘다. 이 세상의 모든 단체와 사람은 다 그때에 맞게 진리가 부여한 역사적 사명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할 역사적 과업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어서 서둘러서 방언공사를 끝마치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자.」 방언공사가 끝나자 소태산대종사는 구인제자들에게 특별기도를 명한다. 「오늘날 물질문명·기계문명의 눈부신 발달은 황금만능사상을 나날이 팽창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인·가정·사회·국가가 모두 안정과 평화를 얻지 못하고 전쟁과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 세상을 널리 구원하려는 큰 뜻을 가진 우리들이 어찌 이런 일을 범연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옛 성현들도 세상을 건지기 위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하늘의 뜻을 감동시킨 일이 있었다. 그대들도 진실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써 모든 인류의 정신이 물욕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기도하여 하늘의 뜻에 감동이 있게 하여 보라.」 이렇게 하여 시작한 법인기도는 원기4년(1919) 8월 21일(음7월26일)에 白指血印의 이적이 나타났다. 이에 소태산대종사는 제자들에게 법호와 법명을 주며 당부한다.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제 세계의 公名인 새 이름을 주어서 다시 살린다. 삼가 받들어 가져서 창생을 널리 제도하라.」

저축조합운동, 방언공사, 법인기도 등은 교단창립의 기초작업이 된다. 법인기도가 끝나자 소태산대종사는 원기4년(1919) 10월 경에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전북 부안군 산내면 봉래산에

있는 봉래정사로 간다. 이곳에서 약 5년간 保任공부를 계속하며, 장차 펴게 될 새 회상의 교리와 제도 등을 구상하게 된다. 이때 白鶴鳴·韓滿虛 등 재래 사찰의 승려들과 교류하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게 된다.

5. 익산총부 건설

소태산대종사가 봉래정사로 들어온 지 해를 거듭하자 각처에서 제자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하고, 정식으로 새 회상을 펴자는 의견이 대두된다. 마침내 원기9년(1924)에 이르러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룡리(현 이리시 신룡동)에 총부기지를 정하게 된다. 이 해 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불법연구회》라는 임시교명을 선포하게 된다. 《불법연구회》라는 교명은 8.15 해방 때까지 사용되었고, 원기32년(1947) 《원불교》라는 정식 명칭이 사용되게 된다. 원기9년(1924) 늦가을에 초가 2동 17간의 집을 건축하였는데 이것이 중앙총부 건설의 시초가 된다. 원기9년(1924)은 甲子年이다. 갑자년은 육십갑자중에서 첫 해에 해당된다. 그래서 갑자년은 상서로운 해로 믿어온다. 원불교에서는 1924년을 후천개벽의 첫 해가 되는 상서로운 갑자년으로 믿고 있다. 익산총부 건설을 전후하여 전무출신의 공동생활이 시작되었고 구인제자를 비롯하여 초기의 제자들이 거의 가난한 농민들이어서 총부건설과 전무출신의 공동생활은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리하여 숯장사, 엿장사, 소작농으로 시작하여 뒤에 고무공장 제사공장의 직공생활과 산업부 경영 등의 험난한 길을 걷게 된다. 오늘날까지도 전무출신의 공동생활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무출신은 교단 발전의 핵심집단이 되어 있다. 저축조합운동, 방언공사, 법인기도, 익산총부건설 등의 정신은 오늘날 창립정신으로 승화 계승 발전되고 있다.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익산총부를 건설하면서부터 차츰 교단의 면모를 형성해가게 된다. 소태산대종사는 차츰 인류역사 앞에서 무한한 미래를 전망하면서 주세성자로서의 책임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진리를 깨친 안목으로 당시의 시대상황을 냉철히 관찰한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민족이 이처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세계 열강제국의 침략주의와 일본의 강대한 군사력 때문인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불안, 백성들의 무지와 나태로 인한 국력의 쇠약 때문이다. 인류사회의 평등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자력의 확립에서만 가능하다.」「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눈부신 발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온갖 위기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근세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한 기계문명·물질문명의 발달만으로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기 어렵다. 과학문명은 전쟁무기의 발달을 가져올 것이고, 전쟁무기의 발달은 전쟁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물질문명의 발달은 도시화 산업화 현상을 가속시킬 것이고, 그 속에서 인간상실 인간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덕의 타락과 가치관

의 혼란을 가져와 사회의 부정 부패 부조리와 범죄현상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사람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물들어가고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차츰 돈을 생활의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황금만능사상 속에서 종교는 차츰 인류구원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병이 들어 있다. 돈의 병, 원망의 병, 의뢰의 병, 배울 줄 모르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공익심 없는 병에 걸려 있다. 또 이기주의 사상의 팽배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상생상화의 선연이 아니라 상극투쟁의 악연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 사회는 차츰 인정과 사랑이 메말라갈 것이고, 정의와 불의의 표준도 이익과 불이익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소태산대종사는 이처럼 당시의 사회상황을 여러 가지로 관찰하고 마침내「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천명하게 된다. 이것이 곧 새 회상의 개교동기이다.

6. 소태산과 서가모니불

소태산은 큰 깨달음을 얻은 후「동양도덕에는 儒·佛·仙의 경전과 근래에 몇가지 신흥종교의 학설이 있고, 서양에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하니 그 교리의 강령을 한번 참고하며 내가 깨친 바와 대조하여 보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으로 소태산대종사는 불교의『금강경』·『선요』·『불교대전』·『팔상록』과 도교의『음부경』·『옥추경』과 천도교의『동경대전』, 기독교의『신약성서』·『구약성서』 등을 두루 열람하게 된다. 이 여러 경전중에서『금강경』을 보고「서가모니불은 진실로 성현들 중의 성현이다. 모든 경전의 진리가 대개 적절하여 버릴 것이 없으나 그 중에서도 근본적 진리의 깊이는 불교가 제일이다. 내가 스승의 지도없이 도를 이루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수행의 과정과 도 깨친 경로를 되돌아 본다면 서가모니불의 말씀과 행적에 부합되는 점이 많다. 나의 淵源을 서가모니불로 정하리라. 내가 장차 혼탁한 이 세상에서 새 회상을 창립하여 천하창생을 널리 제도할 때에도 부처님의 법을 주체삼아서 완전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소태산대종사는 이처럼 서가모니불을 성현들 중의 성현이라 하였고, 불법에 연원하여 새 회상을 건설하리라 계획하였으나, 당시의 불교는 출세간생활을 본위로 하여 교리와 제도가 조직되어 세간생활하는 일반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점도 많았다.「종교란 인간을 상대로 한 것인데 사람이 살지않는 산간에 사찰을 두었으니 세간생활에 분망한 사람들이 어느 여가에 그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또한 일반사람들이 배우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말과 글로 경전이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어렵게 되었다.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도 사·농·공·상의 직업을 놓아버리고 불공이나 시주나 동령으로써 생활을 하였으니 어찌 대중이 다할 수 있는 길인가. 결혼의 경우에도 출세간 공부인에게는 절대로 못하게 하고, 예법도 여러 가지 형식불공만 밝히고 세간생활에

대한 예법은 밝히지 않았으니 어찌 모든 사람이 다 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재가 출가가 다 공부할 수 있는 새 법을 널리 펴리라. 불제자의 계통도 재가 출가의 차별이 없게 할 것이며, 수도하는 처소도 신자를 따라 어느 곳이든지 설치할 것이며, 예법도 사실불공을 주로 하여 세간생활에 적절하고 유익한 예법을 밝힐 것이다. 또한 교리나 제도 등도 시대와 대중에 맞게 할 것이며, 경전도 일반대중이 다 배울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편찬하리라.」 소태산대종사는 이처럼 불법에 연원하되, 불교개혁에서부터 출발하여 새 회상을 건설하게 된다. 소태산대종사는 불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란 기치아래 불교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한다. ①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의 신앙과 삼학의 수행으로써 모든 종교의 진리를 융통 활용한다. ② 모든 경전과 교서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쉬운 말과 글로 평이 간명하게 편찬한다. ③ 교당은 교도가 많은 곳에 설치하고 남·녀교역자를 두루 양성하여 원활한 교화를 도모한다. ④ 모든 신자는 정당한 직업을 가져 자력생활을 하고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며, 영혼구제에만 치우치지 않고 정신생활과 육신생활을 조화있게 한다. ⑤ 모든 의식과 예법은 진리와 사실에 근거하여 간편을 위주로 하고, 시대에 맞고 대중이 다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⑥ 법의 계통을 재가 출가의 차별이 없게 하고 법위의 높고 낮음에만 따르게 한다. ⑦ 출가 교역자에 대하여 결혼을 법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뜻으로 결정하게 한다. ⑧ 교단의 운영에 재가 출가가 함께 참여토록 한다.

7. 한국의 장래와 미륵세계

소태산대종사가 살았던 시대는 한민족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고통과 수난의 시대였고, 세계적으로도 전쟁 무질서 혼란의 시대였다. 그러나 소태산대종사는 이처럼 암울한 시대에 살았으면서도 한국의 장래와 미래세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소태산대종사는 원기15년(1930) 5월, 몇몇 제자와 함께 금강산을 탐승한다. 금강산 구석구석을 직접 탐승하고 돌아온 소태산대종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번에 금강산에 가서 글 한귀를 얻었다. **步拾金剛景 金剛皆骨餘 金剛現世界 朝鮮更朝鮮**이라는 글귀다. 이 뜻을 잘 생각해 보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장차 세계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세계각국이 서로 다투어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때에는 세계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금강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다. 우리들은 금강산의 주인될 사람들이니 주인노릇 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강산은 **法起**보살의 도량이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법기보살은 금강산의 **主佛**이며 『화엄경』의 일만이천**佛** 중에서 가장 주장되는 부처로서, 그 모든 권속들과 함께 금강산 가운데에서 설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의 뜻은 장차 세계를 구제할 새

도덕이 우리 나라에서 일어날 것을 예시한 것이다. 또 서역에서 上啼보살이 법기보살을 만나러 금강산으로 온다는 전설도 있다. 이 말의 뜻을 서양 사람들이 우리 나라로 법을 배우러 온다는 뜻이다. 그대들은 마음공부를 잘하여 각자 마음속의 금강자성심을 찾고, 금상산의 주인이 되어 우리 나라를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으로 발전시켜 가며, 세계 각처에서 우리 회상에 와서 법을 배워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소태산대종사는 금강산에 대한 법문을 자주 베풀며, 한국의 장래와 미래세계에 대한 매우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고 미륵세계가 올 것을 강조한다.「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다. 그것은 곧 금강산이다. 우리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며,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날 것이다. 우리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같이 세계의 빛이 되리라. 그런즉 그대들은 우리의 오늘의 현상을 비관하지 말고 세계가 금강산의 참 주인을 찾을 때에 우리 여기 있다 할 자격을 갖추기에 공을 쌓으라. 금강산의 주인은 금강산 같은 인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니 마음을 닦아서 밝히면 그 광명을 얻으리라. 금강산 같이 되려면 금강산 같이 순실하여 순연한 본래 면목을 잃지 말며, 금강산 같이 정중하여 각자의 本分事에 전일하며, 금강산 같이 견고하여 신성과 의지를 변하지 말라. 그러하면 산은 體가 되고 사람은 用이 될지라 체는 靜하고 용은 動하나니 산은 그대로 있으되 능히 그 체가 되려니와 사람은 잘 활용하여야 그 용이 될 것이다. 그대들은 어서 어서 부처님의 무상대도를 연마하여 세계의 모든 산 가운데 금강산이 드러나듯 모든 사람 가운데 환영받는 사람이 되며, 모든 교회 가운데 모범적 교회가 되게 하라. 그러하면 강산과 사람이 아울러 찬란한 광채를 발하리라. 우리 나라는 開明이 되면서부터 생활제도가 많이 개량되었고 완고하던 지견도 많이 열리었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며,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제일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魚變成龍이 되어가고 있나니라.」 소태산대종사는 이 법문에서 ① 금강산은 장차 세계의 공원이 될 것이며, 전 세계가 공동으로 공원개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② 금강산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이며, 우리 민족은 금강산 같은 인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③ 금강산은 장차 세계의 종교적 중심지가 될 것이고, 우리 나라는 정신적 지도국이 될 것이다. ④ 금강산의 精氣는 만 생령을 살리는 대자대비심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태산대종사는 또 미래세계에 대해서 불안의 시대, 혼란의 시대, 위기의 시대, 전쟁의 시대, 파멸의 시대라 보지 않고 매우 밝은 시대로 전망한다.「지금 세상의 정도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동방에 밝은 해가 솟으려하는 때이니, 서양이 먼저 문명함은 동방에 해가 오를 때에 그 광명이 서쪽 하늘에 먼저 비침과 같은 것이며, 태양이 중천에 이르면 그 광명이 시방세계에 고루 비치게 되나니 그때야말로 큰 도덕 세계요 참 문명세계니라. 지금은 묵은 세

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라 어찌 마음 든든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랴.」 소태산대종사는 또 미래세계를 미륵불 세계라 전망한다.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 미륵불이요, 크게 밝은 세상이 곧 용화회상이다. 다시 말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크게 드러나고 널리 실행되는 때가 미륵불 세계요 용화회상이다. 그러한 세상은 차차 되어가고 있고, 먼저 깨쳐 행하는 사람이 미륵불 세상의 주인이다. 미륵불 시대가 오게 되면 인간의 지혜가 밝아져서 모든 일에 상극은 없어지고, 이 세상에 불법이 편만하여 僧俗의 차별이 없어지며, 법률과 도덕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고, 공부와 생활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여 만 생령이 고루 그 덕화를 입게 되리라.」 소태산대종사는 이처럼 하나의 세계, 하나의 인류를 전망하였다. 또한 한국의 분단현상은 일시적인 것일 뿐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으로서의 한국과 조국통일을 확신하였다.

8. 일원대도

소태산대종사는 1916년 4월에 큰 깨달음을 얻은 뒤 28년간 교단의 창립발전과 제자들의 교화에 전 생애를 바쳤다. 소태산대종사는 스스로 깨친 우주의 궁극적 진리를 법신불 일원상이라 표현하였다. 소태산대종사는 처음 우주의 근본이치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출발하여 구도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소태산대종사는 처음 큰 깨달음을 얻은 후 과거 성현들의 여러 경전을 열람하고 「내가 깨친 바를 옛 성현들도 또한 먼저 깨쳤구나」하고 찬탄하였다. 그러면서도 부처님·하느님·태극·무극·法·道·神 등의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원상이라 표현하였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쉽게 깨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대자대비심의 발로였다. 소태산대종사의 가르침은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여 마침내 일원상의 진리를 깨치고 닮아가서 모든 사람이 일원상의 진리와 합일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불교의 모든 교리는 일원상의 진리를 깨치고 실천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신앙문과 수행문을 밝혔다. 신앙문에서는 사은 사요, 수행문에서는 삼학 팔조의 교리를 가르쳤다. 따라서 소태산대종사의 모든 법문은 일원상의 진리, 사은 사요의 신앙, 삼학 팔조의 수행에 귀결된다. 소태산대종사의 제자들에게 원불교의 교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도를 제정하였다.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원기28년(1943) 1월에 최종 확정발표하면서 말하였다. 「참 보기가 좋다. 꼭 거북이 같이 생겼구나. 거북이는 오래 사는 靈物이다. 나의 법도 수만년 갈 것이다. 사은과 삼학 팔조의 법은 영원히 변치않을 것이다. 미물곤충도 도둑도 삼학을 놓고서는 살 수 없는 법이다. 내 교법의 眞髓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건마는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지금 그대들 가운데에도 이 뜻을 온전히 받아갈 사람이 그리 많지 못한 듯 하다. 그 까닭은 정신이 財와 色으로 흐르고 명예와 허식으로 흘러서 인심집중이 못되기 때문이다. 그대

들이 그럴진대 차라리 이것을 놓고 저것을 구하든지 하여, 좌우간 큰 결정을 세워서 한길로 나아가야만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태산대종사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근기따라 다양한 형태로 교리를 설하고 있다. 일원상의 진리, 사은 사요, 삼학 팔조 등의 교리를 하나하나 설명하기도 하고, 교리도를 제정하여 요약 해설하기도 하며, 표어를 제정하여 가르치기도 한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동정일여 영육쌍전」, 「불법시생활 생활시불법」 등의 표어에도 소태산대종사의 교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 소태산대종사는 이처럼 표어에서도 모든 교리를 다 설명하고, 교리도에서도 다 설명하며, 『정전』 교의편에서도 교리를 다 가르치고 있고, 『정전』 수행편에서도 다 가르치고 있으며, 수행편 중에서도 「일상수행의 요법」 장에도 교리가 다 들어 있다. 이와같이 소태산대종사는 제자들의 근기따라 어떤 제자는 표어에서 깨치고, 어떤 제자들은 교리도에서 깨치고, 어떤 제자들은 「일원상 서원문」에서도 깨치고 어떤 제자들은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도 깨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소태산대종사의 모든 교법은 결국 일원상의 진리, 사은 사요, 삼학 팔조에 귀결된다. 그래서 소태산대종사의 교법은 사통오달의 일원대도요, 천만방편 무량법문의 대자대비이다.

9. 만고일월

소태산대종사가 살았던 1891년부터 원기28년(1943)까지의 시대는 한민족에겐 어렵고 괴로왔던 시대였다. 일본의 압제에 시달리는 한민족에겐 조국독립이 지상최대의 과제였다. 창씨개명, 한글폐지, 태평양전쟁 등 일제말기에 와서 한민족의 고통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소태산대종사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아무리 검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려해도 그것은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검은 먹구름은 걷히고 태양은 찬란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찬란한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내 자신을 먼저 희생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소태산대종사는 이처럼 검은 먹구름같은 일본이 찬란한 태양같은 한국을 영원히 압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새싹이 돋아난 것 같은 교단이 일제의 마지막 압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필요하며, 어쩌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해야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원기26년(1941) 1월 28일, 소태산대종사는 제자들에게 게송을 발표하였다. 「有는 無로 無는 有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俱空이나 구공 역시 具足이라.」 소태산대종사는 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이나,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경지가 바로 이 자리이다. 돌고 돌아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방법적으로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 구공이다 구족하다를 논할 여지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참모습이니 사량계교로써 이 자리를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관조묵상으로써 깨쳐 얻으라. 유와 무가 돌고 돌아 구공이 되고 구족이 되는 이치를 깨치게 되면 우주의 주인이 되어 걸리고 막힐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임운등등하고 등등임운하게 세상을 자유자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큰 성현이 게송을 설할 때에는 중음신들이 문고리만 잡아도 제도를 받게 된다. 옛 도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게송을 설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설해 준다. 또한 옛 도인들은 몇 사람들에게만 비밀히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고루 전하여 준다.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하기에 달렸다. 각기 수행 정진하여 뒷날에 유감이 없게 하라. 그대들이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동정간에 항상 선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동정간 불리선법을 익혀야 한다. 우리의 육근에 일이 없을 때에는 모든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에 일이 있을 때에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대로만 살아간다면 언제 어디서든 항상 선공부를 떠나지 않고 날로 달로 선업을 쌓아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소태산대종사의 게송 설법을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옛 도인들은 게송을 설하고 나면 곧 열반길을 떠난다던데, 그러나 소태산대종사께서는 아직 몸도 건강하시고 나이도 많지 않으시며 할 일도 많으시니 열반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래도 혹시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을 두고 대종사님 혼자서 먼저 가신다면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이로부터 소태산대종사는 모든 법회에서 생사 인과에 대한 법문을 주로하고,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열반을 암시하였다. 「내가 이제 멀고 깊은 곳으로 수양길을 떠나려 한다. 만일 내가 떠나고 없더라도 퇴굴심이 나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하고 마음을 추어 잡으라. 지금은 중요한 심판기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들어 버리고 말 것이요 믿음이 굳센 사람은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법은 신심있고 공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가도록 전하였다. 법을 받지 못하였다고 뒷날에 한탄하지 말고 하루 속히 이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 내가 한번 떠나가기로 하면 모든 것을 헌신짝 버리기보다 더 쉽고 썩은 새끼줄 끊어 버리기보다 더 미련없이 떠날 것이다. 아무런 착심도 없이 훌훌이 떠날 것이다.」 이와같이 소태산대종사는 중앙총부에서 또는 이 교당 저 교당을 순방하면서 만나는 제자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열반을 암시하였고, 더욱 굳센 신심과 공부심으로 새 법을 배우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원기28년(1943년) 4월 26일, 극도에 달한 일제의 압제속에서 총회를 끝내고 소태산대종사는 마침내 자신의 열반을 결심한다. 「이제는 내가 떠나야할 때가 왔다.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야 한다. 내가 떠나야만 우리 회상에 대한 일본의 압제가 늦추어질 것이다.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열반의 길을 떠날 것인가. 내가 떠나면 제자들의 자력이 빨리 세워질 것이다. 그동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나에게만 의지하고 따랐다. 회상을 더 크게 발전시

켜 가려면 모든 제자들이 자력을 세워 내가 없더라도 각자가 맡은 일을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내가 아직 53세 장년의 나이에 떠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제자들의 아픔이 크겠지만 곧 정신을 차려 자력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 조국의 독립을 찾은 후에 우리 회상이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제자들의 자력이 빨리 확립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떠날 것이다. 인간의 생사는 자연의 공도이다. 빠르고 늦은 차이는 있을 지언정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인연들과 헤어지기 마련이다. 나는 아직도 수십년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지만 의연한 자세로 생사가 자연의 공도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나는 아무런 착심이나 미련도 없이 훌쩍 떠날 것이다. 나의 전생애를 다 바쳐온 이 회상에 대해서 아무런 착심없이 떠날 것이다. 나의 법은 우주의 운행에 따라 영원한 세월에 길이 유전될 것이다. 장차 어떠한 제자도 교단일을 못잊어 열반할 수 없다는 착심을 갖지 않도록 내가 모범을 보여 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아무런 착심없이 텅 빈 마음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다. 나는 평범한 모습으로 떠날 것이다. 옛 선사들은 보통사람들과는 특이한 모습으로 좌탈입망을 하거나 舍利를 남기기도 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떠날 것이다. 내가 만약 평범한 모습이 아니고 특이한 모습으로 떠난다면 나의 제자들도 특이한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기행이적을 숭상하다보면 마침내 邪道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평범한 삶, 평범한 죽음속에 큰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마침내 원기28년(1943) 5월 16일 소태산대종사는 제자들에게 생사법문을 최후로 설하고 병석에 누웠다가 6월 1일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열반의 길을 떠났다. 세월이 흘러 원기38년(1953) 4월, 원불교 교단은 제1대 성업봉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소태산대종사 성탑과 성비가 중앙총부에 건립되었다. 소태산대종사의 법통을 이은 수제자 정산종법사는 성비 비문에 소태산대종사의 공덕을 크게 찬양하였다. 「…오호라! 대종사님께서는 영원한 세상의 주세성자로서 궁촌벽지에 생장하시어 학문을 배우고 닦은 바가 없었으나 文理를 스스로 깨치시었고, 스승의 지도가 없었으나 대도를 스스로 깨달으시었다.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를 당하였으나 대도사업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완강한 중생을 대할지라도 만능 만덕의 제도역량을 구비하시었다. 기상은 태산교악 같으시나 춘풍화기의 자비가 겸전하시고, 처사는 뇌뢰락락 하시나 세세곡절의 진정을 통해주시었다. 옛법을 개조하시나 대의는 더욱 세우시고, 시대의 병을 고치시나 완고에는 그치지 않으시었다. 만법을 하나에 총섭하시나 분별은 오히려 역력히 밝히시고, 하나를 만법에 施用하시나 본체는 항상 여여히 드러내시었다. 안으로 무상묘의의 원리에 근거하시며 밖으로 사사물물의 지류까지 통하시어 일원대도의 바른 법을 시방삼세에 한없이 열으시었다. 이른바 百億化身의 如來시요 集群聖而大成이시었다.」

다시 세월이 흘러 원기56년(1971) 10월, 소태산대종사가 큰 깨달음을 얻은 영산성지 노루목에는 소태산대종사의 대각을 기리는 「萬古日月」이라 새긴 기념비가 세워졌다.

10. 인　　품

소태산대종사에 대한 제자들의 호칭은 각양각색이었다. 처음에는 선생님, 당신님, 처사님, 아버님, 영부님, 聖師님, 生佛님, 師父主, 宗父主 등으로 불렀다.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부르던 이름을 원기14년(1929)부터 「宗師主」라고 통일하기로 하고, 이때부터 종사주 또는 종사님으로 많이 불리웠다. 제자들이 글속에서 소태산대종사를 존숭할 때에는 唯我大宗師, 유아대종사주, 大聖宗師, 대성종사주, 대성인 우리종사, 대자비 우리종사, 역겁난우 우리종사, 제일가장 우리종사, 삼계 대종사 사생자부 유아종사 대성인, 구주이신 우리종사, 전무후무 유일하신 우리대종사, 원각성존 소태산대종사, 만고일월 등 갖가지로 표현되었다. 少太山은 自號이며, 소태산대종사는 石頭居士라 자처하기도 하였다. 제자들이 「대종사님」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은 원기38년(1953) 제1대 성업봉찬대회 때부터였다.

소태산대종사의 키는 약 180㎝ 정도, 몸무게는 90kg내외의 건장한 체구였다. 체격은 상하좌우가 균형을 이루어 어느 쪽에서 보아도 다 원만하고 거룩하였다. 걸음은 牛步로 투벅투벅 걸었고, 급하거나 한가하거나 오래 걷거나 잠깐 걷거나 간에 항상 같은 보조로 걸었다. 목소리는 金聲에 약간의 木聲이 섞이었고, 평상시에는 목성에 가까웠으나 설법할 때에는 금성이 많이 섞이어 시방삼계 일체중생이 고루 듣게 하는 것 같았다. 말씀은 드문 편이었으나 말씀마다 법설이었다. 얼굴모습은 구름 한 점없이 맑고 푸른 가을 하늘에 두둥실 떠오르는 보름달 같았다. 두 눈에서 빛나는 광채는 마치 5월의 눈부신 태양 같았다. 피부 색깔은 옥같이 희고 맑아 티끌 한 점 흉터 하나 없었고 매우 부드러웠다. 소태산대종사의 외모는 한마디로 「미륵존불」 같았다.

낮에는 무슨 일이든지 계속하였고 무료도일하는 일이 없었다. 걸음걸이가 묵중할 때에는 태산이 천하를 진압하는 것 같았고, 경쾌한 때에는 큰 호랑이가 산천을 누비는 것 같았다. 평소 중앙총부 구내를 다닐 때에는 손에 늘 염주를 놓지 않았고, 밤에도 자주 순행하며 울타리 하나까지도 세밀히 살피었다. 제자들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에는 예고없이 나타나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였다. 제자들이 무슨 일을 잘못할 때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처럼 크게 꾸중하였다. 마치 천둥 벽력이 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제자들은 꾸지람을 오히려 감사하게 느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수용은 지극히 검소하여 종이 조각 하나 노끈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였다. 「물건은 있다고 함부로 쓰면 물건 귀한 땅에 난다」하며 훈계하였다.

소태산대종사의 心性은 河海같이 깊고 활달하였으며 태산같이 크고 무거웠으나 다른 사람의 기미를 통찰하기는 매우 빨랐다. 육체적 힘은 보통을 넘었으나 그 힘을 써본 일은 별로 없었고, 큰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술을 한 두동이 마셔도 취기가 조금도 없었다. 제자들이 아닌

외인 교제에는 특히 겸양하고 따뜻하게 대하였으나, 외인들은 대개 어렵고 무섭게 느껴 영웅이 아닌가 하였고, 제자들은 대개 자비로운 부모님 같이 느꼈다. 덕화와 위엄이 겸전하여 멀리 있는 제자들이 소태산대종사를 생각만 하여도 더운 기운이 감돌았다. 한때라도 소태산대종사를 모시고만 있어도 그 훈기에 추운 줄을 몰랐다. 제자나 외인을 막론하고 마음속에 조그마한 邪心이라도 품고 있으면 무섭고 떨려서 감히 그 앞에 서지를 못하였다.

예수교인은 소태산대종사를 예수가, 유교인은 공자가, 천도교인은 최수운이, 불교인은 미륵불이 출현한 것으로 보았다. 정치가의 눈에는 대정치가로, 경제인의 눈에는 대기업가로, 교육자의 눈에는 대교육자로, 농부의 눈에는 부지런한 농부로 보였다. 제자들의 눈에 소태산대종사는 우주에 가득찬 모습이었다. 소태산대종사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우주를 손바닥으로 쥐었다 폈다하는 것 같았다. 소태산대종사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큰 위엄이 감돌았다. 차에 오르면 처음보는 사람들도 자리를 비켜주었고, 거리에서도 행인들이 길을 비켜주었다. 소태산대종사는 해학도 풍부하여 어떠한 사람과도 쉽게 어울리었다. 일상생활은 지극히 평범하고 음식도 매우 소탈하게 먹었다. 그러나 모든 사물을 대할 때에는 대포무외 세입무내,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극치를 이루었다.

소태산대종사는 평소 천성적으로 착한 마음을 타고난 제자, 전무출신에 굳은 서원을 세운 제자, 공금을 아껴쓰는 제자, 어떠한 잘못이라도 사실대로 직고하는 제자, 쓸모많은 제자, 항상 주의심이 깊은 제자, 소태산대종사에 대한 신성이 철저한 제자, 법문을 잘 듣고 남에게도 잘 전해주는 제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칭찬해 주었다. 그러나 어느 제자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는 않았으나 제자들은 제각기 자기만을 더 사랑해주는 것으로 알았다.

소태산대종사는 전무출신으로서 私家에 자주 다니는 제자, 빙공영사하는 제자, 공금을 무서워하지 않는 제자,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제자, 외학의 지식에만 흐르는 제자,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고 정돈을 잘하지 않는 제자, 시기심이 많고 남을 모함하기 좋아하는 제자, 국량이 좁고 옹졸한 제자, 삼학 수행을 병진하지 않고 어느 한쪽만 편벽되게 수행하는 제자들을 늘 걱정하였다.

소태산대종사는 늘 제자들에게 「내가 재능으로는 남다른 손재주 하나없고, 아는 것으로는 보통 학식도 충분하지 못하거늘 나같이 재능없고 학식없는 사람을 그대들은 무엇을 보아 믿고 따르는가」하면서 겸손하였다. 소태산대종사의 첫 제자인 김광선은 소태산대종사의 인품을 이렇게 말하였다. 「宗門에 모신 지 20여 년에 대종사의 한 말씀 한 행동을 우리 모두 우러러 흠앙하여 본받아 행하고자 하되 그 만분의 일도 아직 감히 능하지 못하다. 그 가운데 가장 흠앙하여 배우고자 하나 능하지 못한 것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순일무사하신 공심이요, 둘은 시종일관하신 성의요, 셋은 청탁병용하시는 포용력이다. 대종사님의 운심처사 하시는 것을 뵈오면 일언일동이 순연히 公하나 뿐이시요, 私라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아니하여 오직 우리 회상을

창건하시는 일 외에는 다른 아무 생각도 말씀도 행동도 없으시니, 이것이 마음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하는 것이다. 대종사의 사업하시는 것을 뵈오면 천품이 우월하시기도 하지마는 영광 길룡리에서 우리 구인제자들을 지도하여 간석지를 개척할 때 보여주시던 성의나 오랜 세월후 지금에 보여주시는 성의가 전보다 오히려 더할 지언정 조금도 감소됨이 없으니, 이 또한 마음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한다. 대종사의 대중거느리는 것을 뵈오면 미운짓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잘 무마하고 사랑하며 항상 말씀하시기를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못보느냐, 미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이른바 대자대비의 행이라'하시니, 이 또한 마음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Ⅱ. 원불교 약사

1. 원불교의 창립

원불교는 소태산대종사의 대각과 함께 창립한 한국의 민족종교인 동시에 후천개벽 시대의 세계종교를 지향하는 새 종교이다. 소태산대종사는 1891년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영촌 마을에서 가난하고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7세경부터 우주의 자연현상과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큰 의심을 일으키어 이때부터 20여년에 걸친 고난의 구도생활로 스승의 지도없이 1916년 4월 28일 마침내 우주와 인생의 근본진리를 크게 깨쳤다. 이 날이 곧 원불교가 창립된 날이다.

【소태산대종사와 구인제자】 소태산대종사는 진리를 깨친 뒤 몇달 만에 40여명의 신자를 얻었다. 이들중에서 특히 신심이 굳고 진실한 9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이들을 교단 창립의 표준 제자로 삼았다. 이재철·이순순·김기천·오창건·박세철·박동국·유건·김광선 등과 이들보다 얼마 뒤에 얻은 송규 등을 소태산대종사의 구인제자라 한다. 이들 구인제자들은 서가모니불의 십대 제자, 공자문중의 십철, 예수의 십이사도와 같이 교단창립에 초석이 된 중요한 인물들이다. 이들 구인제자중에서 가장 뒤에 만나고 나이가 가장 어린 송규가 소태산대종사의 수제자가 되었고, 소태산대종사 열반 후에 법통을 이어 후계 종법사가 되었다.

【저축조합운동】 소태산대종사가 구인제자들과 함께 맨 처음 한 일은 저축조합운동이다. 원기2년(1917) 8월경, 소태산대종사와 구인제자들은 저축조합을 설치하였다. 이 저축조합을 통하여 허례폐지, 미신타파, 금주단연, 근검저축, 공동출역 등의 새 생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저축조합운동은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공헌했던 새마을운동의 원형이었다. 당시의 저축조합운동은 잘살기운동, 경제자립운동, 국권회복(독립)운동, 농촌계몽운동, 인간개혁운동이었다. 또한 영육쌍전·이사병행의 새 종교운동이었다.

저축조합운동의 결과 ① 새 생활운동으로 길룡리 일대의 농촌에 자각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② 원불교 교단 창립의 기금, 특히 방언공사의 기금이 상당히 저축되었다. ③ 교도 4종의무중의 하나인 보은헌공운동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④ 영육쌍전·이사병행 정신의 실천으로 원불교를 생활종교·실천종교로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저축조합운동은 원불교 창립에 있

어서 이 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방언공사】 원기3년(1918) 4월부터 1년간에 걸쳐 영산성지 앞의 간석지를 개간하였다. 저축조합운동으로 상당한 경제적 기초와 제자들의 각성·화합·단결을 이룩하자 방언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소태산대종사는 방언공사를 시작하면서 구인제자들에게 「그대들은 본래 일을 아니하던 사람들이로되 대 회상 창립시기에 나왔으므로 남다른 고생이 많으나 그대신 재미도 또한 적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나 남이 다 이루어 놓은 뒤에 수고없이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생을 하고 창립을 하여 남의 시조가 되는 것이 의미깊은 일이니,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였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그 법을 제정할 때에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세계가 열리게 하며, 動과 靜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하게 하여야 하므로, 모든 점에 결함없이 하려함에 자연 이렇게 일이 많도다(〈대종경〉서품 8장)」 이렇게 방언공사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방언공사의 결과 ① 교단 창립의 물질적 토대 마련, ② 영육쌍전·이사병행의 정신 실현, 무시선 무처선의 수행태도 확립, ③ 구인제자들의 일치단결과 창립정신의 구현(특히 일심합력의 정신), ④ 민족의 경제자립운동과 조국독립의 실력배양, ⑤ 지역사회의 개발과 사회개혁 운동의 전개, ⑥ 공익정신의 앙양과 공도정신의 실천 등의 중요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당시의 방언공사로 2만6천여평의 농토를 얻었는데, 길룡리 산골 농민들에겐 매우 놀랄 만한 것이었다. 이때의 방언공사를 제1차 방언공사라 하고, 이보다 훨씬 후인 원기40년(1955)부터 3년간에 걸쳐 제2차 방언공사로 다시 2만7천여평의 농토를 얻게 되었다.

【법인기도】 방언공사가 끝나자 바로 이어 법인기도를 시작하였다. 방언공사가 끝날 무렵 구인제자들이 「지금 삼천리 방방곡곡에 만세운동이 크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요」하고 물었다. 이에 소태산대종사는 「병든 세상과 도탄에 헤매는 창생을 널리 구제할 큰 뜻을 가졌다면 온전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천지신명에게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기도를 올려 하늘의 뜻에 큰 감동이 있게 하라」고 기도를 명하였다.

3·1 만세운동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퍼져 가기 시작할 때 혈인기도가 시작되었다. 4월에 시작한 기도가 8월 21일에 이르러 백지혈인의 이적이 나타났다. 이에 소태산대종사는 「그대들의 지극한 정성에 천지신명이 감응하였다. 이제부터 그대들의 몸은 곧 시방세계에 바친 몸이다. 앞으로 새 회상을 창립해갈 때에 비록 어떠한 고난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늘의 이 사무여한의 마음을 변하지 말라. 가정애착과 삼독오욕의 경계에 부딪친다 할지라도 오직 오늘 이 순간에 죽은 셈만 잡는다면 다시는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끌림없는 진실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한 길로 매진하여 제생의세 성불제중의 큰 일을 성취하라」고 당부하였다.

이때 소태산대종사는 구인제자들에게 법호와 법명을 주었다.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제 세계의 公名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린다. 삼가 받들어 가져서 창생을 널리 제도하기 바란다.」고 다시 당부하였다.

혈인기도를 血印聖事라고도 하고, 새 회상이 법계의 인증을 얻었다고 해서 법인성사라고도 한다. 또한 이날 8월 21일을 법인절이라 한다. 혈인기도의 결과 ① 회상 창립의 법계 인증을 얻었다. ② 회상 창립의 정신적 기초가 확립되었다(무아봉공의 정신). ③ 구인제자의 신성·단결·공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④ 창립정신·전무출신 정신이 확립되었다.

【봉래정사】 법인기도가 끝나자 이해(1919) 10월경 소태산대종사는 전북 부안군 산내면 봉래산에 있는 봉래정사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약 4년간 장차 펼 새 회상의 교리와 제도 등을 구상하였다. 또한 백학명·한만허 등 당시의 고승들과 교류하면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였다. 이곳에서 소태산대종사는 구인제자 이외에 장차 교단 창립에 초석이 될 여러 창립 인연들과 만나게 되고, 원불교의 기본교리인 일원상의 진리·사은 사요·삼학 팔조 등의 교리 강령을 제정하고 교단 운영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도 구상·제정하였다. 또한 『조선불교 혁신론』을 초안하는 등 불교와의 관계 정립도 모색하게 되었다.

봉래정사에서 소태산대종사는 제자들과 선문답이나 성리문답도 많이 하였다. 하루는 제자들 앞에서 선시 한 수를 읊었다. 「邊山九曲路에 石立聽水聲이라 無無亦無無요 非非亦非非라. 누구든지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하였다. 이 선시는 소태산대종사의 대표적 선시가 된다.

【익산총부 건설】 봉래정사에 하루는 김제에 사는 서중안이 소태산대종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천하를 구제할 큰 뜻을 품으신 대종사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깊은 산골에 파묻혀만 계십니까? 길이 험난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장소가 협착한 이런 산골은 대종사님 같은 성자가 오래 계실 곳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장소가 넓고 교통도 편리한 곳을 찾아서 천하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원기9년(1924. 甲子) 봄에 소태산대종사는 봉래정사를 나와 이리 보광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佛法硏究會》라는 임시 교명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이어 익산군 북일면 신룡리(현 이리시 신룡동)에 총부 기지를 정하였다. 이해 9월(음)경에 총부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11월 경에 목조 초가 2동 17간을 완공하니 이것이 오늘의 원불교 중앙총부 건설의 시초가 되었다. 이때 서중안이 임야 3천여평과 건축비 6백여원을 희사하였고, 각처의 신도들도 8백여원의 의연금을 모아 총부 건설의 기금으로 삼았다.

당시 이곳은 인가가 드물었고 행인도 별로 없는 야산지대였다. 이때부터 전무출신의 공동생활이 시작되었다. 만석평의 소작농사와 엿장수라는 회상 창립의 어려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

다.

소태산대종사는 익산 총부 건설이후 열반하기까지 약 20년동안 이곳에 주재하면서 제자들의 훈련, 교역자 양성, 초기교서 편찬 출판, 교단 경제 건설, 교도교화 등 교단의 창립 발전에 헌신 노력하였다. 당시 익산 총부를 익산 본관이라고도 불렀는데, 소태산대종사와 교단의 선진들이 주재하고 있었기에 출가·재가교도들의 마음의 고향이었고, 동선·하선에 입선하는 것이 큰 염원이었다.

익산 총부는 당시 사회인들의 눈에는 모범마을이요 이상향으로 보였다. 구인선진의 창립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는 전무출신의 공동생활은 불교개혁과 생활종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오늘의 원불교 중앙총부와 원광대학은 한국 최대의 거대한 종교본부로 발전하고 있다. 익산 총부 건설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태산대종사와 정산종사를 비롯한 교단 선진들의 혼이 어려있고, 창립정신이 면면히 계승되어 오고 있으며, 전무출신들의 피와 땀이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구인제자를 비롯한 초기의 선진들이 거의 가난한 농민들이어서 익산 총부 건설과 전무출신의 공동생활은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리하여 엿장수, 소작농사로 시작하여 고무공장, 제사공장의 직공생활과 산업부 경영 등의 험난한 길을 걷게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전무출신의 공동생활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무출신은 교단운영의 핵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의 전무출신들은 소태산대종사의 직접 지도아래 영육쌍전·이사병행·무시선·무처선·처처불상·사사불공의 수행길을 걸었다. 비록 생활이야 아무리 고달퍼도 새 회상 창립의 초석이 된다는 긍지를 갖고 『불법연구회가』를 부르며 낙도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甲子年과 金剛山】 현재 원불교 중앙총부 부근에 《道治洞》이라 부르는 마을이 있다. 총부가 건설될 무렵 이 동네는 《盜峙洞》 또는 《도치동》이라 불렀다. 도둑들이 숨어서 도끼를 들고(도끼의 사투리가 도치) 행인들을 위협한다고 부르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道로써 교화하는 동네라 하여 《道治洞》이라 부르고 있다.

익산총부를 건설하던 원기9년(1924)은 갑자년이다. 십진법이 발달한 서양에서는 1백년 주기로 時制를 계산한다. 그러나 중국 한국 등 동양의 시제는 60년을 주기로 해서 육십갑자법이 통용되고 있다. 육십갑자 중에서 갑자년은 첫 해에 해당된다. 육십갑자를 여는 해이기 때문에 갑자년은 상서로운 해라고 믿어왔다. 천도교에서는 최수운선생이 처형된 1864년 갑자년 이전을 선천시대라 하고, 그 이후를 후천시대라 하여 선천의 어둡고 괴로운 시대가 물러가고 후천의 밝고 좋은 시대가 온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소위 최수운의 선후천 개벽사상이다.

한국의 민속신앙에 있어서 갑자년은 매우 상서로운 해일 뿐만 아니라,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에 무슨 일을 시작하면 크게 성공한다고 믿어왔다.

소태산대종사는 갑자년에 해당되는 원기9년(1924)에 불법연구회라는 임시 교명을 선포하고

익산총부를 건설한 것이다. 따라서 원불교는 천도교의 입장과는 달리 1924년 이전을 선천시대, 그 이후를 후천시대라 한다. 익산총부가 갑자년에 건설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소태산대종사는 원기15년(1930) 5월, 금강산을 탐승하고 「步拾金剛景 金剛皆骨餘 金剛現世界 朝鮮更朝鮮」이라 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장차 세계의 공원이 될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 금강산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다. 금강산은 法起보살의 도량이라는 말이 전해오고 있다. 법기보살은 금강산의 主佛이며 『화엄경』의 일만이천佛 중에서 가장 주장되는 부처로서, 그 모든 권속들과 함께 금강산 가운데에서 설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의 뜻은 장차 세계를 구제할 새 도덕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을 예시한 것이다. 또 서역에서 상제보살이 법기보살을 만나러 금강산으로 온다는 전설도 있다. 이 말의 뜻은 서양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법을 배우러 온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들은 모두 마음공부를 잘하여 각자 마음속의 금강자성심을 찾고, 금강산의 주인이 되어 우리나라를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으로 발전시키며, 세계 각처에서 우리 회상에 와서 대도정법을 배워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금강산을 갖고 있다. 곧 금강자성심이다. 이 마음은 곧 우주의 창조주이다. 우주의 삼라만상은 모두 이 마음의 조화로 창조된 것이다. 이 마음은 우주에 가득차 있다. 그러나 아무데도 없고 아무런 모양도 없는 것이다. 이 마음은 펴놓으면 우주에 가득차고 거둬들이면 티끌속에도 작아서 차지 않는다. 이 마음은 무궁무진한 조화를 부려서 세계의 역사를 창조한다. 이 마음을 깨치면 곧 진리요 법이요 도요 극락이요 부처이며 삼세업장을 일시에 소멸한다. 그러나 이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전도몽상하고 악도에 떨어지며 지옥에서 헤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의 금강산 곧 금강자성심을 찾아 깨친 사람이야 말로 진리의 주인이요 시방삼세의 주인이며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하였다.

이처럼 원불교에 있어서 갑자년 신앙과 금강산 신앙은 곧 원불교의 미륵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원불교는 미래 세계의 정신적 지도이념이 될 것이요, 소태산대종사는 미래세계의 주세불 곧 미륵불이라 믿고 있는 것이다.

【창립정신】 원불교 교단을 창립해 오면서 소태산대종사와 구인제자들이 직접 실천했던 정신을 창립정신이라 한다. 창립정신은 전무출신 정신으로 계승 발전되어 왔고, 원불교인이면 누구나 창립정신에 바탕해서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창립정신은 원불교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호남지방의 가난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창립된 원불교가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면서 오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곧 창립정신인 것이다. 창립정신은 이소성대의 정신, 무아봉공의 정신, 일심합력의 정신, 근검저축의 정신 등 네가지로 실천되어 오고 있다.

이소성대의 정신은 모든 일을 작은 것에서부터 합리적으로 출발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한 노력으로 점차 발전시켜가는 정신이다. 무아봉공의 정신은 혈인기도로 나타난 사무여한의 정신이다. 교단의 창립·발전을 위해서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도 즐거이 바치겠다는 정신,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세계와 인류앞에 헌신 봉공하겠다는 희생적 정신이다. 일심합력의 정신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뭉치는 단결과 화합의 정신이다. 분열하고 대립하고 투쟁하는 정신이 아니라 이해하고 양보하고 포용하는 정신이다. 근검저축의 정신은 미신타파, 허례폐지, 공동출역, 절약절식 등으로 부지런히 땀흘려 일하면서 알뜰히 아끼는 정신이다. 교단 초창기의 가난한 살림에 근검저축의 생활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 정신은 또한 당시의 민중들이 나태와 안일의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이었고, 가난한 생활을 극복하는 길이었으며, 국력을 신장시켜 국권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원불교의 창립정신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속에서 실천되어 온 행동철학이었다. 원불교는 창립정신의 토대위에서 창립·발전 되어 온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러한 정신에 바탕하지 않고서는 건전한 발전과 합리적 성공을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다. 창립정신은 교단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계승 발전되어 갈 것이며, 원불교가 세계의 정신적 지도이념으로 발전해 감에 따라 세계정신으로 승화·계승·발전되어 갈 것이다.

【병든 사회와 정신개벽】 소태산대종사는 19세기 이후 급격한 물질문명의 발달과 당시의 한국사회를 통하여 세계현황을 관찰하고 병든 사회라고 진단을 내렸다. 소태산대종사의 사회진단은 사회과학자나 종교학자의 입장이 아니었다. 진리를 깨치고 사회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가진 성자의 안목이었다. 종래부터 내려오던 막연한 말세론이나 말법설 같은 견해도 아니었고, 당시 유행하던 괴질설이나 병겁설 같은 예언적 견해는 더욱 아니었다. 당시의 사회현상에 입각하여 미래사회까지 전망한 종합적이고 달관적인 통찰이며, 진단과 아울러 처방까지도 분명하게 제시하였던 것이다.

소태산대종사는 당시 사회의 병을 ① 돈의 병 곧 황금만능주의 사상, ② 원망의 병 곧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생활을 할 줄 모르는 병, ③ 의뢰의 병 곧 자력생활을 하지 못하는 병, ④ 배울 줄 모르는 병, ⑤ 가르칠 줄 모르는 병, ⑥ 공익심 없는 병 곧 이기주의 등 여섯 가지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① 도학을 장려하여 분수에 편안하는 도, ②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는 도, ③ 자력생활하는 도, ④ 잘 배우는 도, ⑤ 잘 가르치는 도, ⑥ 공익생활하는 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 방법이 곧 삼학 팔조와 사은 사요의 교리라고 하였다.

소태산대종사는 당시의 이러한 사회상황을 통찰하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를 제창하였다. 이것을 원불교의 개교표어라 하는데, 당시의 사회진단과 장차 모든 인류가 살아갈 길을 단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오늘의 세계는 물질문명이 한없이 발달되었다. 눈부신 과학의 발달, 경이적인 기술의 혁신, 고도의 경제성장, 환경개선과 교육개혁 그리고 우주정복 등은 현대 문명의 화려한 금자탑이다. 또한 생명의 신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는 인간의 수명까지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발달만큼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다. 인간의 정신이 물질의 노예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황금만능주의 사상, 윤리도덕의 타락, 가치관의 혼란, 향락주의 퇴폐주의의 팽배,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속에 인간은 인간소외·인간상실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소태산대종사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아래 현대 문명의 위기에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다.

2. 원불교의 개혁운동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당시 바라문교의 개혁에서, 기독교가 유태교의 개혁에서 출발한 것처럼, 원불교도 당시 여러 종교의 개혁에서부터 출발하여 차츰 독자적인 새 종교로 발전해 온 것이다.

【불교혁신운동】 소태산대종사는 불교 혁신운동에서부터 출발하여 원불교를 창립하기 시작하였다. 소태산대종사는 일원상의 진리를 깨친 후, 여러 종교의 경전을 열람하고 서가모니불을 「성인들 중의 성인」이라 찬탄하였고, 불교의 진리가 모든 종교의 진리 중에서 가장 깊고 넓다고 평가하였으며, 불법을 주체 삼아서 새 회상을 건설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와 제도중에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당시의 불교는 교리나 제도면에 있어서 시대와 사회와 대중에게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불법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란 표어아래 불교 혁신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소태산대종사의 『조선불교 혁신론』에 나타난 불교 개혁운동의 방향을 살펴본다.

① 외국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거쳐 우리 나라에 들어온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개혁한다. 특히 경전의 경우에 있어서 알기 어려운 한문을 알기 쉬운 우리 말로 다시 편찬 발행하여 누구나 배우기 쉽도록 하고, 교단의 제도나 운영의 면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의 실정에 알맞게 개선 운영한다.

②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출가수행자 본위로 되어 있는 교리와 제도를 대중 본위로, 일상생활 본위로 개혁한다.

③ 분열된 교화과목을 통일한다:염불·좌선·경전·계율·주문 등 갖가지로 나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교화과목을 정신수양·사리연구·작업취사의 삼학으로 통일하여 원만한 인격을 양성

하도록 한다.

④ 등상불 숭배를 일원상 숭배로 한다:서가모니불의 色身을 상징하는 등상불 신앙은 자칫 미신신앙, 기복신앙에 떨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서가모니불의 法身인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하여 일원상의 진리와 나의 인격이 하나로 합치되도록 수행 정진한다.

이상과 같은 불교혁신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원불교의 제도와 운영을 다음과 같이 크게 개혁하게 되었다.

①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 신앙과 삼학 수행으로 모든 종교의 교리를 융합 활용한다.

② 모든 경전과 교서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쉬운 글과 말로 평이 간명하게 편찬한다.

③ 교당은 교도가 많이 거주하는 곳에 설치하고 남녀 교역자를 두루 양성하여 원활한 교화를 도모한다.

④ 모든 신자는 정당한 직업을 가져 자력생활을 하고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며, 영혼구제에만 치우치지 않고 정신생활과 육신생활을 조화있게 한다.

⑤ 모든 의식과 예법은 진리와 사실에 근거하여 간편을 위주로 하고, 시대에 맞고 대중이 다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⑥ 법의 계통을 재가·출가의 차별이 없게 하고, 법위의 높고 낮음에만 따르게 한다.

⑦ 출가 교역자에 대하여 결혼을 법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뜻에 따라 결정하게 한다.

⑧ 교단의 운영에 재가·출가가 함께 참여한다.

【예법 개혁운동】 소태산대종사는 당시 한국사회의 예법이 너무나 번거롭고 허례허식에 치우쳐 사람들의 실생활에 오히려 심한 구속을 주고 경제에도 큰 낭비를 가져와 사회발전에 장애가 더 많음을 통탄하였다. 그리하여 예법의 근본정신인 공경·겸양·무계교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번거로움과 허례허식을 폐지하여 인간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부하게 하면서 인류사회를 발전시키고 인간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새 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사회의 예법은 『주자가례』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주자가례』는 중국 송나라 시대의 유학자인 주자의 관·혼·상·제에 관한 학설을 수록한 책으로서 고려말기에 주자학의 수입과 함께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주자학은 국가통치의 근본이념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성행되었으나 차츰 일반사회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주자가례』는 조선시대에 예법의 중심사상이 되었고, 예의 범절에 대한 시비가 때로는 당쟁을 불러오기까지 되었다.

소태산대종사는 불교개혁에 못지않게 예법개혁의 필요성을 통절히 느끼고, 저축조합운동 때에 이미 허례폐지·미신타파·금주단연·근검저축·공동출역 등을 통하여 예법 개혁운동을 전개해 오다가 마침내 원기11년(1926)에 『신정의례』를 발표하게 되었다. 이때 발표된 신정의례는 출생의 예, 성년의 예, 혼인의 예, 喪葬의 예, 제사의 예 그리고 4기념 예법 등이었다.

출생의 예는 산모와 산아를 위한 미신적인 기복행위를 폐지하고, 오직 산모와 산아의 위생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축의금이나 비용을 잘 절약해 두었다가 뒷날 교육비로 쓰도록 하는 것이다. 성년의 예는 남녀간에 성년이 되면 성년식을 거행, 축하해 주고 성년으로 대우하며, 사회에 유용한 인물이 되도록 권장하고 빌어주는 것이다. 혼인의 예는 일체의 허례를 폐지하고 간소하고 실질적인 방법과 인격적 결합을 중점으로 결혼하며, 경비를 절약하여 뒷날 가정살림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다. 상장의 예는 형식과 체면을 위한 낭비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儀式을 통해서 애도의 정성을 나타내며, 49일로 탈복하고 절약된 경비로 공익사업에 힘쓰도록 하며 풍수명당설을 타파하게 한 것이다. 제사의 예는 小祥과 大祥을 폐지하고, 49일 동안 정성껏 천도재를 모시되 음식을 진설하지 않고 정결한 화초로 장엄하여 추모의 정성을 다하며 절약된 경비를 공익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이다.

4기념 예법이란 종래의 예법과는 크게 다른 독창적인 것이다. 원불교의 개교기념일과 교도들의 생일을 한날에 공동으로 기념하는 공동생일기념, 재래의 많은 명절을 한날에 교당에서 합동으로 기념하는 명절기념, 부모이상 선조의 모든 제사를 한날에 공동으로 기념하는 공동선조기념, 새해를 교당에서 공동으로 기념하는 환세기념 등을 말한다.

4기념 예법은 형식은 간소화하되 내용은 오히려 실질적이고 간절하게 한다. 기념일을 맞이할 때에는 3일전부터 심신을 재계하고 도량을 청결히 하며 정성을 다해 올리도록 한다.

예법개혁은 곧 유교 개혁운동이기도 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나, 급속한 경제성장을 해온 오늘의 한국사회에는 과소비풍조나 허례허식으로 인해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도 이 지구에는 1년에 수많은 인구가 굶어죽거나 굶주리고 있다. 예법 개혁운동으로 공익사업에 힘쓰면 이는 곧 인류구제의 큰 길이 열릴 것이다.

【영육쌍전의 인간개조운동】 원불교는 호남지방의 가난한 농민들이 禪農一致의 생활을 통해서 창립 발전시켜온 종교이다. 선농일치 사상에 입각한 영육쌍전 이사병행의 산업활동으로 생활종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처음 창립할 때 영혼구제를 우선적으로 앞세운다. 그러나 원불교는 영혼구제와 일상생활을 다같이 중요하게 생각했고, 생활의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창립 초기부터 산업활동을 강화하였다.

소태산대종사는 당시 한국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역사적 사명은 산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인간개조와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가난한 조국과 나태한 민중을 이끌어 국권을 되찾고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키는 길은 곧 산업부흥에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산업

부흥을 통해서 心田을 계발하고 무지몽매한 민중을 자력생활하는 깨어있는 국민으로 개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태산대종사는 구인제자들과 더불어 저축조합운동을 통하여 근검저축·절약절식·공동출역 등으로 회상 창립의 터전을 닦았고, 방언공사로 간석지를 개간했다. 익산총부 건설 당시부터 산업부라는 기관을 두어 산업활동에 주력하였다. 교단초기 산업부는 주로 농사짓는 일을 관장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가 농업 이외에는 산업화가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짓는 일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농사짓는 일에는 총부 대중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총동원 되었다. 처음 전무출신을 서원한 사람이면 기본훈련과정으로 산업부에서 분뇨통을 짊어지게 하였다. 초창기 총부에서는 비록 분뇨통을 지거나 나뭇짐을 지고 마당을 쓸면서도 법열에 넘쳐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다.

산업부는 원불교 창립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영육쌍전·이사병행의 정신은 확산되어 갔으며, 교단의 발전과 함께 그 정신이 전승되어 갔다. 저축조합운동과 익산 총부 건설 당시 엿장사·밭갈기 등의 선농일치운동으로 원기13년(1928)에 서울에서 절약절식운동, 영광에서 공동작농운동, 총부에 공동양잠, 각처에서 근로작업 등으로 전 교단에 확산되어 갔다. 이로부터 총부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시작했고, 이어서 만덕산에 감나무 과수원, 황등과 총부에 밤나무 밭, 영산에 복숭아 밭, 신흥에 이흥과수원, 삼례에 수계농원, 이리에 보화당약방 등의 각종 산업기관을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 초기의 교세에 비해 산업활동은 매우 활발하였던 것이다.

총부에서 직영하는 산업부에서는 각종 묘목·약초·야채를 재배했고 양계·양돈·양토 등의 축산활동도 전개했다. 당시 산업부의 생활표어가 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밥을 먹지 말자 ② 낮에는 일을 함으로써 공부를 삼고 밤에는 불법의 진리를 연구함으로써 낙을 삼자는 것이었다. 원기20년(1935)을 전후하여 원불교의 산업활동은 전 교단을 산업도량으로 만들었고, 총부를 모범 새마을로 만들었다. 사회의 많은 주목과 기대를 받았고, 시찰이나 견학하러 오는 단체나 사람들도 많았다. 소태산대종사는 農聖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었다. 들에서 일하다가 농구를 메고 들어오는 산업부원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원불교의 부처님이라고 말한 대종경 성리품 29장의 법문도 이 무렵에 나온 것이다. 소태산대종사는 인간 개조운동과 함께 최초법어·사요·병든사회와 그 치료법 등의 교리를 통하여 사회 개혁운동도 전개하였다. 당시의 우리 나라는 개화시대였고, 혁신과 개혁운동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각 종교단체와 사회단체에서 인간개조운동, 사회정화운동, 생활개선운동, 농촌계몽운동, 계급타파운동, 여권신장운동, 신문화운동 등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초창기의 이와같은 인간개조·사회개혁운동이 오늘의 한국사회 나아가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하는가에 따라 원불교가 장차 세계종교로 발전해 가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교단의 발전

원불교는 한국사회에서 매우 건실하게 그러면서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해온 교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제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는 많은 수의 신흥종교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는 건전하게 발전해 온 교단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크게 발전하는 듯 하다가 쇠퇴해진 교단도 있다. 원불교는 한국의 민족종교로 건실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종교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시대의 교단】 일본 통치 35년간의 우리나라는 어디서나 압박과 설움의 쇠사슬이었다.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표방했던 일본은 원기15년(1930) 후반기에 들어가서는 다시 암흑정치의 쇠사슬로 우리나라를 더욱 단단히 묶었다. 일본은 원기22년(1937)에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원기23년(1938)에는 중등학교 교과목 중에서 한국어 과목을 아주 빼버리고 말았다. 원기25년(1940)에는 창씨 개명을 강요하여 우리의 최후의 민족의식까지 파괴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쇠사슬은 원불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원기21년(1936) 10월, 익산 총부에는 이리 경찰서 북일 주재소란 간판이 붙었다. 교단을 감시하고, 교단을 해체할 구실을 잡아내기 위함이었다. 파견된 형사는 총부에 주재하면서 소태산대종사와 교단의 움직임을 엄중 감시하였다. 원기23년(1938) 8월에는 총독부 경무국장과 전라북도 경찰부장 일행이 총부를 찾아와 교리도 중에 소위 그들의 皇恩이 빠져있음을 트집삼아 황은을 삽입하도록 강요하였고, 소태산대종사에게까지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이로부터 일본의 탄압은 갈수록 심했다. 법회순서에 그들의 국민의례·황국신민서사를 강제로 편입시키고, 모든 의식수입을 국방헌금 하도록 강요하였다. 교단에 대한 감시를 갈수록 더욱 엄중히 하는 한편 교단의 간부들을 구속하기도 하였고, 일본인 승려가 주동이된 불교연맹에 강제로 참가시켜 시국행사에 자주 동원하기도 하고 황도불교를 획책하기도 하였다. 일본어 교육과 근로작업에 교도들을 강제로 동원시키고 때로는 교당을 그들의 연성도장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일제 치하에서 교단은 그들에게 정면으로 대항하지는 않고 소극적인 협력을 하면서 안으로 교단의 힘을 묵묵히 길러갔다.

일본의 압제가 극도에 달하고, 제자들이 전전긍긍하자 소태산대종사는 아무리 검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려해도 그것은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먹구름은 걷히고 태양은 찬란히 빛날 것이다. 이와같이 조국의 독립을 암시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러나 소태산대종사는 조국의 해방을 앞두고 원기28년(1943) 6월 1일에 53세로 열반하였다. 소태산대종사의 열반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일본 관헌들은 원불교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좋아하였다.

그러나 수제자 송규(정산종사)가 대중의 추대를 받아 후계 종법사가 되어 교단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8·15 해방과 건국사업】 일본의 통치아래에서 교단은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이었다. 그러나 8·15해방을 맞아 새로운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정산종사의 『건국론』에 근거하여 새 조국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이를 건국사업이라고 하는데 전재동포 구호사업, 고아원 경영, 한글 보급운동의 세 방면으로 전개하였다. 이 건국사업은 교단의 본격적 사회사업의 시초였다.

전재동포 구호사업은 건국사업의 제일 중심되는 사업으로, 해방 후 외국에서 귀환하는 전재동포들을 구원한 사업이다. 해방되던 해 9월에 이리지역과 서울역에서 귀환 전재동포 구호소를 설치하여 이리에서는 13개월 반동안, 서울에서는 6개월 반동안, 전주에서는 5개월 동안, 부산에서는 3개월 반동안,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전재동포들에게 식사와 의복공급, 숙소안내, 응급치료와 분만 보조, 사망자 장례 등의 구호사업을 전개하였다. 이 기간에 구호받은 전재동포 연인원이 80여만명에 이르렀고, 많은 전무출신들과 20여개 교당의 교도들이 동원되었다. 또한 귀환 학도병을 상대로 사상강연회도 열었고, 국민들을 상대로 계몽운동도 전개하였다. 전재동포 구호사업은 다른 단체들보다 훨씬 모범을 보여 사회 각계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 그 결과로 서울수도원, 서울교당, 부산교당, 동산훈련원 등의 대지를 불하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 교단의 큰 기둥이던 송도성교무가 순직하기도 하였다.

고아원 경영은 전재동포 구호사업과 아울러 서울 한남동에 처음 75명의 고아를 수용하여 서울 보화원을 설립한 것이 그 시작이다. 고아수가 점차 늘어나 수백명이 되었고 서울 보화원에서 다시 한국 보육원이 분립되었는데, 한국 보육원은 6·25이후 한때 3천여명이 넘는 한국 최대의 고아원이 되기도 하였다. 6·25가 일어나자 서울 보화원의 고아들을 총부 부근으로 철수하여 익산 보화원을 설립하였다. 이때의 고아원 경영은 교단 자선사업의 시초가 되었다. 익산 보화원은 뒤에 이리 보육원과 합병하였다.

한글 보급운동은 해방이 되자 총부부근의 아동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각 교당의 교무들에게 한글강습을 시킨 후 교당으로 돌아가 그 지역사회의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한글 보급운동은 그후 초반까지 농촌교당의 야학실시로까지 확대되었다. 야학실시는 당시 교단의 사회참여의 가장 중심사업으로 활발히 전개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지만 각 교당에서는 야학원을 설치 운영하였고, 익산고등공민학교, 도양고등공민학교 등의 교육기관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이들 교육기관도 폐교하게 되었는데 도양고등공민학교는 해룡중·고등학교의 모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건국사업을 통하여 교단은 차츰 사회봉사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건국사업의 이론적 근거가 된 것이 정산종사의 『건국론』이다. 정산종사가 해방이 되자 원불

교 교리에 바탕한 건국치민의 방법론을 당시의 정계요인들과 교단 동지들에게 널리 호소하며 제시한 것이 바로 건국론이다. 건국론의 요지를 정신으로써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써 줄기를 삼고, 국방과 경제로써 가지와 잎을 삼고, 진화의 도로써 그 결과를 얻어서 영원한 세상에 뿌리깊은 국력을 잘 배양하자는 것이라 밝혔다. 건국론의 정신은 ① 마음단결 ② 자력확립 ③ 충의봉공 ④ 통제명정 ⑤ 대국관찰의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건국의 방법으로 ① 정치적 입장에서는 모든 국민이 다 국법을 엄정히 지키고 국가의 正論을 세운 후 국민 총 훈련을 실시하여 애국정신과 공중도덕을 보급시킬 것 ② 종교적 입장에서는 국민지도에 적당한 종교를 장려하여 각 지방마다 행정·사법·교육·종교 등 네 기관이 그 임무를 분담 진행하게 할 것 ③ 교육의 입장에서는 의무교육의 실시, 교육기관의 확장, 정신교육의 장려, 예의교육의 향상, 작업 실습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건국론의 결론으로 ① 어떠한 계급의 사람이든 평등하게 보호하여 각자의 자유와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하고 ② 외부의 혁명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혁명을 하며 ③ 유산자의 희사로 생활의 평등을 가져오고 ④ 관민이 차별없이 건국사업에 일심합력하며 ⑤ 건국 공로자의 대우를 분명히 하여 公私간에 진화의 도를 얻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教名의 선포】《원불교》란 교명은 8·15해방 이후 원기33년(1948) 4월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다. 해방이 되자 교명을《원불교》라 내정하여 원기32년(1947) 1월 16일에《재단법인 원불교》의 등록인가를 받고, 이해 4월 총회에서 교명을《원불교》라고 결정하였다. 이듬해 4월 27일 총회에서 교명선포식을 가져 이때부터 원불교라는 정식교명이 사용되게 되었다. 원기9년(1924)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익산 총부를 건설하면서부터《불법연구회》란 임시 교명이 사용되었다. 교단의 年紀도 불법연구회 시절에는 始創年號를 사용하다가, 제1대 성업봉찬대회 때인 원기38년(1953)부터 圓紀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었다.

불법연구회란 임시교명을 사용하게 된 것은 소태산대종사의 연원을 서가모니불로 정하고, 불법을 주체삼아서 광대무량한 새 회상을 건설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는 불법을 모든 인류의 정신문화의 뿌리로 인정하고, 오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질된 것은 이를 개혁 발전시켜 나갈 것을 천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서가모니불을 성인들 중의 성인이라 존중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교의 좋은 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새롭게 개혁 발전시켜 가려는 의지도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불교와 원불교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급한 판단보다는 역사의 흐름과 원불교의 독창적 발전에 따라 차츰 불교와 원불교의 位相이 정립되어갈 것이다.

《불법연구회》란 임시 교명이 사용되기 이전에도 원기3년(1918) 10월, 교단 최초의 교당인 구간도실을 세울 때에『大明局 靈性巢 左右通達 萬物建判養生所』란 간판을 붙혔다. 이것을 최초의 임시 교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여기에는 장차 교단의 진로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대명국이란 미래 세상을 전망한 것으로 크게 밝고 크게 열린 세상 곧 개벽시대를 예견한 것이다. 장차의 세계는 살기 좋은 평화안락한 세계 곧 용화세계 미륵불 시대가 열릴 것이며, 하나의 세계 하나의 인류로 발전해갈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와같이 개벽시대, 용화세계가 건설되려면 먼저 인간의 마음이 열려야 하므로 정신개벽을 주재하는 집이 곧 영성소인 것이다. 좌우통달이란 동서남북 상하좌우로 서로 막히고 걸림이 없이 두루 하나로 통한다는 뜻이다. 만물건판양생소란 우주만물, 모든 인류를 상생상화 상부상조의 선연으로 좋게 살리고 은혜로운 세상을 건설해가는 장소란 뜻이다.

장차의 세계는 인간의 지식이 한없이 발달하고 지혜가 크게 열리며, 문명의 발달·문화의 발전으로 한없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아름답고 살기좋은 세계가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정신개벽·정신문화의 발전이 뒷받침 되어야만 물질문명·기계문명·과학문명도 인간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상과 이념이 서로 막힘이 없고 대립 투쟁이 없이 사통오달로 두루 통해야 할 것이다. 곧 동양사상과 서양사상, 불교사상과 기독교사상, 고대사상과 현대사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관념론과 경험론,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등 대립되는 온갖 사상과 이념들이 서로 막힘없이 두루 통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주만물은 서로 대립 투쟁, 상극악연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상화 상부상조로써 서로 이해·화합·융통의 관계로 함께 잘살고 발전해가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새 회상은 미래세상을 밝고 아름다우며 즐겁고 행복한 세상으로 건설해 갈 것이며 만물과 만물,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합융통의 마음으로 감사 보은의 윤리를 세워갈 것임을 강력히 예시한 것이다.

【창립한도】 소태산대종사는 원기3년(1918) 10월에 창립한도를 발표하였다. 장차 회상의 代數를 每代 36년으로 하고, 1대를 다시 3회로 나누었다. 소태산대종사는 1대 36년간의 교단 창립계획을 발표하였는데, 1회 12년은 교단창립의 정신적·경제적 기초확립과 창립 인연들을 만나는 기간, 2회 12년은 교법 제정과 교재 편성기간, 3회 12년은 인재 양성 훈련과 포교에 주력하는 기간으로 정하였다. 원불교의 창립기원(시창기원)을 소태산대종사의 대각한 해로 할 것도 이때 발표하였다. 소태산대종사는 이 계획에 따라 교단을 창립 발전시켜가려 했으나 당시의 어려운 시대상황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이 계획에 따라 일원상의 진리·사은 사요·삼학 팔조를 중심한 교리를 제정하였고, 훈련법과 신정예법도 제정 실시하였다. 교리의 기본이 되는 초기교서도 상당수 발행하게 되었다. 원기12년(1927)에 『불법연구회규약』『수양연구요론』『상조조합규약』 등 3종의 초기교서가 최초로 발행되었다. 이후로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보경 육대요령』『불법연구회 회규』『보경 삼대요령』『조선불교혁신론』『예전』『회원수지』『불법연구회 약보』『불법연구회 근행법』『불교정전』 등의 초기

교서가 8·15해방 이전에 차례로 발행되었다.

【불교와 원불교】 불교와의 관계에서 원불교의 위상정립은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시점에서 원불교와 불교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1) 원불교는 불교에 뿌리한 새 종교이다. 「서가모니불은 진실로 성인들 중의 성인이라, 내가 스승의 지도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완전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대종경』서품 2장).」 이와같이 원불교는 불교에 뿌리한 새 종교이다. 서가모니불이 성인들중의 성인이요, 불법이 가장 진리가 깊으며, 서가모니불과 소태산대종사의 출가·수행·성불의 경로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서가모니불을 연원불로 하고 불법에 뿌리해서 새 종교를 창설한 것이다.

(2) 소태산대종사가 창건한 새 종교이다. 원불교는 서가모니불을 연원불로하고 불법에 뿌리했으면서도 불교의 한 종파가 아니요 독창적인 새 종교인 까닭은 무엇인가. 한 종교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는 교조·교리·제도(조직·기구)의 세가지이다. 원불교는 교조·교리·제도가 불교와는 다른 독창적인 새 종교이다. ① 원불교의 교조는 소태산대종사이다. 소태산대종사는 대각 후에야 서가모니불과 불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대각 이전에는 서가모니불과 불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고 배움을 받은 일도 없었다. ② 불교의 기본교리는 사제·팔정도·십이인연 등인데, 원불교의 기본교리는 일원상·사은 사요·삼학 팔조 등이다. 소태산대종사는 불교의 기본교리를 인정하고, 많은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원상·사은 사요·삼학 팔조를 중심으로 하여 교리체계를 새롭게 형성하였다. 오늘의 한국 불교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이나 태고종은 서가모니불을 본존으로, 금강경과 조사법어 등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교리인 소의경전에 있어서 원불교는 독창적인 새 종교이다. ③ 제도·기구·조직 등에 있어서 원불교는 불교와 비슷한 점도 있으나, 크게 다르다.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은 문화적 교류가 과거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이상과 같이 교조·교리·제도 등의 기본조건에 있어서 원불교는 독창적 새 종교이다. 원불교는 미래세계의 주세불 소태산대종사가 불교에 뿌리하여 독창적으로 창립한 새 종교이며, 미래종교이다. 일원상의 진리는 모든 종교의 진리가 함께 만나는 곳이며, 모든 인류의 모든 사상이 하나로 만나는 곳이다.

(3) 원불교는 긍정과 실천의 종교이다. 불교의 苦海사상이나 기독교의 말세사상 등은 현실부정의 입장에서 출발한다. 원불교는 현실세계는 사은의 큰 덩어리, 은혜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원불교는 法滅시대나 종말론이 없다. 미래세계를 긍정적·희망적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원불교는 개인 성불이나 개인 구원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대중 전체의 성불을 강조한다. 제생의세란 말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든가, 무시선 무처선·불법시생활 생활시불법·동정

일여·영육쌍전·이사병행 등의 표어라든가, 삼학 병진수행의 강조, 삼학의 결론을 작업취사에 둔점, 사대강령의 결론을 무아봉공으로 귀착시키는 것은 모두 원불교의 행동종교·실천종교의 면을 강력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4) 원불교는 종합과 융통의 종교이다. 소태산대종사는 처음부터 과거 모든 성자들의 깨친 경지를 다 인정하고 찬탄하였다. 모든 종교의 궁극 목적도 하나임을 알았다. 그래서 일원세계 건설을 표방하고 모든 종교의 교리와 목적을 하나로 종합 융통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원불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인 태도가 없다. 정산종사의 삼동윤리사상이나 대산종법사의 종교연합운동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5) 원불교는 개혁의 종교이다. 불교에 뿌리했으면서도 불교개혁에서 출발하여 모든 종교를 개혁하여 새 종교를 창설하는 입장이다. 신앙의 대상을 법신불 일원상으로 한 것은 불교에 대한 가장 큰 개혁이다. 원불교의 예법개혁은 유교에 대한 개혁이다. 원불교의 교리·제도·의식·예법 등은 모두 종교개혁·사회개혁·인간개혁의 입장에서 새롭게 체계화 된 것이다. 원불교가 불교냐 아니냐 하는 관점보다 원불교가 불교에 대해서 어떠한 位相을 정립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4. 성업의 계승

원불교가 창립된 지는 72년의 역사가 흘렀다. 그러나 본격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제1대 성업봉찬사업 이후의 일이다. 일제시대의 원불교는 겨우 명맥만을 유지할 정도였고, 소태산대종사의 열반, 8·15해방, 6·25동란을 거치는 동안 본격적인 발전을 할 수가 없었다. 원기38년(1953)에 거행된 제1대 성업봉찬대회 이후에야 비로소 힘찬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1대 성업봉찬사업】 교단 창립 제1대를 총 결산하고, 소태산대종사의 성업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 갈 것을 다짐하며, 소태산대종사의 위업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제1대 성업봉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소태산대종사는 교단 창립의 한도를 36년으로 정하고 이를 창립 제1대라 하였다. 다시 12년까지를 제1회, 24년까지를 제2회, 36년까지를 제3회로 구분하였다. 소태산 대종사는 창립 제1대 36년 동안에 교단 창립의 기틀을 대강 확립하려고 의도하였다. 제1회의 12년 동안에는 주로 교단 창립의 초석이 될 남녀제자를 얻었다. 제1회 12년간의 교세 결산은 전무출신 30여명, 재가교도 3백여명, 교당 5개소였다. 제2회의 12년 동안에는 주로 교서편찬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 『수양연구요론』『육대요령』『삼대요령』『조선불교 혁신론』

『신정 예전』 등의 초기교서가 발간되었다. 제2회의 교세결산은 전무출신 80여명, 재가교도 6천여명, 교당 20여개소로 발전하였다. 제3회에는 교도훈련과 기관설립에 주력하였다. 매년 동·하선을 실시하였고 각 교당에서도 단기 교리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창립 제1대말 곧 제3회까지의 교세결산은 의무교도 32,244명, 일반신도 290,196명, 전무출신 260여명, 교당 50여개소, 기관 18개로 큰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소태산대종사는 창립한도 제1대 성업봉찬사업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원기28년(1943) 6월 1일에 열반하였다. 원기34년(1949) 4월에 『대종사주 성업봉찬회』가 조직되었으나 이듬해 6·25를 겪고 10월에 성업봉찬회가 다시 발족하였다.

제1대 성업봉찬사업의 추진계획은 ① 성업봉찬 기념대회 개최 ② 소태산대종사 성탑·성비 건립과 원광대학 교사 신축 등의 건축사업 추진 ③ 대종경·창건사·창립 유공인역사·교당 및 기관 연혁·성가집·기념문집 등의 각종 편찬사업 ④ 연극제·체육대회·웅변대회 등의 경축행사 등이었다. 그러나 6·25로 인한 사회불안 경제궁핍 등 여러가지 난관으로 인하여 계획한 사업을 다 추진하지 못하고, 연기되거나 반백년 기념사업에까지 연장되기도 하였다. 이 기간에 완성된 중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사업 : 소태산대종사 성탑이 원기34년(1949)에 준공되었고, 다시 성비가 원기38년에 완공되었다. 이로부터 성탑과 성비를 중심한 총부 영모원 일대가 報本崇慕의 성역이 되었다. 또한 성업봉찬사업비의 40%이상을 투입하여 원광대학 교사를 신축하였다. 당시 신축된 석조단층 건물은 원기49년(1964)에 철거되었으나 원광대학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다.

(2) 성업봉찬 기념대회 : 원기38년(1953) 4월 26일 개교기념일을 맞아 원광대학 운동장에서 5천여명의 재가 출가와 내외 인사가 참석하여 교단사상 최대의 기념대회를 열었다. 이 식전에서는 정산종법사의 봉고문과 이공주 대회장의 기념사 그리고 당시의 국회의장·문교장관·내무장관을 비롯한 각계인사 20여명의 축사가 있었다. 원불교가 비로소 사회인사들의 축복과 기대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회에서는 정산종법사를 연임 추대하고 교단의 각급 임원도 선출하였다. 창립 제1대 전체교도의 원성적 발표가 있었고, 김영신·조전권교무에게 첫 蓮花章 수여식도 있었다. 또한 이해부터 그동안 사용해 오던 시창연호를 圓紀로 바꾸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이해 6월 1일에 교단 일제히 夏享을 거행하였는데 이는 곧 육일대재가 되었다.

(3) 법훈 증여식 및 각종 경축행사 : 성업봉찬 기념대회 때에는 교단의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인하여 기념식만 거행하고, 창립유공인 표창식과 각종 경축행사는 4년후인 원기 42년(1957) 4월 총회 때에야 가졌다. 이때에도 역시 4천여명의 교도들이 총부에 모여 성대한 행사가 베풀어졌다. 경축 체육대회·경축 예술제·경축 웅변대회·합동 회갑식·교화 및 연원상 시상식 등이 거행되었다. 창립 유공인 표창식에는 제1대를 총 결산한 결과 전무출신 258명, 거진출진 1,498명으로 모두 1,756명을 교단 창립의 조상으로 길이 받들게 되었다. 또한 이때 교단 최초로 종사위·대봉도위·대호법위의 법훈을 증여하게 되었다. 주산 송도성종사, 팔산 김광선 대

봉도, 구타원 이공주 대봉도, 팔타원 황정신행 대호법이 탄생한 것이다. 1, 756명의 창립 유공인 중에는 준정사(예비 법강 항마위)이상의 법위자가 9인이었다.

이와같이 제1대 성업봉찬사업은 계획대로 다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개교 반백년 기념사업으로 계승 추진되었다. 교서편찬 사업도 반백년 기념사업의 편찬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반백년 기념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창립2대 및 소태산 대종사 탄생 백주년 성업봉찬사업으로 계승되고 있고, 또 다시 개교 1백주년까지 교단의 창립사업은 계승 발전되어갈 것이다.

【개교 반백년 기념사업】 반백년 기념사업은 원불교의 제2의 창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교단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교세가 양적으로 2배 이상의 팽창을 가져왔고, 호남지방의 원불교에서 한국의 원불교로 차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지도적 민족종교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종교연합운동과 해외교화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세계종교로 발돋움할 터전을 닦아가기 시작하였다. 국가와 사회에서도 원불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차츰 증대되어 갔다. 서울회관 건립을 계기로 교단은 사회적응의 능력과 경험을 쌓기 시작하였고, 교단 안으로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대해 자각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여러분야에 걸쳐 교단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원기49년(1964) 4월, 개교반백년 기념사업회가 발족하였다. 대산종법사를 총재로, 박광전교무를 회장으로, 정광훈교무를 사무장으로(뒤에 김정용으로 교체하여) 거교적인 기구로 발족한 것이다. 제1대 성업봉찬사업은 정산종법사의 지도로 추진되었으나, 반백년 기념사업은 원기47년(1962) 1월 정산종법사가 열반하고 그 뒤를 이은 대산종법사의 지도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반백년 기념사업은 제1대 성업봉찬사업의 연장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제1대 성업봉찬사업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사업추진의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 「다가오는 반백주년 정성다해 꽃피우자」「반백년 기념성업 뭉쳐서 한 맘으로」「재가 출가 합력하여 일원성업 이룩하자」「반백년 기념성업 합력하여 이룩하자」 등의 표어가 제정 보급되었다. 또한 개교 반백년 기념가가 제정되어 널리 불리기도 하였다.

(1) 교화 삼대목표 추진운동 : 교화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의 발족과 함께 교정원 교화부 주관으로 연원달기·교화단 불리기·연원교당 만들기 등의 세가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연원달기는 교도불리기 운동으로 이 기간에 약 8만명에 가까운 교도가 증가하였다. 교화단 불리기는 교화단의 활성화를 위한 운동으로 이 기간에 1,457단의 교화단이 증가하였다. 연원교당 만들기는 교당 불리기 운동으로 이 기간에 약 90여개의 새 교당이 창설되었다. 이와같이 교화 삼대목표 추진운동으로 교세가 2배 이상 확장되었다.

(2) 교서 발간사업 : 이 사업은 반백년 기념사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반백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반백년 기념대회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소태산대종사는 초기 교서의 집대성판인 『불교정전』의 편찬을 직접 완료하고 인쇄에 부쳤으나 그 발행을 보지 못하고 열반하였다. 정산종법사는 교재정비·기관확립·정교동심·달본명근의 4대 경륜을 내세우고 교서편찬 전문기관으로 《정화사》까지 설립하여 교서편찬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원불교 교전』의 발행을 보지 못하고 열반하였다. 대산종법사는 취임 후 바로 교전 발행을 촉구 독려하여 마침내 정산종사 열반 후 9개월만인 원기47년(1962) 9월에 원불교의 기본경전인 『원불교 교전』이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이후로 『불조요경』『원불교 예전』『원불교 성가』『정산종사 법어』와 영문만 『원불교 교전』이 차례로 발간되었다. 또한 『원불교 교사』와 일본어만 『원불교 교전』『원불교 전서』 등이 계속 발간되었다.

(3) 교도 법위 향상운동 : 교화 삼대목표 추진운동이 교단의 외적 발전을 추구한 것이라면 법위 향상운동은 교단의 내적 충실을 도모한 운동이다. 대산종법사는 원기50년(1965) 10월 교도법위 향상에 관한 특별유시를 발표하였는데, 반백년 기념사업을 계기로 하여 ① 모든 교도가 거듭나는 기간으로 ② 법의 成石이 더욱 굳어지는 기간으로 ③ 스승님께 보은하는 기간으로 ④ 바른 공부길을 잡고 적공하는 기간으로 ⑤ 불보살의 대법보에 올려놓는 기간으로 정하고, 천여래 만보살의 배출을 위한 대 법풍을 불러 일으키자고 촉구하였다. 또한 「공부하는 사업인, 사업하는 공부인」「千佛 萬聖」「무등등한 대각도인 무상행의 대봉공인」「大空心 大公心」에 관한 법문을 자주하면서 교도들의 법위향상을 촉구하였다.

교도의 법위사정은 원기13년(1928) 제1회 기념총회 때 68명의 법위를 사정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후로 원기16년(1931), 원기37년(1952), 원기50년(1965), 원기56년(1971), 원기62년(1977), 원기68년(1983), 원기71년(1986)에 각각 전 교도를 대상으로 일제히 사정하게 되었다. 원기62년(1977) 이전에는 생존인에 대해서는 항마위 이상의 법위를 사정하지 않았으나, 원기62년(1977)부터는 생존인의 항마위 사정도 하게 되었고 교단 창립 2대말을 앞두고는 출가위까지도 사정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법위향상 운동은 교단에 법풍을 크게 불리었고, 생존인의 출가위 사정으로 소태산대종사가 예견한 천여래 만보살이 배출되는 새 회상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4) 각종 문화사업 : 개교반백년 기념대회 기간중에 소태산대종사 유품 전시회, 기념사상 대강연회, 경축 예술제, 경축 체육대회, 교리 강연대회 등의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

(5) 건축사업 : 원기9년(1924)에 처음으로 건설을 시작한 중앙총부는 발전하는 교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규모를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1대 성업봉찬사업에 소태산대종사 성탑과 성비를 건립하였으나 총부를 더 확장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반백년 기념사업에는 총부확장과 각종 기념건물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총부 구내에 반백년기념관, 영모전, 종법원, 정산종사 성탑 등이 건립되었고, 영산성지 노루목에는 소태산대종사의 대각을 기리는 〈만고일월〉비가 건립되었다. 반백년 기념관은 반백년을 기념하는 대강당이고, 영모전은

소태산대종사 이하 역대 선영 열위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이며 종법원은 종법사의 집무실 겸 숙소이다. 정산종사 성탑은 소태산대종사의 법통을 계승한 정산종사의 공덕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탑인데 정산종사의 유골도 함께 봉안하였다. 탑 뒷쪽에는 정산종사 《聖塔銘》이 새겨져 있는데 개벽계성으로서의 정산종사의 일생의 업적과 공덕이 기록되어 있다. 정산종사 성탑은 원기73년(1988)에 장소를 옮겨 새로 건립하였다. 소태산대종사 대각비는 소태산대종사의 대각과 28년간의 제도사업을 추앙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인데, 소태산대종사가 대각을 이룬 영산성지 노루목에 세워졌다. 소태산대종사가 萬古日月과 같은 주세성자라는 뜻에서 비 정면에 〈萬古日月〉이라고 새겼다.

(6)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 : 원기56년(1971)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중앙총부와 영산성지 개교반백년 기념대회가 교단사상 최대의 행사로 거행되었다. 3만여명의 교도와 국내외 각계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교단사상 최대의 집회였다. 제1대 성업봉찬대회 때의 5천여명에 비해서 큰 발전을 가져온 것이다.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일원세계」라는 대회 주제로 10월 7일에는 영모전 낙성 및 묘위봉안 봉고식, 정산종사 성탑 제막식, 대회전야제 등을 거행하였다. 10월 8일 오전에는 반백년 기념관 봉불 및 낙성식을 가졌고, 이어서 원광대학 운동장에서 반백년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 식전에서는 4개항의 대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① 우리는 일체 종교를 하나로 보고, 세계를 하나로 보며, 모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고, 세상의 모든 일을 한 일로 보는 정신을 자각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자유를 달성하는데 앞장서는 주인되기를 결의한다. ② 모든 인류는 격차없는 빈부의 균등과 차별없는 종족의 평등으로써 세계의 질서를 정립케 하고, 강대국 간에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며, 현대문명의 公害를 방지하여 인류평화를 추구할 것을 결의한다. ③ 국력의 자주적 배양을 발판으로 하여 선의의 경쟁으로써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유구한 민족의 전통적 슬기와 참됨을 바탕하여 세계적 정신운동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달성할 것을 결의한다. ④ 국제적인 종교연합기구를 통하여 모든 종교의 교리적 융통과 종교적 공동과제를 토의하고 나아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종교를 생활화 할 것을 결의한다. 또 반백년 기념식전에서는 반백년기념사업 추진에 공이 많은 교도들에게 훈장이 수여되었다. 일원상 훈장 2명, 연화훈장 66명, 목련훈장 3명, 모란훈장 30명, 매화훈장 405명, 근성훈장 605명, 참가상 1,849명 등 2,865명에게 시상되었다.

【서울회관 건립】 원기56년(1971) 10월에 착공하여 12년 만인 원기67년(1982) 10월에야 완공을 보게 된 서울회관 건립문제는 반백년기념사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린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처음 반백년 기념사업회가 발족할 때에 서울에 〈청년회관〉을 세우기로 계획한 것이 서울회관 건립으로까지 돌발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서울회관 건립 과정에 있어서 남한강 개발주식회사에 대해 **教産**을 담보해준 것이 남한강회사의 부실로 교단이 빚을 짊어지

게 되었고, 따라서 교단은 본의 아니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 서울회관 건립문제가 경제적·법률적 난관에 부딪쳐 헤쳐나갈 길이 매우 어렵게 되자 교단에서는 포기 내지 실패로 보기 시작했고, 대산종법사는 교단이 이처럼 큰 위기에 부딪치게 된 원인을 네가지로 분석하였다. ① 소태산대종사의 이소성대의 정신을 잘 받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② 처음 일을 착수할 때와 난관을 수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교단의 衆智를 충분히 종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③ 교단의 경제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축적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④ 시국의 변동으로 경제불황이 닥쳐와 많은 기업체들이 파산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처럼 난관에 부딪친 원인을 분석 반성한 대산종법사는 다시 결연한 태도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서울회관 건립이 이처럼 큰 난관에 부딪친데 대해 우리는 서로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재가·출가가 서로 주인이 되고 책임자가 되어 난국 수습에 정성을 다하자.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① 정교동심의 계기 ② 재가·출가가 다같이 교정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 ③ 선후진 동지가 서로 일심합력하는 계기 ④ 교단의 주인인 血誠法子가 수없이 배출하는 계기 ⑤ 일을 수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상처를 받거나 교단의 단결에 금이 가는 일이 없이 영겁을 통해 더욱 화합하는 계기 ⑥ 소태산대종사의 근본정신을 더욱 새롭게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서 오늘의 이 난관이 교단 만대에 전화위복이 되도록 다함께 적극 노력하자고 강조한 것이다.

처음 교단의 서울지방 진출이라는 부푼 기대로 시작했던 서울회관은 대산종법사를 비롯한 재가·출가 전 교도가 일치 단결하여 부채청산, 좌절, 실의, 포기, 중단, 재분발, 감사, 보람 등의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12년만에 서울 흑석동 한강변 1,945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건평 1,935평의 회관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이 기간에 교단이 겪은 경제적 정신적 상처와 고통은 매우 큰 것이었으나, 교단은 일심합력하여 마침내 이를 극복했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교단은 더욱 화합 단결하게 되었고, 재가·출가가 다같이 교단의 주인이 되었으며, 법위향상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교단은 이 일을 계기로 하여 격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사회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양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교단의 저력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하였고 큰 관심과 기대와 격려를 보내주게 되었다. 이처럼 큰 난관을 극복하고 이룩한 서울회관은 교단의 홍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회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단의 발전과 국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역시 교단적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게 되었다.

【반백년 기념사업 이후의 교단의 변화】 반백년기념사업은 제2의 교단창립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교단사상 큰 의미를 갖는 동시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시기적으로는 원기49년(1964)부터 원기56년(1971)까지 8년간에 걸쳐 추진되었으나, 이는 결실성업이라는 의미와 제1대 성

업봉찬사업의 연장·발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원기56년(1971)까지 끝난 사업이라기 보다 개교 2대말 또는 소태산대종사 탄생 1백주년 및 개교 1백년대를 향하여 계속되어지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소태산대종사가 예언한「사오십년 결실」이란 말씀에 근거한 반백년 기념사업은 8년이라는 기간에 교세를 2배 이상 발전시켰고, 이런 의미에서 교단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1) 교세의 발전:반백년 기념사업추진기간에 전개되었던 교화삼대목표 추진운동으로 원기48년(1963)까지에 비해 원기56년(1971)까지에는 2배 이상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다. 교화삼대목표 추진운동은 이후로도 교화활성화 운동으로 계속되어 원기70년(1985)대 까지에는 원기48년(1963)까지에 비해 종합적인 교세가 4~5배 가까운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2) 출판문화의 활성화:소태산대종사는 일찍부터「…경전은 그 정수를 가려서 일반대중이 다 배울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편찬할 것이며…」라 하였다. 이러한 정신을 받들어『원불교교전』은 거의 한글전용으로(필요한 경우에만 약간의 한문을 괄호안에 사용) 편찬하였다. 교서발간사업으로 각종 교서가 이 기간에 발간되었고, 이후로 많은 해설서, 연구서, 문집, 전기, 부교재, 수행담 등이 계속 발간되었다. 반백년기념사업을 분수령으로 하여 교단의 출판문화는 크게 활성화 된 것이다.

(3) 법위향상 운동의 계속:소태산대종사는「도가의 명맥은 재물이나 시설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慧命을 받아 전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하고, 원불교는 천여래 만보살이 배출할 衆聖共會의 큰 회상임을 예견하였다. 반백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대산종법사가 법위향상에 관한 특별유시를 내리고 전교도를 대상으로 법위사정을 실시한 이후 현재에는 3년만에 한번씩 법위사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존인의 항마위·출가위 사정으로 교단에 법풍을 크게 불리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가운데에서도 법위향상운동은 가장 핵심으로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4) 각종 훈련 강화:법위 향상운동를 뒷받침하기 위해 훈련강화에 착수하였다. 교도훈련을 통하여 천여래 만보살을 배출시키고, 세계훈련 인류훈련으로 산업화시대·인간상실의 시대·도덕성 타락의 시대에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인간회복·도덕성 회복이야말로 소태산대종사의 교법의 참뜻을 실현하는 것이며, 교단이 해야 할 사회참여, 사회정의 실현의 중요한 과업인 것이다. 원기45년(1960)부터 삼동원을 개척하기 시작하여 원기52년(1967)에 삼동원이 설립된 이래 원기56년(1971)에 중앙훈련원이 설립되고 원기61년(1976)에 중앙훈련원사가 신축되어 본격적 훈련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후로 동명훈련원, 중앙상주선원, 소남훈련원, 만덕산훈련원, 제주국제훈련원, 동산훈련원 등 많은 훈련기관이 설립·신축되어 교역자 훈련, 재가교도 훈련, 청년 학생 어린이 훈련, 국민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원기62년(1977)에는 교정원에 훈련부까지 신설되었고, 훈련은 교단의 사회참여의 한 중요한 방법으로까지 부

각되었다.

(5) 봉공활동의 적극화 : 원기51년(1966)부터는 자선의 달이 실시되어, 해마다 12월이면 자선사업·봉공사업에 적극성을 갖기 시작했다. 각 교당마다 봉공회가 결성되었고 해마다 대각개교경축기간에는 각종 봉공활동을 적극 전개하게 되었다. 사대봉공회를 비롯한 각종 봉공단체, 봉공기관이 설립되었다. 봉공사업의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도 교구별로 해마다 열리게 되었다. 봉공사업은 단순한 자선사업의 단계를 넘어 사회정의 실현, 사회참여의 방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봉공사업은 교리상에 있어서 사요실천으로 평등사회 건설의 길이기도 하며, 무아봉공의 실천이기도 하다.

(6) 법치교단의 운영 : 원기9년(1924)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때 『불법연구회 규약』을 제정한 이후, 원기33년(1948)에 『원불교 교헌』을 제정하였고, 이후로 몇차례의 교헌 개정이 있었다. 소태산대종사 당대부터 법규에 의한 교단운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태산대종사와 정산종사 시대에는 절대적 권위로써 가족적 분위기속에서 교단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반백년기념사업이후에는 교단이 큰 발전을 가져왔고, 교단의 구성원들도 다양해졌으며, 한국사회에도 급격한 변화와 민주화의 물결이 세차게 밀려왔다. 따라서 교단도 가족적 분위기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법치교단 운영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다.

원기49년(1964)에 〈수위단회법〉 〈중앙교의회법〉 〈종법사 선거법〉 〈수위단원 선거법〉 〈교무자격검정규정〉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고, 이후로 〈교도법위사정규정〉 〈도랑상규〉 〈전무출신규정〉 〈원로예우규정〉 〈교도법호증여규정〉 〈정남정녀규정〉 〈훈련법〉 〈교육법〉 〈교구규정〉 〈교당규정〉 등 많은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이처럼 법치교단 운영에 대한 노력으로 교역자 자격검정고시 실시, 교구제·교구교의회제 실시, 재가교도의 수위단회 참여, 재가교도의 교당운영참여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단의 조직과 제도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차츰 확립되어가고 있다.

5. 삼대 사업목표

「우리의 사업 목표는 교화 교육 자선의 세 가지이니 앞으로 이를 늘 병진하여야 우리의 사업에 결함이 없으리라(『대종경』 부촉품 15장).」

소태산대종사의 이 말씀에 따라 교화·교육·자선의 세 가지는 교단의 기본 방향이 되었고, 교단의 삼대 사업목표가 되었다.

【교화】 교화사업은 교당을 많이 세우고 교도들을 교화해서 소태산대종사와 같은 인격자가 되도록 지도하는 일이다. 교화사업의 현장은 일선교당이 된다. 원불교 최초의 교당은 영산성

지 옥녀봉 아래에 세워졌던 구간도실이다. 구간도실은 처음 영산방언공사의 현장 사무소로 사용되었고, 밤이면 소태산대종사와 구인제자들이 함께 모여 진리를 공부하던 곳이다. 방언공사가 끝난 후에는 다시 혈인기도의 본부가 되었다. 원기3년(1918)에 세워졌던 구간도실은 원기8년(1923)에 현재의 영산선원 구내로 옮겨져 보존되어 있다. 이후 원불교의 교당은 총부를비롯하여 서울·신흥·마령·좌포·원평·당리·부산·전주·일본대판·관촌·초량·대마·도양·용신·개성·남원·이리·운봉·화해·수지·신태인·용암·수계교당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소태산대종사가 열반하기 까지의 교당수는 총부를 비롯하여 25개 교당이 되었고, 정산종사가 열반하던 원기47년(1962)까지에는 약 80여개로 늘어났으며, 원기72년(1987)까지에는 약 380여개의 교당으로 증가하였다. 외국교화는 미국·일본·캐나다·독일 등에 상당수의 교당이 세워졌고, 그 이외에도 교당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교당을 중심한 교화사업이 원불교의 중심사업이 되고 있다.

【교육】 교육사업은 원기31년(1946)에 유일학림을 설립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유일학림은 처음에는 원불교 교역자 양성이 주목적이었으나, 차츰 교역자 양성과 아울러 대학교육과 중·고등교육까지 병행하게 되었다. 유일학림은 중등부와 전문부로 나뉘어 중등부는 원광중·고등학교와 원광여자중·고등학교로 분리 발전하였고, 전문부는 원광대학으로 분리 발전하게 되었다.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원불교학과는 원불교 교역자 양성의 전문기관이고 그 이외에는 일반대학과 같이 교육하고 있다. 원기72년(1987) 현재 원불교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원광대학교를 비롯하여 원광대학교 대학원, 원광보건전문대학, 원광고등학교, 원광여자고등학교, 해룡고등학교, 원광중학교, 원광여자중학교, 해룡중학교, 영산성지학교 등이 있다. 또한 각 교당에서 병설운영하는 유치원, 유아원, 탁아소, 노인대학, 성인교육원 등이 1백여개소 이상에 달하고 있다. 영산선원은 원광대학 교학대학과 함께 원불교 교역자 양성 전문기관이고, 동산훈련원은 처음 교역자 양성기관에서 교역자 훈련기관으로 바뀌었다. 원불교의 각 교육기관에서는 지식교육 못지않게 인간교육, 도덕성 교육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자선】 자선사업은 8·15해방 직후 전재동포 구호사업으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전재고아들을 모아 설립한 서울보화원을 시초로 하여 많은 자선사업기관이 설립되었다. 현재 이리보육원, 한국보육원, 전주양로원, 중앙수양원, 삼정원, 이리자선원, 원광노인요양원, 제주원광요양원, 장수수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원불교의 자선사업은 초기에는 고아원, 양로원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병원과 정신질환자 수용 등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원불교의 경우에 있어서 자선사업은 단순한 자선사업이 아니라 원불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참여, 사회개혁, 사회정의 실천, 복지사회 건설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불교는 정치적 시각이나 투쟁적 구호를 앞세우고 사회참여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자선기관의 운영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아봉공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곧 사회참여요 사회정의 실천이며 복지사회 건설이라고 보는 것이다.

교화·교육·자선의 삼대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자금은 교단에서 운영하는 산업기관의 수입금

과, 교도들의 희사의연금, 천도재나 기도행사 등에서 나오는 의식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교도들은 창립정신의 실천과 예법혁신 운동으로 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교도들은 근검절약과 청렴을 미덕으로 하여 절약된 자금을 교화·교육·자선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원불교 발전의 큰 원동력이 있다. 교화·교육·자선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화사업회·육영사업회·법은사업회·사대봉공회·원창회 등의 각종 후원단체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화·교육·자선의 삼대사업 이외에도 산업·훈련·복지·문화·봉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훈련·문화·봉공에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훈련과 봉공에 대해서는 반백년기념사업 이후의 교단에서 설명한 바 있다. 문화분야에서는 원광사, 원불교 출판사, 원불교 신문사, 월간원광, 중앙문화원, 중앙박물관 등의 문화기관이 설립되어 있다. 원광사는 교단의 각종 인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원불교 출판사는 교단의 각종 서적의 출판 보급을 담당하고 있다. 월간원광에서는 『원광』을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고, 원불교 신문사에서는 『원불교 신문』을 주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6. 개교 1백년대를 향한 좌표

이제 원불교는 창립 2대를 지나고 창립 3대를 맞았고, 원기76년(1991)이면 소태산 대종사 탄생 1백주년기념을 맞게 된다.

【창립 제2대 성업봉찬 기념대회】 원기73년(1988) 11월, 원불교는 창립 제2대 성업봉찬기념대회를 가졌다. 창립 2대를 마감하고 3대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한 기념행사였다. 제2회 성업봉찬사업의 중요사업은 영산성지 장엄사업, 소태산대종사 성탑 장엄 준공, 정산종사 성탑 중건 등의 건축사업과, 창극「개벽의 북소리」공연 등이 중심이 되었다. 창립 제2대의 성업봉찬기념대회에서는 원광대학 문화체육관에 1만5천여명의 교도가 모여 대산종법사를 재추대하고, 제2대내의 법훈자로 종사장 12명, 대봉도 39명, 대호법 30명(명예대호법 2명 포함)에게 법훈장이 증여되었다.

【민족종교에서 세계종교로】 교단 초기에 원불교는 한국의 신흥종교의 하나 정도로 취급받아 왔다. 그러나 개교반백년기념사업의 추진으로 교세가 급격한 발전을 가져오자 한국사회는 원불교에 대해 차츰 관심과 기대를 갖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민족종교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호남의 원불교에서 한국의 원불교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원기50년대에 활기를 띠웠던《한국종교협의회》또는《종교인 협의회》에 원불교는 능동적·

주도적 자세로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표적 민족종교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세계종교로 뻗어갈 터전을 닦기 시작하였다. 이제 개교 1백주년을 앞두고 원불교는 한국의 민족종교에서 세계종교로 발전해 가야할 중대한 과업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일찌기 소태산대종사가 금강산이 장차 세계의 공원이 될 것이며, 한국은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이 될 것이요. 원불교인은 금강산의 주인이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제 조국의 통일이 눈앞에 와있고, 통일이 되면 자연 금강산은 세계의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강산의 주인으로서의 원불교인, 한국을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으로 이끌 지도이념으로서의 원불교는 곧 세계종교로 발전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종교연합운동】 개교 반백년기념대회때부터 원불교는 종교연합운동을 주창해 왔다. 반백년기념대회 결의문에서 「국제적인 종교연합기구를 통하여 모든 종교의 교리적 융통과 종교적 공동과제를 토의하고…」라 밝혔던 것이다. 또 반백년기념대회의 주제를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일원세계」라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원불교는 세계종교연합체 설립을 강력히 제창하게 되었다. 세계종교연합 설립취지문을 보면 「현대 인류의 최대의 사명은 과학의 利器를 선용할 인류의 정신문명을 촉진시키고 전 인류가 한 가족과 같이 서로 화합하는 하나의 세계 건설이다. 그러나 현대인류는 정신적 타락과 서로간의 극한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고, 이를 구원해야 할 종교마저도 신앙의 차이로 인한 반목과 투쟁으로 오점을 남기고 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하나이고 모든 인류는 한 가족이요 세상은 한 일터이다. 이제 모든 종교는 문호를 개방하여 대동화합을 위한 공동활동이 절실히 요청된다. 참 문명은 과학문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 인류가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신적 빈곤을 극복해야 원만한 이상세계 건설이 가능하다. 우리는 종교인의 대동화합과 내외가 겸전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연합기구의 창설을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 취지문에 바탕해서 8개항의 세계종교연합 선언문도 발표하였다. ① 도덕을 부활시키고 인류의 정신구제에 앞장 선다. ② 이 지상에 종교 대립으로 인한 분쟁을 종식시키고 서로 화합하고 협력한다. ③ 국적과 인종의 차이로 인한 투쟁을 종식시키고 형제와 같이 서로 돕고 사랑한다. ④ 사상의 차이로 인한 대립을 벗어나 상부 상조한다. ⑤ 정치는 엄부역할을 다하게 하고, 종교는 자모역할을 다하여 인류의 불행과 전쟁을 없애고, 참된 행복과 평화를 건설한다. ⑥ 모든 인류의 영과 육의 빈곤 무지 질병을 퇴치하는 봉공 활동으로 평등한 낙원세계를 건설한다. ⑦ 정신과 물질, 과학과 도덕을 원만히 병진시켜 이 지상에 참된 문명세계를 건설한다. ⑧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원만 통달한 하나의 세계건설에 서로 앞장선다.

이렇게 하여 교단은 기회있을 때마다 종교연합기구 창설을 주창하게 되었다. 이제 개교 1백주년을 앞두고, 원불교는 세계종교로 발전하는 일과, 종교연합운동을 적극 추진해야할 큰 과업을 안고 있다.

Ⅲ. 敎書와 敎理의 變遷

1. 敎書의 變遷

원불교에 있어서 교서란 원불교의 교리, 제도, 역사 등을 교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책으로써, 예컨데 『정전』『대종경』『불조요경』『예전』『성가』『법어』『세전』『교사』『교헌』 등의 9종 교서를 일반적으로 교서라 이름하고 있다. 따라서 교서의 변천과정을 기술한다고 하는 것은 이들 9종교서의 근원을 파헤쳐 들어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연계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편의상 이들 교서의 변천과정을 논함에 있어 그 시대구분은 현대 9종교서의 모체가 되는 최초의 교서 태동기를 《초기교서시대》로, 이들 초기 교서군의 집대성판인 『불교정전』을 전후로하여 발행된 교서 개화기를 《불교정전시대》로, 이어서 초기교서·불교정전시대의 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9종교서가 출간된 교서 중흥기를 《9종교서시대》라 각각 명칭하고 이들 三時代에 발간된 교서들을 다음에 제시한 바처럼 역사적 전개에 따라서 순서대로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원불교 교서관계 간행물〉

책 명	발간년월일	내 용	판 수	비 고
성계명시독	2 (1917)	일기법		교단 최초의 교서
법의대전	2 (1917)	도덕의 정맥, 세상의 대세, 새 회상 건설계획		서문과 한시 11귀가 대종경 전망품 2장에 수록
불법연구회규약	12(1927) 3	불법연구회의 유래, 취지, 규약	재 판	최초의 인쇄물 교리, 규약서
수양연구요론	12(1927) 5	수양·연구의 요강, 문목들	초 판	수양연구 중심 교리서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	16(1931) 7	조단의 원칙과 세칙, 사은, 사요	〃	
육대요령	17(1932) 4	삼학팔조, 훈련, 학력고시, 학위등급, 사업고시	재 판	최초의 순수교리서
삼대요령	19(1934) 12	사은사요, 삼학팔조, 훈련편	초 판	

조선불교혁신론	20(1935). 4	불교혁신의 내용 7개 항목 출생, 성년, 婚, 喪, 葬	초 판	불교정전의 개선론. 현대종경 서품 일부
예 전	20(1935). 8	유공인상장, 4기념, 학위승급예	〃	53년판. 예전에 포함
불법연구회 상조부 규약	20(1935).	상조부의 규약	〃	
불법연구회근행법	24(1939.). 11	일원상서원문, 일상수행의 요법, 천도법문	재 판	28년 불교정전에 포함
불 교 정 전	28(1943). 3	권1정전, 권2불경, 권3조사경전	재 판	원불교교전, 불조요경으로 구분 발행
원 불 교 교 헌	32(1947).	교헌	3차개정	현행 38년판
원 불 교 내 규	34(1949).	규약(도량내)	〃	교헌과 합해 헌규라 함
원불교성가 제1집	38(1953).	74곡 수록	초 판	53년판 성가에 포함됨
원 불 교 교 전	47(1962). 9	정전, 대종경	7 판	현재 보급중
불 조 요 경	49(1964).	불경 및 조사경론	재 판	〃
예 전	53(1968). 3	통례, 가례, 교례	3 판	〃
성 가	53(1968). 3	원불교 성가 126곡 수록	〃	〃
원 불 교 교 전	54(1969). 7	교전·성가 합본(축소판)	3 판	〃
정 산 종 사 법 어	57(1972). 1	정산종사 친저인 세전과 그의 법설		〃
원 불 교 교 사	60(1975). 9	반백년동안의 대체과정		〃
원 불 교 전 서	62(1977). 10	9종교서 결집		〃

가. 초기교서시대

이 시기는 소태산대종사 대각직 후 시가들의 모음집인 『법의대전』과 최초의 인쇄물 교리서인 『불법연구회규약』을 시작으로 하여 『수양연구요론』을 비롯 최초의 순수 교리서인 『육대요령』과 육대요령의 내용을 촬요 편찬한 『삼대요령』이 출판된 원기17년(1934)까지의 교서의 태동기를 그 범위로 한다.

1) 소태산대종사 대각과 최초교서

소태산대종사 자수자각 후 제자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교단 최초로 내놓은 책이 원기2년(1917)발간한 『성계명시독』이다. 이는 현 상시일기의 최초형식으로서 소태산대종사 창립초기 처음으로 십인일단을 조직하였으나 제자들의 心中에는 아직도 신비한 비결이나 난측한 신통묘술을 구하려는 마음이 제거되지 않고 진리의 묘체나 인도의 정의를 분석하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 이들을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훈련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매월 三旬日(1일, 11일, 21

일)로 예회보는 방법을 지시하였다. 이때 『성계명시독』이라는 책을 편찬하여 단원들의 10일동안 지낸 바 마음을 청·홍·흑점으로 조사하게 하여 그 신성진퇴와 실행여부를 대조케 하였던 것이다.

그후 원기2년(1917) 이래로 소태산대종사는 그의 제자 김성섭에게 명하여 붓을 잡으라하고 많은 문장과 시가 등을 읊어 편집하니 『법의대전』이라 이름하였다. 법의대전의 내용은 그 뜻이 신비하여 보통 지견으로는 가히 다 헤아려 말할 수 없었으나 그 대강은 곧 도덕의 정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난다는 것과 세계의 대세가 역수가 지나면 순수가 온다는 것과 새 회상을 건설한 계획 등 이었다. 소태산대종사는 이 『법의대전』을 한때의 발심조흥은 될 지언정 많은 사람을 제도할 정식 교서는 아니라하여 후일 봉래산에서 새 교강 발표후 거두어 불사르게 함으로써, 서문 첫 절과 열한 귀의 한시가 구송으로 전하여 『대종경』 전망품 2장에 수록되었을 뿐 세상에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종경』 전망품 2장에 수록된 서문은 「蓋自太極肇判元天降臨於先絶後繼之心也」이며 한시 열 한 귀는 다음과 같다.

「萬壑千峰踏來後 無俗無跡主人逢
野草漸長雨露恩 天地回運正心待
矢射日光蒼天中 其穴五雲降身繞
乘雲仙子景處尋 萬和方暢第一好
萬里長江世意繞 道源山水陰陽調
湖南空中何處云 天下江山第一樓
天地方尺尺數量 人名衣服活造傳
天地萬物胞胎成 日月一點子午調
放風空中天地鳴 掛月東方萬國明
風雨霜雪過去後 一時花發萬歲春
研道心秀千峰月 修德身如萬斛舟」

『성계명시독』과 『법의대전』은 대종사 친저의 최초 교서라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 밖에도 「白日嘯」, 「心迹篇」, 「感應篇」 등의 저술과 봉래산에서 저술한 「回性曲」이 있었으나 그도 다 불사르게 함으로써 후세에 남지 못하였다.

2) 『佛法硏究會 規約』

소태산대종사의 포부와 경륜을 처음으로 활자화한 것은 원기12년(1927) 『불법연구회 규약』에서 비롯된다. 취지규약서로 알려진 『불법연구회 규약』은 원기12년(1927)에 초판되고 원기19년(1934)에 재판되었다. 규약의 취지설명에서 소태산대종사는 지금까지 한국사람의 생활폐습을 ① 교육부족 ② 자립생활 결여 ③ 민중의식의 결여 ④ 화합단결력 부족 등으로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識心, 覺心을 일으켜 안정할 수 있는 수양력을 기르며 또한 진리를 깨칠 수 있는 연구력을 기르며, 또한 실행할 수 있는 취사력을 얻어서 마침내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① 생명의 생사없는 이치 ② 복족혜족이 되는 이치 ③ 苦되고 樂되는 이치를 만인이 다 알게 하자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규약이 지닌 가치의 중요성

을 교단 초기 교리가 이 규약속에 암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바로 여기에서 삼학 팔조, 사은의 도리, 고락에 대한 법문, 삼십계문, 솔성요론,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 교당내왕시주의사항 6조, 예법의 제정을 위한 암시 등이 함축되어 있다.

소태산대종사는 이 『불법연구회규약』에서 불법을 통로로 하여 자신의 의지가 본질적으로 통하게 하면서도 교화의 방편에 있어서는 시대화·생활화·대중화를 위해서 수련방법이라든가, 신앙행위라든가, 운용체제 등을 과감하게 변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불법연구회규약』의 구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다.

『불법연구회규약』 목록

- 본회의 유래
- 본회의 취지설명
- 본회의 원칙
  - 제1장 총 칙
  - 제2장 기 관
  - 제3장 각부의 직무
  - 제4장 임 원
  - 제5장 회 의
  - 제6장 회원의 권리 의무
  - 제7장 가입 및 탈퇴
  - 제8장 본지부 및 출장소간의 권한
  - 제9장 회계 및 기타
- 본회의 세칙
  - 제1장 관내상규
  - 제2장 정기공부
  - 제3장 출 가
  - 제4장 임원규정
  - 제5장 각기관직무행사
  - 제6장 상무회의
  - 제7장 금융 및 중요인장서류
  - 제8장 검사 및 상벌
  - 제9장 부 록
  - 제10장 서류정리
  - 제11장 입법위원회
  - 제12장 본부 및 지방의 연락방식

3) 『修養硏究要論』

원기12년(1927) 5월에 초판 발행된 『수양연구요론』은 초기교서의 중심 교재로 사용되어졌다. 소태산대종사는 이 책의 서문에서

>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혜복을 구함에 있다. 그러나 모든 교법이 세상에 유행하여 사람마다 혜복을 구한다 하나 실상 그 근원을 알지 못함으로 학설만 益煩하고 고해가 점심하도다.……본서는 가장 간명히 수양의 본원을 알리기 위하여 定靜要論을 말하고 연구의 방편을 밝히기 위하여 삼강령 팔조목과 각 문목순서 등을 설명하였으니 수양의 빠른 힘을 얻어 연구의 사항을 밝혀 내어 인생의 선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히고 있어 수양 연구의 요강 및 연구의 방편으로써의 문목을 밝히고 있다.

전체내용이 전7절로 되어있는 『수양연구요론』의 大旨는 동정간 삼학을 병진토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動時공부로는 外靜定이라 하여 작업취사를 중심으로 삼학을 병진하게 하고, 靜

時공부로는 內靜定이라 하여 정신수양과 사리연구를 중심으로 삼학을 병진하게 하였는데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수양연구요론』 목차

제1 정정요론 상
제2 정정요론 하
제3 연구의 강령
제4 연구의 진행조건
제5 연구의 사연조건
제6 각항연구문목
제7 공부의 진행순서

4) 『佛法硏究會 統治組團規約』

원기16년(1931) 7월에 발행된 교단 초기교서의 하나이다. 그 내용은 주로 교도들의 공부와 사업을 훈련하고 지도하기 위한 십인일단의 조단규약으로써 이 책의 총론에 『佛法硏究會統治組團規約』의 취지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져 있다.

「본회의 창립한 시일이 천단한이 만치 아즉 각자의 공부를 완성하야 타인을 교양할 자격자가 없고 더욱이 회원은 원근 각처에 散住하야 잇슴으로 종사주 단촉하신 힘으로서난 그 각지에 산주한 회원의 공부와 사업을 고로 훈련하기 어렵난지라 고로 이에 회원 구인으로 일단을 삼고 단장 일인을 가하야 단장은 종사주의게서 배운 그대로 자기아래 구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감독케 하고 그아래 구인은 또 자기 단장에게서 배운 그대로 每人下 九人식 지도감독키 위하야 이 단을 조직하려 함에 左와 여한 재반 법측을 제정하였나니라.」

이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의 특징은 바로 이때 이미 교화단 조직과 수위단 조직에 관한 규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불법연구회』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남녀구별의 조직
제3장 수위단의 조직 및 선거방식
제4장 각 단의 조직
제5장 조단의 방식과 번호
제6장 조직위원의 선거
제7장 조단시예식과 절부단증수여의 내역
제8장 절부제작 및 절부 단증의 교체와 유실처분
제9장 회의 및 가결방식
제10장 단원의 권리와 의무
제11장 단장의 이권과 의무
제12장 상 벌
제13장 의견안의 채용
제14장 각단의 통제도

『단규세칙』 목차

제1장 공부방면 및 사업방면
제1절 단원으로서 매일 일기조사법
제2절 단장으로서의 단원의 일기성적을 매월 조사하는법
제3절 사업의 관하야 단장의 겸무
부 칙

5) 『六大要領』

원불교 초기교서의 하나로서 원명은 『보경육대요령』이다. 이는 원기17년(1932) 4월에 초판되고 5월에 한글판으로 재판되었다. 『육대요령』은 교리의 강령을 6장으로 분류하여 밝힌 최초의 기본 경전으로 원기28년(1943)에 『불교정전』이 발행되기까지 초기교단의 중심교서로 사용되었다. 표지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표어가 밝혀져 있고 삼강령 팔조목, 사은 사요, 기본 훈련법 등 현 正典의 기본강령이 수록되어 있는 바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육대요령』 목차

제1장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제2장 공부의 요도 삼강령팔조목
제3장 훈련편
- 공부의 요도 정기훈련의 과목 및 해석
- 공부의 요도 상시훈련의 과목 및 해석
- 최초법어
- 공부인 고락의 설명
- 樂을 버리고 苦로 들어가는 원인
- 솔성요론
- 삼십계문

제4장 학력고시편
- 연구과삼부
- 수양과
- 취사과

제5장 학위등급편
- 보통부
- 특신부
- 법마상전부
- 법강항마부
- 출가부
- 대각여래부

제6장 사업고시편
- 본회 창립한도
- 전곡(錢穀)에 대한 등급
- 본회 창립요론

6) 『三大要領』

『육대요령』이 발간된 2년후인 원기19년(1934) 12월에 간행된 초기교서의 하나로서 『육대요령』을 기본으로 하여 축약된 것이다. 원명은 『보경삼대요령』으로서 삼대란 교리와 훈련의 강령을 삼대별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삼대요령』 목차

제1장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제2장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
제3장 훈련편
- 상시응용주의사항
-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 계 문
- 솔성요론
- 최초법어
- 요 언

나. 불교정전시대

이 시기는 교서의 개화기로서 원기20년(1935) 소태산대종사께서 불교혁신의 입장을 밝힌 『조선불교혁신론』과 현행 『예전』의 모체가 되는 『불법연구회예전』의 발행에 이어 원기28년(1943) 초기교서들의 집대성판인 『불교정전』이 편찬 발행된 초기교서의 황금 결집기를 그 범주로 한다.

1) 『朝鮮佛敎革新論』

원기5년(1920) 4월에 소태산대종사는 봉래산에서 새 회상의 교강인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을 발표하고 이때 밖으로 승려들과 교제하며 불교의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를 통감하고 『조선불교혁신론』을 초안하고, 그후 원기20년(1935) 4월에 발간하게 된다. 이 책은 과거불교를 진단하고 나서 불법을 일대 혁신한 책으로, 1910년 만해 한용운에 의해 저술된 『조선불교유신론』이 승려가 불법에 귀의해 불교의 폐단을 찾아낸 후 개혁하려는 입장이라면, 『조선불교혁신론』은 소태산대종사 자신이 불가에 소속됨이 없이 각자의 대오분상의 안목에서 지난날의 불폐를 혁신하고자 하는 새로운 초 대승적 불법수용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의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를 축으로 전개되어진 『조선불교혁신론』의 내용은 총론과 전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에서는 불교혁신의 개요를 세가지 형태로 밝혀주고 있는데 ①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②과거의 불교를 현재와 미래의 불교로 ③산중 승려 몇 사람의 불교를 일반 대중의 불교로 해야 한다는 개혁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조선불교혁신론』 목차

총 론
1. 과거 조선사회의 불법에 대한 견해
2. 조선 승려의 실생활
3. 세존의 지혜와 능력
4. 외방의 불교를 조선의 불교로
5.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6. 분열된 교화과목을 통일하기로
7. 등상불 숭배를 불성 일원상으로

2) 『佛法硏究會禮典』

소태산대종사는 원기11년(1926) 2월에 진리에 근거하고 생활에 맞는 예법의 시행을 통하여 허례를 지양하고 예의 근본정신을 드러내고자 『新定儀禮』를 제정하였다. 이것은 소태산대종사가 당시 허례에 빠진 형식예법을 직접 개혁·제시한 혁신예법으로써 출생의 예, 성년의 예, 혼인의 예, 상장의 예, 제사의 예를 말한다.

『新定儀禮』를 발표한 후인 원기20년(1935)에 이르러 정식 『불법연구회예전』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이 예전은 현행 예전의 가례편과 교례편의 기초가 되었다. 이때 발간된 『불법연구회예전』의 총론에서

「…시대와 인심을 따라서 구례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신구를 물론하고 적절한 예법을 발견하여 예법에 대한 실행과 정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 사회에 발전을 도와주게 하며 유익은 주게 할지언정 그 반면 모든 예식을 행하는 대로 일반사회의 발전을 장애하며 해독을 주게하지 않기로써 신정예전을 편성한다」

라고 밝히고 있어 새 예전의 발행이 과거의 예법과 그 근본정신을 살려쓰면서도 시대화되고 대중화되고 생활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불법연구회예전』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불법연구회예전』 목차

제1편 출생례
제1장 입태전후위생
제2장 해산
제3장 명명
제4장 출생표기
제5장 저축
제2편 성년례
제3편 혼례
제1장 혼례소개
제2장 약혼
제3장 결혼식
제4장 절약과 포시
제4편 상장례
제1장 열반
제2장 호상소
제3장 각종 기와 장
제4장 복제기한
제5장 의례 및 식순
제6장 조위와 부의
제7장 출상
제8장 절약과 표시
제9장 장지
제5편 제례
제1장 기념의 구별과 가입
제2장 기념주의 자격 및 재계
제3장 기념시의 공물
제4장 영상역사 및 사당
제5장 각종의식
제6장 절약과 포시
제6편 유공인상제례
제1장 유공인
제2장 회사위
제3장 열반기념일 및 사당
제4장 추도 및 착복식
제5장 부칙
제7편 4기념례
제1장 종별 및 일자
제2장 기념비 및 식순
제3장 기념내역설명
제8편 학위승급례
제1장 학위증
제2장 의식
제3장 장소 및 장엄
제4장 집회와 축의
제5장 각종도형
제9편 설법례

3) 『佛法硏究會 勤行法』

원기24년(1939) 11월 20일 발행되고 원기25년(1940) 11월 25일 재판된 『근행법』의 원명은 『불법연구회 근행법』으로 일원상서원문, 일상수행의 요법, 천도법문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불법연구회근행법』 목차

제1편
법신불일원상, 본회4대강령, 표어, 교리도
1. 불교정전서
2. 연 혁
3. 본회창립동기
4. 교 지
5. 교 리
6. 교 식
7. 소의경전
8. 불교대중화의 요지
9. 4 대강령
10. 양 대 은
11. 사 은
12. 사 요
13. 삼 학
14. 팔 조
15. 일상수행의 요법
16. 정기훈련과목
17. 상시훈련과목
18. 염불법
19. 좌선법
20. 동정간불리선법
21. 일원상서원문
22. 일원상법어
23. 일원상 게송
24. 심고법
25. 법위등급
26. 삼십계문
27. 일기법(附 성적조사방식)
28. 회규요목
29. 예전요목
30. 본회요일표
31. 찬독불가
32. 회 가
33. 찬송가
제2편
1. 불교요지
2. 오와 수
3. 삼신불
4. 삼귀의
5. 사홍서원
6. 입지게
7. 발분게
8. 참회게
9. 칠불통게
10. 야우설반게
11. 사재법
12. 십이인연법
13. 팔정도
14. 육바라밀
15. 4 념
16. 관음오관
17. 천청문경요해
18. 반야심경

4) 『佛教正典』

원불교 초기교서의 집대성판으로 『佛教正典』은 소태산대종사가 친히 제작한 기본 경전이다. 원기25년(1940)에 초고를 시작하여 3년 후인 원기28년(1943)에 발행하였으며 원기46년(1961)까지 소의경전으로 사용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전3권으로 되어 있으며 제1권은 소태산의 독특한 시각에 의한 찬술로써 개선편, 교의편, 수행편이며 제2권에는 금강반야바라밀경, 반야바라밀다심경, 사십이장경, 불설죄복보응경, 불설현자오복덕경, 불설업보차별경 등 불경을 수록했고 제3권에는 수심결, 목우십도송, 휴휴암좌선문, 의두요목 등 조사들의 論을 실었다. 이 『불교정전』의 특징을 들어본다면 ①소태산대종사가 직접 연마하여 당대에 완성시킨 기본경전이라는 점이며 ②소태산대종사 자신의 覺의 체험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빠르게 覺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르친 경전이란 점이며 ③『불법연구회규약』, 『조선불교혁신론』을 종합하여 다시 하나로 통일시켜 만든 결정판이라는 점이며 ④소태산대종사 자신의 각혼에 의하여 그의 일대 경륜을 총정리한 창조적 인간학이란 점이며 제2, 제3권에서는 재래불교 경론 중에서 불법의 요체만을 뽑아 세움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통할 수 있는 부분만을 발췌한 점 등이다.

『불교정전』은 원기47년(1962) 『원불교교전』 발행시 제1권중 교의 수행을 『정전』으로 2·3권은 『불조요경』으로 재간되었고, 또한 제3권의 의두요목은 정선된 20조만이 『정전』에 편입되었다. 이 『불교정전』은 소태산대종사 당대에 완성된 교단의 기본 경전이란 점과 소태산대종사의 친저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며, 소태산대종사는 자신의 일생 포부와 경륜의 대요가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술회하였다.

전3권으로 되어 있는 전문의 목차와 제1권의 세차는 다음과 같다.

『불교정전』 합권 목차

卷1
제1편 개선론
제2편 교　　의
제3편 수　　행
卷 2
제1편 금강반야바라밀경
제2편 반야바라밀다심경
제3편 역의 사십이장경
제4편 역의 불설죄복보응경
제5편 역의 불설현자오복덕경
제6편 역의 불설업보차별경
卷 3
제1편 수심결
제2편 목우십도송
제3편 휴휴암좌선문
제4편 의두요목

또한 卷1의 세차는 다음과 같다.

卷 1 세　　차

제1편 개선론
제1장 과거 조선사회의 불법에 대한 견해
제2장 과거 조선 승려의 실생활
제3장 석존의 지혜와 능력
제4장 외방의 불교를 우리의 불교로
제5장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제6장 편벽된 수행을 원만한 수행으로
제7장 과거의 예법을 현재의 예법으로
제7장 진리신앙과 석존숭배
제9장 불공하는 법
제10장 법신불 일원상 조성법
제11장 심고와 기도
제2편 교　　의
제1장 사대강령
1. 사대강령의 대의
제2장 일원상
1. 일원상의 진리
2. 일원상의 신앙
3. 일원상의 수행
4. 일원상의 서원문
5. 일원상법어
6. 일원상의 유래
제3장 계　　송
1. 계　　송
제4장 사　　은
제1절 천지은
1. 천지피은의 강령
2. 천지피은의 조목
3. 천지보은의 강령
4. 천지보은의 조목
5. 천지의 배은
6. 천지보은에 대한 의두해석
7. 천지보은의 결과
8. 천지배은의 결과
제2절 부모은
1. 부모피은의 강령
2. 부모피은의 조목
3. 부모보은의 강령
4. 부모보은의 조목
5. 부모의 배은
6. 부모보은에 대한 의두해석
7. 부모보은의 결과
8. 부모배은의 결과
제3절 동포은
1. 동포피은의 강령
2. 동포피은의 조목
3. 동포보은의 강령
4. 동포보은의 조목
5. 동포의 배은
6. 동포보은의 결과
7. 동포배은의 결과
제4절 법률은
1. 법률피은의 강령
2. 법률피은의 조목
3. 법률보은의 강령
4. 법률보은의 조목
5. 법률의 배은
6. 법률보은의 결과
7. 법률배은의 결과
제5장 사　　요
제1절 자력양성
1. 자력양성의 강령
2. 과거 조선인의 의뢰생활 조목
3.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
4. 자력양성의 조목
제2절 지자본위
1. 지자본위의 강령
2. 과거 불합리한 차별제도의 조목
3. 지자본위의 조목
제3절 타자녀교육
1. 타자녀교육의 강령

2. 과거 조선교육의 결함 조목
3. 타자녀교육의 조목
제4절 공도자 숭배
1. 공도자숭배의 강령
2. 과거 조선 공도숭배의 결함 조목
3. 공도자숭배의 조목
제6장 삼 학
제1절 정신수양
1. 정신의 요지
2. 수양의 요지
3. 정신수양의 목적
제2절 사리연구
1. 사의 요지
2. 이의 요지
3. 사리연구의 목적
제3절 작업취사
1. 작업의 요지
2. 취사의 요지
3. 작업취사의 목적
제7장 팔 조
제1절 진행사조
1. 신
2. 분
3. 의
4. 성
제2절 사연사조
1. 불신
2. 탐욕
3. 나
4. 우
제8장 삼대력
1. 수양력
2. 연구력
3. 취사력
제9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관계
제3편 수 행
제1장 일상수행의 요법
제2장 공부의 요도 정기훈련 과목 및 해석
1. 정신수양 정기훈련 과목의 해석
2. 사리연구 정기훈련 과목의 해석
3. 작업취사 정기훈련 과목의 해석
제3장 공부의 요도 상시훈련 과목 및 해석
1. 상시응용주의사항
2. 교무부에 와서 하는 행사
3.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의 대의
4.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교무부에 와서 하는 행사와의 관계
5.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제4장 일기법
1. 상시일기의 대요
2. 정기일기의 대요
제5장 염불법
1. 염불의 원리
2. 염불의 방법
3. 염불의 공덕
제6장 좌선법
1. 선의 원리
2. 좌선의 방법
3. 좌선의 공덕
4. 단전주의 필요
제7장 무시선법
1. 무시선의 해의
제8조 계 문
1. 보통급십계문
2. 특신급십계문
3. 법마상전급십계문
제9장 솔성요법
제10장 최초법어
1. 수신의 요법
2. 제가의 요법
3.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
4.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제11장 참회문(附偈)
제12장 고락에 대한 법문
1. 고락의 설명
2.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제13장 병든 가정과 그 치료법
제14장 영육쌍전문
제15장 법위등급과 그 해의

다. 九種 敎書 시대

이 시기는 「초기교서시대」에 발아하고 「불교정전시대」에 꽃피웠던 교서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결집한 교서의 중흥기로서 현행 사용되어지고 있는 『정전』『대종경』을 비롯한 9종교서들이 발행된 시기를 말한다. 이들 9종교서는 원기62년(1977) 10월 『圓佛敎全書』가 발행됨에 따라 이 『원불교전서』속에 체계적으로 결집되어 발행되었다. 『원불교전서』의 차례는 다음과 같으며 이 『원불교전서』의 차례에 따라서 9종교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원불교 전서』 차례

원불교 교전(圓佛敎敎典)
　정　전(正　典)
　대종경(大宗經)
불조요경(佛祖要經)
예　　전(禮典)
정산종사법어(鼎山宗師法語)
세　전(世典)
법 어(法語)
원불교 교사(圓佛敎敎史)
원불교 교헌(圓佛敎敎憲)
원불교 성가(圓佛敎聖歌)

1) 『圓佛敎 敎典』

원불교 교리의 정수를 이루는 원불교의 기본 경전으로서 『정전』과 『대종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기17년(1932)부터는 『육대요령』을, 원기18년(1933)부터는 『불교정전』을 기본경전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원기38년(1953) 5월 수위단회에서 교전발간을 결의하여 원기40년(1955) 5월에 정화사 발족으로 편찬을 추진하고 원기47년(1962) 9월 29일에 정식으로 발행되었다.

① 『正典』

소태산대종사가 원불교 교리의 강령을 밝힌 元經이다. 원기28년(1943), 교조 소태산대종사의 친감하에 『불교정전』으로 발행되어 소의경전으로 사용되어 오다 원기47년(1962) 『정전』으로 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정전은 초기교서에서 『불교정전』으로, 『불교정전』에서 『정전』으로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현행 『정전』과 『불교정전』을 비교해 보면 『불교정전』의 서문은 총서편이 되고 개선론은 『대종경』 등에 편입, 교의편이 다소 가감되어 『정전』 교의편을 이루고, 수행편이 다소 가감되어 『정전』 수행편을 이루었다.

『정전』은 「높고 크고 거룩하온 일원의 진리, 신앙문과 수행길로 줄 잡으시어, 사은 사요 삼학팔조 밝혀 주시니 원리강령 거룩할사 우리의 정전」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正　典』 목차

제1 총서편(總序編)
- 제1장 개교(開敎)의 동기(動機)
- 제2장 교법(敎法)의 총설(總說)

제2 교의편(敎義編)
- 제1장 일원상(一圓相)
  - 제1절 일원상의 진리(眞理)
  - 제2절 일원상의 신앙(信仰)
  - 제3절 일원상의 수행(修行)
  - 제4절 일원상 서원문(誓願文)
  - 제5절 일원상 법어(法語)
  - 제6절 게송(偈頌)
- 제2장 사은(四恩)
  - 제1절 천지은(天地恩)
  - 제2절 부모은(父母恩)
  - 제3절 동포은(同胞恩)
  - 제4절 법률은(法律恩)
- 제3장 사요(四要)
  - 제1절 자력양성(自力養成)
  - 제2절 지자본위(智者本位)
  - 제3절 타자녀 교육(他子女敎育)
  - 제4절 공도자 숭배(公道者崇拜)
- 제4장 삼학(三學)
  - 제1절 정신수양(精神修養)
  - 제2절 사리연구(事理硏究)
  - 제3절 작업취사(作業取捨)
- 제5장 팔조(八條)
  - 제1절 진행 4조(進行四條)
  - 제2절 사연 4조(捨捐四條)
- 제6장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 제7장 사대 강령(四大綱領)

제3 수행편(修行編)
- 제1장 일상 수행의 요법(要法)
- 제2장 정기(定期)훈련과 상시(常時)훈련
  - 제1절 정기 훈련법
  - 제2절 상시 훈련법
  - 제3절 정기 훈련법과 상시 훈련법의 관계
- 제3장 염불법(念佛法)
- 제4장 좌선법(坐禪法)
- 제5장 의두 요목(疑頭要目)
- 제6장 일기법(日記法)
- 제7장 무시선법(無時禪法)
- 제8장 참회문(懺悔文)
- 제9장 심고(心告)와 기도(祈禱)
- 제10장 불공(佛供)하는 법
- 제11장 계문(戒文)
- 제12장 솔성요론(率性要論)
- 제13장 최초 법어(最初法語)
- 제14장 고락(苦樂)에 대한 법문
- 제15장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 제16장 영육 쌍전 법(靈肉雙全法)
- 제17장 법위 등급(法位等級)

② 『大宗經』

소태산대종사의 일대 언행을 수록한 경전으로서 소태산대종사 당대의 제자들이 수필했

던 것을 원기47년(1962) 정화사에서 편찬 발행하였다. 전체구성은 제1 서품에서 제15 부촉품까지 총 15품 547장으로 되어 있고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대종경』 목차

제1 서 품(序 品)
제2 교의품(教義品)
제3 수행품(修行品)
제4 인도품(人道品)
제5 인과품(因果品)
제6 변의품(辨疑品)
제7 성리품(性理品)
제8 불지품(佛地品)
제9 천도품(薦度品)
제10 신성품(信誠品)
제11 요훈품(要訓品)
제12 실시품(實示品)
제13 교단품(教團品)
제14 전망품(展望品)
제15 부촉품(附囑品)

2) 『佛祖要經』

원불교의 보조경전으로서 원불교사상과 관련이 깊은 불경과 조사의 글들을 수록하여 원불교 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원기50년(1965) 원불교 정화사에서 편찬 발행 하였는데 각 경마다 의역과 원본이 실려있다. 수록 내용은 소태산대종사가 대각을 이룬 후 몽감으로 구해보고 연원을 서가모니불에게 정했다는 『金剛般若波羅密經』과 각종 각파에서 모두 받드는 『般若波羅密多心經』 최초의 東傳 불경으로 되어있는 『四十二章經』, 인과경의 종요인 『賢者五福德經』과 『業報差別經』, 보조의 『修心訣』, 보명의 『牧牛十圖頌』 그리고 몽산의 「休休庵坐禪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 5가지 經과 3가지 論은 모두 소태산대종사가 친히 선정하여 『불교정전』에 편입시켰다. 현행 『불조요경』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불조요경』 목차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密多心經)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현자오복덕경(賢者五福德經)
업보차별경(業報差別經)
수심결(修心訣)
목우십도송(牧牛十圖頌)
휴휴암좌선문(休休庵坐禪文)

3) 『圓佛教禮典』

원불교 예전의 근원은 원기11년(1926) 발행된 『新定儀禮』와 원기20년(1935)에 발행된 불법연구회시절의 『불법연구회예전』이다. 현행 예전은 종래 예전을 더욱 수정 보강하여 원기53년(1968)에 발행되었는데 이러한 『원불교 예전』의 구성은 맨 먼저 총서편이 있고 이어서 제1 통례편, 제2 가례편, 제3 교례편으로 되어 있다. 총서편에서는 예의 정의, 근본 및 특성과 개혁

의 필연성 등이 밝혀져 있고, 통례편에서는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원만하게 맺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예의 규범으로 정하고 있으며, 가례편에서는 가정에 있어 인간의 출생으로부터 성년이 되어 결혼을 하고 회갑을 거쳐 일생을 마쳐서 제사에 이르는 인간생활에 대한 존엄한 예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례편에서는 교당에서 이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헌신 봉공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교단에서 종교적으로 행하는 존엄한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원불교 예전』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원불교예전』 목차

총서편(總序編)
제1 통례편(通禮編)
제1장 총설(總說)
제2장 평거(平居)
제3장 태도(態度)
제4장 의제(衣制)
제5장 경례(敬禮)
제6장 기거(起居)와 진퇴(進退)
제7장 언어(言語)와 응대(應對)
제8장 수수(授受)와 진철(進撤)
제9장 방문(訪問)과 응접(應接)
제10장 초대(招待)
제11장 식사(食事)
제12장 환영(歡迎)과 송별(送別)
제13장 축하(祝賀)와 조위(吊慰)
제14장 소개(紹介)와 증답(贈答)
제15장 통신(通信)과 교통(交通)
제16장 공중(公衆)과 공용(公用)
제17장 국민(國民)과 국제(國際)
제18장 염치(廉恥)와 신의(信義)
제2 가례편(家禮編)
제1장 총설(總說)
제2장 출생(出生)
제3장 성년(成年)
제4장 혼인(婚姻)
제5장 회갑(回甲)
제6장 상장(喪葬)
제7장 재(齋)
제8장 제사(祭祀)
제3 교례편(敎禮編)
제1장 총설(總說)
제2장 봉불(奉佛)
제3장 법회(法會)
제4장 득도(得度)
제5장 은법 결의(恩法結義)
제6장 승급(昇級)
제7장 대사(戴謝)
제8장 봉고(奉告)
제9장 특별 기도(特別祈禱)
제10장 경축(慶祝)
제11장 교회장(敎會葬)
제12장 대재(大齋)
제13장 교의(敎儀)
부(附)·예문편(禮文編)
제1부 통용 경문(通用經文)
제2부 가례 예문(家禮禮文)
제3부 교례 예문(敎禮禮文)
제4부 표기·위패·묘위(標旗·位牌·廟位)

4) 『鼎山宗師法語』

정산종사 송규의 친저인 『世典』과 그의 법설인 『法語』가 수록된 교서로서 원기57년

(1972) 정화사에서 편차 발행하였다. 제1부는 정산종사가 편차를 친히 정하고 요지를 친술하여 대종사의 교의를 세간과 인간생활에 더욱 밀착시켜 태교로부터 천도에 이르기까지 인생일대의 도리강령을 밝힌 『세전』이 수록되어 있고, 제2부는 초창기 대종사를 받들 때부터 교단을 이끄는 동안 수시로 설한 법문들을 간추리고 다듬어 놓은 『법어』가 수록되어 있다.

『세전』과 『법어』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세 전』 목차

제1장 총서(總序)
제2장 교육(教育)
제3장 가정(家庭)
제4장 신앙(信仰)
제5장 사회(社會)
제6장 국가(國家)
제7장 세계(世界)
제8장 휴양(休養)
제9장 열반(涅槃)
제10장 통론(通論)

『법 어』 목차

제1 기연편(機緣編)
제2 예도편(禮道編)
제3 국운편(國運編)
제4 경륜편(經綸編)
제5 원리편(原理編)
제6 경의편(經義編)
제7 권도편(權道編)
제8 응기편(應機編)
제9 무본편(務本編)
제19 근실편(勤實編)
제11 법훈편(法訓編)
제12 공도편(公道編)
제13 도운편(道運編)
제14 생사편(生死編)
제15 유촉편(遺囑編)

5) 『圓佛教教史』

『원불교교사』는 『회보』 37호(원기22년 12월발행)로부터 49호(원기23년 11월발행)까지 발표된 정산 송규의 『창건사』의 내용을 거울로 하고, 그 이후 원기50년(1965)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의 내용까지를 상세히 기록하여 원기60년(1975) 9월 발간되었다.

정산종사는 『창건사』 서문에서

「역사는 세상의 거울이라 하였나니,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일의 흥망성쇠가 다 이 역사에 나타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역사를 보는 이가 다만 문자에 의지하여 地名이나 人名이나 年代만 보고 잘 기억하는 것으로 능히 역사의 眞面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나니, 반드시 그 때의 대세와, 그 주인공의 심경과, 그 法度조직과, 그 실행 경로를 잘 해득하여야만 능히 역사의 진면을 볼 수 있고, 내외를 다 비치는 거울이 될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 회상은 과연 어떠한 사명을 가졌으며,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이며, 대종사는 과연 어떠한 성인이시며, 법은 과연 어떠한 법이며, 실행 경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으며,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결실될 것인가를 잘 연구하여야 할 것

이니라.」

하였다. 이에따라 『교사』의 내용은 먼저 동방의 새 불토인 한반도의 내력과 선지자들의 자취와 말세말법의 현상을 대략 더듬고, 『창건사』를 기저로하여 새 부처님 소태산대종사의 출세기연과 성도경로를 기술한 다음, 제생의세의 경륜아래 첫 교화를 배풀고 회상건설을 정초하며 새 교법을 초안한 후 새 회상의 창립을 공개한 경로를 살피고 있다. 그리고 소태산대종사의 교법과 교제를 정비한 후 열반하매 정산종사가 법등을 이어 교단체제를 형성 완비하여 보본사업을 주재하며, 모든 사업기관을 확립하며 교전의 편수, 삼동윤리의 선포 등으로 일원세계 건설의 터전을 다진 경과를 살피고 정산종사 열반 후 교헌에 따라 대산종법사를 추대하고 대중이 합력하여 교전교서의 결집 발간, 법위 향상운동, 종헙참여, 해외포교, 제2차 보본사업, 반백년 기념대회 등으로 결실의 성업에 정진한 개교 반백년동안의 대체 과정을 살피고 있다. 또한 서설에서 교사편찬의 목적을 「대종사께서 일찌기 예시하신 사오십년 결실의 자취를 대관하고 사오백년 결복 향한 앞으로의 무궁한 전진에 반조하는 거울을 삼게 하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교사의 총 목차는 다음과 같다.

『원불교 교사』 목차

제1편 개벽(開闢)의 여명(黎明)
제1장 동방(東方)의 새 불토(佛土)
제2장 소태산대종사(少太山大宗師)
제3장 제생 의세(濟生醫世)의 경륜(經綸)
제4장 회상 건설(會上建設)의 정초(定礎)
제5장 교법(敎法)의 초안(草案)
제2편 회상(會上)의 창립(創立)
제1장 새 회상(會上)의 공개(公開)
제2장 새 제도(制度)의 마련
제3장 교단 체제(敎團體制)의 형성(形成)
제4장 끼쳐 주신 법등(法燈)
제5장 교단 체제(體制)의 완비(完備)
제3편 성업(聖業)의 결실(結實)
제1장 성업 봉찬(聖業奉贊)사업
제2장 목표 사업 기관(目標事業機關)의 확립
제3장 일원 세계(一圓世界)의 터전
제4장 결실 성업(結實聖業)의 전진(前進)
제5장 개교 반백년(開敎半百年)의 결실
부(附) : 교사별록(敎史別錄)

6) 『圓佛敎敎憲』

『원불교교헌』은 원불교 교단운영의 기본방침과 제도 및 기구와 그 하는 일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같은 교헌의 형성과정은 제1기 『불법연구회취지규약』 시기로부터 제7기 현행 『원불교교헌』까지 대략 7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제1기 : 『佛法硏究會趣旨規約』**과 『佛法硏究會組團規約』의 시기로서 원기12년(1927) 처음으로 『불법연구회규약』이 간행되었다. 총 6장 22조로 구성된 이 규약은 제1장 총칙에서 교체를 『佛法硏究會』라 하고 원불교 교단의 목적을 삼강령 팔조목의 수행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

어서 임원, 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입과 탈퇴, 회계, 기타의 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원기16년(1931) 발행된 『불법연구회규약』은 원칙 14장 세칙 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위단의 조직, 선거방식, 회원, 가결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다.

나. **제2기** : 원기19년(1934) 제1차 회규개정을 통하여 총재, 회장, 7부장제가 종법사, 회장, 2원 10부제로 되었다. 여기서의 특징은 삼강령 팔조목의 공부로써 사은사요의 제생의세하기를 목적한다는 것과 교화를 주관할 교정원과 사업을 주관할 서정원을 별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기27년(1942) 제2차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총 12장 250조로 구성되어 있고, 종법사는 본부, 지부의 연합회가 선거하고 수위단회가 회규에 나타나며 기구는 종법사, 회무총장, 5부장으로 되어 있다.

다. **제3기** : 『원불교교헌』 제정기로서 원기30년(1945) 8·15민족 광복과 함께 원기32년(1947) 교명을 《圓佛教》라 개칭하고 『원불교교헌』도 개정 원기33년(1948) 4월 22일의 중앙교의회의 의결로 반포되었다. 개정 교헌의 특징은 교명을 會에서 教로 바꾸고 교정원 4부, 감찰원 2부제와 최고결의기관으로 중앙교의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 **제4기** : 『원불교교헌』 제1차 개정기로서 원기44년(1959) 총 11장 86조로 구성되어 있고 교정위원회가 신설되고 수위단회가 교단 최고결의기관으로 등장한다. 또 교정원을 교단 최고집행기관, 감찰원을 교단의 최고감찰기관이라 하고 있다.

마. **제5기** : 『원불교교헌』 제2차 개정기로서 원기49년(1964) 총 10장 90조로 구성되어 있고 종법사의 교화주재권, 상벌시행권, 교규제정권, 교서편정의 권한 등이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교정위원회의 양원장 선거권이 수위단회로 옮겨졌다. 또한 중앙교의회가 교산을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대체적으로 기구의 변동과 선거기관의 변경, 위임사항을 이동, 권한의 규제 등이 교헌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바. **제6기** : 『원불교교헌』 제3차 개정기로서 원기62년(1977) 3월 1일에 전문을 개정 공포하였다. 전문과 총 8장 91조로 구성되어 있는 3차개정의 주된 내용은 2차개정의 제2장 교의, 제3장 교화가 제1장 총강속에 포함되었고, 2차개정의 제6장 교구와 지부지소의 명칭을 3차개정시에는 제5장에 교구와 교당으로, 또한 제3장 사업기관과 단체는 제6장 기관과 단체로 명칭을 다소 변경하고 기관의 설치도 교화, 교육, 자선 및 훈련, 복지, 문화, 봉공의 다양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제7기** : 『원불교교헌』 제4차 개정기로서 원기72년(1987) 11월 15일에 전문을 개정 공포하였다. 전문과 총 9장 91조로 구성되어 있는 4차개정의 주된 내용은 전문에 일원주의사상에 입각한 공화제도를 천명한 것과 제1장 제2절 교의편에서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서가모니불을 연원불로 하며 본교의 교조는 소태산대종사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종법사의 선거를 수위단회에서 하고 그 임기를 6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해 중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과 제8장에 교헌개정에 대한 장을 따로이 마련했다는 점 등이다.

현행 시행중인 4차 개정한 『원불교교헌』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원불교교헌』 목차

前文
제1장 총강
제1절 종지와 목적
제2절 교의
제3절 교화
제2장 교단과 교도
제3장 교제
제4장 중앙총부
제1절 종법사
제2절 수위단회
제3절 중앙교의회
제4절 교정원
제5절 감찰원
제5장 교구와 교당
제6장 기관과 단체
제7장 교산과 회계
제8장 교헌개정
제9장 부칙

7) 『圓佛敎聖歌』

성가는 원불교의 성업을 찬미하는 노래로써 이는 원기21년(1936) 9월 발행된 『회원수지』에 수록되어 있는 「불법연구회(성가120장)」가 그 시초이다. 그후 원기38년(1953) 『원불교성가』 제1집이 총 74곡을 수록하여 발행되었고 이것이 원기53년(1968) 발행된 현행 성가에 포함되게 되었다. 성가는 소태산대종사, 정산종사를 비롯한 교단내 인사들에 의해 작사되고 교단 및 국내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되었다.

총 11부 126장을 수록하고 있는 성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불교성가』 목차

제 1 부 「새 회 상」 : 새 회상을 찬송하고 敎를 대표하는 성가
제 2 부 「찬 송」 : 신앙의 대상과 대종사 및 열위 선영을 찬송하는 성가
제 3 부 「교 단」 : 교단의 중심기관과 중요 조직을 찬양 격려하는 성가
제 4 부 「법 회」 : 각종 법회와 경절을 축하하는 성가
제 5 부 「의 식」 : 각종 의식에 주로 쓰이는 성가
제 6 부 「교 리」 : 교의를 천명하는 성가
제 7 부 「신 조」 : 표어 강령 등 신조를 나타내는 성가
제 8 부 「수 행」 : 수행을 권장하고 체잡는 성가
제 9 부 「일 과」 : 신앙 수행으로 일관되는 일과를 찬미하는 성가
제 10 부 「낙 도」 : 법열의 심경과 증득한 경지를 읊은 성가
제11부 「무궁한성업」 : 교단의 무궁한 성업을 찬양하는 성가

2. 敎理의 變遷

원불교의 기본교리는 『정전』 제2 교의편과 교리도에 명시된 바처럼 일원상을 종지로 하여 신앙문이며 인생의 요도인 사은 사요와, 수행문이며 공부의 요도인 삼학 팔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같이 구성되어 있는 원불교 교리의 변천과정은 1장 교서의 변천을 기술하면서 교리의 역사적 추이가 대체적으로 드러남을 인식할 수 있었다. 2장에서는 원불교 교리의 근본이 되는 일원상과 사은 사요·삼학 팔조의 형성과정을 논하고 원불교 교리의 진수를 도식에 의해 표현한 교리도와 원불교 전체교리의 정신을 4대별하여 놓은 사대강령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一圓相의 形成過程

일원상은 소태산대종사의 대각에 의해 밝혀진 진리의 상징이며 원불교의 최고 종지로써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다. 원불교 중앙총부 대각전을 위시하여 각 기관 및 교당의 법당에는 법신불 일원상인 「○」이 봉안되어 있으며, 각 교도들의 가정에 까지도 봉안되어 있다. 이 일원상이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받들어지게 된 과정을 문헌이나 구전을 참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소태산대종사는 우주에 편만한 하나의 진리를 대각하고, 그것을 일원상의 진리며 모든 종교의 근본이라고 하고, 그 진리는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바탕으로 한 두렷한 기틀을 지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소태산대종사가 「○」을 그려 신앙의 대상을 삼은 기록은 문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원기3년(1918) 10월에 영광 옥녀봉 아래 최초의 교당인 구간도실을 건축할 때 대종사는 그 상량에 「梭圓機日月 織春秋法呂」라 쓰고 그 아래에 「松收萬木餘春立 溪合千峰細雨鳴」이라 쓰고 있어 이 표현에서 일원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원기4년(1919) 방언공사를 마치고 소태산대종사는 정산종사에게 一圓을 韻으로 하여 시를 짓게 하였고, 동년 8월 금산사에 있을 때 그 벽상에 일원상을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후 원기5년(1920) 4월에 변산 봉래정사에서 교강을 초안할 때 佛性一圓相을 강조하였으며, 교강 발표 이후 원기17년(1932)까지는 일원상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원기17년(1932) 5월 김제출장소 법회시에 朴大完교무가 「사은의 본체는 一個의 일원상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으며, 동년 6월호 『회보』에 「단결의 위력」이란 정산종사의 논문 가운데 一圓이 게재되었고, 동년 7월에 정산종사의 「圓覺歌」가 발표되었다. 이어서 원기20년

(1935) 4월에 발간된 『조선불교혁신론』중에 불성 일원상 신앙을 교설하고 있으며, 동년 8월에 발표된 『불법연구회예전』중에는 心佛 服標를 패용토록 했으니 심불은 곧 「○」으로 도표화한 것이다.

원기20년(1935) 4월 중앙총부 대각전을 건립하고 낙성식 때는 법당에 일원상을 봉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부터 일원상의 교리체계 형성은 활발해졌음이 문헌상에 나타나고 있다. 원기22년(1937) 4월 정산종사의 「신앙과 수양」이라는 글 속에 「우리가 심불 일원상을 숭배하고 신앙할 것 같으면…」하고 기술했고, 동년 9월 하선 해제식에서 소태산대종사는 「일원상을 模本하라」는 법문을 내렸는데 이 법문의 내용에 「삼학 팔조와 사은 사요로 일원상을 체받는다」는 표현이 있는 바 이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교리강령으로 삼아왔던 삼학 팔조의 수행문과 사은 사요의 신앙문은 결국 이 일원상 진리의 내용인 것이며 또는 이 일원상 진리의 신앙과 수행의 방법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어서 동년 9월 정산종사는 「일원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을 신앙하고 숭배하며 체받고, 이용하는 법과 총론으로 나누어 일원상에 대한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소태산대종사는 원기20년(1935)을 전후해서 일원상 숭배를 강조하여 보급시키므로써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일러 주었던 것이다. 원기23년(1938) 7·8월호 『회보』에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소태산대종사의 법설이 실려 있고, 이때를 전후하여 대각전에도 일원상이 봉안되었다고 전해진다. 동년 11월호 『회보』에 「심불봉안에 대하여」라는 규정을 발표하므로서 비로소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봉안하는데 일률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년 12월 동선중에 「심불 일원상 내력 및 서원문」이라는 법문을 직접 초안해서 발표하여 현 일원상장의 구성이 거의 이루어지게 되고 그후 일원상 교리는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는 일정의 트집에 따라 소태산대종사는 서대원을 시켜 「불교의 일원상의 유래를 찾아내어 우리 일원상에 연결시켜라」고 하여 불교 선가의 일원상의 유래를 찾아내어 원기24년(1939) 4·5·6월 『회보』에 「일원상의 유래와 법문」이란 글이 나왔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원불교 일원상은 불교의 일원상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소태산대종사의 대각에 의해 얻어진 독창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진다.

원기24년(1939) 11월에 발행된 『불법연구회 근행법』에서는 일원상 아래에 「不增不減自金剛身去身來本三昧」라 썼고, 원기25년(1940) 재판시에는 「古佛未生前 凝然一相圓, 釋迦猶未會 迦葉豈能傳」이란 자각선사의 표현을 인용하였고, 불법연구회 교강에도 이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원기26년(1941) 1월에는 대중에게 게송으로 일원상의 도리를 보였고, 원기28년(1943) 3월 『불교정전』이 발행되기까지 일원상의 진리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 작업은 계속되었다. 『불교정전』에는 「法身佛一圓相」이라 표현하고 교리도 위에 일원상을 그렸다. 또한 일원상의 유래와 게송이 포함되어 있고 일원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므로서 완성된 교의로써 체계화 되었던 것이다. 원기47년(1962)에 발행한 『원불교정전』 이래 一圓相이라 표현하여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있다. 이와같이 소태산대종사가 교화를 하면서 일원상을 제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28년간이라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전개하였는데 이것을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소태산대종사가 깨달은 진리를 몇몇 수제자들에게 일원상의 본뜻을 얘기했을 뿐 직접 그 도리를 說示하지 않아 공개된 기록을 찾기 힘든 시기이다. 둘째 단계는 일원상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지만 대중에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인식시키려 했던 점과 신앙의 대상이며 수행의 표본으로 삼도록 설교를 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세째 단계는 원기24년(1939)에서 원기28년(1943)까지 일원상을 종지로한 교리체계가 완성된 단계로써 그것을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으로 부각시키고, 일원상을 만사만리의 근원으로 받들게 된 단계로 볼 수 있다.

나. 四恩四要의 形成過程

사은사요는 원불교 교리의 신앙과 수행의 두 문가운데 신앙문에 속하며 인생이 알고 걸어가야 할 긴요한 법으로써 인생의 요도이다. 사은은 「天地恩, 父母恩, 同胞恩, 法律恩」으로 이는 일원상 진리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은에 입각한 존재분류이며 사요는 「自力養成, 智者本位, 他子女敎育, 公道者崇拜」로서 차별세계를 평등세계로 개조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네가지 요긴한 법이다. 이러한 사은사요 교리가 교단사 속에서 어떻게 변천 형성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이 사은사요 교리형성의 원천은 소태산대종사 대각 직후인 원기원년(1916) 5월 스스로 구상하였던 최초법어중의 제가의 요법과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에 근거한다.

둘째, 원기15년(1930) 4월 변산에서 소태산대종사는 처음으로 원불교의 교리의 강령을 제정 발표하였는데 이 사은 사요는 인생의 요도로서 3강령 8조목인 공부의 요도와 함께 제정 발표되었다. 특히 이 사은 사요는 「인생으로서 마땅히 행할 道로써 세상을 구제할 요법이 된다」라고 하였다.

셋째, 원기17년(1932)에 발행한 원불교 제1차 기본교서인 『육대요령』의 제1장에서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라는 제목으로 명시된다.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현 정전의 내용과 같으나, 다만 4요의 제목에 있어서는 「男女權利同一, 智愚差別, 無子女者他子女敎養, 公道憲身者以父事之」로 되어 있다.

넷째, 원기25년(1940)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3년간에 걸쳐 편집을 완성하고 원기27년(1942) 12월에 인쇄에 부쳐 원기28년(1943) 3월 그 인쇄 초판이 나와 소태산대종사가 친히 본 제2차 기본경전인 『불교정전』(발행배부는 원기29년 3월)에는 교의편중에 일원상 章과 삼학 팔조 章과 아울러 사은 사요 章이 교리의 강령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사요에 있어 그 내용의 의

미를 폭넓게 드러내기 위하여 「男女權利同一을 自力養成으로, 智愚差別을 智者本位로, 無子女者他子女敎養을 他子女敎育으로, 公道憲身者以父事之를 公道者崇拜로」 개칭하였을 뿐이다.

다섯째, 원기47년(1962) 9월 『정전』과 『대종경』의 합간으로 이루어진 현 『원불교교전』의 정전에도 교의편에 교리의 강령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 三學八條의 形成過程

이 삼학 팔조 교리는 사은 사요의 교리와 함께 원불교 교리의 2대 강령이다. 삼학 팔조는 수행문인 공부의 요도로서 이 교리의 형성과정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삼학 팔조 교리형성의 원천은 소태산대종사 대각후인 원기원년(1916) 5월 심중에 구상하였던 최초법어중의 수신의 요법과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에 근거한다.

둘째, 원기5년(1920) 4월 변산에서 소태산대종사는 처음으로 원불교의 교리의 강령을 제정 발표하였는데 이 삼학 팔조는 三綱領 八條目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발표되었다. 특히 이 삼강령은 공부인으로서 마땅히 밝을 道로써 생령을 제도하는 요법이 되며 팔조목은 삼강령공부를 운동케 하는 요법이라 밝히고 있다.

셋째, 이 삼학팔조의 교리가 처음으로 문헌에 명시되기는 원불교 최초의 기본교서인 『불법연구회규약』 (원기12년판)의 연구의 강령건에 「1. 정신수양 2. 사리연구 3. 작업취사」라는 제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시의 진행건에 「1. 信 2. 忿 3. 疑 4. 誠」이라는 제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연구시의 사연건에 「1. 不信 2. 貪慾 3. 懶 4. 愚」라는 제목으로 나타나 있다.

이 삼학(삼강령)의 기본 의미를 『불법연구회규약』의 본회의 취지설명章에 정신수양의 의미를 「또는 수양이 충분치 못함인지 분수지키는데 안정한 태도가 적으며」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사리연구의 의미를 「또는 연구력이 완실치 못함인지 사실을 놓고 허위에 끌리는 바가 많으며」라고 되어 있으며 이어 작업취사의 의미를 「또는 응용하는데 주의심이 적어서 그러 하는지 실행하는 바가 적으니」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정신수양의 기본적인 의미는 분수에 안정하라는 의미가 되며 사리연구의 기본적인 의미는 사실과 허위를 정확히 분석하라는 의미가 되며 작업취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응용하는데 주의심으로 하라는 의미가 된다.

넷째, 원기12년(1927)판인 『수양연구요론』의 제3 연구의 강령 章에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정신을 수양하면 마음이 편안하야 일이 없어지고 심령이 밝아진다하니 연구할 사, 사리를 연구하면 일과 이치가 밝아진다하니 연구할 사, 작업을 취사하면 넉넉하고 급함이 곳을 얻어 골라 맞으며 시비이해가 밝아지며 세세생생 끊임이 없는 부귀빈천이 드러난다 하니 연구할 사」로 되어있다.

이어서 同書 제4 연구의 진행조건장에 「信 忿 疑 誠, 信이라 하는 것은 선악간 마음을 정한

다하니 信의 결과를 연구할 사, 忿이라 하는 것은 선악간 마음을 일어내여 모든 일을 권면한다 하니 忿의 결과를 연구할 사, 疑心이라 하는 것은 무식의 주인이니 의심이 나고보면 즉시에 알아보라 하였으니 의심의 결과를 연구할 사, 精誠이라 하는 것은 일을 이루는 땅에 간단이 없는 마음이니 정성의 결과를 연구할 사」로 되어있다.

또한 同書 제5 연구의 사연조건장에 「不信 貪慾 懶 愚, 不信이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立志 못한 가운데 불신이 되나니 불신의 본말을 연구할 사 貪慾이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過하고 보면 貪慾이라 하나니 貪慾의 본말을 연구할 사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이루는 땅에 挽執하는 것이 懶가 되나니 懶의 본말을 연구할 사, 愚라 하는 것은 사람 망하는 바탕이니 愚의 본말을 연구할 사」로 되어있다.

다섯째, 원기17년(1932)판인 『육대강령』에는 사은사요와 함께 제2장 공부의 요도에 삼강령의 대지, 팔조목의 대지, 공부의 요도 삼강령의 내역, 팔조목의 내역, 삼강령 팔조목으로 공부한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대체적인 면에서 현 『정전』의 삼학 팔조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여섯째, 원기28년(1943) 3월 인쇄 초판이 나오고 원기29년(1944) 3월에 발행배부된 『불교정전』에는 이제까지 써왔던 三綱領의 제목을 三學으로 개칭하여 일원상과 사은 사요와 함께 교의편의 강령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은 현 정전의 내용과 동일하며 그 삼학의 제목에 불교의 戒定慧와 관련시켜 정신수양을 정으로 사리연구를 慧로 작업취사를 戒로 연결시키고 있다.

일곱째, 원기47년(1962) 9월에 발행된 『원불교교전』 『정전』편에는 제4장 삼학 제5장 팔조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불교정전』의 내용과 같다. 다만 「三大力」이라는 別節을, 정신수양절에는 정신수양의 결과항으로 삽입하고, 사리연구절에는 사리연구의 결과항으로 삽입하고 작업취사절에는 작업취사의 결과항으로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불교정전』에 삼학을 계정혜 삼학으로 연결시켰던 것을 삭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라. 敎理圖의 形成過程

교리도는 원불교 교리의 진수를 간단한 도식에 의해 표현한 것이다. 일원상의 진리를 최고 종지로 하여 사은 사요를 신앙문으로 하고 삼학 팔조를 수행문으로 하여 상호 연관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상호 관련이 뚜렷하므로 모든 교리와 사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신앙과 수행의 길을 일치시켜 자력과 타력을 병진시키고 있다. 이 교리도는 원기28년(1943) 1월에 소태산대종사가 친히 제정하여 공포하면서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 있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교리도의 형성과정은 4단계의 변화를 거치며, 교서의 변천속에서 그 맥을 찾아볼 수 있다. 교리도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기17년(1932)『육대요령』에 나타난 교리도는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강령 팔조목과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인 훈련의 과목의 세가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육대요령』의 교리도는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와 아울러 그 구체적 실천방법인 훈련의 조목을 표시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으며『육대요령』의 교리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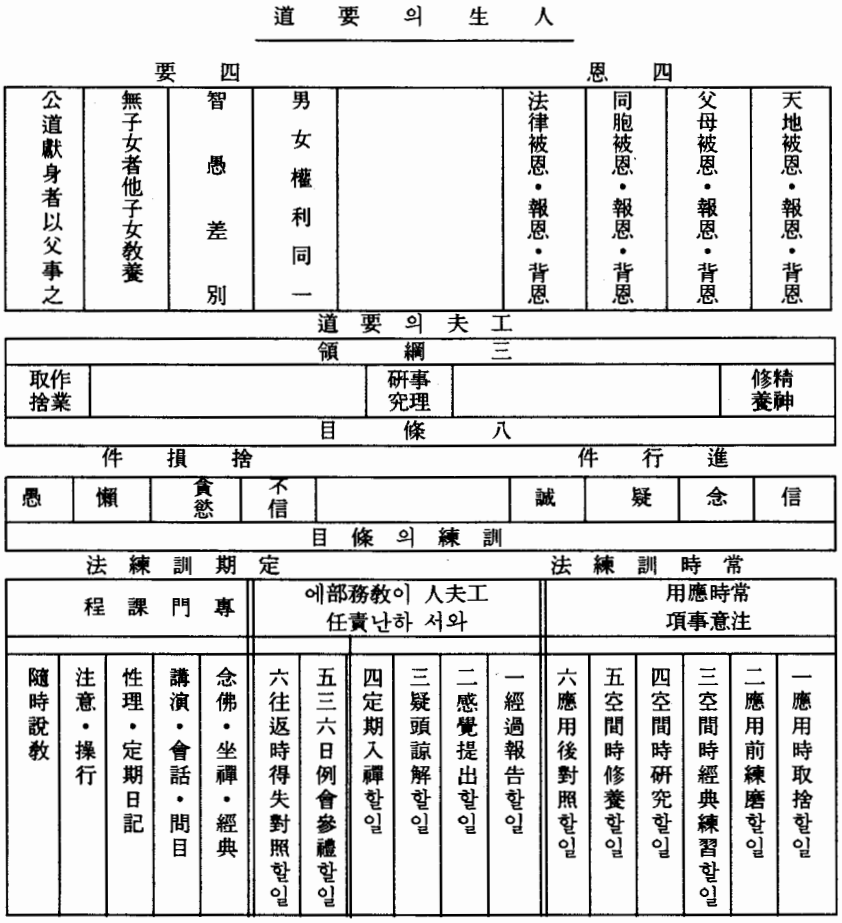

敎 理 圖

둘째, 원기28년(1943)『불교정전』에 나타난 교리도는 최고 종지인 일원상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문에 사은과 보은의 강령이 밝혀져 있고 수행문에 삼학팔조를 밝혔으며 이 신앙문과 수행문의 4면에 사대강령을 표시하고 있다. 이『불교정전』의 교리도는 신앙문의 귀결을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표현하고 수행문의 귀결을 무시선 무처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신앙문에 사

요 대신 보은의 강령을 표시했다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불교정전』의 교리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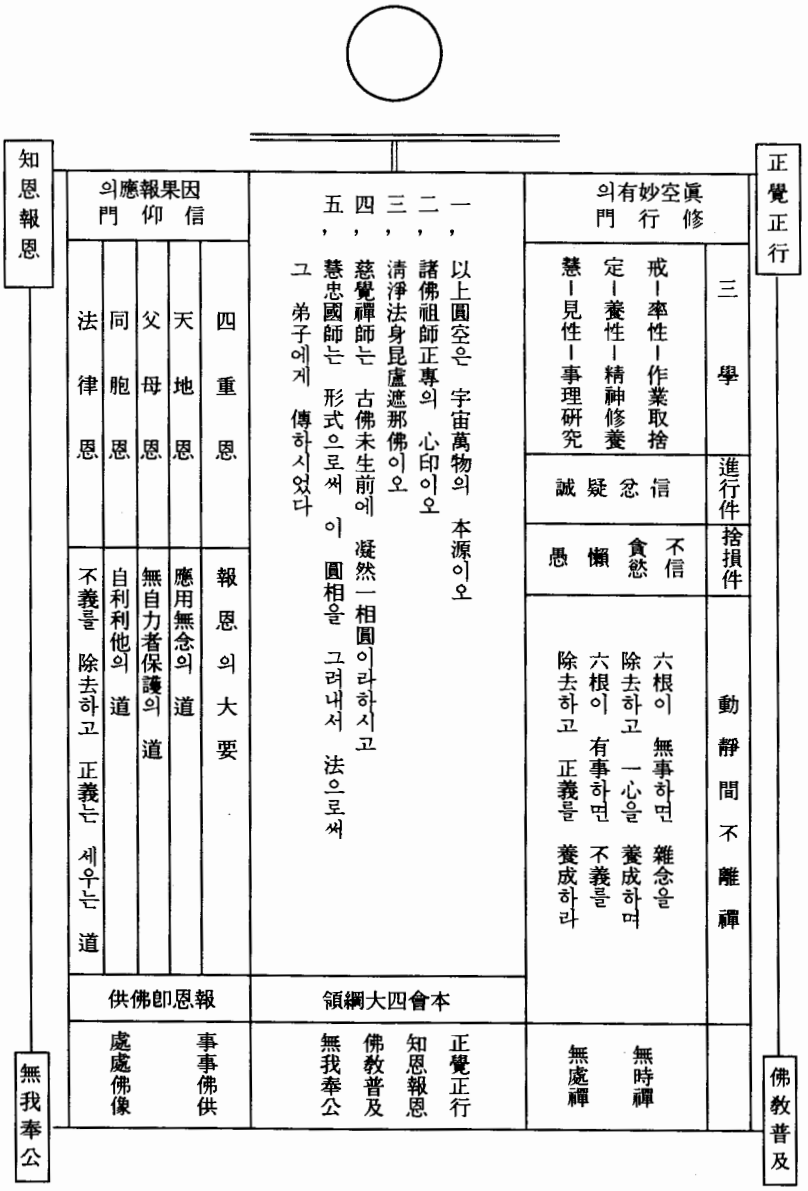

敎 理 圖

셋째, 원기28년(1943) 12월 『불법연구회근행법』에 나타난 교리도는 『불교정전』의 교리도와 대체적으로 같으나 신앙문에 兩大主恩으로 「○恩」과 「佛恩」을 삽입하였으며 사대강령의 무아

봉공과 불교 보급을 각각 하단 앙편에 「무아봉공 불교보급」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불법연구회근행법』에 나타난 교리도는 다음과 같다.

佛法硏究會敎理圖

네째, 원기47년(1962) 『원불교교전』에 나타난 교리도는 『불법연구회근행법』의 교리도와 대체적으로 같으나 게송을 넣어 일원종지의 성격을 밝히고 신앙문에 보은의 강령대신 사요를 넣었으며 사대강령 중에 「불교보급」을 「불법활용」으로 표현을 바꾼 점이 그 특색이다. 현행

『원불교교전』에 나타난 교리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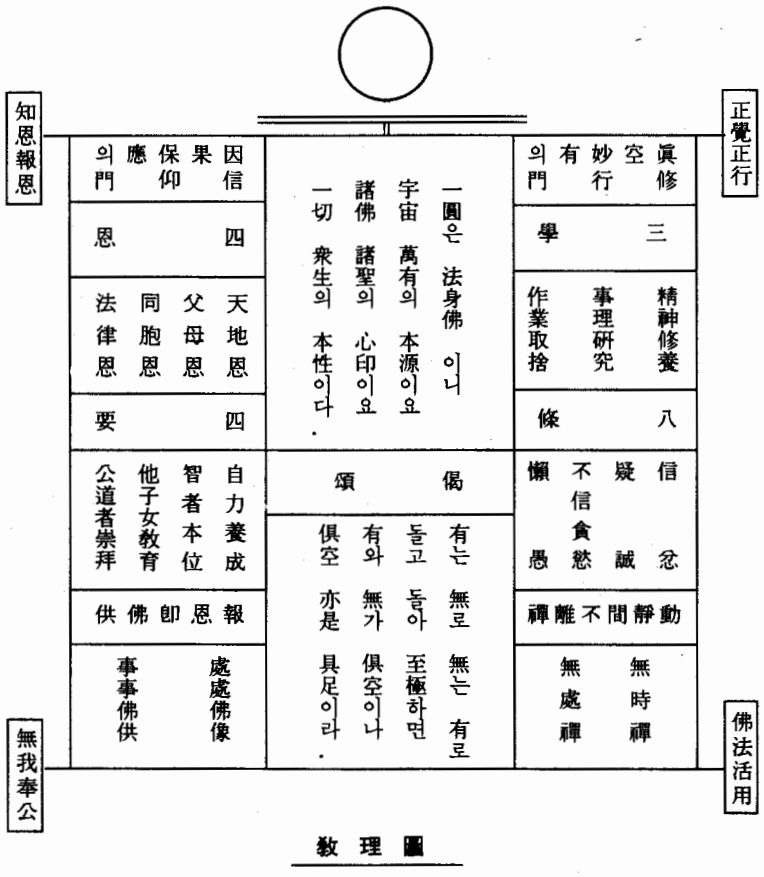

敎 理 圖

마. 四大綱領의 形成過程

원불교 교리는 법신불 일원상인 「○」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문과 수행문을 전개하였는데 신앙문은 인생의 요도를 밝혔고 수행문은 공부의 요도를 밝혔다. 이와같이 신앙과 수행의 양문을 통해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따라 각종 교리가 전개되어 2대 준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전체 교리의 정신을 집약하여 4대별하여 놓은 것이 正覺正行, 知恩報恩, 佛法活用 無我奉公의 四大綱領이다. 이 사대강령 법문이 설해진 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李恩錫교무의 기록에 의하면 「원기26년경(1941) 『불교정전』 편찬을 감시하러 나온 日人이 불법

연구회가 불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에 즉석에 나온 법문」이라는 정도가 그 모두이다. 어떻든 이때 설해진 사대강령은 전후 세차례의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현재의 형태로 정착하게 된다.

첫째, 원기28년(1943) 3월에 출간된 『불교정전』에 사대강령법문이 설해진 후 최초로 그 형태가 소개된다. 사대강령은 『불교정전』의 교리도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겸하고 있는데 정착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불교정전』의 교리도에서 사대강령은 거북이의 발 모습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의 사대강령은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교보급, 무아봉공의 네가지로서 교리도의 네발에 해당하는 부분과 교리도 중앙 하단부에 중복하여 제시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원기28년(1943) 12월 『근행법』 발행시에 佛法研究會教理圖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불교정전』과 『근행법』에 나타난 사대강령에 있어 내용상의 차이점은 正覺正行의 설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불교정전』에서는 「정각정행이라 하는 것은 일원의 진리 즉 불조정전의 심인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체받아서 眼耳鼻舌身意 六根을 작용할 때 不偏不倚無過不及한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라 하고 있는 데 비하여 『근행법』에서는 「정각정행이라 함은 원래에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각자의 본성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체받아서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원만행을 닦자는 것이요」라 하고 있어 『근행법』에서는 삼학의 측면에서 정각정행을 조명하여 원만행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표현상에 있어서도 『불교정전』시의 불교보급과 무아봉공을 『근행법』에서는 하단 양귀에 「불교보급·무아봉공」을 함께 표시함으로서 불교보급과 무아봉공을 강조한 듯한 인상을 엿볼 수 있다.

세째, 원기47년(1962) 9월, 현재의 교전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사대강령은 또 한차례의 변화를 겪게 된다. 교리도에서 보면 사대강령의 조목중 佛教普及이 不法活用으로 변화하고 중앙하단에 위치하고 있던 사대강령의 조목들이 삭제되었다. 또한 『정전』의 내용들이 대폭 수정됨과 아울러 사대강령도 교의편의 첫머리에 위치하던 것이 교의편의 맨 끝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져 사대강령 조목의 개별적 제시를 생략하고 「사대강령은 곧 정각정행·지은보은·불법활용·무아봉공이니」라고 하여 관사로 대치 시키고 있다.

특히 지은보은의 조항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例를 생각하고 많은 부분을 윤문하였으며 불교보급은 불법활용으로 바꾸고 그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무아봉공 이후에 「몰아 말하자면 정각정행을 하고 지은보은을 하고 불교보급을 하는 것은 무아봉공을 하기 위함이라」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있다.

Ⅳ. 制度의 變遷

1. 敎名의 변천과 의의

새회상 원불교의 紀元을 圓紀라 하고 소태산대종사의 大覺元年을 圓紀元年으로 하여 가산한다. 따라서 교단의 최초 성립을 원기원년 4월 28일(1919·병진 음력 3월 26일) 소태산대종사의 대각과 더불어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교공동체로서 형성된 것은 그해 7월경 소태산대종사의 대각소식을 듣고 모여든 40여명의 신도 무리중에서 8인의 표준제자를 정함으로부터 비롯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공동체는 초기로부터 團이라는 독특한 조직(天地와 八方을 상징한 10인 1團의 형태)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 조직은 조직의 통솔기능은 물론 종교공동체의 신앙 훈련기능도 수행하였다.

이후 창생구원을 위한 새 회상 건설의 전초적 준비기관 성격의 《저축조합》이 창설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른바 정관평 방언공사, 구수산 혈인기도 등의 초기교사가 이루어졌다. 이때까지 소태산대종사와 9인제자들의 종교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會上》이라 칭하였으며 외부에서는 저축조합이라고 불렀다(저축조합 당시 「대명국양성소좌우통달만국건판양생소」라는 임시교명을 가진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정산종사에 의해 술회되고 있으나, 敎史 또는 佛法硏究會創建史 등에는 일체의 언급이 없음).

원기4년(1919) 10월에는 기존의 저축조합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때 소태산대종사는 앞으로 모든 기록에 佛法의 명호를 사용토록 하는 동시에 佛法이 주체가 되는 새회상의 건설을 만천하에 천명하였다.

>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 데에 노력하라. 내가 진작 이 불법의 진리를 알았으나 그대들의 정도가 아직 그 진리 분석에 못 미치는 바가 있고, 또는 불교가 이 나라에서 여러 백년 동안 천대를 받아 온 끝이라 누구를 막론하고 불교의 명칭을 가진 데에는 존경을 받지 못할까 하여, 짐짓 법의 사정 진위를 물론하고 오직 인심의 정도를 따라 순서 없는 교화로 한갓 발심 신앙에만 주력하여 왔거니와, 이제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혜·복(慧福) 두 길을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뿐

만 아니라 불교는 장차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사·농·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이리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목(化被草木) 뇌급만방(賴及萬方)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되리라. 그대들이여! 시대가 비록 천 만번 순회하나 이같은 기회 만나기가 어렵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만났으며, 허다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드물거늘 그대들은 다행히 이 기회를 알아서 처음 이 회상의 창립주가 되었나니, 그대들은 오늘에 있어서 아직 증명하지 못할 나의 말일지라도 허무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지도에 의하여 차차 지내가면 멀지 않은 장래에 가히 그 실지를 보게 되리라.」

그후 원기9년(1924) 4월전까지 《불법연구회기성조합》이라는 임시조직과 명칭을 가지고 새 회상 창립을 위한 기초준비를 계속하였다.

마침내 원기9년(1924, 甲子年) 4월 전북 이리 소재 보광사에서 새회상 창립총회를 가지게 되는 바 여기서 《佛法硏究會》라는 교단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새 회상이 교단 최초로 공식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불법연구회》라는 교명은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 정식교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직접적인 탄압을 피하기 위한 방편적 성격도 있었다. 여하튼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을 포함해서 해방 이후까지 사용된 《불법연구회》라는 교명은 약 33년동안 사용되었으며 그 기간동안 새회상의 모든 체계는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해방이 되자 마침내 새회상은 교단의 체제를 크게 정비하면서 교명 역시 새 회상에 걸맞는 개칭이 논의되었다. 논의결과 《圓佛敎》라 내정하기에 이르렀고 원기32년(1947, 丁亥年) 1월에 국가에 《재단법인 원불교》라는 이름으로 정식 등록인가를 받음으로서 비로소 《圓佛敎》라는 새회상의 정식교명이 성립되었다. 1년후 원기33년(1948, 戊子年) 4월 교헌을 개정하고 아울러 교명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교명선포식을 가짐으로서 《圓佛敎》라는 정식교명은 완전한 공인을 얻기에 이르렀다.

정산종사는 새 회상의 정식 교명을 《圓佛敎》라고 정한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원(圓)은 곧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또한 만법의 실재인지라, 모든 교법이 원(圓) 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는 것이며, 불(佛)은 곧 깨닫는다는 말이요 마음이라는 뜻이니, 원(圓)의 진리가 아무리 원만하여 만법을 다 포함하였다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이는 다만 빈 이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圓)·불(佛) 두 글자는 원래 둘이 아닌 진리로서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가 있는 것이라.」

2. 교단 통치조직의 변천(헌규를 통해본)

가. 불법연구회 규약(원기9년)

(1) 목 차

Ⅰ. 본회의 유래
Ⅱ. 본회의 취지 설명
Ⅲ. 본회의 규약
제1장 총 칙
제2장 임 원
제3장 회 의
제4장 회원의 권리 의무
제5장 가입 및 탈퇴
제6장 회계 및 기타
Ⅳ. 본회의 세칙
1. 설법의식
2. 회원 봉명 순서
3. 기칠 식사 및 청결 규약
4. 임원선거규약
5. 사무인 처리사항
6. 상벌규약
7. 임원명의 순서
8. 회관내 각방명호
9. 회관내 거주인 출입규약
10. 입선 및 파선일자
11. 입선시 금기사항
12. 연구인 입선후 금지사항
13. 해제시 검사 규약
14. 연구인 출가 규약

(2) 교단의 비롯은 원기원년(1916) 4월 28일 소태산대종사의 대각으로부터 기원하지만 통치조직을 요하는 교단 공동체의 구성은 원기9년(1924) 불법연구회를 창립함으로부터 비롯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연구회는 창립총회와 함께 규약(規約)을 채택하였는 바 이로써 교단은 최초의 정형화된 통치조직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교단의 대표기관으로 총재와 회장을 두었는데 총재는 불법(佛法)에 정통하고 범사에 모범될 만한 자를 선정토록 하였다. 또한 불법(佛法)에 독실하고 매사에 주밀하여 공사에 전력할 만한 자를 선정토록 하였다. 이로써 총재는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조직을 지도감독하는 교단의 통치자로, 회장은 총재의 명을 받아 교단조직을 실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교단행정의 집행 및 책임자로 구별되었다.

교단의 집행부서로는 서무부, 교무부, 연구부, 상조조합부, 농업부, 식사부, 세탁부 등 7개 부서를 두었으며 각 부서별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무부 : 직인보관, 사회(社會)응접, 회금수입 및 지출, 기타 다른 부서에 관계치 않는 각 항의 사무처리.

나. 교무부 : 본회의 취지, 규약, 경전을 가르쳐 연습시키며 동하(冬夏) 6개월에 공부인의 일기

를 감정하며 연설과 산술을 가르치며 필요한 역사를 강습함.

다. 연구부 : 염불·좌선 등 정신을 수양케 하며 각항 問目을 연구·감정해 주며 그 문목내용을 강연하여 연마하기로 함.

라. 상조조합부 : 조합금을 증수하여 토지를 매입하며 자본을 확장하여 장차 조합원의 공부시 비용에 곤란함이 없도록 하며 학교를 설립하여 조합원의 자녀를 교육하기로 함.

마. 농업부 : 농업에 근무하며 농업원의 매년 지출을 대조하여 상조조합에 저축하며 자본없는 자를 보호하기로 함.

바. 식사부 : 7부내 거주인과 각처에서 내왕하는 이들에게 식사를 공급함.

사. 세탁부 : 7부내 거주인과 각처에서 내왕인의 의복을 제조, 세탁하기로 함.

교단의 의결기구로서는 총회와 평의회(平議會)를 두었다. 총회는 총재와 회장 그리고 평의원을 선출하는 고유기능을 가졌으며 평의원회는 교단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였다.

당시 교단의 통치조직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원기9년(1924) 4월 제정, 불법연구회 규약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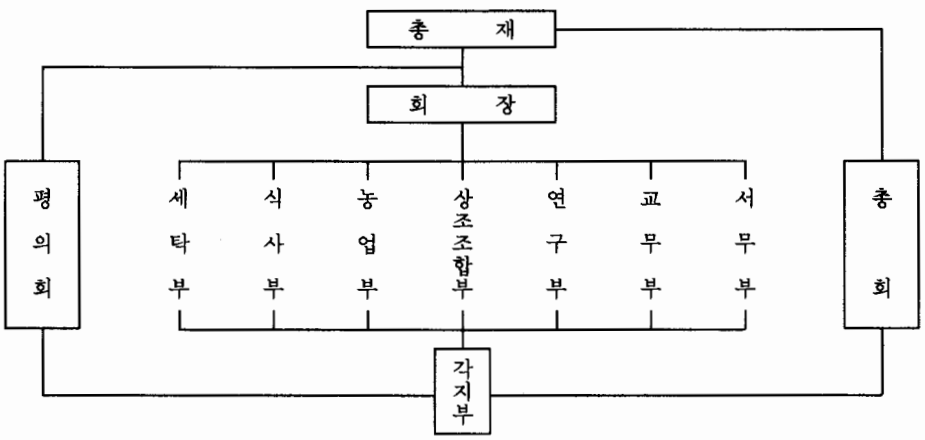

나. 불법연구회 규약(원기19년 개정)

(1) 목 차

Ⅰ. 본회의 유래
Ⅱ. 본회의 취지 설명
Ⅲ. 본회의 원칙
제1장 총 칙
제2장 기 관
제3장 각부의 직무
제4장 임 원
제5장 회 의
제6장 회원의 권리 의무
제7장 가입 및 탈퇴
제8장 본지부 및 출장소간의 권한
제9장 회계 및 기타
Ⅳ. 본회의 세칙
제1장 관내상규
제2장 정기공부
제3장 출 가
제4장 임원규정
제5장 각기관 직무행사
제6장 상무회의
제7장 금융 및 중요인장 서류
제8장 검사 및 상벌
제9장 부 록
제10장 서류정리
제11장 입법위원회
제12장 본부 및 지방의 연락방식

(2) 교단의 비약적인 발전은 규약의 대폭적인 개정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원기19년(1924)에 개정된 새 규약은 이를 반영하여 교단의 통치조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교단의 대표기관으로 종법사제도를 두어 종교공동체로서 독창적인 통치제도를 창안하였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전 규약에 있어 총재제도의 변형으로서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종법사는 총재와 마찬가지로 도리(道理)에 정통하고 凡事에 모범이 될만하며 일반회원이 존위(尊位)를 올릴 만한 인물로 총대회에서 선출토록 하였다.

또한 회장은 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토록 하였는데 역시 총대회에서 선출하고 종법사가 임명토록 하였다.

집행기관으로는 교정원과 서정원의 이원제(二院制)를 두었다. 교정원은 공부계(工夫界)에 속한 일체 사무를 관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무부·연구부·통신부·감사부 등 4개 부서를 두었다. 서정원은 사업계(事業界)의 일체사무를 관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무부·상조부·산업부·공익부·육영부·공급부 등 6개부서를 두었다.

교정원과 서정원의 각 부서 직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무부 : 교무부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장려 감독하며 법설, 역사, 교과서와 각종 예문을 編輯하고 회원입회 수속과 특별 통상회원 명부 및 단명부와 일체 단서를 관리하며 공부의 승강급과 각종 예식을 관리함.

나. 연구부 : 연구부는 공부인의 감각·감상·문목·의견·처리안 등을 모집 편성함.

다. 통신부 : 통신부는 본회 공부, 사업 양방면의 사업재료와 진행상황을 수집하야 기관지를 발행하며 기타 타부에 속치안은 본회 각종 통신사무를 관리함.

라. 감사부 : 감사부는 일반회원의 공부사업의 선불선을 조사하야 상벌을 전형함

마. 서무부 : 서무부는 회산을 관리하고 세입세출급 경비예산과 회원의 사업성적을 편성하며 타부에 속치않은 일체사무를 관리함.

바. 산업부 : 산업부는 농공상의 각종 기관을 설치하고 본회 무산공부인이 그 업에 종사하야 그 수익으로써 정기공부에 전력케함.

사. 상조부 : 상조부는 본회 각부의 자산과 경비예산금을 貯蓄殖利하며 회원의 근검저축을 장려하야 공부·사업·생활 삼방면에 편리를 득케 함.

아. 공익부 : 공익부는 본회 新制年 4기념과 제사독기념에 대한 헌공비와 혼례 및 상장시 절약금이며 성수의 수익과 불은미 등 기타 소비절약을 장려하야 그 저축금이 상당할 시는 양노원, 양유원, 병원, 기념관 등을 설립하야 본회 유공한 무자력자를 보호하기로 함.

자. 육영부 : 육영부는 회원의 매월 團金과 매년 공동 작농을 장려하야 그 저축금이 상당할 시는 본회의 교리와 제도를 발전하기 위하야 인재육성에 주력하기로 함.

차. 공급부 : 공급부는 회관내 거주인과 각처에서 내왕인의 의복을 제조 세탁하며 식사를 공급함.

단, 각부의 강령직무는 이상과 여히 정하였으나 何部를 물론하고 부의 기관이 확장할 시는 부내의 세밀 규약은 별도 제작함을 득함.

의결기구로서는 총대(總代)로 구성되는 총대회(總代會)를 두었는데 종법사·회장·교정원장·서정원장 등을 선출하였으며 회원의 제명 등을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다시 통치조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기19년(1934) 개정, 불법연구회 규약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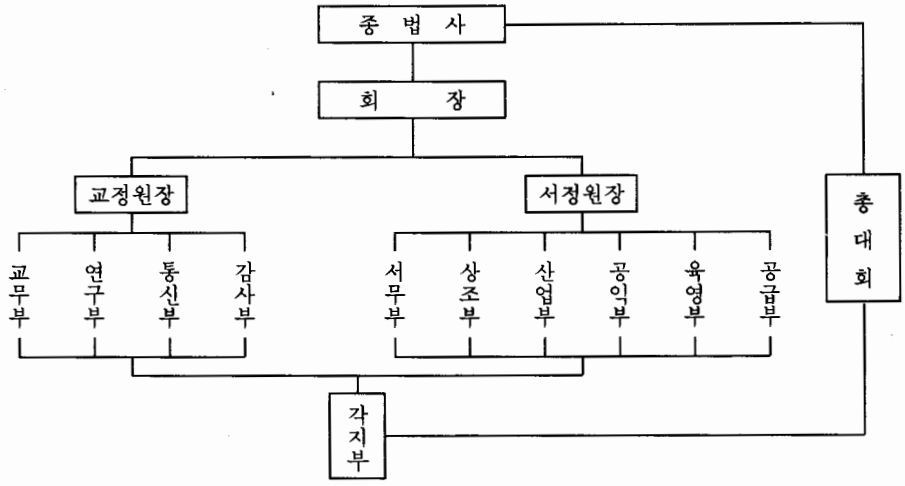

다. 불법연구회 회규(원기27년 개정)

(1)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교의의 선포 및 의식의 집행
제3장 기 관
제4장 포 교 사
제5장 회 원
제6장 선 원
제7장 강 원
제8장 포 상
제9장 징 계
제10장 회유재산(會有財産) 관리규칙
제11장 회 계
제12장 부 칙

(2) 원기27년(1942)에 개정된 회규에 있어서 역시 교단의 발전에 따른 통치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다. 교단의 대표기관으로서 종법사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총대회에서 총대(總代)에 의해 선출되던 것을 신설된 본·지부연합회에서 선출토록 하였다. 종법사를 보좌하던 회장제는 폐지되었고 대신 수위단회를 신설하여 종법사 사무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수위단회는 본·지부연합회에서 법강항마위 이상 자격자를 대상으로 선출하여 구성하였는데 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와같은 수위단회제도의 창안을 대종사의 이단치교(以團治敎) 이념을 구체화한 제도로써 향후 교단의 중추적 조직으로 발전되었다.

집행조직은 교정·서정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양원제도를 회무원(會務院)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그 책임에 당하는 자로서 회무원장을 두도록 하였다. 회무원에는 총무부·교무부·서무부·공익부·산업부 등 5개 부서로 통합 조정되었다.

각 부서별 직무분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총무부

1. 종법실 내명에 관한 사항
2. 회규 및 회령에 관한 사항
3. 총대회 본지부 연합회 수위단회 院議 및 기타 중요 회의에 관한 사항
4. 선거에 관한 사항
5. 인사에 관한 사항
6. 본부 및 지부 출장소 제반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재반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 중요공인 보관 및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10. 중요대외에 관한 사항

나. 교무부

1. 선원 강원 강습회 및 예회에 관한 사항
2. 교화단에 관한 사항
3. 전무출신자 양성에 관한 사항
4. 법계에 관한 사항

5. 의식에 관한 사항
6. 각종 명부에 관한 사항
7. 도서에 관한 사항
8. 경론번역 법설기록 및 기타 일체 교재편집에 관한 사항
9. 예문 및 역사(본회 역사 및 요인 역사) 편집에 관한 사항
10. 감상 및 해오건 수집에 관한 사항
11. 문목·의견 및 처리건 수집에 관한 사항
12. 기타 포교 및 교육에 관한 일체 사항

다. 서무부

1.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비수납 및 사업성적에 관한 사항
4. 도량수축 및 청소에 관한 사항
5. 위생보건 및 체육에 관한 사항
6. 수부응접 및 통신에 관한 사항
7. 거주인의 의식주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재무에 관한 일체 사항

라. 공익부

1. 각종 기념의 헌공 및 저축에 관한 사항
2. 혼상 제사 및 기타 절약금 저축에 관한 사항
3. 양노양유 육영구료 및 기타 공익사업에 관한 사항
4. 각부 재산융통에 관한 사항

마. 산업부

1. 농사조림 및 원예에 관한 사항
2. 상공업 경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산업에 관한 사항

한편 회무총장이 주재하는 원의(院議)를 두었는데 주로 중앙총부에 주재하는 중요직원을 종법사가 지정하여 구성케 하였다. 원의는 주로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였다.

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나. 예산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관한 사항
다. 대외 중요사항
라. 특별 상전(賞典)에 관한 사항
마. 재무에 관한 사항
바. 직원 진퇴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종법사 또는 회무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결기구는 총대회의에 본 지부연합회(本支部聯合會)를 설치하였다. 총대회는 지부와 출장소에 주재하는 지부장과 주무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토록 하였다.

가. 회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다. 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라. 차재(借財)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종법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신설된 본·지부연합회는 총부(본부)와 지부, 출장소에 주재하는 중요직원으로서 구성토록 하였다. 특히 본·지부연합회는 종법사 선정과 수위단회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중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외에 증가하는 지방교당의 통괄을 위하여 수반지부를 두었는데 이는 추

후 교구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당시 교단의 통치조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원기27년(1942) 개정, 불법연구회 회규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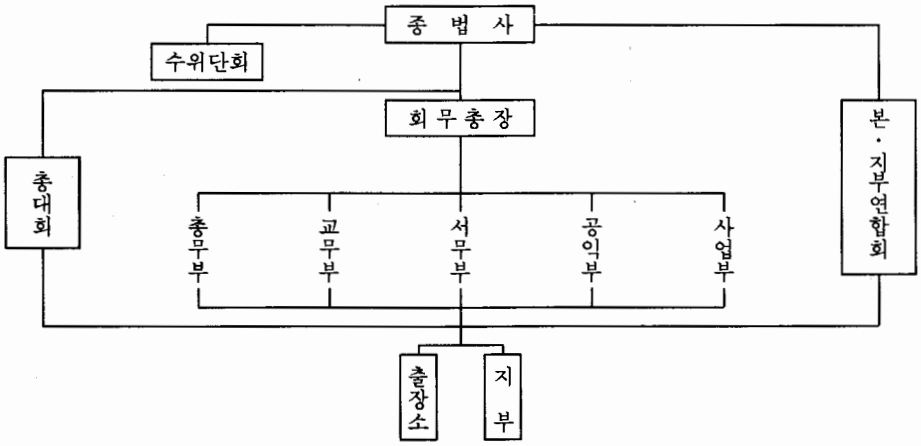

라. 원불교교헌〈원기33년 제정〉

(1) 목 차

제1편 교정(教政)
제1장 총 강
제2장 의 식
제3장 교 법
제4장 교단과 교도
제5장 교정기구
제6장 종 법 사
제7장 중앙교의회
제8장 중앙총부
제9장 수위단회
제10장 교구(教區)
제11장 지부와 지소
제12장 부속사업과 단체
제13장 교산(教産)
제14장 회 계
제15장 상 벌
제2편 교제(教制)
제16장 전무출신
제17장 거진출진
제18장 회 사 위
제19장 공부등위
제20장 사업등급
제21장 법계(法階)
제22장 연 원
제23장 은 족
제24장 부 칙

(2) 원기30년(1945) 민족해방은 교단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불법연구회라는 임시 교명의 교단은 소태산대종사의 새회상 경륜에 걸맞게 새 교명을《원불교(圓佛

敎)》라 내정하고 원기33년(1948) 4월 총대회에서 『원불교교헌』을 확정함으로서 오늘날 교단의 통치조직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교헌이 불법연구회의 중요 통치조직을 표본으로 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교헌에 의하면 종법사는 교단을 대표하며, 최고자문기관으로서 수위단회를 두어 보좌하도록 하였다. 회규가 수위단회를 보좌기관으로 규정한데 비하여 교헌은 최고자문기관으로 규정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활과 위상의 격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수위단회는 점차 그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이단치교의 이념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수위단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종법사 추천에 관한 것.
나. 중앙교의회 특선의원 선정에 관한 것.
다. 직원 선정에 관한 것.
라. 법계 승강에 관한 것.
마.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증하는 사항.

교헌은 교단의 최고결의기관으로 중앙교의회를 두었다. 이는 회규의 〈총대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것으로 교단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중앙교의회 주요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법규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것.
나. 예산심의에 관한 것.
다. 결산보고에 관한 것.
라. 교산의 처리에 관한 것.
마. 기타 중요하다고 인증하는 사항.

집행기관으로는 교정원과 감찰원을 두어 교정·감찰행정을 총괄 집행하도록 하였다. 교정원에서는 교무부·서무부·산업부·재무부 등 4개 부서를, 감찰원에는 감사부와 사서부를 두었다.

교정원 각 부서의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무부

1. 교도의 입교에 관한 것.
2. 전무출신 양성에 관한 것.
3. 교화단에 관한 것.
4. 선원·학림과 일반훈련에 관한 것.
5. 교화 선전에 관한 것.
6. 의식에 관한 것.
7. 부속사업과 단체 등의 敎導에 관한 것.
8. 제반교재의 편집과 연구에 관한 것.
9. 도서에 관한 것.
10. 기관지에 관한 것.
11. 기타 교화에 관한 일체 사항.

나. 서무부

1. 도량 수호에 관한 것.
2. 대중의 생활정리에 관한 것.
3. 외교와 응접에 관한 것.
4. 위생 보건에 관한 것.
5. 부속사업 운영에 관한 것.
6. 교정의 일반회의에 관한 것.

7. 기타 타부에 속하지 아니한 일체사항.

다. 산업부

1. 농업에 관한 것.
2. 공업에 관한 것.
3. 상업에 관한 것.
4. 기타 식산에 관한 일체사항.

라. 재무부

1. 교산 관리에 관한 것.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것.
3. 각 기관의 재산수지에 관한 것.
4. 교도의 의무금, 기념금, 회사금 등 수납에 관한 것.
5. 기타 재무에 관한 일체사항.

감찰원 각 부서의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감사부

1. 教徒의 감찰과 상벌에 관한 것.
2. 회계의 검사에 관한 것.
3. 교세의 조사와 통계에 관한 것.
4. 기타 일체감사에 관한 것.

나. 사서부

1. 종법실 내명에 관한 것.
2. 교령에 관한 것.
3. 인사임면에 관한 것.
4. 법계 승강의 절차와 서류 보관에 관한 것.
5. 전무출신 거진출진의 절차와 서류 보관에 관한 것.
6. 지부 급지사정에 대한 서류보관에 관한 것.
7. 중앙교의회, 수위단회, 원의회의 서류보관에 관한 것.
8. 기타 기밀서류 보관에 관한 것.
9. 감찰의 일반회의에 관한 것.

한편 지부·지소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하여 교관부(教管部)를 두었는데 이는 오늘날 교구제도로 발전되었다.

당시 교단의 주요 통치조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기33년(1948) 제정, 원불교교헌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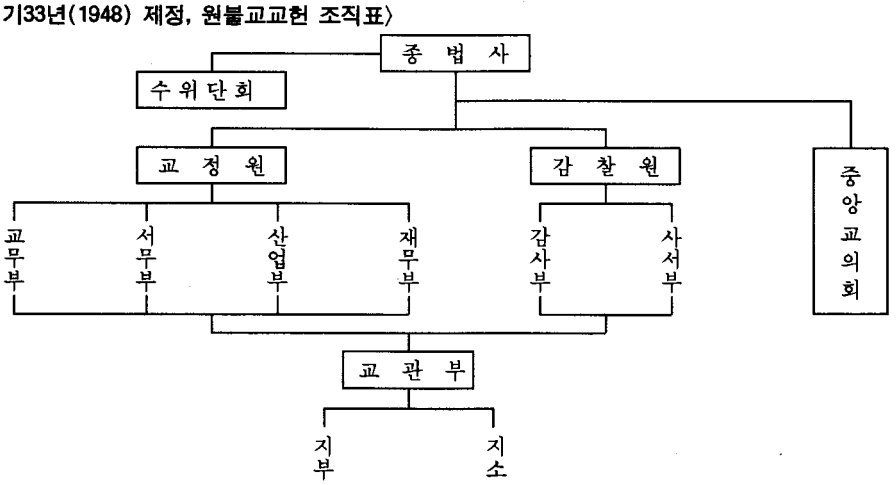

마. 원불교교헌(원기44년 개정)

(1) 목 차

제1장 총 강
제2장 교 의(敎儀)
제3장 교 법(敎法)
제4장 교단과 교도
제5장 중앙총부
제1절 종 법 사
제2절 수위단회
제3절 중앙교의회
제4절 교 정 원
제5절 교정위원회
제6절 감 찰 원
제6장 교구 및 지부·지소
제7장 사업기관과 단체
제8장 교산과 회계
제9장 상 벌
제10장 교 제(敎制)
제11장 부 칙

(2) 원기44년(1959)에 개정된 교헌은 교단통치조직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 이른바 결의·집행·감찰의 삼권분립체제로 정형화 된 것이다. 따라서 집행의 양대기관이었던 교정원과 감찰원은 교정원으로 통합 일원화되었으며 감찰원은 감찰기관으로 그 성격이 조정되었다.

종법사는 교단의 대표자요 통리자(統理者)로서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인사임면·영전수여·사면복권을 명할 권한이 추과됨으로서 통리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수위단회는 종법사 자문기관에서 교단 최고결의기관으로서 그 위상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수위단을 중심으로 한 이단치교의 통치구도를 위한 하나의 진전이었으며 교단통치구도의 요체로써 자리잡았다. 이러한 정신은 소태산대종사 경륜의 일환이었고 교헌개정을 앞둔 원기39년(1954) 4월 정산종사의 「수위단회 위신과 직능을 더욱 강화하고 교단통치의 핵심체를 삼으라」는 유시에 의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수위단회는 단원 남녀 각 9인과 단장 1인 등 19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교정위원회에서 선거로 선출되었고 단장은 종법사가 당연직에 해당하였다. 이와같은 수위단회는 교단의 최고결의기관이었지만 오히려 운영의 면에서는 종법사의 통치를 적극 보좌하는 통치기관적 성격을 띠었다고 본다.

수위단회의 주요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나. 수위단원 보궐단원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다. 교정원장 감찰원장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라. 교단 주요인사임면에 관한 사항.
마. 교정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바. 중앙교의회 특선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사.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계 승강에 관한 사항.
아. 교서편정과 교헌·교규 개폐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증하는 사항.

수위단회가 교단최고결의기관이 되면서 중앙교의회는 결의기관으로 그 위상이 격하되었다. 따라서 교단의 의전적 결의기관으로서 추대·인준 등 절차를 진행하거나 교단의 중요사항을 추후 승인하는 역활을 담당하였다.

중앙교의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종법사 추대에 관한 사항.
나. 수위단원 인준에 관한 사항.
다. 교정원장·감찰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라. 교헌개정에 관한 사항.
마.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바. 교산처리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중하는 사항.

교헌은 그외에 출가교역자를 중심으로 교정협의체적 성격을 가진 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교정위원회는 교헌에 그 성격과 위상이 불분명하나 실질적으로 교정·감찰원장을 선거하고 교단의 주요사항을 협의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의결기관적 성격을 띠면서 운영되었다.

또한 교정원은 감찰원의 집행기능을 통폐합하여 교단의 집행기관으로서 그 성격과 위상을 분명히 하였다.(이후 교헌은 집행 각부의 업무분담을 교정원 조직법(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였음으로 직무분장내용은 생략함)

감찰원은 종래의 집행기관에서 감찰기관으로 바뀌었으며 교단 전반에 걸친 감찰의 책임을 담당하게 되었다.

감찰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교규·교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항.
나. 공포된 교규·교령의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다. 각급회의의 중요의결사항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라. 임원과 일반교도의 선행포상에 관한 사항.
마. 임원과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및 비행 징벌에 관한 사항.
바.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사. 감찰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개정된 교헌에 나타난 통치조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기44년(1959) 개정, 원불교 교헌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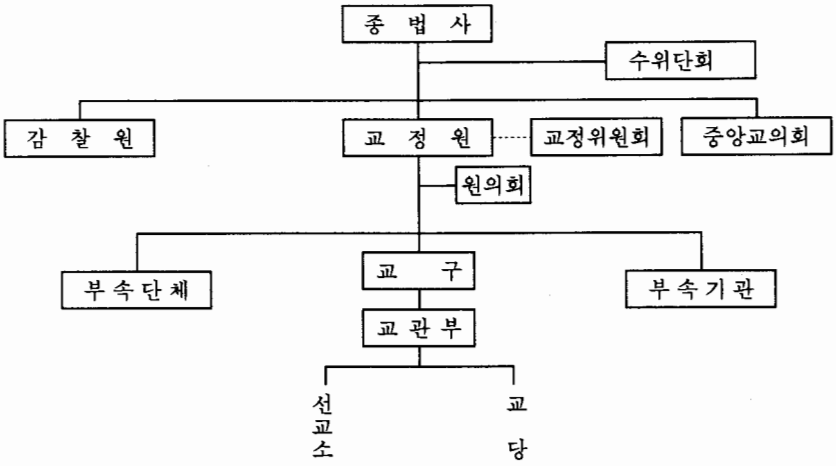

바. 원불교교헌(원기49년)

(1) 목 차

제1장 총 강
제2장 교 의
제3장 교 화
제4장 교단과 교도
제5장 중앙총부
제1절 종 법 사
제2절 수위단회
제3절 교정위원회
제4절 중앙교의회
제5절 교 정 원
제6절 감 찰 원
제6장 교구와 지부·지소
제7장 사업기관과 단체
제8장 교산과 회계
제9장 교 제
제10장 부 칙

(2) 원기49년(1964) 4월에 개정 공포된 교헌은 대체로 교단통치구도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변화는 우선 수위단회의 의결사항 추가로 인한 직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즉 수위단회가 교정·감찰기관의 수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서 수위단회는 종법사를 보좌하면서 교단의 통치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체로서 틀을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간 교정협의체라는 모호한 위상속에 교정의 주요문제를 협의해 오던 교정위원회는 교헌개정의 과정에서 교정 의결기관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었다. 따라서 교정위원회 역시 그만큼 그 위상과 직능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교헌에 나타난 교단 통치조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기49년(1964) 개정, 원불교교헌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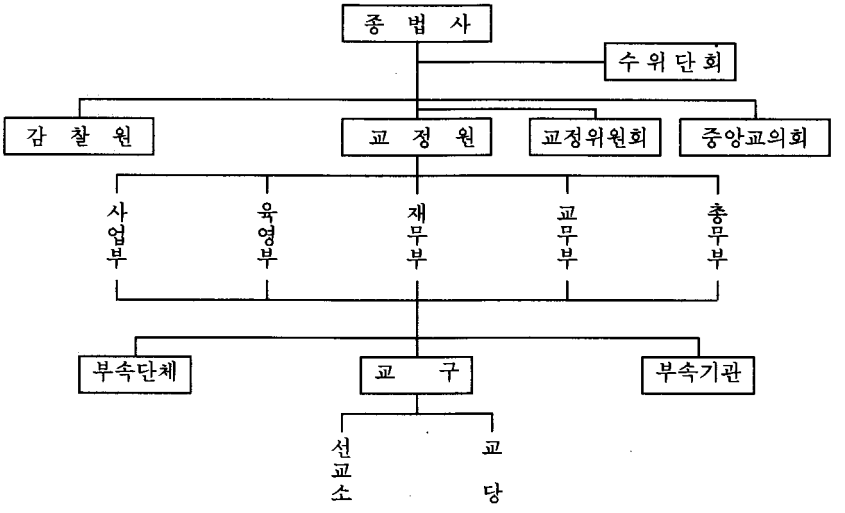

사. 원불교교헌(원기62년도)

(1) 목 차

전 문(前文)
제1장 총 강
제1절 종지와 목적
제2절 교 의
제3절 교 화
제2장 교단과 교도
제3장 교 제
제4장 중앙총부
제1절 종 법 사
제2절 수위단회
제3절 중앙교의회
제4절 교정위원회
제5절 교 정 원
제6절 감 찰 원
제5장 교구와 교당
제6장 기관과 단체
제7장 교산과 회계
제8장 부 칙

(2) 원기62년(1977) 3월 개정 공포된 교헌에서는 커다란 교단통치기구의 변화는 없었다. 다만 수위단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그 위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수위단원을 선거단원과 원로단원 등 2종으로 구별하고 그 수의 제한을 크게 확대토록 하였다. 수위단회의 강화는 이단치교의 통치형태를 위한 교단의 일관된 의지로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종법사의 선거제도의 개정이었다. 수위단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던 방

식을 수위단원을 포함한 재가·출가 법강하마위이상 승급자(법사단)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교헌의 통치기구표는 원기49년(1964)도와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아. 원불교교헌(원기72년 11월 개정)

(1) 목 차

前 文
제1장 총 강
제1절 종지와 목적
제2절 교 의
제3절 교 화
제2장 교단과 교도
제3장 교 제
제4장 중앙총부
제1절 종 법 사
제2절 수위단회
제3절 중앙교의회
제4절 교 정 원
제5절 감 찰 원
제5장 교구와 교당
제6장 교무와 단체
제7장 교산과 회계
제8장 교헌개정
제9장 부 칙

(2) 원기72년(1987) 11월 개정 공포된 교헌은 몇가지 중요한 통치기구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가장 의미있는 변화는 역시 수위단회의 기능과 위상에 대한 강화조치였다. 교헌은 종법사 선출의 권한을 다시 수위단회에 부여함으로써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최고결의기관인 동시에 최상위 교화단의 위상도 명문화 함으로써 이단치교이념의 구현에 대비토록 하였다. 이는 수위단회를 교단통치의 핵심체로 삼으려는 장기적인 구상의 일환이었으며 이로써 사실상 수위단회는 교단통치의 주요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그간 중앙교의회의 기능과 교정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됨으로서 야기된 교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교의회를 보다 강화하는 대신 교정위원회를 폐지토록 하였다. 중앙교의회는 본회에 부의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두는 등 교단결의기구로서의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정위원회 폐지에 대하여는 다만 교정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교역자 중심의 교무회의를 두도록 배려하였는데 이는 원기49년도 교헌에서의 교정위원회와 유사한 교정협의체적 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교헌에 나타난 통치조직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기72년도(1987) 원불교교헌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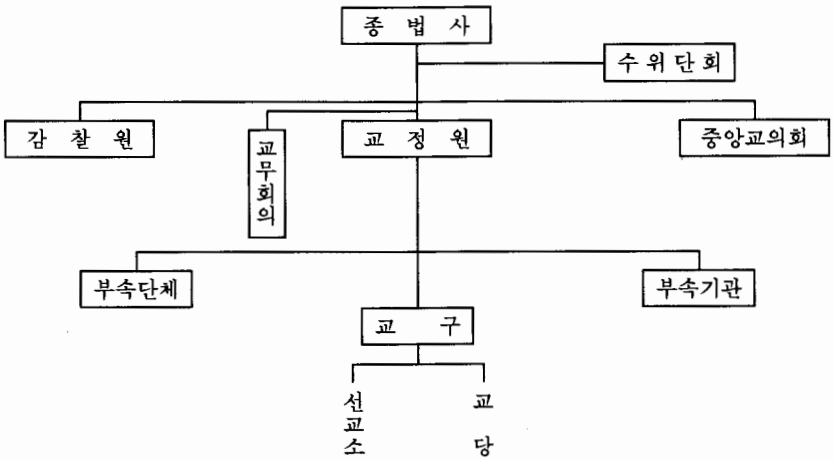

3. 교단 통치기구 변천과정(도표)

가. 원기12년(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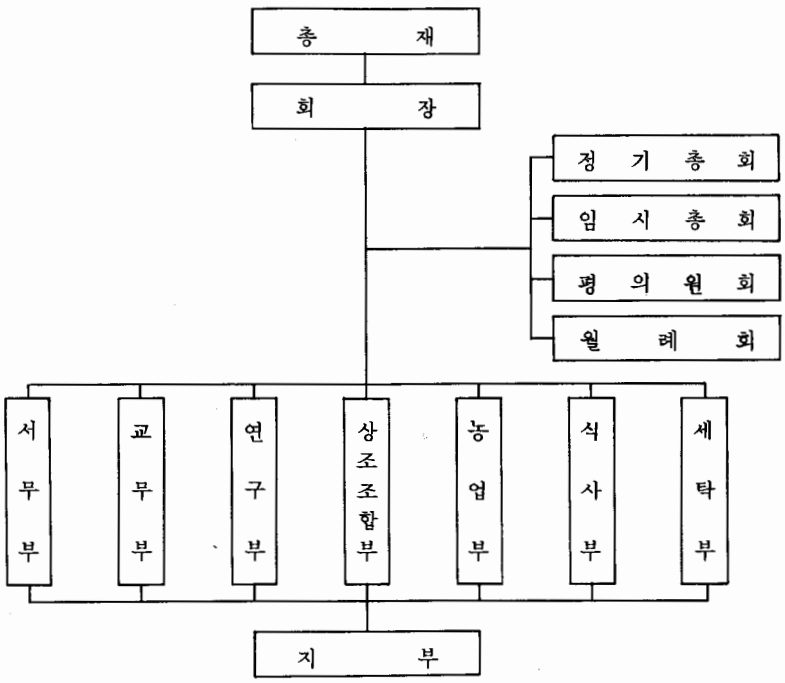

나. 원기19년(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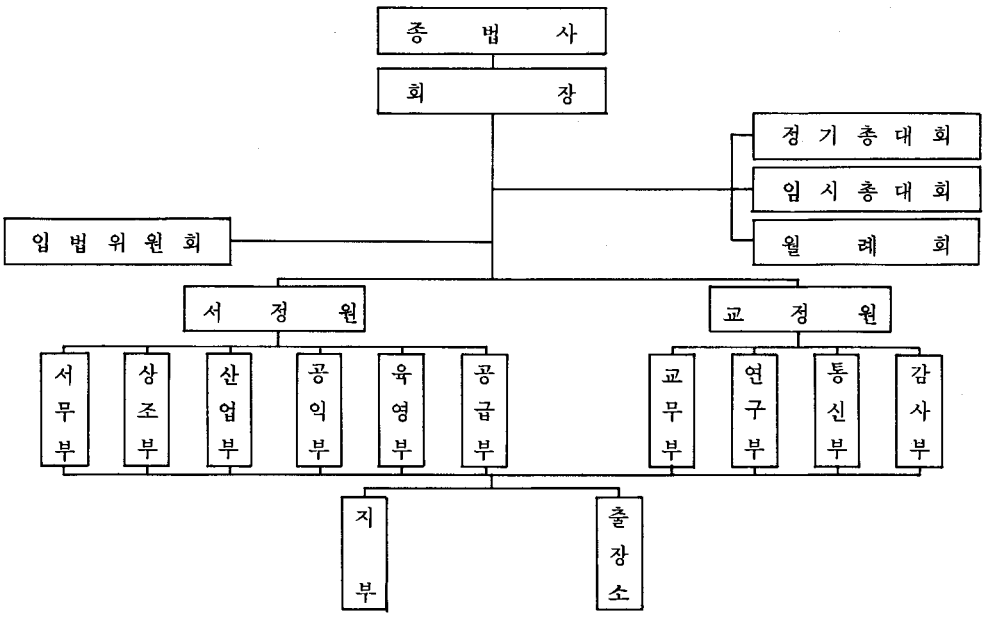

다. 원기26년(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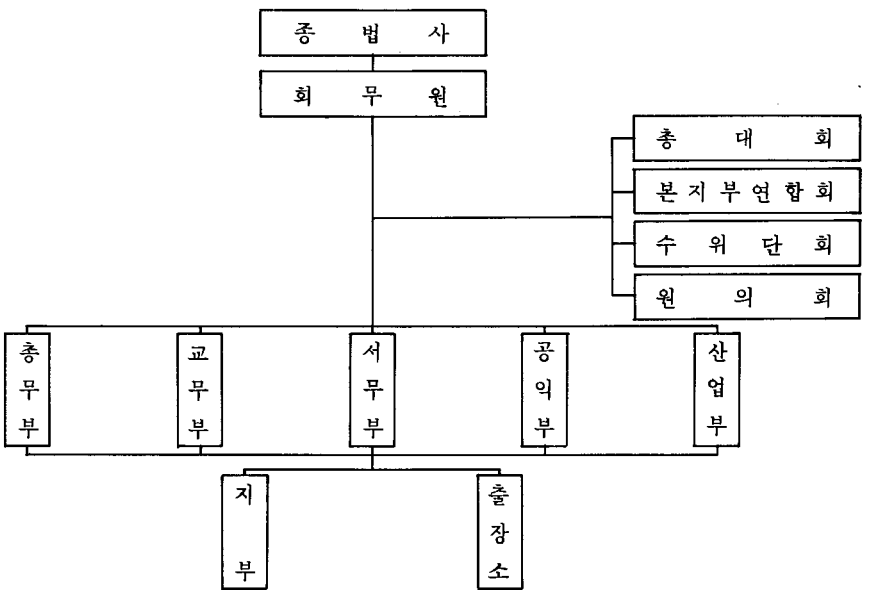

라. 원기34년(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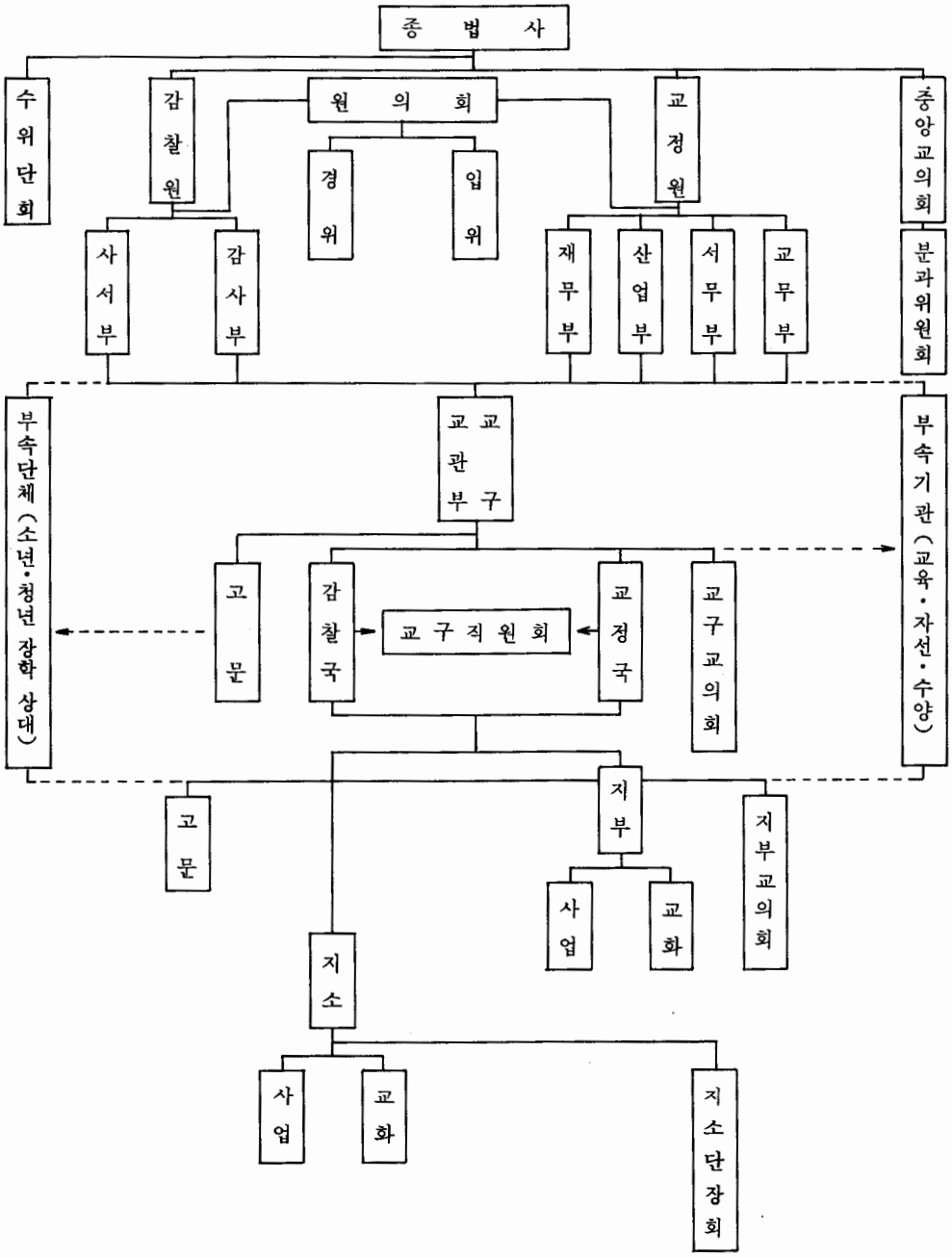
종 법 사
수위단회
감찰원
원 의 회
경위
입위
교정원
중앙교의회
분과위원회
사서부
감사부
재무부
산업부
서무부
교무부
부속단체(소년·청년 장학 상대)
교 교 관 부 구
부속기관(교육·자선·수양)
고문
감찰국
교 구 직 원 회
교정국
교구교의회
지부
고문
지부교의회
사업
교화
지소
사업
교화
지소단장회

마. 원기44년(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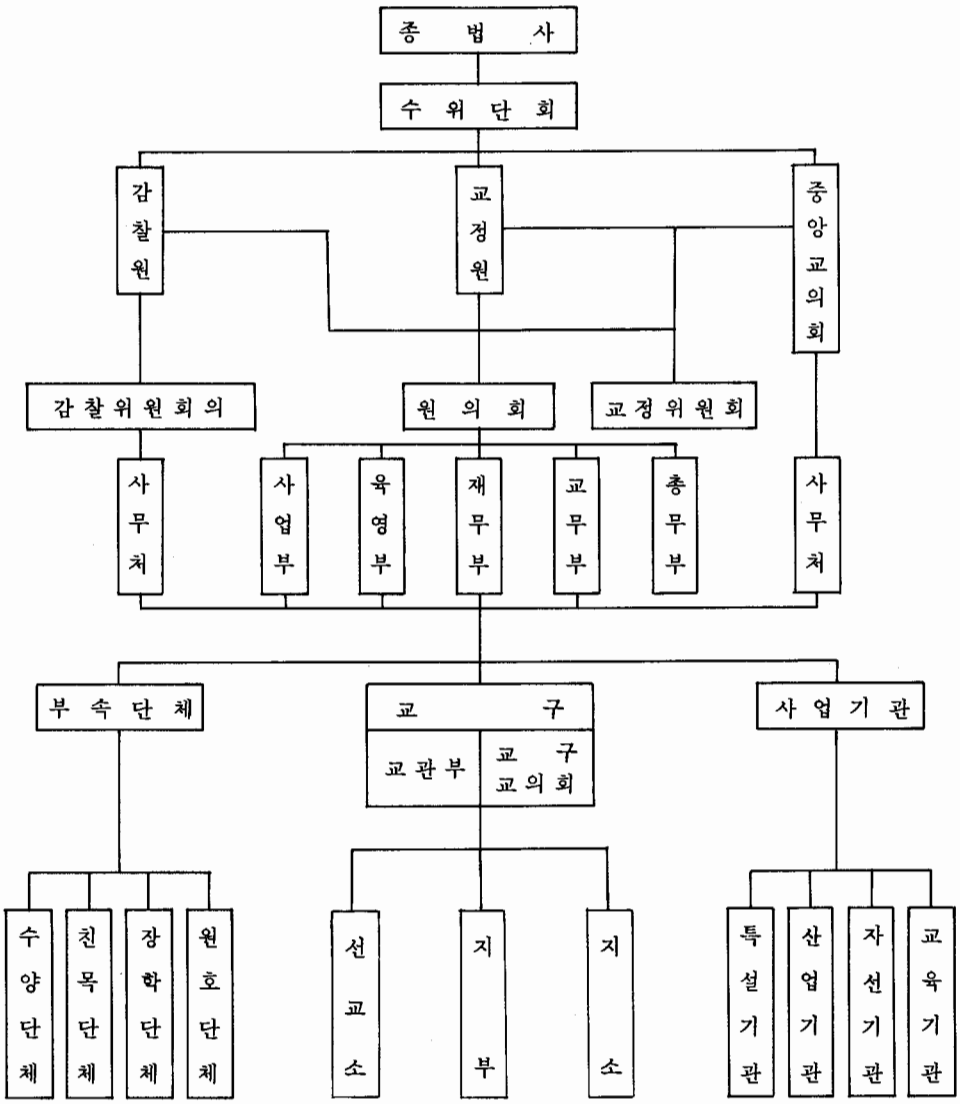
종 법 사
수 위 단 회
감찰원
교정원
중앙교의회
감찰위원회의
원 의 회
교정위원회
사무처
사업부
육영부
재무부
교무부
총무부
사무처
부 속 단 체
교 구
교관부
교구교의회
사 업 기 관
수양단체
친목단체
장학단체
원호단체
선교소
지부
지소
특설기관
산업기관
자선기관
교육기관

바. 원기49년(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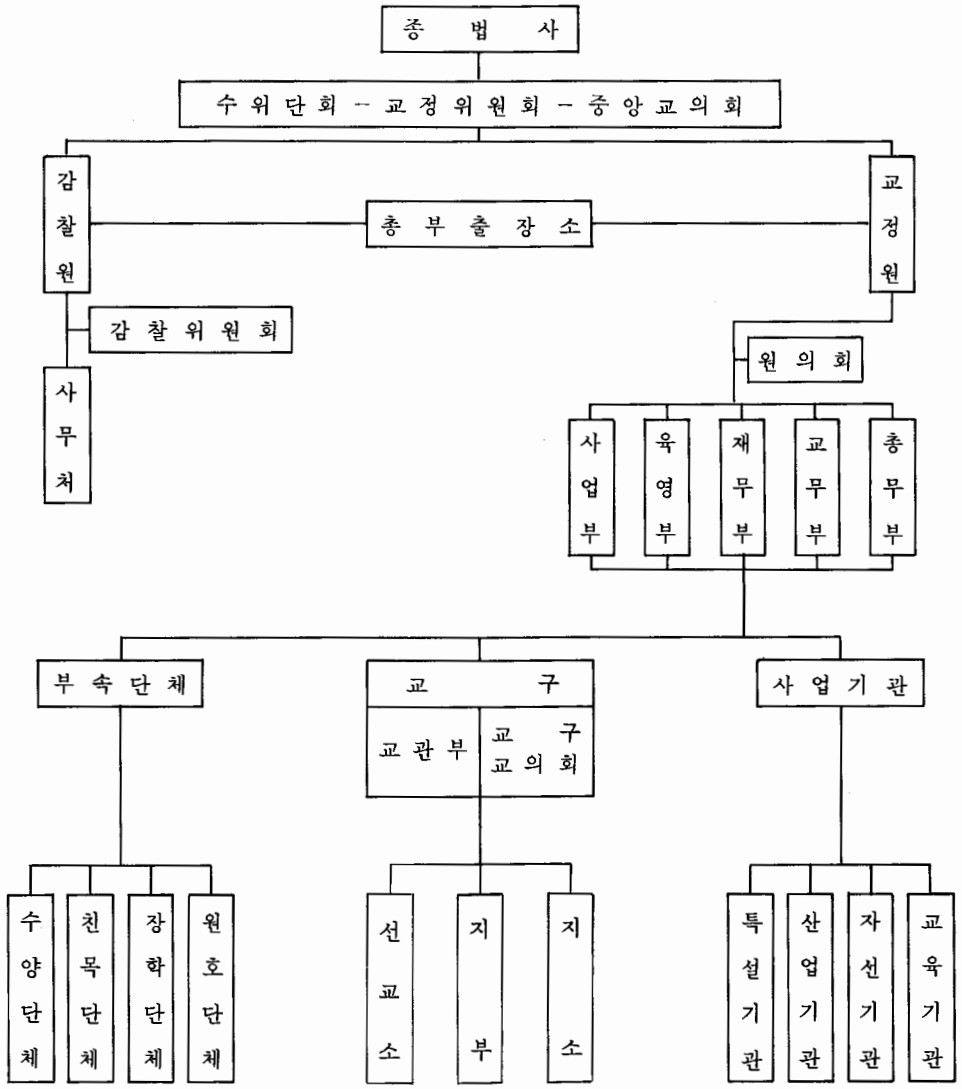

※47. 2.21총부 서울출장소 설치.

49년도 교헌개정시 법무실 발족

사. 원기55년(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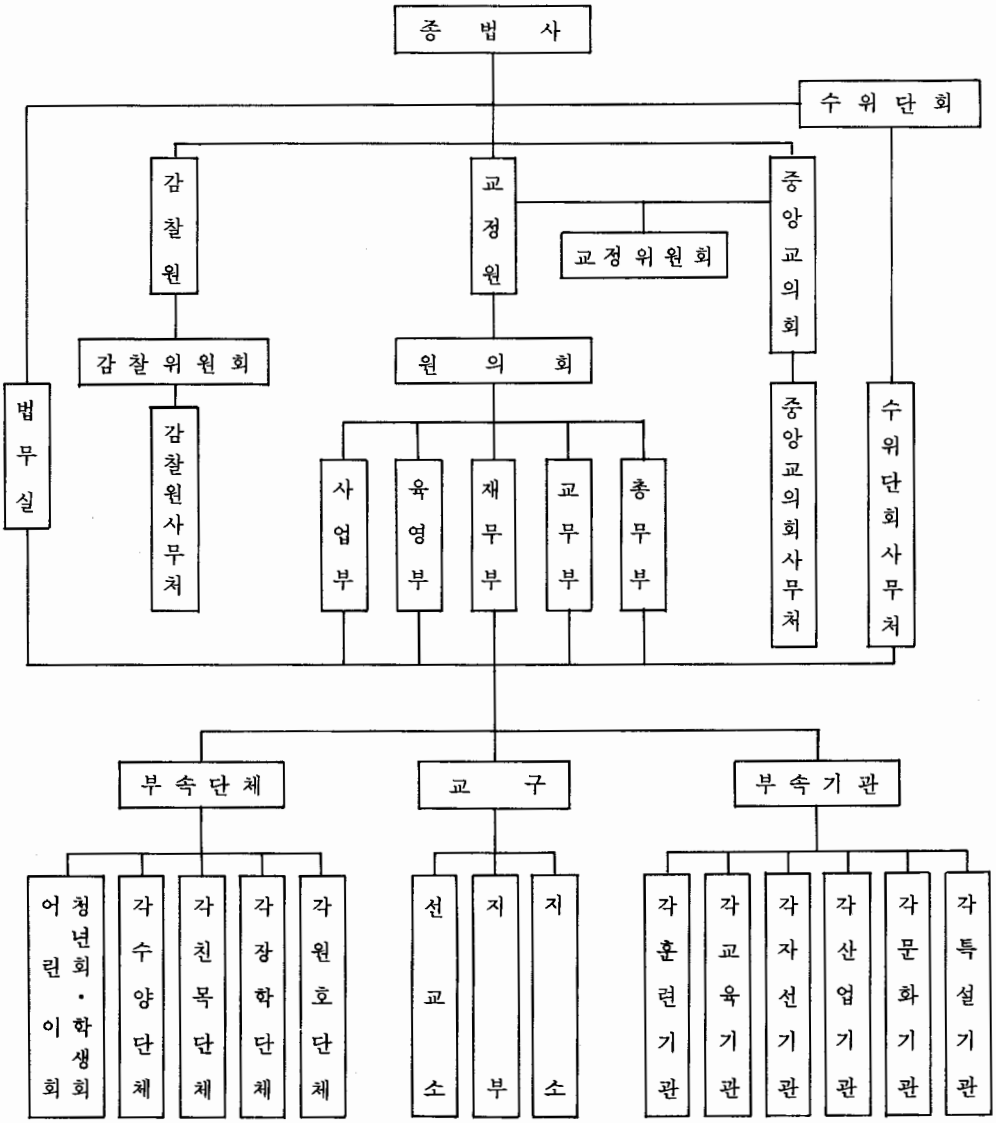

※54년도 수위단회 사무처 발족

아. 원기59년(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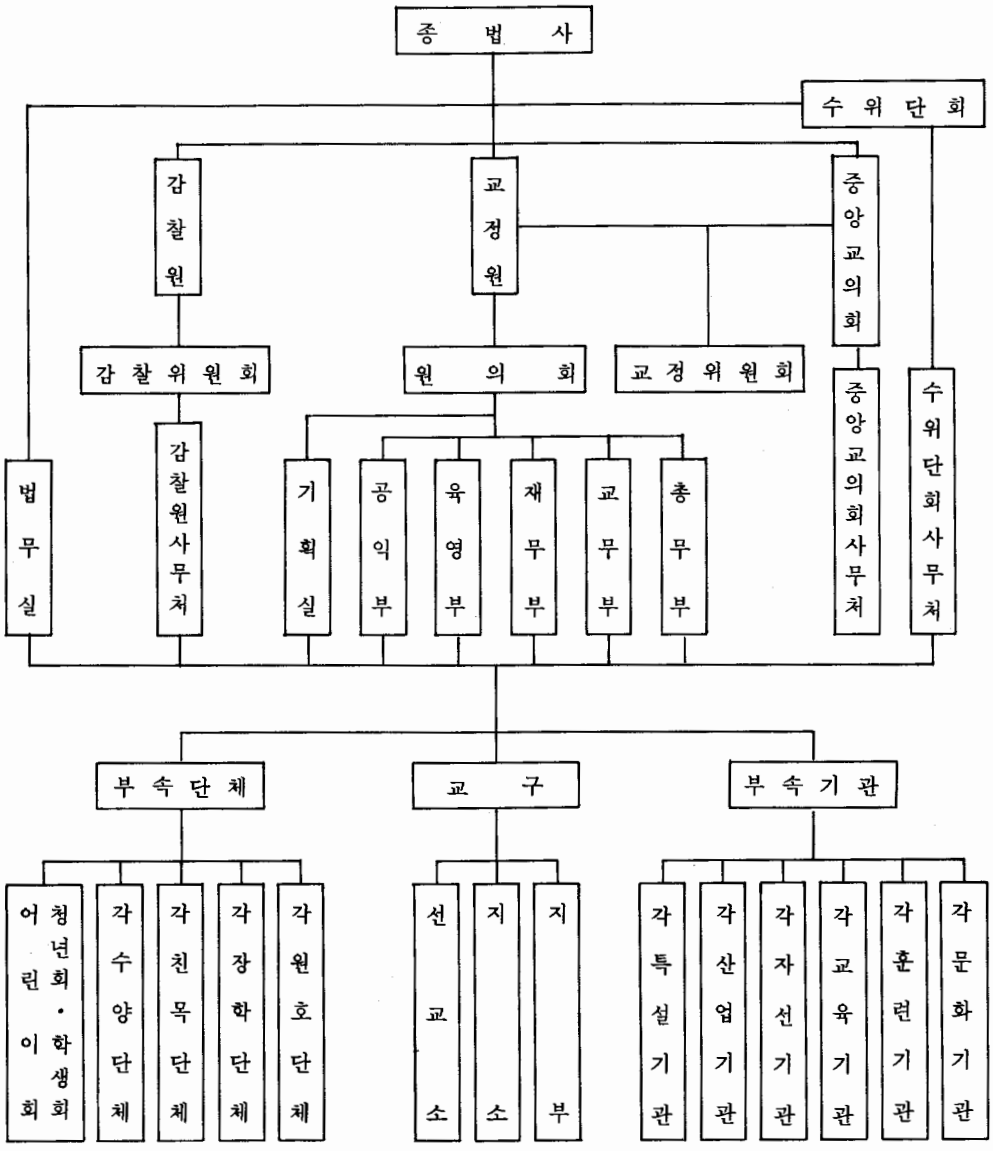

※56. 3. 1 기획실 발족

사업부를 공익부로 개칭

60. 2. 5 교육부 교화부개정(60회 임시수위단회)

자. 원기60년(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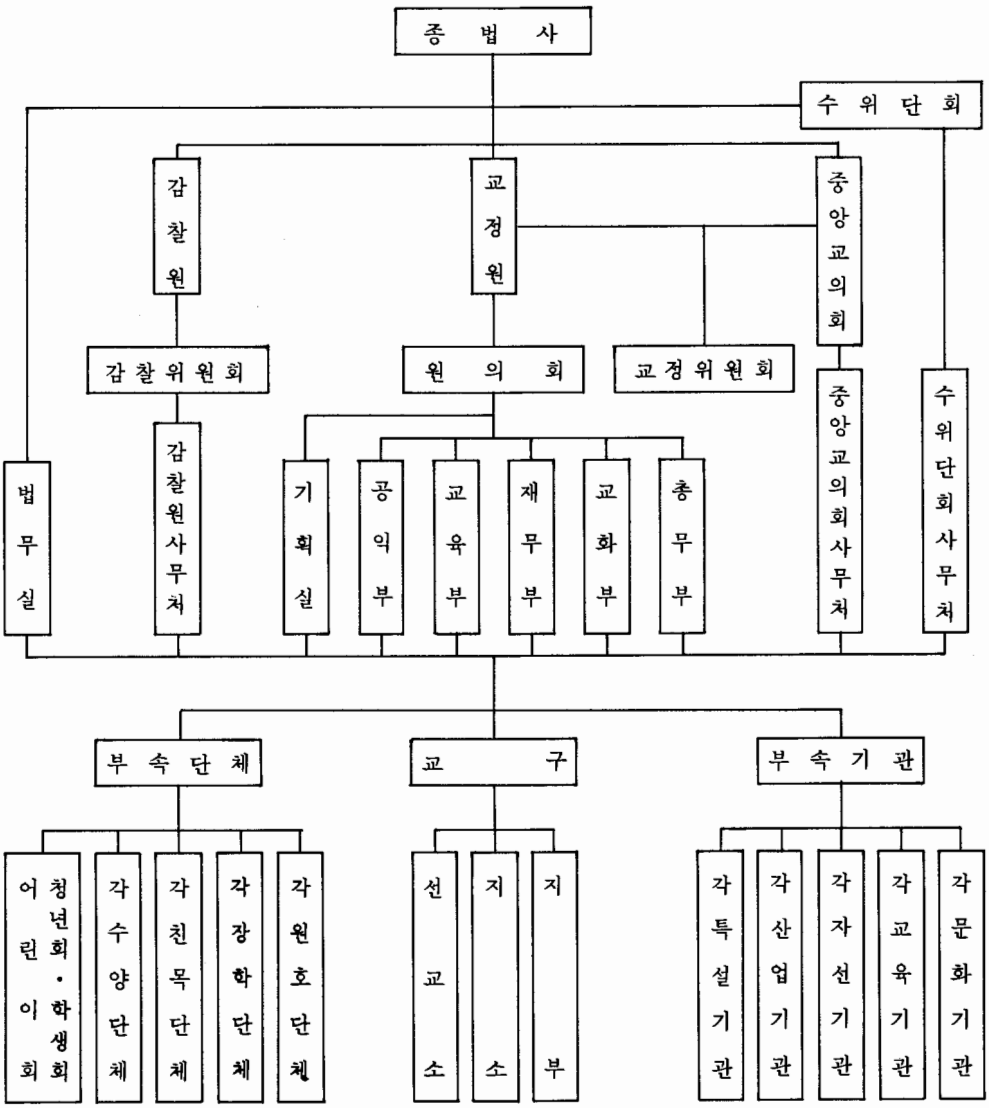

※60. 2. 5 교무부를 교화부로. 육영부를 교육부로 개정(제60회 임시수위단회)

차. 원기62년(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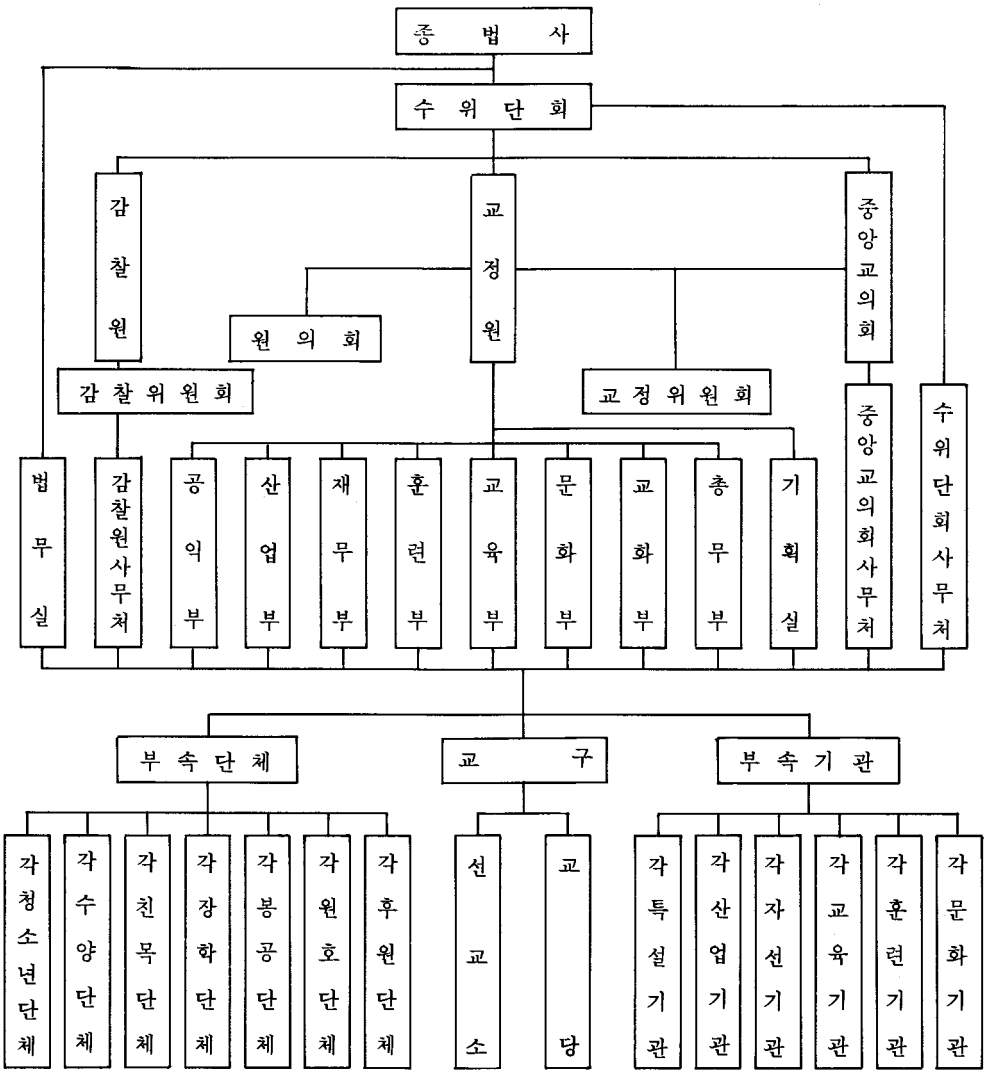

※교헌 개정(3차 61.11.6) 및 교정원 조직법 교규 제45호(62.3.5)개정에 의거.

카. 원기66년(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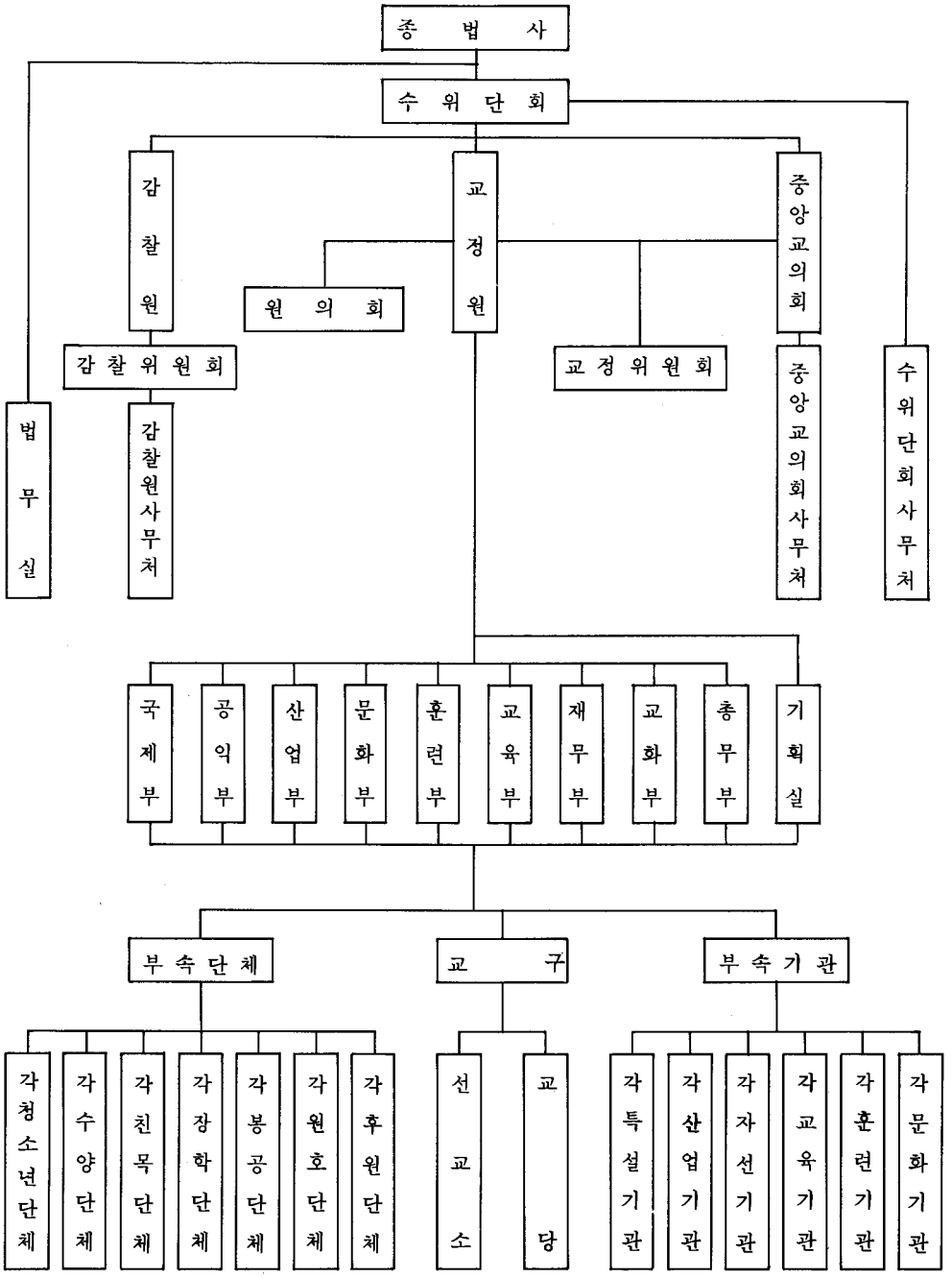
종법사
수위단회
감찰원
교정원
중앙교의회
원의회
감찰위원회
교정위원회
법무실
감찰원사무처
중앙교의회사무처
수위단회사무처
국제부
공익부
산업부
문화부
훈련부
교육부
재무부
교화부
총무부
기획실
부속단체
교구
부속기관
각청소년단체
각수양단체
각친목단체
각장학단체
각봉공단체
각원호단체
각후원단체
선교소
교당
각특설기관
각산업기관
각자선기관
각교육기관
각훈련기관
각문화기관

타. 원기68년(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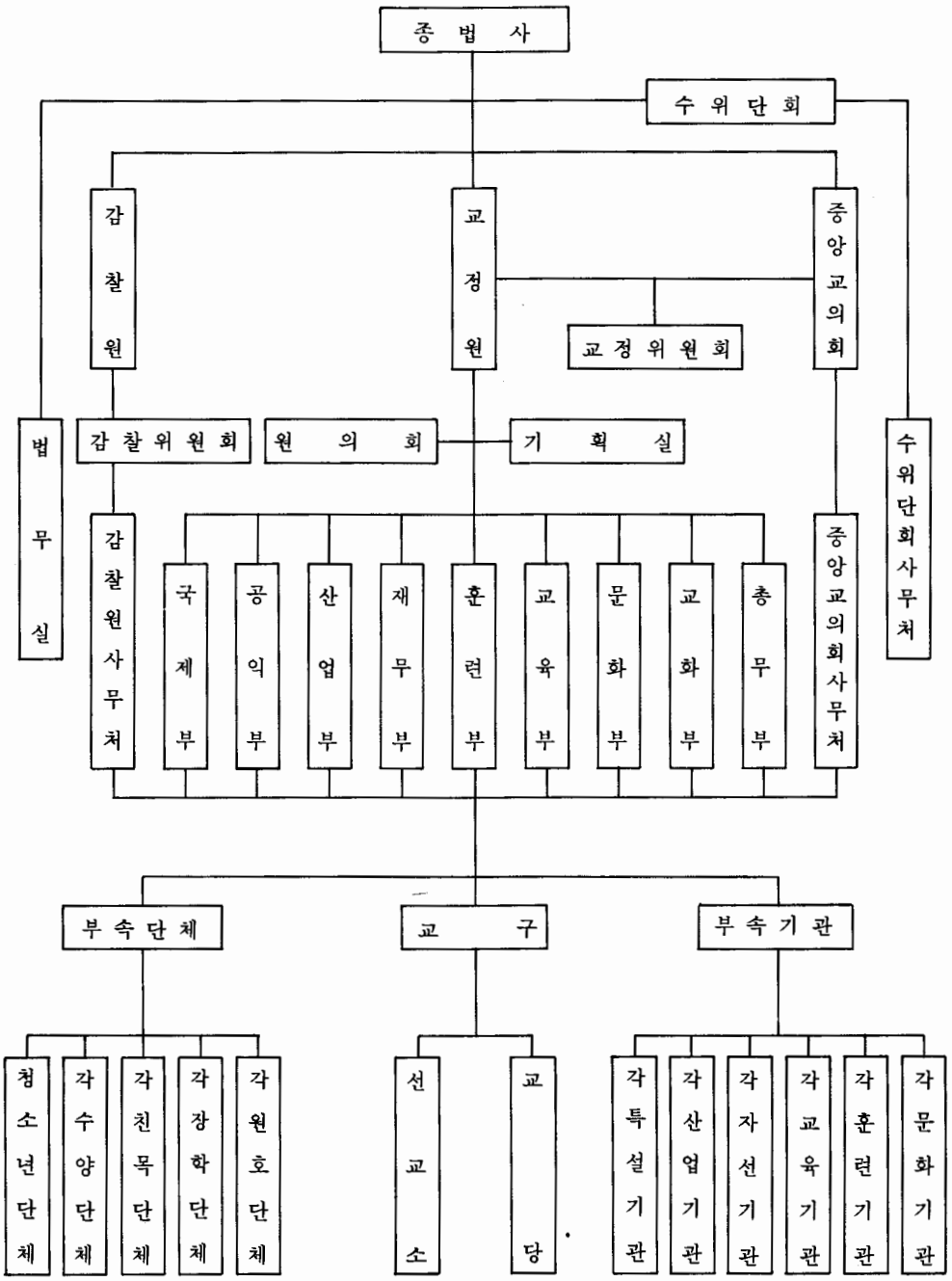
종법사
수위단회
감찰원
교정원
중앙교의회
교정위원회
법무실
감찰위원회
원의회
기획실
수위단회사무처
감찰원사무처
국제부
공익부
산업부
재무부
훈련부
교육부
문화부
교화부
총무부
중앙교의회사무처
부속단체
교구
부속기관
청소년단체
각수양단체
각친목단체
각장학단체
각원호단체
선교소
교당
각특설기관
각산업기관
각자선기관
각교육기관
각훈련기관
각문화기관

파. 원기72년(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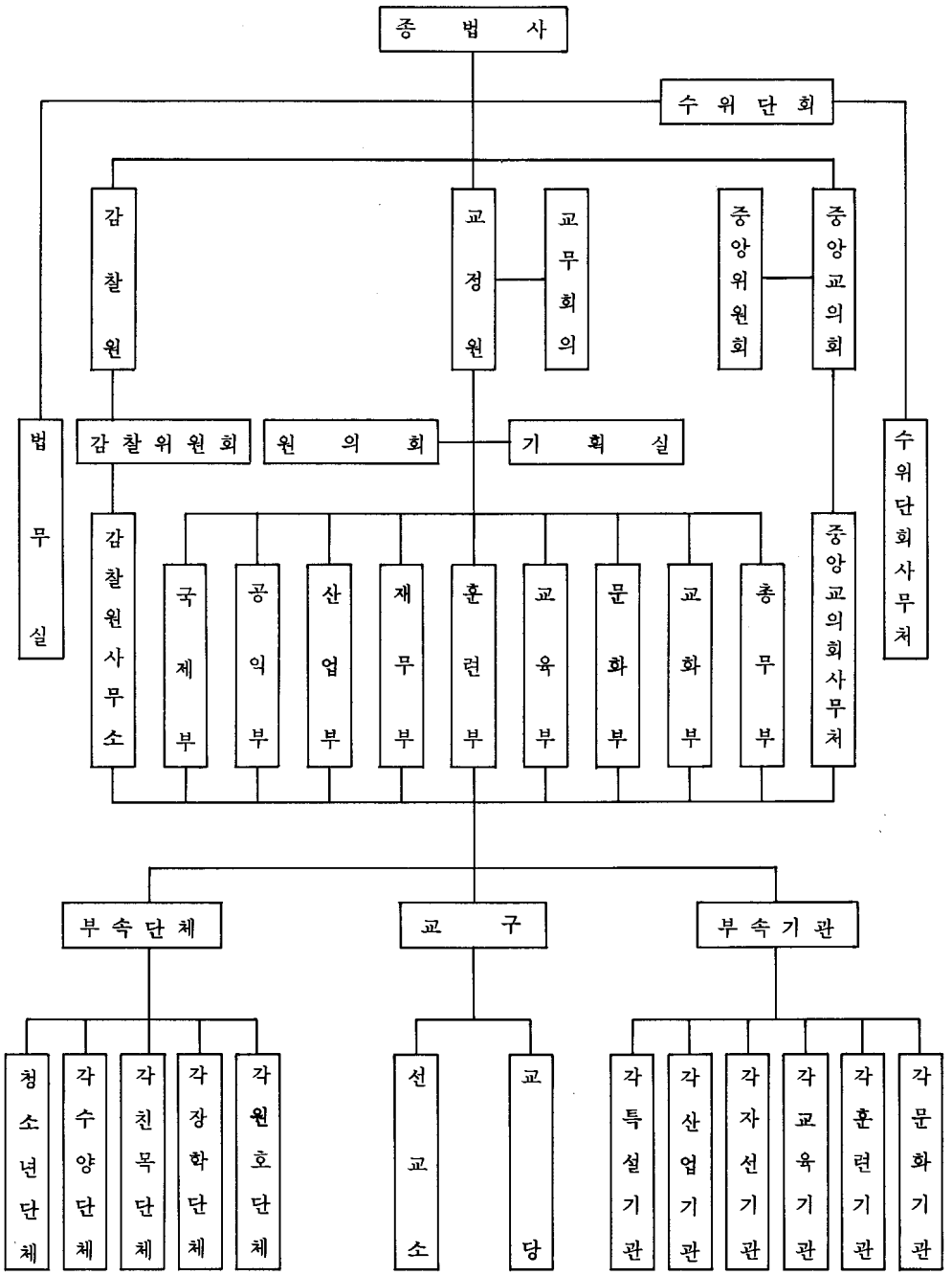
종법사
수위단회
감찰원
교정원
교무회의
중앙위원회
중앙교의회
법무실
감찰위원회
원의회
기획실
수위단회사무처
감찰원사무소
국제부
공익부
산업부
재무부
훈련부
교육부
문화부
교화부
총무부
중앙교의회사무처
부속단체
교구
부속기관
청소년단체
각수양단체
각친목단체
각장학단체
각원호단체
선교소
교당
각특설기관
각산업기관
각자선기관
각교육기관
각훈련기관
각문화기관

中 央 總 部

○ 개관／104
Ⅰ. 종법사／108
Ⅱ. 수위단회／121
Ⅲ. 중앙교의회／198
Ⅳ. 교정위원회／210
Ⅴ. 교정원／237
Ⅵ. 감찰원／413
Ⅶ. 총부출장소／418
Ⅷ. 법인체／432

개 관

1. 그 의미와 기능

원불교 중앙총부는 두가지의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하나는 원불교 교정을 총관, 교화를 主宰하는 敎政의 중심지로서 교단 통치의 중앙기구와 조직을 말한다. 이는 『圓佛敎 敎憲』에 규정된 宗法師, 首位團會, 中央敎議會, 敎政院, 監察院 등의 중앙기구와, 그 중앙기구의 기능을 예하 지방에서 대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원불교 중앙총부 서울, 영산 사무소를 포함한다. 종법사는 교단을 주재하고 대표하는 원불교의 최고 지도자이다. 수위단회는 교단의 최고 결의기관이며 교도의 기본 조직인 敎化團의 最上立團이다. 중앙교의회는 교단의 의결기능을 갖고 있는 교단의 결의기관이며, 교정원은 원불교의 행정기능을 갖고 있는 중앙 집행기관이며, 감찰원은 원불교의 監査기능을 갖고 있는 중앙 감찰기관이다.

따라서 중앙총부는 원불교 교정을 통치하고 교화를 주재하여 敎徒들의 신앙과 수행을 지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입법, 의결과 행정, 감찰 등의 기능을 통하여 원불교를 총관하는 원불교의 중앙기구이다.

중앙총부가 갖는 또 하나의 의의와 기능은 중앙총부의 각 기구와 조직이 위치한 지역은 원불교의 敎祖인 少太山大宗師와 초기교단 창립의 자취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원불교 聖地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현재의 중앙총부가 위치한 전라북도 이리시 신룡동 344-2번지의 일대는 원기9년(1924) 4월 29일에 이리 부근의 사찰인 普光寺에서 《佛法硏究會》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불교를 세상에 공개하고, 그 해 8월에 그 본부의 기지로 정한 곳이다. 당시에는 전라북도 익산군 북일면 신룡리 이었으나 원기59년(1974)에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이리시로 편입되었다.

이곳은 소태산대종사와 초창기 교단의 인물들이 교단을 창립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시절의 자취가 어려 있는 곳으로서 원불교 교도들의 정신적 고향이 되고 있다.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며 수행의 표본인 법신불 일원상을 맨 처음으로 봉안한 법당인 大覺殿을 비롯하여, 소태산대종사께서 생전에 생활하며 교화를 주재하던 공관인 宗法室(일명 舊祖室) 등의 초창기 건물들이 교단의 史蹟으로 보존되어 있고 소태산대종사의 聖骸가 안치된 성탑과 소태산대종사의

일생 역사와 공덕 을 새긴 聖碑가 세워져 있고, 2대 종법사인 鼎山宗師의 성해가 안치된 정산종사 성탑이 세워져 있다. 따라서 이곳은 원불교 교도들의 신앙의 구심점을 이루는 성지의 하나로서 교도들의 巡禮와 參拜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한편 이 지역에는 교단 산하의 각종 기관 단체와 각 法人의 사무소가 있어서 교단의 敎化 敎育 慈善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본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중앙총부의 형성과 발전

현재의 중앙총부 각 기구가 형성 발전되기까지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기9년(1924)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에서 『規約』을 제정 반포하기 전까지의 교단은 본부의 조직이나 체제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초기에 영광일우의 제자들을 모아 《貯蓄組合》을 형성하여 활동하다가, 《佛法硏究會期成組合》으로 이름을 바꾸고 불법에 淵源한 새로운 종교의 체제를 갖추려 하였으나, 이 때에는 원불교의 체제를 준비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원불교의 체제 뿐 아니라 교리의 기초 강령을 정하고 원불교 창립을 위한 인연들을 결속하는 등 새로운 교단의 전반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한 준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원기9년(1924)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규약에 의하면, 總裁 1인과 會長 1인 및 庶務部, 敎務部, 硏究部, 相助組合部, 農業部, 洗濯部, 食事部 등의 7부를 두고, 代議機構의 성격을 갖는 評議員會議를 두어 중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하였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어 회원 전원이 회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때에는 상조조합부에서 종래의 기성조합 업무를 계승하도록 하였고 산업부 창립단, 육영부 창립단 등의 별도의 단을 두어 산업과 인재양성 등 원불교의 기초가 되는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원기16년(1931) 7월에 제정된 『佛法硏究會 統治組團規約』은 교도들의 공부와 사업을 조직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敎化團 組織法으로, 이 교화단의 最上位 組職인 수위단회가 원불교의 최고 결의기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규약은 원기19년(1934) 3월에 대폭 개정되어 宗法師, 會長 아래에 二院 十部制를 골자로 하는 새 회규를 시행함으로써 중앙총부의 면모도 새로운 체제를 갖추게 된다. 그동안 총재라 칭하여 오던 원불교의 대표자를 종법사로 바꾸었고 그 아래에 회장 1인을 두었다. 중앙기구로는 工夫界(敎化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敎政院과 事業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庶政院을 두었다. 교정원에는 敎務, 硏究, 通信, 監査의 四部를 두어 그 업무를 분장케 하고 서정원에는 庶務, 相助, 産業, 公益, 育英, 共給의 6부가 각각 그 업무를 분장하였

다. 또한 各 支部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總代會를 두어 의결과 대의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고 立法委員會를 두어 입법기능은 별도의 기구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2원 10부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 회규가 시행된 지 7년만인 원기27년(1942) 4월 26일에 규약이 다시 개정되어 불법연구회 시대의 마지막 회규가 시행되면서 중앙총부가 대폭 축소된다. 즉 종법사 아래에 會務院을 두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會務總長 아래에 總務, 敎務, 庶務, 公益, 事業 등의 5부를 두었다. 한편 총대회는 그대로 두고 本·支部 聯合會를 설치하여 종법사와 수위단원의 선거기능을 갖도록 하며 종법사를 보좌하는 수위단회가 정식으로 회규에 명시되는 등 입법 대의의 의결기능이 강화된 면모의 중앙총부가 되었다.

원기32년(1947) 1월 16일에 《재단법인 원불교》의 법인 설립이 국가로부터 승인되고 그 이듬해인 원기33년(1948) 4월 26일에는 교명을 《원불교》로 하는 최초의 『원불교교헌』이 제정되어 중앙총부라는 표현이 정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교헌에 명시된 중앙총부는 교단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정원과 감찰원 뿐이고, 종법사나 중앙교의회 수위단회 등의 기구는 章을 달리하여 중앙총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때의 교정원에는 敎務, 庶務, 産業, 財務 등의 四部를 두고, 감찰원에는 監査, 事業의 二部를 두어 각각 소관사무를 분장하였다.

원기44년(1959) 4월 25일에 『원불교교헌』이 개정되어 종법사, 수위단회, 중앙교의회 등이 중앙총부에 포함되고 특히 교정위원회가 신설되어 중앙교의회와 함께 원불교의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나누어 갖게 되었다. 또한 교정원에는 집행각부를 두고 조직과 직무의 범위는 교규로 정하도록 하여 이 때부터 교정원 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 교정원 조직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때에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院議會〉가 설치된다. 또한 감찰원의 구성을 종전의 2부 조직에서 원장과 감찰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그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를 두는 감찰원 조직법이 따로 제정되었다. 이 때에 확립된 중앙총부의 기본 골격인 종법사와 수위단회를 정점으로한 중앙교의회·교정위원회·교정원·감찰원은 상호간의 기능과 권한이 그 세부적인 사항만 조정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원기72년(1987) 11월에 개정 공포된 교헌에는 교정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정원내의 협의기구인 교무회의가 신설되었다.

원기44년(1959) 4월 25일 개정된 교헌에서 교정·감찰 兩院의 부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이 교규로 이관된 이후 지금까지 각 부처 조직의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기44년(1959)에 제정 시행된 교정원 조직법에는 원내에 總務, 敎務, 財務, 育英, 事業 등의 五部와 院議會를 두고 院長 祕書室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처 조직은 이전의 敎務, 庶務, 産業, 財務 등 四部를 조정하고 育英部를 신설한 것이다.

이 5부와 비서실, 원의회의 체제는 계속 유지되면서 원기52년(1967)에 교정원 부원장이 신설되었고 원기56년(1971)에는 기획실이 신설되고 사업부가 공익부로 그 명칭이 바뀐다.

원기60년(1975) 2월 17일에 개정된 조직법은 교정원 부원장을 기획담당과 재정담당 등 2인으로 명시하고, 집행 각부 가운데 敎務部를 敎化部로 育英部를 敎育部로 개칭한다.

원기62년(1977)에는 집행 각부에 文化部, 訓練部, 産業部를 원기66년(1981)에는 다시 國際部가 신설되어 교정원에 요청되는 行政需要의 증가와 이에 따른 기구 확대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원기67년(1982)에는 원의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가 신설되고 교정원 부원장을 3인으로 늘렸으며, 원장 비서실을 부속실로 변경하여 그 업무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감찰원은 원기44년(1959) 4월 25일 교헌 개정과 함께 제정된 감찰원 조직법 이후 원기59(1974)년에 부원장이 신설된 이외에 그 기구와 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다.

Ⅰ. 宗 法 師

宗法師는 원불교 교단의 主法으로서 교단을 주재하고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後天開闢의 주세불이신 소태산대종사가 깨쳐 전해 준 일원대도의 법맥을 대대로 바로 이어 법륜을 굴리고 시방세계 너른 세상에 영원한 광명으로 불일을 빛내는 교단의 통치자이다.

원불교 종법사 제도는 교조인 소태산대종사에 의해 비롯된다.

영광에서 대원정각을 이룬 후 저축조합운동, 방언공사, 法認聖事를 통해 회상창립의 기초를 다지고, 邊山으로 錫丈을 옮겨 교법을 초안한 소태산대종사는 九人弟子를 비롯한 창립제자들을 결속, 원기9년(1924) 4월 29일《佛法硏究會》창립총회를 갖고 총재에 임했다. 창립 총회 당시 제정했던『佛法硏究會 規約』을 원기19년(1934) 3월에 제1차로 개정하면서 총재직 대신 종법사제를 도입 대종사가 종법사의 임무를 맡는다.

원기28년(1943) 6월 1일 소태산대종사의 열반으로 그 首弟子인 鼎山 宋奎 師가 종통을 계승, 종법사위에 올라 원기47년(1962) 1월 24일 열반시까지 19여년간 종법사의 대임을 수행하였다.

정산종사의 열반으로 이어 당시 首位團 중앙이었던 大山 金大擧단원이 종법사의 중임을 계승,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원기72년(1987) 11월 15일에 제4차 개정된『원불교교헌』에 따르면 종법사는 교화를 주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敎書를 편정하며, 필요한 敎規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중요人事를 任免하며,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榮典을 수여하고, 赦免과 復權을 명하며,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상벌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종법사제도의 변천과정을『불법연구회규약』과『원불교교헌』을 통해 참고하고, 소태산대종사의 역사는 별도의 장으로 취급되는 만큼 정산종사와 大山종법사의 역사자료를 약술하고 아울러 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한 法務室 관련자료를 첨가한다.

1. 宗法師制度의 變遷

가. 지 위

1) 본회 공부 사업 양방면을 지도 감독함(불법연구회 규약 1차 개정 제8조)
2) 본회를 통리하고 차를 대표함(불법연구회회규 2차 개정 제23조)
3) 본교를 대표하여 교단을 통리한다(원불교교헌 제28조)
5) 교단을 주재하고 본교를 대표한다(원불교교헌 2차 개정 제16조)
6) 교단의 주법으로서 교단을 주재하고 본교를 대표한다(원불교교헌 4차 개정 제29조)

나. 권한대행

1) 회무총장(불법연구회 회규 2차 개정 제24조)
2) 교정원장(원불교교헌 제60조)
3) 원로 수위단의 중앙단원중 최고 법랍자순(원불교교헌 4차 개정 제30조)

다. 피선자격

1) 교리에 정통하고 범사에 모범이 될만하며 일반회원이 존위를 올릴 만한 인물(불법연구회 규약 1차 개정 제8조)
2) 법강항마위 이상의 정수위단원(불법연구회 회규 2차 개정 제21조)
3) 원정사 이상 수위단원. 단, 원정사 이상 자격이 없을 때에는 정사(원불교교헌 제29조)
4) 출가위 이상 수위단원. 단, 출가위 이상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강항마위(원불교교헌 1차 개정 제17조)
5) 출가위 이상. 단, 출가위 이상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강항마위(원불교교헌 3차 개정 제28조)
6) 원정사 이상. 단, 원정사 이상 자격이 없을 때에는 정사(원불교교헌 4차 개정 제31조)

라. 선 출

1) 총대회에서 선정(불법연구회 규약 1차 개정 제8조)

2) 본·지부 연합회의(불법연구회 회규 2차 개정 제21조)
3) 수위단회의 추천으로 중앙교의회에서 추대(원불교교헌 제29조)
4) 수위단회에서 선거하고 교정위원회의 인준을 얻은 후 중앙교의회에서 추대(원불교교헌 1차 개정 제17조)
5) 수위단원과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사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거하고 중앙교의회에서 추대(원불교교헌 3차 개정 제28조)
6) 수위단회에서 선거하고 중앙교의회에서 추대(원불교교헌 4차 개정 제32, 34조)

마. 임　　기

1) 何時든지 그 임무를 대행할 자격자가 유할 시 교체(불법연구회 규약 1차 개정 제15조)
2) 6년. 단 제1대 종법사는 何時든지 그 임무를 감능할 자격자가 유할 시 교체함(불법연구회 회규 2차 개정 제22조)
3) 6년을 임기로 함. 단 수위단회의 의결로써 중앙교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원불교교헌 제30조)
4) 직위기간은 6년을 1기로 한다(원불교교헌 제18조)
5) 6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원불교교헌 4차 개정 제33조)

바. 보　　궐

1) 궐위된 지 10일 이내에 수위단회의 추천을 얻어 1개월 이내에 중앙교의회를 소집하여 추대(원불교교헌 제31조)
2) 15일 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하고 50일 이내에 추대(원불교교헌 2차 개정 제20조)
3) 15일 이내에 그 후임을 선거한다. 단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선거하지 않음(원불교교헌 4차 개정 제32조)

사. 권　　한

1) 불법연구회 회규 2차 개정

① 총대회를 소집하고 그 개회 폐회 정회급 해산을 명함(제25조)
② 본·지부 연합회급 수위단회를 소집하고 차를 주재함(제26조)
③ 총대회의 협찬을 겸하여 회규를 제정 또는 변경함(제27조)

④ 會今 訓示 및 命今을 발하고 또는 발케함(제28조)
⑤ 긴급한 사건이 유하여 총대회를 소집키 불능할 시는 원의에 자문하여 회규에 代할 회령을 발함(제29조)
⑥ 직원의 임면 및 기타의 진퇴를 행함(제30조)
⑦ 지부 출장소의 종격을 정하고 또는 차를 승강함(제31조)
⑧ 회원에게 포교 및 교육을 행하고 그 법계의 승급을 행함(제32조)
⑨ 회원에게 대하여 포상을 행함(제33조)
⑩ 회원에게 대하여 징계 및 그 면제 또는 경함케 함(제34조)

2) 원불교교헌

① 교서를 편정하고 교화를 주재(제33조)
② 교정을 총람하고 상벌을 시행(제34조)
③ 교규를 제정하여 중앙교의회의 협찬을 얻어 이를 시행(제35조)
④ 교령을 발함(제36조)

3) 원불교교헌 1차 개정

① 교서를 편정하고 교화를 주재(제21조)
② 상벌을 시행하고 영전을 수여하며 사면복권을 명함(제22조)
③ 법의 절차에 의하여 인사를 임면함(제23조)
④ 교규를 제정하여 시행케 함(제24조)
⑤ 교령을 발함(제25조)

4) 원불교교헌 2차 개정

① 교화를 주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교서를 편정(제21조)
②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상벌을 시행하고 영전을 수여하며 사면복권을 명함(제22조)
③ 헌규의 정한 바에 따라 인사를 임면(제23조)
④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교규제정(제24조)
⑤ 교령을 발함(제25조)

5) 원불교교헌 4차 개정

① 교화를 주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교서를 편정(제35조)
②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교규제정(제36조)

③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인사를 임면(제37조)
④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영전을 수여하고, 사면과 복권을 명하며,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상벌을 시행(제38조)

아. 자　　문

1)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원불교교헌 3차 개정 제37조)
2) 원로 수위단원을 역임한 이와 동등한 자격인으로 원로회의를 구성하고 자문에 응하게 한다(제39조)

자. 퇴　　위

1) 퇴위 후라도 전 직위에 준한 禮遇를 보장한다(원불교교헌 제32조)
2) 퇴위 후라도 전 직위에 준한 禮遇를 보장한다. 퇴위한 종법사는 상사라 칭한다(원불교교헌 1차 개정 제26조)
3) 퇴위한 종법사를 상사라 칭한다. 상사는 종법사에 준하여 禮遇한다.

차. 법무실

1) 宗法師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실을 둔다(원불교교헌 2차 개정 제28조)

2. 역대 종법사

가. 鼎山 宗法師

1) 인적사항

① 법호 : 정산(鼎山)
② 법명 : 송규(宋奎)
③ 본관 : 야성(冶城)
④ 호적명 : 도군(道君)
⑤ 부 : 구산 송벽조(久山 宋碧照)
⑥ 모 : 준타원 이운외(準陀圓 李雲外)
⑦ 생년월일 : 1900년 8월 4일
⑧ 입교년월일 : 원기4년(1919) 2월

⑨ 출가일 : 원기4년(1919) 2월
⑩ 연원 : 소태산대종사(少太山大宗師)
⑪ 본적 :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용리
⑫ 출생지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동
⑬ 열반일 : 원기47년(1962) 1월 24일

2) 교직연보

근 무 지	직 명	근 무 기 간	비 고
靈 山		4. 2 ~	수위단회 중앙단원
經典編纂事業當務		4. 10 ~ 9. 9	
總 部	研 究 部 長	9. 9 ~13. 3. 26	
靈 山	教 務 部 長	13. 3. 26~15. 3. 25	
靈 山	支 部 長	15. 3. 26~18. 3. 25	新 興 教 務
總 部	教 務 部 長	18. 3. 26~19. 3. 25	
總 部	教 政 院 長	19. 3. 26~22. 4. 25	
靈 山	支 部 長	22. 4. 26~27. 4. 25	教 監
總 部	教 監	27. 4. 26~28. 4. 25	
總 部	總 務 部 長	28. 4. 26~28. 6. 5	
總 部	宗 法 師	28. 6. 6~47. 1. 24	

3) 성 적

① 공부성적 : 대각여래위(大覺如來位)
② 사업성적 : 정특등(正特等)
③ 원성적 : 정특등(正特等)

4) 재임중 주요 업적

① 일정말기에 교단 유지
② 전재동포 구호사업
③ 건국론 초안
④ 교명을 《원불교》로 선포
⑤ 원불교교헌 제정
⑥ 유일학림 설립하여 원광중고와 원광대학으로 발전시킴
⑦ 원광사 설립
⑧ 각종 자선기관 설립
⑨ 소태산대종사 성탑 및 성비 건립
⑩ 예전 개편
⑪ 제1대 창립동지들의 법계와 등위 전형
⑫ 제1대 총결산
⑬ 제1대 성업봉찬대회 소집
⑭ 동산선원, 중앙선원, 원광여중고 설립
⑮ 지방 교세 크게 진흥
⑯ 정관평 재방언공사와 성지 복구사업
⑰ 大宗經 편찬
⑱ 正化社를 설립하여 正典의 수정과 大宗經의 편수, 世典, 樂典, 教史, 法典 등의 편찬

⑲ 法恩財團 설립　　⑳ 三同倫理 선포

5) (最後 遺囑) 四大經綸

① 교재정비(教材整備)　　③ 정교동심(政教同心)
② 기관확립(機關確立)　　④ 달본명근(達本明根)

6) (最後 遺偈) 三同倫理

① 동원도리(同源道理)　　③ 동척사업(同拓事業)
② 동기연계(同氣連契)

「한 울안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

7) 著書

① 鼎山宗師 法語(世典)　　② 건국론(建國論)

나. 大山 宗法師

1) 인적사항

① 법호 : 대산(大山)　　⑦ 생년월일 : 1914년 3월 16일
② 법명 : 김대거(金大擧)　　⑧ 입교일 : 원기14년(1929) 3월 2일
③ 본관 : 김해(金海)　　⑨ 출가일 : 원기14년(1929) 3월 2일
④ 호적명 : 영호(榮灝)　　⑩ 연원 : 현타원(賢陀圓) 노덕송옥(盧德松玉)
⑤ 부 : 연산(連山) 김인오(金仁悟)　　⑪ 본적 :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⑥ 母 : 봉타원(鳳陀圓) 안경신(安敬信)　　⑫ 출생지 :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2) 교직연보

근 무 지	직 명	근 무 기 간	비 고
總 部	學 員	15. 4~16. 4	
〃	庶 務 部 書 記	16. 4~19. 4	
〃	相助公益育英部	19. 4~21. 4	
〃	教 務 部 書 記	21. 4~22. 4	
〃	金 錢 出 納 員	22. 4~23. 4	
〃	庶 務 部 長	23. 4~24. 4	

總 部	教 務 部 長	24. 4~28. 4	
〃	教 監	28. 4~31. 4	
서 울	出 張 所 長	31. 4~36. 4	
總 部	大 宗 經 助 力	36. 4~38. 4	
〃	教 政 院 長	38. 4~44. 3	
中 央 禪 院	禪 院 長	44. 3~47. 1	
總 部	宗 法 師	47. 1. 31~	

3) 재임중 주요 업적

① 7대교서(圓佛教教典, 佛祖要經, 禮典, 鼎山宗師法語, 圓佛教教史, 圓佛教教憲, 圓佛教聖歌)의 완정

② 『正典大意』와 『教理實踐圖解』 등의 저서를 통하여 원불교 교리의 정통적 해석과 실천방안 제시

③ 세계종교연합(U.R) 운동 제창

④ 교도 법위향상 운동과 전 교도의 법위사정 실시

⑤ 교단 8대기관(教化, 教育, 慈善, 産業, 文化, 奉公, 訓練, 福祉)과 財團의 확립 및 육성

⑥ 교단 3대운동(教化 訓練運動, 人材開發運動, 感謝報恩運動) 추진

⑦ 국제교화 추진

⑧ 訓練強化 및 각종 訓練機關 設立

⑨ 教憲改正과 각종 法規 제정 및 시행을 통한 법치교단의 토대 확립

⑩ 새 生活運動 展開

⑪ 開教半百年 記念事業 推進

⑫ 靈山 等 聖地開發事業 推進

⑬ 4대봉공회(출가, 재가, 국가, 세계) 육성

⑭ 永慕墓園 事業 展開

⑮ 교단창립 제 2대 및 대종사탄생백주년 성업봉찬사업 추진

⑯ 圓昌會 설립

4) 著書

① 正典大意　　② 教理實踐圖解

③ 大山宗法師法門集(Ⅰ. Ⅱ. Ⅲ)

다. 종법사 선거 규정

49. 10. 16제정(교규 제12호)
62. 3. 5개정(교규 제41호)
73. 7. 15개정(교규 제8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법사의 선거를 질서있고 공정하게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① 종법사의 선거는 수위단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종법사의 선거는 교헌 제31조에 의하여 피선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개표) 개표는 수위단회에서 선정한 남, 녀 단원 각 2인과 임시 의장이 행한다.

제4조(당선정족수) ①수위단회 재적단원 2/3이상 득표자를 종법사 당선자로 한다. ② 전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투표로 하고, 2차투표에도 전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투표한다.

제5조(당선확정) 개표가 끝나면 임시 의장은 당선을 선언함으로써 당선이 확정된다.

제6조(당선자 공고) 당선이 확정되면 임시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중앙교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사무) 종법사의 선거사무는 수위단회 사무처에 관장한다.

제8조(시행) 이 규정은 7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法 務 室

법무실은 종법사의 사무를 보좌하고 시봉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문 수필 및 편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소태산대종사 재세시에는 법무실이 없었다. 다만 사무실 직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조실 청소 및 시봉을 했다. 시봉을 주로 많이 한분은 김형오(金亨悟)선생과 김대거(金大擧)교무였고 그외 이광오, 박창기교무 등이 하였으며 열반 직전에는 전태수씨가 시봉하였다.

정산종사 당대에도 종전대로 10여년간은 정식기구를 두지 않고 종법실 비서 또는 종법원 비서로 이공전(李空田)교무가 주로 시봉을 하면서 총부에 거주하는 교무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시봉을 하였다. 그러다가 6·25사변 후 법무실을 발족하여 초대 법무실장에 이공전교무가

부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직원은 두지 않고 3~4명의 시봉진이 받들어 드렸다.

대산종법사 당대에 와서는 법무실장을 기용하면서 법감진과 법무진을 강화하고 주임, 주사 등도 보강하여 법무실의 업무를 확대하였다. 특히 대산종법사가 신도안과 완도, 제주, 만덕산, 원평 등지를 전지하며 재가, 출가, 학생 훈련을 강화하고 법위 향상운동을 적극적 추진하며 기관확립에 주력하였으므로 법무실에서는 훈련에 중점을 두고 기관개척과 해외교화 개척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특히 종교연합 창설추진에 따른 모든 면을 보좌하면서 대산종법사가 많은 법문을 하였으므로 법문도 편집하는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가. 법무실 특별활동

1) 편집업무

① 예전 및 대종경 편수

② 정전대의－원기62년 11월 초판 발행
원기72년 7월 29일 세로쓰기 증보판

③ 교리실천도해－원기62년 11월 초판 발행
원기72년 6월 24일 증보판

④ 대산종법사 대법회 법문집 : 원기65년 발행

⑤ 대산종법사 법문집 Ⅱ

2) 대법회 및 훈련실시

· 청주교구 합동법회
· 부산교구 합동법회(2회)
· 서울교구 합동법회(7회)
· 영광교구 합동법회
· 영산성지 합동법회
· 목포 합동법회
· 광주 합동법회(3회)
· 대구 합동법회(2회)
· 정읍 합동법회(2회)
· 이리 합동법회(3회)
· 군옥지구 합동법회
· 수원 합동법회
· 대전 합동법회(3회)
· 마산 합동법회(1회)
· 만덕산 훈련원(2회)
· 진주 합동법회(1회)
· 부안 합동법회(1회)
· 전주 합동법회(3회)
· 제주 합동법회(2회)

* 신정훈련 : 원기67년(1982) 1월 1일부터 3일간 종법사를 모시고 전국교도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음.

* 특별훈련 : 총부, 신도안, 완도, 만덕산, 원평 등지에서 3·3회, 예비교역자, 선학원 학생, 원창회, 법사단, 각 교구훈련을 원기67년(1982)부터 6, 7월중에 종법사를 모시고 실시

하였음.

* 원기68년(1983)~72년(1987) 7~8월까지 완도 소남훈련원에서 4~5,000여 명의 교도가 훈련을 실시하였음.

3) 기관 설립 추진

대산종법사께서 창립하실 때 하명을 받들어 시봉진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업무를 추진 하였음

① 삼동원 창립에 합력
② 원불교 중앙 신용협동조합 설립 추진
③ 원불교 새마을금고 설립추진
④ 도곡 삼동원 이전에 협력
⑤ 완도 소남훈련원 창립 개발 추진
⑥ 제주 국제훈련원 건축 및 개발 추진
⑦ 제주 원광한의원 개설 추진
⑧ 만덕산 훈련원 건축추진 및 임야 매입추진
⑨ 영모원 사업 추진
⑩ 중앙훈련원 부지 매입 및 건축기금 모금 합력
⑪ 원평 동곡 개발 추진
⑫ 원창회 창립준비 추진
⑬ 사대봉공회 기금 준비
⑭ 국제종교연합창설 추진
⑮ 해외교당 개척

나. 역대임직원

직 책	법명(호적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시 자	金 亨 悟(揚鉉)	1911. 10. 14		대종사 당시 주로 시봉했던 분들임.
〃	金 大 擧(榮灝)	1914. 3. 1		
〃	朴 昌 基(南基)	1917. 9. 14		
〃	李 光 悟(斗行)	1920. 2. 11		
〃	全 泰 守(泰英)	1925. 6. 7		
종법실비서	李 空 田(順行)	1927. 3. 24	36~37	정산종법사 당대
종법원비서	〃	〃	39~41	
시 봉	金 泰 鎬		41~42	
법무실장	李 空 田(順行)	1927. 3. 24	42~56	
주 사	金 正 貫(鎬炳)	1932. 11. 29	42~44	
공양주무	金 文 局(順愛)	1920. 6. 25	42~47	
공 양	李 惠 善(玄南)	1928. 8. 24	42~47	
법감겸실장	李 空 田(順行)	1927. 3. 24	45~47	
주 사	朴 正 薰(鍾煥)	1934. 7. 21	46~47	
교헌편찬및시봉	金 允 中(還烈)	1927. 12. 7	45~47	
서 무	金 正 貫(鎬炳)	1932. 11. 29	46~47	
법 무	朴 正 薰(鍾煥)	1934. 7. 21	46~47	

시 봉	李廣淨(建衡)	1936. 9. 1	47~49	대산종법사당패
공양원	李慧善(玄南)	1928. 8. 24	48~51	
법감겸실장	金允中(還烈)	1927. 12. 7	49~58	
시 봉	權俊圓(在完)	1940. 4. 26	49~50	
법무겸사감	李廣淨(建衡)	1936. 9. 1	50~	
법 무	朴濟現(英姬)	1932. 2. 4	50~	
법 무	黃直平(熙薛)	1932. 3. 17	51~61	
〃	李廣淨(建衡)	1936. 9. 1	51~56	
〃	金仁喆(永千)	1934. 12. 4	51~56	
주 무	李惠善(玄南)	1928. 8. 24	51~56	
공양원	崔修圓(承玉)	1937. 11. 25	51~57	
법 감	李空田(順行)	1927. 3. 24	51~58	
〃	李炳恩(炳穆)	1925. 4. 9	〃	
법 무	金復煥(復煥)	1938. 12. 10	〃	
〃	朴正薰(鏞煥)	1934. 7. 21	51~52	
〃	李德心(南姬)	1937. 11. 5	52~	
공양원	李道蓮(玉姬)	1949. 9. 14	52~	
법 무	辛道亨		52~	
주 임	金聲振(春會)	1939. 10. 13	54~55	
주 사	金明悟(貞順)	1939. 4. 23	〃	
〃	崔柔圓(秉淑)	1947. 5. 15	54~	
〃	權世圓(在賢)	1947. 2. 25	55~56	
주 사	李守眞(琴月)	1943. 3. 11	57~58	
〃	吳暕善(順玉)	1946. 3. 5	〃	
〃	李龍定(俊)	1947. 1. 9	〃	
주 임	李龍定(俊)	1947. 1. 9	59~61	
〃	李聖局(炳植)	1947. 12. 29		
주 사	蘇理根(南順)	1944. 3. 4	59~60	
〃	吳德觀(有子)	1951. 12. 26	57~62	
〃	金寬賢(良任)	1948. 4. 6	61~67	
주 사	崔仁春(春江)	1944. 11. 11	62~	
기 사	徐敬範(午秀)	1942. 12. 22	61~	
법 무	李龍定(俊)	1947. 1. 9	63~70	
주 사	宋仁明(春)	1946. 1. 16	63~64	
간 사	高敬德		64~65	
법 무	李聖局(炳植)	1947. 12. 29	65~70	
주 임	金寬賢(良任)	1948. 4. 6	65~67	
주 사	崔信吉(吉順)	1950. 3. 15	64~66	

실	장	黃 直 平(熙薛)	1932. 3. 17	66～	
주	사	黃 道 局(保國)	1950. 9. 15	66～69	
주	사	申 眞 圓(行圓)	1954. 5. 15	65～67	
〃		鄭 仁 信(仁淑)	1951. 3. 12	67～68	
주	임	黃 道 局(保國)	1950. 9. 15	68～70	
법	무	吳 曙 善(順玉)	1946. 3. 5	68～69	
주	사	金 眞 光(大會)	1954. 11. 8	68～69	
법	무	金 寬 賢(良任)	1948. 4. 6	69～	
주	사	金 潤 圓(永任)	1955. 2. 28	68～69	
〃		李 舜 悟(仁子)	1952. 3. 25	69～70	
〃		黃 然 浩(慶麗)	1954. 10. 3	70～	
〃		梁 眞 性(英子)	1957. 10. 20	71～	
부 법	감	李 龍 定(俊)	1947. 1. 9	70～	
〃		李 聖 局(炳植)	1949. 12. 29	〃	
주	사	千 萬 成(喆相)	1953. 8. 12	71～	
법	무	黃 道 局(保國)	1950. 9. 15	71～	

Ⅱ. 수 위 단 회

1. 수위단회의 정신

수위단회는 원불교의 최고의결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정신은 보다 심원(深遠)한 데에 있다. 『대종경』 서품 6장에 보면 「대종사 앞으로 시방 세계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十人一團의 단조직 방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하시고 앞서 고르신 구인 제자로 이 회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신 후 '이 단은 곧 시방 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팔인 단원은 팔방을 응한 것이라, 펴서 말하면 이 단이 곧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이치니라' 하시니 단장에 대종사, 중앙에 宋奎, 단원에 李載喆, 李旬旬, 金幾千, 吳昌建, 朴世喆, 朴東局, 劉巾, 金光旋 이러라.」 이상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소태산대종사는 일원의 진리를 깨친 후 시방세계 모든 인류를 두루 제도할 서원을 세우고 그 방법으로서 십인일단의 以團治敎법을 제정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구인 제자로 최초의 단을 조직하였고, 이것이 곧 최초의 수위단이 되었다. 그런데 구인 제자는 혈인 기도에 의한 死無餘恨의 대 희생정신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수위단의 정신은 소태산대종사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무여한의 무아봉공 정신에서 출발하였고, 시방세계 일체 생령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겠다는 간절한 서원이 밑바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불교성가』 제16장 수위단 찬가에는 「이땅에 새 회상이 세워질 때에 남먼저 奉命하신 아홉분 어른 일단의 혈성으로 뭉쳤던 기운 그 기운을 이어 맡은 우리 수위단 수위단은 교단의 얼 교단의 중심 받들세 찬양하세 우리 수위단 받들세 찬양하세 우리 수위단」이라 노래하고 있다.

2. 수위단회의 기능

원기72년(1987) 11월 15일 개정된 『원불교교헌』에 의하면 수위단회는 원불교의 최고결의기관이며 최상위 교화단이다. 따라서 수위단회는 교정, 감찰, 입법 등 교단의 삼권분립에 있어서 순수한 입법기관의 기능을 갖는 교단의 최고결의기관인 동시에, 종법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종법사의 자문기관이다. 또한 수위단회는 교화에 있어서나 교단통치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교단의 얼, 교단의 중심으로서 교단의 모든 일은 수위단회에서 출발하고 교단 지도체제의 총화를 이루는 기관이다.

『원불교교헌』 제47조에는 수위단회의 의결사항을 ①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② 교서 편정과 교헌·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 법강항마위 이상의 法位昇降에 관한 사항 ④ 교리의 최종 해석에 관한 사항 ⑤ 교헌·교규의 판정에 관한 사항 ⑥ 교정원장·감찰원장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⑦ 중요 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⑧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위단회가 교단 통치의 최고결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명실상부하게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교단창립 제2대 이후부터 였다. 창립 제1대에는 수위단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당시에는 수위단 보궐단원 선거 정도 이외에는 별다른 결의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오직 개별적으로 소태산대종사와 정산종법사의 상담역 내지 자문역을 하였을 뿐이다. 그러다가 원기38년(1953) 제1대 성업봉찬사업이 끝나고 창립 제2대에 들어오면서 부터 수위단회는 교단의 중요한 일을 직접 계획하며, 모든 일을 관장하여 처리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3. 수위단회의 운영 및 조직

『원불교교헌』에 따르면 수위단회는 종법사인 단장 및 원로수위단원과 남녀 각 9인의 정수위단원으로 구성된다. 원로수위단원은 정수위단원 2기 역임자로 하며, 정수위단원은 正師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중앙교의회의 중앙위원과 현역 4급이상 교역자가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원로수위단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종법사가 이에 당하도록 했다.

원로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 단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가 4년이상일 경우에는 1期로 인정하고 1년미만일 경우에는 선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수위단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중에 단장이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수시 소집할 수 있으며, 수위단회의 의장은 단장이 이를 맡고, 수위단회의 부의장은 원로수위단 중앙단원 남녀 각 1인과 정수위단 중앙단원 남녀 각 1인으로 하여 議長團을 구성, 의장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원불교교헌』에 바탕하여 以團治教의 정신아래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할 목적으로 교규 제83호인 『수위단회규정』을 두고 있다.

『수위단회규정』에 따르면 수위단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동 규정 제12조에는 총무·법제위원회, 교화·문화위원회, 재정·산업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공익·봉공위원회, 감찰·기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총무·법제 위원회
- 가. 수위단회 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총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중앙교의회, 교정위원회, 원의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기타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교화·문화 위원회
- 가. 이단치교에 속하는 사항
- 나. 교화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문화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재정·산업 위원회
- 가. 재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④ 교육·훈련 위원회
-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훈련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⑤ 공익·봉공 위원회
- 가. 공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4대 봉공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⑥ 감찰·기강 위원회
- 가. 감찰원 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감찰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단원의 징계에 속하는 사항

상임위원회 위원은 수위단원으로 의장단이 배정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원은 1분과만의 상임위원이 되고 단장과 중앙단원은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수위단회규정』 제11조에 밝히고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동 규정 12조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의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위단회규정』 제16조에는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단원아닌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고 명시

하고 있다. 동 규정 제17조에는 전문위원은 소관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기초심사를 보좌하며 전문사항의 조사 연구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고, 제18조에는 전문위원 연석회의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수위단회규정과 수위단회 선거규정을 첨부한다.

가. 수위단회 법

49. 10. 16제정(교규 제 9호)
54. 9. 4개정(교규 제23호)
62. 12. 10개정(교규 제49호)
71. 10. 1개정(교규 제77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단치교의 정신아래 수위단회를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단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집) ①수위단회는 교헌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소집은 늦어도 개회 10일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회기) 수위단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

제4조(의안의 총괄조정) 수위단회의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제5조(의장의 권한) 의장은 수위단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사무를 감독하고 수위단회를 대표한다.

제6조(교법판정) 교헌·교규·교리의 정신에 위배되거나 왜곡된 해석이 있을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판정한다.

제7조(총선거 후의 의장) 총선거 후 처음 개최되는 수위단회는 단원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8조(수위단회 사무처) ①수위단회 사무처는 교헌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수위단회 사무를 정리하고 수위단회의 의결을 요하는 모든 안건과 기획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임원을 둔다.

제9조(자료실) ①수위단회에 수위단회 자료실을 둘 수 있다. ②자료실에 소관된 사무는 사무처장이 주관한다.

제10조(위원회의 종류) 수위단회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11조(상임위원회) ①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수위단원으로 의장단이 배정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단원은 1분과만의 상임위원이 되고 단장과 중앙단원은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2조(상임위원회 소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법제 위원회
   가. 수위단회 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총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중앙교의회, 교정위원회, 원의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기타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사항
2. 교화·문화위원회
   가. 이단치교에 속하는 사항
   나. 교화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문화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재정·산업 위원회
가. 재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교육·훈련 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훈련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공익·봉공 위원회
가. 공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4대 봉공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감찰·기강 위원회
가. 감찰원 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찰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단원의 징계에 속하는 사항

제13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전조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결의안도 포함한다)과 청원 등을 심의 조사한다.

제14조(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제15조(상임위원회의 결의)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있어 찬반동수일 때에는 이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6조(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①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단원아닌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단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각 상임위원회의 별 전문위원 정수는 7인 이내로 한다.

제17조(전문위원의 직무) 전문위원은 소관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아 의안의 기초심사를 보좌하며 전문사항의 조사 연구에 종사한다.

제18조(전문위원 연석회의) ①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연석회의를 가질 수 있다. ②전문위원 연석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된다. ③부장·처장은 연석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9조(특별위원회) ①수위단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증되는 안건과 현지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선출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수위단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된다.

제2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위원중에서 선거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한다. ③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심사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규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연합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합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할 수는 없다. ②연석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제24조(공청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공청회를 열 수 있다. ②공청회를 열때에는 의장의 재가를 얻어서 한다.

제25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회부 안건의 심사가 끝난 때에는 심사경과의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될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생략할 수도 있다.

제26조(위원장의 보고) 위원장은 회부 안건이 본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심사과정과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27조(비밀회의) 수위단회는 특히 비밀을 요하는 중요의결에 있어 비밀회의를 할 수 있다.

제28조(보고·증언청취) 수위단회는 의안의 성질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 또는 전문위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보고 또는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제29조(의안의 제출) 수위단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개회 5일전까지 사무처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안 재출의 조정) 결의·집행·감찰의 장은 전조의 제출에 있어 소속 부처의 의안을 종합 조정하여 재출하여야 한다.

제31조(청원·건의) 수위단회는 단원 2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재출한 개인이나 단체의 청원 또는 건의를 접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2조(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의 발의와 청원 건의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단원에게 배부하고 수위단회에 상정한다. ②의안의 성질에 따라서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한다.

제33조(의안의 이송) 수위단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의장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한다.

제34조(회의록) 수위단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사무처장이 서명날인하여 수위단회 사무처에 보존한다.

제35조(회의규칙 준용) 수위단회는 이 법에 특별히 정한 바 외에는 현행 일반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70. 10. 1).

나. 수위단원 선거법

49. 10. 16제정(교규 제13호)
62. 3. 5개정(교규 제42호)
67. 9. 2개정(교규 제59호)

제 1 조(목적) 본법은 교헌 제42조에 의하여 수위단원의 선거를 질서있고 공정하게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선거사무) 수위단원 선거사무는 교정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제 3 조(선거인 명부작성)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교정위원선정 직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제 4 조(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 ①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교헌 제42조 3항에 의하여 구성하고 회의 개최는 수위단원 선거 10일 이전에 하며 소집공고는 늦어도 추천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행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수위단회 의장이 이에 당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5조(후보자격 및 후보자격자순위) ①후보자는 교헌 제42조 2항에 의하되 교직 20년이상 연령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종법사의 특별추천이 있는 이는 예외로 한다. ②후보자격자의 순위는 법위를 우선하고, 법위가 같을 때는 교직년수를 우선하고, 교직년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단, 재가후보자의 순위는 별항으로 한다.

제6조(후보추천 및 선거) 수위단원의 총선거는 추천위원회에서 남녀 각 정원의 배수 이상을 후보로 추천하여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한다. 단, 재가 수위단원의 정원은 수위단회에서 정한다.

제7조(보궐선거) 보궐 단원의 선거는 보궐사유가 생긴 후 처음 개최되는 교정위원회에서 행한다. 단, 수위단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8조(후보자 공고) ①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된 후보자 명단을 늦어도 선거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추천된 후보자의 사진, 법호, 법명 및 교단 경력을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선거방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직접 비밀 투표로써 한다.

제10조(투표용지) ①투표 용지에는 남녀별로 순위 및 법명을 표시하여 인쇄한다(별지 제1호서식) ②후보자의 순위는 본법 제5조 2항의 후보자격자 순위에 준하여 정한다.

제11조(투표통지서교부) 총무부장은 투표통지서를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 선거일 전 7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서식)

제12조(투표 및 개표위원) ①투표 및 개표는 교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구인의 투표 및 개표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투표용지수령) ①선거인은 위원에게 투표통지서를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의 절취선에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번호난에 선거인 등재 번호를 기입한 후 절취선을 따라 절취하여 교부한다.

제14조(기표) ①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당선 정수의 후보자를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기표난에 ○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개표개시) 투표시간이 끝나면 위원은 바로 개표한다.

제16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난 외에 기표한 것.
3. 남·녀 각각 당선 수에 초과되거나 미달하게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내공이 막혀 있는 것.
2. 동일한 후보자에게만 두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두후보자의 구분 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중첩된 부분이 기표 원둘레의 4분의 1이내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제17조(당선인의 결정) 위원장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순서대로 정수의 수위단원을 결정하고 이를 바로 교정위원회 의장에게 통보한다.

제18(동표자처리) 후보추천 및 선거 결과가 동표일 때는 교직 연수를 우선하고 교직 연수도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제19조(선거결과선포) 교정위원회 의장은 위원장의 통보에 의하여 투표용지의 순위별로 당선인을 선포함으로써 당선이 확정된다.

제20조(특임단원의 자격) 특임단원의 선임 자격은 본법의 제5조 제1항에 의한다.

제21조(공고) 수위단원 선거 결과 발표가 끝나면 종법사는 원로단원을 포함한 전 수위단원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2조(시행)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번 호 ㊞

수위단원투표용지

(출 가 男)
(출 가 女)
(재가男女)

기 호	법 호	법 명	기 표 란

(별지 제2호 서식)

투 표 통 지 서

선거인명부등재번호 :
법 명 :
근 무 지 :
귀하는 교헌 제45조에 의거하여 수위단원 선거권이 있습니다.
수위단원 선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가. 선거일시 :
나. 선거장소 :

* 주의사항
투표시에는 반드시 본 통지서와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위 원 장

4. 수위단회 제도의 변천

수위단이 맨 처음 조직되기는 원기2년(1917) 음력 7월 26일이었으나 체계적으로 운영된 것은 원기27년(1942) 4월에 2차개정된 『불법연구회회규』 때부터 였다. 그때로부터 원기72년(1987) 11월 15일에 제4차로 개정된 『원불교 교헌』까지의 수위단회 제도의 변천과정을 약술하고자 한다.

가. 기 능

1) 수위단은 종법사를 보좌하는 최고기관으로 하고 좌의사항을 결의함. 종법사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일로 인정한 사항(불법연구회회규 2차개정 제108조, 원기27년 4월).

2) 수위단회는 종법사의 최고자문에 응하고 좌의사항을 의결한다. ①종법사 추천에 관한 것. ②중앙교의회 특선위원 선정에 관한 것. ③직원선정에 관한 것. ④법계승강에 관한 것. ⑤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원불교교헌 최초제정시 제80조, 원기33년 4월 26일).

3) 수위단회는 수위단원 전원으로 구성된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다(원불교교헌 제1차개정 제27조, 원기44년 4월 25일).

4)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다(원불교교헌 제2차개정 제29조, 원기49년 4월 29일).

5)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다(원불교교헌 제3차개정 제40조, 원기62년 3월 1일).

6)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결의기관이며 최상위 교화단이다(원불교교헌 제4차개정 제42조, 원기72년 11월 15일).

나. 구 성

1) 수위단회는 본·지부연합회에서 선정한 수위단원으로서 남녀별로 그 단을 조직하고, 정원은 단장을 합하여 각 10인으로 하며, 종법사는 남녀 각 단의 단장이 되어 통솔함(불법연구회회규 2차개정, 제103, 106조).

2) 수위단회는 중앙교의회에서 선정한 수위단원으로 조직하며, 수위단은 남녀별 2단을 두고 정원은 단장을 합하여 각 10인으로 하며 종법사가 2단의 단장이 되어 이를 통솔한다(최초제정 원불교교헌 제74, 77조).

3) 수위단은 남녀 각 9인의 단원과 단장 1인으로 조직한다. 수위단의 단장은 종법사가 이에

당한다(원불교교헌 제1차개정 제28조).

4) 수위단은 남녀 각 9인의 단원과 단장 1인으로 조직한다. 수위단의 단장은 종법사가 이에 당한다(원불교교헌 제2차개정 제30조).

5) 수위단회는 18인 이내의 원로단원, 남녀 각 8인의 선거에 의한 단원, 종법사가 특임하는 해외단원 및 단장 1인으로 조직한다. 단장은 종법사가 이에 당한다(원불교교헌 제3차개정 제41조).

6) 수위단회는 종법사인 단장 및 원로수위단원과 남녀 각 9인의 정수위단원으로 구성한다(원불교교헌 제4차개정 제44조).

다. 피선자격 및 선거

1) 수위단원은 법강항마위 이상인 중에서 선정함.

단, 창립기한중은 법마상전급인도 피선거자격이 유함(불법연구회회규 2차개정 제104조).

2) 수위단원은 정사이상을 피선자격으로 한다.

단, 정사자격이 없을 때에는 교정중에서 선정하는 수도 있다(최초제정 원불교교헌 제75조).

3) 수위단원은 법강항마위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하여 중앙교의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법강항마위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마상전급 중에서 선거할 수도 있다(원불교교헌 제1차개정 제29조).

4) 수위단원은 법강항마위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하여 중앙교의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법강항마위 자격이 없을 때에는 법마상전급 중에서 선거할 수 있다(원불교교헌 제2차개정 제31조).

5) 원로단원은 선거에 의하여 2기(보궐임기제외)를 역임한 이가 된다. 선거에 의한 단원은 법강항마위 이상을 피선자격으로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교정위원회에서 선거하며, 법강항마위 자격이 없을 때에는 예비법강항마위 중에서 선거할 수 있다. 수위단회 후보추천위원은 원로단원이 이에 당한다. 특임단원은 해외교구의 교감이상 중에서 종법사가 특임한다(원불교교헌 3차개정 제42조).

6) 원로수위단원은 정수위단원 2기 역임자로 한다. 정수위단원은 정사이상을 피선자격으로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중앙교의회의 중앙위원과 현역 4급이상 교역자가 선거한다.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원로수위단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종법사가 이에 당한다(원불교교헌 4차개정 제44, 45조).

라. 임　　기

1) 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함.

단, 재임함을 득함(불법연구회회규 2차개정 제105조).

2) 수위단원의 임기는 6개년으로 하고 보궐로 피선된 때에는 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최초제정 원불교교헌 제76조).

3) 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보궐임기는 전단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원불교교헌 제1차개정 제30조, 원불교교헌 제2차개정 제32조).

4) ①전조 1항, 2항의 수위단원 (원로단원과 선거에 의한 단원) 임기는 6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전조 4항의 단원 (특임단원)은 해외 재직중에 한하여 재임한다. ③전조 2항 단원 (선거에 의한 단원)의 보궐임기는 전단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원불교교헌 제3차개정 제43조).

5) ①원로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②정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보궐단원의 임기는 전단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가 4년이상일 경우에는 1기로 인정하고 1년미만일 경우에는 선거하지 아니한다(원불교교헌 제4차개정 제46조).

마. 의결사항

1) 종법사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일로 인정한 사항(불법연구회회규 2차개정 제108조).

2) ①종법사 추천에 관한 것 ②중앙교의회 특선의원 선정에 관한 것 ③직원 선정에 관한 것 ④법계 승강에 관한 것 ⑤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최초제정 원불교교헌 제80조).

3) ①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②수위단 보궐단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③교정원장·감찰원장 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④각부의 장, 교령, 교감, 교무, 법감, 예감, 감찰위원, 각 사무처의 장, 각 시설기관의 장 및 기타 중요인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 ⑤교정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⑥중앙교의회 특선의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⑦법강항마위 이상의 법계 승강에 관한 사항 ⑧교서편정과 교헌·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⑨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증하는 사항(원불교교헌 제1차개정 제31조).

4) ①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②수위단 보궐단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③교정원장·감찰원장 선거에 관한 사항 ④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교정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

항 ⑥중앙교의회 특선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⑦법강항마위 이상의 법계 승강에 관한 사항 ⑧교서편정과 교헌·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⑨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원불교교헌 제2차개정 제33조).

5) ①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승강에 관한 사항 ②교서편정과 교헌·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교정원장·감찰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④감찰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⑥중앙교의회 특선의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⑦교정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⑧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원불교교헌 제3차개정 제44조).

6) ①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 ②교서편정과 교헌·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③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승강에 관한 사항 ④교리의 최종 해석에 관한 사항 ⑤교헌·교규의 판정에 관한 사항 ⑥교정원장·감찰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⑦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⑧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⑨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원불교교헌 제4차개정 제47조).

5. 수위단회 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2. 7. 26	남자수위단 첫 조직 대종사 영산에서 9인제자를 데리시고 첫 단을 조직하사 도실건축과 방언역사를 마치신 후 특별기도를 행하게하사 원기4년 7월 26일에 혈인감천의 법계인증을 얻게 하시니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團長 大宗師, 乾方 李載喆, 坎方 李旬旬, 艮方 金幾千, 震方 吳昌建, 巽方 朴世喆, 离方 朴東局, 坤方 劉 巾, 兌方 金光旋, 中央 宋 奎	
10. 4. 26	남자수위단 제1차 보궐 및 대리 조단 대종사 익산에서 巽方 朴世喆의 열반으로 인한 보궐과 坎方 李旬旬, 离方 朴東局, 坤方 劉巾의 實務不履行으로 인한 대리를 新任하시니 다음과 같다. 巽方 李東安, 坎方 宋道性, 离方 全飮光, 坤方 趙甲鍾	
16. 3.	여자수위단 시보단 조직 대종사 익산에서 여자수위단 試補團을 조직하사 특별기도를 행하게 하시었다가 동년 이를 중지케 하시니 당시 명단은 다음과 같다.	

16. 3.	團長 大宗師, 乾方 李東震華, 坎方 張寂照, 艮方 崔道華, 震方 梁夏雲, 巽方 田參參, 离方 李靑春, 坤方 鄭世月, 兌方 朴四時華, 中央 李共珠
20. 9. 10	남자수위단 제2차 보궐조단 艮方 金幾千의 열반으로 인한 보궐로 柳虛一이 선임되다.
24. 4. 25	남자수위단 제3차 보궐조단 兌方 金光旋의 열반으로 인한 보궐로 朴大完이 선임되다.
26. 5. 11	남자수위단 제4차 보궐조단. 巽方 李東安의 열반으로 인한 보궐로 徐大圓이 선임되다.
28. 4. 28	남자수위단 제5차 보궐조단 巽方 徐大圓의 제명으로 인한 보궐로 李完喆이 선임되다.
28. 4. 29	여자수위단 정식조직 및 대리내정 대종사 여자수위단을 정식으로 다시 조직하시고 실무불능단원의 대리까지 내정하시니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團長 大宗師, 乾方 朴四時華, 坎方 張寂照, 艮方 崔道華, 震方 李願華, 巽方 李靑春, 离方 李東震華, 坤方 鄭世月, 兌方 黃淨信行, 中央 李共珠, (대리단원) 乾方 金永信, 坎方 曺專權, 艮方 曺一貫, 震方 徐大仁, 巽方 吳宗泰
28. 6. 7	신 단장 추대 및 남자수위단 제6차 보궐조단 단장 대종사의 열반으로 인한 신단장 선거와 그에 따른 중앙 및 감방의 보궐조단을 행하니 다음과 같다. 團長 宋 奎, 中央 宋道性, 坎方 宋慧煥
29. 4. 26	남자수위단 제7차 보궐조단 乾方 李載喆의 열반으로 인한 보궐로 金大擧 선임되다.
30. 1. 25	여자수위단 실무 발족 앞서 대종사 遺命으로 내정되었던 단원명단을 정식 공포하고 남자수위단과의 합동회의로 수위단회를 구성함에 이르러 드디어 실질적인 발족을 보게 되니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團長 宋 奎, 乾方 金永信, 坎方 曺專權, 艮方 曺一貫, 震方 徐大仁, 巽方 吳宗泰, 离方 李東震華, 坤方 鄭世月, 兌方 黃淨信行, 中央 李共珠
31. 4. 1	남자수위단 제8차 보궐조단 中央 宋道性의 열반과 坎方 全飮光의 제명퇴위로 인한 보궐을 선임하니 다음과 같다. 中央 柳虛一, 艮方 朴將植, 坎方 金洪哲
38. 4. 26	제1회 수위단원 총선거 교헌소정의 임기제 실시에 따라 종법사 특별유시에 의하여

38. 4. 26 前수위단원 전원과 중앙간부의 연합회의에서 신수위단 단원후보를 공천하여 제2대 제1회 중앙교의회의 인준을 얻음으로써 제2대 제1회 수위단이 조직되니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團長 宋 奎

(방위)	(남자)	(여자)	(방위)	(남자)	(여자)
乾方	朴將植	吳宗泰	离方	金洪哲	徐共南
坎方	李雲捲	李敬順	坤方	朴光田	梁道信
艮方	宋慧煥	金永信	兌方	李完喆	李東震華
震方	趙甲鍾	曺專權	中央	金大擧	李共珠
巽方	柳虛一	徐大仁			

40. 4. 23 제1회 제1차 보궐 조단

여자 离方 徐共南의 퇴위으로 인한 보궐로 李泰然이 선임되다.

41. 12. 11 제1회 제2차 보궐 조단

남자 艮方 宋慧煥의 열반으로 인한 보궐로 成丁哲이 선임되다.

44. 4. 24 제2회 수위단원 총선거

교헌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제2대 제2회 수위단이 조직되니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團長 宋 奎

(방위)	(남자)	(여자)	(방위)	(남자)	(여자)
乾方	朴將植	吳宗泰	离方	金洪哲	李泰然
坎方	李雲捲	李敬順	坤方	朴光田	梁道信
艮方	成丁哲	金永信	兌方	李完喆	李東震華
震方	趙甲鍾	曺專權	中央	金大擧	李共珠
巽方	丁光薰	徐大仁			

47. 1. 31 제2회 제1차 보궐조단

단장 송규종법사 열반으로 인한 신 단장선거와 그에 따라 중앙 및 곤방의 보궐 조단을 행하니 다음과 같다.

團長 金大擧, 中央 朴光田, 坤方 趙暎錫

49. 4. 28 제2회 제2차 보궐조단

여자 离方 李泰然의 열반으로 인한 보궐로 교헌소정의 보궐선거 실시에 따라 黃淨信行이 선임되다.

50. 3. 24 제3회 수위단원 총선거

교헌소정의 임기만료로 인한 수위단원을 수위단원 선거법에 의거, 총선거를 실시한 바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團長 金 大 擧

(방위)	(남자)	(여자)	(방위)	(남자)	(여자)
乾方	朴將植	吳宗泰	离方	李雲捲	李敬順

50. 3. 24

艮方 成丁哲 金永信　坤方 趙暻錫 梁道信
震方 趙甲鍾 曺專權　兌方 李完喆 李東震華
巽方 丁光薰 徐大仁　中央 朴光田 李共珠
离方 金洪喆 黃淨信行

51. 4. 15

제3회 제1차 보궐 조단

남자 兌方 李完喆단원의 열반으로 인한 보궐로 安理正단원이 선출되었다.

53. 3. 25

제3회 제2차 보궐조단

여자 兌方 李東震華단원의 열반으로 인한 보궐로 丁良善이 선출되었다.

54. 3. 28

제2대 제3회 수위단회 각 분과별 위원 선정

수위단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수위단회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바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분과 위원장 朴將植, 위원 金洪哲, 徐大仁, 丁良善
2) 교화분과 위원장 李雲捲, 위원 安理正, 曺專權, 吳宗泰
3) 경제분과 위원장 趙甲鍾, 위원 成丁哲, 趙暻錫, 金永信
4) 감찰분과 위원장 丁光薰, 위원 黃淨信行, 李敬順, 梁道信

56. 3. 31

제4회 수위단원 총선거

교헌소정의 임기 만료로 인한 총선거를 한 바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團長 金大擧

(방위)	(남자)	(여자)	(방위)	(남자)	(여자)
乾方	朴將植	吳宗泰	离方	金洪哲	黃淨信行
坎方	李雲捲	李敬順	坤方	趙暻錫	梁道信
艮方	成丁哲	金永信	兌方	安理正	丁良善
震方	金勤修	曺專權	中央	朴光田	李共珠
巽方	丁光薰	徐大仁			

62. 3. 29

제5회 수위단원 총선거

교헌소정의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를 실시한 바 선출된 명단과 방위는 다음과 같다.

團長 金大擧

(방위)	(원로단원)	(선거단원)	(원로단원)	(선거단원)
乾方	朴將植	朴東現		朴濟權
坎方	李雲捲	李喆行	李敬順	金智玄

62. 3. 29

(방위)	(원로단원)	(선거단원)	(원로단원)	(선거단원)
艮方	成丁哲	李炳恩	金永信	鄭眞淑
震方		金勤修		李正恩
巽方		金正勇	徐大仁	朴恩局
离方	金洪哲	李空田		丁良善
坤方	趙暻錫	金允中	梁道信	宋靈鳳
兌方		安理正	黃淨信行	全二昌
中央	朴光田		李共珠	

63. 4. 3 제5회 제1차 보궐 조단
남자 乾方 朴東現의 열반으로 인한 보궐로 文東賢이 선출되다.

63. 1. 25 坤方 趙暻錫단원 열반

63. 11. 11 坎方(女) 李敬順단원 열반

65. 8. 9 艮方(男) 李炳恩단원 열반

67. 11. 5 제6회 수위단원 총선거실시

團長 金大擧

中央(男) 朴光田 (女)李共珠

(방위)	(원로단원)	(선거단원)	(원로단원)	(선거단위)
乾方	朴將植	文東賢	朴濟權	金理玄
坎方	李雲捲	李喆行	金智玄	全八根
艮方	成丁哲	宋天恩	金永信	鄭眞淑
震方	金勤修	李廣淨	李正恩	丁盛熟
巽方		金正勇	徐大仁	朴恩局
离方	金洪哲	李空田	丁良善	朴性敬
坤方		金允中	梁道信	宋靈鳳
				尹周現
兌方	安理正	金仁喆	黃淨信行	全二昌

69. 12. 7 艮方(男) 金永信단원 열반

71. 3. 29 离方(女) 丁良善단원 열반

71. 12. 3 中央(男) 朴光田단원 열반

72. 4. 26 良方(男) 成丁哲단원 열반

72. 12. 15 离方(男) 金洪哲단원 열반

6. 수위단 계보

연도	원기2년		3년		4년~9년		10년	
團長	大 宗 師		大 宗 師		大 宗 師		大 宗 師	
中央	(男)		(男) 宋 奎		(男) 宋 奎		(男) 宋 奎	
乾	李 載 喆		李 載 喆		李 載 喆		李 載 喆	
坎	李 旬 旬		李 旬 旬		李 旬 旬		(宋 道 性)	
艮	金 幾 千		金 幾 千		金 幾 千		金 幾 千	
震	吳 昌 建		吳 昌 建		吳 昌 建		吳 昌 建	
巽	朴 世 喆		朴 世 喆		朴 世 喆		朴 世 喆	
离	朴 東 局		朴 東 局		朴 東 局		(全 飮 光)	
坤	劉 巾		劉 巾		劉 巾		(趙 甲 鍾)	
兌	金 光 旋		金 光 旋		金 光 旋		金 光 旋	
備考	7월 26일 남자수위단 첫 조직		1월 25일 중앙취임				4월 26일 제1차 보궐(巽方) 및 대리조직. ( )안은 대리	

연도	11년~15년		16년		17년~19년		20년	
團長	大 宗 師		大 宗 師		大 宗 師		大 宗 師	
中央	(男) 宋 奎		(男) 宋 奎	(女) 李 共 珠	(男) 宋 奎		(男) 宋 奎	
乾	李 載 喆		李 載 喆	李東震華	李 載 喆		李 載 喆	
坎	(宋 道 性)		宋 道 性	張 寂 照	宋 道 性		宋 道 性	
艮	金 幾 千		金 幾 千	崔 道 華	金 幾 千		柳 虛 一	
震	吳 昌 建		吳 昌 建	梁 夏 雲	吳 昌 建		吳 昌 建	
巽	李 東 安		李 東 安	田 參 參	李 東 安		李 東 安	
离	(全 飮 光)		全 飮 光	李 靑 春	全 飮 光		全 飮 光	
坤	(趙 甲 鍾)		趙 甲 鍾	鄭 世 月	趙 甲 鍾		趙 甲 鍾	
兌	金 光 旋		金 光 旋	朴四時華	金 光 旋		金 光 旋	
備考	( )는대리			3월 여자수위단 시보단 조직			9월10일 男子수위단 제2차보궐조단(艮方보궐)	

연도	21년~23년		24년		25년		26년	
團長	大 宗 師		大 宗 師		大 宗 師		大 宗 師	
中央	(男) 宋 奎		(男) 宋 奎		(男) 宋 奎		(男) 宋 奎	
乾	李 載 喆		李 載 喆		李 載 喆		李 載 喆	
坎	宋 道 性		宋 道 性		宋 道 性		宋 道 性	
艮	柳 虛 一		柳 虛 一		柳 虛 一		柳 虛 一	
震	吳 昌 建		吳 昌 建		吳 昌 建		吳 昌 建	
巽	李 東 安		李 東 安		李 東 安		徐 大 圓	
离	全 飮 光		全 飮 光		全 飮 光		全 飮 光	
坤	趙 甲 鍾		趙 甲 鍾		趙 甲 鍾		趙 甲 鍾	
兌	金 光 旋		朴 大 完		朴 大 完		朴 大 完	
備考			4월25일 제3차 보궐조단(兌方)				5월11일 제4차 보궐조단(巽方)	

연도	27년		28년		29년		30년	
團長	大 宗 師		宋 奎		宋 奎		宋 奎	
中央	(男) 宋 奎		(男) 宋 道 性	(女) 李 共 珠	(男) 宋 道 性	(女) 李 共 珠	(男) 宋 道 性	(女) 李 共 珠
乾	李 載 喆		李 載 喆	朴四時華 (金永信)	金 大 擧	朴四時華 (金永信)	金 大 擧	金 永 信
坎	宋 道 性		宋 慧 煥	張 寂 照 (曺專權)	安 慧 煥	張 寂 照 (曺專權)	宋 慧 煥	曺 專 權
艮	柳 虛 一		柳 虛 一	崔 道 華 (曺一貫)	柳 虛 一	崔 道 華 (曺一貫)	柳 虛 一	曺 一 貫
震	吳 昌 建		吳 昌 建	李 願 華 (徐大仁)	吳 昌 建	李 願 華 (徐大仁)	吳 昌 建	徐 大 仁
巽	徐 大 圓		李 完 喆	李 靑 春 (吳宗泰)	李 完 喆	李 靑 春 (吳宗泰)	李 完 喆	吳 宗 泰
离	全 飮 光		全 飮 光	李東震華	全 飮 光	李東震華	全 飮 光	李東震華
坤	趙 甲 鍾		趙 甲 鍾	鄭 世 月	趙 甲 鍾	鄭 世 月	趙 甲 鍾	鄭 世 月
兌	朴 大 完		朴 大 完	黃淨信行	朴 大 完	黃淨信行	朴 大 完	黃淨信行
備考			4월 28일 제5차 보궐조단(巽方 보궐). 6월 7일 신단장 추대 및 제6차 보궐조단(坎方 보궐).	4월 29일 여자수위단 정식조직 및 대리내정.( )안 은 대리	4월 26일 제7차 보궐조단(乾方)			1월 25일 여자수위단 실무 발족

연도	31년		32년~37년		38년		39년	
圖長	宋 奎		宋 奎		宋 奎		宋 奎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中央	柳 虛 一	李 共 珠	柳 虛 一	李 共 珠	金 大 擧	李 共 珠	金 大 擧	李 共 珠
乾	金 大 擧	金 永 信	金 大 擧	金 永 信	朴 將 植	吳 宗 泰	朴 將 植	吳 宗 泰
坎	宋 慧 煥	曺 專 權	宋 慧 煥	曺 專 權	李 雲 捲	李 敬 順	李 雲 捲	李 敬 順
艮	朴 將 植	曺 一 貫	朴 將 植	曺 一 貫	宋 慧 煥	金 永 信	宋 慧 煥	金 永 信
震	吳 昌 建	徐 大 仁	吳 昌 建	徐 大 仁	趙 甲 鍾	曺 專 權	趙 甲 鍾	曺 專 權
巽	李 完 喆	吳 宗 泰	李 完 喆	吳 宗 泰	柳 虛 一	徐 大 仁	柳 虛 一	徐 大 仁
离	金 洪 哲	李東震華	金 洪 哲	李東震華	金 洪 哲	徐 共 南	金 洪 哲	徐 共 南
坤	趙 甲 鍾	鄭 世 月	趙 甲 鍾	鄭 世 月	朴 光 田	梁 道 信	朴 光 田	梁 道 信
兌	朴 大 完	黃淨信行	朴 大 完	黃淨信行	李 完 喆	李東震華	李 完 喆	李東震華
備考	4월 1일 제8차 보궐조단(艮方, 离方)				4월 26일 제2대 제1회 수위단 총선거			

연도	40년		41년		42년~43년		44년	
圖長	宋 奎		宋 奎		宋 奎		宋 奎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中央	金 大 擧	李 共 珠	金 大 擧	李 共 珠	金 大 擧	李 共 珠	金 大 擧	李 共 珠
乾	朴 將 植	吳 宗 泰	朴 將 植	吳 宗 泰	朴 將 植	吳 宗 泰	朴 將 植	吳 宗 泰
坎	李 雲 捲	李 敬 順	李 雲 捲	李 敬 順	李 雲 捲	李 敬 順	李 雲 捲	李 敬 順
艮	宋 慧 煥	金 永 信	成 丁 哲	金 永 信	成 丁 哲	金 永 信	成 丁 哲	金 永 信
震	趙 甲 鍾	曺 專 權	趙 甲 鍾	曺 專 權	趙 甲 鍾	曺 專 權	趙 甲 鍾	曺 專 權
巽	柳 虛 一	徐 大 仁	柳 虛 一	徐 大 仁	柳 虛 一	徐 大 仁	丁 光 薰	徐 大 仁
离	金 洪 哲	李 泰 然	金 洪 哲	李 泰 然	金 洪 哲	李 泰 然	金 洪 哲	李 泰 然
坤	朴 光 田	梁 道 信	朴 光 田	梁 道 信	朴 光 田	梁 道 信	朴 光 田	梁 道 信
兌	李 完 喆	李東震華	李 完 喆	李東震華	李 完 喆	李東震華	李 完 喆	李東震華
備考		4월 23일 제1차 보궐 조단 (离方)	12월 11일 제2차 보궐 조단 (艮方보궐)				4월 26일 제2대 제2회 수위단 총선거	

연도	45년~46년		47년		48년		49년	
團長	宋 奎		金 大 擧		金 大 擧		金 大 擧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中央	金 大 擧	李 共 珠	朴 光 田	李 共 珠	朴 光 田	李 共 珠	朴 光 田	李 共 珠
乾	朴 將 植	吳 宗 泰	朴 將 植	吳 宗 泰	朴 將 植	吳 宗 泰	朴 將 植	吳 宗 泰
坎	李 雲 捲	李 敬 順	李 雲 捲	李 敬 順	李 雲 捲	李 敬 順	李 雲 捲	李 敬 順
艮	成 丁 哲	金 永 信	成 丁 哲	金 永 信	成 丁 哲	金 永 信	成 丁 哲	金 永 信
震	趙 甲 鍾	曺 專 權	趙 甲 鍾	曺 專 權	趙 甲 鍾	曺 專 權	趙 甲 鍾	曺 專 權
巽	丁 光 薰	徐 大 仁	丁 光 薰	徐 大 仁	丁 光 薰	徐 大 仁	丁 光 薰	徐 大 仁
离	金 洪 哲	李 泰 然	金 洪 哲	李 泰 然	金 洪 哲	李 泰 然	金 洪 哲	黃 淨 信 行
坤	朴 光 田	梁 道 信	趙 暻 錫	梁 道 信	趙 暻 錫	梁 道 信	趙 暻 錫	梁 道 信
兌	李 完 喆	李東震華	李 完 喆	李東震華	李 完 喆	李東震華	李 完 喆	李東震華
備考			1월 31일 신단장추대 및 제2회 제1차 보궐 조단(坤方 보궐)					4월 29일 제2대 제2회 제2차 보궐조단 (离方보궐)

연도	50년		51년		52년		53년	
團長	金 大 擧		金 大 擧		金 大 擧		金 大 擧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中央	朴 光 田	李 共 珠	朴 光 田	李 共 珠	朴 光 田	李 共 珠	朴 光 田	李 共 珠
乾	朴 將 植	吳 宗 泰	朴 將 植	吳 宗 泰	朴 將 植	吳 宗 泰	朴 將 植	吳 宗 泰
坎	李 雲 捲	李 敬 順	李 雲 捲	李 敬 順	李 雲 捲	李 敬 順	李 雲 捲	李 敬 順
艮	成 丁 哲	金 永 信	成 丁 哲	金 永 信	成 丁 哲	金 永 信	成 丁 哲	金 永 信
震	趙 甲 鍾	曺 專 權	趙 甲 鍾	曺 專 權	趙 甲 鍾	曺 專 權	趙 甲 鍾	曺 專 權
巽	丁 光 薰	徐 大 仁	丁 光 薰	徐 大 仁	丁 光 薰	徐 大 仁	丁 光 薰	徐 大 仁
离	金 洪 哲	黃 淨 信 行	金 洪 哲	黃 淨 信 行	金 洪 哲	黃 淨 信 行	金 洪 哲	黃 淨 信 行
坤	趙 暻 錫	梁 道 信	趙 暻 錫	梁 道 信	趙 暻 錫	梁 道 信	趙 暻 錫	梁 道 信
兌	李 完 喆	李東震華	安 理 正	李東震華	安 理 正	李東震華	安 理 正	丁 良 善
備考	3월 24일 제2대 제3회 수위단 총선거		4월 15일 제2대 제3회 제1차 보궐 조단(兌方 보궐)					3월 25일 제2대제3회 제2차 보궐 조단(兌方 보궐)

연도	54년~55년		56년		57년~61년		62년	
團長	金 大 擧		金 大 擧		金 大 擧		金 大 擧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中央	朴 光 田	李 共 珠	朴 光 田	李 共 珠	朴 光 田	李 共 珠	朴 光 田	李 共 珠
乾	朴 將 植	吳 宗 泰	朴 將 植	吳 宗 泰	朴 將 植	吳 宗 泰	朴 將 植 朴 東 現	朴 濟 權
坎	李 雲 捲	李 敬 順	李 雲 捲	李 敬 順	李 雲 捲	李 敬 順	李 雲 捲 李 喆 行	李 敬 順 金 智 玄
艮	成 丁 哲	金 永 信	成 丁 哲	金 永 信	成 丁 哲	金 永 信	成 丁 哲 李 炳 恩	金 永 信 鄭 眞 淑
震	趙 甲 鍾	曺 專 權	金 勤 修	曺 專 權	金 勤 修	曺 專 權	金 勤 修	李 正 恩
巽	丁 光 薰	徐 大 仁	丁 光 薰	徐 大 仁	丁 光 薰	徐 大 仁	金 正 勇	徐 大 仁 朴 恩 局
离	金 洪 哲	黃 淨 信 行	金 洪 哲	黃 淨 信 行	金 洪 哲	黃 淨 信 行	金 洪 哲 李 空 田	丁 良 善
坤	趙 暻 錫	梁 道 信	趙 暻 錫	梁 道 信	趙 暻 錫	梁 道 信	趙 暻 錫 金 允 中	梁 道 信 宋 靈 鳳
兌	安 理 正	丁 良 善	安 理 正	丁 良 善	安 理 正	丁 良 善	安 理 正	黃 淨 信 行 全 二 昌
備考			3월 31일 제2대 제4회 수위단 총선거				3월 29일 제2대 제5회 수위단 총선거 ※ 교헌개정에 따라 위는 원로단원 아래는 선거단원임	

연도	63년		64년~66년		67년~68년		69년	
團長	金 大 擧		金 大 擧		金 大 擧		金 大 擧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中央	朴 光 田	李 共 珠	朴 光 田	李 共 珠	朴 光 田	李 共 珠	朴 光 田	李 共 珠
乾	朴 將 植 文 東 賢	朴 濟 權	朴 將 植 文 東 賢	朴 濟 權	朴 將 植 文 東 賢	朴 濟 權 金 理 玄	朴 將 植 文 東 賢	朴 濟 權 金 理 玄
坎	李 雲 捲 李 喆 行	金 智 玄	李 雲 捲 李 喆 行	金 智 玄	李 雲 捲 李 喆 行	金 智 玄 全 八 根	李 雲 捲 李 喆 行	金 智 玄 全 八 根
艮	成 丁 哲 李 炳 恩	金 永 信 鄭 眞 淑	成 丁 哲 李 炳 恩	金 永 信 鄭 眞 淑	成 丁 哲 宋 天 恩	金 永 信 鄭 眞 淑	成 丁 哲 宋 天 恩	金 永 信 鄭 眞 淑
震	金 勤 修	李 正 恩	金 勤 修	李 正 恩	金 勤 修 李 廣 淨	李 正 恩 丁 盛 熟	金 勤 修 李 廣 淨	李 正 恩 丁 盛 熟
巽	金 正 勇	徐 大 仁 朴 恩 局	金 正 勇	徐 大 仁 朴 恩 局	金 正 勇	徐 大 仁 朴 恩 局	金 正 勇	徐 大 仁 朴 恩 局
离	金 洪 哲 李 空 田	丁 良 善	金 洪 哲 李 空 田	丁 良 善	金 洪 哲 李 空 田	丁 良 善 朴 性 敏	金 洪 哲 李 空 田	丁 良 善 朴 性 敏
坤	金 允 中	梁 道 信 宋 靈 鳳	金 允 中	梁 道 信 宋 靈 鳳	金 允 中	梁 道 信 尹 周 現	金 允 中	梁 道 信 尹 周 現
兌	安 理 正	黃 淨 信 行 全 二 昌	安 理 正	黃 淨 信 行 全 二 昌	安 理 正 金 仁 喆	黃 淨 信 行 全 二 昌	安 理 正 金 仁 喆	黃 淨 信 行 全 二 昌
備考	11월 4일 제2대 제5회 제1차 보궐조단				원기67년 11월 5일 제2대 제6회 수위단 총선거			

연도	70년		71년		72년	
團長	金 大 擧		金 大 擧		金 大 擧	
	(男)	(女)	(男)	(女)	(男)	(女)
中央	朴 光 田	李 共 珠	朴 光 田	李 共 珠	朴 將 植	李 共 珠
乾	朴 將 植 文 東 現	朴 濟 權 金 理 玄	朴 將 植 文 東 現	朴 濟 權 金 理 玄	文 東 現	朴 濟 權 金 理 玄
坎	李 雲 捲 李 喆 行	金 智 玄 全 八 根	李 雲 捲 李 喆 行	金 智 玄 全 八 根	李 雲 捲 李 喆 行	金 智 玄 全 八 根
艮	成 丁 哲 宋 天 恩	鄭 眞 淑	成 丁 哲 宋 天 恩	鄭 眞 淑	宋 天 恩	鄭 眞 淑
震	金 勤 修 李 廣 淨	李 正 恩 丁 盛 熟	金 勤 修 李 廣 淨	李 正 恩 丁 盛 熟	金 勤 修 李 廣 淨	李 正 恩 丁 盛 熟
巽	金 正 勇	徐 大 仁 朴 恩 局	金 正 勇	徐 大 仁 朴 恩 局	金 正 勇	徐 大 仁 朴 恩 局
离	金 洪 哲 李 空 田	丁 良 善 朴 性 敬	金 洪 哲 李 空 田	朴 性 敬	李 空 田	朴 性 敬
坤	金 允 中	梁 道 信 尹 周 現	金 允 中	梁 道 信 尹 周 現	金 允 中	梁 道 信 尹 周 現
兌	安 理 正 金 仁 喆	黃 淨 信 行 全 二 昌	安 理 正 金 仁 喆	黃 淨 信 行 全 二 昌	安 理 正 金 仁 喆	黃 淨 信 行 全 二 昌
備考						

7. 수위단회 결의사항(초)

* 남자정수위단 조직위원회.

제1회. 원기20년(1935) 9월 10일. 장소 : 불법연구회 총부 강당

1) 삼산 김기천단원 열반으로 보궐하여야 함에 단규 제20조에 의거 조직위원 선정(22인) 정수위단 시보에 유허일을 선정하다.

2) 오산 박세철단원의 보궐원으로 이동안을 試補로 세웠으나 만 6년간 시험기를 통과하였으니 정식 보궐원으로 인정하다.

3) 이산 이순순, 육산 박동국, 칠산 유건은 생존하였으나 재가하야 수위단의 직무를 이행치 못하게 되었으므로 수년전에 송도성, 전음광, 조갑종 3인으로 각각 그 대리를 정한 바 역시 만 6년을 경과하였음으로 정식대리인으로 인증하다.

4) 수위단원보궐식은 후일 유허일 보궐식 거행에 동시 행하기로 하다.

5) 이동안과 유허일에 법호를 내리시니 이동안은 道山, 유허일은 柳山으로 칭호하라 하시고, 도성, 음광, 갑종은 대리식을 행할 시 내리신다 하다.

6) 이 호는 정식법호는 아니고 수위단은 최고지위이니 그 지위를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주는 호이고, 정식법호는 정식법강항마부 승급시 수여한다 하다.

제2회. 원기24년(1939) 2월 25일. 장소 : 본회 총부 공회당

1) 팔산 김광선단원의 열반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박대완을 시보로 선임하다.

2) 남자 정수위단 제1회 보궐 및 대리선정식을 거행하니 유허일, 이동안, 박대완, 송도성, 전음광, 조갑종단원에게 절부수여(節符授與)를 하다.

3) 보궐 및 대리원에게 임시 호를 내리시니 柳山 柳虛一, 道山 李東安, 主山 宋道性, 惠山 全飮光, 義山 趙甲鍾이다.

4) 수위단 중앙 송규단원 영광지부에 현재 근무하고 있음으로 임시 대리를 정하기로 한 바 全飮光단원이 피선되다.

제3회. 원기26년(1941) 5월 21일.

1) 이동안단원 열반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서대원이 당선되다.

제4회. 원기28년(1943) 4월 28일.

1) 故 도산 이동안의 보궐을 서대원으로 하였으나 그간 서대원이 전무출신의 도를 밟지 아니하야 전무출신부에 탈퇴되는 동시에 정수위단에도 탈퇴된 것인 즉 그 보궐에 이완철이 선정되다.

2) 이완철이 호를 應山으로 내리다.

제5회. 원기28년(1943) 6월 8일. 장소 : 종법실 회의실

1) 수위단원 보궐에 송혜환을 선정하다.

2) 坎方 송도성단원이 중앙단원으로 전방하고 송혜환을 坎方단원으로 보궐하다.

제6회. 원기29년(1944) 4월 27일. 장소 : 종법실 회의실

1) 선거유자격자 점호 32인 참석으로 선거위원회가 성립한다.

2) 乾方 이재철단원의 열반으로 인한 乾方단원에 김대거를 보궐 선정하다.

附, 首位團名錄一覽

團長 : 鼎山 宋奎

一. 金大擧	二. 宋慧煥	三. 柳山 柳虛一
四. 四山 吳昌建	五. 應山 李完喆	六. 惠山 全飮光
七. 義山 趙甲鍾	八. 靈山 朴大完	中央. 主山 宋道性

제7회. 원기31년(1946) 4월 1일. 장소 : 종법실 회의실

1) 선거유자격자 점호에 57인의 참석으로 선거위원회가 조직되다.

2) 주산 송도성단원의 열반과 전음광단원의 제명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박장식, 김홍철이 당선되다.

3) 중앙단원에 유허일단원을 전방하고 감방 김홍철단원, 이방 박장식단원으로 보궐하다.

*** 수위단회의록.**

원기34년(1949) 4월 1일. 장소 : 중앙총부 종법실

1) 종법사 및 수위단원 임기는 제1회 중앙교의회 회의록에 의하여 본교 제3회 36년시에 개

선하는 것이 합법적이나 박장식단원의 동의에 전원재청으로 이의없이 통과되었다.

2) 34년도 경비예산 및 차금반제는 오는 대회에 제종안건을 건의하여 호책을 연구하자는 의장의 의견에 전원찬동으로 통과하다.

3) 임원선발에 있어 종법사 및 양원장겸임 1인, 교무·재무·서무·산업 각 부장 4인, 사서·감사부장 1인, 각부 서기 3인, 기타 임원 6인(학림임원별도) 합 15인 정도로 하고 원광사 임원은 수시 정하되 경비는 당기관내에서 지불하도록 하기로 결정하고 ①인사배정 전형위원으로 박장식, 이운권, 이공주 3인이 피임되어 결정하기로 하다. ②학림 2기 공비생 선발은 감찰원에서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24인이 선발되다. ③전무출신의 자유진학에 있어서는 절대 자유진학은 불허하기로 찬동 가결하다.

4) 서울보화원은 당원장인 황정신행에게 일체를 일임《원불교보화원》간판하에 유지하도록 하고 당원의 대관사에 한하여 본교 상설기관과 연락하여 처무하도록 체제를 강구하고, 서울출장소 역시 우선 적임자가 선발될 때까지 원장에게 겸무로 일임함에 대회시에 건의하기로 결정하다.

5) 영산지부는 당분간 관망한 태도로 두고 소수인의 임원으로서 그 수호를 하게 하고, 삼례과원은 柿木일체를 교도인 임씨에게 일임하여 두고 桃木만은 삼례지부 교도에게 당분간 일임하여 두든 지 그러지 못할 사정이면 2,3인의 임원이라도 적임자를 파송하여 수호하자는 의견에 전원동의로 가결하다.

제2대 제1회. 원기38년(1953) 4월 24일

제2회 (정기). 원기39년(1954) 4월 24일. 장소 : 송대

1) 법호수증에 수위단원 7명, 전무출신 26명, 거진출진 36명, 열반추증자 47명의 법호를 수위단회 동의를 얻어 증여 또는 추증하다.

2) 원기38년(1953)에 선정된 남·녀수위단원의 방위를 배정한 바 중앙은 투표로써 이하는 추첨으로 결정하다.

3) 원기38년(1953) 중간인사의 3인을 정식 인증하다.

4) 각 기관 임원 용금은 총부임원과 동일히 하기로 하다.

제3회 (긴급). 원기39년(1954) 5월 2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여자 전무출신 일동의 특별 진정사항 처리의 건으로 비공개 논의하다.

제4회 (임시). 원기40년(1955) 1월 16일. 장소 : 영모원 송대

1) 감찰원 사무취급에 있어 감찰원장이 출장부재중에는 교정원장이 임시로 그 사무를 겸해

서 취급하고 감찰사서도 양부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는 교무부장이 임시로 그 사무를 겸해서 취급하기로 하다.

2) 서정지부 조교무 서대륜을 신설 아영지부 교무로 추천하다.

3) 교세발전에 따라 교헌의 새로운 기초가 절실히 요청되는 실정에 감하여 교헌연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박장식, 위원에 이운권, 정광훈, 이공전 3인을 선정하다.

제5회 (정기). 원기40년(1955) 4월 23일. 장소 : 수위단 회의실

1) 수위단원 보궐선거 후보 선정에 있어 자격은 ①35세이상 ②10년이상 근무자 ③법위는 법마상전급 이상 ④정사이상인 자로 연령과 연조에 구애됨이 없음을 결의하고 투표로써 이태연, 박진오, 정양선 3인을 여자수위단원 보선 후보자로 예선하다.

2) 과년도중에 임시로 발령된 교무급이상 직원의 추인과 신년도 인사를 위해 인사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니 이공주, 조전권, 이완철, 서대인, 김대거 이상 5인을 선출하고 사서부장을 당무케 하다.

제6회 (정기). 원기41년(1956) 4월 20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제4회 중앙교의회를 지상총회로 실시할 것

2) 감찰원장 후보 선정

3) 대종경 편수위원 선정

4) 인사·경제 양분과 위원회의 인사임면 및 세입 예산 심의하다.

제7회 (임시).원기41년(1956) 12월 11일.

1) 감방 송혜환단원의 감방단원에 성정철단원 보선하다.

2) 재단 및 보화당 양이사와 직무의 후임 선정하다.

제8회 (정기). 원기42년(1957) 4월 23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장학회칙 제6조와 제23조를 수정 보완하고 통과하다.

2) 인사임면은 양 중앙단원과 인사분과위원회에 위임하고 내정된 사항만이 본회의에 제출키로 하다.

3) 원기41년도 결산안에 세입부족액의 수입이 명시되지 않았으니 명시하여 교무위원회에 제안키로 통과하고 원기42년도 세입부족액을 특의로써 수입할 것과 영산방언답 수입을 영산수입으로 하고 영산으로 지출계상하여 줄 것 등을 논의하고 교무연합회에 부의하기로 결의하다.

제9회 (정기). 원기43년(1958) 4월 19일. 장소 : 수위단 회의실

1) 제6회 정기중앙교의회 紙上실시를 결의하다.

2) 정화사 발족을 승인하고 위원과 임원을 결정하였다.

3) 인사임면에 사의를 표명한 교정원장에 이완철을 선정하고 그외의 인사는 인사분과위원회에 일임키로 하다.

4) 원기4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경제분과위원회에 일임하여 심의케 하기로 하다.

續會 : 20일 오후2시

인사분과위원회에서 내정한 것을 통과하다.

제10회 (정기). 원기44년(1959) 4월 21일. 장소 : 수위단 회의실

1) 교정위원 선정은 종전 교무연합회 의원선정 예에 따라 정하여 후보명단을 제출 인증을 하다.

2) 인사분과위원 구성은 교정원장, 감찰원장, 이운권, 박장식, 박광전, 조전권, 서대인 제씨를 선정하고 총지부 기관의 인사처리 결정을 일임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받기로 하다.

3) 양원장 선거에 후보는 교정원장에 이완철, 감찰원장에 이공주를 각각 결정하다.

4) 교헌개정안 심의는 逐條심의로 수정 통과하다.

5) 교정원, 감찰원 조직법 심의는 逐條심의로 수정 통과하다.

6) 원기44년도 예산안 심의는 세입부족액의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교정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통과 보류하다.

7) 도양선학원 설치는 지부요인의 결의록과 시설계획에 대한 서류를 접수 결정키로 하다.

제11회 (정기). 원기44년(1959) 4월 24일. 장소 : 수위단 회의실

1) 종법사 선거는 현 정산종법사를 전원 찬성 무투표로 추대하기로 결정하다.

2) 수위단 남녀중앙단원에 남자 김대거, 여자 이공주단원이 각각 재선되었으며 방위결정은 전방위 그대로 결정하다.

3) 보궐단원 후보선거는 투표결과 정광훈을 단일후보로 결정하다.

4) 중앙교의회 특선의원 선정은 ① 지방 특별사항을 고려하여 사서부 제출안대로 전원 특선의원으로 선정하였으며 ② 교정위원 전원은 중앙교의회 의원이 된다. 단, 중앙간부는 제외하기로 하다.

제12회 (임시). 원기45년(1960) 1월 18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제8회 중앙교의회는 지상총회로 대행하기로 하고 3월중에 의장단회의를 소집하여 지상총회

에 관한 사무에 대비키로 하다.

2) 정전 자구수정은 종법사께 일임하고 재간된 이후에는 다시 일언일구의 수정도 가할 수 없음을 결의하다.

3) 종법사 회갑은 금년 당일에 총부에서만 간단한 도리를 행하고 회갑행사는 내년 4월대회 행사시 거교적으로 받들기로 하다.

4) 원기45년도 예산안을 수정 통과하다.

5) 인사임면은 수위단 및 常務分科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결의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결정키로 하며 인사교체는 4월중에 실시키로 하다.

제13회 (정기). 원기45년(1960) 4월 23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인사임면은 전차회의의 결의에 따라 우선 내정된 인사건 만을 보고 받다.

2) 원기44년도 결산안은 사항변경을 한 후 결정 통과하고, 원기4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부분 수정 통과하다.

3) 전무출신 지원자 36명에 대한 인증을 하다.

제14회 (임시). 원기46년(1961) 1월 23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사업성적 평점에 관해 ①제2대 제1회의 사업등위별 추정기준을 총무부 제출 산출시안 제3안을 채택함 ②제2대 제1회의 연수계산은 제2대내에 한해서만 11년으로(원기49년 3월말일) 하고 그후 50주년 기념행사는 행사대로 분명히 할 것 ③성적결산 후 발표없이 사무적으로만 파악하고 사후 영모전에 모시기로 함 ④성적사무취급은 정신 육신 물질 3방면에 대한 액면계산을 점수로 환산 표시할 것 ⑤제2대 제1회 성적사정중 지난 8년간의 일시 사정에 대하여는 사무당국에 일임함과 동시에 지방은 교무에게, 기관은 기관장에게 연락하는 반면 양원장의 동의와 종법사 결재를 받들어 행할 것을 결의하다.

2) 입묘자 좌위확정은 ①종사위, 대봉도위, 대호법위를 제외한 준등을 비롯하여 준에 해당된 1·2·3·4·5등위를 위로 인상하여 정등위와 동좌로 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중 준5등과 정5등 경우만을 동좌로 할 것 ②회사위에 있어서도 준등의 적용과 같이 예비는 정식과 동좌로 할 수 없다 ③입묘자 열반인의 지방기준은 입교교당으로 할 것.

3) 원기46년 4월대회건에서 ①종법사 회갑식은 간소히 할 것 ②숙소는 중앙교의회 의원과 교무만을 총부에서 담당하고 일반교도는 각자 해결할 것 ③그 외의 제반문제는 교정위원회에서 재검토키로 유보하다.

4) 9개교규(전무출신규정, 포교사자격고시규정, 육영규정, 중앙총부직제, 중앙총부처무규정, 전무출신요양규정, 정토회규정, 수위단원직규정)에 대한 본 심의는 연구검토후 법제위원회를

경하여 수위단회에서 재심의 통과키로 결의하다.

5) 원기45년도 세입예산액 수입부족에 있어 긴축예산을 시행함과 아울러 경제문제에 수반되는 제반정책을 그에 따라 조정키로 하되 본건은 교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하고 유보하다.

제15회 (긴급). 원기47년(1962) 1월 24일. 장소 : 중앙총부 기획실

1) 정산종법사 열반에 따른 법위를 정식 대각여래위에 추존하다.

2) 장례위원회 구성에 있어 ①장례위원장에 박광전단원이 선정되고 ②각 부서 위원은 위원장과 각위원끼리 개별임원도 배정키로 하였으며 ③장례기간은 5일 ④장별은 교회전체장으로 하고 화장으로 모시고 ⑤부고는 신문이나 방송외에 특별경위만 통지 ⑥상복은 전무출신은 회색학복에 남자, 일반은 복표, 친자녀는 흰학복을 각각 착하기로 하며 ⑦고사는 수위단 대표와 전무출신 대표, 거진출진 대표, 친자녀 등으로 하고 ⑧기타 일체는 장례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제16회 (임시). 원기47년(1962) 1월 31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대산 김대거 중앙단원을 신 종법사로 추대하다.

2) 중앙단원에 박광전단원으로 하고 보궐단원 후보에 조희석을 추천하다.

3) 법에 의거 3월 23일 이내에 임시 중앙교의회를 소집하기로 하며 그에 따른 일정은 사무당국에 위임하고 인사문제는 신 종법사 취임 후에 하기로 결의하다.

4) 원여상고 문제는 교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기로 결의하다.

제17회 (임시). 원기47년(1962) 2월 21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보궐된 중앙단원에 박광전단원을 선정하고 보궐단원으로 피선된 조희석단원이 곤방위에 배정되다.

2) 선거결과 교정원장에 박장식, 감찰원장에 이완철이 피선되다.

3) 교헌개정안 요강심의를 위한 교헌개정안 기초위원회를 구성 대표위원에 박장식, 위원에 이공주 이운권 박광전 정광훈 김윤중 이공전 오종태를 추천 선정하다.

제18회 (정기). 원기47년(1962) 4월 23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원기46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원기47년도 세입 세출 예산심의는 박장식, 정광훈, 서대인 3인의 위원을 선정 수정안을 이의없이 가결 통과하다.

2) 인사임면은 인사위원회에 일임키로 결의하다.

3) 하섬문제는 교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다.

4) 현재 중앙선원생이 영산으로 안가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동 선원책임자와 주무 양원장, 조전권, 오종태, 성정철, 서대인 제씨가 합석하여 선원생들에게 그 동안의 경위를 타이르고 제반을 爛商討議하기로 하다.

제19회 (임시). 원기47년(1962) 7월 24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교전의 완정 및 발간은 수정부분에 이의없이 협찬 간행키로 결의하고 수위단 교전완정 확인성명서에 일동 서명 날인하기로 하다.

2) 정화사 운영은 본안대로 확인 합의 승인하다.

3) 원불교 청년회는 미구에 발족되어야 하겠으나 임시 교우회 그대로 두고 구체안을 연구하여 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발족하자는데 합의하다.

제20회 (임시). 원기47년(1962) 12월 5일. 장소 : 수위단 회의실

1) 포교사 자격검정 및 전형고시 실시의 건을 만장일치로 찬동 가결하고 그 실시년도는 法制위원회에 일임하여 연구케 하여 내년 4월대회에 통과함과 동시 법규를 선포하고 원기48년도부터 시행키로 결의하다.

2) 총부구내 건축추진은 내년 4월대회시 교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기로 하고 재무부에서 총부구내 위치도와 설계도를 마련하기로 결의하다.

3) 재산등록관계 사무처리에 있어 경비는 지방에서도 의무로 알고 있는 터이니 실정을 파악 수납방법을 당무부에서 알아 하도록 결의하다.

4) 정산종법사의 일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교무부에서 예전의 한계를 통지하도록 하다.

제21회 (긴급). 원기48년(1963) 2월 23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상타원 이태연단원 열반으로 인한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사정하고 이에따라 원성적정1등에 해당되어 교회중앙장으로 집행하기로 하다.

2) 칠산 유건선생 법위를 혈인서원의 기도당시를 회고하여 정식법강항마위로 추존할 것과 장례는 교회중앙장으로 하기로 하다.

제22회 (정기). 원기48년(1963) 4월 19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수위단 보궐단원 후보추천은 추계 교무강습시에 선거 절차까지 마치고 내년 교의회에서 추인을 거치기로 하다.

2) 원기4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다.

3) 각급 인사는 인사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되 양원장과 3인 합 5인으로 구성(위원 : 양원

장, 서대인, 정광훈, 이운권) 우선 총부 및 기관의 인사를 승인하고 나머지 인사도 위원들이 처리키로 결의하다.

4) 교서편수에 있어서 예전 수정과 악전 편찬에 몇가지 있는 외에 원안대로 통과한다.

5) 교무강습회 명칭은 교역자강습회라 하고 시기를 종전대로 추기에 개최키로 하다.

6) 포교사 자격검정 및 전형고시는 우선 학력고시만이라도 실시키로 하다.

7) 교리에 입각한 본 교단성격 확립의 건은 불교재산 등록시에 건의문을 참고하여 통일된 문안을 기초하도록 정화사에 위촉 다시 수위단회를 거치기로 하다.

8) 수도원(가칭) 발족 건은 명칭을 수도원이라 하여 발족하기로 하다.

9) 제2대 제1회 성적결산 및 개교 50주년 경축행사는 추계 교무강습회에 의견을 들어 정하기로 하고 성적사정을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교헌은 교헌기초위원에게, 예전은 감수위원에게 각각 일임하여 원칙을 세우도록 하다.

10) 법위사정도 성적관계에 따라 사정여부를 결정키로 결의하다.

11) 수계농원 소유재산 편입 건은 원불교 은산재단이라 명칭하고 재산의 편입여부는 재단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하기로 하다.

12) 총·지부 및 기관감사 실시는 금년부터 단행하되 감찰원에서 하지 못하면 수위단회에서 연 1차라도 실시키로 하다.

13) 3대 선원의 체제를 동산, 영산은 초등선원으로 하고 중앙선원은 고등선원으로서의 체제를 확립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방법과 운영은 전문책임자를 두어 실시토록 하다.

제23회 (임시). 원기48년(1963) 10월 1일. 장소 : 종법실

1) 수위단 보궐단원 후보에 황정신행을 결정하다.

2)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는 원기56년 4월에 거행하기로 하고 성적사무는 전 회기에 결의된 것을 번안해서 종전대로 실시하기로 하다.

3) 교역자 학력고시 규정 및 고시위원 선정에 있어 고시위원을 선정해서 초안된 고시규정 수정과 고시실시를 행하도록 한 바 고시위원 선정은 종법사께 일임키로 하다.

4) 순교 건에 있어서 연한을 정해서 何何年度 以前은 전형, 그 이후는 검정으로 하기로 하다.

5) 원기59년 총회는 사무적인 행사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통과하다.

6) 예전 편수요강 보충안 3,4,5조 외 전문(예전악전보충안)을 통과하다.

7) 3대선원의 성격 및 학제는 당무자에게 일임하기로 합의하다.

8) 육영장학생 선발은 육영부 방침에 의하여 사무적으로 지시하도록 하다.

제24회 (정기). 원기49년(1964) 4월 6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개교기념식 거행은 지방단위 개교기념식을 거행하고 교의회만을 소집하기로 가결하다.

2) 연도말을 2월말로 결의하다.

3) 개교 50주년 총회는 3월 26일로 하며 참석 범위를 지부장, 주무급으로 정하다.

4)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칙 보강위원에 박광전, 정광훈, 조갑종, 오종태, 조전권단원을 정하고 일임함을 가결하다.

5) 고시위원회 규정을 원안대로 통과하다.

6) 교역자 고시규정을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다.

7) 교역자 자격규정의 원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부하여 법랍과 연령을 5년씩 내리고 타의 조문은 무수정 통과하다.

8) 인사임면은 간부진에 일임키로 가결하다.

9) 원기48년도 결산은 정리위원에게 항목을 정리키로 일임하고 이의없이 통과하다.

10) 원기49년도 예산안도 서울출장소 설치비를 삭제하고, 회계년도가 1개월 줄어졌으니 사무당국에서 조절하기로 가결한다.

11) 황등과원 매각금은 원광사를 고치든지 재무부와 타협해서 짓든지 하는데 쓰기로만 결의하다.

12) 3대 선원체제는 선원실무자들에게 일임키로 할 것을 결의하다.

13) 학원재단 별립을 만장일치로 인준 가결하다.

14) 교전 재판 발간에 손색이 없도록 해야함에 원광사 아닌 외부에 가서라도 잘해야 함을 가결하다.

15) 영산지부 체제는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체제를 수립하도록 결의하고 위원에 정광훈, 이완철, 김홍철, 성정철, 박광전, 박장식, 조갑종단원을 선정하다.

續會 : 원기49년(1964) 4월 27일 오후8시

1) 교헌개정안 중에 종법사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2) 고시를 3월말경 시행키로 결의하다.

3) 교정위원회 위원 선정은 교정원장에게 일임키로 하다.

제25회 (임시). 원기49년(1964) 10월 16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원불교 기구도를 교헌 편책안에서 제폐하기로 하고 이미 배부된 교헌은 지방으로 통지하여 제거토록 할 것을 가결하다.

2) 교정원 조직법을 제11조만 수정하고 전문 개정안대로 통과하다.

3) 수위단회법은 5조 수정, 8조 삭제, 9조 수정 등의 심의를 마치고 통과하다.

4) 교정위원회법은 제정안을 무수정 통과하다.

5) 중앙교의회법 제정안은 부분수정을 한 후 통과하다.

6) 종법사 선거법은 제9조 2장 4항을 삭제하고 통과하다.

7) 수위단 선거법은 제9조 2항만 수정하고 통과하다.

8) 교역자 고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다.

9) 교역자 고시시행 일자는 사무당국에 일임키로 하다.

10) 일본 포교실시의 문제는 교정위원회 결의를 승인하다.

11) 제주도 포교사 파견문제는 교정위원회 결의를 승인하다.

12) 보화당 제약사 신설은 보화당에서 예의신청 추진중에 있으니 그대로 승인됨을 선언하다.

13) 교역자 직명 개정은 위원을 선정 연구하여 개정할 것을 가결하고 직명의 호칭을 제폐하며 도량내에서 학복 항시 착용을 금지할 것을 선언하다(교역자 직명개정위원 : 박광전, 정광훈, 오종태, 김윤중, 조갑종).

14) 故 삼산 김기천교무 법계추존과 선배제위 대봉도 추대는 개교 50주년 총회때 추대할 것을 가결한다.

제26회 (정기). 원기50년(1965) 3월 24일. 장소 : 종법실 회의실

1) 수위단 총선거전에 종법사 선거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여 ① 개표위원에 남녀단원 1명과 단장을 합하여 3인이 하기로 하여 남자 박광전, 여자 이경순단원을 선정하고 비밀회의로 선거를 하기로 하다. ② 대산종법사가 재선됨을 결정 선언하다.

2) 수위단원 후보에 남자 : 안이정 김중묵 이은석 이병은 김정용, 여자 : 정양선 이정화 이정은 전이창 박은국 등 제씨를 결정하다.

3) 원의회에서 결의한 중앙교의회 지방별 의원수 지정을 승인하다.

4) 중앙교의회 특선의원 선정은 양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결정하다.

5) 교정위원회 위원에 중앙교의회 의원중 전무출신을 일괄 교정위원으로 할 것을 승인하다.

6) 수위단원 투표용지 기호순위는 구직단원은 방위순위로 하고 새로 추천된 분은 연령순위로 하다.

7) 중앙선원의 재산관리와 선원의 운영 위원에 교정원장, 감찰원장, 동산선원장, 육영부장 등으로 선정하다.

속회 : 원기50년(1965) 3월 25일

1) 중앙단원과 방위선정에 있어 전직 단원이 그대로 당선되었으니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다.

2) 교정원장에 박장식단원, 감찰원장에 이완철단원을 만장일치로 유임키로 결의하다.

3) 서울출장소 소장에 이운권선생, 영산출장소 소장에 김홍철선생을 각각 위촉 선정하고 서울출장소 세직원의 식량은 서울세지부에서 부담하고 총부예산을 보태서 방법을 강구하되 장소는 서울에 올라가서 결정하기로 시준하고 휴회한다.

속회 : 원기50년(1965) 3월 27일

4) 교전 제2권(고경) 편간은 감수진에 일임하도록 할 것과 부록은 폐하고 2권에 금강경, 반야심경, 3권에 42장경, 현자오복덕경, 업보차별경, 휴휴암좌선문, 목우십도송을 각각 계재키로 편간 초안할 것을 가결하다.

5) 교역자 급별 전형고시 실시에 대하여는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6) 법위사정안에 있어 요강을 통제해 줘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가결하다.

7) 선배 개인역사 편찬에 따른 위원에 정광훈, 이공전, 이은석단원 등에 협조하여 그 사무의 완실을 보도록 하고 직원은 1명 채용하되 교정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결의하다.

제27회 (긴급). 원기50년(1965) 10월 6일. 장소 : 송대

1) 故 응산 이완철교무의 성적사정에서 공부성적 예비출가위로 확정하고 사업성적 정특등에 해당하여 앞으로 대봉도로 추존하되 대봉도 제1호로 첨가하다.

제28회 (임시). 원기50년(1965) 10월 25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교전』『불조요경』 발간을 수위단원 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발간 동의서 채택 가결하다.

2) 원기51년도 3월 총회를 지상으로 대행하고 교정위원회는 원기51년도 가을 교역자 강습후에 갖자는 제안을 승인하다.

3) 제2회 교역자 검정고시는 원기51년 1월 18일부터 3일내지 4일을 정함을 선언하다.

4) 법위사정규정 제정안 심의에 ①명칭을 시행규정이라하고 내규에 연원을 댈 것 ②심의위원에 박장식, 정광훈, 김윤중, 이공전, 교무부장을 선임 ③2조를 삭제하며 6조를 1조로 할 것을 부하고 심의는 위원에 일임하는 동시 개의안을 가결하다.

5) 서울출장소 소칙 제정안 심의를 위한 위원에 이운전, 박광전, 오종태, 김윤중, 이공전 등을 선정하고 주간은 총무부에서 할 것을 결의하다.

6) 서울출장소 명칭문제는 간판은《서울사무소》라 하고 소칙을 출장소 소칙이라 결의하다.

7) 한남동 대지 회수문제는 이운권, 이공주, 박광전단원이 수고해 줄 것을 가결하다.

속회 : 오후 2시

8) 교도 사업성적 취급규정 제정안 심의는 전문위원을 선정 연구검토 후 차기 수위단회에 상정키로 결의하다(위원 : 정광훈단원과 총무부에서 맡기로 하다).

9) 상벌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다.

10) 사무감사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다.

11) 남녀교제 규정 개정안은 제6조를 부분수정하고 심의 통과하다.

12) 감찰원장 선거는 차기 수위단회에서 하기로 결의하다.

13) 수위단 보궐단원 추천은 차기 수위단회에서 하기로 결의하다.

14) 감찰위원 보선은 이동진화위원 사표를 반려하기로 함에 있어 본 건을 기각하다.

15) 이리보육원 원장에 김홍철을 추인하다.

16) 익산보화원은 ①이리보육원에 합원하고 ②울안의 대지와 건물은 대학에 주고 ③울밖의 논은 대학에서 경작 1년 사용료를 회수 보육원에 재단보조로 지급키로 함을 결의하다.

제29회 (정기). 원기51년(1966) 3월 12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원기51년 3월 총회에 교정위원회를 소집하되 소집일자는 사무당국에 일임키로 결의하다.

2) 수위단 남자 태방단원 보궐추천에 선거를 통해 안이정을 선정 후보추천을 결의하다.

3) 감찰원장에 이공주단원을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임명 결의하다.

4) 총부 서울출장소 운영예산에 관해서는 총부에서 30만원을 조달해 주고 서울에서 보충하는 방법과 후원회를 부활, 사기를 진작하는 의견을 채택 가결하다.

5) 종교계사 운영문제는 예산편성에는 관계가 없으니 다음 수위단회로 미루기로 선언하다.

6) 교도법위사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 위원에 수위단 양중앙단원과 서대인, 양도신, 정광훈 단원을 선정하다.

속회 : 원기51년(1966) 3월 13일

7) 중요인사에서 ①원광중고 교장인사는 사표수리를 기각하고 교정원장직을 보필할 부원장을 두기로 하고 학교운영을 상의할 위원으로 박광전, 황정신행, 이공주, 이사장 정광훈, 김윤중 등으로 선정하다. ②재무부장 인사는 교정원장의 권한에 일임할 것을 결의하다. ③이리보육원장 인사는 이리보육원 자문위원 성정철, 정광훈, 이철행, 김서오, 사업부장 5인에게 일임하고 차기 수위단회에서 토의키로 선언하다. ④감찰원부원장 인사는 더 연구 차기 수위단에서 의론키로 하다.

8) 원기50년도 결산보고안을 승인하다.

9) 원기51년도 예산안은 교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할 것을 결의하다.

속회 : 원기51년(1966) 3월 29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원기5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중앙교의회에 회부할 것을 결의하다.

2) 총 5,069명의 법위사정을 승인하고 전무출신과 보유자와 누락자에 대한 사정시기와 위원은 그 위원들이 논의해서 하기로 하고 시기는 사무당국에 일임키로 결의하다.

3) 삼동수양원(가칭) 발족은 보류하기로 하다.

4) 중요인사에 있어 ①교정원장에 박장식단원을 유임키로 하고 원광중고 교장에 정광훈단원을 내정 결의 ②재단이사 개편은 보강으로 하고 보충인선은 이사회에 일임키로 결의 ③감찰원부원장 사표를 수리할 것을 가결하고 일체의 인사는 유임토록 결의하다.

제30회 (임시). 원기51년(1966) 6월 13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교역자 고시규정 개정안, 교정원 조직법 개정안, 수위단회법 개정안, 인사임면 규정 제정안 등 이상 4안건은 수위단원 전원과 이공전, 김윤중과 총무부에서 연구 차기 본회의에 상정 토의할 것을 선언하다.

2) 중요인사에 대하여 ①감찰원 사무처장에 박제권의 인사는 원안대로 승인 ②순교감 김일현을 승인하다.

3) 원광중고 부채처리 문제로 서울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공주단원을 보조하여 송원철, 이철행, 이수오가 협력하기로 하다.

4) 교화 자금조성에 교단 전면적으로 보험제도 실시는 않기로 하고 교정원장에게 모든 것을 일임키로 결의하다.

5) 종교계 발간은 우선 서울출장소에서 하기로 하고 종교계사 신설, 운영문제는 더 연구 차기 본회에서 승인얻도록 하다.

제31회 (임시). 원기52년(1967) 10월 16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제3회 교역자 검정고시 시행일자를 형편에 따라 하도록 당무진에 일임하다.

2) 개교 55주년 사업회 인사는 중앙교의회에서 하고 신년도 총회까지 유임키로 하다.

속회 : 원기52년(1967) 10월 18일 오후7시

3) 원기52년도 총회는 지상대행토록 결의 승인하다.

4) 서울수도원 발족 추인을 승인하고 운영위원에 이공주, 송달준, 문동현, 이경순, 정광훈, 서대인을 선정하다.

5) 수위단회에는 단원이외의 사람은 정식 출석요구가 없는 한 참석을 금하며 종법사께 보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앙단원이 직접 보고하기로 하다.

6) 수위단 입후보 천거에 ①법위본위로 하며 ②다수를 천거하기로 하다.

제32회 (정기). 원기52년(1967) 3월 24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원기5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승인하다.

2) 중요인사에 ①종교재단이사에 조희풍, 조갑종 중임 ②개교 55주년 사업회 사무장에 김정용 선정 ③서울수도원 운영위원에 황정신행 선정 ④교정원장을 비롯 5부장은 전원 유임키로 하다.

3) 정산종사 법어를 제1부 세전, 제2부 법어편으로 편찬하며, 예전과 악전은 각각 별책으로 간행키로 하다.

4) 法衣·絡子 양식에 있어 법의는 여름 백색, 겨울 회색으로 하고 絡子는 종래 남자부 사용 絡子 양식에 노랑밤색위에 금색 일원상을 두개 수놓기로 하다.

5) 백수동국민학교 분교설립에 부지희사의 건은 교정위원회에 일임키로 하다.

6) 선원체제에서 영산선원 2년, 동산선원 3년으로 하여 영산선원을 마치고 동산선원으로 진학하도록 하다.

7) 법위사정 ①전무출신 : 예비특신급 252명, 정식특신급 156명, 예비법마상전급 183명, 정식법마상전급 66명, 예비법강항마위 7명 계664명 ②재가교도누락자 : 예비특신급 85명, 정식특신급 43명, 예비법마상전급 23명, 정식법마상전급 2명 계153명, 사정보유자 54명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33회 (임시). 원기52년(1967) 10월 18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정화사 사칙 제5조와 제11조에 자구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다.

2) 예전·악전은 별간할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전·악전의 내용이 대폭 보충이 있을 때까지는 임시 합간으로 하며 명칭은 감수위원회에 일임키로 하다.

3) 도량상규는 제2조와 제4조를 자구수정하고 제16조를 삭제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4) 교도 사업성적 사정규정은 종별에 종자를 약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5) 인사임면 규정은 제3조 임기에 교무급이상은 3년 1기를 원칙으로 하고 2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면 2기이상은 종법사의 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삽입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6) 교정원 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다.

7) 고시위원 선정에 박장식, 박광전, 이운권, 이공주, 정광훈, 김영신, 조전권, 오종태, 서대인을 위촉하고 고시일자는 당무부에 일임키로 하다.

8) 삼동수양원 발족은 승인하고 원장에는 이병은을 임명하고 경비는 자체 해결키로 하다.

9) 조갑종교무 순교감 발령을 승인하다.

10) 전음광교무 성적을 공부 정식법마상전급, 사업정특등, 원성적 정1등으로 추존하다.

11) 정녀 및 숙녀의 구분문제는 내규에 상세히 밝혀져 있으니 법규대로 실현할 것을 감찰원에 촉구하기로 결의하다.

12) 서울출장소 채무문제는 위원을 선정하여 이 문제를 일임키로 하고 성정철, 김중묵, 김정용, 김윤중, 이철행, 송원철 제씨를 위촉하다.

제34회 (정기). 원기53년(1968) 3월 21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수위단 보궐단 후보에 박진오, 이정만, 이정화, 정양선을 추천하고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정하며 4급교역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주기로 하다.

2) 양원장 선거에 있어 투표로써 선거키로 하고 개표결과 교정원장에 박장식, 감찰원장에 이공주단원이 피선되다.

3) 서울출장소장에 박광전단원 피선되다.

4) 원기5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일부를 수정 교정위원회에 상정키로 하다.

5) 총부 유지기반 확립을 위하여 농도원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하다.

6) 정남·정녀·숙남·숙녀 용장 수여는 개교 55주년까지 연기키로 하다.

7) 인사문제는 위원을 선정하여 일임키로 하다(위원 : 박장식, 이공주, 박광전, 조전권, 오종태).

8) 중앙선원 개원을 위해 개교 55주년 기념본관내에 선방하나 두자는 안을 사업회에 전달키로 하다.

9) 법락 제정은 개교 55주년까지 연구하여 그때에 제정여부를 결정키로 하다.

10) 교역자 자격고시 검정기일을 12월경에 실시키로 하다.

11) 교정원 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12) 교도 사업성적 사정은 개교 55주년에 중간결산을 하지 않고 2대 마감에 하기로 하다.

13) 종법사 요양을 위하여 종법사에 대한 인사는 일체 약하기로 하고 큰 행사에 종법사께서 총부에 오셔서 인사를 받으시도록 하는 등의 방안모색과 요양비에 대하여는 법감과 사무장이 방안을 연구, 교정위원회에 내기로 하다.

속회 : 원기53년(1968) 3월 28일 오전11시.

1) 원기5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2) 감찰위원에 박제권, 박광전, 정광훈, 김윤중, 조전권, 오종태, 이경순, 양도신 이상 8인을 승인하다.

3) 인사안 중 40명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나머지 7인을 조정 인사하다.

제35회 (임시). 원기53년(1968) 11월 4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전무출신 규정를 심의하여 제4, 7, 12, 13, 27, 31, 38조에 원의회란 부분을 수위단회로, 제33조 단항을 본문에 넣고, 제37조 특갑을병정을 1·2·3·4·5로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2) 교령추대의 건에 교령이 직책인가 대우인가를 잘 밝힌 다음 추대여부를 결정키로 하다.

제36회 (임시). 원기54년(1969) 1월 22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서울에 빌딩을 짓기로 하고 수위단에서 6인의 준비위원을 선정하고 오는 교정위원회 때까지 이 건을 연구 주선하기로 하다(위원 : 박광전, 박장식, 이공주, 황정신행, 이운권, 이경순).

2) 인사 연한제 시행에 있어 개교 55주년에는 지부 기관을 망라하여 6년이상 재임자는 모두 교체하기로 하고 개교 55주년 이전에는 형편따라 수시 교체하기로 하다.

3) 수도원 인사에 부원장에 이경순, 총무겸 교무에 김이현, 외무에 송달준을 결정하다.

4) 동화병원 개원에 관한 문제는 사업부와 원광사, 원광고등공민학교와 그리고 상무진과 타합해서 하기로 하다.

5) 전무출신 지원자 22명을 예비 전무출신으로 인정하다.

6) 교역자 검정고시 과목 중 교규와 교령을 모두 포함하기로 하다.

제37회 (정기). 원기54년(1969) 3월 28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영산선원장에 오종태를 결정하다.

2) 전무출신 지원자 29명을 예비 전무출신으로 인정하다.

3) 원기5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4) 수위단회 사무처를 독립키로 하다.

5) 수위단회법 개정안 등을 수위단회법 세칙으로 채택하고 분과위원회는 총무, 교화, 경제, 감찰 4개분과 위원회로 하며, 위원선정은 단장과 중앙을 제외한 16인으로 1개분과위원회에 4인씩 분담하되 분반은 중앙단원과 양원장에게 일임한 바 선정된 분과위원은 총무 : 박장식 김홍철 서대인 정양선, 교화 : 이운권 안이정 조전권, 경제 : 조갑종 성정철 조회석 김영신, 감찰 : 정광훈 황정신행 이경순 양도신 등이다.

6) 인사교체안은 인사위원회에 일임키로 하다.

제38회 (임시). 원기54년(1969) 5월 6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수위단 전문위원에 총무분과 : 송천은 이제성 조정근, 교화 : 이은석 정성숙 유기현, 경제

: 김정용 이철행 김서오, 감찰 : 이공전 김이현 신도형을 선정하고 각부장과 처장은 자동참석.

2) 서울 기념관 건축추진위원회 회칙안 중 제2, 5, 6, 13, 18조를 수정하기로 하고 통과하다.

3) 총부사무실 직원과 부교무 3년이상 재임자 23명중에 14명에 대하여 교무자격을 인증하다.

4) 총부인근에 계신 수위단원과 순교감진에게 임시 법위사정을 위촉키로 하다.

5) 종교문제연구소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위원에 이공주, 양도신, 조회석, 정광훈 등을 선정하다.

제39회 (임시). 원기54년(1969) 9월 20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수위단회법 개정안 및 수위단회 사무처 규정을 원안대로 통과하다.

2) 서울기념관 건립추진회 회장단 승인(회장 : 박동현, 부회장 : 문동현 공덕종 방성심).

3) 교단의 재정을 제1재단으로 통합하기로 원칙 합의하고 구체안은 경제위원회가 연구케 한다.

4) 종교인 협회는 운영면에서 잡음이 많으므로 1·2년간은 회장직을 맡지 않기로 하다.

5) 교전의 인쇄는 반드시 수위단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기로 하다.

6) 서울사무소에 관해서는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연구보고케 하다.

7) 인쇄시설에 관해서는 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연구보고케 하다.

8) 교구제 실시에 관해서는 교화·총무 양위원회에 회부하여 연구보고케 하다.

제40회 (임시). 원기54년(1969) 10월 13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수위단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기55년도 수위단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위원4인), 원기55년도 예산은 수위단회 예산·결산위원회와 원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연석하여 심의하기로 하다.

2) 제6회 교역자 검정고시를 12월 25일부터 3일간 시행키로 하다.

제41회 (임시). 원기55년(1970) 2월 27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수위단원 예우규정은 교정위원회에서 심의, 제37회 수위단회에 상정케 하고, 통과될 것을 전제하여 원기55년도 예산에 예우에 관한 예산을 책정케 하다.

2) 수위단회 사무처를 보강하기로 하여 전문연구원에 이성길을 보직키로 한다.

3) 원기55년도 전무출신 지원자 남자 14명 여자 29명에 대하여 지원을 승인한다.

4) 교역자 교화단 시행은 교화단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다(위원 11인 선정).

5) 교전 2,000부 및 축소판 교전 2,000부를 부당 300원과 250원으로 각각 정하여 인쇄하게

하다.

6) 원기55년도 열반인 11명의 법위를 사정 승인하다.

7) 반백년 기념대회 행사 시기는 원기56년 4월말경으로 하고, 행사장소는 총부·서울·영산의 세곳에서 갖되 서울행사만은 중앙교의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하다.

8) 반백년 사업회 강화방안으로 송자명을 순회독려 교무로 보강하고 편집, 행사, 선전에 관한 인사는 사업회에 위임하다.

9) 기념사업회와 교정원의 혼연일체된 체제강화를 위하여 오전 중에는 교정사무에 임하고 오후에는 반백년 사업추진에 임하도록 하다.

10) 반백년 기념사업회 재정조달의 방법으로 ①종법사 특별유시 ②지도위원(수위단원) 지방순회 ③교당신축 등의 추진은 이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기로 하다.

11) 정각사 대지 환원추진위원을 선정하여 정각사 대지에 대할 수 있는 대토를 선정 교환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하게 하고(위원 : 이공주 김정용 이철행) 대토교환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300만원은 서울수도원 자체자금에서 부담하기도 하다.

12) 원광사 및 신보사 병합에 대한 구체안을 성안하여 원의회에 상정하고 차기 정기수위단회에 보고케 하다.

13) 반백년 사업회 시상에 있어 반백년 사업회에서는 사업회에 소관된 시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각 부처에서는 부처에 소관된 시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종합 시상하기로 방안을 세워 보되 교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여 최종 확정키로 하다.

14) 수위단회 운영에 관한 6개항 ① 수위단회는 2~3개월 간격으로 제3화요일에 개최 ② 회순에 의견교환 순을 부가 ③ 경과보고, 제안설명 해당 부처장(과장) ④ 원의회 제출안과 수위단회 제출안 사전구분 ⑤ 교정·감찰원 시행사항을 수시보고(서면으로) ⑥ 교단의 중대사는 임시 수위단회에서 결의 집행을 합의하다.

15) 원기56년도 중앙교의회 개최시기를 전문위원회에서 연구보고케 하다.

16)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 세계종교자대회 초청장이 왔는지 문공부에 확인케 하다.

제42회 (정기). 원기55년(1970) 3월 28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교역자 자격승급 및 자격인증에 대하여는 ①교역자 전형고시가 법규대로 시행되어 전무출신 전반에 대한 등급별 자격실시 때에 심의 ②현행 법규는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신규법으로 5급부터 자격심사 ③교당급지와 교역자 자격등급을 대등하게 하다.

2) 고시위원회 규정 2조의 개정안인 「원광대학장과 선원장은 고시위원이 될 수 없다」는 폐기하고 고시 시행세칙 제10조와 제18조의 개정안은 통과하다.

3) 전무출신 지원자 송달준에 대해 승인하다.

4) 열반인 정일지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승인하다.

5) 법위사정 실시 요강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법위사정위원 선출하다(위원7명).

6) 제안된 원기54년도 결산 및 원기55년도 예산안을 무수정 통과하다.

7) 인사에 있어 교체안 중 11명은 교체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다.

8) 수위단원 전문위원을 선출하다(총무분과 : 심도정, 경제분과 : 박정기, 교화 및 감찰분과 보류).

9) 동산선원의 3년체제는 각 선원과 훈련원의 체제가 결정될 때까지 종전체제(2년)로 운영하기로 하다.

10) 영산 3기관의 분립을 승인하고 재산은 영산출장소에서 관리하며, 재산처리위원을 선출하다(위원 : 6명위촉).

11) 종교문제연구소의 예산을 다음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하다.

12) 총부유지 기금조성을 우선적으로 책정 합력하기로 하다.

13) 교화단 관리는 단장이 함이 원칙이나 1년은 교무부에서 주관 시행, 이단치교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게 하다.

제43회 (임시). 원기55년(1970) 5월 7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수위단원 예우규정을 원로 예우규정이라 하고 제9조에 「현직 수위단원은 이 규정에 준하여 예우한다」는 조문 삽입, 개정안과 같이 통과하다.

2) 상주선원의 명칭은 중앙선원으로 하다.

3) 동산선원의 체제는 현재까지는 3년체제로 이수케 하고 원기55년 이후 부터는 2년체제로 하다.

제44회 (임시). 원기55년(1970) 12월 4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원기56년도 인사교체에 있어서 ①종법사 선출시 결원된 수위단원 1명은 차점낙선자로 자동보궐 ②교역자 전원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3년이상 근속자는 사표제출케 하고 ③교체기준은 경력, 실적, 적성, 법계 등의 4종으로 하여 즉시 사무 착수 ④교체법은 원기56년도 인사만큼은 수위단회 본회의에서 결정 ⑤원기56년도 이후에는 전무출신 규정 제45조에 의거 실시한다.

2) 전무출신 처우통일을 기하기로 하되 수위단회 사무처에서 더욱 연구하기로 하다.

3) 고시위원 7인을 선정하다(위원 : 7명위촉).

4) 교정·감찰 양원에서 시행사항 중 중요한 것은 수위단회에 구체적인 서면보고를 수시로 하고, 원기55년도 감찰원 사무감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기관에 수위단회 특별감사를 실시하

기로 하다(감사위원 : 6명, 감사기일 : 원기55년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5) 원기56년도 1월초부터 3월말까지 중앙선원에서 주관하여 원기55년도 선학원 졸업생에 한하여 합동훈련시키되 훈련원의 체제를 연구 선·학원생 훈련문제를 다시 결의하다.

6) 원활한 교산 통제를 위해 ①교정원장 권한 재확인 ②교정원 행정감사 실시 ③현재 운영중인 생산업체를 교정원장 직속하에 두기로 하되 생산업체 운영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안을 연구수립키로 하고 교정원기구의 개편에 대하여는 연구검토하여 새 기구안을 세우도록 하다.

7) 영산성지 사업계획안은 찬성하나 반백년 사업회 소관이므로 정식결의는 반백년 사업회에서 하도록 하다.

제45회 (임시). 원기56년(1971) 2월 2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수위단회 기능 및 이단치교에 대하여 ①교헌 제29조에 의거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의결기관으로 종법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으로 확정하고 ②수위단과 교화단을 상호관련시켜 교화단은 수위단의 지도 감독 ③교화단의 사무는 교무부에서 주관 ④수위단원은 교헌 제31조의 규정과 같이 하고 교화단 조직은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의 구성은 수위단회에서 하다.

2) 교정원 기구 개편은 교정원에 기획실을 신설하여 교정원 기획사무 및 교정원장 비서사무를 주관하게 하다.

3) 원기56년도 이후부터는 교단 세입원 보강의 일환책으로 ①대종사 재세시에 실시하였던 유지비, 헌공비, 생활비, 요양비, 공부비 자금 제도를 부활하여 세입원을 확장하기로 하고 ②헌공비 자금은 중점적 추진 수합 타당성 있는 기업에 투자운영 ③운영에 있어 중앙경제인단을 구성 추진하게 하다.

4) 매년 시내 각 기관장 회의를 개최, 각 기관의 전무출신 용금에 대한 통일책을 기하기로 하다.

5) 정년제 시행이후의 대책수립에 있어 ①수위단 퇴직 원로에게는 수위단회에 무방위 단원으로 결의권없이 참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②거진출진 수위단원의 퇴직은 전무출신의 예에 준하며 ③원로 예우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강구하고 ④퇴직 후 기관의 고문이나 전체 교역자의 상담역으로 정신적인 지주로 모시게 하며 ⑤원로는 교령으로 추대 ⑥송대를 임시 남자원로원으로 사용 ⑦원로원 건축에 대하여는 더 연구 ⑧수위단원이 아닌 정년퇴직자는 사업부에서 연구 시행하도록 하다.

6) 대종사께서 친히 거처하시던 조실, 금강원, 송대 등의 3건물은 앞으로 영구 보존하기로 하다.

7) 전무출신 합동회갑식은 3월내에 결정 실시하도록 하다.

8) 원기56년도 전무출신 지원자 24명을 승인하다.

9) 3월대회(반백년 기념대회) 일정은 계획안대로 집행부에서 참작하여 실시하게 하다.

10) 3월대회 사무절차에 있어서 ①원의회에 중앙교의회 대표참여는 당무부에서 결정 시행토록 하고 ②원기56년도 후보는 남자 8명 여자 7명으로 추천하기로 하고 ③교정위원의 한계는 교역자 등급별 자격전형이 시행될 때까지는 교역자 자격고시 합격자는 5년이상 근무자, 자격고시에 응하지 않고 10년이상 근무자로 하며 ④중앙교의회 특선위원을 작성 수위단회 승인을 얻도록 하되 그밖의 특선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고려하기로 하다.

11) 원기56년도 인사교체는 수위단회 본회의와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주관 처리하기로 결의하다.

12) 교정원에서 춘천교당의 채무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책을 세워 처리하기로 하다.

13) 4기관의 인사와 운영에 대하여 ①전주양노원은 조갑종단원을 파견 지도감독하기로 하고, 문서정리 및 회계사무에 임할 수 있는 사무원 파견 ②이리보육원은 원장을 즉시 해임하고 재무부장을 대표 수습위원으로 수습, 운영, 지도감독하게 하고 3월 총회 이후에는 정성덕을 원장으로 내정하다. ③원광여상은 재산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산상의 변조와 사업계획은 필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케 하다. ④서울수도원의 재산을 훼손한 이의 법계와 직위를 박탈하고 교산 훼손액을 반제하도록 하다.

제46회 (임시). 원기56년(1971) 3월 1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교정위원 자격을 원기56년도에 한하여 337명에 대하여 잠정적 승인하고, 원기57년 이후는 정식 교정위원 자격심사를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케 하다.

2) 청년회 회장과 지구 연합회 회장을 중앙교의회 의원으로 승인하다(회장단 7명).

3) 원기55년도 법위 예법강 22명, 정법마 502명, 예법마 831명, 정특신 3,103명, 예특신 5,387명을 승인하다.

4) 원기55년도 열반인 법위 정법강 1명, 예법강 4명, 정법마 1명을 승인하다.

5) 반백년 기념행사 일정은 9월 하순경으로 연기하기로 하되 적의히 조정하고, 원기56년도 인사교체는 3월 총회 전후하여 단행할 것을 재확인하며, 9월의 행사와 3월의 인사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더 연구케 하다.

6) 교산통제를 위하여 ①교정원 각부 및 특수기관에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재단 운영위원회로 개칭하여 재단이사회와 혼돈하지 않게 하다. ②교산은 재단운영위원회를 거쳐 원의회 승인을 얻어서 처리하고 보고토록 하다. ③원의회의 기능중 교정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위단회 결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다. ④모든 자금은 재무부에서 수합 운영하도록 하다.

7) 수위단회법 중 제6조는 제7조로 바꾸고 「제6조 교헌, 교규, 교리의 정신에 위배되거나 왜곡된 해석이 있을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처리한다」를 새로 규정하다.

8) 교정원 기구개편 및 기관통제에 대하여는 ①사업부를 공익부로 개칭 ②사업부 직제중 사업과는 자선사업과로 하고 요양과 신설 ③재무부 직제는 가) 종교재단 사무국과 학원재단 사무국을 폐지하고 재단사무과를 두어 임하게 하고 나) 이재과를 신설하여 교산통제를 주무케 하며 다) 경리과에서 총부경리사무 도량수호관리 회계 건축 등의 사무를 관장케 한다 ④각 지부 기관은 사업목적별로 교정원 각부의 통제를 받도록 원의회에서 분리하게 하다 ⑤교무부는 가) 해외포교과 신설 나) 선전과 폐지하고 소관사무는 편수과로 이관 다) 청소년과 신설하다.

8) 각 학교 교화활동을 위해 ①각학교에 1주에 1시간 원불교 시간을 이수케 하다. ②교화담당자를 파견하다. ③학교교당마련 ④교화담당자 호칭은 교무부에서 적의히 마련 ⑤교재를 편집하게 하다.

9) 전무출신 정신의 함양을 위해 ①전무출신은 매년 2회정도 의무적으로 훈련받게 하다. ②교화단을 통해 지도 ③총 지부 기관을 법 도량화 ④전무출신에게 최대한 경제적 뒷받침을 기함 ⑤상봉하솔의 정신을 실천하고 대화로 상호지도 ⑥인사수급에 질적인 면을 고려하여 받아들이게 하다.

10) 원기56년도 이후의 교구제 시행은 원칙적으로 하되 교구의 범위, 인사, 경제, 체제 등은 집행부에서 결정 시행토록 건의하기로 하다.

11) 투표절차에 있어서 종법사, 수위단원, 양원장의 선거는 투표소를 병설하여 기소한다.

12) 순교감을 보강 효과적인 교화를 기하고 지방실정을 파악 수시 보고케 한다.

13) 교정원 조직법 중 제7, 8, 9, 13, 18조항은 개정하고 제25, 26, 27, 28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하다.

14) 원기56년도 수위단회 특별 예산위원을 선정하다(위원 : 7명).

15) 한남동 대지에 대하여 징발 해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국방부와 합의 의정서를 체결할 것을 결의하다.

16) 전무출신으로서 본교 교직외에 다른 직무를 겸대할 때에는 전무출신 규정 제4조와 제7조에 의하여 철저히 통제하기로 하다.

제47회 (정기). 원기56년(1971) 3월 29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반백년 기념대회 일정은 9월말경으로 연기함을 재확인하고, 인사는 ①임기직은 3월 총회에 교체하기로 하고 ②교화직을 비롯 기타직은 4·5월 중에 전체적으로 교체 ③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는 보류시킬 수 있도록 하다.

2) 원기56년도부터 훈련원을 발족시키기로 하고 동산선원은 3년체제로 복원하기로 하되 교정위원회에서 결의를 얻어 결정하기로 하다.

3) 전무출신 규정 제45조 본항은 모든 전무출신에 적용됨이 원칙임을 확인하다.

4) 전무출신의 회갑식은 예전에 밝혀진 바에 의하여 거행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원기56년도의 회갑식 거행은 교무부에서 적의히 하기로 하다.

5) 제41회 임시수위단회 결의사항 중 교정원 조직법 제18조를 재 개정하다.

6) 남녀 수위단원 후보에 남자 5명, 여자 5명을 선정하고 투표용지의 후보자 명단은 방위순으로 하다.

제48회 (임시). 원기56년(1971) 3월 30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대산종법사를 만장의 박수로 새 종법사에 추대하다.

2) 수위단 남자 중앙단원에 박광전단원, 여자중앙단에 이공주단원을 선정하고 각 방위단원을 선임하다.

3) 교정원장에 이운권, 감찰원장에 서대인을 각각 선정하다.

제49회 (임시). 원기56년(1971) 4월 1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원기56년도 예산안을 무수정 통과하다.

2) 재단이사는 9인을 선정하기로 하고(이사 : 7인), 재단감사는 2인을 선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게 될 시에는 원의회 결의를 얻어 조정하도록 하다. 임기만료시에는 재무부에서 자동적으로 재 신청을 하도록 하다.

3) 수위단원 분과위원 선정 ①총무분과 : 이운권 안이정 김영신 양도신, ②교화분과 : 박장식 김근수 오종태 조전권, ③경제분과 : 정광훈 성정철 조희석 황정신행, ④감찰분과 : 서대인 김홍철 정양선 이경순.

4) 수위단을 중심한 특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기56년도 인사 교체시행을 위임하기로 하다(위원 : 13명 선임).

제50회 (임시). 원기56년(1971) 7월 20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교화재단 정관 중 제16조(임원의 정수와 종류) 3항 중 「임원 20인 이내로 하며」의 자구만 삭제, 원안대로 통과하다.

2) 훈련법안은 중요 교규와 문제점이 많으니 연구보완 차기 본회의 상정케 하다.

3) 법위사정 대상 누락자 추가사정은 원기55년도 수위단 법위 사정위원 중 총부 주재인으로 교무부에서 사정케 하다.

4) 감찰원장 제청을 듣고 이공주, 박광전, 박장식, 정광훈, 오종태, 이경순, 양도신, 이공전 제씨를 감찰위원으로 선정하다.

5) 기강협의회 규정안은 시행상 세칙이므로 자체에서 실시해 보도록 하다.

6) 전무출신 규정에는 불구, 폐질은 전무출신 승인이 안되게 되여 있고, 종법사 특인도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한계 등에 관한 시행세칙도 마련해 보도록 하다.

7) 현재 법호 증여가 너무 가벼히 취급되고 있으므로 검토 개정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키로 하다.

8) 이중정을 순교감으로 승인하다.

9) 교정원 조직법 제18조 개정안을 통과하다.

10) 개정 교정원 직제는 원의회를 거쳐 시행토록 하다.

11) 서울기념회관 문제는 수습대책 위원회를 구성 서울에 파견 조사 검토를 하기로 하고 12명의 수습 대책위원을 선정하다.

12) 한남동 대지 국방부와의 관계는 보고에 그치고 재단이사회에서 논의하게 하다.

13) 한남동 대지는 정부와 관계없이 일금 3억원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도하도록 하다.

14) 교전 영역판 감수 인증에 있어서 그대로 접수 인증하되 반백년 사업회에서 발행하게 하다.

15) 청원서 건은 사실여부를 수위단 감찰위원회와 감찰원 감찰위원회에서 조사 처리케 하다.

제51회 (임시). 원기56년(1971) 10월 5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한남동 대지는 이필수씨가 2개월 이내에 공원용지에서 해제시키고 미군부대를 철수시키면 1,500평을 양도해 달라하니 그 방안으로 추진키로 하다.

2) 9인의 고시위원을 선정하다.

3) 전무출신 지원자 16명 전원을 승인하다.

4) 의산 조갑종 법위를 정식 법강항마위로 결정하다.

5) 서울기념회관 수습위원을 기존의 13인과 집행부 5부장 등 26인으로 보강하고 실행위원에는 집행부 5부장을 비롯 13인으로 결의하였으며 방법문제는 수위단원과 수습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해결하기로 하다.

6) 수위단회, 교정위원회를 비롯하여 모든 회의에 주관처에서 사찰제도를 실시하기로 하다.

제52회 (임시). 원기57년(1972) 1월 11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법호증여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다.

2) 교정위원회법 제2조 개정안을 통과하다.

3) 전무출신 규정 제15, 16, 33조의 개정안을 제안대로 통과하다.

4) 전무출신 지원자 승인은 새로 통과된 전무출신 규정 제16조에 의거 총부 심사위원회에 일임키로 하다.

5) 교헌 제26조에 근거 교정자문위원을 두도록 하다(교정위원 : 7인).

6) 3월 총회는 집행부에서 중앙교의회 의장단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일임하다.

7) 박광전 현 학장을 총장으로 임명 결의하다.

8) 남한강 일을 추진하는 것은 일단중지하고 빚갚는데 일치합력하고 수습위원회 실행위원과 상부기관에서 남한강 문제 백서작성, 정리할 수 있는 자산조사를 해 놓기로 하다.

제53회 (정기). 원기57년(1972) 3월 27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법호증여 대상자는 더욱 면밀히 조사하여 차기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다.

2) 법무실장과 순교감을 원안대로 통과하다.

3) 교사, 교헌 편수과업을 정화사에서 담당추진하기로 하다.

4) 원기57년도 예산안을 무수정 통과하다.

5) 반백년 사업회 사업보고는 차기 중앙교의회에서 행한 후 해체키로 하고 잔무는 실무자가 계속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제54회 (임시). 원기57년(1972) 6월 27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교단의 교회·훈련·제도·인사·경제 등 기본적인 문제의 연구는 수위단회 사무처에서 담당해야 하고 교정위원회의 건의안은 사무처와 교정원 기획실이 성격따라 구분 처리하되 연구활동의 보장문제는 가능한 현 실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고 연구비 책정과 인원보강은 신년도 예산에 반영 실시키로 하다.

2) 교정위원 선정은 교역자 자격 전형을 먼저 하고 법규대로 교정위원을 선정 재조정해서 차기 수위단회에 상정케 하고 교역자 자격 전형일자로 고시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하다.

3) 법위증여 대상자 중 출가교도를 새 법호 규정에 준하여 재조정 일괄 발표해 주고 재가교도는 19명 전원을 통과 승인하다.

4) 다대교당의 문제는 교정원에서 처리케 하다.

5) 불목산장 관리문제는 교정원에서 처리케 하다.

6) 남한강 문제는 수습위원들이 선처하고 수위단원들도 적극 협조하기로 하다.

제55회 (임시). 원기57년(1972) 10월 17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4급이상 교역자 자격 전형에 있어서 전형 고시위원은 수위단원 전원으로 하고 교정원장

감찰원장 총무부장 교육부장 감찰원사무처장 5인으로 기초 조사위원을 구성하여 전형 고시위원회에 상정키로 하다.

2) 법호 증여는 현재 법에 해당한 자만 증여하되 특별증여는 종법사의 명에 의하여 증여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다(해당자 : 출가11명, 재가 3명).

3) 수위단원 중에서 대표위원 2명을 선정하고 대표위원이 5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하기로 하다(대표위원 : 박장식 정광훈, 위원 : 이공전 김정용 이은석 송영봉 송원철).

4) 농촌교당 감원 해결 문제는 교정원 기획실에서 연구하게 하다.

제56회 (긴급). 원기58년(1973) 1월 9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십타원 양하운대사모 법위는 열반후 정식 법강항마위의 추존 결정하였으며, 장례는 교회전체장으로 거행하되 영모전 입묘와 향례는 법에 따라 공부사업의 원성적에 의하여 받들기로 하다.

2) 원불교 수도원 원규를 수정 통과하고, 임원은 수도원장에 이공주를 승인하고 수도원장 제청으로 고문 2인과 운영위원 18인을 인준하다.

제57회 (긴급). 원기58년(1973) 2월 28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교정원장 징계는 6년간 탈계키로 하다.

2) 교정원장, 재무, 교무 양부장 정계와 총무, 공익, 육영 3부장 사표수리로 새임원을 선정하다.

3) 故 오미산, 신도형교무의 법위를 정식 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제58회 (긴급). 원기58년(1973) 3월 22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단원들의 만장일치로 김근수교정원장 서리의 사표수리를 않기로 하다.

2) 중앙교의회 특선위원에 서울·경기지구 청년회장, 원고부교장, 원여중고부교장, 서무과장을 첨가하기로 하고 통과하다.

3) 원기57년도 세입 세출 결산보고 및 원기5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청취에만 그치고 ① 순교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할 것 ② 순교감 총부주재 출장·순회하는 방향으로 할 것 ③ 수입증가를 신중 고려하고 순교감 용금은 동결할 것.

제59회 (임시). 원기58년(1973) 5월 9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감찰원 부원장제는 감찰원 조직법 개정 후 합리화시키는 방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감찰원 사무차장에는 전종철을 차장으로 임명할 것을 승인하다.

2) 서울수도원 부원장 송원철, 순교감 송자명, 영산선원교감 윤주현을 제청에 승인하다.

3) 제출된 이사 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정관개정, 학원과 종교재단의 이사 분리, 이사정원 등의 문제는 전문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키로 하고 정관개정까지의 업무는 현행법대로 계속 맡아 나가는 것으로 결의하다.

4) 법위사정 위원 구성은 교헌 교규가 모순되니 교도 법위사정 규정도 개정 법적근거를 세워 차기 수위단회 결의를 거쳐 구성하고 접수된 건은 종전대로 사정하기로 하다.

5) 교정원 조직법 개정안도 교헌개정에 따른 작업과 함께 연구 검토후 개정키로 하고 보류하다.

6) 원기5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7) 한국불교회 가입에 따른 본교의 대표중에서 이사장 및 이사된 것을 승인하다.

8) 중앙교의회의 건의안인 ①인사임면 규정의 세분화 ②재단이사 재가교도 참여 ③수위단회 재가교도 참여 ④대외적 훈련문제 ⑤야간교리학교 설치 ⑥영모전내부 장엄에 대한 것은 연구 검토후 집행키로 하다.

9) 군종제도에 있어서 교단은 우리대로 법에 참여되는 방향에서 검토키로 하다.

제60회 (긴급). 원기58년(1973) 6월 19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서울회관 부지 매립공사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지도위원 12인과 대표위원 1인, 부대표위원 1인, 총무위원 4인, 섭외위원 4인, 공사위원 3인, 재정위원 4인 등에 대한 9인 전형위원회의 제청에 원안대로 승인하고 일의 형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보장할 것을 첨가하다.

2) 故 백지명교무의 법위를 정식 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제61회 (긴급). 원기58년(1973) 9월 18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故 전공덕해선생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2) 교정위원회 법개정은 다음 회의시 재 검토키로 하다.

제62회 (임시). 원기58년(1973) 10월 9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교역자 검정고시 위원 보궐은 보선없이 현재 7명의 위원으로 하여금 전임키로 결의하다.

2) 교역자 고시 시행일자는 고시위원회에 일임키로 결의하다.

3) 故 근타원 박진오교무 법위를 정식 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4) 수위단회 상정코자 하는 모든 안건은 반드시 일차적으로 수위단 상임위원회의 토의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토록 함을 원칙으로 할 것을 결의하다.

5) 수위단원 4인회담시 합의내용에 있어 내용과 기록의 진부의 시비에 대하여 감찰원에서

조사 강력조처를 취하기로 결의하다.

제63회 (정기). 원기59년(1974) 3월 27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원기59년도 교정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하여 선정기준은 ①현역교역자 ②원급에 그치기 5년이상 자, 원기49년도 이후 졸업자는 고시합격 후 5년 경과한 자 ③현역전무출신으로 1기(7년)이상 근무한 자 ④선정기준 미달한 기관책임자는 방청권만 부여하는 원칙으로 남자 125명과 여자 225명을 선정하다.

2) 중앙교의회 지방별 대표위원수는 제출 원안과 동일 확정하고 특선위원 선정은 중앙청년회 사무국장을 중앙청년회 회장단으로, 정토회 회장을 정토회 회장단으로 제출안을 수정하고 전원 선정하다.

3) 사업성적 사정위원회 구성은 사정위원으로 안이정, 조전권, 감찰원장, 교정원장, 법무실장, 총무부장, 감찰원 사무처장으로 하고 지방사정을 참작키 위해 순교감을 옵저버로 참석케 할 수 있다.

4) 인사임면규정 중 제19, 20, 21, 8조 3항을 개정 통과하다.

5) 교정원장 김근수, 감찰원장 서대인을 선출하다.

6) 인사위원(7인)을 구성 인사전반을 위하여 위원에 일임하다.

7) 출가교도 17명과 재가교도 8명에 대하여 법호 증여를 결의하다.

8) 교정원 조직법 제6조 내용을 개정 통과하다.

9) 교정원 부원장에 기획담당 김윤중, 재정담당 이철행을 선임하다.

10) 대법사 칭호에 관하여는 ①수위단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키로 하고 ②금년 봄에 해외파견되는 법사에 대하여 우선 칭호를 사용키로 하다.

11) 전무출신 서원자 45명을 승인하다.

12) 열반교도 이관유행, 조광철은 예비 법강항마위로 하고, 김천민은 항마이하이므로 당무부에 일임키로 하다.

13) 교도기초훈련 방안은 ①1년두고 검토하고 금년은 시안으로 할 것 ②근행법은 종전대로 할 것으로 결의하다.

14) 석존성탄절 행사문제는 지방과 교무와 직접 관련되므로 교정위원회에 일임하고 교정위원회의 결의한 ①음력 4월 8일로 사용할 것 ②관등행사는 단체등으로 하고 지역에 따라 부득하기는 하나 앞으로 지양하도록 할 것을 승인하다.

15) 원기5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다.

16) 감찰원 조직법 개정안 중 제8조를 수정하고 원안대로 개정 통과하다.

17) 감찰원 부원장에 이공전, 사무처장에 전종철을 선정하다.

제64회 (임시). 원기59년(1974) 11월 2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교정위원회법 제2조를 개정 통과하다.

2) 재단이사 재선에 대하여 ①박장식 성정철 안이정이사는 임기만료로 의원해임하고 ②이철행을 감사직에서 해임, 재단이사직으로 선임하며 ③박장식 안이정를 재단이사로 선출하고 ④재단감사직에 이공전을 선임하다.

3) 중요인사에 ①이운권을 교령으로 선임 ②원광사 사장직에 조정근 선임 ③교역자 자격전형위원장에 박광전 중앙단원을 선임하다.

4) 남·녀 정화단 결단을 승인하다.

5) 고시위원 선정에 있어서 ①수양·취사 양과의 사정을 위하여 대학과 선원에서 각 2인을 선출 고시위원으로 하고 ②연구과 고시를 위하여 7인의 고시위원을 선출하되 수양·취사과목 사정에도 임한다. ③수양·취사 고시위원 선정(대학 : 한정원 송천은, 선원 : 안이정 김이현) ④연구과 및 수양·취사 담당 고시위원 선정(박장식 정광훈 김윤중 이공전 송원철 박제권 김인철) 하다.

6) 원기59년 고시는 12월 23일부터 실시키로 하다.

7) 교역자 고시 규정 개정에 있어 ①교헌을 「헌규」로 개칭키로 하고 ②고시규정 제9, 10, 12조를 개정 통과하다.

제65회 (임시). 원기60년(1975) 2월 5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교당규정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고 제8조 3항 2행의 유지운영 및 수지주관은 1항에 적의히 전임시키고 2조 2항의 법당 평수는 당무처에서 더 연구 적정 평수를 정하기로 하다.

2) 교정원 조직법 중 제2조에 재단이사장 직제와 제6조의 부원장 직제 삽입 개정안을 승인하다.

3) 교정원 조직법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무수정 통과하다.

4) 수위단 인사위원은 전년도와 동일인으로 구성하되 사무관리는 수위단회 사무처에서 주관키로 하다.

5) 수도원 서울(우이동)분원장에 양도신, 익산(총부)분원장에 송원철, 사무처장에 이백철을 선임하다.

6) 원기59년도 전무출신 서원자 53명을 승인하다.

7) 원기60년 교정위원회 위원을 총 369명을 선정하다.

8) 원기60년 중앙교의회 의원을 ①지방별 대표위원 205인(각교구별 수반지 교당 2인:22인,

각교당 1인 : 183인) ②특선위원 15인 ③교정위원 369명을 선정하다.

9) 출가교도 법호대상자 8인과 재가교도 대상자 14명에 대하여 법호를 주기로 하다.

10) 열반인 박낙천을 법강항마위로 승인하다.

제66회 (정기). 원기60년(1975) 3월 28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원기60년도 예산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다.

2) 사적 및 유물관리 규정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다.

3) 성화제작을 승인하되 ①성화제작 : 정승섭화백 ②자문위원 : 수위단원 전원 ③실행위원 : 김정용 전팔근 이공전 한정석 ④조력 : 이법성 양원도를 선임하다.

4) 균산 정자선, 안타원 김동수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승인하다.

제67회 (임시). 원기60년(1975) 10월 30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신태인지부 이귀도화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승인하다.

2) 사업성적 사정위원으로 박광전 이공주 김윤중 정광훈을 보선하다.

3) 전형고시 특별위원 9인을 선정 위임하다.

4) 고시 실시 일정을 12월 24~27일까지 하고 고시위원 2인을 보충하다.

5) 인사에 있어 영산출장소 부소장 겸 영산선원 부원장에 윤주현, 고문에 김홍철을 승인하다.

제68회 (정기). 원기61년(1976) 4월 2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원기61년도 교정위원회 위원 총 406명을 선임하되, 교구대표제와 의원수 제안 및 임기 년한 등을 연구하여 보고 교정위원 명단을 전회기에 제출하여 인정받도록 할 것.

2) 교헌작업 소관처와 기초위원 선정을 종법사께 말씀드려 결정하여 주신대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다.

3) 교정개헌 기초위원 15인을 인준하다.

4) 전무출신 서원자 44명을 전원 승인하다.

5) 정남·정녀 규정을 제안대로 승인하다.

6) 교역자 전형을 법위사정과 같이 실시하기로 결의하다.

7) 고문국을 교정자문위원으로 승인하다.

8) 원기6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9) 세입예산 책정은 교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할 것을 결의하다.

10) 열반인 법위사정에 있어 정식법강항마위 3인과 예비법강항마위 2인을 승인하다.

제69회 (긴급). 원기61년(1976) 5월 27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조전권교무의 법위를 정식출가위로 사정하다.

2) 단원보결은 내년 총회때로 보류키로 하다.

제70회 (긴급). 원기61년(1976) 9월 9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오종태교무의 법위를 예비출가위로 사정하다.

제71회 (임시). 원기61년(1976) 11월 2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교헌 개정에 있어 제20, 21, 80조를 개정 만장일치로 통과하다.

2) 원기61년도 고시일자를 12월 27일에서 30일까지 결의하다.

3) 교역자 호칭을 교무로 결의하다.

4) 교역자 고시규정 및 고시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다.

5) 교역자 자격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다.

6) 원기62년도 인사방침에 관하여 법안대로 통과하다.

7) 교도법위사정 시행규정 제3조를 개정 통과하다.

8) 출가교도 법위사정은 중앙 법위사정위원회에서 예비사정한 다음 수위단회에서 사정하기로 하다.

9) 대각개교절 일자를 현재(음력 3월 26일)와 같이 시행하기로 하다.

10) 원불교 교육법 각조의 종립학교를 교립학교라 하고, 선원의 교육체제를 현행 체제대로 하도록 해당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고 통과하다.

제72회 (임시). 원기62년(1977) 3월 8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종법사 선거법 제3조 1항을 수정하고 원안대로 결의하다.

2) 수위단원 선거법은 제3조 1항과 제8, 10, 13조를 부분 수정하고 그외에 원안대로 통과하다.

3) 교정위원법은 제2조를 수정하고 그외는 원안대로 통과하다.

4) 중앙교의회법은 원안대로 통과하다.

5) 교당규정은 제2조 2항과 제7조 1항, 제21, 22조를 수정하고 제안대로 통과하다.

6) 교구규정은 제2, 6, 9, 15, 17, 18, 19, 20조를 수정 통과하다.

7) 교정원 조직법은 제6, 8, 13, 15, 16, 11조항을 수정 통과하다.

8) 중산 정광훈교무 법위를 예비출가위로 결의하다.

9) 교화단규 개정안 즉 제5조를 수정 통과하다.

10) 출가교도 정식법강항마위 7인 예비법강항마위 139인, 재가교도 정식법강항마위 8인 예비법강항마위 142인을 승인하다.

11) 교정위원회 교정위원 450인과 특선위인 12인을 선정한 바 총 462인을 선임한다.

제73회 (정기). 원기62년(1977) 3월 27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재가 수위단원수를 남자 1석으로 결의하다.

제74회 (임시). 원기62년(1977) 4월 1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수위단회 중앙단원은 원로단원중에서 하되 전 중앙단원인 남자중앙단원 박광전단원, 여자중앙단원 이공주단원을 기립박수 결의하고 선거단원에 한하여 수위단원 방위를 결정하다.

2) 교정원장에 김근수, 감찰원장에 서대인을 찬성 결의하다.

3) 정남·정녀 지원자 심사위원 5인을 선정하다.

4) 중요인사에서 중앙간부 및 기관장과 교구장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의하다.

5) 감찰위원 7인을 선정하다.

6) 원기62년도 인사위원회 위원 11인을 선임 결의하다.

7) 출가 13인, 재가 21인에 대하여 법위는 추증하기로 결의하다.

8) 법위사정에 있어 정식법강항마위 4인과 예비법강항마위 9인을 승급하기로 결의하다.

9) 원기6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다.

제75회 (임시). 원기62년(1977) 9월 16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원타원 송원철교무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2) 차기 수위단회 개최는 안건이 많을 경우는 10월 17일 이전에 개최하고, 하루내에 끝날 수 있을 경우에는 10월 17일에 개최하기로 하다.

3)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집공고의 규정에 관계없이 소집할 수 있는 내용을 수위단회법에 반영키로 결의하다.

제76회 (임시). 원기62년(1977) 10월 17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수위단회법을 개정 통과하다.

2) 교무자격 검정고시 위원 12인을 선임하다.

3) 양타원 송경심, 희산 오철환을 대호법 대상자로 확정 결의하다.

4) 종사 4인, 대봉도 4인, 대호법 2인에 대한 법훈증과 법훈장 수여식을 제2대 제2회 기념총회 식전에서 수여키로 결의하다.

5) 정화사 해체 및 잔여자산 처리에 관하여는 ①정화사는 기념사업인 『원불교 전서』 대법공작업을 끝나는 대로 해체한다. ②전서 대법공작업은 원기62년 12월 말일으로 끝낸다. ③원기62년말 총결산에 의하여 잔여자산은 문화원 설립기금으로 문화부에 기증한다. ④각 교서 단권의 판형 및 철형 일체와 원불교전서 판형 및 철형 일체는 교화부에 인도한다.

제77회 원기62년(1977) 10월 26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칠타원 정세월선생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제78회 원기62년(1977) 10월 26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원기62년도 예산안은 졸업반 훈련기간은 6개월로 하고, 훈련실시는 중앙훈련원에서 행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원안대로 통과키로 결의하다.

2) 김서룡, 임칠보화, 성의철, 박동현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제79회 (임시). 원기63년(1978) 1월 27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기획실장에 수위단회 사무처장 김인철을 겸임토록 결의하고, 중앙총부 상주선원장에는 장성진을 임명하다.

2)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치 않고 수위단 본회의에 직접 상정키로 결의하다.

3) 故 조회석교무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제80회 (임시). 원기63년(1978) 5월 20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故 송산 박동현교도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2) 형산 김홍철, 성산 성정철, 용타원 서대인, 항타원 이경순, 융타원 김영신, 훈타원 양도신 교무를 교령으로 추대하고, 이백철, 김정관교무를 교감에 임명 결의하다.

제81회 (임시). 원기63년(1978) 9월 13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현 법위사정 위원은 새 법에 근거한 정식 법위사정 위원이 구성될 때까지 열반인 법위사정하는 위원으로 재확인하고 추가선정은 당연직인 총무, 교화, 교육부장이 참가키로 결의하다.

2) 교정위원 선정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휴무자도 참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3) 원남교도 최행덕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제82회 (정기). 원기63년(1978) 11월 6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원기6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2) 서울회관 건립추진은 서울회관 추진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기로 하다.

제83회 원기63년(1978) 11월 13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항타원 이경순교무 법위를 정식출가위로 결의하다.

제84회 (임시). 원기64년(1979) 10월 15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교정위원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5급에서 4급으로 진급되는 위원 선정은 총무·법제분과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여 선정키로 결의하다.

2) 수도원 원규 개정안은 무수정 통과하다.

3) 전무출신 처우 및 후원대책은 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신년도 총부용금을 30%선으로 인상조정하고 가능한 인력을 감한 근무태도를 강화하여 특별히 곤란한 자는 각부별로 후원기관 등에서 지원키로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부에 넘기되 시행여부를 수위단회에서 보고 받기로 결의하다.

4) 특별위원회 합의내용인 ①각부기관 단체의 재단 등을 교정원장이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문제 ②수위단원이 아닌 종사, 대봉도, 대호법을 원로수위단으로 대우하여 참가시키는 문제를 채택키로 결의하다.

5) 부산교구장 신제근, 충주교감에 권우연을 추인하고 추후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다.

제85회 (정기). 원기64년(1979) 11월 6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교정원장에 김근수, 감찰원장에 서대인을 유임 동의 결의하다.

2) 사업성적 사정위원으로 당연직을 포함 9인을 선정하다(김근수, 서대인, 박광전, 이공주, 이병은, 김윤중, 이공전, 박은국, 전이창).

3) 부산교당 김선옥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4) 영모전 위패제작 위원 선임하다(문동현, 이공전, 김정용, 김지현, 박재권).

5) 수위단회 인사 및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선출 각각 7인으로 구성키로 하고 위원을 선정하다(인사위원 : 박광전 김근수 이운권 안이정 이병은 서대인 성정철, 예산결산위원 : 이공주 양도신 김홍철 이공전 김정용 김윤중 이철행)

속회 : 원기64년(1979) 11월 19일 오후2시

6) 감찰위원 5인을 유임키로 하고 2인은 보류 종법사께 품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7) 훈련법을 수정하여 원안대로 통과하다.

8) 교도법위사정 규정 개정안을 수정하여 통과하다.

9) 원기6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통과하다.

10) 밀양교당 손진경, 초량교당 김계옥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11) 교정원 인사 임면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제1부원장과 기획실장직을 보류하고 종법사께 품의하여 결정키로 하다.

제86회 (임시). 원기65년(1980) 3월 6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교무자격 검정고시위원 11인을 선정하다.

2) 전형검정위원은 현재 교역자 전원을 사정해야 하므로 수위단원 전원을 전형 검정위원으로 하고 실무를 볼 수 있는 소위원 7인을 구성 검정한 후 보고 승인키로 결의하다.

3) 중앙 법위사정위원 선정은 위원 11인중 교정·감찰 양원장은 당연직 의원이 되니 9인을 전형위원 박광전, 김윤중, 이공전단원이 선정하다.

4) 경타원 최수인화 정식법강항마위, 김일현, 정관음행의 법위를 예비법강항마위로 승인하다.

5) 서울회관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총부측 9인과 서울측 14인과 실행소위원 5인을 선임하다.

6) 정남·정녀 심사위원에 교정·감찰양원장과 남녀정화단 총단장 안이정, 박은국단원과 실무위원 전이창단원으로 인준하다.

제87회 (임시). 원기65년(1980) 6월 17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박광전단원을 일본교화담당 교령으로 결의하고, 이백철을 순교감에 임명키로 결의하다.

2) 선산 변중선교무의 법위를 예비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3) 수위단 사무처 규정 개정안을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4) 교도 법호증여 규정 개정안을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제88회 (긴급). 원기65년(1980) 8월 10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동산 이병은교무 법위를 예비출가위로 하다.

2) 김호연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제89회 (임시). 원기65년(1980) 9월 25일. 장소 : 삼동원 동산원 회의실

1) 법무실장에 황직평, 삼동원 원장에 전이창, 중앙요양원장에 전기철을 선임 결의하다.

2) 법호 사정위원회 구성은 교정·감찰 양원장과 교정원 부원장 2인 감찰원 부원장 등 5인으로 구성하다.

3) 교정위원 선정은 휴무자 김일성을 특인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4) 법제정비위원 구성에 지도위원으로 수위단원 5인과 실무위원으로 수위단회 사무처장, 총무부장, 법무실장, 감찰원 사무처장, 문화부장과 기획실에 김주원 손정윤 이상 7인을 합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하다.

제90회 (정기). 원기65년(1980) 11월 24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김성덕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2) 안이정단원을 감찰위원으로 보선하다.

3) 원기66년도 예산안 중 훈련생 예산에 있어서 7,000원은 용금으로 하고 3,000원은 훈련비로 쓰도록 결의 통과하다.

4) 삼동원의 원규를 원안대로 통과키로 하고, 제6조 5항에 있는 만성전의 성격에 대해서는 종법사께 품의하여 결정키로 하다.

제91회 (임시). 원기66년(1981) 3월 12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교정원 조직법 개정안 중 7조 1항을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2) 달산 윤치성 산업부장의 인사건은 교정원장과 제2부원장에게 위임토록 하되 새 인사는 인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다.

3) 재가교무 규정 제정에 있어 명칭을 재가교무로 하기로 하고 제11조를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제92회 (임시). 원기66년(1981) 5월 20일. 장소 : 영산성지 영모원

1) 정식법마상전급이하는 중앙 법위사정위원회를 거쳐 상정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법사 직전으로 수위단회 상정되었을 때에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정을 얻지 못한 이라도 예비법강항마위 결의는 인정하기로 결의하고, 전산 홍세정은 예비법강항마위로, 명타원 박금용, 봉타원 윤덕봉, 추타원 조창환은 각각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2) 종교연합 기구준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박광전단원과 위원에 김윤중, 이공전, 이철행, 김정용, 박은국, 전팔근, 정성숙, 김인철, 이광정, 유병덕 이상 11인으로 인준하다.

제93회 (임시). 원기66년(1981) 8월 13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교도법위사정 계획에 있어 ①법위사정대상은 출가·재가 전교도 ②법위사정에 대한 법

회는 원기66년 9월 중순 실시 ③사정일정은 ㄱ)자기사정 : 원기66년 9월하순 ㄴ)교당사정 : 원기66년 10월초순 ㄷ)교구사정 : 원기66년 11월초순 ㄹ)중앙사정 : 원기67년 1월 ㅁ)수위단회 사정 : 원기67년 3월에 추진할 것을 결의하다.

2) 중앙 법위사정위원 보선에서 안이정단원을 전원이 찬성 선정하다.

3) 거진출진 규정 개정안을 제6, 9조를 수정하고 통과 결의하다.

제94회 (임시). 원기66년(1981) 9월 29일. 장소 : 대구 동명훈련원

1) 교정위원 선정에 있어서 특선위원 선정기준에 현역 수위단원, 교구교의회의장, 정토회회장을 포함하고 정년퇴직자 및 휴무자는 교정위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2) 은족규정 개정안에서 제11조 세칙조항을 신설키로 하고, 제11조(시행)는 제12조(시행)으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통과하다.

제95회 (정기). 원기66년(1981) 11월 8일. 장소 : 종법원 회의실

1) 원기67년도 예산안중 훈련생 훈련비는 1백만원을 훈련비에 증액 책정하고 종교문제연구소에는 40만원을 지급하되 특수사업 보조비는 예비비에서 지급토록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2) 청타원 최운경의 법위를 예비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제96회 (임시). 원기67년(1982) 3월 8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전무출신 겸직에 있어서 김혜심, 최성덕, 조정근교무의 겸임은 공의에 의한 겸직이니 승인해 주되 차후에는 수위단회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하도록 조건부로 승인 결의하다.

2) 전무출신 서원자 승인에 있어 그간 누락된 원기62년도 까지 소급해서 일괄 승인키로 하되 앞으로는 매년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서류제출시 인적사항도 제시하도록 결의하다.

3) 유향원교무를 교화부 순교감으로 결의하다.

4) 교도 법호증여 규정 개정안 중 2기(14년)이상 근무한 전무출신의 부모가 열반하였을 때 특별증호한다는 조문 신설은 폐지하고 규정 제3조 1항을 적용하여 열반인에 대한 추증을 하기로 결의하다.

5) 회사위 규정 개정안 심의하여 특별 유공교도의 부모는 소회사에 추존한다를 명문화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6) 대각개교절, 법인절 일자는 ①그 해 양력으로 각각 제날자를 찾아서 대각개교절을 4월 28일 성탄일은 5월 5일, 법인절은 8월 21일로 하되 날자 표지방법은 ( )안에 그해 간지로 ○년 ○월○일을 명기하기로 하다. ②탄신일 행사는 대각개교절에 공동생일기념을 겸행토록 해 주

셨으니 행사는 지향하고 그때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하도록 하다. ③시행과 개정 절차는 1년 여유를 두어 시행하기로 하고 계몽작업하기로 결의하다.

7) 종교연합기구 준비위원에 문동현단원과 황직평 법무실장을 보강키로 결의하다.

8) 예전 경축행사 식순과 수시 경축시에 삽입케 되어 있는 만세 삼창은 폐지키로 결의하다.

제97회 (임시). 원기67년(1982) 4월 6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법위사정에 있어 ①원기61년도 당시 현직 수위단원은 그 당시 정식법강항마위로 소급 인증키로 하다. ②예법까지는 교당, 교구, 중앙 법위사정위원회에서 신중 검토 사정하였기에 상정안대로 재가교도 예비특신급 8,909명, 정식특신급 7,712명, 예비법마상전급 1,922명, 정식법마상전급 1,601명, 예비법강항마위 286명, 정식법강항마위 후보 79명이며, 출가교도는 정식특신급 362명, 예비법마상전급 230명, 정식법마상전급 457명, 예비법강항마위 343명이었다. ③재가 정식법강항마위후보자 중 58명이 정식법강항마위로 사정되고 출가 155명을 대상으로 사정 결과 139명이 정식법강항마위로 되었다.

제98회 (임시). 원기67년(1982) 9월 2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교정위원 선정에 있어서 ①특선위원중 최석운은 모원회장으로서 정식자격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②휴무자 11명은 인증하기로 하고 ③교정위원 총수는 교역자 618명 특선위원 22명 휴무자 11명 총 651명을 선정하다.

2) 수위단 선거법 개정안 심의 중 제6조를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3) 재가 수위단원정원은 종전과 같이 1명으로 결의하다.

4) 중요인사에 있어 송영봉교감은 미주 동부교구장으로 서세인교구장은 로스앤젤레스교당 교감, 송순봉교구장은 정읍교당 교감을 겸임토록 하고 유향원교무는 군산교당 교감으로 발령 추인하다.

제99회 (임시). 원기67년(1982) 10월 11일. 장소 : 서울회관

1) 교정원 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제6, 26, 32조를 수정하되 원의회의 구성이 확대되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본회의의 기능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분기별로 운영의 묘를 기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2) 교정원 직제 개정안 가운데 제3, 56조를 수정 통과하다.

3) 중요인사 이재성교무를 하와이 교감으로, 정성숙교무는 원여고교장겸 미주담당 순교감으로, 박제권교무는 이리교구장겸 일본담당 순교감으로 승인하다.

제100회 (정기). 원기67년(1982) 11월 6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교헌 제43조 2항의 해외재직을 해외에 관계되는 직책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개헌작업법을 보완키로 하고 송영봉 박제권 정성숙교무와 전팔근국제부장을 특임단원으로 인준 결의하다.

2) 수위단 중앙단원에 숭산 박광전단원과 구타원 이공주단원이 유임되고 각 방위 선정을 하다.

3) 교정원장 김윤중, 감찰원장에 이정화교무 임명에 동의 인준하다.

4) 원기68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중앙총부 예산이므로 부속실을 교정원장 부속실로 하고 기획실에 실장·주사 등 누락되었거나 인사교체에 따라 증감된 인력은 교정원 당국에서 조정키로 한 후 원안대로 통과하다.

5) 한산 이은석교무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6) 교헌전문 「원기원년 3월 26일」을 「원기원년 4월 28일(병진 음3월 26일)」로 개정키로 결의하다.

7) 중요인사에 있어 교정원 제1, 2, 3 부원장과 각 부장 등의 인사를 원안대로 통과하다.

8) 감찰위원에 당연직과 전임 감찰위원으로 10인을 선정하다.

9) 수위단 상임위원을 구성하다(총무법제, 교화문화, 교육훈련, 재정산업, 공익봉공, 감찰기강분과)

10) 수위단회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니 위원장에 박광전중앙단원과 각 분과에서 1인씩 하여 7인으로 선정하다.

11) 대각개교절, 법인절 일자 변경에 따라 각종 교서의 일자 변경 및 성가가사 수정 등의 실무작업을 위한 교서 수정 초안위원으로 이공전단원을 선정하다.

12) 감찰원장, 법무실장은 단원과 같은 예우로 결의권 없이 참석하기로 결의하다.

13) 원기68년도 정남·정녀 선서식을 앞두고 심사위원으로 정화단 남녀 총단장과 교정·감찰원장, 실무위원으로 안이정, 박은국, 김이현단원 등 7인으로 선정하다.

제101회 (임시). 원기68년(1983) 2월 22일

1) 철산 김인석교무, 기타원 이성각선생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2) 중앙법위사정위원에 교정원장, 감찰원장, 박광전, 이공전, 안이정, 김중묵, 김인철, 서대인, 전이창, 박제권, 김이현 등 11인으로 선정하다.

3) 중요인사에서 김달성 예감, 송자명 동래수양원장을 승진발령하다.

4) 중요 4인의 인사에 대하여 추인하다.

5) 사업성적 사정위원으로 김윤중, 이정화, 장응철, 이공전, 김인철, 박은국, 김이현, 전종철,

오회원 등 9인으로 선정하다.

6) 법호 사정위원으로 김윤중, 이정화, 김인철, 김이현, 이공전 등 5인을 선정하다.

7) 교무자격고시 검정위원에 송천은, 이중정, 장응철, 안이정, 김정용, 유기현, 이광정, 김이현, 전팔근, 박성경, 송순봉, 박제현, 전종철 이상 13인을 선정하다.

8) 교무자격 전형 검정위원으로 ①수위단원 전원 선임 ②소분과위원에 김윤중, 이정화, 김근수, 이철행, 김인철, 이광정, 전이창, 김이현, 박제권 이상 9인을 선정하다.

9) 원기68년도 전무출신 서원자 41명을 승인하다.

10) 전무출신 규정 개정안 가운데 제2장 직종 및 자격부분과 제10조를 부분수정 후 개정안을 인준키로 결의하다.

11) 원불교 창립 제2대 및 대종사 탄생 백주년 기념 성업봉찬회의 건에 있어 ①명칭에 대한 재고는 성업봉찬위원회에 위임함 ②취지문을 승인하기로 결의함 ③회칙 제3조와 제6장, 부칙 제27조는 부분 수정후 인준키로 하고 문구 및 자구수정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다.

12)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 가운데 「정기감찰위원회는 11월중에 감찰원장이 이를 소집한다」로 개정 승인하다.

제102회 (임시). 원기68년(1983) 6월 29일. 장소 : 완도 소남훈련원

1) 제2대 5회 수위단회 피선거단원인 박제권, 송영봉단원은 본인들의 종래 사용했던 방위를 계승하기로 결의하고 그외 특임단원은 1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자부 방위로 추첨 결정하다.

2) 원남교당 최인수선생, 부산진교당 이성도선생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3) 교도 법위사정 규정 개정안 제7조 2항을 수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4) 원광한의원 사장겸 중앙요양원 고문에 장인중을 추인하고 원안대로 심의 결의하다.

5) 교무자격 특별검정위원에 김인철, 이중정, 송천은, 장응철, 김이현, 전팔근, 박제현, 송순봉 이상 9인을 선임하다.

6) 원불교 창립 제2대 및 대종사 탄생 백주년 성업봉찬회 ①부회장에 김정용, 이철행, 이공전단원이 추가 선임되고 상임부회장에 김윤중단원이 선임되다. ②회칙개정은 개정안대로 심의 결의하다.

7) 사회단체(평화통일 정책 자문회의) 참여에 ①교역자로서 사회단체 참여 현황을 일체 접수 분류하여 조례를 작성 ②정치사회 단체만 본회에 상정 ③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위원 11인은 원안대로 심의 결의하다.

제103회 (임시). 원기68년(1983) 10월 20일. 장소 : 문화원 시청각실

1) 교정위원 총 666명 대상자 전원을 심의 통과하고 대호법을 교정위원 특선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다.

2) 도원교당 박덕지화선생, 부산진교당 홍이타행선생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사정 결의하다.

3) 성업봉찬회 회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다.

제104회 (정기). 원기68년(1983) 11월 7일. 장소 : 문화원 시청각실

1) 원기6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중 서울보화당 세입건은 당무부에서 협의 검토 및 확정하기로 하고 여타안은 심의 의결을 확정하다.

2) 전무출신 서원자 승인은 총무·법제상임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을 위임하다.

제105회 (임시). 원기69년(1984) 2월 27일. 장소 : 문화원 시청각실

1) 교헌개정 기초위원에 김윤중, 이정화, 문동현, 이공전, 김정용, 김인철, 황직평, 나철중, 전성완, 박재권, 김이현 이상 11인과 간사에 총무부장 장응철을 선임하고, 기초위원회 전문위원 김법종, 송순봉, 이성은, 이성택, 권세영, 전종철, 김도융, 박정원, 서경전, 서대준, 김주원 이상 11인을 위촉하다.

2) 원광대학교 총장에 박광전단원을 추인 결의하다.

3) 교정원 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 결의하다.

4) 처산 김장권, 유산 유허일교무, 서울영동교당 원타원 유대신행, 이리교당 해타원 곽병원 교도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사정 결의하다.

5) 원기70년도 법위사정 계획안을 확정하다.

6) 원기69년도 전무출신 서원자 52명을 승인하다.

제106회 (임시). 원기69년(1984) 9월 18일. 장소 : 문화원 시청각실

1) 달타원 이정화교무의 법위를 예비출가위로 사정하다.

2) 원기69년도 교정위원 697명과 특선위원 28명 총 725명을 선정하다.

3) 재가 교역자 인사임면 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다.

4) 교도 법호증여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다.

5) 교구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다.

제107회 (정기). 원기69년(1984) 10월 9일. 장소 : 문화원 시청각실

1) 발타원 정진숙교무의 감찰원장 임명에 동의하다.

2) 수위단회법 제11조에 의하여 의장단에서 각 상임위원들을 배정하다.

① 총무·법제분과 위원장 : 김윤중, 위원 : 김근수 김인철 박제권 정성숙

② 교화·문화분과 위원장 : 이공전, 위원 : 김영신 김이현 박은국 송영봉 이광정

③ 교육·훈련분과 위원장 : 안이정, 위원 : 송천은 양도신 윤주현 이운권

④ 재정·산업분과 위원장 : 이철행, 위원 : 김지현 문동현 성정철 전이창

⑤ 공익·봉공분과 위원장 : 김정용, 위원 : 김홍철 박성경 이정은 황정신행

⑥ 감찰·기강분과 위원장 : 서대인, 위원 : 박장식 전팔근 정진숙 정양선

3) 원기70년도 전무출신 서원자 승인은 수위단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심의 결의하여 승진토록 위임하다.

4) 교당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결의하다.

5) 원기7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세입 세출 예산중 2백만원을 삭감 책정 결의하다.

제108회 (임시). 원기70년(1985) 3월 21일~22일. 장소 : 삼동원

1) 원기70년도 교도 총 법위사정을 결의하다.

2) 열반인의 법위추존을 원안대로 결의하다.

3) 대봉도위에 오산 박세철, 의산 조갑종, 혜산 전음광, 원산 서대원, 중산 정광훈, 동산 이병은, 묵산 박창기, 형타원 오종태, 융타원 김영신, 달타원 이정화 이상 10인과 대호법위에 이산 이순순, 육산 박동국, 칠산 유건, 경산 강필국 이상 4인에 대하여 법훈 증여를 결의하다.

4) 중요인사 추인의 건은 원안대로 인준하다.

5) 전무출신 규정 개정은 각 상임분과 위원장 6인과 중앙단원을 의장으로 하고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심의, 본회에 승인을 받도록 위임하다.

6) 봉공직 전무출신 서원자 심사규정은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다.

7) 전무출신 규정 해석작용에 있어 다음 명단을 전무출신자로 승인 결의하고 전무출신 묘역에 이장토록 하다(환속후 열반자 : 항산 이호춘·용산 김석규·거산 이광오, 집무중 열반자 : 박원주·이자영화·유혜조화·김도선·박수전·이원영·이원일·이신덕·정기원·김보윤).

8)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에 문동현, 조정근, 장응철, 박청수를 본위원으로 선정하다.

제109회 (임시). 원기70년(1985) 9월 20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전무출신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결의하다.

2) 열반자 법위추존사정에서 출가교도 23명과 재가교도 37명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사정 추존을 결의하다.

3) 교정위원을 728명과 특선위원 28명 총 756명을 선정하다.

4) 교무자격 검정 규정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확정하다.

제110회 (정기). 원기70년(1985) 11월 8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교정원장 김윤중, 감찰원장 정진숙단원의 재 임명 제안에 동의하다.

2) 선원체제 문제에 있어 영산선원에는 4년제 선원체제를 운영하고 동산선원에는 훈련교무를 수용하여 운영토록 하기로 하다.

3) 원기7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다.

4) 감찰위원에 당연직인 감찰원장, 부원장, 사무처장과 박광전, 이공전, 안이정, 김인철, 이공주, 서대인, 김이현 이상 10인을 선정하다.

5) 민족종교협의회 참가는 문동현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참석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다.

6) 서울회관 잔무처리 위원으로 이철행, 김윤중, 박은국, 이광정, 김인철 이상 5인을 선정하다.

제111회 (임시). 원기70년(1985) 12월 24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인사제청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 인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윤중, 안이정, 김이현, 서대인, 김인철, 정진숙, 전팔근 이상 7인을 선정하다.

2) 교구규정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결의하다.

3) 원불교 교육법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결의하다.

4) 중앙법위사정 위원으로 박광전, 김윤중, 안이정, 이공전, 김인철, 황직평, 정진숙, 김이현, 서대인, 양도신, 전이창 이상 11인을 선정하다.

5) 교사 970(가로인쇄) 2째줄 「총12장 가로된 새 회규를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를 「총9장 29조의 원칙과 12장 75조의 세칙으로 구성된 새 회규를 제정시행하게 되었다」로 수정하기로 결의하다.

제112회 (임시). 원기71년(1986) 6월 11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교무자격 고시 검정위원으로 안이정, 김정용, 송천은, 이광정, 장응철, 김이현, 박성경, 송순봉, 박제현, 김법종, 한정원, 김복환, 전이창 이상 13인을 선정하다.

2) 교무자격 특별 검정위원으로 김인철, 이중정, 김복환, 박제현, 송순봉, 장응철, 서성범, 이혜정 이상 9인을 선임하다.

3) 사업성적 사정위원으로 교정원장, 감찰원장, 김인철, 장응철, 박은국, 김이현, 송순봉, 이철행, 전종철 이상 9인을 선임하다.

4) 법호 사정위원으로 김윤중, 정진숙, 이공전, 김인철, 김이현 이상 5인을 선임하다.

5) 전무출신 서원자 70명을 심의 승인하다.

6) 교규 개정에 있어 ①교정원 조직법 개정안 제26조를 수정 개정하고 여타는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하고 ②교정원 직제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하다.

7) 법회회순 수정의 건은 의견이 많으므로 수위단 교화·문화 상임위원과 전문분과위원회에 위임키로 하다.

8) 수계교당 이성집교도와 익산교당 신윤석교도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9) 성업봉찬회 부회장에 양타원 송경심교도를 해임하고 백산 정도진 중앙교의회의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보선 결의하다.

10) 정산종사 성탑 재건립에 관한 사항만 결의하고 위치나 경비모양은 전문가의 의견을 더 수렴하여 재 건립하기로 하다.

11) 수위단 전문위원에 공익부장, 교육부장, 기획실차장이 교정원 간부이므로 위원해임하고 다른 위원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함에 회장, 상임위원, 중앙단원의 결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다.

제113회 (임시). 원기71년(1986) 6월 11일. 장소 : 교정원 회의실

1) 법회회순은 수정하되 교서 수정 편입은 2~3년 시행 후 하기로 하고 또 회순에 따른 세부사항은 교화부에서 세규를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경종10타

① 개　　회
② 입　　정
③ 독　　경(일상수행의 요법, 일원상서원문)
④ 교　　가
⑤ 심고 또는 기도
⑥ 법어봉독
⑦ 경강 및 설교
⑧ 성　　가
⑨ 기　　타(월초선서 및 단모임)
⑩ 성　　가
⑪ 폐　　회

2) 석존성탄절 기념식 식순 수정은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기로 하다.

3) 정남·정녀 심사위원에 김윤중, 정진숙, 이공전, 안이정, 김이현, 박은국, 전이창, 송순봉, 김복환 이상 9인을 선정 인준하다.

4) 원불교 예비교역자 교육개혁위원회 규정은 제1조와 제10조를 수정후 원안대로 통과하고 개혁위원회 위원은 ①교육훈련계 : 김정용, 유기현, 송천은, 한정원, 서경전, 김기원, 김법종, 윤주현, 이중정, 박제현 ②교화계 : 조정근, 이광정, 이성택, 박청수, 이종진, 박은국, 양혜경 ③행정기관계 : 장응철, 김인철, 김이현, 송순봉, 이성은, 이원경, 김주원, 김현, 전종철 ④재가 : 김도융, 고문국, 전성완위원과 당연직으로 교육부장을 위원으로 선정하다.

5) 성업봉찬회 인사에 있어 내산 김경원교도를 성업봉찬회 부회장으로 결의하다.

제114회 (임시). 원기71년(1986) 9월 30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교정위원 남자 214명, 여자 516명, 신규 48명, 특선위원 36명 총 814명을 선정하다.

2) 박장식 미주교령을 덕산훈련원 원장으로 겸임할 것을 결의하고, 서대인교령을 남녀기숙사 교령으로 결의하다.

3) 열반인 김광원심(광주), 강승만(불갑), 진규보(종로), 김태상옥(신흥)교도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4) 교규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 결의하다.

제115회 (정기). 원기71년(1986) 11월 7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속회 11월 10일

1) 원기72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차기년도부터 해외교구항목을 조정삽입, 금년은 세입관계가 있으므로 특별사업중 교단지원금에서 3백만원을 해외교화(뉴욕교당) 지원금으로 책정해주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결의하다.

제116회 (긴급). 원기71년(1986) 12월 14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숭산 박광전교무의 열반에 따른 법위를 정식출가위로 결의하고 종사의 법훈을 서훈하다.

제117회 (임시). 원기71년(1986) 12월 19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남자중앙단원 선출에 상산 박장식단원을 중앙단원에 선출하다.

2) 원광대학교 총장에 김정용, 일본교구 교령에 이운권, 교정원 부원장에 김인용교무를 선임하다.

3) 중앙 법위 사정위원에 상산 박장식단원을 보선하다.

4) 감찰위원에 상산 박장식단원을 보선하다.

5) 교단 창립 제2대 및 대종사 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회장에 구타원 이공주교무를 회장으로 선임하다.

6) 열반인 고혜선화, 이화신의 법위를 법강항마위로 결의하다.

7) 인사위원에 김윤중, 안이정, 정진숙, 서대인, 김인철, 전팔근, 김이현 이상 7인을 선정하다.

8) 교단 전반적인 문제에 수위단원 전원이 합심합력하고 솔선수범할 것을 결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다.

決 議 文

圓佛敎는 敎祖 少太山大宗師와 九人先進의 위대한 創立精神을 받들어, 在家·出家 全敎徒가 人類의 精神開闢과 참 文明世界 建設에 同心合力하여 이제 國際的 宗敎로 健實하게 活動하고 있다.

그러나 文明의 一大 轉換期에서 激動하고 急變하는 內外의 情勢에 그때 그때 能動的으로 대처하지 못한 緣由로 인하여 안으로 解決해야 할 敎團的 課題가 蓄積되고, 밖으로 우리의 使命을 效果的으로 遂行하지 못하는 사실에 우리는 그 責任을 痛感하는 바이다,

敎團의 課題를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內面的으로는 人材와 經濟 및 制度的 장치가 未備함이요, 그 原因은 敎團의 統治 및 運營이 보다 合理的 效果的으로 수행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들의 意識이 不足하고 率先垂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自省한다. 이에 우리 全 團員은 敎團 創立 第二代末과 大宗師 誕生 百周年 聖業奉贊의 중대한 時點에서 敎團의 모든 問題를 스스로 責任지고 앞장서 해결해 나가며 과거를 反省 整備하고 새로운 出發을 다짐하기 위하여 다음 事項을 決議한다.

① 以團治敎로 意見을 융통하여 敎團이 一圓主義 精神아래 共和制度와 十人一團의 敎化로 힘차게 發展하게 한다.

② 信仰에 바탕한 工夫, 工夫에 바탕한 敎化, 敎化에 바탕한 事業으로 信仰 修行 事業이 아울러 나아가게 한다.

③ 法統 大義는 세우되 宗命은 公議와 節次를 거쳐 施行하고 公議와 節次는 裁可를 거쳐 施行한다.

④ 敎團의 公法과 規律을 率先하여 지킴으로써 法治敎團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세운다.

⑤ 大義名分을 어기고 異說을 主張하여 偏僻된 무리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⑥ 專務出身 規程 등 各種 制度의 基本精神은 살리되 時代의 變化에 適應하고 未來 指向的으로 改善해 나간다.

⑥ 敎政 參與와 敎役者 門戶를 개방하고 多元化하되 徹底한 選定과 敎育·訓鍊을 통하여 指導的인 位置에 汚損됨이 없게 한다.

⑧ 財政管理와 育成을 보다 合理化 合法化하여 敎團經濟問題의 根源的 解決에 努力한다.

⑨ 人事規程은 上下가 公正하게 實行하고 敎團內外의 變化 成長에 따른 隔差現象을 注意깊게 살피어 그 解決策을 모색한다.

⑩ 崇德尊功과 先後進 敬愛의 倫理風土를 造成하고 敎團問題는 敎團內에서 健全한 對話와 方法을 통하여 해결해 나간다.

圓紀七十一年 十二月十九日 首位團員一同

제118회 (임시). 원기72년(1987) 3월 20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故 근산 지해원교무의 법위를 예비출가위로 사정 결의하다.

2) 원기73년도 법위사정 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다.

3) 전무출신 서원자 심사위원 선정은 수위단회 총무·법제 상임위원회에 위임하도록 결의하다.

4) 수위단 상임분과 위원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 활성화 방안은 해외에 계신 위원들의 사정을 잘 참작하여 실질적 회의가 활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단들에게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6개분과 상임위원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선거한 후 수위단 사무처에 통보하기로 하다.

제119회 (긴급). 원기72년(1987) 5월 14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故 성산 성정철교무의 열반에 따른 법위를 정식출가위로 사정 결의하다.

2) 수위단회 상임분과 위원장 선임에 있어 ①총무·법제분과 : 김윤중 ②교화·문화분과 : 이공전 ③교육·훈련분과 : 안이정 ④재정·산업분과 : 이철행 ⑤공익·봉공분과 : 전팔근 ⑥감찰·기강분과 : 정진숙위원을 선임하다.

제120회 (임시). 원기72년(1987) 7월 17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속회 7월 19일.

우리 수위단원은 오늘날 제기된 교단의 모든 문제를 교단의 지도층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야기된 것임을 깊이 깨닫고 그 責任을 痛感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 청원사항중 첫째항은 정신문제이므로 본 수위단회에서 청문 해명을 하고 기타 사항중 종법사 7항 총부 주재관계는 소위원을 구성하여 진언키로 하였다.

2) 2항중 본 수위단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부분 논의 해명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위원회에서 취급키로 하였다.

3) 교단의 창립정신과 전무출신에 어긋나는 분에 넘치는 생활을 지양하고 계문을 준수하여 청정·검약한 생활을 하기로 하였다.

4) 재정·회계는 공의에 의하여 공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불합리한 점은 시정하기로 하였다.

5) 각자의 직책을 사수하고 맡은 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교단의 규제와 기강을 철저히 지켜가기로 하였다.

6) 교화를 생활화시키기 위하여 교화정책과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새로운 대책을 강구키로 하였다.

7) 선후진 상호간에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며 건전한 윤리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제121회 (임시). 원기72년(1987) 9월 8일. 장소 : 전주교구 만덕훈련원

1) 청원사항 처리방안과 더불어 3대 설계 지침안을 교정원과 감찰원 그리고 청원조사위원회 각 3부에서 제시하여 차기 수위단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다.

2) 3년이상 휴무자와 귀가휴무자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안대로 통과할 것을 결의하다.

3) 열반인 학타원 성인영, 긍타원 전의천교도의 법위를 정식법강항마위로 사정 결의하다.

4) 새성가 채택에 동의하고 자문판을 수위단원 전원에게 돌려 자문을 받도록 하다.

제122회 (임시). 원기72년(1987) 9월 22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미주교구 덕산훈련원은 종법사와 미주교령의 뜻을 받들고 세부적인 기술문제는 교정원에 일임하여 문제발생시 보상이나 책임소지에 대하여 철저히 하자는 뜻에 결의하다.

2) 청원사항에 있어 교정원에서 제안한 14조항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3대특별위원회에 다시 이송을 시켜 조속한 시일내에 실행가능안을 구상하도록 하자는데 결의하다.

3) 11월 총회후에 교역자 총화의 모임을 갖기로 의견을 모으고 교역자 총화의 모임의 진행에 대하여는 교정원장에게 일임하여 상중하가 총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수위단에서는 기도문 기초 5인위를 구성하여 기도결의문을 작성하고 교역자 총화의 모임에 앞서 수위단 전원이 기도하자는 의견에 결의하다(기도문 기초 5인위 : 김이현, 김정용, 이공전, 김인철, 송천은).

제123회 (임시). 원기72년(1987) 10월 20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교헌 개정에 있어 ①본존, 연원불, 교조, 법계 순으로 수정하자는데 의견 집약 ②수위단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최상위 교화단으로 결의 ③교정위원회를 중앙교의회에 통합하고 중앙교의회 위원은 150~200이내의 위원으로 선정 실질적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의제로 하는 것에 의견 집약되다.

2) 인사건은 원의회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의하다.

3) 새성가 심의 감수위원에 박장식, 이공주, 안이정, 이공전, 이광정, 박은국, 전이창, 이운권, 송천은 이상 9인을 선정보고 하다.

제124회 (정기). 원기72년(1987) 11월 12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속회 11월 18일

1) 원기7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통과하다.

2) 청원조사 처리방안은 총화의 모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과거는 다같이 사면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체 불문에 붙이기로 하다.

3) 교정원장, 감찰원장 및 교정원 간부 사표는 종법사께서 반려하고 수위단원에게 의사를 개진하도록 부촉이 있어 토론한 바 대다수가 종법사 뜻에 찬동하여 사표수리를 반려하다.

제125회 (임시). 원기72년(1987) 12월 17일. 장소 : 중앙총부 회의실

1) 故 형산 김홍철교무의 법위를 정식출가위로 사정 결의하다.

2) 교정개정안을 수정안대로 통과하다.

3) 종교연합기구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김정용단원을 선임하다.

□ 수위단회 사무처

수위단회사무처는 수위단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곳이다.

수위단회 사무는 별도 기관이 없이 원기19년(1934)부터는 감사부에서 사무를 주관하였고, 원기26년(1941)부터는 총무부에서 사무를 주관하였으며, 원기33년(1948)부터는 다시 감찰원 사서부에서 주관했다. 이어 원기44년(1959)부터는 총무부에서 다시 사무를 주관했고 원기54년(1969) 3월 28일 개최된 수위단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교단의 연구기획업무를 보강하기 위해 제32회 수위단회에서 교헌 제38조에 의하여 수위단회사무처를 총무부로부터 독립 발족키로 결의했다.

1. 연 혁

2. 7. 26	남자수위단 창단
10. 4. 26	남자수위단 조직위원회에서 남자수위단 제1보궐 및 대리조직. 이동안선임. 대리－송도성, 전음광, 조갑종
16. 3.	여자수위단 시보단 조직
19.	감사부에서 사무주관
20. 9. 10	남자수위단 제2차 보궐조단－삼산 김기천 열반으로 유허일 선임
24. 2. 25	남자수위단 제3차 보궐조단－팔산 김광선열반으로 박대완 선임
24. 2. 25	남자정수위단 보궐 및 대리선정식 거행(삼산 김기천－보궐 유허일, 오산 박세철－보궐 이동안, 팔산 김광선－보궐 박대완, 이산 이순순－대리 송도성, 육산 박동국－대리 전음광, 칠산 유건－대리 조갑종).

26. 총무부에서 사무주관
26. 5. 11 남자수위단 제4차 보궐조단－도산 이동안 열반으로 인한 서대원 선임
28. 4. 28 남자수위단 제5차 보궐조단－서대원탈퇴에 의한 이완철 선임
28. 4. 29 여자수위단 정식 조직 및 대리내정
28. 6. 7 신단장 추대 및 제6차 보궐조단(대종사열반으로 인한). 단장－송규, 곤방－송혜환선임
29. 4. 27 정수위단원 조직위원회 일산 이재철단원 열반으로 인한 보궐 대산 김대거단원 선임
31. 4. 1 수위단 조직위원회에서 주산 송도성 열반으로 인한 보궐단원 박장식선임, 전음광퇴위로 인한 선거로 김홍철 선임
33. 3. 26 원기33년 교헌 제정공포로 수위단회 사무를 감찰원 사서부에서 주관
38. 4. 26 제2대 제1회 수위단원 총선거 실시
40. 4. 23 제2대 제1회 제1차 보궐조단－이태연 선임
41. 12. 11 제2대 제1회 제2차 보궐조단－성정철 선임
44. 4. 교헌 개정에 의하여 사서부가 총무부로 개정되고 그후 총무부에서 수위단원 사무주관
44. 4. 20 제2대 제2회 수위단원 총선거 실시
47. 1. 31 정산종법사의 열반으로 인하여 신단장 추대 및 보궐조단. 단장－김대거, 곤방－조회석, 중앙－박광전단원
49. 4. 교헌개정으로 수위단회사무처 독립. 사무처장은 총무부장 김근수겸임
49. 4. 29 여자수위단 보궐조단－황정신행 선임
49. 10. 16 수위단회법 제정. 교규 제9호로 공포된 본 법은 14조로 구성됨
50. 3. 24 제2대 제3회 수위단원 총선거 실시
54. 3. 28 수위단회 사무처 독립발족 결의. 수위단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교단의 연구 기획 업무를 위하여 원기54년 3월 28일 제32회 수위단회에서 교헌 제38조에 의하여 수위단회 사무처를 총무부로부터 독립 발족키로 결의
54. 5. 10 초대수위단회 사무처장 서기과장 부임
54. 5. 13 구정원에 임시사무소를 정하고 원기54년 5월 13일 현판게양 및 사무 인계인수를 행하고 정식시무하다.
54. 5 제1회 수위단원 전문위원 위촉
54. 9. 4 수위단회 및 서울교구 요인간담회를 원남교당에서 개최
54. 9. 4 수위단회법 개정. (내용) 제8조(도서실) 설치. 제11조(상임위원회 소관)중 2)교화위원회 업무 개정. 제23조(전문위원회의 연석회의)설치 2)연석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
54. 9. 4 수위단회 사무처 규정 제정. 교규 제24호로 6조로 구성됨
55. 5. 2 선원체제에 대한 간담회 개최
55. 10. 9 제1회 청문회 개최. 제18회 교역자 강습기를 맞아 다음 안에 대한 연구보고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청문회를 개최. (1)이단치교의 문제 (2)교구재실시 문제 (3)원기56년도 인사교체에 관한 문제
56. 수위단회 전문위원 개편

56. 3. 1 수위단회법 개정. (내용) 제6조(교법판정) 교헌·교규·교리의 정신에 위배되거나 왜곡된 해석이 있을 때에는 수위단회에서 처리한다(신설).
56. 3. 31 제2대 제4회 수위단원 총선거 실시
58. 5. 3 수위단회 전문위원 개편
60. 사무실이동－구정원 임시사무소에서 교정원 2층 사무실로 이전
61. 6. 6 수위단회 전문위원 개편
62. 3. 29 제2대 제5회 수위단원 총선거 실시
62. 10. 17 수위단회법 개정. (내용) 제6조(교법판정)－…수위단회에서 판정한다. 제12조(상임위원회 소관) 제16조(상임위원회 전문위원)…사무처장의 제청…임기는 상임위원 임기와 같다. 제19조(특별위원회)설치 제33조(의안 이송)…의안은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한다.
63. 2. 4 수위단회 전문위원 개편
64. 9. 24 교정원 2층에서 총부식당 2층 사무실로 이전
65. 5. 2 수위단회 전문위원 개편
65. 5. 19 상임연구위원 9인을 위촉하여 교단사상 정립을 위한 연구활동과제와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다.
65. 5. 17 수위단회 사무처 규정 개정. (내용) 제2조(직제)…서기과와 자료조사과를 두고…. 제4(위원)…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신설).
67. 11. 5 제2대 6회 수위단회 총선거 실시
67. 11. 6 제9대 종법사 선거 실시
68. 3. 1 수위단 전문위원회 개편
69. 7. 1 수위단회 역대 회의록 영인본 발간(1~100회) 4부
70. 2. 1 전문위원 개편
72. 3. 3 청하원에서 구조실로 사무실 이전

2. 역대임직원

번호	직 명	법명(호적명)	성 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처 장	金 允 中(瀅烈)	男	1927. 12. 7	54. 5.13~62. 4.10	
	과 장	趙 正 中(云記)	男	1938. 1. 28	54. 5.13~56. 4.19	서기과장
	연 구 위 원	李 性 吉(性吉)	〃	1937. 1. 1	55. 4. 6~56. 3. 2	
	주 사	金 正 德(金順)	女	1946. 8. 26	55. 3. 2~57. 3. 7	
	〃	尹 正 養(定良)	〃	1943. 7. 26	56. 4.15~57. 3. 7	
	과 장	金 仁 喆(永千)	男	1934. 10. 13	56. 4.19~58. 3.20	
	주 사	柳 寬 淑(宗順)	女	1945. 9. 24	57. 3.17~62. 4.10	

	전문연구위원	張正一(祥圭)	男	1932. 5. 28	54. 5.13~59. 4.25	
	과 장	李性吉(性吉)	〃	1937. 1. 1	58. 3.20~59. 4.25	
	차 장	趙正中(云記)	〃	1938. 1. 28	59. 4.25~60. 4.16	
	시 자	崔世鍾(鍾燮)	〃	1952. 3. 1	56.11.20~58. 7	
	〃	李舜圓(恂根)	〃	1952. 3. 25	58.59.~2	
	〃	李道田(海應)	〃	1955. 3. 26	59. 3.~61. 3.	
	차 장	李普圓(萬宰)	〃	1934. 9. 13	60. 4.16~62. 4.10	
	시 자	남관신	〃	1955. 9. 19	59. 2.25~62. 4.10	
	〃	張成恩(永成)	〃	1956. 6. 20	61. 3. 8~62. 4.10	
2	처 장	金仁喆(永千)	〃	1934. 12. 4	62. 4.11~67.11.30	
	주 사	許光永(宗奎)	〃	1951. 5. 5	62. 4.11~64. 2.19	
	간 사	金賢局(範烈)	〃	1958. 3. 3	63. 1.10~64. 2	
	주 사	金慧光(貴聲)	〃	1951. 11. 18	63. 7. 1~66. 2.10	
	〃	張行善(慶男)	女	1951. 7. 6	64. 2.20~68. 1.30	
	간 사	이승원	男		64. 9. 2~65. 2	
	〃	김세관	〃	1962. 2. 3	64.12.27~66. 2	
	〃	강영진	〃		65. 5.28~66. 2	
	주 사	崔永眞(文彩)	〃	1953. 7. 1	65. 8. 5~68. 1.30	
	간 사	장정관	〃	1962. 8. 30	65. 8.17~66. 2	
	〃	李建中(乙聲)	〃	1959. 6. 9	66. 2.11~68. 1.30	
3	처 장	金法宗(鍾鎬)	〃	1937. 5. 15	67.12. 1~71. 2.17	
	과 장	朴南周(漢圭)	〃	1947. 9. 19	67.12. 1~71. 2.17	
	주 사	金曉徹(順德)	女	1957. 5. 20	68. 2. 1~69. 2	
	간 사	박인상	男	1963. 5. 29	67.11. 3~69. 1	
	〃	김성호	〃	1964. 4. 14	69. 2.27~70. 1	
	〃	김영민	女	1964. 5. 17	69. 2.16~70. 1	
	〃	정진수	男	1967.	69.12~71. 2.17	
	〃	박용준	女	1967.	69.12~71. 2.17	
4	처 장	金恩峻(峻謙)	男	1943. 1. 19	71. 2.18~	
	과 장	李聖局(炳植)	〃	1947. 12. 29	71. 2.18~72. 1. 4	
	간 사	金悟徹(洪碩)	〃	1961. 2. 23	71. 2.25~	
	〃	고화중	女	1962. 2. 22	71. 2.18~	
	과 장	李龍定(俊)	男	1947. 1. 9	72. 1. 5~	
	간 사	서종명	〃	1962. 12	72. 1. 5~	

수위단회사무처규정

54. 9. 15 제정(교규 제24호)
65. 6. 17 개정(교규 제5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위단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제) 사무처에 처장 및 차장 아래 서기과와 자료조사과를 두고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과장 2인 2. 주임 약간인 3. 주사 약간인 4. 서기 약간인 5. 연구원 약간인

제3조(직무) ①사무처장, 차장은 의장단의 감독아래 사무처의 사무를 통리하고 소속임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서기과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의사, 기획, 관리, 운영,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자료조사과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자료연구, 분석, 편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④주임 및 주사,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수임사무를 전임한다.

제4조(위원) 본 사무처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연구비 지급)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에게는 연구업무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7조(공포)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中 央 敎 議 會

1. 연 혁

중앙교의회는 원기33년(1948)의 제정『원불교교헌』에 의해 비롯 되었다. 그러나 중앙교의회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원기9년(1924) 4월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시 채택한 규약의 총회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총회와 평의회의 의사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되었으며 원기19년(1938)의 불법연구회 1차개정 규약에서는 평의회가 없어지고 총회 대신 총대회를 규정하고 있고 의사진행을 마찬가지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었다.

그 후 원기27년(1942) 2차개정된『규약』『불법연구회회규』에서는 총대회가 지부장급 주무자의 의사기구로 변화하며 대신 본·지부연합회가 그 맥을 잇는 의사기구로 신설되었는데 참석자격을 본부의 종법사, 회무총장, 부장, 감사, 이사, 교무와 지부출장소의 지부장, 주무, 교감, 교무로 명시하고 있고 의결사항을 ① 종법사 선정 ② 수위단원 선정 ③ 종법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위단회의 분화이전의 기능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원기30년(1945) 해방이 되고《원불교》란 정식교명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어 원기33년(1948)에 마련한 제정 교헌에서 비로소 명시된 중앙교의회는 교관부장, 국장, 지부장, 지소장, 주무와 교감, 예감, 교무, 순교와 특의원(수위단회추천, 종법사위촉)으로 구성하였으며 ① 교규제정 및 변경 ② 예산심의 ③ 결산보고 ④ 교산처리 ⑤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사항으로 삼았다.

그후 중앙교의회는 원기44년(1959) 제1차 교헌개정시에 교단의 결의기관으로 명시되어 그 구성을 교규로 정하게 하였는 바, 원기49년(1964)에 제정된 중앙교의회 규정(교규제11호)에서 의결사항으로 수위단원 인준항이 추가되었다.

원기62년(1977) 교헌개정에 의해 중앙교의회는 의결사항에서 수위단원 인준항이 삭제되었고 동년 개정된 중앙교의회규정(교규제43호)에 의해 교구별 대표위원(원의회에서 정원定 교구교의회에서 선임)과 수위단회 특선위원 그리고 교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역시 임기는 3년이었다.

다시 10년후, 원기72년(1987) 4차개정된 현행『원불교교헌』에서는 4급이상의 출가교역자와 교구·교당의 재가대표로 중앙교의회를 구성하고 교단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에 첨

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변천을 거친 중앙교의회는 정기회를 매년 11월에 소집하며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임시회는 종법사, 재적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2. 기 능

교단 결의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교헌개정에 관한 사항
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중요교산 처리에 관한 사항
라. 교단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역대의장단

대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의 장	柳虛一(相殷)	男	1882.10.19	33. 4.27~35. 4.27	
	부 의 장	尹光彦(基元)	〃		34. 4.27~39. 4.26	
	의 장 대 리	趙甲鍾(孝南)	〃	1905. 5.13	35. 4.27~36. 4.26	
	의 장	趙甲鍾(孝南)	〃	1905. 5.13	36. 4.27~39. 4.26	
	의 장	金大擧(榮灝)	〃	1914. 3.16	39. 4.27~42. 4.24	
	부 의 장	趙甲鍾(孝南)	〃	1905. 5.13	39. 4.27~42. 4.26	
	〃	趙容碩(容禮)	〃	1903.12.31	42. 4.28~45. 1.17	
	의 · 장	李完喆(載心)	〃	1897.10.17	44. 4.25~45. 1.17	
	〃	趙暻錫(熙燮)	〃	1910.11.17	45. 1.18~47. 4.24	
	부 의 장	朴晩成(勝允)	〃	1895. 7. 8	45. 1.18~47. 4.24	
	〃	文東賢(翔煥)	〃	1909. 2.26	45. 1.18~47. 4.24	
	의 장	文東賢(翔煥)	〃	1909. 2.26	47. 4.25~71.11. 8	
	부 의 장	甘元道	〃	1912.11.20	49. 4.29~50. 3.24	
	부 의 장	朴晩成(勝允)	男	1895. 7. 8	50. 3.25~51. 3.27	
	〃	朴東現(蘆遵)	〃	1921. 8.30	50. 3.25~58. 3.29	
	〃	朴晩成(勝允)	〃	1895. 7. 8	53. 3.27~56. 3.30	
	〃	黃道永	〃		56. 3.31~58. 3.29	
	〃	朴東現(蘆遵)	〃	1921. 8.30	59. 3.30~62.11. 5	

	부 의 장	金正勇(三龍)	男	1925.11. 1	59. 3.30~60. 3.29	
	〃	宋圓徹(金道)	女	1926. 5. 8	62.11. 6~63.11. 4	
	〃	李義陛(鉉雨)	男	1914.10.11	62.11. 6~65.11.22	
	〃	金仁龍(判龍)	〃	1922.10.16	63.11. 5~68.11. 5	
	〃	金經圓(弘準)	〃	1920. 3.16	68.11. 6~71.11. 8	
	〃	羅喆重(龍柱)	〃	1923.10.19	70.11.10~	
	의 장	鄭道振(海永)	〃	1915. 7.13	71.11. 9~	
	부 의 장	洪正親(正杓)	〃	1916. 2.21	71.11. 9~	

4. 연도별 의원수

연도	의원수	출석수	위임출석	비 고	연 도	의원수	출석수	위임출석	비 고
33					56	490	420		
34	190	104	35		58	493	384		
35	197	91	38		59	643	412		
38	207	179	14		60	589	413		
39	151	63	39		61	640	425		
41	217	190			61	640	513		
42	240	143			62	690	516		
43	240	179			62	697	496		
44	292	253	39		62	775	419		
45	292	248			63	819	913		
46	285	224			64	867	447		
47	283	227			65	899	490		
48	330	289			66	974	532		
49	336	256			68	1,040	573		
50	267	157			69	1,098	651		
51	362	246			70	1,106	718		
52	320	184			71	1190	753		
53	279	248			72				

5. 결의사항초록(제1회~제34회)

제1회 원기33년(1948) 4월 27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33년도 중앙총부 예산편성 심의하여 통과하다.
2) 임원선거에 있어 교정원장에 柳虛一, 차장에 趙甲鍾, 감찰원장에 吳昌建, 차장에 李雲捲교무 등이 피선되다.

제2회 원기34년(1949) 4월 26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대종사 성탑에 관한 건은 소태산대종사 성업봉찬회를 구성하여 추진키로 하고 그 책임자로 오창건교무를 선출하다.
2) 차입금 반제, 경비예산, 학림경영에 관한 건에 있어서는 차입금 반제를 위해 삼례과원이나 기타 과원 등 부동산을 처분하자는 제안에 부동산을 매각키로 전제하되 우선은 각 지방을 통하여 저리의 융통금을 동원하고 최후책으로는 총부에서 책임지고 각지의 건물을 설정키로 하다.
3) 경성보화원 및 총부출장소에 관한 건.
4) 영산지부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고 보류키로하다.
5) 순회강연 및 수양 강탁방송에 관해서는 본교의 교화발전을 위하여 순교강연대를 조직하여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우선 예산관계를 교무부에 위임하여 지행키로 하고 방송원고를 작성키로 하다.
6) 회보 속간에 관하여는 금년부터(원기34년) 각 지방에서 기금 30만원을 조달하고 교무부에 임원 1인을 배치하여 월간으로 하되 기금조달이 완성됨을 따라 원광사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발간키로 하다.
7) 일요일 예회에 관한 건은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일요일에 예회를 보자는 제안에 대하여 아직 각 지방 사정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형편에 따르기로 하다.
8) 제3회 36년 기념행사 준비에 관한 건은 소태산대종사 성업봉찬회에 일임하여 적으히 연구케 하도록 결의하다.

제3회 원기35년(1950) 4월 26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제3회 기념사업 준비에 관한 건에 있어서는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조직키로하고 위원장 이공주, 위원에 박장식, 송혜환, 이운권, 조전권, 김정용교무 등 6인을 선출하다.

2) 유일학림 경영 및 대학인가 추진의 건은 유일학림의 확장을 위해 정식 대학인가의 추진이 필요한 바 그 선결문제는 재단확립이니 이를 위해 본교 재단법인의 명의를 유일학림에 전용토록 제안한 바 이사진에 일임키로 결의하다.
3) 보화원 유지 경영에 있어서는 보화원의 유지대책이 막연하여 후원금 거출을 제안한 바 거액의 원조금이 거출되었고 유지대책에 대하여는 당무자들이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 것과 후원회금을 증수키로 결의하다.
4) 예전시행에 있어서는 아직 구습으로 예법실행이 곤란하여 신정예법에 의한 훈련을 더욱 철저히 장려하자는 제안을 상무기관에 통고키로 결의하다.
5) 원로추대에 관한 건은 60세가 되면 원로로 추대하되 이에따른 법규제정이 필요하다는 동의안을 가결하다.
6) 정전 인쇄의 건은 인쇄비용을 차입하여 인쇄출판 후 판매하여 반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당무기관에 위임키로 결의하다.
7) 교헌개정안을 제안한 바 제반사정상 보류키로 결의하다.
8) 상장수여
9) 원기36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에 있어 제안대로 무수정 통과 결의한다.
10) 지부·지소 인가의 건에 있어 봉동, 계수, 왕촌 등 3개소 지소인가를 결의한다.
11) 교정·감찰원장 인준에 있어 교정원장 박광전, 감찰원장 조갑종교무를 인준 결의하다.

제2대 제1회 원기38년(1953) 4월 27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광』지의 속간과 『정전』 인쇄의 건은 상무기관에 일임키로 하다.
2) 교금수납제 폐지의 건은 원칙적으로 가결하되 지방자치법 실시 기초위원을 선출하여 동안건 설천세칙을 강구키로 결의하다.
3) 고등학교 설치의 건은 상무기관에 일임하여 가부를 지상발표키로 결의하다.
4) 원기38년도 예산안 편성.
5) 지부승격 및 지소설치에 있어 ① 지부승격 인가 광주, 정읍, 임실, 영광(이상 3개소) ② 장수, 산서, 덕용, 산동, 창평, 마산, 부안, 영광, 목포(이상 9개소) 지소 설치인가
6) 임원선거있어 ① 수위단원은 단장:송규, 단원(남)김대거, 송혜환, 박장식, 이운권, 이완철, 김홍철, 조갑종, 박광전, 유허일. (여)김영신, 조전권, 서대인, 이경순, 오종태, 이동진화, 서공남, 양도신, 이공주. ② 종법사는 유임키로 하다. ③ 수위단회에서 교정원장 김대거, 감찰원장 이공주를 선출한 바 인준을 결의하다.

제2회 원기39년(1954) 4월 26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39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수정안이 가결 통과하다.
2) 고등학교 신축의 건은 정신적 사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부채징수의 일방법을 실시하며 지방에서 책임 소화하기로 하다.
3) 영산지부 복구의 건은 구체적 방안이 없으므로 교무회에 위임하도록 결의하다.
4) 익산보화원의 건은 운크라 재단의 특별원조와 각계각층의 찬조로써 신축공사 상황을 보고하다.
5) 서울보화원의 건은 6·25동란 후 곤경에 처해 있는 서울보화원 대책을 토의한 바 이사회에 위임키로 결의하다.
6) 순창, 함라, 서면, 부산진(이상 4개소) 지소 설치 인가하다.

제4회 원기41년(1956) 4월 2일. 장소 : 지상결의

1) 교정, 감찰 양원장 선거에 있어 교정원장에 김대거, 감찰원장에 이공주교무가 각각 재선되다.
2) 원기4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 전원 찬성으로 무수정 가결되다.
3) 만기된 재단이사 및 감사 개선의 건은 원의회에 위임키로 하다.

제5회 원기42년(1957) 4월 28일. 장소 : 중앙교의회 회의실

1) 원불교 장학회 회칙통과의 건은 제안대로 통과를 결의하다.
2) 원기41년도 결산보고 및 원기42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은 결산안을 제안대로 통과 결의하고 예산안은 일부 수정키로 하다.
3) ① 함라, 용각, 장수, 영광, 목포, 대구, 부산진, 동래지소를 지부로 ② 대신, 밀양, 제원, 통영, 종로, 한남 등 6개소를 지소로 ③ 고산, 함양, 포천, 보화, 김해, 금산 등 6개소의 선교소 설치를 인가하다.

제6회 원기43년(1958) 4월 19일. 장소 : 지상결의

1) 원기4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제안대로 통과를 결의하다.

제7회 원기44년(1959) 4월 25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수위단원 선거에 있어 단원(남):정산, 박장식, 이운권, 성정철, 조갑종, 정광훈, 김홍철, 박광전, 이완철, 김대거. (여):오종태, 이경순, 김영신, 조전권, 서대인, 이태연, 양도신, 이동진화, 이공주교무 등이 당선되다.

2) 교헌개정안 및 교정원 감찰원 조직법 심의의 건은 제안대로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3) 종법사 추대결의의 건은 현 종법사(송정산)를 추대키로 결의하다.
4) 양원장 인준의 건은 교무연합회에서 당선된 교정원장 이완철, 감찰원장 이공주교무를 인준 결의하다.
5) 원기44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은 차입금을 전면 삭제 교금에 포함키로 수정하고 통과 결의하다.

제8회 원기45년(1960) 4월 장소 : 지상결의

1) 원기4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제안대로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제9회 원기46년(1961) 4월 15일 장소 : 지상회의

1) 원기4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제안대로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제10회 원기47년(1962) 4월 25일 장소 : 지상회의

1) 원기4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제안대로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제11회 원기48년(1963) 4월 18일 장소 : 지상회의

1) 원기4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제안대로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제12회 원기49년(1964) 4월 29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수위단원 인준에 있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황정신행단원을 인준 결의하다.
2) 학원재단 분립에 있어 문교부의 촉구로 학원재단을 분립하였는 바 사후 승인을 결의하다.
3) 개헌안 심의의 건은 개헌안에 이의가 없으나 재정과 개정일자를 부칙에 명기하기로하고 통과를 결의하다.
4) 55주년 기념사업회 회칙통과 및 임원선출의 건은 제안대로 통과 결의하고 회장에 박광전, 부회장에 황정신행교도, 사무장에 정광훈교무를 선출하다.
5) 원기48년도 결산보고에 관한 건은 제안대로 이의없이 통과 결의하다.
6) 원기4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제안대로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제13회 원기50년(1965) 3월 25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수위단회에서 선출한 현 종법사(김대산)를 추대키로 결의하다
2) 교정위원회에서 선출한 수위단원을 전원 인준 결의하다.

3) 원기5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원안대로 통과한다.
4) 서성로, 대전, 원남, 밀양, 누문 등 5개소를 지부 승격인가하다.

제14회 원기51년(1966) 3월 28일. 장소 : 종법원회의실(지상회의)

1) 수위단원 안이정단원 인준을 결의하다.
2) 원기5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제안대로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제15회 원기52년(1967) 3월 24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5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 통과하다.
2) 영산관할 토지회사 결의를 통과 확정하다.

제16회 53년(1968) 3월 27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수위단원 인준의 있어 정양선단원을 인준결의하다.
2) 원기5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제안대로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제17회 원기56년(1971) 3월 31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5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제안대로 예산총액 23,692,156원을 통과 결의하다.
2) 종법사 추대의 건은 수위단회에서 새 종법사에 대산종법사를 거듭 선출함에 대하여 교헌 제17조에 의거 추대결의하다.

제18회 원기58년(1973) 3월 30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5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2) 원기5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3) 청년회 예산에 관한 건은 지방교금액의 5%정도를 청년회 세입예산으로 세우되 형편따라 성의껏 협조키로 하다.

제19회 원기59년(1974) 3월 30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원기58년도 결산안 및 원기59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2) 영산 성지사업회 발족의 건은 영산 성지사업회 정관을 다소 보완하는 조건으로 통과 결의하고 그 정관에 의하여 사업회 임원을 선임하다(박광전외 10명의 지도위원과 회장 이공주 교무 등을 선임하다).

제20회 원기60년(1975) 3월 30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원기5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2) 원기6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제21회 원기61년(1976) 3월 30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원기6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2) 원기6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예비비에서 청년회 임용명목으로 40만원을 지출키로 하다.

제22회 (임시) 원기61년(1976) 10월 28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교헌 개정에 관한 건은 원기61년 제31회 교정위원회에서 발족한 교헌개정기초위원회가 성안 제출한 교헌개정안을 교정위원회를 거쳐 제안한 바 이에 대한 경과보고 및 개정안 질의토론 후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제23회 원기62년(1977) 3월 30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중앙교의회 정·부의장 임기만료에 따라 새 의장에 문동현교도 부의장에 이의성교도 송원철교무를 선출하다.
2) 수위단회에서 새 종법사로 대산종법사를 선출한 바 교헌의 정한 바에 따라 추대 결의하다.
3) 원기6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4) 원기6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5) 중앙봉공회 발족의 건은 중앙봉공회 발족을 시키기로 결의하고 회칙과 세부적인 문제는 원의회에 일임키로 하다.

제24회 원기62년(1979) 11월 16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원기63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제25회 원기63년 (1978)11월 5일. 장소 : 중앙총부기념관

1) 원기6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2) 성지사업회 임원에 총재 대산종법사, 지도위원 김홍철외 13명, 회장에 이공주교무 등을 선임하다.

제26회 원기64년(1979) 11월 18일. 장소 : 중앙총부기념관

1) 원기6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제27회 원기65년(1980) 11월 23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원기6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2) 교도회장단 상조계 조직의 건은 의장단과 교정원이 협의하여 명칭, 회칙, 집행 등을 결정하여 추진토록 결의하다.

제28회 원기66년(1981) 11월 8일. 장소 : 중앙훈련원 대법당

1) 원기67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제29회 원기67년(1982) 11월 7일. 장소 : 중앙훈련원 대법당

1) 종법사 선거인단에서 선출한 새 종법사 대산종법사를 교헌 제55조에 의하여 추대 결의하다.
2) 원기6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3) 중앙총부 종합건설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은 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은 원의회에 위임키로 결의하다.
4) 교헌 개정에 관한 건은 교헌 전문중 원기원년 3월 26일을 원기원년 4월 28일(병진 음3월 26일)로 개정 결의하다.

제30회 원기68년(1983) 11월 6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원기6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2) 원기6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에 대한 질의와 수정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3) 영모묘원 추진에 관한 건은 영모묘원 설립추진에 대한 경과보고 후 중앙교의회 전의원 및 교단적인 후원과 협력을 결의하다.

제31회 정기 원기69년(1984) 11월 11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원기6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2) 교산처분에 관한 추진의 건은 논산군 벌곡면 양산리 산 35－3의 임야매입 등 내력에 대한 질의가 있은 후 추인결의하다.
3) 원기7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7억8천5백6만6천원의 예산액을 수정없

이 통과 결의하다.

4) 원불교 군종활동 청원의 건은 군내 교화를 위한 군종청원서를 전의원이 기립박수로 결의하다.

제32회 원기70년(1985) 11월 10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원기6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제안된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이 승인하다.
2) 원기7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8억2천1백5십8만1천원).

제33회 원기71년(1986) 11월 9일. 장소 : 중앙훈련원 대법당

1) 원기7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792,103,100원을 승인하다.
2) 원기7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예산안 914,331,000원을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3) 국방부령 군종규정중 종교차별규정 개정 및 원불교 군종활동 허가 청원에 관한 건은 군종활동 청원의 성사를 위해 교도배가운동 및 여론조성에 적극 참여하며, 국회의장 및 관계요로에 청원서를 제출키로 결의하다.

제34회 원기72년(1987) 11월 15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원기7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결산액 839,810,595원을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2) 원기7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액 1,023,024,000원을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 결의하다.
3) 교헌개정안 심의의 건은 내용수정은 없으나 일부 조문의 어귀 및 형식을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통과 결의하다.

6. 中央敎義會法

49. 10. 16. 제정(교규 제11호)
62. 3. 5. 개정(교규 제43호)

제1조(목적) 본 법은 교헌 제50조에 의하여 중앙교의회의 회의를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의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구성) 중앙교의회의 의원은 교구별 대표의원과 교헌 제44조 6항에 의하여 선정된 특선의원 및

교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구별 대표의원은 원의회에서 정한 정원에 의하여 교구교의회에서 선정한다.

제3조(소집) 중앙교의회는 교헌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소집은 늦어도 회기 20일 전에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회기) 중앙교의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임 출석) 의원이 유고할 때에는 해교당 요인에게 위임 출석케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증언 청취) 중앙교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분과및 특별위원회) 중앙교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의안 제출) 중앙교의회 의원으로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의원 5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

제9조(회의 규칙 준용) 중앙교의회는 본법에 특별히 정한 바 외는 교단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10조(시행)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Ⅳ. 敎 政 委 員 會

1. 연 혁

교정위원회는 원기44년(1959)의 제1차 개정『원불교교헌』에 의해 비롯된다. 그러나 교헌 교규상에 나타나지 않으나 교무연합회 회의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능상 원기40년(1955)경의 교무연합회를 교정위원회의 연원으로 삼을 수 있다.

교정위원회는 원기44년(1959) 교헌에 수위단회에서 선정한 교정위원으로 구성하였는 바, 원기49년(1968)에 제정한 교정위원회법(교규 제10호)에 의해 그 구성의 한계가 더욱 명시되었으며 원기57년(1972), 원기59년(1974), 원기62년(1977)의 교정위원회법 개정에 의해 그 구성범위가 한정지워졌다. 그 결과 교정위원회 현역 4급이상의 교무와 특선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정원장이 의장에 당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이었다.

의결사항으로는 원기44년(1959)에 ①교정의 기본계획 ②교화의식의 연구 ③종법사 인준 ④수위단원 선거 ⑤교정원장·감찰원장 선거 ⑥중앙교의회 부의사항 ⑦기타 중요사항 이었던 것이 원기49년(1964)에는 교화의식 연구항이 제외되고 양원장 선거가 인준으로 바뀌었으며 원기62년(1977)에는 다시 종법사인준과 양원장인준 사항이 삭제되었다.

한편 교정위원회의 교단기구상의 위상을 교헌편차의 순서를 통해 살피보면 원기44년(1959) 교헌에 제5장 중앙총부의 제4절 교정원과 제6절 감찰원 사이에 제5절로 있다가 원기49년(1964) 교헌에서는 제2절 수위단회 다음에 제3절로 위치해 제4절 중앙교의회보다 위상이 앞섰던 것으로 여겨지며 원기62년(1977) 교헌에서는 제4절로 제3절 중앙교의회 뒤로 위치를 바꾸어 그 위상이 한 단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원기72년(1987) 11월에 개정 공포되어 원기73년(1988) 1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교헌에는 교정위원회가 폐지되고 교정원외의 협의기구인 교무회의가 신설되어 그 맥을 잇게 되었으나 교정결의기구에서 교정협의기구로 그 기능이 대폭 격하되었다.

2. 기　　능

교정결의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였다.

가. 교정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수위단원 선거에 관한 사항
다. 중앙교의회에 부의할 사항
라.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역대의장단

*** 교무연합회**

직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의 장	丁 光 薰	男	1917. 8.30	41. 1. 28～43. 1	교구부장
서 기	姜 雲 祥	〃	1934. 8.24	41. 1. 28	임시서기
〃	張 正 一	〃	1932. 5.28	41. 10. 15～45. 1	
의 장	金 勤 修	〃	1922. 6. 9	43. 1. 27～43. 10	
〃	金 允 中	〃	1927.12. 7	43. 10. 11～45. 1	

*** 교정위원회**

직　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의　장	李 完 喆	男	1897. 3.27	45. 1. 19～47. 2. 22	교정원장
사　회	丁 光 薰	〃	1917. 8.30	45. 1. 19	
서　기	張 正 一	〃	1932. 5.28	45. 1. 19	
임시의장	趙 甲 鍾	〃	1925. 5.13	46. 7. 30	
서　기	徐 大 峻	〃	1934.12.29	46. 1. 30	
임시의장	金 允 中	〃	1927.12. 7	46. 10. 1	
〃	金 勤 修	〃	1932. 6. 9	46. 10. 1	
서　기	田 宗 哲	女	1934.10. 5	47. 2. 22	
〃	張 正 一	男	1932. 5.28		
의　장	朴 將 植	〃	1911. 1. 9	47. 10. 15～56. 3. 30	
서　기	李 宗 明	〃	1933.11. 5	48. 10. 4	
〃	李 亨 圓	〃		49. 4. 28～51. 10. 17	
임시의장	金 勤 修	〃	1922. 6. 9	50. 3. 24	
서　기	韓 吉 良	〃	1938. 5. 9	51. 3. 28	

임시의장	朴正薰	男	1934. 7.21	51. 10. 17~56. 3. 30	
임시의장	金中默	〃	1920. 6.22	55. 10. 10	
의장	李雲捲	〃	1014. 5. 3	56. 10. 10~57. 10. 16	
서기	趙正中	〃	1938. 1.28	56. 10. 10~57. 10. 16	
임시의장	丁光薰	〃	1917. 8.30	57. 1. 25	
의장	金勤修	〃	1922. 6. 9	58. 3. 28~67. 11. 5	
서기	張應哲	男	1940. 9. 8	56. 3. 29~62. 3. 29	
〃	黃仁哲	〃	1952. 6. 2	65. 11. 22~68. 11. 5	
의장	金允中	〃	1927.12. 7	68. 11. 5~	
서기	徐光圓	〃	1948. 2.14	69. 10. 10	
서기	黃仁哲	〃	1952. 6. 2	70. 10. 9~71. 11. 17	
서기	成明鍾	〃	1954.10.29	71. 11. 17~	

4. 연도별의원수

회	일시	의원수	참석	비고	회	일시	의원수	참석	비고
3	41. 1.28	103	72		23	51.10.17	162	125	
4	41.10.15	102	62		24	52. 3.26	195	174	
5	41.12.11	102	73		25	52.10.17	195	123	
6	42. 4.24	102	77		26	53. 3.25	186	135	
7	42. 4.29	102	74		27	53.11. 2	186	126	
8	43. 1.27	131	112		28	54. 3.29	215	194	
9	43.10.11	130	116		29	54.10.12	233	194	
10	44. 4.23	152	120		30	55. 3.28	223	176	
11	45. 1.19	160	126		31	55.10.10	226	165	
12	46. 1.30	175	135		32	56. 3.30	340	280	
13	46.10.12	181	112		33	56.10.10	368	207	
14	47. 1.31	163	101		34	57. 1.25	368	256	
15	47. 2.22	164	107		35	57.10.16	342	208	
16	47.10.15	164	105		36	58. 3.28	343	265	
17	48.10. 4	181	119		37	58. 6.18	343	241	
18	49. 4.28	179	108		38	58.10. 8	343	232	
19	49.10.15	179	103		39	59. 3.29	355	266	
20	50. 3.24	152	131		40	59.10.31	355	216	
21	50.10.19	163	131		41	60. 3.29	369	326	
22	51. 3.28	162	128		42	60.10.28	369	290	

43	61. 3.29	406	337		49	67.11. 5	654	424	
44	61.10.17	406	343		50	68.11. 5	694	472	
45	62. 3.29	464	443		51	69.11.10	725	456	
46	64.10.17	547	364		52	70.11. 9	757	482	
47	66.11.22	573	363		53	71.11.17	811	596	
48	66.11. 7	619	376		54	72.11.13	852	618	

5. 결의사항 초록(원기41년~원기72년)

제3회 교무연합회. 원기41년(1956) 1월 28일. 장소 : 중앙총부 여선원

1) 教憲改正에 관한 건은 教堂, 教務 등의 명칭에 대한 이견이 있어 차후 개정때 결정키로 하다.
2) 中央禪院 발족의 건은 교정·감찰 양원장을 포함한 발족추진위원 12명을 선정하여 일임키로 하다.
3) 여자고등학교 발족의 건은 설립취지에 전원 찬동하고 14인의 설립추진위원을 선정하다.
4) 위친계 발족의 건은 5인의 발족추진위원을 선정하여 일임키로 하다.
5) 公費生 양성 및 3기생 연한의 건은 大學이나 禪院은 다 四年制로 하되 4년되는 해 만은 중앙선원에서 수련키로 하다.
6) 서울 正覺寺 대지불하의 건은 각 기관, 지방에 할당하여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수금키로 하다.
7) 예회순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키로 하다. ① 개회 ② 禪定 ③ 법신불 찬송가 ④ 三歸依 ⑤ 教歌 ⑥ 心告 ⑦ 법어봉독 ⑧ 일상수행의 요법 ⑨ 경강 ⑩ 성가 ⑪ 질의 ⑫ 설교(강연) ⑬ 기타 ⑭ 四弘誓願 ⑮ 산회가 ⑯ 폐회(단 ③, ⑩항만은 자유)
8) 지방 순교무 배치에 관한 건은 몇 지방을 단위로 중앙교당에 순교무를 배치하도록 결의하다.
9) 포교자료 배포 요청의 건은 방송원고, 정전해의, 일화 등을 매집하여 배포키로 하다.
10) 전무출신 복장통일의 건은 남자부의 복장통일을 연구하였다가 차후 결정키로 하다.
11) 교무강습과 일반선 분립 및 강의 방법의 건은 교무강습은 秋期(음 8월 중순-9월 중순)로, 일반 禪은 冬期로 분립하여 하기로 결의하다.
12) 『圓光』誌 보급의 건은 제안설명후 반야심경해의 연재요청이 있었다.

13) 敎花, 敎樹지정에 관한 건은 종법사께서 敎花로 蓮花(또는 白木蓮), 敎樹로 銀香나무를 말씀하신다는 발표가 있었고 일부에서 菩提樹로 하자는 案이 있었는 바 차후 결정키로 하다.

15) 一人一導 및 四種義務 이행방법에 관한 건은 카드에 有無기록 등을 첨부하여 계속 추진키로 하다.

16) 당년도 시상에 관한 건은 마-크와 반야심경 족자로 하겠다는 안을 발표하다.

17) 敎務 재훈련의 건은 敎務측의 반대로 보류키로 하다.

18) 재단문서 정비의 건은 財團理事會에 일임키로 가결하다.

19) 春川支所 수복의 건은 사무당국에서 실지답사 후 敎議會때 人事決定키로 하다.

20) 제2방언공사 격려 메세지 채택의 건은 전 교무를 대신하여 교무부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22) 水德會 細則에 관한 것은 세칙심의중 본인에게도 지급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으로 개정가결하다.

제4회 원기41년(1956) 10월 15일. 장소 : 중앙선원 선방

1) 禪院 운영의 건은 교무강습 후부터 바로 개원키로 하다.

2) 東山禪院 교무파견의 건은 동산선원에 장성진교무(현 금산지부 교무)를 파견하고 금산지부는 출장으로 예회를 보도록 결의하다.

3) 敎憲에 관한 건은 교헌개정안의 독회를 하면서 의견교환을 하다.

4) 원광여자고등학원 추진의 건은 원광여고 설립취지 등 제안설명후 후원회 조직을 결의하다.

4) 종법사 정양 및 大宗經 편수의 건은 종법사님 未寧에 대하여 靜養委員을 정하여 愼重을 기하기로 하다.

5) 大奉道 및 大護法 존호 증여의 건은 상세한 결과는 추후 발표키로 하다.

6) 당년도 해당 원로회갑식에 관한 건은 간단한 중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다.

7) 개교기념식 지방행사에 있어서 일자에 대하여는 추후 발표키로 하고 지방에서도 성대한 기념식을 모시자는 제안자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다.

8) 사월 초파일 관등에 관한 건은 초파일 관등을 소홀치 않게 하자는 의견과 대종사의 신정예법 정신에 맞추어 하자는 의견이 대립하였는 바 종법사께 사뢰어 결정나는대로 하기로 하다.

9) 秋亭日字에 관한 건은 일자는 종법사께 사뢰어 결정키로 하고 과거 선진들의 역사를 잘알아 추모법회를 갖기로 하다.

10) 常識특강 요청에 관한 건은 교무부에 일임키로 하다.
11) 교무강습회에 관한 건은 교화자료, 일자, 일반선 개최, 교무강습시 강의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하다.
12) 세입예산 편성에 관한 건은 500만환의 예산을 수정없이 승인하다.
13) 전무출신 요양 및 정양기관 대책의 건은 제의견이 있은 후 본건에 대한 추진위원을 정하여 위임키로 하다.
14) 교역자 연중 휴식기 실시의 건은 교역자의 생활이 너무 진력만 하고 휴식이 없어 피로가 더욱 심하니 연중 적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도록 하자는 종법사의 말씀을 전한 뒤 현 여건상 곤란한 점이 많으므로 환자 이외에는 현행처럼 하기로 하다.
15) 지방 강습회에 관한 건은 지방교당끼리 연합하여 하도록 하다.

제1회 (임시) 원기41년(1956) 12월 11일. 장소 : 중앙선원 선방

1) 수위단남자 양방단원 보선에 관한 건
2) 추도식 거행의 건
3) 전 교무 타합시 미수습의 건
4) 동기 일반선 개최의 건
5) 지방 강습회 개최의 건

제6회 원기42년(1957) 4월 24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불교 장학회 회칙초안 통과의 건은 이견이 있어 수정후 통과 결의하다.
2) 4월대회 진행의 건은 동래지부 시상 야외 식장위치 및 좌석 배치방법 등을 의결하다.
3) 법훈증 증여의식에 관한 건은 의식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의결하다.
4) 원로 회갑식 거행의 건은 비용 등의 문제로 간략히 거행하기로 하되 식후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하다.
5) 장학회 役員 및 선발된 장학생 명단발표의 건(생략)
6) 결산보고 및 결산안 심의의 건은 당기 300여만원의 손실을 내게된 경위에 대한 질의가 있은 후 앞으로 중앙총부 경제대책을 확립키로 결의하다.

제2회 (임시) 원기42년(1957) 4월 29일. 장소 : 중앙선원

1) 장학회추진 및 회칙에 관한 건
2) 42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제6회 원기43년(1958) 1월 27일. 장소 : 중앙총부 중앙선원

1) 正化社 발족의 건은 정화사 업무는 원기43년 5월에 개시키로하고 사업방법과 경제방법 직원선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총회 후에 결정키로 하다.
2) 중앙선원 추진의 건은 미약하지만 금년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유망한 인재발굴을 요망하다.
3) 종법사 요양대책에 관한 건은 종법사 요양과 정화사 사업이 동일한 것이니 예산은 요양대책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약은 보화당에서 담당하며 약 대금은 요양대책위원회에서 지불하기로 하다.
4) 개인내력 정리와 유공인 시상에 관한 건은 위원을 정하여 일임키로 하다.
5) 議式통일에 관한 토의는 차후로 미루다.
6) 『例話集』 刊行에 관한 건은 교무부에서 널리 자료를 모집하여 원광사로 넘겨 발행키로 하다.
7) 敬老日制 실시의 건은 敬老日은 교무강습중 적합한 시일을 정하여 실시키로 하고 이날은 전 전무출신이 응하기로 하다.
8) 專務出身 恩子女 교육에 관한 건은 恩子女제도와 폐지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연구키로 하고 恩子女교육은 금년 40세 이상된 전무출신으로서 근무한 자에게 1인 1회 한도로 恩典을 주기로 결정하다.
9) 하섬에 관한 건은 중요성으로 보아 단시간내 해결이 불가하니 위원을 정하여 전체를 일임키로 하되 각 방면으로 노력키로 하다.
10) 금년도 교무강습회에 관한 건은 교무 禪과 일반 禪은 분립키로하여 시기는 가을로 하되 일자는 사무당국에 일임키로 하다.
11) 순교무 및 교무선 활용의 건은 사무당국에서는 가급적 순교무를 지방분담시켜 순회토록 하다.
12) 지부장, 주무, 감원 등 정기훈련에 관한 건은 사무당국에 일임키로 하다.
13) 지방 교무회 명칭재정의 건은 명칭은 「지방교무회」로 하고 남자교무로서 조직하되 집회후에는 반드시 그 상황을 당부에 보고토록 하다.
14) 지방교구회 발족의 건은(세부사항 생략함) 지방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조직키로 하고 명칭은 후원회로 하도록 하다.
15) 지방강습회 강사진 배정에 관한 건은 취지는 좋으나 현실상 불가하니 종전대도 하기로 하다.
16) 원광여고의 건은 ① 여고발전에 적극 후원키로 하다 ② 당부에서 계획추진 순위를 정하여 공문으로 시달키로 하다.

17) 총부 유지 대책에 관한 건

제7회 원기43년(1958) 10월 11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44년도 4월대회 개최의 건은 4월 대회 일정, 의식, 복장 등을 의결하다.
2) 교당설계 및 法衣, 佛具에 관한 건은 법당설계는 전문분야에 속하므로 위원에게 일임하고 衲子는 朴光田교무의 제안에 수술을 달기로 하되 시행여부는 종법사께 품의키로 하다.
3) 교무강습에 관한 건은 제안된 교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하다.
4) 개인내력사무에 관한 건은 ① 지방과 같이 총부에서도 現義와 같이 消義를 보기로 하고 ② 개인내력 기록한계에 대해서는 작년 교무연합회때 선출된 위원에게 일임하며 ③ 시행과 방법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일임하고 종전과 같이 하기로 하다.
5) 『원광』편집 대중화의 건은 당무부에 건의 성격이므로 원광사와 총부에 제출하는 건의안으로 수용키로 하다.
6) 중앙총부에 대한 母體報本정신 앙양에 관한 건은 명칭은 同連楔로 하고 事業費는 기관과 개인의 성의에 맡기기로 하다.
8) 원광여자고등학교 인가 추진의 건은 후원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위원에게 일임키로 하다.
9) 신설교당 출장교화에 관한 건은 건의안에 속하므로 감찰원에서는 바로 실효를 나투도록 하고 본 제안을 수위단회에 알려 인사(人事)에 참고토록 하다.
10) 학생회지 간행에 관한 건은 회지발행은 학생회 자체에 맡기되 뜻대로 안되면 원광에 학생란을 두어 하기로 하다.
11) 法制에 관한 의견모집의 건은 법제위원에게 일임키로 하다.
12) 교화문제에 관한 건은 교역자 수양기간, 포교사 자격검정고시 등에 관하여 논의하다. (내용 생략)

제8회 원기44년(1959) 4월 23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教憲개정안 심의의 건은 無修正 통과를 결의하다.
2) 교정원, 감찰원조직법 심의의 건은 일독회 후 축조심의를 한 바 교정원 조직법은 무수정 통과하고, 감찰원 조직법은 제1조문을 수정 통과키로 결의하다.
3) 교정원장에 이완철, 감찰원장에 이공주교무를 선출하다.
4) 수위단원 선거에 있어 故 柳山 柳虛－교무를 제외한 前 수위단원 전원이 재선되었다.
5) 수위단원 보궐단원 선거에 있어 丁光薰교무가 보궐단원으로 당선되다.

6) 원기44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은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중앙교의회에 상정키로 하다.

*** 교정위원회.**

제1회 원기45년(1960) 1월 19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중앙교의회 소집에 관한 건은 4월이 국가의 총선을 전후한 시기가 되므로 사정을 참작하여 紙上 敎議會로 대행키로하며 2월중에 의장단을 소집하여 지상교의회에 관한 사무에 대비키로 하다.
2) 정전 자구수정 및 재간에 관한 건은 ① 가급적 子句수정만을 원칙으로 하다. ② 종법사 親栽下에 首位團員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修正하고 再刊이후에 一字一句의 修正도 가할 수 없음을 결의하다.
3) 종법사 회갑절차에 관한 건은 금년 당일은 총부에서만 간소하게 道理를 행하고 回甲행사는 내년 4月에 거교적으로 받들기로 하다.
4) 靈山聖地 美化에 관한 건은 ① 靈山성지 건설사업회를 구성키로 하고 ② 조직은 회장, 부회장, 총무위원, 기획위원, 재정위원, 수호위원, 건축위원, 선전위원, 표석위원 별로하고 위원구성은 사무당국에 일임키로 하며 ③ 사업순서는 금년 제1차 사업으로 산림녹화하기로 결의하다.
5) 전무출신 위친계 조직에 관한 건은 위친계 회칙을 제정하고 추진위원을 선정하여 일임키로하다.
6) 敎務의 지방별 합숙생활 포교제도에 관한 건은 의안접수하고 토의는 보류하다.
7) 교도의 신앙고무에 관한 건은 건의안으로 접수키로 하다.
8) 헌공자금제 실시에 관한 건은 재무부 제출 헌공자금 취급요령에 따라 실시키로 하며 구체적 사업은 당무부에서 각 지부, 기관에 연락키로 하다.
9) 원광여자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 선출의 건은 12인의 지도위원과 7인의 추진위원을 선정하다.
10) 교무강습체제 변경에 관한 건은 건의안으로 접수하다.
11) 지방 유지문제와 요인훈련에 관한 건은 건의안으로 접수하다.
12) 교당명칭 제정에 관한 건은 지역별로 명칭을 정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사용하는 지방명칭은 그대로 하기로 하다.
13) 중앙총부 건물수리에 관한 건은 종법실 전면수리의 문제로 재무부 예산안에 정식 편입시키기로 하다(150만환 예산).
14) 儀式에 관한 건은 ① 초파일 관등은 양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음력사용과 관

등은 당분간 지방 사정에 따라 적으히 하기로 하다. ② 例會명칭 개정은 건의안으로 접수하다. ③ 衲子통일의 건은 이미 조성된 경비는 교무일동이 책임키로 하며 모양은 三案대로 결정하고 종법사께 품의드려 결정키로 하다. ④ 喪服制 통일의 건은 건의안으로 접수키로 하고 儀式硏究委員에 일임키로 하다.

15) 敎規초안 一讀會 및 의견모집의 건은 一讀會 후 의견이 別無하다.

16) 個人內譯事務의 실시에 관한 건은 당무부에서 개인내력 사무를 실시할 것을 보고하였다.

17) 원기45년도 예산안 편성의 건은 일부수정하여 통과 결의하였으며(수정내용 생략) 교금 미납액은 3월까지 완납키로 하였다.

제2회 (임시) 원기46년(1961) 1월 30일. 장소 : 중앙총부 중앙선원

1) 원기46년도 4월 대회에 관한 건은 대회를 갖지 않으면 교세에도 그 만큼 지장이 있으나 종법실의 하명을 받들고 교단내의 제반 형편을 참고하여 총부에서 거교적 행사는 생략하고 개교축하식만 갖기로하며 이에따라 중앙교의회도 지상으로 대행해 줄 것을 건의키로 하다. 또한 금년은 처음으로 지방단위로 開敎祝賀와 종법사 回甲기념을 모시기로 하다.

2) 원기45년도 세입예산액 미수에 관한 건은 ① 24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방안을 강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다. ② 24인의 결의로 각 지방에서 성의껏 부담키로 하고 금년도 개교기념비를 회갑기념비와 구분해 총부에 보조하기로 하다.

3) 敎務禪 秋期 개최에 관한 건은 건의안으로 처리하다.

4) 교무선시 식기지참에 관한 건은 총부의 용기부족을 감안하여 入禪때 필요한 食器, 수저를 각자 부담하여 공동구입키로 하다.

5) 儀式통일과 기도일자 통일에 관한 건은 장례식때 法服을 입고 또한 유교식을 겸하게 될때의 폐단이 있음과 기도시 양력, 음력의 혼돈 등에 대한 의견을 건의안으로 처리하다.

6) 원불교 방송실시의 건은 중앙방송국(일요아침 프로)에 월1회 방송처로 주선되었으니 당무부에서 원고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본안을 건의안으로 처리하다.

7) 교역자 마크제정 및 패용의 건은 교무부 당국에서 전문연구위원을 두어 제작하여 다음 총회시까지는 전원 구입하여 패용키로 하다.

8) 宿舍건축에 관한 건은 건의안으로 처리하다.

9) 恩子女 교육실시에 관한 건은 건의안으로 처리하다.

10) 圓光女中 商高校 校舍신축에 관한 건은 원기45년도 세입미수 해결방안 위원에게 위임

하여 처리케 하다.

11) 수계농원의 건은 계약문에 미비한 점이 있으니 기위 계약을 한 바에는 법적인 경우까지도 고려하여 시정할 것을 결정하다.

12) 三中제약사의 건은 건의안으로 처리하다.

13) 원기46년도 예산심의에 관한 건은 예산위원의 심의를 거쳐 교의회에 상정토록 위임하고 위원 12인을 선정하다.

제3회 원기46년(1961) 10월 12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46년 4월대회에 관한 건은 4월 10일로 중앙교의회 일자를 정하다.

2) 관등에 관한 건은 관등의 폐지가 원칙이나 풍속을 일시에 폐지함이 불가하니 당무부에서 의견을 들어 예시하도록 하다.

3) 喪服制定에 관한 건은 상복제정에 대한 당무부의 복안을 질문하였으나 원칙적인 답변만 있었으며 禮典편찬 연구위원과 儀式道具 연구위원에게 일임키로 하다.

4) 채무반상에 관한 건은 채무 1,500만환중 시급한 150만환과 동화병원 개인빚 400만환 상환방법을 강구한 바 法恩財團에서 동화병원을 인수키로 한 바, 기타는 예산에 책정하였으므로 우선 변통하여 처리키로 하다.

6) 재산처리에 관한 건은 이홍과원, 황등율원이 운영난에 봉착하여 매각할 것을 결의하고 代土할 것인지 채무상환할 것인지는 상무기관에 일임하다.

7) 하섬 처리에 관한 건은 매각하지 않고 해체되는 위친계의 기금을 계원 각인이 희사한 것으로 하여 부채를 청산키로 하다.

8) 교서간행기금에 관한 건은 대여키로 하고 수입되는 대로 반환키로 하다.

9) 교화예산안 수립에 관한 건은 내년예산의 교화비에 가산책정키로 하다.

10) 원광사 운영에 관한 건은 원광사 운영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圓光』誌 미불금을 11월말까지 완납키로 하다.

11) 각 기관 사무체제 확립에 관한 건은 각 기관이 사무체제가 서 있지 않으므로 많은 의견을 들어 이를 확립키로하고 그 실시여부를 감찰원에서 감사하기로 하다.

12) 원광여상 교사마련의 건은 중앙대학 校舍 매입문제를 제기하여 그 상황을 설명받고 계속 노력키로 하다.

13) 동화병원 의사 양성의 건은 育英財團이 확립될 때까지 영남지역 교무일동이 출자하여 육영부를 거쳐 하도록 하다.

14) 育英財團 발족의 건은 정관을 일독한 후 몇가지 수정합의를 한 후 그 세부 수정작업은 법제위원에게 일임하다.

15) 위친계에 관한 건은 해체키로 합의하고 기금은 하섬 부채를 청산키로 하다.

제4회 (임시) 원기47년(1962) 1월 31일. 장소 : 중앙선원 여선방

1) 종법사 김대거교무를 일동 박수로써 인준하다.
2) 수위단 보궐단원 선거에 있어 조회석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다.
3)기타 ① 임시 중앙교의회 소집의 건. ② 원광여상 교사마련의 건.

제5회 (임시) 원기47년(1962) 2월 22일. 장소 : 중앙선원 여선방

1) 교정원장 박장식, 감찰원장 이완철을 표결로써 선출하다.
2) 교정형편상 정기 중앙교의회를 지상대행키로 하다.
3) 기타 ① 대회 진행에 관한 건. ② 정산종법사 49재 거행에 관한 건은 지방별로 모시기로 하다. ③ 임시 대회비 조달에 관한 건.

제6회 (임시) 원기47년(1962) 10월 15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48년 4월 대회 개최의 건
2)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종법사, 수위단원, 양원장 선거와 제2대 제1회의 성적포상을 시행하자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일치되다.
3) 예회 출석카드제 실시의 건은 지방의 필요에 따라 실시키로 하다.
4) 교무 마크 패용의 건은 패용의 장단을 의제(衣制)와 아울러 연구하여 예전에 밝히기로 하다.
5) 대향재 위패 통일에 관한 건.
6) 교역자 생활개선에 관한 건은 위원을 정하여 계속 연구하고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다.
7) 총부구내 건축추진의 건은 정광훈외 9명의 위원을 정하여 추진방안을 연구하기로 하다.
8) 삼중제약사의 건은 종전의 위원들이 계속 추진키로 하다.
9) 하섬에 관한 건.
10) 원광사 운영 및 선진 유고선집 발행에 있어 교단 인쇄물은 원광사에서 하기로 하다.

제7회 (임시) 원기48년(1963) 10월 4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수위단 보궐단원 선거에 있어서 황정신행 단원을 투표로써 선출하다.
2)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는 안이정외 29명을 선출하여 대비키로 하다.
3) 동산선원 수리에 관한 건은 후원회원 모집에 지방에서도 협력하기로 하다.

4) 동련계(同連契) 조직에 관한 건.
5) 인도실천자 표창에 관한 건.
6) 화장장 설치에 관한 건.
7) 어린이회 교재 시달의 건.
8) 참회문 독송에 관한 건.
9) 식당건축의 건.

제8회 (임시) 원기49년(1964) 10월 15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교역자 강습기간 연장의 건은 기간을 1개월로 하기로 하다.
2) 「뺏지」 착용 권장의 건은 품질을 좋게하여 제작하고 착용하도록 장려하기로 하다.
3) 55주년 기념사업 기금조달 추진 운동의 건은 기념사업회 선전부에서 적극적으로 계몽하기로 하다.
4) 교우연합회 명칭개칭의 건은 통칭 교우연합회를 청년회라 개칭하고 선, 학원 예비교역자 모임은 교우회로 존치토록 하다.
5) 불구점 설치의 건.
6) 영모원 수호의 건.
7) 교역자 임지 교체의 건은 6년이상 근무자는 일체 교체키로 결의하다.
8) 일본 포교의 건은 서세인교무의 인연으로 인하여 일본포교를 실현키로 결의하다.
9) 제주도 포교사 파견의 건은 원광대학 봉사활동을 기연으로 유망한 포교사를 파견키로 하다.
10) 총부숙소 증축의 건은 형편상 유보하고 사가나 시내기관을 이용하여 해결키로 하다.
11) 추가예산 심의의 건
12) 기타 ① 독기념과 공동기념에 대한 건은 독기념이나 공동기념은 종전대로 하고 특별기념은 사전통지 한번으로 정하여 보통기념일은 개별통지 하지 않기로 하다.

제1회 원기49년(1964) 4월 28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교헌개정의 건은 제안대로 무수정 통과를 결의하다.
2) 55주년 기념사업 추진회칙 심의의 건은 총재에 종법사, 회장에 박광전 등 위원을 정하고 회칙을 중앙교의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3) 원기48년도 결산보고에 관한 건.
4) 원기4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제2회 원기50년(1965) 3월 24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교헌 제20조에 의하여 대산 김대거 종법사를 인준하다.
2) 수위단 선거에 있어 투표결과 수위단원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장식, 이운권, 성정철, 조갑종, 정광훈, 김홍철, 조희석, 이완철, 박광전, 오종태, 이경순, 김영신, 조전권, 서대인, 황정신행, 양도신, 이동진화, 이공주」
3) 원기49년도 결산보고에 관한 건.
4) 원기50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의 건.
5) 수위단회에서 선출한 교정원장 박장식, 감찰원장 이완철에 대하여 교헌 제43조 4항에 의하여 인준을 결의하다.
6) 전형고시 실시에 관한 건.
7) 대회 행사시간 채택의 건.
8) 인사임명 처리의 건.
9) 지방강습 지역별 시기채택의 건.
10) 전무출신 애경상문간 인사 통일의 건.
11) 『원광』지대 인상에 관한 건.

제9회 (임시) 원기50년(1965) 10월 19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51년도 지상총회 결의에 관한 건.
2) 영모원 임야매입 처리에 관한 건.
3) 응산 이완철교무 조위금 잔금 처리에 관한 건.
4) 수계농원 주간작물 변경재배 인정에 관한 건.
5) 법은재단 육성방안 수립에 관한 건은 회갑기념비를 법은재단에 합하여 육성키로 결의하다.
6) 자선의 달 설정에 관한 건은 당무부에서 사무적으로 취급키로 하다.
7) 의복제(衣服制)에 관한 건

제3회 원기51년(1966) 3월 28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수위단 남자 태방단원 보궐선거 단원을 투표로 선출하다.
2) 감찰원장 인준에 관한 건은 이공주씨를 감찰원장으로 인준하다.
3) 원기51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4) 교화자금 조성방안에 관한 건.
5) 교단 기강 확립에 관한 건

제10회 (임시) 원기51년(1966) 10월 17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52년도 총회 지상 대행의 건
2) 석존 성탄절의 건
3) 교정통제 및 권위확립의 건
4) 교정위원회 권한 강화의 건
5) 전무출신 요양대책의 건
6) 서울 수도원의 건
7) 신진교역자 학복수여 및 성년식 거행의 건
8) 원중고 부채처리의 건
9) 각 기관부채 자체해결의 건

제4회 원기52년(1967) 3월 26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영산관할 토지 회사의 건
3) 수계농원 명칭 변경의 건
4) 원기55주년 사업회 인사의 건

제11회 (임시) 원기52년(1967) 10월 17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중앙총부 숙소건축의 건은 5인위원을 정하여 신청금 증액 및 수납을 독려키로 하고 부족액은 55주년 사업회에서 무이자로 차용하기로 하다.
2) 교고총간 사업 추진의 건은 『원불교 교고총간』을 간행키로 하고 주관은 정화사에서 하기로 하다.
3) 지방감원의 건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법제화 하기로 하다.
4) 종법실 건축의 건은 특별 회사자를 발굴하여 건축을 추진하기로 하다.
5) 서울 출장소의 건.

제5회 원기53년(1968) 3월 25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5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종법사 요양 대책의 건.
3) 교역자 강습의 건.
4) 원기55주년 사업회 인사의 건

5) 수위단 보궐단원 선거에 있어 정양선단원을 투표로 선출하다.
6) 교정원장 박장식, 감찰원장 이공주교무를 인준하다.

제17회 (임시) 원기53년(1968) 11월 2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불교 신문 발간의 건은 신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간행키로하고 추진위원을 선정하여 제반문제를 연구키로 하다.
2) 정화원 건축비 미수금의 건은 미수금은 수입키로 하고 50만원정도는 반백년 사업회에서 지급키로 결의하다.
3) 교단기구 연구위원회 발족의 건은 정광훈외 10인의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키로 하다.
4) 교화재단 설립 육성의 건은 교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화재단을 설립토록 하다.
5) 중앙선원 개원의 건은 중앙선원의 성격은 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하고 개설키로 하다.
6) 수덕회비 인상의 건은 내년부터 회비를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키로 한다.
7) 한해교당 구호의 건은 이미 거출한 성금을 적으히 분배키로 하다.
8) 유공인 합동 공덕탑 건립의 건은 연구위원회에 위임하여 계속 연구키로 하다.

제18회 원기54년(1969) 3월 29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5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2) 사대봉공회(四大奉公會) 발기의 건은 발족을 승인하고 업무주관을 사업부에, 방안연구는 수위단회 사무처에 일임키로 하다.
3) 교전 성가 축소판 간행의 건은 합본하여 횡서 축소판을 간행키로 하고 제본, 가격 등은 당무진에 일임하다.
4) 반백년 기념 성미(誠米) 연도별 인상의 건은 각 지부 기관에서 더욱 힘써 원기55년 2월말까지 납부토록 종용키로 하다.
5) 반백년 사업 예산안 승인의 건은 별첨 원안대로 승인하다
6) 서울빌딩 건축위원회 구성의 건은 수위단회에서 선정한 준비위원 6인과 서울지구 교무 및 요인이 서울에서 회합을 갖고 그 회합에서 서울지구를 중심한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다.
7) 유일정미소의 건은 매도와 수리문제를 논의한 바 상임위원회에 일임키로 하다.
8) 교단기구 연구위원회 결의사항의 건은 별첨 결의사항중 제1안은 채택하고 2, 3, 4, 5안은 수위단회 사무처에 회부하기로 하다.

제19회 (임시) 원기54년(1969) 10월 12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교무강습 일자 및 기간의 건은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까지 20일간 갖기로 결의하다.

제20회 원기55년(1970) 3월 28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수위단원 예우의 건은 수위단원 예우와 아울러서 그외 원로 예우문제도 수위단회에 넘겨서 전문위원이 연구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를 건의키로 하다.
2) 개교 반백년기념 서울총회 개최의 건은 반백년 기념행사를 서울 및 성지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더 연구하여 결정하기로 보류하다.
3) 원기5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세입세출 총액 15,854,186원을 통과 결의하다.
4) 신보사의 건은 신보사 운영비 약 210만원중 약 100만원의 부족액 협조제안에 대하여 되도록 협조키로 하고 지대도 받기로 하다.

제21회 (임시) 원기55년(1970) 10월 10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석존성탄절 관등행사의 건은 제10회 임시교정위원회에서 석존성탄절을 음력으로 하고 개교55주년까지 관등행사를 하기로 하였는 바 그 이후 문제는 석탄절을 양력 4월 8일로 하고 관등행사는 하지 않기로 하다.
2) 교역자 강습회 명칭의 건은 교역자 강습회를 정기훈련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데 대하여 보류하고 더 연구키로 하다.
3) 반백년 기념행사에 대한 기타 건의안

제22회 원기56년(1971) 3월 30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대산종법사가 차기 종법사로 수위단회에서 피선되었는 바 교헌 제17조에 의거 일동 기립박수로써 인준하다.
2) 수위단회에서 신임 교정원장에 이운권, 신임 감찰원장에 서대인교무를 선출하였는 바 일동 박수로써 인준하다.
3) 원기5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을 조건부로 통과 결의하다.
4) 동산선원 체제의 건은 영산선원 2년, 동산선원 2년의 체제를 영산 2년, 동산 3년으로 변경하기로 하다.

제23회 (임시) 원기56년(1971) 10월 10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교역자 교리강습 개최에 관한 건은 종법사께 품의하여 원의회에서 확정키로 하다.
2) 반백년 사업회에 관한 건은 반백년 기념대회가 끝났으므로 사업회의 해체를 제안한 바 미진한 잔무가 처리되는 대로 중앙교의회에 보고하고 교정원에 이관 해체토록 하다.
3) 서울기념관 문제수습에 관한 건은 서울기념관 부채 총액 2억7백만원중 청부업체인 삼환기업 약속어음 3천7백만원의 약속기일이 임박함에 따라 그 대책을 토의한 바 ① 서울보화당을 담보 또는 처분하여 3천만원을 충당하며 ② 종로교당 등에서 420만원 성금을 모으며 ③ 지방교역자는 3천원이상, 총부, 기관 교역자는 1개월 용금이상을 분담하여 수습키로 하다 ④ 서울보화당 처리건은 최악의 경우에만 고려하기로 하고 수습위원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키로 하다.

제24회 (임시) 원기57년(1972) 1월 25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남한강문제 부채처리의 건은 수위단원 4명, 총부 9명, 기관 9명, 각 지방대표 27명, 도합 49명의 위원과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에서 부채 상환부담액 기초조정안을 세우기로 하다(위원장 정광훈). ①상환액 1억원을 목표로 우선 은행이자와 삼환기업건과 입주금 등을 상환하고 은행원금을 점차적으로 해결하자는 안 ② 1억7천만원을 목표로 기존재산을 처리하여서라도 은행원금까지 단기일내에 처리하자는 안 ③ 2억1십만원을 목표로 하여 완전 해결하는 안 등 3개안을 제안한 바 제2안을 원칙적으로 택하기로 하고 수금하되 안되면 은행의 연불이자만이라도 갚아나가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로 하다.

   또한 9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환액중 1억2천만원을 각 지부기관에 분할하는 작업을 의뢰하고 전무출신 성금과 각지방 제기금에 관한 사항은 남녀별 전무출신 모임에서 원만한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분담액을 확정하다(다음내용 생략).
2) 중앙교의회 소집에 관한 건은 중앙교의회 의장단과, 남한강문제 수습위원과 상무기관 책임자의 합동회의에서 중앙교의회 소집여하를 적의히 결정키로 하다.
3) 전무출신 정신 반성의 건은 종법사 말씀을 받들어 전무출신 정신 반성문제는 남한강 부채정리문제부터 우선 처리한 후에 다시 거론키로 하고 처리위원을 선정하여 정신총화의 강령을 작성, 채택키로 한 바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채택된 내용은 수위단회의장에게 건의사항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교정원 기획실과 수위단회 사무처에서 연구검토하되 기획실에서 주무하여 다음 교정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하다.
4) 석탄절 관등행사에 관한 건은 관등행사 폐지문제는 당분간 기금조성문제로 관등행사를 묵인키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원칙적으로 폐지를 고수하되 교당 형편따라 부득이

한 경우는 묵인키로 하다.

5) 보안조치에 관한 건은 금번 회의내용은 특별히 보안을 유지키로 결의하다.

6) 결의문 채택의 건.

결의문

우리 교정위원들은 서울기념관 사건을 대종사님의 근본정신 해이에서 온 결과로 규정하고 이일을 보다 알찬 역사적 교훈으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조항을 결의하고 우리 전교역자의 실천강령으로 한다.

1. 우리는 대종사님의 근본정신에 돌아가 창립정신을 재발휘시킴으로써 교단 만대의 기반을 굳건히 다진다.
2. 서울기념관 사건은 이제 그 누구에게도 제도적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우리 공동의 책임으로 규정하며 총화에 바탕한 총력체제로 돌입하기로 한다.
3. 참 성직자의 생명은 수행과 봉공에 있음을 알아 총부와 기관과 지방에 한결같이 공부하는 풍토를 진작하며 봉공의 생활체제를 확립한다.
4. 선진은 진정으로 후진을 깨우치고 이끌어주고 안아주고 길러주는 어버이나 형의 정의로 돌아가고 후진은 진정으로 선진을 받들고 보필하고 따르며 바르고 정성된 간(諫)을 하는 자녀나 아우의 정의로 돌아간다.
5. 우리 전 교역자는 오직 교단과 전 교역자와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살며 괴로움과 즐거움을 같이하는 공동 운명체로 알아 상하좌우간에 일치 단결하기로 한다.
6. 우리 전 교역자는 최근 해이되어가는 창립정신과 전무출신 정신을 깊이 반성 참회하여 우리의 근본정신에 돌아가도록 한다.

제25회 원기57년(1972) 10월 16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전무출신 병약자 증가에 대한 대책을 토의한 바 ① 전무출신 각자가 후생적금에 의무적으로 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후생적금제의 광범위한 의견수합에 의한 구체적이고 타당성있는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회기에 심의하기로 한다. ② 후생적금 정관은 준비위원을 선정하여 초안하기로 하되 위원에 이철행, 이건춘, 김윤중, 정성덕, 조지성, 서경전, 송자명, 백지명교무를 정하다.

2) 반백년 사업회에 관한 건은 반백년 기념사업 추진이후 아직 미불된 자재 및 노임 등 미해결된 487만2천여원의 지불방안을 논의한 바 각 교당의 성금 미수금을 독촉하기로 하고 서울 기념관 수습위원회에 대여 해준 500만원중 150만원을 환금수입하고 수습위원회측에서 150만원을 별도 보조하여 도합 305만9천5백원을 해결키로 하다.

3) 수덕회 운영에 관한 건은 회비인상과 애경사 지출금 상향조정 등 문제를 회칙을 개정

하여 시행키로 하고 준비위원을 정하여 해결키로 하다.

4) 다대지부에 관한 건은 다대지부가 송사에 패소하여 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150만원을 각 교당 기관에 할당키로 하다.

5) 서울기념관 수습에 관한 건은 성금 미납액 수납을 위해 수납위원을 정하여 독려키로 하다.

제26회 원기58년(1973) 3월 28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재단인감사건으로 이운권 교정원장 등의 사표가 수리되어 잔임기간의 신임 교정원장에 김근수교무가 당선되었는 바 인준을 결의하다.

2) 원기58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은 예산안중 세입부족액 130만원을 각 지방의 교금에서 충당하고 모자라면 보화당에서 처리키로 하다.

3) 서울 기념회관 수습위원회 해체에 관한 건은 원기57년 1월 교정위원회에서 거교적인 서울 기념회관 수습위원회가 구성된 후 거의 일단락되었으므로 수습위원회를 해체 후 잔무는 원의회로 이관하여 처리키로 하다.

4) 수위단원 전원 사표처리에 관한 건은 재단 인감사건과 남한강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하였는 바 전 교정위원의 뜻으로 반려키로 결의하다.

제27회 (임시) 원기58년(1973) 6월 18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남한강 호안매립에 관한 건은 원기59년 2월 8일 수습위원과 서울지구 교무, 요인 합석 회의와 원기59년 2월 15일 수위단회, 원의회, 수습위원회 축소 교정위원의 연석회의 등에서 남한강 건물을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권리보장만이라도 하여야 된다는 결론에 합의를 보고 노력한 결과 원불교 재단 이사장 명의로 가용면적 1,730평의 매립허가권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추진할 경우 8천여만원의 염출문제가 과제인 바 지방이나 개별성금을 걷지않는 것을 전제로 수도원 등 다른 기관과 합력하여 추진하기로 하다.

제28회 (임시) 원기58년(1973) 10월 8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영산성지 개발의 건은 영산성지는 재가·출가 공동의 관심속에 발족해야 하므로 원기59년 중앙교의회에서 영산성지사업회를 정식으로 발족시키기로 하고 준비위원 9인을 선정하다.

2) 후생재단 발족의 건은 이듬해 3월 총회시 정식 발족시키기로 하다.

3) 서울회관 기성회의 건

4) 동화병원 운영에 관한 건은 동화병원의 운영난으로 토의한 바 법은재단과 법은회 이사진, 동화병원 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 위임하다.
5) 교정위원 자격과 운영의 건.

제29회 원기59년(1974) 3월 29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제58회 임시 수위단회에서 교정원장에 김근수, 감찰원장에 서대인을 선출한 바 교헌 제43조 4항에 의거하여 인준을 결의하다.
2) 후생재단 정관 심의의 건은 후생사업회라 명칭하고 정관을 원안대로 통과결의하다.
3) 원기5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결의하되 사소한 계수는 조정하기로 하다.
4) 영산 성지사업회 발족의 건은 중앙교의회에 상정하여 정식발족키로 하다.
5) 원기59년도 합동회갑식에 관한 건.
6) 교정심의위원회 구성의 건.
7) 석존 성탄절 행사에 관한 건은 음력 4월 8일로 하되 개인등은 지양하고 수익금은 공도사업에 사용키로 하다.
8) 교도기초훈련 과정방안 심의의 건.

제30회(임시) 원기59년(1974) 10월 31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서울회관 기성회 청산보고 및 해체에 관한 건은 서울시 흑석동 소재 남한강 호안 매립공사가 완료되어 서울시의 준공에 대한 최종결재가 되었으므로 서울회관 기성회 회칙 제20조에 정한 바에 의거 해체하되 ①소유권 등기이전 ②미불금 마무리 ③남한강 공사관계에 협조하여 주신 외부인사에 대한 답례 ④결산에 대한 감사를 필할 것 ⑤기타 잔무를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해체를 결의하다.
2) 교정위원회 특별위원 구성의 건은 상설기구로 두지말고 그 상황 따라서 구성키로 하다.
3) 합동회갑식에 관한 건은 원의회에 위임하다.
4) 경제 사업 통제의 건은 산만한 교단산업을 전반적으로 통제키로 하되 구체적 방안을 원의회에 위임하다.
5) 구조실 보수의 건은 원형대로 보수하되 특지가를 모집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신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하다.
6) 교역자 인사와 농촌 공양원의 건은 유지대책 농촌공양원 부족 등으로 농촌교화의 기피현상이 있는 바 인사행정에 있어 ① 적재적소의 순환교체 ② 초임 교역자의 농어촌 교

당배치 우선 ③현 도시교당의 부교무 농촌교당배치 ④도시교당과 농촌교당의 대우격차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전 교역자들은 이에 따르기로 하다.

제31회 원기60년(1975) 3월 29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60년도 교정방향과 원기61년 교정계획은 목표설정과 세부계획이 미비하니 보완하기로 하다.
2) 원기6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하다.
3) 아세아 종교인회를 본교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그 준비위원 구성은 원의회에 일임하되 그 준비위원회에서는 원기61년 중앙교의회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다.
4) 총부유지기금 조성의 건은 총부유지재단을 형성하기 위해 ①기성재단에 회사된 10% ②원의회의 절차를 거쳐 회사를 받는 액의 10%를 양도받기로 하고 기존의 산업기관을 그 성격에 따라 본유지재단의 기본을 삼기로 하되 그 구체적 방안과 규정은 원의회에서 마련키로 하다.
5) 구조실 보수비 책정의 건은 원기59년도 가을 구조실 보수가 결의 되었으나 특지가 발굴과 신년도 예산반영이 어려워 사실상 작업이 어려운 바 다시 토의하여 원기60년도 지방교금의 2할5부를 각지방에서 담당하고 그 이상의 경비는 각 기관에서 보조키로 하다.
6) 제3방언 추진의 건은 전북 고창소재 380정보의 간척지 방언사업이 제안된 바 기초조사위원을 원의회에서 구성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하다.
7) 사대봉공회 발족의 건은 사대봉공회 취지문과 봉공회 조직요강을 채택하고 그 정관을 작성하여 중앙교의회에 상정키로 하다.
8) 남한강에 관한 건은 기성회 해체이후 ① 무허가 건물문제 ②재산취득세 문제 ③건축문제 ④신탁은행 부채문제 등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교적 조직체 구성을 제안하였으나 남한강 매립지가 수도원 자산이므로 수도원이 주관하여 처리키로 하다.
9) 교단발전의 풍토조성의 건.
10) 근행법 대체의 건
11) 재가 교역자 실시의 건은 그 실시는 반대치 않으나 ①그 시기와 명칭 ②대상자 엄선 등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다.

제32회 (임시) 원기60년(1975) 10월 28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중앙훈련원 건축의 건은 거교단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다.

2) 수도원 육성의 건은 교역자의 연령증가에 따른 수도원 육성문제를 토의한 바 수도원에 논을 준비키로 하고 총부예산에 수도원 임원의 용금이나 휴양자 5명 이상의 식비를 예산에 책정키로 하다.
9) 남자교무, 부교무 증원의 건.
10) 생산기관 육성의 건.

제33회 원기61년(1976) 3월 29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교헌개정 기초위원 선정의 건은 원기57년 3월 정기 수위단회에서 발전하는 교세를 따라 교헌을 본교의 주체성·원만성·장래성을 담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한 바 그 진척이 부진하여 교헌개정 기초위원을 선정하기로 하고 김근수교무외 15인을 선출하다.
2) 원기61년도 예산안 심의는 예산안 수입부분중 입교금 500원책정을 종전의 200원으로 환원조정하고 부족액 350만원을 교당·기관 교금수입에서 충당키로 하였으며 총 76,242,650원을 통과 결의했다.
3) 대농장 건설에 관한 건은 산업기관육성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그 방안을 마련키로 하다.

제34회 (임시) 원기61년(1976) 10월 17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교헌개정안 심의의 건은 교헌개정 기초위원회에서 성안하고 제47회 수위단회에서 채택한 개정안을 심의한 바 일부 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여 중앙교의회에 상정키로 하다.
2) 예산안 책정원칙의 건은 다시 연구검토하여 예산책정 원칙을 수립하여 원기62년도 총회시에 제안하기로 하다.

제35회 원기62년(1977) 3월 29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6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2) 수위단원 선거
3) 헌공기금 조성의 건

제38회 원기64년(1979) 11월 17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6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원기6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2) 훈련비에 관한 건은 교당급지를 5등급으로 분류하여 책정하되 어려운 교당은 분납하도록 하고 훈련을 의무화하다.
3) 교무훈련 2부제의 건은 교무훈련을 연령 40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2차에 걸쳐 실시

키로 하다.

4) 교단의 본질적 개념확립의 건은 교단의 본질, 이념규정의 문제를 토의한 바 수위단회 전문위원에 위임하고 제2대말 총회와 소태산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준비는 교정원에 건의하여 추진과정을 차기 교정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다.

5) 서울회관 건립 추진에 관한 건은 내자를 동원하여 회관만 짓기로 하고 성금거출은 서울회관 건립추진기간중 일체 다른 모금을 금하고 서울회관 추진위원의 책임하에 총력 추진키로 하다.

제39회 원기65년(1980) 11월 22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66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

2) 제2대말 기념총회 및 소태산대종사 탄생 백주년 기념대회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3) 분과별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제40회 원기66년(1981) 11월 7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원기6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대로 승인한다.

2) 원불교체육회 발족에 대한 건은 원불교 체육회의 발족을 하도록 하되 원의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도록 하다.

3) 방송교화의 건.

4) 대각개교절 3월 26일은 음력으로서 당시 양력으로 4월 28일이며 법인절도 음력 7월 26일은 양력 8월 21일이므로 이를 정식으로 정정을 제안한 바 교정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수위단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5) 교화의 활성화를 위한 신앙의 대상에 대한 호칭의 연구에 있어 신앙의 대상에 대한 호칭, 재가교무의 호칭, 예전상의 호칭 등 제안이 있었으나 심의를 생략하다.

제41회 원기67년(1982) 11월 5일. 장소 : 중앙훈련원 대법당

1) 원기6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2) 수위단원 선거에서 남자수위단원에 이공전, 김정용, 김윤중, 이철행, 김인철, 이광정, 송천은, 문동현을 선출하였으며 여자수위단원에 김지현, 이정은, 박성경, 정진숙, 전이창, 박은국, 윤주현, 김이현을 선출하다.

3) 교헌개정안 심의에 있어 교헌 전문중 「원기원년 3월 26일」을 「원기원년 4월 28일(병진 음 3월 26일)」로 개정 결의하다.

4) 수위단원 선거법의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위단회에 건의키로 하다.

5) 중앙훈련원 옆 과수원 매입경비 조달의 건은 사업시행은 승인하되 경비조달의 문제는 원의회에 위임처리토록 결의하다.
6) 출가자 합동회갑식 개선의 건은 교정원에서 법(예전)보완을 조속히 시행토록 결의하고 새법의 보완이전에는 현재의 법에 따르기로 하다.
7) 여자교무 단독거주 지양에 관한 건은 의견을 접수하여 교정원에 건의 키로 하다.
8) 제41회 정기 교정위원회 회의록 서명인 선정의 건.

제42회 원기68년(1983) 11월 5일. 장소 :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6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에 있어 66,348,000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대로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2) 성업봉찬회 사업계획에 관한 건.
3) 영모묘원 추진에 관한 건은 여건이 어려우나 특지가 발굴은 물론 교도, 비교도를 막론하고 영모묘원 묘지에 가입시키도록 공동노력키로 결의하다.

제43회 원기69년(1984) 11월 10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원기6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안대로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2) 원기7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대로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3) 원로원 신축의 건은 성업봉찬사업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결의하다.
4) 성업봉찬 계획의 건은 총 예산을 21억으로 조정하고 각부문의 배정과 재정조달방법에 대하여 제안대로 결의하다.
5) 원불교 선영열위 이장봉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전 교정위원이 봉행위원이 되고 각 1만원이상 내기로 결의하다.
6) 원불교 군종활동 허가 청원의 건.

제44회 원기70년(1985) 11월 9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원기69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안대로 무수정 통과 결의하다.
2) 원기7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기72년도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관보조를 점진적으로 줄여갈 것을 조건부로 예산안을 무수정 통과 결의되다.
3) 원불교 예비교역자 교육개혁위원회(가칭) 발족의 건은 원불교 예비교역자 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키로하고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는 수위단회에 위임하기로 하되 교육부에서 수위단회에 상정하여 위원을 구성토록 결의하다.
4) 근검저축운동에 관한 건은 전 교단적으로 근검저축운동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행

동강령은 교정원 기획실에서 통지하며 합력하여 지켜나가기로 결의하다.

제45회 원기71년(1986) 11월 17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원기70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792,103,100원을 제안대로 승인하다.
2) 원기72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914,331,000원을 제안대로 승인하다.
3) 교단 3대 설계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은 교단3대설계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대로 승인하고 그 구성방법은 교정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결의하다.

제46회 원기72년(1987) 11월 13일. 장소 : 중앙총부 기념관

1) 원기71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839,810,595원을 제안대로 승인하다.
2) 원기7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203,024,000원을 제안대로 승인하다.
3) 교헌개정안 심의의 건은 찬·반토론 후 교헌개정안에 대한 보완을 한뒤 통과 결의하다 (보완내용 생략).
4) 석존성탄절 교금에 관한 건은 석존성탄절 교금에 한하여 총 의식수입의 20%를 교금화하기로 하다.
5) 교당교무 단독근무 해결방안 모색에 관한 건은 교당교무 단독근무 해결방안 모색을 제3대 정책 제1순위로 채택하여 실질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추진할 것을 결의하다.

6. 교정위원회법

49. 10. 16제정(교구 제10호)
57. 1. 11개정(교규 제27호)
59. 11. 5개정(교구 제32호)
62. 3. 5개정(교구 제44호)

제1조(목적) 본 법은 교헌 제60조에 의하여 교정위원회를 질서있게 운영함으로써 위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의결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구성) 교정위원회의 위원은 수위단회에서 선정한 현역 4급이상 교무와 특선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소집) 교정위원회는 교헌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한다. 소집은 늦어도 회기 20일전에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회기) 교정위원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단,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안 총괄 조정) 교정위원회의 의장은 본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총괄하고 조정 한다.

제6조(의장 대행) 교정위원회의 의장이 유고할 때에는 교정원 부원장이 의장을 대행 한다.

제7조(보고 증언 청취) 교정위원회는 의안의 성질에 따라 관계 기관장 또는 실무자에게 보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분과및 특별위원회) 교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의안 제출) 교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 5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

제10조(청원, 건의, 의결) 교정위원회는 위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의 청원 또는 건의를 접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규칙 준용) 교정위원회는 본 법에 특별히 정한 바 외는 교단 관례에 준한다.

제12조(시행)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V. 教 政 院

□ 개 관

1. 연 혁

교정원은 원기19년(1934) 불법연구회 1차개정 규약에 공부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로 발족된다. 당시의 교정원은 사업계의 업무를 총관하는 서정원과 2원을 이루는데 산하에 교무부, 연구부, 통신부, 감사부의 4부를 두어 그 업무를 분장했다.

8년후, 원기27년(1942) 규약이 다시 개정되면서 기구가 대폭 축소되어 교정원은 회무총장이 관장하는 회무원 5부에 통폐합되어 사라졌다가 원기33년(1948)에 제정된 『원불교교헌』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때는 교단의 최고집행기구인 중앙총부로서 교정원, 감찰원이 되었다. 이 때의 교정원에는 교무부, 서무부, 산업부, 재무부의 4부가 편제되고 초기의 교정원 감사부는 감찰원에 사서부와 함께 소속되었다.

당시의 2원조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왔는데 그 기능과 권한의 세부사항만이 상호조정되고 산하 부서의 분화가 교단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 왔는데 원기44년(1959)의 개정교헌에서부터는 교정원 부서의 조직을 교규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당시의 교정원의 위상은 교단 최고집행기관이었다.

원기44년(1959) 이후의 교정원 조직법에 의한 교정기구의 변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원기44년(1959)－총무, 교무, 재무, 육영, 사업의 5부로 원의회, 비서실 설치
- 원기52년(1967)－부원장제 신설
- 원기56년(1971)－기획실 신설, 사업부를 공익부로 개칭
- 원기60년(1975)－교무부를 교화부로, 육영부를 교육부로 개칭, 부원장 2인(기획·재정분담)
- 원기62년(1977)－문화부, 훈련부, 산업부 신설
- 원기66년(1981)－국제부 신설(1실9부가 됨)
- 원기67년(1982)－원의회 상임위원회 신설, 부원장 3인(국제담당 추가), 비서실을 부속실로 개칭
- 원기69년(1984)－기획위원수 조정(15인이내→19인이내)

• 원기71년(1986)－원의회의원수 조정(이사 등 당연직과 교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교역자 15인이내로)

2. 역대원장

순번	직 명	법 명	성별	재 임 기 간	비 고
1	교정원장	宋 奎	男	19. 3. 26～22. 3. 25	교무부장 겸임
2	〃	宋 道 性	〃	22. 3. 26～24. 4. 25	교무·감사부장 겸임
3	〃	柳 虛 一	〃	24. 4. 26～26. 4. 25	
4	〃	〃	〃	33. 4. 26～36. 4. 25	
5	〃	趙 甲 鍾	〃	36. 4. 26～38. 4. 25	
6	〃	金 大 擧	〃	38. 4. 26～44. 4. 25	
7	〃	李 完 喆	〃	44. 4. 26～47. 2. 22	
8	〃	朴 將 植	〃	47. 2. 23～56. 4. 14	
9	〃	李 雲 捲	〃	56. 4. 15～58. 3.	
10	〃	金 勤 修	〃	58. 3. ～67. 10.	
	부 원 장	金 允 中	〃	59. 4. ～67. 11. 5	(기획담당)
	〃	李 喆 行	〃	59. 4. ～67. 11. 8	(경제담당)
11	교정원장	金 允 中	〃	67. 11. ～	
	부 원 장	金 仁 喆	〃	67. 11. 8～	(기획담당)
	〃	柳 正 完	〃	67. 11. 8～71. 12. 19	(경제담당)
	〃	全 八 根	女	67. 11. 8～	(국제담당)
	〃	金 仁 勇	男	71. 12. 19～	(경제담당)

교정원조직규정

44. 4. 21제정(교규 제 1호)
49. 10. 16개정(교규 제 8호)
52. 10. 18개정(교규 제18호)
55. 5. 18개정(교규 제29호)
59. 4. 3개정(교규 제29호)
60. 2. 17개정(교규 제34호)
62. 3. 5개정(교규 제45호)
66. 3. 12개정(교규 제54호)
67. 10. 11개정(교규 제60호)
69. 3. 1개정(교규 제65호)
71. 4. 1개정(교규 제7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헌 제67조에 의거, 교정원 조직의 대강을 정하여 통일적이고 체계있는 교정수행을 목적한다.

제2장 교정원장

제2조(직권) ①교정원장은 종법사의 명을 받아 교정원 각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교정원 산하 각

법인 기관·단체·사업회·교구·교당·총부출장소의 업무를 감독하며 집행 각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교정원장은 각 법인의 이사장이 된다.

제3조(의안제출·교정보고) 교정원장은 수위단회와 중앙교의회에 대하여 법안과 예산안 기타 의안을 제출하고 교정에 관하여 보고한다.

제4조(시행세칙 제정) 교정원장은 교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 규칙으로서 일반교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할 수 없다.

제5조(긴급처리) 교정원장은 수위단회·교정위원회·중앙교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긴급을 요할 때에는 원의회의 임시 의결로서 처리하고 차기 해당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부속실) 교정원장의 비서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부속실을 둘 수 있다.

제7조(부원장) ①교정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약간인의 부원장을 둘 수 있다. 부원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업무의 성격과 한계는 따로 정한다. ②교정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제3장 제11조에 규정한 부서의 순위에 따라 부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8조(기획위원회) ①교정원의 종합계획수립과 집행각부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교정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정원장 밑에 기획위원회를 둔다. ②기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정원 부원장 중에서 한다. ④기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령으로 정한다.

제9조(경제금융자문위원회) ①교정원장의 경제금융정책 시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교정원장 밑에 경제금융자문위원회를 둔다. ②경제금융자문위원회의 업무는 기획실에서 관장하며, 경제·금융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교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획실) ①교정원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실을 둔다. ②기획실장은 기획위원회와 경제금융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예산편성과 인력수급계획·교정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기획실장은 기획위원회와 경제금융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장 집행각부

제11조(집행각부) 교정원장 관리하에 다음의 집행 각부를 두고 부에 부장 1인을 둔다. 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교화부 3. 재무부 4. 교육부 5. 훈련부 6. 문화부 7. 산업부 8. 공익부 9. 국제부

제12조(총무부장 사무) 총무부장은 교정원의 서무·문서·회의·인사·상벌·처우·법제·공보·선거·외교·의전·교보간행 및 교무자격검정과 교도사업성적·전무출신·거진출진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제13조(교화부장 사무) 교화부장은 교화·의식·교서 및 교재편집·교화단관리·교서보급·법위사정 및 교리·교화연구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제14조(재무부장 사무) 재무부장은 본교의 교산 및 재단관리, 각 교구 교당 기관의 예산 결산과 총부의 경리회계·각종 금융·건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제15조(교육부장 사무) 교육부장은 교육·육영·장학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제16조(훈련부장 사무) 훈련부장은 훈련정책 수립과 각급 훈련기관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제17조(문화부장 사무) 문화부장은 문화·학술·예술·홍보·출판·방송·체육·사료 및 사적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제18조(산업부장 사무) 산업부장은 농·공·상의 산업진흥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제19조(공익부장 사무) 공익부장은 보육·양로·후생·요양·보건·보존·원호 및 사회봉사에 관한 사무

를 주관한다.

제20조(국제부장 사무) 국제부장은 해외교화와 교서번역·발행·국제교류 및 외교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제21조(각부장의 기능) 집행 각부의 장은 교정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사무에 대하여 지방 및 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책임) 집행 각부의 장은 주관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주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무로써 2부이상에 관계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교정원장이 그 주관을 결정한다.

제23조(법안제출) 집행 각부의 장은 주관사무에 대하여 법안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등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법안을 작성하여 교정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4조(집행각부의 자문위원) 집행 각부의 장은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5조(사업회) ①집행 각부는 소관업무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회를 둘 수 있다.
②사업회의 의결 및 집행사항은 교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장 원 의 회

제26조(구성) 원의회는 매년도 초에 교정원장·부원장·기획실장·집행 각부의 장·종교 및 학원재단 이사 등 당연직과 교정원장이 필요로하는 교역자 15인이내의 의원을 합하여 구성한다.

제27조(기능) 원의회는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3급, 4급교역자 인사임면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법인 및 각 사업회에 관한 중요사항 4. 교화·법제·재정·장학·요양에 관한 중요사항 5. 교당·선교소·기관·단체의 신설·승격·폐합·분치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의별 및 회기) 원의회는 정기원의회와 임시원의회가 있다. 정기원의회는 매년 4월과 1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원의회는 교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9조(소집) 원의회는 교정원장이 소집한다.

제30조(의장) 원의회의 의장에는 교정원장이 이에 당하고 의장은 의안을 총괄 조정한다.

제31조(정족수) 원의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유고할 때에는 타 의원이나 또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출석케 할 수 있다.

제32조(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회는 원의회원 중에서 교정원장·부원장·기획실장·집행 각부의 장과 원의회에서 선정한 5인 이내의 위원을 합하여 구성한다.

제33조(상임위원회 기능)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원의회 의결사항 전반에 걸쳐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는 교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제35조(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교정원장이 당한다. 교정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부원장이 대행한다.

제36조(재가집행) 원의회에서 의결된 중요한 사항은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37조(시행) 이 규정은 원기68년(1983)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71. 4. 1).

교정원직제규칙

50. 1. 15제정(교령 제 3호)
57. 11. 10개정(교령 제15호)
67. 10. 11개정(교규 제61호)
71. 4. 1개정(교규 제75호)

제1장 총 칙

제1조(제정) 이 교정원 직제는 교헌 제66조에 의한 교정원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교헌 제67조의 정한 바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교정통리감독) 교정 전반에 관한 사무는 교헌 제69조의 정한 바에 따라 교정원장이 통리 감독한다.

제3조(부속실) 부속실에는 실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기 획 실

제4조(직제) 교정원 조직규정 제10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이에 기획실 직제를 정한다.

제5조(임원) 기획실에 실장 및 차장 이외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과장 2. 주임 3. 주사 4. 서기

제6조(과의 설치) 기획실에 기획조정과, 통계조사과를 둘 수 있다.

제7조(과별직제) 기획실 각과의 직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기획조정과는 교정원 각부의 기획조정, 교정종합계획, 예산편성 및 인력수급계획, 교정원장 지시사항에 대한 연구, 기획, 기획위원회 등 각종 회의 보좌,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분장한다.
2. 통계조사과는 교정통계, 행정감사, 정보·여론조사, 기획자료 수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임원사무) 과장·주임·주사·서기는 각기 상사의 명을 받아 수임사무에 전임한다.

제9조(연구원) 기획위원회와 경제·금융자문위원회 및 기획실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간인의 상임 및 비상임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자료실) 기획실에 교정을 위한 자료실을 둘 수 있다.

제3장 총 무 부

제11조(직제) 교정원조직규정 제12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이에 총무부 직제를 정한다.

제12조(임원) 총무부에 부장 및 차장 이외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과장 2. 주임 3. 주사 4. 서기

제13조(과의 설치) 총무부에 총무과, 인사과, 법제과를 둘 수 있다.

제14조(과별직제) 총무부 각과의 직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총무과는 교정원의 서무·문서·각급회의·각급선거, 기밀관계서류 및 중요인장관수, 선교소 설치 및 교당 승격인가, 공보, 청원, 諸증명발급, 수덕회·원덕회·정토회·정화단 관리업무, 교보간행, 외교, 의전, 응접, 기타 부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무를 분장한다. 2. 인사과는 인사 임면, 상벌, 교무자격검정, 영전수여, 사면복권, 임원사무훈련, 임원의 조행 및 경력조사, 교도의 사업성적사정, 전무출신 연금 및 전무출신 일체 관계, 거진출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3. 법제과는 교헌, 교규, 교령, 시행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해석, 적용, 공포 등 자료 수집과 원안 작성 및 보존, 교정원 각부의 법제 자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5조(임원사무) 과장, 주임, 주사, 서기는 각기 상사의 명을 받아 수임 사무에 전임한다.

제4장 교 화 부

제16조(직제) 교정원조직규정 제13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이에 교화부 직제를 정한다.

제17조(임원) 교화부에 부장 및 차장 이외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교령 2. 교감 3. 순교감 4. 예감 5. 과장 6. 순교무 7. 예무 8. 주임 9. 주사 10. 서기

제18조(과의 설치) 교화부에 교화과, 교무과, 편수과, 의식과를 둘 수 있다.

제19조(과별직제) 교화부 각과의 직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화과는 일반·청소년 및 각종 특수교화, 교화단관리, 순교사무, 소관기관 지도 감독과 부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무를 분장한다 2. 교무과는 입교사무 및 교적부 관리, 법위사정, 교화통계사무, 교서보급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3. 편수과는 교서의 편찬과 교재의 검인정, 교화교재 편찬 발행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4. 의식과는 의식, 예법보급, 각종 법회, 기념행사 주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임원사무) ①교령은 총부·교당의 교화와 의식에 대한 부장의 자문이 되며, 교감·순교감·순교무는 부장의 지휘를 받아 총부 및 교당 교화에 전임한다 ②예감은 부장의 지휘를 받아 의식을 주관하며, 예무는 부장, 예감의 명을 받아 의식사무에 전임하며 과장, 주임, 주사, 서기는 각기 상사의 명을 받아 수임사무에 전임한다.

제5장 재 무 부

제21조(직제) 교정원 조직규정 제14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이에 재무부 직제를 정한다.

제22조(임원) 재무부에 부장 및 차장이외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국장 2. 과장 3. 주임 4. 주사 5. 기사 6. 감원 7. 서기 8. 간사 9. 내무원

제23조(과의 설치) ①재무부에 재무과, 관리과, 법인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법인사무국에는 종교법인과와 학교법인과를 둘 수 있다.

제24조(과별직제) 재무부 각 과의 직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재무과는 교단의 금융, 예산집행 및 결산, 기타 부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무를 분장한다 2. 관리과는 교단의 각종 건축, 시설, 총부의 도량수호 및 관리, 총부살림을 분장한다 3. 종교법인과는 종교법인과 복지법인 기타 법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4. 학교법인과는 학교법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25조(임원사무) 국장, 과장, 주임, 주사, 기사, 감원, 서기, 내무원은 각기 상사의 명을 받아 수임사무에 전임한다.

제6장 교 육 부

제26조(직제) 교정원조직규정 제15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이에 교육부 직제를 정한다.

제27조(임원) 교육부에 부장 및 차장이외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과장 2. 주임 3. 주사 4. 서기

제28조(과의 설치) 교육부에 교육과와 장학과를 둘 수 있다.

제29조(과별직제) 교육부 각과의 직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교육과는 육영장학생 선발 및 양성, 교립학교 종교교육 및 예비교역자교육에 관한 업무와 부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무를 분장한다. 2. 장학과는 장학회원, 장학재단육성 및 타자녀 교육장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30조(임원사무) 과장, 주임, 주사, 서기는 각기 상사의 명을 받아 수임사무에 전임한다.

제7장 훈 련 부

제31조(직제) 교정원 조직규정 제16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이에 훈련부 직제를 정한다.

제32조(임원) 훈련부에 부장 및 차장 이외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과장 2. 주임 3. 주사 4. 서기

제33조(과의 설치) 훈련부에 훈련과를 둔다.

제34조(과별직제) 훈련과는 훈련정책 수립과 각종 훈련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제35조(임원사무) 과장, 주임, 주사, 서기는 각기 상사의 명을 받아 수임 사무에 전임한다.

제8장 문 화 부

제36조(직제) 교정원 조직규정 제17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이에 문화부 직제를 정한다.

제37조(임원) 문화부에 부장 및 차장이외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과장 2. 주임 3. 주사 4. 서기

제38조(과의 설치) 문화부에 문화과, 홍보과를 둘 수 있다.

제39조(과별직제) 문화부 각과의 직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문화과는 문화, 학술, 예술, 체육, 문화기관 지도감독, 사료 및 사적관리, 도서관리, 기타 부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무를 분장한다 2. 홍보과는 홍보, 방송, 출판, 선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40조(임원사무) 과장, 주임, 주사, 서기는 각기 상사의 명을 받아 수임사무에 전임한다.

제9장 산 업 부

제41조(직제) 교정원 조직규정 제18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이에 산업부 직제를 정한다.

제42조(임원) 산업부에 부장 및 차장이외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과장 2. 주임 3. 주사 4. 서기

제43조(과의 설치) 산업부에 산업과를 둔다.

제44조(과별직제) 산업과는 농공상의 산업진흥과 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45조(임원사무) 과장, 주임, 주사, 서기는 각기 상사의 명을 받아 수임사무에 전임한다.

제10장 공 익 부

제46조(직제) 교정원 조직규정 제19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이에 공익부 직제를 정한다.

제47조(임원) 공익부에 부장 및 차장이외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과장 2. 주임 3. 주사 4. 서기

제48조(과의 설치) 공익부에 공익과와 후생과를 둘 수 있다.

제49조(과별직제) 공익부 각 과의 직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공익과는 보육, 보도, 양로, 원호와 사회봉사, 봉공회 및 소관기관 지도감독과 부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무를 분장한다. 2. 후생과는 후생, 요양, 보건위생, 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0조(임원사무) 과장, 주임, 주사, 서기는 각기 상사의 명을 받아 수임 사무에 전임한다.

제11장 국 제 부

제51조(직제) 교정원 조직규정 제20조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이에 국제부 직제를 정한다.

제52조(임원) 국제부에 부장 및 차장이외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교령 2. 교감 3. 순교감 4. 과장 5. 순교무 6. 주임 7. 주사 8. 서기

제53조(과의 설치) 국제부에 국제과와 번역과를 둘 수 있다.

제54조(과별직제) 국제부 각 과의 직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국제과는 국제교화, 국제교류 및 대외국제훈련, 해외교구 교당 지도 감독 및 부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무를 분장한다. 2. 번역과는 국제교화를 위한 교서, 교재번역 및 발행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55조(임원사무) ①교령은 국제교화 및 의식에 대한 부장의 자문이 되며 교감, 순교감, 순교무는 부장의 지휘를 받아 해외교구, 교당 교화에 전임한다 ②과장, 주임, 주사, 서기는 각기 상사의 명을 받아 수임사무에 전임한다.

부 칙

제56조(시행) 이 규정은 원기68년(1983)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71. 4. 1).

3. 교정원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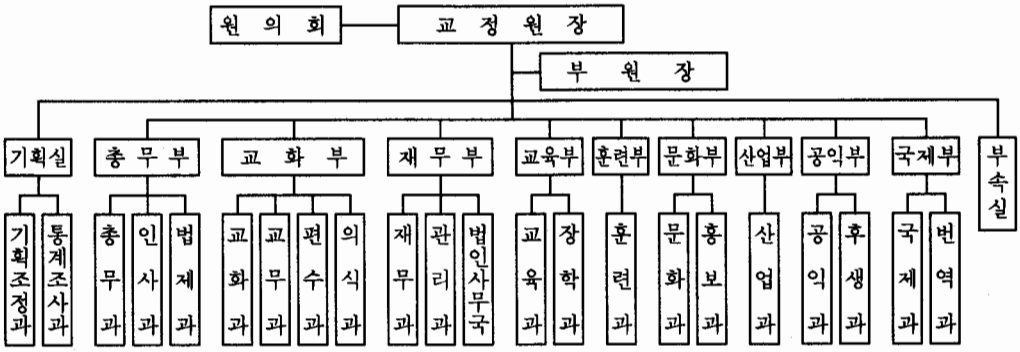

1. 기 획 실

기획실은 원기44년(1959) 4월 21일자로 공포된 교규 제1호 교정원조직법에 의해 비서실로 비롯되었다. 당시에는 비서실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총무부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였으며 원기56년(1971) 제41회 임시수위단회에서 비서실을 기획실로 개칭하고 교단의 장기계획 수립과 교정원 종합계획 수립, 집행 각부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을 주요 업무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정식 발족되었다.

그 후 기획실은 교단조직의 분화발전에 발맞추어 교단주요 기획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원기

67년(1982)부터는 그간의 총무부장 또는 수위단회 사무처장과 겸임 발령했던 기획실장을 단독실장으로 사령함으로써 기획업무의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며 여론수렴을 위한 각종 공청회를 여는 한편 제반기획의 기본이 되는 교단통계를 발간하고 원기70년(1985)부터는 총무부로부터 행정감사 업무를 인수하였으며 특히 원기71년(1986)부터 2년간은 교단 제3대 설계특별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의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교단 제3대 설계안을 작성, 수위단회의 결의를 통해 교단운영지침으로 채택되는 과업을 이루었다.

가. 직제 및 주요기능

기획실에는 기획조정과와 통계조사과의 양과가 있으며 기획위원회와 경제금융자문회위원회가 있어 업무를 분장하는 바 이를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 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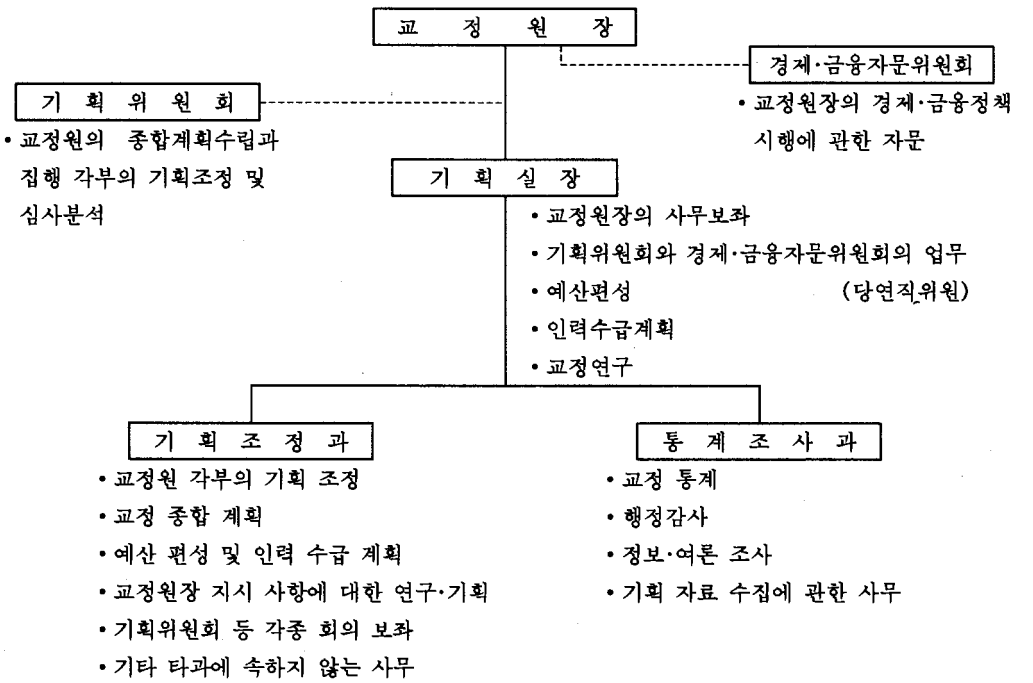

나. 연 혁

44. 4.21 원기44년 4월 21일자로 공포된 교규 제1호「교정원 조직법」제7조에 교정원에 비서실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이후 잠정적으로 총무부에서 업무를 대행하여오다.

56. 3. 1 제41회 임시 수위단회에서 교정원 조직법을 개정(비서실을 기획실로)
5.26 기획위원 위촉(유기현교무외 4명)
9.10 기획위원 위촉(김성철교무외 10명)
59. 3.27 제58회 정기수위단회에서 교정원 조직법 개정「부원장은 둘 수 있다」로
4. 1 기획담당 부원장 부임
59. 6. 4 기획위원 위촉(김성철교무외 14명)
62. 6. 6 종법사 임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에서 브리핑
9.21 교정원 행정실무자(과장급)를 대상으로 기획간담회 실시
67. 4 교정 각부분 공청회 개최
10. 교정 각부문 공청보고서 발행
11. 57~66까지의 10년간 교단 통계부 발행
68. 1. 7 기획위원 위촉(유기현교무외 17명)
1.11 기획위원회 개최
1.29 기획위원회 규정 원의회에서 통과
2. 3 교정원장 연두순시(현황보고)
2.12 비상임 연구원 위촉(박윤철교무외 5명)
3. 3 재정금융위원회 규정통과
3.17 기획위원회 개최
4.15 원기67년도 통계연보 발간
5.17 제3회 기획위원회 개최
9.19 제4회 기획위원회 개최
9.26 행정사무감사
10.11,17 예산위원회(1차, 2차)
69. 1.19 대각개교절 행사 공청회
2.29 김복환, 한길량, 손정윤교무 기획위원 위촉
3. 2 기획위원회
4.19 원기68년도 통계연보 발간
5.15 전무출신 개인카드 정리
5.23~26 1/3분기 교정 중요사업 보고 및 평가회
7. 2 행정 사무감사 받음
10.18~30 제1,2차 예산위원회
10.22 기획위원회
70. 5.20 원기69년도 통계연보발간(부록포함)
6.10~71. 7.30 원불교인의 의식조사(설문지) 실시
7. 6 행정감사실시
9.27 기획위원회 개최
10.15 예산위원회(1,2차) 개최
11. 9 교정안내(1,2권) 발행

71. 4. 1 제107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교정원 직제 개정
- 기획조정과－종법사 지시사항, 부원장 비서사무(삭제)
- 통계조사과－행정감사 삽입

3.17～5.20 원기70년도 교단 통계 발간
6.12～8.10 교화관계 여론조사(1, 3, 4, 5차 교무대상) : 중요교정에 관한 여론조사
6.27～7. 5 기관·단체교정지도 실시(73개기관)
7. 4～9. 5 연도별 전교당 교화·총무·재무 관계조사 : 종합계획 기초자료
7.21～8.10 2대말과 3대를 향한 교단 여론조사(4,5차 교무훈련시) : 교단 현실진단을 위한 여론조사
9. 1～9. 3 교당교정지도 실시에 따른 교육
9. 5～9.16 교당교정지도 실시(6개교구 130개교당) : 부산동부·부산서부·마산·진주·남원·전주교구
10. 2～11. 4 원기72년도 예산계획 수립 및 예산서 작성 발간
10.6～10.15 2대말 결산을 위한 통계적 자료모음집 발간
10.22～10.29 원기72년도 교정안내 작성
72. 3.14～6.25 원기71년도 교단통계 작성 및 발간
4.13 원기72년도 감찰원 정기감사
8.22 교정지도를 위한 교정원 자체교육
8.25～ 9. 3 원기72년도 교당교정지도 실시. 6개교구(광주·군산·목포·영광·이리·정주) 118교당
9.15～10.31 원기73년도 예산계획 수립 및 예산서 작성 발간
10.20～10.31 원기72년도 교정보고 및 시책 작성 발간
11.26～11.28 제주교구(11개교당) 교정지도 실시
12. 3～12. 9 원기72년도 기관·단체 교정지도 실시. 36개 기관(보화당, 자선·문화기관, 기타 등)

다. 역대임직원

번호	직 책	법 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실 장	金 中 默	男	1919. 6. 22	56. 5. ～58. 3. 1	
2	과 장	權 峻 圓	〃	1940. 4. 26	〃	
3	주 사	李 雲 淑	女	1947. 3. 26	56. 5. ～58. 2.	
4	실장서리	張 正 一	男	1926. 5. 28	57. 3. ～58. 2.	
5	주 사	金 主 圓	〃	1948. 10. 10	58. 8. ～60. 3.	
6	실 장	金 仁 喆	〃	1934. 12. 4	59. 3. 1～60. 3.	
7	주 사	成 道 鍾	〃	1950. 7. 17	59. 7. 24～61. 3.	
8	실 장	李 普 圓	〃	1934. 9. 13	60. 4. 20～62. 4. 1.	
9	과 장	羅 道 國	〃	1945. 8. 27	〃	
10	주 사	崔 應 眞	〃	1946. 12. 24	〃	
11	과 장	李 聖 恩	〃	1942. 5. 17	62. 4. 25～63. 12.	

12	주 임	金 主 圓	男	1948. 10. 10	62. 4. 25~64. 3.	
13	주 사	安 道 淳	〃	1952. 12. 2	62. 4. 25~63. 3.	
14	〃	金 道 心	女	1952. 8. 3	62. 4. 25~69. 1. 23	66. 주임
15	실 장	金 仁 喆	男	1934. 12. 4	63. 2. 23~70. 12.	
16	차 장	孫 正 允	〃	1937. 6. 14	64. 8. 20~67. 6. 2	
17	과 장	金 主 圓	〃	1948. 10. 10	65. 3. 18~67. 6. 2	
18	〃	崔 敬 道	〃	1950. 10. 4	67. 12. 9~69. 1. 23	
19	주 사	李 道 田	〃	1955. 3. 26	68. 1. 15~71. 2	
20	서 기	朴 眞 性	〃	1963. 9. 7	68. 1. 4~68. 7.	
21	과 장	李 圓 京	〃	1946. 2. 2	69. 1. 10~	
22	주 사	白 心 德	女	1956. 3. 23	68. 1. 10	
23	서 기	元 益 善	男	1965. 10. 12	69. 1. 15~70. 4.	
24	〃	李 常 勤	〃	1964. 4. 24	70. 4. 15~71. 12.	
25	주 사	梁 海 寬	〃	1957. 3. 20	71. 3. 10~	
26	실 장	趙 正 勤	〃	1934. 12. 6	72. 1. 10~	
27	서 기	洪 道 玄	〃	1966. 10. 7	72. 1. 23~72. 11.	
28	과 장	成 時 鍾	〃	1952. 4. 14	72. 1. 10~	
29	서 기	吳 仁 圓	〃	1965. 11. 26	72. 12. 1~	

라. 연대별 교정지침 및 시책모음

*** 원기62년도 교정지침**

1) 내실 위주
2) 저력 확보
3) 세근 확충

○ 교정 중요 시책

8대기구로 8대사업회를 조직하여 8부로 교화를 하자

1) 법위 항상
2) 훈련강화
3) 유지재단 확립(내부충실)
4) 4대봉공회 육성(외부활동)
5) 해외 교화

○ 교정 목표

1) 자신훈련으로 마음유신
2) 교도훈련으로 교단유신
3) 국민훈련으로 국가유신
4) 인류훈련으로 세계유신

***원기63년도 교정지침**

1) 내실 위주
2) 저력 확보
3) 세근 확충

○ 교정원 행정시책

8대기구로 8대사업회를 조직하여 8부로 교화를 하자.

1) 법위 향상
2) 훈련 강화
3) 유지재단 확립(내부충실)
4) 4대봉공회 육성(외부활동)
5) 해외 교화

***원기64년도 교정 지침**

1) 내실 위주
2) 저력 확보
3) 세근 확충

○ 교정원 행정시책

8대기구로 8대사업회를 조직하여 8부로 교화를 하자.

1) 법위 향상
2) 훈련 강화
3) 유지재단 확립(내부충실)
4) 4대봉공회 육성(외부활동)
5) 해외 교화

*** 원기66년도 교정지침**

1) 내실 위주
2) 저력 확보
3) 세근 확충

○ 8대교정 중요시책

1) 법치교단 체제 확립
2) 법위 향상
3) 훈련 강화
4) 적극적인 교화운동 추진(국제교화 개척)
5) 교역자 개발 육성
6) 총부 유지기반 확립
7) 4대봉공회 육성
8) 서울회관 건립추진

○교정 세부시책

1) 8대 운동
   (1) 법위 향상운동
   (2) 교도불리기 운동
   (3) 교당불리기 운동(연간 100개교당 목표)
   (4) 교역자 불리기 운동
   (5) 교전 읽히기 운동(교서보급운동)
   (6) 묘위모집 운동
   (7) 총부구내 정화운동
   (8) 영산성지 장엄운동

2) 훈련체제 및 훈련 강화
(1) 각 훈련원 체제 확립
(2) 졸업생 훈련 강화
(3) 교역자 재훈련 강화
(4) 교도 상시훈련의 강화
3) 총부 유지기반 육성
(1) 영모원 사업 강화
(2) 소비조합 육성
4) 인력개발 육성 및 활용
(1) 기초인재 발굴
(2) 교육과정 합리화
(3) 기성인재 및 재가교역자 개발
5) 행정 체제 및 사무의 합리화
(1) 교정원 조직 및 직제정비
(2) 교구체제 및 교당운영의 합리화
(3) 사무의 과학화 간소화(처무규정정비)
6) 조직교화 및 정책교화에 의한 적극적인 교화활동 전개
(1) 교구 연합활동 강화
(2) 교당 교화단활동 강화
(3) 대사회 교화활동 강화(도덕정신 회복 운동)

*** 원기67년도 교정지침**

1) 내실 위주
2) 저력 확보
3) 세근 확충

○ 8대교정 중요시책

1) 법치교단 체계 확립
2) 법위향상
3) 훈련강화
4) 적극적인 교화운동 추진(국제교화개척)
5) 교역자 개발 육성
6) 총부 유지기반 확립
7) 4대봉공회 육성
8) 서울회관 건립 완공

2. 총 무 부

교정원 총무부는 원기9년(1924) 불법연구회 창립당시의 서무부에 연원을 댈 수 있다. 당시의 담당사무는 회중의 법제와 문서사무, 인사관리사무 등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원기19년(1934) 교정·서정 양원으로 나뉠 때는 서정원의 수석부서였다.

원기27년(1942) 제2차 개정 규약에는 총무부로 개편되어 중앙총부 5부서의 수석부가 되었으며 원기33년(1948) 원불교교헌 제정시에는 교정·감찰 양원제중 교정원 제2부서로 다시 서무부가 되었다가 원기44년(1959) 제1차 교헌개정시 총무부가 되어 교정원 수석부의 위상을

다시 찾아 오늘에 이르렀다.

가. 직제 및 주요기능

총무부에는 총무과, 인사과, 법제과가 있으며 각과의 분장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무과 : 교정원의 서무·문서·각급회의·각급선거, 기밀서류 및 인장관수, 선교소 설치 및 교단승격인가, 공보, 청원, 재증명발급, 수덕회·원덕회·정토회·정화단 관리업무, 교보간행, 외교, 의전, 응접, 기타 부내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② 인사과 : 인사임면, 상벌, 교무파견결정, 영전수여, 사면복권, 임원사무훈련, 임원의 조행 및 경력조사, 교도의 사업성적사정, 전무출신연금 및 전무출신 관련일체사무, 거진출진에 관한 사무

③ 법제과 : 교헌·교규·교령·시행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해석, 적용, 공포 등 자료수집과 원안작성 및 보존, 교정원 각부의 법제 자문에 관한 사무

이상의 직제에 따른 총무부의 현행 직제도는 다음과 같다.

〈직제표〉

유관위원회
-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위원회
- 교무자격고시 검정위원회
- 교도사업성적 사정위원회
- 교도법호 사정위원회
- 정남·정녀 심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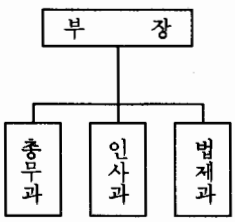

유관기구·단체
- 중앙교의회
- 원의회
- 수덕회
- 원덕회
- 후생사업회

나. 연 혁

9. 4.29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10. 8.	학력고시 학위등급. 사업고시 사업등급법 제정 발표
12. 1.	유공인사대우법 발표(회보 49호)
12. 4.	취지규약서 발행
13. 3.26	제1회 총회(총대회)
14. 4.	은부모 은자녀 법 제정
19. 5.	불법연구회 규약 발행
27. 4.	직제개편으로 총무부 발족. 초대부장 박장식교무 취임
28. 6. 7	정산송규교무 종법사로 취임.
32. 1.16	문교부로부터 재단법인 인가.
4.27	교명을 원불교로 선포

32. 4. 직제 개정으로 당부 업무가 교정원 서무부, 감찰원 사서부·감사부 등으로 이관됨
33. 4.26 교헌제정 공포
4.27 제1회 중앙교의회 개최(의장 유허일, 부의장 윤광언)
4. 성탑봉안 성업봉찬회 발족
34. 6.21 제1회 원의회 개최
38. 4.26 제1대 성업봉찬회 개최
39. 1.16 교헌연구회 발족
4. 제1회 교무연합회 개최
42. 4.26 법훈증 증여식 거행
43.11. 제5차 세계불교대회(방콕, 대표파견)
44. 4. 총무부 기구 재발족(직제 개정으로 제1대 총무부장 정광훈교무 취임)
정산 송규교무 종법사 추대. 이완철 교정원장 취임. 이공주 감찰원장 취임. 조회석 중앙교의회의장 취임. 박만성·문동현 중앙교의회 부의장.
제2대 사업성적 개시
45. 1.29 기획위원회 발족
46. 1.23 신『원불교교헌』발행(교단기구 일부개편)
47. 2. 보건사회부에 사회단체 등록(등록번호 197호)
47. 3. 대산종법사 취임. 박장식 교정원장 취임. 이완철 감찰원장 취임. 문동현 중앙교의회 의장 취임. 박만성 중앙교의회부의장 취임.
12. 3 고시위원회 발족
49. 3. 교보취급조례 제정
3. 개교55주년 기념사업회 발족
5. 『교보』발간
12. 고시 시행세칙 제정
50. 2. 제1회 교역자자격 검정고시 실시
2. 교정원 직제제정, 처무규정 제정
3. 대산종법사 추대. 박장식 교정원장 취임. 이공주 감찰원장 취임. 문동현 중앙교의회 의장 취임. 박만성·박동현 중앙교의회부의장 취임.
4.12 서울총부출장소 설치
50. 9. 전무출신 요양규정 제정
12. 한국종교인협회 가입
52.10. 인사임면 규정제정, 도량상규 제정, 교도사업성적 사정규정 제정
53. 5. 문동현 중앙교의회의장 취임. 박만성·박동현 중앙교의회부의장 취임.
11. 전무출신 규정 제정
12. 『원불교 헌규』발간
54. 3. 교보 제60호로 휴간
9. 수위단회 사무처 독립규정 공포
55. 1. 직인 규정 제정

55. 5. 원로예우 규정 제정
12. 5 교정원장 박장식교무 정부에서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기획실 설치
56. 3.31 대산종법사 추대. 이운권 교정원장 취임. 서대인 감찰원장 취임. 중앙교의회의장 문동현 취임. 박동현·황도영 중앙교의회부의장 취임.
6.15 교육연구심의회 규정공포, 편수위원회 규정공포, 동화병원 운영위원회 규정공포
8. 1 교화재단 정관공포, 기강협의회 규정공포
10. 7 개교반백년 기념대회 거행
57. 1.30 교도 법호증여 규정 공포
58. 3. 김근수 교정원장 취임.
5. 3 한국불교회 가입
6. 미국 원불교 법인체 인가 및 재단이사회 발족
59. 1. 4 교화연구소 규정공포
2.17 교정원 조직법 개정(제34호)
3.30 김근수 교정원장. 서대인 감찰원장 취임. 중앙교의회 의장 문동현. 부의장 박동현·김정용 취임. 영산 성지사업회 발족
4. 제1회 총부직원 사무훈련 실시
4. 3 교정원 조직법 개정(교규 29호), 교정원 조직법 개정(교규 30호), 인사임면 규정 개정(교규 31호)
59. 6. 4 남자정화단 결성
8.14 대산종법사 천도교 방문
10.27 여자정화단 선서식 거행
11. 5 교정위원회법 개정(교규 32호), 교역자 고시규정개정(교규 33호)
12. 5 김정용교무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문동현 중앙교의회의장 대통령표창
8.26~30 제1회 중앙총부 간사훈련 실시
60. 캐나다 원불교 법인 설립(8.22)
1.21 한중종교인 협의회 참석(박광전·문동현)
2.17 교당규정 제정(교규 35호)
2.24 뉴욕 시카고에 원불교 법인체 설립
4. 제2회 직원 사무훈련 실시
4.12 사적 및 유물관리법 제정(교규 36호)
9.17~28 중앙총부, 기관, 전교당 사무감사 실시
60.10. 중간사업보고 평가회 및 상록수교역자 표창식 거행
10. 세계평화 특별기원 및 성지순례
10. 9 출가·재가 합동회갑식 거행
11. 교규활동규정 제정,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규정 제정
11. 1 교규활동규정 제정(교령 제18호)
11.28~12.26 중앙총부, 기타 전교당 사무감사 실시.
12. 2.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규정 제정(교령 제19호)

60.12. 5 감사실시
61. 4.20 정남 정녀규정 제정(교규 제37호)
11. 6 교무자격 검정규정 개정(교규 제38호). 교무자격 규정 개정(교규 제39호) 원불교 교육법 제정(교규 제40호). 원불교교헌 3차 개정
62. 3. 5 종법사 선거법 개정(교규 제41호). 수위단원 선거법 개정(교규 제42호). 중앙교의회법 개정(교규 제43호). 교정위원회법 개정(교규 제44호). 교정원 조직법 개정(교규 제45호). 교당규정 개정(교규 제46호). 교구규정 개정(교규 제47호)
3.15 교화단규정 개정(교규 제48호)
12.10 수위단회법 개정(교규 제49호)
3.15 원불교 교보 제1호 발행
63. 3.27 원불교 교보 발행조례(교령 제21호)
3.27 제167회 임시원의회 개최
7.21 제168회 원의회 개최
9. 4 제169회 원의회 개최
9. 7~23 총부·기관 사무지도 감사
10.19 제170회 원의회 개최
11. 4 제37회 정기교정위원회 개최
11. 5 제25회 정기중앙교의회 개최
11.13 제171회 원의회 개최
12. 8 제172회 원의회 개최
63.12. 8 선진문집 편찬위원회 규정제정
12.19~23 원기63년도(제15기) 교무자격 검정고시 실시
64. 1.15 원기64년도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
1.25 제173회 원의회 개최
2.22 제174회 원의회 개최
3.10 제175회 원의회 개최
3.10 영모원 정관 제정
5. 4~ 6. 4 교당 사무감사 실시
8.21 제176회 원의회 개최
10.18 제177회 원의회 개최
11. 3 제38회 정기교정위원회 개최
11. 4 제26회 정기중앙교의회 개최
11.19 훈련법 제정, 교도법위 사정규정 개정
11.16 사업성적 사정위원 선정. 김근수·서대인·박광전·이공주·이병은·김윤중·이공전·박은국·전이창(9인)
12.19~22 64년도(16기) 교무자격 검정고시 실시
65. 1.12~14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 실시

65. 3. 6 교무자격 검정고시위원 선정. 안이정·김정용·정진숙·전이창·김인철·유기현·한정석·이중정·박재현·전종철·이보원(11인)
3. 6 전형검정위원 선정 : 수위단원 전원. 소위원회 : 김근수·안이정·이공전·김윤중·이공주·서대인·양도신(7인)
5. 9 제180회 원의회 개최
6.16 제181회 원의회 개최
6.17 수위단회 사무처규정 개정. 교도법호증여 규정 개정
6.24 제182회 원의회 개최
7.31 제183회 원의회 개최
8.25 제184회 원의회 개최
9.29 법호사정위원 선정. 김근수·서대인·김윤중·이철행·이공전(5인)
법제정비위원 구성. 지도위원—박광진·김근수·서대인·김윤중·이공전(5인), 실무위원—김인철·이보원·황직평·전종철·이광정·손정윤·김주원(7인)
10.21 제185회 원의회 개최
진학심의규정 제정
11.20 정남·정녀 정식서원 선서
65.11.22 제39회 정기교정위원회 개최
11.23 제27회 정기중앙교의회 개최
12. 원기65년도(제17기) 교무자격 고시검정 실시
66. 1.12 제186회 원의회 개최
1.21~23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
1.27 제187회 원의회 개최
3.12 교정원 조직법 개정, 재가교무규정 개정
5. 7 제188회 원의회 개최
7. 5 원덕회 창립
7.11 제189회 원의회 개최
8.13 거진출진 규정 제정
8.28 제190회 원의회 개최
9.14~26 행정감사 실시
9.29 은족규정 제정
10.26 제191회 원의회 개최
11. 3 제192회 원의회 개최
11. 7 제40회 정기교정위원회 개최
11. 8 제28회 정기중앙교의회 개최
11.21 제193회 원의회 개최. 전무출신 요양규정 개정. 통계규정 제정
12.16~19 교무자격고시검정(제18기) 실시
12.28 제194회 원의회 개최
67. 1.19~20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

67. 2.18 제195회 원의회 개최
3. 3 제196회 원의회 개최
3. 8 회사위 규정 제정
4.27 제197회 원의회 개최
5.10~ 6.15 교당 사무지도 및 감사
7.13 제198회 원의회 개최
9. 2 수위단원 선거법 개정
9.13 제199회 원의회 개최
10.11 교정원 조직법 개정. 교정원 직제 개정
10.26 제200회 원의회 개최
11. 5 제41회 정기교정위원회 개최
수위단원 선거 실시(임기만료)
67.11. 6 교정원장 김윤중교무, 감찰원장 이정화교무 취임
11. 6 정남·정녀 심사위원 선정. 이공전·전이창·김윤중·이정화·안이정·박은국·김이현(7인)
11. 7 제29회 정기중앙교의회 개최. 대산종법사 추대식 거행. 교헌 전문 개정
12. 9 제201회 원의회 개최. 문화원 원규 제정
68. 1.13 제202회 원의회 개최
1.15~16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
1.18~21 교무자격 고시검정(제19기) 실시
2.21 제203회 원의회 개최
2.22 ·사업성적 사정위원 선정. 김윤중·이정화·장응철·이공전·김인철·박은국·김이현·전종철·오회원(9인)
·법호 사정위원 선정. 김윤중·이정화·김인철·김이현·이공전(5인)
·교무자격 전형검정위원 선정. 수위단원 전원선정, 소분과위원—김윤중·이정화·김근수·이철행·김인철·이광정·전이창·김이현·박제권(9인)
3. 1 전무출신규정, 감찰원조직법 개정. 기획위원회 규정, 경제금융자문위원회 규정, 중앙상주선원 원규 제정
3.22 제204회 원의회 개최
3.23~25 제1회 행정훈련 실시
6. 3 제205회 원의회 개최
6.29 교무자격 특별위원 선정. 김인철·이중정·송천은·김법종·장응철·김이현·전팔근·박제현·송순봉(9인)
7. 1 교도 법위사정 규정 개정
7.15 김상협국무총리 내방
7.19~20 제2회 행정훈련 실시
8. 8 제206회 원의회 개최
9.12 캘리포니아주 캘버시 시장일행 접견

68. 9.16 제207회 원의회 개최
9.23~30 중앙총부감사 실시
10. 4~ 8 기관감사 실시
10.19 정남·정녀 심사위원회
10.20 제208회 원의회 개최
68.10.20 수덕회 운영위원회
11. 1 세계종교평화자회의 일본대표 접견
11. 4 원기68년 사업보고서 작성 발간(1,200부)
11. 5 제42회 정기교정위원회 개최. 원덕회 대의원총회. 수덕회 총회
11. 6 제30회 정기중앙교의회
정남·정녀 선서식
12.16 제209회 원의회 개최
12.17 교구장 회의
12.20~23 교무자격 고시검정(제20기) 실시
69. 1.12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
1.20 봉공직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
2.27 교헌개정 기초위원
위원 : 김윤중·이정화·문동현·김정용·김인철·황직평·나철중·전성완·박제권·김이현,
간사 : 장응철, 전문위원 : 김법종·송순봉·이성은·이성택·권세영·전종철·김도융·박정훈·서경전·서대준·김주원
69. 2.27 교정원 조직법 개정
2.27 교구장·기관장 간담회
4. 2~ 6 제3회 행정훈련 실시
4. 3 정남·정녀시행세칙 제정, 요양심의규정 개정, 기획위원회규정 개정, 처무규정 개정, 완도개발위원회 회칙 제정
4.21 김종필 전 국무총리 영접
5.10 총부, 기관, 교당일람표(1,300부)
5.17 정남·정녀 예비지원자 심사(40명)
5.22 교헌개정 기초위원 및 전문위원 연석회의
6.20 제210회 원의회 개최. 건의서 등 처리조례 제정, 육영생 생활규정 제정, 삼동원 이설추진위원회 회칙 제정
6.23~24 제1기 재가교무 특별검정 실시(9명)
7. 2~ 6 중앙총부감사
7. 9~16 기관감사(1차)
8.29~ 9. 5 기관감사(2차)
69. 9.18 재가교역자 인사임면규정 제정, 교도법호증여규정 개정, 교구규정 개정
10.11 제211회 원의회 개최
10.11 제주보화당 원규 제정

69.11. 5 제212회 원의회 개최
11. 5 • 전무출신지원자 심사위원 : 김인철·유정완·전팔근·장응철·김이현·서성범·박제현·라도국·김은준·오회원·이중정·송순봉·송천은·한정원·김법종·윤주현·전종철
• 인사위원 선정(70년) : 김윤중·박제현·김인철·장응철·김이현·송순봉·황직평·오회원·김법종
11. 6 교헌개정 기초위원회 개최
11. 7 사업보고서(1,200부)
11. 9 교당규정 개정
11.10 제43회 정기교정위원회. 수덕회 총회
11.11 제31회 정기중앙교의회
11.21 덴마크 시찰단 영접
12.24 선영 열위 이장봉행 위원회의
12.26~29 교무자격 고시검정(제21기) 실시
70. 1.12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
3. 3 재가교무 사령장 수여식(8명)
3. 8 제213회 원의회 개최
3.14 교도 사업성적 사정위원회의
3.22 • 대봉도 : 박세철·조갑종·전음광·서대원·정광훈·이병은·박창기·오종태·김영신·이정화
• 대호법 : 이순순·박동국·유건·강필국
3. 4 후생사업회 인수
4. 4 봉공직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
4.10 선영 열위 이장봉행 봉고식
5. 8 교헌개정 기초위원회 전문위원회의
6.17~21 교헌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7. 2~ 6 교정원자체 사무지도 및 감사 실시(대상 : 수위단회 사무처. 교정원 1실 9부)
9. 5~16 교당 사무지도 및 감사 실시(대상 : 대구·대전·서울·청주·춘천교구)
9.20 전무출신규정 개정(연령, 예비전무출신 기간 3년→4년). 교무자격 검정규정 개정(1, 2차 고시)
10.31 교헌개정 기초위원회 개최(개헌안 확정)
12.24 교구규정 개정(조직)
71. 1.16 기존국내 14개 교구를 20개 교구로 분할하고, 행정구역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소속교구 조정
3.25 교정원 조직법 및 교정원 직제 개정
3. 교정원 각부 사무실 조정에 따라 전 교육부 사무실의 절반을 총무부장실로 개조하여 사무실 확장
4. 9 교정원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당부의 행정감사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함
9.30 수위단회법 개정

72. 2.27 「교단 제3대 설계 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4.10~11 교헌개정 기초위원회
4.14 감찰원 감사받음
5. 8~ 9 교헌개정 기초위원회
5. 8 김우중 대우그룹회장 총부 내방
6.24 교헌개정 기초위원회
7. 2 교헌개정 기초위원회
9.11 교헌개정 기초위원회
9.25 교헌개정 기초위원회
10.16 총부직원총회
10.24 교헌개정 기초위원회
11.13 원기72년도 사업보고서 발간, 배포

다. 역대임직원

번호	직 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부 장	吳 昌 建	男	1887. 10. 17	9. 9. 10~10. 5. 25	불법연구회 서무부장
2	서 기	宋 道 性	〃	1907. 11. 19	9. 9. 10~13. 3. 25	
3	부 장	李 東 安	〃	1893. 2. 22	10. 5. 26~12. 3. 25	
4	〃	李 載 喆	〃	1891. 2. 12	12. 3. 26~13. 3. 25	
5	〃	金 幾 千	〃	1890. 4. 18	13. 3. 26~14. 3. 25	
6	서 기	金 永 信	女	1908. 2. 6	13. 3. 26~15. 3. 14	
7	부 장	吳 昌 建	男	1887. 10. 17	14. 3. 26~19. 3. 25	
8	서 기	徐 大 圓	〃	1910. 3. 27	15. 3. 15~16. 7. 31	
9	감 원	李 昊 春	〃	1902. 2. 13	15. 3. 15	
10	서 기	金 大 擧	〃	1914. 3. 16	16. 8. 1~19. 3. 25	
11	부 장	宋 慧 煥	〃	1905. 2. 12	19. 3. 26~20. 3. 25	
12	서 기	李 建 陽	〃	1910. 1. 28	19. 3. 26~20. 3. 25	
13	〃	金 貞 鍾	〃	1913. 9. 5	20. 3. 26~21. 3. 25	
14	〃	朴 修 權	〃		21. 3. 26~22. 3. 25	
15	〃	李 士 局	〃	1915. 1. 18	22. 3. 26~24. 4. 25	
16	부 장	金 大 擧	〃	1914. 3. 16	23. 4. 26~24. 4. 25	
17	〃	李 士 局	〃	1915. 1. 18	24. 4. 26~25. 4. 25	
18	〃	李 建 陽	〃	1910. 1. 28	25. 4. 26~27. 4. 25	공급부장겸임
19	서 기	丁 光 薰	〃	1927. 8. 30	25. 4. 26~27. 4. 25	
20	부 장	朴 將 植	男	1911. 1. 9	27. 4. 26~28. 6. 10	총무부장
21	서 기	李 空 田	〃	1927. 3. 24	27. 6. 18~28. 6. 10	

22	서기보	李鍾玉	女		27. 6. 18~28. 6. 10	
23	〃	丁慈善	〃	1922. 9. 26	27. 2. 18~28. 6. 10	
24	〃	全泰守	男	1925. 6. 7	27. 2. 18~28. 6. 10	
25	부장	宋奎	〃	1900. 8. 4	28. 6. 10	
26	〃	朴將植	〃	1911. 1. 9	28. 6. 10~29. 4. 25	
27	〃	宋道性	〃	1907. 11. 19	29. 4. 26~31. 4. 25	
28	서기	李熙暎	〃	1902. 2. 16	29. 4. 26~31. 4. 25	
29	부장	柳虛一	〃	1882. 10. 19	31. 4. 26~33. 4. 25	
30	서기	崔正均	〃	1924. 4. 20	31. 4. 26~33. 4. 25	
31	〃	全泰守	〃	1925. 6. 7	31. 10. 1.~32. 6. 18	
32	〃	林學峻	〃	1926. 3. 5	32. 6. 19~33. 4. 25	
33	부장	趙暻錫	〃	1910. 11. 17	33. 4. 26~34. 4. 25	서무부장
34	서기	吳龍鳳	〃		33. 4. 26~34. 4. 25	
35	부장	成丁哲	〃	1902. 11. 21	34. 4. 26~36. 4. 25	
36	서기	丁慈善	〃	1922. 9. 26	34. 4. 26~36. 4. 25	
37	부장	趙暻錫	〃	1910. 11. 17	36. 4. 26~37. 4. 25	
38	서기	金貴根	〃	1929. 3. 5	36. 4. 26~37. 4. 25	
39	부장	成丁哲	〃	1902. 11. 21	37. 4. 26~39. 4. 26	
40	서기	金泰根	〃		37. 4. 26~40. 4. 25	
41	부장	趙暻錫	〃	1910. 11. 17	38. 4. 26~40. 4. 26	
42	〃	成丁哲	〃	1902. 11. 21	40. 4. 26~44. 4. 26	
43	부원	張道恩	〃	1923. 7. 3	40. 4. 26~41. 4. 25	
44	〃	金明哲	〃	1940. 1. 20	40. 4. 26~44. 4. 25	
45	〃	李練道	〃	1938. 5. 18	40. 4. 26~41. 4. 25	
46	〃	林允徹	〃	1940. 1. 5	40. 4. 26~41. 4. 25	
47	〃	金碩元	男	1937. 5. 10	41. 4. 26~43. 5. 20	
48	〃	金世寬	〃	1940. 7. 24	41. 4. 26~43. 5. 20	
49	부원	盧基奉	男	1942. 2. 12	41. 4. 26~44. 4. 26	
50	〃	申明玉	女	1940. 10. 5	42. 4. 26~44. 4. 26	
51	주사	金壯權	男	1923. 1. 10	43. 5. 20~44. 4. 26	
52	〃	金智英	女	1932. 1. 19	43. 5. 20~44. 4. 26	
53	부장	丁光薰	男	1927. 8. 30	44. 4. 26~45. 4. 1	총무부
54	주사	張正一	〃	1926. 5. 28	44. 4. 26~45. 4. 1	
55	〃	徐大峻	〃	1927. 5. 9	44. 4. 26~45. 4. 1	
56	〃	金法眞	女	1934. 3. 23	44. 4. 26~45. 4. 1	
57	연락원	盧基奉	男	1942. 2. 12	44. 4. 26~46. 5. 12	
58	부장대리	金允中	〃	1927. 12. 7	45. 4. 1~46. 4. 1	
59	주사	韓正釋	〃	1934. 1. 11	45. 4. 1~46. 4. 1	

60	서 기	張 應 哲	男	1940. 9. 8	45. 4. 28~46. 4. 1	
61	〃	李 聖 恩	〃	1942. 5. 17	45. 4. 29~46. 4. 1	
62	부 장	金 允 中	〃	1927. 12. 7	46. 4. 1~48. 4. 1	
63	주 사	田 宗 哲	女	1934. 12. 2	46. 4. 1~47. 4. 1	
64	서 기	丁 妙 煥	〃	1939. 9. 25	46. 5. 12~48. 4. 1	
65	연락원	蘇 淳 正	男	1944. 2. 4	46. 4. 1~48. 4. 1	
66	총무과장	田 宗 哲	女	1934. 12. 2	47. 4. 1~48. 4. 1	
67	공보과장	朴 選 一	男	1934. 8. 25	47. 5. 12~48. 4. 1	
68		朴 明 旭	〃	1938. 1. 18	47. 4. 2~48. 4. 1	
69	부 장	金 勤 修	男	1922. 6. 9	48. 4. 1~53. 4. 1	
70	총무과장	李 宗 明	〃	1934. 3. 5	48. 4. 1~49. 3. 31	
71	주 임	姜 妙 眞	女	1934. 1. 30	48. 4. 1~49. 3. 31	
72	주 사	張 應 哲	男	1940. 9. 8	48. 4. 1~49. 3. 31	
73	서 기	尹 敬 中	女	1946. 12. 4	48. 4. 1~49. 3. 31	
74	총무과장	李 亨 遠	男	1922. 6. 9	49. 4. 1~52. 4. 1	
75	인사과장	姜 妙 眞	女	1934. 1. 30	49. 4. 1~52. 4. 1	
76	주 사	金 大 鉉	男	1937. 3. 30	49. 4. 1~51. 3. 31	
77	서 기	河 一 聖	〃	1938. 2. 10	49. 9. 1~50. 3. 31	
78	연락원	韓 倫 圓	〃	1948. 10. 4	49. 4. 1~50. 3. 31	
79	서 기	趙 明 心	女	1941. 7. 11	50. 4. 1~52. 3. 31	
80	연락원	李 聖 局	男	1947. 12. 29	50. 4. 1~52. 3. 31	
81	주 사	韓 吉 良	〃	1939. 12. 12	51. 4. 1~53. 3. 20	
82	서 기	鄭 光 準	〃	1937. 8. 16	51. 4. 1~52. 3. 31	
83	과 장	朴 正 薰	男	1928. 3. 2	52. 4. 1~56. 4. 14	
84	주 사	金 智 恩	女	1939. 10. 27	52. 3. 26~53. 3. 1	
85	서 기	權 義 淑	〃	1947. 1. 17	52. 4. 8~53. 3. 1	
86	연락원	金 明 學	男	1948. 1. 26	52. 4. 1~53. 12. 29	
87	부 장	金 中 默	〃	1920. 6. 22	53. 4. 1~58. 2. 28	
88	주 사	李 性 吉	〃	1937. 1. 2	53. 3. 21~55. 2. 28	
89	〃	宋 仁 鎬	女	1944. 11. 30	53. 3. 2~56. 2. 28	
90	연락원	薛 常 潤	男	1950. 6. 12	53. 12. 20~55. 5. 27	
91	주 사	金 達 性	〃	1936. 11. 15	55. 3. 1~56. 2. 28	
92	연락원	崔 正 權	〃	1949. 11. 15	55. 5. 28~56. 4. 20	
93	임 원	李 圓 局	〃	1949.	55. 3. 1~57. 2. 28	
94	총무과장	趙 正 中	〃	1938. 1. 28	56. 4. 15~58. 2. 28	
95	공보과장	金 達 性	〃	1936. 11. 15	56. 3. 1~57. 3. 31	
96	주 임	申 明 實	女	1941. 12. 19	56. 5. 10~57. 3. 31	
97	〃	宋 仁 鎬	〃	1944. 11. 30	56. 3. 1~57. 3. 31	

98	주 사	梁 元 道	女	1943. 12. 17	56. 4. 15~57. 2. 28	
99	연락원	朴 浩 正	男		56. 4. 21~57. 2. 28	
100	주 임	趙 仁 圓	〃	1944. 9. 10	57. 4. 1~59. 2. 28	
101	주 사	邊 性 默	女	1945. 7. 1	57. 3. 1~58. 2. 28	
102	〃	尹 正 養	〃	1943. 7. 26	57. 3. 1~60. 2. 28	
103	서 기	朴 恩 奉	男		57. 3. 1~58. 2. 28	
104	부 장	金 仁 喆	〃	1934. 12. 4	58. 3. 1~62. 3. 31	
105	과 장	張 應 哲	〃	1940. 9. 8	58. 3. 1~62. 3. 31	
106	주 사	金 慧 奉	女	1947. 3. 19	58. 3. 1~60. 2. 28	
107	〃	文 善 慧	〃	1947. 11. 9	58. 4. 1~60. 2. 28	
108	〃	李 雲 淑	〃	1947. 3. 26	58. 6. 1~59. 2. 28	
109	서 기	崔 永 眞	男	1952. 7. 2	58. 3. 1~59. 2. 28	
110	응 접	金 致 局	〃	1924. 4. 23	58. 3. 1~60. 2. 28	
111	〃	宋 達 俊	女	1913. 1. 3	58. 3. 1~59. 2. 28	겸 임
112	주 사	尹 正 宇	男	1947. 2. 8	59. 3. 1~68. 2. 28	
113	〃	金 主 圓	〃	1948. 10. 10	59. 7. 1~61. 2. 28	
114	서 기	姜 樂 眞	〃	1954. 1. 1	59. 3. 1~60. 2. 28	
115	주 임	尹 正 養	女	1943. 7. 26	60. 4. 1~	
116	〃	金 慧 奉	〃	1947. 3. 19	60. 4. 1~62. 2. 28	
117	〃	文 善 慧	〃	1947. 11. 9	60. 4. 1~62. 2. 28	
118	주 사	李 明 宗	男	1950. 12. 24	60. 3. 12~62. 3. 31	
119	〃	咸 聖 培	女	1947. 6. 10	60. 3. 20~62. 3. 31	
120	서 기	白 仁 赫	男	1956. 10. 9	60. 3. 1~61. 3. 9	
121	주 임	金 主 圓	〃	1948. 10. 10	61. 3. 1~62. 3. 31	
122	주 사	申 明 局	〃	1948. 1. 13	61. 4. 1~62. 3. 31	
123	서 기	洪 大 淵	男	1956. 8. 8	61. 3. 10~62. 3.	
124	〃	崔 昌 圓	〃	1958. 1. 7	61. 3. 15~62. 3.	
125	부 장	李 普 圓	〃	1934. 9. 13	62. 4. 1~67. 11. 10	
126	과 장	金 恩 俊	〃	1943. 1. 19	62. 4. 1~66. 2. 28	
127	〃	金 慧 奉	女	1947. 3. 19	62. 4. 1~63. 2. 17	
128	주 임	宋 蓮 照	〃	1948. 3. 15	62. 5. ~68. 1. 31	
129	주 사	薛 允 煥	男	1946. 8. 30	62. 4. 1~63. 6. 30	수하부교원
130	〃	李 慧 哲	〃	1948. 5. 23	62. 4. 1~65. 2. 28	
131	〃	姜 淑 圓	女	1952. 11. 17	62. 4. 1~65. 2. 28	
132	간 사	朴 主 誠	男	1957. 11. 7	62. ~63.	
133	〃	全 圓 德	〃	1950. 11. 20	62. ~63.	
134	주 사	黃 仁 哲	〃	1952. 6. 2	63. 7. 1~65. 2. 28	
135	〃	韓 喜 允	女	1950. 2. 9	63. 2. 18~65. 2. 28	

136	간 사	최 수 근	男		63. 1. ~63. 7. 28
137	〃	李 亮 瑞	〃	1958. 8. 29	63. ~64. 2. 27
138	〃	李 明 準	〃	1960. 9. 25	63. ~64. 2. 27
139	주 사	全 明 眞	女	1949. 8. 16	63. 7. 1~65. 2. 28
140	간 사	姜 聖 允	〃	1959. 10. 3	64. 2. 28~66. 2. 28
141	〃	朴 主 誠	男	1957. 1. 7	64. 6. 20~65. 2.
142	주 임	黃 仁 哲	〃	1952. 6. 2	65. 3. 1~66. 2. 28
143	〃	李 慧 徹	〃	1948. 5. 23	65. 3. 1~66. 2. 28
144	주 사	成 明 鍾	〃	1955. 10. 29	64. 7. 25~66. 2. 28
145	〃	金 性 孝	女	1953. 12. 16	65. 4. ~66. 2. 28
146	간 사	徐 起 源	男	1961. 8. 14	65. 4. 1~66. 2. 28
147	차 장	金 恩 俊	〃	1943. 1. 19	66. 3. 1~68. 1. 31
148	과 장	黃 仁 哲	〃	1952. 6. 2	66. 3. 1~69. 1. 31
149	주 임	成 明 鍾	〃	1955. 10. 29	66. 3. 1~71. 1. 31
150	〃	金 性 孝	女	1953. 12. 16	66. 3. 1~68. 1. 31
151	주 사	李 如 正	〃	1953. 3. 26	65. 8. 5~67. 2. 28
152	간 사	柳 仁 眞	男	1964. 10. 14	66. 3. 20~67. 2. 7
153	주 사	韓 聖 心	女	1955.	67. 3. 3~69. 1. 31
154	간 사	金 滿 弘	男	1960.	67. 2. 8~68. 1. 31
155	〃	崔 圓 中	女		67. 2. ~68. 1. 31
156	부 장	張 應 哲	男	1940. 9. 8	67. 11. 10~
157	주 사	任 道 晳	〃	1954. 1. 22	67. 12. 22~69. 1. 31
158	간 사	金 炳 煥	〃		68. 2. 1~70. 1. 31
159	〃	金 敬 進	女	1961. 7. 20	68. 2. 1~70. 1. 31
160	간 사	金 圓 泰	男	1958. 10. 23	68. 5. 10~70. 1. 31
161	총무과장	徐 珖 圓	〃	1948. 2. 14	69. 2. 1~71. 1. 31
162	법계과장	黃 仁 哲	〃	1952. 6. 2	69. 2. 1~71. 1. 31
163	주 사	金 性 熹	女	1952. 8. 25	69. 2. 1~70. 1. 31
164	간 사	李 常 均	男	1964. 11. 13	69. 2. 1~71. 1. 31
165	주 임	金 性 熹	女	1952. 8. 25	70. 2. 1~71. 1. 31
166	주 사	朴 慧 哲	〃	1948. 1. 13	70. 2. 1~72. 9. 4
167	간 사	全 性 空	男	1966. 2. 29	70. 2. 1~7. 1. 31
168	〃	徐 龍 定	女	1967. 3. 1	70. 2. 1~71. 1. 31
169	총무과장	黃 仁 哲	男	1952. 6. 2	71. 2. 1~72. 1. 31
170	인사과장	成 明 鍾	〃	1954. 10. 19	71. 2. 1~72. 1. 31
171	주 사	金 聖 圓	女	1955. 1. 2	71. 4. 1~72. 1. 9
172	〃	姜 樂 眞	男	1954. 1. 1	71. 3. 1~72. 7. 1
173	간 사	崔 吉 周	〃	1967. 2. 7	71. 2. 23~72. 1. 15

174	간 사	崔 廣 恩	男	1968. 6. 14	71. 1. 20~72. 1. 15	
175	〃	吳 聖 心	女		71. 4. 1~72. 1. 15	
176	과 장	成 明 鍾	男	1954. 10. 19	72. 2. 1~	
177	주 임	崔 承 圓	女	1947. 10. 11	72. 1. 10~	
178	〃	朴 誠 仁	〃	1958. 5. 16	72. 1. 10~	
179	〃	盧 永 寬	男	1955. 7. 13	72. 1. 10~	
180	간 사	秋 道 燁	〃	1968. 8. 23	72. 1. 1~	
181	〃	金 仁 廷	女	1969. 1. 10	72. 1. 13~	
182	주 사	金 慶 日	男	1954. 8. 6	72. 7. 13~	

3. 교 화 부

교화부의 연원은 원기9년(1924) 불법연구회의 교무부 연구부에 닿는다. 당시 교무부는 주로 교단내의 공부에 관한 사항을 맡아 보았으며, 연구부와 함께 초기교서의 간행과 동하선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원기9년(1924) 개정된 규약에는 교정원과 서정원의 양원이 있는데 교무부와 연구부는 교정원에 속해 있었으며 원기27년(1942)의 양원 통폐합시에는 연구부가 교무부로 통합되었다가 원기33년(1948) 원불교교헌 제정시 교정, 감찰의 양원제가 되었을 때는 교정원의 수석부서로 교무부로 이어진다.

원기44년(1959) 원불교교헌 1차개정시 교정원 수석부를 총무부에 넘기고 원기52년(1967), 원기56년(1971)의 교정원 조직개편시까지 교무부로 이어오다가 원기60년(1975)에 이르러 비로소 교화부로 개칭되었는데 당시 교정원은 1실 5부였으며, 교화부는 발전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나 원기62년(1977) 문화부, 훈련부를 분화시켰고 이어 원기66년(1981)에는 다시 국제부를 분화하여 1실 9부의 교정원 조직의 교화부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가. 직제 및 주요기능

교화부에는 부장, 차장이외에 교령, 교감, 순교감, 예감, 순교무, 예무, 주임, 주사, 서기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교정원직제규정 제17조) 교화과, 교무과, 편수과, 의식과의 4과의 직제가 있다(교정원직제규정 제18조).

과별로 분장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교화과 : 일반·청소년 및 각종 특수교화, 교화단관리, 순교사무, 소관기관 지도감독, 부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② 교무과 : 입교사무 및 교적부관리, 법위사정, 교화통계사무, 교서보급에 관한 사무

③ 편수과 : 교서의 편찬과 교재의 검인정, 교화교재편찬 발행 등에 관한 사무

④ 의식과 : 의식, 예법보급, 각종법회, 기념행사 주관 사무(이상 교정원직제 규정 제19조)

이상의 규정에 의해 현행의 직제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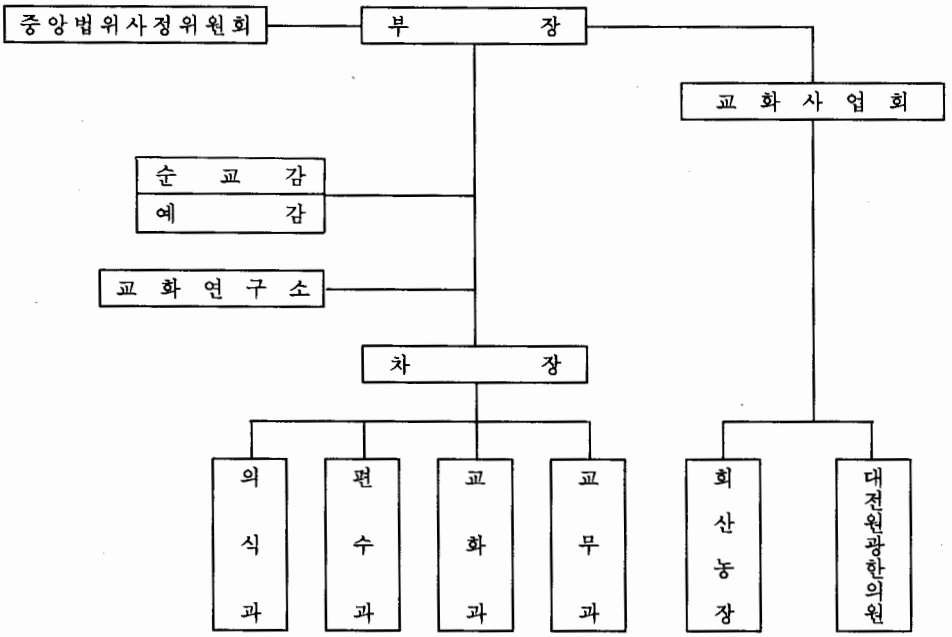

나. 연 혁

10. 3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발표.
10. 8.	학력고시법 사업고시법 발표
11. 2	신정예법 발표
12. 2	신분검사법 발표
12. 5	『수양 연구요론』 발행
13. 3	기념총회. 『월말 통신』 발행(편집인 송도성)
14. 4	은부모에 관한 결의식 거행
16. 7	『불법연구회 통치조단 규약』 『보경 6대요령』 발간
18. 8	『월보』를 『회보』로 발간
19. 12	『보경 3대요령』 발간.
20. 4	『조선불교 혁신론』 발간
20. 8.	『예전』 발간
21. 9.	『회원수지』 발간

24.11. 『불법연구회 근행법』 발간.
25. 4. 마감총회. 지방회원 교리강연회 개최
27. 3 『불교정전』 발행
31. 1 한글보급 문맹퇴치 운동 전개
31. 3. 《원불교》 교명 발행
4. 남녀 전무출신 금강단 발족
33. 3 금강청년회 발족(재가포함)
4. 교명발표 후 원불교 개교식 거행
34. 3 원불교 최초 학생회 결성(전주교당)
34. 4 대종사 성탑 건립(조실 응접실에 안치되었던 유해 이안식)
34. 4. 6. 원광사 발족, 『원광』 창간호 발간
38. 4. 제1대 성업봉찬 기념식
6. 대종사 기념비 재막
9. 이리 방송국에서 매주 1회 포교방송 실시
38.12.28~39. 1.14 제2대 제1회 동계 교무강습. 최초 원불교 학생회지 발간(전주 연화)
40. 1 합동 성년식 거행(남11, 여11)
4. 개교 40년 총지부 연합강연대회
41. 3. 중앙교우회 발족(회장 오해인)
11. 중앙선원 개원식
42. 4.26 법훈증 수여식
4.27 교화 및 연원시상식
4.28 원로 합동회갑식(이완철, 이공주, 여청운, 최상오, 정세월)
42. 8 중앙선원 휴원
43. 1 중앙선원 재개원
7. 원불교 청년회 탄생(정기총회에서 명칭 개편)
8. 5~7 전국학생강습. 38개교당 60명 참석
8. 8 원불교학생연합회 창립총회.
44. 5. 보은사상 강조 연간설정
12. 정화사 발족. 교서에 관한 편수업무 이관
45. 8 해외포교 연구회 발족
47. 1.24 정산종법사 열반
2. 대산종법사 추대식
7. 『성가집』 간행. 『원불교기념 사진첩』 발행
47. 8.25 교무회 연합회 결성 창립총회
9.26 『원불교교전』 발간 봉고식
10. 합동성년식(남35, 여35)
48. 4 교화 3대목표 추진운동 전개
49. 7. 2~5 제1회 전국청년강습

49. 8.3~15	기관임원 및 부교무 강습
9.12~15	제1회 정토회 강습
50. 3.	교화 3대목표추진 1차년도 시상식
7.14	교화 3대목표 추진안 공청회
50.11.~51. 3	제1회 법위사정실시. 『원불교 요람』 중·독·일어판 간행 및 성가 제작
51. 9.15	원불교 『청년회보』 간행
52. 2	제1회 제도식(출가식). 14명
3.	교화 3대목표. 학생 2대운동전개(교화 3대운동 인도실천운동)
53. 3.26	『성가』 발간 기념 발표회(나운영, 김동진, 정은모)
10.	중고교에 교우회 결성(정읍농고)
54. 3.	교화 3대목표 추진 3차년도 시상식
4.	영문판 『요람』 재발간
5.	교화재단 설립인가
7.	『교전』 『성가』 축쇄판 발행
55. 3	교도 법위사정 실시
5.	중앙훈련원 발족
7.	학생회 2대운동 시상(우수상 광주학생회)
9.	교도 교리실력 평가 실시
56. 3.	교화 3대목표 추진운동 마감 시상식
7.24~25	전국청년지도자대회
7.26~29	전국청년수련대회
7.31~8. 4	제11회 학생수련대회. 연합학생회 실천강령 채택
10.	개교반백년대회 『기념문총』 발행. 선진유품 전시회. 영역 『교전』 발행(전팔근역)
12. 1	기관별 성가경연대회 및 문학의 밤 개최
57. 6	선진유족 위로회
8.	제1회 원친회 훈련. 정토회 훈련
12.	명절대재기념 성가경연대회
58. 1.27	정자선군교감 시카고주 재차도미
1.	『원불교 사전』 편찬 추진
58. 8.14~17	청년지도자훈련. 신도안
8.12~17	기관임원 하계훈련
9.	점자 『정전·성가』 발행
59. 1. 6	교화재단을 교화사업회로 개칭 이사회 창립총회
2.	교도증 개정 축소인쇄(규격봉투에 맞도록)
3.	점자 『대종경』 발행. 27일자 『참고문헌부』 발행. 『일원의 광장』 설교집 발행(서경전 著)
3.30	교화연구소 발족. 초대연구소장 이광정취임. 훈련원 개원 및 훈련업무이관
5.24	대종사 영정 구조실에서 영모전으로 이안

59. 6. 1 교도 기초훈련 3단계 과정 발행
60. 3 『근행법』 폐지와 아울러 교도 기초훈련 3단계로 대치(교정위원회 결의)
사적 및 유물관리법 제정. 교무훈련 학생훈련을 훈련원으로부터 재인수. 교무부를 교화부로 개칭
7. 10 『소태산 대종사』 전기 발간
7. 21 원불교 교당 분포도 인쇄
7. 30 일역 교전 출판
7.28~31 전국 학생간부훈련 실시
8.20 『그림 대종사』 발간
8.30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 결성 창립총회(위원 : 박광전·이공주·정광훈·서대인·이건춘·한정석·송천은·유병덕·김윤중·조정근·이광정·김복환·이공전·이병은, 위원장 : 박광전). 사적 및 유물지정위원 : 유병덕·한정석·김복환. 구조실 보수위원 : 김윤중·정광훈·이건춘
10. 7~28 추계교역자훈련 실시
10.12 교사 및 교화 참고록 해외포교 봉고식
10.14 대종사 및 역대선진 유물 전시회
12. 3 교화사업회 직영 대전보화당 개설. 교도법위사정 실시(제3차)
61. 3.26 『심고문집』 발행
5.20 『교화통신』 발행(창간호)
7.10 『어린이 교전공부』 발행(10,000부)
7.20 『저푸른 하늘을 보라』(교도신앙수행함) 발행
7.26 『원각 성존 소태산대종사 비명서』 발행(팜프렛)
8. 8~14 제2회 국제수련대회 거행(미국)
9.16 「교조 소태산대종사의 거룩하심」 발행(팜프렛). 「유일 절대자는 있는가」(팜프렛). 「말세란 무엇인가」(팜프렛). 「원불교 요의문답」(팜프렛) 발행
61.11.26 『원불교교헌』 제3차 개정 발행(정화사)
12.26 「천도의 의미」 발행(팜프렛), 「생사의 준비」(팜프렛) 발행
62. 1.10 「성극 각본 프린트본」 발행(교당비치용)
2. 1 『소태산대종사 일화집』 발행
3.30 교리 4대운동 시상식. 교단사업회 시상식
62. 5.22 기관대항 체육대회(개교기념행사)
7.20 『교화통신』 증면(4면을 6면으로)
8.11 밀감농장매입(교화사업회). 소재지 : 제주도 남제주군 중면 3,080평, 450만원
63. 2.25 1단계 교리학교(과목 : 정전) 개설 공고. 교구 또는 교당별로 실시
4.23 대전 보화당 全燒
6.11 신앙체험담 2집 『은혜의 꽃은 피고』(박혜명저) 발간
6.26 정화사로부터 인수, 『원불교전서』(불조경 일부증면) 3판 발행
7.24 독경집 카세트 출반

63.11. 1 정산종사 추모(송은작곡집) 레코드 출반
12.12 대전원광한의원 낙성(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222평)
12.13 1단계 교리학교 이수자 교리평가 고시, 교구별로 실시
64. 1. 2단계 교리학교(과목 : 교사·예전) 실시
4.15 교구대항 친선정구대회(개교기념행사)
5. 1 동화집 『아홉선생의 이야기』 발행
5.24 선진문집 1집 『공타원 법설집』 발행
9.20 일어판 『원불교교사』 발행
10.21 3년간(62~64) 교화실적평가 종합시상식
11.10 『대종사가사집』 발행
11.11 선진문집 2집 『항타원문집』 발행
12. 5 2단계 교리학교 이수자 교리평가고사 실시
12.23 연간 교화계획안(카렌다) 발행
65. 1. 교화통신 8면으로 증면
3. 대종사 『십상도』 완성(정승섭그림)
5. 1 선진문집 3집 『주산문집』 발행
6. 일본교화후원 기금모금(1천만원)
8.30 일어판 『예전』 발행
10. 1 『요람』 1만부 보급
10.30 입문서 I 『원불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발행
11. 카세트 『성가합창집』 2조, 『독창집』 1조, 『입체낭송 대종경』 3조(총6조) 보급
66. 1.25~30 부교무·어린이교화에 뜻있는 청년회원 대상으로 어린이지도자훈련 실시
66. 2. 1 어린이용 『원불교정전』(성가·어린이노래 합본) 발행(국판횡서)
2. 온 인류에게 교전읽히기 운동 전개. 1단계 2천만원 모금 추진
3. 『교리통신강좌』 개설. 매월 2권씩 통신교재 발행.
5. 1 선진문집 4집 『응산문집』 발행
6. 4 『대종사가사집』 카세트 보급
9. 1 교전읽히기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원불교전서』 가격을 60%인하 염가보급
11. 가로쓰기 『원불교교전』 50%인하 염가보급
12. 선진문집 2권 『삼산·육타원문집』 발간
67. 1. 월간교화지 발행(교화통신의 발전적 폐간에 의해 교화誌로 승간). 방송교화 실시 (전주MBC라디오 오전 6시20분)
2. 『원불교입문서』 제2권 발행. 손정윤교무 집필 10,000부
3. 『소태산대종사』(어린이교재 그림책) 발행
3.26 대각개교 기관대항 성가경연대회
5. 5 대각개교 전국교구대항 정구대회
4. 『한울안 한이치에』(정산종사법문과 일화) 발행, 박정훈교무편저 15,000부
4.25 대각개교 기관대항 체육대회

67. 5. 『벌레에게 먹힌 쥐』 발행. 어린이 위한 대종경 그림책 5,000부
인류에게 교전읽히기 운동(교전발송)
전국 국민학교 : 7,000부, 중·고등학교 : 3,500부, 대학·특수교 : 800부, 교립학교 원중·고 : 3,700부, 대학 : 5,000부, 전국 군부대 : 900부, 교도소 : 500부

6. 『하늘나라 하늘사람』 발행. 어린이동화집 3,000부

6.17 대전보화당 상호 및 업종변경. 보화당한의원으로 상호변경. 4층에 법당과 생활관 설치. 법신불 봉안

8. 국제훈련지 확보 제주도 북제군 애월읍 37,000평 4천만원

8.15 특별법회(교과서 왜곡시정 촉구)

9.26 기념법회(교전발간 20주년 기념법회). 결집의 주역 이공전교무에게 기념패 증정

10.24 교화사업회 유공인 시상. 합동회갑식

12.13 군복무중인 예비교역자에게 『교전』(가로쓰기) 40권, 『입문서』 50권 보냄, 원광대 원불교 대학생회 『입문서』 100권 기증

12.15 교서보내기(금릉군-17개 국민학교·1개 중학교, 강원 정선군-1개 중학교)

68. 1.22 교화연구위원위촉. 위원 : 전종철·송순봉·조정근·김법종·심도정·김성철·김복환·서경전·김기원·신명교

1.27 제1차 유아교육자협의회 및 세미나. 장소 : 훈련원. 60명 참석. 유아교육자협의회 규정시안제정, 유아교재 편찬

2. 교리강습 포스터 제작

2. 3 참회생활 실천방안 지시(참회 백일기도 실시)

2. 2 중앙법위사정위원 위촉(임시수위단에서 선임) 위원:박광전·서대인·김윤중·이공전·김인철·김이현·안이정·박제권·전이창·이정화·김중묵

2.28 교립학교 『교전』 증정. 대·중·소-7,500권

4. ~5. 교전보내기운동 전개. 각 교당·관공서-4,500권

4.20 편수위원 위촉. 위원 : 유병덕·전종철·이종진·이성택·설윤환·이건인·박용덕·신명국·박달식

5. 9 참회표어 제작 발송. 7종류 : 900매 인쇄

5.14 교기제작 교당에 배부

6. 2 교화사업회 운영위원 위촉. 출가 : 박정훈·김인용·이성신·양혜경·이광정·정성숙·김지현·서대준·김이현·유성일, 재가 : 오철환·김성학·박은시화·남하원행·김경신·박정의행·강성인·박화선·김유원·황만석·김충진·금삼성·조양선, 감사 : 전종철·김법종

6. 5 『심고·기도문집』 발간. 『입문서』 1권 5판 발행 : 10,000권

6. 5 교도단계별 훈련 지시(보통부·특신부·상전부·기초부). 보통부·기초부 훈련교재 발간 : 10,000권

6.23 물품판매소 이전

7. 9 어린이 여름학교 포스터 제작

7.28 『입문서』 2권 3판 발간 : 30,000권

8. 4 훈련교재인쇄 : 10,000권. 『입문서』 1권 6판 발간 : 30,000권

68. 8.17~19 제2회 유아교육자 세미나. 곳 : 신도안. 인원 : 84명 참석
9. 4 격추된 KAL기 탑승자 영가를 위한 위령제 거행
장소 : 대각전. 참석인원 : 400여명
9.22 기관교무 교당교화 지원
9.28 교화부 사무감사
10.12 순국외교사절단 추도식 거행지시
10.16 〃 . 곳 : 대각전
10.19 KAL기 탑승자 49재 거행. 곳 : 대각전
10.27 『어린이노래집』 발행(7,000권)
10.31 원기69년도 교화방침 및 시책지시
11. 6 제17회 교화사업회 정기운영회의. 결산보고 및 예산심의
68.12. 1 명절대재. 곳 : 대각전
12.29 『전서』 가로쓰기 발행 : 5,000권. 교도훈련교재(보통부) 발행 : 5,000권
12.30 원기69년도 교화카렌다 발행 : 500부
69. 1.25 기관·교당자매결연 실시. 지원하는 기관 23개, 지원하는 교당 41개. 지원받는 국내교당 58개, 지원받는 해외교당 6개
1.18~20 유치원 유아원 교사 세미나 개최. 장소 : 중앙훈련원
2.20 교화카렌다 500부 제작
3.11 법위사정 시행 계획 공고
4.13 『특신부』 3만부 발행
4.14 외국인 교화용 팜프렛 제작 1,000부
4.23~28 대각개교절기념 교서보내기운동 전개. 추진실적 17,409,210원, 15,029권
5. 3 출가교화단 편성
5. 5 대각개교절기념 전국어린이그림대잔치. 출품작 800점(최고작 : 24점, 우수작 : 37점, 입선작 : 146점, 노력상 : 61점, 단체우수상 : 송학·원남, 단체노력상 : 아리·창원)
6. 7 『상전부』 3만부 발행
11. 2 교화사업회운영위원회 회원 2명증가. 삼덕 : 조성덕·강호연행
70. 1. 1~ 3 신년하례(기념관)
1.17 『원불교 교서』 5,000부 발행(교전·성가·법어)
1.21 유아교육자 세미나 개최(제5회)
2. 6 교립학교 교서보내기운동. 원고 350권, 원중 505권, 원여고 600권, 원여중 700권, 군인 455권, 병원 400권, 교우회 744권
2. 1~ 4 대학생 연합회 수련대회
3. 9 『정다운친구』 카셋트 제작 100개. 『이야기대종사』 테이프제작 1,000개. 『대종사 일대기』 슬라이드 제작 100개
4. 8 『교화자료모음』 발간 월1회씩
4.10 출가 항단 구성 및 항단장 선출
4.11 출가·재가 법위사정 실시(제5차). 법사단 봉고식 : 출가 113명, 재가 149명

70. 4.16~17 서울·전주소년원 학생 100명 훈련 실시
5. 5 전국 어린이 그림잔치 시상식(제2회)
6. 4 입문서3 『교리이해 기초문답』 발행, 3,000부. 입문서4 『새부처님 대종사』 발행, 3,000부
6.15 『교리이해 기초문답』(입문서 4권) 발간
7.22~27 제5차 대학생연합회 보은수련회. 장소 : 성주성지. 219명 참여
7.29~31 제1회 전국학생대회. 장소 : 총부. 200명 참석
8.13~15 제5회 유아교육자 세미나. 장소 : 하섬. 120명 참여
8.20 법인절 전야기도식(총부인근합동). 장소 : 영모전광장. 500명 참여
8.28 『가정교화 자료모음집』 발간
9.21 교리실천강좌. 주제 : 원불교인의 단전주선. 장소 : 대각전. 500명 참여
10. 7 교화단안내 발간
10.21 71년도 교화카렌다 제작
11. 8 『상시훈련 지침서』 발간
11.23 제8차 대학생연합회 정기총회. 장소 : 훈련원. 회장 : 이종선(수원), 부회장 : 이중도(모현)·정도중
12.24 중앙법위사정위원위촉(제106회 수위단회)
71. 1. 1 대각개교절 기념 교서보내기운동 전개
1. 1~ 3 신년하례(기념관)
1. 5~15 대학선방. 장소 : 완도훈련원. 32명 참여
1.24~26 전국학생회장단 훈련(제4회). 장소 : 중앙훈련원. 129명 참여
1.31~ 2. 3 대학생연합회 지도위원회. 장소 : 서울회관. 48명 참여
3. 6 출가교화단 운영지침 발간
3.22 교리실천강좌. 주제 : 연고계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장소 : 대각전. 400명 참여
3.27 기관과 교당, 기관교무와 교당간에 교화지원위해 자매결연
3.31 회산 오철환대호법 교회전체장 발인식(군산태전회관) 덕타원 정양선교무 교회전체장 발인식(기념관)
4.27 대각개교절 전야기도식(총부인근합동). 장소 : 영모전광장. 600명 참여
5. 5 대각개교절기념 전국 어린이 그림 공모전 시상식. 장소 : 기념관
5. 9 북한교화위원회 규정 승인(제218회 원의회).
5.12 대각개교절기념 소년원생초청 훈련. 장소 : 훈련원. 참여 : 97명(서울47, 전주50)
6. 7 『교당교화단 운영지침서』 발간
6.10 『일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발간
6.11 법회 회순 수정(2년간 잠정시행, 제106회 수위단회)
7. 4~ 6 전국어린이지도자훈련(꿈밭훈련, 제3회). 장소 : 총부. 77명 참여
7. 9 『가정교화 입문서』 1·2권 발간
7.22~28 제6차 대학생연합회 보은수련회. 장소 : 영산성지. 152명 참여
7.31 새성가 가사 공모

71. 8. 9~11 전국어린이 회장단훈련. 장소 : 총부. 205명 참여
8.13 제6차 유아교육자 세미나. 장소 : 완도훈련원. 105명 참여
8.20 법인절 전야기도식(총부인근합동). 장소 : 기념관(우천관계로). 600명 참여
9.25 중공교포 8명에게 교서기증
11. 8 정남·정녀 선서식. 장소 : 기념관. 선서자 : 85명
12. 6 故 숭산 박광전교무 교회전체장 발인식. 장소 : 원대운동장. 10,000명 참석
72. 1. 2~ 4 신정성지 순례법회. 장소 : 기념관. 참가교구 : 서울·수원·대구·인천·군산·광주·부산·진주·마산·목포·이리·남원·정주·전주
1. 5~14 대학선방. 장소 : 소남훈련원(완도). 인원 : 41명 참석
1.20 故 숭산 박광전교무 종재식. 장소 : 기념관. 1,200명 참석
1.25 전국학생연합회 정기총회. 장소 : 중앙훈련원. 150명 참석 회장 : 황화경(이리), 부회장 : 김은중(인천)
1.28 서울지역 대학생 만덕산훈련(8박9일). 장소 : 만덕산. 25명 참석
2. 9~13 대학생 지도자 수련회. 장소 : 중앙훈련원. 38명 참석
2. 9 월간 『어린이교화』 편집위원 모임. 장소 : 교화연구소. 20명 참석
2.26 출가교화단 조직위원회. 장소 : 교화연구소. 10명 참석
3. 4 월간 『어린이교화』 발간(500부)
3.18 「원불교학생회로 안내합니다」 팜프렛 발간
3.25 대학생연합회 지도위원회. 장소 : 대전교구사무소
4.10 어린이그림공모 마감(대각개교절 기념) 900점
4.18 전국학생연합회 간부훈련. 장소 : 전주교구청. 20명 참석
4.27 대각개교절 전야 기도식. 장소 : 영모전광장. 700명 참석
4.29 성산 성정철교무 교회전체장 발인식. 장소 : 기념관. 1,300명 참석
5. 3 어린이그림잔치 시상식. 장소 : 기념관. 500명 참석
5. 9 제2차 전국대학생 운영위원회. 장소 : 대전교구사무소. 20명 참석
6.30 교화연구발표회(교화단 조직관리). 장소 : 중앙훈련원. 20명 참석
7.13 출가교화단 지단회의. 장소 : 중앙훈련원 회의실
7.21 대학생연합회 단장·중앙훈련. 장소 : 중앙훈련원. 20명 참석
7.24~27 대학생연합회 보은수련회. 장소 : 중앙훈련원. 120명 참석
8.11 유아교육자 세미나. 장소 : 서울회관. 120명 참석
8.20 법인절 전야기도식. 장소 : 기념관. 700명 참석
8.22~23 전국학생연합회 후반기 임원회의 및 『원의 향기』 3집 편집위원회 장소 : 교화연구소. 15명 참석
72.10.19 교화사업회 운영위원회. 장소 : 교정원 회의실. 26명 참석
10.21 교서 감수위원회. 장소 : 국제부. 8명 참석
11.13 낙원가정 표어공모 심사회의(우리가족 조석심고 웃음, 행복, 기쁨, 낙원) 장소 : 교화연구소. 10명 참석
11.23 대학생연합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회장 : 강대훈). 장소 : 대구동명훈련원. 50명 참석

72.12. 8　　교구법위사정을 위한 특별기도. 장소 : 대각전. 참석 : 각교구 법위사정 참석수위단
12.12　　『어린이 대종경이야기』 전5권 발간. 3,000질
12.18　　故 형산 김홍철교무 교회전체장 발인식. 장소 : 기념관. 1,300명 참석
12.20~22　　어린이지도자(꿈밭) 훈련 결제. 장소 : 대각전. 30명 참석

다. 역대임직원

번호	직 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연구부장	宋 奎	男	1900. 8. 4	9. 9. 10~13. 3. 25	
	지방순회원	〃	〃	〃	11. 3. 26~12. 3. 25	
	교무부장	宋 萬 京	〃		12. 3. 26~14. 3. 25	
	교 무	李 春 風	〃	1876. 2. 6	12. 3. 26~13. 3. 25	
	〃	宋 萬 京	〃		13. 3. 26~17. 3. 25	
	교무부서기	全 飮 光	〃	1909. 6. 17	13. 3. 26~17. 3. 25	
	연구부서기	宋 道 性	〃	1907. 11. 19	13. 3. 26~17. 10. 31	
	교무부장	金 幾 千	〃	1890. 2. 5	14. 3. 26~19. 3. 25	
	교 무	〃	〃	〃	14. 3. 26~19. 3. 25	
	연구부장	全 飮 光	〃	1909. 6. 17	17. 3. 27~19. 3. 25	
	교무부장	宋 道 性	男	1907. 11. 19	17. 11. 1~18. 3. 26	
	순 회 원	金 永 信	女	1908. 2. 6	17. 3. 27~18. 3. 26	
	〃	曺 專 權	〃	1909. 12. 21	17. 3. 27~18. 3. 26	
	임시교무	宋 碧 照	男	1876. 9. 11	17. 11. 1~18. 3. 26	
	교무부서기	宋 慧 煥	〃	1905. 2. 12	17. 3. 27~18. 3. 26	
	교무부장	全 飮 光	〃	1909. 6. 17	18. 3. 27~19. 3. 25	연구부장겸임
	교 무	李 共 珠	女	1897. 12. 23	18. 3. 27~19. 3. 25	
	교무부서기	金 貞 鍾	男	1913. 9. 5	18. 3. 27~19. 3. 25	
	연구부장	李 共 珠	女	1897. 12. 23	19. 3. 26~20. 3. 25	
	교무부장	宋 奎	男	1900. 8. 4	19. 3. 25~20. 3. 25	
	교 무	柳 虛 一	〃	1882. 10. 19	19. 3. 26~23. 4. 25	
	교무부서기	柳 成 烈	〃	1917. 3. 28	19. 3. 26~20. 3. 25	
	교무부장	全 飮 光	〃	1909. 6. 17	20. 3. 26~22. 3. 25	
	연구부장	徐 大 圓	〃	1910. 3. 20	20. 3. 26~21. 3. 25	
	교 무	曺 專 權	女	1909. 12. 21	20. 3. 26~21. 3. 5	
	교무부서기	林 祥 權	男	1903. 2. 12	20. 3. 26~21. 3. 25	
	연구부서기	朴 道 完	女	1917. 10. 28	20. 3. 26~21. 3. 25	
	연구부장	金 亨 悟	男	1911. 10. 14	21. 3. 26~22. 3. 25	
	연구부장	柳 成 烈	〃	1917. 3. 8	21. 5. 26~24. 4. 25	
	교무부장	宋 道 性	〃	1907. 11. 19	22. 3. 26~23. 4. 25	감사부장겸임

연구부장	李 共 珠	女	1897. 12. 23	22. 3. 26～23. 4. 25	통신부장겸임
연구부서기	徐 共 南	〃	1918. 7. 21	23. 3. 26～23. 4. 25	통신부서겸임
순회교부	金 光 旋	男	1897. 9. 6	22. 3. 26～23. 4. 25	
순회응접원	金 亨 悟	男	1911. 10. 14	22. 3. 26～23. 4. 25	
교 감	柳 虛 一	〃	1882. 10. 19	23. 4. 26～24. 4. 25	
교무부장	金 亨 悟	〃	1911. 10. 14	23. 4. 26～24. 4. 25	
교부부서기	金 貞 鍾	〃	1913. 9. 5	23. 4. 26～24. 4. 25	
교 감	宋 道 性	〃	1907. 11. 19	24. 4. 26～27. 4. 25	
교무부장	金 大 擧	〃	1914. 3. 16	24. 4. 26～25. 4. 25	
연구부장	柳 成 烈	〃	1917. 3. 8	24. 4. 25～25. 4. 25	
〃	李 共 珠	〃	1897. 12. 23	25. 4. 26～26. 4. 25	
교무부서기	李 道 順	〃		25. 4. 26～26. 4. 25	
교 감	徐 大 圓	〃	1910. 3. 20	26. 4. 26～27. 4. 25	
교 무	朴 光 田	〃	1915. 3. 23	26. 4. 26～27. 4. 25	
〃	朴 將 植	〃	1911. 1. 9	26. 4. 26～27. 4. 25	
교무부장	朴 濟 奉	〃	1888. 1. 15	26. 4. 26～27. 4. 25	
교무부서기	崔 正 均	〃	1924. 4. 20	26. 4. 26～29. 4. 25	
교 감	徐 大 圓	〃	1910. 3. 20	26. 4. 26～27. 4. 25	
교 무	朴 光 田	〃	1915. 3. 23	26. 4. 26～27. 4. 25	
〃	朴 將 植	〃	1911. 1. 9	26. 4. 26～27. 4. 25	
교무부장	朴 濟 奉	〃	1888. 1. 15	26. 4. 26～27. 4. 25	
교무부서기	崔 正 均	〃	1924. 4. 20	26. 4. 26～29. 4. 25	
교무부장	金 大 擧	男	1914. 3. 16	27. 4. 26～28. 4. 25	
교 감	宋 奎	〃	1900. 8. 4	27. 4. 26～28. 4. 25	
〃	柳 虛 一	〃	1882. 10. 19	27. 4. 26～28. 4. 25	예감겸임
〃	李 共 珠	女	1897. 12. 23	27. 4. 25～	
직원교무	朴 昌 基	〃	1917. 9. 14	27. 4. 26～28. 4. 25	
순 교	崔修仁華	〃	1889. 4. 27	27. 4. 26～27. 4. 19	
서 기	李 光 悟	男	1920. 2. 11	27. 4. 26～28. 4. 15	
서 기	宋 濟 局	〃	1920. 3. 17	27. 4. 26～28. 4. 15	
부 장	朴 光 田	〃	1915. 3. 23	27. 2. 11～	
예 감 보	許 峻	〃		27. 2. 11～28. 6. 9	
순 교	李 性 覺	女	1886. 1. 17	27. 4. 20～28. 4. 25	
서 기	全 泰 守	男	1925. 6. 7	28. 4. 28～	
교 감	金 大 擧	〃	1914. 3. 16	28. 4. 26～	
예 감	李 雲 捲	〃	1914. 5. 3	28. 4. 26～29. 4. 25	
교 감	柳 虛 一	〃	1882. 10. 19	28. 4. 26～	
예 석 계	李 光 悟	〃	1920. 2. 11	28. 4. 26～29. 4. 25	

교무	朴昌基	男	1917. 9. 14	28. 4. 26~29. 4. 25	
순교	崔修仁華	女	1889. 4. 27	28. 4. 26~29. 4. 25	
〃	鄭世月	〃	1896. 1. 28	28. 4. 26~29. 4. 25	
교감	徐大圓	男	1910. 3. 20	28. 6. 10~29. 4. 25	
순교	盧三九華	女	1897. 2. 27	28. 6. 10~29. 4. 25	
서기	金正勇	男	1925. 11. 1	29. 12. 9~31. 4. 25	
〃	李正恩	女	1924. 11. 27	29. 4. 26~31. 4. 25	
〃	朴榮植	男	1987. 11. 24	29. 7. 12~31. 4. 25	
〃	朴恩局	女	1923. 1. 22	29. 4. 26~31. 4. 25	
교무부장	李共珠	〃	1897. 12. 23	31. 4. 26~36. 4.	
서기	宋靈鳳	〃	1927. 12. 3	31. 4. 26~32. 4. 25	
〃	吳龍圓	男		31. 4. 26~32. 4. 25	
〃	朴榮植	〃	1987. 11. 24	31. 4. 26~32. 4. 25	
차장	徐大仁	女	1914. 12. 11	32. 4. 26~33. 4. 25	
교감	李雲捲	男	1914. 5. 3	32. 4. 26~33. 4. 25	
순교감	李東震華	女	1894. 5. 15	32. 4. 26~33. 4. 25	
서기	柳聖一	〃	1928. 7. 26	32. 4. 26~34. 4.	
〃	朴濟權	〃	1925. 8. 7	32. 4. 26~33. 4. 25	
순교	鄭世月	〃	1896. 1. 28	32. 4. 26~33. 4. 25	
〃	朴眞悟	男	1902. 3. 20	32. 4. 26~34. 4.	
예감	丁一持	〃	1892. 7. 1	33. 4. 26~34. 4.	
순교	崔修仁華	女	1889. 4. 27	33. 4. 26~34. 4.	
서기	林學峻	男	1926. 3. 5	33. 4. 26~34. 4.	
예감서기	丁震浩	女	1927. 1. 18	33. 4. 26~34. 4.	
서기	全八根	〃	1927. 3. 2	34. 4. 26~35. 4.	
〃	宋靈智	〃	1932. 10. 10	34. 4. 26~35. 4.	
〃	金大觀	〃	1935. 3. 24	34. 4. 26~35. 4	
교감	李完喆	男	1897. 3. 27	34. 4. 26~35. 4.	
예감	朴濟奉	〃	1888. 1. 15	34. 4. 26~42.	
부장	曺專權	女	1909. 12. 21	35. 4. 26~38. 4.	
차장	李恩錫	〃	1925. 1. 12	37. 4. ~38. 4.	
서기	金大觀	女	1935. 3. 24	37. 4. ~38. 4.	
〃	池性仁	〃	1932. 11. 16	37. 4. ~38. 4.	
순교감	柳虛一	男	1882. 10. 19	37. 4. ~42.	
예감	李君一	〃	1895. 6. 3	37. 4. ~40. 4.	
예식서기	李光悟	〃	1920. 2. 11	37. 4. ~40. 4.	
부장	金勤修	〃	1910. 6. 9	38. 4. ~40. 4.	
서기	李再耕	女	1929. 8. 26	38. 4. ~40. 4.	

순교감	丁光薰	男	1917. 8. 30	30. 4.	~40. 4.
〃	曺專權	女	1910. 12. 25	38. 4.	~48.
〃	李敬順	〃	1915. 4. 24	38. 4.	~40. 4.
부장	丁光薰	男	1917. 8. 30	40. 4.	~42.
순교감	金洪喆	〃	1902. 9. 15	40. 4.	~41.
예감	趙甲鍾	〃	1905. 5. 13	40. 4.	~41.
예감보	尹正運	〃	1908. 2. 9	40. 4.	~42.
교무주사	申在一	〃	1928. 1. 19	40. 4.	~41.
학생주사	姜在善	〃	1923. 4. 8	40. 4.	~41.
예식주사	金貴根	〃	1920. 8. 9	40. 4.	~42.
과장	姜在善	〃	1923. 4. 8	41.	~42.
주사	房國敬	〃	1922. 5. 20	41.	~42.
〃	姜雲祥	〃	1937. 11. 24	41.	~42.
서기	朴清秀	男	1937. 1. 21	41.	~43.
교감	李東震華	〃	1894. 5. 5	41.	~47.
순교감	吳宗泰	女	1913. 12. 20	41.	~48.
부장	金勤修	男	1910. 6. 9	42.	~44.
교무부주사	宋順鳳	女	1934. 3. 6	42.	~45.
〃	李龍源	男	1928. 3. 1	42.	~46.
예감	尹正運	〃	1908. 2. 9	42.	~46.
순교무	李聖信	女	1924. 12. 1	42.	~44.
〃	全二昌	〃	1925. 10. 3	42.	~43.
주사	李濟性	男	1928. 6. 20	43.	~44.
〃	金法眞	女	1934. 3. 23	43.	~44.
순교감	金永信	〃	1908. 2. 6	43.	~47.
〃	全二昌	〃	1925. 10. 3	43.	~44.
예무	閔道淵	男	1906. 2. 5	43.	~44.
부장	李恩錫	〃	1919. 1. 12	44.	~45.
주사	朴選一	〃	1928.	44.	~45.
예식주사	金成庸	〃	1906.	44.	~45.
〃	徐滿局	〃	1923.	44.	~45.
주사	宋天恩	〃	1936. 7. 9	45.	~46.
〃	李善慶	〃	1934. 3. 3	45.	~46.
서기	朴明旭	〃	1938. 1. 18	45.	~47.
〃	朴正默	女	1937. 4. 20	45.	~46
예식주사	申在一	男	1928. 1. 19	45.	~47.
부장	金勤修	〃	1910. 6. 9	46.	~48.
과장	徐大俊	〃	1934. 12. 29	46.	~48.

주 사	金 達 性	男	1936. 11. 15	46.	~47.	
서 기	韓 慧 根	女	1942. 9. 8	46.	~47.	
예 감	丁 光 薰	男	1917. 8. 30	46.	~47.	
예 감 보	李 炳 恩	〃	1926. 6. 7	46.	~47.	
예식주사	金 聖 徹	〃	1934. 4. 5	47.	~48.	
서 기	崔 世 塵	女	1939. 2. 12	47.	~48.	
순 교 감	金 日 鉉	男	1907. 5. 5	47.	~49.	
순 교 무	權 偶 然	女	1918. 5. 21	47.	~48.	
〃	辛 濟 根	〃	1925. 12. 29	47.	~48.	
예 감	吳 彌 山	女	1889. 9. 1	47.	~55.	
순 예 감	朴 榮 植	〃	1987. 11. 24	47.	~50.	
교 령	李東震華	女	1893. 5. 5	47.	~50.	
부 장	朴 恩 局	〃	1923. 1. 22	48.	~52.	
과 장	朴 正 薰	男	1929. 5. 30	48.	~51.	
서 기	韓 海 仙	男	1932. 8. 7	48.	~49.	
〃	金 至 善	女	1942. 12. 9	48.	~50.	
예식주사	辛 道 亨	男	1936. 4. 15	48.	~49	
순 교 감	趙 峻 谷	〃	1910. 12. 2	48.	~49.	
〃	金 智 玄	女	1924. 6. 3	48.	~49.	
〃	全 二 昌	〃	1925. 1. 17	48.	~49.	
〃	辛 濟 根	〃	1923. 12. 29	48.	~50.	
〃	尹 正 運	男	1897. 1. 5	48.	~51.	
주 사	趙 昌 恩	〃	1941. 1. 15	48.	~50.	
서 기	金 學 仁	〃	1940. 1. 15	49.	~50.	
서 기	李 壯 榮	〃	1942. 1. 6	49.	~51.	
예 무	金 致 局	〃	1924. 4. 23	49.	~52.	
순 교 감	李 恩 錫	〃	1919. 9. 12	49.	~50.	
〃	張 聖 鎭	〃	1934. 12. 4	49.	~52.	
〃	吳 宗 泰	女	1914. 12. 20	49.	~50.	
과 장	朴 濟 衆	男	1936. 5. 31	50.	~51.	
주 사	徐 慶 田	〃	1937. 7. 9	50.	~51.	
〃	朴 虎 秀	女	1940. 7. 5	50.	~51.	
〃	徐 正 允	男	1939. 6. 14	50.	~52.	
서 기	金 常 恩	〃	1945. 3. 25	50.	~52.	
교 령	朴 榮 植	〃	1897. 11. 24	50.	~51.	
순 교 감	金 智 玄	女	1924. 6. 7	50.	~53.	
〃	朴 濟 權	〃	1925. 8. 7	50.	~51.	
순 교 무	李六道華	〃	1903. 9. 25	50.	~51.	

순교무	辛道亨	男	1936. 4. 15	50.	~51.		
과장	辛道亨	〃	1936. 4. 15	51.	~52.		
주사	金復煥	女	1938. 12. 10	51.	~52.		
〃	朴圓根	男	1936. 4. 29	51.	~52.		
서기	宋聖庵	〃	1926. 4. 30	51.	~52.		
서기보	薛允煥	〃	1946. 8. 30	51.	~52.		
교령	李東震華	女	1893. 5. 5	51.	~53.		
순교감	朴榮植	男	1897. 11. 24	51.	~55.		
〃	金洪哲	〃	1903. 9. 18	51.	~55.		
〃	金日鉉	〃	1907. 1. 5	51.	~56. 4. 12		
부장	金中默	〃	1920. 6. 22	52.	~53.		
과장	金仁喆	〃	1928. 7. 15	52.	~56. 4. 12		
〃	李鍾圓	〃	1930. 10. 6	52.	~53.		
주사	金聲振	男	1939. 10. 13	52.	~53.		
〃	成仁鍾	〃	1944. 8. 6	52.	~53.		
〃	朴圓錫	女	1941. 7. 22	52.	~56. 4. 12		
〃	朴慧圓	〃	1943. 10. 11	52.	~56. 4. 12		
서기	薛允煥	男	1946. 8. 30	52.	~53.		
예무	金壯權	〃	1923. 1. 10	52.	~56. 4. 12		
간사	邊道觀	〃	1923. 2. 9	52.	~53.		
순교감	金永信	女	1908. 2. 6	52.	~56. 4. 12		
〃	吳宗泰	〃	1914. 12. 20	52.	~54.		
〃	趙峻谷	男	1910. 12. 2	52.	~53.		
〃	朴恩局	女	1923. 1. 22	52.	~53.		
순교무	辛道亨	男	1936. 4. 15	52.	~53.		
부장	金勤修	〃	1922. 6. 9	53.	~56. 4. 13		
주임	朴眞興	〃	1935. 9. 5	53.	~54.		
주사	韓道鳳	女	1942. 8. 17	53.	~56. 4. 12		
서기	金仁剛	男	1949. 7. 23	53.	~55.		
간사	韓潤圓	〃		53.	~54.		
주무	金正勤	女	1918. 3. 5	53.	~68. 2.		
교령	李雲捲	男	1914. 5. 5	53.	~55. 1.		
순교감	趙甲鍾	〃	1905. 10. 16	53.	~56. 4. 12		
순교무	金致局	〃	1924. 4. 23	53.	~55. 1		
〃	李普圓	〃	1934. 9. 12	53.	~54.		
〃	宋順鳳	女	1932. 3. 6	53.	~55. 1		
과장	李普圓	男	1934. 9. 12	54.	~56. 4. 12		
주임	孫正允	〃	1939. 6. 14	54.	~55. 1.		

주 사	李宗眞	男	1939. 11. 24	54.	~56. 4. 12
간 사	鄭泰欽	〃	1918. 4. 28	54.	~59. 2.
교 감	安理正	〃	1914. 2. 21	54.	~56. 4. 12
주 무	權峻圓	〃	1938. 4. 26	55.	~56. 4. 12
서 기	高允聖	〃	1952. 1. 26	55.	~56. 4. 12
예 감	金洪哲	〃	1903. 5. 18	55.	~65. 2.
교 령	趙甲鍾	〃	1905. 10. 16	56. 4. 13	~57. 4. 14
순교감	金勤修	〃	1922. 6. 9	56. 4. 13	~58. 2.
〃	李中正	〃	1921. 6. 10	56. 4. 13	~59. 2.
〃	朴恩燮	女	1924. 6. 29	56. 4. 13	~57. 4. 14
교무과장	張正一	男	1926. 5. 28	56. 4. 13	~57. 4. 14
연수과장	孫正允	〃	1939. 6. 14	56. 4. 13	~57. 4. 14
청소년지도과장	徐慶田	〃	1939. 10. 15	56. 4. 13	~57. 4. 14
예 무	李大光	〃	1937. 2. 28	56. 4. 13	~58. 2.
주 임	李性吉	〃	1937. 1. 2	56. 4. 13	~57. 3.
주 사	崔柔圓	女	1947. 2. 3	56. 4. 13	~57. 2.
〃	吳光益	男	1945. 12. 29	56. 4. 13	~57. 2
〃	金貞敏	女	1945. 12. 29	56. 4. 13	~57. 2.
〃	文善慧	〃	1947. 11. 9	56. 4. 13	~57. 3.
주 무	金敬進	〃	1952. 1. 24	56. 4. 13	~57. 3.
순교감	金日鉉	男	1907. 1. 5	57. 4. 15	~64.
〃	趙峻谷	〃	1910. 12. 2	57. 5. 15	~59. 2.
〃	張聖鎭	〃	1924. 2. 5	57. 4. 5	~58. 2.
〃	李智一	女	1915. 5. 22	57. 4. 15	~59. 2.
교무과장	金達性	男	1936. 1. 5	57. 3. 20	~58. 2.
주 임	崔柔圓	女	1947. 2. 3	57. 3. 1	~58. 2.
주 사	유보상	〃	1946. 10. 15	57. 3. 10	~60. 2.
업무주임	황세원	〃	1943. 3. 16	57. 5. 20	~58. 3.
부 장	李廣淨	男	1936. 9. 1	58.	~62. 4. 17
순교감	金中默	〃	1920. 6. 22	58.	~70. 2.
〃	朴恩燮	女	1924. 6. 29	58.	~60. 1.
교무과장	徐三成	男		58.	~60. 1.
편수원	孫正尹	〃	1939. 10. 15	58.	~62. 4.
〃	金三印	〃	1934. 10. 29	58.	~61. 2.
〃	趙明心	女	1946. 10. 11	58.	~60. 2.
예 무	金達性	男	1936. 11. 15	58.	~65. 2.
교 감	尹正運	〃	1908. 2. 9	58.	~64.
주 임	朴慧明	女	1942. 7. 18	58.	~62. 4.

주 임	羅 道 局	男	1945. 8. 27	59. 2. ~60. 2.		
주 사	李 德 一	女	1946. 4. 26	59. 2. ~62. 4.		
서 기	李 聖 圓	男	1955. 8. 6	59. 2. ~60. 2.		
예 감 보	鄭 泰 飮	〃	1918. 4. 28	59. 2. ~67. 7. 30		
순 교 감	宋 圓 徹	女	1926. 5. 8	60. 2. ~61. 2		
〃	李 智 一	〃	1915. 5. 12	60. 2. ~65. 2.		
주 사	牟 賢 哲	男	1948. 1. 23	60. 2. ~62. 4.		
〃	吳 善 道	女	1949. 6. 6	60. 2. ~63. 7. 4		
〃	李 善 照	〃	1952. 9. 20	60. 2. ~63. 7. 4		
서 기	宋 賢 明	男		60. 2. ~61. 2.		
간 사	金 亨 善	女	1957. 6. 19	61. 2. ~62. 2.		
순 교 감	崔 南 貞	〃	1914. 6. 13	61. 2. ~65. 2.		
유물관리담당	朴 濟 衆	男	1936. 5. 31	61. 2. ~65. 2.		
교화부장	朴 正 薰	〃	1934. 7. 21	62. 4. 18~67. 11. 7		
과 장	羅 道 局	〃	1945. 8. 27	62. 4. 18~66. 2.		
주 임	崔 性 德	〃	1947. 9. 19	62. 5. 1~63. 4.		
주 사	金 慶 元	〃	1951. 8. 1	62. 4. 18~65. 2.		
〃	金 恩 珠	女	1951. 10. 6	62. 5. 2~64. 2.		
〃	鄭 大 安	〃	1951. 12. 22	62. 4. 20~65. 2.		
유물관리주사	申 宗 熙	男	1948. 2. 22	62. 4. 28~63. 4.		
〃	李 恩 錫	〃	1912. 1. 12	62. 4. 28~68. 2.		
〃	金 致 局	〃	1924. 4. 23	62. 4. 28~69. 2.		
〃	李 濟 性	〃	1935. 5. 7	62. 4. 28~63. 4.		
주 사	辛 大 誠	男	1951. 8. 1	63. 5. 8~65. 2.		
〃	張 圓 心	女	1946. 7. 29	63. 7. 6~68. 2.		
〃	朴 主 仁	〃	1949. 10. 2	63. 7. 6~68. 2.		
순 교 무	金 道 宗	男	1953. 12. 8	63. 3. ~65. 2.		
간 사	劉 梵 日	〃	1957. 8. 13	62. 6. 14~63. 7.		
주 사	權 莊 玄	〃	1927. 1. 24	63. 4. 3~68. 2.	재 가	
〃	朴 龍 德	〃	1949. 3. 9	63. 7. 1~68. 2.		
간 사	朴 良 根	〃	1959. 3. 9	63. 7. 1~64.		
주 임	金 恩 珠	女	1951. 10. 6	64. 2. ~67. 2.		
간 사	河 明 奎	男	1959. 2. 9	64. 3. 7~65. 2.		
〃	梁 應 天	〃	1960. 5. 13	64. 1. 20~65. 2.		
해외과장	金 成 薰	〃	1947. 6. 18	64. 6. 1~66. 2.		
주 임	辛 大 誠	〃	1951. 8. 1	65. 2. ~66. 2.		
〃	鄭 大 安	女	1951. 12. 22	65. 2. ~66. 2.		
예 감	金 達 性	男	1936. 11. 15	65. 2. ~70. 1.		

순교감	趙正中	男	1938. 1. 28	64.	~68. 2.
순교무	辛靈文	〃	1943. 7. 20	65. 2. 29~66. 2.
〃	崔靈明	女	1939. 3. 5	65. 2. 29~66. 2.
차장	羅道局	男	1945. 8. 27	66. 2. ~68. 2.
주임	姜淑圓	女	1952. 10. 17	66. 3. 6~68. 2.
순교감	趙智聖	男	1934. 1. 2	66. 3. 12~
〃	朴眞興	〃	1935. 9. 20	66. 4. ~70. 1.
순교감	權偶然	女	1918. 5. 21	66. 4. ~68. 2.
〃	金義善	〃	1932. 12. 19	66. 3. 18~68. 2.
간사	金萬弘	男	1961. 5. 21	66. 2. 2~66. 9. 30
〃	金亨船	〃	1963. 1. 8	66. 1. 13~67. 1.
〃	金允基	〃	1965. 5. 25	66. 2. 26~67. 1.
주사	朴允哲	〃	1955. 11. 12	66. 9. 4~68. 2.
간사	劉梵日	〃	1957. 8. 13	66. 9. ~68. 2.
주사	方德萬	〃	1940. 10. 15	67. 3. 15~68. 2.
주사	黃鳳眞	女	1954. 12. 5	67. 3. 15~69. 2.
간사	李宗英	男	1964. 2. 16	67. 2. 18~69. 1.
〃	尹道綠	〃	1963. 12. 11	67. 2. 16~68. 2.
〃	崔玄天	〃	1963. 12. 11	67. 1. 18~68. 2.
〃	曺元亨	〃		67. 9. 26~68. 2.
순교감	柳香元	女	1935. 1. 19	67. 3. ~68. 2.
〃	金大根	男	1919. 3. 26	67. 11. 8~71. 1.
〃	梁慧蓮	男	1921. 10. 14	68. 1. 17~71. 1.
〃	朴正薰	男	1934. 7. 21	68. 11. 8~
교화연구소장	孫正允	〃	1939. 6. 14	68. 1. 4~71. 1.
부장	金理玄	女	1930. 6. 14	68. 1. 4~71. 1.
과장	金主圓	男	1948. 10. 10	67. 12. 9~71. 2.
〃	李善照	女	1952. 9. 20	67. 12. 22~72. 1.
주사	張賢中	〃	1952. 5. 4	67. 12. 22~71.
〃	盧永寬	男	1955. 7. 13	67. 12. 22~72. 1.
간사	成道學	〃	1958. 5. 15	68. 1. 24~69. 1.
〃	鄭圓救	〃	1964. 12. 5	68. 24~69. 1.
주사	卞大進	女	1947. 1. 24	69. 1. 10~71.
간사	尹聖俊	男		69. 2. 20~70.
〃	黃允眞	女		69. 1. 4~70.
〃	朴鍾洛	男	1965. 12. 17	69. 2. 8~70.
차장	金主圓	〃	1948. 10. 10	71. 1. ~
과장	金仁剛	〃	1948. 7. 23	70. 2. 3~

	주 임	張 三 正	女	1952. 6. 4	67. 12. 22~	
	주 사	高 眞 如	〃	1951. 6. 5	70. 2. 3~	
	〃	金 浩 性	男	1956. 3. 22	71. 2. 3~	
	간 사	崔 正 風	男	1958. 9. 21	71. 1. 16~72. 12. 31	
	〃	金 宗 吉	〃	1967. 6. 20	71. 1. 21~72. 12. 31	
	〃	梁 德 天	〃	1968. 10. 3	71. 1. 24~72. 12. 31	
	예 감	朴 眞 興	男	1935. 9. 20	70. 1. ~	
	순 교 감	吳 恩 聖	女	1932. 12. 15	71. 2. 3~	
	주 사	張 成 恩	男	1956. 6. 20	72. 1. 23~	
	〃	崔 心 經	女	1954. 9. 10	72. 1. 23~	
	〃	趙 和 秀	〃	1958. 12. 14	72. 1. 23~	
	〃	李 宗 化	男	1960. 5. 3	72. 1. 23~	
	간 사	朴 世 鎭	〃	1969. 12. 1	72. 1. 26~	
	〃	鄭 圓 救	〃	1963. 12. 5	72. 1. 1~	
	〃	고 경 주	女	1963. 2. 7	72. 2. 13~	
	주 사	朴 道 廣	男	1958. 11. 21	72. 2. 23~	
	순 교 감	李 大 光	〃	1937. 3. 28	72. 2. 2~	

4. 재 무 부

재무부는 불법연구회 창립당시부터 일제의 압정속에서도 교단의 근실을 지켜 대외적으로도 찬사를 거듭 받게하는 서무부에 연원이 닿는다.

원기19년(1924) 『불법연구회규약』에는 서정원의 수석부서로 회중의 재무관리와 문서사무를 수행하는 서무부였으며 원기27년(1942)에는 산업부로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원기33년(1948) 교정원의 4부서중 재무산업의 2부가 되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그후 원기44년(1959) 제1차 교헌개정시 산업·재무의 2부를 통합하여 교정원 재무부가 되었고 원기62년(1987)에 들어서 교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 산업부를 분화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산업부 분화이후에도 산업부장은 재무부장이 겸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단의 성장에 따라 대외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법인사무국을 부내의 별도기구로 별립 운영해 오고 있다.

가. 직제 및 주요기능

재무부에는 재무과, 관리과, 법인사무국의 직제가 있는 바 분장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재 무 과 : 교단의 금융, 예산집행 및 결산

② 관 리 과 : 교단의 각종 건축시설, 총부의 도량수호 및 관리, 총부의 살림

③ 법인사무국 : 종교법인과 복지법인, 학교법인에 관한 사무, 기타 법인에 관한 사무

〈직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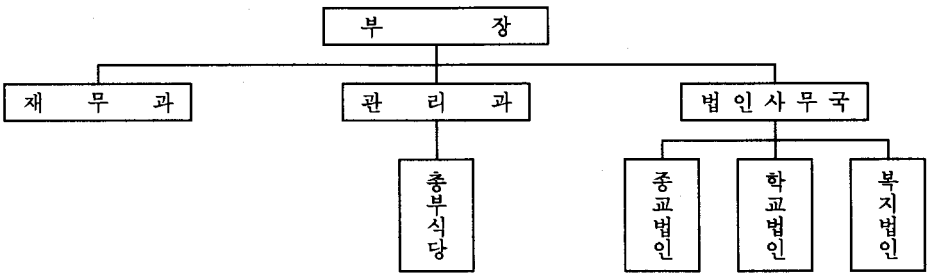

나. 연 혁

9.	8	소태산대종사께서 친히 이리·익산부군은 토지도 광활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무산자의 생활이며 각지 회원들의 내왕이 편리하겠다는 말씀에 대지 3,000여평 현금 600여원의 김재 서중안 희사로 익산군 북일면 신룡리에 원불교 중앙총부의 자리가 마련되다.
	9.	교무부 상조부와 더불어 서무부 발족.
	11.	목조 초집 2동 17간 첫 건설 공사비 1천수백원
	12.	엿공장 경영 추진
13.	6.	신룡리 상원인수. 3천여평 6,800본 식수 . 현정미소
14.	2.	양잠실 건축
	3.	신룡리 산판개간 3,000평, 공사비 70
18.		산업부 발족
21.		지물포 상점인수 보화당 약방 설립 산업부 적극 확장목적 1만원투자 감독 이동안, 만덕산 49정보 산판 매입. 감나무 40주 식부
23.		영광 불갑면 등 토지 15,860평을 12,393원40전 매각(상은 차금 청산이 목적)
24.		삼례과수원 설치. 임야 17필 69,920평, 7,298원10전 매입.
27.		황등면 간석지 9,732평 12,520원26전 매각. 동척 연부차금 9,320원 청산
28.	8. 20	전화 158번 개통
30.		이흥과원 경영
32.		유일정미소 경영

34. 재무부 발족.
35. 유일정미소를 산업일원화 목적으로 산업부 귀속직영
37. 삼창공사 설립. 성탑식수. 도로확창 대문개수 : 공사비 100만원
38. 대종사 기념비 건립
39. 교학과학생 기숙사로 보화원 개수
40. 영광 정관평 제2 방언공사 착공식 거행
41. 중앙총부 대각전 증축. 전무출신 공동묘지인 알봉정리착수(공산 송혜환씨 창의연금)
42.11. 총부 유지대책 위원회 발족. 위원장 이공주
12. 총부구내 특선 전기공사 완료
43. 5. 유지대책위원회에서 7천여평 농지매입 서울 한남동 정각사 대지 및 산림불하 계약성립
44. 대각전 숙직실 신축 구내 권동화씨댁 매입. 이홍과수원 재산정화 신흥지부 매도(동화병원 차금 변창키 위해서). 신도안 대지 900평 30만원에 매입(서울중심교도)
47.12. 총부 유지답 2필지 매입(정산종사 장의비와 이홍과수원매도 합금)
48. 총부식당 건축(건평상하 86평 양식건물, 공사비 100만원). 황등율원 매도 : 백미 56가마니
50. 영모전 임야 1,000평 매입(백미 23가마니). 북일전화 5대 시설. 종법사 금강리 요양주택 준비(전세 40만원, 수리 20만원), 산업원 신축(본사 15평·물치장 8평·창고 22평·돈사 6평·변소 6평, 공사비 340,000원), 이동진화교무 종재기념비로 조립식 재건담장공사. 만덕산 법당마련(목조와집 48평, 공사비 250,000원 전주교도 박락천회사)
54. 목욕탕 신축(콘크리트 스라브집 23평, 공사비 110만원). 수은등 가설(공사비 11만원, 부산진교도 회사). 송대뒤 임야 매입(1,170평 330,700원 매입)
55. 구내 교환대 설치(공사비 445,000원, 인터폰 공전식 30회선, 광주교도 이귀성회사)
56. 영모전 기념관 보은원 종법원(반백년 사업회) 신축
57. 보은원 우물공사(조갑종 열반기념 77,600원). 팔봉 유지답 2필지 1,645,160원 매도(남한강 부채정리). 총부식당 이전. 사무실 앞 하수도 작업. 도로포장(시내에서 김정용주선으로 금강원뒤까지). 전화 다이알 2226번
58. 원광원 대지매입 2,421평 3,195,200원 유지답 3필지 매입. 서성로교도 박지양회사 지하수개발 구내 수도시설 완비. 공사비 3,206,188원 봉덕동교도 김양덕회사
58. 금강원 수리공사비 211,690원, 탁구장 신축 공사비 190,000원, 남·여 변소 각 1동 증축 600,000원
59. 총부식당 86평 증축 공사비 약 4,000,000여만원
60. 4. 총부정원 정리 및 식수 작업
5. 영산재방언담 등기필
6. 식당보일러 시설
9. 유일정미소 개수공사
10. 사무실 완공

60.11. 교환대 시설. 구조실·중앙선원 보수공사
61. 남한강 녹지해결. 총부농원 분리운영
62. 공원묘지 매입 42,000평 왕궁면 동봉리. 대각전 보수. 식당창고 신축. 식당앞·종법원 앞 정원공사
63. 영모전 광장 조경. 훈련원 총부간 도로확장. 보은원 대각전 페인트공사
64. 5. 김해 서상동에 대지 73평 회사입(김법계화)
7. 이리시 신용동 대종사성탑 후록 전답 합746평 매입.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원광원 앞산 21,000평 매입
11. 경북 월성군(감포)에 임야 9,210평 이전 필(이의성회사)
65. 2. 이리시 신용동에(중앙훈련원 앞) 전 625평 매입
6. 서울시 용산구 서울교당 환매등기 이전(신탁은행)
9. 백수면 길룡리(성탄지앞)에 전 136평 매입
10. 교단 숙원사업이었던 서울회관공사 다시 착수
12.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만덕산) 임야 72정 매입, 이전 필(초선지). 총부 정산종사 성탑 후록 임야 2건 570평 매입
66. 3. 백수면 죽사리(백수교당) 대지 1,607평, 불하 및 이전완필
3. 송대앞 정원공사 완성(연못)
4. 임실군 임실읍 이인리에 산 19정 7단 2묘(문동현회사)
4. 총부농원 재무부로 합산
67. 총부대학대지 도로확장 부지로 이리시에 회사 약 4,000평 총부내대지 학교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원광한의원까지 포함 재단법인으로 이전등기
68. 3. ~ 9. 도로변 400 돌담공사 완공, 공사비 약 4,000만원(원광대후원)
5. 상수도 급수 250만원
7. 정원음수대 제작 700만원(원남교당 계해생 회갑기념)
10. 화장실 완공 27,781,300만원
69. 3. 정문공사 완공 약 40평 콘크리트 와가 공사비 약 5,600만원
성업봉찬사업 일환(수원 조대진회장 일부 후원)
5. 대각전 석축 및 담장공사 300만원(원남교당 계해생 회갑기념). 보은원 응접실 방으로 개축 100만원. 새마을 도로부지 회사 시청 300평(내곳－신곳)
7. 구내 도로콘크리트포장 1차공사 완공, 공사비 약 1,900만원 성업봉찬사업 일환(원광대후원)
4~11. 구내도로 콘크리트포장 2차공사 완공, 공사비 약 1,000만원 성업봉찬사업 일환
12. 구내 정원조성 완공, 약 1,000만원공사, 김재 이재심회장 회사
70. 5. 총부유지대책을 위한 사업기관《원광상사》발족, 출자액 6,000만원
6. 총부구내 콘크리트포장 3차완공, 총공사비 1,200만원, 성업봉찬사업 일환
7. 총부구내 미화작업을 위한 정원조성(장미 200주, 개나리 200주, 철쭉 50주)
9. 자동화재 탐지기 설치(기념관·보은원). 식당에 가스 자동밥솥 구입
7. 4. 대각전 옆 화장실 및 서편 담장공사

71. 5. 충부주위 철조망 공사
7. 보은원 및 식당지붕 기와공사
식당 자외선 소독기 구입
8. 풀깍는 기계 구입
9. 송대 소나무 보호작업
11. 기념관 천정수리(화재피해)
72. 1. 기념관 사무실 수선. 구정원 화장실 짓기
3. 구내 전화선(케이블) 공사

다. 역대임직원

번호	직 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서무부장	吳 昌 建	男	1887. 10. 17	9. 9. 10~10. 5.	
	서 기	宋 道 性	〃	1907. 11. 19	9. 9. 10~12. 12. 7	
	서무부장	李 東 安	〃	1893. 2. 22	10. 5. 26~12. 3.	
	상조부서기	全 飮 光	〃	1909. 6. 17	11. 3. 26~12. 3. 25	
	서무부장	李 載 喆	〃	1891. 2. 12	12. 3. 26~13. 3. 25	
	상조부장	全 飮 光	〃	1909. 6. 17	12. 3. 26~13. 3. 25	
	서무부장	金 幾 千	〃	1890. 2. 5	13. 3. 26~14. 3. 25	
	서무부서기	金 永 信	女	1908. 2. 6	13. 3. 26~15. 3.	
	서무부장	吳 昌 建	男	1887. 10. 17	14. 3. 26~19. 3. 25	
	감 원	金 光 旋	〃	1979. 9. 6	14. 3. 26~	
	〃	李 昊 春	〃	1902. 2. 13	14. 3. 26~	
	서무부서기	徐 大 圓	〃	1910. 3. 27	15. 3. 15~16. 7. 30	
	간 사	田 九 一	〃	1910. 6. 15	15. 3. 15~	
	서무부서기	金 大 擧	〃	1914. 3. 12	16. 8. 1~	
	공 양 원	李 七 星	女	1902. 3. 7	16. 3. 26~	
	감 원	李 載 文	男	1908. 4. 19	17. 3. 27~	
	현금출납원	徐 大 圓	〃	1910. 3. 20	18. 3. 27~	
	외 감 원	宋 慧 煥	〃	1905. 2. 12	18. 3. 27~	
	내 감 원	孫 學 敬	女	1881. 3. 1	18. 3. 27~20. 3. 25	
	간 사	劉 龍 峻	男	1902. 10. 18	18. 3. 27~	
	서정원장	李 載 喆	男	1891. 2. 11	19. 3. 26~	
	서무부장	宋 慧 煥	〃	1905. 2. 12	19. 3. 26~23. 4. 25	
	공급부장	李 建 陽	〃	1910. 1. 28	19. 3. 26~20. 3. 25	
	공급주임	鄭 世 月	女	1896. 1. 28	19. 3. 26~20. 3. 25	
	서무부서기	金 貞 鍾	男	1913. 9. 5	20. 3. 26~21. 3. 20	

외 감 원	金 亨 悟	男	1911. 10. 24	20. 3. 26～	
내 감 원	鄭 世 月	女	1896. 1. 28	20. 3. 26～	
서무부서기	朴 修 權	〃		21. 3. 21～22. 3. 25	
금융출납원	趙 暗 錫	男	1910. 11. 17	21. 3. 26～22. 3. 25	
외 감 원	李 寶 局	〃	1881. 10. 17	21. 3. 26～22. 3. 25	
간 사	吳 富 哲	〃	1919. 6. 2	21. 3. 26～	
서무부서기	李 士 局	〃	1915. 1. 18	22. 3. 26～24. 4. 25	
금융출납원	金 大 擧	〃	1914. 3. 16	22. 3. 26～23. 4. 25	
외 감 원	金 長 眞	〃	1887. 4. 25	22. 3. 25～	
서무공급부장	金 大 擧	〃	1914. 3. 16	23. 4. 26～	
외 감 원	金 南 天	〃	1869. 1. 13	23. 4. 26～	
서무부장	李 士 局	〃	1915. 1. 15	24. 4. 26～25. 4. 25	
공급부장	金 貞 鍾	〃	1913. 9. 5	24. 4. 26～25. 4. 25	
외 감 원	金 亨 眞	〃	1882. 11. 17	24. 4. 26～	
금 융 원	李 亨 局	〃	1899. 11. 23	24. 10. 20～25. 4. 25	
서무공급부장	李 建 陽	〃	1910. 1. 28	25. 4. 26～	
금 융 원	李 貴 生	〃	1887. 2. 17	25. 4. 26～	
서무부서기	丁 光 薰	〃	1917. 8. 30	25. 4. 26～	
물품구매원	吳 富 哲	〃	1919. 6. 2	25. 4. 26～	
외 감 원	金 道 奉	〃		25. 4. 26～	
내 감 원	李 大 教	女	1890. 3. 29	25. 4. 26～	
〃	梁 慧 蓮	〃	1921. 4. 11	25. 4. 26～	
서정원장대리	全 飮 光	男	1909. 6. 17	25. 4. 26～26	
서정원장	〃	〃	〃	26.	
서무부서기	丁 光 薰	〃	1917. 8. 30	26.	
물품구매원	金 日 鉉	〃	1907. 1. 5	26.	
공급주임	李 大 教	〃	1890. 3. 29	26.	
공 양 계	安慧三華	女	1895. 12. 7	26.	
〃	金 瑞 業	〃	1920. 6. 25	26.	
〃	金 貞 慧	〃		26.	
세 탁 계	柳 寬 眞	〃	1916. 3. 13	26.	
〃	權 寶 日	〃		26.	
서무부장	全 飮 光	男	1909. 6. 17	27. 4. 26～38. 2. 1	
감 원	金 秉 哲	〃	1902. 2. 30	〃	
〃	鄭 世 月	女	1896. 1. 28	〃	
과원주무	丁 一 持	男	1892. 7. 1	〃	
회 계 계	李 貴 生	男	1883. 2. 17	27. 4. 26～38. 2. 1	
서 기	安 理 正	〃	1918. 2. 8	〃	

서 기	李恩錫	男	1925. 1. 12	27. 4. 26~38. 2. 1	
감원보	李道信華	女	1891. 7. 30	〃	
서기보	金貴根	男	1929. 8. 9	〃	
판매원	吳富哲	〃	1919. 6. 2	〃	
외무원	文鳳暗	女	1889. 2. 26	〃	
공양원	丁良珍	〃	1924. 8. 12	27. 5. 11~	
〃	韓貴智華	〃	1890. 10. 1	27. 4. 26~	
〃	權正音	〃	1920. 11. 12	〃	
〃	丁貫淑	〃		〃	
〃	金瑞業	〃	1920. 6. 25	〃	
서기보	全泰守	男	1925. 6. 7	27. 5. 1~	
공양원	徐大輪	女	1925. 7. 12	27. 9. 9~	
세탁원	李淸淨月	〃		〃	
외무원	李熙暎	男	1902. 2. 16	27. 8. 10~	
〃	金中默	男	1920. 6. 22	〃	
〃	金昌峻	〃	1911. 8. 10	〃	
공양원	朴順業	女	1925. 2. 10	27. 12. 1~	
세탁원	朴德濟華	〃	1893. 11. 28	27. 12. 25~	
서 기	李建春	男	1920. 12. 12	27. 2. 11~	
식당주무	金三昧華	女	1890. 10. 29	〃	
세탁주무	李性覺	〃	1889. 1. 17	〃	
판매원	金正勇	男	1925. 11. 1	〃	
서 기	丁光薰	〃	1917. 8. 30	28.	
회 계	安理正	〃	1918. 2. 8	〃	
이 사	李熙暎	〃	1902. 2. 16	〃	
감 원	吳富哲	男	1919. 6. 2	〃	
과수계원	金中默	男	1920. 6. 22	〃	
외무원	柳三田	女		〃	
선 원	安修根	男	1927. 10. 3	〃	
공양원	李淸淨月	女		〃	
세탁계원	李道信華	〃	1891. 7. 30	〃	
감 원	李建春	男	1920. 12. 12	28. 6. 10~	
이 사	李熙暎	〃	1902. 2. 16	〃	
회 계	吳富哲	男	1919. 6. 2	〃	
서 기	安理正	〃	1918. 2. 8	〃	
부 원	許 峻	男		28. 6. 10~	
견 습	朴恩燮	女	1924. 5. 29	〃	
〃	宋靈鳳	〃	1927. 12. 3	〃	

견습	李正恩	女	1924. 11. 27	28. 6. 10~		
〃	尹順培	〃	1917. 6. 30	〃		
공양원	金大心	〃	1926. 8. 21	〃		
세탁계	黃周南	〃	1916. 3. 10	〃		
〃	申在一	男	1928. 1. 19	〃		
〃	丁貫淑	女		〃		
회계	李貴生	男	1887. 2. 17	〃		
부장	金洪哲	〃	1902. 9. 19	30. 2. 1~		
이사	李建陽	〃	1910. 1. 28	29. 7. 1~		
서기	丁慶浩	女	1925. 12. 24	29. 4. 26~		
〃	李恩錫	男	1925. 1. 12	30. 2. 1~		
간사	李百徹	〃	1927. 4. 9	29. 4. 26~		
〃	李性禹	〃		29. 6. 1~		
구매원	金仁龍	〃	1922. 10. 16	29. 4. 26~		
구매원	金允中	〃	1922. 12. 7	29. 4. 26~		
외감원	安理正	〃	1918. 2. 8	〃		
내감원	李道信華	女	1891. 7. 30	〃		
〃	金三昧華	〃	1890. 10. 29	〃		
공양원	高賢鍾	〃	1925. 10. 15	〃		
〃	吳龍鳳	男		〃		
〃	安亨來	〃		〃		
〃	金奉植	女	1921. 2. 11	〃		
〃	金瑞業	〃	1920. 6. 25	〃		
세탁원	李性覺	〃	1889. 1. 17	〃		
〃	朴德濟華	〃	1893. 11. 28	〃		
〃	柳寬眞	男	1916. 3. 14	〃		
〃	張愛連	女		29. 8. 1~		
외무원	林學峻	男	1926. 3. 5	29. 3. 1~		
부장	趙暻錫	〃	1910. 11. 17	31. 4. 26~		
이사	李建春	〃	1920. 12. 12	〃		
외감원	趙謹碩	〃		〃		
내감원	李道信華	女	1891. 7. 30	〃		
서기	梁濟乘	男	1925. 10. 12	〃		
세탁부주임	朴德濟華	女	1893. 11. 28	〃		
부원	吳哲秀	女	1879. 2. 30	〃		
〃	全光順	男		〃		
〃	黃玉根	〃		〃		
공양원	朴南秀華	女	1906. 1. 2	〃		

공양원	李平日	女		31. 4. 26	
〃	崔奎學	女	1930. 5. 7	〃	
〃	鄭宗喜	〃	1929. 12. 18	〃	
〃	朴春基	男		〃	
〃	李性覺	女	1889. 1. 17	〃	
간 사	申正秀	男	1924. 1. 30	〃	
서 기	林學峻	〃	1925. 3. 5	32. 4. 26～	
〃	丁震浩	〃	1929. 1. 18	32. 6. 12～	
〃	朴永熙	女		32. 6. 11～	
〃	朴宗淑	〃		32. 6. 20～	
외감원	徐仁皓	男		32. 4. 26～	
내감원	黃周南	女	1916. 3. 10	〃	
간 병	李性覺	〃	1889. 1. 17	〃	
구매원	金永連	男	1929. 7. 18	〃	
〃	安主一	〃	1926. 7. 20	32. 9. 16～	
간 사	金悟眞	〃		32. 4. 26～	
세탁원	吳哲秀	女	1879. 2. 30	〃	
공양원	李二省華	〃	1890. 5. 15	32. 8. 8～	
〃	全光順	〃	1924. 2. 29	32. 4. 26～	
〃	李平日	〃		〃	
공양원	李光玉	〃		32. 4. 26～	
〃	姜善龍	〃		〃	
서 기	吳龍鳳	男		33. 4. 26～	
출납계	朴永暻	女	1918. 2. 13	〃	
감 원	張正現	男	1923. 4. 2	〃	
외무원	徐萬局	〃		〃	
간 사	金悟眞	〃		〃	
공양원	柳寬眞	〃	1916. 3. 13	〃	
부 장	成丁哲	男	1902. 11. 21	34.	
서 기	丁慈善	〃	1922. 9. 26	〃	
부 장	曺一貫	女	1912. 11. 17	〃	
서 기	丁慈善	男	1922. 9. 26	〃	
개인내역	李光悟	〃	1920. 2. 11	〃	
외무원	申正秀	男	1924. 1. 30	〃	
세탁계	朴德濟華	女	1893. 11. 28	〃	
〃	李性覺	〃	1889. 1. 17	〃	
내감원	李道信華	〃	1891. 7. 30	〃	
공양원	李信一華	〃	1897. 11. 5	〃	

선	계	李性覺	女	1889. 1. 17	34.	
주	임	鄭世月	女	1896. 1. 28		〃
기술원		李新德	〃			〃
〃		申慶旭	男			〃
〃		申在一	〃	1928. 1. 19		〃
주	임	李守榮	〃			〃
임	원	李大敬	女	1890. 3. 29		〃
부	장	趙暻錫	男	1910. 11. 17	35.	
외감원		金光昌	〃	1930. 5. 13		〃
정미소		吳海仁	〃	1932. 12. 2		〃
〃		張道恩	〃			〃
감	원	李百徹	〃	1927. 4. 9		〃
서	기	安修根	〃	1927. 2. 3		〃
내감원		鄭世月	女	1896. 1. 28		〃
공양원		李唯一華	〃	1897. 11. 5		〃
〃		李性露	〃	1925. 6. 12		〃
〃		金大觀	〃	1933. 11. 1		〃
〃		吳哲秀	〃	1897. 2. 30		〃
〃		李道信華	〃	1891. 7. 30		〃
부	장	丁光薰	男	1917. 8. 30		〃
부	장	趙暻錫	〃	1910. 11. 17	36.	~
서	기	金貴根	〃	1929. 3. 5		〃
부	장	丁光薰	〃	1917. 8. 30		〃
서	기	金貴根	〃	1929. 3. 5		〃
부	장	成丁哲	〃	1902. 11. 21	37.	~
서	기	金貴根	〃	1929. 3. 5		〃
외감원		崔俊才	〃	1927. 12. 17		〃
내감원		鄭世月	女	1896. 1. 28		〃
식당주무		李性露	〃	1925. 6. 12		〃
계	원	金智行	〃	1928. 5. 5		〃
〃		李慈雲	〃	1934. 5. 3		〃
세	탁	朴德濟華	〃	1893. 11. 28		〃
부	장	趙暻錫	男	1910. 11. 17		〃
서	기	金貴根	〃	1929. 3. 5		〃
출	납	李正務	女	1932. 11. 15		〃
차	장	丁震浩	男	1927. 1. 18	38.	~
서	기	韓正釋	〃	1932. 1. 11		〃
외감원		崔俊才	〃	1927. 12. 17		〃

내감원	康現一	男	1912. 12. 17	38. 12. 14~	
공양원	李三省華	女	1898. 5. 15	〃	
〃	黃敬信	〃		〃	
〃	林水原	〃		38. 10. 31~	
〃	李慈雲	〃	1934. 5. 3	〃	
〃	成貴禮	〃		〃	
주무	金光昌	男	1930. 5. 13	〃	
부장	趙暗錫	〃	1910. 11. 17	40. ~	
상무	丁震浩	〃	1927. 1. 18	〃	
주사	徐明權	〃		〃	
서기	趙秀聖	〃	1927. 10. 22	〃	
주사	趙秀聖	〃	1927. 10. 22	41. ~	
서기	金智英	女	1932. 12. 24	〃	
재무부장	成丁哲	男	1902. 11. 21	42. ~	
차장	梁泰說	〃	1919. 10. 16	〃	
주사	金壯權	〃	1923. 1. 10	〃	
서기	金智英	女	1932. 1. 19	〃	
외감원	殷玉文	男	1923. 1. 6	〃	
내감원	庾現一	女	1924. 11. 17	〃	
주무	朴德濟華	〃	1893. 11. 28	〃	
세탁주무	李三省華	〃	1898. 5. 15	〃	
침선원	金義淑	〃	1939. 2. 13	〃	
공양원	李惠善	〃	1928.	〃	
〃	崔谷順	〃	1927. 12. 30	〃	
〃	尹聖道	〃	1937. 12. 22	〃	
재단주무	金貴根	男	1929. 3. 5	〃	
〃	趙甲鍾	〃	1915. 5. 13	〃	
부장	李炳恩	〃	1926. 6. 7	43. 〃	
과장	金貴根	〃	1929. 3. 5	〃	
외무	朴選一	〃	1934. 8. 25	〃	
주사	姜妙眞	女	1943. 1. 30	〃	
주사	張惠星	女	1936. 1. 10	〃	
서기	鄭圓一	男	1939. 2. 15	〃	
〃	白常源	女	1941. 6. 19	〃	
구매원	高大信	男	1939. 11. 11	〃	
외감원	金光昌	〃	1930. 5. 13	〃	
간사	金聲振	〃	1941. 10. 14	〃	
〃	李道衡	〃		〃	

간 사	金 文 澤	男	1941. 10. 1	43.		
〃	徐 慶 田	〃	1937. 7. 9		〃	
내감원	韓 智 緣	女	1927. 7. 10		〃	
세탁계	朴德濟華	〃	1893. 11. 28		〃	
〃	金 文 局	〃	1920. 6. 25		〃	
공양원	權江水月	〃	1931. 10. 2		〃	
〃	李 敬 倫	〃	1935. 12. 18		〃	
〃	金 奧 信	〃	1942. 1. 7		〃	
〃	朴 永 安	〃			〃	
부 장	成 丁 哲	男	1902. 11. 21	44.		
상 무	金 貴 根	〃	1929. 3. 5		〃	
주 사	金 壯 權	〃	1923. 1. 10		〃	
〃	金 智 英	女	1932. 1. 19		〃	
서 기	鄭 圓 一	男	1940. 2. 15		〃	
외감원	申 普 根	〃	1922. 1. 10		〃	
간 사	金 世 寬	〃	1940. 7. 24		〃	
외무원	金 成 庸	〃	1918. 2. 4		〃	
〃	張 重 光	〃	1927. 5. 1		〃	
〃	金 聲 振	〃	1941. 10. 13		〃	
〃	朴 周 善	〃	1941. 11. 15		〃	
구매원	朴 守 仁	〃	1939. 3. 19		〃	
연락원	盧 基 奉	〃	1942. 2. 16		〃	
내감원	庾 現 一	女	1912. 11. 17		〃	
주 무	朴德濟華	〃	1898. 11. 28		〃	
주 무	李三省華	〃	1898. 5. 15		〃	
세탁원	崔 容 順	〃	1927. 12. 30		〃	
공양원	李 惠 善	〃	1928. 12. 20		〃	
〃	尹 聖 道	〃	1937. 12. 22		〃	
〃	金 義 淑	〃	1939. 2. 13		〃	
〃	權 道 仁	〃	1939. 7. 9		〃	
공양원	李 敬 輪	女	1934. 12. 30		〃	
〃	金 長 輪	〃	1934. 12. 30		〃	
부 장	李 炳 恩	男	1926. 6. 7	45.		
과 장	金 貴 根	〃	1929. 3. 5		〃	
서 기	鄭 圓 一	〃	1940. 2. 15		〃	
〃	姜 妙 眞	女	1934. 1. 30		〃	
〃	張 惠 星	〃	1936. 1. 10		〃	
구매원	朴 守 仁	男	1937. 3. 19		〃	

외감원	申普根	男	1922. 1. 10	45.		
간 사	金聲振	〃	1939. 10. 13	〃		
〃	金文澤	〃	1941. 10. 1	〃		
내감원	韓智緣	女	1927. 7. 10	〃		
세탁계	朴德濟華	〃	1893. 11. 28	〃		
〃	李三省華	〃	1898. 5. 15	〃		
〃	崔容順	〃	1928. 12. 30	〃		
공양원	金文局	〃	1920. 6. 25	〃		
〃	權江水月	〃	1931. 10. 2	〃		
〃	張大旭	〃	1941. 2. 13	〃		
〃	金和淑	〃	1922. 5. 30	〃		
〃	朴惠元	〃	1942. 11. 18	〃		
〃	李良權	〃	1941. 1. 2	〃		
〃	金蓮鳳	〃	1941. 3. 7	〃		
〃	權孝貞	〃		〃		
부 장	成丁哲	男	1902. 11. 21	46.		
차 장	金貴根	〃	1929. 3. 5	〃		
주 사	朴選一	〃	1934. 8. 25	〃		
〃	鄭圓一	〃	1939. 2. 15	〃		
서 기	權秀日	女	1937. 6. 25	〃		
구매원	韓吉良	男	1940. 5. 9	〃		
외감원	金光昌	〃	1922. 3. 5	〃		
간 사	金文澤	〃	1941. 10. 1	〃		
〃	韓聖法	〃	1949. 5. 6	〃		
내감원	權玉音	女	1920. 11. 15	〃		
공양원	李惠善	〃	1928. 8. 24	〃		
〃	李敬倫	〃	1935. 12. 18	〃		
〃	尹聖道	〃	1937. 12. 21	〃		
〃	李聖中	〃	1931. 10. 12	〃		
공양원	李貞淑	女		〃		
세탁주무	朴德濟華	〃	1893. 11. 28	〃		
임 원	崔容順	〃	1928. 12. 30	〃		
과 장	朴正薰	〃	1937. 2. 21	〃		
주 사	白水晶	〃	1920. 2. 1	〃		
서 기	李普圓	男	1934. 9. 13	〃		
구매원	金文澤	〃	1941. 10. 1	〃		
외감원	金光昌	〃	1930. 5. 13	〃		
내감원	權寬眞	女	1916. 3. 14	〃		

	간 사	韓 聖 浩	女	1945. 10. 14	47.		
	〃	朴 在 述	〃	1946. 8. 7			
	공양원	李 敬 倫	〃	1935. 12. 18			
	〃	李 聖 中	〃	1931. 10. 12			
	세탁계	崔 容 順	〃	1928. 12. 30			
	세탁주무	朴 德 濟 華	〃	1893. 11. 28			
	과 장	吳 海 仁	〃	1930. 12. 2			
	주 사	李 德 心	女	1937. 9. 1			
	서 기	金 善 圓	〃	1943. 2. 11			
	구매원	金 文 澤	男	1941. 10. 1			
	주 무	朴 元 吉	〃	1914. 8. 28			
	내감원	權 寬 眞	女	1916. 3. 14			
	외감원	朴 用 善	男	1937. 11. 15			
	주 무	朴 德 濟 華	女	1893. 11. 28			
	세탁주무	崔 容 順	〃	1927. 12. 30			
	임 원	張 淑 善	〃	1932. 2. 4			
	공양원	李 聖 中	〃	1931. 10. 21			
	〃	金 圓 信	〃				
	〃	崔 順 德	〃	1939. 1. 11			
	외 무	金 光 昌	〃	1930. 5. 13			
	주 사	金 東 玄	〃	1938. 1. 15			
	〃	白 想 源	〃	1941. 6. 19			
	외감원	金 聖 現	男	1938. 3. 1			
	서 기	金 善 圓	女	1943. 2. 11			
	구매원	朴 宗 憲	男	1945. 2. 6			
	내감원	柳 寬 眞	女	1926. 3. 14			
	공양원	金 聖 田	〃	1941. 7. 22			
	〃	朴 永 德	〃	1944. 4. 19			
	공양원	金 敬 文	女				
	세탁주무	朴 德 濟 華	〃	1893. 11. 28			
	이 사	朴 海 運	〃				
	주 사	金 東 玄	〃	1938. 1. 15			
	〃	白 想 源	女	1941. 6. 19			
	〃	韓 海 仙	男	1932. 8. 17			
	구매원	宋 玉 業	〃	1940.			
	내감원	柳 寬 眞	女	1926. 3. 14			
	공양원	金 蓮 鳳	〃	1942. 3. 15			
	〃	張 明 信	〃	1942. 4. 8			

공양원	朴空圓	女	1943. 3. 16	
〃	崔喜性	〃	1946. 7. 29	
〃	金濟明	〃	1944. 9. 9	
〃	金正德	〃	1946. 8. 26	
주사	白想源	〃	1941. 6. 19	
〃	申明實	〃	1941. 12. 19	
〃	金東玄	男	1938. 1. 15	
〃	韓海仙	女	1932. 8. 17	
외감원	曺善勤	男	1912. 9. 5	
내감원	柳寬眞	女	1926. 3. 14	
구매원	宋玉業	男	1940. 1. 17	
공양원	金玄淑	〃	1920. 2. 20	
〃	李相眞	〃	1946. 1. 16	
〃	權義淑	〃	1947. 1. 17	
〃	宋正憲	女	1950. 9. 20	
〃	邊放倫	〃	1945. 6. 1	
서기	崔熙性	〃	1946. 7. 25	
세탁주무	朴德濟華	〃	1893. 11. 28	
임원	金用植	〃	1914. 12. 5	
〃	李震明	〃	1911. 9. 1	
〃	姜戒定	〃		
〃	白圓信	〃		
임원	李昶圓	〃	1943. 4. 29	
차장	李百徹	〃	1927. 4. 9	
주사	金東玄	〃	1938. 1. 15	
〃	成仁鍾	〃	1944. 8. 6	
〃	申明實	〃	1942. 12. 19	
서기	朴文吉	女	1941. 12. 17	
외감원	曺善勤	男	1912. 9. 5	
내감원	柳寬眞	女	1926. 3. 4	
구매원	宋正業	男	1940. 1. 17	
공양원	金玄淑	〃	1920. 2. 20	
〃	柳在玉	〃	1933. 1. 25	
〃	徐致善	〃	1947. 1. 13	
〃	張普性	〃	1952. 8. 15	
〃	高明日	女	1944. 10. 16	
세탁주무	朴德濟華	〃	1893. 11. 28	
임원	金用植	〃	1914. 12. 5	

	임 원	卞 敬 倫	女	1945. 6. 1			
	임 원	李 相 眞	〃	1946. 1. 16			
	주 임	金 理 聖	〃	1928. 2. 8	52. 7. 9~		
	〃	金 東 玄	〃	1938. 1. 15	49. 6. 3~		
	주 사	徐三省華	〃	1941. 1. 1	53. 3. 18~		
	〃	申 明 實	女	1942. 12. 19	51. 3. 2~		
	이 사	李 修 悟	男	1928.			
	외감원	吳 聖 洙	〃	1934. 9. 7	52. 12. ~		
	내감원	權 寬 眞	女	1916. 3. 24	46. 6. ~		
	〃	韓 應 根	男	1906. 8. 12	53. 3. ~		
	임 원	鄭 泰 音	〃	1918. 4. 24	43. 2. ~		
	〃	高 震 京	〃	1932. 1. 11	52. 2. 16		
	〃	李 良 薰	〃	1951. 5. 11	52. 2. 25~		
	〃	李 在 圓	〃	1951. 2. 4	52. 2. 4~		
	〃	張 宗 悟	〃	1946. 11. 26	53. 5. 5~		
	〃	金 在 燮	〃	1953. 4. 9	53. 5. 10~		
	〃	金 玄 淑	女	1922. 11. 20	49. 1. ~		
	〃	權 在 玉	〃	1933. 1. 25	52. 3. ~		
	〃	鄭 道 圓	〃	1948. 5. 1	53. 2. 22~		
	〃	李 完 明	〃	1948. 2. 25	53. 6. 3~		
	〃	朴德濟華	〃	1893. 11. 28	27. 12. ~	재 가	
	〃	金 用 植	〃	1914. 12. 5	42. 5. ~		
	〃	高慧善華	〃	1922. 10. 25	52. 4. ~		
	〃	崔 鎭 宇	〃	1944. 8. 10	53. 4. ~		
	〃	金在眞華	〃		〃		
	〃	金 眞 如	〃	1948. 2. 28	53. 2. 2~		
	임 원	卞 道 寬	男	1940. 2. 4	53.		
	서 기	金 德 圓	〃	1948. 1. 14	53. 3. 2~		
	농 감	張 德 賢	〃	1926. 2. 6	54. 4. ~		
	부 원	林 世 鏡	〃	1939. 4. 2	54. 3. ~		
	〃	金 圓 祐	〃	1943. 7. 26	54.		
	〃	김 현 진	〃	1950. 12. 25	54.		
	〃	박 남 규	〃	1953. 1. 7	54.		
	〃	김 도 권	〃	1952. 1. 30	54.		
	주 임	金 聖 現	〃	1937. 3. 26	55. 3. 1~		
	농 감	韓 應 根	〃	1906. 8. 12	55. 3. 1~		
	주 사	朴 純 基	女	1942. 9. 4	55. 3. 1~		
	〃	梁 圓 道	〃	1946. 11. 30	55. 4. 23~		

임 원	權 향 수	女	1952. 12. 17	55. 3. 19~		
〃	金 慧 心	〃	1946. 10. 19	55. 3. 19~		
〃	丁 敬 安	〃	1949. 9. 26	55. 3. 19~		
〃	정 순 익	〃	1951. 12. 22	55. 4. 9~		
〃	김 자 성	〃	1956. 12. 24	55. 3. 1~		
〃	김 창 현	〃		〃		
〃	裵 順 任	〃	1922. 11. 22	〃		
〃	朴 正 慧	〃	1933. 10. 26	55. 3. 1~		
〃	黃 道 局	男	1952. 9. 15	55. 3. 1~		
〃	장 진 수	〃	1951. 1. 22	55. 3. 1~		
〃	신 효 설	女	1957. 7. 12	55. 5. 2~		
부 장	鄭 性 德	男	1930. 8. 10	56. 4. 13~		
외 감	李 善 慶	〃	1933. 9. 9	56. 3. 1~		
내 감	金 文 局	女	1920. 6. 25	56. 5. 10~		
주 사	申 慧 權	〃	1943. 9. 15	56. 5. 8~		
〃	馬 圓 宗	〃	1944. 6. 6	56. 4. 28~		
수농주무	金 秉 哲	男	1902. 2. 30	56. 3. 1~		
전농주무	金 昌 業	〃	1920. 7. 15	〃		
세 탁	高 玄 聖	〃	1936. 2. 2	56. 3. 1~		
식 당	한 혜 수	〃	1936. 11. 22	56. 3. 1~		
전 작	곽 안 옥	〃	1915. 4. 10	56. 5. 10~		
〃	권 양 임	〃	1910. 10. 17	56. 4. 30~		
정 원	김 정 임	〃	1928. 5. 1	56. 3. 1~		
강 사	정 의 혁	〃	1955. 6. 10	56. 5. 15~		
교 환	박 은 봉	〃	1951. 4. 15	56. 3. 1~		
전 다	鄭 大 安	男	1951. 12. 22	56. 3. 1~		
과 장	鄭 圓 一	〃	1939. 2. 15	57. 3. 2~		
주 임	劉 日 新	女	1943. 8. 4	57. 3. 15~		
서 기	鄭 明 中	〃	1948. 1. 15	57. 4. 20~		
간 사	서 종 기	〃	1956. 5. 15	57. 3. 2~		
〃	李 良 燕	〃	1951. 5. 11	57. 3. 2~		
〃	鄭 仁 德	〃	1958. 10. 25	57. 6. 1~		
〃	윤 종 구	〃	1958. 10. 9	57. 3. 2~		
외 감 원	申 在 一	〃	1928. 1. 19	〃		
정 원	李 成 澤	男	1943. 3. 13	57. 4. 20~		
식 당	김 모 은	女	1953. 10. 29	57. 3. 2~		
부 장	丁 道 允	〃	1935. 4. 15	58. 3. 10~		
식 당	최 영 자 화	女	1932. 7. 23	58. 4. 20~		

목 수	정 법 근	男	1935. 7. 7	58. 1. 15~	
식 당	박 봉 련	女	1932. 7. 26	58. 12. ~	
원 예	金 玄	男	1945. 10. 15	58. 3. 1~	
주 사	黃 大 願	女	1945. 4. 6	58. 3. 15~	
출 납	나 도 성	〃	1955. 4. 7	58. 3. 25~	
구 매 원	김 수 길	男	1953. 8. 3	58. 2. 10~	
간 사	신 현 민	〃	1956. 4. 18	58. 3. 1~	
〃	김 성 준	〃	1959. 10. 16	58. 4. 10~	
출 납	李 明 信	女	1951. 8. 22	58. 5. 26~	
보 조 원	李 善 默	〃	1920. 1. 11	58. 7. 10~	
간 사	안 정 행	男	1953. 12. 25	58. 8. 25~	
세 탁	崔 一 珠	女	1956. 5. 1	58. 6. 22~	
장 원	최 충 도	男	1956. 6. 16	58. 10. 1~	
간 사	朴 英 眞	〃	1958. 10. 15	58. 2. 28~	
과 장	太 德 權	〃	1938. 4. 14	58. 7. 5~	
기 사	안 정 행	〃	1953. 12. 25	58. 8. 25~	
간 사	朴 永 眞	〃	1958. 10. 15	58. 7. 28~	
〃	김 순 자	女	1955. 1. 1	58. 5. 2~	
전 작	金 淨 運	〃	1962. 11. 25	58. 4. 10~	
간 사	신 도 일	男		59. 7. 18~	
공 양 원	윤 명 은	女		59. 7. ~	
〃	박 순 애	〃		59. 6. ~	
전 다	김 인 선	〃	1954. 3. 6	59. 6. 16~	
공 양 원	김 귀 녀	〃		59. 3. 1~	
기 사	정 법 근	男	1935. 7. 7	59. 3. 1~	
학원재단	金 正 浩	〃	1928. 2. 12	59. 7. 1~	
과 장	權 峻 圓	〃	1939. 4. 26	59. 4. 20~	
주 임	韓 聖 勉	女	1947. 9. 7	59. 3. 7~	
간 사	鄭 誠 浩	男		59.	
주 사	安 世 雄	〃	1946. 7. 26	60. 4. ~	
공 양 원	裵 心 眞	女	1945. 4. 13	60. 4. ~	
간 사	박 상 규	男	1960. 3. 23	60. 3. 1~	
〃	정 춘 하	女		60. 4. ~	
경리과장	金 玄	男	1945. 6. 1	60.	
세 탁 부	崔 連 善 華	女	1925. 8. 10	60. 10. ~	
원 예	이 승 호	男		60.	
〃	서 종 빈	〃	1957. 10. 22	60. 2. 5~	
간 사	박 양 규	〃	1961. 6. 3	60.	

간 사	김 명 근	男		60.		
교 환	천 성 준	女	1959. 5. 5	60. 11. 18~		
구 매 원	張 聖 恩	男	1956. 6. 20	61. 3. ~		
전 다	金 正 道	女	1957. 4. 3	61. 2. 24~		
간 사	朴 主 誠	男	1957. 11. 7	69. 5. 1~		
주 임	金 文 澤	〃	1941. 10. 1	61. 3. ~		
총 무	安 世 雄	〃	1946. 7. 26	61. 3. ~		
교 환	이 명 륜	女	1959. 12. 5	61. 5. 28~		
원 예	김 명 원	男		61. 4. 3~		
〃	박 선 택	〃		61. 5. ~		
〃	오 세 철	〃	1958. 9. 20	61. 5. 11~		
〃	김 구 현	〃		61.		
간 사	金 賢 局	〃	1958. 3. 4	61.		
전 다	金 正 道	女	1957. 4. 3	61. 2. 24~		
공 양 원	정 숙 자	〃	1963. 6. 26	61. 3. ~		
간 사	서 용 서	男	1957. 1. 29	61. 11. 25~		
주 사	崔 敬 道	〃	1950. 10. 4	61. 4. 3~		
공 양 원	유 경 하	女		62. 4. ~		
간 사	유 선 주	〃	1958. 6. 20	62. 3. ~		
〃	김 기 선	男	1960. 7. 19	62. 3. 31~		
원 예	金 明 德	〃	1951. 8. 15	62. 3. 20~		
〃	변 중 석	〃	1953. 3. 25			
〃	全 圓 德	〃	1950. 11. 20			
원 예	이 용 현	男				
〃	김 상 현	〃	1960. 3. 15	62. 5. 23~		
주 사	李 秀 恩	女	1948. 4. 13	63. 3. 14~		
〃	李 心 眼	〃	1952. 10. 26	62. 5. 3~		
〃	金 泳 澤	男	1944. 11. 10	62. 4. 25~		
관리과장	姜 慶 樂	〃	1943. 6. 2	62. 5. 23~		
간 사	李 同 喜	〃	1954. 2. 10	62. 6. 18~		
〃	金 容 聖	〃	1963. 6. 30	62. 6. 18~		
교 환	鄭 仁 光	女	1957. 3. 7	62. 1. 28~		
〃	元 貴 順	〃	1957. 4. 23			
간 사	鄭 亨 眞	男	1964. 4. 20	63. 5. ~		
〃	李 庸 勉	〃	1956. 11. 17	63. 2. ~		
〃	尹 常 原	〃	1950. 11. 18	63. 3. ~		
〃	申 常 協	〃	1964. 8. 5	63. 3. 1~		
간 사	金 道 玄	〃	1965. 2. 18	63. ~		

교 환	崔 明 允	女	1961. 5. 20	63. 9. 28~		재 가
주 임	柳 承 仁	〃	1945. 1. 4	64. 8. 20~		
주 사	金 瑞 學	男	1947.	64. 8. ~		
기 사	黃 釋 中	〃	1957. 1. 19	64. 1. 28~		
간 사	劉 志 暎	女	1960. 9. 1	65. 2. 6~		
과 장	金 曉 明	男	1947. 2. 14	65. 3. 1~		
주 사	方 德 萬	〃	1940. 10. 15	65. 8. ~		
교 환	姜 愛 淑	女	1961. 3. 7	65. 10. ~		〃
교 감	白 水 晶	〃	1920. 3. 20	66. 3. 1~		
주 사	安 慈 恩	〃	1955. 9. 26	66. 3. 16~		
〃	朴 冠 德	男	1943. 8. 16	66. 3. 16~		
간 사	설 성 호	〃	1964. 5. 10	66. 3. 16~		
식 당	鄭 淑 子	女	1964. 3. 3	66. 5. ~		
주 사	李 眞 度	男	1949. 3. 21	66. 9. 1~		
원 예	金 昇 九	〃	1926. 7. 26	66. 9. 26~		〃
간 사	鄭 淑 子	女	1964. 3. 3	66. 5. ~		
〃	姜 建 圓	男	1967. 1. 7	66. 10. 5~		
출 납	李 性 齋	女	1963. 12. 26	67. 3. 4~		재 가
주 사	柳 心 明	〃	1966. 10. 8	67. 1. 26~		
간 사	柳 圓	〃	1963. 4. 24	67. 3. 5~		
관리주임	金 明 元	男	1946.	69. 11. ~		
주 임	安 道 淳	男	1952. 12. 2	67. 11. ~		
부 장	徐 聖 範	〃	1940. 9. 25	67. 11. 7~		
간 사	안 형 도	〃	1967. 7. 1	67. 3. 8~		
주 사	金 圓 永	〃	1956. 5. 2	67. 11. ~		
기 사	김 복 혜	〃		68. 1. 1~		
〃	유 종 촌	〃		68. 6. 30~		
전 작	임 금 택	〃	1939. 5. 19	68. 6. ~		
교 금	黃 孝 俊	女	1946. 6. 26			
간 사	강 성 식	男				
〃	河 明 奎	〃	1959. 2. 19			
〃	안 종 섭	〃				
〃	文 京 昊	〃	1964. 8. 12			
정 원	김 일 국	〃				
전 기	권 왕 식	〃				
식 당	이 영 덕	女				
출 납	柳 義 永	〃	1965. 3. 17	69. 2. ~		
교 환	최 선 옥	〃	1963. 9. 26	69. 7. 20~		재 가

기 사	강 보 광	女	1950. 10. 7	69. 12. 1~	재 가
교 환	최 선 옥	〃	1963. 9. 26	69. 7. 20~	〃
수 농	김 동 안	男		69. 4. ~	
식 당	최 동 출	女		70. 3. ~	
간 사	정 광 호	男	1961. 9. 9	70. 1. ~	
〃	河 尙 德	〃	1968. 1. 16	70. 2. ~	
〃	고 대 진	〃		70. 1. ~	
교 무	李 眞 萬	女	1941. 1. 20	70. 2. 4~	
주 임	劉 德 中	〃	1952. 5. 1	70. 2. 4~	
〃	姜 亨 信	男	1954. 6. 18	70. 2. 4~	
식 당	金 受 安	女	1944. 9. 10	70. 3. ~	재 가
교 환	정 숙 자	〃	1964. 3. 3	70. 10. 20~	
식 당	송 복 덕	〃		70. 3. ~	〃
간 사	金 馨 蘭	〃	1966. 4. 19	71. 2. 10~	
기 사	김 종 대	男	1940. 6. 9	71. 1. 1~	재 가
〃	이 정 남	〃	1946. 4. 20	〃	〃
주 임	李 舜 圓	〃	1952. 7. 11	71. 2. 23~	
교 환	정 성 수	女	1964. 12. 16	71. 5. 30~	
기 사	김 윤 상	男	1940. 6. 9	71. 1. 1~	〃
〃	李 仁 相	〃	1946. 4. 24	71. 1. 1~	〃
주 사	吳 道 哲	男	1961. 3. 20	72. 1. 20~	
세 탁	송 영 진	〃	1926. 12. 29	72. ~	재 가
간 사	金 義 哲	〃	1969. 9. 14	72. 2. 5~	
〃	董 正 洙	〃	1968. 2. 12	72. 2. 15~	
〃	장 현 철	〃	1969. 5. 1	72. 2. 24~	
〃	이 성 관	女	1960. 10. 4	72. 2. 16~	
서 기	黃 者 峻	〃	1946. 6. 28	72. 2. 21~	
전 작	崔 德 眞	〃	1934. 1. 12	72. 3. 1~	

5. 교 육 부

교육부의 연원은 불법연구회 창립 후 상조조합의 인재양성 기성단에서 찾아진다. 당시는 입선비용의 마련을 위해 공동작업을 하였으며 원기11년(1926) 육영창립단이 발기되어 단금을 모았다. 이후 원기18년(1933) 인재부장의 임명이 보이며 원기19년(1934) 『불법연구회규약』에

서정원의 육영부로 정식 발족되었으나 원기27년(1942)의 『규약』과 원기33(1948)년 제정 『원불교교헌』에서는 사라졌다가 원기44년(1959) 1차개헌 시에 교정원의 5부중 하나로 육영부가 설치되었다. 이후 계속 육영부로 교정원에 속해 있다가 원기60년(1975) 교정원 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로 개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가. 직제 및 주요기능

교육부에는 교육과와 장학과가 있으며 분장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과 : 육영장학생 선발 및 양성, 교립학교 종교교육 및 예비교역자 교육에 관한 업무, 부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무

② 장학과 : 장학회원, 장학재단육성 및 타자녀교육 장려에 관한 사무

이상의 직제에 의해 관장되는 교육부의 직제도는 다음과 같다.

〈직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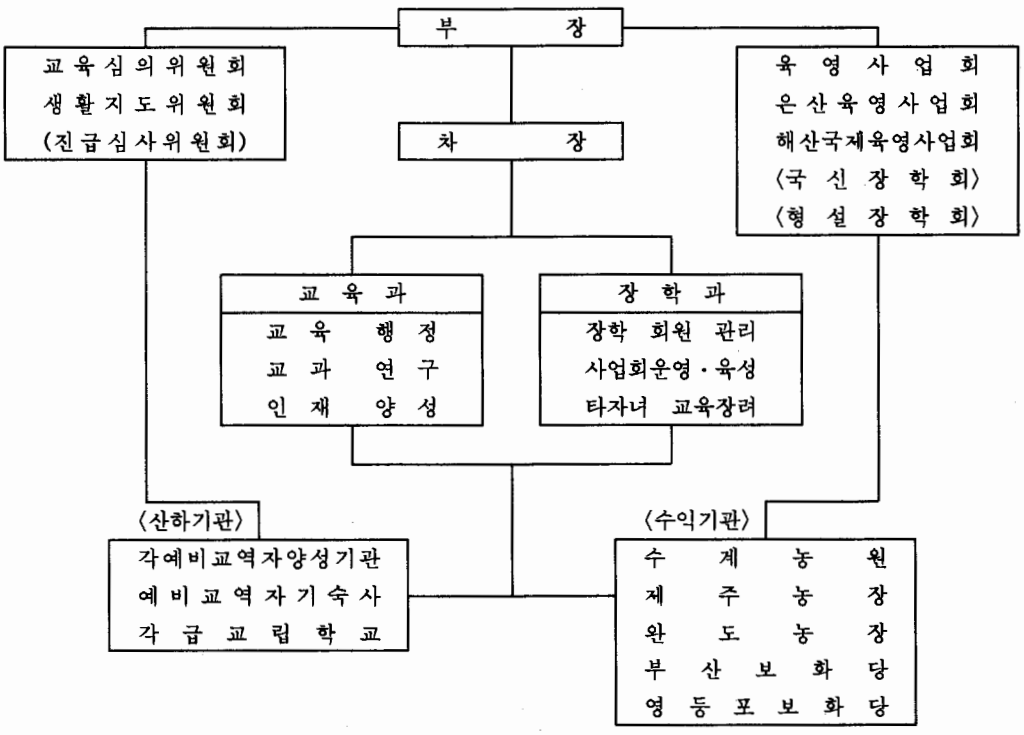

나. 연 혁

본 육영부는 인재양성을 목적한 바, 육영부가 교정원 산하의 부서가 되기는 원기44년(1959) 원불교교헌 개정후의 일이다. 교단창립 당초부터 인재양성을 위하여 동양척식회사의 토지를 빌려 농사지은 수확으로 입선비용을 마련케 하신 것이 상조조합의 일부 일로 있어 왔으며, 원기11년(1926) 육영창립단(인재양성)이 송도성의 제안으로 발기되어 재가·출가의 남녀동지가 근검절약으로 단금을 마련하였다.

18.	중앙총부 서정원에 공익부와 인재양성부를 두고 부장에 이재철 임명
19.	공익·육영·상조부장에 이동안 임명
20.	공익·육영부장겸 서기에 조갑종 임명
31.	유일학림이 설치되자 장학기반을 닦기 위하여 보화당의 수익으로 이를 충당
41. 5.	선학원 친목단체인 중앙교우회가 발족
43. 4.	장학회가 발족되어 그 회원수입으로 인재를 육성하였는데, 본화의 회장에 김대거, 부회장에 이완철·조전권 선출
44.	교헌개정에 따라 교정원에 육영부 신설. 초대부장 서대인 취임
46. 6.	은산육영재단 설립(恩山 金玄觀선생이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1,200만원을 수계농원에 투자함)
46.10.12	육영재단발족 승인 및 정관 제정(제3회 임시교정위원회)
47. 5.28	육영재단이사 및 감사 선출(제4회 원의회). 이사 : 박장식·서대인·박광전·조회석·이경순·문동철·공덕종·오철환·이대석. 감사 : 송원철·박석원.
47. 6. 5	제1회 육영재단 이사회 개최. 초대이사장선출 : 문동현. 육영비책정 지급결의(50,000원). 장학회원증 발급 실시
48. 3.	제1회 신입장학생 선서기도 실시
4.	제2회 정기이사회. 육영재단 운영규정 심의 통과. 육영규정 제정
49. 1.	제1회 졸업생 합동수련을 영산성지에서 실시
50.	은산육영재단에서 육영비 보조지급 시작(60,000원)
3.24	육영재단 포상 제도 실시 결의(제4회 정기이사회)
3.25	제1회 장학회원 총회 거행. 제2대 임원선출, 전원재선, 유공인 및 유공지방 표창
51. 9. 1	『육영통신』 창간
52. 2.	출가식(제도식)과 더불어 선학원 졸업생에게 학복수여를 시도
3.25	육영문고 설립(제6회 정기이사회)
52. 3.26	제2회 장학회원 총회 거행
54. 1.	선학원 졸업반 합동수련을 동계교역자 강습에 합류
55. 3.30	장학회원 앨범 작성 결의(제9회 이사회)
56. 3.31	3월대회 종합시상식에서 유공자표창(사진첩배부). 56년도부터 육영부 사무예산을 자체예산에서 해결키로 함
56. 8.	8·3조치에 따라 장학금 모금운동 전개

57. 3. 57년도부터 재무부(보화당)에서 육영보조금 단절
58. 3. 육영문고 모집운동 전개 결의(제12회 이사회)
11. 제1회 예비교역자(선학원) 어린이지도 강습 실시 150명 참가
59. 1. 선학원 졸업반 합동수련을 처음으로 훈련원 주최로 실시
3. 제13회 정기이사회. 부산보화당 발족 결의
3월대회 종합시상식에서 제4회년도 유공인 시상
4. 제115회 임시원의회에서 부산보화당 개설 승인(육영·교화·법은사업후원), 사장 박제현부장 겸임
7. 부산보화당 봉불 및 개업봉고식 거행
60. 3. 교정원 직제개편에 따라 교육부로 개칭
7. 성서장학금 발족(진양주식 11,363주)
8. 부산지방 유공장학회원 모임
61. 1.30 서귀포 감귤농원 합자 매입(1,180평, 1,003만원)
3.27 은산육영사업회 회칙 개정(제144회 원의회)
5.24 제1회 교육심의위원회 개최
11. 1 원불교 교육법 제정(제66회 임시수위단회)
62. 3.30 5회년도 유공인 시상
4.15 대형버스 1대구입(교화·교육용, 850만원)
11.18 교육심의위원회 개최. 교무자격 검정고시 기타 과목 선정
63. 1. 7 기태장학금 1천만원 회사
4.25 중형버스 1대구입(650만원)
6.14 제21회 육영사업회 이사회 정관 개정. 제2회 사진첩 작성 결의
64. 1.25 원기64년도 육영장학생 선발. 순공비 22, 반공비 41, 생은자녀 5
2. 원기63년도 육영생 졸업, 52명
8. 8~13 예비교역자 제1회 특수학과생 훈련(한의과3, 보육과1)
10.21 제6회년도 유공자 시상
11.28 제2회 예비교역자졸업반 문심 실시(감찰원에서 업무인수)
12.26 동래교당 장학법회 거행. 신입장학회원 45명, 장학금 11,614,000원
65. 1. 9 대구 서문교도 이경중씨 경정학금 회사(1천만원)
65. 1.28 원기65년도 신입육영장학생 56명선발(제179회 원의회)
2. 원기64년도 육영생졸업, 45명
3. 1 제1회 신입육영생 영산성지 봉고식(66명)
10.21 진학심의규정(교령22호) 통과
66. 1. 7 자덕장학금 1천만원 회사, 통영교당 송덕전교도
1.27 원기66년도 육영장학생 75명 선발(제187회 원의회)
2. 원기65년도 육영생 39명 졸업
66. 3. 8 육영장학금 5천만원 회사(무등회원 1호로) 종로교당 장학법회에서 전달
6.19 제25회 임시육영사업회 운영위원회. 대구동명훈련원에서

66. 7.26~27 예비교역자 교육담당교무 세미나. 해남 대흥사
7. 8~11 제9회 예비교역자 어린이지도훈련. 예비교역자 졸업반 문심 52명
11.18 제26회 육영사업회 운영위원회, 67년도 예산안 심의. 원광중앙유치원 개원 결의
67. 2.18 원기67년도 육영장학생 선발(86명)
2.25 원기66년도 육영생 졸업(53명)
3. 1 원기67년도 신입육영생 봉고식
3. 9 원광중앙유치원 개원
7. 9~12 제10회 예비교역자 어린이지도훈련
8. 9 은산육영사업회 운영위원회
8.15~16 예비교역자 교육담당교무 세미나
10.24 제7회년도 장학유공자 시상
11. 제27회 육영사업회 운영위원회
11.21 영등포보화당 개원봉불
11.24~26 예비교역자 졸업반 문심
68. 2.17 원광중앙유치원 제1회 졸업
2.26 원기67년도 육영생 졸업, 출가(41명)
2.21 원기68년도 육영생 선발(66명)
3. 1 신입육영생 성지 봉고식
7. 3 대형버스 1대 구입(1895호), 2,300만원
7.10~12 제11회 예비교역자 어린이지도훈련, 동산선원
7.14~16 〃 (교학대학)
9.15 은산육영사업회 운영위원회
9.16 해산국제육영사업회 발족
11.22 예비교역자 졸업반 문심
12. 8 은산육영사업회 운영위원회
12.24 예비교역자 교육기관 체제에 관한 세미나
69. 2. 3 원기69년도 육영장학생 선발, 91명
69. 2.24~25 원기68년도 졸업·출가식(52명)
3. 1 원기69년도 신입육영생 봉고식
6.20 육영생 생활규정 제정(제210회 원의회). 부산 임제안회원 장학금 5천만원 회사
7.11~13 제12회 예비교역자 어린이지도훈련
11. 6 제29회 육영사업회 운영위원회
11.22~23 예비교역자 졸업반 문심
12.12 제1회 육영생 생활지도위원회
2.15 원기70년도 육영장학생 선발
3. 4 원광중앙유치원 이전(북일교당으로)
70. 2.25~26 원기69년도 졸업식(59명)
3. 1 신입육영생 봉고식

70. 3. 6 교립학교장 간담회
3.13 교립학교 교리교육 파견교무회의
4.11 원기69년도 졸업생 출가식
6.20 제2회 육영생 생활지도위원회
6.25~27 제13회 예비교역자 어린이지도훈련
7.15 제1회 국제육영사업회 운영위원회
7.23 교립학교 학생간부훈련(187명)
9. 3 제3회 육영생 생활지도위원회
10.18 선원체제에 대한 공청회
11. 6 은산육영사업회 운영위원회
11. 7 제30회 육영사업회 운영위원회
11.15 제4회 육영생 생활지도위원회
11.21, 25, 26 예비교역자 졸업반 문심
12. 4 교립학교 교리교육 담당,교무회의
12.19 교립학교장 간담회
12.24 교육법 개정안 수위단회 통과
71. 2.13 원기71년도 육영장학생 선발
2.25~26 원기70년도 졸업식 거행. 동산선원(18일·14명), 교학대(26일·40명)
3. 1 수계농원장(은산재단) 인계 인수식 거행.
3. 2 원기71년도 신입 육영장학생 봉고식 및 성지순례
3. 4 교립학교 교리교육 담당교무 간담회 및 교리수업 실시
3.12 육영장학생 서원기도
4. 3 교립학교 교리교육 담당교무 간담회 개최. 교리교육의 평가·교육지침서 전달
71. 4.12 교육개혁위원회 발족을 위한 준비간담회 3회 개최. 12일 총부교무, 17일 기관 및 재가, 19일 원대근무 교무
5.25 제19호『육영통신』발행, 2,000부
5.31 육영사업회·교육심의위원회·육영생 생활지도위원회·은산육영사업회 위원 선정(5월 9일) 및 위촉장 발송
6. 1 교립학교장 간담회 개최. 교리교재 발간의 건, 교사 및 학생간부훈련의 건 협의
6.11 교육개혁위원회 규정통과와 교육개혁위원 선정(수위단회)
6.24~27 제4회 어린이 및 학생지도자훈련 실시. 대상 : 교학대 1·2·3학년 전원. 주제 :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이
7. 1 영등포보화당 이전개업
7.21 제2회 교립학교 학생간부훈련 실시. 대상 : 원중·원여중 111명. 주제 : 믿음·우정·보은·사명
7.28~31 교립학교 사무감사 실시
71. 8.15 선학원교무 간담회 개최. 대상 : 교학대·동산선원·영산선원 21명. 주제 : 생활지도문제. 장소 : 원광선원

71. 8.16~20 외국인초청 영어회화 학습. 대상 : 예비교역자 회망자 12명
8.21~22 교립학교 학생간부훈련(고등학교). 대상 : 원고·원여고·해룡고·성지고 60명. 주제 : 믿음·우정·보은·사명
10.31 제1회 교육개혁위원회 개최
11. 8 제31회 육영사업회·운영위원회 개최
11.14 교립학교 학생합동 입교식(원중)
11.20 동산선원 졸업반 문심
11.21 원대 교학대학 원불교학과생 졸업반 문심
11.18 대학원 진학에 관한 간담회 개최
11.19 교립학교 교리교육 담당교무 간담회
72. 1. 9 제2회 해산국제육영사업회 개최
2.16 동산선원 교육에 대한 간담회
교립학교 교장간담회
2.25 동산선원 졸업식. 15명
2.26 원대 원불교학과 졸업식. 40명
2.27 신입 육영장학생 선발. 63명
2.28 신입 육영장학생 봉고식. 63명
5.14 원불교학과 기숙사 체제관계회의
6. 4 〃
6.11 〃
6.24~27 어린이(제15회)·학생(제2회) 지도자훈련 실시
8.19~20 교립학교(고등학교) 학생간부훈련 실시. 60명
8.22 교립학교(중학교) 학생간부훈련 실시. 84명
10.19 육영사업회 운영위원회(32회)
11.28 동산선원 졸업반 문심
12. 2 원불교학과 졸업반 문심
12.28 교육심의위원회

다. 역대임직원

번호	직 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인재부장	李 載 喆	男	1891. 2. 11	18. 3. 27~19. 3. 26	공 익
	서 기	趙 甲 鍾	男	1905. 5. 13	18. 3. 27~20. 3. 25	공익·상조
	육영부장	李 東 安	〃	1892. 12. 22	19. 3. 27~20. 3. 25	공 익
	서 기	金 大 擧	〃	1914. 3. 16	19. 9. 1~21. 3. 25	공익·상조

육영부장	趙甲鍾	男	1905. 5. 13	20. 3. 26~21. 3. 25	공익	
〃	李載喆	〃	1891. 2. 11	21. 3. 26~23. 4. 25	상조	
서기	朴道院	女	1917. 9. 7	21. 3. 26~25. 4.	공익·상조	
학원교무	朴濟奉	男	1888. 1. 11	21. 3. 26~23. 4.		
육영부장	宋慧煥	〃	1905. 2. 12	23. 4. 26~24. 4. 25	공익·상조	
학원교무	李貴生	〃	1883. 2. 17	23. 4. 16~		
육영부장	李東安	〃	1879. 10. 29	24. 4. 26~		
학원교무	鄭一成	女	1879. 10. 29	24. 4. 26~		
육영부장	朴道院	女	1917. 9. 7	25. 6. 26~		
〃	徐大仁	〃	1914. 12. 11	44. ~56. 4.		
과장	金壯權	男	1931. 2. 30	44. ~47.		
〃	金理玄	女	1930. 6. 3	47. ~48.		
〃	田宗哲	〃	1934. 10. 25	48. ~53. 4.		
사감	宋天恩	男	1935. 6. 9	48. ~49.		
〃	朴濟衆	〃	1935. 5. 31	49. ~50.		
〃	李廣淨	〃	1936. 9. 1	50. ~51.		
주사	金復煥	女	1938. 12. 10	50. ~51.		
사감	韓正圓	男	1933. 8. 30	51. 4. 30~		
〃	全八根	女	1927. 2. 3	51. ~		
총무겸주사	崔順哲	〃	1938. 12. 26	50. ~		
감원	高興權	〃	1913. 10. 27	48. 3. 5~		
공양원	李修眞	〃	1943. 3. 12	48. 10. 10~		
〃	金善德	〃	1950. 5. 5	48. 3. 23~51. 10.		
〃	張貴仁	〃	1950. 10. 25	52. 2. 25~53. 3.		
〃	徐正淑	〃	1952. 5. 11	51. 8. 31~		
주사	柳玄正	〃	1939. 11. 4	54. 3. 20~54. 3.		
사감	朴濟現	〃	1932. 2. 4	52. 8. 20~53. 4. 29		
사감겸과장	〃	〃	〃	53. 4. 29~56. 4. 13		
공양원	徐善根	〃	1912. 8. 3	53. 4. 11~		
〃	金德觀	〃	1950. 5. 3	53. 2. 12~53. 11.		
주임	柳玄正	〃	1939. 11. 4	54. 4. ~		
간사	모영철	男	1958. 10. 10	54. 3. 15~		
주사	徐三聖	〃	1939. 11. 11	55. 3. 1~		
공양원	김혜자	女	1954. 10. 8	54. 10. 10~		
육영부장	宋圓徹	女	1926. 5. 8	56. 4. 13~58. 3.		
과장	具安福	男	1939. 11. 11	56. 4. 13~59.		
주사	丁濟圓	女	1941. 9. 28	56. 4. 13~		
〃	成益眞	〃		56. 4. 13~		

기숙사사감	金 亨 徹	女	1937. 12. 30	56. 4. 13～		
기획총무	李 良 信	女	1942. 6. 26	56. 4. 13～		
공 양 원	유제명화	〃				
〃	이 연 일	〃	1932. 2. 9		신 임	
〃	공 자 인	〃				
주 사	崔 道 善	〃	1945. 7. 7	57. 3. 7～		
부 사 감	李 成 澤	男	1943. 3. 13	57. 9. 1～		
공 양 원	유 성 덕	女	1959. 3. 20		증 재	
육영부장	朴 濟 現	〃	1932. 2. 4	58. 3. ～		
공 양 원	한 인 덕	〃	1950. 9. 14		신 임	
〃	한 혜 수	男	1936. 11. 22		〃	
과 장	徐 聖 範	〃	1940. 9. 25	59.		
주 사	柳 承 仁	女	1945. 1. 4	59. ～62.		
부 사 감	金 玟 蓮	〃	1952. 5. 21	60. ～		
간 사	이 상 진	男	1960. 7. 16	60. ～		
주 사	崔 圓 喜	女	1945. 1. 31	62. ～		
〃	李 道 基	〃	1950. 3. 20	62. ～		
사 감	崔 世 塵	〃	1939. 2. 12	62. ～		
총 무	柳 承 仁	〃	1945. 1. 4	62. ～		
간 사	韓 德 浩	男		63. ～		
공 양 원	김 승 진	女		63. ～		
〃	金 道 命	〃	1963. 10. 11	63. ～69.		
간 사	孫 賢 悟	男	1962. 6. 12	63. ～66.		
〃	고 도 강	〃	1956. 6. 21	64. ～65.		
주 임	金 和 德	女	1948. 9. 24	65. ～68. 1.		
간 사	李 善 廈	〃	1959. 9. 1	65. ～66.		
총 무	林 仁 英	〃	1944. 10. 21	65. ～72. 4.		
간 사	韓 喜 明	〃	1957. 11. 20	66. 3. 1～67.		
〃	양 인 신	男		66. 11. ～67.		
공 양 원	전 해 성	女	1935. 4. 16	66. 3. 2～68. 1.		
과 장	成 道 鍾	男	1949. 7. 17	66. 9. 5～70. 2.		
주 사	李 性 玉	女	1951. 8. 6	66. 9. 5～68. 1.		
차 장	徐 聖 範	男	1940. 9. 25	66. 3. 1～68. 1.		
간 사	鄭 慶 恩	男		66. 10. ～67. 1.		
〃	徐 圓 熟	女	1955. 2. 10	67. 2. 5～69. 1.		
〃	金 恩 重	〃	1964. 9. 24	67. 2. 20～68. 1.		
〃	安 眞 降	男	1962. 12. 20	67. 2. 6～68. 1.		
기 사	李 仁 相	〃		63. ～70. 2.	재 가	

	기 사	柳 照 薰	男	1954. 2. 8	64. 7. 1~68.		재 가
	〃	金 慧 田	〃	1949. 9. 11	67. 3. 20~68.		〃
	간 사	夫 法 聖	〃	1962. 7. 17	67. 1. 23~68. 1.		
	주 사	金 賢 珍	女	1954. 9. 13	68. 1. 5~71. 1.		
	서 기	具 茶 明	男	1965. 4. 11	67. 11. 13~68. 1.		
	사 감	金 慧 奉	女	1947. 3. 19	68. 1. 5~71. 2.		
	부사감	辛 明 教	男	1952. 9. 25	68. ~69. 1.		
	〃	崔 道 常	女	1949. 5. 14	68. ~70. 2.		
	사감보	金 慶 日	男	1954. 8. 16	68. ~72. 8.		
	기 사	金 倫 常	〃		68. 5. 1~70. 2.		재 가
	주사보	金 明 岩	〃		69. 3. ~70. 2.		
	주 사	金 眞 光	〃	1954. 11. 8	70. 2. 1~71. 1.		
	서 기	金 聖 光	〃	1966. 9. 17	70. 2. 20~71. 1.		
	〃	金 正 賢	女	1966. 5. 12	70. 2. 15~71. 1.		
	교 감	韓 正 圓	男	1933. 8. 30	70. 2. 1~		
	부사감	姜 明 眞	女	1951. 4. 10	70. 2. 1~72. 8.		
	공양원	李 正 雅	〃	1948. 8. 26	68. 2. ~		재 가
	〃	張 貴 現	〃	1948. 4. 9	69. 1. 5~		〃
	교육부장	金 復 煥	〃	1938. 12. 10	71. 2. 20~		
	과 장	許 光 永	男	1951. 5. 5	71. 2. 20~		
	간 사	金 善 球	女	1961. 3. 3	71. 2. 20~		
	사 감	成 道 鍾	男	1950. 7. 17	70. 2. ~72. 8.		
	〃	李 正 珠	女	1941. 1. 12	71. 2. ~72. 8.		
	주 임	羅 常 仁	〃	1957. 10. 13	72. 1. 10~		
	교 무	韓 純 仁	〃	1949. 11. 11	72. 3. 18~72. 8.		
	공양원	정 경 덕	〃		71. 3. ~72. 8.		재 가
	사 감	李 聖 澤	男	1943. 3. 13	72. 8. ~		
	총 무	韓 純 仁	女	1949. 11. 11	72. 8. ~		
	사 감	金 慧 信	〃	1947. 1. 26	72. 8. ~		
	〃	姜 樂 眞	男	1954. 1. 1	〃		
	〃	黃 旻 政	女	1954. 9. 13	〃		
	공양원	鄭 良 修	〃	1929. 3. 18	〃		재 가
	공양원	李 貴 南	女	1957. 8. 23	72. 8. ~		재 가
	〃	李 建 英	〃	1943. 8. 23	〃		〃

6. 훈 련 부

훈련부는 불법연구회 이전부터 교단적 전통으로 강조되었던 정기훈련(동·하선이 모체) 업무의 효율적 발전적 수행을 위해 원기62년(1977) 교화부에서 분화 독립함으로써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훈련행정의 연원은 불법연구회 당시의 교무부에서 주된 업무로 상시훈련까지를 밀도있게 수행해 왔으며 원기60년(1975) 교화부로 개명되면서도 줄곧 훈련업무로 착실하게 수행되어 왔음을 익히 알 수 있다.

그런데 교무부를 교화부로 개칭하게 되면서 갖게되는 개념의 일선지향성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업무의 분담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훈련부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이런 관계로 훈련부는 예전 교화부 內의 훈련과 업무가 부서의 업무성격으로 승격되면서 분화되었기 때문에 초기의 훈련부장은 교화부장이 겸대하였으며 원기67년(1982)에 이르러 독립부서로서 단독부장이 취임하게 된다. 이어 훈련부의 열의로 통신강좌 등의 개설로 일선교당의 상시훈련까지를 돕는 활성화를 거쳐 각급 훈련기관의 설립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면서 각종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문화의 노력을 거듭해 오고 있다.

가. 직제 및 주요기능

훈련부의 직제로 훈련과 하나인데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훈련정책과 방침수립
② 각급 훈련원 지도감독
③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④ 전국단위훈련의 실시
⑤ 훈련요원 양성
⑥ 훈련시설 활동

나. 연 혁

학 생 훈 련	62. 7. 29~8. 1	제17차 전국학생훈련 760명 참석
〃	63. 7. 28~7. 31	제18차 전국학생훈련 709명 참석
청 년 훈 련	63. 8. 1~8. 4	제15차 전국청년훈련 331명 참석
학 생 훈 련	64. 7. 28~7. 31	제19차 전국학생훈련 649명 참석
청 년 훈 련	64. 8. 2~8. 4	제16차 전국청년훈련 240명 참석

학 생 훈 련	65. 7. 28~7. 31	제20차 전국학생훈련 510명 참석
〃	66. 7. 27~7. 30	제21차 전국학생훈련 621명 참석
청 년 훈 련	66. 8. 1~8. 4	제17차 전국청년훈련 265명 참석
회 장 단 훈 련	68. 1. 27~1. 28	제1회 전국학생회장단훈련
통 신 강 좌 개 설	68. 3~	교리의 교리훈련, 교리공부를 목적으로 정전편 초급반(5권), 이해반(8권), 연구반Ⅱ(수행편, 17권), 교사반(총부건설이후, 20권)
회 장 단 훈 련	69. 1~	제2회 학생회장단 훈련
회 장 단 훈 련	70. 1. 25~27	제3회 학생회장단 훈련. 원불교 교리이해 지도자로서의 자질개발
통 신 강 좌 개 설	70. 3. 10~	교도의 교리훈련·교리공부를 목적. 정전편 연구반Ⅰ(총선. 교의편 15권)
회 장 단 훈 련	71. 1. 24~7. 26	제4회 학생회장단 훈련. 1. 교리에 대한 이해 2. 회장의 자질 함양 3. 교화력 배양
초 청 훈 련	71. 5. 12	서울·전주 소년원생 초청 훈련
훈 련 사 업 회	71. 11. 19	훈련사업회 창립총회
부 지 매 입	71. 11.	청소년 야영장부지 매입. 장소 :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면적 12,990평
회 장 단 훈 련	72. 1. 23~25	주제 : 하나로 사세. 제5회 학생회장단 훈련
회 장 단 훈 련	72. 7. 27~29	주제 : 하나로 사세. 원기72년도 어린이 회장단훈련
훈 련 자 료 발 간	72. 6. 20	훈련자료Ⅰ『야외활동』발간
훈 련 자 료 발 간	72. 9. 10	훈련자료Ⅱ『프로그램 이론과 실제』발간

다. 역대임원

번호	직 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부 장	朴 正 薰	男	1934. 7. 21	62. 4. 18~69. 11. 8	
	〃	羅 道 國	〃	1945. 8. 27	67. 11. 8~71. 2. 20	
	주 임	朴 主 仁	女	1949. 10. 21	67. 12. 22~71. 2. 20	
	주 사	朴 仁 海	男	1953. 11. 17	67. 12. 22~71. 2. 20	
	간 사	朴 龍 賢	〃	1959. 3. 25	68. 1. 4~71. 2. 20	
	부 장	金 復 煥	女	1938. 12. 10	71. 2. 20~	
	과 장	金 玟 蓮	〃	1952. 1. 21	71. 2. 20~72. 2. 1	
	주 사	金 允 泰	男	1960. 2. 5	71. 2. 20~	
	과 장	金 道 心	女	1952. 8. 3	72. 2. 1~	
	상임연구원	孫 榮 千	男	1958. 2. 26	72. 2. 1~	

7. 문 화 부

문화부의 연원은 불법연구회 당시의 연구부와 통신부에 댈 수 있다. 그것은 연구부와 통신부가 교단의 출판업무를 관장하였음에 연유하며 문화부가 정식 독립부서로 발족된 것은 원기62년(1977) 교정원조직법에 8부조직을 명시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초대부장으로 이광정교무가 부임하여 교화부장 역임의 경험과 문화교화에 대한 열의를 뭉쳐 문화회관 설립의 대역사를 이루었으며(원기64년 낙성) 국정교과서에 원불교를 수록하는 외교활동과 함께 각급 대중매체를 통하여 원불교를 널리 홍보하는 데 큰 업적을 이루었다.

그후 문화부는 일원문화 창달이라는 기치아래 각종 공보 홍보활동과 유물사적의 복원 보수, 합창경연대회, 원미술대전 등 문화분야의 각종 사업을 의욕적으로 수행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가. 직제 및 주요기능

문화부에는 문화과와 홍보과가 있는 바 분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과 : 문화·학술·예술·체육에 관한 사무. 문화기관 지도감독, 사료 및 사적관리

② 홍보과 : 홍보·방송·출판 선전에 관한 사무

이를 현행 직제도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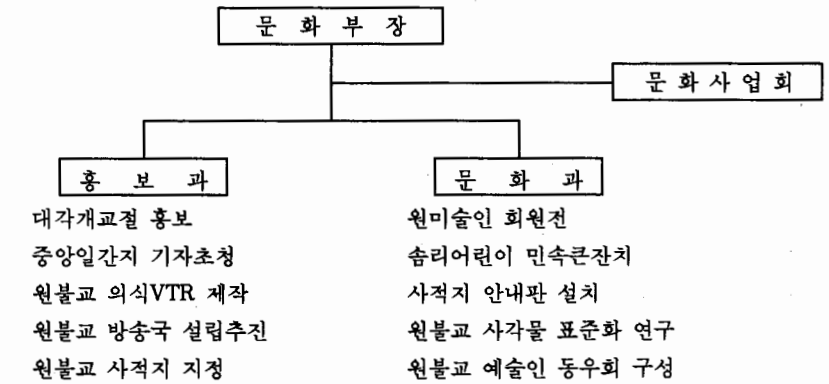

나. 연 혁

9.	총부직제가 처음 마련되면서 양원 5부중 연구부가 발족되어 교리해석 및 본교사상 정립작업 분야담당 연구부장 송규 취임
19. 3.26	연구부 및 통신부를 신설하여 교단의 출판업무 관장 겸임부장 이공주 취임
26.	연구부와 통신부가 교무부로 병합
62. 3. 5	정기수위단회에서 교정원 조직법을 개정 8부로 하여 교규 45호로 문화부독립 발족
11.29	문화공보실에서 해외편(한국종교) 촬영에 《원불교》 방영
12.20	간부회의에서 문화부 사무실을 총부식당 2층으로 결정
63. 7.22	제76회 임시수위단회의에서 문화회관 건립키로 결정
63. 9. 6	문화회관 설계도 공개자문
12.10	문화회관 성금접수 시작
64. 2.20	문화부 현판식(총부식당 2층)
3. 5	문교부 국정교과서에 《원불교》 수록(1979. 3. 1 발행). 중등국사(교육과 종교운동) p.282. 중등국사 교사용 지도서(원불교) p.203, p.325. 고등세계사(부록연대표) p.308. 사회과부도(연대표) p.12. 국교국사(종교와 예술생활) p.116
3.11	문화회관 기공식 및 봉고법회 교단의 문화업무 수행을 위해 지하 1층, 지상 3층을 연건평의 문화회관 착공
3.18	대종사 일대기 TV방영. 「평범한 성자」 KBS에서 20:00~21:00(서울사무소 주관)
8.25	방송작가 초빙 세미나 개최. 방송작가 18명이 총부 및 원대를 방문하고 영산성지에서 원불교 이해를 위한 세미나 개최(원불교 현황·교사·교리·문화 등)
11.18	문화회관 준공낙성 및 기념제. 오후1시30분 준공낙성식 및 준공축하 행사로 기념제·예술제·작품전·사진전을 개최
65. 3. 1	문교부 고등국사에 《원불교》 수록 p.279
4. 4	VTR시설 설치
5.18	문화법회 개최
6.30	원불교중앙총부 도서 교화부에서 이관
7.20	교화부에서 사적 및 유물관리장 인수
8.15	영산성지 대종사 성탄지 복원 기공식
8.21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의. 탄생가 초가원형으로 복원
9.13	도서벽지 순회문화교화. 무안, 장산도, 압해도에서 총부소개 슬라이드 새마을영화 상영
66. 3.22	원불교 문화방향모색 세미나. 연사 : 김도용교수, 양주인선생
7.~ 8.	원불교학생성화 공모전 개최
9. 1	『문화핸드북』 발행(문고 74페이지)
10. 1.	초창기 사진판넬 70점 제작
9.28	초기교서 전시판넬 해제 작성
66.10.10	『일원가족 합창』 노래집 발행
10.10	원불교인 수첩

66.10.20 카렌다 제작
67. 1. 9 김영신교무 『여성중앙』 2월호에 소개
1.11 원불교 여성교역자 정녀들의 보은원 『영레이디』 2월호에 소개
67. 2.28 「정녀로 가는 길」 KBS TV 방영 15분
3.26 원불교 대학생 등글게회에서 대종사 십상 무용 발표시 후원
8.10 어린이 학생교화를 위해 법어삽입 노트제작과 기념볼펜 샤프펜 제작 보급
10. 9~16 서울행사(회관) 초기교서 및 출판물 등 전시회
11.18 자동차 포니 2,260만원 구입
68. 1. 도서수집 운동전개. 1,080여권 수집
2.21 문화사업회 회칙 통과
3.19 문화홍보위원회에서 총부 안내판 구내 성귀판, 대각개교절 포스타 제작키로 결의
3.21 유물사적관리위원회. 구 총부구역 사적지구로 고시, 성탑주위 환경보수 건의키로
5. 9~13 교양강좌 실시, 5과목 400명 참석
6. 8~ 9 한국영화제작소 문공부후원. 한국종교 촬영중 원불교를 소개하기 위하여 촬영
7.22 일본 동방계 사장 총부내왕(도서 280권 기증)
9.16 문화사업회 운영위원 구성
11. 6 문화사업회 운영위원회
69. 5. 7 대산 종법사 교황 면담 VIDEO 촬영. 비디오 테이프 구입
69. 5.24 문화홍보위원회. 대전방송 협조의 건
5.27 문화사업회 운영위원회(문화사업회 운영방향모색)
5.30 전주 MBC-TV 「우리는 꿈나무」 총부 영모전 광장에서 촬영, 참석한 어린이에게 책갈피 제작 배부
6.17 만덕산·수계농원 일대 성지 VIDEO 촬영 제작
8. 8 영산성지 슬라이드 촬영
11. 4 문화사업회 운영위원회의
11. 5 화보완성.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2,000부
70. 1.11 문화사업회 운영위원모임. 「원미술대전」 건
2. 3 문화사업회 운영위원회. 「원미술대전」 건
2. 5 유물사적 촬영(총부)
3.15 원미술대전 1차 운영위원회, 원미술대전 추진 건
3.15 일어판 안내서(소책자) 발행, 3,000부
3.27 원미술대전 실행위원회. 원미술대전 추진협조건
4. 4 원미술대전 2차 운영위원회(초대작가 추천 건)
70. 4.10 선령·열위 이장봉행 봉고식 VIDEO 촬영 제작
4.11~12 출가식, 법위증 수여 및 봉고식(총부 영산) VIDEO 촬영 제작
4.14 사적 및 유물관리위원회
70. 4.16 원미술대전 추진위원회(김도용교수, 홍정덕회장 참석)
4.17 도서벽지 교서보내기(새마을도지부)에 『등그신 빛을 찾아서』 100권 기증

70. 4.20 원미술대전 추진위원회. 자본조달과 스폰서 건
4.26 연합통신기자 5명과 인터뷰. 대각개교절, 어린이잔치, 무료진료
4.28 대각개교절행사 VIDEO 촬영 제작
4.30 전주MBC 김영석기자 인터뷰. 솜리어린이민속큰잔치, 무료진료
5. 5 솜리어린이민속큰잔치 주관 및 VIDEO 촬영 및 제작
6.24 도서벽지 교서보내기(새마을도지부)에 『둥그신 빛을 찾아서』 100권 기증
12.10 원미술대전 개최. 전주(전북예술회관 12.20~27)와 서울(서울회관 71.1.10~15)에서 전시. 4개부문에 대한 공모전. 경비 6,000만원
71. 1. 교단안내 슬라이드 제작 30분용. 원불교 약사와 현황
3. 7 사무실 이전(문화회관 2층에서 3층으로) 칸막이 및 유리창 시설
3.18 교정원 직제 개편으로 공보업무 총무부로 이관. 총부안내업무 문화부로
4.28 대각개교절기념 성가경연대회. 9개기관 참가. 1등 : 원광의료원
5. 5 제2회 솜리어린이 민속큰잔치 개최. 총인원 5만명 참석. 경비 1,700만원
7. 영산성지 안내 팜프렛 발간
11. 1 제5차 문화사업회 정기운영위원회. 장소 : 시청각실. 시간 : 오후 3시
10. 1 문화사업회 운영위원 위촉. 재가 14명, 출가 10명, 감사 2명
72. 3.15 제6차 문화사업회 운영회의
5. 5 제3회 솜리어린이 민속큰잔치. 3만여명 참석. 경비 1,200만원. 장소 : 원광대운동장
5.10 대각개교절 경축음악회. 이리원음오케스트라외 기관합창단 참여. 장소 : 기념관
11. 7 문화사업회 운영회의. 장소 : 신조실
12.10 미술인 간담회. 24명 참석. 원미술인회(가칭)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 선정

다. 역대임직원

번호	직 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부 장	李 廣 淨	男	1936. 9. 1	62. 4. 11~67. 11. 10	
	주 사	柳 眞 根	〃	1952. 2. 2	62. 7. 18~64. 1. 24	신보사겸임
	〃	鄭 圓 雅	女	1951. 1. 30	64. 1. 25~67. 1. 21	
	과 장	徐 珖 圓	男	1948. 2. 14	65. 3. 14~69. 2. 9	
	간 사	鄭 致 圓	〃	1966. 11. 19	65. 11. 30~66. 10. 18	
	〃	孔 大 振	〃	1956. 3. 25	66. 10. 19~67. 1. 16	
	주 사	金 曉 徹	女	1957. 5. 20	67. 1. 30~67. 12. 24	
	부 장	金 恩 峻	男	1943. 12. 7	67. 11. 11~71. 1.	
	주 사	金 仁 和	女	1954. 3. 20	67. 12. 24~71. 1.	
	간 사	李 奉 圓	〃	1963. 5. 15	67. 1. 16~69. 2. 16	
	주 사	梁 海 寬	男	1955. 5. 11	69. 2. 10~71. 1.	
	간 사	陳 文 眞	〃	1965. 9. 3	69. 2. 17~70. 1. 28	

	간 사	韓 修 德	男	1961. 3. 30	70. 1. 29~72. 1. 9	
	부 장	金 理 玄	女	1930. 8. 28	71. 1. ~72. 1. 9	교화부장겸임
	과 장	李 善 照	〃	1952. 9. 20	71. 1. ~	
	주 임	李 壯 善	〃	1956. 3. 1	71. 1. ~	
	부 장	趙 正 勤	男	1934. 12. 6	72. 1. 10~	교화부장겸임
	간 사	李 善 政	〃	1967. 4. 24	72. 1. 10~	

8. 공 익 부

공익부는 원기9년(1924) 불법연구회 창립시의 상조부에 연원을 댈 수 있다. 당시 회중에서는 허례폐지, 근검저축,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공익기금을 적립하였으며, 원기19년(1934) 정식으로 서정원 6부에 공익부를 설치하였다. 공익부는 원기27년(1942) 양원 통폐합시에도 그대로 남아있다가 원기33년(1948) 재정 교헌에서 잠시 사라진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전재동포구호사업 등의 교단적 공익사업으로 당시 교단이 공익부라 할 만하였으며, 원기44년(1959) 1차 개헌시에 교정원에 공익부로 다시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가. 직제 및 주요기능

공익부의 직제는 공익과와 후생과의 양 과로 이루어졌으며 과별로 분담된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과 : 보육, 보도, 양노, 원호와 사회봉사부 봉공회 및 소관기관 지도감독 사무, 부내 타과에 속하지 않은 사무

② 후생과 : 후생, 요양, 보건위생, 진료에 관한 사무

이상을 직제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직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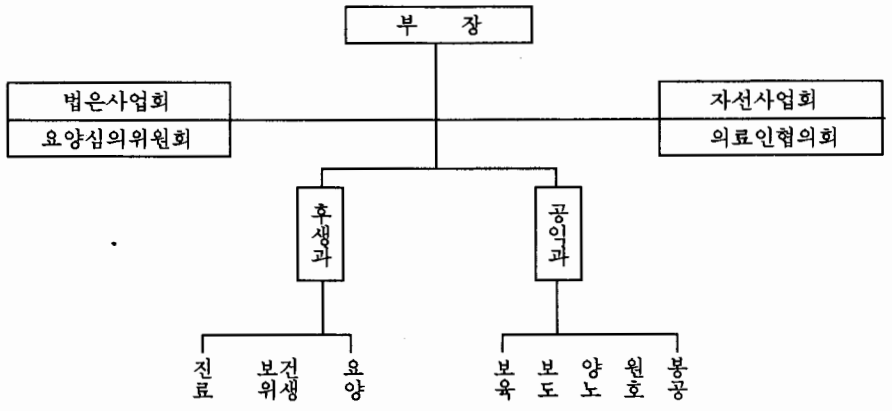

나. 연 혁

14. 허례폐지 근검저축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공익기금을 적립해서 공익사업에 바치자는 대종사의 유시를 받들어 60명의 공익적금 회원의 가입과 400원의 공익금이 적립되었으니 이것이 공익기금 조성의 효시이다.

그후 해를 거듭함에 따라 공익자산은 날로 증자되어 요양기관 및 자선기관 등의 창설을 보게 됨

18. 처음으로 중앙총부 서정원에 공익부와 인재 양성부를 둠

33. 서정원 사정에 의해서 공익부 사무가 재무부에 이관되어 원기43년(1958)까지 사무관장

44. 교정원 직제 변경따라 공익부가 사업부라는 명칭으로 재발족 요양기관 및 자선기관을 재무부로부터 이관 지도 감독 하게 함.

45. 9월 회갑을 맞으시는 정산종법사의 「회갑에 바치는 성금으로 전무출신 요양대책을 마련하라」는 유지를 받들어 법은재단 기금이 처음으로 조성됨. 당시 성금 1,488,510원

46. 5. 11 원의회에서 법은재단 정관통과

47 법은재단 운영위원회 발족. 운영위원 : 박장식, 박광전, 조회석, 이동진화, 송원철

47. 운영난에 봉착 폐업된 동화병원의 부채를 책임지기로 하고 일체 의료기와 건물(현 동화병원)을 관리하기로 인수 받음

48. 요양원 개설(현 청아원 건물)

48. 요양규정 제정 공포

49. 동화병원 건물(구 건물)을 대폭수리하여 요양원 이전(청아원에서)

50. 자선의 달 설정(제1회)

52. 법은재단 정관 개정

52. 변중선교무의 적극협력으로 법은재단 발기인 23명에 의해 법은재단 후원회 발기

52. 자선기관 친목 행사(연중 행사에 경비지출)

52. 10 법은재단 후원회 정관을 재정 공포

53. 3 법은회 발기총회 및 창립총회가 중앙총부에서 개최

53. 법은재단 후원회를 〈법은회〉라 개칭

53. 4 원의회에서 법은회 정관 제7조에 의거 운영위원을 선정. 회장 : 변중선, 부회장 : 황도영, 위원 : 박광전·정광훈·오종태·양도신·김영신·이경순·서대인·정성숙·송원철·최법룡·문동현·유영근·송달준. 감사 : 이공주·이공전.

54. 3 동화병원 건물 개축

55. 3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에서 법은회 기금을 법은 재단기금에 병합 법은회 운영위원회가 법은 재단 이사회로 개칭

55. 3 동화병원 개원. 원장 : 조채기, 부원장 : 김양수

56. 사업부가 공익부로 개칭

56	동화병원을 개축. 보일라 시설 총 공사비 540여만원
59	3월 제29회 교정위원회에서 후생사업회 정관 통과. 후생 사업회 발족
59. 3	자선바자회 개최
59. 3. 31	기념관에서 56~58년까지 3년동안의 법은회원을 대상으로 공덕회원 이상 시상식을 실시 24명에게 동메달을 수여하다
60. 7. 31	요양원 신축 이전
60. 10. 27~23	자선바자회 개최
60. 10. 19	원광한의원 재 개원
61. 11. 25	대구원광한의원 개원
61. 11. 27	신도요양원 개원
62. 10. 29	양방병원 대지 매입
64. 9. 30	의료인 협의회 발족
65. 5. 29	전북의료협동조합 가입
65. 9. 6~27	원불교 의료인 수련회
65. 7. 17	완도 불목요양원 개척
65. 8. 27	자선사업회 발족
65. 9. 26	법은의 날 특별축원 기도
65. 12. 15	자선사업회에서 구 원여고 건물일부 매입(대지 35.3 건물 연건평) 1억원.
66.	1월 후생복지금 지급 시작
66. 3. 26~4. 26	대각 경축 무료진료 실시. 이리지구 의료인협의회와 원대부속병원
66. 6. 30	완도요양원 건물 준공. 건평 22평, 900만원
66. 9. 8	완도요양원 개설 인가
66. 12. 1	이리시 망동(구회망원)에 〈자선원〉개원
67. 3. 26~4. 26	대각경축 무료진료 실시. 이리지구 의료인협의회와 원대부속병원.
67. 5. 30	완도 요양원 건물 준공(건평 50평 2천5백만원)
67. 6. 24	교역자 간염검사 실시
67. 11. 14	서면 원광한의원 개원
67. 12. 1	군산 원광한의원 개원
68. 6. 4	환자 수송 봉공 차량 구입
68. 6. 17	남자 요양원 개원
68. 6. 26	이리 자선원 이전(알봉묘지자리)
69. 4. 3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무출신 요양 규정 개정
69. 4. 20	원광 한의원앞 점포 신축(건평 135평)
69	총부 직원 간염 예방 접종 실시
68. 12. 4	건물준공하여 자선원을 현건물로 이전(알봉묘지 자리)
69. 4. 25~5. 25	대각경축 무료진료 실시
69. 8. 16	원광한의원앞 점포 준공
69. 10. 15	원광한의원 앞 2.3층 증축기공함(건평 143평)

70. 3. 22 원광한의원 앞 2.3층 완공함.
70. 3. 1 정신요양원 기공.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 산 61－1(건평 150평)
70. 4. 7～5. 12 대각경축 무료진료실시. 이리지구 의료인협의회와 원광의료원, 보화당 연합회
70. 4～ 중앙보조금 8,400만원으로 2층 숙소 및 부대시설을 확장공사를 시작하여 11월 6일 증축사업이 완공되므로 준공 및 봉불식을 가짐
70. 5. 27 지난 5월에 1,500만원을 들여 건물 보수 및 증축공사에 착수 7월말 완공
70. 8. 12 이리시 신용동 산 50번지에 건평 150평 2층 스라브를 신축중임(공사비 1억1천만원)
70. 8. 25 종로교당 이철원회장의 소유 원평소재 대지 300평 건물 1동을 법은사업회에서 회사 받아 420만원에 수리. 원평요양원으로 활용하기로 함.
70. 10. 17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 산 61－1번지에 신축하던 정신요양원을 준공.
71. 2. 13 이리시 신용동 326－6번지에 신축하던 중앙요양이 준공되므로 입주 및 봉불식 건평 148평, 공사비 1억1천만원
71. 4. 30 대각개교절기념 무료진료를 교단 산하 의료기관과 이리지구 의료인협의회에서 실시함
71. 3. 15～7.30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에 소재한 삼정원은 숙소와 법당 사무실 등 225평을 증축함. 공사비 1억1천2백만원
71. 8. 25 이리시 신용동 235－1번지에 원광노인요양원 신축 기공식 건평 250평, 공사비 1억8천만원
71. 5 법은사업회 기금확보를 위하여 1만명 영구회원 모집 운동을 전개함
71. 8. 15 이리시 신동 280－6번지에 건평 175평을 증축 기공함. 공사비 1억9천2백만원
71. 12. 23 이리시 신용동 235－1번지에 원광 노인 요양원 준공. 건평·250평 공사비 1억8천만원
71. 12. 23 이리시 신용동 280－6번지에 중앙수양원 증축 준공

다. 역대임직원

직 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상조부장	全 飮 光	男	1909. 6. 17	12. 3. 26～13. 3. 25	
상조부서기	徐 大 圓	〃	1910. 3. 20	16. 8. 1	
공익부서기	徐 大 圓	〃	〃	17. 3. 27	
공익부장	李 載 喆	〃	1891. 2. 11	18. 3. 27～19. 3. 26	
공익서기	趙 甲 鍾	〃	1905. 5. 13	18. 3. 27～20. 3	인재·상조
공익부장	李 東 安	〃	1892. 12. 22	19. 3. 26～20. 3	
공익서기	金 大 擧	〃	1914. 3. 16	19. 9. 1～21. 3. 26	상조·육영
부장	趙 甲 鍾	〃	1905. 5. 13	20. 3. 26～21. 3	
부장	柳 虛 一	〃	1882. 10. 19	21. 3. 26～23. 3	
서기	朴 道 院	女	1917. 9. 7	21. 3. 26	
부장	宋 慧 煥	男	1905. 2. 12	23. 3. 26～24. 4	
〃	李 東 安	〃	1892. 12. 22	24. 4. 26	

	朴道院	男	1917. 9. 7	25. 4. 26		
	全飮光	〃	1909. 6. 17	27. 4. 26~28		
	李建春	〃	1920. 12. 12	27. 4. 26~28		
	柳三田	〃		27. 4. 26~28		
부장	李光悟	〃	1920. 2. 11	27. 9. 21~28		
서기	朴將植	〃	1911. 1. 9	28 ~8. 6. 10		
부장	丁光薰	〃	1917. 8. 30	28 ~		
	李雲捲	〃	1914. 5. 3	28. 6. 10~28. 7. 30		
	全飮光	〃	1909. 6. 17	28. 7. 30		
	李雲捲	〃	1914. 5. 3	29. 4. 26		
예감	朴將植	〃	1911. 1. 9			
〃	全飮光	〃	1909. 6. 17	29. 8. 26		
〃	李雲捲	〃	1914. 5. 3	29. 4. 26		
〃	金大擧	〃	1914. 3. 16	29. 8. 26		
〃	柳虛一	〃	1882. 10. 19	29. 11. 6		
	吳昌建	〃	1887. 10. 17	30. 2. 1		
서기	李恩錫	〃	1925. 1. 12	30. 3. 26		
개인내력서기	朴恩燮	女	1924. 5. 29	30. 3. 26		
〃	李順錫	〃	1922. 4. 14	30. 3. 26		
〃	李聖信	〃	1922. 12. 1	30. 3. 26		
탁아소보호	權偶然	〃	1918. 5. 21	29. 6. 20		
〃	金奉植	〃	1921. 2. 11	29. 6. 20		
부장	趙甲鍾	男	1905. 5. 13	31. 4. 26		
서기	鄭高善	〃	1926. 11. 10	31. 4. 26~		
예감서기	丁震浩	〃	1927. 1. 18	31. 4. 26		
〃	林學鮫	〃	1926. 3. 5	31. 4. 26		
서기	鄭南善	〃	1926. 10. 10	32. 4. 26		
예감	丁一持	〃	1892. 7. 1	32. 4. 26		
서기	黃亨一	〃	1926. 10. 14	32. 4. 26		
사업부부장	成丁哲	男	1902. 6. 21	44. 4. ~47. 3		
주사	金壯權	〃	1931. 11. 30	44. 4. ~47. 3		
부장	宋圓徹	女	1926. 5. 8	47. 4 ~56.		
후생과장	金壯權	男	1931. 11. 30	47. 4 ~48		
이사	宋慈明	女	1926. 9. 7	47. ~48		
주사	金志英	〃	1932. 1. 19	48 ~49		
〃	張應哲	男	1940. 9. 8	49 ~50		
간병	朴純基	女	1942. 9. 4	49 ~50		
주사	具安福	男	1939. 11. 11	50 ~53		

주 사	朴賢道	女	1936. 3. 15	50	~53	
간 병	李喜仁	〃	1947. 11. 2	50	~51	
간 병	崔德眞	〃	1934. 1. 12	51	~53	
〃	朴永權	〃	1918. 11. 13	51	~52	
〃	盧聖子	〃	1944. 5. 20	52	~54	
식 당	宋和心	〃		52	~53	
과 장	具安福	男	1939. 11. 11	53	~56	
주 사	柳宗信	女	1942. 6. 21	53	~56	
간 병	李永華	〃	1927. 1. 10	53	~54	
식 당	李震明	〃	1911. 9. 1	53	~55	
〃	최정자	〃		53	~54	
간 병	李圓明	〃	1948. 3. 10	54	~55	
요양원총무	吳聖洙	男	1934. 11. 20	55		
사업부감원	황이경	女		55		
식 당	尹舜明	〃	1946. 4. 22	55		
〃	오행자	〃		55		
공익부부장	宋慈明	女	1926. 9. 7	56	~58	
과 장	徐三聖	男	1939. 11. 11	56	~58	
주 사	金濟明	女	1944. 9. 9	56	~57	
주 사	柳應現	女	1945. 3. 26	57	~60	
부 장	吳曉圓	女	1931. 12. 20	58. 3. 1~71. 2		
과 장	金聲振	男	1939. 10. 30	58. 3. 1~60		
주 사	尹舜明	女	1946. 3. 21	58. 3. 1~60		
〃	金現均	女	1948. 9. 10	59. 5. 1~60		
〃	徐珖圓	男	1948. 2. 14	60. 3. 1~62. 4		
〃	李慧眞	女	1948. 6. 23	60. 3. 1~63. 7		
주 임	尹舜明	〃	1946. 4. 22	60. 3. 1~61. 2		
〃	權世圓	〃	1947. 2. 25	61. 3. 1~62. 4		
주 사	柳義聖	〃	1943. 2. 25	61. 3. 1~62. 4		
과 장	李鍾眞	男	1939. 11. 24	62. 4 ~65. 3		
주 임	吳珠恩	女	1947. 4. 22	62. 4. ~65. 3		
주 사	李淨善	〃	1947. 7. 30	63. 7. ~67. 3		
간 사	朴道碩	男				
주 임	黃大圓	女	1945. 4. 6	64. 7. 1~65. 3		
간 사	李聖求	男	1960. 6. 16	64. 2. 12~66. 3. 19		
주 임	李聖奎	〃	1944. 11. 28	65. 3. 10~66. 3		
주 사	丁恩守	女	1951. 4. 1	65. 3. 3		
간 사	金恩聲	〃	1958. 4. 22	64. 10. 19~65		

주 사	具 仁 和	女	1966. 8. 17	66. 3. 31		
간 사	김 도 연	男				
과 장	李 聖 奎	〃	1944. 11. 28	66. 3.		
주 임	李 淨 善	女	1947.	67. 3. 1~68		
간 사	김 원 국	男				
〃	梁 誠 天	〃	1962. 10. 29			
주 사	崔 慈 恩	女	1951. 7. 25	68. 3. 1~70. 1		
간 사	朴 誠 宗	男	1959. 1. 13	67. 11. 11~70. 1		
〃	崔 正 信	女	1966. 8. 15	70. 1. 23~		
부 장	李 慧 定	〃	1939. 12. 9	71. 2. 18~		
주 임	李 淨 善	〃	1947. 7. 30	71. 2. 18~		
주 사	李 明 熙	〃	1953. 10. 6	71. 2. 18~72. 1		
간 사	鄭 法 一	〃	1964. 2. 1	71. 2. 18~		
주 임	金 道 眞	〃	1954. 6. 6	72. 1. 19		
주 사	黃 道 默	〃	1959. 5. 6	72. 1. 22		
간 사	朴 法 淵	〃	1962. 8. 15	72. 1. 15		

9. 국 제 부

국제부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세계속의 원불교로서 보다 활발한 국제교화 활동의 필요를 절감하여 설치되었는 바, 그간 원광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해외포교연구소에서 주로 담당해 왔던 해외교화 업무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였으므로 1차적으로 소장에게 교화부의 해외포교 담당교감 발령을 하였고, 원기66년(1981) 3월에 제86회 수위단회에서 교정원 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교정원의 독립부로 국제부를 설립하게 되었다.

국제부가 설립되기 전 원기40년(1955)대, 50년(1965)대에는 주로 서신교화로서, 원기56년(1971) 영문판 교전이 간행되었고, 원기48년(1963)에 최초의 미국인이 입교하였으며, 두 사람의 교역자가 원기52년(1967)에 해외(미국)유학을 하였으며 56년(1971)에 최초로 세계종교인 평화회의에 4명의 교역자가 참석하였다. 원기57년(1972)부터 원기58년(1973)에 이르기까지 3명의 교역자를 미국에 파견, 원기59년(1974)부터 격년제로 국제 수련대회가 시작되었으며, 원기60년(1975)대에는 가장 활발하게 해외교화가 활성화 되었다.

원기70년(1985)대 들어 LA, Chicaho New York 교당이 자리를 굳혀 가면서 원기72년(1987) 8월 필라델피아교당 봉불식을 거행함으로서 미주지역에 원불교 교당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캐나다, 서독, 일본 등 13개의 해외 교당에 20명의 교역자가 해외 교화에 주력하고 있다.

가. 직제 및 주요기능

국제부에는 국제과와 번역과가 있는 바 과별 분담된 주요기능과 직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국제과 : 국제교화, 국제교류 및 대외국제훈련, 해외교구 교당 지도·감독 및 후원.

② 번역과 : 국제교화를 위한 교서·교재번역 및 발행

이를 현 국제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 업무로 정리 수행하고 있다.

① 교서 외국어 번역

② 해외교당 감독·후원

③ 해외교역자 파견 및 관리

④ 국제종교대회. 종교 학술회의 참여

⑤ 해외교당 및 각 종교단체, 종교인과의 교류·연락

⑥ 해외교역자 양성후원

⑦ 교역자 언어훈련

〈직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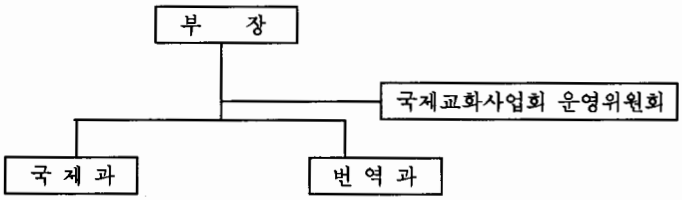

나. 연 혁

40. 1. 1	해외 각 종교계 교육계 저명인사 등과의 서신교류. 세계 각 종교 및 교육기관, 도서관과의 서책교환
43. 10. 19	미국 불교학자 가드박사 원불교총부 방문
43. 10. 19	박광전교무(원광대 총장) 세계불교도대회 참석(제1차 태국)
45. 11.	해외포교연구소 원광대학교 정식 연구기관으로 창립
48.	미국인 랠프. 엘. 고긴(Ralph. L.Gogin)씨 입교 법명 받음
50. 4.	중·독·일어판『요람』발행
51.	황정신행교도 세계불교도대회 참석(태국).
53. 4. 30	영어판『요람』발행
56. 3. 26	영문판『교전』발행(전팔근 번역)
56. 5. 27	세계종교인 평화회의 참석(박광전·전팔근·김정용·이공전교무)

58. 5. 16 원불교 미주에서 법인인가 얻음(캘리포이나 주정부).
59. 4. 27~ 5. 16 원광대 해외포교교구소 주최로 제1차 국제수련대회 참석(미주지역)
60. 7. 30 일본어『교전』발간(이대화 번역)
61. 8. 8~ 9. 10 원광대 해외포교연구소주최. 원불교 국제수련대회(미주·유럽·동남아지역)
63. 3. 5 원불교 캐나다 종교법인 인가 얻음
63. 9. 28~10. 16 국제수련대회 개최
63. 9. 30~10. 6 제12차 세계불교도 대회 참석(박광전, 전팔근. 일본)
64. 7. 제3차 세계종교자 평화회의(W.C.R.P) 참석.
64. 9. 20 일본어판『교사』발간(전성완 번역)
65. 2. 15 일본국 정부 원불교를 종교 법인으로 인가
65. 7. 20~ 8. 18 국제수련대회 개최
65. 8. 30 일본어판『예전』발행(전성완 번역)
65. 11. 21 제3차 세계불교도대회에서 원불교지회 가입(박광전, 전팔근. 태국).
66. 3. 12 국제부 신설-교정원 소속
66. 10. 9 팜프렛 인쇄
66. 10. 6~12 제2차 아시아 종교자평화대회에 참석(뉴델리)
67. 2. 9 국제교화 후원회 정관시안프린트 작성
67. 2. 10 세계 불교도회 원불교본부 현판식
67. 3. 13 세계 종교자 평화회의 참석(전팔근, 박광전. 일본)
67. 10. 9 원남교당 박심원교도 국제교화 공로자 수상(공로패)
67. 11. 13~23 한·일종교자 대회 참석(전팔근. 일본)
67. 12. 7 아시아 종교자 평화회의 준비위한 준비위원회 개최
67. 12. 8 중국어판 교사 초안 교화부에서 인수
1. 15 국제교화 사업회 정관(시안)개정
1. 29 국제교화 사업회 창설
2. 10 세계 연방 아세아 종교자회의 참석(W.A.W.F). 인도 뉴델리
4. 8 국제교화 사업회 운영위원 위촉장 발급
67. 5. 12 세계종교자 평화회의 위원회 참석(전팔근)
67. 7. 9 미국교구 교화현황파악 및 국제부 지시전달자 순방
68. 10. 30 국제 교화사업회 운영위원회 개최(서울회관)
68. 11. 1 ACRP일본 대표단 총부 방문
68. 12. 29 세계종교자 회의 참석(전팔근. 미국)
69. 4. 2 ACRP회의 참석(박광전, 전팔근)
69. 5. 6 요한 바오로 2세 내한시 세계 평화 3대 제안 발표
69. 8. 21~9. 1 제4차 세계 종교자 평화회의 참석(박광전, 전팔근. 케냐 아프리카)
69. 11. 6 국제 교화 사업회 운영위원회(서울회망)
70. 5. 6~5. 7 전팔근, 송천은외 3인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활 세미나 참석(아카데미 하우스에서)

70. 6. 25 전팔근, 준비위원회 참석
70. 8. 5 김재원행으로부터 San Francisco에 있는 삼보사 인수 서류 회담
70. 11. 2 국제 교화 사업회 운영위원회
70. 12. 29 미주지역 교당 순회 및 독일 방문(전팔근)
71. 1. 9 최성덕교무와 노에푸레쎄지에 원불교 소개 및 교당 기초 마련
71. 3. 20 전팔근교무 ACRP 준비위원회 회의 참석(아카데미 하우스)
71. 4. 15 일본 후지다니스의 3인 총부 방문
71. 5. 10 전팔근교무 ACRP 한국위원회 참석(아카데미 하우스)
71. 6. 17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주제 : 아시아에서의 평화의 가교. 서울 앰버서더 호텔 400여명
71. 6. 21~22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의 대표단 32명 총부 및 영산성지 순례
71. 6. 23 박광전교무 중공 W.C.R.P 한국위원회 대표 참석
71. 8. 12 전팔근교무와 8인 미주 뉴욕교당 봉불식 참석 및 미주교당 순방차 출국
71. 11. 1 국제교화사업회운영위원회. 잠실교당 14명 참석
71. 11. 27 세계불교도대회. 네팔. 주제 : 세계평화의 상징 룸비니. 400여명. 전팔근외 7명 참석
72. 3. 28 일본관동교당 봉불식 참석차 김윤중. 전팔근교무 도일
72. 5. 7~10 태국 국왕탄신 60주년 기념식 불교자 대표초청. 전팔근 참석
72. 5. 10 원부디즘 제4권 3호(통권43호) 발간 500부. 국제부.
72. 5. 11~19 LA종교인 협의회 세미나 강연. 주제 : 인류는 한가족. 전팔근.
72. 6. 12~13 WCRP 한·일부인회 세미나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 전팔근 참석
72. 6. 25~ 7. 6 한·일 종교자 회의. 일본. 이운권, 이철행, 양혜경, 박재현, 문동현
72. 7. 7 WCRP 한국위원회(코리아나호텔). 전팔근, 이철행, 이광정, 장응철, 박청수
72. 7. 26~ 8. 17 필라델피아 교당 봉불식 참석 및 미주교구 교당 순방. 김윤중
72. 9. 13~ 9. 21 캘리포니아 덕산 훈련원 환원 건 미국순방. 전팔근
72. 10. 1~10. 10 덕산훈련원 환원건 미국순방. 박장식, 전팔근. 덕산훈련원 환원처리함. 10. 7
72. 10. 31 제5차 국제 교화사업회 운영위원회 11명 참석. 서울회관.

다. 역대임원

직 책	법 명(호적명)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부 장	全 八 根 (八 根)	1927. 2. 3	66. 4. 1~	
주 임	李 聖 田 (聖 田)	1953. 1. 15	66. 9. 1~67. 8. 30	
주 사	劉 香 眞 (美 賢)	1959. 8. 25	68. 1. 4~70. 2. 4	
주 사	安 慈 恩 (眞 姬)	1955. 9. 26	70. 2. 4~71. 2. 20	
주 임	全 海 德 (南 海)	1953. 3. 2	71. 2. 20~	
주 임	成 大 眞 (一 虎)	1955. 3. 14	72. 1. 10~	
간 사	柳 恩 銘	1963. 11. 18	70. 1. 12~71. 12. 30	
간 사	金 玄 章 (五 順)	1969. 10. 10	72. 2. 17~	

라. 국제 종교인 회의

원불교가 정식으로 가입한 중요국제종교기구는 「세계 불교도 우의회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약칭 W.F.B.)」, 「세계종교자평화회의 (World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약칭 W.C.R.P)」, 「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 (Asian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약칭 A.C.R.P」, 「세계 연방 종교인 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World Federalists, 약칭 W.A.W.F)」 등이다.

(1) **세계불교도 우의회(W.F.B.)**

W.F.B는 원기35년(1950) 5월 당시 실론의 콜롬보에서 아시아, 유럽, 미국 등 27개국 대표들이 모여 창립되었다. 당시 라오스, 소련, 몽고, 베트남 등 공산권 국가들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창립이래 2년마다 총회가 개최되고 있다.

설립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교화해나가며 불교도들간의 단결과 우의를 도모하여 나아가 사회, 교육, 문화분야의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촉구하는데 공동의 힘을 합하자는 것이다.

박광전교무(원광대 총장)의 구미시찰(원기41년, 1956)을 계기로 원불교는 본격적으로 세계종교단체와 유대관계를 맺게 되며, 원불교의 본격적인 해외홍보가 시작되었다. 당시 『원불교교보』나 『원광』지의 내용중에도 해외포교활동이 가장 중요한 기사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박광전교무의 구미 교육·종교계 시찰은 교단의 해외교류사에 크나큰 서광을 던져 주었다.

원기35년(1950) W. F. B대회 참석 이래로 교단은 정식 회원자격은 아니어도 한국대표의 일원으로 꾸준한 참여를 보여왔다.

원기51년(1966) 11월 태국 챵마이시의 다부사탄호텔에서 열린 제 8 차 대회에는 한국대표의 일원으로 황정신행교도, 김정용교무가 참가했다.

원기54년(1969) 4월 13일에서 20일까지 말레이지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9차 대회에는 한국 불교계 대표로 김정용(당시 원불교신문사사장)교무가 참석했다.

제9차 대회에서는 1) 세계불교도회 본부를 태국의 수도 「방콕」에 설립키로 2) 다음 대회는 「실론」에서 개최키로 3) W.F.B의 유네스코가입 4) 제8차 대회때 황정신행교도가 제안한 사회봉사기구를 설립키로 결의했다.* 이 대회에서 영문판 『원불교안내』를 배포하였는데 이후에도 교단은 메세지와 원불교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

* 제8회 대회에서 「천지지변을 당한 약소국가를 돕는사업을 전개하자」는 본교단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원기56년(1971) 10월 10~12일 사흘간 제10차 대회가 한국 워커힐호텔에서 열렸는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 대회에는 당시 박장식교정원장, 이운권교무, 정광훈교무, 문동현중앙교의회의장이 참석하였다.

원기63년(1978)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일본 동경, 경도에서 제12차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동경의 築地 本願寺, 增上寺와 경도 국제회의장에서 「불교도가 사고하는 미래사회상」이란 주제아래 개최되었는데, 교단에서는 당시 박광전교무, 전팔근교무(이상 교단대표) 문동현의장, 유기현교무 김정관교무(이상 옵저버)가 참석 하였다.

원기65년(1980) 11월 21일 방콕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원불교의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 통과하였다.*

원기69년(1984)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14차 대회는 『원불교지회』* 승인후 첫 참가였다. 참석자는 당시 박광전교무, 전팔근교무(이상 교단대표), 이공전교무, 김인철교무, 이광정교무(이상 옵저버) 등이다.

제14차 대회는 W.F.B 스리랑카지회와 스리랑카 문화성이 공동주최하였는데 폐막식에서 대회장은 「원불교의 활동은 매우 모범적이고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효과적이고도 능률적인 단체이다. 교화, 교육, 자선사업 등 각 방면에 걸쳐 이렇게 골고루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 불교계의 유례가 드문 장한 일이다」라고 발표하였다. 대회중 박광전교무 니쌍카 스리랑카 법무장관을 전팔근교무는 쟈나르데 대통령을 각각 예방하였다.

원기71년(1986)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카트만두의 다스라스 스타디움에서 「룸비니=세계평화의 상징」이란 주제로 열린 제15차 대회에는 김윤중교무, 전팔근교무(이상공식대표), 박은국교무, 신제근교무, 전이창교무, 이철행교무, 한정석교무, 전성완보건전문대학장(이상 옵저버) 등이 참여하였다.

(2) **세계종교평화회의(W.C.R.P)**

W.C.R.P는 원기53년(1968) 인도 뉴델리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종교자회의에 참석한 각국 종교지도자들이 세계종교평화에 관한 기구를 창설키로 결의하였다. 원기55년(1970)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일본 경도의 국제회관에서 세계 39개국 300여명이 모여 제1차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동 대회*에는 사무총장 호머·A잭씨의 초청으로 당시 박광전교무, 전팔근교무, 이공전교무, 김정용교무가 참석하였다. 한국인으로는 원불교대표만 참석하였는데, 대회기간중 원불교의 이념과 평화활동 등 교단 홍보도 아울러 펴* 반백년기념총회에 많은 종교지도자들이 원

---

* 동회 이사진에는 중앙총부 간부회의에서 당시 박광전, 김근수, 김정용, 김윤중, 전팔근, 유기현, 김인철, 이보원이사를 선임하였다.

* 원기66년(1981) 2월 10일 W.F.B 원불교현판식이 교정원 입구에서 있었다. 영문현판의 명칭은 「Won Buddhism of 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불교총부를 방문할 뜻을 전하였다.

W.C.R.P참가는 원불교가 종교연합 (United Religions)운동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원기58년(1973년) W.C.R.P는 UN의 국제경제이사회(ECOSOC)의 비정부기관으로 등록하여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공식자문기관과 협조기관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원기59년(1974) 벨기에 루벤에서 열린 제2차 총회는 원불교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원기64년(1979) 8월 20일 미국 프린스턴에서 열린 제3차 대회에는 당시 박광전교무, 전팔근교무가 참석하였다. 이 대회에 참석한 두 대표는 일본의 三宅歲雄 W.C.R.P부회장과 John Greely W.C.R.P이사와 회견하여 원불교의 一圓主義에 입각한 국제종교활동의 이념을 전하였고, 정식으로 W.C.R.P에 가입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원기67년(1982)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동경의 W.C.R.P 일본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0회 평화를 위한 종교자연구집회가 「폭력없는세계-새로운 인류공동체 모색」을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본교 대표로는 당시 박광전교무와 전팔근교무가 초청되었다. 여기서 전팔근교무는 한국의 정세와 종교현황, 원불교의 역사적 배경과 일원주의 이념과 종교연합을 통한 세계평화실현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원기69년(1984)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4차 대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세계평화」를 주제로 65개국 800여명의 대표가 모여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당시 박광전교무, 전팔근교무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원기71년(1986)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북경에서 제5차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R.P)가 「활동과 기도를 통한 평화(Peace through Work and Prayer)」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종교인 대표로는 첫 중국방문이 되었다.* 본교에서는 박광전교무가 참석하였다. 박광전교무는 원불교교전을 전달하였다.

(3) 아시아 종교평화회의(A.C.R.P)

A.C.R.P는 창립총회를 원기61년(1976) 싱가포르에서 가졌다. 22개국 161명의 대표와 세계각국의 옵저버 800여명이 참석하였다. A.C.R.P는 W.C.R.P와 협조하에 각 종교의 특성을 존중,

---

* 400여개국 236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세계에 대한 종교의 기여하는 역할은 큰 것이나 지금까지 평화가 이룩되지 않은 이유는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저하라고 지적, 종교의 활발한 평화에 대한 기여를 다짐하고(조화없는 진보보다는 차라리 진보없는 조화를 주장하였다. 6일간의 대체토론을 마친 대표들은 대회 최종일에 「종교는 부자와 억압자의 편에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와 피억압자의 편에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회의선언으로 비무장, 인권, 개발의 3개분과로 토의된 보고사항을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의 중요내용은 베트남, 중동전쟁 종식과 미국,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였다.

* 박광전을 단장으로하는 교단대표들은 大山종법사의 평화메세지를 본회의에 전달하였다.

* 당시 참석자는 강원룡 경동교회목사, 이병주 성균관원로.

종교간 민족간의 유대와 봉사를 촉진하는 아시아인들의 종교기구로서 출발하였고 5년마다 총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박광전교무 원기60년(1975) 1월 자유중국 종교인협의회 초청 한·중종교인 협의회에서 아시아 종교인회의 또는 세계종교인회의를 원불교에서 주최할 뜻을 밝힌 바 있으며, 동년 2월 제60회 수위단회 개회사에서 대산종법사는 원불교에서 장차 아시아종교인 회의를 주최할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원기66년(1981)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A.C.R.P 2차 총회를 위한 운영위원회에 처음으로 본교대표가 참석하여 박광전교무는 운영위원장으로 전팔근교무는 커뮤니케이션 기초위원겸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이 모임에서 두 대표는 종교협력기구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종교연합 창설*의 시급함을 제의하였는데 만장일치로 본안이 채택되어 원기67년(1982) 방글라데시에서 3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구체적인 안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원기66년(1981)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총회에서 박광전은 이사로, 전팔근은 부녀회 부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지금까지 W.C.R.P에 옵저버로 참석한 본교는 이 대회에 정식회원으로 참석하여 차기대회를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원기67년(1982) 4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열린 A.C.R.P 각국 사무총장회의에 박광전, 전팔근교무가 참석하였는데 한국은 아직 사무국이 설치되지 못하여 원불교, 천주교, 유교, 불교 4개교단 대표가 참석하였다.

원기69년(1984) 3월 3일 홍콩에서 열린 A.C.R.P 집행위원회에 박광전, 전팔근교무가 참석하였고, 동년 8월 16일 서울에서 A.C.R.P 한국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여기서 박광전교무는 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원기71년(1986)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3차 총회*가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아시아에서의 평화의 가교」를 주제로 15개국 대표 4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원기66년(1981) 11월 뉴델리대회에서 박광전교무의 A.C.R.P 한국 유치선언이후 5년간의 준비기를 거쳐, 실질적으로 원불교가 주축이 되어 서울대회를 추진시켜 왔다. 서울대회에서 대산종법사는

---

* 세계종교연합기구(United Religions, 약칭 U.R) 창설의 추진은 원기64년(1979) 3월 26일, 大山종법사의 대각개교절 경축사에서 언명된 바 있다. 大山종법사는 진정한 세계평화를 위한 3대제언 중에 공도시장개척, 심전계발훈련과 아울러 「종교연합」을 탄생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카톨릭, 불교, 개신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등 6개 종교와 인도,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15개국 종교지도자 450여명과 옵저버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회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화의 촉진」,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비폭력의 성취」 등을 주제로 각 분과연구회의와 각 종교신도는 「각 종교신도 상호간의 갱신과 공존」, 「평화를 위한 교육」, 「지구공동체에 대한 아시아 종교인 공헌」 등에 대하여 발표 토론하였다.

* 대한불교 조계종 주관

대회고문으로 박광전교무는 부위원장, 전팔근교무는 여성분과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6월 18일은 서울회관에서 교정원장 초청만찬을, 6월 19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정도진 원불교 중앙교의회의장 초청오찬을 각국 대표에게 베풀었다. 대회가 끝난직 후 메헤르반, 싱그 A.C.R.P 사무총장, 호머. A·잭 W.C.R.P명예총장, 존 B테일러 W.C.R.P사무총장 우반장군 인도 A.C.R.P지회장 등 33명의 대표가 총부와 원광대를 방문하여 중앙훈련원에서 대산종법사를 접견하였다. 이어 이들 대표들은 전주교구청에서 마련한 환영만찬에 참석한뒤 내장산관광호텔에서 일박한 뒤, 이튿날 영산성지를 방문하여 뜨거운 환영을 받았고, 광주교구에서 마련한 환영오찬을 신양파크호텔에서 가졌다. 바로 서울에 도착한 이들은 중구, 강남, 화곡, 종로교당을 분산 방문하여 교도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회를 통해 원불교도는 국제종교기구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원불교를 대외에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종교간의 우의를 한층더 돈독히 가졌다.

(4) 기타 국제종교모임

W.F.B, W.C.R.P, A.C.R.P외에도 교단은 국제적인 종교모임에 적극 참여해 왔다.

원기55년(1970)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불교지도자대회에 교단대표 5명*이 참석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세계불교 일체화운동과 그 구체적 방법,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의 불교적 이념과 방법이 중점적으로 토의되었고 서울에 세계불교연합을 설치키로 결의하고 이를 위한 7인 대표회를 구성하였다.

원기67년(1982) 11월 한일종교협의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오사카에서 열린 동 모임에서 전팔근교무 제2분과 의장으로 선임되었고, 「한·일종교 부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원기68년(1983)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W.A.W.F아시아센터회의에 참석하여*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하였다. 이 대회에서 전팔근교무는 교단에서 주창해온 종교연합운동의 취지와 필요성을 재의해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팔근교무는 동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으로 피선되었다.

원기69년(1984) 12월 세계기독교회(W.C.C.)가 홍콩에서 개최한 「기독교·불교의 대화」에 전팔근교무는 한국대표로 참석 원불교 교전과 교단홍보 책자를 배부하였고, 원불교 의식으로 기도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

* 당시 박장식교정원장, 이운권교무, 정광훈 원광고교장, 문동현 중앙교의회의장, 이재성교무.

* 참석자 : 전팔근 (대학원장, 교정원부원장, 국제부장)

(5) 한·일종교교류

반백년 기념대회를 전후하여 교단은 한·일간 종교교류에 적극성을 띠고 참여하였다.

원기56년(1971) 5월 요코하마 總持寺에서 열린 「세계연방평화 촉진대회」에 교단대표*가 참석하였고, 동년 7월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한·일불교친선세미나」에 박장식이 참석, 한·일 불교친선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동년 10월 교단의 「개교반백년 기념대회」에 「세계연방일본 불교도 협의회」의 사무총장인 山中龍淵이 참석하여 「세계연방주의와 종교」라는 강연을 하였다.

원기58년(1973) 11월 26일 부터 30일까지 오오사카에서 열린 「한·일종교회의」에 당시 박장식교무, 문동현중앙교의회의장, 박제권교무, 송원철교무가 참석하였다.

원기61년(1976) 2월 박광전교무는 도일하여 한·일 종교협의회 예비모임에 참석하여 아시아 종교연합 결성문제와 아울러 종교인여성협회에 관한 사항을 5월 서울정기총회에 의제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년 5월 제2차 한일종교인협의회*에서 「아시아에 있어서 정신적 가치의 고양과 종교인의 사명」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원기62년(1977) 11월에 한·일종교인협의회 간담회차 내한한 三宅歲雄*(일본측회장) 일본인 대표 7인과 한국대표 9인이 대산종법사를 예방하였다. 대산종법사는 종교인 공동기구인 United Religions 창설, 세계공동시장 개척, 심전계발운동 등 세가지를 제안했다. 다음해인 원기63년(1978) 10월에는 대산종법사의 초청으로 三宅歲雄이 참석하여 중앙총부에서 환영식을 베풀기도 했다.

원기64년(1979) 1월에는 三宅歲雄의 초청으로 김근수교무외 3명이 오오사카 金光教 泉尾教會창립 5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원기65년(1980) 2월 W.C.R.P 일본위원회 상임위원 西田武가 총부를 방문하였다. 원기68년(1983) 11월에도 W.C.R.P 일본위원 8명과 같이 대산종법사를 방문하였다.

원기72년(1987) 6월 한·일종교인 대표 80여명은 오오사카 金光教 泉尾教會에서 열린 제5차 한·일종교인 협의회에 교단대표로 이운권교무외 10명이 참석하였다.

원기66년(1981)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도에서 열린 한·일불교일본대회에도 교단 대표*가 참석하였다. 이 대회중 천태종 총본산인 연혁사 대웅전에서 2차대전에 희생된 30여만명의 위령제가 있었고, 경도 국제회관에서는 「한·일불교의 금후의 과제」로 기념학술강연이 있었다.

원기71년(1986) A.C.R.P서울대회가 열렸을 때 많은 일본 종교계 인사들이 총부를 방문하였다.* 동년 9월 「한·일종교인협의회」 일본측 회장의 초청으로 서광덕, 박선태교무가 원불교 청

---

* 박광전, 김정용, 김윤중, 모상준교무
* 참석자 : 박광전교무외 4명
* 三宅歲雄은 일본 金光教 泉尾教會 教主
* 문동현 중앙교의회의장, 김인철교무

년대표로 국내종교청년대표 일행과 같이 도일하여 金光會, 少道會, 一燈園 등 종교단체를 방문하고 17일만에 귀국하였다.

원기72년(1987) 8월 한·일종교인협의회가 주최한 「한·일종교청년회의」가 서울 원불교회관에서 개최되어 上田惠良단장을 비롯한 일본종교 청년단원 15명이 참석하였고, 아울러 중앙총부도 방문하였다.

한편 원기58년(1973)부터 원광대와 일본 경도불교대학이 번갈아 주최하는 한·일불교학술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어 학술적 차원에서의 사상교류도 이미 체계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끝으로 국제종교기구를 주축으로 한 국제종교활동을 통해 종교연합운동의 추진단계에 대한 계획을 전팔근교무(교정원 부원장겸 국제부장)는 실무자로서 시안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U.R. 운동의 추진단계(시안)〉

단체 / 내용	제 1단계	전환기	제 2단계	제 3단계
기 간	1970~1985	1986~1990	1991~1995	1996~1997
추진요목	U.R취지 확산기	U.R공감대 형성기	U.R공감대 적용기	U.R국제기구조직기
추진지역	국 외	국외→국내전환기	국 내	국내외
추진내용	1. 국제기구가입 및 회의 참석(W.C.R.P, A.C.R.P, W.F.B) 2. U.R 취지문 및 선언문 배부 3. 각국종교지도자와 유대강화 4. 종법사 U.R에 관한 취지인지 및 메세지 송부 및 배부 5. 타종교회의 및 종교학술대회참석. 세계종교자학술대회(푸에도리코), 동양학회(일본), 국제재불교학회(미국), 마하보디회(인도).	1. 국제대회참석 및 외국인초청(각국 종교지도자, 학자, 신도회 임원) 2. A.C.R.P임원 총부초청및 중공종교실행회회원 불교대표 파견 3. 제15, 16차 W.F.B 대회참석(네팔) 4. W.F.B.Y(세계 불교청년회가입) 및 지부절차 5. 제5차 W.C.R.P 및 제4차 A.C.R.P 참석 6. U.R 한국추진회의 및 발원 대법회 개최 7. 각국 Sangharaja (승왕) 및 힌두교. 시크. 천주교. 회랍. 정교. 마호멧교 최고성직자에 종법사 메세지 발송 및 종법사 특사 파견	1. 국내종교지도자 및 외국종교지도자의 U.R구성에 관한 세미나 개최 2. 계층별 국제대회 유치주관 및각국 종교지도자 초청 3. 국제불교학세미나, 국제불교의료인 세미나, 국제불교청소년 지도자 세미나. 종립불교대학총학장회의. 불교 실업인회의주관및 타종교인들 동시초청. 의견교환 및 U.R추진임원확대회의 4. 미국카멜원불교대학주최 각계지도자(과학, 정치, 법률, 인권, 의학, 군사학, 노동)들의 U.R평화운동에 관한 주제심포지움 개최(소태산 대종사 탄생	1. 각계층별U.R추진인원 합동회의(미국) 2. U.R창립대회개최 및 국제기구 사무국 설치 3. UN에 U.R평화사절단 파견 4. 세계공화불입한 U.R 국제발원대법회 개최(제주국제훈련원) 5. 영산성지에 U.R평화탑 준공 및 국제법회 개최 6. U.R의료봉사단 인도. 방글라데시, 태국 파견

* 6월 19일 W.C.R.P 일본 위원회 대표를 38명이 6월 24일에는 일본재가 불교단체인 立正佼成會 회원 107명과 일본신종교 전국연합체인 신일본 종교연합회 회원 11명이 방문하였다.

* 1986년 8월 6일字 원불교신보

		8. 태국부미몰국왕 탄신 국제불교법회 및 세미나 대표단 파견 및 종법사 메세지 발송 9. U.R 각국추진위원회 접견	100주년 기념) 5. 전한국 U.R추진위원회 총회 개최 6. 각지역(아시아, 미주. 구라파) U.R추진협원회의 7. 각 국제세미나 심포지움 관계 논문집 출판 8. U.R추진기관지(U.R Forum) 발행 각국에 배부 9. 각국종교지도자,대통령 및 수상에게U.R 평화사절단파견	7. U.R 의료봉사단 아프리카파견 8. U.R 평화탑 및 법신불탑(카멜) 준공 및 전미국교도법회 개최

10. 院 議 會

원의회가 교정원의 의결기구로 정식 발족된 것은 원기34년(1949) 원불교내규를 제정한 때로 추측된다. 당시의 내규에는 원의회의 의사내용으로 ① 교세발전에 대한 연구안 심의 ② 대중화합에 대한 방법논의 ③ 직원성적에 대한 보고와 사정 ④ 직무진행에 관한 보고와 사정 ⑤ 기타 필요한 의을 들고 있다. 이런점으로 볼 때 『불법연구회규약』(원기27년)의 **圓議會**와는 기능이 다름을 알 수 있으며 **圓議會**는 그 성격과 기능으로 볼 때 현행의 중앙교의회 중앙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로 여겨진다.

이처럼 원기34년(1949)에 발족된 원의회가 의사를 진행해 왔다면 당연히 그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데 원기38년(1953) 7월 11일의 제1회 원의회회의록 이전의 것은 전하여지지 않고 있다. 6·25동란에 의해 사실상 원의회가 잠정적으로 개최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긴 하나 당시 의장은 박광전교무로 전해지고 있다.

그후 원의회는 교단 대소사의 의결을 맡아 교정을 운영해 오다가 원기44년(1959)에 이르러 입법위원회 경제위원회의 분과를 재정, 법제의 분과로 변경운영하였으며 연 6회의 정기원의회를 계속하여 운영해오다가 원기52년(1967)부터는 연 2회(3월, 9월)의 정기원의회로 줄이고 교정원장과 각 부장이 중심이 되는 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의안처리의 신속을 기하였다.

원기62년(1977)에는 원의회 구성을 축소하고 상임위원회를 없앴으며 매년 4월과 11월의 정기원의회 함께 임시원의회를 활성하였으며 다시 원기67년(1982)부터는 상임위원회를 부활 운영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천과정에서 원의회의 의사내용도 수차의 변화를 거쳤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의회 의사내용의 변천〉

• 원기34년(1949) 원불교내규

① 교세발전에 대한 연구안 심의

② 대중화합에 대한 방법논의

③ 직원성적에 대한 보고와 사정

④ 직무진행에 대한 보고와 사정

⑤ 기타 필요한 의건

• 원기44년(1959) 교정원조직법(교규 제1호)

의결사항 별도조항으로 규정치 않음.

• 원기52년(1967) 교정원조직법(교규 제18호)

① 3급, 4급 교역자 인사 임면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재단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교화, 법제, 재정, 장학, 요양에 관한 중요사항

⑤ 지부, 지소 신설, 승격, 이치 등에 관한 사항

⑥ 기관단체의 신설, 승격, 폐합, 분치 등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원기62년(1977) 교정원조직법 (교규 제45호)

① 3급, 4급 교역자 인사 임면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재단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교화, 법제, 재정, 장학, 요양에 관한 중요사항

⑤ 교당, 선교소, 기관, 단체의 신설, 승격, 폐합 분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원기67년(1982) 교정원조직법(교규 제60호)

① 3급, 4급 교역자 인사 임면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법인과 각 사업회에 관한 중요사항

④ 교화, 법제, 재정, 장학, 요양에 관한 중요사항

⑤ 교당, 선교소, 기관, 단체의 신설, 승격, 폐합 분치 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역대의장〉

직 책	법 명(호적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의 장	朴 光 田(吉眞)	1915. 3. 23	35. 4~36. 3	
〃	金 大 擧(榮瀚)	1914. 3. 16	38. 4~44. 3	초 대
〃	李 完 喆(載心)	1897. 3. 27	44. 4~47. 2	
〃	朴 將 植(天植)	1911. 1.	47. 4~56. 3	
〃	李 雲 捲(雲行)	1914. 5. 3	56. 4~58. 2	
〃	金 勤 修(益洙)	1922. 6. 9	58. 3~67. 10	
〃	金 允 中(還烈)	1927. 12. 7	67. 11. 6~	

〈院議會訣議錄〉

제1회 (정기) 원기38년(1953) 7월11일 종법원 회의실

1) 교무부에서 총부구내 유년회를 맡아 보도록 하다.
2) 내규 제8장 4절 제37조에 의해 9절 초순부터 정기 문서검사를 각 지부와 기관을 순찰하기로 하고 이공주·서공남·김영신·이운권·정광훈 등 5인 검사원을 선정하다.
3) 교전인쇄의 추진에 있어 비용은 각 교도의 선금수입으로 우선 착수하고 전무주력자는 교무부에서 위촉키로 하다.
4) 각처 교도의 소의성적은 중요물품, 현금, 유지의연금 등만을 문서에 기입하고 사소한 내용은 교무가 기입하였다가 연도말에 시상하고 원문서에는 기입치 않기로 하다.
5) 인사사항에 있어 광주지부에는 송원철·이용진교무를 파견하고 임선양교무는 총부로 오도록 결의하고 덕용지소 교무로 임명한 정복천은 덕용의 사정상 주재가 어려워 적당한 다른 직장을 찾아주기로 하고 그는 양원장에 일임하다.
6) 예복통일에 있어 신정예법에 따라 학복을 입고 전 예복은 입지 말 것이며 예식시에는 학복위에 남자, 상장시에는 상주는 가능한 한 학복착용, 예식부에서는 공용학복을 몇벌 준비하여 독경원이 입기로 하다. 단, 학복색은 백색, 흑색, 회색의 3색으로 정하다.
7) 예회순 개정과 불전비품 통일의 건(결)
8) 회의전후의 주의사항에 있어 회의전에는 당부에서 토의 안건을 미리 수집하여 회람하도록 할 것이며 회의후에는 결의안을 정식 공고하기로 하다.
   ***12 : 50 휴회. 오후2시 속회.**
9) 인사건에 있어 • 정읍지부 이성신교무의 2개월 휴양기에 전주 박진오교무가 출장하기로 하고 감찰원 이공주교무가 순찰차 출장키로 하다. • 서울지부 전이창교무 1~2개월 요양에 주력하도록 하고 정광훈에게 그 사유를 통지키로 하다. • 서울보화원장 조일관교무의 인사이동에 따라 이수오교무를 당분간 원장서리로 결정하다. • 수계지부 고현종교무는 도양지부로 조만식교무는 영산지부로 각각 이동임명하다.
10) 입법위원·경제위원선정

입법위원(9인) 이공주, 김대거·서공남·김영신·박광전·이완철·이운권·박장식·조전권.
경제위원(9인) 김대거, 이공주·조희석·조갑종·조전권·송혜환·박광전·박장식·이운권

11) 사령장 발부번호는 전무출신임원이나 재가임원이나 총망라하여 그 번호를 달기로 하다.
12) 지부장·주무회의 개최로 청년회의시 1차동의한 후 시행키로 하다.
13) 정미소 수리비 2만원은 부득이 상무기관에서 담당키로 하다.
14) 상주선원 운영예산은 서류회의로 결의서 받기로 하고 임원 4인분 비용 75,000원 지불청구가 있었다.
15) 공사비생 기숙에 있어 반공비생만 회중에서 수용하고 사비생은 부득이 각자 해결토록 하다.
16) 사명당 동상 헌금은 각 지방에 통지하여 수집되는대로 헌금키로하다.
17) 정익균의 야학입학건은 당무기관에 일임하다.
18) 이리보육원 일요예회는 철저시행하고 월 2회 총부에서 정식출장키로 하다(단 7월 12일예회는 이공주가 출장키로).
19) 각 지방 순교를 강화키로하다.
20) 지부 지소 인가증을 제2대를 맞이 일제히 발부키로 하다(설립일자는 종전대로. 발부일자는 발령일로). 오후7시 폐회.

제1회 (임시) 원기38년(1953) 7월 27일 종법원 회의실

1) 부산교도들이 제안한 부산양노당 시설은 부산에 출장중인 이병은, 박동진 교무가 돌아온 후 상의키로 하다.
2) 서울 정각사, 용광사 건물의 불하는 적극추진하기로 하고 비용은 2만원 정도로 예산잡아 재무당국에 일임하다.
3) 서울보화원장 조일관의 전임에 따라 당분간 정광훈이 책임을 맡고 후임자는 서울지부 책임자로 결정하다.
4) 정읍지부 이성신의 치병에 따라 8월 2일 예회는 김영신·서공남 중 한사람이 출장키로 하고 후임에 이리보육원의 정성숙이 추천되어 보육원 책임자와 타합후 결정키로 하다.
5) 소소한 일은 원의회 소집이 곤란하니 상무기관에서 처리하기로 하다.

제2회 (임시) 원기38년(1953) 8월 13일 종법원 회의실

1) 정각사 확보위원으로 황정신행·성의철·박장식·송혜환·정광훈의 5인 선정하고 비용변출은 지가증권을 찾아 사용키로 하다.
2) 진단소 책임자 건은 송혜환에게 일임하다.
3) 총부구내에서도 예전처럼 불은미를 내도록 교무부에서 재독려키로 하다.
4) 산동 백우암을 수양원으로 정하여 총부 직속기관으로 하되 경제적인 부담과 임시관리는 요양원에서 하기로 하고 후원은 남원지부에서 하기로 하다.

제2회 (정기) 원기38년(1953) 9월 10일 종법원 회의실

1) 교무선 일자를 원기39년(1954) 1월 5일로부터 2월 5일까지 1개월로 정하고 교재는 교무부에 준비하도록 일임하며 이리선원도 합하되 후일 형편에따라 하기로 하다.

2) 이리 상주선원 명칭을 고등선원이라 하되 현재는 초등과를 교양중이라 하기로 하다.
3) 교무부와 각 기관과의 연락을 긴밀히하여 상호인식이 화하도록 하고 누락이 없도록 하기로 하다.
4) 인사사무의 결정은 양원이 합의하여 교헌과 법규에 따라 행하되 인사배정기초만은 감찰원에서 하기로 하다.
5) 정읍교무는 우선 김창준교무에게 출장하도록 부탁하고 김제교무는 감사부에서 일차 출장하기로 하다.
6) 서울 정각사 확보를 위하여 박장식을 서울에 파견키로 하고 비용은 증권을 찾아 사용하기로 하다.
7) 총부경비대책으로 지가증권을 찾아 임시 사용하기로 하다.
8) 알봉 밤나무 벌채는 집가의 것만 두고 모두 쳐버리기로 하다.
9) 산업부 복숭아 나무 정리는 당부에서 적당히 보식키로 하다.
10) 전무출신 열반식의 법소앞에 표석을 세우기로 하다.
11) 선원 유지대책으로 지가증권을 찾아 분배할때 전 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전액 지불하기로 하다.
12) 원대도서관장으로 김정용을 결정하다.
13) 선원 교수보강으로 이운권을 요청한 바 교무부에서 따르기로 하다.
14) 경제위원회를 이사회로 개칭하고 보원하자는 의견은 교의회에 상정키로 하다
15) 문서검사는 긴급한 시일내에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감찰원장이 부산에서 돌아온 후 하기로하다.
16) 요양원 환자취급은 당원의 심사위원회 공의대로만 시행하기로 하다.
17) 삼창공사의 요양원 자산 환불은 이사회에 일임하다.
18) 사유권 정미소의 재단법인 편입에 관한 건은 이사회에 일임하다.

제3회 (정기) 원기38년(1953) 11월 20일 종법원 회의실

1) 이리보육원 관리에 있어 원장실을 따로 두어 상무케하고 나머지는 각 직장별로 실무에 임하기로 하되 고아원에 대한 법규를 실무측에서 초안하여 입법위원회의 통과를 보기로 하다.
2) 정읍교무 보임에 정성숙교무를 결정하다.
3) 군산 원광고아원은 원래 총부 지시없이 자의로 경영했으니 빌려간 재단법인 원광의 명칭을 빼고 지부장 주무를 총부로 오게하여 상의하되 불가능하면 직접 도청에 공문으로 적의 처결키로 하다.
4) 서울의 박장식으로부터 온 지가증권 요청에 정진호교무의 부송하겠다는 답이 있어 좌중 만족하다.

제4회 (정기) 원기38년(1953) 12월 22일 종법원 회의실

1) 교무선을 대비한 선방수리와 연료회비 비용 3만원 상무기관에서 맡아하고 조전권이 책임 맡다.
2) 양로원규약 심의 만장일치로 통과하다.
3) 양로원인사는 교정원장과 인사위원에 일임하다.

제3회 (임시) 원기39년(1954) 3월 22일 세탁부방

1) 본교 재단문서의 통일을 위해 월 1회의 정기이사회를 매월 1일 오후 2시에 개최키로하다.
2)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공비생은 각 지방에서 분담하고 총부임원 10인의 비용금은 각 기관에서 부담하며 식사는 매식하기로 하다.

3) 교의회 개최시 각 지부장 주무·교무중 1인만 소집하고 의회비용은 6만원정도 책정하여 재무부장에 일임하다.
4) 영광지부장으로 조갑종을 정하되 교의회 후에 부임토록하다.
5) 성업봉찬회에서 고등학교 신축에 10만원 보조키로 하다.
6) 대학이동에 따라 총부-대학교환대 교섭기로 하다.

제5회 (정기) 원기39년(1954) 5월 17일 여선원

1) 기관지 속간 사무를 취급할 주체구성까지 당분간 이리 동산선원의 이운권·송혜만이 계속 담당하고 교무부는 협조와 함께 원고의 최종감정 담당키로 하다.
2) 아직 미정된 금년도 기관 및 지방임원의 인사는 양원장에 일임하다.
3) 6·25사변으로 폐지되었던 춘천·중길지소의 수복대책으로 춘천지소는 서울지부에서 출장 실황파악 후 대처하고 중길지소는 당지 형편상 당분간 폐지키로 하다.
4) 순교감진을 강화하여 총지부간 사무연락과 교화행정에 주력하기로 하다.

제4회 (임시) 원기39년(1954) 6월 12일 종법원 회의실

1) 삼창공사 운영대책은 재무부의 실적조사 후에 재출키로하고 정광훈 감사부장이 조사 동행키로 하다.
2) 경제대책은 당무처의 최선 노력에 일임하다.
3) 서울 화해 신태인 교무인사는 양원장에 일임하고 김근수 예감보는 1개월간 지방 정양키로하다.

제5회 (임시) 원기39년(1954) 6월 24일 종법원 회의실

1) 삼창공사 운영금 대책은 교무연합회 결의대로 토지보상금 일부를 대출 집행하고 문서는 실적조사서를 바탕으로 가급적 속히 정비키로하다.
2) 인사건으로 익산지부교무 조전권을 총부 순교감으로 이성신을 후임으로 정하고 서울지부교무 전이창의 사직원은 감찰원장 상경후 적의 처리키로 일임하였으며 목포지소의 교무요청에 대해 영산지부의 조만식교무 내정하고 영산지부는 적의 선처키로하다. 광주지부 교무협조는 교감 유허일 서울강습후 당분간 파견 주재케하고 부산지방 사정에 따라 장적조는 소환키로하다.
3) 감사·사서부장 보선은 미결처리하고 보육원건은 기록미상

제6회 (정기) 원기39년(1954) 7월10일 종법원 회의실

1) 감찰·사서부장 보선은 정수위단회에 회부하고 서울지부 전이창은 이완철이 상경 책임 선처키로하다.
2) 전무출신 수속법을 철저히 마련하여 취급하기로 하다.
3) 문서검사의 건은 감사부장 후임 확정까지 유보키로 하다.
4) 이리보육원의 건은 관계책임자에게 일임키로 하다.

제6회 (임시) 원기39년(1954) 9월 2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보화원 대책의 건으로 현 원장 조일관씨를 교체하고 서신을 발하기로 하다.

2) 동선 결제 예비타합의 건으로 12월부터 1월까지 약 2개월간
3) 경남지부 건물 방매의 건으로 전 교당을 방매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적산건물을 완전불하 전환키 위한 승인요구를 지부에 일임하다.

제7회 (임시) 원기40년(1955) 8월 2일 종법원 회의실

1) 후송계 조직의 건으로 종법사의 취지와 조직요령 설명으로 이기회에 조직키로 하다.
2) 정미소가옥 후면 수리의 건은 본래의 계약대로 관리인과 타합 수리하라고 조회석 재무부장에게 일임하다.
3) 대각전 옥상수리의 건은 시급대책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서무부장에게 일임 설계와 경비예산을 하여 후일에 보고하여 조속 추진하기로 하다.
4) 교무강습의 건은 故 李靑春교무 49재에 회집할 지방교무와 연합토의 하여 결의하기로하다.
5) 서울 정각사 불하의 건은 전에 서울지부 불하의 건이 삼백만환에 불하 낙찰의 회보가 있었다. 이어 정각사 불하의 건은 정각사 불하대책비 삼십만환을 분담 협조하기로 하고 서대인씨께서 임시 책임 수금하여 당시 책임자 조일관씨에게 통지하여 소환 지불키로 하다.
6) 삼창공사의 건은 많은 논의가 있은 후 시급 대처할 것과 해결방책으로 먼저 윤씨 세가금액을 반환한다음 삼창공사 현 책임자에게 최후 통첩을 내어 해결 하기로 하다.
7) 총부경비 대책의 건은 재무부장 조회석씨의 그간의 경과보고가 있은바 송혜환씨가 별대안이 없으므로 故 이청춘교무종재시에 교무와 연합하여 토의키로 하여
8) 문서 검사의 건은 총부에서 일자를 정하여 총부내 각 기관의 문서검사를 실시하기로 가결하다.
9) 인사보임에 관한 건은 金泰守씨에 대하여 논의된 바 교정원장과 송혜환씨에게 일임하다.
10) 영산방언에 관한 건은 종법사께서 이 공사는 우리의 근본의 중대한 공사이니 공문으로나 원광지를 통하여 지방에 통첩 주지시켜 합심 심고케하고 동란이후 부패된 언답에 대하여서 복구에 노력하고 도당국으로부터 천만환의 협조를 얻게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고 공사 추진 실행방책으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고문은 공사장에 교대로 주재하기로 하다. 폐회. 익일 12 : 40

제8회 (임시) 원기40년(1955) 11월 27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 정각사 불하의 건은 전번에 지가증권을 쓰자고 결의하였으나 정부방침에 의해 대불할 수 없다는 소식이 있으니 증권으로 처분하든지 은행에 저당을 하든지 하여 불하 받는데 만전을 기하자고 하자 이공주의 발의로 박장식씨가 대구에 출장가시니 거기서 알아보아서 할 수 없다면 박은섭씨께 알아보기로 가결하다.
2) 대구지소 담보 기채 결의의 건은 대구지소 요인 고정식씨로부터 박장식에게 서신을 보내 지소 교당용 가옥을 매입하였는데 명의를 재단 법인으로 이전하고 이사회 명의로 은행에서 2백만환을 기채하여 주면 대구지방 요인들이 반제하겠다는 사연에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재단이사인 박장식을 파견키로하다. 폐회 : 17 : 00

제9회 (임시) 원기41년(1956) 2월 2일 종법원회의실

1) 정각사 대지 불하의 건은 위임받은 위원이 있으니 대표위원과 실천위원을 선출하여 실무를 수행케하다. 대구은행 기채 건은 박장식 위원을 파견키로 하다.

2) 후송계 조직에 관한 건은 조직과 사업범위를 확정하는 규약을 작성하고 책임위원을 선임하여 추진키로 하다.
3) 여자 고등학교 발족의 건은 원광고등학교를 분교하느냐 또는 원광대학부속학교로 하느냐에 논의한 결과 이 건은 후일 한계를 정하기로 하고 우선 추진위원회를 기성위원회로 개칭발족하자하고 당분간 학술 강연회 인가 신청을 하여 학생 모집광고를 하기위하여 책임위원을 선거하다. 학교인사 문제는 교정원장, 대학장, 기성위원장에게 위임하다.
4) 중앙선원 발족에 관한 건은 교학대 4년과 동산·영산 선원에서 3년간 수선한 후 최종 1년은 중앙선원에 입선하기로 하다. 발족에 대한 책임 위원을 선정하다.
공민학교 재단으로서 여자 고등학원의 인가를 신청하는데 전용하여 발족하고 여자고등학교의 재단이 확립된 후에는 공민학교에 반환하여 기숙사는 당분간 원광대 기숙사에 병합하기로 가결하다.

제10회 (임시) 원기41년(1956) 2월 18일 종법원 회의실

1) 여자고등학교 직원 인사에 관한 건은 정읍교무 정성숙을 전임케하고 본인의 사정과 지방형편 등을 고려 정식 공문후에 임명키로 하다.
2) 도양 고등공민학교장 임명에 관한 건은 후일 논의로 도양교무 서세인씨가 발령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기로 하다.
3) 문교부장관 기채승인의 건은 정각사 대지불하 소요 금액중 2백만환을 개채하는 문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으로 이병은씨를 파견하여 추진케하고 시급한 것은 송혜환씨가 담당하고 연차금은 서울 보화원에서 전담키로 하다.
4) 보화당 약방 대책에 관한 건은 약방을 진흥 시키기 위해 이병은씨를 3년간 파견 근무케하고 3년 후에 중앙선원에 입선시켜 훈련을 받도록 하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의를 시행케 하며 직원연보 작성하여 참고하고 공표하며 전력자나 재임자의 사기 고취를 위해 종법사 들으시고 그에 대한 규약을 작성하여 원의회에 의결을 거쳐 시행하라 하시다. 폐회 12 : 00

제11회 (임시) 원기41년(1956) 3월 16일 종법원 회의실

1) 보화당 약방 운영위원회 구성의 건은 보화당 출신 경력자로 구성하여 운영에 대한 실지적인 면을 타개해 가며 총부 및 각 기관에서는 융자와 유능한 인재도 등용하자고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위원을 선정하다.
2) 원광대학 교학대 공비생 사정에 관한 건은 위원을 선정하여 일임케 하다.
3) 인사 임면에 관한 건 • 정읍교무 정성숙씨의 후임으로 이재경씨를 임명하여 총회시까지 유임케 하다. • 송인태씨는 교학대 공비생이었으나 일신상의 형편 참조하여 사정위원회에서 이를 취소하다. • 내감원 유현일씨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공석중이던 감원석이 유현일씨의 재임으로 메우게 되었다.
4) 영산 재방언공사 추진에 대한 경과 보고의 건은 감찰원장 이공주의 보고로 영산 재방언공사는 거교적으로 총동원하여 인근 교당과 교도는 육신으로 원방 교당과 교도는 인부 몇명분을 자담하여 공사를 추진하자고 하였고 3월 20일경에 기공식이 있으니 총부 간부급에서도 가서 격려 감독케 하자고 결의하다.
5) 원광대학 기숙사에 관한 건은 성정철씨의 보고를 청취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당무자에게 일임하기

로 하다. 폐회 21 : 00

제12회 (임시) 원기41년(1956) 4월 1일 총부 여사무실

1) 제4회 정기 중앙교의회는 지상 결의로 대할 것 • 교헌 개정안의 제안은 보류하여 차기년도에 제안할 것 • 의원의 임기는 만기가 되었으므로 개선을 하되 재임키로 할 것 • 인사 결산, 예산안 등은 수위단회의 결의로써 지상 결의에 회부토록 할 것
2) 원광여자 고등학원에 관한 건은 교감 정성숙. 서무주임 양태설로 하고 정성숙씨 전임의 후임으로는 이재경씨를 임명하고 원광고등공민학교장으로는 현 교감 양태설씨를 승급 발령하기로 하고 본 인사는 후일 수위단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원기4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방법 토의의 건은 김대거 교정원장이 본 건은 40년도 결산안을 종합한 후 참고하여 상무기관에 일임 작성케 하다.
4) 농지증권 정리에 관한 건은 서울 이천륜씨의 건을 법원을 통하여 알아본 바 3.8이북의 미수복지구의 농지분이라도 찾을 수 있다 하여 정리위원을 선정하여 농지 증권을 차제에 정리키로 하다.

제13회 (임시) 원기41년(1956) 9월 1일 종법원 회의실

1) 농촌경제의 곤란한 점을 말하였으나 예정대로 교무강습을 9월 26일부터 10월 20일(25일간)까지로 정하고 강사는 교무일동 소요경비는 백미 1말반(2700환 두당 1800) 정맥 1말반(1,350환, 두당900)으로 하고 기타 연료대 600환, 찬대 500환, 잡비 400환 슴 5,550환으로 결정하다.
2) 양노원 운영의 어려운 점의 경과보고를 듣고 양노원 직원에 박재봉씨를 교감으로 임명하다.
   • 양노원 직원채용에는 필히 총부의 결의를 얻어서 할 것 • 원훈 작성을 요청하다.

제7회 (정기) 원기42년(1957) 3월 21일 금강원(여사무실)

1) 4월대회 행사 ① 참가인원 5천~6천명으로 예상하다. ② 강연대회 시간에 있어서 지방에서 어려운 가운데 노력해온 성의로 인해서 시간을 줄이거나 인원을 제한 하지 않기로 하다. ③ 대회 축하 경연대회 및 예술제 초빙 개최의 건은 의원간의 의견이 분분하여 추후 결정키로 하다. ④ 대회장 설치에 있어서 강연대회는 성음관계상 대각전으로 하고 이외의 행사는 야외식장으로 결정하다. ⑤ 원로 회갑식은 교의회 회원들과 동석하며 회갑식에 여흥을 겸하고 간략히 하기로 하다.
2) ① 육영비는 예산내에서 하고 대책위원회를 설치 위원을 선정하다. 위원은 양원장, 5부장, 원광대학장, 원광중고등학교장, 보화당이사, 양선원장. ② 사비생 자격 한계는 ㄱ) 원대에서 청강허가를 받은자는 소정의 규정을 마치면 청강수료증을 준다 ㄴ) 선원과 대학을 졸업한 전무출신은 자격만 있다면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이런 정신을 인식토록 하자 ㄷ) 본교 3기 전무출신자에 직계가족중 1인의 육영을 담당한다. 이는 대학과 중고등학교에서 공히 담당해 준다. ③ 육영담당은 보화당, 중앙총부, 원광대학 3곳에서 하고 구체적으로 大學에서는 사비생 등록금면제, 총부에서는 장학회를 조직 공자비생 장학금을 부담하는 사람에겐 성적으로 가산하여 주고 공자비생에 있어서도 특별히 성적에 가산한다. 종별로는 1. 사비장학생 2. 공자비장학생 3. 반공비생. 보화당에서 장학비 100만환 선원보조금 100만환, 후생비 100만환 슴 3백만환중 2백만환을 육영비로 쓰고, 100만환은 총부 경상비로 쓰기로 결정. ④ 육영 대상원에 대하여 교무 재 양성원 5명, 현 육영중인 사비생 10명 금년대상원 15명, 슴 30명을 금년도 사비 대상원으로 결정(장학회가 발전되면 30명 이상으로 증원한다).

제12회 (임시) 원기42년(1957) 4월 8일 송대(교정원장실)

1) 영광 토지대, 삼창공사 자산회계, 원광사회계, 성업봉찬회 회계 증권매도대금처리, 삼창과원처리, 김창준선생 장의비 처리의건은 응연히 금년 경비만 추가 시키고 문서 청산 위원을 정하여 대회후 해결키로 하다.

제13회 (임시) 원기42년(1957) 8월 1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 정각사 대지 ① 불하대금이 1개월에 3만환인가 1년에 3만환인가를 확실히 알고 만약 1년에 3만환이면 연기하기로 하자. ② 조일관씨가 불하대금을 책임지겠다면 그대로 놔두고 그렇지 못하면 서대인씨와 박은섭씨에게 인계토록 하고 조일관씨를 下裡토록 결정하다. 2) 대지대여는 현 정미소옆의 대지는 대여키로 하고 사무적인 것은 재무부에서 일임하기로 하다.

제14회 (임시) 원기42년(1957) 8월 20일 종법원 회의실

1) 교무강습은 동계 방학때 실시키로 하고 일반선은 교무강습에 바로 뒤이어 약1주간 合褌하도록 결정하다.
2) ① 익산지부 교무는 정윤재씨를 교무서리로 내정하다. ② 교무부장 후임은 정광훈씨 건강관계로 사퇴, 후임에 김근수씨를 교무부장 서리로 내정하다.
3) 대종경 편수는 산동지부에서 이공전, 박정훈 양씨가 종법사 모시고 하기로 하고 사무비는 종법사 하사비 백미 2가마를 가지고 진행하기로 하다.
4) 정각사는 현 대지에 군목학교를 건축한다는 것 등 이에 관계된 모든 사건수습은 이사진이 정부요인과 환담 해결 토록하고 우선 당면문제 해결은 조일관, 정고선, 박제봉씨께 일임토록 하다.
5) 장학생 추천은 오원묘씨가 여의대를 취학했으나 전과를 희망해 허락하고 다른 적임자를 선정 의사를 양성할 것 등은 장학생 사정위원회에 일임하도록 하다.

제15회 (임시) 원기42년(1957) 9월 2일 종법원 회의실

1) 정각사 대지 불하의 건은 ① 조갑종씨 상경 매각할 땅의 장소 등 경과를 보고받은 후 회의를 소집하다. ② 재무부에서 정각사 관계 서류 입수 실지 파악할 것
2) 예회 강사진 및 야회 개최의 건은 ① 예회강사는 회람을 하여 미리 양해를 얻은후 순번제로 할 것 ② 야회는 예회시 공포하고 차기 야회시부터 시작할 것
3) 방송 재실시에 관한 건은 교무부에서 각 기관 찬성여부를 회람시켜 다음회의 결정
4) 원대기숙사제를 폐지하고 재무부 방침대로 할 것

제16회 (임시) 원기42년(1957) 9월 11일 종법원 회의실

1) 총부 및 부근 기관에 전기가설할 것을 결의하고 전기회사 교섭과 기술관계 등을 기관에서 책임키로 하다. 사가실 설치는 총부에서 사가실 회의소집후 타합하여 책임할 것을 결의하다.
2) 정각사 불하의 건은 ① 재무부에서 미8군단에 우리대지임을 상세히 밝히고 대지 사용목적을 공안으로 발송할 것 ② 불하에 대한 대표위원을 정고선씨로 추대하다.
3) 결핵 요양소 건축의 건은 ① 건축은 청부로 하고 ② 대지는 현의원에 장소를 택해 할 것을 가결하다.

제17회 (임시) 원기42년(1957) 9월 30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 보화원에 관한 건은 ① 현 서울에 유임하고 있는 이사(이동진화, 조전권씨)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은 후 해결할 것 ② 운영은 조일관씨와 상면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제18회 (임시) 원기42년(1957) 10월 8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 보화원에 관한 건은 이사진 성원하에 결정 10월 20일내로 통고해 주기로 하다.

제19회 (임시) 원기42년(1957) 10월 14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보화원에 관한 건은 조일관씨와의 신용관계라든지 소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며 유지책을 확립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하여 담보 요청을 취소하다.
2) 영남지방 수해민 구제의 건은 총지부 기관을 망라해서 구제금품을 모집해서 원불교 명의로 전달할 것을 결의하고 금품을 11월 초순까지 수집하도록 하다.

제20회 (임시) 원기42년(1957) 11월 4일 종법원 회의실

1) 총부 유지대책의 건은 유지대책위원회 기구를 조직하여 지방에 통고하고 금액수합 성적을 봐 7마지기 혹은 그 이상의 매도를 가결하고 다음의 위원을 선정하다.
   당무위원 : 김대거 박광전 조갑종 박장식 성정철 조회석. 위원 : 정광훈 서대인 조전권 이운권 이동진화 김근수 김영신 이완철 이건춘 이병은 김서오 김인용. 실무는 재무부에서하되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통장을 제출할 것.
2) 수계농원에 관한 건은 수계농원을 정리하여 발전적 재산변경을 시키고 현재 축산은 현 계획중인 농원(산업부독립기관)으로 옮기고 대지에 있어서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여 수확정도로 두고 최종 결정은 종법사께 품의키로 하다.
3) 칠산 유건 선진의 양노원 입원의 건은 양노원 입원을 가결하고 사무적인 것은 양노원에 일임하기로 하다.

제23회 (임시) 원기42년(1957) 11월 26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정각사 대지증 발중에 대하여 국방부장관 명의의 증발증이 시달되었음을 정고선씨 전달, 지금 그 대지에 미군이 건축을 하고 있으나 본교에서 증발증 받았으니 뒷일은 걱정이 없다. 4개월후에 철거의 방법도 세워보기로 하다.
2) 동화의원 의사직명에 대하여 의사직명은 의감으로 하다.
3) 이보연월씨 양노원 입원에 대하여 명년총회시까지 양노원에 입원하기로 하다.

제24회 (임시) 원기43년(1958) 4월 2일 종법원 회의실

1) 정각사대지 불하에 대한 일부대지 정리의 건은 ① 보증금 및 앞으로의 불하액은 대지를 매각한 금액으로 할 것 ② 대지매각을 위하여 서울보화원으로 부터 정각사 대지 매각지 표시를 받은 후 적합하면 당부에서 처리할 대표를 보내기로 하다. ③ 처리대표가 지체되지 않도록 서울보화원에서 매수자와 매각장소 및 평수를 알리도록 통지할 것

제25회 (임시) 원기43년(1958) 4월 6일 종법원 회의실

1) 보화당 대지 매도의 건은 매각해서 처리하기로 보육원측에 일임하다.
2) 인사 임면에 관한 건은 정읍지부 보모 권구전씨 사임으로 오은성씨 결정하다.

제26회 (임시) 원기43년(1958) 7월 12일 중앙선원

1) 교무강습회 개최의 건은 ① 방법은 문답식으로 할 것(교감진에서 담당) ② 특강에 대하여는 미리 특강강사를 정할 것
2) 각 기관 임원 공부상황 월말보고에 관한 건은 ① 순교를(총부에서) 수시로 순회하여 총부와 기관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임원의 공부심을 일으켜 줄 것 ② 임원들에게 상시일기를 시켜 공부대조를 하게 하고 ③ 초입자 임원에게는 기관장이 지킬 것을 정해줘(계문 및 영과정을) 그에 대한 실행정도를 조사할 것 ④ 갑자기 공부상황 월말보고를 받는 것은 시기상조인 듯하니 ①, ②, ③을 잘 실행해 본후 할 것
3) 원명부 재고변경의 건은 교도수 증가에 의한 원명부 사무취급을 변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당부에 일임하다.
4) 총부유지 대책 및 전무출신 요양대책에 관한 건은 간단히 될 문제가 아니므로 기일을 두고 연구하고 특별히 관심을 갖기로 하다.

제27회 (임시) 원기43년(1958) 9월 3일 종법원 회의실

1) 교무 강습회 개최에 관한 건은 ① 강습일자 23일간으로 결정 : 원기43년(1958) 9월 30일 오후 결제 10월 22일 해제키로 함 ② 교감진을 감사로 한 문답식으로 채택함 ③ 시간배정 10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오전은 정전을 주로한 문답식 교리훈련 오후는 독경 및 특강. 밤에는 예전 및 재단문서 강습으로 정하고 18일부터 5일간은 교무타합해제 경노행사 소풍일자로 정하다 ④ 식비, 연료, 찬, 잡비의 4부분으로 나눠편성 ㄱ. 식비 1일 1인분을 1되(단가150)로 하여 23일분에 2말3되(총액3천4백50환)으로 정함 ㄴ. 연료. 일곱부엌(식당포함)에 1일 150속(束)예산 23일분 3천4백50속, 가격 10만3천5백환(단가30환)이므로 1일당 2,700환으로 정함 ㄷ.잡비 종이2연(싯가 만환) 원지1통(싯가 4,000환) 등사잉크 1통(싯가 2,400환), 강사대우비(9천원) 사진대2백환(개인부담)으로 하여 1일당 약 600환으로 함 ㄹ.찬대 7백환. 합계 7천4백50환으로 결정하다.
2) 각 지부·지소 지부장 및 주무 강습에 대하여 교무강습시일이 짧은 관계로 약하기로 하다.
3) 선원 및 원대 교학과 졸업반 참가에 대하여 각자의 의사를 따르기로 하다.

제28회 (임시) 원기43년(1958) 9월 9일 종법원 회의실

1) 수계농원 삼포재배에 관한 건은 삼장개발을 적극 찬성하고 종자재배를 위한 경비반출은 유축농원을 정리한 그 범위에서 사업비에 쓰도록 하고 유축 농원을 정리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에 미루기로 하다.

제29회 (임시) 원기43년(1958) 9월 22일 종법원 회의실

1) 세계 불교도대회 파견의 건은 ① 대표로 박광전씨를 파견할 것을 결정하고 태고사에 통고할 것 ② 본교도로서 서울 등지에서 옴저버로 참석할 희망이 있는 분을 알아보기로 하다.

2) 영광지부 봉불식 참석에 관한 건은 교무선후 성지참배를 겸하여 3일예정으로 봉불식까지 참석키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당부에 일임하다.

제30회 (임시) 원기43년(1958) 10월 19일 중앙선원

1) 만기된 재단이사 변경의 건은 조회석, 조갑종, 정광훈씨가 만기이사이었으나 투표로써 조회석, 정광훈씨가 재임되었고 이완철씨가 새로 피선 되었다.
원의회 의원을 1명증원 13명으로 함과 동시에 기부행위 11조를 변경하기로 하다.
2) 기관단위로 차금할 때는 총부는 각서를 제출할 것.
현재까지 기관은행기임 개인차금이 있는 기관은 재무부에 각서를 제출하고 앞으로도 재무부에는 반드시 각서를 배치할 것.

제31회 (임시) 원기43년(1958) 11월 11일 종법원 회의실

1) 제5차 세계 불교도 대회 대표파견 경비의 건은 ① 팜프렛 인쇄 경비 15만원 대금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책임하고 기관으로부터 모금하기로 함 ② 당부에서 지방으로부터 경비모금하는 것은 하지 않고 지방성의에 따라 하고 또 환송에 참석하는 것도 역시 자의에 맡길 것 ③ 당부에서 대표경비에 대해서는 힘껏 경비조달에 노력하고 조달부족시에는 원광대학에서 돌려쓰기로 함 ④ 대표환송회는 다음예회일 대각전에서 예회 및 환송회를 아울러 거행키로 하다.
2) 동화병원에 관한 건은 ① 병원 근본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보화당에서 인수하여 할 것에 대한 절충을 조갑종씨가 보화당 이사와 상의키로 하다 ② 의사문제에 대하여는 조갑종, 박장식 양씨가 의사와 절충 상의할 것.

제32회 (임시) 원기44년(1959) 1월 3일 여자기숙사

1) 원광여고인가 추진의 건은 ① 목표액은 1,000만원으로 정함 ② 회사 모집방법은 회사신청서를 사용키로 함 ③ 원광여자고등학교 기성회를 조직함. 회장 : 이공주. 부회장 : 박광전 조회석. 고문 : 중앙간부및 각 기관장. 위원 : 각 교무 지부장 지소장. 재정위원 : 서대인 정성숙. 선전위원 : 김영신 조전권 이성신 전이창 박은섭. 섭외위원 : 이건춘.
2) 수계농원에 관한 건은 ① 수계농원에 대하여는 수계농원 처리위원을 선출하여 일임키로 함 ② 수계농원 처리위원 교정원장 재무부장 조회석 박광전 조갑종 박장식 이운권.

제33회 (임시) 원기44년(1959) 1월 31일 종법원 회의실

1) 수계농원의 건은 논팔아서 빚을 갚기로 결의하고 운영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하다.
2) 염전매입에 대하여는 포기하기로 하다.

제34회 (임시) 원기44년(1957) 3월 21일 종법원 회의실

1) 4월대회 준비에 관한 건은 ① 교헌에 대하여 금번 총회는 교헌에 의하여 실시하고 교헌개정안은 대회에서 통과를 본후 시행키로 함 ② 대회비에 대하여 ㄱ. 대회 총경비 예산 1,515,000원중 이의 시상비에서 15만원, 식사비에서 10만원. 예비비에서 10만원을 삭감하여 1,165,500원을 대회 경비 예산액으로 결정하다 ㄴ. 반출은 보화당에서의 10만원 회사와 은행기채 40만원을 박광전, 조회석양씨

가 책임하고 총 50만원으로 긴급처에 쓰고 부족액은 외상으로 대회준비를 하기로 하고 결산은 대회 후 회의에서 하기로 하다 ③ 시상에 대하여 • 교화 공로상과 사업공로상은 지부상임으로 상장만 수여하고 특별공로상에 대해서만 상장과 상품을 수여키로 하다. • 지방단위로 시상제를 분할할 것은 연구 과제로 하다 ④ 식사에 대하여 종전대로 직영제를 취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무당국에 일임하기로 하다 ⑤ 종법사 회갑식에 대하여 내년에 회갑을 모시기로 하다 ⑥ 종법사 취임식에 대하여 略하기로 하다 ⑦ 총회기획 참모에 대하여 고문 박장식 박광전 조갑종 이운권 조회석. 참모 정광훈 김용성 이공전.

⑧ 총부 유지대책위 결산에 대하여 유지대책 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결산 보고를 조속히 받기로 하다.

⑨ 이홍과원에 대하여 과원책임자 이호춘씨를 총부에 출두케 하여 계획을 듣고 해결하기로 하다.

제35회 (임시) 원기44년(1959) 3월 25일 종법원 회의실

1) 총부내 O.E.C 재건주택 건축의 건은 ㄱ.6채에 대한 연분상환은 보화당에서 계속 책임키로 하다 ㄴ.주택터는 가능한 정문외를 택하며 총부의 범위를 넓히기로 하다 ㄷ.주택건축의 제반 진행은 박광전씨와 보화당 조회석씨께서 책임하기로 하다 2) 4월대회에 관계된 사항은 ① 축사에 대하여 中央 장관이나 국회의장 문교부장관 장택상씨 등에게 미리 작성한 축사를 허락받기로 결의 ② 식장에 대하여 영모전터에 설비하기로 하다 ③ 강연대회에 대하여 사전원고 심사하여 10명 정도로하고 몇 분의 법사를 정하여 1~2시간 법회를 본후 하기로 하다.

제36회 (임시) 원기44년(1959) 3월 28일 종법원 회의실

① 각 기관에서 20가마를 할당하여 영산에 차입해주되 가을쯤 하여 다시 찾아 성지사업기금으로 하여 미진사업에 쓸 것 ② 할당액은 배정하고 수금은 4월 10일내로 완료하고 사무는 기관 사서부에서 담당하며 모든 계약은 1개월로 하여 추진할 것을 영산에 통고키로 하다 ③ 성지사업을 자원하는 회사자가 있으면 기금을 모으기로 하다 2) 이홍과원에 대하여 당시 의결한 각서에 앞으로 2년 기간이 남았으므로 기한 및 제반사항은 각서에 의하여 하고 담당액만은 당무부와 조정키로 하다.

제1회 (정기) 원기44년(1959) 5월 14일 종법원 회의실

1) 원의회 각 분과 위원회 구성의 건은 교화, 법제, 재정, 요양, 육영의 5분과로 구성하다. 종전 장학을 담당하던 장학회는 육영부가 신설됨에 따라 해체되고 모든 사무를 육영부로 이관키로 하였으며 장학생 선발은 전체 원의회에서 선발키로 하다.

2) 원광여고 기지 설치건을 학교안대로 시립 병원후면 소재인 기지에 결정 추진함을 의결하다.

3) 보화당 일요일 영업 실시여부 ① 보화당 자체에서 적의히 하되 장날에 예회일이 해당될 때에는 영업을 볼 것 ② 야회를 실시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본교 정신을 고취시킬 것

4) 총부 경제대책의 건은 ① 유지담 경영권 현 유지담 9구지에 대한 영농비(약50만환)는 정부 대여미로 차용키로하다 ② 정미소 수리건은 수리하기로 하고 수리비 약 50만환은 정부대여미 차용키로 하다 ③ 산업과 분립 건은 현 장소로부터 분립하기로 하다 ④ 기숙사 분립 건은 재무부에서 직영하며 분립 운영하기로 하다. 기술문제, 경비는 당무부에 일임키로 하다 ⑤ 총부 유지건은 체신부로부터 2백환 기채 하기로 하다. 만약 기채가 안되면 재무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 해결 방책을 연구키

로 하다.

5) 동화병원 운영의 건은 ① 의사 채용은 ㄱ. 외과의사로 교체 ㄴ. 인건비는 총수입에 대한 할인제 ㄷ. 기구는 의사가 지참케 하다 ② 건축은 300백원 건축예산에 150만원 초과 액 충당은 X-레이과도 처분하기로 당무자 승락을 얻어 하기로하다 ③ 제일은행 부채는 2백만원 기체는 병원측에서 처리하기로 하다.
6) 하섬에 대하여는 부안읍사무소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은 사항은 산업과장 윤치성씨께 일임하기로 하다.
7) 황형일씨 감초처분은 보화당에서 4천근을 인수하여 늦어도 40일이내에 동화의원에 반제하되 병원에서는 오는 9월말일까지 현금 2백만환을 갚기로 하다.
8) 수계농원에 대하여서 농원인사는 당부에서 책임키로 하고 그곳 체제에 맞는 법규 제정을 하기로 하다. 농원 운영 중간보고를 받기로 하다.

제2회 (정기) 원기44년(1959) 7월 10일 중앙총부 회의실

1) 분과위원회 구성의 건은 인사분과와 사업분과는 요양분과 위원회를 개칭하고 박광전 이은석 이철행 3씨를 추가 선출하다.
2) 지부 생활제도 개선과 교무대우와 포교방식에 관한 건중 생활제반 개선은 ① 교당에서 살림할 것을 폐지하고 교무로 하여금 오로지 교화에 치중하게 하자 ② 교무대우는 기독교처럼 교무에게 생활을 줄 것 ③ 포교방식은 애경상간에 전력토록 할 것 등을 연구자료로서 제출한 본 건을 성문화하여 법제분과 위원회에서 법으로 제정토록 하기로 하다.

제3회 (정기) 원기44년(1959) 9월 10일 중앙총부 회의실

1) 남원 닉켈광 건은 보류하기로 하다.
2) 성지 복구사업 추진위 구성은 다음 교정위원회에 회부키로하고 보류하다.
3) 사무검사는 ① 명칭 일반사회의 통례를 준해 특정한 일부만인때는 검사라 하고 제반면을 통했을때는 감사라 하자 ② 교정·감찰양원이 합동하여 각부 소관 분야를 각기하되 그 주최는 총무부에서 하여 9월말내지 10월초에 총부와 각 기관에만 하기로 하다.
4) 추향 기념 행사의 건은 ① 11월 1일은 농촌에는 너무 맞지 않아 지장이 많으니 몇분의 대표를 정하여 일자변경과 탄신일과 열반일을 일반교도의 기념과는 별도 모시는데 대해서도 품의키로 하여 위원선정에 이공주 조전권 오종태 조갑종 윤정연 이공전 정광훈 7인이었다. ② 금년도 총부 추향일은 오전에 기념을 모시고 오후에는 대중이 같이 즐겨할 놀이를 갖기로 하고 그 방안은 당무부에 일임하기로 하다.
5) 동화병원에 관한 건은 수습위에서 곤란한 것은 마치고 이제 경영문제보다 인사에 관한 문제만 남았으니 사무당국에 일임하도록 하다.

제4회 (정기) 원기44년(1959) 11월 23일 중앙총부 회의실

1) 교무선에 관한 건은 12월 23일부터 익년 1월 21일까지로 하다. 경비와 시간배정은 당부에서 적의히 하기로 하며 참가범위는 제한치 말며 지방에 일반교도는 당부에서 사전에 지방별로 일정을 배정하여 총부에 혼잡을 피하도록 하다.

2) 원여고 신축에 관한 건은 ① 기초공사 및 기지정리에 대하여 기초공사는 계절관계상 다음으로 연기하고 기지방위상 농지매입을 하면 이곳을 가옥기지로 팔 수 있으면 현가의 배가 될터니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이철행 이건춘 정성숙 3씨가 현지를 조사하여 다시 논의키로 하고 건물방위는 이완철 박장식 박광전 정광훈 이운권 김정연 6인이 현지를 방문하기로 하다.
② 건축비 모금의 건은 특지가 만으로는 어렵고 하니 사서부장 육영부장 정성숙 이건춘 4人이 각 기관을 방문하여 회사를 받도록 하며 본교 신축기금 모금에 더욱 각오를 하기로 하다.
③ 인가 및 명칭의 건은 대학에나 고등공민학교에 지장이 없는 한 인가상 편의를 보아주기로하며 부득이 대학부속으로 하여 인가가 될 때는 명목상의 부속이지 이외다른 후원이란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하다.

제5회 (정기) 원기45년(1960) 3월 30일 중앙총부 회의실

1) 원기45년도 장학생 선발의 건은 ① 2,500만원 내에서 최대한 선발하도록 하고 경쟁자가 많으면 2,800만원정도까지라도 입찰을 하여 보기로 하고 사전에 이일을 알아 추진하기 위하여 시간여유가 없으니 재무부장과 교무부장 2인이 서무부장과 절충하여 전화로 연락하여 주기로 하다 ② 아직도 장학생 선발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개개인에 대한 신원을 우리 전원이 파악치 못하고 선발할 수 없으니 육영분과 위에서 선발하여 본회에 인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자 관계상 금년만은 분과위에 일임하도록 하다 ③ 금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장학생도 육영부에서 사무취급을 갖기로 하다.

제6회 (정기) 원기45년(1960) 5월 10일 중앙총부 회의실

1) 원의회 의원 구성하니 31명으로 의원을 구성하다. 인사분과 교화분과 법제분과 재정분과 육영분과 사업분과를 구성하다.
2) 원광여중고등학교 신축 공사의 건은 ① 금전출납, 결의서 관계안의 결의는 현재까지의 학교당국 시행대로 하되 동교 신축지도위원과 추진위원에게는 각각 서면보고키로 하다 ② 외무관계 사무는 재무부장과 상의하기로 하였으며 동시 재무부에서 외무담당자의 편의도 가급적 보기로 하다 ③ 전국적인 신축관계에 대하여는 혼란중에 있는 정국수습에 따라 다시 결의키로 보류하다.
3) 동화의원 책임지도 위원으로 박광전씨를 선출. 앞으로 당무자와의 상담대상이 되기로 하다.
4) 팔봉 농도원 매입의 건은 전북도청의 확실한 조치 결과와 문국장과의 관계가 원만히 될때 진행 및 방법문제를 재 토의키로 하다.

제7회 (정기) 원기45년(1960) 7월 11일 중앙총부 회의실

1) 학생회 연합회 정기총회 개최의 건은 당무 부서에 동의하며 이외 의결이 있으면 임시 말씀하여 주기로 하다.
2) 전무출신 요양 대책의 건은 요양규례를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분과위원회에 일임하다.
3) 동화의원 기채의 건은 기채할 것만 결의하고 상세한 것은 책임자가 동화의원측과 상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4) 교무강습 개최의 건은 당무기관에 일임하다.
5) 7·29 총선에 관한 건은 전무출신은 각자의 자의로 투표하며 교단적 특정인을 두지 말 것을 원칙으

로 하다.

6) 원의회의원 추가발표하니 장성진 이중정 송순봉이다.

제8회 (정기) 원기45년(1960) 9월 10일 중앙총부 회의실

1) 종법사 회갑 생신일 기념에 대하여 종법실의 명을 받들어 당일 총부에서도 일체 의식절차를 금한다는 내용으로 하례를 위한 내왕을 중지하여 달라는 공한을 다시 내도록 하고 총부나 각 기관이 갖는 의례는 이공전 이건춘 서대인 이병은 4인에 위임하기로 하다.
2) 신도내 석암지 매입의 건은 더욱 알아보고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성정철 조희석 조갑종 3인을 선정 위임하다.
3) 황등기지 교육기관 설치의 건은 황등기지에 대하여는 교단적 관련은 없이 개인자격으로써 관련을 두어 임대기간, 지형변경, 임대료 등에 대한 것은 임대차 계약이라도 하여 주기로 하고 이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에 일임하고 그 경위만을 보고키로 하다.
4) 국민주택 기지 변경의 건은 구미시가 정리로 동화씨댁과 이화진씨댁을 교환수리하기로 하다.
5) 동산선원 운영의 건은 당무자와 사무적으로 절충하여 해결짓기로 하다.
6) 동화병원 운영의 건은 인사문제는 인사분과위원과 당무자가 타합하여 해결짓기로 하고 자금 채용건은 지도 운영위원과 상의해 처리하기로 하다.
7) 총부 유지대책의 건은 당면문제보다 이것은 근본적인 정책문제에까지 논의를 해야할 것이므로 시일의 여유를 두어 구상하였다가 의논하기로하며, 오는 15일에 임시원의회를 소집하여 결의하기로 하다.

제1회 (임시) 원기44년(1959) 4월 17일 종법원 회의실

1) 인사분과위원회 구성의 건은 교정,감찰 양원장과 교무부장 사서부장 감사부장 이운권 박광전 조갑종 8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다.
2) 4월대회에 관하여 ① 총지부 기관에 공이 현저한 자에게만 시상할 것 ② 지방자체에 공이 있는 자는 금번 시책자 명단에만 보고하고 시상은 각 지방에서 하도록 하다 ③ 4월 대회 시상 관계 사정위원 김영신 조전권 오종태 이성신 성정철 김근수 서대인 김윤중씨를 선정하다.

제2회 (임시) 원기45년(1960) 9월 15일 중앙총부 회의실

1) 총부 유지대책의 건은 지방유세를 강화하여 교금을 강조하는데 전라지방은 이곳 총부와 순창교무회를 통해 연락하기로 하고 영남지방은 대구봉불식에 가시는 편을 순회에 겸하도록하여 총부실정을 충분히 인식시키어 1개월을 예정하고 당면문제를 해결해보아도 불가할 때에는 임시 교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의 받도록 하다.

제3회 (임시) 원기45년(1960) 10월 7일 중앙총부 회의실

1) 총무부장 인사타합의 건은 김윤중씨를 총무부장 직무대리로 하다.
2) 재단법인 기업체 운영의 건은 중대문제이므로 재정분과위원중에서 위원을 선정하기로 하다. 위원 조갑종 이운권 박광전 조희석 박장식 이은석 김윤중 이병은 8인을 선정하다.
3) 알봉묘지 월형정비의 건은 월형(月型)은 전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다.

제9회 (정기) 원기45년(1960) 11월 19일 중앙총부 회의실

1) 교무선 개최 건은 ① 개최일시 원기46년(1961)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② 참가범위 당부에 일임 ③ 강사진 교무당국에 일임 ④ 선비 식량포함 8천환정도 결정하다.
2) 동화병원 건물담보로 사채정리의 건은 동화병원건물 담보로 고리사채를 저리사채로 전환 청산할 것을 결정하고 사무적인 교섭관계는 당무자에게 일임하다.
3) 주택대여 신청에 대하여 대지 개인대여는 않기로 교무연합회에서 하기로 했으니 이 원칙에 따라 주택건립 대여를 불허하기로 결의하다.
4) 면의원 후보대상 천거에 관한 건은 전무출신은 외직을 가질 수 없으니 총무부장에 인식시키기로 하다. 만약 외직을 가질시는 공직을 사퇴토록 하다.
5) 원여고 신축기지에 관한 건은 45만환 대지 매입시 미불금은 누락이므로 그대로 지불키로 하다.
6) 전북일보사주 가입의 건은 이의없이 의결하다.
7) 해외 포교연구회 발족.
8) 이리 동방방직회사 합자의 건은 실정조사 후 재정분과위원회에서 결정 본회의에 보고키로하여 조사위원으로 김윤중 조갑종 이병은 성정철 박장식 정성덕씨 등을 선정하다.

제10회 (정기) 원기46년(1961) 4월 11일

1) 원기46년(1961) 개교 축하식 및 종법사 회갑식 거행에 관한 건은 오전에는 개교축하식과 회갑식을 겸해 하기로 하다. 오후에는 원대와 원광여상의 여흥프로로 하기로 하고 추진위원을 선임키로 하다. 위원 김윤중 이은석 이병은 서대인 성정철 정광훈 이공전 김근수 제씨를 선출하다.
2) 이홍과원에 관한 건은 본건은 교정 및 재정분과위의 결의와 상치되었지만 양경서씨의 일가 4인이 모으게 된 것이 당무측의 인사문제와 형편의 부득이한 바 있으며 이홍과원 운영상 부득이한 것이니 먼저 서약서를 재심하여 수정인 추키로 하다.

   서약문

   1. 15가마 납입기일과 稻租料
   2. 이에따른 일체차입금을 교중에서 책임을 짓지않는다.
   3. 과실생산시는 총부에서 특정인을 파견한다.
   4. 결의일도 4월 10일로 할 것 등을 결의하다.
3) 황등기지에 관한 건은 송세기씨와 각서를 받기로 하는데 1. 금년말까지 사용하고 금년말(12월말)에는 본교에서 여아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기로 하다 2. 경작 도조료는 현물 납품으로 할 것 이외 각항을 기해 당무부에서 받기로하다.
4) 재단이사장 인감 사용의 건은 재단이사장 인감사용은 후일에 책임성이 없는 것으로 청원보고 등의 사항은 이사장 권한에 위임키로 하다.
5) 기숙사생 취급에 관한 건은 각기 부득이한 사정은 다 있겠으나 종의 여하를 물론하고 공비은전을 받는자는 기풍과 정신지도상 합숙을 하여 일체 행동을 공동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호응할 수 없는 시는 휴학을 하더라도 개인 자취제를 엄금시킨다.

제11회 (정기) 원기46년(1961) 5월 10일 중앙총부 회의실

1) 원의회 분과위원 선출에 관한 건은 전형위원 3인을 선출하여 각 분과위원을 선정하여 발표키로 하

고 전형위원으로는 양원장, 각 부장 그리고 기획위원장 대리로 조갑종씨를 선출하였다.

2) 법은재단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건은 선출방법을 구두추천키로 하여 교정원장 사업부장 보화당이사의 직에 있는 분과 박장식씨 이동진화씨가 추천되어 종법사께 품의하여 재가를 얻기로 하다.
3) 연계소(連桂所) 직원에 관한 건은 종법사의 하명도 있으니 본회의에서 선출이 어려우니 종법사께서 지명해 주시도록 품의키로 하다.
4) 군종제도 추진은 국방부에서 군목제를 폐하고 범위를 넓혀 군종제를 시행함에 있어 본교에서 여하히 할 것인가 사무당국에 일임하다.
5) 원의회 성원에 관한 건은 위임 출석제 폐하기로 하다.

제12회 (임시) 원기46년(1961) 7월 10일 중앙총부 회의실

1) 교서간행에 관한 건은 대종경은 프린트해서 쓰고 정전은 수정후 간행하기로 하다.
2) 장학회 발전에 관한 건은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일임하다.
3) 서울보화원에 관한 건은 공주선생께서 주재하시고 실정을 잘 알고 있으니 일임하기로 하다.
4) 원광여상고 신축기지에 관한 건은 고선생댁 재건후 주택을 팔든지, 담보로 하여 개인접촉으로 융통함이 좋겠다고 결의하다.
5) 원광사 운영에 관한 건은 대금이 밀린 지방은 원광을 보내지 말고 강력한 재재를 취함이 좋다는 안으로 결의하다.
6) 축우대금 대부의 건은 대부하기로 하다.

제4회 (임시) 원기47년(1962) 2월 7일 종법원 회의실

1) 임시중앙교의회 개최 및 종법사 추대식에 관한 건은 ① 일정은 21일에 수위단회 개최, 22일 교정위원회 개최, 23일 오전에 중앙교의회 오후에 추대식 ② 식사는 무료로 한다 ③ 경비는 589,300환의 예산을 산출하다.

제14회 (정기) 원기47년(1962) 5월 28일 종법원 회의실

1) 원기47년도 원의회 의원 구성의 건은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그 명단을 간추려(교학대학, 선학원 졸업자 동등자격 인정자로써 2년이상 실무한 자로 현직에 처한 자)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은 각 위원장에게 일임하며 교무부주관 선전분과위원회는 교화분과위원회와 합하기로 하다.
2) 원기47년(1962)도 교무강습의 건은 교화분과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3) 육영재단 이사 감사 선출의 건은 이사 9인, 감사 2인을 선출하다.
4) 법은재단 운영위원 보선의 건은 박광전씨를 선정하다.
5) 원광사 운영의 건은 좀더 세밀한 계획과 내용을 숙고해 보고 사장은 조전권씨 송원철씨 두분을 개인 교섭하여 적의 결정하기로 하다.
6) 기본재산 등기명의인 결정의 건은 각 교당 관할 교무의 명의로써 하고 그밖에 소유량이라든지 제반에 법의 저촉이 없도록 재무부에서 연구하기로 하다.
7) 지방강습 강사 및 행사주례 위촉의 건은 지방끼리 서로 편의를 도모하도록 재 강조하기로하다.
8) 성가집 발행의 건은 교화분과위원회에 일임하다.
9) 서울 보화원에 관한 건은 이철행씨가 재무부장과 상경 처리하고 온뒤 보고하기로 하다.

제15회 (정기) 원기47년(1962) 7월 10일 총부 대각전

1) 동산선교소 명칭 변경을 동이리라 결의하다.
2) 장학회원 표창장 수여자 명의 결정을 특별과 통상으로 구분하고 수여자 명의는 종법사로 통일하기로 하다.
3) 구내 매점설치의 건은 설치하기로 하고 재무부에 일임키로 하다.
4) 생활제도 변경에 관한 건은 교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며 위원을 정하기로 하다(9人).

제16회 (정기) 원기47년(1962) 9월 10일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광사 사옥 이전에 관한 건은 옮기기로 하다.
2) 총부구내 건물 수축추진 연구위원회 구성의 건은 추진연구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박광전 박장식 김정용 송원철 김이현 제씨를 선정하고 사무연락은 박정훈씨가 담당키로 하다.
3) 원여고 50만원 기채의 건은 재정분과에 일임하기로 하다.

제19회 (정기) 원기48년(1963) 4월 15일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4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위원을 구성하다. 위원 조갑종 조희석 이운권 정광훈 이철행 김정용 정성숙.
2) 서울보화원에 관한 건은 예산편성위에 일임하기로 하다.
3) 원광사에 관한 건은 예산편성위에 일임하기로 하다.
4) 하섬에 관한 건은 교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제21회 (정기) 원기48년(1963) 7월 10일 중앙총부 대각전

1) 원의회 의원 구성의 건은 의원수는 그대로 두고 불참시 위임장을 꼭 내도록 하다.
2) 분과규정에 관한 건은 급한 사건은 교정원장 주관하에 간부회의를 소집 결의하도록 하다.
3) 교역자 강습시기에 관한 건은 당무부에서 지방실정을 참작하여 적기에 개최하기로 하다.
4) 식당건축에 관한 건은 건축위원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5) 수계농원 경상비에 관한 건은 수계농원 은산재단 이사회에 일임키로 하다.

제6회 (임시) 원기49년(1964) 2월 12일 중앙총부 회의실

1)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의 건은 지원자 전원을 인정하기로 하다.
2) 장학생 선발의 건은 2종장학생 11인중 9인을 투표에 의해 선발 3종 5종은 전원 선발하다.
3) 지부재산 전환 및 처리에 관한 건은 모든 재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며 반드시 재무부와 연락해서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로 하다.
4) 식당 건물에 관한 건은 원칙상 식당용으로 수리키로하고 그 자금조달은 건축위원에게 일임키로 하다.

제7회 (임시) 원기49년(1964) 4월 3일 중앙총부 대각전

1) 개교기념식은 지방별로 하기로 결의하다.

2) 회계년도는 2월말로 하고 3월 26일 중앙교의회 소집키로 하다.
3) 원기48년도 결산 보고와 원기49년도 예산 심의는 분과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하기로 결의하다.
4) 교보 발간은 총무부 예산내에서 지방과 기관 상대로 교보발간을 결의하다.
5) 동산선원 관리에 관한 건은 예산 심의위원들께서 선원의 형편을 참작하여 예산보조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하다.
6) 수도원 재산 명목 결정에 관한 건은 재무부에 일임하다.

제22회 (정기) 원기49년(1964) 9월 10일 교정원 회의실

1) 역경위원 승인의 건은 박광전의원을 가결하다.
2) 교보취급 조례를 원안대로 무수정 승인하다.
3) 개정 교정원법, 회의법, 선거법 심의는 9월 25일까지 개별심의하여 당부로 제출키로 하다.
4) 교무부 직원 증원 문제는 교정위원회에서 추가예산을 승인키로 하다.
5) 재무부 사무체재 수립은 조갑종 정광훈 이은석씨를 정리위원으로 정하고 위원장을 조갑종씨로 하여 사무처리를 하기로 하다.
6) 양로원 입원자 조처문제는 지방과 절충해서 시기의 여유를 둘 수 있다면 차차 방을 더 준비한 후 입원키로 하다.
7) 고아원 연합의 건은 연합 시일을 두고 연구해 보기로 하고 책임자들에 일임하기로 하다.

제8회 (임시) 원기49년(1964) 10월 4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광중고등학교 및 원여중 여상고교 학급증설은 학교복안대로 추진키로 인정하다.
2) 남자 중고등학교 서무주사 채용 승인을 결의하다.
3) 원대 동양 한의과대학 인수 문제는 학교당국의 복안대로 하기로 합의하다.

제9회 (임시) 원기49년(1964) 10월 28일 교정원 회의실

1) 故 응타원 유화윤옥선생 공부성적 정식 법마상전급이요 사업성적은 준일등 원성적 정2등에 소회사위로 가결 선언하다.
2) 교산사무체제 확립은 사무당국에서 의견을 종합하여 진행하면서 모순을 시정하고 정정을 가하도록 하다.
3) 도양고등공민학교 운영 및 인사는 교장서리 권재홍씨로 내정하고 모든 문제를 타합 처리키로 하다.
4) 교도성직사정 요원 선정에 총무부에서 5인의 요원을 추천하여 성적사무를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법안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것은 수위단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다.
5) 원여상 학교직원 인사 임면은 직원명단을 첨부한 대로 승인하다.

제10회 (임시) 원기49년(1964) 11월 7일 교정원 회의실

1) 이리 보육원에 관한 건은 추진위원 5인을 선정하다. 위원 김홍철 조갑종 정광훈 이철행 김서오교무.
2) 한국보육원 서기 임시 파견의 건은 이건춘씨 뜻을 교섭해 볼 것을 가결하다.

3) 영광, 불갑, 함평 임야 처분의 건은 팔아서 논 한필지라도 사기로 하다.

제11회 (임시) 원기49년(1964) 11월 15일 교정원 회의실

1) 대학 약학과 승인 증과를 결의하다.
2) 학교법인 준칙개정을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다.

제12회 (임시) 원기50년(1965) 1월 15일 종법원 회의실

1) 영산 옥녀봉앞산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2) 영산출장소 설치의 건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되 중앙교의회의 결의가 필요함으로 우선사무체제를 잡기위하여 총부출장소 직영으로 문서체제를 갖추기로하고 명시나 발족은 중앙교의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다.
3) 중앙교의회 의원수 指定의 件은 초안을 일부 수정하고 원기50년 총회에 임석할 중앙교의회 의원수 指定이 확정됨을 선언하다.
4) 인사임면 조례심의의 건은 초안의 일부수정에 의하여 인사임면 조례가 통과 확정되다.
5) 교정원 직제 심의에 관한 건은 초안의 일부수정에 의하여 교정원 직제가 통과 확정됨을 선언하다.
6) 처무규정 심의에 관한 件은 초안의 일부수정에 의하여 처무규정이 통과 확정되다.
7) 고등공민학교 야간중학 인가수속의 件은 일동찬성에 따라 야간중학으로 인가수속을 발족키로 하고 방법을 당무자에 일임 연구하도록 하다.
8) 요양자 치료대책에 대하여는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긴박한 환자의 치료를 서두를 것을 가결하다.
9) 재단정관 개정의 件은 학교재단과 종교재단이 분립됨으로써 재단정관이 개정된 것은 개정안에 의하여 개정키로 하다.

제13회 (임시) 원기50년(1965) 2월 8일 종법원 회의실

1) 50년 총회일정을 3월로 결의하다.
2) 전무출신 26명의 지원자를 심사 통과하다.
3) 澱粉공장 설치는 연구해보기로 하고 연구위원으로 박장식 성정철 정광훈 서대인 송원철로 정하다.
4) 서울보화원 온실신축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선기관에 보조를 하도록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더 고생을 해서 그 일을 해주도록 할 것을 종용하기로 하다.
5) 졸업생 진학 지원자의 사비진학이 승인됨으로써 육영부 당국에서 본인들의 서약을 받아 전무출신으로 의무를 다하는데 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부하도록 하다.
6) 원기50년도 육영비 책은 육영예산 70만원중 보화당 수입 14만원을 전액 승인키로 하다.
7) 원기50년도 지원 장학생을 선발 통과하다.
8) 중앙선원 살림취급은 정리위원으로 성정철 서대인 成玄珠 윤순배 오해인 등을 선정하다.
9) 인재육성에 있어 지방비 공비제를 지양하고 육영재단 공비로 통합해서 두루 관리하자는 안건은 앞으로 연구해 보기로 하다.

제13회 (정기) 원기50년(1965) 3월 15일 교정원 회의실

1) 일상생활 상규 및 전무출신 요양규정 심의는 차기회의에 심의하기로 하되 돌아오는 일요일(3월 21)까지 개인의 의견으로 첨부하여 총무부로 제출해줄 것을 바라고 전무출신 요양규정도 같이하기를 구하다.
2) 전무출신 지원자 승인의 件은 원안대로 전원 승인하다.
3) 장학생지원자 추가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다.
4) 총회 각종행사는 ① 종법사 추대 및 수위단원 선서식순 및 부서분정 식순을 일부개정하고 부서별 지정인을 수정 결정하다.
② 교화3대목표 시상식순 및 시상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교무부장 박은국씨 구두설명을 통하여 금년 시상대상인이 42명이 됨을 밝히고 식순은 간단한 방법을 채택하기로하다.
③ 숙소 및 식사에 관한 해결방법은 당무자들이 계획중에 있으며 인원을 房別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일독하고 사가집과 인근 기관 또는 시내 기관이나 더 나아가서 여관까지 교섭해본다는 당무측의 내용을 상세히 하다.
④ 임원결정 및 사표결정은 총괄에 총무부장으로하고 각 부서는 전례에 의하여 조직하되 인원선정은 간부회인 소회의에서 정하기로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5) 회계년도 변경안 심의는 거년에 개헌을 하고 금년에 취급하는 일이 됨으로 보류하여 두었다가 앞으로 더 연구해보도록 하다.
6) 모범감원 시상에는 감원 뿐만 아니라 전무출신의 장한공적을 치하하는 뜻에서 시상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따라서 시상은 대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교정위원회때 행사하도록 함이 좋을 것이요. 시상을 하더라도 정한 규칙에서 행하여야 할 것이니 규례를 정하도록 할 것을 가결 선언하다.
7) 원광중고등학교 및 원광여자중상고 교사채용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다.
8) 밀양지소 및 누문선교소 지부승격·인가의 件은 밀양지소를 지부로 승격하고 누문선교소는 서광주지부로 승인하되 각서와 같이 50년 12月末이래로 법당을 건축 또는 매입하여 교당의 면목을 완전히 갖추도록 할 것을 조건부로 하다.
9) 원기49년도 결산보고안 심의의 건은 세출항목中 工資를 未拂로 명목변경할 것을 부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10) 원기50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은 지명된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하기로 하다. 위원—박장식 박광전 조갑종 정광훈 조회석.
11) 학교법인 예산안 편성은 무수정 통과하다.

제14회 (임시) 원기50년(1965) 4월 3일 교정원 회의실

1) 원불교 종교법인 정관 개정의 件은 일부수정을 加하고 원안통과를 선언하다.
2) 재단법인 원불교 재단이사 임기만료에 따르는 이사 변임의 건은 이동진화 조전권씨가 중임 가결되다.
3) 원기50년도 종교법인 예산심의에 관한 건은 전번에 구성된 예산심의 의원들께 위임해서 심의하도록하다.
4) 교화삼대목표 시상 규정심의에 관한 건은 의원의 개별심의를 거쳐 4月末까지 당무부에 제출하여 원의회에 상정심의키로 할 것을 선언하다.

제15회 (임시) 원기51년(1966) 5월 15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광고등공민학교 운영에 관한 건은 정성덕씨를 교섭 유임키로하고 조갑종의원을 후원 회장으로 정하되 그 직원의 개편은 두분의 협의하에 하도록 하다.
2) 원기50년도 원의회 위원지정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하다.
3) 인사임면 승인의 件은 이은석의원 인사임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승인하다.
4) 재단감사 임기만료로 인한 후임선정의 件은 김영신씨로 중임 가결하다.
5) 요양대상자 청원처리의 件은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다.
6) 원광대학 장학생 및 과락자(科落者) 사무처리의 件은 학교당국에서 결의된 법의 위신을 존중히 하고 또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해서 당무부에서는 본인들에게 알려서 다음학기부터는 科落이 되지않게 노력하도록 성의를 촉구해보고 학교당국에 이번 한번만 용서를 하고 다음부터는 加하기로 하다.
7) 장학생 학년 인하 및 원광대학내 전과자 승인의 件은 공비생은 4년의 恩典外는 자담하기로 할 것이며 전과학생에 대해서는 승인하기로 하다.
8) 장학생 제대 후 계속 휴학자 처리에 대하여는 학교당국과 상의해서 하기로 하다.
9) 서울출장소에 관하여 ① 출장소 명칭은 교헌대로 서울총부출장소라고 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수위단회에서 결정키로하고 잠정조치로써 「원불교총부 서울출장소의 사무소」를 略하여 「총부서울사무소」로 약칭하기로 하다.
② 청년회사무에 대하여는 오는 청년연합회의에 결의를 얻어 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기로 하다.
10) 교화 삼대목표 추진 시상 규정심의의 件은 교정위원회때 상정하여 의견을 들어 시정하며 수위단회에서 확정키로하고 우선 지방의 활동을 촉구하는 뜻에서 임시안을 국내에 한하여 채택하기로 하였다.

제16회 (임시) 원기50년(1965) 6월 26일 교정원 회의실

1) 예전 제3편 간행에 관한 件은 외상제를 지양하고 원광사에서 출판할 것을 가결하다.
2) 원광대학 교원 및 원여상 교원 임용 승인의 件은 원안대로 가결하다.
3) 정도천씨 전무출신 지원서 심사의 件은 전무출신으로 인정하다.
4) 박해운씨는 전무출신 서원서를 받아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기로 할 것을 가결하다.
5) 총부 서울사무소 月刊『종교계』발행 승인의 件은 題名은『종교계』라고 하고 월간 발행할 것을 가결하다.
6) 원광대학 기채에 관한 件은 학과증설에 소유되는 1,400만원中 400만원을 학교에서 취하는 방법에 의하여 기채할 것으로 결의하다.
7) 보화당 제약사 약사에 관하여는 원여상에 근무하는 약사 이건진씨를 원여상과 보화당이 서로 상의하여 해보기로 하다.
8) 도양지부와 도양고등공민학교 재산분리에 관한 件은 재단의 변경설치를 지양하고 보고서와 같이 지부와 학교별 재산을 분리하고 각각 독립운영케 함을 승인하다.
9) 영모원 산림매입의 件은 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만을 구하기로하고 특지가의 희사도 있도록

주선해 보기로하고 우선 임시 사업회에서 차용하여 약속 매입하기로 하다.

10) 하섬경작지 저당소송에 관한 건은 정양진씨는 조갑종위원이 총부에 오도록 종용키로하고 소송비용은 토지의 관련자인 사업부장 송원철씨와 이공주씨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다(채권자가 반상채무를 위조함－저당 扶消등기무효소송제기함).

제24회 (정기) 원기50년(1965) 9월 6일 교정원 회의실

1) 佛目선교소를 지소로 旺村지소를 지부로 白岫지소를 지부로 각각 승격하다.
2) 보화지부를 소성지부로 개칭 결의하다.
3) 전주양로원 이사진 개편의 件은 이사는 내신한 11명이하되 그중 양로원장을 이사로 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선정하다.
4) 교무발회(發會) 승인에 대하여는 대구부교무인 장혜성씨를 안동으로 경남부교무인 이혜정씨를 남부민으로 발령됨을 승인하다.
5) 재단정관 개정의 件은 재단정관 4장 14조에 명시된 이사와 감사는 원의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이사와 감사는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대로 고쳐야 한다는 개정의안이 당국의 지시대로 할 것을 가결하다.
6) 원중·고교 교사 임면 승인의 件은 제안대로 가결되다.
7) 金亮秀장학에 관한 件은 원기50년도는 육영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육영부장의 자립에 의하여 등록금을 보조하기로하고 원기51년도는 등록금은 육영부에서 전제하기로하며 기타 일체비용은 영남지방에서 부담하기로 가결하다.
8) 전무출신 요양 규정 제정안 심의의 件은 일부수정 통과하다.
9) 요양원 간판 명명의 件은 「원불교중앙요양원」이라 하다.
10) 사업부 예산 초과 지출인정의 件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초과되었던 것을 인정하기로 하다.

제17회 (임시) 원기50년(1965) 10월 13일 교정원 회의실

1) 영도지소를 지부로 승격하다.
2) 재단학원 교사채용 및 학급신설에 관한 件은 원광고 교사 신국재씨의 채용, 학급증설에 있어 원광중학교 2학급 고등학교 3학급 원여중 1학급 여상고 1학급 증설키로 하다.
3) 원광중학교 및 원광여상 起債결의에 대한 件은 각각 삼백만원씩을 기채하는 것을 승인하다.
4) 학교재단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일의 지상결의 인정에 관한 件은 학교재단에 대한 일로 교정원장이나 이사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일로 원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상으로 원의회 의원의 결의를 얻어 처리하도록 하다.
5) 종교재단 定款개정에 관한 件은 학원재단이사와 감사를 종교재단이사와 감사로 할 것과 종교재단 定款에 이사와 감사수를 이사는 7명 감사는 2명으로 할 것을 가결하다.
6) 도양고등공민학교는 1년간을 연구기관으로 놓고 농업기술학교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학교장에 추진할 것을 가결하다.
7) 요양청원 처리에 관한 件은 月천원씩 6개월분으로 6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8) 육영 5개년계획 수립에 관한 件은 계속 연구키로 하다.
9) 이리보육원 운영에 관한 건은 원아와 직원, 그리고 동산, 부동산을 일체 합하기로하고 울안에 있

는 건물 垈地는 대학으로 주고 울밖에 있는 논밭은 대학에서 경작하되 사용료를 정해 그 수입을 사업부에서 취급 보육원이 자립할 때까지는 공직에 따라 처리하기로 함. 또한 전무출신 무산자녀를 별도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이리보육원에다 수용하도록 할 것을 첨가하다.

사용료는 논 한필지당 백미 5叭씩으로 해서 三十五叭과 밭 40평에도 논 한필지 사용료와 같이해서 1년사용료는 白米 40叭으로 정하다.

일체를 정리하기 위하여 신구양원장과 5人의 위원을 정하기로 결의됨을 선언하다.

10) 한국보육원 15주년기념 및 同園 국민학교 낙성식에 총부대표로는 이운권 이공전교무가 참석하기로하다.

11) 수위단 회의를 10월 26일로 결정하다.

제18회 (임시) 원기51년(1966) 2월 24일 교정원 회의실

1) 전무출신 지원자 인정에 관한 件은 원안대로 통과하다.

2) 원기51년도 장학생 선발에 관한 件은 2종 공비생中 김학인씨는 국문학과를 불교교육과로 시정하며 이경만씨는 전무출신서류를 갖춤으로써 인정하도록 하는 조건을 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3종 5종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통과하다.

3) 한국종협 창립총회 원불교 대표위원에

이운권 박장식 박길진 이공주 황정신행 문동현 이은석 이공전 김정용 유성일을 결정하다.

4) 이리보화원장 자문위원 승인에 대하여는 이리 보육원 운영규정이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개정해서 자문위원의 조항을 설치하도록 한다.

5) 원광고등학교장 인사의 件은 수위단회에서 처리하기로하다.

6) 원광고등학교 재산처리에 관한 件은 실정파악 특별위원으로 성정철 정광훈 김윤중으로 정하고 차기 원의회의에서 보고를 받아 처리하기로 할 것을 가결하다.

7) 조만식씨 양로원 입원 결의의 件은 입원키로 하고 직무를 계속하고자 하면 하도록 서울 박영순씨와 이리 정세월씨도 동시입원키로 하다.

8) 新都 수양센타를 설치하기로 하다.

9) 유일정미소 창고설치에 관한 件은 되도록 짓도록하되 경비조달 계책이 없으니 그러한 실정에 있다는 점만을 알아두기로 하고 보류하다.

제25회 (정기) 원기51년(1966) 3월 22일 종법원 회의실

1) 청년회 신문발행에 대하여는 원광지 발간하는데 힘을 합하여 청년회 기사편을 두기로 하고 신문간행은 부결하다. 그러나 교무부에 예속보다는 독립기관으로 승인하다.

2) 원기5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관한 件은 위원을 뽑아 처리하기로 하다. 그 위원으로는 박광전 정광훈 서대인 김윤중씨로 선정하고 입교금 50원으로 인상, 念誦文有償 교금을 지방 담당제로 시행이 통과됨을 선언하다.

3) 보화당 건물 신축 승인에 대하여는 신축하기로 하고 후생주택 처리문제와 기채는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다.

4) 원광중고등학교 교사신축의 件은 기채부담은 허용치 않고 자체부담으로 신출하되 기채가 필요시는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다.

5) 원광여중상고 교사 임면에 관한 건은 사전에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번만은 원안대로 승인하다.
6) 도양고등공민학교에 관한 件은 농업기술고등학교로 전환하기로 하고 설립자는 재단명의로 하기로 하다.
7) 원광중고등학교 교사 채용 승인의 件은 원안대로 통과하다.
8) 1965년도 원중고 교비 및 기성회 세입세출 결산서 심의의 件은 정기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다.
9) 정문주변 건축물허용 여부에 관한 件은 원안대로 통과되다.

제19회 (임시) 원기51년(1966) 7월 7일 종법원 회의실

1) 원의회 의원 및 재단이사회 운영에 관한 件은 이사회 기능강화와 정기이사회는 매월 5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수시하도록 한다.
2) 재단법인 원불교 定款 변경에 관하여 종교재단과 학교재단을 동일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관 4장 12조에 종전의 이사 7명을 9명으로 보강(이사장 상임이사포함). 13조 이사와 감사는 평의원회(원의회)에서 평위원회(원불교수위단회)로, 14조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 1人을 선정한다. 이사장은 원불교 교정원장 상임이사는 원불교 재무부장이한다로 정관 변경하다.
3) 종군교역자 국회 청원에 관하여는 종군 교역자의 길을 트는데 노력하기로 하다.
4) 서울 원제약방 약실 임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하기로 하고 결정단계에 이르면 다음회의에서 인정을 얻도록하고 추진위원으로 이철행씨와 송원철회원이 협력하도록 하다.
5) 요양대책자는 심의에 관한 件 요양규정에 의하여 상부 복안대로 하기로하다.
6) 인사에 불갑교당 이현도, 완도교무 정양진, 목포부교무 김은신, 총무과장 박정훈, 교정원장비서겸 법제과장 이형원을 각각 승인하다.
7) 청년회 회보발간에 총재와 청년회장의 재가를 얻어 발간하도록 승인함과 동시에 앞으로 교단적으로 발간물을 낼때에는 반드시 교무부에 등록하고 감정을 얻어서 발간하도록 하다.

제26회 (정기) 원기51년(1966) 9월 10일 교정원 회의실

1) 순공비생 보선의 건으로는 박혜원 김의진의 학비를 지급키로하다 2) 전무출신 승인의 건은 이성국 송혜성 김양문을 전무출신으로 승인하다.
3) 약제사 양성의 件은 김양문의 학비를 보화당에서 부담하고 육영부 공비생으로 하기로 하다.
4) 허인(수계농원인삼재배)선생 褒賞의 件은 은산재단 주최로 오는 교역자 강습시에 종법사 명의로 감사장을 수여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다.
5) 원광대학 운영은 교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이사회 회의를 첨부하여 의학과 설치인가 신청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다.
6) 종합 연수회 개최의 件은 오는 교역자 강습때에 소청키로 하고 그에 대한 예산과 진행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위원을 선정한 바 다음과 같다. 정광훈 김윤중 이공전 김정용 이은석 이철행 유기현 박은국 송원철 정성숙. 대표 : 김정용.

제21회(임시) 원기52년(1967) 2월 5일 종법원 회의실

1) 전무출신 지원자 인정의 件은 42명 전원을 원안대로 인정하나 단 중등과정 미수인 50명에 대하여

는 전무출신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전물출신에 적격임을 종법사로부터 특인받아야함을 선하다.

2) 원기52년도 장학생 선발의 件은 육영부 예산이 수립되어지는 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다.
3) 전무출신 외부 각 대학진학 승인 件은 4인의 외부 대학진학을 승인하나 앞으로는 이를 법규화하여 시행할 것이며 또는 已爲 교학이외 과목을 전공할 바에는 교단의 형편과 본인의 계획 등을 자세히 파악하여 금년부터는 원대에서도 1학년부터 각과별로 진학시킬 것을 결의하다.
4) 원광고등공민학교의 件은 책임자를 교체하든지 총부직속으로 하든지 이리보육원에서 경리하든지 폐쇄하든지 해야할 것을 촉구하고, 교사는 육영부에서 힘을 써서 기숙사 학생들이 보아주고 교감은 총부에서 기식하도록 하며 후원회를 구성하되 회원은 원의회 회원으로 하고 회장은 송원철씨로 하다.

제27회 (정기) 원기52년(1967) 3월 21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기52년도 중앙총부 예산안 심의의 件은 ①교무부의 편의를 위하여 1년간 시험적으로 재무부와 회계를 별도취급하는데 교무부 직원식사만 재무부에서 해결해 주고 입교금과 의식수입으로써 교무부경상비를 쓰기로하다. 단, 교무부 세입이 부족하면 재무부에서 형편 되는대로 보조하고 교무부세입이 남으면 재무부에 세입키로하다 ②박광전, 정광훈, 김윤중, 이철행, 송원철 제의원을 예산 심의위원으로 선정 예산안을 재조정키로하다.
2) 인사의 件은 원안대로 결정하다.
3) 지부승격 인사의 건은 임피교당과 돈암교당을 지부로 승격하여 돈암동은 일년이내에 지부 기준에 오르도록 교세 발전시킬 것을 조건부로 하다.
4) 전무출신 지원자 인정의 件은 원안대로 9명을 전무출신으로 인정하다.
5) 요양원 修築의 件은 원안대로 수축키로 하다.
6) 원기52년도 장학생 추가승인의 件은 원안대로 승인하다.
7) 전주양로원 기본재산(토지) 전환의 件은 전주양로원이 교동에서 현 덕진동으로 이전하게 됨에따라 농지도 가까운 거리에 옮기기로 하다.
8) 원광중고 및 여중상고 교원 임명 승인의 件은 원안대로 원중고에 3人 원여중상고에 1인 교원 채용할 것을 승인하다.
9) 1967년도 원광중고 및 여중상고 예산안 승인의 件은 원안대로 승인하다.
10) 보화당 기채(2백만원)의 件은 은행이나 미국시설 자금차관의 길을 알아보기로 하다.

제22회 (임시) 원기52년(1967) 4월 3일 교정원 회의실

1) 인사의 件은 ①총지부임원 38명에 대한 별지 인사내정안을 상정한 바 원안대로 승인하다 ②원중고 교원 1명에 대한 별지 교원 채용 제청안을 상정한 바 원안대로 승인하다.
2) 지부 승격인가의 件은 곡성, 여수, 안동 3개교당을 지부로 승격하다.
3) 숙사 신축부지 선정의 件(일반 교당교무들이 와서 사용하고 그외는 총부에서 사용)은 교정원 사무실 서편으로 결정하다.
4) 종법사 요양주택의 件은 기지선정과 예산수립 등 구체적인 안을 연구하여 차기원의회에 재론키로하고 그 위원으로 김정용 정광훈 이철행 김윤중 송원철 김지현 정성숙으로 선정하다.

제23회 (임시) 원기52년(1967) 7월 29일 교정원 회의실

1) 법은회 발기의 件은 명칭은「법은재단 後援會」라 하고 발기할 것을 승인하다.
2) 청년회보 기사취급의 件은 그동안 교보기사와 중복을 피해왔으나 독자의 범위가 다르고 교단의 선전을 위해서 기사취급의 범위를 넓히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교단의 좋은점에 한해서 국한을 펴주기로하며 편집위원회를 두기로하고 위원에는 청년회장, 총무부장, 교무부장으로 하다.
3) 한국불교반공협회 임원취임 승인의 件은 전무출신을 원래 사회 단체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불교반공협회에서 출가 재가中 3人을 임원으로 취임할 것을 요청했으나 보류키로하다.
4) 이사회 운영의 件은 원의회는 그대로두고 그안에 상임위원회를 실시하되 위원회는 교정원장을 비롯한 5부장 감찰원 대표 1인 순교감中 남녀 각각 1人과 현이사를 하고 상임위원회의 결의는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도록하다.
5) 원대 종합대학 승격의 件은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나 의사만은 문교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해 받은 연후에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다(부속병원을 마련해줄 것 등).

제24회 (임시) 원기53년(1968) 2월 24일 종법원 회의실

1) 상임위원회 결의사항 추진에 대하여 별첨 원안대로 승인하다(별첨생략).
2) 전무출신 지원자 인정에 관하여 48명 전원을 전무출신으로 인정하되 선원생도 불교교육과 공비생과 같이 입선시 전무출신지원서를 제출치 않는자는 자유선원생으로하되 고시와 출가식에 참여할 자격을 주지않도록 하고 중졸이하의 자격자는 종법사의 특인을 얻도록 하다.
3) 교동교당을 지부로 송천동교당은 지소로 승격하기로 하다.
4) 원기53년도 육영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5) 원기53년도 장학생 선발의 件은 공비생 55명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되 5종공비생에 대하여는 중고등학교 입학시 성적을 참고하여 인정해주는 규약을 구하기로 하며 전과자와 불합격자는 학교측에 일임하기로 하다. 또한 교직 14년이 못된자로서 생은자녀(生恩子女) 혜택을 주고자하는 자는 중고등학교의 사정이 허용되는한 10년까지 허용해주는 융통성있는 법규를 연구키로하다.
6) 요양원 증축의 件은 요양원 방 부족과 남녀사용하기에 불편이 많으므로 남자요양실 4간 18평정도에 34만원 예산과 여자요양실 3간 15평정도에 30만원이 소요되는 증축을 승인하다.
7) 원광여종고교 일시차입 승인의 件은 일시차입하여 교사증축키로 하다.

제28회 (정기) 원기53년(1968) 3월 15일 종법원 회의실

1) 원기53년도 예산심의의 件은 의원을 선출 재조정하여 앞으로의 각 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위원을 선출한 바 다음과 같다. 김인용 이중정 이건춘 정광훈 김윤중, 이철행 김정용 교정원 5부장.
2) 종법사 요양 件은 임시로 동산선원으로 정하고 종법사요양상 지장이 많으니 일체인사를 약하도록 주지시키며 그러기 위한 제도면을 더 연구키로 하다.
3) 원기53년 개교절 경축식 거행의 件은 3월 26일을 교단공휴일로 할 것이며 오는 교정위원회때 지시하여 내년부터 하도록하고 총부와 기관은 우선 금년부터 시행키로 하다.
4) 원기52, 53년도 회갑식 거행의 件은 추계교역자 강습때 하기로 하다.
5) 장의비 처리의 件은 원칙은 법은재단으로 수입시킬 것이나 이번은 십만원만 법은 재단으로 수입시키고 나머지는 총부담장공사를 하기로하다.

6) 人事의 件은 원안대로 승인하다. 박인숙－백운교당 교무, 김지영－순창교무, 한길량－원대, 한인성－김포교무, 신도형－동산선원교무, 윤성도－고부교무, 박재현－육영과장겸·여사감, 김성진－법무실주사
7) 유일정미소 임대차 계약을 1년 연장키로하다.
8) 총부재산 전환의 件은 원대뒤에 천여평을 代土 마련해 줄 것을 조건으로 전환하기로 하다.
9) 총부 유지기반 확립의 件은 수위단회로 넘기기로 하다.
10) 지부승격 인가의 件은 김제를 지부로 승격하다.
11) 원중고 및 원여종고 교원해임 및 임용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29회 (정기) 원기53년(1968) 9월 17일 교정원 회의실

1) 원여중 종고 교원 임면 승인의 件은 김재영 양재순씨 해임과 동시에 최진순씨를 취임키로 하다.
2) 지부승격 인가의 件은 기장은 지소로 승격키로 하고 불목은 아직 법당마련이 안되었으니 보류키로하다.
3) 罹害民 구호금 처리의 件은 15,500원 외부기관에 기탁은 보류하고 교정위원회시에 대내구호의 방안 내려지는대로 처리키로하다.
4) 청년회 직제개편의 件은 5名 위원을 선정하여 본건을 연구 처리키로하고 위원을 선정한 바 교무부장 청년회장 정광훈 김윤중 이공전 등이었다.
5) 자유중국 포교의 件(대만유학생 김대현에 대해서)은 직책은 중국순교무로하고 그동안 든 비용은 교무부와 육영부에서 주관하여 각 기관에서 협조를 받도록 하기로 하다.
6) 서울 을지로 垈地의 件(임미성씨가 代地 100평 건물 200평 회사)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을 선정하여 건축에 대한 일 최악의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결정단계에 이르면 정식결의를 얻어 진행키로하고 위원 선정하다. 위원장 오미산, 실무위원－보화당대표 이철행, 반백년기념사업회대표 김정용, 수도원대표, 육영부장, 사업부장.

제54회 (임시) 원기53년(1968) 12월 23일 종법원 회의실

1) 임기 만료에 의한 학원재단 이사 선출로 학원재단 이사중 박장식 성정철 박광전 1월까지 임기 만료로 선출하다. 박장식 성정철 박광전 중임하다.
2) 원대 상과 경제 담당 성병덕씨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인하다.
3) 원여중고교 무용담당 최순자씨를 해임하다.
4) 원대와 원중고 및 원여중고 교직원 용금을 6,000원으로 일괄 처리하고 기관장 재량에 5할정도까지 더 급여하기로 하다.
5) 신문사칙 초안을 4장 12조로 통과하다.
6) 신문사 사장에 김정용, 주필에 이공전으로 인사하다.
7) 원고공 야간 중학교를 야간 중학으로 승격하자는 의견에 차기회의에 상정키로 하다.
8) 조회석 신정묵씨의 금강리 주택 매도의 건을 차기 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다.

제55회 (정기) 원기54년(1969) 3월 17일 종법원 회의실

1) 영산출장소 소관재산 전환의 건으로 백수면 논산리 소재 임야 30정보와 이씨 소유 임야 70정보를

매입키로 하다.
2) 원기54년도 중앙총부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하다.
3) 재단법인 원불교 정관 개정을 7장 31수로된 원불교 정관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4) 말레이지아에서 하는 세계 불교도 교단 대표를 김정용씨로 승인하다.
5) 교화 3대목표 시상규정을 본래는 교무로써 강습 나준 분을 시상하기로 하였으나 드물기에 교당별 출석 불리기로하다.
6) 원광사를 병원신설 관계로 원여중 창고로 교환 이전하되 기간은 3개년 사용하기로 하다.
7) 진주선교소와 보절지소를 각각 지부승격 승인하다.
8) 원여중 종고 교사 유신자 이영자 전옥배 김재형 이희삼, 서기 송현숙씨 등을 의원 해임하다.

제 56회 (정기) 원기54년(1969) 9월 14일 종법원 회의실

1) 교무 강습 일자를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2일간 개최하기로 하다.
2) 조채기를 동화병원 원장에 임명키로 하다.
3) 원광 고등공민학교 공사비에 대한 건으로 모든 기관에 협조할 수 있는한 적극부담 그래도 부족할 때는 교정위원회 호소하기로 하다.
4) 삼천포 선교소 전세 계약비 15만원 부족에서 교화재단 五만원 충당 나머지 10만원 각 기관 적극 협조하기로 하다.
5) 지방은행 발족됨에 따라 보화당에서 투자하기로 결의하다.

제57회 (임시) 원기54년(1969) 10월 4일 종법원 회의실

1) 교무 강습 일자를 10월 15일에서 3일 단축한 10월 12일로 변경실시하기로 하다.
2) 교당 설립 지원문제의 건으로 교화자금이 어느정도 마련된 후 부득이한 지방에 한하여 원의회 결의로써 지원해 주기로 원칙세우다.
3) 기타 구 익산보화원의 전답에서 얻어지는 수익 40가마를 금년만 원광고등공민학교로 돌려주면 공사에 많은 진척이 되겠다는 입장에 교정원장, 사업부장, 이리보육원장, 이철행 4인 화합해서 결정하기로 하다.

제58회 (정기) 원기55년(1970) 3월 5일 종법원 회의실

1) 오성수씨 요양원 총무 정복천씨 수계지부교무 이대광씨 교무부 임원으로 승인하다.
2) 원광중고등학교 세입 세출 총액 26.053,040원, 원여중종고 세입 세출 총액 27,269,770원을 승인하다.
3) 재산 목록의 토지를 종교재단으로부터 학원재단으로 전환하다.
4) 원광고등학교 최인열. 이복동 이성탁씨를 교원해임 승인하다.
5) 총회 일자를 28일 오전 10시 수위단회, 28일 오후 2시 교정위원회, 29일 오전 10시 중앙교의회 소집하다.
6) 송원철씨 조채기씨가 동화병원 원장으로 근무하게 되면 의료원 개설을 하기로 하였는데 건강상 의료원 개설을 연기하다.
7) 동화병원 대지 건물을 재산 전환 하기로 하고 위원은 예산 위원겸무 하기로 하다.

8) 예산위원 선정의 건으로 정광훈 김정용 김윤중 이철행 정성숙 송원철로하고 본위원으로써 3월 총회의 위원과 동화병원 재산위원 겸임하기로 하다.
9) 차량 운행 조례 승인하다.
10) 한국 종교사 편찬에 한정석씨 원고 준비하기로 하다.
11) 반공비생 황명신, 공비생 김도연 이태형 승인하다.
12) 제22회부터 28회까지 상임위원회 결의 사항 승인, 원의회 의원 재조정 고려.

제59회 (임시) 원기55년(1970) 10월 4일 종법원 회의실

1) 좌석 버스 회사의 인수건으로 교단의 생산적인 면에 관심으로 기업체 발족의 안건으로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다.
2) 종교문제 연구소 예산을 정식예산에 넣기로하고 연구지 발간 경비는 더 연구하기로 하다.
3) 원여중·종고 교원 임면 승인하다.
4) 원대 종합대학의 추진의 건 승인하다.
5) 상임위원회 결의 사항 추인하다.

제60회 (정기) 원기56년(1971) 3월 19일 종법원 회의실

1) 원기5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하고 문서형식이 격식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기로 하다.
2) 원기56년도 세입 세출 예산심의 위원회 구성하고 교단 전반을 통해서 모든 재산 조사키로 하다.
3) 원광대학 종합대학 인가 수속에 반백년 기념관과 기숙사 원대 건물로 명의 빌려 주기로 하다.
4) 제41회부터 51회까지 상임위원회 결의 사항 추인하다.
5) 교화 3대목표 추진 종합실적보고 3월대회에 시상하기로 하다.

제61회 (임시) 원기56년(1971) 5월 15일 종법원 회의실

1) 세계평화촉진대회의 방일수속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하다.
2) 압해, 겸면교당은 지소로 사직, 송천지소는 지부로 각각 승인하다.
3) 열반인의 원성적 사정을 승인하다.
4) 중앙수양원 입양자 승인하다.
5) 교규안 기초심의 승인을 3개 교규안에 대하여 수정 통과하다.
6) 원평 토지 매도를 승인키로하고 재무부에서 서류에 의한 접수후 확인하기로 하다.
7) 이사장 각서를 도교육 위원회 제출과 각서 받아두기로 하다.
8) 원의회 사전 승인 받아 학교 인사 시행하기로 하다.
9) 법인 및 학교 결산 승인하다.
10) 금강리 요양원의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저당 말소하고 나머지는 재 계약 승인하다.
11) 국방부 지방토지 보상금 및 재단의 토지 매도금 사용처에 관하여 한남동, 양주 등의 토지사용 보상금 및 토지 매도금의 처리내역과 직원파견 조사하기로 하다.
12) 이리보육원 양계사업 적자 운영으로 양돈사업 추진하기로 하다.
13) 한남동 미군 숙사 이전 건축비의 반액을 교단에서 부담하기로 하다.
14) 동화병원 운영위원회 규정 및 법은재단 정관 개정안 심의 통과에 있어 운영위원회 규정은 제안과

같이 통과하고 법은재단 정관 개정안은 수정 통과하다.
15) 새로 개정된 법은 재단 정관에 의하여 재단 이사 및 감사 선정하다.
16) 교직부 사무 간소화 안을 성안 시행하기로 하다.
17) 총직원 및 지방 부교무 인사안 심의 승인 추가 확정하다.
18) 서울사무소 규정 통과를 본후 그에따라 인사 확정하다.
19) 전무출신 규정 제9조에 해당되는 명단 작성 하여 수위단회 상정 승인하도록 하다.

제62회 (임시) 원기56년(1971) 5월 17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보화당 1천5백만원 선의 담보에 5백만원 대여할 것을 승인하다.
2) 원여상의 이리시 남중동 건물의 매입을 승인하다.

제63회 (임시) 원기56년(1971) 5월 20일 종법원 회의실

1) 동화병원 재해 복구 대책 위원회 결성하여 주관하고 위원장에 성정철씨 임명하다.
총무부는 각 지부 기관에 재해 복구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하기로 하다.

제64회 (임시) 원기56년(1971) 6월 15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수도원 대지에 관한 건으로 교정원장 서울사무소장 재무부장 김정용 김형오 5人 합의 처리하기로 하다.

제65회 (임시) 원기56년(1971) 6월 25일 교정원 회의실

1) 반백년 사업회 기채 승인의 건으로 5백만원 정도 당좌 대월을 승인하다.
2) 일본 불교인단 총부 순례 초청하고 경비는 서울사무소와 연락 주선하다.
3) 구조실 개축은 부문 보수로 보존이 불가능할 때 다시 원의회 소집하기로 하다.

제66회 (임시) 원기56년(1971) 7월 13일 종법원 응접실

1) 서울기념관 건축조로 3백만원 대여하기로 하다.
2) ① 한남동 대지에 관한 건으로 이공주씨와 김정용씨 최선 방안 모색하기로 하다 ② 한남동 대지 사용료 원기54,55년도 받지 못한 것을 수속밟고 서울사무소와 이공주씨와 합의 처리하도록 하다.
3) 영산성지 통로 확장을 군사작전 도로로 확장 계획 사업추진하기로 하다.

제67회 (임시) 원기56년(1971) 8월 4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기념관 건축허가 및 제반추진 비용과 이철행씨를 수습대책 전문위원으로 조정근씨를 반백년 건설위원으로 발령하다.
2) 반백년 사업회 5백만원을 기채할 것을 승인하다.

제68회 (임시) 원기56년(1971) 8월 20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기념관 건축허가가 나오면 삼환 측에 1천만원 현금 지불하여 주고 잔액은 약속어음을 써주기로하고 수습위원을 5명을 더 위촉하다.

2) 한남동 대지에 대하여 교단에서 전부담으로 미군 숙사 이전시켜주고 국방부로부터 받는 금액은 추경 예산 지급방안 주시 추진하기로 하다.
3) 반백년 기념대회 행사 및 사업 추진으로 행사비 최대한 축소하고 반백년 소위원총회 개최하기로 하다.

제69회 (임시) 원기56년(1971) 9월 8일 종법원 회의실

1) 한남동 대지 매매하는 것을 만장일치 찬성하다.

제70회 (임시) 원기56년(1971) 9월 15일 수위단회 회의실

1) 서울기념관 경과보고의 3억원 해당의 담보물 설정에 대한 여부를 교단에서는 3억원에 대한 담보물도 없고 상황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다음 회의에서 담보에 대한 최종 결의로 보기로 하다.

제71회 서울기념관 수습위원회 반백년 건설위원회 원기56년(1971) 9월 24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기념관 경과보고의 1천만원 거출방안으로 1천만원을 기채하여 지불하기로 하다. 1천만원 매월 이자 지불은 각 기관별로 분담하기로 하다.
2) 한남동 대지 매도를 10월 말일까지 기한부로 하여 5백만원 상당의 담보물 제시하고 황정신행씨를 통한 원매자가 매입하겠다고 하면 그때 다시 상의하기로 하다.
4) 문교부 공납금 인상방침에 따라 직원 봉급 인상이 되어 추경 예산 승인하다.

제72회 (임시) 원기56년(1971) 7월 26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기념관 1천만원 기채 방안을 각 기관별 분담액을 책임지고 기채 불능한 기관에서는 재무부 등 기채 가능한 기관에 의뢰하되 각 기관별 기채에 및 기체의뢰 기관에서 이자부담하여 분담액면에 상당하는 증거물을 제시 보증서를 상대기관에 제출토록 하다.

제73회 (임시) 원기56년(1971) 10월 18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 삼환기업사의 잔금 문제를 12월 말일까지 기안하여 이사장 명의로 자기어음을 써주기로 하다.
2) 한남동 대지의 모든 조건을 서울 출장소장과 실행위원 정성덕씨 이철행씨 조정근씨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3) 남한강 대지 조성이 미불금에 관한 300만원중 114만원 미불금을 남한강 문제가 종합적으로 해결될때 같이 해결하기로 하다.

제74회 (임시) 원기56년(1971) 11월 8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기념관 주권과 운영권은 담보 제공자의 요청하는 바와같이 양보하고 수습위원과 상의하여 최선책을 취하기로 하다.
2) 남한강 114만원에 대한 미수금 지불은 교단에서 채무에 임하기로 하다. 단, 서울기념관 지방성금 나오면 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잔액은 점차 지불하기로 하다.

제75회 (임시) 원기56년(1971) 12월 14일 종법원 회의실

1) 동화병원에 송기해씨가 병원장직 맡기로하고 우선 김양수씨의 원장 서리직 승인하다.
2) 서울기념관 담보물에 대한 건은 정기원의회에서의 결의사항 재확인하다.
3) 총부 차량(찝차)매도 처분은 회사인과 상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4) 원광 중고교 분립 원칙 승인의 건으로 각 학교에서 적의히 책임 처리하기로 하다.

제76회 (임시) 원기57년(1972) 1월 1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 삼환기업의 미불금 우선 2백만원주면서 무마하기로 하고 남한강건은 담보물이 생길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다.

제77회 (임시) 원기57년(1972) 1월 6일 종법원 회의실

1) 남한강의 3가지 담보물을 물색하는 방안을 세워 추진하고 조정근 수습위원이 계속 최선을 다하고 삼환회사 부채의 문제는 계속 모색하기로 하다.

제78회 (임시) 원기57년(1972) 1월 29일 종법원 회의실

1) 금강리 대지의 건물 수리비 만큼은 대지 사용료 반환액에서 제하여 달라는 의견에 공재하여 주기로 하다.
2) 총무부장에 김중묵씨를 권세원씨를 해룡중학교 주사로 발령하다.
3) 총부 건축 문제의 심의위원을 총무부장 주관아래 5부장이 협의하여 안을 세우기로 하다.
4) 남한강 공사중단 증명서에 건설공사 도급 실적을 확인란에 재단이사장 서명을 하기로하다.

제79회 (임시) 원기57년(1972) 2월 27일 종법원 회의실

1) 원대 및 총부재단의 결산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앞으로는 재무부에서 각 기관의 결산 및 예산안을 사전에 종합하여 승인 얻도록 하다.
2) 새마을운동 협력을 하기로 하다.
3) 원광대학교 학장 승인을 문리대학장 유병덕, 사범대학장 전팔근, 법정대학장 김용태, 약학대학장 안영근씨를 발령 승인하다.
4) ①교단 긴축시책에 따라 총부 직제를 축소하고 ②총부예산중 금년에 한하여 타 기관 후원 예산은 세우지 않기로 하다 ③원기57년도 인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구성하다 5) 육영장학생 선발의 건으로 교단이 어렵지만 자경비 만큼은 해결해 주고 육영장학대상자 27명은 원안대로 승인하다.
6) 해외 유학지망자 규정을 성안하여 규정대로 하기로 하다.

제80회 (임시) 원기57년(1972) 3월 14일 종법원 회의실

1) 금마출장소를 지소로 승격시키다.
2) 새마을 운동 협력에 정부지도에 적극 지원하고 총무부와 총부부근 근지의 교당이나 기관과 맺어주기로 승인하다.
3) 3월 총회는 연기하고 임시지상 교의회를 열어 예산 결산을 의결키로 하다.
4) 원광대학 아이엠 에프 차관의 건의로 협의하여 처리하다.

5) 각 기관(원고, 원여상, 보육원, 수양원) 예산 승인하다.
6) 교사 임명 원광고교 교련교사에 이전원씨를 승인하다.
7) 남한강 개발공사 주식명의 변경을 김재위씨에서 이운권씨로 명의 변경하기로 하다.

제81회 (임시) 원기57년(1972) 3월 22일 종법원 회의실

1) 강릉 선교소 설립건으로 인근 교당인 춘천교당 교무와 상의 의논하도록 하다.
2) 강경 선교소를 지소로 승격하다.
3) 원광여상 7백만원 정도 기채 승인하다.
4) 중앙 요양원장에 변중선선생을 승인하다.
5) 원기57년도 예산액을 30% 삭감한 선에서 긴급예산 승인하다.

기타 : 일본 불교인단 응접 준비 총무부에서 주관. 개교기념일 체육대회는 교무부 주관 추진하도록 하다.

제82회 (임시) 원기57년(1972) 7월 9일 교정원 사무실

1) 이리 보육원땅 평당 1천7백원씩 3백평 매도 승인하다.
2) 원광대학교 승격이후 학칙개정을 승인하다.
3) 보화당 약방을 이리 역전 부근으로 분가 승인하다.
4) 다대지부, 대지에 관한 건으로 관계인들과 개별 접촉하여 원만한 해결책 모색하기로 하다.
5) 총부주위 국도포장을 보화당과 원광대학에 각각 20만원씩 부담하여 추진키로 하다.

제83회 (임시) 원기57년(1972) 8월 5일 교정원 사무실

1) 대통령 8월 3일 성명에 따른 군산 백화소주에 1천만원 대출 비롯하여 이것을 신고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협의중 좀더 실태 파악 적의히 처리하도록 하다.
2) 다대지부 대지 해결건으로 대법원 판결나기전 수습위원 해결책 마련하도록 하다.
3) 영광지부 건축추진 계획을 취소 통지하다.

제84 (임시) 원기57년(1972) 9월 6일 신 종법원 회의실

1) 해보는 문장으로 개칭하고 지부승격은 총무부에서 실태파악 확정하기로 하고 장항선교소 설립 승인하다.
2) 19회 교역자 훈련 9월 26일~10월 15일까지 여정 선비900 식비 쌀 4말 외래강사는 종교계 인사로 승인하다.
3) 교정위원회 개최 일자를 10월 16일로 정하다.
4) 중앙교의회 소집 필요성에 따라 교의회 의장에게 소집 권하기로 하다.
5) 다대지부 건은 교정위원회에 상정키로하고 유일정미소는 시설보완 금년도 사용료에서 공제토록 하다.
6) 알봉 묘지정리 교정위원회 상정하기로 하다.
7) 동화병원 어려운 운영난 타개위해 김성진씨 요가습득과 정신치료와 물리요법 겸하기로 하다.
8) 도로 포장 공사비 추가를 재무부 주관하에 처리하도록 하다.

9) 북일면 이리시 편입을 사무적으로 신촌지부에 알아보기로 하다.

제85회 (정기) 원기57년(1972) 9월 29일

1) 원광고등학교 2부제 신설 승인하다.
2) 야간부 교육대학원 신설추진 승인하다.
3) 원여상 박무영 백태옥선생을 정교사로 임명하다.

제86회 (임시) 원기57년(1972) 10월 8일 종법원 응접실

1) 원여상 학교건물을 점포로 대여 당국지시에 따라 사용금지에 대한 6백만원 정도를 상인에게 반상으로 은행에서 기체 승인하다.
2) 보화당 알라스카산 녹용 5백만원분 전북은행 기채 승인하다.
3) 영광지부 부설 건축물의 명의를 영광지부로 하지 않고 재단명의로 하는 것을 승인하다.

제87회 (임시) 원기57년(1972) 11월 23일 종법원 회의실

1) 한남동 대지를 국방부에서 매입의 건은 중앙교의회 의장단과 최종합의 추진하기로 하다.
2) 다대지부 대지건으로 140만원선에서 해결되나 그렇지 않을경우 재무부에서 속히 부담금 전액 수합토록 하다.
3) 화곡 선교소를 지소로 승격시키다.

제88회 (임시) 원기57년(1972) 11월 26일 종법원 회의실

1) 한남동 대지를 국방부에서 징발 매입을 국방부에 의의 신청을 제기하고 매수기간을 자동 연기내용의 여러 문제를 실무 책임자 송원철씨를 위임하다.

제89회 (임시) 원기57년(1972) 12월 28일 종법원 회의실

1) 동화병원 운영난을 2년후에는 풀릴 예정이지만 담장은 원광대학에 한의과가 신설 되었으므로 부속 의원으로 활용키로 하다.

제90회 (임시) 원기58년(1973) 1월 4일 종법원 회의실

1) 한남동 대지 매수 확정통지서가 나왔는데 증권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50%정도 감액을 무릅쓰고 즉시불로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처리하기로 하다.

제91회 (임시) 원기58년(1973) 2월 5일 종법원 회의실

1) 원기58년 전무출신 지원자 53명 승인하다.
2) 육영장학생 심의 승인하고 대학원 진학 및 전공과목 편입자를 승인하다.
3) 원광대학교 약3천만원정도 추가 경정 예산안 승인하다.
4) 원광여상 추경 예산안 승인하다.
5) 이리보육원 추경 예산안 승인하다.

제92회 (임시) 원기58년(1973) 3월 13일 종법원 회의실

1) 재단이사장의 명의변경 건으로 신임 교정원장이 총회시 교정위원회 인준을 받은 후로 미루기로 결정하다.
2) 재단인감 사건 수습위원회에서 찾으려고 하는 문서를 찾는데 재단에서 철회각서를 제출하여 준다면 문서를 반납하겠다고 하므로 이 문안을 승인하다.
3) 각 종립 학교의 1973학년도 예산안 승인하고 재단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장 사용 및 회의통과 범위와 일의 성격과 구분하여 시행할 것을 검토하기로 하다.
4) 원기58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예산심의 위원 선출하다.
5) 과장급 인사는 원의회에서 결정 승인하기로 하다.
6) 원기58년도 총회일정을 3월 29일 오전 10시 개최키로 하다.
7) 동산선원 건축자금이 준비된 대로 일층만 짓고 나머지 건축비가 마련되는 대로 다시 원의회 승인을 받아서 2층 짓기로 결의하다.

제93회 (임시) 원기58년(1973) 3월 21일 종법원 회의실

1) 봉덕지소를 지부로 승격하고, 선교소를 설치하여 교무를 배치하는 일은 엄격히 조사하여 교화를 중단하는 일 없도록 하다.
2) 원기5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다.
3) 제26회 교정위원회를 28일 오전10시 소집하기로 하다.
4) 학교법인의 세입 부족으로 만덕산 버섯 재배 수익을 편입 건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 한 후에 검토하기로 하다.
5) 동화병원의 어려운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광대학교 한의예과에 넘기느냐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시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보류하다.

제94회 (임시) 원기58년(1973) 5월 10일 종법원 회의실

1) 신설 선교소 교무 배치는 교무가 주재하여 교화를 원활히 할 수 있는가 여부를 조사한 후 승인하고 용각지부 인사는 현지의 실정 파악후 승인하기로 하다.
2) 처무규정 75조 사무실 집무규정을 개정, 결의 승인하다.
3) 교화문제연구소 설치는 인사, 예산, 운영 방안 등의 구체적인 시안 마련후 의론키로 하다.
4) 서울 보화당의 단독운영권을 하고 있는데 발족당시의 의도와는 멀기에 수도원, 책임자가 임석하는 가운데 다시 거론하기로 하다.
5) 서울기념관 수습위원 구성을 하여 나머지 일을 처리하다.
6) 동화병원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 5명 지명 구체적 검토 다음 원의회 승인토록 하다.
7) 법은재단 감사 이경순 사표수리 승인과 이병은 씨를 감사로 선정하다.
8) 빚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동산선원 증축 승인하다.

제94회 (임시) 원기58년(1973) 5월 10일

1) 인사에 관한 건은 신설선교소 교무배치에 있어서는 당무부에서 여부를 조사한 후에 승인키로 하

고 용각지부도 현지의 실정을 파악하여 다음 회의시에 승인하기로 하다.
2) 처무규정 75조 사무실 집무규정을 개정 통과하다.
3) 서울기념관 수습위원 구성문제는 ①신탁은행 장부처리로 이철행 정도윤 박대성 김상익 제씨가 위원이 되고 그 회계에 마원종씨가 선정되었으며 ②기념회관에 관한 일은 상무진에서 좀더 연구 조속히 일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결의하다.
4) 동화병원 운영을 교정원장이 병원운영 대책위원 5명을 지명하며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현안을 내어서 다음회의에 승인토록 하다.
5) 법은재단 감사에 이경순씨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이병은씨를 내정하다.
6) 동산선원 증축은 빚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증축을 승인하기로 하다.

제95회 (임시) 원기58년(1973) 5월 19일 종법원 회의실

1) 서울보화당에 관한 기관의 책임자 회의에서 결정짓도록 결의하다.
2) 남한강 호안 매립 공사문제는 위원을 정하여 구체적 복안을 조속히 수립 본 회의에서 추진여부 방법을 의논키로 하다. 위원 : 정광훈 이철행 김윤중 이건훈 정도윤 김인용
3) 서울기념관 수습 잔금 거출은 이미 약속어음으로 약속된 금액이니 잔무 처리위원이 노력하여 받도록 결의하다.

제96회 원기58년(1973) 5월 26일 종법원 회의실

1) 원광대학교 시설기준에 의한 학교부지 확보건으로 원에부 앞 밭 2,118평을 학원 재단의 명의로 등기이전 하기로 하다.
2) 남한강 호안 공사를 수도원에서 공사하도록 하고 교섭위원을 교정, 감찰 양원장과 원대총장, 재무부장으로 정하다.
3) 서울기념관 수습할때 훈련원에서 2백만원의 차용문제에 있어서 기금 2백만원만은 반제하기로 하고 각 기관에서 수금된 것을 독촉하여 받도록 하다.

제97회 원기58년(1973) 6월 9일 중앙총부 사무실

1) 서울기념관 부지 호안 매립공사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일을 조사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교정위원회 개최하여 공사추진 여부 결정하기로 하다.
2) 원광대학교 교수 6명의 신규채용과 승진 발령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3) 불갑, 칠보 양지부 교무 발령 승인하다.
4) 원광대학교 74년도 신입학생 정원을 390명의 증원 조정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5) 양정원을 건축하여서 기관으로 인정하여 줄 것과 인사발령에 대한 요청 문제를 총무부에서 더 조사하여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보류하다.
6) 무주교당 장소의 문제로 보화당에서 80만원 차용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원의회에서 심의 할 것이 아니라 행정 당국에서 처리하기로 하다.
7) 동화병원 운영 대책 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승인하다.

제98회 (임시) 원기58년(1973) 6월 16일 종법원 회의실

1) 정석덕씨를 중앙수양원 부원장으로 승인하되 원기57년도로 소급발령하기로 하다.
2) 한국불교회 가입 예산비의 원기58년 예산은 예비비에서 쓰고 추경예산 세우도록 하다.
3) 남한강 호안 매립 공사는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일치를 보았고 공사추진 가부는 교정위원회 결정을 보도록 하다.

제99회 (임시) 원기58년(1973) 6월 24일 사무실 응접실

1) 원불교 서울회관 기성회 회칙을 「제20조를 교정 위원회」라고 수정하고 24조는 본회칙 개정은 상임위원회 결의에 의한다를 「결의에 의하여 원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원안을 수정하여 승인하다.
2) 남한강 호안 매립공사 계약에 관한 건은 원불교 서울회관 기성회에 계약관계를 위임하다.
3) 재단이사장 인장사용시 사무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사 계약은 회장 정광훈씨가 대행하기로 승인하다.
4) 원불교 사전은 수위단 교서 감수진의 감수를 거쳐 발행하도록 하다.
5) 원여상 당좌 대월로 300만원 내에서 학교에서 책임지고 거래하도록 승인하다.
6) 묘량 임야를 산림법과 해룡학원 재단으로 넘어 갔을때 사무적인 처리문제 등을 검토하여 간부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다.

제100회 (임시) 원기58년(1973) 7월 7일 사무실

1) 서울 회관에 대한 인가 소유권 재산권 관리 및 처분권 일체를 수도원에 일임하다.
은행채무의 제반 의무만은 수도원에서 책임하되 그외 일체 채무는 부담시키지 않음 등의 각서를 엄수 이행할 것을 원의회의 결의 거쳐 승인하다.

제101회 원기58년(1973) 7월 11일 종법원 회의실

1) 남한강 호안 매립 공사의 정식공사의 하청비와 잡비와 남한강 사건으로 인한 지방 부담액 또는 압수금 등의 상세한 금액을 종합하여 판출비용은 다음 기회에 의논하고 잡비는 수도원외 기관 등지에서 거출하여 쓸 것을 결의하다.
2) 남한강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고발 건은 서울회관 기성회에서 맡아 처리하되 법무위원과 외무위원과 재무부장이 중심이 되어 해결하기로 하다.
3) 재단법인 원불교 미국 이사회 설치를 승인하고 이사진 사령에 대하여는 나성교당의 내신서에 의하여 사령하기로하고 재가임원도 교화에 필요하다면 사령장을 발급하기로 하다.
4) 인사문제에 있어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102회 원기58년(1973) 7월 26일 종법원 회의실

1) 재단 서류를 찾는데 드는 비용은 추경예산으로 승인받고 문서는 찾아오도록 하고 언론기관은 사태 따라서 대처하기로 하다.
2) 한남동 대지 문제는 수도원측과 상의하고 법적으로 결격 사항이 없으니 지불치 않도록 하고 만약에 지불하게 되면 수도원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장인을 사용하기로 하다.

3) 기관임원 하계훈련은 총부 기관에서 공사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다수 참가하도록 승인하다.
4) 인사문제는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102회 원기58년(1973) 8월 15일 종법원 회의실

1) 재단인감 건 진술은 사실적인 경위서에 따라서 하고 진술이나 여기에 대응할 장부처리는 참석한 전원이 위원이 되고 실무처리 위원으로는 재단상무 이사인 정도윤씨 총무부장 김인철씨가 주가되어 진술 처리하기로 하다.

제103회 (임시) 원기58년(1973) 10월 5일 종법원 회의실

1) 교화문제 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하되 규정은 이광정 조정근 김윤중 유기현의원이 검토한 후 규정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키로 하다.
2) 예산심의 위원은 59년도 재무부장 이철행 조정근의원이 예산심의 위원을 선정하여 다음회의에 승인받도록 하다.
3) 기장지소를 지부로 승격, 합천과 팔봉은 지소로 설치할 것을 승인하고 앞으로는 신청서에 순교감 2명 이상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다.
4) 김선지행씨를 양정원 파견 교무로 발령하다.
5) 완도출신 김도관을 전무출신으로 승인하고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훈련 받은 후 사령하기로 하다.
6) 수도원 잔여 대지 건에 관하여 수도원 원장과 재무부장 이철행 송원철 제씨가 실정 파악 서류를 하여 주든지 적의히 처리키로 하다.
7) 완도 농장 회사를 받을 것인가에 관해서 가족 관계 등을 알아본 후에 여부 결정하도록 하다.
8) 만덕산 표고버섯을 직접 단독 경영 문제에 있어서 원기59년도 예산심의 위원이 상세하게 조사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제104회 (임시) 원기58년(1973) 10월 19일 종법원 회의실

1) 남한강 개발 주식회사의 68% 주권을 양도하지 말고 운영권만 넘기도록 원칙 정하고 사무적인 문제를 실무진이 적으히 처리하기로 하다.
2) 원여상 학교부지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재단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은행 700만원 차입할 것을 승인하다.

제105회 (임시) 원기58년(1973) 11월 12일 종법원 회의실

1) 신탁은행 부채 상환을 수도원에서 책임지기로 하였으니 수도원장에게서 처리기로 하다. 위원 : 정광훈 김윤중 이철행 이건춘 송영봉 김근수 정도윤
2) 남한강 매립 공사장 주변의 하천 부지의 건은 수도원에서 취득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기로 하다.
3) 동산선원 전답 매매 건은 좀더 시세를 관망하기로 하다.
4) 원기59년도 예산 위원 정광훈 김윤중 김인용 이철행 조정근 정도윤 이병은 송원철 정성숙 제씨를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106회 (임시) 원기58년(1973) 11월 17일 종법원 회의실

1) 신탁은행 부채 상환의 건으로 교정원장과 감찰원장이 다시 수도원장과 상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한편 각 기관의 서무책임자 회의를 하여 현금 융통을 협의키로 하고 융통될 경우 수도원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하며 이자는 각 기관에서 비율따라 지불하도록 하다.

제107회 (임시) 원기58년(1973) 11월 20일 종법원 회의실

1) 신탁은행 부채상환은 재단이사장 명의로 4기관(원대, 원여상, 원고, 보화당)의 정광훈 김인용 이건춘 이철행 제씨와 정도윤씨의 책임하에 6백만원을 빚내서 상환하고 남한강매립 공사가 3개월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 이자는 그때 상의하기로 하되 신탁은행 부채 상환조로 들어가는 원금과 이자는 수도원에서 갚도록 하다.

제108회 (임시) 원기58년(1973) 11월 21일 종법원 회의실

1) 신탁은행 부채상환은 ①한남동 대지증발 매도금을 알아보아서 수도원장에게 신탁은행 부채를 전액 상환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우선 그 일부만이라도 감당하도록 요청하기로 하고 이일을 할 위원으로 박광전(김인용) 김근수 정성숙(이건춘) 이철행 김중묵 정도윤 제씨가 선정되었고 ②전회의에서 선임된 4人이 이리에서 우선 빚을 주선하여 갚도록 하되 합의서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결의하다.

제109회 (임시) 원기58년(1973) 12월 15일 종법원 회의실

1) 한남동 대지의 문제로 선금을 내어 분할하여 간 교도들 개인땅이 포함되어 있으니 교단의 이해득실만 생각하지 말고 수도원 부원장, 재무부장이 현지에서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다.
2) 사직지부장 동생의 회사토지를 인수 하기로 하다.
3) 원불교 미국내에서 수련대회 개최를 하여 포교 발전의 계기를 삼고자 국내외 교도가 60명 정도의 참석 여부를 지방에 조사하고 제반 문제 가능할 때 다시 의논하다.

제110회 (임시) 원기58년(1973) 12월 26일 종법원 회의실

1)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인재수급을 교단의 중대문제이며 선발에 대한 심사는 9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기59년도 지원자 심사를 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전무출신 규정안을 마련한 심사위원회 구성의 발기작업을 위임결정한 바 심사위원에 안이정 이공전 유병덕 조정근 김인철 이광정 전종철 박제현 김복환씨이다.
2) 교화재단 이사에 재가 7명과 출가 8명 감사 2명을 승인하다.
3) 교화문제 연구소 규정은 16조를 수정하여 통과하다.
4) 서울기념회관의 고발된 불법 건물문제 해결에 소요된 100만원 경비문제는 재무부와 기성회에서 4기관장과 상의하여 연대 보증하에 은행에서 기채하여 대치하고 이자는 내년예산에 반영하도록 결의하다.

제111회 (임시) 원기59년(1974) 1월 14일 종법원 회의실

1) 이리보육원 토지 매매는 보육원 책임자와 재무부장이 상의하여 처리하고 동일 가치의 재산을 전

환할 때는 간부회의에서 처리하고 원의회에 보고하여 승인 받도록 하다.
2) 백상원씨를 나성교무로 발령 이재성씨의 임지는 본인 만나 협의하기로 하다.

제112회 (임시) 원기59년(1974) 1월 31일 종법원 회의실

1) 한남동 토지건으로 길만 팔게 되면 토지가 나누어지고 곤란하므로 관계된 교도와 결의 내용과 적의 합의하여 국방부에 통보하고 어느 일정기한을 정하기로 결의하다.
2) 원기58년도 선학원 졸업인사는 3월초부터 부임토록 일제히 사령하고 그외 인사는 인사임면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사무당국에 일임하다.
3) 종로수도원 신축문제에 있어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현재 고발 사건에 관계되는 문제에 한하여 위임한다고 밝히기로 결의하다.

제113회 (임시) 원기59년(1974) 2월 21일 종법원 회의실

1) 원여고 기채를 승인하고 기채를 위하여 의안을 낼때에는 기채상환 계획서를 재무부에 제출하여 회의전 면밀히 검토한 후 기채 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다.
2) 원광중고등학교 교감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다.
3) 원광중고, 원광여중고 197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4) 육영장학생 선발에 있어 육영예산 관계로 순공비생중 선원생은 1년분 선비를 또 원대생은 대학의 자율경비중 20,000원을 본인이나 책임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순공비생 전원, 반공비생 전원, 한의과 지원생 전원, 생은자녀중 중학에 지원하는 은자녀에 대하여는 학교당국에서 재량으로 하기로 하고 그외 생은자녀도 원안에 의해 선발하다.
5) 영산성지 토지 매입에 따른 잔무처리 위원 승인으로 정광훈 김윤중 이병은 이철행 재부부장 육영부장 영산출장소장 영산선원장을 선임하다.
6) 영산성지 대각지 수로에 관한 건은 원기59년도 영산수입을 돌려쓰되 영산성지 토지 매입에 따른 잔무처리위원에게 공사 진행을 일임하다.

제114회 (정기) 원기59년(1974) 3월 21일 종법원 회의실

1) 원기59년도 총회 일정을 3월 26~31일로 확정하다.
2) 원기5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에 있어 의식수입을 100만원으로 올려 책정하고 세입부족액이라는 구좌를 차입금으로 고치고 그외는 원안대로 승인하다.
3) 교도를 단계별로 의무적인 훈련을 적극 찬성하나 현행 근행법을 개정하게 되므로 수위단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절차 거쳐 실시하기로 하다.
4) 원기59년도 합동 회갑식을 가을에 거행하기로 하되 안건을 교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5) 국제 수련대회 기념표 준비에 참석하는 분에게 일만원 더 거출하고 교단에서는 교무부 주관하에 각 기관에서 성금을 걷도록 하다.

제115회 (임시) 원기59년(1974) 4월 9일 종법원 회의실

1) 인사건으로 수산의 유종신과 원대 발령자에 대하여 원대근무로만 발령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다.

2) 육영재단을 중심으로 교화법은 재단의 후원기관으로 개원할 것을 승인하고 사장에 육영부장이 취임키로 하다.
3) 해룡학원 재단의 본교 측 이사가 2/3 이상일 경우는 영광임야를 해룡학원으로 넘기고 앞으로 명의가 다른 본교의 재단으로써 사무적인 명분을 밝혀가도록 하다.
4) 총부 수도원 신축하는 것을 승인하다.

제116회 (임시) 원기59년(1974) 4월 19일 종법원 회의실

1) 원광원 기관 명칭을 원광원예원이라하고 4대 봉공회의 기관 설치를 인정하고 산업부를 총부농원으로 고쳐 부르며 양정원은 더욱 조사하여 설치여부 결정 하기로 하다.
2) 봉황선교소를 지부로 승격하고 강화지소를 설치하고 제기동 선교소는 지소 설치로 보류하다.
3) 군종 장교 파견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여기에 따른 기타문제는 간부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4) 원광대학교 내에 체육보건전문 학교를 설립할 것을 승인하다.

제117회 (임시) 원기59년(1974) 5월 10일 종법원 회의실

1) 한국종교인협회 및 한국 불교회에 적극 참여를 피하고 화합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하다.
2) 인사를 원안대로 승인하고 속초 선교소 교무배치는 현지 답사후 교무부에서 교무 주재여부를 결정하기로 일임하다.
3) 기숙사 식당을 정화원 뒷터에 신축하다.

제118회 (임시) 원기59년(1974) 5월 18일 종법원 회의실

1) 신탁은행 중도금 문제 상의하다.
2) 원광고등학교 300만원 기채 승인하되 상환계획서를 갖춰 내도록하다.
3) 교화사업회 박화선씨를 이사로 승인하다.

제119회 (임시) 원기59년(1974) 5월 23일 종법원 회의실

1) 기숙사 식당을 보은원과 정수장사이에 신축키로 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현장에 가서 결정키로 하다.
2) 교단 60년대를 향한 교화 4대운동(연원지도, 교화단, 교당, 문화봉사교화)을 전개하는 원칙은 승인하다.
3) 교당설립 원칙조례는 설치 규정을 정식 법규로써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며 교화사무상 필요한 사무지시는 당무부에서 적의히 하도록하다.
4) 교당 비치 도서는 교서를 모두 비치하도록 한 필수도서는 권장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하다.
5) 지소설치 지부승격은 헌규대로 시행하며 제기동 선교소는 지소 설치할 것을 승인하다.
6) 이종명선생은 원고교무로 김성철, 양정리선생은 원광고등공민학교로 사령 승인하다.
7) 구조실 보수에 대한 추진위원으로 김홍철, 서대인을 선임하다.
8) 원고 부지 3평을 이리 공단도로 확장공사에 매도하기로 승인하다.

제120회 (임시) 원기59년(1974) 6월 7일 종법원 회의실

1) 인사문제는 원안대로 승인하다.
2) 박광진선생을 원광중학교 교장으로 승인하다.
3) 추부, 무주, 남부민, 만경, 김천, 장항, 경주, 정릉, 삼천포, 수원, 청파 등 11개 교당에 지소 설치할 것을 승인하다.
4) 원광사 사옥의 건으로 원여고와 원광사의 실정 잘 감안하여 해결하고 9人의 소위원회 구성하다.

제121회 (임시) 원기59년(1974) 7월 5일 종법원 회의실

1) 이사 임기만료에 당연직 이사엔 이사장과 상무이사는 관계 당국에 내신하고 나머지는 수위단회 개최될 때 선임하기로 하다.
2) 원광사 사옥이전의 건으로 소위원이 계속검토하고 고문 3명 선정하여 이 문제 해결 위임하다.
3) 고등학교 평준화 작업으로 문교부 당국에서 지시한대로 이행하도록 하다.
4) 필동선교소를 중구 지부로 교당 변경하여 승격하다.
5) 총부구내에 건축허가를 조사해보고 진견주씨에게 통고하여 주기로 하다.
6) 동산선원내의 숙소이전 승인 건으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부를 재무부에서 조사하여 승인토록 하다.

제122회 (임시) 원기59년(1974) 7월 23일 기획 상황실

1) 시카고에 김성진교무 부교무에 최응진씨 로스엔젤레스교무 유수일씨, 부교무 박성기씨 발령하기로 하다.
2) 원광사 사옥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8월 20일내에 원의회에 회부 결정하기로 하다.
3) 전주보화당의 진출을 승인하되 시기 규모 방법 등은 보화당 책임자에게 일임하다.

제123회 (임시) 원기59년(1974) 8월 27일 종법원 회의실

1) 중앙훈련원 원규 더욱 검토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다.
2) 원광 고등학교 기채 승인하다.
3) 원광중 고교 인사는 원안대로 승인하다.
4) 보화당 기채 승인하다.
5) 합동회갑식 거행의 날자 및 진행계획을 당무부에서 주관 시행토록 하다.
6) 인사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다
7) 감사일정은 감사대상기관과 더 절충 당무부에서 집행토록 하다

제124회 (임시) 원기59년(1974) 10월 2일 종법원 회의실

1) 10월 9일 행사에 있어 세계평화 특별기원법회와 성지순례라는 대전제하에 실시하며 대회임원은 법교단적으로 조직하며 강연을 겸하는 방법은 고려하기로 하며 영모전 광장에서 하기로 하다.
2) 원광대학교 전임강사로 김대현 이재성선생을 뉴욕교무로 백상원선생을 사령하기로 결의하다.
3) 청주선교소를 지부로 승격하고, 지소설치 지부승격 신청은 접수하여 년중 1회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다.

4) 기장지부 건물 매도를 허가하다.
5) 서울 기념회관 부채 상환문제는 다루기 위해 영산에서 이공주교무, 박광전교무, 교정 감찰 양원장이 종법사 모시고 대책 마련하실 수 있도록 주선하기로 하다.
6) 진견주씨 건축 신청허가 승인하다.

제125회 (임시) 원기59년(1974) 11월 12일 종법원 회의실

1) 원기60년도 예산안 수립위원회 위원 김근수 서대인외 11명으로 구성하다.
2) 경제 사업에 관한 건으로 1. 회사금품통제에 있어 ①거교단적이거나 교단사업 방침외에 필요할 때는 원의회의 승인에 의하여 시행하고 ②교정원장은 결의사항을 교당 및 기관에 통보 철저 이행토록 하며 ③모금운동이 마쳤을 때는 교정원장에게 그 전말을 보고 2. 사업통제에 있어서는 구비서류를 원의회에 제출승인 받도록 하다 3. 원기60년 사업은 모두접수 사업순위를 결정하기로 하다.
3) 원광사 사옥 이전에 따른 임대료에 대한 이자는 원여상에서 부담하고 그 이후 문제는 원의회에서 책임하여 다시 의논하기로 하며 300만원 기채할 것을 승인하다.

제126회 (임시) 원기60년(1975) 1월 13일 종법원 회의실

1) 완도농원 기관 발족을 승인하고 다음 회의시까지 원규작성 통과후에 인사 등을 결정하기로 하다.
2) 만덕산 농원의 사업계획과 기채는 재무부에서 엄밀히 조사후 승인 여부 결정하도록 일임하다.
3) 한남동 매립공사가 완료되어 등기이전 되었으므로 수도원에서 주관하고 교정원의 협조로 수도원 운영위원회를 소집 사업방향을 결정하도록까지 제반 기초 자료를 정리 교정위원회나 수위단회에서 방향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비 나머지 처리하다.
4) 정화사 회사금 모집허가를 승인하다.
5) 기념관 관리 조례를 통과하되 제4조 단항을 제하기로 하다.
6) 원기59년도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위원회 구성하되 양 부원장과 총무부장이 구성토록 일임하다.

제127회 (임시) 원기60년(1975) 2월 10일 종법원 회의실

1) 대통령 내방 만전 기하고 환경 미화에 힘쓰도록 하다.
2) 완도농원 원규는 재무부장 총무부장 전성완선생이 좀더 심의 성안 보고토록 위임하고 완도농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다.
3) 영산성지와 총부에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승인하고 기획담당 부원장 경제담당 부원장을 선임하여 추진토록 하다.
4) 해외 교서 보내기운동을 전개하도록 승인하다.
5) 대종사님 십상 성화제작 회사자 10구좌(100만원)를 모집할 것을 승인하다.
6) 이리 보육원 예산결산서 승인하다.
7) 불갑지부 논 252평 매도한 것을 추인하다.
9) 원기60년도 육영장학생 선발에 교육부의 자금 사정과 장학생 지방실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 선임 선발을 위임하다.
10) 중앙요양원 신축을 승인하다.
11) 원여상 원부채 200만원과 추가부채 800만원에 대한 기채를 승인하다.

제128회 (정기) 원기60년(1975) 3월 15일 종법원 회의실

1) 원기60년도 예산안 무수정 통과 승인하다.
2) 원기60년도 총회 일정심의 3월 26~30일로 결의하다.
3) 인사에 관해서 제안안을 승인하다.
4) 원광대학교 교직원 채용 및 승진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5) 영산 재방언 확장공사에 있어 영산방조제를 확장하기로 하되 그 시기와 방법 등을 재정담당, 기획담당 부원장과 법무실장에게 일임하다.
6) 고창 간석지사업 추진 여부를 조사하는 기초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일 경우 허가를 원할 수 있도록 하다.

제129회 (임시) 원기60년(1975) 4월 4일 종법원 회의실

1) 인사를 제안대로 승인하다.
2) 총부에서 동화병원까지 교단 소유의 대지에 건물 신축 신청은 허가하지 말고 부득이한 기존건물에 개축을 하기로 하다.
3) 남한강 매립지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위원 선임하였으며, 관리와 경비는 이리보화당에서 맡기로 하다.

제130회 (임시) 원기60년(1975) 4월 18일 종법원 회의실

1) 미국 및 해외포교에 대하여 ①해외포교를 위한 특설기구를 설치하기로 하며 ②미국내의 각 주재단을 통어할 연합재단을 설립 ③미국내에 총부출장소를 설치키로하고 그 규정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위원을 위촉하다.
2) 뉴욕주 재단 설립을 추인하다.
3) 한국불교협의회 이사에 서울사무소 사무장 박정훈교무를 선임하다.
4) 영산 제2방언답 등기를 영산출장소와 영산선원에 그 비용담당하여 등기 이전하도록 하다.
5) 보화당 제약사 공장 증축 승인하다.
6) 동산선원 기채 및 회사 모금을 승인하다.
7) 전무출신 지원자 승인에 있어 종법사 특인의 결재를 얻으면 불구자라도 지원 가능하니 재가를 받을 경우 전무출신 승인하기로 하다.
8) 한국종교협의회와 한국불교협의회에 관한 문제는 수위단 전문위원회에서 의논하여 참여 방향 정하기로 하다.
9) 아세아 종교인 대회 준비 위원회 준비위원 18인으로 구성하다.

제131회 (임시) 원기60년(1975) 5월 28일 종법원 회의실

1) 인사를 원안대로 승인하다.
2) 캐나다 재단에 관한 건으로 박성철교도 이북방문에 가지 않도록 종용하고 이사진 해체하고 새로 구성하기로 하다.
3) 원고·원여고 기채에 대하여 간부회에서 승인하였으니 추인하기로 하다.
4) 동화병원를 원대한의대 부속병원으로 재 개원하되 운영은 공익부에서 책임하도록 하다.

5) 동화병원을 원광병원으로 개칭하고 원규를 심의 수정 통과하다.
6) 해룡학교 재단 이사장 처리문제는 교정원 양부원장과 법무실장을 전권위원으로 선임 교당과 해룡학원간의 사무한계와 이사장 사의에 대한 처리 등을 일임하기로 하다.
7) 전무출신 지원자 김재훈씨를 승인하다.
8) 황청원씨를 입양시키고, 양노원 실무자들이 실정을 보고하여 관심 갖도록 하며 양노규정을 성안토록 하다.

제132회 (임시) 원기60년(1975) 6월 23일 종법원 회의실

1) 인사를 원안대로 승인하다.
2) 완도와 구례선교소를 지부로 승격하고 담십리, 홍천선교소를 지소 설치할 것을 승인하다.
3) 합동회갑식을 가을에 거행하고 재가 대상자는 교무의 추천에 의해 참여키로 하다.
4) 영산선원 중등부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제반문제를 위원에게 일임하다.
5) 돈암동 재산 처분 매도한 것을 추인하고 법당 신축시 구체적 계획서 첨부하여 신축허가서 승인받도록하다.
6) 전주양노원 건물 신축의 예산에 있어서 부득히 초과할경우 자체내에서 적의히 해결하고 결과 보고하도록 하다.
7) 서울 보화당을 학교 법인체로 하고 정관개정은 원광대학교 부설 체육전문학교 인가에 따른 정관개정과 같이 이사회 결의를 얻어 개정토록 하다.
8) 구조실 보수에 있어 교화부에 사적유물 관리위원을 조속히 위촉하고 그 위원과 의논하며 원칙 결정을 하기로 하다.
9) 유일 정미소 임대 여부 및 환경정리에 대하여 김인용선생과 당무자가 적의히 논의토록 하다.
10) 모원회 단체 설립여부에 대하여 수위단회 상정 결의하다.

제133회 (임시) 원기60년(1975) 7월 3일 종법원 회의실

1) 미주교령 뉴욕교감 도미에 있어 환송회를 갖고 교화부와 총부기관에서 분담키로 하다.
2) 알봉 묘지 표석의 건을 총무부와 재무부가 협조하여 추진하기로 하다.
3) 전주 보화당 약방개설을 위하여 3천만원 기채를 승인하다.
4) 재경 모원회 승인하고 주관부처를 정하기로 하다.

제134회 (임시) 원60년(1975) 7월 19일 종법원 회의실

1) 인사에 있어 원안대로 승인하다.
2) 중앙훈련원 신축 기금회사 모금 승인하고 구체적 방안은 교정위원회를 거쳐서 시행하기로 하다.

제135회 (임시) 원기60년(1975) 8월 14일 사무실 응접실

1) 원광대학 증과 증원 신청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2) 원광여중 종합고등학교 교사 이전 각서를 제출하고 제반문제는 이철행 정도윤 이건춘씨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3) 원광사 사옥 이전시 잔금처리는 위원이 더 연구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다.

제136회 (임시) 원기60년(1975) 9월 30일 종법원 회의실

1) 인사건으로 김법연선생을 혹석동 교무로 김현선생은 간부회의에 위임하기로 하다.
2) 원광대학교 승진심의를 원안대로 승인하다.
3) 양정원 설치를 승인하되 입원료는 교단에 회사하겠다고 결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하다.
4) 학원재단 개정안을 재단의 감사진과 총무부장이 검토하여 개정하도록 일임하다.
5) 원대내 교육대학원 설치 원안을 승인하고 문교부에 신청하기로 하다.
6) 회사된 토지를 원여중에 이전등기하고 신축사업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로 결의하다.

제137회 (임시) 원기60년(1975) 10월 22일 회의실

1) 대전보화당을 개설하기로 하고 당규는 양 부원장과 공익부장이 심의토록 일임하며 전무에 한정수씨를 임명하기로 하다.
2) 교구활동 잠정조례를 승인하다.
3) 영산방조제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되 영산출장소와 선원에서 비용 담당하고 모자라는 비용은 방조제내의 토지 소유주가 부담하기로 하다.
4) 남한강 아파트 입주자의 고발 건은 본 재단 명의로된 입주금을 반제하되 매도할 때까지는 남한강 사업에 임시 투자하고 매도될 때는 반제하는 형식으로 처리키로 하다.

제138회 (임시) 원기60년(1975) 11월 1일 종법원 회의실

1) 원광대학교 체육전문학교 설립자금은 재단에서 제공하고 모든 문제는 학교측에서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받기로하다.
2) 교구활동 규정 수정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하다.

제139회 (임시) 원기60년(1975) 11월 24일 교정원 회의실

1) 남한강 아파트 입주금 관계에 대한 건의 종로경찰서 출두는 기획, 재정, 재무부장이 하기로하고 재정염출은 교정원에 일임하기로 하다.
2) 이리보육원을 현 위치에서 신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지를 전환하기로 하다.
3) 지방세에 대한 종교법인체에 관한 법률과 세법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답변토록 사무처에 일임하다.
4) 전무출신 지원자 심의 규정을 19조 삭제키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제140회 (임시) 원기60년(1975) 12월 20일

1) 전북은행 부채 반제에 있어 담보물을 재조정하고 5,000만원을 기채하여 전북은행 부채를 반제하고 신탁은행 지불표를 준비하기로 하다.
2) 남해교당의 전세금의 부족한 액은 교화부에서 주관 서로 협조하되 부족액을 교정원에서 의논키로 하다.

제141회 (임시) 원기61년(1976) 1월 27일 회의실

1) 서울 중구교당 담보 설정 기채에 있어 ①해방지망 임원의 반재결의서와 ②반재능력을 확인하고 ③자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의 가치에 대하여 담보 설정할 수 있도록 결의하다.
2) 원기61년도 예산위원 13인을 선정하다.
3) 미국에서 국제수련대회 개최할 것을 승인하고 추진키로 하다.

제142회 (정기) 원기61년(1976) 3월 19일 교정원 부원장실

1) 원기61년도 교정 계획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하다.
2) 총회 일정 확정하다.
3) 인사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다.
4) 지부승격 지소설립 및 선교소 설치는 간부회의에서 자세히 조사하여 심의 확정하도록 일임하다.
5) 원기6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여 예산위원회에 일임 관계회의에 성정토록 심의하다
6) 훈련사업회 구성방향과 기금 회사인의 호선에 있어 중앙훈련원 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필요한 시기에 제출키로 하다.
7) 중앙훈련원 건축설계는 중앙훈련원 건축추진위원회에서 의론키로 하다.
8) 훈련원 부지 확정은 추진위원장과 정성숙선생이 수도원측의 원장과 협의하기로 하다.
9) 훈련통신 발행은 자체에서 경비 및 편집 등을 책임지고 건축과 훈련은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다.

제143회 (임시) 원기61년(1976) 3월 23일 교정원 회의실

1) 인사의 건은 별지 원안대로 심의 결정하고 선교소에 교무 배치여부는 간부회에서 결정하도록 일임하다.
2) 온산사업회 정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고 통과하다.
3) 온산사업회 운영위원 보선에 있어 회장과 운영위원 10인 감사 2인을 선임하다.
4) 구조실 수호와 사용문제를 유물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하도록 하다.
5) 천안교당 건축허가와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교당 요인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받고 건축 승인하기로 하다.
6) 돈암교당 기채승인은 미비한 서류를 갖추어서 간부회의 결의에 따라 승인하도록 하다.
7) 영광 잠축기술 공민학교 인수에 대한 조사위원 선정하여 문제점 조사 검토하기로 하다.

제144회 (임시) 원기61년(1976) 3월 27일 교정원 부원장실

1) 산업기관 육성에 있어 훈련강화는 더욱 검토하되, 임무진행 중간에 나온 사람들에 대하여 재교육 대상자로 수계농원과 만덕산농원과 영산출장소 삼동수양원으로 정하다.
2) 인사에 있어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다.
3) 교금배정금 설정의 건은 보화당을 연간 수입금 물가상승원을 제한 50%로 하며 지방 의식수입을 교금화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반문제는 재무부와 기획실에서 더 검토하여 관계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다.

제145회 (임시) 원기61년(1976) 6월 7일 교정원 회의실

1) 인사건에 있어 원안대로 심의 확정 결의하다.
2) 중과세 세금문제는 실무자와 관련된 분과 자문을 받을 분들과 숙의 선회하되 소유토지 착오문제는 실질적으로 맞도록 처리하기로 하다.
3) 원광병원 운영에 있어 원대에서 건물 신축시까지 부속병원으로 운영하고 이번 기회에 학교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교법인 토지를 종교법인으로 전환 하도록하다.
4) 유허일 선생 중앙수양원 입원 결의하다.
5) 교동지부 식당건축을 승인하다.
6) 원광중학교 교사 신축을 승인하고 재무부에서 현지답사키로 하다.
7) 동산선원 숙소 증축을 승인하고 재무부에서 현지답사키로 하다.
8) 원광대학 부속병원 신축 승인하되 재무부에서 현지답사를 하기로 하다.
9) 학교법인 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김윤중선생을 재임 결의하다.
10) 지사지소에 지부승격을 남춘천 선교소에 지소 설치를 승인하다.

제146회 (임시) 원기61년(1976) 7월 20일 교정원 부원장실

1) 해룡 기술교를 영산 이전여부는 소위원에게 일임하기로하고 소위원을 선정하다.
2) 인사에 있어 공항선교소에 교무서리를 발령키로 결의하다.
3) 이진명선생을 중앙수양원에 입양시키기로 결의하다.
4) 원대 학과 증설 및 공대 신설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문교부에 요청하기로 하다.
5) 동진주 법당신축을 승인하다.
6) 산업원 창고 신축을 승인하다.
7) 알봉 묘지문제는 재무부장, 총부부장, 기획실장이 공동묘지에 대하여 요구하며 교정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하다.
8) 은산 육영사업회 규칙 개정하고 운영위원 선임에 있어 제5조의 이사 10인은 12인으로 개최하고 위원 2인을 선정하다.
10) 부산보화당 식당 매입 승인하다.

제147회 (임시) 원기61년(1976) 9월 24일 교정원 회의실

1) 정화단 규정안을 제3조를 수정 심의 통과하다.
2) 대구원광한의원 설치를 승인하고 사장은 공익부장, 전무에 오성주 경이레 김원로를 사령키로 하다.
3) 전주보화당은 총부사업회의 직접 소위로 하기로 3년, 사장은 이철행을 사령키로 하다.
4) 제2대 2회말 결산과 원기62년도 총회 일정에 있어 제2대 2회말 시상은 원기62년도 가을에 하기로 하고 각 사업회별 시상은 3월 총회때 하고 일정을 교헌의 정한 바에 따라 하기로 하다.
5) 제안대로 광주에 총부 유지사업회에서 광주보화당 개설키로 하다.
6) 서울지역 세금 및 총세금에 대해 재무부에 조사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그 비용도 관련 그 기관에 부담하기로 하다.
7) 원대 한의대 부속병원 광주분원을 개설하기로 하다.

8) 원광병원 토지 교환에 있어 당무부에서 교지에 해당하는 대환 재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하다.
9) 원대 보건전문학교 임용 제청을 심의후 사령 승인하다.

제148회 (임시) 원기61년(1976) 10월 25일 교정원 회의실

1) 알봉묘지에 대해 묘지 육성위원 선정, 우선적으로 알봉묘지를 정리 장엄하도록 하고 협소하여 장래성이 없으니 그외 지역을 알아보아서 추진하기로 하다.
2) 학원재단 자체 부담금의 건으로 더욱 연구하여 교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3) 신탁은행 부채금 반제를 위해 전북은행에서 기채하기로 하다.
4) 구로동 선교소를 지소로 설치 인허키로 하다.
5) 이리 보육원 토지교환을 승인하다.

제149회 (임시) 원기61년(1976) 12월 4일 종법원 회의실

1) 한의대 부속병원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을 승인하고 이리에 설립하는 것은 종합 검토후에 결정하기로 하다.
2) 전무출신 지원자 심의위원을 선임 심사를 일임하고 결과 보고하기로 하다.
3) 중과세 대상지에 대해 토지를 재산 전환하기로 하다.

제150회 (임시) 원기62년(1977) 1월 22일 교정원 부원장실

1) 원기62년도 육영장학생 선발 건을 교정원장 감찰원장과 감찰 사무처장 교육부장 등에 일임키로 하다.
2) 원기62년도 세입 예산위원 선정 선임하다.
3) 경남교당 등기 이전에 따른 약속어음 제출하기로 결의하다.
5) 원광중고등학교 교장 열반에 따른 잔무처리가 실태파악을 위한 소위원 선정하여 일임하기로 하다.

제151회 (임시) 원기62년(1977) 2월 14일 교정원 부원장실

1) 원광 중·고등학교 운영체제는 ①단일체계로 하고 ②정광훈교무 사적을 개인명의로 적의히 처리하고 교정원장,기획부원장, 재정부원장, 상무이사 등 4명을 위원으로 선임 제반문제를 처리후 추인받도록 하고 중요문제는 본회의 상정하기로 하다.
2) 원광중고등학교 인사는 결의하고 하섬수양원 원장은 수위단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다.
3) 원광여자 중·종합고등학교 기채를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152회 (임시) 원기62년(1977) 3월 19일 교정원 회의실

1) 인사 건은 원안대로 통과 승인하다.
2) 원기62년도 세입 세출안 통과하다.
3) 중앙교의회 의원 배정에 각 교당의 재가의원 1명과 교정위원회 특선위원 12명과 중앙청년회전회장단 각 교구연합회 회장 등으로 배정하다.

4) 원대한의과 부속병원 설립과 장소물색은 위원을 선임 일임하다.

제153회 (임시) 원기62년(1977) 4월 28일 교정원 회의실

1) 미주교화의 문제로 나성교당 건물을 수리하고 교화부에서 주관 지원금을 염출하기로 한다.

제154회 (임시) 원기62년(1977) 5월 13일 교정원 회의실

1) 부산보화당 점포 매입을 승인하다.
2) 영산선원 대지 명의이전에 있어 10,000평중 7,000평은 재단명의로 3,000평은 해룡학원으로 합의 결의하다
3) 양정원 명칭을 이리수양원으로 변경할 것을 승인하다.
4) 교화사업회 이사와 육영사업회 운영위원과 법은사업회 운영위원 원안대로 통과 승인하다.

제155회 (임시) 원기62년(1977) 5월 30일 교정원 회의실

1) 교당규정 결격사유가 있는 7개선교소는 보류하고 20개 선교소는 교당으로 승격하다.
2) 하섬 수양원 원규 심의 원안대로 통과하다.
3) 박제인 전무출신 지원을 승인하고 교역자로써 승인하다.
4) 교화사업회 운영위원을 15~30명까지 두도록 결의하다.
5) 삼동수양원을 원불교 삼동수양원으로 고칠 것을 결의하다.

제156회 원기62년(1977) 6월 28일 교정원 회의실

1) 학교법인 정관 변경의 건을 심의후 통과하다.
2)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확보는 80년대까지 확보하겠다고 문교부에 보고하기로 하다.
3) 영산학교 및 영산교당 건축은 성지장엄계획 전체 종합계획속에 받아들여 검토하고 성지개발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제158회 (임시) 원기62년(1977) 9월 24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광대학교 78학년도 학생정원 조정안의 건 일단 문교부에 신청토록 결의하다.

제159회 (임시) 원기62년(1977) 9월 24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기63년도 예산 책정위원 15인을 선정하다.
2) 재단법인 이사 임기만료에 따라 박광전, 박장식 이사는 유임 결의하다.
3) 중앙훈련원 훈련사업회 운영위원으로 재가 14인 출가 13인을 위촉할 것을 결의하다
4) 전무출신을 위한 양방병원 개설추진위원 정하여 전결하기로 통과하다.
5) 교서 번역 위원회의 영역위원, 일역위원, 중역위원을 구성하다.
6) 권재홍 전무출신을 이의없이 승인하다.

제160회 (임시) 원기62년(1977) 10월 5일 교정원 회의실

1) 원불교 방송국 설립에 대한 청원문제로 차기에 더 연마하여 위원 결정 허가하다.

2) 윤순명교무 인사 이의없이 통과하다.

제161회 (임시) 원기62년(1977) 11월 11일 교정원 회의실

1) 전무출신 심사위원 11인을 선정하다.
2) 중앙총부 상주선원을 개설 통과하다.
3) 교화사업회 운영위원 7명을 증원키로하다.
4) 남녀 중고교 부교장 해임 통고하기로하다.
5) 교원임면에 관한 소위원 구성에 5인의 위원을 선임 승인하다.
6) 전문학교 교원 2인에 대해 임면 승인하다.
7) 교원 징계위원 9인과 재심위원 선정하다.
8) 영산선원 식비 인상하되 월 32kg으로 4말을 받기로 하다.
4) 원기33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동산선원 지원문제는 항목은 넣어 책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다.

제162회 (임시) 원기62년(1977) 11월 15일 교정원 회의실

1) 동산선원 농지대체 승인하다.
2) 해룡기술학교 수습위원을 정하여 해결하기로 하다.
3) 삼례교당의 문제로 현지 조사후 다시 결의하기로 하다.
4) 운봉 농지 농로에 대한 건으로 재무부에서 출장하여 확인해 보고 양도해 주기로 하다.
5) 의정부교당 대지 매입하기로 하고 당무부에서 실정을 알아보기로 하다.
6) 인천교당 대부 불하는 간부회의에 일임하기로 하다.

제163회 (임시) 원기62년(1977) 12월 1일 교정원 회의실

1) 영산 중등부 인가부터 내도록 실무진에 통보하고 야간 고등부 설치는 당분간 보류키로 하다.
2) 정화극장 문제는 이사장 이사 권재홍교장 김중묵교무 재무부장이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제164회 (임시) 원기63년(1978) 원기 21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기63년도 원광여자 중고등학교 1억 기채 승인에 있어서 주무 당국에 재산 해체하는 것은 승인해 주고 토지매도 및 처리는 다음 원의회의 결의를 얻어 하기로 하다.
2) 원광여중고교에 각각 당좌 대월 1,000만원을 승인키로 하다.
3) 구 정토회관 매도를 승인하다.
4) 동산선원 유지답을 재단 명의로 매입키로 결의하다.
5) 학교법인 종교법인 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감사 선임에 있어 서대인 이공전씨를 유임키로하다.
6) 헌공규정 통과에 있어서 교화부, 공익부, 재무부가 합동으로 연구 합의하여 어른들의 뜻 받들어 결의하기로 하다.

제165회 (임시) 원기63년(1978) 2월 3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기63년도 인사위원 9명 선임 통과하다.
2) 방송국 설립에 있어 회칙 통과하기로하고 소위원 구성은 간부회의 일임키로 하다

3) 보도 및 출판광고 윤리요강 위반시 원의회에 제소 심사처리 하기로 하고 윤리요강을 통과하다.
4) 총무 김재민씨 6층건물회사 이전에 있어 각서받고 인수하기로 하다.
5) 원기63년도 육영장학생 선발을 승인하다.
6) 서대준교무 교사로 승인하다.
7) 원광여고 교원임면 제청에 전직해임은 해임서 첨부하기로하고 승인하다.
8) 은산육영사업회 보선위원에 안이정, 김인용씨를 승인하다.

제166회 (임시) 원기63년(1978) 2월 23일 교정원 회의실

1) 미주교구 휴스톤 선교소를 합하여 9개선교소 설립을 인가키로하다.
2) 헌공자금 관리규정에 있어 목적만 수정하고 통과하기로하다.
3) 유지사업회 운영위원 15명을 승인키로하다
4) 영산선원 식당 신축 및 산업부 이전 장소 선정은 이철행 김윤중 총무부장이 현지 답사후 결정키로 하다.
5) 학교 교원 임용문제를 원안대로 통과하다.

제167회 원기63년(1978) 3월 24일 교정원 회의실

1) 원불교 교보 취급 조례를 교보 발행조례라하고 기타 공지사항을 넣기로하다.
2) 영산성지 가옥매입을 결정하고 기채 승인의 최종 날인은 환불처가 분명할때 하기로하다.
3) 재단법인 이사보선에 이병은씨를 선임하다.
4) 원광중학교 교사임면을 승인 통과하다.
5) 원광고등공민학교 주변 부지 재산대체를 승인하고 5명의 위원을 정하여 현지답사 후 결정하기로 위임하다.

제 168회 (임시) 원기63년(1978) 7월 21일 교정원 회의실

1) 교당승격은 교구장의 합의 의견서를 받는다는 조건부로 승인하다.
2) 원·여중고 교당에 있어 이건춘선생을 원여중교장 서리로 승인하고 서류갖추어 회람키로 하다.
4) 문화회관 승인하다.

제169회 (임시) 원기63년(1978) 9월 4일 교정원 회의실

1) 추계교역자 훈련을 원기63년 10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확정하다.
2) 원기64년도 예산위원 20인을 통과하다.
3)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 8천만원 기채 승인하다.
4) 이리보화당 기채 3,000만원을 승인하다.
5) 전주보화당 기채 3,000만원을 승인하다.
6) 서울보화당 당좌대월은 간부회에 일임키로 하다.
7) 만덕산 건은 간부회의에 일임하고 위원선정 타협키로 하다.

제170회 (임시) 원기63년(1978) 10월 19일 교정원 회의실

1) 뉴욕교당 기채 승인하다.
2) 전무출신 심사위원 11인을 선정하다.
3) 두가지 사업 ①헌공자금 회사자 제사 ②묘역관리를 목표로 가칭 의식을 발족 통과하다.
4) 교화사업회 운영위원 기존 30명에서 4명증원을 통과하다.

제 171회 (임시) 원기63년(1978) 11월 13일 교정원 회의실

1) 서울회관 건립은 시급하니 추진하고 예산은 차기 원의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다.

제172회 (임시) 원기63년(1978) 12월 8일 교정원 회의실

1) 인사건 문제로 중앙수양원 원장 권성천 겸직하고 총부기관 인사는 원안대로 통과하다.
2) 원광보건전문학교 인사는 원안대로 통과하다.
3) 선진문집 편찬위원회 상임위원 5인은 임기 3년으로 선정 통과하다.
4) 전북은행 기채 승인을 인허하기로 승인하다.

제173회 (임시) 원기64년(1879) 1월 25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기64년도 인사위원 11인 선정하다.
2) 하섬수양원 변산분원 설치 승인하다.
3) 고현, 군위, 의성, 청도, 화순, 삼랑진, 서목포 7개선교소 설치 승인하다.

제174회 (임시) 원기64년(1979) 교정원 회의실

1) 해룡농업기술학교 자동차학원 개설에 있어서 서류접수하고 7인위원 선정 심사 결정토록 하다.
2)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원 차관 융자를 승인하다
3) 원광여중고 당좌 대월 기채를 승인하다.

제175회 (임시) 원기64년(1979) 3월 10일 교정원 회의실

1) 영모원 정관중 제18조만 삭제하고 원문그대로 통과하다.
2) 원광대학교, 전문대학, 원고, 원중, 원여중고 교원 임용을 인증하다.
3)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 이리보화당, 전주보화당 기채 승인하다.

제176회 (임시) 원기64년(1979) 8월 21일 교정원 회의실

1) 차황, 남천, 화호 선교소를 인가하다.
2)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개설 승인하다.
3) 전북은행 기채 1,800만원을 추인하다
4) 유지사업회 운영위원 23인 선임하다.
5) 원기65년도 예산 위원 19인을 선임하다.

제177회 (임시) 원기64년(1979) 10월 18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기65년도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위원 11인을 새로 선임하다.
2) 원기65년도 중앙교의회 의원 숫자 272인을 선정키로하다.
3) 성남보화당을 서울보화당 지점으로 설치 인가키로하다.
4) 사립학교 교원 임원 승인하다.
5) 원광여중 80학년도 학칙 변경 승인하다.
6) 원광여중고 기채 승인하다.
7) 서울기념관 재산세는 내년도 예산에 넣기로 하고 서울기념관 추진키위한 2억 기채를 승인하다.
8) 묘지법인 설립 정관의 초안을 검토 연구하여 위임 통과하다.
9) 복지법인 설립일을 계속 추진하고 간부회에 위임 통과키로 하다.
10) 원불교 의료인 협의회 구성을 승인하고 정관에도 회칙은 당무부에 위임하다.
11) 훈련원부지중 매입에 있어서 훈련원과 재무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하다.
12) 익산수도원 건축 추진위원은 22인으로 인증하고 건축도 시인하는데 서울회관 추진이 50%이상 진행되었을때 하기로 하다.
13) 수도원 운영위원 20인을 선임키로 하다.

제178회 (임시) 원기64년(1979) 11월 9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기금 4억 한도내 기채 승인하다.
2) 미주교구 연합재단 구성을 승인하고 이사 5인은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2인은 교구실정에 맞는 인물 선임키로하다.
3) 원기65년도 예산 2억6천2백9십만3천5백원을 원안대로 통과하다.

제179회 (임시) 원기65년(1980) 1월 11일 교정원 회의실

1) 선교소 설립인가는 간부회의에서 다시 검토하고 당무부에 일임하도록 하다.
2) 인사위원 11인 선정하다.
3) 교당숫자를 불려나갈 것을 전제로 청주와 춘천에 준교구 설치를 결의하다.
4) 훈련위원 10인을 선정하다.
5) 교립학교 원불교 교육의 원칙을 채택하고 교육부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자료수집과 교재 및 대안마련하고 당분간 현재대로 시행하게 하다.
6) 변산 제법성지 사업회 발족을 원안대로 통과하다.

제180회 (임시) 원기65년(1980) 5월 7일 교정원 회의실

1) 광안, 무장, 백운, 나주, 서동, 상주, 덕진, 장산, 장성의 9개 선교소에 교당 승격 인가하다.
2) 영모원 부원장에 윤치성교무 인사발령 결의하다.
3) 일본 교구 직제는 해외포교연구소와 수위단회 사무처에 연구 위임하다.
4) 일본 교구 후원회를 조직하고 후원금 마련하도록 하다.
5) 향원사업회 발족 및 운영위원 선출하고 회칙 무수정 통과하다.
8) 학교법인 이사 선출하고 소위원회 위원 4인을 선정 구성하다

9) 남원 지산향육원 인수 총부에서 5,000만원 남원교구에서 5,000만원으로 하되 총부 5,000만원은 향원사업회와 협의하여 지급토록 승인하다.

제181회 (임시) 원기65년(1980) 6월 16일 교정원 회의실

1) 해룡농업기술학교를 2월에 폐교하기로 하고 폐고신청서를 전남교육청에 내고 교산은 총부 재무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다.
2) 학원재단 산하 전무출신 임원 조례, 용금조례, 각급학교 교화조례 제정을 총무부, 재무부, 교화부에 일임하여 법조문 만들어 원의회에 상정하도록 하다.
3) 학원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이사회에 총무부장 참여시켜 정관개정, 이사개편, 인사건 등을 논의한 뒤 바로 본회의를 소집하여 승인 절차를 밟기로 하다.
4) 학원재단 산하기관 교원 임면을 승인하다.

제182회 (임시) 원기65년(1980) 6월 24일 교정원 회의실

1) 마산수양원 설립을 인가하다.
2) 남북로 확장에 따른 편입 용지 무상양여의 문제에 대토를 받게되면 받고 대토가 없으면 연말까지 확장포장하는 조건부로 양여하다.
3) 중앙총부 과장일동이 원의회에 대한 해명 요청을 의장이 해명하도록 하다.

제183회 (임시) 원기65년(1980) 7월 31일 교정원 회의실

1) 오산, 시흥, 개금, 물금, 후포, 여의도 선교소의 설립을 인가하다.
2) 원기65년도 2차 인사를 원안대로 승인하다.
3) 교화사업회 운영위원으로 27인과 감사 2인 선정하다.
4) 학교법인 원광학원 정관 개정안을 11개항을 수정 통과하다.
5) 원광대학교 인사를 원안대로 승인하고 원의회를 거친 후에 임용하도록 촉구하다.
6) 자선사업회 발족을 승인하며 회칙을 수정 통과하고 12인을 선정하고 감사 2인과 4인의 이사는 간부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9) 영모원 정관 2개조(11조, 14조)를 개정하다

제184회 (임시) 원기65년(1980) 8월 25일 교정원 회의실

1) 정화위원을 구성하다.
2) 교원 임면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3) 원광학원 관련 재단 재산 건과 학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을 구성하여 위원을 협의하기로 하다.
4) 교육차관은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승인하다.

제185회 (임시) 원기65년(1980) 10월 21일 교정원 회의실

1)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위원 11인을 선정하다.
2) 역촌, 장흥, 영양, 구미 등 선교소 설립 인가하다.
3) 법은사업회 운영위원 25인과 감사 2인을 선정하다.

4) 육영사업회 운영위원 25인과 감사 2인을 선정하다.
5) 은산재단 운영위원 13인과 감사 2인을 선정하다.
6) 원기66년도 예산위원 17인을 선정하다.
7) 재단 이사 보궐에 총부부장을 대내적인 당연직으로 하여 이보원 총무부장을 보선하다.
8) 이리 종합병원 인수에 따른 요건중 이사참여는 불가함을 결정하고 결정 대응책 마련을 위한 위원으로 4인 선정하다.
9) 진학심의 규정 수정 통과하다.
10) 서울회관 추진위원회 감사 2인을 선정하다.
11) 전주양로원 소유답을 양로원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을 인가하다.

제186회 (임시) 원기66년(1981) 1월 12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기66년도 인사위원 13인을 선정하다
2) 역전보화당 매입을 위한 1억5천만원의 기채를 승인하다.
3) 봉래수양원 원규를 무수정 통과하다.
4) 원불교 중앙신용협동조합 규정 심의를 위한 연구위원 11인을 선정하다.
5) 남원교당은 본래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하정리에 신설한 교당은 남원중앙교당으로 결의하다.

제187회 (임시) 원기66년(1981) 1월 27일 교정원 회의실

1) 의대부속병원 시설 확장에 따른 융자 승인하다.
2) 2대말 기념총회 및 대종사 탄생 백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 22인 선정하다.
3) 대각개교절을 훌륭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봉축위원회 구성 모범적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다.

제188회 (임시) 원기66년(1981) 5월 7일 교정원 회의실

1) 양덕, 초강, 도원, 인후, 증흥, 구서, 안락, 남원중앙, 현화, 백산, 신광, 반여, 송학, 강남, 북광주의 154 선교소의 설립을 인가하다.
2) 서울회관 건립 추진을 위해 기채를 승인하다.
3) 원불교 자선원 설립을 인가하다.

제189회 (임시) 원기66년(1981) 7월 11일 교정원 회의실

1) 금암, 산외, 이평, 신림, 도림, 용호, 도동 등 7개 선교소 설치인가하다.
2) 영암, 애월, 도순, 선교소 승격 인가하고 신암선교소는 자세히 보고하고 충주 선교소는 보류하다.
3) 대구 동명훈련원 설치 인가하다.
4) 한방병원 개설에 따른 서울회관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승인하다.

제190회 (임시) 원기66년(1981) 8월 26일 교정원 회의실

1) 방학선교소 영주선교소의 설치를 인가하다.

2) 불목요양원, 광주교구 소남훈련원 기관설치는 인가하고 공익부장, 훈련부장, 광주교구장 등이 운영, 관할, 인사권까지 결정하도록 위임하다.
3) 영산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 5인을 선정 추진하도록 하다.
4) 성지 장학사업회를 후원하기 위한 광주원광한의원 설립 인가하다.
5) 원광대학교 부속병원 담보 해제에 따른 신용기채를 제일은행 융자의 담보를 신용으로 승계하도록 인가하다.
6) 원광학원 정관개정 시안을 수정 통과하다.
7) 원기67년도 예산위원 19인을 선정하다.

제191회 (임시) 원기66년(1981) 10월 26일 교정원 회의실

1) 영산고등학교를 대학 진학 자격을 부여한 특수 각종학교로서 원광학원에 설립이 인가된다면 추진하도록 조건부 결의하다.
2)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80병상 신축허가 결의하다.
3) 원광고등공민학교 운영 건으로 82학년도 학생모집을 중지하고 유치원 설치문제는 더 의논하여 원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다.
4) 박장식 박광전 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재단이사를 다시 연임 결의하다.

제192회 (임시) 원기66년(1981) 11월 3일 교정원 회의실

1) 백한명 주무를 법은사업회 운영위원으로 선정하다.
2) 원기67년도 새교무 훈련기간 1년간으로 연장하기로 결의하다.
3) 원기6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후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하다.

제193회 (임시) 원기66년(1981) 11월 21일 교정원 회의실

1)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위원 11인 선정하다.
2) 원기67년도 인사위원 13인 선정하다.
3) 원광여자 중학교 인사를 승인하다.
4) 요양규정 개정안을 일부수정 통과하고 전무출신 요양 관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 7인을 선정하다.
5) 훈련사업회 운영위원 임기만료로 인해 출가 9인 재가 14인을 선정하다.
6) 통계규정 제정안을 더욱 연구하여 간부회의에서 제정하도록 위임 결의하다.

제194회 (임시) 원기66년(1981) 12월 28일 교정원 회의실

1) 효자, 팔복 선교소의 설치를 인가하다.
2) 원광대학로 정문부터 원예원까지의 도로를 금년내에 확장 포장하는 조건으로 하고 25m 계획선까지 부지 회사하기로 하다.
3) 원광대학교 재무위원 증원에 김윤중 이철행 정도윤 이사 3인이 재무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결의하다.
4) 광주한방병원 2억원의 기채승인과 이전 계획을 승인하다.

제195회 (임시) 원기67년(1982) 2월 18일 교정원 회의실

1) 영보, 사창, 염산, 은평, 노송선교소 및 제기보화당 설치 인가하다.
2) 인사에 있어 연산교무는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김은주교무는 보류하고 원안대로 승인하다.
3) 육영 장학생 선발에 있어 원안대로 선발 승인하다.
4) 대각개교절 기념행사에 일자가 제정되면 거교적 추진하기로 하고 계획추진을 6인위원 선정위임하다.
5) 학교법인 원광학원 감사에 백진한을 선임하다
6) 원광여자상업고등학교 설립과 교사신축에 다른 기채를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196회 (정기) 원기67년(1982) 3월 3일 교정원 회의실

1) 의과대학 부속병원 학교구내 부지에 신축을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결의하다.
2) 원광 중앙유치원 설치를 인가하다.
3) 광주한방병원 재산대체를 문공부 승인얻도록 추진 결의하다.

제197회 (임시) 원기67년(1982) 4월 27일 교정원 회의실

1) 구의선교소 설치 인가하다.
2) 원광대학교 기숙사 및 합숙소 건축허가 추인 결의하다.
3) 남원중앙교당 기채 승인하다.
4) 인도 뉴델리 세계종교자평화회의 참가 경비 조달 시안대로 결의한다.

제198회 (임시) 원기67년(1982) 7월 13일 교정원 회의실

1) 미주교구를 관리와 교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동부와 서부로 분활하다.
2) 중요인사의 건은 수위단회 의결사항이니 수위단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고 3인의 인사를 결의하다.
3) 학교법인 원광학원 감사에 서대인, 백진환 2인의 추인을 결의하다.
4) 원광고등공민학교 부지 80평을 정리하여 차액 600여만원은 기채하여 자선원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다.
6) 영묘원 왕궁임야 매입에 따른 2천만원의 기채를 승인하다.
7) 성동, 삼천포교당 각 5백만원의 기채를 승인하다.

제199회 (임시) 원기67년(1982) 9월 13일 교정원 회의실

1) 만덕, 강서, 서진주, 창원중앙 선교소 설치를 인가하다.
2) 해외 장학사업회 후원을 위한 수익기관으로 영등포 보화당 한의원 설립을 인가하다.
3) 원불교 후생사업회와 사대봉공회, 향원사업회 후원기관으로 부산 원광한의원 설립을 인가하다.
4) 인사의 건 처리하다.
5) 도로확장에 따른 건물 철거문제의 자세한 수습대책은 간부회의에 위임하고 총부 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은 추계 교무훈련시로 보류하다.
6) 원기68년도 예산위원 24인을 선정하다.
7) 영모묘원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다.
8) 학교법인 원광학원 정관 개정안을 무수정 통과하다.

9) 자선원 부지선정은 알봉묘지를 옮길때 자선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자선원과 영모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다.
10) 박물관 규정 심의는 간부회에 일임하다.
11) 일본교구청 건립 문제는 총부 숙소 건축 후 시행토록 보류하다.

제200회 (임시) 원기67년(1982) 12월 9일 교정원장실

1) 탄방(대전), 월내(부산), 제주남원 선교소의 설립을 인가하다.
2) 자선사업회의 수익기관으로서 양노원 보육원 등과 합자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산 원광한의원 설립을 인가하다.
3) 종법사 추대 봉행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다.
4) 원기68년도 예산안중 양원장외 임시 원로의 임용은 예비비에서 지급토록 하고 총무부 인쇄비를 1백5십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통과하다.

제201회 (임시) 원기67년(1982) 12월 9일 교정원장실

1) 원기68년도 인사위원 7인을 선정하다.
2) 인사위원 추인하고 차기부터는 인사위원을 선정 위임하여 보고를 접수키로 하다
3)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위원 13인을 선정하다.
4) 각 법인의 이사 및 감사를 개편하다.
4) 중앙문화원 설치를 인가하고 중앙문화원 원규를 심의 수정 통과하다.

제202회 (임시) 원기68년(1983) 1월 13일 교정원장실

1) 산수, 동대전, 영동, 북신, 의창, 남산, 대치, 길동, 석문, 영등포, 삼기 , 서이리선교소 설립을 인가하다
2) 대각개교절 기념행사 봉행에 봉축기간을 4.25~5.25까지 늘리고 중앙, 교구에 봉축위원회를 구성하며 봉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도록 하며 중앙봉축위원회를 구성 결의하다.
3) 인사를 원안대로 결의하다
4) 원의회 상임위원에 당연직 11인과 5인의 위원을 선정하다.
5) 훈련위원에 당연직 3인과 10인 위원을 선정하다.
6) 영모원 운영위원 21인을 선정하다.
7) 수도원 운영위원 30인 선정하다.
8) 원광보건전문대학장에 전경진학장을 재임용 승인하다
9) 중앙총부 건설 계획에 있어 성업봉찬사업 준비위원회는 먼저 탄생시키고, 이 사업을 성업봉찬 우선 사업으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준비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준비위원 26인을 선정하다.
10) 기획위원회 규정, 상주선원 원규 심의의 건은 상임위원에게 위임하다

제1회 (상임위원회) 원기68년(1983) 1월 29일 교정원장실

1) 인사의 건은 원안대로 결의하다.
2) 완도농원을 완도청산농원으로 개명 결의하다.

3) 국제교화후원회 운영위원 19인을 선정하다.
4) 기획위원회 규정을 수정하여 통과하다.
5) 원불교 도서관 설치를 위한 도서수집을 허용하다.

203회 (임시) 원기68년(1983) 2월 21일 문화회관 시청각실

1) 교화사업회 운영위원 23인과 감사 2인을 선정하다.
2) 육영사업회 운영위원 23인 및 감사 2인 선정을 하다.
3) 은산 육영사업회 운영위원 9인과 감사 2인을 선정하다.
4) 법은사업회 운영위원 23인과 감사 2인 선정하다.
5) 요양 심의위원 9인 선정키로 하다.
6) 원불교 유아교육회 조직에 대하여 승인하고 기타 조직의 상세한 내용과 회칙심의는 상임위원회에 위임 결의하다.
7) 총부 부지매입 경비조달은 9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계획과 예산 및 사업기금 배정에 대하여 위임하다.
8) 원불교 2대 성업봉찬회 발족에 있어 사업회의 명칭을 원불교 제2대 및 대종사 탄생 백주년 기념사업회라하고 회칙 및 취지를 수위단회에 상정키로 하다.
9) 대각개교절 경축기간을 4월 26일~5월 5일(10일간)로 확정하다
10) 경제 금융 자문위원회 규정 상주선원 원규는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다.

제2회 (상임위원회) 원기68년(1983) 3월 3일 교정원장실

1) 중앙상주선원은 교화부 관할기관으로 하며 원규 제8조를 수정 통과하다.
2) 경제 금융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를 수정 통과하다.
3) 정읍교구를 정주교구로 정읍교당을 정주교당으로 도동교당을 동진주교당으로 각각 변경하기로 결의하다.
4) 학교법인 원광학원 정관 개정안을 제안대로 결의하다.
5) 학교법인 중·고등학교 교원 임면에 있어 해임을 승인하고 임용은 면접심사위원의 면접을 시행후 사령장 수여토록 하다.
6) 광주 농성동 재산 대체를 승인하다
7) 대전권 개발 기지확보 매입 결의하다.

제204회 (임시) 원기68년(1983) 3월 22일 교정원장실

1) 제2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을 보고대로 인준하다.
2) 농성, 남서울 선교소의 설립을 원안대로 인가하다.
3) 신정교당을 남울산교당으로 팔봉교당을 삼성교당으로 명칭 변경하다.
4) 문화사업회 발족 및 회칙 제정은 후원회에 관한 내용을 첨가하여 제5조 회원 종별을 타 사업회에 동일하게 조정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여 시행토록 위임 결의하다.
5) 원광여자고등학교 은행 장기 차액금 승인하다.
6) 원광여자 중·고교 은행 일시 차입 한도액을 승인하다.

7) 이리보육원 재산대체 승인 건으로 이리시 신동 94-21번지 50평과 동 65의 14번지 240평을 매도하여 경작지로 재산 대체할 것을 승인하다.
8) 성업봉찬회 위원총회 개최 일정을 원의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다.
9) 총부정문 건축양식의 기둥은 현대식에 고전적인 지붕을 얹는 양식으로 하고 위치는 회의를 마치고 현장에서 정하도록 하다.

제3회 (상임위원회) 원기68년(1983) 4월 4일 교정원장실

1) 인사를 원안 대로 결의하다.
2) 문화사업회 회칙 제2조 목적을 「본회는 일원대도를 선양하기 위하여 원불교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통과하다.
3) 재단법인 원불교 재산대체를 승인하다.
4) 휴스톤교당 유지문제를 위한 1년간 보조하고 기금은 원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이 부담키로 하다.

제4회 (상임위원회) 원기68년(1983) 5월 12일 교정원장실

1) 월내교당을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은 부산교구장과 해운대교당이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결의하다.
2) 교무파견은 원기69년도 인사기에 하기로 하고 판교선교소의 설립을 인가하다
3) 재단법인 원불교,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 감사를 추가 선임하다.
4) 인사 승인을 원안대로 결의하다.
5) 문화원 예산보조는 중앙총부 예비비에서 300만원을 중앙문화원 운영비로 보조키로 결의하다.

제205회 (임시) 원기68년(1983) 6월 3일 교정원 회의실

1) 제3회 제4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을 보고대로 인준하다.
2) 제주 국제훈련원 건축 및 개발위원회를 구성하다.
3) 원광대학교 남원대학(분교)를 설치할 것을 제안대로 승인하다.
4) 학교법인 원광학원 정관 개정을 제3조 1항 제38조 제91조 별표 2의 개정 및 제93조의 2신설과 제37조 별표 3의 개정을 원안대로 결의하다.
5) 완도개발 운영위원회 회칙심의는 상임위원회로 위임하고 위원의 선정도 함께 위임 결의하다.
6) 해산 해외 장학사업회 회칙심의를 상임위원회에 위임 결의하다.
7) 총부 정문의 건축은 204회 원의회 결의대로 진행할 것을 확인하다.
8) 총부 유지사업회 운영위원 25인 선정하다.

제206회 (긴급) 원기68년(1983) 8월 8일 대각전

1) 신도안 지역의 군사기지화 계획에 대하여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최선을 다하여 막는 데까지 막도록 대책 마련 후 추진하기로 결의하다.

제5회 (상임위원회) 원기68년(1983) 8월 19일 교정원장실

1) 이리보육원 재산은 부동산으로 할 것을 대체 승인하다.

2) 해산 해외 장학사업회는 해산국제육영사부업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외 장학의 문구를 국제육영으로 수정하여 통과하다.
3) 해산국제육영사업회 운영위원으로 12인 감사에 2인을 선정하다.
4) 해룡 중고등학교 인사 임면을 승인하다.
5) 원광여자중학교 기채를 승인하다.

제207회 (임시) 원기68년(1983) 9월 16일 문화회관 시청각실

1) 원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을 보고 인준하다.
2) 원기69년도 예산위원 21인 및 편성방향을 결의하다.
3) 중앙교의회 교구별 대표위원 정원을 각 교당 재가대표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총 346명을 결정하다.
4) 동산선원 장학사업후원과 동산선원 유지를 위한 수익기관으로서 동산 보화당 한의원 설치를 인가하고 원규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위임 결의하다.
5) 원광 중고교 교사 임면 재청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7) 서울회관 임대에 관한 동성 앤터프라이드(주)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결의하다.
8) 문화사업회 운영위원 25인과 감사 2인을 선정하다.

제208회 (임시) 원기68년(1983) 10월 20일 문화회관 시청각실

1) 감찰원, 원광사, 개척교당의 세입 예산 조정을 예산위원회에 위임하고 기타는 원안 대로 통과하다.
2) 원기69년도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위원 16인 선정하다.
3) 인사에 관한 건으로 재청한 원안대로 결의하다.
4) 제10조 제32조 2항, 제44조를 문교부의 학교법인 정관 준칙 개정 통보에 의거하여 원안대로 개정 결의하다.
5) 영모원 정관 개정안중 9조, 11조 1항을 수정하여 재안대로 통과하다.
6)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원불교 이사 박장식과 학교법인 이사 김근수, 서성범을 재임 결의하다.
7) 원광대학교의 15억4백3십7만6천원의 기채를 승인하다.

제6회 (상임위원회) 원기68년(1983) 11월 28일 교정원장실

1) 밀양교당 광주원광한의원 교무 인사를 결의하다.
2) 원광대학교 총장에 숭산 박광전교무를 연임하도록 결의하다.
3) 서울교구 길동교당을 강동 교당으로 변경을 승인하다.
4) 원광여자 중·고등학교 교장의 환태평양지역 교육자연수 및 시찰 승인하다.
5) 미주교구 교무회의 결의 사항 승인하다.

제209회 (임시) 원기68년(1983) 12월 16일 교정원장실

1) 제6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 승인하다.
2) 원기69년도 인사위원 7명을 선정하다.
3) 여천, 서산, 당감, 반포, 과천, 문화촌, 신제주선교소 설립을 인가하다.
4) 현 남원교구 관할의 함양, 지곡, 거창교당을 마산교구 관할로 변경 결의하다.

6) 재단법인 원불교 이사장에 김윤중, 이사에 유정완, 박광전, 정성숙 감사에 이정화를 원안대로 선임하다.
7)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기구 구입을 위한 기채를 승인하다.

제7회 (상임위원회) 원기69년(1984) 2월 3일 교정원장실

1) 중동교당의 명칭 수성교당으로 하도록 하다.
2) 원기69년도 육영장학 선발 순공비 30명 반공비 69명 승인하다
3) 머리, 복장, 출가식, 근무문제 등 난상토의된 후 교육은 김혜인, 송진여, 조원영 3명에 한해서 영산선원 2년만 수학토록 하다(봉공직의 경우 영산선원 수학은 금년으로 제한)
4) 학교 법인 원광학원 추가 경정예산 1,390,909,000원을 승인하다
5) 전무출신 규정 제44조에 의거 권일경, 김정근, 조선근, 정사근 4명 입양심의 결의하다

제8회 (상임위원회) 원기69년(1984) 2월 27일 교정원장실

1) 원기69년도 육영장학생 16명을 승인하다
2) 1984년도 원광중, 원광고, 원광여중, 원광여고의 예산안 승인하다.
3) 전주 동산 보화당 개설에 따라 제2부원장(유정완) 재무부장(서성범) 전주보화당 원장(이철행)이 위원이 되어 연구토록 하다
4) 정성숙 원여고교장이 원여중교장을 겸임토록 하고 이건춘교장은 국어교사로 임용토록 하다

제9회 (상임위원회) 원기69년(1984) 4월 3일 교정원장실

1) 영모원 기채 승인의 건 영모원 공사를 성업봉찬회 제1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홍보하며 이 빚도 성업봉찬회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1억 기채를 승인하다.
2) 서울 영등포 보화당 기채 1억원을 승인하다
3) 이순일씨를 하섬수양원 총무로 결의하고 정정자 부교무는 실정을 더 파악한 후 하는 것으로 보류하다
4) 조직법 변경에 따라 기획위원회 규정 개정을 제안 제3조를 원안대로 결의하다
5) 제75조 집무시간을 4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08 : 30~18 : 00으로 하고 9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는 09 : 00~17 : 00으로 개정하며 제80조(당직근무)를 원안대로 개정하고 부록 문서 분류 번호를 중앙교의회, 교정위원회, 감찰위원회, 원의회를 첨가하기로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결의 통과하다.
6) 제11조(요양원)설치 규정에 「원의회의 결의를 거쳐」란 내용을 삽입하고 상정안 요양규정은 전담치료비 문제 요양대상 규정 요양범위 요양상담 교무의 신설과 전규정 9조 15조 공익부장 재량권 삭제했음을 제안 결의하다.
7) 정남·정녀 규정을 결의하다.
8) 제2조 목적에서 훈련원, 요양원, 농원, 교당의 유지발전과 이에 따른 사업개발 추진 및 지역사회의 봉공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봉공사업의 후원을 목적한다 변경하고 제9조 2항 1) 개발위원회에 상정할 사항 제10조(사업) 1) 2) 3) 4)항에 「관한 사업」을 「관한 후원 사업」으로 개정하여 통과하다.
9) 교정원 당직근무 조례를 결의하다.

제10회 (상임위원회) 원기69년(1984) 5월 23일 교정원장실

1) 박순기, 양현수, 임도현 교무를 원대근무로 정정자 교무를 목포 부교무로 의결하다. 김효명 교무를 성업봉찬회 건설담당 과장으로 의결하다
2) 청원, 탄원, 진정 등 민원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차기회의에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하다.
3) 현 부속병원을 신축 병동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정신병원 개설하기로 결의하다
4) 정관 제96조(부속병원)의 변경과 별표2에 정신병원 정원 143명을 삽입하고 원광대학교 일반직 정원을 총원에는 변동이 없이 내용분류만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변경을 제안대로 의결하다.
5) 학교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체 각급 학교의 83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제안대로 승인하다
6) 치기공과 120명 의무행정과 80명으로 정원을 조정 결의하다.
7) 예비전무출신 생활규정 심의의 건은 차기 회의에 상정하기로 보류하다.
8)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의 이사로 김윤중, 안이정, 유정완, 이철행, 서성범 5인을 재임하기로 결의하다.

제210회 (임시) 원기69년(1984) 6월 20일 문화회관 시청각실

1) 제7회, 8회, 9회, 10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을 승인하다.
2) 명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적법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내용은 무수정 통과하다.
3) 개척 목표 지역을 우선 권장 지역으로 바꾸고 선교소, 설립기준, 우선 권장지역 권장사항에 대하여 제안대로 결의하다.
4) 원기69년도 합동회갑식을 보류하기로 하다.
5)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겸 이사장에 김윤중, 감사에 백진환, 이정화를 제안대로 결의하다.
6) 원광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한방병원 처분과 사업계획 교내에 타인 소유 대지 및 토지와 본 대학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 구획정리 지역을 대지로 대치하고자 함을 승인하다.
7) 감찰원 기강협의회에서 예비교역자 기강확립을 위하여 재정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기관을 통합한 규정이 필요하여 육영생 생활 규정을 제정하기로 결의하다.
8)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교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수정 통과하고 이어 삼동원 이설 추진위원을 선정하니 다음과 같다.
   지도위원 : 박광전, 이공주, 이철행, 전이창
   위　　원 : 조대진, 김인철, 유정완, 오회원, 박제현, 김이현, 서성범, 라도국, 황직평, 김법종, 김인용, 이건춘, 한정원, 김서오, 정성숙, 전종철, 윤주현, 신제근, 박은국, 이성신, 김복환, 이광정, 이백철, 이성국, 오이균, 오선교, 김도광(이상27명)

제11회 (상임위원회) 원기69년(1984) 8월 20일 교정원장실

1) 원광학원 정관 제43조(임면)의 제2항 제5호 다음에 「다만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신규 임용할 경우 임용권자는 2년 미만의 기간 1년을 단위로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를 삽입할 것을 결의하다.
2) 서울 교구 개포 선교소 설치 결의하다.
3) 김대현 교무를 개포교당 교무로 결의하다.

4) 신도교당을 연산으로 이거하는 것을 결의하고 교당 명칭은 총무부에서 조정키로 하다.

제211회 (임시) 원기69년(1984) 10월 11일 문화회관 시청각실

1) 제11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을 승인하다.
2) 예산위원을 선정해서 원기70년도 예산방향 및 예산편성을 위임키로 하고 예산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다.
   예산위원 : 김윤중, 김인철, 유정완, 전팔근, 장응철, 서성범, 이철행, 김인용, 이건춘, 정성숙, 서대준, 박광진, 전종철, 김서오, 전성완, 이보원, 박제권, 정도윤, 오철환, 나철중, 박은국 이상 21명.
3) 강릉 선교소 설치 결의하다.
4) 원광학원 기채 2억4천만원 결의하다.
5) 원광고등학교 야간학급을 폐쇄하고 산업체 특별학급 신설을 결의하다.
6) 의과대학 부속 정신병원을 의과대학 부속 제2병원으로 의과대학 부속 정신병원 일반직 정원을 315명에서 510명으로 증원 결의하다.
7) 제주보화당 원규를 수정 결의하다. 다른 기관이나 보화당도 원규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첨부하다.
8) 제주보화당 한의원 설치를 결의하다.
9) 정신요양원 설립을 결의하고 투자는 자선사업회에서 추진키로 하다.
10) 송영지(대신교당) 장응철(총무부장)을 증원 결의하다.
11) 전무출신 85기는 영모원에서 책임지고 이장키로 하고 거진 출진 재가교도는 연고자가 돈을 내 이장키로 하다.
12) 기획실에서 계속 연구하여 재안키로 하고 올해는 예산 위원회에 넘겨서 처리키로 하다.

제212회 (정기) 원기69년(1984) 11월 5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기7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재안대로 통과하다.
2) 교정위원회로 상정해서 전무출신 묘지 이장의 건 논의키로 하다
3) 원기70년 교정 중요시책의 건, 특별사업 계획의 건, 대각개교절 행사의 건은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 더 논의키로 하다.
4) 위원을 추천하라는 요구에 의해 원기70년도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위원 선정하기로 하다.
5) 원기70년도 인사위원 선정하기로 결의하다.
6) 금암교무에 박공원, 원대부속병원 교무에 정현인교무를 추인하기로 결의하다.

제12회 (상임위원회) 원기69년(1984) 12월 21일 교정원장실

1) 영주, 서김해, 반송, 임피, 반월, 이천, 동두천, 원주, 서초 선교소의 설립을 결의하고 군산의 경장 선교소는 부채 문제를 해결한 후 인가키로 결의 대야의 개정 선교소는 보류키로 하다.
2) 원광 중앙유치원을 북일교당으로 이관키로 하고 현 대지는 매각하여 투자된 금액을 환입하고 잔액은 고등공민학교 설립정신을 계승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하다.
3) 운봉교당 부채 교화에 지장이 없도록 교도와 관련된 빚은 교당 계금으로 갚기로 하다.

제13회 (상임위원회) 원기70년(1985) 2월 15일 교정원장실

1) 청년회 운영비중 청소년 교화지원비 1,100,000원을 교화부 교화비 청소년 교화지원비로 전용할 것을 결의하다.
2) 재청된 재가교무 8명중 유원정, 조만현, 오광석, 김성철, 이권영의 5명은 원안으로 결의하고 이여진은 서초선교소 출장교화 보조로 김도융은 남중교당 교화보조로 윤제덕은 동산교당 교화보조 및 전주보화당 교화보조로 수정하여 결의하다.
3) 채무성화, 정중선, 강호인행, 조성덕 4인을 교화사업회 운영위원으로 선임하다(현 운영위원 : 23명, 4명증원 계 : 27명)
4) 정관 제2조 6항에 정신 요양 시설 설치 운영을 설치하고 현행 6항은 7항으로 항목 변경하기로 하다.
5) 이혜민, 조성우, 채은자, 이문원, 강인숙 5인을 원광여자중학교 교원에서 해임결의(1985년 2월 28일자)하고 김문경, 서법운, 김재향, 손명섭, 박현옥 5명을 원광여자중학교 교원으로 임용하고 홍효숙, 김라미, 이덕선 3명을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것을 결의하다.
6) 세입 내역 중 사용료 및 수수료 15,620,000원이 감소되고 전입금 2,010,000원과 원조 보조금 10,625,000원을 증가하고 세출 내역 중 인건비 8,085,000원을 감소하고 관리운영비 5,100,000원을 증가하여 2,985,000원이 감소된 312,645,000원 추경예산안을 승인하다.
7) 순공비 지원자 영산선원 7명, 동산선원 1명, 원불교학과 신입생 10명, 원불교학과 복학생 24명, 계 42명과 반공비 지원자, 원불교학과 신입생 65명, 편입생 4명, 계 69명 총계 111명을 선발 결의하다.
8) 타 사업회 운영위원과 중복되거나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의를 표명한 7명 해임 요청안은 부결하고 박찬석, 한규석 2명을 선임하여 증원 위촉하기로 결의하다.

제213회 (임시) 원기70년(1985) 3월 8일 문화회관 시청각실

1) 제12회, 제13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을 보고대로 승인하다
2) 부산교구 문현선교소의 설립을 인가하다
3) 부산교구 동부교당을 부산사직 교당으로 서울교구 관악교당을 방배교당으로 명칭 변경을 결의하다.
4) 원광상사의 기관 설립은 교정원 간부와 현 원광상사의 주역이 모여 숙의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다.
5) 원광보건전문대학 서무과장에 정진명교무를 결의하다.
6) 원광고등학교 교사에 고봉영, 오교성 2인을 면접 절차를 거쳐 사령하도록 하고 임용 결의하다.
7) 원의회 상임위원 당연직 11인 외에 정진숙(감찰원장), 이철행(재단이사), 이공전(재단이사), 안이정(재단이사), 김법종(수위단회 사무처장)의 5인을 선출하다.
8) 원기69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은 상임위원회에 위임결의하다.
9) 원광중학교, 원광여자중학교, 원광고등학교,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 8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하다.
10) 제주 국제훈련원 개원 기념행사는 원의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아니니 보고로 결의하다.

제14회 (상임위원회) 원기70년(1985) 5월 24일 교정원장실

1) 서울교구 답십리교당을 전농교당으로 명칭 변경을 승인하다.
2) 김지정교무를 원불교출판사 출판주임에 사령하기로 결의하다.
3) 원광상사 설립을 인가하고 정관 제3조(근거)는 삭제하여 승인하다.
4) 원로원을 현재 요양원 부지에 건축하며 요양원은 신용동 산 50번지(임야1170평)에 건축키로 부지를 확정하다.
5) 재단법인 원불교, 학교법인 원광학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감사를 제안대로 선임하다.
6) 원광대학교 원광의료원 설치에 따라 원광학원 정관 제96조와 원광의료원 직급별 정원 조정안을 결의하다.

제214회 (임시) 원기70년(1985) 7월 8일 중앙총부 대각전

1) 제14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 승인하다
2) 성업봉찬회 성금의 조속한 협력을 재촉구하다.
3) 완도 철산농원의 운영권을 재무부로 귀속시키기로 결의하다.
4)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당연직 이사 김윤중 교정원장, 유정완 제2부원장, 서성법 재무부장외에 김정용 원대부총장, 이철행 전주보화당 사장, 김귀근 원대 총무처장, 이건춘 여중교장, 김복환 정토회 교무, 이원경 기획과장을 선임하고 감사에 김인철 제1부원장, 송순봉 감찰원 사무처장, 장응철 총무부장을 선임하다.
5) 제12회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형설장학 기금으로 결의한 바 있는 고등공민학교 부지매매 대금은 기숙사 건축기금으로 운용하고 형설장학 기금은 기숙사 건립기금이 형성되는 대로 전환하도록 하다.

제215회 (임시) 원기70년(1985) 8월 30일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71년도 예산위원으로 21명을 선정하다.
2) Chemistry Analysis 1건 등 총 25건 34대를 한국산업리스(주)로부터 945,960,30$(한화 약837,127천원)에 리스로 구입할 것을 승인하다.
3) 원광여자중고교 구 부지 및 교사를 처분하여 신 교사 건축시의 부채를 상환하고 앞으로 인문 상업고교로 분리 운영하기 위한 교사 신축 자금으로 하는 것을 승인하다(단 매각대금 3분의 2를 인수한 후 등기권을 이전하며 잔금에 대하여는 교사 임대료의 60%를 환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원광여자중 고교를 분리 운영하며 원광여자중학교 교장에 이건춘씨를 발령하기로 하다
5) 원광여자중학교 김현영교사를 해임하고 김혜영교사를 임명 승인하고 원광여자고등학교 한명희, 이영순교사를 해임하고 권용화, 신명아교사의 임명을 승인하다.

제216회 (임시) 원기70년(1985) 10월 24일 문화회관 시청각실

1) 원기7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액 821,581,000원을 제안대로 심의 확정하다(다만 72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기관보조를 최대한 감축할 것을 연구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2)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를 제안대로 박장식, 박광전이사를 연임하도록 결의하다.
3) 영산선원에 4년제 선원으로 통합하고 동산선원은 새교무 훈련기관으로 활용하며 선원을 각종 학교

또는 선학대학 설립을 목표로 추진할 것을 결의하다.

4) 현 이리수양원 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73평의 원사 증축을 제안대로 승인하다.

제217회 (임시) 원기70년(1985) 12월 23일 중앙총부 대각전

1) 원기71년도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위원으로 17인 선정하다.
2) 원기71년도 원의회 인사위원으로 7인을 선정하다.
3) 선교소 설립 인가에 대한 건은 당무부의 정책과 교구장의 의견을 보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토록 위임하다.
4) 교구 분할 및 조정에 대한 건은 교구장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법규의 개정 이후에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다.
5) 원광대학교의 부채 상환 계획(공채, 사채)과 OECF차관에 대하여 상환 책임을 지겠다는 총장의 각서를 첨부토록 하고 제3차 OECF차관액 2억6천9십만엔(한화 약 ₩1,150,000,000)을 의, 치학계 대학 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하도록 승인하다.
6) 원광보건전문대학 기능직 직원의 증원 및 사무직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원광학원 정관 변경을 제안대로 승인하다.
7) 198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보류키로 하다.

제15회 (상임위원회) 원기71년(1986) 1월 16일 교정원장실

1) 12개 선교소 인가하다.
2) 당무부에서 제안한 대로 광주교구 분할(광주, 목포) 및 조정, 남원교구 조정, 대구교구 조정, 마산교구 분할(마산, 진주) 및 조정, 부산교구 분할(동부, 서부) 및 조정, 서울교구 분할(동부, 서부, 수원) 이리교구 분할(이리, 군산) 및 조정, 전주교구 조정, 정주교구 조정 시안을 승인하다.
3) 사회복지법인 개성유린관을 교단에서 인수하기로 결의하고 서울 동부교구장 관할하에 운영토록하고 이사에는 이광정 이철행 전종철 3인과 후속 인사되는 유아원장의 4인이 참여하도록 한다.
4) 재단법인 원불교 감사에 정진숙 감찰원장을 선임하다.
5) 이리시 신룡동 235-1번지에 이리 노인요양원 설립을 인가하다. 다만 대지 1천평을 사용하되 5백평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으로 상환한다.

제16회 (상임위원회) 원기71년(1986) 2월 13일 교정원장실

1) 보건사회부로 부터 차관금액이 확정되면 원의회에서 한번 더 결의하여 시행토록 하고 차관자금 신청 사업은 추진하도록 승인하다
2) 원광여자중학교 김문경, 이용길, 박현옥교사를 의원 면직하고 이해정, 남경희, 김현주, 박영주 교사의 신규 임용을 승인하다.
3) 교학대학 순공비 장학생 24명, 영산선원 순공비 장학생 5명, 계 29명과 교학대학 반공비 장학생 58명 총계 87명의 71년도 육영장학생을 선발하다.

제218회 (임시) 원기71년(1986) 5월 9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기70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하다.

2) 이리기독병원을 학교법인 원광학원에서 인수하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활용하는 계획을 제안대로 승인하다.
3) 제15회 및 제16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을 보고대로 승인하다.
4) 원창회 설립에 대한 취지서 승인하고 기초위원 7인을 선정하고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할 것을 결의하다.
5) 원불교대학 설립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설립계획 추진하고 위원은 협의하여 선정하다.
6) 원의회 상임위원 5인을 선정하다.
7) 원불교 북한교화위원회 규정은 제안대로 승인하다.
8)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원불교 이사에 김근수, 서성범 2인을 연임토록 선임하다.
9) 학교법인 원광학원 중고등학교 85학년도 결산 승인하다.
10) 훈련위원 13인을 선정하다.
11) 교화사업회 운영위원 26인을 선정하고 감사 2인을 선정하다.
12) 육영사업회 운영위원 선정 6인과 감사 2인을 선정하다.
13) 은산 육영사업회 운영위원 13인과 감사 2인을 선정하다.
14) 훈련사업회 운영위원 30인 선정하고 감사에 2인을 선정하다.
15) 법은사업회 운영위원 29인과 감사에 2인 선정하다.
16) 자선사업회 운영위원 23인과 감사에 2인을 선정하다.

제219회 (임시) 원기71년(1986) 9월 30일 교정원 회의실

1) 제17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 승인하다.
2) 원기72년도 예산위원을 선정하다.
3) 부산 서부교구소속 성지곡 선교소를 설치를 인가하다.
4) 제주 노인요양원 설립 추진을 결의하다.
5) 학교법인 원광학원 정관 변경 승인하다.
6) 원광보건전문대학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하다.
7) 문화사업회 운영위원 25인 선정과 감사에 2인 선정하다.

제220회 (임시) 원기71년(1986) 10월 29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기7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확정하다.
2) 원기72년도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위원 15인을 선정하다.
3) 원로원 운영위원 선정하다.
4) 우이동 수도원 개발 추진위원회 구성하다.
5) 원광대학교 실내체육관 신축사업 승인하다.
6) 훈련사업회 회칙을 수정 통과하다.
7) 원광대학교 부속병원 리스 장비 도입 승인하다.

제221회 (임시) 원기71년(1986) 12월 19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기72년도 인사위원 7인 선정하다.

2) 선교소 설치를 인가하다.
3) 법인 이사해임 및 선임하다
4) 학교법인 원광학원 정관 시행규정 제정을 차기원의회에 성정키로 결의하다.
5) 영산 성지학교 5인의 위원을 구성하다.
6)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정관 변경하다.

제222회 (임시) 원기72년(1987) 2월 27일 교정원 회의실

1) 제18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은 보고대로 승인하다.
2) 원의회 상임위원 5인을 선정하다.
3) 이리교구 무동선교소 설치를 인가하고 미주동부교구 심원훈련원 설치를 인가하다.
4) 교단 제3대 설계 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안대로 승인하다.
5)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총부간부 협의회에서 조정하여 선정토록 위임 결의하다.
6) 원기72년도 육영장학생 63명을 선발 결의하다.
7)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 신규 임용을 승인하다.
8) 원광학원산하 중·고등학교 198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하다.
9) 원광대학교 및 원광의료원 198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안대로 승인하다.

제223회 (임시) 원기72년(1987) 9월 21일 교정원 회의실

1) 제19회, 20회 21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결의 사항을 보고대로 승인하다.
2) 원기73년도 예산 편성 원칙 심의 및 예산위원 선정하고 심의 통과하다.
3) 재단법인 원불교 이사에 조정근 교정원 기획실장을 새 이사로 선임하다.
4) 학교법인 원광학원 정관 변경을 승인하다.
5) 원광대학교 구내기숙사 신축 기금을 제안대로 승인하다.

제224회 (임시) 원기72년(1987) 10월 26일 교정원 회의실

1) 원기7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 통과하다.
2) 중앙교의회 교구별 대표위원 1인 결정하다.
3)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 선임하다.
4) 문화사업회 운영위원 5인을 선정
5) 향원사업회 운영위원 11인과 감사에 2인을 선정하다.

〈원의회 관련규정 모음〉

＊불법연구회 원의(圓議)회〈27. 42차 개정시〉

제57조 본부에 주재한 중요 직원으로써 원의를 조직하다.
제58조 원의를 구성하는 직원의 자격은 종법사의 지정에 의하다.
제59조 원의는 회무총장이 此를 주재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각부간의 연리의 통일 도모함.
1. 예산금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산에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에 관한 사항
3. 대외 중요사항
4. 특별 성질에 관한 사항
5. 징계급 징벌면제에 관한 사항
6. 재무에 관한 중요 사항
7. 직원 진퇴에 관한 중요 사항
8. 기타 종법사 및 회무총장이 필요로 인한 사항

＊제3절 원의회(34 원불교내규 직무이행규정)

제24조 원의회는 삼종으로한다.

1. 정기원의회
2. 임시원의회
3. 분과원의회

제25조 정기원의회는 5월 10일, 7월 10일, 9월 10일, 11월 10일, 1월 10일, 3월 10일로하고 정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6조 임시원의회는 의사에 관계되는 원장이 필요로 인할때 또는 회원반수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 개최한다.

제27조 원의회의 의사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교세발전에 대한 연구안 심의
2. 대중화합에 대한 방법논의
3. 직원성적에 대한 보고와 감정
4. 사무진행에 대한 토의
5. 기타 필요한 안건

제28조 원의회의 의원은 과장급이상으로 하나 참석은 직원을 물론하고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원의회는 의원과반수이상 출석으로써 개회하며 결의사항은 다수결로써 하되 최후 결정인증으로 시행한다.

제30조 분과 원의회는 입법위원회와 경제위원회의 과별을 두고 의견형편에 의하여 수시 개최한다.

제31조 입법위원회와 경제위원회는 정기원의회에서 선정한 각 7인내지 9인(위원장까지)으로써 조직한다. 동인으로서 양위원회의 위원을 겸대하여도 무방하다.

제32조 입법위원회는 감찰원의 결의기관으로서 감찰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경제위원회는 교정원의 결의기관으로서 위원은 양원이 서로 연합한다.

제33조 입법위원회와 경제위원회의 개회 및 정례원의회와 동례로 한다.

제34조 각 원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실행을 대조하며 차기 회의시에 이를 낭독 통과한다.

＊제4장(44. 4 교규 1호 교정원조직법)

제17조 원의회의 구성원은 매년 연도초에 각 부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교정원장이 지정한다. 의원이외의 임원으로서 원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교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원의회는 다음의 이종으로 한다.

1. 정기원의회
2. 임시원의회

제19조 정기원의회는 5월 10일, 7월 10일, 9월 10일, 11월 10일, 1월 10일, 3월 10일로 하고 교정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임시원의회는 교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증할 때 또는 의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한다.

제21조 의안의 성질에 따라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교정원장과 각부의 장 및 관련된 당무의원만 합의하여 처리하되 차기 원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22조 교정원장은 원의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이 유고할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장이 의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23조 원의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유고할 때에는 타의원이나 또는 소속임원에게 위임 출석케 할 수 있다.

제24조 원의회에 재정 법제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기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재정위원회 위원은 각 부장과 재단이사가 이에 당하고 법제위원 및 기타 위원은 정기원의회에서 선정한다. 동일인으로 각 위원을 겸대하여도 무방하다. 분과원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25조 원의회에서 의결된 중요한 사항은 종법사의 표재가를 얻어 집행한다.

＊교정원조직법 2차개정(52. 10 교규 18호)

제4장 원의회

제18조(구성) 원의회는 매년도 초에 교정원장 및 집행 각부의 장과 교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역자 중에서 13인 이상 3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기능) 원의회는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다음 사항을 의결 한다.

1. 3급 4급 교역자 인사 임면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단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교화, 법제, 재정, 장학, 요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지부 지소의 신설, 승격, 이치(移置) 등에 관한 사항.
6. 기관 단체의 신설, 승격, 발급, 분치 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의별 및 회기) 원의회는 정기원의회와 임시원의회가 있다. 정기원의회는 매년 3월과 9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원의회는 교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1조(소집) 원의회는 교정원장이 소집한다.

제22조(의장) 원의회의 의장에는 교정원장이 이에 당하고 의장은 의안을 총섭 조정한다.

제23조(정족수) 원의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원이 유고할 때에는 타 의원이나 또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출석케 할 수 있다.

제24조(재가집행) 원의회에서 의결된 중요한 사항은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원의회 의원 중에서 교정원장 교정원 5부장 종교 및 학원 재단

이사 감찰원 대표 1인 남녀 순교감 대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제26조(상임위원회기능) 원의회 의결사항 전반에 당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상임위원회의별 및 회기) 상임위원회는 정기 상임위원회와 임시상임위원회가 있다. 정기상임위원회는 매월 5일에 개최하며 임시상임위원회는 교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8조(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교정원장이 한다. 교정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 교정원조직법(원기 62. 3 개정 교규45호)

제4장 원의회

제21조(구성) 원의회는 매년도 초에 교정원장, 부원장, 집행 각부의 장, 종교 및 학원재단 이사와 교정원장이 필요로 하는 교역자 중에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기능) 원의회는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3급 4급 교역자 인사 임면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재단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④ 교화 법제 재정 장학 요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교당 선교소 기관 단체의 신설 승격 폐합 분치 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회의별 및 회기) 원의회는 정기원의회와 임시원의회가 있다. 정기원의회는 매년 4월과 1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원의회는 교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4조(소집) 원의회는 교정원장이 소집한다.

제25조(의장) 원의회의 의장에는 교정원장이 이에 당하고 의장은 의안을 총괄 조정한다.

제26조(정족수) 원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의원이 유고 할 때에는 타 의원이나 또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출석케 할 수 있다.

제27조(재가집행) 원의회에서 의결된 중요한 사항은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 교정원조직법(현행) (원기67. 10개정 교규 60호)

제4장 원의회

제26조(구성) 원의회는 매년도 초에 교정원장, 부원장, 기획실장, 집행 각부의 장, 각 교구장, 종교 및 학원재단 이사와 교정원장이 필요로하는 교역자 일인이내의 위원을 합하여 구성한다.

제27조(기능) 원의회는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3급 4급교역자 인사 임면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법인 및 각 사업회에 관한 중요사항

④ 교화 법제 재정 장학 요양에 관한 중요사항

⑤ 교당 선교소 기관 단체의 신설 승격 폐합 분치 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회의별 및 회기) 원의회는 정기원의회와 임시원의회가 있다. 정기원의회는 매년 4월과 1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원의회는 교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9조(소집) 원의회는 교정원장이 소집한다.

제30조(의장) 원의회의 의장에는 교정원장이 이에 당하고 의장은 의안을 총괄 조정한다.

제31조(정족수) 원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유고할 때에는 타 위원이나 또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출석케 할 수 있다.

제32조(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회는 원의회 위원 중에서 교정원장, 부원장, 기획실장, 집행 각부의 장과 원의회에서 선정한 5인 이내의 위원을 합하여 구성한다.(신설)

제33조(상임위원회 기능)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원의회 의결사항 전반에 걸쳐서 의결할 수 있다. 단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상임위원회회의) 상임위원회는 교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신설). 단,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위원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교정원장이 당한다. 교정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제1, 제2, 제3부원장 순으로 대행한다(신설).

제36조(재가집행) 원의회에서 의결된 중요한 사항은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 본원은 원기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Ⅵ. 監 察 院

1. 감 찰 원

감찰원은 교단의 監察機關으로 院長 1인과 監察委員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한다. 감찰원장은 감찰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감찰위원회의 권한은 ① 교규·교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사항 ② 교헌·교규·교령의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③ 각급 회의의 중요 의결 시행여부에 관한 사항 ④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선행 포상에 관한 사항 ⑤ 교역자와 일반교도의 위법행위 및 비행 징벌에 관한 사항 ⑥ 직무감찰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⑦ 교규와 교령에 의하여 감찰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감찰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이다. 또한 감찰원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감찰원 사무처를 두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볼 때 감찰원은 감찰원장과 감찰위원회, 그리고 감찰원 사무처로 조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원불교 교헌에서 밝힌 8가지의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를 정리해 보면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기능과 법령과 중요결의 사항의 시행여부를 감독하는 기능과 상벌을 주재하는 기능 그리고 직무와 회계에 관한 감찰기능 등 네가지로 볼 수 있다.

감찰원의 역사를 고찰해 볼 때 그 유래는 불법연구회 당시 교정원의 감사부에서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원기19년(1934)에 개정한 불법연구회 규약에 보면 監査部는 一般會員의 工夫事業의 善不善을 調査하여 賞罰을 銓衡함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감찰원이라는 명칭을 가진 것은 원기33년(1948) 제정 공포한 『원불교교헌』에서 처음이며 이 당시에는 감찰원에 監査部와 司書部를 두었다. 司書部의 所管事項은 宗法室 內部와 教令, 人事任免 등에 관한 사항과 法階 昇降의 節次와 專務出身, 居塵出塵의 節次와 書類保管 그리고 支部 級地査定에 대한 서류보관과 중앙교의회, 수위단회, 원의회의 서류보관 기타 기밀서류 보관에 관한 것 등으로 되어 있어 사서부의 소관사무가 중요하고 많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기44년(1959)에 개정한 이후의 『원불교교헌』에는 현재와 같은 감찰원의 조직과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해에 감찰원 조직법을 제정하여 사무처를 설치 하였다.

〈역대 임원〉

대	직 책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	원 장	吳 昌 建	33. 4.26~34. 4.25	
2	원 장	宋 奎	34. 4.26~35. 4.25	宗法師 兼職
3	원 장	趙 甲 種	35. 4.26~36. 4.25	
4	원 장	曺 專 權	36. 4.26~37. 4.25	署 理
5	원 장	李 雲 捲	37. 4.26~38. 4.25	
6	원 장	李 共 珠	38. 4.26~47. 4.25	
7	원 장	李 完 喆	47. 4.26~51.	
	부 원 장	吳 宗 泰	47. 4.26~51.	
8	원 장	李 共 珠	51. ~56. 3.30	
9	원 장	徐 大 仁	56. 3. 31~59. 3. 2	
	부 원 장	李 空 田	59. 3. 3~	
10	원 장	李 正 和	67.11. 6~69.11. 8	
	부 원 장	李 中 正	67.11. 6~69.11. 8	
11	원 장	鄭 眞 淑	69.11. 9~	

감찰원의 활동은 주로 교단의 규율과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예방감찰과 정기감찰 그리고 상벌을 시행하였다. 정기감찰은 처음에는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그후 교정원과 합동으로 행정지도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교정원과 별도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감찰원에서 교정원을 감사하고 있다. 지방교당은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예방감찰 차원에서 애로사항 파악과 청원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상당수의 교역자를 징계 하였고 특별미행상이라 하여 3회에 걸쳐서 포상을 시행하였다. 이에는 인도실천자상, 법규준수자상, 상록수호법자상을 재가교도에게 수여하였던 바 3회째에는 출가교역자에게도 상록수 교역자상을 수여하여 선을 들어내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감찰행정 6종 계획과 예방감찰 5개 조항을 발표하였으며 근래에는 감찰지침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감찰원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 감찰위원회

감찰원은 감찰원장 1인과 감찰위원회로 구성하고 있다. 감찰원의 권한은 구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음을 『원불교교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감찰위원회의 위치는 중요하며 그 임무 또한 막중하다할 것이다. 감찰위원회의 권한을 앞에서 설명하였는데 이를 국가기관에 비유하면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기능으로 헌법위원회의 권한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위법행위 및 비행 징벌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과 검찰의 권한 그리고 직수검찰 및 회계감사에 관한 감사원의 권한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감찰위원회의는 원기44년(1959)에 개정한 『원불교교헌』에 처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그전에는 교단에 감찰위원회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감찰위원회는 처음의 조직대로 있으며, 감찰위원회의의 의견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결된 사항은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교정원장에게 이송하여 집행하게 되어 있다.

〈역대 감찰위원〉

대	법 명	재임기간
1	이공주, 송원철, 이완철, 김영신, 조전권, 오종태, 이경순, 양도신	46
2	이완철, 오종태, 정광훈, 김중묵, 이동진화, 김영신, 조전권, 이경순, 박제권	47~50
3	이공주, 박제권, 박광전, 정광훈, 김중묵, 김윤중, 조전권, 오종태, 이경순	51~55
4	서대인, 이공전, 박장식, 박광전, 정광훈, 이공주, 오종태, 이경순, 양도신	56~58
5	서대인, 이공전, 전종철, 박장식, 박광전, 정광훈, 이공주, 오종태, 이경순, 양도신	59~61
6	서대인, 이공전, 전종철, 박장식, 박광전, 이병은, 이공주, 이경순, 양도신, 이정은	62~64
7	서대인, 이공전, 전종철, 박장식, 박광전, 이병은, 이공주, 양도신, 김윤중, 안이정, 이정은(안이정은 이병은 보궐)	65~67
8	이정화, 이중정, 송순봉, 박광전, 안이정, 김인철, 서대인, 전이창, 이공주, 이공전, 정진숙(정진숙은 이정화 후임)	68~70
9	정진숙, 이중정, 송순봉, 박광전, 안이정, 김인철, 서대인, 김이현, 이공주, 이공전, 박장식(박장식은 박광전 보궐)	71~

3. 감찰원 사무처

현행 『원불교교헌』에 보면 감찰원항에 「감찰원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감찰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규정은 교규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감찰원 사무처는 감찰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구성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감찰원의 사무 관장하는 조직에는 들어간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찰원조직법에 보면 감찰원의 조직에 감찰원장, 감찰위원, 감찰위원회, 감찰원 사무처가 있다.

감찰원 사무처장은 감찰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일원을 감독하여 감찰원의 서무, 회의, 회계감사 및 문서감사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그리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기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감찰원 사무처의 기능은 감찰원의 서무, 감찰원의 회의와 회계감사 및 문서감사에 관한 실제적인 감찰원의 감찰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연혁을 보면 원기44년(1959)에 『원불교교헌』이 개정되고 또 동년에 감찰원 조직법이 제정됨으로써 그전까지만 해도 감찰원에 사서부와 감사부로 나뉘어 있던 부서가 하나로 합쳐져서 사무처가 되었으며 사서부에서 취급하던 대부분의 업무는 교정원으로 이관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기강협의회의 구성은 원기56년(1971)에 처음으로 위원이 위촉되면서 되었다. 기강협의회에서 감찰행정 6종 계획이라든지 예방감찰 5개 조항이 실의 되었으며, 특별미행상에 대한 발의와 1차 심사도 맡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감찰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견 교환과 수렴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역대사무처장〉

대	법 명	재 임 기 간	비 고
1	宋 圓 徹	46	
2	吳 宗 泰	47~50	부원장 겸임
3	朴 濟 權	51~55	
4	李 空 田	56~58	
5	田 宗 哲	59~67	
6	宋 順 鳳	68~	

역대 임직원

직 책	법 명	재 임 기 간	비 고
감 사 차 장	崔 正 均	33. 4.26~34. 4.25	
〃	金 正 勇	34. 4.26~35. 4.25	
감 사 부 장	李 中 正	36. 4.26~37. 4.25	
〃	丁 光 薰	37. 4.26~38. 4.25	
서 기	張 金 玄	37. 4.26~38. 4.25	
비서겸성업봉찬위원	金 大 現	38. 4.26~39. 4.25	
감 사 부 장	徐 大 仁	40. 4.26~43. 4.25	
감 사 부 장	金 允 中	40. 4.26~43. 4.25	
주 사	姜 雲 祥	40. 4.26~41. 4.25	
비서겸성업봉찬위원	金 理 玄	40. 4.26~42. 4.25	

주 사	張 正 一	41. 4.26～43. 5. 4	
비서겸성업봉찬위원	田 宗 哲	42. 4.26～45. 4.25	
주 사	徐 大 俊	43. 5. 5.～44.	
감 사 과 장	張 正 一	46. 4.26～48. 6. 1	
비 서	朴 道 完	46. 4.26～47. 4.25	
과 장	鄭 性 德	48. 6. 2～49. 3.17	
〃	丁 慶 浩	49.3.18～56. 3.30	
주 사	朴 圓 根	52. 4. 1～53.	
과 장	朴 濟 現	56. 3.31～57. 3.	
주 사	李 昶 圓	56. 3.31～60. 4.11	
〃	金 道 京	61. 4.12～62. 5. 9	
〃	申 宗 秀	62. 5.10～67.11. 5	
〃	韓 恩 淑	68. 1. 4～72.12.31	
간 사	柳 和 珠	68. 1.24～70. 1.22	
서 기	白 道 恩	70. 1.23～71. 2. 6	
과 장	崔 敬 道	72. 2. 1～	
서 기	羅 性 仁	72. 2. 7～	

Ⅶ. 총부출장소

원기9년(1924) 현재의 裡里市에 중앙총부를 정하고 본격적인 교화를 펼침에 따라 원불교의 발상지격인 영산성지와 국가의 정치·경제·교화의 중심지인 서울이 원불교로는 지방이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영산과 서울에 중앙총부의 출장소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는 두 곳이 중앙총부와 직접적인 연결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그 위상의 교단사적 보장과 교화상의 전진기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하겠다.

총부영산사무소는 그 연원을 중앙총부 건설이전인 원기원년(1916)으로부터 잡아야 하겠으나 교헌상으로 또는 법적시행상으로 정식 설치된 것은 원기50년(1965)의 일이다.

총부서울사무소는 그 연원을 해방되던 해 전개된 전재동포구호소로 삼을 수 있으며 이듬해인 원기31년(1946)에 총부-서울간 연락사항이 빈번해짐에 따라 정식으로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원기36년(1951) 6·25동란으로 업무를 중단했다가 원기50년(1965) 영산사무소와 함께 다시 시무하였다.

이와 같이 원기72년(1987) 현재 원불교 중앙총부의 출장소는 서울사무소와 영산사무소의 두 곳인 바 이에 따르는 자료들을 정리해 본다.

1. 서울 사무소

가. 연　　혁

30(1945). 9.10　서울 역전에 귀환 전재동포구호를 설치하여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 방황하는 전재동포들에게 식사 의식의 공급과, 숙소안내 응급치료와 분만보조 및 사망자 치상 등으로 자비의 손길을 뻗쳤다. 또한, 「허영의 생활을 안분의 생활로」「원망의 생활을 감사의 생활로」 등 교강의 정신으로 작성한 전단 수십만매를 구호받는 동포들에게 돌렸고, 귀환 학병들을 위한 사상 강연회를 주최하였으며, 한남동 정각사에 수많은 전재 고아를 수용, 서울보화원(초대원장 : 황정신행)을 발족시켰다.

31(1946). 3 서울*지구 총책임자로 일본, 만주, 중국 등 해외에서 귀환하는 동포들에게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들을 위해 봉사하던 송도성종사께서 구호도중 전염병으로 순직함. 이어, 김대거 소장에게 인계하다.

31(1946). 3. 총부 서울간에 연락할 사항이 빈번해짐에 따라 정각사에 총부출장소(초대소장 : 김대거)를 병설하여 대외교섭, 방송교화, 서울지역의 지도 등에 당하게 하였다.

*참고 1) 신보 72. 9. 6 일간(497호) 구도역 정기

2) 교사 p.86 전재동포구호와 건국사업

3) 원불교 사전 p.320 송도성

36. (1951) 6·25동란으로 인하여 사무소 업무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50(1965). 4.11 원불교 종로지부에서 서울지방 3지부 교무 및 지부장 주무 합동회의를 개최. 서울사무소의 당면한 사무실 설비와 후원기구 설치 문제를 논의.

첫째, 후원 기구설치 문제는 발기인대표 문동현, 이은석사무장 서울사무소 규약 작성 초안을 담당하였다.

둘째, 직원 숙식은 한 교당에서(서울지방) 1명의 직원을 담당하기로 함.

50(1965). 4.12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 1가 110-11 동미빌딩 5층에 사무실을 얻고 〈원불교 서울사무소〉란 간판을 걸고 시무하다.

50(1965). 4.25 사무소에서 원광대학교 재경 동창회 개최.

50(1965). 5. 3 서울사무소 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 회칙통과

2. 회장에 황정신행교도, 부회장 서울 3지부 지부장을 각각 선출하였다.

50(1965). 5. 5 섭외 담당직원 허 원씨 부임

50(1965). 5. 7 후원회 규약을 초안하고 문동현, 공덕종교도 등 일독회를 갖다.

50(1965). 7. 4 서울 예식장 3층에서 청중 800여명의 참석리 「최초법어해의」에 대한 종법사의 대법설이 계셨음.

50(1965).12.19 사무실 이전. 종로구 종로 1가 71. 영한빌딩 3층 전화 75-0369

50(1965).12.21 『종교계』 창간호 발간

50(1965).12.25 여성회관에서 6대종교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으며 본교에 10인의 대표가 참석

51(1966). 2.16 창간호에 이어 2번째로 『종교계』 3월호를 발간

51(1966). 4.16 오후 3시 서울 예식장에서 7백여명의 교도와 각계인사 참석리에 개교 축하식이 거행되었다. 법설 이운권교무, 봉축사 이공주교무, 치사 황정신행교도, 법어봉독 성의철교도, 개식사 문동현교도, 사회 이은석교무

51(1966). 6.13 종교연합회 청년회를 오후 6시에 사무소에서 소집하고 이은석교무가 지도키로 하였으며 매 금요일 하오 6시에 정식 법회를 갖기로 했음.

51(1916). 6.13 봉천동 출장소 창설 지정풍 선생 출장

52(1967).11. 1 상임위원회 결의를 거쳐 서울 출장소를 철수하고 서울지부에 문서 및 비품을 보관케 하다.

53(1968). 5.12 원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 출장소를 재발족하기로 하고 소장에는 박광전교무, 사무장에는 이제성교무가 발령

54(1969). 3.21 총부 간부회의를 통하여 서울수도원 경영으로 꽃집사업과 아울러 사무실을 동시에 이사하고 서울사무소의 간판을 걸고 개소.

54(1969). 8.15 한남동 진정서 작성. 국방부, 미대사관, 미8군, 청와대 등 제출하다.

55(1970). 2.17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서울 사무소가 원기54년도에는 보증금이 없어져 수도원에서 경영하는 꽃집의 도움을 얻는 등 다시 1월에 보화당 2층에 자리 잡고 있다가 반백년 기념사업 추진 및 교단적인 체모를 고려하여 중앙에 빌딩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중의를 모아 수도원과 반백년 사업회의 적극적인 후원을 얻어 2백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하여 중구 남대문로 1가 113-1 개영빌딩을 대여받게 되었음.

55(1970). 3.14 6일간에 걸쳐 동양 TV에서 원불교 여자 예비 교역자들의 훈련과정과 생활을 주제로 한 「원불교교역자 상」을 제작하여 3월 25일밤 10시 30밤 부터 11시까지 30분간 방영되었다.

55(1970). 4.21 이운권교무가 사무소장으로 취임하여 상주함으로써 사무소 운영에 박차를 가하게 되다.

55(1970). 6.30 주한 로마 교황청 대사관 창립 기념행사에 이운권교무와 이재성교무 참석.

55(1970). 7.12 원불교 서울회관 건립 추진 위원회 종로교당에서 각 지부 교무와 추천된 위원 50명 참석. 위원장 박동현, 부위원장 감원도 신원관 최행덕 권봉안 제씨를 선출.

55(1970).10.13 원불교 서울회관 기공식 거행. 혹석동 현장. 수위단원을 비롯 교역자 200명 내빈 1000명 육군 군악대 주악

55(1970).11.26 사무소 이전. 용산구 남영동 12-2. 전화 43-1053

55(1970).12.18-19 동파키스탄 이재민 구호 바자회를 코스모스 백화점 5층에서 실시하고 그 수익금 359,597원을 한국일보사에, 10만원을 청년회 기금으로 각각 전달.

56(1971). 4.15 인사교체에 따라 구임소장 이운권교무 이임. 선임소장 박장식교무 취임. 직제개편에 따라 총무처장 이재성교무, 교무처장 박정훈교무, 서무과장 백상원교무 피임.

56(1971). 5.20 고려대학교 교우회에서(회장 오대승 법3) 창립 제7주년 기념행사로 종교강연회를 개최

56(1971).5.27-29 서울지구 청년회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교리강좌 실시

56(1971). 6.24 한국 점자 도서관장 육병일선생의 노력으로 점자 요람을 출판하고 그 기념식을 서울 출장소 임직원을 비롯 각 지부 교무가 참석하여 점자 도서관에서 거행.

56(1971). 7.24 한일불교 친선협회 주최로 열린 한일불교 친선세미나에 본교 대표로 박장식 교무를 비롯 정성숙교무, 문동현, 이대하교도 참석

56(1971). 7.24 일본판 『원불교 요람』을 프린트 본으로 200부 발행

56(1971). 8.28 이대하교도의 노력으로 일역된 교전중 정전편을 박장식교무의 감수로 프린트판 150부를 발행

56(1971).10. 8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가 총부에서 개최되어 서울지구 교역자 및 교도 다수가 참석. 본 사무소에서는 대회 고문으로 민복기 대법원장과 국회양부회장(장경순, 정해영) 문공부장관 등 정계 및 사회 각계 지도자 70여명을 추대하고 각 언론기관을 통하여 매스콤 활동에 주력하여 대회홍보에 만전을 기함.

56(1971).10. 9 KBS-TV 종교시간(오전 7~7:30)에 Gard박사, 유기현, 전팔근교무, 송수은 제씨의 출연으로 「신앙과 수행」 설교(유기현교무)와 「현대종교의 역할」이란 주제로 대담을 녹화. 10일(일) 오전 7시부터 30분간 방영

57(1972). 4.28 종로 1가 3번지의 의사빌딩으로 본 사무소 이전

57(1972). 5. 4 한일 문학 교류협회(세종호텔)에 박장식교무 참석

57(1972).12.24 서울지구 청년회원 40여명 공수단 위문

58(1973). 6.30 한국 종교인 협의회에 문동현교도 부회장으로 중임

59(1974). 9.28 종로 5가 32번지로 이전

60(1975). 4.16 재경 모원회 창립총회

61(1976). 6.16 성남교당 창설(서울교당과 합동연원)

62(1977). 1. 8 일간지 문화부기자 영산성지 순례

62(1977). 4.21 인사교체에 따라 박장식교무 소장직 이임. 김근수교무 취임(겸직) 박정훈교무 사무장 이임. 장응철교무 취임

63(1978).10 중학교 국사교과서에 《원불교》 수록

63(1978). 5.30 군종장교 청원서 작성 제출

63(1978). 7. 2 결혼상담소 개소

67(1982). 2.26 KBS-TV 「뉴스파노라마」 출가식 방송. 「정녀로 가는길」 오후 9시 뉴스에 15분간

67(1982). 4. 3 아시아 종교협의회 사무총장 모임 만찬회. -신촌교당에서 외국인 11명 국내 14명

68(1983). 1. 4 시무식. 신임 소장 이광정교무, 사무장 장도영교무, 주사 안자은교무 부임

68(1983). 4. 4 사무실 서울회관 4층으로 이전

68(1983). 5.12 사무용 중고 승용차 1대 무명씨로부터 회사받음.

68(1983). 9. 4 피격 KAL기 탑승자 합동위령제. KBS-TV에서 취재

71(1986). 2.13 총부 인사이동에 따라 신임소장 이철행, 사무장 김성원, 교무 서광덕 부임.

71(1986). 6.16~22 아시아 종교자 평화회의(A.C.R.P)가 수도 서울에서 개최되어 13개국 21개 종단 27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치루어졌으며, 특히 외국인 30명이 중앙총부와 영산성지를 방문하였고, 그중 28명은 서울 5개 교당에서 1박을 하고 출국하였음.

71(1986).10.22 서울동·서부, 수원교구 교무 및 교도 35명을 인솔하여 제2땅굴을 시찰하고 부대에 체육기구를 기증.

71(1986).11.27 세계불교도 대회가 네팔 카트만두에서 개최. 이철행교무 등 교단 간부들 참석.

71(1986).12.23 KBS 사회교육방송에 이철행교무 신년메시지 방송.

71(1986).12. 5 숭산 박광전교무 열반시 서울빈소를 설치하여 서울일원의 각계 인사가 다녀갔음.

72(1987). 6.28 한강수몰 유주무주고혼 특별천도재를 서울회관과 합동으로 주최하여 서울지역 교무와 교도들이 5층 대법당에서 성황리에 모셨음. 약 1,000명 참석 이어, 국조받들기 전국협의회 창립 2주년 기념총회를 원불교 주최로 하여 각 민족종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청중은 1,200명 참석.

72(1987). 7 이종찬, 조상래, 조기상, 전병우의원과 서울지역 간부가 플라자 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가졌음. 군종문제 등 교단의 현안 논의.

72(1987). 7.27 신촌교당 교도인 조상호 체육부장관이 서울지역 교감급 교역자와 회장단을 초청 만찬. 장소 : 동고성 30여명 참석.

72(1987). 8.25 한국 종교인 협의회의 주관으로 일본 청년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서울회관에서 교류회의. 양국 청년의 만남에 협조.

72(1987). 9.26 KBS-TV 종교시간에 이광정, 박청수, 김혜심교무 등이 참석.

나. 기구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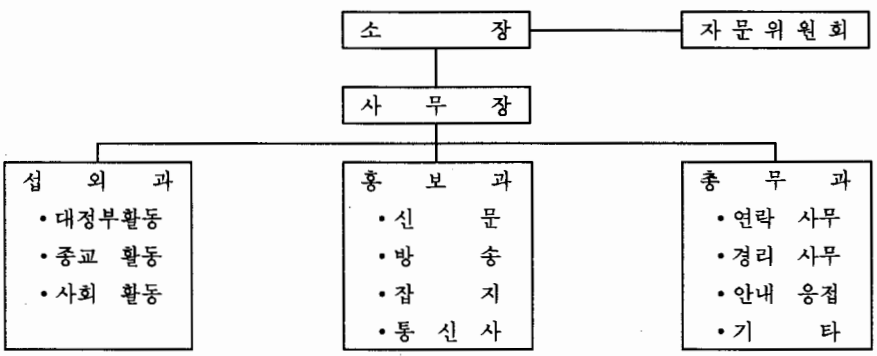

다. 역대직원명단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소 장	宋道性(道悅)	男	1907.11.19	30~31	열 반
〃	金大擧(槃灝)	〃	1914. 3.16	31~35	
〃	李雲捲(雲行)	〃	1914. 5. 3	50~53	
사 무 장	李恩錫(俊行)	〃	1925. 1.12		
총 무	張正一(祥圭)	〃	1928. 5.28		
교 무	池正風	〃			
간 사	李運徹(鉉澤)	〃	1939. 2. 8		
소 장	朴光田(吉眞)	〃	1915. 3.23	53~54	

사	무	장	李濟性(和秀)	男	1915. 5. 7	53~57	
내		무	宋官恩(恩)	女	1941. 1.25	53~54	
소		장	李雲捲(雲行)	男	1914. 5. 3	54~56	
지		도	宋官恩(恩)	女	1941. 1.25	54~56	
홍		보	金祥益(廣水)	男	1944. 6. 3	54~57	
서		무	馬圓宗(英淑)	女	1944. 6. 6	54~56	
소		장	朴將植(天植)	男	1911. 1. 9	56~62	
사	무	장	朴正薰(煥)	〃	1934. 7.21	56~62	
서		무	白想源(卿高)	女	1941. 6.19	56~56	
서		무	李建仁(建仁)	女	1947. 4.15	56~59	
서		기	양인경	〃		56~57	
홍		보	權道圓(在烈)	男	1944.12.12	57~59	
주		임	朴純基(寬順)	女	1942.10.13	58~61	
사		무	具安福(在奉)	男	1939.11.11	59~60	
주		사	朴圓玄(營鶴)	〃	1947. 1.12	60~61	
주		사	羅仁觀(順子)	女	1944. 1.14	61~62	
	〃		金正常(南暎)	男	1951. 1.20	61~63	
소		장	金勤修(益洙)	〃	1922. 6. 9	62~68	
사	무	장	張應哲(由錫)	〃	1940. 9. 8	62~68	
주		사	成道鍾(道鍾)	〃	1949. 7.17	63~66	
〃			李明照(順姬)	女	1947. 9.22	62~64	
	〃		金三眞(正禮)	〃	1952. 3.14	64~68	
주		사	金性圓(性圓)	男	1953. 8. 1	66.9~69	
주		사	金眞光(大會)	〃	1954.11. 8	66.9~68	
간		사	朴恩珍(恩珍)	女	1961. 8.18	67~69.1	
소		장	李廣淨(建衡)	男	1936. 9. 1	68~71	
사	무	장	張道英(承煥)	〃	1949.10.16	68~71	
주		사	安慈恩(眞姬)	女	1955. 9.26	68~70	
간		사	李慈潤	〃			
주		임	金常重(惠子)	〃	1950. 6. 5	70~71	
소		장	李喆行(喆行)	男	1928.12.12	71~	
사	무	장	金性圓(性圓)	〃	1953. 8. 1	71~	
주		사	徐光德(南龜)	〃	1959. 9.20	71~	
간		사	李永眞	女			
간		사	박덕희	〃			
	〃		임정희	〃			
	〃		이미정	〃			

라. 주 요 업 무

1. 총부대행 사무

1) 중앙총부의 위임 및 의뢰 사무 2) 각 계의 연락 사무

2. 섭외에 관한 사무

1) 각 계에 교단 정책반영 및 과제추진 사무 2) 사회단체와 주요인사에 대한 교류 및 접대 사무

3. 홍보에 관한 사무

1) 신문, 잡지, 방송등을 통한 교단 홍보 사무 2) 대외 인사안내 사무

4. 종교 관계사무

1) 종교 활동 2) 종교교류 및 종교연합 운동 3) 종교인 친목도모

5. 정보자료 수집사무

1) 자료수집 보고(정부, 대학, 청소년, 종교 등) 2) 자료실 운영

6. 자체행사

1) 선거후 당선 국회의원 모임 2) 교화연구소 개설 3) 전방 시찰 4) 종교인 세미나 5) 특별 천도재

〈업 무 진 행 원 칙〉

1) 외교업무

가) 대정부 및 사회관계

ㄱ. 정교동심의 정신구현 ㄴ. 정교분리정신에 의한 정치에 초연한 입장고수 ㄷ. 지도적 교단 입장 부각 ㄹ. 융화 중도적 입장 ㅁ. 사회봉사활동 적극 참여.

나) 대종교 관계

ㄱ. 삼동윤리 정신구현 ㄴ. 새불교, 새종교의 입장부각 ㄷ. 민족종교 및 동양종교의 구심점 형성 ㄹ. 겸양과 실천으로 공동선 추구

2) 홍보업무

ㄱ. 교단홍보 ㄴ. 교리홍보 ㄷ. 교단인사 홍보

〈총부대행 사무〉

부 서	해 당 항 목	서 울 사 무 소 업 무
종 법 실	• 법문	• 종법사 연하장 발송
	• 행사 참석	• 법문배포
		• 각계인사연락 사무
		• 종법사 서울에서 보좌
기 획 실	• 타종교 및 단체일반	• 서울소재 종교단체 자료수집 보고
	• 자료 수집 정리	• 서울소재 사회단체 자료수집 보고
총 무 부	• 총부안내	• 관광객 및 내방객 안내
	• 행정기관 관계(외교응접섭외업무)	• 중앙정부 관계 사무(외교 응접 섭외업무)
	• 각 종교 단체관리	• 각 종교단체 연락 사무
교 화 부	• 대학생 연합회 지원	• 대학생 연합회 활동지원
	• 3사관교우회 결성	• 3사관학교 교우회 결성
	• 교서 보내기	• 서울관내 교서보내기
	• 각종자료 수집분류 (타종교기관단체)	• 서울소재 타종교 교화자료 수집
재 무 부	• 재단사무	• 재단 사무 협조
교 육 부	• 예비교역자 방학중 훈련	• 예비교역자 방학중 서울훈련 지도
	• 대학원진학자 관리	• 대학원 진학자 모임
		• 교학대 타종교 탐방 지원
훈 련 부	• 훈련 자료 수집	• 훈련 자료 수집 보고
문 화 부	• 문화행사	• 원미 미술 대전 협조
	• 한·중·일 문화교류	
	• 도서관리	• 자료실 시설 보완
	• 홍보자료(슬라이드)	• 슬라이드 비디오 준비
	• 메스컴 교섭	• 각 홍보단체 교섭(신문, 방송, 잡지)
공 익 부	• 자선구호활동	• 서울에서 자선사업 협조
	• 복지후생	• 사회 사업 유도
		• 서울에서 요양 교역자 관리
국 제 부	• 국제회의	• 서울에서 국제회의 협조
	• 외국인 응접	• 외국인 입출국 응접 및 국제부 연결
	• 외국어판 홍보책자	• 국제 종교회의 협조
		• 종협사무 협조
감 찰 원		
중앙교의회	• 연락유지	• 의장 사무연락
청 년 회	• 사회봉공 교화문화 자료수집	• 자료 수집 협조
	• 청년지도자 발굴	• 청년지도자 연락유지
	• 소외층 봉공활동	• 서울에서 봉공활동 협조

	• 문화활동 • 종교연합 운동	• 종교연합 운동 협조

〈섭외관계 통계〉

구분 \ 연도	68	69	70	71
정부	16	10	5	3
종협	·	2	2	2
종교	2	5	5	1
특정인	7	10	10	5
기타	4	2	3	3
계	29	29	15	14

〈홍보 관계 통계〉

구분 \ 연도		68	69	70	71
T.V		11	7	4	2
신문	대	32	33	34	22
	소	7	3	52	28
라디오		1	2	3	2
기타		3	2	1	2
		54	47	94	56

마. 배출된 전무출신

번 호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비 고
1	朴恩珍(恩珍)	女	1961. 8.18	59. 2. 3	69. 1	
2	李慈潤	〃				

바. 총부 출장소 규정

第一條 總部의 位置가 서울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市에 總部出張所를 둔다.

第二條 總部出張所는 總部를 代理하여 中央政府 및 서울 各 社會를 應對하며 모든 機門連絡의 任에 當한다.

第三條 總部出張所는 所長 一人을 두고 所屬職員을 隨宜配置한다.

但, 形便에 따라 次長 一人을 두어 所長을 補佐하며 所長의 有故時 그 任務를 代行케 한다.

第四條 所長及 次長은 教正以上으로 首位團會의 推薦을 얻어 宗法師가 任命하고 所屬職員은 教選以上으로 所長의 推薦을 얻어 宗法師가 任命한다.

第五條 所內 各 職員의 任期는 總하 三個年으로하고 補缺로써 被選된 者는 前職員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六條 所長의 所管事務는 下와 같다.

一. 首都 各 宗敎의 動靜을 隨時로 總部에 報告하며 그 當例의 共同行事에 參例하는 것 二. 首都 各 社會의 動靜을 隨時로 總部에 報告하며 그 當例의 共同行事에 參例하는 것 三. 中央政府와 本敎總部間에 關係되는 各 事項을 隨時로 總部에 連絡하는 것 四. 서울市內에 設置된 本敎의 各 機關을 總部를 代理로하여 指導監督하는 것.

第七條 所長의 事務處理에 關한 規定은 下와 같다.

一. 서울 各 團體의 統一되지 못할 時期를 當하여 本敎의 態度를 定할 때에는 반드시 總部의 命令을 받아서 宣言 또는 動作할 것 二. 豫算以外의 經濟로써 限度額以上의 用處가 生할때에는 반드시 總部의 許可를 얻어 決定할 것(限度額은 總部院議會에서 定한다) 三. 本敎의 對外重大發表에는 반드시 總部의 指示를 받을 것. 但, 以上 三項外의 處務로서 過히 重大하지 않은 作은 事後報告할 수도 있다.

第八條 本敎의 宣敎가 外國에 미치게 될 때에는 그 國土 首府에 總部出張所를 둘 수 있다.

2. 영 산 사 무 소

가. 연 혁

1(1916). 4.28	大宗師 大覺 開敎
2(1917). 3.	저축조합 창설
3(1918). 3.	坊堰工事
3(1918).10.	九間道室 건축
4(1919). 3.	坊堰工事준공
4(1919). 8.21	法認 聖事
8(1923).10.	靈山院 건설 九間道室을 現 靈山院터로 移築
10(1925).	靈光支部 설치. 九年 총부건설 직후 靈山에 靈光支部를 개설 발족하고 총부에 준한 부서를 둠
13(1928).	靈山學院 開設(선원연혁에는 12년으로 되었으나 정산종사가 개설하였다면 13년임).
21(1936). 9.	大覺殿 新築, 丙子年 建坪 65坪
30(1945).	8·15해방, 28년 대종사 열반과 日帝末의 어려움속에서 학원이 休院됨. 29~31년까지.
32(1947).	靈山禪院 再開院.
35(1950).	六·二五 동란으로 모든 업무가 중단됨.
37(1952).	復舊事業, 敎務 李中和가 부임하여 그간 靈山에 住在하면서 수호하던 감원 李願華와 復舊事業착수, 六·二五사변으로 황폐되었던 시설과 財産 등을 수습하고 防堰畓 보수작업 착수.

38(1953). 學院 再開院. 休院 中이던 영산학원을 다시 개원하였으나 정확한 시기는 모름. 후에 방언공사 관계로 다시 休院상태에 들어감.

40(1955). 8월 再防堰工事 推進委員會 구성. 총재 鼎山 宗法師, 위원장 송혜완, 실무부위원장 김홍철

4(1956). 4 再防堰工事 착공식.

44(1959). 3. 1日 再防堰工事 준공, 성탄지 및 사적부지매입 정리, 靈山禪院開院

50(1965). 출장소 개설

55(1970). 6月 출장소, 선원, 지부 삼기관으로 분리.

56(1971). 大覺碑 제막, 聖域內道路정비

58(1973). 구내 전기, 전화사업

59(1974). 3월 대각지 앞 광장조성, 6월 선진포 순환도로 개설, 10월 圓光院 낙성, 세계평화 기원식

60(1975). 5월 정관평 확장공사

69(1984). 대각비, 보안공사, 기단주위 및 진입로 화강석 포장 이공주회장 회사

70.10~71. 5 대각지 조경공사. 심우경 교수 설계, 홍도전 성금 3,000만원

71(1986). 만곡~영산원 입구, 6.5㎞구간 국비 8억5천만원
아울러 영산원과 구내 정비.
아세아 종교자 평화회의 참석자 일행
삼밭재 후면 임도 개설하다. (1,341㎞) 총공사비 2천2백만원, 지원1천1백만원

72(1987). 성지고등학교 선원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다. 성업봉찬회에서 담당.
1. 대각교 준공, 2. 순례객 숙소 3동 170평 부속건물 20평 낙성하다.

〈재 산 현 황〉

〈토지현황〉

구분 / 기관별	전	답	대 지	임 야	도 로	하 천	잡종지	계
영산사무소	20,433	32,025	1,410	264,153	1,807	1,069	210	321,107
선 원	3,878	16,848	7,602	297,000				325,328
영산교당		2,600	616	8,880				12,096
계	24,311	51,473	9,628	570,033	1,807	1,069	210	658,531

〈건물현황〉

위 치	구 조	건 평	용 도	비 고
길용리 2-1	목조초즙	27.5	숙소	구간도실
〃 202	〃	18		탄생가

길용리 2－49	목조와즙	18		성업봉찬사업
	〃	66	순례객 숙소	
〃	〃	42	식당 및 숙소	〃
〃	〃	30	사무소 숙소	〃
〃	〃	19	〃	
〃 175	브로크 스레트	30	성지고 기숙사	최준명 희사
	〃 2동	60	축사 및 창고	
〃 2－49	스라브벽돌	14	창고 및 세면장	

라.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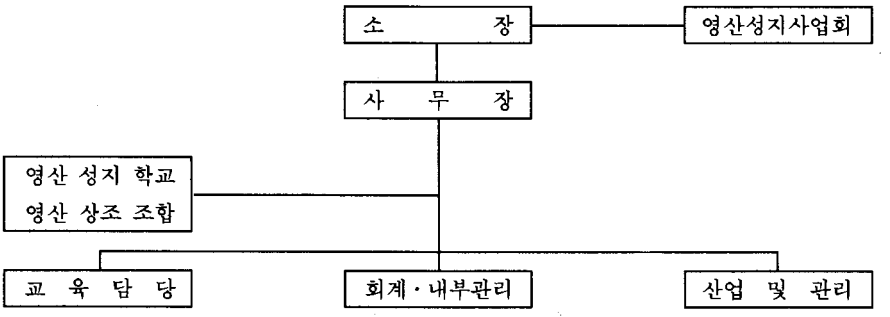

라. 역대 임직원

직 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출장소장	金 洪 哲	男	1903. 5.18	50. 3. 1～53. 4. 4	출장소개설
총 무	韓 廣 根	〃	1902. 8.12	40. 4.15～51. 4.27	
농 감	權 修 圓	〃	1920.10.25	50. 4.27～52. 3. 1	
외 감 원	姜 宗 明	〃	1938. 5.23	50. 1.23～52. 3. 1	
내 감 원	李 善 均	女	1925. 5.25	49. 6.27～53. 5. 9	
총 무	金 理 淵	男	1928. 2. 8	51. 4.28～52. 9.11	
농 감	姜 宗 明	〃	1938. 5.23	52. 3. 1～52. 4.24	
외 감 원	李 成 澤	〃	1943. 3.13	51. 3.30～51.10.16	
농 감	梁 景 瑞	〃	1902. 2.11	52. 4.25～52. 7. 9	
외 감 원	韓 道 碩	〃	1946. 6.22	51.10.17～53. 5. 9	
경 리	陳 文 徹	女	1944.12.25	52. 4.20	
출 납	崔 德 玄	〃	1947. 2. 8	52. 4.20	
출장소장	成 丁 哲	男	1903.11.21	53. 4. 5～54. 4.25	
총 무	張 賢 德	〃	1926. 2. 6	52. 9.12.	
사무장서기	林 允 徹	〃	1935.12.15	53. 4.29～56. 3.14	

구매원	蘇舜正	男	1944. 6.10	53. 5.10~54. 5. 9	
출장소장	李中和	〃	1903. 8.17	54. 4.26~70.	
외감원	朴守仁	〃	1937.10.26	54. 5.10~56. 9. 4	
공양원	韓貴哲	女	1901. 5. 8	54. 4.20~56. 3.24	
사무장	趙智聖	男	1934.11.25	56. 3.15~57. 3. 8	
간사	鄭聖浩	〃	1957. 1. 8	56. 9. 5~59. 4.25	
공양원	文圓珠	女	1955.10.15	56. 3.25~57. 8.29	
사무장	曺善勤	男	1912. 9. 5	57. 3. 9~59. 4.25	
공양원	吳正善	女	1924. 8. 7	57. 8.20~62.12	
사무장	姜現秀	男	1902. 5.29	59. 4.26~61.	
농감	朴守仁	〃	1940. 7. 5	59. 4.26~60. 5.31	
농감	金昌業	〃	1920. 7.29	60. 6. 1	
서무	朴仁道	〃	1946. 1.26	61. ~62.	
〃	李亨德	女	1948. 3.15	61. ~61.	
수도원교무	李倫正	〃	1929. 3.12	63. 4. 10~	
공양원	李貞善	〃	1930. 1.13	63. 4	
농감	고재근	男		64. 4.10~66. 4	
사무장	金玄	〃	1945.10.15	66. ~	
총무	金聖秀	〃		67.	
간사	金正輪	〃	1958. 8.17	67. ~67.	
교무	朴冠德	〃	1943. 8.16	68. ~72.	
〃	文心圓	女	1953.12.15	68. ~69.	
감원	朴守仁	〃	1940. 7. 5	68. ~70.	
〃	羅守元	〃		68. ~70.	
간사	曺常好	男	1956.12.22	68. ~69.	
〃	金正輪	〃	1958. 8.17	69. ~70.	
감원	金本善行	女		70. ~	
간사	鄭世完	男	1961. 1.14	70. ~	
교무	李仁景	〃	1958. 9.25	72. ~	
〃	朴仁源	女	1954.12.17	72. ~	
간사	姜弘照	男		72. ~	
〃	朴正貫	〃		72. ~	

마. 주요업무

1. 성지수호 및 장엄

2. 관찰교신의 관리
3. 순례인 안내 및 수용

〈부대업무〉

1. 지역교화 지원
2. 상조조합 운영
3. 성지학교 운영

마. 목표 및 과제

1. 성역화 사업 추진
   ○ 신앙 참배지 ○ 창립정신 훈련지 ○ 휴양 및 적공지
2. 교산의 효율적 관리
   ○ 과할교산의 관리 ○ 부지의 생산적 활용
3. 지역교화의 확대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성역화

Ⅷ. 法 人 體

1. 法 人

법인은 개개의 인간(自然人)이외에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써 독립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된다.

교단이 성장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 활동의 단위로써 법인체의 설립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법적 주체로서 분화하는 사회적 분야에 따라 특정한 이념이나 목적의 구현을 위하여 또는 국가시책의 방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은 필수적이었다.

이른바 원불교가 지향하는 3대사업인 교화 교육 자선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에 원기33년(1948) 재단법인 원불교의 설립인가에 이어 원기50년(1965)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별립하게 되었고 원기66년(1981)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분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룡농업기술학교, 해룡중학교, 해룡고등학교를 관할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해룡학원이 원기55년(1970) 설립되었고, 원기63년(1978) 1월에는 영모원이 발족됨에 따라 재단법인 영모묘원이 묘지법인으로 원기65년(1980)에 인가를 받았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창필재단이 원기67년(1982)에, 개성유린관이 원기71년(1986)에 각각 설립되었다.

이로써 교단이 현재 설립유지하고 있는 법인은 광의로는 재단법인에 다 포함된다 할 수 있겠으나 설치근거 법령에 따라 재단법인 원불교를 포함하여 재단법인 2, 학교법인 2, 사회복지법인 3개 등 모두 7개 법인으로 교화, 교육, 자선사업의 각 분야에서 원불교 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단이 설립하고 있는 법인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이를 표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법인
  - 재단법인
    - 원불교
    - 영모묘원
  - 학교법인
    - 원광학원
    - 해룡학원
  - 사회복지법인
    - 삼동회
    - 창필재단
    - 개성유린관

이에 의하면 교단의 설립된 법인은 공권력의 관여를 받지않는 사법인(私法人)이며 조직상으로 보면 재단법인(財團法人)이요, 목적상으로 보면 비영리법인으로써 설립할 때는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허가주의 원칙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았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인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일정한 재산으로 항구적인 사업을 하는데에 적합하다.

재단법인 원불교는 민법의 규율을 받으며 민법 제32조의 근거에 의거 설립되었다. 종교·사회일각에서 재단법인에서 종교법인의 별립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단법인 영모묘원 또한 민법이 규율하며 민법 제33조 및 보사부 훈령 제220호 제40조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자주성 확보, 공공성 앙양,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인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재단법인의 일종이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필요한 시설 설비와 당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원광학원은 재단법인 원불교 소속에서 그 재산의 일부인 교육기관과 보조기관(수익기관) 등을 분리 독립하여 설립하였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동법 제2조의 근거에 의거 설립인가 되었다.

이상에서 기술한 교단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현황, 설립목적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 財團法人 圓佛教

재단법인 원불교는 원불교의 정신에 따라 교화, 교육, 자선(의료포함) 등 공익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원불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총부를 비롯한 각 교당 유지경영 둘째, 교역자 양성기관 및 각 육영의. 유지경영 셋째, 양로 및 의료기관 유지경영 네째,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유치원, 어린이 집 등 포함)을 실시한다.

본재단의 연원은 원기2년(1917)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소태산대종사가 9인제자와 더불어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저축조합)을 발기하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강령아래 허례폐지, 근검저축, 공동출역 등을 실시하여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것이 그 시초라 볼 수 있다.

원기31년(1946) 4월 《원불교》라는 교명을 선포하고 원기33년(1948) 1월 16일 문교부로 부터 《재단법인 원불교》로 정식 법인체로 인가를 획득하였다.

《재단법인 원불교》 설립허가 신청서에 의하면 원불교의 유지경영과 교화 교육 및 자선사업을 위한 토지 건물 및 시설은 종래 개인소유 명의로 있는 바 본교의 간부 및 교도의 총의로써 재단법인 설립을 결의하고 일체서류를 정비하여 서류를 첨부 신청한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재단법인 설립의 목적은 그 취지서에 잘 나타나 있다.

재단법인 원불교 설립취지서

본 원불교는 거금 32년전에 본교 선종법사 박중빈선생의 창립으로 재래 산중불교를 시대에 맞는 대중적 불교로 만들기 위하여 창립된 바 불법연구회의 약칭으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나 금번 교도의 총의로써 중앙교의회에서 결의하여 원불교의 명칭으로 개칭하게 된 것입니다.

창립이후 갖은 고난 가운데 교도들의 성의있는 근로작업으로 경제적 토대를 세운 일면 각지에 교화기관을 설치하고 교화에 노력하여 온 바 현재 교세는 30여 교당과 10여만 신도를 산(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함에 따라 자연 토지 건물 및 시설품 등이 늘어가고 교도의 의연(義捐)도 늘어가게 되어 교화운영의 경제적 토대는 점점 확립되어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일정(日政)의 억압에 따라 유의미수(有意未遂)하여 왔다 할지라도 공중의 교화를 목적하여 모아놓은 재단과 일반교도의 의연한 재산을 개인소유로 그대로 둠은 대외 신용에도 관계될 뿐 아니라 창립의 본의가 아닌만큼 본교 간부 및 교도의 총의로써 재단법인 설립수속을 이행하기로 하여 이에 申請에 이른 바입니다.

현재 《재단법인 원불교》 정관의 모체인 「재단법인 원불교 기부행위(財團法人圓佛教寄附行爲)」에 의하면 의결기구도 이사회 외에 원불교 교헌(당시) 제38조에 의하여 선출한 원불교 중앙교의회 의원으로서 평의원회를 조직하여 이사회가 제출한 의안을 결의하도록 하였다.

기본재산의 처분, 기부행위(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에 대하여는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종법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결의과정을 교단의 결의과정과 연결 내지는 일원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財團法人 圓佛教 寄附行爲

第1章 名 稱

第1條 本財團은 財團法人 圓佛教라 稱함

第二章 目的及 事業

第2條 本財團은 布教教育及 慈善事業을 目的함

1. 圓佛教中央總部及 支部出張所 設置經營 2. 教育機關 設置經營 3. 養老及 養育機關 設置經營
4. 其他 前條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三章 位 置

第4條 本財團의 事務所는 全羅北道 益山郡 北一面 新龍里 344番地의 2에 位置함

第四章 財產及 會計

第 5條 本財團의 財產은 右와 如함 1. 別紙目錄의 記載 不動產 2. 財產으로부터 生한 收入及 將來 他人으로부터 寄贈하는 金品及 其他 財產

第 6條 本財團의 經費는 基本財產에서 生한 過失寄附金 其他 收入으로써 支辨함

第 7條 本財團의 財產은 安全 旦 確實한 方法으로써 保管함을 要하고 本財團의 目的 以外에 此를 處分 又는 使用함을 不得함

第 8條 本財團의 目的을 修行하기 爲하야 不得已한 事情으로써 基本財產을 處分코저 할 時는 理事會及 評議員會의 決議와 圓佛敎 宗法師의 承認을 經하야 文敎部長의 許可를 受함을 要함

第 9條 本財團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1日로 始하야 翌年 3月末日에 終함

第5章 役 員

第10條 本財團에 理事 5名을 置하고 其任期는 3年으로 함
理事는 圓佛敎 評議員會에서 選任함

第11條 理事는 本財團의 一切事務를 管掌함
但, 在記 各所에 關한 事項은 評議員會의 決議를 要함
1. 豫算의 件 2. 事業의 變更 又는 廢止並新規事業 3. 其他 重要事項
但, 不得已한 事由에 依하여 評議員會의 決議를 經하지 못할 境遇에는 前年도 豫算을 實行할 것.

第12條 理事는 理事會를 組織하고 必要한 部署를 置하여 事務를 分掌함을 得함
1. 理事長은 理事의 互選으로 함 2. 理事長은 本財團을 代表하야 財團의 業務를 統裁함 3. 理事長의 事故가 有할 時는 理事長이 指定한 理事가 其職務를 代理함

第13條 理事는 本財團의 目的을 遂行함에 必要한 方法으로 定하여 豫算을 編製함

第14條 理事로서 其職務上 不當한 行爲가 有할 時는 理事會의 決議와 圓佛敎 宗法師의 承認을 經하야 文敎部長의 認可를 得하야 此를 罷免함

第15條 本財團에 監事 3人을 置하되 그 任期는 3年으로 함

第16條 監事의 職務는 在와 如함 1. 財團의 歲出 其他 理事의 業務執行 狀況을 監査함 2. 財產狀況 又는 業務執行上 不整의 嫌이 有할 時는 此를 監督官廳及 中央敎議會에 報告함

第17條 本財團에 事務員 若干人을 置함
1. 事務員은 理事가 此를 任免함 2. 事務員은 理事의 命을 承하야 事務를 掌理함

第6章 評議員

第18條 本財團에 評議員을 置하되 圓佛敎 敎憲 第38條에 依하야 選出한 圓佛敎 中央敎議員으로써 此에 充當함

第19條 評議員은 在記 各號의 事項을 討議 決定함
1. 事業計劃의 件 2. 豫算計劃의 件
但, 決算은 年度閉鎭後 監事의 監査를 經하야 此를 評議員에 報告함
1. 基本資產 處分에 關한 件 2. 其他 重要事項

第20條 評議員은 評議員會를 組織하야 理事의 提出한 議案을 決議하는 外 意見을 提出함을 得함.
但, 評議會에 關한 規定은 此를 別定함

第七章 會 議

第21條 評議員會는 每年 4月中 理事長이 此를 召集함

但, 理事가 必要를 認할 時 又는 評議員半數 以上의 合意로써 請求가 有할 時는 理事長은 臨時 評議員會를 召集함을 得함

1. 臨時評議員會에서는 그 開會事由 以外의 案件을 附議함을 不得함 2. 議長은 評議員會에서 此를 選擧함 3. 評議員會의 議事는 評議員 過半數의 同意로 決定함

但, 評議員會에는 一切 代理權을 不許함

第22條 理事會는 每年 2回로 理事長이 此를 召集함

但, 必要로 認할 時는 理事長은 定例以外의 理事會를 召集함을 得함

1. 理事 3名 以上 合意로써 請求가 有할 時는 理事長은 臨時 理事會를 召集함을 得함 2. 理事會의 議長은 理事長으로써 充함 3. 理事長이 有故할 時는 理事長의 職務를 代理하는 理事가 此에 當함 4. 理事會는 理事 過半數의 同意로 決定함

但, 輕微事項에 關하야서는 理事長의 裁量에 依하야 書面 會議에 付함을 得함

補　則

第23條 本 寄附行爲는 理事會及 評議員會의 決議와 圓佛敎 宗法師의 承認을 經하야 文敎部長의 認可를 受치 않으면 變更할 수 없음

但, 第2條는 如何한 境遇일지라도 變更함을 不得함

第24條 本財團의 設立當時 任員은 左와 如함

全羅北道 益山郡 北一面 新龍理 344番地의 2
理事長　柳 相 殷

全羅北道 益山郡 北一面 新龍里 344番地의 2
理　事　趙 甲 鍾

全羅北道 益山郡 北一面 新龍理 344番地의 2
理　事　李 慶 子

全羅北道 益山郡 北一面 新龍理 344番地의 2
理　事　宋 東 煥

全羅北道 南原郡 水旨面 好谷里 796番地
理　事　朴 天 植

全羅北道 益山郡 北一4 新龍理 344番地의 2
監　事　吳 在 謙

全羅北道 益山郡 北一面 新里 287番地
監　事　金 榮 灝

全羅南道 靈光郡 畝量面 新川里 255番地
監　事　李 亨 中

연　　혁

2(1917.) 3. 1　본교는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교주 대종사(박중빈, 소태산)와 9인 제자로 더불어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을 발기하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강령아래 허례폐지와 근검저축으로서 발족하였다.

3(1918.) 4. 5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전면에 있는 간석지 10여정보 개척공사를 착수하였다.

9(1924.) 4.26 본교의 총본부를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룡리에 정하고 《불법연구회》라는 명칭으로 간판을 걸고 교문을 세상에 공개하였다.

12(1927.) 3. 1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1,147번지에 포교소용 건물을 신축하고 2정보의 과수원을 확보하였다. 이하 각지방 80여개의 포교소용 건물 및 토지의 매입 등의 기재는 생략함.

31(1946.) 9. 6 본교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유일학림(교육기간)을 창설하고 초대학감에 박장식교무 취임

33(1948.) 1. 16 《재단법인 원불교》 창설인가 문교화지령 제34호 이사장에 유허일(상은)교무, 이사에 조갑종(효남), 박장식(천식), 송혜환(동환), 이공주(경자)교무, 감사에 오창건(재겸), 김대거(영호), 이동안(형중)교무 등 취임

35(1950.) 3. 20 익산군 북일면 소재 유일학림교사를 이리시 동인동 47번지로 이전

36(1951.) 4. 26 익산보화원(고아원) 설립

36(1951.) 6. 29 원광중학교 설립인가. 전신 유일학림 폐지(문교 제353호).

36(1951.) 9. 5 원광초급대학 설립인가 초대학장에 박광전(길진)교무 취임(문교 제288호)

37(1952.) 3. 15 신용양노원 시설인가(전북 제9호).

37(1952.) 3. 25 원광중학교 제1회 졸업식

37(1952.) 4. 23 지가보상금으로 이리시 호남 장유공장을 매입하여 삼창공사(주류)를 설치(문화 제478호)

37(1952.) 7. 1 원광대학 교사 신축기지 확보 원광대학 교사 신축 착공

37(1952.) 9. 12 재단 이사 개편(임기만료). 이사장:조갑종(효남), 이사:박광전(길진), 박장식(천식), 송혜환(동환), 이공주(경자)교무, 감사:이운권(운행), 김영신, 서공남교무

37(1952)10. 1 이리시 인화동에 원광중학 교사 신축기지 확보

38(1953) 1. 9 원광대학(4년제) 승격인가 학장에 박광전(길진)교무 취임(문교 2035-1)

38(1953) 3. 5 원광대학 제1본관 준공(석조 2층)

38(1953) 8. 31 1952년도 농지상환 일시불로 인하여 본재산 경영 삼창공사 과실주부의 필요한 기계의 시설자금 받음.

39(1954) 2. 23 원광고등학교 설립인가(문보 제175호). 교장에 원광중학교장 박장식(천식)교무 겸임

39(1954) 4. 5 전남 영광군 군서면 녹사리에 원불교 도양고등공민학교 설치

39(1954) 4. 6 원광고등학교교사 신축 준공

39(1954) 4. 26 이리보육원 인수(이리시로 부터)

39(1954) 8. 7 1953년 지가 보상금 일백만팔백칠환을 일시불로 받아 본재단 직영정미소 공장내 제분공장 설치로 기본재산을 전환하다.

39(1954) 8. 30 지가 증권으로 서울 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보화원 귀속건물 및 대지를 매입하다.

40(1955) 3. 15 원광대학 제1회 졸업식

40(1955) 4. 26 익산군 북일면 소재 원불교 익산보화원 내에 원광 고등공민학교 설립.

40(1956) 1. 13 원광대학장 박광전(길진)교무 미국무성 초청으로 원불교 및 원광대학 소개차 도미. 구미 각국 역방으로 각 대학과 불교단체 심방하고 동년 3월 3일 귀국하다.

41(1956) 5. 1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 간석지 40여 정보 개간 착수.
41(1956) 9. 5 익산군 북일면 신룡리에 동화병원 신축
42(1957) 1. 10 이리시 인화동 소재 원불교 보화당을 재단에 편입하여 문교부의 인가를 얻다(문화 제469호).
42(1957) 1. 16 전북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에 원불교 오수정미소 건립하다.
42(1957) 2. 28 원광고등학교 제1회 졸업식
42(1957) 9. 10 전주양노원 시설인가(전북 제8호).
42(1957)12. 17 삼창공사 매각대금 3,367,000환과 농지보상금 2,232,671환으로 남원읍에 정화극장을 매수하여 직영하다.
43(1958)11. 1 원광대학 장학금 제도 설정
43(1958)11. 1 전주에 법정학관 설치인가(원광대학소속, 문보 제5호)
43(1958)11. 17 원광대학장 박광전(길진)교무 세계불교도 대회(태국)에 한국대표로 참가.
44(1959)11. 1 군산에 야간강의실 설치 인가(원광대학소속)
44(1959)12. 8 관현악단 창설(50인조) 전주, 군산, 이리 등지에서 창립 공연회 개최
45(1960) 2. 19 원광여자중학교 설립인가(문보 제277호).
45(1960) 2. 24 원광여자상업고등학교 설립인가(문기 제167호).
46(1961) 2. 27 원광여자중, 여자상업 고등학교 제1회 졸업식(중43명, 고33명)
46(1961) 3. 22 원광대학 가정학과 제1회 졸업식
47(1962) 2. 27 원광초급대학 설립인가(가정과, 사회교화과에 정원 각 160명)
47(1962) 3. 6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거 4년제 원광대학 정비되다.
47(1962) 3. 19 원광대학림(불교교육과, 동양철학과의 2과에 정원 300명. 문관 제2088호) 설립인가
47(1962) 4. 1 원광여자중, 여자상업고등학교 제2대 교장에 정성숙(석진)교무 취임
47(1962)10. 10 원광중·고등학교 강당 준공
47(1962)10. 20 본재단 정관 일부 개정인가.
일부 임원개편, 이사장 : 성정철(정호)교무, 보궐이사 : 정성숙(석진)교무(문문예 3135호)
47(1962)10. 30 원광여자상업고등학교 모현동교사로 이전
47(1962)11. 15 이사장 성정철(정호)교무 취임인가(문문예 5434호)
47(1962)12. 7 원광여자중학교 모현동교사로 이전
48(1963) 4. 19 본교 정남 정녀 휴양기관으로 수도원 발족
48(1963) 8. 31 원광여자중, 여자상업고등학교 본관 5교실 증축
48(1963)11. 25 원광대학장 박광전(길진)교무와 전팔근 송영봉교무 일본 불교계 초청, 원불교 대표로 일본 문화계 시찰(약 1개월)
49(1964) 1. 21 원광대학 부활인가 정규 4년제 불교교육과 120명, 국문과 80명, 법과 80명, 상과 80명, 농업경제과 120명, 원예과 120명. 원광대학림 자동폐지(문교대 1041.1)
49(1964) 4. 6 본교단 전반의 대내적인 사무감사 실시
49(1964) 5. 5 『원불교 교보』 발간(창간)
49(1964) 8. 31 원광여자중, 상업고등학교 신관 9교실 증축

49(1964) 9. 1 원광중·고등학교 별관 375평 준공(스레트집 철근콘크리트조)
49(1964)10. 1 원광대학 제2관 정축준공(철조콘크리트조 4층 15교실)
50(1965) 1. 5 원광대학에 약학과, 원광초급대학에 지역사회 개발과 설치(약학과 160명, 지역사회 개발과 120명. 문고대 1041.3)
50(1965) 1. 30 본재단 목적사업중 일부교육 사업이 문교부 시책에 의하여 《학교법인 원광학원》으로 별립되어 설립인가됨(별립된 기관명 원광대학 및 초급대학, 원광중·고등학교, 원광여중·상업고등학교, 보화당, 수계농원, 원광사, 유일정미소 . 문고대 1042.10)
50(1965) 3. 25 익산보화원 이리보육원으로 통합인가.
51(1966) 2. 15 재단법인 원불교 정관변경 허가. 이사 11명을 7명으로 감사 3명을 2명으로 변경함(문예사 1722.53)
51(1966) 5. 3 재단이사 개편. 이사장:박장식(천식)교무 취임, 이사:성정철(정호), 박광전(길진), 정성숙(석진)교무 유임(문예사 1732.53)
51(1966) 6. 10 도양고등공민학교 폐교함과 동시에 해룡농업기술학교로 인가(전남교문 1041. 1)
51(1966) 9. 1 재단법인 원불교 정관변경 허가. 이사 7명을 9명으로 증원하고 상무이사직 신설(문예사 1732. 53)
52(1967) 6. 28 서울 보화원 폐지인가(서용사회 1485.)
52(1968) 4. 30 재단감사 취임 이공주(경자), 이운권(운행)교무(문예사 1732. 53)
53(1968) 7. 23 재단감독청 이관(문교부에서 문화공보부)
53(1968) 8. 5 해룡기술학교 교사 3간 신축준공
54(1969) 2. 25 재단법인 등록갱신(허가 108호)
54(1969) 5. 5 재단법인 원불교 정관 변경
56(1971) 7. 16 이사개편 이사장:이운권(운행)교무, 이사:정성덕(필환) 안이정(중태) 조회석(회풍)교무, 감사:서대인(금례) 이철행교무
58(1973)10. 13 이사개편. 이사장:김근수(익수)교무, 상무이사:정도윤(병윤)교무
60(1975) 6. 25 성정철(정호) 이사해임 됨과 동시 이철행 이사취임 안이정(중태) 임기만료 재신청 이사 취임 이철행 감사해임 이공전 감사취임
60(1975) 9. 10 박장식(천식)이사 중임
61(1976) 1. 9 정광훈(병구), 조회석(회풍), 김윤중(환열), 박광전(길진)교무 이사 중임
62(1977)11. 17 정광훈(병구) 열반으로 이사 해임. 보궐이사 정성숙(석진)교무 취임인가.
63(1978) 4. 27 서대인(금례)교무 감사 중임
63(1978) 6. 17 이사 김근수(익수), 정도윤(병윤)교무 중임 및 이병은(병목)교무 취임인가
64(1979) 5. 23 재단법인 원불교 정관 변경
64(1979) 7. 25 이사 안이정(중태), 이철행교무. 감사 이공전 유임
64(1979)11. 9 이사 박장식(천식)교무 유임
65(1980) 1. 30 이사 개편 이사 박광전(길진), 김윤중(환열), 정성숙(석진), 이병은(병목), 감사 서대인(금례) 유임
66(1981) 1. 26 재단법인 원불교 정관 변경
66(1981) 4. 18 이사 개편 이사 이보원(만재)교무 취임

66(1981) 8.12 감사 이공전(순행) 유임
67(1982) 2. 5 감사 서대인(금례) 유임
67(1982) 6.23 이사장 김근수(익수)교무, 이사 정도윤(병윤)교무 유임
68(1983) 3.19 이사 개편 이사장 김윤중(환열), 이사 서성범(금성) 유정완(진옥), 감사 이정화(한화) 이중정(종행)교무 취임
68(1983) 7.19 이사 안이정(중태) 이철행교무, 감사 이중정(종행)교무 유임
68(1983)10.28 이사 박장식(천식)교무 유임
69(1984) 1.14 이사장 김윤중(환열), 이사 박광전(길진) 유정완(진옥) 정성숙(석진), 감사 이정화(한화)교무 유임
70(1985) 1.24 감사 개편 감사 정진숙(현숙)교무 취임
70(1985) 6.12 감사 이중정(종행)교무 유임
71(1986) 1.22 감사 정진숙(현숙)교무 위임
71(1986) 6.16 이사 김근수(익수)교무 유임
71(1986) 7. 9 이사 서성범(금성)교무 유임
71(1986)12.15 재단법인 원불교 정관변경
72(1987) 4.20 이사 개편
이사 김정용(삼룡) 김인용(판용)교무 보선
72(1987) 7.16 이사 안이정(중태) 이철행교무, 감사 이중정(종행)교무 유임
72(1987)10.14 이사 박장식(천식)교무 유임

〈역대임원〉

직 위	법명(호적명)	성별	취임년월일	해임년월일	비 고
이사장	柳虛一(相殷)	男	33(1948) 1. 16	37(1952) 9. 11	
〃	趙甲鍾(孝南)	〃	37(1952) 9. 12	41(1956)11. 11	교정원장재임기간
〃	金大擧(榮瀚)	〃	41(1956)11. 12	47(1962)10. 31	〃
〃	成丁哲(丁鎬)	〃	47(1962)11. 1	51(1966) 4. 23	
〃	朴將植(天植)	〃	51(1966) 4. 23	56(1971) 7. 15	
〃	李雲捲(雲行)	〃	56(1971) 7. 16	58(1973) 6. 7	
〃	金勤修(益秀)	〃	58(1973) 6. 8	67(1982) 1. 8	
〃	金允中(還烈)	〃	67(1982) 1. 9		
이사	趙甲鍾(孝南)	〃	33(1948) 1. 16	37(1952) 9. 11	이사장으로
〃	朴將植(天植)	〃	33(1948) 1. 16	51(1966) 4. 22	
			56(1971) 7. 16	현재	
〃	宋慧煥(東煥)	〃	33(1948) 1. 16	43(1958) 11.	
〃	李共珠(瓊吉)	女	33(1948) 1. 16	37(1952) 9. 11	
〃	朴光田(吉眞)	男	37(1952) 9. 12	72(1987) 4. 20	
〃	李共珠(慶子)	女	37(1952) 9. 12	41(1956)11. 1	
〃	李雲捲(雲行)	男	41(1956)11. 12	49(1964)12. 14	

이 사	李東震華(慶洙)	女	41(1956)11. 12	49(1964)12. 14	
〃	曺專權(王順)	女	41(1956)11. 12	63(1978)12. 14	
〃	趙曦錫(喜風)	男	41(1956)11. 12	63(1978) 6. 16	
〃	丁光薰(炳球)	〃	44(1959) 3. 3	52(1967)11. 16	
〃	李東安(亨中)	〃	44(1959) 3. 3	52(1967) 3. 26	
〃	成丁哲(丁鎬)	〃	44(1959) 3. 3	47(1962)10. 31	재무부장재임기간
			51(1966) 5. 3	59(1974) 5. 3	
〃	丁盛熟(石鎭)	女	47(1962)11. 1	59(1974) 5. 3	
〃	徐大仁(今禮)	〃	51(1966) 3. 16	59(1974) 3. 16	
〃	金允中(還烈)	男	51(1966) 3. 16	67(1982) 1. 8	
〃	鄭性德(弼煥)	〃	56(1971) 7. 16	58(1974) 6. 7	
〃	安理正(重泰)	〃	56(1971) 7. 16		
〃	丁道允(炳允)	〃	58(1973) 6. 8	68(1983) 2. 18	
〃	李喆行(喆行)	〃	59(1974) 5. 2		
〃	李炳恩(炳穆)	〃	63(1978) 6. 17	66(1981) 4. 17	
〃	李普圓(萬宰)	〃	66(1981) 4. 18	67(1982) 6. 22	
이 사	徐聖範(金成)	男	68(1983) 2. 19		
〃	柳正完(珍玉)	〃	68(1983) 2. 19	72(1987) 4. 19	
〃	金勤修(益秀)	〃	67(1982) 6. 23		
〃	金仁龍(判用)	〃	72(1987) 4. 20		
〃	金正勇(三龍)	〃	72(1987) 4. 20		
감 사	吳昌建(在謙)	〃	33(1948) 1. 16	37(1952) 9. 11	
〃	金大擧(榮灝)	〃	33(1948) 1. 16	37(1952) 9. 11	
〃	李東安(亨中)	〃	33(1948) 1. 16	37(1952) 9. 11	
〃	李雲捲(雲行)	〃	37(1952) 9. 12 51(1966) 3. 16	41(1956)11. 11 57(1972) 5. 1	
〃	金永信(順得)	女	37(1952) 9. 12	50(1965) 5. 12	
〃	徐共南(善岩)	〃	37(1952) 9. 12 39(1954) 8. 30	38(1953) 9. 41(1956) 8.	
〃	李共珠(慶子)	〃	41(1956)11. 12	51(1966) 4. 1	
〃	徐大仁(今禮)	〃	41(1956)11. 12 56(1971) 7. 16	51(1966) 4. 23 68(1983) 2. 18	
〃	李喆行(喆行)	男	56(1971) 7. 16	60(1975) 6. 8	
〃	李空田(順行)	〃	61(1976) 6. 8	68(1983) 6. 24	
〃	李正和(漢和)	女	68(1983) 2. 19	71(1986) 1. 21	
〃	李中正(鍾行)	男	68(1983) 7. 19		
〃	鄭眞淑(賢淑)	女	71(1986) 1. 22		

본 재단의 기본재산은 원기72년(1987) 12월말 현재 대지 90,958평, 밭 105,886평, 논 171,713

평, 임야 1,797,960평, 기타 703평 합계 2,167,200평이며 건물은 475동 81,117m²이다.

기타 재단법인 원불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인력현황

1)전무출신

연 도	67	68	69	70	71	72
배출수	55	52	91	64	59	59
누 계	1,151	1,206	1,258	1,349	1,413	1,472
증가율	5%	3,5%	4.3%	7.2%	4.7%	4.2%

2)전무출신 배출 현황

	총 계	원불교학과	선 원	일반	
				일반대	기 타
계	1,472	711	412	25	324
남	524	287	68	20	149
여	948	424	344	5	175

3)형태별 전무출신 현황

	총배출수	현 역	휴 무	정 년	열 반	퇴 역
계	1,472	1,053	68	44	162	145
남	524	337	29	5	83	70
여	948	716	39	39	79	75

2. 교화현황

1) 교당현황

가) 총 398개 교당. 국내:385개 교당, 해외:13개 교당

나) 시 : 214개 교당(56%), 군·읍 : 81개 교당(21%), 면 : 90개 교당(23%)

다) 부설유치원 : 42개, 부설유아원 : 44개, 부 설 학 원 : 4개, 교당부설기관 총 90개소.

2) 입교현황

	57	60	64	68	70	72
당년입교수	11,082	11,570	21,487	17,099	20,676	13,806
누계	163,904	194,370	261,756	308,292	346,197	375,297

3) 평균출석 현황

연 도	57	60	64	68	70	72	
출 석 수	-	15,755	18,919	24,031	26,175	29,131	

4) 교화단원수-49,046명

일 반:28,652명, 청 년 : 5,138명, 학 생 : 7,431명, 어린이 : 7,825명

5) 법위 현황

가) 전무출신 예항이상자는 513명

나) 재가교도 예특이상자는 34,505명

6) 교당 교무수 : 648명(61.5%) 남:90명(8.5%), 여:558명(53%)

교무 1인 주재 교당 : 91개소(24.3%), 교무 2인 이상 교당 : 135개소(36%), 공양원, 감원없이 교무 1인 주재교당 : 148개소(39.6%) (미보고교당:24개소)

3. 교육현황

1) 교립학교 종교현황 (6개교 합계)

교직원수	학생수	학 생 종 교 현 황					
		원불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기타	무종교
1,559명 원불교 1,131명	28,452명 원불교 2,350명	2,350	2,413	1,979	7,381	337	13,992

가) 교직원 수중 원불교 교도는 전체의 73%인 1,131명이다.

나) 교도학생은 전체학생의 3%인 2,350명이고

다) 무종교 학생은 전체의 50%인 13,992명이다.

2) 교립학교 예산현황

학 교 명	예 산 액	소 계
원 대	18,041,759,000(교) 8,934,550,000(기)	26,976,309,000원
부 속 병 원	14,143,273,000	
제 2 병 원	833,608,000	
치 과 병 원	575,752,000	17,298,812,000
한 방 병 원	786,445,000	
광 주 병 원	959,734,000	
원 고	605,142,000	2,130,088,000
원 여 종 고	665,957,000	

원 중	398,215,000	
원 여 중	460,774,000	
전 문 대	2,230,252,000	
총 계	48,635,461,000	

4. 자선현황

구분 \ 기관	이리보육원	전주양로원	중앙수양원	이리자선원	장수분원	삼정원	원광요양원(노인)	합계
직 원	16	8	12	10	5	10	11	72
전무출신	5	2	9	5	3	4	4	32
수용인원	150	84	95	128	19	150	50	676

1) 자선기관 7개소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총 72명으로 평균 10명이며 전무출신 수는 총 32명으로 평균 5명임.

2) 자선기관 7개소의 수용인원은 676명으로 평균 97명인 바 총 예산 6억5천6백만원의 1인당 수혜액은 약 97만원이다.

3) 교세에 비추어 볼때 자선사업의 실태는 미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5. 재무현황

1) 교단토지 현황

총 2,168,220평(대지 : 90,958평, 전 : 106,886덩, 답 : 171,713평, 임야 : 1,797,960평 기타 : 703평)

2) 신협·새마을 금고 현황

구 분	회원수	자산(백만원)
1. 전주 원광 신협	2,631	3,039
2. 광주 원광 신협	860	1,523
3. 중앙 신협	2,011	4,635
4. 원광 이리 금고	3,475	8,948
5. 영광 신협	427	446
6. 원불교부산신협	1,420	1,702
7. 종로 원광 신협	1,381	2,606
합 계	12,205	22,899

3) 각종 사업회비 현황

1. 육영사업회	85,000,000원
2. 법은사업회	96,000,000원
3. 후생사업회	54,000,000원
4. 자선사업회	1,900,000원
5. 교화사업회	47,000,000원
6. 훈련사업회	9,000,000원
합 계	292,900,000원

6. 소속기관 현황

구 분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비 고
의료기관	보화당재약사	이리시 인화동 103	이보원	
	원광의료원	이리시 신용동 344-2	송천은	
	원광의대부속병원	이리시 신용동 344-2	김기석	종합병원
	원광의대제2병원	이리시 동산동 144-23	박남진	정신신경과
	원광한의대부속병원	이리시 신용동 344-2	박병렬	종합한방
	원광한의대광주한방병원	광주시 월산 1동	박호식	
	원광치대부속병원	이리시 신용동 344-2	김남규	
	중앙요양원	이리시 신용동 326-6	전기철	
	이리보화당	이리시 인화동 103	이보원	
	역전보화당	이리시 중앙동 1가 8	정경훈	
	서울보화당	서울 종로 5가 33-1	이공주	
	부산보화당	부산 초량 2동 1270-5	김복환	
	성남보화당	성남시 태평동 3309-475	이공주	
	전주보화당	전주시 다가동 81-1	송성찬	
	영등포보화당	영등포동 6가 101	김복환	
	경동보화당	동대문구 제기동 964-1	안이정	
	대전보화당한의원	동구 정동 27-4	김이현	
	대구원광한의원	중구 남성로 8-3	이혜정	
	이리원광한의원	이리시 신동 311-2	이혜정	
	군산원광한의원	군산시 평화동 41	이혜정	
	부산원광한의원	부산진구 부전 2동 485-8	장응철	
	제주원광한의원	제주시 일도 1동 1171-5	전이창	
교육기관	원광대학교	이리시 신용동 344-2	김정용	종합대인가
	원광보건전문대학	〃	전경진	인가
	원광고등학교	이리시 동산동 667	박광진	〃

구 분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비 고
교육기관	원광중학교	이리시 동산동 667	서대준	인가
	원광여고	이리시 모현동 1가 520	정성숙	〃
	원광여중교	이리시 모현동 1가 523	이건춘	〃
	해룡중·고교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권세영	〃
	영산성지학교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조처인	〃
	영산선원	〃	윤주현	〃
	상주선원	이리시 신용동 344－2	장성진	〃
	강남원광유치원	강남구 도곡동 511－6	박청수	〃
	강화원광유치원	강화읍 관청리	이명인	〃
	광주원광유치원	광주시 동구 궁동 40	유현정	〃
	군산원광유치원	군산시 경장동 50－6	한연심	〃
	남춘천원광유치원	춘천시 효자 2동 697－33	김남명	〃
	다대원광유치원	사하구 다대동 160－1	송원요	〃
	당리원광유치원	사하구 당리동 212	최영명	〃
	대구원광유치원	중구 남산 1동 677－180	노명수	〃
	동산원광유치원	완주군 조촌면 만월리	이안수	〃
	마산원광유치원	마산시 상남동 109	정도중	〃
	밀양원광유치원	밀양읍 삼문동 162－678	김태열	〃
	부산중구원광유치원	중구 신창동 1가 38	전세원	〃
	북일원광유치원	이리시 신동 766－9	서대준	〃
	북광주원광유치원	북구 임동 149－10	김홍선	〃
	삼천포원광유치원	삼천포시 동금동 140－2	송인명	〃
	삼랑진원광유치원	삼랑진읍 송지리	송인호	〃
	상주원광유치원	상주시 냉림동 323	이대우	〃
	서울원광유치원	용산구 한강로 2가 55	신효석	인가
	성덕원광유치원	담양면 창평면 삼천리	고병석	〃
	성주원광유치원	성주읍 경산 6동 629－1	조경련	〃
	속초원광유치원	속초시 동명동 443－1	서위진	〃
	수원원광유치원	수원시 교동 2－6	홍정인	〃
	압해원광유치원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조혜명	
	연산원광유치원	논산군 연산면 연산리	강숙원	〃
	영광원광유치원	영광읍 무령리 189	조정중	〃
	오수원광유치원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김법진	〃
	울산원광유치원	울산시 중구 교동 256－21	문국선	〃
	원남원광유치원	종로구 원남동 98	박정묵	〃
	이리원광유치원	이리시 갈산동 205	정규두	〃
	인후원광유치원	전주시 인후동 1525－1	김효민	〃

구 분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비 고
교육기관	정주원광유치원	정주시 수성동 448	나철중	인가
	장산원광유치원	신안군 장산면 대리	이용원	〃
	장흥원광유치원	장흥읍 건산리	김정덕	〃
	진북원광유치원	전주시 진북동 1150－9	박영선	〃
	제주남원원광유치원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1214－9	정명중	〃
	창원원광유치원	창원시 서상동 396	최성양	〃
	청주원광유치원	청주시 탑동 305	정도윤	〃
	통영원광유치원	충무시 도천동 37	심익순	〃
	포항원광유치원	포항시 죽동 32－2	유경희	〃
	해남원광유치원	해남읍 구교리 250	주경신	〃
	감곡원광유아원	정읍군 감곡면 방교리	김형모	〃
	강경원광유치원	강경읍 북옥동 104－9	김인경	〃
	강서원광유치원	강서구 신정 3동 1260－38	박상진	〃
	고창원광유치원	고창읍 천북동 72	조남훈	〃
	관촌원광유치원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정상훈	〃
	금일원광유치원	성동구 금호동 1가 산 37	황영규	〃
	남군산원광유치원	군산시 나운동 606－7	서진화	〃
	남서울원광유치원	동작구 흑석동 1－3	이관도	〃
	남신원광유치원	김제읍 신풍리	김수인	〃
	누상원광유치원	종로구 누상동 54	태덕권	〃
	대연원광유치원	부산 남구 대연동	남궁선봉	〃
	덕진원광유치원	전주시 덕진동 1420－12	유향원	〃
	도곡원광유치원	논산군 두마면 광석리	장법주	〃
	도순원광유치원	서귀포시 도순동 802－1	임덕성	〃
	동래원광유치원	동래구 수안동 528－1	권묘형	〃
	문산원광유치원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이전원	〃
	서면원광유치원	부산진구 부암동 80－39	박원석	〃
	송학원광유치원	전주시 송천동 474－62	김호인	〃
	신태인원광유치원	신태인읍 평화동 345	이유관	〃
	안동원광유치원	안동시 옥정동 산 99－3	정수덕	〃
	약대원광유치원	부천시 약대동 144－20	이성호	〃
	양정원광유치원	부산진구 양정 356－26	김장원	〃
	애월원광유치원	애월읍 애월리 2152－1	이수진	〃
	영산원광유치원	남원군 아영면 청계리	이여정	〃
	영암원광유아원	영암읍 서상리 96－1	양찬희	〃
	우아원광유아원	전주시 우아동 729－2	백현인	〃
	운봉원광유아원	남원군 운봉면 하동	유이경	〃

구 분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비 고
교육기관	원평원광유아원	김제군 금산면 쌍용리	이양신	인가
	월랑원광유아원	진안군 군하리 110-3	이성희	〃
	육리원광유아원	정읍군 태인면 태창리	홍성기	〃
	이리원광유아원	이리시 남중동 147-37	고원선	〃
	장학원광유아원	정읍군 정우면 장학리	정원아	〃
	종로원광유아원	종로구 낙원동 58-9	이명선	〃
	좌산원광유아원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임묘준	〃
	좌포원광유아원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이영덕	〃
	천변원광유아원	담양읍 담주리 125-10	박정혜	〃
	청학원광유아원	영도구 청학동 31	김성효	〃
	평화원광유아원	전주시 평화동 640	김재명	〃
	한림원광유아원	한림읍 한림리 546	고진양	〃
	함열원광유아원	함열읍 와리 201-4	박도완	〃
	혜중원광유아원	남원시 동충동 446-3	장정현	〃
	혜화원광유아원	종로구 명륜 4번지 1	김일상	〃
	화포원광유아원	김제군 만경면 화포리	고명일	〃
	황등원광유아원	익산군 황등면 보삼리	최도인	〃
	논산원광미술학원	논산읍 반월1동 33-94	김삼인	〃
	남춘천원광응변학원	춘천시 효자동 697-33	김남명	〃
	오산원광주산학원	화성군 오산읍 오산 4리	이진성	〃
훈련기관	중앙훈련원	이리시 신용동 344-2	안이정	
	동산훈련원	이리시 동산동 400	오회원	
	동명훈련원	대구시 동구 봉무동 285-4	이정은	
	완도소남훈련원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유성일	
	만덕산훈련원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송영지	
	제주국제훈련원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박은섭	
	삼동훈련원	논산군 벌곡면 양산리	전이창	
자선및사회사업기관	영모묘원	이리시 신용동 344-2	신제근	묘지법인가
	이리보육원	이리시 신동 186-4	김서오	인가
	전주양로원	전주시 덕진동 1358	권성천	〃
	한국보육원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황정신행	〃
	이리자선원	이리시 신용동 75-2	이수오	〃
	중앙수양원	이리시 신동 280-11	윤치성	〃
	이리수양원	이리시 동산동 213-16	전경화	
	마산수양원	창원군 동면 용잠리	김지현	
	봉래수양원	부안군 산내면 중계리	이공전	
	하섬수양원	부안군 산내면 마포리	이현도	

구 분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비 고
자선및	서 울 수 도 원	용산구 한남동 726	이공주	
사회사업	우 이 동 수 도 원	도봉구 쌍문동 542	김정국	
기 관	익 산 수 도 원	이리시 신용동 344-2	유장순	
	중 앙 요 앙 원	이리시 신용동 326-6	전기철	
	불 목 요 양 원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이혜정	
문화기관	원 불 교 신 문 사	이리시 신용동 344-2	이종원	
	원 광 사	〃	박정기	
	원 불 교 출 판 사	〃	박정기	
	서 울 회 관	동작구 흑석동 1-3	이철행	
	중 앙 박 물 관	이리시 신용동 344-2	박제중	
산업기관	총 부 농 원	이리시 신용동 344-2	서성범	
	수 계 농 원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이백철	
	만 덕 산 농 원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양제승	
	완 도 철 산 농 원	완도군 군외면 남선리	서성범	
기 타	총 부 서 울 사 무 소	동작구 흑석동 1-3	이철행	
	총 부 영 산 사 무 소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김 현	
	교 화 연 구 소	이리 신용동 344-2	김이현	
	성 업 봉 찬 회	〃	이공주	

7. 간행물 현황

간 행 물 명	발행인	소 재 지	등록일자	종별	간별	발행부
원불교신보	김윤중	이리시 신용동 344-2	54(1964) 5.27	신문	순간	11,000
원 광	김윤중	〃	69(1984) 5.11	잡지	월간	10,000

재단법인 원불교 정관

33(1948) 1.16 (문교회지령 제34호)
47(1962)10.20 (문문예 333135)
51(1966) 2.15 (문예사 1722.53)
51(1966) 9. 1(문예사 1732.53)
54(1969) 5. 5 (종무 1732.53-5890)
64(1979) 3.23 (종일 1074-0946)
66(1981) 1.26 (종일 1712.3-1147)
71(1986)12.15 (종행 35111-1714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원불교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이리시 신용동 344번지의 2에 둔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대한민국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교화 및 교육자선(의료포함)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경영한다.

1. 원불교 포교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총부를 비롯한 각 교당유지 경영 2. 교역자 양성기관 및 각 육영의 유지 경영 3. 의약 및 의료기관 유지 경영 4. 원불교회관 등 유휴시설 임대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유치원, 어린이집 등도 포함)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명(이사장·상무이사 각1인 포함) 2. 감사 2명

제6조(선출)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전항의 이사회에서 선거된 임원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는 자신에 관한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임기) 본 법인의 이사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차 이사반수의 임기는 2년, 감사 반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취임 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한다.

제8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통괄한다.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 이사는 이사직을 통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감사) 감사는 본 법인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는 전항의 감사결과 부정 불비한 처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요구하는 동시 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전항의 보고 또는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이 사 회

제1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3조(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이사 정원의 2/3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5. 이사회는 적어도 1주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6. 이사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단,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7. 이사장은 이사 3명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8. 이사장 또는 이사장직을 대리하는 이사가 전항의 이사회 개최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소집통지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정원의 과반수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한 이사회에 이사장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14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관리처분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출 6. 법인해산 7.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8. 기타 본 법인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5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2/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이사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4장 재 정

제16조(재산) 1. 본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업무(교화·교육·자선)용과 수익용으로 구분하되 이사회에서 특히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말한다. 단, 기본재산은 별첨 목록과 같다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7조(재산의 관리) 1. 기본 재산을 임대·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 기타 사건을 설정하거나 처분하고자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불교 회관 및 사무실, 기타 재산을 임대하여 생기는 과실은 제4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함 3. 기본 재산의 목록은 연 1회 문화부 장관에게 작성 제출한다.

제18조(경비) 본 법인의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예산) 1. 본 법인의 예산은 목적사업 기관인 예산과 기타 업무 예산으로 구분 편성한다. 전항의 목적사업 기관의 예산은 당해 각 기관의 장이 집행하고 업무 예산은 이사장이 집행한다 2. 매년도 세제 잉여금은 익년도에 조월 사용하는 분 이외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3.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 및 당년도에 상환치 못할 기채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문화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예산에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써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기본재산목록, 업무현황,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5.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6.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5장 사 무 국

제21조(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2조(직원)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23조(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6장 보 칙

제24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의 그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문화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본 법인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제26조(정관의 변경)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규칙) 다음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법인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장 부 칙

제28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법인의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세칙) 본 법인의 정관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30조(경과조치) 본 법인의 초대임원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본 법인의 창립 이사회에서 선출 또는 정한다.

제31조 본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임 기	주 소
이 사 장	柳 相 殷	1948 1. 16~1952. 9. 11	전북 이리시 신용동
이 사	趙 孝 男	〃	〃
〃	朴 天 植	〃	〃
〃	宋 東 煥	〃	〃
〃	李 瓊 吉	〃	〃
감 사	金 榮 灝	〃	〃
〃	吳 在 謙	〃	〃
〃	李 亨 中	〃	〃

제32조 본 정관은 문화부 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3. 學校法人 圓光學園

학교법인 원광학원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원불교 정신에 입각하여 유아 및 중등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교단에서 운영하던 모든 교육기관과 그 보조기관(수익기관)들을 재단법인 원불교의 소속으로부터 독립시켜 원기50년(1965) 1월 30일 학교법인 원광학원으로 별립하게 된 것이다.

원기46년(1961) 정부는 사립학교를 규제하는 법령인 「교육에 대한 임시 특례법」을 공포하였고 당시 문교부에서 발표한 사립대학 정비방안의 중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재단임원의 반수를 교육자 출신으로 한다.
② 재단임원은 2인 이상의 친족을 불허한다.
③ 재단이사회의 일방적인 교수임면을 제한한다.
④ 재단에서 학교경상비를 30% 이상 보조하도록 기본재산을 확보한다.
⑤ 학생의 부담금을 감소시킨다.

5·16이후 문교행정당국은 간첩침략의 분쇄를 위하여 학원내의 부패와 구악을 일소할 것을 다짐하였는데 그것은 이른바 사학의 기업화 현상을 막겠다는데 촛점을 두었다. 대학정비의 과

정이나 여러가지 문교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사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확립하겠다는 정책적 지향이었다. 의무교육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립국민학교의 설립을 권장하는 한편 다른 단계의 교육에 있어서도 사학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학을 권장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보아 사학에 대한 통제정책이 크게 강화된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원기48년(1963) 12월 16일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여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 의해서만 설립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사립학교법도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표방하였으나 실은 사학에 대한 광범한 규제를 포함한 것이었다. 교단에서는 이에 재단법인 원불교에서 운영하던 교육기관을 학교법인 원광학원으로 분리 독립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재단법인 원불교에서는 학교법인 원광학원을 발족 정관을 제정하고 원기49년(1964) 3월 12일자로 학교법인 원광학원으로의 조직변경인가 신청서를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재단법인 원불교 조직 변경 인가신청서〉

1963. 6. 26. 법률 제1362호로 재정 공포된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재단법인 원불교를 학교법인 원광학원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고저 일건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1. 조직 변경 사항
   - 가. 조직 명칭 (구) 재단법인 원불교
     (신) 학교법인 원광학원
   - 나. 목적 (구) 자체유지와 공익사업
     (신) 교육단일 사업
   - 다. 정관 거의 전면 개정, 각종 내용의 다수 신조항 삽입
   - 라. 재산 완전분리
2. 첨부서류
   - 가. 정관 (신) (구) 정관 각 2통
     신구 대조표(조항, 내용) 각 2통
   - 나. 이사회 회의록 사본 2통
   - 다. 재산목록 (원목록, 분리확정 목록) 각 2통

위와 같이 신청하옵니다.

1964. 3. 12

재단법인 원불교 이사장 성 정 호

문교대

학교법인 원광학원
설립자명 성 정 호

1965년 1월 21일자로 신청한 학교법인 원광학원 설립허가의 임을 다음과 같이 허가함.

1965년 1월 30일

문교부 장관 윤 원

1. 목적:원불교 정신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중등,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
2. 명칭:학교법인 원광학원
3. 사무소 소재지:전라북도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344-2
4. 설리학교:원광대학, 원광초급대학, 원광고등학교, 원광여자상업고등학교, 원광중학교, 원광여자중학교 등 유지 경영함.
5. 자산의 총액:432,543,547원
6. 설립당초의 임원

직원성명	임기	주소
이사및 이사장 성정호	1965. 1. 30 1967. 1. 25	전북 익산군 북일면 344-4
이사 박천식	〃	〃
〃 박길진	〃	〃
〃 조갑종	1965. 1. 30 1967. 1. 25	〃
〃 조회풍	〃	
〃 정석진	〃	전북 이리시 창인동 1가 152-3
〃 서대인	〃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344-2
감사 이운행	1965. 1. 30 1966. 1. 20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344-2
〃 정광훈	1965. 1. 30 1966. 1. 20	〃

〈학교법인 원광학원 설립 허가서〉

우여곡절끝에 이듬해인 원기50년(1965) 1월 30일자로 학교법인 설립인가서를 받게 되었다. 설립당시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설립현황

·법인명 : 학교법인 원광학원
·소재지:전북 이리시 신룡동 344-2
·설립년월일:원기50년(1965) 1월 30일
·재산총액:423,943,547원

새로 제정된 정관은 〈재단법인 원불교 기부행위〉가 모체가 되어 교육활동의 법적 근거로 시행되어 오던 재단법인 원불교 정관을 현행으로하여 대폭적인 개편에 의한 제정이었다. 그 주요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재단법인 원불교 정관 신·구 주요대조 조항〉

신 정 관	구 정 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원불교 정신으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등·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본 법인은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교화 및 교육 자선(의료포함) 등 공익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광대학, 원광초급대학, 원광고등학교, 원광여자상업고등학교, 원광중학교, 원광여자중학교를 유지 경영한다.	제2조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경영한다. 1. 원불교 포교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총부를 비롯한 각 지부 지소의 유지경영 2. 대학과 남·녀중고등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유지경영 3. 양로 및 육아 육영기관 유지 경영 4.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원광학원이라 칭한다. (중 략)	제3조 본 법인은 재단법인 원불교라 칭한다. (중 략)
제7조(예산의 구분) 이 법인의 예산은 학교의 예산과 기타의 업무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전항의 학교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업무예산은 이사장이 집행한다(신규 포함, 중 략).	해당조항 없음 (중 략)
제24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소속학교를 유지 경영하기 위하여 의료사업 농산물 생산물 생산사업 농산물 가공사업, 출판사업을 한다(중 략).	해당조항 없음 (중 략)
제31조(임면) 1.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2. 전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감의 임면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의 제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신규포함).	

연 혁

31(1946) 5. 1 유일학림 개설
33(1948) 1. 16 본 법인 전신인 재단법인 원불교 설립
36(1951) 6. 29 원광중학교설립, 초대교 박장식(천식)교무 취임
36(1951) 9. 5 원광초급대학설립, 초대학장에 박광전(길진)교무 취임(9.6)
38(1953) 1. 29 원광대학 설립(4년제 승격), 초대학장에 박광전(길진)교무 취임
39(1954) 2. 23 원광고등학교 설립, 초대교장에 박장식(천식)교무 취임
41(1956) 4. 10 원광대학부설 원광여자고등학원 발족
45(1960) 2. 19 원광여자중학교 설립 인가
45(1960) 2. 24 원광여자상업고등학교 설립 인가
45(1960) 4. 8 원광여자중학교 및 원광여자상업고등학교 초대교장에 박장식(천식)교무 취임(원광중·고 겸임)
46(1961) 4. 1 원광여자중학교 및 원광여자상업고등학교 2대교장에 정성숙(석진)교무 취임
47(1962)11. 30 원광여자중학교 및 원광여자상업고등학교 이리시 창인동 152로 교사이전
50(1965) 1. 30 학교법인 설립인가 초대이사장에 성정철(정호)교무 취임
수익사업체 이리보화당, 수계농원, 만덕산농원, 유일정미소, 원광인쇄소 본 재단에서 인수
51(1966) 4. 6 원광중학교 및 원광고등학교 2대교장에 정광훈(병구)교무 취임
52(1967) 1. 10 2대 이사장 박장식(천식)교무 취임
52(1967) 8. 21 학교법인 원광학원 정관 변경(이사 7인에서 9인으로)
52(1967)12. 15 원광대학교 대학원 설립(석사과정)
52(1967)12. 29 원광여자상업고등학교를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로 교명 개칭
56(1971) 6. 16 3대 이사장 이운권(운행)교무 취임
56(1971)12. 31 원광대학교 종합대학교로 개편 인가. 문리과대학, 법경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설치, 총장 박광전(길진)교무 취임
57(1972)12. 26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 인가
58(1973)12. 28 원광대학교 농과대학, 한의과대학 설치 인가
59(1974) 8. 29 제4대 이사장 김근수(익수)교무 취임
59(1974) 9. 1 원광중학교 3대교장 박광진(길연) 취임
60(1975) 9. 1 원광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본단으로 승격
61(1976) 1. 24 원광보건전문대학교 설립 초기교장 김영만 취임
62(1977) 3. 1 수익사업체 서울 보화당 설립
원광고등학교 3대교장 박광진(길연) 취임

62(1977) 3. 7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 산업체특별학급 증설
63(1978) 3. 1 원광중학교 제4대 교장 서대준(영섭)교무 취임
63(1978)10. 7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공과대학 설치 인가
63(1978)12. 10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 이리시 모현동으로 교사 신축 이전
63(1978)12. 28 원광보건전문대학 개편 인가. 학장에 전경진 취임
64(1979) 1. 13 원광여자중학교 제3대 교장 이건춘(건숙)교무 취임
64(1979) 7. 23 원광여자중학교 모현동 교사로 신축 이전
65(1980) 4. 24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준공
65(1980) 8. 20 원광대학교 종합운동장 준공
65(1980)11. 24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설치인가(석사과정)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가정대학 설치
법경대학 분리(법정대학, 경상대학)
65(1980)12. 1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
67(1982)10. 5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원광대학교 법경대학 및 경상대학을 법과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으로 분리
68(1983) 1. 21 제5대 이사장 김윤중(환열)교무 취임
68(1983) 3. 1 수익사업체 역전보화당 설립
68(1983) 3. 5 원광대학교 전자계산소 설치
68(1983) 3. 17 법인 정관 변경(감사 2인에서 3인으로)
69(1983) 9. 8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설치인가
69(1984) 7. 23 원광의료원 개원(의대부속병원, 한의대부속이리한방병원, 한의대부속광주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69(1984) 7.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제2병원 개원
71(1986)10. 22 법인 정관 18자 개정
71(1986)12. 19 신임 원광대학교 총장 김정용(삼룡)교무 선임
72(1987) 1. 22 제2대 원광대학교 총장 김정용(삼룡)교무 취임

〈법인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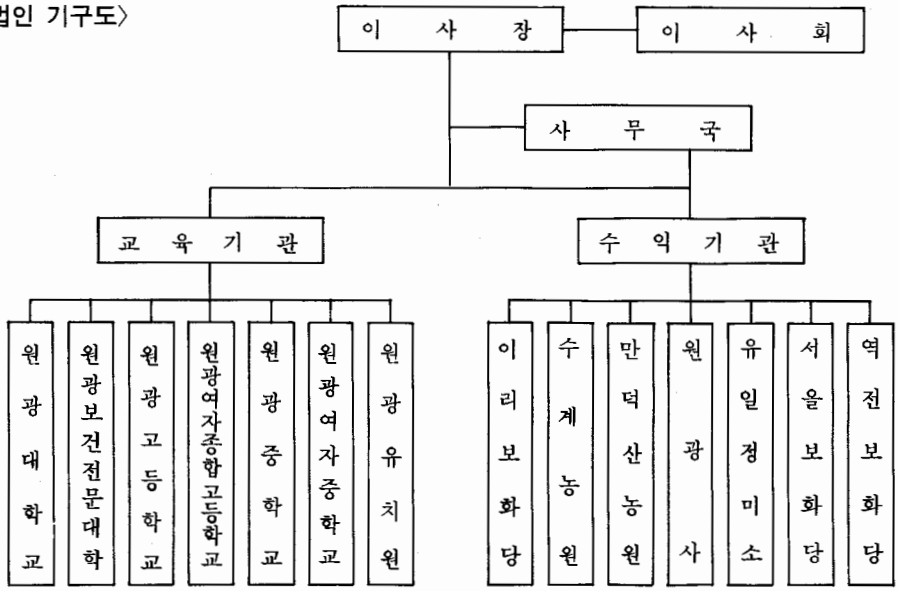

〈역대임원〉

직 위	법 명(호적명)	성별	취임년월일	해임년월일	비 고
이 사 장	成 丁 哲(丁鎬)	男	50(65) 1. 30	52(67)11. 9	
〃	朴 將 植(天植)	〃	52(67) 1. 10	56(71) 6. 15	
〃	李 雲 捲(雲行)	〃	56(71) 6. 15	59(74) 8. 28	
〃	金 勤 修(益洙)	〃	59(74) 8. 29	68(83) 1. 20	
〃	金 允 中(遵烈)	〃	68(83) 1. 21		
이 사	朴 將 植(天植)	男	50(65) 1. 30	52(67) 1. 9	
〃	朴 光 田(吉眞)	〃	50(65) 1. 30	71(86)12. 3	
〃	趙 甲 鍾(孝南)	〃	50(65) 1. 30	56(71) 9. 8	
〃	丁 盛 熟(石眞)	女	50(65) 1. 30 61(76)12. 8	56(71) 2. 4	
〃	趙 曛 錫(喜風)	男	50(65) 1. 30	63(78) 1. 2	
〃	徐 大 仁(今禮)	女	50(65) 1. 30	56(71) 2. 24	
〃	成 丁 哲(丁鎬)	男	52(67) 1. 10	60(75) 5. 18	
〃	丁 光 薰(炳球)	〃	52(67) 2. 15	62(77)12. 7	
〃	金 允 中(環烈)	〃	52(67)11. 27	68(83) 1. 20	
〃	安 理 正(重泰)	〃	56(71) 8. 3		
〃	鄭 性 德(弼煥)	〃	57(72) 5. 17	59(74) 8. 28	
〃	丁 道 允(炳允)	〃	59(74) 8. 29	68(83) 1. 20	
〃	李 喆 行(喆行)	〃	60(75) 5. 19		

이 사	李 炳 恩(炳穆)	男	63(78) 6. 15	66(81) 2. 11	
〃	李 普 圓(萬宰)	〃	66(81) 2. 12	68(83) 1. 20	
〃	徐 聖 範(金成)	〃	68(83) 1. 21		
〃	柳 正 完(珍玉)	〃	68(83) 1. 21	72(87) 5. 29	
〃	金 勤 修(益洙)	〃	68(83) 1. 21		
〃	金 正 勇(三龍)	〃	72(87) 3. 26		
監 査	李 雲 捲(雲行)	〃	50(65) 1. 30	56(71) 6. 15	
〃	丁 光 薰(炳球)	〃	50(65) 1. 30	52(67) 2. 14	
〃	李 共 珠(慶子)	女	52(67) 3. 12	56(71) 3. 12	
〃	徐 大 仁(令禮)	〃	56(71) 6. 16	68(83) 1. 20	
〃	李 喆 行(喆行)	男	56(71) 8. 3	60(75)11. 21	
〃	李 空 田(順行)	〃	60(75)11. 22	67(82) 7. 6	
〃	白 (珍煥)	〃	67(82) 7. 7		
〃	李 正 和(漢和)	女	68(83) 1. 21	69(84)12. 25	
〃	李 中 正(鍾行)	男	68(83) 5. 18		
〃	鄭 眞 淑(賢淑)	女	69(84)12. 26		

* 산하기관현황

〈교육기관〉

학 교 명	학 교 장	서 무 책 임 자	소 재 지	설립년월일
圓 光 大 學 校	金正勇(三龍)	金貴根(永春)	이리시 신룡동 344－2	36(1951) 9. 5
圓光保健專門大學	全敬進(性完)	鄭眞明(映浚)	〃	64(1979) 1.24
圓 光 高 等 學 校	朴光振(吉然)	尹正觀(在溱)	이리시 동산동 667	39(1954) 2.23
圓光女子綜合高等學校	丁盛熟(石眞)	金聲振(春會)	이리시 모현동 일가 520	45(1960) 2.24
圓 光 中 學 校	徐大峻(榮燮)	李性照(京鎬)	이리시 동산동 667	36(1951) 6.29
圓 光 女 子 中 學 校	李建春(建淑)	金聲振(春會)	이리시 모현동 523	45(1960) 2.19

〈수익기관〉

기 관 명	책 임 자	소 재 지	설립년월일
裡里普和堂	李普圓(萬宰)	이리시 인화동 1가 103	19(1934) 5.20
서울普和堂	李共珠(慶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가 33－1	55(1970) 6.30
岫 溪 農 園	李百徹(致炯)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66	25(1940)10.
萬德山農園	梁濟乘(承鉉)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15(1930)
唯一精米所	徐聖範(金成)	이리시 신용동 344－1	31(1946)
圓光印刷所	李空田(順行)	이리시 신용동 344－2	34(1949) 5.30
驛前普和堂	金允中(還烈)	이리시 중앙동 3가 8	57(1972)11. 1

학교법인 원광학원 정관

制定 65. 1. 30 (문교대 1042. 1호)
改正 66. 12. 15 (문교대 1042. 3호)
改正 67. 8. 21 (문교대 1040. 32호)
改正 75. 11. 22 (대 학 1040－1042호)
改正 76. 2. 27 (대 학 1040－340호)
改正 77. 10. 20 (대 학 1040－1156호)
改正 78. 7. 11 (대 학 1040－1128호)
改正 79. 6. 22 (대 학 1042－892호)
改正 80. 11. 28 (대 학 1042. 3－1172호)
全面改正 81. 11. 23 (대 학 1042. 3－1696호)
改正 83. 3. 17 (대 학 1042. 3－550호)
改正 83. 10. 25 (대 학 1042. 3－2269호)
改正 84. 6. 25 (대 학 1042. 3－1121호)
改正 84. 9. 19 (대 학 1042. 3－1772호)
改正 84. 11. 7 (대 학 1042. 3－1979호)
改正 85. 8. 30 (대 학 25422－1256호)
改正 86. 4. 9 (대 학 25422－577호)
改正 86. 10. 22. (대 학 25422－1405호)
改正 87. 11. 26. (대 학 2542－144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원불교 정신으로써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및 중등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원광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원광대학교 2. 원광보건전문대학 3. 원광고등학교 4.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 5. 원광중학교 6. 원광여자중학교 7. 원광유치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이리시 신용동 344의 2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절 대학재무위원회(삭제 1986. 10. 22)

제13~21조(삭제)

제3장 기 관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9인(이사장 1인 포함), 감사 3인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전에 감독관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임기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상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제26조(이사장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 및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독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법인 직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대학의 교원임면 사항은 제외 한다.)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결의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과를 제외하고는 재적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3조(이사장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의약사업 2. 농산물 생산사업 3. 농산물 가공사업 4. 출판 사업

제37조(수익사업체의 명칭) 제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리보화당, 서울보화당, 수계농원, 유일정미소, 만덕산농원, 원광인쇄소, 역전보화당을 경영한다.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7조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리보화당 이리시 인화동 1가 103 번지 2. 서울보화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가 33-1번지 3. 수계농원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66번지 4. 만덕산농원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5. 유일정미소 이리시 신룡동 344-2번지 6. 원광인쇄소 사업소:이리시 신룡동 344-2번지 7. 역전보화당 사업소:이리시 중앙동 3가 8번지

제39조(관리인) ① 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5장 해 산

제40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에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교부장관에 대한 정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42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면

제43조(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대학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당해 대학의 장이 임명하고 임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문교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1. 교수 6년 2. 부교수 5년 3. 조교수 4년 4. 전임강사 2년 5. 조교 1년

다만,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직명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③ 원광대학교의 부총장, 학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총장이 보하고 원광보건대학의 부학장 및 교무과장·학생과장 등의 보직은 학장이 보한다. ④대학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교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1항내지 제2항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이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명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감독청에 보고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보고한다. ⑦ 대학의 장은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임면사항을 이사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휴직)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제45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직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4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1년이내로 한다.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당해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제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대우) ① 제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44조 제2호내지 제4호와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가 그 기간중 능력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9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인난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過員)이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대학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대학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임면하고자 할 때의 임면동의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장이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 학장에 한한다)과 부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 동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 관계의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원광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각 대학의 학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10인이내의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원광보건대학의 인사위원회는 부학장·교무과장·학생과장과 학장이 지명하는 3인의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광대학교는 교학 부총장, 원광보건전문대학은 부학장으로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성원의 의결)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인사우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대학 소속직원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 ①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 설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의 임면권자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징계위원회를 둔다.

1. 학교의 장 징계위원회 2. 일반교원 징계위원회 3. 대학교원 징계위원회

제60조(교원 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관할) ①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 9인(위원장 1인을 포함)으로 조직한다. ② 학교의 장 징계위원회는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 그 위원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일반교원 징계위원회는 대학 이외의 각급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 그 위원은

일반 징계위원회가 관장하는 학교의 교원과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인 위원회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1인을 가산한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대학교원 징계위원회는 대학의 교수(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대학징계 사항을 관장하되 그 위원은 대학교원 징계위원회가 관장하는 당해학교의 교원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 징계원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재척사유)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 징계자와 친적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 징계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술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당사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7조(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운영세칙) 교원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재심위원회

제69조(재심위원회 설치) 교원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제70조(재심위원회 구성) ① 재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3. 학교법인 이사

제71조(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2조(재심위원회의 심사) ① 재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서를 완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73조(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 청구의 원인이된 사실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74조(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75조(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1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76조(재심위원회의 결정)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게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재심위원회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연 징계 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인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7조(재심심사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개재한 재심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78조(재심심사결정서의 송부) ① 재심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79조(재심결정의 효력)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구속한다.

제80조(위원수당과 선비)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재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 직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2조(운영세칙)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은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의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일반직원(부속병원 직원포함한다)은 당해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제85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역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89조(법인의 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법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 학 교

제90조(총장) ① 원광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원광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원광대학교에 2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총장은 교학부총장과 의무부총장으로하고 교학부총장은 교무와 학생에 관한 사항을 의무부총장은 의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관장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학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학장, 대학원장) ① 원광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하부조직) ① 원광대학교에 대학교당, 기획실,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 및 재단처를 둔다. ② 대학교당의 교감,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재무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다만, 기획실장, 총무처장, 재무처장은 일반직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각 부서에는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차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하고 부참여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다만, 대학교당에는 약간인의 교무를 둘 수 있으며 교무는 교무자격을 가진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일반직으로 보한다. ④ 기획실에는 기획과, 예산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로 보한다. ⑤ 교무처에는 교무과, 학적과, 수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로 보한다. ⑥ 학생처에는 학생과, 장학후생과를 두며 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로 보한다. ⑦ 총무처에 총무과, 관리과, 시설과, 용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참사로 보한다. ⑧ 재무처에는 경리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로 보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원광대학교 대학원에 교학부와 교학과, 단과대학에는 교학과를 둔다. ② 교학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교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일반직으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4조(부속시설) ① 원광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소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법칙으로 정한다.

제95조(도서관) ① 도서관에 서무과, 정리과, 열람과를 두며 서무과장은 참사로 보하고 정리과장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원광의료원) ①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등 의과계대학 부속병원의 업무를 통괄하기 위하여 총장밑에 원광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함)을 두고 의료원장은 의무부총장을 겸임한다. ② 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원장 밑에 다음의 기구와 부속병원을 둔다.

1. 기획관리실 2. 의과대학부속병원 3. 의과대학부속제2병원 4.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5. 한의과대학부속광주한방병원 6.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③ 기획관리실에는 기획과를 두고 실장을 부참여 또는 참여로 보하며 기획과장은 참사로 보한다. ④ 각 부속병원의 병원장은 당해대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⑤ 의과대학부속병원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어 진료 및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진료부:진료부에는 진료각과를 두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2. 간호부에는 간호과를 두고 부장과 과장은 면허를 소지한 부참사 이상의 일반직원

으로 보한다 3. 약제과:과장은 약사면허를 소지한 부참사 이상의 일반직으로 보한다 4. 의무기록실:실장은 의무기록사의 면허를 소지한 주사 이상의 일반직으로 보한다 5. 사무국:사무국에 총무과, 관리과, 원무과, 경리과, 조달정비과, 영리과를 두고 국장은 부참여이상, 각 과장은 부참사이상의 일반직으로 보한다.

⑥ 의과대학부속 제2병원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어 진료 및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진료각과:각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2. 간호과:과장은 면허를 소지한 부참사 이상의 일반직으로 보한다 3. 약국:약국장은 약사면허를 소지한 부참사 이상의 일반직으로 보한다 4. 서무과:과장은 부참사 이상의 일반직으로 보한다.

⑦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부속광주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에는 진료각과와 서무과를 두어 진료 및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되 진료 각 과장은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서무과장은 부참사 이상의 일반직으로 보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전문대학

제97조(학장) ① 원광보건전문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학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원광보건전문대학을 대표한다. ③ 원광보건전문대학에 1인의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학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8조(하부조직) ① 원광보건전문대학에 서무과, 교무과와 학생과를 둔다. ② 서무과장은 참사로 보하고 교무, 학생과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9조(부속시설) ① 원광보건전문대학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전임강사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0조(도서관) ① 도서관에 수서과,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부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전임강사 이상 교원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고등학교

제101조(교장) ① 원광고등학교와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에 교장 각 1인과 교감 각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당해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2조(하부조직) 원광고등학교와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에 각각 서무과를 두어 과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절 중 학 교

제103조(교장) ① 원광중학교와 원광여자중학교에 교장 각 1인과 교감 각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당해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4조(하부조직) 원광중학교와 원광여자중학교에 각각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유 치 원

제105조(원장 및 하부조직) ① 원광유치원에 원장과 원감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원아를 보육한다. ③ 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정리하며 원아를 보육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절 정 원

제106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 3, 4, 5, 6, 7, 8과 같다.

제8절 보 칙

제107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동아일보, 전북신문에 공고한다.

제10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09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 사 장	成 丁 鎬	1902. 11. 21	4년	전라북도 이리시 신용동 344－2
이 사	朴 天 植	1911. 1. 9	4년	
〃	朴 吉 眞	1915. 3. 23	4년	〃
〃	趙 甲 鍾	1905. 5. 13	2년	〃
〃	趙 喜 風	1910. 11. 7	2년	〃
〃	丁 石 鎭	1922. 9. 5	2년	전라북도 이리시 남중동 510－9
〃	徐 今 禮	1914. 12. 10	2년	전라북도 이리시 신용동 344－2
〃	李 雲 行	1914. 5. 3	〃	〃
〃	丁 光 薰	1917. 8. 30	〃	〃

부칙(문교대 1042. 1호)

① 이 정관은 196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문교대 1042. 3－1570호)

이 정관은 196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교대 1040. 32호)

이 정관은 196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1040－1042호)

이 정관은 197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1040－340호)

이 정관은 197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1040－1566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 이후 6월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③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1, 2, 3, 4, 5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대학 1040-1128호)

이 정관은 197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1040-892호)

이 정관은 197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1042. 3-1172호)

이 정관은 198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1042. 3-1696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함)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의 교원임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직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대학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의 부총장(부학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대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관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대학 1042. 3-550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조교수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대학 1042. 3-2369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별정직 직원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대학 1042. 3-1121호)

이 정관은 198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과대학부속정신병원에 관한 규정은 의료관계법령에 의한 병원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1042. 3－1772호)

이 정관은 198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1042. 3－1979호)

이 정관은 1984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25422－1256호)

이 정관은 1985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25422－577호)

이 정관은 198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25422－1405호)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대학 25422－1441호)

이 정관은 198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別表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5명	6급	5
일반직계	5명	7급	8
2급(참여)	1	8급	25
4급(참사)	2	9급	8
6급(주사)	2	기술및 고용직계	108명

(別表 2)

원광대학교 일반직 정원

총　　계	338명	운전원	30
일반직계	178명	목　공	1
2급(참여)	3	건축공	1
3급(부참여)	5	전기공	4
4급(참사)	15	원　정	1
5급(부참사)	27	위생공	2
6급(주사)	20	통신공	2
7급(부주사)	20	기관공	2
8급(서기)	45	설비공	2
9급(부서기)	43	인쇄공	1
기술직계	52명	타자원	10
4급	3	교화원	6
5급	3	간호보조원	1
		고용원	45

원광의료원 직무별 정원

총 계	1,068명
일반직계	196명
2급(참여)	1
3급(부참여)	2
4급(참사)	11
5급(부참사)	13
6급(주사)	18
7급(부주사)	20
8급(서기)	36
9급(부서기)	95
의료직계	316명
4급	1
5급	4
6급	7
7급	26
8급	81
9급	197
기술직계	108명
6급	3
7급	15
8급	38
9급	52
기능직계	227명
운전원	22
목 공	4
전 공	9
난방공	14
냉동공	5
교환원	15
전 산	20
정비공	6
간호보조원	132
고용원계	221명

(別表 3)

원광보건전문대학 일반직 정원

총 계	42명
일반직계	23명
4급(참사)	1
5급(부참사)	1
6급(주사)	3
7급(부주사)	3
8급(서기)	8
9급(부서기)	7
기술직계	3명
5급(사서부참사)	1
8급(사서보)	1
8급(실험지사보)	1
기능직계	14명
3등급계	5
운전기사	4
교환원	1
6등급계	9
고용원	9
별정직계	2명
군사교육원(5급상당)	1
군사교육원(9급상당)	1

(別表 4)

圓光高等學校 一般職 定員

총 계	16명
일반직계	8명
5급(부참사)	1
6급(주사)	2
7급(부주사)	1
8급(서기)	2
9급(부서기)	2
기술직계	1명
8급(사서보)	1
기능직계	7명
고용원	7

(別表 5)

원광여자고등학교 일반직정원

총 계	16명
일반직계	6명
5급(부참사)	1
6급(주사)	2
7급(부주사)	1
8급(서기)	1
9급(부서기)	1
기술직계	1명
8급(사서보)	1
기능직계	9명
고용원	9

(別表 6)

원광중학교 일반직정원

총 계	13명
일반직계	5명
6급(주사)	2
7급(부주사)	1
8급(서기)	1
9급(부서기)	1
기능직계	1명
9급(사서보)	1
기능직계	7명
고용원	7

(別表 7)

원광여자중학교 일반직 정원

총 계	13명
일반직계	5명
6급(주사)	2
7급(부주사)	1
8급(서기)	1
9급(부서기)	1
기술직계	1명
9급(사서보)	1
기능직계	7명
고용원	7

(別表 8)

원광유치원 일반직 정원

총 계	5명
일반직계	5명
7급(부주사)	1
8급(서기)	2
9급(부서기)	2

4. 사회복지법인 삼동회(三同會)

원기55년(1970)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 공포되고 산업화의 진전으로 사회복지의 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었다. 교단 자선사업기관도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원기66년(1981) 6월 29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를 발족하고 교단산하의 자선기관을 통합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는 원불교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사업으로는 ①양로시설 ②영육아시설 ③정신요양시설 ④부랑인시설 ⑤노인요양시설 ⑥기타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이다.

원기36년(1951) 이리보육원을 설립한 이래 전주양로원, 중앙수양원을 경영하다가 원기66년(1981) 7월에 이 기관들을 묶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설립인가를 얻었다.

연 혁

33(1948) 1. 16 재단법인 원불교 창설인가 (문교화지령 제34호)
37(1952) 3. 15 중앙수양원(신용양로원) 시설인가 (전북 제9호)
38(1953) 5. 28 이리시로부터 관리권 및 운영권(이리보육원) 일체를 양도받아 송혜환(동환) 원장이 취임
42(1957) 4. 25 이리시로 부터 이리보육원 재산권을 이양받아 관재국 가옥불하 수속을 필함
42(1957) 9. 10 전주양로원 시설인가 (전북 제8호)
42(1957) 9. 20 원불교 재단법인으로 인가를 득하여 이리보육원을 후생시설 인가로 득함
66(1981) 6. 29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설립인가 (보건사회부 제615호)-이리보육원, 중앙수양원, 전주양노원. 대표이사:김근수(익수)교무, 이사:안윤중(중태) 김윤중(환열) 이철행(철행), 정도윤(병윤)교무, 감사:서대인(금례) 이공전교무
66(1981) 7. 29 복지법인 삼동회 설립등기 완료(전주지법 이리등기소)
66(1981)11. 11 이리자선원 설치운영 승인 (사회 1464-16623호)
67(1982)12. 29 대표이사 김윤중(환열)교무 취임
69(1984) 2. 24 이리자선원 시설허가(이리시 허가 제5호)
70(1985) 9. 25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시설 삼정원 시설인가 (익산군 허가 제3호)
70(1985)11. 14 장수수양원 설치운영 승인 (사회 31300-93) 시설허가 (장수군 허가 제1호)
71(1986)12. 31 노인요양시설 원광요양원 시설인가 (이리시 제9호)
72(1987) 6. 29 대표이사 김윤중(환열)교무 취임

〈법인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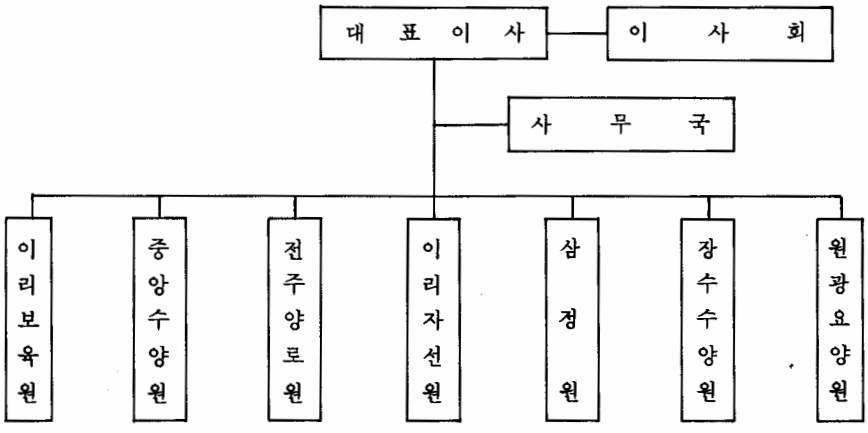

〈역대임원〉

직 위	법명(호적명)	성별	취임년월일	해임년월일	비 고
대표이사	金 勤 修(益修)	男	66(1981). 6.29	67(1982).12.28	
〃	金 允 中(還烈)	〃	67(1982).12.29		
이 사	安 理 正(重泰)	〃	66(1981). 6.29		
〃	金 允 中(還烈)	〃	〃	67(1982).12.28	
〃	李 喆 行(喆行)	〃	〃		
〃	丁 道 允(炳允)	〃	〃		
감 사	徐 大 仁(今禮)	女	〃		
〃	李 空 田(順行)	男	〃		

〈기관현황〉

시설명	대표자	주 소	시설규모		수용인원	종사자수	설립년월일	기 타
			대지	건물				
이리보육원	金西悟(書男)	이리시 신룡동 765-24	6,480.2	11동1,1452	150	15	1953. 5. 28	1953년 이리시로부터 시립보육원의 운영권을 인수
이리자선원	李修悟(在福)	이리시 신룡동 75-2	6,612	6동1,580.72	110	7	1981. 11. 2	이리시에서 행려 부랑인을 수용 운영해온 자활원을 1981년 양도받아 운영
중앙수양원	尹致聖(致遠)	이리시 신동 280-11	3,630	16동 1,079	100	10	1948, 1. 16	양노시설
전주양노원	權聖天(莊植)	전주시 덕진 1가동 1358	3,329	9동1,009.68	90	8	1957. 9. 10	양노시설
원광요양원	柳正完(珍玉)	이리시 신용동 235-1	2,150	1동 875.62	50	12	1986. 12. 31	무의탁 노인요양
장수요양원	李大光(榮植)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443-1	425	2동 88	50	5	1985. 11. 15	양노시설
삼정원	吳性洙(聖培)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 산 61-1	2220.04	2동 1221.66	112	11	1975. 10. 10	정신질환자 시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정관

66. 6.29제정

제1장 목적 및 사업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원불교 정신으로서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1항 및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이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각 지방 원불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 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 성인불구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3. 보육원 및 어린이 집 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4.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명칭 및 사무소

제3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이라 칭한다.

제4조(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 이리시 신용동 344-2번지에 두고 기타 필요한 곳에

민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5조(자산)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설립 당초의 재산과 설립후 취득된 각종 재산중 이사회에서 기초 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으로 하여 보통재산은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처분 및 변개)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기부·양도·교환·기채·담보·임대 등 기타 처분 및 변개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적립)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 말에 잉여금을 이를 계속사업에 이월 사용하고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8조(경비) 이 법인의 경비의 충당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생기는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자격) 이 법인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재단법인 원불교 임원직에 있는 자 2. 복지법인 기관장에 있는 자

제10조(임원) 이 법인의 제2조 각 호에 의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사(대표이사 1인 포함) 2. 감사 2인 이상 3. 고문 약간명

제11조(대표)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상임이사회 협의에 의하여 이 법인 전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 법인 대표이사가 유고시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거나 상임이사가 지명하는 자를 대표이사로 한다.

제12조(이사) 이 법인의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주요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제13조(감사) 이 법인의 감사는 이사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민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14조(고문) 이 법인의 고문은 학식과 덕명높은 국내의 저명 인사로서 대표이사와 상임이사의 합의하여 추대하고 이 법인 전체의 업무에 관한 사무에 응한다.

제15조(선출) 이 법인의 초대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16조(임기) ①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인 이사 3분 1이상 결의가 있을 시는 이를 1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제4장 회 의

제17조(이사회) ① 이 법인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의 3분의 2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시에 개최하고 대표이사는 그 의장이 된다. ② 전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회의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 전체의 요구가 있을 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회의 소집권자가 전 ②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소집하지 않을 시는 이사중에서 소집간사를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주요 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제18조(정족수) 이 법인의 이사회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의결) 이 법인 이사회가 의결 집행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및 재산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 및 직원의 임면 복무 복수에 관한 사항 3. 법인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4.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 증감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운영 규정 재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

제5장 수익사업

제20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 사업 2. 농장운영 및 양돈, 양계 사업 3. 직업 보도 및 조림녹화 사업 또는 각종 원예 사업 4. 의약 및 의료사업 5. 기타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각종 부대사업

제21조(관리) 제20조 규정에 의한 각종 수입사업은 별도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회계 경리 등은 목적 사업과 분리한다.

제22조(부성) 이 법인의 수익사업부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책임자를 두어 이를 관리 운영토록하고 이에 대한 이익금은 법인 목적 사업비에 충당한다.

제23조(직원) 이 법인의 수익사업 경리직원은 목적사업 경리직원과 분리하되 이에 대한 임면, 복무, 보수, 출장, 여비규정 등은 별도 운영규정 또는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존속과 해산

제24조(해산) ① 이 법인은 영구존속을 그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해산하여 타법인과 통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되 임원은 당연직 청산위원이 된다.

제25조(청산) 이 법인의 해산할 시에 청산법인은 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부담한다.

제26조(위촉) ① 이 법인이 해산되면 청산후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체에 위촉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사업을 계속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조치가 불가능할 시는 민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장 상 벌

제27조(표창) 이 법인의 임원 및 각종 직원이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대표이사가 표창하거나 관계 관청에 포상 상신한다.

제28조(상벌) 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법인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명 징계 또는 파면을 하거나 민형사적 책임을 부여한다.

제29조(징계) 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의 징계 처분에 관한 규정은 별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부 칙

제30조(시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1조(운영) 이 정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 사업법 생활보호법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민사소송 절차법의 규정을 준한다.

제33조(임원)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임기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표이사	金益洙	3	220609－1496511	이리시 신용동 344－2
이 사	安重泰	3	200225－1495817	〃
〃	金遵烈	3	271207－1496110	이리시 남중동 510－8

이 사	李喆行	3	281212－1496017	전주시 다가동 1가 18－1
〃	丁炳允	3	350515－1496516	이리시 신용동 376－36
감 사	徐今禮	2	141210－2496517	이리시 신용동 344－2
〃	李空田	2	270324－1496512	〃

5. 社會福祉法人 昌弼財團

사회복지법인 창필재단은 황온순(정신행)이 운영하여 온 한국보육원을 원기67년(1982) 1월 황원장과 이공주교무 2인의 사재를 모아 사회복지법인 창필재단을 설립하고 보육원을 교단에 귀속시켰다.

원기35년(1950) 6·25로 인한 전쟁고아를 임시수용하고 서울시립아동양육원으로 시작하여 황정신행이 원장직을 맡아 한국보육원이라 명명 운영하였다.

이후 원기43년(1958) 7월 재단법인 한국보육원으로 법인 인가를 취득하고 원기55년(1970) 1월 경기도 양주군 현위치로 시설을 이전 수용하였다. 원기62년(1977) 8월에 기독교 계통의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에 시설운영을 맡겼으나 여의치 않아 원기67년(1982) 4월에 시설 및 재산을 반납받아 사회복지법인 창필재단을 설립하여 원불교에 회사하였다.

교단과의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많은 교역자가 헌신적 봉사를 하여 그 맥을 이어 온 창필재단에 교단의 출가·재가 임원(이사 3인, 감사 2인)이 참여하고 있다.

〈설립인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한다.

1982년 2월 23일 보건사회부장관

1. 인가번호:제625호
2. 법인명:사회복지법인 창필재단
3. 대표자:황온순
4. 소재지: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10
5. 설립목적:아동복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 사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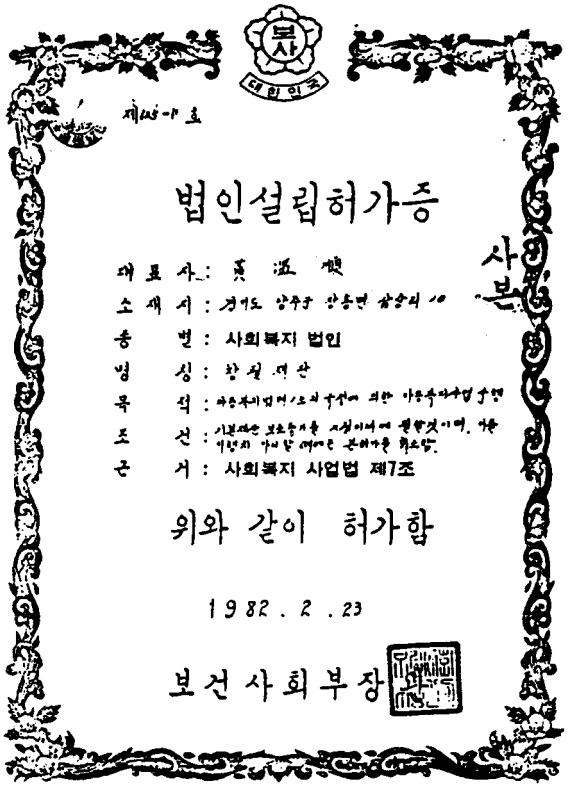

보사

대한민국

제145-1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대 표 자 : 黃 淨 順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10

종 별 : 사회복지 법인

명 칭 : 한 국 보 육 원

목 적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사업 수행

조 건 : 시설재은 보호아동을 수용하여야 함.

근 거 :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

위와 같이 허가함

1982. 2. 23

보건사회부장

〈역대임원〉

직 위	법 명(호적명)	성별	취임년월일	해임년월일	비 고
대표이사	黃淨信行(溫順)	女	1982. 2. 23		
이 사	姜 (운경)	〃			
〃	朴 恩 局(永愛)	〃	〃		
〃	張 應 哲(由錫)	男	〃		
〃	崔 (준영)	男	1982. 2. 23		
감 사	朴 性 敬(敬順)	女	〃		
〃	金 (옥례)	〃	〃		

〈시설현황〉

시설명칭	한국보육원		대표자	황정신행(온순)
주 소	경기도 영주군 장흥면 삼상리 10			
시설규모	대지	924평	최초설립 연 월 일	1950년 월 일
	건물	4동 210.67평		
수용인원	명		종사자수	명
기 타				

사회복지법인 창필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인류애의 정신에 입각하여 아동복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창필재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11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육아시설 설치운영
2. 휴양시설 설치운영
3. 기타 위 각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부대사업

제2장 재산 및 정리

제5조(재산)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설립을 위하여 기부받은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과 장래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재산 및 기타재산으로 한다.

제6조(재산의 처분)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을 매각, 기부, 담보, 양도, 교환, 차입, 임대코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경비)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2.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
3. 각종 기부금품
4. 정부 보조금
5. 기타 제수입금

제8조(잉여금)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9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이사 5명(대표이사 포함) 2. 감사 2명

제11조(임원선임) 이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12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직무대행)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직무대행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 법인의 이사라야 한다.

제14조(이사) 이사는 이 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주요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제15조(감사) 감사는 이 법인의 예산집행결과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임기) 1. 이사회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기를 임기로 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각기 그 임기만료 30일전까지 대표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7조(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1회 12월중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이사회 개최요구가 있을 때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이사회는 재적이나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결의안건)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6. 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장 수익사업

제20조(수의사업) 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축산 영농 사업
2. 관광 위락 사업
3. 식당, 매점 운영사업
4. 기타 부대사업

제6장 해 산

제2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코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청산) 이 법인 해산후 잔여재산은 이사회 결의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사회복지 법인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키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23조(시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4조(정관변경) 이 정관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민법 등 법규에 준용한다.

6. 사회복지법인 개성유린관

本 法人은 1930년대에 開城에서 의료사업에 종사하던 韓喆鎬선생과 그의 아내인 尹致德(貞植) 교도 내외가 私財를 傾注하여 원기22년(1937) 5월 5일 開城市 南山洞 18번지에 開城有隣館을 창설 개관하고 무료 간이학교와 무료진료부와 실비 이발부 등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 사

업을 착수하여 불우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투철한 보살정신을 구현하면서 계몽교육과 진료 및 사회복지 혜택을 펼쳐왔다.

그후 지역사회의 절실한 상황과 요청에 따라서 원기22년(1937) 10월 1일 개성시 고려동 1035번지에 보육원을 부설하고 기아, 고아 등을 수용하여 보호 양육사업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기23년(1938) 12월 28일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 인가를 받음으로써 본 법인의 활동이 사회로부터 공인을 받게 되었다.

원기24년(1939) 10월 10일에는 개성시 고려동 913번지에 양로원을 부설하여 무의무탁한 노인들을 수용 보호하는 등 사회사업을 확충하여 왔다. 그러나 운영 자금의 부족과 원아들의 직업보도 문제를 고심해 오다가 원기32년(1947) 3월에는 개성시 서흥동 301번지에 견직물 공장을 설치 운영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사회 상황이 대단히 불안하여 3·8선을 인접한 개성의 현실이 위험함을 느끼고 원기33년(1948) 8월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동 352번지에 소재한 건물을 구입하여 이에 대비하여 왔다.

6·25동란이 일어나면서 개성소재 전시설이 소진됨에 따라서 부득이 개성에서의 사업은 중단하고 원기38년(1953) 10월 1일에 새로 구입해 둔 마포구 창전동 352번지에 당국의 재인가를 받아 보육사업을 복구하여 영위하였다. 그 후 동란 후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함께하는 가운데에도 국내외 각계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혼신의 정성을 기울여 왔었으나 원기50년(1965)과 원기51년(1966) 2차에 걸친 대홍수로 전건물이 완전 침수됨에 따라 더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서 원기51년(1966) 8월에는 정능 동산 1~1전지 임야 6,4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각계의 도움을 받아 60여평의 원사를 신축하였다. 그러나 침수된 지역의 지가가 폭락하고 사무절차 등이 지연되어 큰 난관에 봉착하였으나 각계의 도움으로 복구작업을 하는 한편 원기51년(1965) 7월 15일에는 탁아소 부설공사를 착수하여 동년 10월 14일에 유린 탁아소의 개설인가를 받아 그 운영을 착수하여 왔다. 그러나 한철호 원장은 겹치는 난관과 격무를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원기51년(1966) 8월 16일 타계하고 말았다. 이에 그의 부인이신 윤치덕(정식) 교도가 원기51년(1966) 9월 14일에 보육원장 및 탁아소장에 취임하여 부군의 유업을 이어 받는데 혼신의 정성을 기울여 왔다.

원기58년(1973) 정능 현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을 요청한 당국의 뜻에 따라 동대문구 신내동 572의 2번지 현 위치에 대지 1062평, 건물 144평을 마련하고 본원을 이전하였다.

그후 신도리코 회사의 후의로 담장공사, 창고신축, 강당 및 숙사신축 등 70여평의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왔다. 그러나 이사장 윤치덕(정식)교도가 점점 연로하여 짐에 따라 그의 자제인 한광수 박사가 원기64년(1979) 6월 18일 새 이사장에 취임하여 오는동안 여러가지 운영상의 형편에 따라 보육원 사업을 변경하여 원기64년(1979) 12월 19일에 유린어린

이집으로 변경 운영하여 왔다. 원기68년(1983)년에는 정부 시책에 따라 본 법인을 재단법인 유린새마을 유아원으로 변경하여 아동복지 사업을 하여왔다. 그동안 본 한철호 원장이 보건사회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고, 원기50년(1965) 5월 5일에는 육영수 여사로부터 윤치덕(정식) 원장이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으며, 원기53년(1968) 10월 10일에는 경기 경운회장으로부터 윤치덕(정식) 원장이 공익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이와같이 한철호 윤치덕(정식) 교도의 투철한 보살정신과 혼과 정성이 어려있는 본 법인의 모든 재산과 운영의 문제를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원장 윤치덕(정식) 교도의 뜻에 따라 원불교에 넘기기로 하고 원기71년(1986) 2월 25일에 그 인계인수 절차를 마침에 따라 원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교단은 원기71년(1986) 1월 구 개성교당 윤치덕교도의 희사를 받아들여 서울 도대문구 신내동 572의 2에 사회복지법인 개성유린관을 설립하였다. 이는 종래의 원불교 중앙총부 지역 출가 교역자 임원 중심사회사업에서 재가 동참의 전국적 확산의 계가가 될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원기71년(1986) 1월 16일 중앙총부 원의회는 종로교당 (개성교당 출신) 윤치덕교도의 희사를 받아들여 사회복지법인 개성유린관을 교단의 사회복지기관으로 발족시키기로 하였다. 서울 동대문구 신내동 572-2에 위치한 대지 1,060평, 연건평 2백평의 건물 4동의 유린 새마을 유아원을 인수하고 이사 7인중 3명은 윤치덕교도의 가족으로 하고 4명은 교단측에서 선임하여 운영키로 합의하였다.

연 혁

22(1937) 5. 5 社會事業을 目的하고 京畿道 開城市 南山洞 18번지에 開城有隣館 館舍 新築을 韓喆鎬, 尹貞植부부가 私財를 傾注하여 創立開館하고 無料簡易學校, 無料診療部 實費理髮部 등을 始作함

22(1937)10. 1 開城市 高麗洞 1035番地에서 保育園을 附設하고 棄兒 孤兒 等을 受容 保護 養育함.
初代 園長 就任 (韓喆鎬)

23(1938)12.28 財團法人 開城有隣館 認可받음
初代 理事長 就任(吳箕煥)

24(1939)10.10 開城 高麗洞 913番地에 養老院을 新設하여 孤無依한 男女老人을 受容 保護함

32(1947) 3. 1 運營資金 調達과 保育園 受容 兒童의 職業補導策으로 開城市 西興洞 301番地에 絹織物 工場을 設置함

33(1948) 8. 8 開城市는 3·8線이 隣接되어 있으므로 安全을 기하고자 서울特別市 麻浦區 倉前洞 352番地 建物 및 垈地를 購入하여 準備함

35(1950) 6.25 6·25動亂에 依하여 開城市 所在 保育園 建物만 殘在하고 其他 施設 全部가 불타버림

39(1954)12.31 서울特別市 麻浦區 倉前洞 352番地에서 當局의 再認可를 받아 保育事業을 復區 營爲함
受容兒童 : 15名

職員數 : 園長(韓喆鎬)
園監(魚允姬)
總務(崔圭瑞)
經理(朴殷鎭)
保姆(尹貞植 王福姬) 2名
看護員(金惠仁)
勞務員(金永俊)
垈地 : 313坪 建物 : 91坪

40(1955) 5.18 財團法人 再認可 받음
理事長 : 吳箕煥
理事 : 韓喆鎬, 金熇淳, 崔圭瑞 馬溫圭, 梁柱安

40(1955) 7. 2 社會福祉法人 開城 有隣舘으로 轉換
監事 : 禹相淳, 林昊植

41(1956) 5.30 基督敎 世界奉仕會 加入. 園兒 50名

41(1956) 6.25 韓喆鎬 園長 保健社會部長官 표창받음

43(1958) 7. 1 美 508部隊 ASA와 結緣함

45(1960) 1.10 麻浦區 倉前洞 353番地의 1.2號의 田 162坪을 購入하였음.

46(1961) 4.26 스코필드 博士의 厚意로 麻浦區 倉前洞 356番地의 1호의 田 100坪을 購入함

46(1961)11.18 園監 魚允姬 女史 別世

47(1962) 8 基督敎 兒童 福利會에 加入, 園兒 50名

47(1962) 8.15 韓喆鎬 園長 政府表彰今 第7條에 依하여 公益 褒障을 받음

48(1963)11. 5 508th U.S ASA와 AFAK의 援助를 받아 韓美財團의 管理下에 宿舍 26坪을 增築 및 508th U.S ASA와 韓美財團 援助로 事務室과 洗面浴室의 修理 등을 함

49(1964) 4. 5 508th U.S ASA 協助및에 兒童宿舍, 玄關增築, 小倉庫改築 및 下水道 工事를 함

49(1964) 8.21 서울 特別市 麻浦區 西江洞 模範部落 托兒所가 編入되어 本 保育園과 併設됨

49(1964) 8.21 初代 托兒所長 就任(韓喆鎬)

49(1964) 9. 1 兒童 30名 CCF 加入

50(1965) 3.10 理事 金熇淳 一金 參拾萬원, AFAK 資材 援助로 托兒所 新築함
暴雨로 破損된 倉庫 및 園舍 30坪를 改築함

50(1965) 5. 5 尹貞植씨 장한어머니상 받음(육영수여사 수여)

50(1965) 7.10 托兒所 附設工事 完了됨

50(1965) 7.16 大洪水로 全建物 完全浸水됨

50(1965)10.14 有隣 托兒所 許可를 받음(서울特別市長)

50(1965)10.30 水害復舊 工事完了
(大韓赤十字社, 508th U.S ASA CCF KCWS. CARE 外 親知들의 신속한 도움으로 完全復舊됨

51(1966) 8.16 韓喆鎬 園長 別世

51(1966) 9.14 尹貞植교도 第2代 保育園長 및 托兒所長에 就任

52(1967) 2.25 姜信鍾 理事로 就任

52(1967)11.21 兒童福利施設 所在地 移轉 (서울特別市 城北區 貞陵洞 山1의 1番地 林野 5,195坪 建物 114坪)

53(1968)10.10 尹貞植 園長(경기.경운회장) 공익공로상 받음

54(1969) 5. 9 尹大城 理事 就任, 池憲澤 監事 就任

55(1970) 1. 3
~58.(1973) 9 尹貞植 園長 美國 外遊

55(1970) 8.13 尹大成 理事長에 就任 第2代 理事 : 吳箕煥, 馬溫圭, 尹貞植 姜信鍾 監事 : 禹相淳, 池憲澤

56(1971) 1.14 基本財產 代替 許可 받음

56(1971) 1.15 兒童福利 施設 所在地 移轉 (서울 特別市 東大門區 新內洞 572의 2, 垈地 1062坪 建物 144坪)

56(1971) 5. 5 金麗淳 理事로 就任

57(1972) 9.15 基本財產 賣渡함

59(1974) 6.20 法人任員 改選인가 받음 尹貞植 이사장에 취임. 第3代 理事 : 宋錫度 金周煥 金正淑 白雲禮 監事 : 劉信榮, 金明國

60(1975) 9.25 法人 定款변경 認可받음
理事 5人에서 7人으로 鄭太淑 崔順榮 理事로 就任

61(1976) 3.17 垈地 賣買交換,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新內洞 572의2 垈地 155坪을 李永順氏에 賣渡하고 李永順氏 所有 垈地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新內洞 544의 4, 155坪을 賣受함(賣交換).

61(1976) 4. 7 株式會社 신도리코의 厚意로 園舍 둘레 담장工事 및 축대공사(1,500,000).

62(1977) 5.21 株式會社 신도리코의 厚意로 倉庫新築 11坪 9合6작 2棟(1,000,000)

1978. 6.23
~11. 1 株式會社 신도리코의 厚意로 講堂 및 宿舍 新築, 上층 30坪 下층 30坪 地下 10坪, 計 70坪 (150,000,000)

63(1978) 7.28 韓光秀 理事 就任

64(1979) 6.18 講堂 및 宿舍 준공식

64(1979) 6.18 第4代 韓光秀 理事長에 就任

64(1979)12.20 有隣 保育園의 運營이 여러가지로 어려워 目的事業을 변경, 有隣 어린이집의 認可를 받아 유아교육사업을 착수.

65(1980) 8.12 韓光秀, 尹貞植, 宋錫度, 金周煥 白雲禮 등 理事重任

66(1981) 9.23 鄭太淑 崔順英 理事 重任

68(1983) 9.22 韓光秀, 尹貞植, 宋錫度, 金周煥, 白雲禮 등 理事 重任.

68(1983) 9.26 本 有隣 어린이집을 財團法人 開城有隣館으로 명칭 변경

68(1983)10.18 政府施策에 따라 財團法人 有隣새마을 유아원으로 명칭을 변경

69(1984) 9.25 鄭太淑 崔順英 理事 重任

71(1986) 2.25 本 財團法人 有隣새마을 유아원을 圓佛敎에 기부운영할 것을 理事會의 決議로 決定하여 인계인수 마침

71(1986) 1.18 尹正植 宋錫度 金周煥 鄭太淑 理事 退任
劉信英 金明國 監事 退任
71(1986) 1.18 韓智現 李喆行 李建衡 田淳和 理事 就任
71(1986) 1.18 朴寬植 金福根 監事 就任
71(1986) 3.26 圓佛教에서 引受하여 有隣 새마을유아원 입학식 擧行
71(1986) 9.22 韓光秀 白雲禮 韓智現 李喆行 李建衡 理事 就任
72(1987) 9. 1 初代 尹貞植 園長 退任
2代 太貞模 園長 就任

〈역대임원〉

직 위	이 름	성별	취임년월일	해임년월일	비 고
이 사	鄭 太 淑	女	60(1975). 9.25	71(1986). 1.18	
〃	崔 順 英	〃	〃		
〃	尹 貞 植	〃	〃	71(1986). 1.18	
〃	宋 錫 度	〃	〃	71(1986). 1.18	
〃	金 周 煥	〃	〃	71(1986). 1.18	
〃	韓 智 現	〃	71(1986). 1.18		
〃	李 喆 行	男	〃		
〃	李 建 衡	〃	〃		
〃	田 淳 和	〃	〃		

〈재산상황〉

○ 대지 : 35,100㎡ (1,060坪)
○ 건물 : 숙사 및 식당 총 214.34坪

구 분	평	구 조	비 고
숙 사	30.69	세면 부록조 세면파급 평가건	
〃	30.69	〃	
숙 사	30.69	〃	
식당및사무실	51.71	〃	지하11.88
주 택	70.56	연와조 스라브 2층	지하 11.28

사회복지법인 개성유린관 정관

제 1장 명 칭

제 1조 본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개성유린관이라 칭함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 2조 본 법인은 아동복리법 제1조에 행당하는 요보호아동을 수용보호함을 목적함

제 3조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육아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유지 경영한다.

제 3장 사무소

제 4조 본 법인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내동 372－2 위치함

제 4장 자산 및 회계

제 5조 본 법인의 자산은 별지목록의 재산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기부금 기타로서 함

제 6조 전조의 재산은 차를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분함

1.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부동산 및 특히 기본재산으로 지정 기부된 재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 함

제 7조 본 법인의 재산은 이사장이 차를 관리하고 현금은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치함

제 8조 본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기부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서 충당함

제 9조 본 법인의 매년도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경과하여 차를 정하고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함

제10조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함

제 5장 임 원

제11조 본 법인에 하의 임원을 치함

(단,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을 증감함을 득함)

이사장 1인

이 사 6인

감 사 2인

제12조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이 차를 위촉함

제13조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을 통리한다.

제14조 이사장이 유고시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함

제15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원취임에 있어 지방장관의 인가를 득하여야 하며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유기간으로 함

제 6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는 매년 1회 차를 개최하고 필요한 시는 이사장이 차를 소집함

제17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이사 과반수로서 차를 정하되 가부동수될 시는 의장이 결의하는 바에 의함

제18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야 의견 진술함을 득함

제19조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하와 같음

1. 예산결산 및 재산소득 관리에 관한 사항
2. 임원 진퇴에 관한 사항
3. 본 법인의 중요운영 방침에 관한 사항
4. 일시 차입금에 관한 사항
5. 본 법인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보 칙

제20조 본 법인 정관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경하여 이사장이 차를 정함

제21조 본 법인의 정관 변경 본 법인의 해산은 이사전원의 동의를 득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수함을 요함

제22조 본 법인 해산의 경우에 본 법인에 속한 재산은 전조의 수속에 준하야 처분방법을 결정하기로함.

7. 학교법인 해룡학원

학교법인 해룡학원은 원기55년(1970) 6월 1일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원불교 정신에 입각한 중등보통교육 및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중등교육을 담당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하에 해룡중학교 해룡고등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역대임원〉

직 위	법명(호적명)	성별	취임년월일	해임년월일	비 고
이사장	朴將植(天植)	男	55(1970) 6. 1		
이 사	成丁哲(丁鎬)	〃	〃		
〃	權世英(在弘)	〃	〃		
〃	이 (주형)	〃	〃		
〃	조 (경애)	女	〃		
감 사	金允中(遵烈)	男	〃		
〃	김 (복례)	女	〃		

〈산하기관〉

학교명	학교장	서무책임자	소재지	설립년월일
해 룡 중 학 교	權世英(在弘)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68	56(1971). 1.25
해 룡 고 등 학 교	〃		〃	59(1974). 1. 5

학교법인 해룡 학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해룡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 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1. 해룡중학교
2. 해룡고등학교

제 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68번지에 둔다.

제 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②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 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3장 기 관

제1절 임원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7인(이사장1인포함)

감사 2인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2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전에 감독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 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 정수의 1/3이상은 교육에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7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임기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의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 및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18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해룡중·고등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수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이사회 의결 재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수익사업

제27조 (수익사업의종류) 이 법인의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흥행사업
2. 농림산물 생산사업

제28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27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화극장 및 도양 농원을 경영한다.

제29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체의 사무소는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68번지에 둔다.

제30조 (관리인) ① 제28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 산

제31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교부 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장에게 귀속된다.

제33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 직 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면

제34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장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청에 보고한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보고한다.

제2관 신 분 보 장

제35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교원의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적 기구 또는 외국과 재외 국민교육 기관에 고용된 때
7. 여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제36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주로 한다.
2. 제35조 제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5조 제3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3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5. 제3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5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1년 이내로 한다.

제37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당해 임면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제35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38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5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35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직위 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임명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임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0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1)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교원 징계위원회

제4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교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의 임면권자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징계위원회를 둔다.

1. 학교의 장 징계위원회
2. 일반 교원의 징계위원회

제43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관할) 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이상 9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 학교의 장 징계위원회는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 사항을 관장하되 그 위원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일반교원 징계위원회는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 그 위원은 일반 징계위원회가 관장하는 학교의 교원과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인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반수에 1인을 가산한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7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9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0조 (교원 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51조 (운영세칙) 교원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재심위원회

제52조 (재심위원회 설치)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재심위원회를 둔다.

제53조 (재심위원회 구성) ① 재심위원회는 5인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 덕망인사 및 감독청의 공무원
2. 당해 학교의 교원
3. 당해 학교의 법인 이사

제54조 (재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재심위원회의 심사) ① 재심위원회는 사립 학교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관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56조 (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57조 (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 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58조 (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59조 (재심위원회의 결정) ①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재심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③ 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의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경우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0조 (재심심사 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 심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 주문
3. 결정 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61조 (재심심사 결정서의 송부) ① 재심심사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 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재심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 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2조 (재심결정의 효력)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63조 (위원수당 등)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4조 (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재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 소속 직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65조 (운영세칙)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절 사무직원

제66조 (자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7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 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의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8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따로 두어야 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72조 (법인 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고등학교

제73조 (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4조 (하부조직) 고등학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부참사로 보하며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중 학 교

제75조 (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2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 (하부조직) 중학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을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정 원

제77조 (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및 별표 2와 같다.

제8장 보 칙

제78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광주일보)신문에 공고한다.

제79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0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 사 장 겸 이 사	朴天植	1911. 1.19	4년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344－2
이 사	成丁鎬	1902.11.21	〃	〃 〃
이 사	權在弘	1936.11. 5	〃	전남 영광군 군서면 녹사리 577
이 사	李周亨	1918. 2.11	2년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217
이 사	曺敬愛	1917. 9.30	〃	전남 목포시 죽동 96
감 사	金遷烈	1927.12. 7	〃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344－2
〃	金龜禮	1923. 6.30	1년	전남 영광군 군서면 녹사리 577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3명
일반직계	3명
5급(부참사)	1명
7급(주 사)	1명
8급(서 기)	1명

(별표 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 계	9명
일반직계	5명
5급(부참사)	1명(고)
6급(주 사)	1명(중)
7급(부주사)	1명
8급(서 기)	2명(중·고 각1명)
기능직계	4명
6등급계	4명

8. 財團法人 永慕墓園

재단법인 영모묘원은 원기65년(1980) 민법 제33조 및 보사부 훈경 제220호 제4조에 의하여 재단법인 영모묘원으로 허가를 취득했다.

재단법인 영모묘원은 원불교 예법정신에 바탕, 조상들에게 영안의 안식처를 만들어 보본의 도리를 다하게 하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을 계획하여 묘지를 공원화하여 국토의 능률화에 기여하고 가정의례준칙의 기본정신을 선양함으로써 국민도의 함양에 앞장섬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공원 묘지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공예, 토건, 수공사업, 조림사업, 장의사 및 운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원기65년(1980) 묘지허가법인을 취득하고 원기68년(1983) 6월 16일 재단법인 영모묘원으로

구역변경 허가증을 받고 7월 2일에 익산군으로부터 시설 묘지 및 시설허가를 취득했다.

연 혁

62. 3 제35회 교정위원회에서 과거 상조부가 주관하던 제사 자금제도를 부활하여 시행할 것을 교정위원회에서 통과 되었으며 63. 2. 22일 제166회 원의회에서 제사 자금을 헌공 자금이라고 명칭하고 헌공 관리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결의 통과됨(21인 이내)

63. 3.16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위원에는 교정원장, 양부원장, 공익부장, 교육부장, 재무부장, 교화부장의 당연직과 서대인, 서세인, 김서오, 이공전, 박은국, 윤치성, 이경순, 유성일 등 15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운영위원회 시행세칙을 결정함.

63.10.19 의식원 발족(가칭)후 영모원으로 확정 제170회 임시원의회에서 가칭(의식원 발족) 헌공자금 관리와 묘지관리 업무주관

63.12.10 알봉묘지관리 인수(3.841평 인수)

63.12.30 웅포에 공원묘지 조성 목적으로 임야매입 (유지사업회에서 임야 62.490평 매입 전북 익산군 웅포면 대붕암리 소재)

64. 2.22 제174회 원의회에서 영모원 정관 통과

64. 4.30 제2차 임시 운영위원회에서 1) 시설기준에 대한 ① 묘의 형태는 사각 분묘형으로 결정되었으며 ② 묘의 경기석은 시멘콘크리트 가공품으로 의견일치 ③ 묘비의 형태는 와비형으로 결정(68년, 변경되었음)

2) 묘지사용에 대해서는 ① 64년도 이후 신입자에 한하여 전무출신 직계부모는 백미 3가마, 일반교도는 백미 5가마로 정하고 백미 가격은 정부미 수매가격으로 정함. ② 사용료에는 묘비·관리비·묘경계석을 포함함. ③ 기타 모든 묘지는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나 시설에는 차용을 두지 않기로 결정함.

65.1. 11 임시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제2차 임시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결정하였으며 ① 합장묘지는 1인묘지 크기로 할 경우 사용료는 실비만을 추가한다. ② 전무출신 직계 혜택은 부모와 정토회원에 한한다. ※법적 근거가 확실한 정토회원은 복수일 경우도 혜택 가함 ③ 가족 묘지의 경우는 5기를 기준하되 5기 이상은 백미 4가마, 10기 이상은 백미 3가마로 할인혜택 권장함.

65. 1.29 64.11월에 공원묘지허가 서류 신청으로 65. 1.29자로 묘지법인허가를 취득함.

65. 2.22 농지매입. 웅포면 대붕암리 (답 959평)

65. 7. 8 제4차 임시운영위원회에서는 1) 묘지법인허가 전북도 제1호(65. 1.29자)로 (묘지법인 영모묘원) 허가됨.

65. 7.22 웅포면 대붕암리 177－1 전북고시 129호로 사방지 해제.

65. 7.29 묘지 시설허가 취득 익산군 22호로 매장 및 면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됨.

65.12.23 정기 운영 위원회에서는 ① 토지매입과 ② 사업추진을 적극 추진키로 결의됨.

66. 2. 익산군 웅포면 대붕암리 549번지 대지 324평 매입.

66. 8. 전답 매입. 웅포면 대붕암리 20번지 답 418평, 21번지 전 352평, 21-1번지 전 317평(국)

66.10. 5 제5차 임시운영위원회에서는 웅포묘지 진행에 관하여 보고가 되었으며 ① 웅포 주민들의 반대 진정서(군청과 원불교) 등으로 인하여 진행에 난점이 있다. ② 웅포산의 묘지조성에 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차후 알아 보기로 하였으며 ③ 또한 상임위원회를 두기로 결의됨. 상임위원장 : 이백철, 위원 : 김인용, 윤치성, 김윤중, 김정용, 정도윤, 이건춘 실행위원이 선출됨.

66.12. 1 종법사님 정양차 신도안 행가시 왕궁면 동본리 산 109번지 답사.

67. 1.19 영모묘원 감사 임기 만료로 인한 유임 신청서 제출

67. 2. 4 제1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웅포의 여러가지 어려운 (주민들의 반대. 분묘의 미장. 산림훼손 허가 등) 점들이 많으므로 금마에 있는 금마산을 알아보기로 결정이 됨.

67. 3.13 제1회 상임위원회에서 금마산을 알아 보기로 결정하였으나 제2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리시립묘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알아보기로 결정됨.

67. 5.11 종법사님을 모시고 익산군 함라면에 있는 함라산을 총부 전 간부 및 군청 산림계 직원들과 함께 답사 하였음.

67. 5.27 제2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리 시립묘지를 위탁 관리 할 수 있나를 알아 보기로 결정하였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보류가 됨.

67. 6.17 5월 11일 종법사님 모시고 함라산 답사결과 산의 2/3이상이 바위로 되어 있어서 포기 하기로 하고 왕궁면 동봉리에 있는 시대산을 답사한 결과 교통이 금마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이리진입로가 좋을 뿐만 아니라 총부에서도 가까운 지역이므로 적합한 지역으로 결정됨

67. 6.17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왕궁의 초지 대토지역으로 만덕산이 결정됨 (도청 산림계 측정계 직원 답사)

67. 6.22 왕궁의 시대산을 계약 체결함. 주소 : 익산군 왕궁면 동봉리 산 109번지 185.356㎡ 18.69 (56.070평) 매입금액 : 오천육백만원정

67. 7.23 ① 왕궁 임야 매입의 잔액금 완불 ② 답 1,723평 계약체결 8,158,000원

67. 9.13 제199회 임시원의회에서 영모묘원 정관이 개정되었으며 개정의재는 웅포면 대붕암리에 있는 주소를 왕궁면 동봉리 산109번지로 변경되어 개정됨.

67.10.21 제5회 상임위원회에서는 2차로 왕궁임야(111번지)를 계약하되 알봉묘지를 자선원에(1,840평)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왕궁임야를 계약하기로 결정됨. (※자선원에서 1,840평을 이천만원에 매각하기로 함 왕궁산은 67.10.27일 계약체결됨(41.520,000원)

67.11.20 왕궁임야의 잔금 지불(111번지) 왕궁산 109번지와 111번지 답 654번지의 총지불금액 (일억 팔백삼십만삼천원) 자금출처는
① 자선원 2천만원 1,540평 팔봉산(111번지 매입시) ② 전북은행 3천만원 (111번지 매입시) ③ 조실에서 천이백만원 (109번지 매입시) ④ 봉공회에서 천오백만원 (109번지 매입시) ⑤ 나머지 삼천백십만삼천은 영모원에서 공원묘지 부지 매입시 사용(109번지 매입당시)

67. 9.23 왕궁의 공원묘지로 인한 초지 대토로 만덕산에 10Ha를 초지조성 허가를 농수산부에 신청함

68. 1.20 총부 및 교단인사 관계로 영모묘원 이사 및 감사 갱신서류 재출 (도청)

68. 2.26 공원묘지 구역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응포에서 현재의 왕궁면 동봉리 산 109번지로 구역변경이 되므로 이에 따른 서류 제출)

68. 2.29 농수산부로 제출되었던 초지 전용허가서가 반려가 되므로 인하여 공원묘지의 법인허가가 불확실하게 되었으나 도자체에서 처리하라는 농수산부의 초지 전문위원회의 통보로 87, 7.21일 만덕산에 초지 조성지로 허가 되었던 초지를 대토로 하여 영모묘원 법인 설립허가에 따른 제반 서류가 1983년 8월 4일에 완료됨

68. 3.10 만덕산 초지조성지의 벌목과 동시에 초지조성사업 실태 조사가 완료됨. 여기에 투입된 인원 및 재료로 초지종자 400kg 비료 4톤, 석회 30톤과 동시에 인력은 기숙사생 170여명, 총부임직원 50여명, 동산선원생 70여명 인부 400여명 등 총 600여명의 인원이 소요되었으며 영모원에서 300여만원의 자금이 지원됨

68. 5.11 왕궁 주민을 위한 원대부속병원에서 의료봉사가 실시됨

68. 5.17 왕궁 주민들의 반발여론으로 인한 왕궁 면장의 의견서가 군에 제출되어서 군수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공원묘지 6.7) 도청환경위생과 직원이 직접 현장 답사함.

68. 6.12 왕궁 주민들의 진정으로 인하여 부지사 결재가 보류되어 군청 사회과장 및 계장이 직접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 하였으며 영모원의 화장장을 만들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음.

68. 6.16 법인허가 도청으로 부터 취득 (구역변경허가서) 민법 제32조 및 보건사회부훈령 제426호에 의하여 재단법인 영모묘원으로 구역변경 허가 받음

68. 7. 2 시설묘지 시설허가 취득(익산군 2호)

68. 6.24 왕궁 현장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항의 사업조목이 다뤄졌다. 1. 묘비위치 확정에 관한 의제 2. 사업종목(시설)에 관한 의제 3. 도로(시설)에 관한 의제 4. 전기 전화에 관한 의제 5. 입비와 와비에 관한 의제 6. 자금 조달에 관한 의제가 다루어졌으나 이 의제는 상임위원회에 3명의 위원을 추가 증원하여 일임하기로 결의되었다.

68. 7.18 종법사님 이하 교정원장, 총장, 원로수위단을 비롯해서 교정원 간부, 총부 임직원, 훈련교무 등 100여명이 영모묘원 현지를 방문하였음. 종법사 지시사항은 제2부원장이 영모원 자금 관계를 담당하여 힘쓰도록 지시하였으며 출자관계는 각 지방에 분담하도록 지시

68. 8.26 영모원 공원묘지 현지에서는 벌목작업이 진행

68, 9,29 제7차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왕궁현장) 영모원 사업계획에 관한 안건이 결의됨. 자금조달, 묘역조성 도로확장, 영구차구입, 교구별 운영위조직,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선정, 입묘가입 가격조정 토지(답) 매입의 건이 결의됨.

단, 교구별 운영위조직과 위원장,부위원장 선정에 관한 것은 원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68.10. 6 전화가입 신청

69.10.20 전기 시설 완공

69.10.25 상임위원회 ① 답 형질 변경의 건 ② 교구별 운영의 건 ③ 도로 포장의 건 ④ 공원묘지진입로 규격에 관한 건 등이 다루어짐.

68.10.21 익산군 왕궁면 동봉리 답 653번지 1003평의 농지를 매입하여 공원묘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실에서 300만원을 가수하여 계약함.

68.10.31 종로교당 선타원 정덕진 교도의 회사금(300만원)으로 익산군 왕궁면 동봉리 답 664~4번지 760평을 계약함

68.11. 5 영모원 공원묘지 현장에서 기공식을 갖음

68.11.20 묘역조성공사 계약체결, 진입도로, 묘역조성, 순환도로 석축 및 배수로공사. 3억5천만원

69. 4.11 중앙총부 전직원 식목행사 가이스카 100주.

69. 5. 4 미니버스구입.

69. 9. 7 영모원 임시 운영위원회 개최 ① 알봉산 2천정과 구 보육원땅 791평 교환 결의 ② 현 보육원 땅 매매시 100평분 영모원에 회사 결의

69. 9.15 알봉산과 교환한 구 보육원땅 791평을 69,235천원에 매매.

69. 9.25 내무부 및 보사부 공원묘지 종합감사 실시

69.10.31 영모원 운영위원회 개최. 영모묘원 묘역구별 확정. ① 출가. ② 법훈. ③ 재가. ④ 일반

69.11.10 알봉에 입묘된 선영열위 이장성금 모금 건 교정위원회 결의. 출가교역자 이장성금으로 1만원이상 회사키로 함.

69.12.10 영모묘원 1차 조성공사 및 잔디 석재공사 완료 총공사비 4억5백만원. 묘원주차장 및 편의시설부지 전용허가(2,726평)

70. 3.22

~4. 8 선영열위 이장 봉행식(알봉). 수위단 및 교단원로 총부직원 등 100명 참석. 280기 이장완료.

70. 4.10 선영열위 이장봉행식(왕궁묘지 종법사 이하 교당교무와 일반교도 등 1,000여명 참석

70.7.19~22 종로청년 봉사활동 실시. 20명 참석

70. 9.20 감사원과 내무부 종합감사실시. 묘원관리 묘원위치 변경.

71. 2.20 익산군 왕궁면 동봉리 답 651-1번지 농지 985평을 620만원에 매입함.

71. 3.19 익산군 왕궁면 동봉리 답 656-1. 600-2번지 2,219평을 1,565만원에 매입함.

71. 4. 5 총부직원 60여명, 동산선원 48명, 훈련교무 50명 식목 및 제초작업

71. 4.10 정토회원 및 이리교당 교도 90여명 재초작업함.

71. 5. 7 익산군 왕궁면 동봉리 655－1번지 농지 1,236평을 925만원으로 매입함

71. 8.24 이리교구교도 620여명이 동원되어 재초작업

71. 8.30 중앙총부직원 80여명 재초작업. 종법사이하 총부 간부 참석.

71. 8.31 원불교 학과생 140여명 재초작업

71. 9.12 총부직원 40여명과 훈련교무 50여명 등이 제초작업

72. 3월～ 묘역7단지 증축, 7단지위 2계단 증축, 7단지 아래 1계단 증축

72.3.22～9.10 관리사무실 및 옥외화장실 신축. 관리사무소 연건평 125평 화장실 15평

72.10.13 웅포면 대붕암리 국유리 600평 발매입.

재단법인 영모묘원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원불교 예전정신에 바탕하여 조상들에게 영안의 안식처를 만들어 보본의 도리를 다하게 하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을 계획하며 묘지를 공원화하여 국토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가정의례준칙의 기본정신을 선양하여 국민도의 함양에 앞장섬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영모묘원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은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이리시 신룡동 344－2번지의 두고 현장사무소는 익산군 왕궁면 동봉리 산 109번지에 둔다.

제4조(사용자격) 이 법인 묘지는 원불교에 봉직한 사람과 교도 그리고 본 재단의 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이 법인은 전조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이상 9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3. 상임이사 1인
4. 감사 2인 이내

제6조(고문) ① 이 법인에는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7조(자격)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1. 이 법인에 재산을 기증한 자
2. 발기인 창립준비위원 전원
3.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사실이 있고 동 사업수행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전조의 자격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다만,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9조(이사장) 이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총리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감사) 이 법인의 감사는 민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이행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이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2조(상임이사) 이 법인의 상임이사는 이사중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3장 자 산

제13조(부서) 이 법인은 발전에 따라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부서의 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명절차 및 보수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4조(자산) ① 이 재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출자한 별지 재산목록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각, 기부, 담보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① 당해년도 예산 사업계획 및 연도 결산과 사업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하고 매회년도의 잉여금은 이를 적립금에 이용한다.

제16조(회의)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회의 개회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과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다음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담보교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임원 진퇴에 관한 사항

제18조(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심의
2. 예산 편성 및 예산 심의
3. 정관의 변경사항
4. 각종 규정제도 개폐에 관한 사항
5.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 기부, 담보 교환 또는 증가하는 사항
6. 사업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 진행상 중요한 사항

제4장 사업 및 관리

제19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공원묘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 묘지조성을 위한 공예 토건 및 석수공사업
3. 묘지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4. 묘지운영을 위한 장의사 및 시체운반 사업

5. 기타 상기사업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제20조(관리) ① 본 법인의 묘소 및 묘지는 영구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구 또는 5년을 일기로 일정액의 관리비를 받는다.

② 전항의 제반 관리사항 및 관리비 사용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공원에 설치한 묘소는 1기당 면적은 1.5평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상 벌

제21조(표창)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유공자에 대하여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한다.

제22조(제명) 이 재단의 직원 및 임원중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이 법인의 발전에 지장이 초래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 처분한다.

제6장 해 산

제23조(해산) 이 법인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결의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제24조(재산의 귀속) 이 법인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단법인 원불교에 기증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서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임원의 보수규정등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조(정관개정) 이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에 허가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제4조 이 법인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 원불교에서 기증한 토지로 한다.

제5조 이 법인의 설립당초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임 기
이 사 장	金益洙	1922. 6. 9	220609－1496511	이리시 신용동 344－2	79. 10. 26 82. 10. 14
상무이사	丁炳允	1935. 5. 15	350515－1496516	이리시 신용동 376－96	〃
이 사	朴天植	1911. 1. 9	110109－1496651	이리시 신용동 322－2	〃
〃	安重泰	1914. 2. 21	140221－1495817	〃	〃
〃	朴吉眞	1915. 3. 23	150323－1496516	〃	〃
〃	金還烈	1927. 12. 7	271207－1496110	이리시 남중동 510－8	〃
이 사	李喆行	1928. 12. 12	281212－149607	전주시 다가동 1가 81－1	79. 10. 26 82. 10. 14
〃	丁石鎭	1922. 9. 5	220905－2496111	이리시 남중동 510－9	〃
〃	李炳穆	1926. 6. 7	260607－1455625	논산군 두마면 부남리 64	〃
감 사	徐今禮	1914. 12. 10	141210－2496517	이리시 신용동 344－2	82. 1. 28 84. 1. 28
〃	李空田	1927. 3. 24	270324－1496512	이리시 신용동 344－2	〃

機 關·團 體

Ⅰ. 교육기관／510
Ⅱ. 자선기관／766
Ⅲ. 문화기관／802
Ⅳ. 훈련기관／839
Ⅴ. 연구기관및 단체／870
Ⅵ. 수양요양기관／937
Ⅶ. 의료약업기관／962
Ⅷ. 산업기관／1047
Ⅸ. 신협·금고／1088
Ⅹ. 청소년단체／1106
Ⅺ. 신행봉공단체／1134
Ⅻ. 각종사업회／1212
ⅩⅢ. 특별기구／1281

Ⅰ. 教 育 機 關

원불교의 교육은 교화·자선과 함께 교단의 3대사업으로 줄기를 이루어 왔다. 초기 교단사에서는 교화와 교육이 내분화된 상태로 한 줄기였으나 차츰 교단이 면모를 갖추면서 교화와 교육의 영역이 완연히 분화되어 왔고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원기9년(1924) 총부 건설이후 총부선원, 영산선원, 동산선원으로 이어지는 선원교육과 유일학림, 원광대학 원불교학과로 이어지는 학원교육은 교역자 양성교육의 갈래를 이루었고, 유일학림이 초급대학으로 발전하여 원불교학과 이외의 여러학과를 개설하여 종합대학으로 승격, 15개 단과대학으로 발전함과 더불어 원광중학교, 원광고등학교, 원광여중학교,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 해룡중학교, 해룡고등학교 등의 교립학교의 설립 등 8개의 중·고등학교의 설립운영은 학교법인 원광학원과 학교법인 해룡학원의 산하에 전개된 제도권 교육의 갈래를 이루었다.

한편 원기38년(1953) 정주 원광유치원의 설립으로 시작된 유아교육기관은 원기60년(1975) 대 후반 정부의 유아교육 확대정책과 발맞추어 원기72년(1987) 현재 100개에 육박하는 유치원, 유아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일제하에 총부, 영산 등지에서 활발했던 야학 등의 사회교육 운동은 원기65년(1980) 전주의 공심야학으로 이어지고 이어 이리의 삼동야학으로 틀을 갖추는 한편 이리 노인대학, 부산 예지원, 원불교 중앙신용협동조합의 사회교육센터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이상의 원불교 교육의 흐름을 여기서는 현존하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중심으로 교역자 양성기관, 교립학교, 유치, 유아원, 사회교육기관의 넷으로 구분하고 네 갈래에서도 설립순서보다는 형태별 특성과 위상별 묶음으로 자료를 정리하기로 한다.

□ 교역자 양성기관

1. 총부 禪學院

가. 총부선원

1) 설립배경

총부선원 설립은 원기10년(1925) 교도 훈련을 위해 제정 발표된 훈련법에 따라 익산 총부에서 동년 음력 5월 6일 夏禪과 11월 6일 冬禪 결제를 한 데서 연유된다. 이 때 정기훈련은 일반 禪員의 공부를 단련하는 중요한 기간이 될 뿐만 아니라 초창기 교역자를 양성하는 유일한 방도로 활용되었다. 이와 같이 출발한 총부선원은 훈련의 장소도 변변치 못한 가운데 선원 훈련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원기40년(1955) 중앙 직할 3대선원 설립에 따라 총부선원이 중앙선원으로 개편될 때까지 30여년 동안 교역자 양성과 교도훈련의 기능을 담당해온 셈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소 변화를 겪기도 했다. 원기27년(1942) 불법연구회 회규 개정에서 교무부 소관 업무 첫 항에 禪院 講院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역자 양성과 교도훈련 기능을 분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총부선원은 교도의 훈련기능을 전담케 되었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초창기로부터 원기26년(1941)까지는 교역자 양성과 교도훈련을 병행했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원기40년(1955) 중앙선원으로 개편되기까지는 후자의 기능을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데 총부선원의 설립은 교역자 양성과 교도훈련을 목적으로 이뤄졌으나 전문 교역자 양성기관의 발족에 따라 후에는 교도훈련 기능을 전담하였고 결국 중앙선원 발족의 모체가 된 것이다.

2) 선원교육이념

원기13년(1928) 冬禪에 「선원 공부의 본의를 알아 正法에 습관을 가지라」는 題下의 법설에 보면 「요사이 선원을 차린다 결제를 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諸君은 고질이 된 五慾의 습관을 녹여 빼고 그 대신에 正法의 습관을 길들이기 위함이다. 그럼으로써 저 五慾界를 떠나 이곳에 와서 3개월 동안은 전문적으로 정법으로 녹이며 正法으로 마치질하여 더러운 虛世의 오욕은 다 제거하고 六根을 다 정의의 육근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야만 正義的 습관성을 가진 正義人이 되며 그런 습관성을 가져야만 다시 진세를 간다해도 고해에 침몰되지 않는다. ……中略 그럼으로 선원을 건축하고 제군으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 하는 것은 진세 습관을 놓

고 정법의 습관을 넣어주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正法에 굳은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이 참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며 참 사람이 곧 부처가 아니고 누구이랴…」라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선원훈련의 본의 즉 목적은 정법으로 훈련된 참 사람(부처)을 양성하는데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원교육의 목적은 「정의인족을 만들기로 함(월말통신 18호 회설)」「세상이 요구하고 귀애하는 참된 인간의 양성(월말통신 20호 회설)」「견성도인의 배출(월보 42호)」 등으로 달리 표현은 하고 있지만 모두 正法으로 훈련된 참 인간 즉 도인의 양성을 목적하고 있는 점에서 일맥 상통하고 있다.

3) 연 혁

총부선원 설립은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기10년(1925) 冬·夏 3개월 선을 시작으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원기10년(1925) 음력 5월 6일 夏禪과 동년 11월 6일 冬禪은 익산 본관에서 결제되었지만 교단사상 최초의 정기훈련임과 동시에 총부선원의 개원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초기 이런 훈련은 교역자 양성과 교도훈련을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지만 가난한 가운데 이뤄졌다. 본관에서 훈련을 실시할 집이 없어 부득이 전음광의 집을 빌어 선을 나니 선객은 10여명에 지도교무는 송규가 맡았다. 원기14년(1929)에는 선세의 확장에 따라 소태산대종사의 법설과 각인의 감각처리 및 기타 중요사항을 수집 기록할 필요성에 따라 「선원일지」를 창설하였다(연구부 사업보고 제2호). 그러나 선원운영에 따른 경제적인 유지기반의 약화로 이를 타개키 위해 인재양성기성연합단, 농업부기성연합단을 결성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진리를 강구하며 몇달은 농업에 몇달은 진리를 연구하는 주경야독, 선농일치의 생활을 하는 한편 원기16년(1931)에는 後援會에서 선원 선비를 산출 고시하여 선비를 선객이 부담케 하였다.

그리고 원기17년(1932)에는 이공주교무가 친자 박원기의 죽음을 애석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본회의 다년간 숙원이던 女禪院을 담당 수리하여 편리를 도모하기도 했다. 이렇게 冬·夏 3개월 선을 나면서 아울러 원기23년(1938)부터는 교무강습회를 단기간에 개최 교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기27년(1942)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일제는 더욱 전시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冬·夏禪 기간을 단축하자는 안이 개진되어 종전의 3개월에서 1개월로 실시키로 했다. 그리하여 제35회 동선은 1개월 실시된 바 있다. 물론 해방 후에는 원래대로 복귀되었다.

한편 원기27년(1942) 불법연구회 회규가 개정되어 교무부 산하에 「강원」과 「선원」을 분리 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총부선원은 교도훈련만을 담당케 되었다. 민족의 시련이었던 6·25동란시에 동선은 1개월로 심한 경우는 20일(45회)로 단축되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창립 제1대를 마감하고 제2대에 들어 원기38년(1953)부터는 1개월 정도 실시되다 원기40년(1955) 총부선원은 중앙선원으로 발전되어 교단 인재양성의 양대 산맥의 하나인 선원체제 교육의 한 본

거지가 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훈련도량이 없어 임시로 전음광의 사가를 빌어 선을 났다. 그 후 공회당을 신축 간고한 가운데 운영되었다. 초대 선원교육은 송규교무가 동선교육은 이춘풍교무 등이 맡았다. 차차 선원이 확대됨에 따라 직제도 개편되어 교감 1인, 교무 1인, 서기 약간인, 종두 1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립당시 입선인은 남녀 10여인 이었다.

4) 역대 교직원

※ 역대 임직원명부, 사업 보고서 참조

직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교 무	宋 奎(道君)	男	1900. 8. 4	원기10년 하선	
〃	李 春 風(之永)	〃	1876. 2. 6	원기10년 동선~12년	
〃	宋 萬 京(相冕)	〃		원기11년 동선~12년 동선	
〃	金 幾 千(聖九)	〃	1890. 2. 5	14년 하선~16년	
〃	柳 虛 一(相殷)	〃	1882.10.19	19년~22년	
교 감	柳 虛 一(相殷)	〃	〃	원기23년 28~30	
교 무	朴 光 田(吉眞)	〃	1915. 3.23	원기 26년	
〃	朴 昌 基(南基)	〃	1917. 9.14	원기 28년	
교 감	宋 道 性(道悅)	〃	1907.11.19	원기 24년	
〃	徐 大 圓(吉泓)	〃	1910. 3.20	원기 25~26,28	
〃	宋 奎(道君)	〃	1900. 8. 4	원기 27	
〃	李 共 珠(慶子)	女	1897.12.23	원기 27~30	
〃	金 大 擧(榮灌)	男	1914. 3.16	원기 28~30	
〃	李 雲 捲(雲行)	〃	1914. 5. 3	원기 30~32	
〃	朴 昌 基(南基)	〃	1917. 9.14	원기 31	
〃	李 完 喆(載心)	〃	1897. 3.27	원기 33~40	

5) 연도별 졸업생수

회	졸업년도	졸 업 생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10. 9.23	10						
2	11. 3.19	20						
3	11.							
4	12.							
5	12.							
6	13.							

7	13.	8		8				
8	14.	33	17	16				
9	14.	13	4	9				
10	15.	44						
11	15.							
12	18.							
13	16.							
14	17.							
15	17.							
16	18.							
17	18.							
18	19.							
19	19.							
20	20.							
21	20.							
22	21.							
23	21.							
24	22.							
25	22.							
26	23.							
27	23.							
28	24.							
29	24.							
30	25.							
31	25.							
32	26.							
33	26.							
34	27.							
35	27.							
36	28.							
37	28.							
38	29.							
39	29.							
40	30.							

나. 총부학원

1) 설립배경

교세 확장과 함께 일반교도의 훈련과 아울러 청소년 학인의 교육을 위한 학원교무제를 두기 시작한 것이 총부학원의 출발이다. 이에 따라 원기17년(1932) 이완철교무를 초대 학원교무로 임명 본관 학인 지도를 담당케 하였다.

익산 본관 교무부는 원기20년(1935) 여름에 修道學院이라는 야학원을 설치 종래 회중의 청소년 학원생에게만 실시하던 교육을 비회원 근동 남녀 아동에까지 확대하여 문맹퇴치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물론 이 무렵은 짧은 기간이지만 국내 동아, 조선일보 등 언론기관에서 문자보급운동(Vnard)을 전개하고 있던 때였다. 이 수도학원은 남녀 아동의 문맹퇴치와 도학상식을 가르치기 위해 야학원을 모집하니 그 인원이 150여명에 달하여 각각 1,2학급으로 나눠 두 반 선생님 중 남자로는 전음광, 임상권외 몇분이, 여자로는 이공주외 몇분이 담당 강의를 했다(회보 17호 원기20년). 이와 같은 형태의 학원은 비단 총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방 각지에서도 이뤄졌다.

그러나 일제 말엽 전시체제의 압박속에서 원기27년(1942) 종전의 二院十部制를 종법사와 회무총장 하에 五部를 두는 회규로 개정하게 되었다. 이 회규에서는 선원과 강원을 분리 규정함에 따라 강원은 학원체제를 보다 강화 공식화한 셈이다. 그리하여 학원은 종래의 문자계몽교육과 도학교육을 병행하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불법지식의 함양과 포교자 양성을 목적함으로써 선원에서 교역자 양성기능이 학원으로 이관 분화되게 되었다. 교육기간도 3년으로 규정(단, 1기 3개월도 得함)하였다. 이런 가운데 일제의 전시체제하의 수탈이 가중되고 징용, 징병 등의 징발로 인해 남학원생은 산업체로 여학원생은 연고지, 또는 서울 등지로 피신함에 따라 잠시 해산되고 말았다.

해방후 묵산의 〈불법연구회 교육정책〉에 보면 당시 남학원 출신 학생이 33명 여학원 출신 학생이 39명으로 이들중 소학교 졸업자가 33명 미취학자가 33명, 소학교 재학생이 5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학원생들이 초등교육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연령분포도 남학생은 19~28세, 여학생은 17~26세가 대부분이었다.

총부학원은 원기31년(1946) 5월 유일학림이 개설되면서 학림에 수용되고 막을 내리게 되었다.

2) 교육이념

총부학원 설립초기의 교육목적은 문학교육을 통한 문맹퇴치와 도학교육을 실시하여 일종의

청소년 계몽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원기27년(1942) 이후 학원은 講院체제로 바꾸어져 불법지식의 함양, 포교사 양성을 목적하게 되었다.

3) 연 혁

총부학원은 원기17년(1932) 학원교무제의 신설로 초대 이완철교무가 보임되면서 시작되었다. 학원제도는 수도학원 등과 같이 야학을 통한 청소년의 문자 계몽교육과 도학교육을 실시하였다. 그것은 교육내용이 경전, 불교학, 국사, 한문, 일어, 습자, 일기 등이었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된다.

그 후 원기27년(1942) 강원설립으로 교역자 양성기능을 맡아 후일에 유일학림 설립의 전신이 되기도 했다. 전문학원을 설립하려는 의도아래 학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소태산대종사는 종전 총부 교감직을 선원교감과 학원교감으로 분리하면서 다년간 영산학원에서 경험있는 宋道性을 학원교감에 임명한다. 또한 원기26년(1941) 소태산대종사는 학원 교사진을 보강키 위해 학원교무에 박장식, 박광전교무를 임명했다.

당시 총부 사정은 매우 어려워 학원들은 각각 자기 스스로 학비를 마련키 위해 남학원은 산업부, 보화당, 총부 각 부서에 근무하기도 하고 여학원은 이리 天一고무공장, 澤田제사공장, 전주제사공장 등지에 가서 학비를 마련했다. 학원생은 모두 30여명 정도로 출발했다. 교실은 주로 공회당을 이용했다. 학원의 하루 일과는 일정한 수업시간에 따라 진행하되 일정시간 작업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일본은 패색이 짙어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민지인 한국에 대해 온갖 수탈을 자행했다. 이른바 놋쇠, 범종 등의 공출 헌납으로부터 국방헌금 농작물 강제공론 및 징병, 징용, 훈련, 보국대, 정신대 등의 징발이 강행되었다. 그리하여 총부 학원은 집단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어 전국 각지로 해산되고 말았다. 해방후 학원생들이 다시 모여들었으나 해방 직후 원기31년(1946) 유일학림 설립과 함께 발전적으로 수용 해체되었다.

초대 학원교무로는 이완철교무가 보임되어 학원생 지도를 담당했고 뒤에 직제가 개편되어 학원 교감, 교무가 임명되어 보강되었다. 처음 학원생의 숫자는 30여명이었다.

4) 역대 교직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교 무	李 完 喆(載心)	男	1897. 3.27	17	
〃	柳 虛 一(相殷)	〃	1882.10.19	18	
〃	朴 濟 奉(壎準)	〃	1888. 1.15	21	
〃	朴 昌 基(南基)	〃	1917. 9.14	27~35	

교 감	宋 道 性(道悅)	男	1907.11.19	35	
교 무	朴 將 植(天植)	〃	1911. 1. 9	36~41	
〃	朴 光 田(吉眞)	〃	1915. 3.23	36~41	

2. 唯一學林

1) 설립배경

원불교의 인재양성기관으로써 당국의 허가를 얻은 정규 교육기관으로 출범한 것이 바로 유일학림이다. 이는 후일에 원광대학으로 발전하는 모체가 되었기에 그렇다. 그러나 유일학림이 설립되기까지는 숫한 인재양성에 대한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교단 초창기로부터 가장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인농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훈련법의 제정, 인재양성 기성조합단의 설립을 비롯하여 원기18년(1933) 인재양성을 담당하는 행정 주무 부서로서 육영부가 설립되었다. 그 후 청소년 교도의 문자교육과 도학교육을 위해 학원제도가 생겼다.

少太山大宗師 在世的부터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은 갈망되었다. 그 일단으로 나타난 것이 佛教專修學教의 설립청원(1941. 1.15)이다. 비록 일제에 의해 취소되고 말았지만 학교설립에 대한 노력은 끊이지 않아 해방후 교단내 전문교육기관 설립안은 양분되어 나타났다. 하나는 서울에 불교전문학교를 설립하여 고등교역자를 양성하자는 默山의 불법연구회 교육정책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총부 부근에 우리가 직접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단내의 의견은 후자로 결정되어 마침내 원기31년(1946. 5. 1) 당국으로부터 정식 학원강습소 허가를 얻어 문을 연 것이 유일학림이다.

2) 교육이념

유일학림 설립 당시의 교육은 한 마디로 제생의세의 교역자 양성을 목적하였다. 유일학림 개학식에서 정산종사는 다음과 같이 훈시하였다. 「…中略… 그대들은 먼저 유일의 참 뜻을 알아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행동과 유일한 성과를 얻으라. 유일한 목적이란 곧 제생의세요, 유일한 행동이란 곧 무아봉공이요, 유일한 성과란 곧 일원세계의 건설이니 지금은 비록 좁은 교실에 학인의 수도 많지 않으나 장차 수 많은 도인들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와 넉넉히 세계를 제도하게 되리라」(『정산종사 법어 경륜편』 4장).

이 훈시 내용에도 밝히고 있듯이 학림설립의 뜻은 일원세계 건설을 위한 제생의세의 도인양성에 두고 있다. 물론 학림에는 중등, 전문 두 과정이 있고 그 중 전문부는 몰라도 중등부는

반드시 교역에 임하는 것을 목적한 것은 아니나 단계적으로 실시하려 했던 것은 분명하다. 예컨데 중등에서 전문부로 진학토록 한 것이 그것이다.

이들이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마당에서 훈시 내용에서도 학림교육의 뜻을 엿 볼 수 있다.「…中略… 현 시대에 필요한 학문의 대도를 배우는 동시에 정신적인 방면에 들어가서는 신앙과 공심양성의 교육이나 예의와 근본정신의 교육이며 생활에 직접 필요한 인도 정의의 대도를 연마시켜 새 세상의 빛나는 일꾼 등을 길러내는 곳이라…中略」.

여기서도 학림은 정신과 육신, 과학과 도학을 병진한 제생의세의 역군을 길러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학림교육은 일원세계 역군을 양성한다는 기치아래 과학과 도학이 겸비된 제생의세의 교역자양성을 목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연 혁

유일학림은 원불교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원기31년(1946) 5월 1일 총부구내에 사설강습소 허가를 얻어 설립된 교단내 최초의 형식 교육기관의 모체요 교역자 양성기관이다. 유일학림 전문부가 36년(1951) 9월 30일 원광대학으로 승격 발전되면서 중등부는 원광중·고등학교와 원광여중·고로 각각 발전되게 되었다.

설립당시의 목적은 제생의세의 교역자 양성에 있었다. 유공인으로는 박장식, 박광전교무외 많은 출가 재가 교도들이 있었다. 당시 어려움은 교사, 교수 경제적인 운영 등 많이 있었지만 학생들에게는 교육비가 큰 문제였다. 소수 일반 학생을 제외하고는 학생 거의가 공비생이었는데 극도로 혼란한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마침내 육영장학금 염출문제로 교단내에 대책회의에 들어가게 했으나 별다른 묘안이 없었다. 2학년 겨울 방학에 들어가 학림생들은 자체 대책회의를 열어 스스로 교육비 해결을 결의하고 삼삼 오오 짝을 지어 각지로 순회강연을 나가 모금키로 했다. 정산종사의 학림 1회 졸업식 훈사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中略 학림이 시작된 이래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기막히게 받았으며 모든 설비가 완전치 못한데다 경험이 없는 탓도 있어 교수, 교재문제를 하나도 뜻과 같이 해결해 보지 못하면서 3년을 말 못할 고생을 해나가며 억지일을 한 것이다…」

설립당시 규모는 신용동 344-2 현 중앙총부자리에 강의실로 양잠실 동방 서방(현 구 학림사자리)을 3등분하여 가운데는 사무실 야간은 교수용 숙소, 양쪽 방중 동방은 중등부가 서방은 전문부가 강의실로 사용했다. 거의 대부분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했는데 남자기숙사는 공회당서방, 여기숙사는 현 교정원장 숙소 자리였다. 도서관은 공회당 뒤 현 종법실 자리에 원기24년(1939) 이래 수서해 오던 것을 그대로 이용했다. 그리고 운동장은 송대 앞 텃밭을 이용하다 협소하여 연구실터 큰 방을 터 닦기 시작하여 사용했다.

초대 학림장에는 박장식교무, 학감에 박광전교무가 임명되고 교사진은 총부 간부들과 외부

강사로 보충했다. 학제는 중등부와 전문부로 나눠 1기를 3년 교육기간으로 했다.
개교당시 학생수는 전문부가 38명, 중등부가 50명으로 모두 88명(34년 사업보고서)이었다. 설립당시 조직을 도표화 하면 이렇다.

〈조직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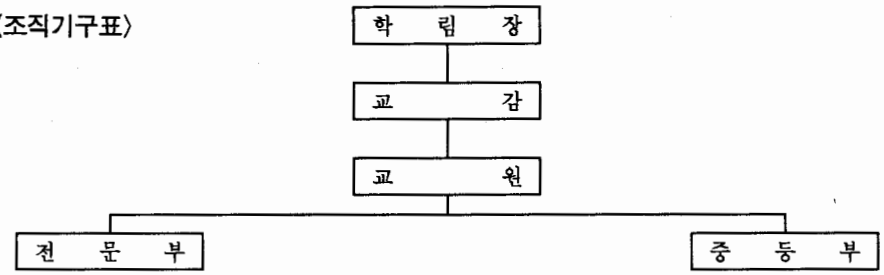

시설 신축 및 확장은 원기35년(1950) 이리시 동산동 소재 敵産 麻綿공장을 인수하여 학림 교사로 사용하게 하였다.

4) 역대 교직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학 림 장	朴 將 植(天植)	男	1911.19	31. 5.~36. 5	정전, 공민 국어담당
학 감	朴 光 田(吉眞)	〃	1915. 3.23	31. 5~36. 5	동양철학, 서양철학
교 사	宋 蒼 產	〃		31. 5~33.	영어, 역사, 한문, 국어
강 사	徐 京 保	〃		31. 5~31.12	선학
〃	李 桂 然			31. 5	상식
〃	金 葆 光			32.	불경
〃	정 현 묵			32. 3~32.12	심리학
〃	서 병 재			33. 3	불교학
〃	金 東 華			34.	〃
〃	김 수 영				불교학
〃	정 진 호				중등부
〃	엄 공 섭				
〃	이 종 옥				정전
〃	김 학 배				수학
〃	김 해 기				
〃	李 共 珠(慶子)		1897.12.23		정전
〃	李東震華(慶洙)		1894. 5.15	32. 3	〃
〃	李 完 喆(載心)		1897. 3.27	33. 3	〃
〃	李 雲 捲(雲行)		1914. 5. 3		〃
사 감	趙 甲 鍾(孝南)		1905. 5.13	35. 3	

5) 졸업생수

회수	졸업년도		졸업생수			누계			비고
	원기	서기	계	남	여	계	남	여	
1	34	1948. 4. 7	88	50	38	88	50	38	
2	38	1953. 3	24	10	14	112	60	52	

3. 中央禪院

1) 설립배경

원기40년(1955) 1월 교무연합회에서 중앙직할 3대 선원이 설립공고됨에 따라 그동안 총부 선원을 중앙선원으로 발전시켜 교역자 양성의 본거로 삼게 하였다. 이렇게 중앙선원 설립이 공고되었지만 3회 교무연합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이 제기될 정도로 지지 부진하면서 교역자 재훈련 기능까지 맡게 되었다.

중앙선원이 개원된 것은 원기41년(1956) 11월 6일, 총부 대각전에서 개원식 및 제1회 결제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이듬해 1월 7일에는 제2회 결제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만 1년만인 원기42년(1957) 3월 31일 12명의 제1회 졸업생을 냈으나 제1회생을 낸 후 경제적인 유지 등 제반 형편으로 휴원을 하게 되었다. 이에 제6회 교무연합회에서는 중앙선원 재발족의 결의를 보고 원의회에서는 그 운영 방침 등이 토의 끝에 원기42년(1957) 5월 7일 결제식을 갖기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원기42년(1957) 사업보고서〉.

실제로 경제적인 유지기반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원기44년(1959) 이후의 일이다. 원기44년(1959) 유지답 세필치를 경작하다, 성현주씨의 희사로 논 1필지 매입과 아울러 이원영씨 백미 40가마의 희사로 農資 겸 잡비에 충당케 됨에 따라 어느정도 유지기반을 확립케 되었다. 원기45년(1960) 3월에는 2년 수료생 3명을 배출하는 한편 유지답으로 논 5필지 경작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동산선원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4월 5일 결제식에 원의회의 결의로 동산선원과 합동수련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기46년(1961)부터 47년까지 교정전반의 긴축으로 동산선원과 합병 자체운영을 하면서 남녀 선원들의 특별한 근로정신에 의해 영농과 함께 成玄珠, 李元永 두 교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12월 3일에 논 1,200坪을 새로 매입케 되었고 동년 3월 24일에는 제2회 졸업식 및 수료식을 거행 남 2명 여 3명의 졸업생과 남 5명 여 29명의 수료생을 냈다.

원기47년(1962)에는 한동안 원대 기숙사와 연합운영되다 5월 7일 권동화씨 구 사택으로 별립케 되었다. 동년 3월 17일 제3회 졸업식에는 7명을 배출했다.

그러나 원기48년(1963) 제11회 정기 수위단회에서 3대선원의 성격 및 학비를 당무자에게 일임하도록 결의한 것을 보면 어려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동년 5월 11일 동산선원이 분리되어 감에 따라 단독운영케 되었으나 여전히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기48년(1963) 4월 2일 제4회 졸업식 이후에는 선원 임원 임명의 흔적이 없을 정도로 난항에 이르렀다. 원기54년(1969) 제12회 임시 교정위원회에서 개원키로 결의를 보았던 중앙선원이 여러가지 문제로 미뤄오다 지난 2월 4일 제27회 임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주선원으로 발족, 교역자 양성기능은 중단되고 재교육만을 담당했다. 이렇게 상주선원으로 명맥을 유지하다 원기56년(1971) 중앙훈련원 발족과 함께 발전적 해체를 하였다.

현재의 상주선원은 원기68년(1983) 3월 3일 제203회 임시 원의회에서 승인 발족한 기관으로 총부교당 교화 주관과 재가교무 양성을 목적하고 있다. 따라서 원기54년(1969) 설립된 상주선원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하겠다.

2) 교육이념

중앙선원은 교역자양성의 목적을 띠고 출발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한 때는 교역자 재교육기능도 맡았고 동산선원과 합병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러므로 원기48년(1963)까지는 그래도 교역자 양성기능을 수행했다고 하나 후반에는 재교육기관으로 변모된 것이다.

3) 연 혁

설립년월일은 원기40년(1955) 1월 설립공고가 난지 일년이 지난 원기41년(1956) 11월 6일 첫 결제식을 가진 때였다. 설립당시의 동기는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유공인은 초대 원장인 이완철교무를 비롯한 임직원과 주무 성현주, 이원영 등의 혈성어린 후원이 지적될 수 있다.

설립 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후원 유지에 부심하다 원기44년(1959) 유지답 4필지 등으로 기반에 초석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형편상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한 때 휴원, 동산선원과 원광대 기숙사와 합병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원기48년(1963) 제4회 졸업생을 낸 뒤로 또다시 난항을 겪다 원기54년(1969) 상주선원으로 개편되고 원기56년(1971) 중앙훈련원 발족과 함께 발전적 해체를 하였다.

초대 원장은 이완철교무가 원기40년(1955) 부임하였고 개원당시 교직원수는 원장외 총부 간부진이었고 학생수는 12명이었다. 설립당시는 별다른 조직이 없었으나 원기43년(1958) 이후

다음과 같이 분화되었다.

〈조직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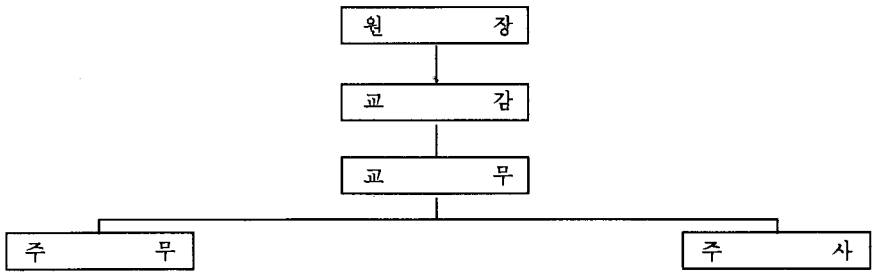

시설의 확장은 경제적인 유지관계로 별다른 흔적이 없고 다만 유지기반의 확장이 있었다. 즉 원기44년(1959) 유지답 3필지에 성현주교도 논 1필지 회사와 이원영교도 백미 40가마 회사 등에 이어 원기46년(1961) 12월 3일 논 1,000坪을 매입하였으며, 원기55년(1970) 12월 30일에는 신리 280-7소재 밭 543평을 당시 싯가 20만원에 매입한 바 있다.

4) 역대 교직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 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원 장	李 完 喆(載心)	男	1897. 3.27	40	
〃	李 雲 捲(雲行)	〃	1914. 5. 3	41~42	
〃	金 大 擧(榮灝)	〃	1914. 3.16	44~45	
〃	安 理 正(重泰)	〃	1918. 2. 8	55	
부 원 장	曺 專 權(玉順)	女	1909.12.21	47	
교 감	丁 光 薰(炳球)	男	1917. 8.30	43	
〃	金 勤 修(益洙)	〃	1922. 6. 9	44~46	
〃	張 聖 鎭(和鍾)	〃	1924.12. 5	48	
교 무	尹 正 運	〃		43~46	
〃	朴 榮 植(政植)	〃	1897.11.24	43~45	
〃	宋 順 奉(順鳳)	女	1933. 3. 6	45~46	
주 사	池 正 風	男		43.	
주 무	成 玄 珠	女	1907. 1.18	43~46,48,55	
〃	李 元 永(元玉)	〃	1909. 4. 1	43~48	
서 기	金 文 國(順愛)	〃	1920. 6.25	44	
〃	金 法 宗(鍾鎬)	男	1937. 5.15	45~46	
경 리	金 濟 明(明子)	女	1944. 9. 9	55	

5) 연도별 졸업생수

회수	졸 업 년 도		졸 업 생 수			누 계			비 고
	원기	서기	계	남	여	계	남	여	
1	42. 3.31	1957	12			12			43,44년은 휴원
	45. 3	1960	3			15			수료생 3명임
2	46. 3.24	1961	5	2	3	20			수료생은 남5 여29
3	47. 3.17	1962	7			27			
4	48. 4.2	1963							미상

4. 東山禪院

1) 설립배경

동산선원은 원기38년(1953) 5월 이리 고등선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원했다. 당시는 3개월 선을 나는 형식이었다. 1회 결제시 전문선객이 88명, 자유선객이 35명이나 된 것을 보면 전문적인 교역자양성은 아닐지라도 교도훈련의 성격을 띠었었다. 현 동산선원이 위치한 동산동 400번지는 일제때 신사터였다. 현재는 그 건물이 없어졌지만 대지와 건물을 인수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 해방후 일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방해도 있었으나 여기에 머물고 있던 미군들이 철수하면서 당시 미군정청 장관이었던 딘소장의 불하 서명을 받아 이뤄진 것이다.

원기40년(1955) 3대 선원 설립공고에 따라 이리 고등선원이 동산선원으로 개편되면서 수업년한도 1년 연장되었고 이듬해 3월 제1회 수료자 13명을 냈다. 그러나 재정적인 후원과 유지의 난관에 봉착하여 원기45년(1960) 3월 20일 제2기 4년제 수료생 20명을 졸업시키고 나머지 재학생 6명은 중앙선원에 합병하여 수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비록 원기48년(1963) 5월 11일에 중앙선원으로부터 분리 독자적인 운영은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다. 물론 설립 당시 부산교도의 무념보시로 淨財 2필지 매입 희사를 받아 자유급식책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동년 5월 14일 후원회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김정용교무의 발기로 회장에 김정용교무, 부회장 곽병원교도, 정진숙교무 등과 고문, 총무, 감사 등이 선임되었다. 그후 원기49년(1964) 9월 10일부터 50여일 간에 걸쳐 후원회 주선과 원중고, 원여상, 보화당 협조로 도로공사 및 담장공사 가옥수리를 하였고, 이어 원기50년(1965)에는 특지교당 후원으로 수도시설을, 원기52년에는 근방 대지 620坪과 건물 1동을 매입 선원숙소로 확장하였으며 원기52년(1967)에는 후원회장 및 각 지부 기관 협조로 목욕탕 물치장 건물 신축을 하였다. 그 후에도 원기53

년(1968)에는 동창회 후원과 직원의 절용절식으로 논 2,687평을 매입하는가 하면 원기54년(1969)에는 담장 및 건물 보수를 하는 등 선원을 교육도량으로 강화하는데 필요한 내외여건 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이렇게 발전하여 온 동산선원은 영산선원과 함께 교단의 선원교육의 중핵을 이루게 되었고 아울러 선원교육(영산 2년, 동산 3년)의 최종 마무리 과정을 맡아온 것이다.

2) 교육이념

少太山大宗師 在世時에 이곳 동산동 신사터를 찾아 앞으로 이곳에서 천여래 만보살을 배출할 교육도량임을 예정하시었다. 선원교육은 원불교 교역자 양성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학원과 아울러 쌍벽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동산선원에서는 무엇보다 교리에 정통하고 실천하는 교육, 시대에 적응하고 향도하는 교육, 은혜를 발견하고 봉공하는 교육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념하에서 「萬修로 마음안정, 萬研으로 지혜계발, 萬德으로 每事中正」의 원훈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리를 정통하여 실천하는 교역자, 시대를 향도하는 교역자, 보은 봉공하는 교역자상을 다듬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3) 연　　혁

설립동기는 교역자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원기38년(1953) 5월 6일에 이리시 동산동 400번지에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유공인으로는 당시 이리교당 유공인인 이인의화, 초대 원장인 송혜환 그리고 최수인화 등이다. 설립당시 기금은 총 150만원으로 출발했다.

설립과정에서 현 소재지를 당국으로부터 인수하는데 송혜환 등을 통해 인수되었으나 기독교인들의 방해로 기독교로 넘어갔다. 다시 당시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송혜환의 혈성어린 노력으로 미군정청 장관의 불하 서명을 받는데 성공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설립당시 규모는 대지 3,956평 건물 2동 120평에 기타 부동산으로 임야 3,177평이 있었다. 초대 원장으로는 원기38년(1953) 송혜환이 부임되었다. 개교 당시 교직원수는 모두 4명(남3, 여1)이었고 학생수는 13명(남1, 여12)이었다.

39.	남20명, 여40명의 상임선원이 이운권, 박제권교무의 지도아래 1년 3회의 매선기마다 본격적인 정기훈련과 선원유지담경작과 채포관리 등 총무를 도와 선원경리에 협력.
40.	인재육성에 온상으로써 修禪연한 1년을 연장
40. 3	정식으로 제1회 수료자(3년) 12명 배출

41. 禪員의 수가 증가되어 40여명의 修禪員을 이운권교무외 담당교무들의 지도로 정화도량을 이룩하다.

45. 3. 20 제2기 4년제 수료생 20명 배출

48. 5. 11 중앙선원으로부터 분리

48. 5. 14 김정용교무의 발기로 후원회 조직.

49. 9. 10~10. 31 김정용교무의 주선으로 50여일동안 도로공사 준공. 교도의 희사금으로 벽돌담, 철문, 내외 가옥수리.

50. 10. 10~18 수도시설 완공.

52. 2. 각지 호법 동지들의 희사로 대지 620평 木造亞鉛葺平家建 30여평 주택 1동을 35만원에 매입하여 선원숙소로 이용.

52. 김정용교무를 비롯하여 각 지부기관의 협조로 변소, 목욕탕, 물치장 등 건평 24평의 건물을 신축.

53. 2,687평의 논을 백미 162가마로 매입.

54. 3~8 100여만원의 공사비로 280m의 벽돌담을 구축. 70,000원을 드려 각 건물을 수리하고 선원 뒷산 분묘를 이장하고 2,500주의 소나무를 심었다.

56. 9. 1 김명환씨의 희사금 1,000,000원으로 선원의 경내에 위치하고 있던 권준원씨의 토지 383평과 부속건물 와가 2동(연건평 약 20평)을 2,025,834원(취득세 및 소개비 포함) 매수하여 숙소해결.

56. 8. 15 전주지방 진인국씨와 서울 공덕종, 황도영화씨의 특례로 한일펌프장치를 설치하여 음료수급에 편리를 주다. 소요공사비는 기계포함 70,000원.

57. 2. 25 제9회 졸업식 성대히 거행. 10여명에 졸업생 배출.

58. 2 공사비 27만2천여원 축대공사.

58. 2~3 공사비 75만9천여원 숙소공사. 공사비 15만1천여원 창고공사. 공사비 1만8천여원 수도공사.

58. 4~9 공사비 2천87만4천여원 본관공사.

59. 3. 1 178만원 토지매입.

59. 3 학점제 실시, 수양, 취사과도 연구과에 균등하게 반영.

59. 5 영산선원 신축기금 10만원 보조.

59. 7 본 선원 원규 제정 실시.

60. 2. 27 영산선원으로부터 12명 입선. 기타 3명 입선.

60. 6 동 이리지부 인수 및 증축(원고 뒷논을 대지로 1백20평과 현금 2백만원을 주고 인수하여 2간을 증축 식당으로 개조함. 총 공사비 3백19만8천4백원)

60. 9 숙소 대폭수리, 공사비 19만8천원.
61. 1 식당에 식상 및 의자마련, 경비 11만원(본 선원출신 부교무 후원)
61. 동산선원 후원회 결성(회장 김정용교무외 42명)
61. 6~8 후원회 후원으로 여기숙사 증축 3간 21평 공사비 200만원. 본 선원 졸업생 부교무 30여명이 식탁 마련(동계교역자 훈련시 식탁 20, 의자 90)
61. 6~62. 1 택지조성을 위하여 논 100평 매립공사 완성.
62. 6. 1 본원 여학생 머리 단발과 제복 변경.
62. 7. 10~12 어린이 지도자 강습
62. 9. 체육관 신축기공.
64. 5. 7 개관식 갖음. 연건평 60평(2층) 음악관 개관(공사비 563만원, 시설비 120만원 소요)
64. 2. 4~21 신춘 정기 훈련 실시.
64. 3 「院規」 개정하여 학점제, 유급제, 졸업논문제 실시로 교육체제 강화
64. 4. 28~28 대산 종법사 내방
64. 4. 29 개교절 기념 기관대항 체육대회. 여자배구 준우승. 마라톤 30대 우승
64. 5. 6~8 개원 26주년기념 원의제 개최(기념식, 문예법회, 백일장, 세미나, 성가대회, 체육대회 등)
64. 5. 6 기관 친선 탁구 대회.
불우이웃돕기－전주양노원, 이리보육원, 전북 농아학교(감사장 받음)
64. 5. 7 전 선원생 장학생화 추진.
64. 6. 30 동산선원보 발행
64. 8. 21~31 추계 정기훈련 실시
64. 정토회원 김용선씨의 회사로 50만원어치 도서구입과 「원보」발간을 위해 50만원 회사.
64. 9. 1 후원회 장학금－3학년 전사비생에게 2학기분 선비 지급
65. 2. 10~2. 13 신춘 정기훈련
65. 3. 1 후원회 장학금－3학년 전사비생에게 1년분 선비 지급
65. 4. 10 써클활동 실시－4개 써클 승인.
65. 5. 6 후원회 이사회 개최－1천만원 장학기금 모금계획.
65. 5. 5~5. 6 원화제 행사
65. 6. 7 모내기 봉사활동－삼동원에서 4천여평.
65. 6. 7 자전거 실기교육－기동성 있는 교화활동을 목표로 전학생에게 실시
65. 6. 21 모내기 봉사활동－수계농원에서 4천여평.

65. 7. 13~7. 16　하계봉사활동－해룡농업기술학교 죽림조성.
65. 7. 17~7. 21　〃　－완도농원 일손돕기.
65. 7. 31　〃　－김천소년원 방문. 자매결연.
65. 9. 27~9. 29　추계정기훈련. 『동산선원보』발행 (격월간으로 발행중)
66. 10. 9　학생 무료진단(전북대 내과과장)
66. 10. 15　본관 및 남녀 기숙사 수리 및 개축(5,317,500원)
66. 11. 25　도서구입 (160여권 50만원)
67. 2, 16~19　신춘훈련
67. 4. 8　학습용 자전거 구입 10대
67. 5. 6~7　제9회 원화제
67. 5. 27　수계농원 모내기봉사
67. 6. 8　철도이설 부지 논 매매
67. 11　꽃꽂이 강습
67. 7. 14~20　하계 봉사활동(완도)
67. 8. 28　국유지불하 129평 1,343만원.『동산선원보』17호 발간(격월간). 특대장학금 지급(매선기)
68. 2. 17~20　제5회 신춘훈련
68. 2. 25　장학회 발족. 동산선원 후원회를 계승(이사 16명, 회원 25명)
68. 5. 6　개교 30주년 행사. 제10회 원화제.
68. 7. 15　완도 소남훈련원 봉사활동. 동산선원보 기금목표 달성(4,500,000원)
68. 6. 23　체육관을 피아노실로 개조하여 피아노를 들여 놓음.
68. 8. 30　보화당 개설을 위한 점포계약(점포 15평 전세 2,500만원)
68. 9. 30　여기숙사 세면장 및 연탄창고 개축.
68. 10. 4　강의 시종 신호용 7643멜로디 벨.
69. 1. 19　동화당 한약방개업－전주시 진북동 점포 15평(2천5백만원)
69. 1. 29　외등가설－야간조명등. 외등 2개소에 설치.
69. 2. 15~2. 19　신춘훈련－새학년도를 맞이할 정신적 훈련(44명)
69. 3. 5　동화당 한약방 폐업－사정상 공의에 의하여 폐업함.
69. 3. 11　경운기 1대구입－특지가의 희사(막사포함 1,551,000)
69. 3. 17　혼성중창단 조직－남녀학생으로 혼성중창단 조직.
69. 3. 20~4. 11　탁구장 신축－약 20평 브로크造(1,280,000)
69. 5. 4~5. 5　개원 31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체육대회

69. 7. 5~7. 12 도서열람실을 도서보관실 겸용으로 이전보완
69. 7. 7 복사기 1대구입. 서울교구 및 특지가의 희사(2,500,000)
69. 7. 9 타자기 1대구입. 특지가의 희사로 한글타자기
69. 7. 11 절단기 및 회전송곳, 영사기 1대구입. 특지가의 희사.
69. 7. 30 대형냉장고 구입. 특지가의 희사.
69. 10. 1 1학년 성지순례(제법성지)
69. 10. 15 여기숙사 지붕 및 채양공사.
69. 10. 17 전주 양노원 방문.
70. 2. 14~17 춘계훈련
70. 3. 7 농지매매(5필지 연탄공장부지로=163,763,000원)
70. 3. 22 도서구입(45권)
70. 4. 5 여기숙사 수리(경심원 157,800원)
70. 5. 5 솜리 민속 어린이 잔치 감독지도
70. 5. 6 개원32주년 기념일 기념식 및 선진모시기
70. 6. 15 본관 보수(357,400)
70. 6. 29 담장공사 및 대문시설(1,415,000)
70. 8. 26 ~29 2학년 리더쉽 트레이닝(3박4일, 지리산)
70. 8. 30 칼라 TV, VTR설치 및 쌍마이크 스피커 회사(131만원)
70. 8. 30 논산 덕성여객 시내버스 3대구입(115,770,000)
71. 4. 25 논 184평 매매(4,712,000원)
71. 5. 6 33주년 개원기념식 및 체육대회
71. 7. 8~10 완도훈련(2박3일)
71. 9. 10~16 음악관을 남기숙사로 개수(공사비 200만원)
71. 10. 11 식당 수리(공사비 300만원)
72. 3. 1 원기70년 11월 24일 제216회 임시 원의회에서 동산선원을 예비교무 훈련기관으로 개편 결의한 바 원기72년(1987)부터 실시하게 되어 남23명 여29명 입사
72. 3. 3 원기72학년도 선원생 결제식 및 원기 72년도 예비교무 훈련결제식을 교정원장, 법무실장, 중아문화원장, 교육부장을 모시고 갖다.
72. 3. 5 예비교무 52명 입사후 보고차 원평에 계시는 종법사께 인사올리다.
72. 3. 10~3. 13 재학생 신춘훈련을 본선원에서 갖다.
72. 3. 22 영모원 잔디밟기 및 돌고르기 봉사활동하다.

72. 5. 6　　동산선원 개원 34주년 기념식

72. 7. 11　　동산선원이 예비교무 훈련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산훈련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훈련하는 훈련생 호칭도 예비교무로 변경.

〈조직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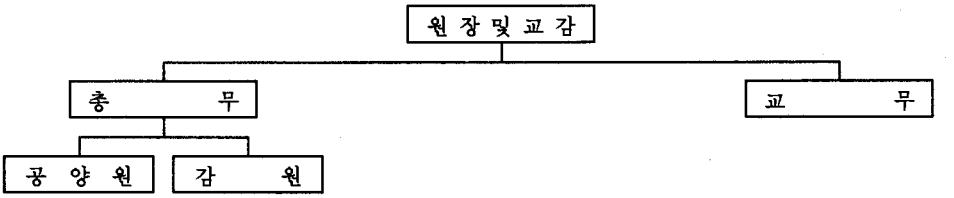

시설의 신축 및 확장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연월일	시 설 내 용		시 설 경 비			비 고
		용 도	평	총 액	기 금	부 채	
확장숙소매입	52. 2	숙 소	30	35만			회사
신 축	52.	목욕탕등부대시설	24	25만			〃
강 당 이 양	58. 2.13	여 기 숙 사	80				
본 관	58. 9.21	강의실,사무실	200				
증 축	61. 6. 2	여 기 숙 사	3간 21	2백만			
동이리지부인수	60. 6	식 당	80	3백19만원			

4) 역대 교직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 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원 장	宋 慧 煥(東煥)	男	1905. 2. 12	38~39	
〃	李 雲 捲(雲行)	〃	1914. 5. 3	40~47	
〃	曺 專 權(玉順)	女	1909. 2. 21	48~55	
〃	安 理 正(重泰)	男	1918. 2. 8	56~61	
〃	梁 道 信(小淑)	女	1918. 8. 2	62~72	
부 원 장	林 善 楊(成禮)	女	1923. 3. 8	62~63	
〃	李 中 正(鍾行)	男	1926. 6. 14	62~70	
〃	金 法 宗(鍾鎬)	〃	1937. 5. 15	71~72	
	閔 道 淵	〃		51~53	

교 감	李 雲 捲(雲行)	男	1914. 5. 3	38~39	
〃	林 善 楊(成禮)	女	1923. 3. 8	48~55	
〃	李 恩 錫(俊行)	男	1925. 1. 12	53~55	
〃	尹 正 運	〃		56	
〃	全 二 昌(在禮)	女	1925. 10. 13	56~58	
〃	金 理 玄(玉禮)	〃	1930. 8. 28	59~61	
〃	孫 正 允(鍾鉉)	男	1939. 6. 14	71~	
〃	閔 道 淵	〃		54	
〃	徐 共 南(善岩)	女	1918. 7. 21	37	
〃	朴 濟 權(京姬)	〃	1925. 8. 7	38~40	
〃	金 勤 修(益洙)	男	1922. 6. 9	40~42	
〃	李 亨 遠	〃	1924. 2. 8	40~45	
〃	張 聖 鎭(和鍾)	〃	1924. 2. 5	43~44	
〃	柳 聖 一(順姬)	女	1928. 7. 26	43~45	
〃	李 濟 性(和秀)	男	1935. 5. 7	45	
〃	吳 曉 圓(男苗)	女	1931. 12. 20	48~55	
〃	韓 正 釋(鍾萬)	男	1931. 1. 11	49~52	
〃	閔 道 潤	女	1906. 2. 5	51~55	
〃	辛 道 亨	男	1925. 4. 10	53~57	
교 무	金 恩 峻(峻謙)	〃	1943. 1. 19	59~61	
〃	金 曉 明(明煥)	〃	1947. 1. 24	61	
〃	金 學 仁(學仁)	〃	1940. 1. 15	62~70	
〃	金 聖 觀(聖觀)	〃	1948. 7. 12	62~63	
〃	辛 靈 文(錫文)	〃	1945 . 7. 29	62~63	
〃	金 三 印(順禮)	女	1934. 10. 29	62	
〃	邊 性 默(午淑)	〃	1945. 7. 1	62~67	
〃	梁 正 理(琯淑)	〃	1944. 12. 16	62~67	
〃	朴 光 秀(相權)	男	1948. 5. 26	63~65	
〃	李 正 珠(正南)	女	1941. 1. 12	63~65	
〃	金 文 澤(文斗)	男	1941. 10. 1	63~65	
〃	太 誠 實(貞模)	女	1950. 9. 23	63~70	
〃	金 一 誠(恩淑)	〃	1948. 8. 12	64~65	
〃	薛 允 煥(相彩)	男	1946. 8. 30	66~68	
〃	李 聖 恩(榮)	〃	1942. 5. 17	64~65	
〃	朴 三 純(潤貞)	女	1928. 2. 26	65~70	
〃	許 光 永(宗奎)	男	1951. 5. 5	66~70	
〃	黃 鳳 眞(順旭)	女	1954. 12. 15	66	
〃	朴 明 濟(聖子)	〃	1939. 8. 9	68	

교 무	安 民 順(泯淳)	女	1946. 9. 19	68~70	
〃	高 大 信	男	1960. 3. 13	69	
〃	崔 洗 塵(順德)	女	1939. 2. 12	71~72	
〃	崔 承 圓(承姬)	〃	1947. 10. 11	71	
〃	崔 世 鍾(鍾燮)	男	1952. 3. 1	71~72	
〃	李 秀 眞(貞淑)	女	1955. 5. 15	72~	
총 무	李 亨 遠	男	1924. 2. 8	40~41	
〃	金 允 中(還烈)	〃	1927. 12. 7	38	
〃	鄭 碩 德(宗吉)	〃	1924. 3. 19	43~45	
교 무	田 宗 哲(淳和)	女	1934. 10. 15	56	
〃	李 宗 眞(康昊)	男	1939. 11. 24	56~61	
〃	鄭 守 德(金洙)	女	1937. 7. 27	57~61	
〃	宋 仁 鎬(淑子)	〃	1944. 11. 30	57~61	
〃	金 法 宗(鍾鎬)	男	1937. 5. 15	58~59	
〃	趙 正 中(云記)	〃	1938. 1. 28	58	
총 무	勸 峻 圓(在完)	男	1940. 4. 26	52~54	
〃	曺 喜 勤	〃	1912. 9. 5	53~55	
〃	吳 聖 洙(聖培)	〃	1934. 11. 20	56~60	
재 무	李 文 眞(順鎔)	女	1924. 6. 10	51~55	
서 무	李 修 悟(在福)	男	1929. 4. 17	56	
〃	辛 靈 文(錫文)	〃	1945. 7. 29	58~60	
서 기	朴 贊 明(秀子)	女	1940. 7. 20	56	
〃	朴 文 吉(貞子)	〃	1941. 12. 17	57	
〃	朴 在 明	〃		58	
주 사	朴 仁 道(基玉)	男	1946. 1 . 26	59~60	

5) 연도별 졸업생수

회수	졸업년도		졸업생수			누계			비고
	원기	서기	계	남	여	계	남	여	
1	41	1956	3	1	2	3	1	2	※ 45~48까지는 중앙
2	44	1959	26	5	21	39	6	33	선원합병
3	50	1965	6		6	45	6	39	
4	51	1966	4		4	49	6	43	
5	53	1968	12	1	11	61	7	54	
6	54	1969	16	1	15	77	8	69	
7	55	1970	18	1	17	95	9	86	

8	56	1971	9	1	8	104	10	94	
9	57	1972	10		10	114	10	104	
10	58	1973	15	3	12	129	13	116	
11	59	1974	24	3	21	153	16	137	
12	60	1975	12		12	165	16	149	
13	61	1976	18	3	15	183	19	164	
14	62	1977	21	1	20	204	20	184	
15	63	1978	15	2	13	219	22	197	
16	64	1979	24	6	18	243	28	215	
17	65	1980	23	6	17	266	34	232	
18	66	1981	15	2	13	281	36	245	
19	67	1982	24	5	19	305	41	264	
20	68	1983	14	1	13	319	42	277	
21	69	1984	20	4	16	339	46	293	
22	70	1985	25	8	17	364	54	310	
23	71	1986	18	7	11	382	61	321	
24	72	1987	15	4	11	397	65	332	

6) 현 황

현재(72년 기준) 교지 총평수는 7,133평에 시설규모로 건물이 381평 임야 대지가 6,752평이다. 건물내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 물 평	평	용 도	구 조
본 관	200평	사무실, 강의실, 학생회의실, 법당, 도서실	콘크리트조
여기숙사	100평	여기숙사	목 조
남기숙사	65평	남기숙사	목 조
식 당	56평	식당	목 조
음 악 관	60평	1층 남기숙사, 2층 음악관	콘크리트조

기타 부동산으로는 대지 3,956평 임야 3,177평이 있다.

교직원 현인원은 총 6명(남3, 여3)에 학생수는 17명(남4, 여13)이 있다. 조직기구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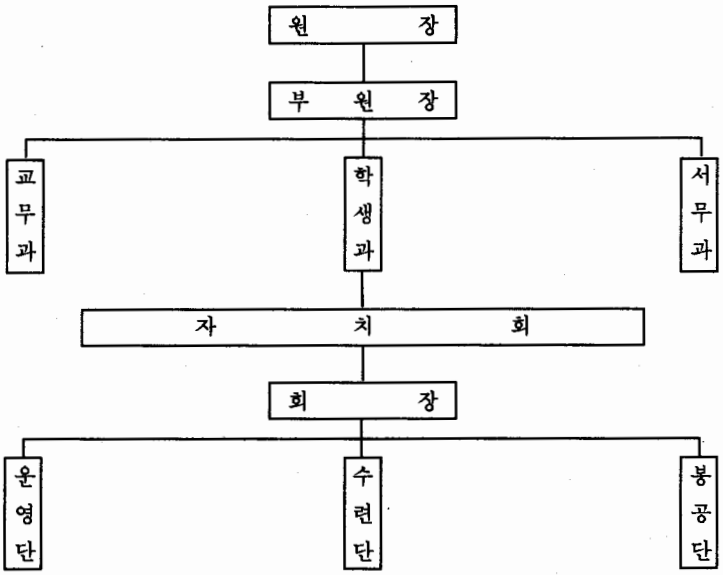

장학제도로는 원기55년(1970)에 설립된 선우회장학금이 있어 성적 85점 이상인자에게 매월 1인당 5천원씩 1년간 지급한 바 있으나 현재는 존속치 않고 있다. 기타 후원단체로는 원기64년(1979)에 재결성된 동산선원 후원회가 있어 개원 26주년을 맞아 천만원의 장학금을 매월 각출했으나 현재는 빈약한 실정이다. 원기72년(1987) 동산선원이 동산훈련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종래의 교역자 양성기능에서 이제 재교육기관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또한 신입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한 학년만 남아 있어 학년 활동만 이뤄질 뿐 서클이나 연구회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끝으로 그동안 전무출신 배출(선원에서 근무하고 후에 전무출신한 것을 의미)수는 원기55년(1970)부터 원기72년(1987)까지 총 10명(남6, 여4)에 이른다. 그 내력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배출된 전무출신〉

번호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천교무	비 고
1	金 泰 成(基成)	男	1945. 5.25		53. 3.27	李 炳 恩	
2	高 淨 吉(在順)	女	1948. 5.20	53. 3. 3	59. 3. 1	安 理 正	
3	柳 心 明(三禮)	〃	1956.10. 8	50. 1.15	59.12.	〃	
4	元 誠 願(金伊)	〃	1954. 7. 8	58. 6.19	63.	金 理 玄	

5	金 常 和(永日)	男	1959. 6. 6	44.12.15	65. 1. 7	安 理 正	
6	梁 濟 宇(載湖)	〃	1963. 6.25	66. 7.26	67. 1.	卓 惠 振	
7	李 南 直(南直)	〃	1960. 4. 5	50. 9.21	70. 1.	梁 道 信	
8	金 道 藏(英敏)	〃	1958. 3.17	69. 1. 1	71. 2	李 成 澤	
9	김 현 은						
10	강 영 덕						

5. 靈山禪院

1) 설립배경

영산선원 원기12년(1927) 영산학원의 발족으로부터 비롯된다. 당시에는 주변마을의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였다. 중앙에서는 원기17년(1932) 영산학원 교무로 이건양을 임명하는 등 원기28년(1943)까지 학원교무라는 직책을 두어 보임한 기록이 있다. 원기28년(1943)까지 이런 형태로 학원생들을 모아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면서 초창기 교단의 인재를 배출해오다 원기29~31년까지는 일제 말기의 압박과 해방초의 혼란으로 인해 휴원하게 되었다. 그 후 잠시 문을 열었으나 곧 6.25 사변을 당하여 부득이 휴원하고 원기44년(1959) 재방언공사가 완료된 후 인재양성의 시급함과 정산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원기40년(1955) 3대선원 설립공고로 영산학원이 영산선원으로 공고되었다. 그러나 설립공고는 명실공히 교단의 교역자 양성임무를 받았지만 제반 여건상 뜻과 같이 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원기47년(1962) 수용시설이나 여건을 감안하여 학원제도 형식으로 발족했고 이어서 원기48년(1963) 영산 초등선원이라는 선원체제로 변경하니 이때 입선인이 50명(중등반, 고등반 합계)이었다. 이듬해 3월 1일 현 영산선원이 선원체제를 갖춰 개원하니 3월 3일 개원시에는 70여명이 입선하였다.

이처럼 영산선원은 초기의 영산학원으로부터 발족하여 원기49년(1964) 영산선원으로 발족하면서 교역자 양성에 주력해 왔다. 여기를 2년 수학한 후 다시 동산선원에서 3년 수학을 거쳐 선원교육을 마치도록 하여 영산선원은 선원교육의 그 전반을 맡은 것이었다.

2) 교육이념

원불교의 교육정신에 바탕하여 창립정신을 체질화하고 교리를 생활화하여 일원세계 보은세계 균등세계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萬能, 萬智, 萬德의 원훈아래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잘 보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는 동산선원과 일맥상통한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교육이념이나 목표가 일치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겠다.

3) 연 혁

원기12년(1927)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용리 9번지 영산성지에서 영산학원으로 발족되어 근동 청소년 교육을 주로 담당했다. 원기28년(1943)까지 정산종사 주산종사가 학원장으로 부임 학원생을 지도해왔다. 그러나 원기29년(1944) 일정말기로부터 해방직후까지 국내 정치 사회적 혼란과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휴원되었고 원기33년~35년(1948~1950)까지는 이완철교무가 지부장으로 계시면서 학원생을 지도하다 다시 6·25동란으로 휴원하고 말았다.

원기37년(1952) 이중화교무가 지부장으로 부임 다시 개원하다 원기42년(1957) 본교의 거교적 사업의 하나인 재방언공사로 또다시 휴원하게 되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원기40년(1955) 3대선원 설립공고가 났고 원기47년(1962) 다시 학원을 발족했고 이어 원기48년(1963) 영산 초등선원으로 변경한 끝에 마침내 원기49년(1964) 3월 1일 종래 선원체제로 드디어 영산선원이 발족된 것이다. 초대 원장으로 安理正교무가 부임 선원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설립당시 규모는 대지가 7,384평, 건물이 5동 119평, 기타 부동산으로는 논이 16,000평, 밭이 4,358평, 임야가 272,700평이었다. 개교당시 교직원수는 모두 7명(남3, 여4)이었고 학생수는 모두 21명(남6, 여15)이었다.

48.	선원체제를 대폭변경하여 영산 초등선원으로 발족.
49.	입선원 50여명이 모집되어 중·고등 두반으로 나누어 수업진행.
49. 3. 3	70명으로 개원
	건평 106평에 식당, 기숙사, 창고 신축하여 공사비 50여만원 소요
50. 3. 20	건평 16평에 기숙사 1동, 5평의 변소 착공
50. 4. 20	총 공사비 15만여원 소요로 준공.
51.	대구, 서성군 양지부의 원조로서 공사비 120,000원 수도시설로 식수해결.
	식당, 부속창고 3평 건물과 남자세면장 5평건물. 공사비 48,629원 완공.
52. 1. 15	2년제 제2회 수료식 거행 18명 수료생 배출
52. 5~3	광주지부 회사금 250,000원으로 발전실, 저수장 양수시설 완비. 경운기 1대 매입
56. 2	100여만원의 공사비로 대종사께서 감역하시여 건축한 68평 대각전 보수. 공사비는 오종태선원장의 주선으로 반백년 사업회를 비롯한 각 지부 기관과 특별희사자의 보조로 이루어짐.
57.	대각 경축 및 개교기념의 달을 맞이하여 성축제 거행.

58. 2. 26 8회 수료식 거행. 수료자 20명중 18명 동산선원에 진학.

58. 4. 26~5. 5 제2회 성축제-단막극, 성가법회, 추모법회, 가상 세계 종교자 평화회의 가장행렬 등 다채로운 행사.

58. 7. 26 법인절행사-촛불순례 행사(구간도실, 기도봉, 성탄지, 대각지, 중앙봉, 방언답)

58. 12. 16 전기, 전화 점화 및 개통식.

59. 2. 1~2. 28 선원 신축공사, 수도공사 완공.
교단의 회갑년도 앞두고 성지 보본 사업착수와 천일기도 시작.

59. 2. 25 제9회 수료식 거행. 수료자 17명 전원 동산선원 진학.

59. 3.10~10. 10 원광원 신축(연건평 250평, 2층 슬라브1동, 총 공사비 약4천만원)

59. 4. 30 성축제 거행

59. 5. 29 순환도로 기공식

59. 7. 26 법인절 촛불행렬(중앙청년 연합봉사단과 합동 150여명이 촛불을 밝혀두고 방언답 등 성지순례를 하였음)

59. 10. 10 세계평화 기원 성지순례

59. 10. 10 「圓光園」 봉불 낙성식

59. 10. 10~11. 20 전시회 개최(대종사 유품 및 선지유품, 수석, 서예, 시화 등 연 1만명 관람)

59. 10. 10 문암 수양원 신축(본선원에 입선수학하던 빈인권씨의 발원으로 10여년전부터 준비해 오다가 본선원의 지부기관 협조로 착공 신축)

60. 3. 6 선원 신입생 결제식 거행(남1, 여11)

60. 4. 19 성지에 대규모 식수실시(4천주)

60. 4. 24 제5회 성축제 거행(전야제, 모의 아시아 종교자 대회, 예술제, 소품전 등 다양한 행사)

60. 4. 30 중등반 신설 및 입학식 거행. 64명 입학.

60. 5. 21 교리퀴즈 대회 개최

60. 5. 24 정관평 재방언 확장공사 준공식 거행.

60. 7. 16~26 새벽 4시부터 9인 각 기도봉을 참배, 법인기념 특별산상 기원식 거행.

60. 8. 1~9. 20 식당 개축 및 취사장 신축 공사비 약 100만원

60. 9. 28 추계 체육대회 개최.

60. 11. 25 지견 교환 실시

60. 12. 6 성가경연대회 실시

61. 3 중등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회 조직

61. 3 유년회 조직 80여명 출석

61. 3. 10 근동청년 교화 실시－성지부근의 청년교육 및 교화목적

61. 4 정관평 위험제방 보수

61. 4. 26 성축행사 실시

61. 5. 22 선원생 전원 X－Ray촬영. 합동득도식(중등부 53명)

62. 4. 2 종법사 취임 봉고

62. 4. 9 종법사 임석 합동법회

62. 6. 20 전 선원생의 건강진단을 위한 X－Ray 촬영

62. 6. 23～25 어린이 지도자 훈련과 하계 중등부 수련대회

62. 8. 1～21 어린이 지도자 훈련과 하계 중등부 수련대회

중등부 검정고시 합격(전과목 합격 3명, 과목합격 20명)

- 경운기, 냉장고, 삭발기, 고추분무기, 식판(경비 131만원)
- 중등부 부지와 초가 1동매입(455만원)
- 원광원 창고(보수), 지붕개량(스레트 3동) 보일러시설, 미룡정수리, 식당 확장 등 총 공사비 297만원
- 중등부 카메라 1대 기증 5만원
- 성지단풍나무 식수－해룡고등학교, 해룡농업기술학교, 학생과 영산주민들의 합력으로 성지에 5만주의 단풍나무를 심었다.

62. 11 영산선원 부설 중등부 신축교사 4간 준공.

세계평화 기원 및 낙성기념 대법회. 대산종법사 임석하에 거행. 합동득도식, 중등부 학생 18명 입교.

63. 1 선원 신입생 모집시험.

63. 3 중등부 체육시설 구비

사업－영산선원내 식당 50평준공(600만원), 화장실 2동 준공(150만원), 대각전 보수작업, 양수기 2대 및 호스구입, 보은강 준설공사

봉사활동실시－영산선원생 1, 2학년 삼동수양원에서 10일간 봉사활동

63. 9. 5～11 종법사 성지내방. 선원 음강 대회(교전 암송대회)

64. 4. 6 평화통일 기원 대법회 및 북한교화 위원회 발족 봉고식 거행.

64. 4. 29 기관대항 체육대회 참가－남자배구 우승차지.

64. 5. 26～29 정관평 모내기 작업

64. 7. 10～14 어린이 지도자 강습 참가

64. 8. 26	한국방송작가 협회회원 20명 성지 방문 및 세미나 개최
64. 9. 12	교전 음강(암송)대회 개최
64. 10. 9 ~10	영산고공생 원대초청으로 1박2일 총부, 원대, 공단 방문
64. 10. 22	영산성지 장학사업회 발족
64. 12. 13~12. 15	자체 감사 실시
65. 2. 6	신입생 선발고사 실시
65. 3. 1	65학년도 선학원 신입생 봉고식을 대각지에서 거행.
65. 3. 26	영산성지 장학사업회 천일기도 결제.
65. 4. 3~4. 6	성지 식목행사 편벽 등 15,000주
65. 4. 16~4. 18	성축제 거행
65. 5. 10	기념관 건립 기공식
65. 7. 11~7. 14	봉사활동 수계농원 25명 참가.
65. 8. 10	기념관 건립 준공식 공사비 6천만원
65. 8.15	성탄지 생가복원 기공식
65. 8. 24~27	제1회 교직원 훈련. 삼동원에서 피아노 기증-부산진교도 1대, 김용복 1대
66. 3. 1~3	신입생 선서기도
66. 3. 2	결제식 및 신입생 입학식
66. 3. 26~28	성축제 거행
66. 7. 14~16	자체 사무감사 및 1학기 종합평가회
66. 8. 25~27	제2회 영산선원 교무훈련. 피아노 기증 1대. 고압선 옮김. 상수도 보수공사.
66. 9. 9	음강대회
66. 9. 22	시화전
67. 11. 9	성지장학사업 창립총회 및 정관통과, 임원선출 및 예산통과
67. 11. 25	옥녀봉 순례도로 개척
67. 12. 7	신분검사 실시
68. 1. 6	영산성지학교 대학입학자격 학력 인증
68. 2. 21~23	제1회 동계훈련
68. 3. 15	교운융창과 세계평화를 위한 천일기도 결제
68. 4. 27~29	성축제-전야제, 학술제, 음악회, 체육대회 등.
68. 8. 25~27	제2회 하계훈련

68. 10. 14　추계 체육대회－영산선원 성지고 합동체육대회.
68. 12. 1　명절대재 예술제－추모연극, 시낭송, 성가경연
68. 12. 6　신분검사－교무, 선원생 함께 실시
68. 12. 24　교육세미나－교육부주최 세미나 참석.
69. 12. 12　보은의 밤－학부형, 추천교무와 함께
69. 2. 20～23　자체동계훈련－연구발표 및 강연, 회화.
69. 3. 1　신입생 봉고식. 12명 대각지에서
69. 4. 5　식목행사에서－대각지광장에서 잔디입히기
69. 4. 27～29　聖축제. 전야제, 기념식, 학술제, 체육대회
69. 7. 11～13　어린이 지도자 강습. 총부 교육부 주관 28명 참석
69. 7. 14～17　수계농원에서 봉사 및 전지훈련
69. 9. 28　작품전시회, 서예, 미술, 시, 공작품 등.
69. 9. 30～10. 1　변산 제법성지 순례 및 기도식
69. 9. 30　대각전 및 적공실 보수(1백7십만원)
70. 2. 22～24　자체 동계훈련, 연구발표 및 토론
70. 3. 1　신입생 봉고식(12명)
70. 3. 21　요가강습실시. 강사 : 김진광교무.
70. 3. 23　특강실시. 강사 : 주정일교수(유아교육)
70. 4. 27～29　대각개교절 기념행사 : 관등행사, 산상기도, 학술제, 예술제, 체육대회
70. 6. 25～27　어린이 지도자 훈련. 총부 교육부 주관 25명 참석
70. 7. 13～15　전지훈련. 1학년 하섬해상훈련. 2학년 성주성지순례
70. 9. 18　음강대회실시. 교리암송대회
70. 10. 8　개교기념 합동체육대회 성지고와 영산선원 합동으로
70. 12. 7　세계평화, 국운무궁, 교운융창, 성지장학사업을 위한 천일기도회향식
71. 2. 19～22　선원재학생과 교무의 연구발표회 및 초빙강의로 동계집체훈련
71. 3. 25　세계평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제3차 천일기도결제
71. 6. 22　아시아 종교자대회에 참석한 외국인 46명 순례
71. 6. 24～26　교육부주관 어린이 지도자 강습 실시. 장소 : 총부대각전
71. 7. 11～14　1, 2학년 전원이 방학직전의 서원다짐을 위한 완도전지훈련
71. 9. 10　교전암송대회

71. 10. 11　　추계체육대회 실시. 영산선원, 성지고 합동.
71. 10. 30　　교사증축완공 : 강의실 3간, 교무실, 교수연구실, 도서관 등 200평.
72. 2. 12~19　　자체동계훈련 : 정기훈련 11과목 토론, 수양정진
72. 2. 28　　신입생 18명, 교학과 신입생들과 봉고식.
72. 4. 1~2　　정기훈련과목 집중훈련.
72. 4. 27~28　　성축제 : 체육대회, 학술제, 예술제 실시
72. 6. 24~27　　예비교역자 어린이 지도자 강습을 중앙총부 대각전에서 실시
72. 7. 4　　정토회에서 300여권 도서 기증.
72. 7. 12~14　　상시훈련지도를 위한 완도전지훈련 실시.
72. 8. 17~19　　학생회 간부훈련 실시. 장소 : 원광선원
72. 8. 25~31　　자율훈련으로 학기준비 및 독서훈련.
72. 9. 9　　경전암송대회
72. 9. 29~70. 3　　졸업여행실시

〈신축 및 확장〉

구 분	연 월 일	시 설 내 용		시 설 경 비		
		용도	평	총액	기금	부채
원 광 원 신 축	59.10	법당기숙사	198		3천5백만원	
신축(와가,창고)	49. 3. 3	기숙사 식당,창고	26.80평－106	50만원		
신 축	50. 4.20	기숙사, 변소	16.5평－21평	15만원		
〃	51.	식당,부속창고, 남자세면장	3.5평－8평	48,629원		
〃	52.	발전실, 저수장	5.3평－8평	25만		
보 수	56.	대각전		100만		
식 당 신 축	62.	식당	60평		5백만원	
교 실 신 축	63.	교실,교무실	100평		3천만원	
영 모 전 신 축	66. 5	영모전숙소	80평		6천5백만원	
교 실 증 축	71.10	도서실,강의실	198평		9천만원	
탁 구 장	72.10	탁구장	23평		5백만원	

4) 역대교직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지 부 장	宋 奎(道君)	男	1900. 8. 4	13~17, 22~26	
교 무	李 載 喆(載焞)	〃	1891. 2. 11	13~16	
〃	宋 碧 照(寅驥)	〃	1976. 9. 11	13~19	
〃	趙 甲 鍾(孝南)	〃	1905. 5. 13	13~17	
〃	金 光 旋(成燮)	〃	1897. 9. 6	15~16	
〃	李 東 安(亨天)	〃	1892. 12. 22	17~18	
〃	李 建 陽(建初)	〃	1910. 1. 28	17~18	
지 부 장	宋 道 性(道悅)	〃	1907. 11. 19	18~21, 27~29	
교 무	成 丁 哲(丁鎬)	〃	1902. 11. 21	18~20,22~24, 33	
지 부 장	吳 昌 建(在謙)	〃	1887. 10. 17	19~20, 34~35	
교 무	李 雲 捲(雲行)	〃	1914. 5. 3	19~21, 24~27	
〃	李 君 一(炳彪)	〃	1895. 6. 3	20~23, 32.	
〃	曺 元 善(炯煥)	〃	1896. 1. 13	22~24	
〃	朴 濟 奉(濟準)	〃	1888. 1. 15	22~24, 27~29, 33	
〃	金 亨 眞(永文)	〃	1882. 11. 7	24~26	
〃	蔡 貴 圓	〃		25~26	
지 부 장	李 完 喆(載心)	〃	1897. 3. 27	30~32, 40	
	全 性 完(敬進)	〃	1924. 12. 10	32~33	
교 무	金 勤 修(益洙)	〃	1922. 6. 9	34~35	
지 부 장	李 中 和(住衡)	〃	1903. 8. 17	38~43	
교 무	李 善 友(善宰)	〃	1921. 11. 26	38~40	
〃	崔 基 現	〃		38	
〃	姜 雲 祥(東日)	〃	1934. 8. 24	39	
교 무	金 日 鉉(周鉉)	〃	1907. 1. 5	40~41	
〃	李 智 一(錫順)	女	1915. 5. 22	40~41	
지 부 장	金 洪 哲(忠烈)	男	1902. 9. 19	42~47	
교 무	鄭 堇 豊	〃		42.	
〃	李 宗 明(鍾丙)	〃	1933. 11. 5	42~45	
〃	金 理 玄(玉禮)	女	1930. 8. 28	42~46	
〃	張 仁 中(萬植)	男	1927. 6. 12	46	
〃	金 致 局(相國)	〃	1924. 4. 23	47~48	
선 원 장	安 理 正(重泰)	〃	1918. 2. 8	48~53	
교 무	金 大 現(榮俔)	女	1926. 3. 9	49~51	

교 무	宋 明 鎬(明鎬)	女	1939. 7. 14	49~51	
〃	金 長 源(香基)	男	1946. 5. 2	49~51, 56~57	
	辛 泰 圓	〃		49	
	鄭 慈 淑	女		49~50	
	申 純 仁	〃		49	
	金 承 煥	男		50	
	沈 南 長	〃		50~51	
	金 學 仁(學仁)	〃	1940. 1. 15	51	
	權 修 圓	〃		52	
교 무	朴 智 圓(京姬)	女	1942. 7. 10	52~53	
〃	朴 眞 興(興基)	男	1935. 9. 20	52	
	徐 鳳 陽	女		52~54	
교 무	權 峻 圓(在完)	〃	1940. 4. 26	51	
〃	尹 正 運	〃		52	
〃	李 正 和(漢和)	女	1918. 7. 19	52~53	
〃	李 普 圓(萬宰)	男	1934. 9. 13	52	
〃	李 慧 定(愛子)	女	1937. 12. 9	52~54	
〃	李 性 吉(性吉)	男	1937. 1. 2	52	
〃	李 性 照(京鎬)	〃	1946. 6. 21	52	
〃	張 應 哲(由錫)	〃	1940. 9. 8	53~57	
〃	崔 洗 塵(順德)	女	1939. 2. 12	53~61	
〃	文 國 善(順)	〃	1941. 11. 22	53~56	
선 원 장	吳 宗 泰(孝順)	〃	1913. 12. 20	54~61	
교 무	徐 聖 範(金成)	男	1940. 9. 25	54~58	
〃	金 復 煥(復煥)	女	1938. 12. 10	55~59	
〃	崔 柔 圓(秉淑)	〃	1946. 6. 20	55	
〃	高 圓 善(柔善)	〃	1947. 2. 3	55~63	
〃	李 正 珠(正南)	女	1941. 1. 12	57~62	
〃	姜 慶 樂(甲東)	男	1942. 12. 1	57~61	
선 원 장	尹 周 現(殷炳)	女	1924. 2. 19	58	근무중
교 무	李 大 光(榮植)	男	1937. 2. 28	58~62	
〃	金 化 德(正培)	女	1948. 9. 24	58~64	
〃	鄭 慶 圓(慶姬)	〃	1929. 2. 6	59~60	
〃	金 正 有(載璟)	男	1951. 2. 21	59~62	
〃	辛 自 然(蓮順)	女	1943. 4. 8	60~67	
〃	鄭 報 仁	〃		60~62	
〃	金 聖 觀(聖觀)	男	1948. 7. 12	61	

교 무	李 敬 峰(韓馥)	男	1949. 10. 8	61~63	
〃	南 宮 誠(奎)	〃	1950. 10. 1	61	근무중
〃	金 明 元(大準)	〃	1946. 2. 7	61~67	
〃	李 良 信(良信)	女	1942. 6. 26	62~67	
〃	朴 常 根	〃	1944. 1. 30	62~67	
〃	崔 道 常(明善)	〃	1949. 5. 13	62~67	
〃	吳 善 道(材信)	〃	1949. 6. 6	63	
〃	柳 眞 根(光洙)	男	1952. 2. 2	63~65	
〃	尹 舜 明(正明)	女	1946. 4. 22	63	
〃	金 性 圓(性圓)	男	1953. 8. 1	63~65	
〃	申 宗 熙(大熙)	男	1948. 2. 22	64	근무중
〃	梁 道 承(貴子)	女	1955. 3. 9	64~67	
〃	李 聖 田(성전)	〃	1953. 1. 15	65~66	
〃	崔 世 鍾(鍾燮)	男	1952. 3. 1	65~67	
〃	朴 仁 海(成洙)	〃	1953. 11. 17	66~67	
〃	殷 聖 義(熙淑)	女	1959. 1. 15	66	근무중
〃	金 仁 昭(福姬)	〃	1955. 3. 30	67	
〃	金 浩 性	男		68~70	
〃	徐 圓 珠(允)	女	1958. 1. 10	68	
〃	李 舜 圓(恂根)	男	1953. 7. 11	68~70	
〃	金 聖 子	女		68~70	
〃	黃 旻 政(賢淑)	〃	1954. 9. 13	68~71	
〃	河 常 義(正南)	〃	1955. 6. 26	69	근무중
〃	朴 誠 仁(潤熙)	〃	1958. 5. 16	69~70	
〃	朴 南 周(韓圭)	男	1947. 9. 19	71	근무중
〃	安 民 順(泯淳)	女	1946. 9. 19	71	〃
〃	李 道 田(海應)	男	1955. 3. 26	71~72	

5) 연도별 졸업생수

회수	졸업년도		졸업생수 누계						비 고
	원기	서기	계	남	여	계	남	여	
	※ 원기13~49년 사이의 졸업생은 기록이 없음								원기49년 이전은 자료가없음
1	51	1966	21	6	15	21	6	15	
2	52	1967	18	1	17	39	7	32	
3	53	1968	7		7	46	7	39	
4	54	1969	15	1	14	61	8	53	
5	55	1970	12	1	11	73	9	64	

6	56	1971	20	2	18	93	11	82	
7	57	1972	11	2	9	104	13	91	
8	58	1973	20	2	18	124	15	109	18명 동산진학
9	59	1974	17		17	141	15	126	
10	60	1975	14	2	12	155	17	138	
11	61	1976	25	2	23	180	19	161	
12	62	1977	18	2	16	198	21	177	
13	63	1978	14	2	12	212	23	189	
14	64	1979	28	7	21	240	30	210	
15	65	1980	15	1	14	255	31	224	
16	66	1981	19	4	15	274	35	239	
17	67	1982	28	6	22	302	41	261	
18	68	1983	17	7	10	319	48	271	
19	69	1984	15	2	13	334	50	284	
20	70	1985	16	3	13	350	53	297	
21	71	1986	2		2	352	53	299	봉공직. 2
22	72	1987	2	2		354	55	299	봉공직. 2

6) 현 황

현재 영산선원의 시설현황은 부지 17,384평(학교부지 1만평, 영산원구내 7,384평)에 시설 건평 총 845평 운동장이 3,000평이며, 그 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 물 명	평	용 도	구 조
본 관	300평	강의실, 도서관, 강당, 연구실, 교무실, 자료실	벽돌, 콘크리트
대 각 전	80평	법당	목조
영 모 전	80평	영모전	콘크리트 와가
남 기 숙 사	50평	숙소 3동	목조
원 광 원	200평	여기숙사 법당교무 숙소	콘크리트
교 무 숙 소	40평	남녀 교무숙소	목조
식 당	60평	식당	벽돌 스레트
탁 구 장	23평	운동장	벽돌 스레트
화 장 실	12평	화장실	콘크리트
산업부시설	70평	창고 60, 숙소 10	벽돌 스레트 목조
계	845평		
※ 운동장	3,000평		

〈기타 부동산〉

구 분	평	구 분	내 용
논	16,683	기 타	① 건물 1동(37평) 광주시 대인동(싯가 4천만원)
밭	5,299	(장학회재단)	② 논 3천평 (길룡리)
임 야	272,700		③ 버스 1대 (논산시내, 싯가 4천만원)

장학제도로는 교육부에서 순공비생 30명에게 학비, 식비를 지급하고 관할교당에서 반공비생 4명에게 학비를 지급하여 선원자체에서 성적우수자 3명에게 학비를 지급하고 있다.

현 조직기구는 별표와 같다.

〈조직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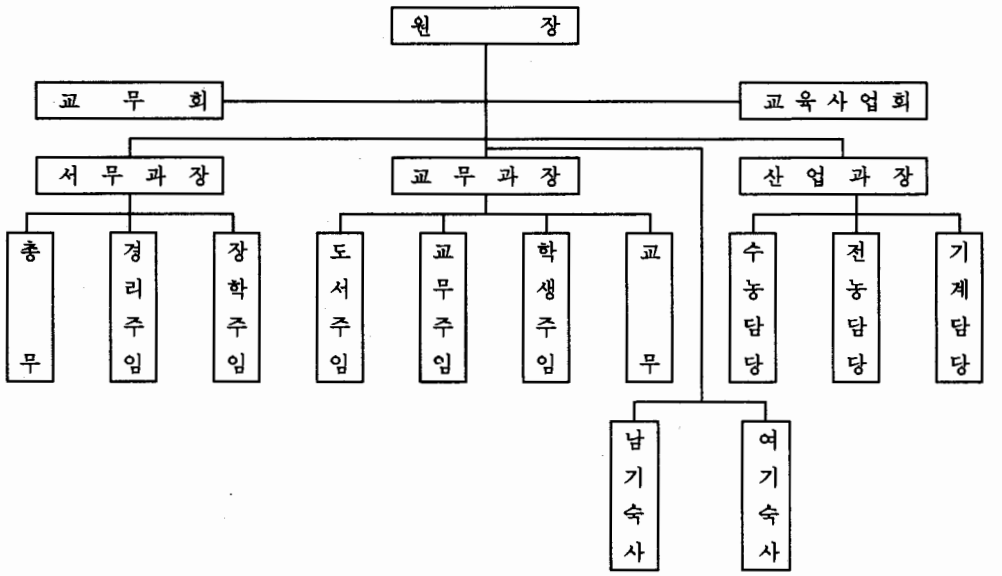

후원단체는 원기67년(1982) 11월 결성된 영산성지 장학사업회가 있어 장학후원을 해왔으나 현재는 해체되었다. 이 밖에 원기72년(1987) 11월 19일에 영산선원 교육사업회가 재결성 장학금 후원, 교육심의 등을 맡고 있다.

써클단체 연구회로는 원기72년(1987) 3월 15일 결성된 선연구반(10명), 교리연구반(10명), 레크리에이션 및 교화연구반(12명)이 있으며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전무출신 배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 도	배출수			누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55(1970)	1		1	1		1	
56(1971)	2	1	1	3	1	2	
57(1972)	1		1	4	1	3	
63(1978)	1		1	5	1	4	
67(1982)	1	1		6	2	4	
68(1983)	3	2	1	9	4	5	
69(1984)	1		1	10	4	6	
71(1986)	3	1	2	13	5	8	
72(1987)	3	1	2	16	6	10	

설립당시 초급과정의 선원이 원기70년(1985) 4년제 정규선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동산선원이 영산선원에 통합되고 동산선원은 예비교무 훈련원으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선원체제를 4년제 정규대학에 준하는 교육체제로 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특히 원기72년(1987) 창립된 영산선원 교육사업회를 통해 선원교육의 후원과 내실있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산종법사의 부촉과 교직원, 학생 동문들의 발의에 따라 선원의 대학인가를 추진하기로 하고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 노력키로 하고 있다.

6. 원불교학과

1) 설립배경

원불교학과의 설립은 원광대학교의 모체인 유일학림의 설립에까지 소급된다. 그러나 정규대학의 학부로 출발한 것은 원기36년(1951) 9월 5일 2년제 초급대학으로 인가가 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현 원불교학과의 과명칭은 이때의 교학과로부터 비롯되어 불교교육과(1962)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초급대학이 설립되기까지는 먼저 재단법인 원불교의 법인체 등록과 아울러 원기36년(1951) 5월 10일 중앙총부 원의회에서 유일학림을 정규대학으로 승격 설립키로 결의하고 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 본격적으로 대학설립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게 되었다. 이때 문교부에 낸 설립인가 신청서, 설립취지서에 보면 본 대학의 교육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대학은 우리나라 교육이념에 基하여 우주원리인 일원대도의 정신을 기본

으로 고등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정치한 응용을 교수하고 원불교 정신을 체득 실천케 하여 조국의 발전과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진실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目的한다」

이런 설립 목적에는 비단 교학과만이 아닌 국문과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제시된 내용이 있으나 교학과는 분명 유일학림 개설 당시의 교육목적을 그대로 계승해오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요컨데 원불교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그러나 대학설립의 뜻은 비단 이 무렵에 한한 것은 아니다. 일찌기 소태산 대종사 재세시로부터 면면이 내려온 것이 이제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간 총부에서도 唯一大學의 설립에 관한 수차의 협의가 있었으나 경제적 난관에 봉착케 되었고 이어 6·25동란의 발발로 지연된 것이다.

圓光이라는 교명이 시사하듯 교학과는 일원의 진리를 체받아 실현하는 지도적 人格을 양성하는데 있었다.

교학과는 원기47년(1962) 3월 19일 과명칭이 불교교육과로 변경되었고 이어서 원기56년(1971년) 문리과대학 원불교학과로 그리고 원기64년(1979) 신설 교학대학으로 개편 소속케 되었다.

2) 교육이념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인 법신불 일원상의 사상을 널리 선양하고 濟生醫世의 역군인 교역자 양성에 과설립의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를 넓혀서 보면 학교의 교훈인 「知德兼修, 道義實踐」이 시사하듯, 知와 德을 겸비하여 도의를 실천하는 지도적 인간을 양성하는데 뜻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과학과 도학이 겸전된 지성인, 보은 봉공하는 봉공인, 일원의 진리를 믿고 닦는 구도인, 제생의세의 지도적인 인격을 목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불교학과의 교육이념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의 개교이념에 바탕하여 과학과 도학을 병진함으로써 진리를 향한 높은 이상과 더불어 이 세계를 敎化하는 지도적 인격을 목적하고 있다 하겠다.

3) 연 혁

원불교학과의 전신인 교학과가 설립된 것은 원기36년(1951) 9월 5일, 현 원광대학이 위치한 이리시 신용동 344~2에서 일원의 진리를 선양할 전문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해방후 당시 정산종법사와 합력으로 장차 원불교의 이상을 선양할 전문 교역자 양성기관의 설립추진을 하게 되었다. 특히 제1대 성업봉찬사업의 일환으로 2,500여평의 석조 3층 건물을 세우기도 했다. 설립당시 규모로는 61.825평의 건물 1동과 대지 6,463평이 있었다. 초대 학장

으로는 박광전교무가 10월 6일 취임 승인되었다.

개교 당시 교직원 수는 13명이었고(남11, 여2) 학생수는 19명(남7, 여12) 이었다. 설립 당시의 학교 조직기구로는 학장－교무처－사무처의 행정조직이 있었고 학과에는 학과교수회 외에는 별다른 조직이 아직 없다.

설립당시 초급대학시설 교학과 학생들이 수강하는 교과목은 일반과목 교양14(7)과목, 전공49(23)과목, 선택과목 12(6)으로 구분하여 2년간 36과목에 75시간을 수강하고 있다. 그 자세한 내력은 다음과 같다.

〈教學科의 教科目〉

1. 一般科目　國文及國語, 自然科學, 文化史, 英語, 體育及教練(5)
2. 專功科目　圓佛教學, 佛教學, 佛教演習, 朝鮮佛教史, 印度佛教史, 禪學, 禪學史, 宗教學, 宗教史, 社會學, 心理學概論, 教育學, 論理學, 倫理學概論, 哲學概論, 印度哲學, 東洋哲學, 漢文學(18)
3. 選擇科目　文學概論, 西洋哲學, 東洋倫理學, 美學及美術史, 政治學概論, 第二外國語(獨語)(6)

〈各學年 교과목의 週 授業時間數〉

1. 一般教科目 每週 授業時間表

教科目	第一學年	第二學年	教科目	第一學年	第二學年
國語及國文學	2		英語	2	2
自然科學	2		體育及教練	2	2
文化史		2	計	8	6

2. 專功教科目 每週 授業時間表

教科目	第一學年	第二學年	教科目	第一學年	第二學年
圓佛教學	4	4	佛教學	3	3
佛教演習	2	2	教育學	2	2
朝鮮佛教史	1		論理學	2	
印度佛教史		2	倫理學	2	
禪學	2		哲學概論	2	
禪學史		1	印度哲學		2
宗教學		2	漢文學	2	2
社會學		2	東洋哲學		2
心理學		2	宗教學		2
			계	22	28

3. 選擇教科目 每週 授業時間表

教科目	第一學年	第二學年	教科目	第一學年	第二學年
文學概論	2		東洋倫理學		
西洋哲學		2	政治學概論	2	2
美學及美術史		2	第二外國語(獨語)	2	

一年 一科目 以上 選擇하여야 한다.	合	計	34	34

설립당시 정원은 2학급에 100명이었으나 원기38년(1953) 1월 29일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되면서 120명으로 증원되었다. 그 후 교학과 정원 및 학과 명칭변경은 다음과 같다.

( )은 전체정원

인가년월일	과명칭	입학정원	비 고
36(1951) 9. 5	교 학 과	50(100)	2학급 (2년제)
38(1953) 1.29	〃	40(160)	4학급 (4년제)
41(1956) 4.27	〃	30(120)	1956. 5. 교학과에 교직과목 설치인가
47(1962) 3.19	불교교육과	50(200)	4학급 원광대학림
48(1963) 6.27	〃	30(120)	
50(1965) 12.14	〃		1학년 정원 10명씩 감원
56(1971) 12.31	원불교학과	20(80)	종합대로 개편 문리과대학 소속.
62(1977) 6.30	〃	30(120)	실험대운영
63(1978) 10. 7	〃	40(160)	교학대 인가 초대학장 송천은
72(1987) 8. 8	〃	60(240)	증원

시설 신축 및 확장내력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연월일	시 설 내 용	시 설 경 비		
		용 도 평	총계	기금	부채
신 축	49(1964). 6.	남기숙사			
〃	53(1968). 3	여기숙사			
〃	59(1974). 8.10	기숙사 식당	7,400,000원		
〃	66(1981). 5.14	신학림사 157평	52,998,000원		
증 축	67(1982). 9.	〃 (증축 2층) 171.9평	66,199,006원		
신 축	67(1982).11.17	교학관, 강의실, 연구실, 선실 996.7평	241,777,000원		
증 축	67(1982).	여기숙사 정화원 증축(강당 등)			
신 축	71(1986).10. 7	신정화원 225평	147,000,000원		

4) 역대교직원

직책	법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퇴직자	朴光田	男	1915. 3.23	51.10. 1~86.12. 3	학장 및 총장역임
〃	田元培	〃		52. 4. 1~76. 2.28	
〃	金映遂	〃		53. 4. 1~61.12	
〃	徐炳宰	〃		51.10. 1~55. 3.31	
〃	徐京保	〃		52. 4. 1~56. 3.31	
〃	朴中歡	〃		54. 4. 1~59. 3.31	
〃	鄭泰赫	〃		65. 5.15~73. 3.31	
〃	李亨中	〃		51.10. 1~57. 3.31	강사
〃	李雲捲	〃	1914. 5. 3	51.10. 1	〃
〃	李中正	〃	1926. 2.14	52. 4. 1~62. 2.28	〃
〃	崔逸雲	〃		53. ~61.	〃
〃	李君一	〃	1895. 6. 3	53.	〃
〃	李恩錫	〃		53. 4. 1~63. 2.28	〃
〃	洪顯植	〃		54. 4. 1	〃
총장	金正勇	〃	1925.11. 1	59. 4. 1~	교수
대학원장	柳基現	〃	1930. 9. 2	59. 4. 1~	
의무부총장	宋天恩	〃	1936. 7. 9	61. 4. 1~	
사상연구원부원장	韓正圓	〃	1933. 8.30	62. 3. 1~	
대학교당교감	韓正釋	〃	1932. 1.11	65. 5.15~	
학장	徐慶田	〃	1939.10.15	74. 3. 1~	
대학교당교감	金聖徹	〃	1938. 9.15	74. 3. 1~	
교수	金亨徹	女	1938. 1.21	77. 3. 1~	
〃	李運徹	男	1939. 2. 8	79. 3. 1	
학과장	金聖澤	〃	1944. 7. 3	79. 3. 1~	
교수	金成薰	〃	1947. 6.18	80.10. 1~	
〃	魯大薰	〃	1945.11. 7	81. 3. 1~	
〃	金基圓	〃	1947.10.16	81. 3. 1~	
〃	梁賢秀	〃	1947. 8.19	84. 3. 1~	
〃	朴光洙	〃	1948. 5.26	84. 9. 1~	
의료원법당교무	鄭玄仁	〃	1953. 1. 9	84. 3. 1~	

5) 연도별 졸업생수

회수	졸업년도		졸업생수			누계			비고
	원기	서기	계	남	여	계	남	여	
1	유일	학림 1기	19						

2	유일	학림 2기	24						
1	39	(1954)	3	3		3	3		
2	40	(1955)	6	4	2	9	7	2	
3	41	(1956)	22	10	12	31	17	14	
4	42	(1957)	10	10		41	27	14	
5	43	(1958)	7	6	1	48	33	15	
6	44	(1959)	20	12	8	68	45	23	
7	45	(1960)	10	3	7	78	48	30	
8	46	(1961)	3	3		81	51	30	
9	47	(1962)	15	4	11	96	55	41	
10	48	(1963)	15	8	7	111	63	48	
11	49	(1964)	24	16	8	135	79	56	
12	50	(1965)	11	8	3	146	87	59	
13	51	(1966)	14	6	8	160	93	67	
14	52	(1967)	27	13	14	187	106	81	
15	53	(1968)	22	9	13	209	115	94	
16	54	(1969)	16	4	12	225	119	106	
17	55	(1970)	18	9	9	243	128	115	
18	56	(1971)	18	10	8	261	138	123	
19	57	(1972)	6	3	3	267	141	126	
20	58	(1973)	10(9)	7	3(9)	277(9)	148	129(9)	( )숫자는
21	59	(1974)	19(12)	13(3)	6(9)	296(21)	161(3)	135(18)	청강생임
22	60	(1975)	7(24)	4(4)	3(20)	303(45)	165(7)	138(38)	
23	61	(1976)	8(18)	7(1)	1(17)	311(63)	172(8)	139(55)	
24	62	(1977)	9(24)	3(5)	6(19)	320(87)	175(13)	145(74)	
25	63	(1978)	13(15)	7(6)	6(9)	333(102)	182(19)	151(83)	
26	64	(1979)	10(15)	3(3)	7(12)	343(117)	185(22)	158(95)	
27	65	(1980)	13(12)	8(3)	5(9)	356(129)	193(25)	163(104)	
28	66	(1981)	14(13)	8(1)	6(12)	370(142)	201(26)	169(116)	
29	67	(1982)	15(14)	12(2)	3(12)	385(156)	213(28)	172(128)	
30	68	(1983)	21(10)	11(2)	10(8)	406(166)	224(30)	182(136)	
31	69	(1984)	29(11)	21(3)	8(8)	235(177)	45(33)	190(144)	
32	70	(1985)	34(12)	18(2)	16(10)	469(189)	263(35)	206(154)	
33	71	(1986)	38	17	21	507	280	227	
34	72	(1987)	43	26	17	550	306	244	
계			593(189)	306(35)	244(154)	7,860(1,403)	4,268(249)	3,592(1,154)	

6) 현 황

현재 시설규모는 크게 나눠 교학대학 교학관과 기숙사로 나눠볼 수 있다. 기타 시설은 대학 시설을 공용하고 있다.

건물	평	용 도	구 조
교학관	996.7평	강의실, 연구실, 수련실, 자료실, 기도실	콘크리트 5층 원기67년(1982) 11. 완공
학림사		기숙사 사생실 10개	와가 원기45년(1960) 완공
〃	157평(1층)	〃 〃 자료실	콘크리트 1층 원기66년(81). 5. 완공. 건축비 52,998,000원
〃	171.9평(2층)	〃 〃	콘크리트 2층 증축 원기67(82) 9. 완공. 건축비 66,199,006원
〃 신관	384평(3층)	법당, 열람, 자료, 연구, 시청각, 기도, 사생, 사감지도교수실 등	콘크리트 지하 1, 지상 2층 원기73년(88) 11. 완공 2억 8천소요
정화원		사생실, 기도실 등	원기53년(68) 완공. 콘크리트 슬라브 2층
〃	225평	강당, 사생실, 사감실 등	2층 콘크리트 원기71년(86) 10. 완공. 공사비147,000,000원
식 당	150평	식당	콘크리트 1층 원기59년(1974) 8. 완공. 건축비 7,400,000원

현재 교직원수는 교수 16명(남15, 여1) 조교 3명(남2, 여1), 그리고 사무직원 2명(여)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직원수 21명 : 남17, 여40. 그리고 학생수는 186명(남106, 여80)이 재학하고 있다. 조직기구는 도표와 같다.

〈조직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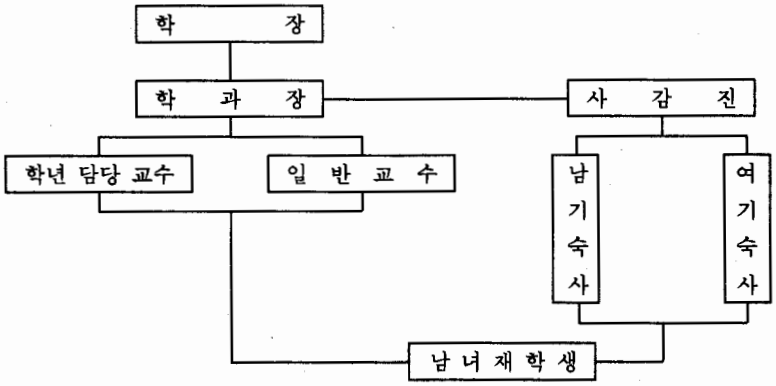

장학재도는 일반 학과와는 달리 원불교교단에서 정하는 일정 선발과정을 거쳐서 입학한 학생에게 베풀어 진다. 이렇게 하여 선발된 장학생을 공비생(1, 2, 3종이 있음)이라 하여 장학시혜를 하고 있다. 제1종은 학비와 식비 전액을 면제 받는데 그 대상은 교직 봉사자이며 제2종은 학비만 면제받는데 현역 전무출신자로서 심사기준에 미달된 자에게 해당된다. 제3종은 전무출신의 직계자녀로 입학한 자에게 학비의 반액을 감면해 준다.

써클 및 각종 연구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각종 연구회〉

결성년월일	단 체 명	현인원	목 적 및 활 동	비 고
41(1956). 9	교학연구회 발족			현 존
50(1965). 3	교리연구반	35		〃
50(1965). 3	교사연구반	20		〃
51(1966).11	교사연구반			
	선진연구반			
	타종교 연구반 분리조직			
71(1986). 3	교화연구반 분리조직			
	사회교화연구반	20		현 존
	청소년 연구반	25		〃
	종교심성 연구반	20		〃
	선연구반	20		〃

여타의 학생활동으로는 크게 나눠서 봉사활동, 종교활동, 해외유학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봉사활동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것은 원기49년(1964) 하계 봉사활동이었다. 53명의 학생들이 20여일동안 농촌 봉사활동을 벌여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 후에도 거의 매년 동계, 하계 봉사활동을 통해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찾아 정신, 육신, 물질로 간접교화를 하여왔다.

두번째로 종교활동은 원기51년(1966) 5월 제1회 대학생종교제를 출발로 원기58년(1973)까지 5회에 걸쳐 세미나를 가짐으로서 종교간의 대화와 교류를 해왔다. 주로 예비교역자 및 대학생 종교인들이 모여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벌임으로써 종교간 이해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자세한 내력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 종교제〉

회수	명 칭	기간(개최지)	참가대학 및 학생	내 용
1	대학생 종교제	51. 5.23~25 (1966, 원대)	동국대, 카톨릭대, 원대, 천도교학생대표, 성균관, 한국신학대	1주제 : 종교에 있어 하나의 세계는 가능한가 2주제 : 자기종교의 당면과제와 그 전망

2	대학생종교제	54. 5.26~27 (1969, 원대)	동국, 서울, 연세대 한국신학, 원대	1주제 : 젊은종교인은 한국사회에서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2주제 : 한국신흥종교의 전망 3주제 : 유사종교규정에 대해 4주제 : 현대 과학문명과 종교의 전망
3	〃	56. 5.19~20 (1971, 원대)	연대, 원대, 성균관대, 동국, 한신	1부 : 헉슬리가 본 종교관 토인비가 본 종교관 라다크리슈난이 본 종교관 2부 : 새시대 홍보상 3부 : 청년의 가치관과 종교
4	〃	57. 5.27~28 (1972, 서울천도교)	〃	1부 : 현대와 종교 2부 : 종교인의 국가와 민족관 3부 : 학문과 종교
5	〃	58. 5. 7~5.9 (1973, 원대)	〃	창조적 대화

세번째는 원불교학과 학생들의 해외유학활동이다. 그 자세한 내력은 다음과 같다.

〈해외유학현황〉

순번	법 명	유학대상국	유학교	과정전공	유 학 기 간	비 고
1	정 유 성	미 국	Michigan대	석·박사, 철학		
2	김 대 현	중 국	文化大	〃 동양철학	1974~80	
3	양 현 수	일 본	경도불교대	〃 불교학	1976. 2~82.12	
4	유 향 수	중 국	文化大	〃 동양철학	1979. 9~	
5	김 복 인	미 국	Temple대	〃 종교학	1979~	
6	이 정 인	중 국	국립대만대	석사, 동양철학	1982. 9~	
7	한 덕 천	독 일	Dusseldorf대	학사, 의학	1982.11~	
8	이 정 옥	미 국	New York대	석사, 보육학	1985. 6~	
9	서 원 주	일 본	경도불교대	석·박사, 사회복지	1984. 4.~87.12	
10	한 회 윤	미 국	New York대	〃 교육		
11	차 광 신	일 본	경도불교대	〃 불교학		
12	유 장 길	중 국	문화대	〃 동양철학		
13	박 도 광	미 국	Iowa대	〃 종교학		

이 밖에 원불교학과에서 발간된 간행물로는 원기50년(1965) 9월 25일에 창간된 『원불교학연구』가 창간되어 현재 16집에 이르고 있으며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學林』 (원기57년 3월 창간)이 있다. 그리고 교수들이 발간한 저서로는 『원불교학 개설』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교수 저서목록〉

저 자	책 명	출 판 사	출판년도	비 고
박 길 진 (광전)	대종경 강의	원대출판국	1980	
	일원상과 인간과의 관계	〃	1985	
	한국 불교사상사	〃	1975	회갑기념논문집
	한국 근대 종교 사상사	〃	1984	고희 〃
김 삼 룡 (정용)	한국 미륵신앙의 연구	동화 출판사	1985	
	한국 문화와 원불교사상	원대출판국	1985	회갑기념논문집
	익산 문화권의 연구	원대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77	
	창조를 위한 여백	동화 출판사	1985	수상집
유 병 덕 (기현)	원불교와 한국사회	시인사	1986	
	한국 신흥종교	원대종교문제연구소	1974	
	탈종교 시대의 종교	원대출판국	1982	
	한국민중 종교 사상론	시인사	1985	
	동학, 천도교 (편)	〃	1987	
한 종 만 (정석)	불교와 유교의 현실관	원대출판국	1981	
	한국근대 민중불교의 이념과 전개	한길사	1980	
한 기 두 (정원)	선과 무시선의 연구	원대출판국	1985	
	한국 불교사상 연구	일지사	1980	
송 천 은	종교와 원불교	원대출판국	1979	
	종교철학 (역)	〃	1978	
김 홍 철 (성철)	한국지성이 본 원불교 (편)	원불교출판사	1987	
	원불교 사상 논고	원대출판국	1980	
서 경 전	교화학	〃	1979	
	일원상진리와 인간회복	〃	1981	
	일원의 광장			
양 은 용 (현수)	중국불교사 개론 (역)	원대출판국	1984	
	신라 원효 연구 (편)	〃	1980	
정 순 일	중국 불교사 (역)	경서원	1985	
박 상 권	해석학의 과제와 전망 (역)	원대출판국	1987	

7) 기숙사

少太山大宗師 대각하신 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사 일일히 그 病脈을 진단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지금 밖으로 문명의 변수가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대로 놓아 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서로 관심을 가진 이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하나니라」하시고 새회상 창건하사 蒼生救援의 뜻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규합하시기 시작하여 靈肉雙全 理事並行하시면서 간고한 創立史를 가꾸시면서 제자들을 길러오셨다. 비록 교육체제가 완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서둘러 훈련체제를 정립하여 동하 6개월의 선과 도는 영산에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니 이것이 교단 인재양성의 효시가 되어 있으나 일제말기와 대종사 열반, 해방, 6·25 등 겹치는 어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체제를 갖추지 못하다가 차차 그 체제를 정비하여 나갔다.

① 학림사

연 혁

31. 5. 1	유일학림개설 공회당(現 상주선원) 서쪽방을 남자기숙사로 사용.
34. 4. 7	유일학림 1기 졸업식, 전문부 19명, 중등부 29명 졸업.
34. 5. 1	2기생이 개학하여 수학하던 중 원기35년(1950년) 4월 4일 동산동 적산마사공장(現 원광고교자리)에 입주교사 및 전무출신 공비생 기숙사로 사용. 6·25의 발발로 학업을 중단하고 원기38년(1953) 3월에 전문부 24명이 졸업식을 갖게 되었다.
46. 5. 1	농번기 이용하여 사생전원 공동작업 실시
46. 7. 1	자치 회칙 초안
47. 3. 15	실내전기 가설 추진. 차후 입사생은 전무출신에 한하여 받도록 上信하기로 함.
47. 5. 18	성가연습 1주일에 2번. 야회 30分전에 출두하여 연습.
48. 4. 15	남기숙사 자치 회칙 개정
49. 4. 1	정기총회, 임원개선 회장 : 오성석. 농번기 모심기 조달.
49. 8. 8	임시집회. 舍員전원 방학중 특별활동 사항보고
49. 9. 5	정기총회. 실장 : 이대권. 상시일기를 밤 9 : 30분 하기로 함.
50. 3. 9	정기총회. 임원개선 실장 : 한길량

50. 4. 17 월정례집회, 신·구사감 인사

50. 5. 20 월정례집회. 念佛 10分씩 하기로 함.

50. 9. 18 정기총회. 임원개선 실장 : 심도정.

50. 10. 18 55주년 기금조달 위해 월 10원씩 납입키로 함.

51. 3. 4 정기집회. 장소 : 서방. 신입생 편입생 인사. 신규입사 희망자로 전체회원이 만장일치로 전무출신 교학과생 외에 일제 받지 않기로 함. 일간신문 1부 구독키로 함.

51. 4. 2 정기총회 임원개선 회장 : 김성진. 위생부를 두기로 함. 사내분위기 문제로 교화단의 단장·중앙의 책임하에 이행케 함. 청소당번·일직·식사당번의 구성 및 업무정리. 식비조달 대책위원회 구성

51. 4. 22 전체적으로 상시일기 시작

51. 4. 26 개교기념 기관대항 체육대회

51. 5. 18 종교제 위한 특별기도

51. 5. 21 제1회 종교제 시설부·진행부·준비부 구성

51. 6. 3 원광고등학교 운영난 해결 보조 모임.

51. 6. 5~30 창립정신 고취운동

51. 6. 5~7 기도 및 공동작업

51. 6. 8~20 지방에 나가 활동

51. 6. 13~15 모내기

51. 7. 1 「무감독 시험」 논의 부결됨.

51. 7. 18 봉사대 결단식

51. 8. 1~4 학생강습회

51. 9. 6 정기총회 임원개선 회장 : 문원경

51. 10. 10 문경원교우 씨름출전 중상(25일 열반)

51. 10. 26 월례집회. 회장보선 : 이도명

51. 11. 15 임시총회. 방학생활 준칙 재검토. 신분검사 실시

51. 12. 19~22 동선

52. 4. 2 중앙교우회 신입생 환영회. 장항제련소 견학

52. 4. 5 一心舍生과 친목운동경기

52. 4. 16 중앙교우회 체육대회

52. 4. 26 대각개교 기념일 기관대항 친선 운동회

52. 5. 12~13 원대 체육대회

52. 6. 15~17 총부 모내기 봉사활동
52. 6. 19 수계농원 조력
52. 6. 24 여학생과 같이 총부 건축 기지 정리작업
52. 9. 2 사생전원 X-Ray검진. 육영부 주관
52. 9. 4 신학기 특별기도
52. 9. 15 보은의 날로 정함. 원로님께 대종사 당대 추모담을 들음- 박장식교무.
52. 10. 14 교역자 선생님들과 위안의 밤. 대각전.
52. 10. 23 전체 소풍. 내소사.
52. 11. 11 기숙사 교화단 대항 탁구 대회
52. 11. 24 각 학년 남녀 혼성 탁구대회. 튀밥을 앞에 놓고 忘年會겸 소창가짐
53. 2. 14 졸업생 송별회
53. 2. 17~24 방학중 실력 증진을 위한 한문습자 연습
53. 2. 27~29 신학기 기도
53. 3. 26 대각개교절 맞아 새성가 발표회를 갖음.
53. 3. 29 특별활동부서(영어, 일어, 중국어, 한문 서도반) 조직
53. 4. 5 식목행사 및 東房 : 西房 체육대회
53. 4. 21 대각개교절 기념 각 기관대항 친선 배구대회
53. 5. 1 학장배 학술 토론대회
53. 5. 3~4 교내 체육대회. 2위 입상
53. 5. 14 스승의 날 기념식
54. 6. 1 6·1합동대재. 대종사 십상 발표회 및 단막극-교사연구반
53. 6. 22~23 총부 모내기 봉사 활동
53. 6. 26 식사 장소변경(여기숙사→남기숙사). 식기를 美食器로 변경
53. 6. 30 성가 취입차 전주 방송국 다녀옴.
54. 2. 26~3. 1 남녀 기숙사생 강습. 장소 : 남기숙사
54. 3. 3~5 학기초 기도
54. 3. 15 신입생 환영 음악감상회. 장소 : 대각전
54. 3. 23 신입생 환영 야회 법회. 중앙교우회
54. 3. 26 대각개교절 행사·소창회
54. 3. 30 총회 관계차 오신 교무님을 위한 음악회. 장소 : 대각전
54. 4. 5 식목행사. 영모전 성탑주위에 리기다소나무 심다. 금강리 조실 식목
54. 4. 23 상조부 규약 개정을 위한 남녀 기숙사 임원회의(東房)

54. 4. 27 대각개교절 기념 체육대회
54. 5. 8 어버이날 행사 맞아 구내 할머니, 양노원 방문
54. 5. 23 5월제 행사
54. 5. 29 춘계 체육대회
54. 6. 14~15 총부모내기 봉사활동
54. 6. 21 동산선원 모내기 봉사활동
54. 9. 1~3 신학기 특별기도 및 교리강습회
54. 10. 5 알봉 참배 및 소창. 선후진의 밤 개최
54. 10. 20 총부벼베기 작업
54. 11. 14 교내 추계 체육대회
54. 11. 29 자선의 밤(중앙교우회)
54. 12. 1 명절대재. 성가경연대회 단막극 연극「지상 최악의 결혼식」(남기숙사)
54. 12. 3 기숙사 대형 서고 구입
54. 12. 21 임시총회
54. 12. 24~27 중앙교우회 합동수련
54. 12. 28 교학연구회 송별회
55. 3. 3 학림사로 이사
55. 3. 11~13 신입생 서원기도
55. 3. 21 제3회 두부 쟁탈전 단대항 농구경기
55. 3. 26 「교학연구」 제4집 발간
55. 4. 19 대각개교절 경축 체육대회 참가
55. 5. 8 어머니날 기념행사
55. 5. 15 스승의 날 기념 사은회 개최
55. 6. 5 교리특강. 강사 : 김근수교무.
55. 6. 13 총부모내기 전사생 공동출역
55. 6. 20 서도, 댓생 실기대회. 음악감상회
55. 9. 29 선후진의 밤. 중앙선원에서 학림사로 기숙사 이사.
55. 10. 16~18 재학생 현충사 등 여행
55. 10. 20 기숙사 체육대회
55. 11. 19 「벵갈만」 참사자 합동 위령제
55. 12. 1 명절대재 기념. 기관대항 잔치놀이. 연극「어둠속의 방황」
55. 12. 17 중앙교우회 동선

56. 3. 21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
56. 3. 26 대각개교절 깔깔 대소회
56. 3. 28 「원심 합창단」 창단
56. 4. 5 식목일 기념식수 성탑주위 알봉
56. 5. 8 어머니날 행사. 정토회원 가정방문
56. 6. 15 스승의 날 행사. 종법사님 모시고 소창
56. 5. 17~22 제4회 원탑제
56. 6. 1 6·1대재. 선진유족 위로잔치
56. 7. 5 학림사 우물공사 완료
56. 9. 12 선후진 대화
56. 10. 5 반백년 대회 부서별 준비
56. 10. 7 정산 종사 성탑 제막식 반백년 대회 전야제
56. 10. 8 반백년 기념식, 사상강연회
56. 10. 12 영산 대각비 제막식
56. 10. 19 총부벼베기 작업
56. 11. 7 중앙교우회 합동법회 및 체육대회
56. 11. 14 「갈잎 음악제」
57. 12. 1 명절대재 각 기관별 성가대회 추모 문학의 밤.
57. 12. 14 학년말 오락회
57. 12. 16 임시 총회
56. 12. 16~21 중앙교우회 동기선
57. 3. 9 학림지 창간호 출간.
57. 3. 26 대각개교절 기념축구 시합. 신입생 환영 단별 체육대회
57. 4. 1 독서발표회
57. 4. 7 식당옮김. 총부식당으로
57. 4. 9 육영 동산 식수
57. 4. 16 학림사 전부 기거
57. 4. 30 대각개교절 기관대항 체육대회
57. 5. 6 영화관람
57. 5. 7 어머니날 오락회
57. 5. 21 원탑제
57. 5. 23 토론회. 원대생 10명과 간담회

57. 5. 27 전국대학생 종교제 참가. 천도교 주최
57. 6. 1 학림사 현판식. 6·1대재
57. 6. 17 총부모내기 봉사활동
57. 7. 6 남기숙사 정기총회
57. 9. 9~10 수계농원 뽕밭작업
57. 9. 19 기숙사 모임에 대종경 봉독하기로 함.
57. 9. 20 교화단 회화 실시
57. 9. 22 종법사님 모시고 알봉 성묘
57. 10. 14 남자교무와 선후진의 대화(東房)
57. 10. 23 남녀기숙사 종합체육대회
57. 10. 27 총부벼베기 작업
57. 11. 9 육영 동산 식수
57. 12. 10 기숙사 특별훈련 실시. 육영부주관
57. 12. 14 신분검사 실시
57. 12. 17 중앙교우회 졸업법회
57. 12. 17~22 제4회 동기선
58. 2. 6~24 육영생 훈련
58. 4. 1 중앙교우회 신입생 환영법회 및 오락회
58. 4. 29 기관별 체육대회
58. 5. 7~9 카톨릭 대학생 수녀(14명). 원불교의 「창조적 만남」 종단소개, 그룹상담. 심포지움
58. 6. 16 모내기 작업
58. 6. 17 광주지구 사상강연 위한 원심 합창단 30명 파견
58. 7. 14~16 어린이 지도자 강습
58. 9. 26 남자 교역자들과 좌담회
58. 10. 2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강의
58. 10. 16 남녀 기숙사 체육대회
58. 10. 19~20 벼베기 작업
58. 12. 2 중앙교우회 졸업법회
59. 10. 23 제2회 동계훈련
59. 3. 10 원불교학회 신입생 환영회
59. 4. 13 보병학교 ROTC 위문

59. 4. 21 중앙교우회 소풍
59. 5. 13 종교 심포지움
59. 5. 26 식당 기초공사 시작
59. 6. 11 식당 슬라브 작업 끝
59. 7. 14~16 어린이 지도자 강습
59. 9. 13 수계농원 뽕따기 작업
59. 10. 6 이리시내 추계미화 작업. 세계평화 기원식 및 합동 회갑식
59. 10. 10 영산성지 순례 및 봉불식 참석
59. 10. 18~19 선후진 좌담회. 이보원, 이혜정교무
59. 10. 29 총부 벼베기. 남자 교역자의 간담회
59. 10. 30 추계소풍
59. 11. 10 남녀 기숙사 체육대회
59. 11. 24 중앙교우회 졸업준비
59. 12. 5 스승의 날 행사. 총부교무들과 좌담회
59. 12. 15 전주양노원, 보육원 위문
60. 2. 14~17 중앙교우회 동선
60. 3. 11 원불교학회 신입생 환영회, 교직원 모시기. 기숙사 식당, 학회주최
60. 3. 16 남녀 기숙사 체육대회
60. 3. 23 이리시내 조기청소. 중앙교우회 주최
60. 3. 30 육영 장학회원 초대만찬
60. 4. 13 대각개교절 기관대항 체육대회. 1위 차지
60. 4. 20 춘계소풍. 중앙교우회 송광사
60. 5. 24 세계평화 특별기원식. 재가 교도와 배산에서
60. 5. 25 음악발표회
60. 6. 4 종법사님 모시고(남녀 東房에서)
60. 6. 5~7 총부모내기
60. 7. 12~15 어린이 지도자 강습
60. 8. 23 신축방 도배 및 장판 깔기
60. 8. 30 학림사 체육대회
60. 9. 14 중앙교우회 정기총회 알봉벌초
60. 9. 25~27 독서 발표회. 교고총간
60. 9. 30 학도호국단 체육대회. 종합우승

60. 10. 10 남자 교무들과 대화

60. 10. 20 기숙사 훈련기간 전반적 문제 토론(양 기숙사 사감, 양선원 사감, 학생)

* 훈련방향 1. 정신지도－예비교역자의 방향을 알아야 함.
2. 철저한 훈련－원리 원칙대로
3. 대의에 입각한 선공후사의 심법－근검절약.
4. 연원되는 심법을 가져야 한다.

* 교양문제

언어－부드럽고 상냥하게, 어른 모실줄 알아야 함. 자기소개 분명히

60. 11. 1 한국 철학자 대회시(기념관) 성가

60. 11. 6～8 남녀 강연

60. 11. 8 원불교 대학생회와 친선 체육대회

60. 11. 16 20차 중앙교우회 졸업법회

60. 12. 1 성가 경연대회 찬조 출연

60. 12. 5 스승의 날 행사. 손수건 전달

60. 12. 13 정전 한문 시험

61. 2. 8～22 제4회 동계 훈련

61. 3. 15～17 보은 감사기간

61. 3. 25 대각개교절 전야제 행사 촛불 행렬
(기념관→대종사성탑→영모전→정산종사성탑→영모전 앞 해산)

61. 4. 8 좌담회. 박성기교무 모시고 미국교화에 관하여

61. 4. 18 서울지구 대법회. 기숙사생 전원 합창단 참석 6～18일 연습

61. 4. 22 좌담회. 이남덕 이화여대 교수

61. 5. 6 1, 2학년 체육대회

61. 5. 8 어버이날. 송대에서 종법사님 모시고

61. 5. 12～15 원탑제

61. 5. 25 학림사 목욕탕 지음.

61. 6. 5 음악감상, 퀴즈대회

61. 6. 7 영화 상영

61. 6. 9～11 각 학년 종법사님 배알

61. 6. 16 수계농원 모내기 봉사활동

61. 6. 19 정기총회. 임원개선 사생장 김성원

61. 6. 24 종강특별법회. 김인철교무

61. 6. 25 6·25대행군 실시
61. 7. 8 정기총회 속개. 자치 회칙 개정
61. 7. 11~14 어린이 지도자 강습
61. 8. 28~30 독후감 발표
61. 10. 1~2 기숙사 가을소풍. 1박 지리산 노고단
61. 10. 20 남자 교무 모시고 좌담회
61. 10. 29 학림사 보일러 설치(東房으로 이사)
61. 11. 10 기숙사 체육대회
61. 11. 15~16 일선교역의 남자 부교무들과의 좌담회
61. 12. 1 명절대재 및 기념 성가경연대회 찬조출연
61. 12. 11 신분검사 실시
61. 12. 12 해타원 고흥권 어머니 법호수여식 파티
62. 2. 2~28 5회 동계훈련
62. 3. 27 대각개교절 행사 이리·김제 강연회 합창단 참석
62. 4. 3 3, 4학년과 교과 실습
62. 5. 5 4학년 종법사님 모시고 변산 답사
62. 5. 8 어버이날 행사 양노잔치
62. 5. 11~14 원탑제
62. 5. 22 대각개교절 기념 기관 대항 체육대회. 학림사 종합우승
62. 6. 1 6·1대재행사 한울림 합창 성극「금강산의 주인이 되자」
62. 6. 6 총부 모내기 봉사활동
62. 6. 16 수계농원 모내기
62. 6. 17 정기총회. 사생장 황도국
62. 9. 29~30 기숙사 전체 회화
62. 10. 1~2 추계소풍
62. 10. 8~9 원탑체전
62. 10. 15 총부벼베기
62. 10. 23 4학년 교과 실습
62. 11. 12 이리역 폭파시 봉사활동
62. 12. 10 제1회 사생의 날
63. 2. 11~22 동계훈련
63. 3. 교리공부 전체 토론(6, 9, 10, 11일)

63. 3. 19 시내 미화 작업. 중앙교우회 주관
63. 3. 25 대종경 전체 토론(20, 21, 24, 25일)
63. 3. 26 대각개교절 산상기도. 기념식 학년대항 축구
63. 4. 3 교리전체토론(사요 27, 28, 31, 5월 1일)
63. 4. 5 만덕산 식목행사
63. 4. 9 기관대항 체육대회. 기숙사 우승
63. 4. 25 대종경 전체 토론(10, 11, 14, 15)
63. 5. 5 유적지 순례, 東山선원 탁구대회(우승)
63. 5. 12 교리전체 토론(8, 9, 11, 12)
63. 5. 28 자선음악회
63. 6. 1 6·1대재. 불맥의 대행진
63. 6. 31 성가 Disk준비 시작
63. 9. 7 성가 디스크 녹음
63. 10. 9 종법사 기숙사 방문 및 법문소개
63. 10. 10 학림사 보일러 공사 시작
63. 10. 31 남자 교역자와의 대화. 훈련원 소법당
63. 11. 7 원탑체전
64. 2. 9~21 동계훈련
64. 2. 25 임시총회
64. 3. 11 중앙교우회 시내정화 청소 및 교환 법회
64. 3. 26 대각개교절 성가경연대회 찬조출연
64. 3. 29 『불맥』지가 기숙사 지로 승격
64. 4. 11 교학대 체육대회
64. 5. 12 종법사 기숙사 방문
64. 5. 15 학림제
64. 5. 20 6·1대재 시내 정화 청소
64. 6. 2 교학대 신설 기념 강연회
64. 6. 16 정기총회. 사생장 김원영
64. 6. 28 『새맘』지 창간호 발간
64. 7. 10~13 어린이 지도자 훈련
64. 8. 15 총부 꽃가꾸기 발단식
64. 10. 16 농아 학교 방문

64. 10. 21　교환법회(중앙교우회) 합동 자매결연법회
64. 10. 27　대통령 서거로 휴교령
64. 11. 28　참회 법회(야회)
65. 2. 2～13　8회 동계훈련
65. 3. 28　기숙사 지 『學林』으로 명칭 바꿈
65. 4. 21～28　시국 안정과 학원사태 안정에 대한 기도
65. 4. 10～16　교학대회장 김원영교우 연행
65. 5. 17　비상계엄 휴교령
65. 5. 18　한종만학장 입사
65. 6. 17　한정석사감 도일 환송식
65. 6. 19　정기총회. 사생장 김경일. 선후진 만남
65. 8. 21～25　하계 훈련
65. 8. 27　정화원, 학림사간 인터폰 설치
65. 9. 16　새 기숙사 부지 정리 사업
65. 9. 30　기숙사 신축 독경식
65. 11. 21　젊은 교역자와 함께
66. 2. 11～22　9회 동계훈련
66. 3. 22　대각개교절 기념 시내 청소
66. 3. 29　학도호국단 등반대회 참가 1위 입상
66. 5. 2　新기숙사 入舍
66. 5. 14　新학림사 낙성식
66. 5. 15　농악경연대회 우승
66. 5. 19　영산 대종사 탄생가 복원 및 영모전 낙성식 참가
66. 6. 4～5　『은맥』 창단 연극 공연
66. 6. 12　수계농원 모내기
66. 6. 14　교리퀴즈대회
66. 6. 15　훈련체제에 관한 간담회
66. 6. 19　정기총회. 사생장 백인혁
66. 6.　알봉 벌초 작업. 중앙교우회 주관
66. 9. 25　학술발표회
66. 10. 29～31　타종교 탐방. 4학년.
66. 11. 5　낙엽제

66. 11. 18 젊은 교역자와 함께
67. 2. 8~19 10회 동계훈련
67. 3. 20~25 농악연습
67. 4. 25 대전교구 사상강연회. 성가발표 기관대항 체육대회
67. 5. 29 수계농원 모심기
67. 6. 7 『한길』 발간
67. 6. 12 구내모내기, 보리베기, 통일문제 세미나
67. 7. 8 학림사 정기총회. 사생장 이성원
67. 7. 15~16 3학년 모악산 신흥종교 탐방
67. 8. 19~22 성지순례 도보 대행진
67. 9. 10 의식개혁 발표회
67. 10. 16 서울회관 봉불식 참석
67. 10. 29 他종교 탐방
67. 11. 20 학림제
68. 2. 15 11회 동계훈련
68. 3. 26 원평 싸이클대회. 중법사 배알
68. 4. 2 신명교 부사감 발인식
68. 4. 28 대각개교절 생일잔치. 성가대회
68. 5. 18 신명교 부사감 종재
68. 6. 5 총부모내기 봉사활동
68. 6. 18 종교대화 이론 세미나
68. 6. 19 평화통일 기원법회
68. 7. 13 정기총회. 사생장 장석준
68. 7. 14~16 학생, 유년지도자 강습
68. 8. 19~22 도보순례 대행진
68. 9. 16~17 총부 벼베기
68. 11. 2 젊은 교역자와 함께
68. 12. 10 정기총회. 사생장 김인균
69. 2. 10~21 12회 동계훈련
69. 4. 5 식목행사, 탁구대회
69. 4. 28 대각개교절 행사. 성극공연, 총부운동회 우승
69. 5. 26 총부 모내기 봉사활동

69. 6. 2~3 단별 산상기도
69. 6. 27 학림사 정기총회
69. 11. 5~6 원탑체전 1위
69. 11. 9 총장 고희 및 기념강연회
69. 12. 14 기숙사 총회. 사생장 박주성
70. 2. 13회 동계훈련
70. 4. 19 단별 소풍
70. 4. 28 대각개교절 행사 연극
70. 5. 5 제1회 솜리 어린이 민속 큰잔치
70. 5. 20~21 강연 실시
70. 6. 2 총부모내기 봉사활동
70. 6. 25~27 13차 어린이 지도자 훈련
70. 8. 26~29 3회 성지순례 도보대행진. 총부→변산→제법성지
70. 9. 7 왕궁묘원 작업
70. 9. 18~20 4학년 타종교 탐방
70. 9. 24 회화
70. 10. 28~30 원탑체전
70. 10. 26 추계소풍. 내장사
70. 11. 1 수계농원 봉공작업. 생강거두기
70. 11. 4 방별 법신불 봉안식
70. 11. 21~22 4학년 문심
70. 11. 30 명절대재 맞이 대청소
70. 12. 6~7 2학년 문심
71. 2. 3~22 14회 동계훈련
71. 3. 12 육영생 서원기도식. 교육부주관
71. 3. 3 왕궁묘원 봉공작업
71. 4. 28 대각개교절 성가기념대회 참석
71. 5. 5 제2회 솜리 어린이 민속대잔치 진행요원 참가
71. 5. 8 어버이날 행사
71. 5. 12~14 원탑축전
71. 6. 6 총부, 자선원 모내기 봉공작업
71. 6. 24~27 어린이 및 학생지도자 훈련

71. 8. 24~27	성지순례 도보대행진. 영산→변산
71. 10. 3~4	가을소풍
71. 10. 13~15	원탑체전
71. 11. 2	수계농원 생강작업
71. 1. 12~14	4학년 종교탐방
71. 11. 20~22	김장
71. 12. 1	학림 낙엽제
72. 2. 4~13	학년별 동선으로 바뀜. 1년 : 총부, 2년 : 수계농원, 3년 : 하섬
72. 2. 13~21	기숙사 전체 동산
72. 3. 22	왕궁 작업
72. 4. 1~3	「참회기도」 교단현실을 생각하며
72. 4. 4~6	3일간 참회기도
72. 5. 5	제3회 솜리 어린이 민속큰잔치
72. 5. 6~9	원탑 대동제
72. 5. 8	성가발표회에 기숙사 합창단 출연
72. 5. 13	스승의 날 보은법회
72. 5. 15	스승님께 화분전달
72. 6. 24~27	어린이 학생지도자 훈련
72. 7. 3	3학년 도시 빈민 실태조사
72. 8. 26~28	성지순례 도보 대행진(성주성지, 가야산)
72. 9. 24	4학년 종교 학도의 만남
72. 9. 26	기숙사 소풍
72. 10. 28~30	원탑체전
72. 11. 1	수계농원. 생강작업
72. 11. 7	총회 기념 대청소
72. 12. 7	정기총회. 사생장 이군도
72. 12. 7~8	2학년 부모님 모시기
72. 12. 21~22	예비 교역자의 날
72. 12. 28	일원제

〈學林 연혁 및 역대편집인〉

57. 3. 3 제호『학림』으로 학림사에서 창간. 4×6배판. 프린트본 38면 격월간 1~3호 편집인 박달식, 4~5호 편집인 이원경교무

57. 12 제5호를 내고 폐간

62. 10. 1 제호『佛脈』으로 佛脈학년에서 창간

64. 5. 제12호 발간 후 발전적 폐간. * 성격 : 불맥학년 학년지 이었음.
『佛脈』 역대 편집장 1代 : 김승은, 2代 : 송인걸, 3代 : 이춘식, 4代 : 양상덕
『佛脈』의 발전적 폐간에 이어 기숙사 전 사생이 공유할 수 있는 학회 공식언론으로『새맘』창간

64. 6. 28 제호『새맘』으로 발행.
1호발간 6.28, 편집장 : 양상덕
2~4호 64.9.21~2.10, 편집장 : 박지명
* 『새맘』이 원불교학회의 대변지로는 제호가 약하다는 평이 많아 의견을 종합하여 원불교학과의 전신인 유일학림의 學林이란 제호를 다시 받아들여서 새맘의 맥을 이어 5호부터 발간하게 됨.

65. 4. 30 『學林』지를 제호로 하여 발간(제5호) 매학기 2회 발간(季刊)

69. 12. 15 제24호 발간까지는 원불교학과 문화단 산하에서 소관하여 발행함.

70. 4. 30 제25호부터 학림편집부로 독립 발간
70년 편집장 : 정은광, 71년 편집장 : 이윤성, 72년 편집장 : 문향허

〈學林舍 聖地巡禮 徒步大行進〉

제1회 주 제 : 몸으로 걷고 혼으로 만나자
기 간 : 원기67년 8월 19일~8월 22일
지 역 : 영산성지~변산제법성지
일 정 : 이리-영산-용덕리-삼덕국교 1박
발막-공음-상하-연화리-선운사 2박
용산동-홍덕-줄포-유천국교- 3박
우동리-바디재-원광선원-학림사

제 2 회 기 간 : 원기68년 8월 19일~8월 22일
지 역 : 만덕산-변산(80km)
일 정 : 만덕산-상관저수지-구이못 1박
대원사-원평교당-화해리 2박
신기교당-고부교당-내변산 3박
변산성지 일대 순례

제 3 회 기 간 : 원기70년 8월 25일~28일
지 역 : 이리-변산제법성지(75km)
일 정 : 총부-보광사-추원국교-홍복사 1박
홍복사-죽산-부안서림공원 2박
부안-우슬재- 봉래정사-봉래구곡 3
봉래정사터 기도-휴식-총부

제 4 회 주 제 : 대종사, 학림, 민족
기 간 : 원기71년 8월 24일~27일
지 역 : 영산 대각성지-변산제법성지
일 정 : 이리-영산-진양국교-삼광국교 1박
연화봉-선운사-반암- 홍덕교당 2박
홍덕-줄포-우동재 A코스-바디재-백천내-사자동 〉봉래정사 3박
B코스-가마소-와룡소-사자동 〉
석두암-변산해수욕장-이리

제 5 회 기 간 : 원기72년 8월 26일~29일
지 역 : 김천-성주읍-가야산-해인사
일 정 : 이리-김천교당-금나이-시실동 1박
시실동-고산동-성주-양정 2박
양정-가야산-해인사 3박
"하나되"→점심후 해인사→이리

〈새 생명 국토순례 대행진〉

새 생명 국토순례대행진의 태동은 원기71년(1986) 8월 진주 문산 유아원에서 여름 캠프중 갑자기 강태훈(당시 6살) 어린이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급히 태훈이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진찰한 결과, 선천성 심장병임을 알게 되므로서 비롯되었다.

당시 태훈이 부모는 영세 소작농민으로서 죽어가는 자식을 눈앞에 놓고 눈물만 흘릴 뿐, 수술비가 없어 수술할 마음조차 내지 못함을 보고 원불교학과 3학년생 중심으로 태훈이를 살려내기 위하여 백방으로 방법을 구하다 새 세대 심장재단에 수술비 보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태훈이의 소생을 위한 100일 동안의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수술비 마련을 위한 엿장사 , 오징어장사 및 가두 판매운동을 전개하였다.

100일 동안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던 날, 새 세대 심장재단으로부터 태훈이의 수술처를 통보받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서로 부둥켜 안고 눈시울을 붉혔으며, 이어 원기72년(1987) 1월 5일 태훈이를 원광대 부속병원에 입원시킨 후 수술이 성공되던 13일까지 밤을 지새우며 한 생명의 소생을 갈구하는 기도소리는 멈추질 않았고, 마침내 수술은 완전히 성공하게 되었다.

태훈이의 소생을 계기로 그와 같은 어린이를 좀더 많이 살려내자는 뜻이 한 곳에 모아져 싸이클을 이용한 제1회 새 생명 국토순례단을 결성하게 되었고, 원기72년(1987) 3월 5일 결성기도와 함께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하였다.

원기72년(1987) 7월 10일부터 한달간 전국을 싸이클에 몸을 싣고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소생시켜 보겠다는 일념으로 국토순례를 마친 결과 9명의 어린이에게 다시 태어나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새 생명 국토순례 대행진 연혁〉

71. 8.	당시 교학대학 2학년에 재학중이던 강해윤외 3명이 진주 문산 유아원에서 어린이 여름훈련 실습중 강태훈 어린이의 아픔에 공감.
71. 9. 4	강태훈 어린이를 위한 100일 기도 시작
71. 11. 13	100일 기도 마침
71. 11. 15	새 세대 심장재단으로부터 강태훈 어린이 수술처 통보 받음
72. 1. 1~4	강태훈 어린이 수술비 마련을 위한 노천장사(엿, 과일, 차 등) 및 성금모금 운동
72. 1. 5~13	강태훈 원광대학교 부속병원 입원, 수술성공
72. 1. 5	새 생명 국토순례단 결성 및 대행진 기도 시작

72. 10.~8. 8　　새 생명 국토순례대행진 시작 및 완료

〈역대사감〉

대	직 위	법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사 감	李 中 正	1926. 6. 14	45. ~48. 7	
2	〃	宋 天 恩	1936. 7. 9	48. 7~49.	
3	〃	朴 濟 衆	1936. 5. 31	49. ~50. 5	
4	〃	李 廣 淨	1936. 9. 1	50. 5~51. 4	
5	〃	韓 正 圓	1933. 8. 30	51. 4~	
	부 사 감	李 成 澤	1943. 3. 13		
6	사 감	李 成 澤	1943. 3. 13	65 ~70	
	부 사 감	金 慶 日	1954. 8. 16	67. ~72. 7	
7	사 감	成 道 鍾	1949. 7. 17	70. 7~72. 7	
8	사 감	李 成 澤	1943. 3. 13	72. 7~	
	부 사 감	姜 樂 眞	1954. 1. 1	72. 7~	

〈學林舍 舍生長〉

연 도	법 명	연 도	법 명	연 도	법 명
46	李 廣 淨	55	李 成 澤	64	金 圓 永
47	黃 直 平	56	朴 達 識	65	金 慶 日
48	丁 道 允	57	李 圓 京	66	白 仁 赫
49	李 大 權	58	李 聖 奎	67	張 成 恩
50		59	金 明 學	68	蔣 釋 準
51	金 聲 振	60	金 泳 澤	69	金 仁 均
52	李 聖 恩	61	金 性 圓	70	朴 主 誠
53	金 大 庸	62	黃 道 局	71	李 聖 求
54	金 長 源	63	崔 世 鍾	72	金 正 輪

② 정화원

연 혁

36. 9　　총부에 공비생 합동 수용을 뜻한 것이 기숙사의 비롯

44.　　숙식 분립, 학림사 전 건물에 입사

45.　　선원과 학생기숙사 분립, 육영부에서 관리

47.　　기숙사 자치운영 체제 갖춤

48. 3. 6~8　　육영장학생 특별기도

48. 3. 27~31 정기외출
49. 4. 4 유년회 익산지부로부터 인계 받음
49. 4. 24 총부생활 시작
49. 4. 27~30 휴강. 총부행사 조력
49. 5. 5~14 여졸업생 제주도 여행
49. 5. 10~12 야경시작
49. 6. 12 시공관 영화관람
49. 6. 15~30 정부의 휴교, 정전, 대종경, 한문, 붓글씨 공부
49. 7. 2 제1회 교우 연합 강습회
49. 10. 9 남녀 배구대회 여자 우승
49. 10. 18~20 백양사 여행
50. 3. 9 방회 기숙사 일과와 규칙
50. 3. 11 신입생 전무출신 서원 특별기도
50. 3. 12~13 임원구성(서기, 전작계, 후생부, 동원계, 공급부, 보도계, 응접계)
50. 4. 1 풍금 개봉. 희망자 시간제로 연습, 사용료 50원
50. 6. 7 교내 토론대회, 김종사, 이정인씨 일. 이등
50. 6. 12 학교교우회 자금 위해 남녀학생 모내기 출역
50. 6. 13~14 중앙교우회 55주년 기념사업금 조달위해 모내기
50. 8. 30 임원정리(방재우, 전작계, 응접계, 회장, 부회장, 서기, 정리계, 공급계, 동원부)
50. 9. 20 복장은 치마, 저고리
50. 9. 30 흰 체육복 착용
50. 11. 4 일과 : 염불 7 : 00~7 : 15, 대종경 봉독 7 : 15~7 : 30, 묵학 7 : 30~9 : 30
50. 11. 18 기숙사 사무감사
50. 12. 4 여기숙사에서 좌선함.
51. 숙소 협소로 전 중앙선원 병용
51. 4. 15 기숙사 합창단 조직(남12, 여20) 매일 1시간씩
51. 4. 21 실장회의 :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염불 쉼
51. 5. 23~25 종교제
51. 6. 6~7 창립정신 고취 기도식
51. 9. 10 월외출 2회로 함
51. 10. 4 신문보기 시작

51. 10. 28 검정 쉐타 착용 허용 됨.
51. 11. 2~4 수업 휴강. 야회 휴회 총부 벼베기
51. 11. 22 묵학 학년별로 모임공부
52. 3. 19 음악감상회. 비창, 황제, 수성화, 지선상의 아리아
52. 3. 13 한달에 두번 외출을 공으로 인정함.
52. 5. 2 정기사회(舍會) 한달에 한번씩
52. 5. 22 유달영 교양강좌
52. 정복개선 : 춘추복이 흰 블라우스, 검정치마로
53. 3. 17 오후 7~9시 자유로 텔레비젼 감상
53. 3. 26 성가발간 기념 발표회. 교학과 합창단
53. 3. 27 서울 합창단과 기숙사 합창단 간담회
53. 4. 7 특별활동 개시
53. 6. 1 추모 연구발표와 단막극 장학회원 축원기도 실시
53. 6. 26 남녀 기숙사 식사 분리 식생활 개선
53. 9. 임원조직 : 총무부, 교화부, 봉사부, 보건부, 상조부, 음료부
53. 9. 10 영어, 일어, 한문 특별활동 시작
53. 9. 21 독후감 발표회
53. 11. 4 4학년 정화원으로 이사. 머리모양 컷트로
55. 3. 31 학림사에서 정화원으로 전부 이사
55. 10. 1 사은의 밤
55. 10. 20 경진대회. 서예, 문예
55. 10. 21 미술경연대회. 수채화, 뎃상, 도안
55. 10. 22 방별 성가 및 단막극 경연대회
55. 12. 22 회칙개정 음악부 생김
56. 3. 28 원심합창단 창단식
56. 4. 12 독후감 발표회
56. 4. 22~23 예절시간
56. 4. 30 종법사 여기숙사 방문
56. 5. 19 종교제
56. 6. 1 선진위로잔치. 여기숙사 무용 3작품
56. 10. 5 원대 음악회 찬조출연
56. 12. 1 성가경연대회, 문학의 밤

56. 12. 23 신분검사 실시
57. 4. 27 총부 식당으로 식당 이사
57. 9. 2 정화원 도서관 개관식 꽃꽂이 강습
57. 9. 4 교리 암송대회
57. 11. 19 정화원생 줄넘기 대회, 정화원생 오락회
57. 11. 27 비품검사
57. 11. 29 붓글씨 시상식
58. 2. 5 기숙사 입사
58. 5. 7 카톨릭과 원불교와의 창조적 대화
58. 6. 16 남녀합창단 광주 사상강연 참석
58. 7. 3 대학청소 기숙사 식당 건립
58. 9. 7 정전 암송시작
58. 10. 4 장학금 전달식
58. 10. 16 남녀기숙사 체육대회
59. 3. 12 암송대회
59. 5. 5 보육원 방문
59. 5. 13 고 백지명선생 1주년 추도식 심포지움과 토론
59. 5. 22 정기총회
59. 10. 20 사은의 밤
59. 11. 17 예절에 대한 강의(외래강사)
59. 11. 29 삼양라면 공장견학
60. 3. 11 대학교수, 교직원 초대 간담회
60. 3. 17 암송회
60. 4. 25 여학생 일일입대(희망자) 통일교 희망의 날 대향연 참석
60. 5. 30 교양강좌. 성보영 : 회의진행에 대하여
60. 6. 2 자치회 정기총회
60. 9. 25 독서 발표회
60. 10. 9 붓글씨 대회
60. 10. 26 깔깔회(여기숙사)
60. 10. 29 천도교 최덕신교령 내방. 참회 반성 수도정신 기도 시작
60. 11. 10 교양강좌. 원대 임정자교수
61. 3. 18 암송시험, 텔레비젼시청 일요일 허용
61. 4. 18 서울교구 대법회 참석(합창)
61. 4. 22 이대 국문학 박사 이남덕교수와 대담

61. 5. 11 한국여성 지도자 세미나 참석
61. 10. 29 기숙사 보일러공사
61. 12. 11 신분검사 실시
61. 12. 14 신·구임 간담회
62. 5. 14 정화원 깔깔회
62. 8 안양 수해지구 봉사활동
62. 11. 13 이리 폭발사고 이재민 급식소 봉사
62. 12. 10 제1회 사생의 날
63. 6. 1 불맥의 대행진
63. 9. 27 성가 디스크 취입(정산종사 추모음반)
64. 3. 11 정화원 탁구 시구식(보은원 탁구장)
64. 4. 10 정화원 입구 등나무 올림
64. 4. 26 대각개교절기념 성가대회 찬조 출연
64. 5. 12 종법사 방문
64. 6. 2 추모 자양 음악회
64. 7. 2 상조부 무주인 판매 시작
64. 8. 24 상시훈련시 소득 발표
64. 8. 29~30 독서력 개발훈련
64. 8. 18 남녀 기숙사 인원 재구성. 기존 남 5단, 여 7부 남녀 5단으로(운영, 수련, 문화, 융화, 봉공)
64. 9. 8 특활의 활성화(정전, 일어, 영어, 중국어, 서예, 한문, 영어회화)
65. 4. 21~28 학원사태 수습에 관한 특별기도
65. 5. 16~19 구국을 위한 특별기도
65. 5. 17 전국 대학교 휴교령 조치로 휴교
65. 5. 31 묵언일
65. 6. 한기두사감 환송. 깔깔회
66. 3. 2 예전 강좌
66. 4. 21 특별훈련 전야제(정화원 옥상)
목적 : 알찬훈련, 보은훈련, 적공훈련 위하여 주름등 설치. 기도식
66. 5. 27 젊은 교역자와 함께. 영산 : 남궁 성, 동산 : 변성묵. 영산, 동산의 이모저모, 예비교역자로서 갖출 조건, 교육이념
66. 5 정화원수리(2층 보일러 공사. 기숙사 내외 페인트 칠)
67. 5. 5 정화원 단별 탁구대회 -정화원 동산-
67. 6. 10 보은원 교무님 모시기(보은원 교무 위안, 보은원 잔디밭)
67. 11. 5 모임방 봉안식
67. 11. 9 간염검진, 정화원 뒷뜰에 적공실 신설

68. 2. 25 졸업생 관례식
68. 6. 10 사생장 선출. 오경허교우 당선
69. 2. 27 신입생 착복식
69. 6. 4 남녀별 좌선 따로 실시
69. 10. 3 최차란여사, 다도에 대하여
69. 12 정화원 적공실 현판식
70. 3. 16 독서발표회
70. 5. 17 정화원 체육대회
70. 9. 9 구강위생에 관한 강좌. 원보전 치위생과 전영심교수
70. 9. 22 구 적공실 고별 깔깔회. 적공실이 신정화원 신축관계로 헐리게 되어 이날을 위해 각방에서 장기자랑을 함
70. 9. 23 구 적공실 애도 독경
70. 10. 8 요가 지도－강명진부사감
70. 11 17 사생장 선거－백상현교우 당선
70. 11. 24 도인법강의－강명진부사감
70. 12. 23 여자 육영생 특별훈련
70. 12. 25 장소 : 대각전. 내용 : 강의위주－정녀의 길에 대하여
71. 4. 5 정화원 체육대회
71. 4. 28 정화원 공동생일 자축 파티
71. 10. 용타원 서대인법사 남녀 기숙사 교령
71. 11. 7 신 정화원 봉불식
71. 11. 8 정화제(1부 기념법회, 2부 기념공연)
71. 2. 19～20 여자 육영생 특별훈련. 장소 : 기숙사. 주제 : 금강같은 지조와 백옥같은 정절을 오직 이 길에!. 목표 : 서원 함양
강의와 단별회화
• 우리는 왜 정화원에 살게 되었는가?
•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예절이 지켜지는가?
71. 8. 24～26 여자 육영생 특별 훈련. 장소 : 완도
72. 9. 29 방별 정전 음강대회. 매주 수요일 수요 합창시작 : 김일곤교수
72. 11. 17 사생장 선거(장연환 당선)
72. 10. 11 구 정화원공사(공사비 : 약 2천만원). 가스 보일러로 교체. 건물 페인트칠 및 정리작업. 11－14호실 도서관으로 개조. 전 도서실은 기도실로 사용
72. 8. 26～28 여자 육영생 특별훈련. 장소 : 총부. 주제 : 예로써 인사덕행의 근본을 삼자. 목적 : 예비 정녀로서의 전무출신 자세 확립(정녀로의 자세와 생활상의 예절)

〈역대사감〉

대	직 위	법 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사 감	宋 順 鳳	1933. 3. 6	45~46	
2	〃	金 理 玄	1930. 8.28	47~48	
3	〃	全 八 根	1927. 3. 2	48~50	
4	〃	朴 濟 現	1932. 2. 4	52~56	
5	〃	金 亨 徹	1938. 1.21	56~62	
	부 사 감	金 玟 蓮	1952. 1.21	60~65	
6	사 감	崔 洗 塵	1939. 2.12	62~68	
7	사 감	金 慧 奉	1945. 3.19	68~71	
	부 사 감	崔 道 常	1945. 7. 7	68~70	
8	부 사 감	姜 明 眞	1951. 4.10	70~72.7	
	사 감	李 正 珠	1941. 1.12	70~72.7	
9	사 감	金 曉 善	1954. 3. 6	72.7~	
	부 사 감	黃 旻 政	1954. 9.13	72.7~	

〈역대사생장〉

연 도	법 명	비 고	연 도	법 명	비 고
48	金 普 現		62	장 순 심	
49	朴 舜 正		63	한 순 숙	
50	朴 明 濟		64	蘇 宗 玄	
51	崔 洗 塵		65	李 性 玉	
52	金 聖 田		66	장 수 현	
53	柳 春 秀		67	李 明 熙	
54	金 慧 奉		68	金 大 運	
55	李 昶 圓		69	吳 耕 虛	
56	李 正 珠		70	黃 修 珍	
57	林 仁 英		71	張 敬 圓	
58	金 元 道			柳 誠 旭	
59	洪 敬 鳳		72	呂 德 慧	
60	安 民 順			張 蓮 煥	
61	朴 仁 教				

□ 교 립 학 교

1. 圓光大學校

1) 설 립

원불교 2대 鼎山宗法師는 민족의 해방이 되자 少太山大宗師의 유지를 받들고 그간 일제의 억압되었던 상황을 벗어나려고 교단운영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교세의 총력을 기울여 人間敎育의 현대화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임을 간파하고 교육사업에 착수했다.

원기30년(1945) 민족의 숙원이던 8·15해방을 맞이하여 교단에서는 정식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교육의 장을 열어나가기 시작하였다.

원기31년(1946) 5월 1일 원불교 중앙총부 구내에 유일학림을 설립하여 중등부와 전문부의 편제로 발족하였다.

이렇게 唯一學林이 창설되고 5년이 지난후 원기36년(1951) 6월 중등부는 원광중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해 9월에는 圓光大學의 설립인가를 얻어 원불교 개교정신과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이념을 조화한 교육사업으로 발전을 꾀하게 되었다(전북 이리시 신용동 344－2에 위치).

2) 교육이념

학문과 인격수련의 전당으로 그 사명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몸부림 속에 성장한 원광대학교의 오늘이 있기까지 40여년의 긴 세월동안 심고 가꾸어 온 지주는 「知德兼修 道義實踐」이라는 校是로 초급대학으로 출발할 당시부터 대규모 종합대학교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에 와서도 변할 수 없는 원광인의 긍지를 구현하는 상징이 되고 있다.

「知德兼修」는 지성과 덕성을 함양하자는 의미이다. 지성의 함양은 道를 찾는 것이 핵심이며, 덕성의 함양은 道에 근거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기르자는 뜻이다.

「道義實踐」은 道에 바탕하여 의로운 행동을 하며 지식과 도덕으로 동서문명을 조화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 校是를 다시 집약하여 보면 知로써 道를 캐고(깊이) 德으로써 義를 행하자(넓이)는 것이니 결국 조화된 인격으로 세계평화를 창조하자는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지량을 함양할 줄 아는 생활을 신조로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다가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는 지혜로운 인격을 기르며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저력의 용기를 지니고 민중의 기층에 스스로 내려서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판단과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敎育理念〉

원광대학교는 원불교 교립학교로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이념에 바탕하여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정신문화 개발에 힘쓰되 과학과 도덕을 병진함으로써 진리를 향한 높은 이상과 더불어 실질을 숭상하는 원만한 인성의 함양에 의한 전인적 교육을 건학의 기본정신으로 삼는다.

3) 연 혁

31(1946). 9. 6	유일학림 개설, 도서관 설치
33(1948). 1.16	재단법인 원불교 설립
36(1951). 9. 5	원광초급대학 설립(설치학과 : 교학과)
10. 6	초대학장 박광전(길진)교무 취임
38(1953). 1.29	원광대학 설립(4년제 승격), 초대학장 박광전(길진)교무 취임
41(1956).10. 1	대학신문사 설립
50(1965). 1.30	학교법인 원광학원 설립
52(1967).12.15	대학원 설립(석사과정)
53(1968). 1. 1	박물관 개설
56(1971). 4. 1	출판국 설치
4.20	실내체육관 준공
9. 1	학원 방송국 설치
12.31	종합대학 원광대학교로 개편 인가 문리과대학, 법경대학, 약학대학, 사범대학 설치. 총장 박광전(길진)교무 취임
57(1972).11.22	자매결연 체결(자유중국 문화대학)
12.26	대학원 박사과정 인가
58(1973). 5.11	자매결연 체결(일본 불교대학)
12.28	농과대학, 한의과대학 설치 인가
59(1974). 8.20	미륵사지 사적 시굴식(마한백제문화연구소 주최, 국보급 풍탁 발굴)
60(1975). 4.15	학생 군사 교육단(R.O.T.C) 창단
61(1976). 3. 1	농과대학 실험대학으로 전환

62(1977). 1. 5 한의과대학 부속 광주한방병원 창설 개원
2.28 대학본관 준공
9. 1 전 대학 실험대학 인가(한의대, 약대 제외)
63(1978). 9. 1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개원
10. 7 교학대학, 공과대학 및 야간강좌반 설치 인가
64(1979). 3.15 중앙도서관 개관
8.13 이리우체국 원광대학교 분국 개설
65(1980). 7.21 이공관 준공
8.20 종합운동장 준공
11. 3 교육대학원 설치 인가(석사과정)
12.15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시그레이브 종합병원 인수)
12.22 법경대학 분리(법정대학, 경상대학으로) 치과대학, 가정대학 설치
66(1981). 4.23 예능교실(미술, 음악, 무용) 설치 인가
8.21 예·체능관 준공
67(1982).10. 5 의과대학 설치, 법정대학 및 경상대학 분리(법과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으로)
10.13 교학관·농학관 준공
68(1983). 1. 1 자매결연 체결(미국 플로리다 국제대학교)
3. 5 전자계산소 설치
9. 8 미술대학 설치 인가(6개학과)
11.15 치과대학 교사 및 부속 치과병원 준공
69(1984). 6.20 의과대학 교사 준공
7. 2 한의과대학 교사 준공
7.11 의과대학 부속 제2병원 개원
7.23 원광의료원 개원(의대 부속병원, 제2병원,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광주 한방병원, 치대 부속 치과병원)
11. 8 학생회관 준공
12.21 자매결연 체결(덴마크 오덴스대학교)

70(1985).10.10	인문관 준공
71(1986). 3. 5	학군단 준공
3.31	'86 춘계 대학야구 연맹전 우승
6.12	만능시험기(U.T.M) 가동식
6.16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허가(과학기술처장관, 방사 16240－7255)
10.21	취업보도부 신설
12. 3	초대 총장 숭산박광전(길진)교무 열반
12.23	제2대 총장 김정용(삼룡)교무 취임
72(1987). 2.26	숭산기념 사업회 발족
4.25	제42회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대회 우승
5. 8	자매결연 체결(대우그룹)
6. 1	실내체육관 신축 착공(10,000명 수용, 지하 1층 지상 3층, 9,273㎡)
6. 5	박물관 준공
9.26	자매결연 체결(일성신약주식회사)
10.13	문리과대학을 인문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으로 분리, 원불교철학과, 통계학과, 정보처리학과, 기계공학과 신설 인가
10.17	임해수련원 준공(450명 수용, 지하 1층 지상 3층, 2,741㎡)
11. 9	산업대학원 설치 인가(석사과정, 4개학과, 정원 80명)
12. 2	원광대학교 40년사 발간

4) 機構 및 職制

1971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기하여(1972. 2.26) 초대 총장에 崇山 朴光田(吉眞)교무가 취임함으로 해서 원광대학은 명실공히 綜合大學校로 출범하게 되었다.

學校法人 圓光學園理事會에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학인사를 2處 1局 1部長 및 4學長의 발령을 단행하였다.

종합대학 체제로 개편된 기구는 다음과 같다.

1972년도 대학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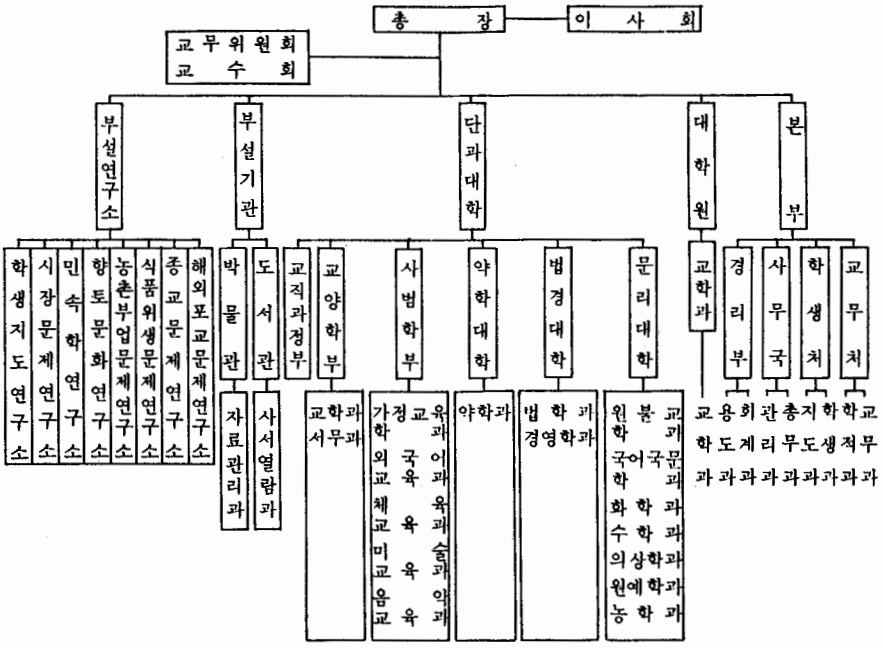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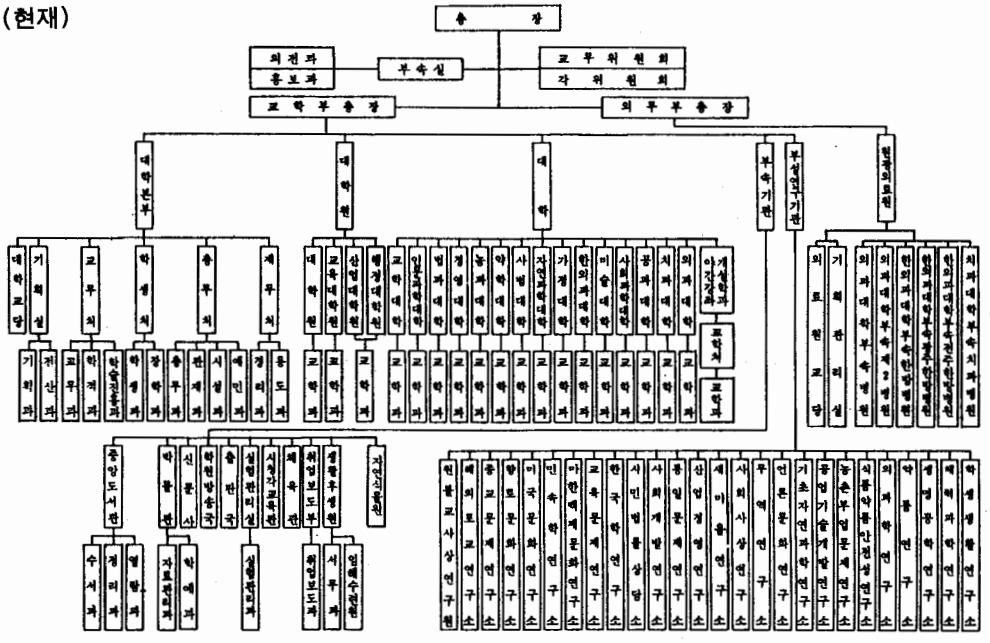

5) 역대총장

초대총장 崇山 朴光田(吉眞)교무

朴光田(吉眞)교무는 1915년 8월 15일(음력 7월 5일)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구호동에서 소태산대종사의 맏아들로 출생하여 서울 배재고보와 일본 동양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31년(1946) 9월 6일에 유일학림을 개설했고,

36년(1951) 9월 5일에 원광초급대학을 설립했으며

36년(1951) 10월 6일에 초대학장에 취임했다.

38년(1953) 1월 29일에는 원광대학 설립(4년제승격) 초대학장에 취임 했다.

50년(1965) 1월 30일 학교법인 원광학원을 설립

52년(1967) 12월 15일 대학원을 설립(석사과정)

56년(1971) 12월 31일 종합대학 원광대학교로 개편 인가. 총장에 취임

71년(1986) 12월 3일 초대총장 朴光田(吉眞)교무 열반

71년(1986) 12월 23일 제2대 총장에 金正勇(三龍)교무 취임

金正勇(三龍)교무는 원기10년(1925) 11월 1일 전북 정읍군 북면 화해리에서 부친 김기부翁과 모친 千古城華여사의 3남 2녀중 3남으로 태어나 원기41년(1956)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중화민국 문화대학으로부터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원기69년(1984) 3월에는 『한국 미륵신앙 연구』라는 논문으로 일본 스쿠바대학으로부터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본교 재직 경력으로는 원기41년(1956) 4월 강사로 부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32년간 봉직해오면서 학생과장, 교부처장, 부총장, 의무부총장겸 원광의료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원기71년(1986) 12월 19일 오후 5시 원불교 중앙총부 회의실에서 열린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회에서 8인의 이사에 의해 만장일치로 신임 총장으로 선임되었고 23일 문교부의 승인을 받았다.

6) 현 황

(1) 규모 : 부지 총 45만여평

15개 단과대학(총 66개 학과)

학생수 : 2만3천여명(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생 포함)

졸업생수 : 학사 23,249명, 석사 1,502명, 박사 194명, 총 24,945명

(2) 시설 : 본관을 중심으로 각 단과대학 건물, 학생회관, 박물관, 체육관2, 실험실, 강당2, 시청각실, 병원(의대부속병원2, 한의대부속병원2, 치대부속병원), 운동장2, 기숙사 등

〈보직자명단〉

■ 교무위원

총장	교수	金三龍	치과대학장	교수	金南奎
교학부총장	교수	全八根	의과대학장	교수	朴正圭
의무부총장	교수	宋天恩	공과대학장	부교수	普達福
대학교당교감	교수	韓鍾萬	가정대학장	교수	徐貞憙
대학원장	교수	柳炳德	미술대학장	교수	高和欽
교육대학원장	교수	朴仁鉉	기획실장	교수	庾基洙
산업대학원장	교수	安榮根	교무처장	교수	金杌坤
교학대학장	교수	徐慶田	학생처장	교수	李鉉準
인문과학대학장	교수	洪大杓	총무처장	참여	金永春
자연과학대학장	교수	崔昌鎭	재무처장	부참여	吳海金
법과대학장	부교수	羅用植	중앙도서관장	교수	河在昌
사회과학대학장	교수	金容郁	박물관장	교수	金在先
경영대학장	교수	殷載基	출판국장	교수	嚴定沃
약학대학장	교수	安年衡	신문사주간	교수	金大鉉
사범대학장	교수	李相五	체육관장	교수	成鍾林
농과대학장	교수	劉成吾	실험관리실장	부교수	高建一
한의과대학장	교수	辛民敎	학군단장	대령	朴相培

(3) 각 단과대학별 전임교원수

① 교학대학	: 20명	⑨ 농과대학	: 15명
② 인문과대학	: 41명	⑩ 한의과대학	: 26명
③ 자연과대학	: 28명	⑪ 치과대학	: 12명
④ 법과대학	: 5명	⑫ 의과대학	: 68명
⑤ 사회과대학	: 16명	⑬ 공과대학	: 35명
⑥ 경영대학	: 18명	⑭ 가정대학	: 11명
⑦ 약학대학	: 7명	⑮ 미술대학	: 23명
⑧ 사범대학	: 64명	총	: 389명

(4) 졸업생 통계표

■ 원광대학교 (단위 : 명)

남녀별 / 학년도별	학위수여인원			남녀별 / 학년도별	학위수여인원		
	남	여	계		남	여	계
39(1954)	28	·	28	57(1972)	160	26	186
40(1955)	56	2	58	58(1973)	153	44	197
41(1956)	109	16	125	59(1974)	197	86	283
42(1957)	204	1	205	60(1975)	186	126	312
43(1958)	231	6	237	61(1976)	213	135	348
44(1959)	305	16	321	62(1977)	227	134	361
45(1960)	295	17	312	63(1978)	287	190	477
46(1961)	35	2	37	64(1979)	350	247	597
47(1962)	195	23	218	65(1980)	467	287	754
48(1963)	132	8	140	66(1981)	770	393	1,163
49(1964)	227	10	237	67(1982)	1,174	526	1,700
50(1965)	17	3	20	68(1983)	1,502	636	2,138
51(1966)	23	8	31	69(1984)	1,468	821	2,289
52(1967)	118	21	139	70(1985)	1,951	868	2,819
53(1968)	149	28	177	71(1986)	2,172	1,047	3,219
54(1969)	179	31	210	72(1987)	2,307	1,013	3,320
55(1970)	218	54	272				
56(1971)	197	45	242	합 계	16,302	6,870	23,172

■ 대학원 (단위 : 명)

학위별 / 남녀별 / 학년도별	석 사			박 사			명 예 박 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54(1969)	1	·	1	·	·	·	·	·	·	1	·	1
55(1970)	2	·	2	·	·	·	·	·	·	2	·	2
56(1971)	1	·	1	·	·	·	·	·	·	1	·	1
57(1972)	2	·	2	·	·	·	·	·	·	2	·	2
58(1973)	9	·	9	6	·	6	1	·	1	16	·	16
59(1974)	11	2	13	13	·	13	2	1	3	26	3	29
60(1975)	7	·	7	·	·	·	1	·	1	8	·	8
61(1976)	25	4	29	2	·	2	·	·	·	27	4	31
62(1977)	11	8	19	4	·	4	5	·	5	20	8	28
63(1978)	32	4	36	4	·	4	2	·	2	38	4	42
64(1979)	38	6	44	6	·	6	·	·	·	44	6	50
65(1980)	56	10	66	4	·	4	2	·	2	62	10	72
66(1981)	77	17	94	7	·	7	4		4	88	17	105

67(1982)	110	15	125	17	·	17	1	·	1	128	15	143
68(1983)	95	17	112	13	·	13	1	·	1	109	17	126
69(1984)	98	12	110	23	1	24	2	·	2	123	13	136
70(1985)	56	13	69	13	2	15	1	·	1	70	15	85
71(1986)	112	31	143	20	·	20	·	·	·	132	31	163
72(1987)	146	28	174	32	1	33	2	1	3	180	30	210
합 계	889	167	1,056	164	4	168	24	2	26	1,077	173	1,250

■ 교육대학원

(단위 : 명)

남녀별 / 학년도별	남	여	계	남녀별 / 학년도별	남	여	계
68(1983)	136	9	145	71(1986)	89	2	91
69(1984)	55	9	64	72(1987)	69	6	75
70(1985)	68	3	71	합 계	417	29	446

(5) 원광대 직원수 총 1,411명(일반직원 338, 법인직원 5, 의료원 1,068)

(6) 원대 상조회(전무출신) 명단(총 94명)

한정원 한정석 모상준 김강인 유기현 이종명 송천은 오해인 송관은 김형철 송혜성 윤정우 김동현 한길량 권준원 고윤성 김성관 노성자 박순기 이경중 유성태 김진광 박용덕 이성길 김현오 양원규 하일성 김성현 임윤철 박원현 정용희 조인원 장정일 정원일 전팔근 장정수 구안복 이명종 김영종 김연성 권도원 서광원 장병도 양현수 최지원 박도선 박광수 강덕환 모현철 이혜철 조대성 김성훈 김인종 함성배 장행선 심도정 김성택 김복원 김성철 성인종 최영진 노대훈 임도현 정안신 이명희 김혜광 조원오 서경전 박정후 정진명 성대진 이도명 김귀근 김혜심 이건인 김도종 김석원 이증원 조성중 박선일 정현인 김경원 설윤환 신혜권 김일성 이용환 김대현 신명국 김정관 박승룡 이준일 김숙원 서원주 최의형

2. 圓光保健 專門大學

1) 설 립

학교법인 원광학원 산하의 본 대학은 원기61년(1976) 1월 24일 설립인가를 얻어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중견 보건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보건전문대학으로써 이리시 신용동 344-2에 위치하고 있다.

2) 교육이념

원광보건 전문대학은 대한민국교육의 근본이념과 원불교 일원대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보건과 의료 및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중견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學 訓

人格陶冶, 技術鍊磨, 誠實奉仕

3) 연 혁

33(1948). 1.16	본 법인의 모체인 재단법인 원불교 설립
50(1965). 1.30	학교법인 원광학원 설립
61(1976). 1.24	원광보건 전문학교 설립, 임상병리과 80명, 물리요법과 80명, 방사선과 80명, 치과기공과 80명 (계) 320명
3. 2	초대교장 김영만박사 취임
3.11	개교식 및 7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4.28	학도호국단 창단식
61(1976).12.30	학칙 변경 인가(증과), 위생과(주·야) 각 40명, 치위생과(주·야) 각 40명-(모집정원 480명)
62(1977). 3. 6	교사 본관으로 이전
12.28	학칙 변경 인가(증원), 임상병리과(주·야) 각 40명, 위생과 40명-(모집정원 600명)
63(1978). 2.15	제1회 졸업식(임상병리과, 물리요법과, 방사선과, 치과기공과)
3. 2	제2대 전경진교장 취임
11. 8	학칙 변경 인가(증원), 약초가공과 80명, 임상병리과 40명 (모집정원 720명)
64(1979). 1. 1	원광보건 전문대학 개편 인가
3. 1	전경진학장 취임
65(1980). 9.13	학칙 변경 인가(증과), 한방요법과(과명 변경 구, 약초가공과), 환경관리과 80명, 의무행정과 40명(졸업정원 840명)
66(1981).10.16	학칙 변경 인가(증과), 유아교육과 80명, 간호과 80명
12.29	학칙 변경 인가, 한방요법과 폐과, 의무행정과 120명(졸업정원 1,000명)
71(1986).11.13	학칙 변경 인가, 의무행정과 40명 감축, 치위생과 40명 증원(졸업정원 1,000명)
72(1987).10.23	학칙 변경 인가, 의상과 80명, 전자계산과 80명(입학정원 1,160명)

4) 기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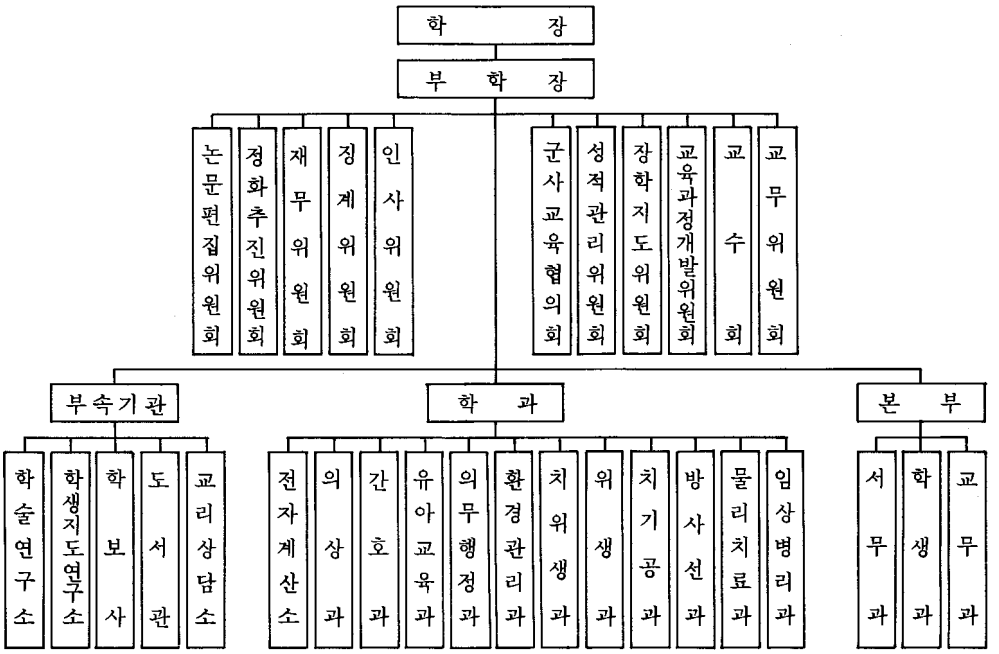

5) 역대학장

원광대학교 총장 朴光田(吉眞)교무의 전문학교 설립 결심에 따라 원기60년(1975) 새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무국장 金仁龍교무를 중심으로한 원광대학교 당국에서는 전문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이듬해인 원기61년(1976) 1월 24일에 문교부 당국으로부터 학교법인 원광학원 산하의 원광보건 전문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초대교장에 김영만박사가 취임하였고,

63년(1978) 3월 2일에 원광보건전문대학으로 개편

63년(1978) 3월 2일 전경진학장이 취임했다.

6) 현 황

7개과(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기공과, 위생과, 치위생과, 약초가공과)

학 생 수 : 720명

졸업생수 : 6,449명(10회까지)

일반직원 : 42명

〈교직원 명단〉

교 원

학 과	직 위	성 명	주요담당과목	비 고
	학 장	전 경 진		
교 양 과	교 수	모 수 동	교 학 개 설	교 무
	부 교 수	이 종 근	영 어	
	〃	송 용 은	국 어	
	조 교 수	김 호 병	교 학 개 설	교 무
	〃	정 원 훈	체 육	
	〃	이 현 수	국 사	
	〃	이 정	국 민 윤 리	
	〃	최 석 준	체 육	
	조 교	김 성 만		
임상병리과	부 교 수	이 규 식	미 생 물 학	
	〃	김 신 무	임 상 세 균 학	
	〃	김 종 호	임 상 생 화 학	
	〃	오 재 세	혈청학, 혈액은행	
	조 교 수	제 갈 승 주	조 직 병 리 학	
	〃	오 현 숙	혈 액 학	
임상병리과	조 교 수	신 복 희	뇨 화 학	
	〃	김 유 현	기 생 충 학	
	조 교	최 영 자		
	〃	김 현 숙		
	〃	박 선 희		

〈구 성〉

1. 본부 행정기관

학 장	全 敬 進
부 학 장	牟 壽 童
교 무 과 장	金 鎬 柄
학 생 과 장	吳 仁 敎
서 무 과 장	鄭 映 浚

2. 부속기관

교리상담소장	金 奉 漢
도 서 실 장	李 圭 式
학 보 사 주 간	李 晩 求
학생지도연구소장	李 鍾 根
학 술 연 구 소 장	金 永 植

3. 학 과 장

임 상 병 리 과 장	諸 葛 承 柱
2부임상병리관장	金 鍾 鎬
물 리 치 료 과 장	張 益 善

방사선과장	李宗碩	의무행정과장	林允壽
치기공과장	鄭坰豊	유아교육과장	趙順玉
위생과장	陸燦男	간호과장	楊京姬
2부위생과장	田炳英	의상과장	林常任
치위생과장	南容玉	전자계산기	金企喆
환경관리과장	崔圭喆		

〈졸업생현황〉

학과 \ 연도별	'78 1회	'79 2회	'80 3회	'81 4회	'82 5회	'83 6회	'84 7회	'85 8회	'86 9회	'87 10회	누계
임상병리과	65	68	135	162	153	190	192	210	201	211	1,587
물리치료과	47	66	56	54	59	61	68	80	80	81	652
방사선과	54	67	59	55	54	77	58	70	79	78	651
치기공과	52	58	57	49	61	62	71	62	67	80	619
위생과		64	96	81	84	114	104	99	120	126	888
치위생과		40	34	58	69	82	73	80	85	82	603
한방요법과				41	31	57					129
환경관리과						65	53	54	79	80	331
의무행정과						31	76	98	101	119	425
유아교육과							80	84	81	77	322
간호과								83	84	85	252
계	218	363	437	500	511	739	775	920	977	1,019	6,459

3. 圓光中學校

1) 설립일

원기31년(1946) 6월 1일에 설립.

이리시 동산동 677번지

2) 교 훈

眞實 勇敢 俸仕

교육이념

- 圓佛教 教育理念에 依한 타자녀 教育
- 國家 社會에 이바지할 人材養成

ㅇ 報恩 감사할 줄 아는 道義敎育實踐

3) 연 혁

① 설립과정 : 원기31년(1946) 5월 1일 원불교 중앙총부 구내에 유일학림을 설립하여 중등부와 전문부의 편제로 되어 있던 것을 5년후인 원기36년(1951) 6월에 중등부가 원광중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② 설립목적 : 대한민국의 교육법과 원불교 일원대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교단에서는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 중등보통학교를 설립했다.

③ 설립당시의 규모 :

가. 주소 : 이리시 동산동 667번지.

대지 : 9,750평.

나. 설립당시의 교직원수 : 5명(남)

〃 학 생 수 : 30명(남)

다. 초대교장 : 박장식(천식)교무

라. 설립당시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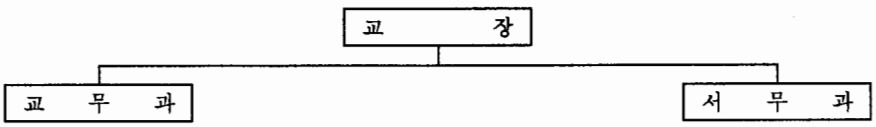

38. 8	전라북도 학술경시대회 2년, 3년생 각 1명이 최고점 획득.
39.	입학상황 4대1 경쟁율
46. 12. 29	1학급증설 신청 인가얻음
47. 12. 18	각 1학급씩 증설 인가 얻음
54. 7. 24	이리지구 교과별 연구발표회(영어)
55. 5. 1	개교 24주년 기념식 거행(장기근속자 표창)
55. 8. 19	중학생용 변소 건평 15평 공사비 600,000원
56. 1. 7	중·고분리로 인한 중학교 교무실 설비 공사비 450,000원
56. 2. 16	중·고 분리 작업 완료
57. 8. 20	중학교 교사 내부수리 공사비 4,000,000만원
57. 11. 13	10월유신에 대한 강연 이리경찰서 정보과장. 중·고교생 2,400명 참석
58. 6	중학교 4층 앞 화단을 27만원을 들여 괴석, 관상수를 심어 보기 좋은 화단 조성

59. 5. 18 법신불 봉안－매월 격주로 토요일 오후 3시법회 운영. 매 월요일 마다 중고 2학급씩 교리강좌 실시

59. 7. 1 중·고 분리에 따라 중학교 제3대 교장에 박광진(길연)선생 취임.

60. 중·고 각각 경영 우수학교 수상. 중학교 교실·복도 수리 및 소화시설 완료

61. 3. 20 함열－이리간 역전경기 연 4년 우승

70. 3. 2 2학년(532명), 주당 1시간(화요일 5교시) 교무 모시고 원불교 기본교리 및 이해 강연. 연차적인 교전보급 1학년(502명) 대상.

72. 교리강좌－소태산대종사의 위대한 교법을 전학생들에게 격주로 1시간씩 중앙총부 교무들의 협조하에 교학시간을 설정하여 원불교 이해와 교서연마를 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72. 8. 14～21 특별교실의 도색작업 및 전원시설 새로 단장

72. 9. 23～30 후생복지 증진이므로 매점확장 온수통 설치, 낡은 화장실 보수

④ 확장 신축 및 이전

구 분	연월일 (원기)	주 소	시설의 내용		시설 경비		
			용 도	평	총액	기금	부채
新 築	59.12.30	이리시 동산동 667	교 사	662			
	50. 1.10	〃	〃	525			
	61. 7.20	〃	〃	150			
	58.12.31	〃	창 고	41.6			
	〃	〃	변 소	18			
	〃	〃	〃	21			
			합 숙 소	42			

4) 조직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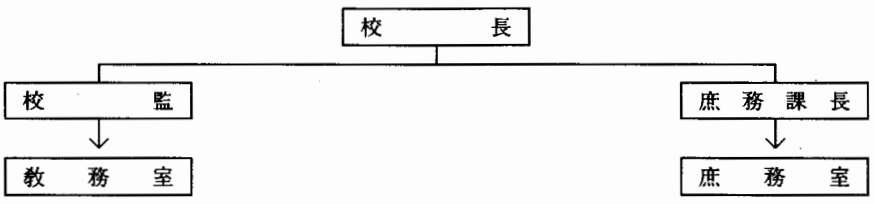

5) 역대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 대	朴 將 植(天植)	男	1911. 1. 9	39. 2.23~51. 3.31	
2	丁 光 薰(炳球)	〃	1917. 8.30	51. 4. 1~62. 2.28	
3	朴 光 振(吉然)	〃	1926.11.13	59. 4.17~64. 3. 1	
4	徐 大 峻(榮燮)	〃	1935. 5. 9	64. 3. 2~	

6) 현 황

① 시설규모

가) 교지 총 평수 : 5,000평

나) 시 설

* 운동장 : 2,800평

* 건 물 : 1,259평

건 물 명	용 도	평	구 조
1동 (구 관)	교 사	462	벽돌조
2동 (신 관)	교 사	525	철근 콘크리트(슬라브)
3동 (교 사)	〃	150	〃
4동 (창 고)	창 고	41.6	벽돌(함석조)
5동 (변 소)	변 소	18	콘크리트조(슬라브)
6동 (〃)	〃	21.1	〃
7동 (합숙소)		42	벽돌(함석조)
계		1259.7	

② 교직원 및 학생수

가) 교직원수 : 계 45명(남35, 여10)

나) 학생수 : 1,440명

종 별	학 급	계	남	비 고
1학년	8	485	485	
2학년	8	480	480	
3학년	8	475	475	
야 간				
특수학급				
총 계	24	1,440		

③ 졸업생수

회수	졸업년도	졸업생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37 (1952)	30	30		30	30		
2	38 (1953)	73	73		103	103		
3	39 (1954)	109	109		212	212		
4	40 (1955)	166	128	38	378	340	38	
5	41 (1956)	172	117	55	550	457	93	
6	42 (1957)	258	189	69	808	646	162	
7	43 (1958)	276	178	98	1084	824	260	
8	44 (1959)	142	111	31	1226	935	291	
9	45 (1960)	123	88	35	1349*	1,023	326	
10	46 (1961)	83	83		1432	1,106		
11	47 (1962)	135	135		1567	1,241		
12	48 (1963)	136	136		1703	1,377		
13	49 (1964)	165	165		1868	1,542		
14	50 (1965)	191	191		2059	1,733		
15	51 (1966)	223	223		2282	1,956		
16	52 (1967)	180	180		2462	2,136		
17	53 (1968)	279	279		2741	2,415		
18	54 (1969)	348	348		3089	2,763		
19	55 (1970)	494	494		3,583	3,257		
20	56 (1971)	477	477		4,060	3,734		
21	57 (1972)	470	470		4,530	4,204		
22	58 (1973)	493	493		5,023	4,697		
23	59 (1974)	461	461		5,484	5,158		
24	60 (1975)	381	381		5,865	5,539		
25	61 (1976)	384	384		6,249	5,923		
26	62 (1977)	374	374		6,623	6,297		
27	63 (1978)	426	426		7,049	6,723		
28	64 (1979)	467	467		7,516	7,190		
29	65 (1980)	399	399		7,915	7,589		
30	66 (1981)	406	406		8,321	7,995		
31	67 (1982)	470	470		8,791	8,465		
32	68 (1983)	446	446		9,237	8,911		
33	69 (1984)	536	536		9,773	9,447		
34	70 (1985)	529	529		10,302	9,976		
35	71 (1986)	503	503		10,805	10,479		
36	72 (1987)	530	530		11,335	11,009		

7) 역대 재직 교역자

법 명(호적명)	직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朴 將 植(天植)	校 長	男	1911. 1. 9	31. 5. 1~22. 4. 6	
全 八 根(八根)	教 師	女	1927. 3. 2	39. 5.14~45. 4. 1	
丁 盛 熟(石鎭)	〃	〃	1922. 9. 5	42. 4. 1~45. 3. 1	
朴 濟 現(英姬)	〃	〃	1932. 2. 4	42. 4. 3~45. 4. 1	
吳 曉 圓(男苗)	〃	〃	1931.12.20	42. 4.13~45. 4. 1	
徐 大 峻(榮燮)	校 長	男	1935. 5. 9	48. 3. 2~	
朱 定 鏡(春達)	教 師	〃	1940.12.22	52. 3. 1~	
金 永 鍾(鍾洙)	〃	〃	1941. 4. 9	53. 3. 2~55. 3. 1	
韓 海 仙(乙洙)	〃	〃	1932. 8.17	59. 9. 1	
權 峻 圓(在完)	庶務課長	〃	1940. 4.25	63. 3. 1~71. 8. 5	
李 京 鎬(性照)	教 師	〃	1946. 6.21	66. 3. 1~	

4. 圓光高等學校

1) 설립년월일

원기39년(1954) 2월 23일

2) 교 훈

眞 實　　勇 敢　　奉 仕

교육이념

애국 애족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알찬 실력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창의적인 사람.

3) 연 혁

① 설립 당시의 규모:

가. 설립당시의 주소 : 이리시 동산동 400번지
대지 : 9,750평, 건물 : 2동 756평

나. 설립당시의 교직원수 : 7명(남)
학 생 수 : 70명(남)

다. 초대교장 : 박장식(천식)교무

라. 설립당시 조직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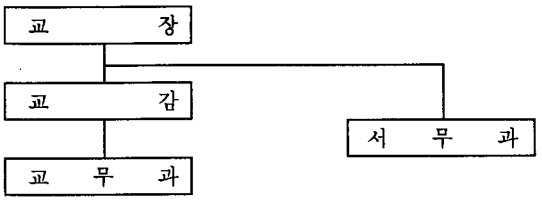

39. 2	2층 16교실 교사 신축공사를 착수
39.	입학상황은 고등학교 2대1의 경쟁율
41.	본관 양단에 각 2교실을 증설로 2층 16교실 교사 완성
46. 2. 28	강당 신축 기성회 조직하여 공사 시작하여 기공식
47. 2.	총 공사비 160만원에 준공
47. 11	원광여상에서 임시 사용한 별관교사를 비워줘 교사난 해결
47. 12. 18	각 1학급씩 증설인가 얻음.
48.	행사-10여 성상을 교단생활로 순직한 故 金夾鍾先生 학교장 거행. 미술 전림회를 시 상공회의소 2층에서 개최
	신축-교실신축이 시급하여 건평 180평, 공사비 180만원에 달함.
48. 9	3층 교사 신축 기공식 거행
48. 10	단층공사 마무리
49. 4	유도장 신설 현재 3백여명 맹훈련
49. 6월말	총 공사비 6백만원으로 14교실 완공
50. 1. 17	신설교문 개통식 거행. 총 공사비 20여만원
50. 4	온실공사 준공 공사비 25만원
50. 5. 4	安浩相박사 초빙 특강 개최
50. 5. 24	생활과학실에서 이리익산지구 연구회 개최
50. 6.	동편교사 건평 125평을 구조변경하여 사용
50. 10. 1	한국보육원장 황온순여사 초빙 교양강좌 실시하고, 관현악기(BAND) 80인조 기증.
50. 10.	이리시공관에서 미술서예 전람회 개최
51. 3	공사완료
52. 5. 22	유달영교수 모시고 교양강좌
52. 10. 11	김형석교수 모시고 교양강좌
52. 11. 30	교내 축장공사 완공(200만원), 수위실 준공(15만원)

53. 7. 1~8. 25 4층 신관 내부수리 공사비 4,000,000원
53. 9. 17 이리시 상공회의소에서 미술전람회 개최
53. 9. 24 이리 익산지구 예능경영대회 개최
53. 9. 29 주요한선생 모시고 교양강좌
53. 10. 8 이리지구 교과별 연구협의회(물리) 개최
53. 10. 26 중앙과학 전시회 출품하여 문교부 장관상 수상
54. 3. 4 학부형 간담회 개최
54. 5부터 2개월간 27평의 변소 신축 공사비 700,000원. 강당 미장공사 공사비 95,000원. 신관 4층 난간공사
54. 5. 15 스승의 날 행사
54. 5. 21 교내 체육대회
54. 7. 24 이리지구 교과별 연구발표회(화학)
54. 7. 30 안병욱교수 교양강좌
55. 4. 10 서고신축 건평 12평 공사비 480,000원
55. 4. 19 모범학생 표창식 거행(문교부장관)
55. 5. 1 개교 24주년 기념식 거행(장기근속자 표창)
55. 5. 15 제7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 거행
55. 5. 21 춘계 체육대회
55. 7. 4 교련용 무기창고 건평 5평 공사비 200,000원
55. 9. 24 교련 합동검열 실시
55. 10. 15~16 교내 체육대회(2일간)
55. 11. 20 학생 위원회장단 선거
55. 11. 26 반공 학생의 날 기념식 거행
55. 12. 8 종합감사 실시(도 장학사 내교)
56. 2. 4 창고를 고교 교실로 개조건평 41평 공사비 900,000원
56. 2. 16 중·고 분리작업 완료
56. 2. 20 밴드부 및 대창고 신축 건평 50평 공사비 1,750,000원
56. 3. 5 영광 해룡중학교 개교식에 본교 밴드부가 참석
56. 5. 24 故 박용규교사 학교장으로 거행
56. 6. 15 교양강좌 실시(심정섭박사 태교)
56. 7. 15 지구별 연구협의회 개최
56. 10. 8 원불교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 전교생이 마스게임 실시

56. 11. 15 추계 교내 체육대회 개최
57. 3. 6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교실 4) 착공
57. 4. 6 고교변소 증설 공사비 600,000만원이 들었다.
57. 5. 9 중·고교 교실 외곽 공사(4층건물) 착공
57. 6. 10 자동경보기 시설공사(소와시설) 착공
57. 6. 20 고등학교 교실 증축공사(교실 4) 준공 공사비 3,990,968원
고려대학 조동필교수 특별 강좌 고교 3학년 전원 참가
57. 8. 30 중·고교 교실 외곽 공사(4층건물) 준공 공사비 1,644,955원
57. 9. 20 교련 교육지도 검열 및 평가 인원 900명(고교 1, 2, 3학년) 도 교위임석 관사열
57. 10. 5 자동경보기 시설공사(소화시설) 준공, 공사비 496,885원
57. 11. 13 10월 유신에 대한 강연. 이리경찰서 정보과장 2,400명 참석
57. 11. 17 이리시 교육자대회 이리국민학교에서 발족 2,000명 참석
57. 11. 26 강당옥상내부 수리 공사비 100만원
58. 3. 10 학교주위에 소나무(니기다송) 400주 히마라야시다(8년생) 40주 은행나무 500주를 278,000원을 들여 환경미화
58. 3 후원담 600평을 250만원에 매입
58. 4. 20 교내식당 30평, 창고 25평, 급수용 보일러실 및 물탱크 167만원을 투자하여 식당투자 및 의자를 갖추어 손색없는 식당 마련
58. 5 동편 하수구에 110만원의 자금으로 복개공사 80m 완성
58. 5. 9 문교부 유현기 장학관 내교 학교제반을 시찰한 바 교육이념이 투철한 우수학교로 극찬을 받음
58. 5. 11 전북 교육위원회 설인수교육감이 초도 순시차 본교에 들려 제반학사 시찰을 한 바 앞서가는 학교라고 칭찬하여 전북 중·고등학교 교감 협의회를 개최토록 지시
58. 5. 25 전북 중·고등학교 교감협의회 개최 참석 500여명 대성황
58. 6 변소 및 후관수선을 45만원을 들여 완성
매입답 27만원을 들여 화단조성 . 묘포장설치 2,100주 묘목심다.
강당을 38만천원을 들여 손색없는 도서관 마련
59. 5. 18 법신불 봉안식 거행－초대교무 이종명. 매월 격주로 토요일 오후 3시법회 운영, 매 월요일 중·고 2학급씩 대상으로 교리강좌 실시
59. 12. 30 고등학교 본관 3층 15교실 준공

60.	신관앞 정원조성 및 총부 원광 동산조성. 원불교 개교 60주년 행사에 따른 MBC-TV녹화. 중·고 각각 경영 우수학교 수상. R. C. Y모범 우수학교 표창. 교내 학도호국단 발단. 교내 교직원 민방위대 결단. 제2 과학관 신설. 고등학교 주간 1학급, 야간 1학급 각각 증설인가. 고등학교 2부 교실 및 교무실 준공. 고등학교 창고 및 변소증축. 교육공로 표창(교장 정광훈). 교육공로 표창(서무과장 서대준)
61. 1. 27	중·고 경영 우수학교 표창
61. 4. 1	진학지도실 설치
61. 7. 30	2부교실 2층 4교실 증축
61. 10. 5	변소 정화조 설치
62. 4. 10~5. 30	기숙사 및 독서실 신축. 총 건평 54평
63.	장학생 장학금 전달 -매월 1인당 2만원씩 20명 지급
63. 3. 20	복사기 및 옵셋 인쇄기 구입
63. 8. 10	특별교실 증축-합숙소 3층에 미술실(25평) 증축
63. 9. 10	수도대 시설
69. 3. 2~5. 31	1학년에게 원불교에 대한 일반적 내용 주지시킴-원불교 안내
69. 3월~9월	월례법회-강사 초빙하여 전 교직원에게 월 1회 법회실시
69. 5.	교양강좌-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실시

4) 기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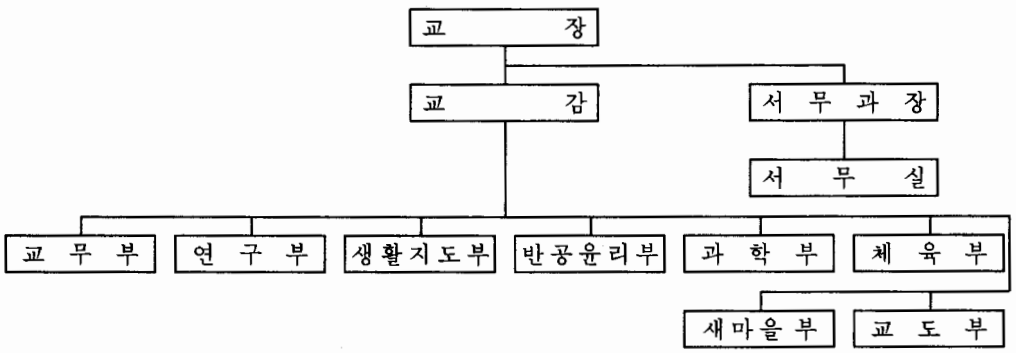

5) 역대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朴 將 植(天植)	男	1911. 1. 9	24. 2. 23~36. 3. 31	
2	丁 光 薰(炳球)	〃	1917. 8.30	36. 4. 1~47. 2. 28	
3	朴 光 振(吉然)	〃	1926.11.13	47. 3. 1~	

6) 현 황

① 시설규모

가) 교지 총평수 : 6,915평

나) 시설

* 운동장 : 4,824평
* 건 물

건 물 명	용 도	평	구 조
본관 4층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	1,260	콘크리트 철근 스라브조
도서실 3층	도서실 및 미술실	68	벽돌 스라브조
강 당	강 당	144	벽돌 스레트조
합 숙 소	합 숙 소	55.6	벽돌 스라브조
기타시설	변소, 창고	189.2	벽돌 스라브조
계		1,716.8평	

② 확장신축 및 이전

구 분	연월일	주 소	시설의 내용		시설 경비		
			용 도	평	총액	기금	부채
新 築	50. 3. 5	裡里市 仁和洞 四七	講 堂	1,000			
〃	47. 10. 10	裡里市 銅山洞 六六七	教 堂	144			
〃	68. 6. 30	裡里市 銅山洞 六六七	教 室	68			
增 築		裡里市 銅山洞 六六七	教 室	260			
新 築		裡里市 仁和洞 四七	合 宿 所	55.6			
〃		裡里市 銅山洞 六六七	其他施設 (便所,倉庫)	189.2			
計				1716.8			

③ 교직원 학생수

가) 교직원수 : 계 62명(남57, 여5)

나) 학생수

종 별	학 급	계	남	여
1학년	10	576	576	
2학년	10	580	580	
3학년	10	562	562	
야 간				
총 계	30	1,718	1,718	

④ 졸업생수

회수	졸 업 년 도	졸 업 생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42 (1957)	70	70		70	70		
2	43 (1958)	100	100		170	170		
3	44 (1959)	145	145		315	315		
4	45 (1960)	98	98		413	413		
5	46 (1961)	92	92		505	505		
6	47 (1962)	73	73		578	578		
7	48 (1963)	68	68		646	646		
8	49 (1964)	119	119		765	765		
9	50 (1965)	157	157		922	922		
10	51 (1966)	224	224		1146	1146		
11	52 (1967)	219	219		1365	1365		
12	53 (1968)	290	290		1655	1655		
13	54 (1969)	253	253		1908	1908		
14	55 (1970)	250	250		2158	2158		
15	56 (1971)	219	219		2377	2377		
16	57 (1972)	214	214		2591	2591		
17	58 (1973)	256	256		2847	2847		

18	59 (1974)	269	269		3116	3116		
19	60 (1975)	279	279		3395	3495		
20	61 (1976)	348	326	22	3743	3721	22	
21	62 (1977)	456	438	18	4199	4159	40	
22	63 (1978)	449	424	25	4648	4583	65	
23	64 (1979)	547	507	40	5195	5090	105	
24	65 (1980)	519	476	43	5714	5566	148	
25	66 (1981)	565	504	61	6279	6070	209	
26	67 (1982)	591	525	66	6870	6595	275	
27	68 (1983)	590	574	16	7460	7169	291	
28	69 (1984)	543	543		8003	7712		
29	70 (1985)	515	515		8518	8227		
30	71 (1986)	591	585	6	9109	8812	297	
31	72 (1987)	615	615		9724	9427	297	

7) 역대 재직교역자

법명(호적명)	직 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梁 慧 經(榮植)	庶 務	女	1930. 4.30	39. 6. 5~41. 4.15	
李 建 春(建淑)	〃	男	1920.12.12	40. 4.15~47. 3.15	
趙 正 勤(年九)	教 師	〃	1935.12. 6	45. 4. 1~54. 3. 1	
姜 雲 祥(東日)	庶 務	〃	1934. 8.24	46. 4. 1~47. 4. 1	
李 中 正(鍾行)	〃	〃	1926. 6.14	47. 3.15~56. 6.25	
朴 圓 錫(慧子)	〃	女	1941. 9.28	48. 3. 1~52. 2.28	
徐 大 峻(榮燮)	教 師	男	1935. 5. 9	48. 3. 4~62. 3. 2	
李 宗 明(鍾丙)	教 師	〃	1934. 3. 5	49. 3. 1~66. 2.28	
丁 光 薰(光薰)	校 長	〃	1917. 8.30	51. 4. 1~62. 2.28	
韓 海 仙(乙洙)	教 師	〃	1932. 8.17	58. 3. 2~59. 8.31	
尹 正 觀(在湊)	教 務	〃	1935.12. 6	59. 8. 2~72.11.30	
鄭 性 德(弼煥)	〃	〃	1930. 8.20	62. 3. 2~72. 5.18	
李 敬 中(敬中)	〃	〃	1957.10. 9	64. 5.18~65. 5.23	
宋 正 鎬(正鎬)	教 師	〃	1931. 6.25	67. 1.10~72.11.30	

8) 배출된 전무출신

번 호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추천인	비 고
1	權 世 英(在弘)	男	1936.11. 5	金 大 擧	
2	金 大 鉉(大鉉)	〃	1938. 8.30	金 勤 修	
3	金 聖 徹(洪喆)	男	1938. 9.15	趙 甲 鍾	
4	徐 慶 田(昶烈)	〃	1939.10.15	尹 致 聖	
5	金 東 玄(時鉉)	〃	1938. 1.15	黃 周 南	
6	李 道 明(桂衡)	〃	1936. 3.24	李 正 恩	
7	金 淵 聖(七星)	〃	1935. 1.10	李 亨 局	
8	朴 桂 眞(在倫)	〃	1942. 1.25		
9	金 恩 峻(峻謙)	〃	1943. 1.19	李 炳 恩	
10	權 峻 圓(在完)	〃	1940. 4.26	鄭 潤 才	
11	朱 定 鏡(春燁)	〃	1940.12.22	趙 甲 鍾	
12	徐 聖 範(金成)	〃	1940. 9.25	丁 盛 熟	
13	成 仁 鍾(仁鍾)	〃	1944. 8. 6	金 中 默	
14	金 道 宗(道宗)	〃	1953.12. 8	太 德 權	
15	金 仁 宗(仁宗)	〃	1958. 9. 6	朴 濟 權	
16	李 春 植(春鎬)	〃	1958. 8. 9	丁 光 薰	
17	鄭 丙 哲(鉉烽)	〃	1963. 1. 3	全 八 根	
18	申 政 浩(連鎬)	〃	1962. 8.24	金 復 煥	
19	全 世 中(世鍾)	〃	1961. 1. 9	趙 智 聖	
20	李 敬 中(敬中)	〃	1957.10. 9	趙 峻 谷	
21	張 淵 光(夏烈)	〃	1950. 1.28	丁 光 薰	
22	金 正 有(載璟)	〃	1951. 2.21	〃	
23	孫 興 道(仁喆)	〃	1949. 7.22	〃	
24	尹 正 宇(錫俊)	〃	1947. 2. 8	朴 眞 悟	
25	朴 井 厚(在鎬)	〃	1948. 8.15	〃	
26	李 藝 求(永宰)	〃	1960. 6.16	吳 暻 圓	
27	이 건 웅	〃			
28	金 慶 元(吉永)	〃	1951. 8. 1	太 德 權	
29	丁 容 熙(明聲)	〃	1956. 4. 1	朴 濟 權	
30	孫 賢 悟(藝宣)	〃	1962. 6.12	李 聖 澤	
31	金 圓 龍(城鋒)	〃	1959. 1.21	丁 盛 熟	
32	辛 明 德(明德)	〃	1966. 5.	金 復 煥	
33	金 道 公(道公)	〃	1967. 7. 1	〃	

34	李敬護(成南)	男	1960. 5.10	李修悟	
35	朴永眞(榮辰)	〃	1958.12.21	尹致聖	
36	하경만	〃			
37	張德薰(榮洙)	男	1958. 5.26	丁光薰	
38	張敬道(敬道)	〃	1958. 7.10	金復煥	
39	金明呂(暻洙)	〃	1956. 4. 2	金普現	
40	申誠鎬(誠鎬)	〃	1960. 4.14	趙峻谷	
41	金舜益(扶謙)	〃	1958. 9.11	金法宗	
42	李建直(建泰)	〃	1959. 4.20	金復煥	

5. 圓光女子中學校

1) 설립년월일

원기41년(1956) 4월 8일 : 원대부속 실업중등학원

원기45년(1960) 2월 19일 : 원광여자중학교

2) 교 훈

진 실 근 면 보 은

교육이념

스스로 사고하며 일할 수 있는

참된 여성을 기른다.

3) 연 혁

① 설립과정

가. 설립동기 : 鼎山 宋奎, 公山 宋慧煥, 大山 金大擧교무 등이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교단 및 사회 인재육성을 해야겠다는 유지를 받들어 설립했다.

나. 설립유공자 : 이건춘, 정성숙, 박장식, 정대섭, 정대안.

다. 설립기금 :

총계 : 7,130만원

현금 : 130만원(교당,기타 회사금), 부채 : 7,000만원(상은 5,000만원, 사채 2,000만원)

라. 설립당시의 주　　소 :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익산보육원)

마.　　〃　　교직원수 : 계 3명(여)

　　〃　　학 생 수 : 계 16명(여)

바. 초대교장 : 박장식(천식)교무

사. 설립당시의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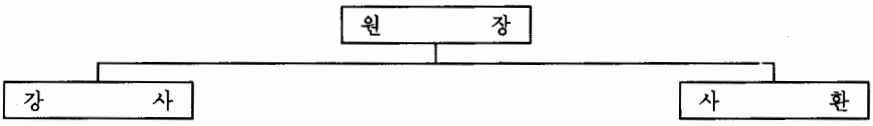

1. 원기41년(1956) 원광대학에 부설 고등학원으로 학생 1학년 16명과 학원장 정성숙교무 및 수명의 강사로 출발하였으며 1년간 익산보육원 병용 고등공민학교 교실 2간을 빌려 사용하다. 원기42년(1957) 원광중·고의 별관 교실을 빌려 이사한 후 원광중·고 여학생을 편입시키므로 인하여 원광고의 교사 5간을 빌려 사용하다. 교실부족으로 동산선원 강당 1간과 구 동아병원 3간을 빌려 운영하던 중 원기45년(1906) 원광여중과 원광여상고의 정규설립인가를 얻어 원광고의 5개 교실, 동산선원 1실, 구 동아병원 3실의 9개 교실을 빌려 초대교장에 박장식교무를 모시고 부교장으로 정성숙교무가 실무자가 되어서 여교사 박재현·오희원교무 및 일반교사 등으로 조직 운영하다. 원기46년(1961) 초대 박장식교장 후임으로 정성숙교무께서 임명되었으며 원기47년(1962) 구 중앙대학 이리분교를 인수하여 3개처에 있던 학생들을 한 곳으로 집합하여 새로운 학교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 중고 공히 학교는 매년 학급을 증설인가를 받아서 일취월장으로 운영해 오던 중 원기52년(1967)에 여상에 인문과를 설립하여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로 변신하다. 설립당시의 재정으로는 각 교당, 각 기관 동지들의 특별회사금품으로 127만원을 모아서 기본자금이 되었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이리상업은행에서 중앙대학 이리분교 대입자금을 기채했고 동아병원에서 일부차입금과 기타 사채로서 운영확장했으며 초기에 큰 힘이 되어 주신 분은 정성숙교무외 오빠 정홍진씨로서 이리시 남중동 소재 교지를 학교에 차용하여 부지정리중 현 인북선 도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구타원 이공주교무의 초기의 금품과 풍금 기타 교구를 기증과 육군 2군사령부 민사부의 학교증축에 필요한 목재 양회 등의 3차례의 군 원자재지원(민사부 정원하대령)은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학교는 계속 신장 발전되므로 학교시설에 따르는 부채는 증가되고 차입금 상환이자 지불 등은 고통스런 일이었으며 창인교사 협조로 원기63년(1978) 12월에 이전하면서 중·고 분리되어 현 이리시 모현동으로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데는 참으로 힘에 겨운 일이었다. (차입금 상환 학교시설 등은 주택, 토지사업의 이윤으로 메꿔 왔음.)

44. 2. 17	문교부 장관의 인가(원광여자중학교) 170명 신입생 모집
44. 4. 8	개교식과 입학식 거행
46. 11. 30	1학급 증설 인가 얻음
47. 12. 26	2학급 증설 인가얻음(12학급 완성)
48. 1. 23	27명 졸업생 배출

55. 5	서울에서 개최한 전국 중·고대항 주산경기대회 중학교단체 종합1위 차지
56. 6월~10월	서울, 대전,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중·고교대항 정구대회 당당 1위로 원광여중의 실력 전국에 과시
60. 8. 16~20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친선 연식정구대회에 한국대표로 출전우승
61.	각종대회 출전 정구부-6회출전 4회 우승 무용부-1회출전 우수상 미술부-특상, 우수상
63. 12. 9	학교이전-이리시 모현동 1가 520번지 건평 3,683평중 2,067.7평. 1,938,850,000원 투입
64. 1. 13	교장취임식-제3대교장에 이건춘(건숙)교무 취임과 연공사 포상식.
64. 7. 23	학교이전-이리시 모현동 1가 523번지로 교사를 신축 이전
65. 3~	월 1회 교양강의 실시
65. 5. 8	어버이날 행사. 학부모 1,200여명 참관
65. 6. 10~13	제9회 소년체전 전북대표로 연식정구부 출전 준우승 차지
67. 3. 26	대각개교기념 기관 성가대회 우수상 수상
67. 3. 18	제2회 회장기 쟁탈 정구대회 준우승
67. 5. 8	어버이날 기념 1,400명 어버이와 기념행사
67. 6. 4	이리시 교육청주최 건전노래부르기대회 최우수상
68. 5. 8	어버이날 기념 민속무용 경연대회 및 백일장 대회
69. 5. 9	어버이날 기념행사. 어버이 1,400명을 모시고 교내 민속무용 경연대회 및 백일장대회 거행
70. 5. 9	어버이날은 간단한 기념식과 장한 어머니 시상식 있었음.
71. 5. 8	어버이날에 학부모님 모시고 장한 어머니 시상식과 다채로운 행사. 어버이의 은혜에 깊이 감사
71. 7. 16~8. 21	교내 미화의 일환으로 운동장변에 야외강의실 및 휴식장을 겸한 스탠드공사를 시공

4) 기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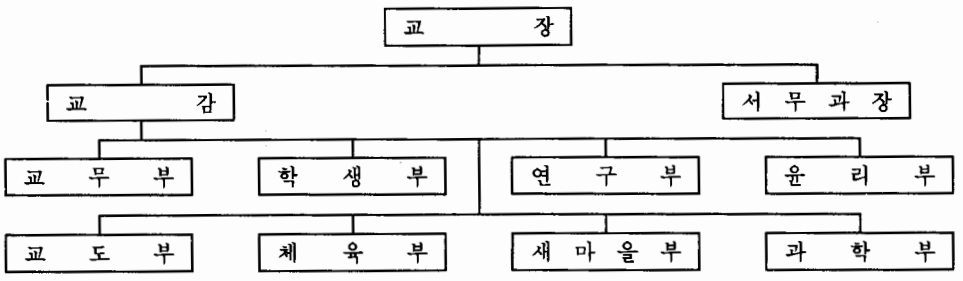

5) 역대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보 기
1	朴 將 植(天植)	男	1911. 1. 9	45. 4. 8~46. 4.11	
2	丁 盛 熟(石鎭)	女	1922. 9. 5	46. 4.12~64. 1.12	
3	李 建 春(建淑)	男	1920.12.12	64. 1.13~	

6) 현 황

① 시설규모

〈확장 신축 및 이전〉

구 분	연월일	주 소	시설의 내용		시설 경비		
			용 도	평	총액	기금	부채
원대부속실업 중등학원설립	41. 4. 8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부 속				
학교이전 (원중에 여학생부)	42. 4. 1	이리시 동산동 667	〃				
학교이전 (중앙대이리분교)	47.11. 7	이리시 창인동1가 152-3	교사증축				
학교신축이전	64. 7.23	이리시 모현동 1가 523	〃				

가) 교지 총 평수 : 4,131평

나) 시설

* 운동장 : 2,869평
* 건 물

건 물 명	용 도	평	구조(목조, 벽돌조)
본 관	관리실 및 보통교실	1,971	철근, 콘크리트 5층
후 관	특별교실 및 대강당	678	철근, 콘크리트 3층
기 타	창고, 화장실	72	
계		2, 721	

② 교직원 및 학생수

가) 교직원수 : 계 58명(남33, 여25)

나) 학생수

종 별	학 급	계	남	여
1학년	11	654		654
2학년	11	642		642
3학년	11	678		678
총 계	33	1,974		1,974

③ 졸업생수

회수	졸 업 년 도	졸 업 생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46(1961). 2.27	41		41	41		41	
2	47(1962). 2. 8	72		72	113		113	
3	48(1963). 1.23	119		119	232		232	
4	49(1964). 1.23	73		73	305		305	
5	50(1965). 1.22	127		127	432		432	
6	51(1966). 1.20	230		230	662		662	
7	52(1967). 1.20	257		257	919		919	
8	53(1968). 1.16	280		280	1,199		1,199	
9	54(1969). 2.28	342		342	1,541		1,541	
10	55(1970). 1.15	429		429	1,970		1,970	
11	56(1971). 1.13	423		423	2,393		2,393	
12	57(1972). 1.14	464		464	2,857		2,857	
13	58(1973). 1.10	460		460	3,317		3,317	
14	59(1974). 1.10	443		443	3,760		3,760	
15	60(1975). 1.10	383		383	4,143		4,143	
16	61(1976). 1. 9	400		400	4,543		4,543	
17	62(1977). 1. 8	455		455	4,998		4,998	
18	63(1978). 1.13	446		446	5,444		5,444	
19	64(1979). 1.12	530		530	5,974		5,974	
20	65(1980). 2.23	532		532	6,506		6,506	
21	66(1981). 2.12	617		617	7,123		7,123	
22	67(1982). 2.11	596		596	7,719		7,719	
23	68(1983). 2.10	583		583	8,302		8,302	
24	69(1984). 2. 9	670		670	8,972		8,972	
25	70(1985). 2.13	729		729	9,701		9,701	
26	71(1986). 2.12	678		678	10,379		10,379	
27	72(1987). 2.12	728		728	11,107		11,107	

7) 역대 재직 교역자

법명(호적명)	직 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丁 盛 熟(石鎭)	교 장	女	1922. 9. 5	41. 4. 8~64. 1.13	
朴 濟 現(英姬)	교 사	〃	1932. 2. 4	42. 2.24~49. 3. 6	
吳 暗 圓(男苗)	〃	〃	1931.12.20	42. 2.24~46. 3.29	
李 佑 正	〃	〃		42. 2.24~46.12.31	
朴 將 植(天植)	교 장	男	1911. 1. 9	45. 2.24~46. 3.31	
全 敬 進(性完)	부교장	〃	1924.12.10	45. 2.24~63. 2.28	
全 八 根(八根)	교 사	女	1927. 5.15	45. 2.24~46. 4. 7	
朴 三 純(潤貞)	〃	〃	1928. 2.26	45. 2.24~61. 8.31	
鄭 維 誠(奉吉)	〃	男	1936. 5.20	45. 2.24~46. 8.31	
金 復 煥(復煥)	서 기	女	1938.12.10	46. 4. 1~50. 3. 3	
李 建 春(建淑)	교 장	男	1920.12.12	64. 1.13~	
李 濟 成(和秀)	교 사	〃	1935. 5. 7	64. 1.13~50. 3. 3	
金 修 仁(玉禮)	서 기	女	1934.12.31	48. 3.28~49. 4. 2	
崔 奉 根	교 사	男		49. 3. 4~52. 3. 6	
徐 聖 範(金成)	서 기	〃	1940. 9.25	50. 3. 5~51. 3.23	
沈 在 喆	교 사	〃		52. 3. 6~60. 5.20	
金 永 鍾(鍾洙)	〃	〃	1941. 4. 9	52. 3.21~53. 3.15	
金 濟 圓	〃	〃	1939. 5.15	53. 3.15~56.10.24	
金 大 乘(永吉)	서무과장	〃	1944. 9.23	71. 9.30~	
金 永 俊	교 사	〃		55. 3.25~58. 3.20	
南宮善鳳(喜仙)	서 기	女	1939. 8.17	56. 4.25~61.12.31	
金 聲 振(春會)	과 장	男	1939.10.13	70.12. 1~71. 9.30	
정 영 준	〃	〃		64. 2. 1~70. 3. 8	
朴 世 正(銀珠)	교 사	女	1946.11. 1	64. 4.20~	

6. 圓光女子 綜合高等學校

1) 설립년월일

원기41년(1956) 4월 8일 : 원대 부속 실업고등학교
원기45년(1960) 2월 24일 : 원광여자 상업고등학교

2) 교　　훈

참되게 살자.

부지런히 배우자.

은혜에 보답하자.

교육이념

스스로 사고하며 일할 수 있는 참된 여성을 기른다.

3) 연　　혁

① 설립과정

가. 설립동기 : 鼎山 宋奎, 公山 宋慧煥, 大山 金大擧교무 등의 여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교단 및 사회 인재육성을 해야하겠다는 유지를 받들어 설립하게 되었다.

나. 설립유공인 : 정성숙, 이건춘, 박장식, 정대섭, 정대안.

다. 설립기금 내역 : 총 7,130만원, 현금 : 130만원, 부채 : 7,000만원

라. 설립당시 주소 :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익산 보육원)

마. 설립당시 교직원수 : 총 3명(여) 학생수 : 16명(여)

바. 초대 교장 : 박장식교무

사. 설립당시 조직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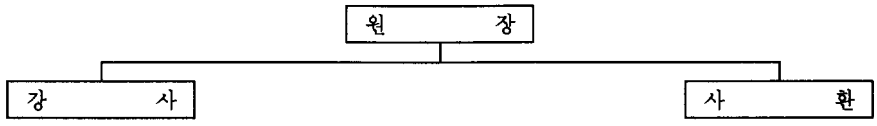

1. 원기41년(1956) 원광대학교에 부설 고등학원학생 1학년 16명과 학원장 정성숙교무 및 수명의 강사로 출발하였으며 1년간 익산보육원 병용 고등공민학교 교실 2간을 빌려 사용하다. 원기42년(1957) 원광중·고의 별관 교실을 빌려 이사한 후 원광중·고 여학생을 편입시키므로 인하여 원광고의 교실 5간을 빌려 사용하다. 교실 부족으로 동산선원 강당 1간과 구 동아병원 3간을 빌려 운영하던 중 원기45년(1960) 원광여중과 원광여상고의 정규 설립인가를 얻어 원광고의 5개교실 동산선원 1실 구 동아병원 3실의 9개교실을 빌려 초대교장에 박장식교무를 모시고 부교장으로 정성숙교무가 실무자가 되어서 여교사로 박제현, 오회원교무 및 일반교사 등으로 조직 운영하다. 원기46년(1961) 초대 교장 박장식교무의 후임으로 정성숙교무가 임명되었으며 원기47년(1962) 구 중앙대학 이리분교를 인수하여 3개처에 있던 학생들을 한 곳으로 집합하여 새로운 학교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 중·고 공히 학교는 매년 학급을 증설인가를 받아서 일취월장으로 운영해 오던 중 원기52년(1967)에 여상에 인문과를 설립하여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로 변신하다. 설립당시의 재정으로는

각 교당, 각 기관 등 동지들의 특별희사금품으로 127만원을 모아서 기본자금이 되었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이리상업은행에서 중앙대학 이리분교 매입자금을 가채했고 동아병원에서 일부 차입금과 기타 사채로서 운영확장했으며 초기에 큰 힘이 되어 주신 분은 정성숙교무의 오빠 정홍진씨로서 이리시 남중동 소재 교지를 학교에 희사하여 부지정지중 현 인북선 도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구타원 이공주교무의 초기의 금품과 풍금기타 교구를 기증과 육군 2군사령부 민사부의 학교증축에 필요한 목재앙회 등의 3차례의 군원자재지원(민사부 정원하대령)은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학교는 계속 신장 발전되므로 학교시설에 따르는 부채는 증가되고 차입금 상환이자 지불 등은 고통스런 일이었으며 창인교사 협조로 원기63년(1978) 12월에 원광여종고는 현 이리시 모현동으로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데는 참으로 힘에 겨운 일이었다. (차입금상환 학교시설 등은 주택토지사업의 이윤으로 메꿔왔음.)

39. 1	정식 여자고등학교를 목표로 교무연합회에서 조직
40. 4. 11	원광대학 부속 여자고등학원으로 개교식 및 입학식 성대히 거행
41.	원광중·고등학교 교사 1동을 임시 빌려 원광여중과 병합하고 원광여자고등학교의 기반다지며 교장 박장식교무와 교감 정성숙교무가 노력
43. 1. 3	제7회 교무연합회와 원의회에 원광고등학교 설립인가 추진운동전개를 결의
43. 2. 26	제1회 졸업식 거행 졸업생중 10여명이 원대 교학과 입학
44. 2. 24	문교부 장관인가 원광여자상업고등학교 40명 신입생 모집
44. 4. 8	개교식과 입학식 거행
45. 3. 25	교사기지정비 시작
46. 12. 7	1학급 증설인가 얻음
47. 7	창인동 소재 중앙대학교 이리교사를 3백만원에 매수
47. 11. 1	신교사로 이전
47. 12. 16	1학급 증설인가 얻음(9학급 완성)
47. 12월말	본관 4교실과 계단 및 변소 20간 수위실 등 증설 신축하여 준공
48.	배드민턴 이경숙선수 전국 대표로 선발되어 일본에 원정
48. 8. 1	본관 3층 5교실 증축공사 약 2백만원 공사비로 준공. 부족된 教具 보완으로 피아노 1대, 타자기 4대 구입
49.	추진중이던 6층교사를 공사비 489만원을 들어 준공 2학기부터 사용
50. 1. 22	배드민턴 이경숙, 김서운 두 학생이 일본에 원정하여 승리
50. 10. 13	전국 남녀 국민학교 대항 주산경기대회를 당교 주최로 거행

50. 10.24	전국 국민학교 대항 학력경시대회를 주최하여 도내 수재 1,500명 참석 대성황
50.	성균관대학교 주최 전국주산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 이화여대 주최 전국여고생 문예콩클대회에 출전하여 유영진양이 대회 최고상인 학장상 획득
52. 9. 22	전북도내 국민학교 6학년 여자부 학술경시대회 개최 1,400명 참가
52. 10. 30	67년도 도지정연구학교로 협동조합운영 연구발표회가 있어 도내 담당교사 및 교장이 참석
52. 11. 4	전국 남녀 국민학교생 주산경기대회 개최한 바 350명 참가
52. 11. 16	학사종합지도감사 실시한 바 우수학교로 수상
52. 12. 19	학칙변경인가를 얻어 상업고등학교를 종합고등학교로 개정과 동시에 상과 각 학년 5학급(상과 3학급, 인문과 2학급) 개편
52.	4층에 보통교실 4간 115평과 특별교실 1간. 정문, 학생변소, 급수실 신축
53.	서관 5층 4개교실, 6층 1개교실, 7층옥상탑 증축으로 교실부족 해결(총평수 130평, 공사비 2,540,000원)
53. 5. 8	어머니날 행사에는 학부모 800여명 참석 주산선수들 전국주산 경기에 참가 단체우승. 종목입상 등 성과. 배구부는 호남배구대회에서 우승. 전국대회에 3등
53. 10. 3	국민학교 졸업반 학술경시 대회 개최 1,800명 참가 30명 장학생 선발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실업학교임에도 41%의 성적 취업면도 여러 기업체에 다수 합격
54. 4	70평의 가사실 건축
54. 9	국민학교 6학년 여자부 학술경시대회 개최
54. 10	중·고등학생 한국대표 국제선수권 대회에 이규숙양이 주산 제1위
55. 4	이리시내 중·고교대항 반공 가장행렬「자유의 여신」주제로 1위
55. 4	착공한 시청각 교실은 건평 75평 암막시설로 2중교실로 활용
55. 10	이리시내 중고대항 종합경기에서 종합 1위
56. 3. 10	여학교 생활관 50평, 회의실 20평과 도서관 70평 신축
56. 5	목포에서 개최된 전국 중·고 대항 탁구대회 1위

56. 5. 8	어머니날 행사 개최 학자모 1,000명 참석
56. 6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 중·고 대항 배구대회 1위
56. 10. 8	원불교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 1,200명의 학생이 「원의 향연」이란 주제로 마스게임 실시
58. 5. 8	어머니날 행사 1,200명의 어머니들 참석
58. 7. 24~9. 26	세계교직단체 연합회 총회에 본교 정성숙교장이 한국대표로 참석 세계 각국 교육시찰을 마치고 귀국
58. 11. 17	대입 예비고사에서 86%의 합격율을 내어 전북 십대 예비고사 성적으로 선발 취업고사에서도 4개 회사에서는 수석합격 차지
58. 11. 18	학생변소 39간 수세식으로 신축
58. 12. 5	국민교육헌장 공포일을 맞아 전경진부교장은 대통령 표창받음.
59. 3. 9	교내법당 마련. 매월 둘째, 네째 금요일 전 직원 법회
59. 4. 12	학생 작품 전시장 개장
59. 5. 3	전국적인 규모의 애국관 개관
59. 5. 8	어머니날 행사. 1,500여명의 어머니들 참석. 무용, 음악, 민속무용 관람
59. 10. 7	정구부 전국체전에서 준우승
59. 10. 12	자유교양선수 도에서 단체우승
59. 11. 2	자유교양선수 중앙대회에서 준우승
60. 3. 8	어머니날 행사에 1,500여명 어머니들 참석
60. 9. 22~24	서울에서 개최된 제9회 한일교환경기대회에서 본 고등학교 선수가 유일한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 우승
60. 10. 12~18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 정구선수권 대회에서 본 고등학교 선수가 유일한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 우승 전국대회 12회 출전 12회 우승
60. 11. 20	대학예비고사와 본 고사에서는 우수한 합격률을 냈으며 전국 각지에서 시행된 입사시험에 본교 상과생 응시 수석합격
60. 12. 19	문교부 주관하에 실시한 1975년도 전국 실업고등학교 운영종합심사에서 본교 가정과 부분에서 우수교로 문교부장관 표창

61. 5. 2 교사이전신축교사－학교시설 평준화 계획에 의하여 이리시 모현동 소재 학교 이전 준비작업으로 교사신축 기공식

각종 대회출전 정구부－8회 출전하여 8회우승, 무용부－특상, 우수상, 미술부－특상, 우수상.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취업에 있어서 좋은 성적 올리다.

62. 5. 8 어버이 1,400명을 초대. 민속무용과 위안공연으로 어버이날 행사

62. 5 본교에 설치된 학교법당에서 전 교직원이 합동법회 실시.

63. 6. 20 정구부 전국제패 우승기 차지

63. 12. 9 학교이전－이리시 모현동 1가 520번지 건평 3,683평중 1,676.3평, 1,938,850,000원 투입

64. 3. 5 산업체 특별학급 입학식 175명

64. 5. 8 어버이날 경축행사 거행

64. 6. 9 제17회 대통령기 쟁탈 연식 정구대회 준우승

64. 6. 10 57회 동아일보기 대회 우승

64. 8. 14 한일 교환 경기 우승

64. 9. 29 문교부 주최 상업계 실무능력 검정고시 실시 전북 1위

64. 10. 18 전국체전 준우승

67. 3 전교생에게 주 1시간씩 교리정규수업을 실시하여 교리 및 원불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음.

67. 10 연식정구 제63회 전국체전 우승

67. 12 PEPA총회(환태평양 교육자대회)에 정성숙교장이 한국대표로 참석

67. 12 생활관 완공, 연건평 218평, 공사비 9,400만원

68. 3 어학실험실 66석 완공

68. 5. 8 어버이날 기념 민속무용 경연대회 실시

68. 6 VTR시설 방송시설 완공 12실

68. 7 전산실 30석 시설 완료

68. 8 정보처리과 신설(보통과 5학급, 상업과 3학급, 정보처리과 2학급)으로 학칙변경

68. 8 전북 수학경시대회에 본교 2년 오찬영양 수석차지

68. 10.	강당공사 완공.
69. 1~	운동장 확장 및 정구장 이설공사와 정구부 합숙소 건물 신축(건물 약 80%공정) 총 공사비 약 7천만원 소요
69. 2. 24	전 직원 교리훈련. 전 직원이 범산 이공전교무, 김기원교무, 김도융교수를 초빙 교리훈련을 실시함
69. 3	83학년도 전라북도 교련사열 최우수학교 선정
69. 3. 7	산업체 특별학급 기존 3학급에서 5학급으로 증설 인가 승인
69. 6	전산기재구입 총 6백만원을 들여 전자계산실 설치함
69. 9. 22	제3회 고등학교 영어과 학력경시대회에서 2학년 김은형 학생이 1위
66. 1~69. 10	대강당(헌천관) 완공 연건평 690평 5층 건물로 총 공사비 약 4억원 소요
70.	매월 2회 전 교직원 법회실시 매월 2주, 4주째 금요일 전 교직원 교리훈련-김이현교무, 김도융교수, 양현수교무 초빙
70. 8. 30	방송실 설치 및 방송 기자재 완비로 각 교실 및 특별교실 모니터 시설 3,000만원
70. 9. 20	원대주최 전국 남녀 중·고교 학생 무용대회 참가. 고등부 1위(3학년 매화반 이명희)
70. 9. 26	이리시 교육청 주최 중등학교 백일장 대회 참가 시조. 수필부분 장원 및 합창 및 각 종목에서 특상 차지
71. 5. 8	제8회 어버이날 어버이들 모시고 배우고 익힌 가무로 위로함
71. 5. 14~6. 11	완전수세식 변소로 개조 공사비 3,700,000원
71. 7~9	정구부 합숙소 공사비 15,000,000원 투자
71. 9. 12	전라북도 종합예능 경연대회 문예부 은상 3개 합창부 동상 1개 수상
71. 10. 17	1986년도 전국 남녀 중·고교 연식 정구대회 준우승
71. 11. 1	실기기능 경진대회 : 상업미술부문 우수상 수상, 꽃꽂이부문 우수상 수상, 프로그램부분 우수상 수상
71. 11. 26	교내합창 경연대회(학급대항) 실시
72. 5. 4	전라북도 교육감의 모범학생 시상
72. 5. 8	제8회 어버이날 1,000여명 모시고 민속무용과 다채로운 행사로 위로
72. 5. 14~15	교내 체육대회

72. 7. 1 특별활동 실기경연대회－교내 백일장, 사생대회, 꽃꽂이, 붓글씨, 주산, 부기, 타자경연 및 사진, 펜글씨대회 실시

4) 기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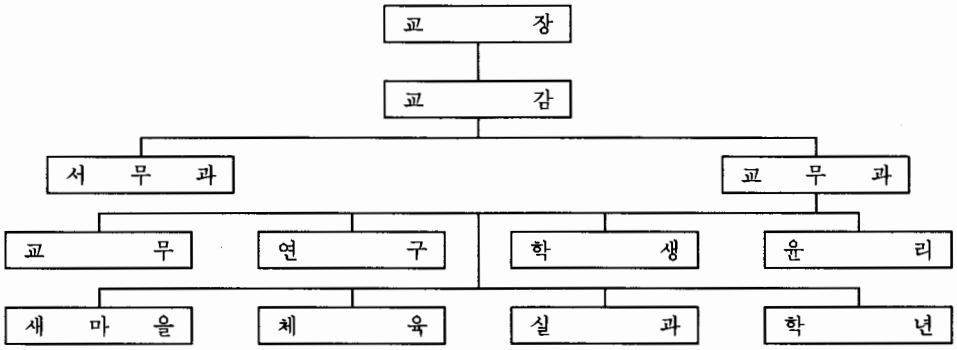

5) 역대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朴 將 植(天植)	男	1911. 1. 9	45. 2.24～46. 3.31	
2	丁 盛 熟(石鎭)	女	1922. 9. 5	46. 4. 1～	

6) 현 황

① 시설규모

가) 교지 총 평수 : 5,914평

나) 시설

* 운동장 : 3,914평

* 건 물

건물명	용 도	평	구 조
본 관	관리실 및 보통교실	1,425	철근 콘크리트 4층 건물
강 당	강당 및 도서관	670	〃
생활관	생활관 및 특별교실	206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
합숙실	정구부 합숙실	137.5	〃
기 타	경비실, 창고, 변소	68.6	
계		2507.1	

② 확장신축 및 이전

구 분	년월일	주 소	시설의 내용		시 설 경 비		
			용 도	평	총액	기금	부채
원대부속실업 고등학원설립	56. 4. 8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부 속				
학 교 이 전 (원중에여학생부)	57. 4. 1	이리시 동산동 667	〃				
원광여자상업 고등학교설립	60. 2.24	이리시 동산동 667	대 여				
학 교 이 전 (중앙대이리분교)	62.11. 7	이리시 창인동1가 152-3	교사증축				
학교신축이전	78.12.	이리시 모현동 520	교사신축				

③ 직원 및 학생수

가) 교직원수 : 계 75명(남46, 여29)

나) 학생수

종 별	학 급	계	남	여
1학년	10	570		570
2학년	10	579		579
3학년	10	578		578
야 간	12	595		595
총 계	42	2,322		2,322

④ 졸업생수

회수	졸 업 년 도	졸 업 생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46(1961). 2.27	33		33	33		33	
2	47(1962). 2. 8	28		28	61		61	
3	48(1963). 1.23	33		33	94		94	
4	49(1964). 1.23	50		50	144		144	
5	50(1965). 1.22	104		104	248		248	
6	51(1966). 1.20	183		183	431		431	
7	52(1967). 1.20	169		169	600		600	
8	53(1968). 1.16	208		208	808		808	
9	54(1969). 2.28	247		247	1,055		1,055	
10	55(1970). 1.15	254		254	1,309		1,309	
11	56(1971). 1.13	245		245	1,554		1,554	

12	57(1972). 1.14	288		288	1842		1842	
13	58(1973). 1.10	302		302	2144		2144	
14	59(1974). 1.10	295		295	2439		2439	
15	60(1975). 1.10	305		305	2744		2744	
16	61(1976). 1. 9	363		363	3107		3107	
17	62(1977). 1. 8	350		350	3457		3457	
18	63(1978). 1.13	365		365	3822		3822	
19	64(1979). 1.12	365		365	4187		4187	
20	65(1980). 2.23	367		367	4554		4554	특급1
21	66(1981). 2.12	359		359	4913		4913	〃 2
22	67(1982). 2.11	607		607	5520		5520	〃 3
23	68(1983). 2.10	669		669	6189		6189	〃 4
24	69(1984). 2. 9	696		696	6885		6885	〃 5
25	70(1985). 2.13	810		810	7695		7695	〃 6
26	71(1986). 2.12	737		737	8432		8432	〃 7
27	72(1987). 2.12	855		855	9287		9287	〃 8

7) 역대 재직교역자

법명(호적명)	직 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원기)	비 고
丁盛熟(石鎭)	교 장	女	1922. 9. 5	41. 4. 8~	
朴濟現(英姬)	교 사	〃	1932. 2. 4	42. 2.24~49. 3. 6	
吳暻圓(男苗)	〃	〃	1931.12.20	42. 2.24~46. 3.29	
李佑正	〃	〃		42. 2.24~48.12.31	
朴將植(天植)	교 장	男	1911. 1. 9	45. 2.24~46. 3.31	
全敬進(性完)	부교장	〃	1924.12.10	45. 2.24~46. 3.31	
全八根(八根)	교 사	女	1927. 3. 2	45. 2.24~63. 2.28	
朴三純(潤貞)	〃	〃	1928. 2.26	45. 2.24~46 4. 7	
鄭維誠(奉吉)	〃	男	1936. 5.20	45. 2.24~61. 8.31	
金復煥(復煥)	서 기	女	1938.12.10	46. 4. 1~50. 3. 3	
李建春(建淑)	과 장	男	1920.12.12	47. 3.10~64. 1.12	
李濟性(和秀)	교 사	〃	1935. 5. 7	47. 3.10~50. 3. 3	
金修仁(玉禮)	서 기	女	1934.12.31	48. 3.28~49. 4. 2	
崔奉根	교 사	男		49. 3. 4~52. 3. 6	퇴역
徐聖範(金成)	서 기	〃	1940. 9.25	50. 3. 5~51. 3.23	
沈在喆	교 사	〃		52. 3. 6~60. 5.20	퇴역
金永鍾(鍾洙)	〃	〃	1941. 4. 9	52. 3.25~53. 3.15	

金 濟 圓	교 사	男	1939. 5.15	53. 3.15～56.10.24	퇴역
金 大 乘(永吉)	서 기	〃	1944. 9.23	54. 9.15～63.12.31 64. 1.13～71. 9.30	
金 永 俊	교 사	男		55. 3.25～58. 3.20	
南宮善鳳(喜仙)	서 기	女	1939. 8.17	56. 4.25～61.12.31	
金 聲 振(春會)	과 장	男	1939.10.13	63. 3. 3～70.10.30 71.10. 1～	
韓 喜 允(明熙)	교 사	女	1949. 2. 9	66. 3. 2～70. 8.30	
裵 恩 宗(春姬)	〃	〃	1956. 1. 4	66. 3. 2～	
朴 濟 仁(煥允)	〃	男	1938. 6.13	68. 4. 1～	
李 聖 田(聖田)	〃	女	1953. 1.15	68. 3. 1～	
李 性 照(京鎬)	서무과장	男	1946. 6.21	68. 1. ～	

8) 배출된 전무출신

연번	법명(호적명)	생년월일	비 고	연번	법명(호적명)	생년월일	비 고
1	姜 明 眞(玉姬)	1951. 4.10		20	金 忠 玄(榮順)	1939. 9.27	퇴 역
2	姜 淑 圓(仁淑)	1952.10.17		21	金 玄 性(정희)	1947. 7.14	
3	姜 英 文(永南)	1938. 8.25		22	金 慧 泉(珏洙)	1945. 3.20	
4	權 世 圓(在賢)	1947. 2.25		23	金 曉 徹(順德)	1957. 5.20	
5	金 德 觀(有男)	1950. 5. 3		24	金 興 信(連任)	1942. 8.12	
6	金 復 仁(復仁)	1954. 6.14		25	羅 常 仁(德仁)	1957.10.13	
7	金 三 眞(正禮)	1952. 3.14		26	南 宮 恩(花子)	1942.12.16	
8	金 聖 田(今禮)	1941. 8.25		27	文 國 善(順)	1941.11.22	
9	金 修 仁(玉禮)	1934.12.31		28	文 善 慧(慧明)	1947.11. 9	
10	金 蓮 奎(順禮)	1948. 8.13		29	文 修 敬(在善)	1949. 6. 9	
11	金 一 誠(恩淑)	1948. 8.12		30	文 仁 眞(順金)	1944.10.14	
12	金 恩 珠(恩珠)	1959.10. 6		31	朴 公 圓(清子)	1943. 3.21	
13	金 應 現(英花)	1946. 7.12		32	朴 道 源(京子)	1951.10.18	
14	金 義 眞(德山)	1939. 1.10		33	朴 明 濟(聖子)	1939. 8. 9	
15	金 仁 卿(仁卿)	1951. 9.23		34	朴 誠 仁(潤熙)	1958. 5.16	
16	金 仁 奉(進淑)	1954.10. 3		35	朴 純 基(寶順)	1942. 9. 4	
17	金 正 德(金順)	1946. 8.26		36	朴 舜 正(亨子)	1939. 3.23	
18	金 貞 信(정순)	1948. 3.23		37	朴 信 裕(愛子)	1955. 5. 4	
19	金 正 悟(政淑)	1949. 6.16		38	朴 恩 源(경숙)	1949. 6.20	

39	朴 仁 源(順鳳)	1954.12.17
40	朴 慧 源(貴子)	1942.11.18
41	白 心 德(玉子)	1956. 3.23
42	白 賢 麟(鍾淑)	1962. 6.18
43	成 正 在(正在)	1936. 7.25
44	蘇 宗 玄(貴子)	1951. 1.14
45	宋 敬 鎬(敬鎬)	1949. 8.21
46	宋 明 鎬(明鎬)	1939. 7.14
47	宋 圓 田(金柱)	1950. 4.19
48	宋 仁 鎬(淑子)	1944.11.30
49	宋 賢 慈(재현)	1950. 9. 6
50	申 明 實(正燮)	1941.12.19
51	申 眞 圓(行圓)	1954. 5.15
52	申 慧 權(海坤)	1943. 9.15
53	安 善 珠(善珠)	1954.12.19
54	安 慈 恩(眞姬)	1955. 9.26
55	梁 世 晶(貞禮)	1954.12.15
56	梁 潤 誠(今順)	1955. 4. 8
57	余 根 榮(玉粉)	1957. 4.15
58	吳 德 觀(有子)	1951.12.20
59	吳 信 聖(信聖)	1942. 6.25
60	柳 寬 淑(宗順)	1945. 9.24
61	柳 法 元(明淑)	1950.12. 9
62	柳 秀 日(玉秀)	1938.12.25
63	柳 日 新(文子)	1943. 9. 4
64	柳 宗 信(愛秀)	1942. 6.21
65	柳 香 眞(美賢)	1959. 8.25
66	柳 玄 實(賢愛)	1942. 7.26
67	柳 玄 正(賢秀)	1939.11. 4
68	李 建 仁(建仁)	1947. 4.15
69	李 景 玉(景玉)	1947. 3.15
70	李 敬 悅(敬悅)	1961.10.13
71	李 吉 良(吉良)	1955.12.29
72	李 德 一(南順)	1946. 4.26
73	李 德 照(敬子)	1940. 8. 4
74	李 明 倫(正子)	1957.10.27
75	李 善 默(德珠)	1957.10.12
76	李 善 照(順柱)	1952. 9.20
77	李 聖 田(성전)	1953. 1.15
78	李 性 玉(成玉)	1951. 8. 6
79	李 心 眼(은자)	1952.10.26
80	李 安 性(英淑)	1955. 1.23
81	李 良 信(良信)	1942. 6.26
82	李 慧 定(愛子)	1937.12. 9
83	李 英 仁(建愛)	1942.10.18
84	李 惟 新(仁新)	1947. 5. 9
85	李 恩 永(三順)	1951. 2.12
86	李 恩 觀(金子)	1956. 6.23
87	李 貞 吉(貞吉)	1957. 9.20
88	李 正 珠(正南)	1941. 1.12
89	李 眞 誠(粉順)	1950. 6.26
90	李 浩 仁(聖子)	1958.10.12
91	李 孝 敏(順玉)	1945. 7. 6
92	林 靈 哲(順德)	1949. 9.20
93	林 仁 英(美淑)	1944.10.21
94	張 賢 心(正德)	1949. 9.10
95	田 道 淑(連淑)	1949. 6.19
96	丁 敬 安(敬安)	1949. 9.26
97	鄭 常 薰(英子)	1942. 8.15
98	鄭 誠 萬(蓮婉)	1949. 9.30
99	丁 恩 守(八鎭)	1951. 4. 1
100	丁 慈 弘(銀順)	1949. 8.13
101	曺 英 振(英子)	1943. 3.25
102	趙 學 心(崇永)	1951. 4. 4
103	曺 曉 鏡(英淑)	1945. 6. 5
104	崔 洗 塵(順德)	1939. 2.12
105	崔 順 哲(希順)	1937. 6. 4
106	崔 雲 珠(京南)	1952. 1. 9
107	崔 一 珠(京任)	1956. 5. 1
108	崔 志 圓(京子)	1945. 9. 9
109	太 誠 實(貞模)	1950. 9.23
110	韓 法 印(四錫)	1944. 3.29
111	韓 聖 勉(均順)	1947. 9. 7
112	韓 喜 允(明熙)	1949. 2. 9

113	咸 聖 培(春永)	1947. 6.10		126	朴 恩 珍(恩珍)	1961. 8.18	
114	黃 大 願(在順)	1945. 4. 6		127	양 원 심(정희)	1962. 7.22	
115	黃 德 奎(英熙)	1948.12. 6		128	유 재 현(희자)	1960. 3.10	
116	黃 明 信(春德)	1947. 5.17		129	李 貴 仁(貴仁)	1960. 1.21	
117	黃 鳳 熹(今滿)	1954.10.15		130	李 明 心(惠淑)	1959. 1.17	
118	黃 英 奎(淑熙)	1941. 7.23		131	李 法 恩(京子)	1946. 9.25	
119	黃 恩 奎(璟姬)	1946.12.16		132	이 선 수(도미)	1957. 6.13	
120	金 信 圓(鍾姬)	1959. 5.12		133	임 도 화(애자)	1957. 3.24	
121	金 恩 和(寶淑)	1965.11.23		134	張 蓮 煥(惠淑)	1960. 9.18	
122	김 진 연(진연)	1962.12.15		135	張 天 眞(明淑)	1959. 2. 9	
123	朴 道 振(香任)	1967. 2.17		136	鄭 明 鮮(淑景)	1961. 8.19	
124	朴 法 一(인숙)	1961. 6. 8		137	정 홍 익(옥경)	1961. 6.25	
125	박 원 경(경선)	1955. 5.13		138	조 유 정(정희)	1958. 1.27	계138명

7. 해룡중학교

1) 설립년월일

원기66년(1971) 1월 25일 해룡중학교 인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86번지

2) 교 훈

• 참되고 슬기로운 사람. • 노력하고 봉사하는 사람

* 교화 : 국화
  진실을 바탕으로 나와 남을 속이지 않는 참 인간성을 기른다.(진실→참인간성)
* 교목 : 히마라야시다
  굳은 신념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탐구적인 인간상을 기른다(의지→탐구적인 인간상)
* 교색 : 파랑색
  원대한 희망을 품음으로 현재를 극복하는 패기있는 인간상을 패기 있는 인간상을 기린다(희망→패기있는 인간상)

3) 연 혁

55(1970). 6. 1	법인 창설 학교법인 해룡학원 인가
	초대 이사장 박장식(천식)교무 취임
56(1971).	본관을 스라브 2층으로 5개 교실 증축
	대지 406평 285,500원으로 매입
	교실총수는 스라브2층 9개교실, 관리실 3개, 변소 1동 사택 1동, 수도장 마련하여 대지 총 평수 5,300평 확보
56(1971). 1. 25	해룡중학교 인가(12학급)
	초대 교장 권세영(재홍)교무 취임
56(1971). 3. 15	해룡중학교 개교 및 입학식
58(1973). 3. 5	입학식 거행 신입생 255명
58(1973). 7. 27	영광교도 회사금 20만원과 자체부담 10만원으로 교문 건립
58(1973). 9. 1	변소 1동 건립 공사비 50만원
58(1973). 12. 25	6개교실 건립 총 공사비 900만원
59(1974). 3. 5	입학식 거행 222명
60(1975). 3. 5	입학식 거행 271명
68(1983). 9. 17	도서관 준공
70(1985). 2. 14	졸업식 졸업생 244명 배출
70(1985). 3. 2	입학식 거행 268명
70(1985). 4. 26	중·고교직원 법회. 60명 매월 1회 실시

4) 경영관

교육에 대한 신념

참된 마음으로 앞날을 내다보며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현실에 충실한 교육

학 교 상

- ○ 화합 단결하는 학교
- ○ 민족의 앞날을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 ○ 날로 새로워지는 학교

교 사 상

- ○ 부단히 연수하는 교사
- ○ 사제 동행하는 교사
- ○ 사랑과 정열이 넘치는 교사

학 생 상

○ 참되고 슬기로운 학생
○ 부지런히 공부하는 학생
○ 바르게 행동하는 학생

5) 교직원 현황

구 분	교장	교감	교사														서무				총계
			도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기술	농업	한문	교도	양호	소계	일반직	기능직	육성회	소계	
정원	1	1	1	3	2	2	2	2	1	1	2	1	1	1			21	2	3	1	6	27
현원	1	1	1	3	2	2	2	2	1	1	3	2	1	1			23	2	3	1	6	29

6) 학생현황

구분 \ 학년	1	2	3	특수학급	계
학 급 수	3	3	4		10
학 생 수	147	122	213		482

7) 시설현황

구 분	교지			시설			
	대 지	체 육 장	실 습 장	보통교실	특 별 실	관 리 실	변 소
수 량	1,770㎡	4,545㎡	•	10	2	3	12간

8) 교 가

송 은 작곡
이공전 작사

서해의 물이맑아 용이 오르고
영광에 서기어려 터전열렸네
둥그러운 한빛이 온누리를 밝히듯
이고장 이나라를 빛내어줄 일꾼들
새정신 가다듬고 새슬기를 닦나니
종소리도 드높아라 해룡-의 학원

8. 해룡고등학교

1) 설립년월일

원기59년(1974) 1월 5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86번지

2) 교　　훈

• 참되고 슬기로운 사람　　• 노력하고 봉사하는 사람

* 교화 : 국화
　　진실을 바탕으로 나와 남을 속이지 않는 참 인간상을 배운다.
* 교목 : 히말라야시다
　　굳은 신념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강인한 인간성을 배운다.
* 교색 : 파랑색(하늘색)
　　원대한 희망을 품고 현재를 극복하는 신념과 용기가 있는 인간성을 배운다.

3) 연　　혁

55(1970). 6. 1　법인창설 학교법인 해룡학원 인가
　　초대 이사장 박장식(천식)교무 취임
59(1974). 1. 5　해룡고등학교 설립 인가(6학급)
　　초대 교장 권세영(재홍)교무 취임
59(1974). 3. 5　해룡고등학교 개교 및 입학식(120명)
59(1974). 4. 23　대지 400평 매입
59(1974). 10. 21　3개 교실증축 공사비 510만원 2학급증설 인가
59(1974). 12. 12　학급증설 4학급 (12학급)
60(1975). 3. 5　입학식 거행 210명
　　건물증축 : 숙직실 및 창고 11평 공사비 60만원
　　교실 3간 111평 공사비 9백만원
　　토지매입 : 영광읍 도통리 73번지 383평 매입가 38만원2천원
　　영광읍 도통리 74번지 691평 매입가 69만원1천원
　　수도증설 : 학교기준에 의하여 수도꼭지 24개 증설

60(1975). 9. 15 본관 12교실 준공
63(1978). 10. 1 특별교실 및 부속건물 69평 준공
63(1978). 10. 18 학급증설 6학급(18학급)
66(1981). 10. 19 학급증설 7학급(21학급)
67(1982). 10. 11 학급증설 남·녀 9학급(27학급)
68(1983). 9. 17 도서관 준공(2층 160평 500석)
68(1983). 11. 13 전남 수학 경시대회 2학년 김영규군 은상 입상
68(1983). 12. 18 전남 영어 경시대회 2학년 정강준군 금상 입상
69(1984) 신학기부터 1학년 교사 교리시간 실시
69(1984). 3. 14~16 신학기를 맞이하여 교직원 40여명 참석. 아침기도 실시
69(1984). 4. 28 대각 경축행사에 교직원 참석
69(1984). 9. 30 전남 교육감기 학생무용 콩클대회 유은선양 현대무용 독무 최고상 수상
69(1984). 10 육사 경찰대학 1차합격(육사 7명, 경찰대학 1명 합격)
70(1985). 2. 14 졸업식 373명 배출
70(1985). 3. 2 입학식거행 527명
70(1985). 4. 26 중·고교직원 법회 60명 매월 1회 실시

4) 경영관

* 교육에 대한 신념
  1. 착하고 아름다운 인간가족의 건설(진솔한 인간)
  2. 주체적인 창조성의 탐구 (창조적인 인간)
  3. 개척자적인 행동성의 개발 (행동적인 인간)

* 학교상
  1. 따뜻하고 알찬 학교
  2. 힘써 배우는 학교

* 교사상
  1. 폭넓고 알뜰하며 능률있게 가르치는 교사
  2. 언행일치의 생활의식을 가진 교사

* 학생상
  1. 부지런히 배우며 바르게 행동하는 학생
  2.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

5) 교직원 현황

가. 직원현황

구 분	교 장	교 감	주임교사	교 사	서 무	계	비 고
정 원	1	1	12	48	7	69	
현 원	1	1	12	42	7	63	

나. 교과별 현황

구 분	국민윤리	국어	국사	사회	세계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교련	음악	미술	한문	영어	독일어	일본어	기술	농업	가정	가사	계	비고
정 원	2	8	2	2	1	2	8	2	2	3	2	4	3	1	1	2	8	1	1	1	2	1	1	60	
현 원	2	8	2	2	1	2	8	2	2	3	2	3	2	1	1	1	8	1	1	1	1	1		55	

6) 학생현황

가. 재학생 현황

학년 \ 학급		1	2	3	4	5	6	7	8	9	10	계
1	공 통	51(여)	51(여)	51(여)	51(여)	53	54	54	54	53	54	526
2	인 문	57	56	51	50	50						264
	자 연						57	53	54	53	49	266
3	인 문	56	57	56	56	57						282
	자 연						56	56	53	56	54	275
계												1,613

나. 졸업생 현황

졸업횟수	졸업생수	진 학 생 수	진 학 율	취업자수	취 업 율	비 고
14회	523	4년제 106명 2년제 97명	56.4%	98명	60.9%	

7) 시설현황

가. 교　　지

용 도 별	총 부 지	교　　지	체 육 장	실 습 지	기　　타
면적(㎡)	29,126	5,775	13,200	1,015	9,141

나. 교실 및 부속시설

용도별	교실	관리실			도서관	기숙사	특별교실														
		교장실	교무실	서무실			체육실	미술실	음악실	실험실	양호실	숙직실	상담실	자재실	가사실	무용실	비디오실	타자실	컴퓨터실	어학실	휴게실
실수	30	1	1	1	1	2		1	1	1	2	1	1	1	1	1	1	1	1	1	1
면적(㎡)	2,275	45.5	136.5	45.5	528	272.76	91	91	91	91	91	45.5	45.5	91	91	91	45.5	91	91	91	91

9. 영산성지학교

1) 설립년월일

원기67년(1982) 1월 30일(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산150－3번지)

2) 교　　훈

마음을 넓히자.

마음을 밝히자.

마음을 잘쓰자.

교육이념

원불교의 교리정신에 바탕하여 과학교육과 인성교육을 병진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함.

3) 연　　혁

①설립동기 : 원불교의 근원 성지인 영산에서 대민 교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선도를 목적하고 시작하였는데 중등교육의 의무교육 확대로 중학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고등학교로 승격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인근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전국 각지의 원불교 교도 자녀들이 원불교 정신을 통해 청소년 과정을 겪어 미래의 이상적인 인격자가 되도록 양성함을 목적함.

② 설립유공인 : 오인한, 김법용심(부산진교당)

③ 설립기금 내역 : 총계 3,000만원, 현금 3,000만원

④ 설립당시의 규모 : 대지 : 10,000평, 건물 : 1동 100평

⑤ 설립당시의 직원수 : 계 12명(남 4, 여 8)

⑥ 설립당시의 학생수 : 계 33명(남 25, 여 8)

⑦ 초대교장 : 이정근(李正根)선생님

⑧ 설립당시 조직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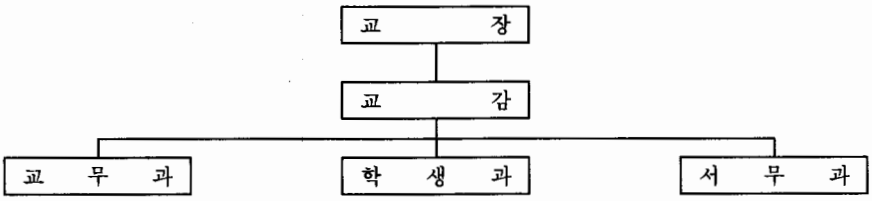

69. 3. 2	개학, 입학식 학부형회의 개최
69. 4. 10	연구수업 고3 영어
69. 4. 24	연구수업 고1 수학
69. 5. 26～29	1학기 중간고사 실시
69. 5. 31	연구수업 고1 국어
69. 6. 15	연구수업 고1 영어
69. 7. 10～7. 12	1학기말고사 실시
69. 7. 16	졸업식
69. 8. 16	개학식 및 2학기 수업시간표 발표
69. 9. 13	연구수업 고1 세계사
69. 9. 21	연구수업 고2 한문

70. 10. 26~29	2학기 중간고사
70. 11. 20	학력고사 실시(20명)
70. 12. 12~14	2학기말 고사
70. 12. 21	겨울방학
71. 1. 8	전기대학 입학원서 접수(20명)
71. 2. 13	제2회 졸업식(20명)
71. 3. 3	86학년도 개학식
71. 3. 30	신년법문 실천 ① 명상의 시간운영, ② 일기, ③ 조기체조, ④ 국산품애용, ⑤ 가족입교시키기
71. 4. 5	식목행사(은행나무 50주 이식)
71. 4. 28~29	대각개교절 기념예술제 및 체육대회
71. 5. 5~8	2학년 수학여행
71. 5. 5	3학년 봄 소풍
71. 5. 24~27	1학기 중간고사
71. 6. 5	모내기 노력봉사
71. 6. 7	농번기 방학
71. 7. 10~12	1학기말 고사
71. 7. 19~8. 17	여름방학
71. 7. 19	자체 사무감사
71. 7. 30	기관 사무감사(총부)
71. 8. 18	2학기 개학
71. 9. 4	체력장 실시(18명)
71. 10. 11	추계 체육대회
71. 10. 18	추계 소풍(2학년)
72. 2	영산선원에서 운영해왔던 학교를 영산출장소에서 인수 운영
72. 2. 13	제3회 졸업식(19명 배출)
72. 3. 2	입학식, 신입생 15명
72. 6. 30	최준명교도의 희사로 남기숙사 신축 완공, 공사비 일천만원
72. 8. 19~20	교육부주최 교립학교 간부훈련에 본교생 6명 참석

4) 역대교장

대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李 正 根	男	1916. 7.20	67. 3. 8~67. 8. 1	
2	曺 虛 仁	女	1917. 5.15	67. 9. 1~	

5) 조직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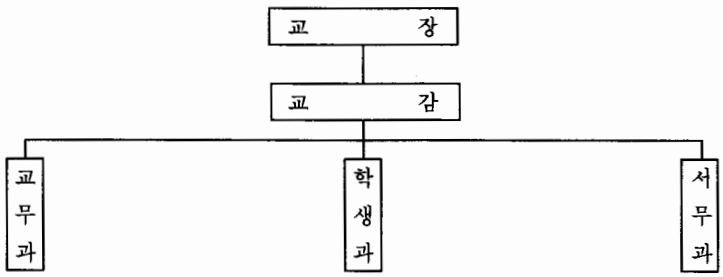

6) 현 황

① 시설규모

가) 교지 총 평수 : 10,000평

나) 시 설

* 운동장 : 3,000평
* 건 물

건물명	용 도	평	구 조
	교 실	75	시멘트, 슬라브
	교 무 실	13	〃
	자 료 실	12	〃
	화 장 실	10	〃
	기 숙 사		벽돌, 스레트

② 교직원 학생수

가) 교직원수 : 계 9명(남 4, 여 5)

나) 학생수

종 별	학 급	계	남	여
1학년	1	14	9	5
2학년				
3학년	1	27	19	8
총 계	2	41	28	13

③ 연도별 졸업생수

회수	졸 업 년 도	졸 업 생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1985)	19	14	5	19	14	5	
2	71(1986)	20	11	9	39	25	14	
3	72(1987)	20	13	7	59	38	21	

④ 확장 신축 및 이전

구 분	연월일	주 소	시설의 내용		시설 경비		
			용 도	평	총액	기금	부채
신 축	62(1977).10.7	전남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산150-3	교 실	60			
			교무실	10			
			자료실	10			
			화장실	10			
			기 타	20	2,000만원		

7) 역대 재직 교역자

법명(호적명)	직 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尹周現(殷炳)	설 립 자	女	1924. 2.19	67. ~72. 2.28	
南宮誠(奎)	교 감	男	1950.10. 1	〃	
尹舜明(正明)	교 사	女	1946. 4.22	〃	
吳善道(材信)	〃	〃	1949. 6. 6	〃	
申宗熙(大熙)	서무주임	男	1948. 2.22	〃	
崔世鍾(鍾燮)	학생주임	男	1952. 3. 1	67. 2.28~69.12.31	
李聖田(聖田)	교 사	女	1953. 1.15	67. 2.28~68.12.31	
金仁昭(福姬)	교무주임	〃	1955. 3.30	67. ~72. 2.28	
殷聖義(熙淑)	교 사	〃	1959. 1.15	〃	
黃旻政(賢淑)	〃	〃	1954. 9.13	68. 3. 2~71. 2.28	
金浩性	〃	男	1956. 3.22	68. 3. 2~70. 2.28	
金聖子	교 사	女	1955.	68. 3. 2~70. 2.28	
朴誠仁(潤熙)	〃	〃	1958. 5.16	69. 3. 2~70. 2.28	
河常義(正南)	교무주임	〃	1955. 6.26	69. 3. 2~72. 2.28	

李道田(海應)	서무주임	女	1955. 3.26	71. 3. 2~72. 2.28	
金　玄(奉鎭)	경 영 자	男	1945.10.15	72. 3. 1~	
朴仁源(順鳳)	서무주임	〃	1954.12.17	72. 3. 1~	
徐圓珠(允)	교　　사	女	1958. 1.10	70. 2.28~71.12.31	
朴仁海(成洙)	〃	〃	1953.11.17	69. 1.18~69.12.31	

8) 전무출신지원자

연　도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추천인	비　고
70(1985)	박 희 섭	男	1966. 9.12	朴 恩 燮	
〃	丁 亨 靜(學聲)	〃	1963.10.14	李 喆 行	
〃	오 정 환	〃	1965.10. 5	尹 周 現	
〃	金 珍 奎(珍奎)	〃	1963. 9. 5	金 普 信	
〃	안 태 정	〃	1964. 5.16	尹 周 現	
71(1986)	신 봉 식	〃	1964. 8. 5	〃	
〃	李 賢 玉(炫姬)	女	1959. 5.13	尹 周 現	
〃	안 춘 희	〃	1956.11.19	〃	
72(1987)	김　욱	男	1968. 5.28	南 宮 誠	
〃	徐 仁 貞(權敬)	女	1968.10.28	蘇 宗 玄	
〃	林 相 圓(貞子)	〃	1965. 9. 4	宋 慈 明	
〃	韓 道 運(美淑)	〃	1966. 8.24	尹 周 現	
〃	유 영 신	〃	1958. 2.15	〃	
〃	박 영 순	〃	1962. 8.15	박 혜 정	
〃	崔 仁 誠(英蘭)	〃	1960. 8. 6	金 慧 心	

특기사항

설립당시는 영산선원에서 운영해오다가 졸업생 3회 배출후 원기72년(1987) 영산선원 4년제 승격으로 인하여 영산출장소로 운영이관됨.

10. 원광고등공민학교

1) 설립년월일

원기40년(1955) 2월 20일

2) 교　　훈

진 실　　근 면

3) 연　　혁

① 설립동기 : 초등교육을 마친 본교 보화원(普和園)의 원아 및 가정형편에 의하여 정규 중학교에 진학치 못하는 남녀 일반 향학도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공민적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의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

② 설립유공인 : 재단법인 원불교.

③ 설립기금 내역 : 재단 부담금　1차년도 : 255,400환.
2차년도 : 350,200환.
3차년도 : 360,600환.

④ 설립과정상의 특기사항 : 동화병원에서 신동 338로 옮길당시 平陀園 성현주교도(성정철 교무 누님)께서 부지를 쌀 10가마로 구입하여 주셨고 문동현교도와 공덕혜교도 집안에서 교사 건축금을 희사해 주셨는데 이때의 학교부지가 후일 교육부의 형설장학회를 설립케 하였다.

⑤ 설립당시의 주소 :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344－2

⑥ 설립당시의 규모 : 교실건평 107평, 창고 18평, 변소 7평, 체육장 2,405평

⑦설립당시의 교직원수 : 계 6명, 학생수 12명

⑧ 초대교장 : 정광훈교무

39.	교감 양태설교무외 직원들과 발족
40.	첫 졸업식과 신입생 모집 및 입학식 거행
41.	신입생 1학급 증설로 본격적인 설치
42. 3. 8	제1회 졸업생 50명을 배출
49. 9. 1	전 동화병원으로 옮겨 자치운영
50.	원대 불교교육과 상급학생의 공훈으로 당년에는 많은 학생 취학
52. 2. 24	본교 후원회 조직. 회장에 송원철교무
52. 3. 5	신입생 61명 모집하고 입학식 거행
72. 7	현해장학금 조성
52. 7. 20	「圓高公」학보 발간, 도서모집으로 200여권 확보
54. 8. 25	대지 773평을 164,450원으로 매입 교사 신축공사 시작

54. 10. 26	세면 부로크조 스레트교실 4간을 875,369원의 공사비로 건축, 새 교사로 이사
56. 3. 8	입학식 입학생 65명
56. 5. 16	교내 웅변대회
	교사보수공사(보수비 150,000원)
56. 9. 30	검정고시에 전 과목 2명, 과목합격 39명
56. 10. 15	교내 추계 체육대회
56. 10. 17	전북 고공체육대회 출전 배구, 탁구 준우승
56. 12. 23	제15회 졸업식 거행
58. 4. 26~30	2만원 들여서 교실 후면 벽 시멘트 공사
58. 10. 14~18	문동현교도의 희사금 10만원과 교금 7만원으로 교실바닥, 변소바닥, 콘크리트공사
58. 10. 27	제3회 전북 고등공민학교 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종합우승
58. 12. 23	학교부지 매입
59. 5. 11	본교 부지 확충 매입 260평 싯가 98만원
59. 8	우물공사 10만원
60. 8	정법근교도의 5만여원 희사로 변소 3간 증축.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30여명 합격
	이리형설회에서 장학금 20만원 증정받다.
61. 4. 7~5. 3	교실 1간 증축, 공사비 100만원
61. 10. 6~20	교문설립공사비 10만원
61. 12. 18	전교생 합동법회 실시
	고등학교 입학검정고시 50명 응시, 39명 합격

4) 조직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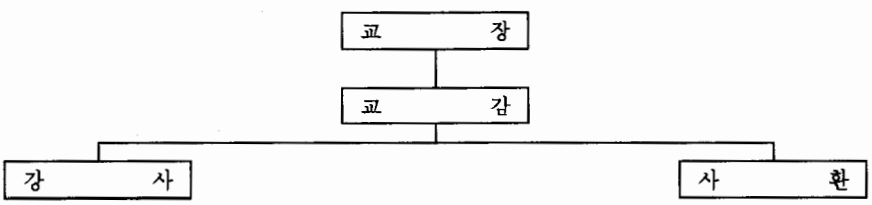

5) 역대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丁 光 薰(炳球)	男	1917. 8.30	40. 4.12~41. 4. 1	
2	梁 泰 說(泰鎬)	〃	1924.10.16	41. 4. 1~42. 5. 1	
3	鄭 高 善	〃		42. 5. 1~43. 4. 1	
4	鄭 性 德(弼煥)	男	1930. 8.20	43. 4. 1~49. 3. 5	
5	趙 甲 鍾(孝南)	〃	1905. 5.13	49. 3. 5~50. 6. 8	
6	鄭 性 德(弼煥)	〃	1930. 8.20	50. 6. 8~62. 4. 8	
7	權 峻 圓(在完)	〃	1940. 4.26	62. 4. 8~63. 3.13	
8	金 西 悟(書男)	〃	1926.12.16	63. 4. 8~66. 2	

6) 현 황

구 분	연월일	주 소	시설의 내용		시설 경비		
			용 도	평	총액	기금	부채
	49. 9. 1 54.10.26	동화병원으로 교사이동 이리시 신동 338로 이전	교실	150			

□ 유치·유아원

◇ 교육 이념

1. 천심을 길러 준다.
2. 불심을 밝혀 준다.
3. 성심을 찾아 준다.

◇ 교육 방침

1. 진실하여 거짓이 없도록 하자.
2. 인내하여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3. 자비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자.

부모의 인격을 자녀가 닮고 스승의 인격은 제자가 닮고 웃사람의 인격은 아랫사람이 닮는 것이니 그 부모나 스승이나 웃사람은 바른 법, 바른 사상, 바른 철학을 정립해서 가르쳐 나가야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을 길러 낼 수 있다(대산 종법사 법문).

위와 같은 교육이념과 교육방침아래 원불교는 아동의 도덕적·정서적 발달을 중심으로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인 전인적인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원기38년(1953) 정주원광유치원을 시작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이 42개원이며 유아원이 38개원 그리고 기타 학원(미술·웅변·주산학원)이 3, 총 83개원이다.

유치원·유아원 기타 학원의 순으로 설립년도에 따라 정리한다.

〔1〕 유 치 원

1. 정주 원광 유치원

* **주소** : 정주시 수성동 448
* **전화** : (0681) 32－4555
* **설립** : 원기38년(1953) 6월 12일

원 훈
착하고 씩씩한 어린이가 됩시다.

가. 설 립

정주시는 곡창 전북의 농산물 집산지인 중소도시로서 6·25동란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교육열이 높았으며 어린이 교육을 위한 유치원 설립이 논의되던 중 《재단법인 원불교 정주교당》에서는 독자적인 재단으로 지역 사회의 어린이들을 육성하고 보호하고자 본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 당시 송경상이사장을 중심으로 이사에는 이병규, 임이성, 어정, 김낙현, 정길현, 하재홍, 신동훈교도, 이성신교무를 내정하고 감사에 배이석, 최홍교도를 원장에 이성신교무 그리고 보모에 권구전으로 인력이 확보되어 유아교육이 실시되며 전북 정읍군 정주읍 수성리 580번지의 240평의 유치원을 설립하는데 6만환이 소요되었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李 聖 信(玉禮)	女	1922. 12. 1	38. 6.12~39. 4.26	
2	丁 盛 熟(石鎭)	〃	1922. 9. 5	39. 4.26~41. 4.26	
3	李 再 耕(再耕)	〃	1929. 8. 26	41. 4.26~46. 4	
4	朴 成 席(成南)	〃	1934. 1. 8	49. 5.24~53. 4. 7	
5	梁 慧 經(榮植)	〃	1930. 4. 30	53. 4. 7~56. 4.30	
6	羅 喆 重(龍柱)	男	1923. 10. 19	56. 4.30~	

다. 현 황

◇시설규모 : 대지 342.73평, 놀이터 130평, 건평 53.16평(교실 2간, 사무실, 화장실)

◇ 교사 : 2명(여), 원아수 : 51명(남22, 여29)

〈이전 신축 및 확장〉

구 분	연 월 일	주 소	시 설 내 용		시 설 경 비		
			실 명	평	총 액	기 금	부 채
설 립	38. 6.12	전북 정읍군 정주읍 수성리 580번지			6만환		
이 전	55. 3.31	전북 정읍군 정주읍 수성리 448번지					
신축확장	70. 3. 1	전북 정읍군 정주읍 수성리 448번지	사무실 화장실 교 실	53.16	4천만원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39	54	30	24	54	30	24	
2~4								
5	44	40	26	14	94	56	38	
6	45	14	10	4	108	66	42	
7	46	26	16	10	134	82	52	
8	47	20	12	8	154	94	60	
9	48	37	16	21	191	110	81	
10	49	26	16	10	217	126	91	
11	50	30	14	16	247	140	107	
12	51	25	12	13	272	152	120	
13	52	27	10	17	299	162	137	

14	53	30	12	18	329	174	155	
15	54	21	11	10	350	185	165	
16	55	29	19	10	379	204	175	
17	56	33	22	11	412	226	186	
18	57	35	20	15	447	246	201	
19	58	20	9	11	467	255	212	
20	59	27	17	10	494	272	222	
21	60	26	14	12	520	286	234	
22	61	25	15	10	545	301	244	
23	62	35	15	20	580	316	264	
24	63	25	12	13	605	328	277	
25	64	30	18	12	635	346	289	
26	65	44	26	18	679	372	307	
27	66	42	21	21	721	393	328	
28	67	33	22	11	754	415	339	
29	68	32	21	11	786	436	350	
30	69	30	16	14	816	452	364	
31	70	20	16	4	836	468	368	
32	71. 2.19	30	11	19	866	479	387	
33	72. 2.16	42	19	23	908	498	410	

2. 창원 원광 유치원

* **주소** : 창원시 서상동 396
* **전화** : (0551) 97－4277
* **설립** : 원기56년(1971) 3월 1일
* **인가** : 원기65년(1980) 11월 6일

원 훈
둥글게 바르게 착하게

가. 설 립

지방 주민과 어린이들을 교화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교육의 장이 없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교당시설을 유아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 본 유치원의 설립동기가 되었다.

설립 유공인으로는 김충현교무가 중심이 되어 남아 11명, 여아 13명의 총 24명의 원아들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대 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金 忠 玄(榮順)	女	1940. 11. 20	53. 4.17~57. 4. 5	
2	文 國 善(順)	〃	1941. 11. 22	57. 4. 6~60. 4.18	
3	姜 主 煥(末子)	〃	1941. 1. 13	60. 4.19~68. 2.13	
4	姜 主 心	〃		68. 2.14~69.11.26	
5	崔 性 養(辰順)	〃	1948. 2. 3	69.11.27~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93평, 놀이터 30평, 법당 겸 교실 40평.

〈이전 신축 및 확장〉

구 분	연 월 일	주 소	시설내용		시 설 경 비		
			실 명	평	총 액	기 금	부 채
신 축	65. 6. 30	창원시 서상동 396번지	법 당 겸 교실	40	2,200만원	회사금	

◇ 교사 : 2명(여), 원아수 : 71명(남38, 여33)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56	24	11	13	24	11	13	
2	57	48	30	18	72	41	31	
3	58	18	8	10	90	49	41	
4	59	15	7	8	105	56	49	
5	60	14	7	7	119	63	56	
6	61	18	10	8	137	73	64	
7	62	16	8	8	153	81	72	
8	63	17	9	8	170	90	80	
9	64	77	36	41	247	126	121	
10	65	46	25	21	293	151	142	
11	66	49	24	25	342	175	167	
12	67	31	15	16	373	190	183	
13	68	41	20	21	414	210	204	
14	69	53	27	26	467	237	230	
15	70	79	35	44	546	272	274	
16	71	68	33	35	614	305	309	
17	72	71	38	33	685	343	342	

3. 광주 원광 유치원

* **주소** : 광주시 동구 궁동 40
* **전화** : (062) 22－6491
* **설립** : 원기64년(1979) 6월 29일
* **인가** : 원기65년(1980) 3월 5일

원 훈
착하고 아름답게
밝고 슬기롭게
용감하고 바르게

가. 설 립

전인적인 인격의 성장은 좋은 환경에 있다는 학설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육의 장을 설립하게 된 것이 동기이며 전남 광주시 동구 궁동 40번지에 대지 540평, 건물 100평의 본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李 善 照(順柱)	女	1952. 9.20	65. 2.16～67.12.30	
2	李 學 新(炯南)	〃	1955. 2.11	67.12.30～71. 2.24	
3	柳 玄 正(賢秀)	〃	1939.11. 4	72. 1.20～	

다. 현 황

◇시설규모 : 대지 540평, 놀이터 200평, 유희실 80평, 담화실 6평, 강당 100평, 직원실 3평, 화장실 6평, 주방 4평, 운동장 20평.

◇ 교사 : 2 명(여), 원아수 : 43명(남20, 여23)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6	43	29	14	43	29	14	
2	67	30	15	15	73	44	29	
3	68	71	36	35	144	80	64	
4	69	62	33	29	206	113	93	
5	70	67	27	40	273	140	133	
6	71	58	34	24	331	174	157	
7	72	37	21	16	368	195	173	

4. 이리 원광 유치원

* **주소** : 이리시 갈산동 205
* **전화** : (0653) 3-7001
* **설립** : 원기65년(1980) 6월 9일
* **인가** : 원기66년(1981) 1월 13일

원 훈
슬 기 롭 게
착 하 게
씩 씩 하 게

가. 설 립

원불교 이념에 의해 정신교육과 과학교육이 병행된 인간상 구현과 하나의 세계 실현의 목적이 본 유치원의 설립동기가 되어 박제권교무외 이사 20여명의 공로로 설립되었다.

설립기금의 내역을 보면 현금 680만원, 부채 500만원, 특별회사 180만원이며 부동산 314평으로 되어 있다. 설립당시의 규모는 대지 314평, 건물 1동 175평 그리고 기타 시설인 운동장과 놀이기구 5종의 규모로 출발하였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吳 震 相	男	1906. 1. 14	67~70	
2	丁 奎 斗	〃	1920. 1. 1	70~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314평, 놀이터 139평 그리고 건물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교 실	교 실	70
담 화 실	동화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	10
과학자료실	과학에 관한 자료실	10
아 기 방	소꿉놀이 · 생활영역	10
사 무 실	사무보는 장소	20
복 도		30
화 장 실		25

◇ 교사 : 2명(여), 원아 : 80명(남46, 여34)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1983)	67	42	25	67	42	25	
2	69(1984)	50	34	16	117	76	41	
3	70(1985)	50	30	20	167	106	61	
4	71(1986)	61	40	21	228	146	82	
5	72(1987)	59	32	27	287	178	109	

5. 압해 원광 유치원

* **주소** :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162
* **전화** : (0631) 71－0544
* **설립** : 원기65년(1980) 4월 20일
* **인가** : 원기70년(1985) 4월 12일

가. 설 립

지역에 유아교육 시설이 없어 필요성을 느끼고 양재원교무의 혈성과 강윤원, 장심인행교도의 공로에 힘입어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당시의 규모는 대지 150평, 건물 30평, 놀이터 100평의 규모로 1학급 남아 26명과 여아 34명의 총 60명을 교사 1명이 교육하였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梁 在 圓(善玉)	女	1943. 4. 21	65. ～68.	
2	田 濟 煥(吉任)	〃	1948. 9. 9	68. ～70.	
3	趙 慧 明(永子)	〃	1945. 5. 12	71. ～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50평, 놀이터 100평, 건물 30평(교실 25평, 유희실 5평), 화장실 3평

◇ 교사 : 1명(여), 원아수 : 60명(남26, 여34)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5	30	16	14	30	16	14	
2	66	26	6	20	56	22	34	
3	67	20	10	10	76	32	44	
4	68	16	7	9	92	39	53	
5	69	12	7	5	104	46	58	
6	70	16	10	6	120	56	64	
7	71	16	8	8	136	64	72	

6. 성덕 유치원

* **주소** :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2구 88
* **전화** : (0684) 82-8040
* **설립** : 원기65년(1980) 11월 25일
* **인가** : 원기66년(1981) 10월 19일

원 훈
아름답게 가꾸자
슬리롭게 배우자
튼튼하게 자라자

가. 설 립

본 유치원은 故 김성덕교도의 남다른 인재양성의 유지를 받들어 그 자녀의 특별희사금 600만원의 기금으로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2구 82의 대지 53평에 건물 1동을 지어 원불교 창령교당 법당 겸 교실로 사용하게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	성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고 병 석	男		65.11.25~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53평, 놀이터 300평, 교실 13평, 유희실 40평.

◇ 교사 : 1명(여), 원아수 : 10명(남6, 여4)

다.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24	13	11	24	13	11	
2	69	23	8	15	47	21	26	
3	70	5	3	2	52	24	28	
4	71	10	4	6	62	28	34	
5	72	12	5	7	74	33	41	

7. 영광 원광 유치원

* **주소** :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89
* **전화** : (0686) 2-2264
* **설립** : 원기66년(1981) 3월 6일
* **인가** : 원기66년(1981) 1월 31일

원 훈
착하고 아름답게
맑고 슬기롭게
바르고 씩씩하게

가. 설 립

타자녀 교육의 이념아래 성지 영광 주변의 유아교육과 문화창달 및 원불교 교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본 유치원의 설립동기이다.

설립당시부터 특지가가 없이 전 교도의 모금 580만원에 의한 설립은 교도전체의 단합과 공심의 실을 거두게 되었다. 설립당시 대지 200평에 건물 1동 21평과 화장실 등의 시설로 초대 원장 이수오교무와 교사 1명이 1학급 남아 22명, 여아 14명을 모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李 修 悟(在福)	男	1929. 4.17	66. ~69.	
2	趙 正 中(云記)	〃	1938. 1.28	70. ~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00평, 놀이터 50평 그리고 아래의 건물이다.

실 명	용 도	평
1. 보 통 교 실	진달래반 교실	26
	개나리반 교실	21
2. 화 장 실	변소 및 창고	12
3. 사 무 실	교사사무용	6
4. 원 장 실	원장응접실 집무실	15
5. 창 고	교육자료 보관	6

〈이전 신축 및 확장〉

구 분	연월일	주 소	시 설 내 용		시 설 경 비		
			실 명	평	총 액	기 금	부 채
제2교실	70. 9.2	영광읍 무령리 189	진달래 유희실	26	1,500만원	150만원	

◇ 교사 : 2명(여), 원아수 : 94명(남53, 여41)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7	36	22	14	36	22	14	
2	68	37	27	10	73	49	24	
3	69	28	16	12	101	65	36	
4	70	36	25	11	137	90	47	
5	71	67	39	28	204	129	75	
6	72	64	36	28	268	165	103	

8. 오수 원광 유치원

* **주소** :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 390-20
* **전화** : (0673) 42-5104
* **설립** : 원기66년(1981) 5월 31일
* **인가** : 원기67년(1982) 1월 31일

원 훈

우리는 천사다. 슬기롭게 뛰놀자
우리는 햇님이다. 벙실벙실 웃어보자
우리는 양들이다. 거짓없이 사랑하자

가. 설 립

원불교의 타자녀교육의 이념실현과 지역사회 어린이 교화의 목적으로 이선초, 이인재, 김이덕, 이재식, 한창선, 이수명 외 교도 일동의 특별희사 8백만원의 기금으로 전북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에 대지 131평과 건물 1동 43평의 규모로 본 유치원이 설립되었다.

초대원장에는 이순석교무가 임명되었고 교사 1명이 1학급 22명의 원아를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李 順 錫(順錫)	女	1922. 4.14	66. 5.31~67. 2. 3	
2	金 法 眞(貴禮)	〃	1934. 3.23	67. 2. 3~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31평, 놀이터 90평, 건물은 유희실 40평, 자료실 겸 양호실 3평, 화장실 3평, 사무실 3평

◇ 교사 : 1명 (여) , 원아수 : 26명(남16, 여10)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7	22	15	7	22	15	7	
2	68	20	12	8	42	27	15	
3	69	19	11	8	61	38	23	
4	70	23	9	14	84	47	37	
5	71	21	11	10	105	58	47	
6	72	27	15	12	132	73	59	

9. 강화 원광 유치원

* **주소** :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230-1
* **전화** : (0349) 2-2643
* **설립** : 원기66년(1981) 12월
* **인가** : 원기67년(1982) 3월 5일

가. 설 립

원불교 강화교당은 지역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화와 교당유지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유아교육을 통해 교화의 활성화와 교육적인 측면의 두가지 목적으로 본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기존 교당의 대지 250평과 유광수회장의 대지 10평의 희사에 힘입어 김동훈, 허춘환, 이은화, 한성수화교도의 특별희사금 200만과 부채 600만을 가지고 경기도 강화읍 관청리 230-1에 건물 2동 40평의 규모 유치원이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원장에는 허춘환이 역임하고 교사 1명이 35명의 원아를 교육하였다.

구 분	연월일	주 소	시설내용		시설경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法堂신축 33坪	62. 9.20	강화읍 관청리 230-1	유희실 교 실 원장실 양호실	33(법당) 10 2 3	800만원	200만원	600만원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許 春 煥(今妊)	女	1918. 3.28	설립당시부터 교육청 등록원장임	
2	金 法 連(玉子)	〃	1941.12.23	67.~70.	
3	李 明 仁(錦姬)	〃	1938. 9.30	7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50평, 놀이터 100평, 건물 40평 (유희실 33평, 교실 10평)

◇ 교사 : 2명(여), 원아수 : 45명(남19, 여26)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32	19	13	32	19	13	
2	69	43	24	19	75	43	32	
3	70	40	22	18	115	65	50	
4	71	53	32	21	168	97	71	
5	72	45	25	20	213	122	91	

10. 부산 중구 원광 유치원

* **주소** : 부산시 중구 신창동1가 38
* **전화** : (051) 246-9725
* **설립** : 원기66년(1981)
* **인가** : 원기67년(1982) 2월

원 훈
둥 글 게
은혜롭게
씩씩하게

가. 설 립

본 유치원의 설립동기는 원불교 부산교당 주변 상가지역의 자녀들이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함에 따라 교육과 보육의 필요성을 느껴 이사, 고문들의 협조와 교당소유의 전세를 회수하여 교실 4개, 놀이실, 교무실, 자료실, 화장실, 부엌을 총공사비 3천여 만원을 들여 이루어졌다.

설립당시의 규모는 부산시 중구 신창동 1가 38번지 원불교 부산회관 2층의 대지 200평의 규모에 원장 1인과 교사 5명이 4학급, 150명을 교육하는 장이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姜 明 眞(玉姬)	女	1951. 4.10	68. ~70. 2.	
2	金 蓮 奎(順禮)	〃	1948. 8.13	70. 2.~71. 8.	
3	金 慧 恩(賢愛)	〃	1959. 5.13	71. 9.~	
	權 世 圓(在賢)	〃	1947. 2.25	71. 9.~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00평, 놀이터 80평, 교실(4) 70평, 주방 10평, 교무실(1) 10평, 화장실(8) 20평, 운동장(실내) 80평, 창고(1) 5평.

◇ 교사 : 4명(여), 원아수 : 120명(남60, 여60)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92	53	39	92	53	39	
2	70	97	56	41	189	109	80	
3	71	92	43	49	281	152	129	
4	72	81	46	35	362	198	164	

11. 북일 원광 유치원

* **주소** : 이리시 신동 766-9
* **전화** : (0653) 855-6055
* **설립** : 원기66년(1981) 6월 7일
* **인가** : 원기67년(1982) 3월 1일

가. 설 립

원불교 교육의 정신과 어린이 조기교육시책의 호응, 개교의 이념에 바탕한 어린이 정서교육,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함이다.

총 공사비 4,929,300원을 들여 이리시 신동 338번지에 대지 249평, 놀이터 120평, 교사 198평, 화장실 6평, 창고 5평의 규모로 재단법인 원불교의 명의로 설립되었으며, 원장에는 서대준 교무를 임명하고 교사 1명이 1학급을 교육하였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 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徐 大 峻(榮燮)	男	1935. 5. 9	66. 6. 9~	

다.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39	24	15	39	24	15	
2	69	39	23	16	78	47	31	
3	70	26	12	14	104	59	45	
4	71	20	11	9	124	70	54	
5	72	24	13	11	148	83	65	

12. 인후 원광 유치원

* **주소** : 전주시 인후2동 1525-7
* **전화** : (0652) 4-8587
* **설립** : 원기67년(1982) 3월 5일
* **인가** : 원기67년(1982) 3월 20일

가. 설 립

교화장에서 청소년교화를 절실히 느끼어 지역사회와 호흡을 함께 하기 위한 일환으로 골목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인가과정의 곤란으로 인후미술학원의 인가를 얻고 다시 4년후 전주시 인후 2동 234에 대지 40평, 건물 2동 40평을 신축하여 유치원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金 順 福	女	1949. 2. 15	70. 3. 5~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26평, 놀이터 20평, 건물 60평과 다음의 부속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유 희 장	교육실 · 작업실 겸 활용	30
원 장 실	원장집무실 · 응접실	10
급 식 실	간식·중식 겸 활용	20
화 장 실	남자용 2개, 여자용 2개	10
양 호 실	1개	5
세 면 실	2개	5

〈이전신축 및 확장〉

구 분	연 월 일	주 소	시 설 내 용		시 설 경 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전세에서 신축했음	70. 8. 15	인후2동 152-7번지	급식실 유희실 원장실	20 30 10	4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 교사 : 3명(남1, 여2) , 원아수 : 40명(남20, 여20)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45	32	13	45	32	13	
2	69	42	30	12	87	62	25	
3	70	46	25	21	133	87	46	
4	71	45	20	25	178	107	71	
5	72	38	18	20	216	125	91	

13. 성주 원광 유치원

* **주소** : 성주군 성주읍 경산 6동 629-1
* **전화** : (0544) 933-2401
* **설립** : 원기67년(1982) 3월 8일
* **인가** : 원기67년(1982) 4월 10일

원 훈
하늘마음을 기르자
도덕심을 밝히자
참마음을 실천하자

가. 설 립

비어있는 법당의 활용과 교화의 활성,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하여 백정암회장외 교도일동의 협력으로 특별희사금 4,000,000원과 현금 1,500,000원, 정부보조금 500,000원의 총 6,00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7,000,000원을 들여 유치원 버스를 매입하게 되었다.

설립당시 대지 240평, 건물 2동 45평의 규모를 갖추어 원장에 조경연교무가 임명되고 교사 1인이 43명의 유아를 교육하였다.

구 분	연월일	주 소	시설내용		시설경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2층 신축 증축	72.10. 4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 6동 629-1	교 실	2반 30평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간	비 고
1	趙 敬 蓮(源淑)	女	1936. 6. 2	67. 3. 8~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40평, 놀이터 100평, 그리고 건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 명	용 도	평
보 통 교 실	법당 겸용	30
원 장 실	양호실 겸용	3
교무실 및 급식실		10

◇ 교사 : 1명(여), 원아수 : 50명(남30, 여20)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42	17	25	42	17	25	
2	69	35	18	17	77	35	42	
3	70	35	20	15	112	55	57	
4	71	30	18	12	142	73	69	
5	72	45	26	19	187	99	88	

14. 화포 원광 유치원

* **주소** : 김제군 만경면 화근리 449
* **전화** : (0658) 42-5584
* **설립** : 원기70년(1985) 4월 3일

가. 설 립

본 유치원은 원기70년(1985) 4월 3일에 인가를 받은 동시에 설립되었다.

교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린이 교화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고명일교무의 헌신과 노력으로 무료의 지도가 시작된 것이 본 유치원의 설립동기이다.

김제군 만경면 화포리 449의 주소에 대지 600평, 건물 2동 70평의 규모에 초대원장인 고명일교무가 18명의 원아를 직접 교육하기에 이르렀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高 明 一(福禮)	女	1942.10.15	70.~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600평, 건물 2동 70평.

◇ 교사 : 1 명(여), 원아수 : 14명(남7, 여7)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1	18	7	11	18	7	11	
2	72	15	6	9	33	13	20	

15. 삼천포 원광 유치원

* **주소** : 삼천포시 동금동 140－2
* **전화** : (0693) 2－2909
* **설립** : 원기67년(1982) 10월 6일
* **인가** : 원기67년(1982) 12월 4일

원 훈
참다운 어린이, 슬기로운 어린이 감사하는 어린이, 부지런한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

가. 설 립

본 유치원 설립동기는 본교가 목적하는 교화, 교육, 자선 3대목표에 바탕해서 취학전 아동들에게 교육법에 의한 정신으로 심신의 건전한 발달, 종교적, 도덕적 발달을 시킴으로써 민주시민의 육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그 동기를 두고 현금 20,000,000원과 부채 13,000,000원의 총 33,000,000원으로 삼천포시 동금동 140－2의 주소에 대지 300평, 건물 1동 70평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의 초대원장에는 한연심교무가 역임하고 교사 2명이 2학급 80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韓 蓮 心(金蘭)	女	1944. 9.10	67.12. 4～70. 2.15	
2	宋 仁 鎬(淑子)	〃	1943.10. 3	70. 2.15～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300평, 놀이터 150평 그리고 건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원 장 실	원장 집무실	5	유 희 실	무용 · 노래 · 활동에	50
사 무 실	사무에 관한 일체	4		관한 일체	2
양 호 실	불편한 원아 휴식	3	자 료 실	학습자료 보관	6
교 실	학습에 관한 일체	25	화 장 실	용변	

◇ 교사 : 2명(여), 원아수 : 90명(남38, 여52)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80	42	38	80	42	38	
2	70	80	40	40	160	82	78	
3	71	80	39	41	240	121	119	
4	72	80	40	40	320	161	159	

16. 서울 원광 유치원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55
* **전화** : (02) 797－5707
* **설립** : 원기67년(1982) 10월 23일

원 훈
밝 게
바 르 게
둥 글 게

가. 설 립

유년교화의 필요성에 유치원의 설립동기를 두고 전 교도의 협력으로 총 4,111만원의 경비를 들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55번지의 주소에 대지 1,300평, 건물 53.7평의 규모를 갖춘 유치원을 설립하여 초대원장에 박성경교무가 역임하고, 교사 2명이 2학급, 35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朴 性 敬(敬順)	女	1928. 2. 27	67.10.23~71. 2.28	
2	申 孝 碩(英淑)	〃	1951. 3. 12	71. 3. 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300평, 놀이터 100여평, 건물 53.7평

◇ 교사 : 2명(여), 원아수 : 46명(남19, 여27)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35	18	17	35	18	17	
2	70	34	22	12	69	40	29	
3	71	50	28	22	119	68	51	
4	72	36	18	18	155	86	69	

17. 제주 남원 원광 유치원

* **주소** :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1214－9
* **전화** : (064) 64－1078
* **설립** : 원기67년(1982) 11월 1일
* **인가** : 원기68년(1983) 9월 14일

원 훈
명랑하게
슬기롭게
씩씩하게

가. 설 립

본 유치원의 설립동기는 제주 남원교당을 신설한 후 첫 사업으로 농촌부모의 바쁜 일손을 돕기위해 농번기 유아원을 개설한 것이 그 동기가 되어 지역주민의 요망에 응하여 무연지 개척교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설립 유공인 김도근, 김석인, 박안정행교도의 협력에 힘입어 현금 200만원과 특별회사금 500만원 그리고 부채 300만의 총 1,000만원의 경비로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1214－9에 대지 200평과 건물 1동 30, 주택 1동을 설립하였다.

설립당시의 원장에는 정명중교무가 역임하고 교사 2명이 1학급 37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鄭 明 中(吉子)	女	1948. 1. 15	68. 9.14～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00평, 놀이터 150평, 건물이 52평이며 건물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유 희 실	보통 교실 · 유희실 겸용	42
양 호 실	양호실 겸 시청각실	5
원 장 실	응접 및 사무	5

◇ 교사 : 3명(여), 원아수 : 80명(남43, 여37)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34	17	17	34	17	17	
2	70	40	21	19	74	38	36	
3	71	40	22	18	114	60	54	
4	72	76	39	37	190	99	91	

18. 금산 원광 유치원

* **주소** : 금산군 금산읍 상리 175
* **전화** : (0412) 2-2426
* **설립** : 원기67년(1982) 12월 5일
* **인가** : 원기68년(1983) 2월 13일

원 훈
둥근마음 갖는 어린이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
내 일 내가 하는 어린이

가. 설 립

교단정책에 부응하고 어린이의 교육·교화와 젊은 교도의 교화라는 목적으로 본 유치원이 설립되었다.

설립동기는 금산읍 상리 175의 주소에 대지 295평, 소법당의 활용으로 설립기금 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초대원장에는 이영인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2명이 원아 45명의 1학급 남아23명,

여아 22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李 英 仁(建森)	女	1941. 7. 5	68. ~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300평, 놀이터 150평, 건물 46평 1동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교실 및 유희실	보통교실 및 유치원	30	교 사 실	시주일체 업무	3
간 식 실		2	화 장 실		5

〈이전신축 및 확장〉

구 분	연 월 일	주 소	시 설 내 용		시 설 경 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신 축	71. 5.	금산읍 상리 175	교 사 유희실 교사실 간식실 화장실	4 6	2700만원		

◇ 교사 : 3명(여), 원아수 : 51명(남29, 여22)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45	23	22	45	23	22	
2	70	48	27	21	93	50	43	
3	71	48	28	20	141	78	63	
4	72	51	34	17	192	112	80	

19. 마산 원광 유치원

원 훈
둥근마음
밝은마음
맑은마음

* **주소** : 마산시 상남 1동 109
* **전화** : (0551) 3－6803
* **설립** : 원기67년(1982) 12월 9일

가. 설 립

설립동기는 본 교가 목적하는 교육, 교화, 자선 3대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이에 故 조인명교도 외 교도일동의 공로에 힘입어 교당 2층 학생회관을 교실 2간으로 개조하고 놀이터와 화장실을 마련하는데 1,6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다.

당시의 원장에는 심상환교도가, 명예원장은 정숙현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2명이 2학급의 원아 58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沈 相 煥	男	1913. 3. 15	68. ～	교 도
1	鄭 淑 賢(春子)	女	1952. 1. 15	68. ～70.	
3	吳 珠 恩(洙善)	〃	1947. 4. 20	71. ～72.	
4	李 安 性(英淑)	〃	1955. 1. 23	72 ～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80평, 놀이터 60평, 다음 내용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유 희 실	유희, 노래, 무용	30	사무실 겸 원장실	작업 및 응접실	2.28
교 실	은혜반,동그라미반	40	세면 및 화장실		9

◇ 교사 : 2명(여), 원아수 : 80명(남42, 여38)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40	23	17	40	23	17	
2	69	45	28	17	85	51	34	
3	70	49	24	25	134	75	59	
4	71	59	34	25	193	109	84	
5	72	80	42	38	273	151	122	

20. 대구 원광 유치원

* **주소** : 대구시 중구 남산1동 677－45
* **전화** : (053) 423－2334
* **설립** : 원기68년(1983) 1월 22일

원 훈
둥근마음
밝은마음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원불교의 교육이념의 실천으로 어린이의 바른 심성을 기르고, 국가의 조기교육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설립유공인 김연지행교도의 특별회사와 김시영교도의 건축수리와 개축의 협력과 노명수교도가 유치원 제반 업무를 맡음으로써 본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설립기금의 내역을 보면 현금 600만원과 특별회사금 600만원의 총 1,2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대구시 남산동 677－45의 주소에 대지 430평, 건물 2동 116평의 규모의 본 유치원은 초대원장에 노명수교도를 임명하고 교사 1명이 1학급 34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盧 明 守(純喜)	女	1943. 11. 6	68. ～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430평, 놀이터 60평 그리고 건물은 아래와 같다.

실 명	용 도	평
큰 법 당	유회실 및 큰 행사시	7 1
교 실(2)	일반 수업	3 8
교 무 실	직 원 실	
화 장 실	화 장 실	7

◇ 교사 : 2명(여), 원아수 : 71명(남44, 여27)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34	17	17	34	17	17	
2	70	46	35	11	80	52	28	
3	71	50	35	15	130	87	43	
4	72	53	28	25	183	115	68	

21. 원남 원광 유치원

* **주소** : 종로구 원남동 98
* **전화** : (02) 743-2607
* **설립** : 원기68년(1983) 3월 1일
* **인가** : 원기69년(1984) 7월 9일

원 훈
맑 게
바 르 게
둥 글 게

가. 설 립

본 유치원의 설립동기는 교도의 손·자녀의 유아교육이 타종교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짐으로 와지는 가족교화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불교 정신 특히 타자녀교육의 사상과 종교성과

도덕적 발달을 도모코자 함이다. 이에 초대이사장인 박심원교도와 김정해, 고문국교도의 특별 회사의 공로로 종로구 원남동 98번지 대지 48평, 건물 1동 실평 35평의 규모를 갖춘 유치원이 총 공사비 5,500만원을 들여 설립되었다. 당시 원장에는 김혜신교무가 임명되고 교사 1인이 1학급의 원아 29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金 慧 信(姬廷)	女	1947. 1. 26	68. ~70.	
2	朴 正 默(永愛)	〃	1937. 4. 20	71. ~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97평, 놀이터 49평 그리고 건물은 35평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 명	용 도	평
보 통 교 실 (2)	유희실, 흥미영역별 배치	6 5
관 리 실 (1)	유구장 등	1 2
화 장 실 (2)		5
취 사 실 (1)	간식 준비	3

〈이전신축 및 확장〉

구 분	연 월 일	주 소	시 설 내 용		시 설 경 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확 장	69(1984)	원남동 22번지	놀이터	4 9	6000만원	회사금	

◇ 교사 : 1명(여), 원아수 : 27명(남11, 여16)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29	14	15	29	14	15	
2	70	31	20	11	60	34	26	
3	71	33	12	21	93	46	47	
4	72	27	13	14	120	59	61	

22. 청주 원광 유치원

* **주소** : 청주시 탑동 305
* **전화** : (0431) 53-1100
* **설립** : 원기68년(1983) 5월
* **인가** : 원기68년(1983) 11월 12일

원 훈
방글방글 웃으면서
서로서로 정다웁게
모두모두 무럭무럭

가. 설 립

설립동기는 2세교육의 중요성과 책임있는 교육에 대한 의지의 실현을 목적함과 간접적으로는 교화발전을 도모하자는데 있다.

전 교도의 합력으로 9천만원의 건축비를 부담하고, 특히 본 유치원 대지가 언덕과 바위산인 관계로 공사의 어려움이 많았다.

청주시 탑동 305의 대지 1,350평에 건물 1동 130평, 놀이터 150평의 규모를 갖추게 된 본 유치원은 원장에 정도윤교무가 임명되고 교사 2명이 2학급의 원아 64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丁 道 允(炳允)	男	1933. 5. 15	68. 5. ~	

다. 현 황

◇시설규모 : 대지 1,350평, 놀이터 150평, 건물 130평이며 건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 명	용 도	평
교 실 2	일반 수업(정적인)	40
놀 이 방 1	실내 놀이	22
유 희 실 1	노래, 율동	24
사 무 실 1	일반 사무	10
화 장 실 1	남·녀 실내 화장실	10

◇ 교사 : 2명(여), 원아수 : 60명(남39, 여21)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	64	34	30	64	34	30	
2	71	51	32	19	115	66	49	
3	72	58	37	21	173	103	70	

23. 다대 원광 유치원

* **주소**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60－1
* **전화** : (051) 29－1105
* **설립** : 원기68년(1983) 11월 9일
* **인가** : 원기69년(1984) 9월 2일

원 훈
참 되 고
슬기롭고
아름답게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원불교의 이념을 바탕하여 어린이의 바른 정서교육과 종교심을 함양하여 완전한 인격형성은 물론 미래의 주인공을 육성하며 부모교육을 통한 교화와 교육의 연계성을 이룩하고자 함이다.

설립 유공인 문동수, 배영선, 황운정, 손법은, 이지영, 서성희교도의 특별희사금 200만원과 부채 500만의 총 700만원을 들여 기존교당 건물을 개수하여 시설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60－1 8통2반의 대지 143평에 건물 1동 55평의 본 유치원은 원장에 송원요교무가 임명되고 1학급 20명의 원아가 입학되어 교사 1명이 교육하기에 이르렀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宋 圓 堯(在煥)	男	1953. 2. 25	68.11. 9～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50평, 놀이터 150평, 건물 40평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1. 유 회 실		180	5. 교 사 실		9
2. 원 장 실		12	6. 교 실		101
3. 양 호 실		10	7. 방 송 실		10
4. 사 무 실		9			

〈이전신축 및 확장〉

구 분	연 월 일	주 소	시 설 내 용		시 설 경 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개 축	6 8	사하구 다대동 160	교 실	1 5		197만원	
			화장실	2			
	6 1	천주교 부지 매입		7		200만원	
	7 0	놀이기구				370만원	
	7 1	차량구입비				300만원	
	7 2	사하구 다대동 161	놀이터			150만원	
		응접실 개조	교 실	1 5		200만원	
			화장실	2		80만원	

◇ 교사 : 2명(여), 원아수 : 60명(남31, 여29)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	19	10	9	19	10	9	
2	71	35	19	16	54	29	25	
3	72	56	30	26	110	59	51	

24. 북광주 원광 유치원

* **주소** : 광주시 북구 임동 149-10
* **전화** : (062) 54-5161
* **설립** : 원기68년(1983) 12월 10일
* **인가** : 원기68년(1983) 12월 4일

원 훈
햇빛처럼 밝게
냇물처럼 꾸준히
꽃처럼 아름답게

가. 설 립

설립동기는 교화와 교육의 실현을 바라던 중 김춘화옥교도의 부모(부-김자성, 모-오보은화)의 명복을 기원하고 무자녀인 본인의 타자녀교육 실천의 의지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었다.

본 유치원 설립과정에서 특별회사금 11,579,500원과 정부 보조 3,000,000원, 부채 43,936,000원의 총 58,515,500원 공사비가 소요되어 광주시 임동 149-10의 대지 169평, 건물 1동 68평과 기타 시설창고 등의 규모를 갖춘 유치원이 건립되었다.

원장에는 김홍선교무가 임명되고 3학급 90명을 3인의 교사가 교육하기에 이르렀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金 弘 善(南淑)	女	1952. 11. 3	69. 1. 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69평, 놀이터 100평, 건물 68평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유 회 실 (1)	놀이지도 유희	20.45	화장실, 세면실		5.15
유 회 실 (2)	〃	19.09	자 료 실 (1)	교육자료 보관	3.27
유 회 실 (3)	〃	5.6	자 료 실 (2)	〃	1.2
양호실겸사무실		2.5	현 관		8
조 리 실		3.2			

◇ 교사 : 4명(여), 원아수 : 100명(남56, 여44)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	90	44	46	90	44	46	
2	71	100	52	48	190	96	94	
3	72	100	54	46	290	150	140	

25. 군산 원광 유치원

* **주소** : 군산시 경장동 50-6
* **전화** : (0654) 3-1692
* **설립** : 원기69년(1984) 3월 1일

원 훈
착 하 게
슬기롭게
씩씩하게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종법사의 유시를 받들어 지역의 어린이교화와 취학전 아동의 인격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오철환교도와 김덕일화교도의 공로에 힘입어 군산시 경장동 50-6의 대지 432평에 건물 1동 125평과 풀장 등의 시설규모를 갖추어 초대원장에 김정희교도가 임명되고 교사 3인이 원아 52명인 2학급을 교육, 운영하게 되었다.

나. 역대 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金 德 一 華(正善)	女	1914. 9. 8	69. 3. 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432평, 놀이터 100평, 다음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교실(토끼반)	공부, 작업 등	20	관 리 실	창 고	2
교실(나비반)	〃	20	양 호 실		3
교 실	〃	20	식 당		4
유 희 실	실내 놀이실	20	숙 직 실	임시 식당 방	3
원 장 실	원장님 집무실	5	화 장 실		6
사 무 실	교사들 교무실	6	복 도		

◇ 교사 : 4명(여), 원아수 : 100명(남53, 여47)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	44	34	10	44	34	10	
2	71	88	51	37	132	85	47	
3	72	76	49	27	208	134	74	

26. 상주 원광 유치원

* **주소** : 상주시 냉림동 323
* **전화** : (0582) 2-2002
* **설립** : 원기69년(1984) 2월 1일

원 훈
방글방글 웃으며
슬기롭게 배우고
예쁘게 자라자

가. 연 혁

원불교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교단정책에 부응하고, 유아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본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홍정관, 양원익부부와 김도양, 김대선화부부의 공로로 상주시 냉림동 323의 대지 115.15평에 18평의 교실겸 소법당이 설립되어 원장에 이대우교도가 임명되고 교사 1인이 37명의 원아를 교육하였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李 大 雨(施雨)	男	1928. 5. 19	69. 3. 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57.78평, 놀이터는 건물과 겸용하며 건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교실3	보통교실	155.38	화장실		20
유희실	놀이지도	15	자료실	교육자료 보관	6
사무실		27.22			
간식실		8.58	총 계		232.18

〈이전신축 및 확장〉

구 분	연 월 일	주 소	시 설 내 용		시 설 경 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신축확장	71(1986). 7.11	상주시 냉림동 322-1	교실2 화장실 자료실	128.58	3000만원	300만원 (특·회)	

◇ 교사 : 4명(여), 원아수 : 110명(남56, 여54)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	33	20	13	33	20	13	
2	71	62	36	26	95	56	39	
3	72	76	36	40	171	92	79	

27. 진북 원광 유치원

* **주소** : 전주시 진북 2동 1150－3
* **전화** : (0652) 3－8802
* **설립** : 원기69년(1984) 3월 1일(미술학원)
* **인가** : 원기71년(1986) 3월 1일

원 훈
둥근마음 가진 어린이
감사할 줄 아는 어린이
내일 내가하는 어린이

가. 설 립

지역의 교화와 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정혜영, 박진선교도의 공로로 전북 전주시 진북동 2동 1150－3의 대지 117평의 50평 건물가운데 20평을 유치원 시설로 사용케 되었다.

설립당시의 원장에 장정수교무가 임명되고 1학급 22명이 원아를 교사 1명이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張 正 隨(善子)	女	1941. 10. 25	69. 3. 1～72. 2	
2	朴 圓 順(英仙)	〃	1941. 5. 20	72. 2 ～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17평, 놀이터 50평, 교실 20평

◇ 교사 : 1명(여), 원아수 : 18명(남6, 여12)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	22	8	14	22	8	14	미 술 학 원
2	71	25	7	18	47	15	32	미 술 학 원
3	72	18	13	5	65	28	37	유 치 원

28. 동산 원광 유치원

* **주소** : 완주군 조촌면 반월리 242-1
* **전화** : (0652) 3-1242
* **설립** : 원기69년(1984) 4월 1일(미술학원)
* **인가** : 원기69년(1984) 4월 10일
* **변경** : 원기71년(1986) 4월 23일(유치원)

원 훈
맑은 마음
밝은 마음
바른 마음

가. 설 립

동산원광 유치원은 원기69년(1984) 4월 1일에 미술학원으로 설립되고 동년 4월 10일에 인가되어 원기71년(1986) 4월 23일에 유치원으로 변경되었다.

설립당시의 본 유치원은 전북 완주군 조촌면 반월리 242-1 원불교 동산교당에 주소를 하고 대지 30평, 건물 1동 14평의 규모를 갖추어 원장에 박지원교무가 임명되고 교사 1명이 20명의 원아를 교육하기에 이르렀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朴 智 圓(京姬)	女	1942. 7. 10	69. 4. 1~71. 2	
2	鄭 耕 雲(동석)	男	1938. 1. 5	71. 2 ~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469평, 놀이터 20평 그리고 건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강 의 실	2동 1동 법당에서	62	유 희 실	놀이지도	6
	1동 부속건물에서	14	양 호 실	환자보호	6
			원 장 실	원장집무실	

◇ 교사 : 2명(여), 원아수 : 45명(남20, 여25)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	20	7	13	20	7	13	원광미술학원
2	71	22	8	14	42	15	27	원광미술학원
3	72	26	6	20	68	21	47	동산원광유치원

29. 수원 원광 유치원

* **주소** : 수원시 교동 2-6
* **전화** : (0331) 7-1369
* **설립** : 원기69년(1984) 5월 19일
* **인가** : 원기70년(1985) 4월 22일

원 훈
참 되자
올바르자
감사하자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조대진교도회장의 회갑을 기념하고 전 교도의 숙원사업으로 유아교육을 실시하자는데 있다.

설립유공인 조대진회장의 특별희사로 총 공사비 13,736,639원이 소요되어 수원시 교동 2-6의 대지 315평에 기존 건물인 소법당을 개수하여 23.7평의 교실과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설립당시의 원장은 양윤성교무가 역임하고 1학급의 원아 22명을 교사 1명이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梁 潤 誠(今順)	女	1955. 4. 8	71. 3.~ 7.20	
2	洪 正 仁(永蘭)	〃	1950. 10. 7	72. 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315평, 놀이터 70평 그리고 건물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유 회 실	소법당 및 유회실	20.7
사 무 실	행정 업무 처리 및 교사실	3
기 타	대법당 및 부대 시설	176.3

◇ 교사 : 1명(여), 원아수 : 28명(남9, 여19)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2	22	10	12	22	10	12	

30. 밀양 원광 유치원

* **주소** : 밀양군 밀양읍 삼분동 162-4
* **전화** : (0527) 2-2804
* **설립** : 원기69년(1984) 6월 28일
* **원기** : 원기69년(1984) 9월 3일

원 훈
둥근마음(원만)
밝은마음(지혜)
바른마음(정의)

가. 설 립

교세의 활성화나 취학전 아동의 조기교육에 기여하고자 본 유치원이 설립되었으나 설립당시 놀이터의 기준 미달로 1년 내에 확장 이전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는 등 신축 이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설립당시의 주소는 밀양군 밀양읍 삼문동 285의 23번지였으며 대지 96평에 건물 1동 22평의 규모였다. 원장에는 김태열이 임명되고 교사 1명이 1학급의 원아 43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金 泰 烈(純宅)	男	1930. 7. 19	70. ~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21평, 놀이터 40평, 건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원 장 실	접무실·응접실	5
사 무 실	사무처리, 회의	10
교 실	수 업	42

〈이전신축 및 확장〉

구 분	연 월 일	주 소	시 설 내 용		시 설 경 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신축확장		밀양군 밀양읍 삼문동 162-6번지	원장실 사무실 원아실	5 10 42			

◇ 교사 : 2명(여), 원아수 : 82명(남47, 여35)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1	45	25	20	45	25	20	
2	72	79	44	35	124	69	55	

31. 연산 원광 유치원

* **주소** : 논산군 연산면 연산리 178-2
* **전화** : (0641) 8-0110
* **설립** : 원기69년(1984) 10월 23일
* **인가** : 원기70년(1985) 1월 16일

원 훈
슬기롭게
씩씩하게
진실하게

가. 설 립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교화활성화를 도모하자는데 설립동기를 두고 있는 본 유치원은 논산군 연산면 연산리의 대지 396평에 건물 1동 25평의 시설 규모를 갖추는데 5백만원이 소요되었다.

당시의 원장에는 김선영교무가 역임하고 교사 2명이 1학급 32명의 원아를 가르쳤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金 善 英(善英)	女	1950. 12. 26	70. 3. ~71. 2.28	
2	姜 淑 圓(仁淑)	〃	1952. 10. 7	71. 3. 4~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396평, 놀이터 70평, 건물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유 희 실	놀이, 무용	25
교 실	수 업	25
사 무 실	사무처리, 회의	3

◇ 교사 : 1명(여), 원아수 : 29명(남17, 여12)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1	30	15	15	30	15	15	
2	72	28	15	13	58	30	28	

32. 장흥 원광 유치원

* **주소** :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08-5
* **전화** : (0665) 2-3581
* **설립** : 원기69년(1984) 10월 28일(유아원)
* **인가** : 원기70년(1985) 10월 17일(유치원)

원 훈
아름답게 가꾸자
슬기롭게 배우자
씩씩하게 자라자

가. 설 립

설립하게 된 동기는 원불교를 모르는 지역사회에 유아교육을 통해 원불교를 인식시키고 봉사를 하며, 어린이교화를 통해 부모교육과 일반교화를 도모하자는데 있다.

설립유공인 김정인 의정부 교도회장의 특별희사금 350만원과 현금 등 총 700만원의 경비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 7구 708-5의 대지 98평에 건물 1동 50평의 시설을 갖추어 원장에 김정덕교무가 임명되고 교사 2명이 1학급 27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金 正 德(金順)	女	1946. 8. 26	70. 3. 5~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98평, 놀이터 30평, 건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보 통 교 실	수업진행	9 6
유 희 실	놀이, 무용	5 8
원 장 실		5 2

◇ 교사 : 3명(여), 원아수 : 42명(남22, 여20)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1	27	18	9	27	18	9	유아원졸업
1	72	40	26	14	67	44	23	유치원졸업

33. 속초 원광 유치원

* **주소** : 속초시 동명동 443-1
* **전화** : (0392) 32-0873
* **설립** : 원기69년(1984) 12월 26일
* **인가** : 원기70년(1985) 2월 15일

원 훈
냇물처럼 맑게
태양처럼 밝게
잣대처럼 바르게

가. 설 립

본 유치원의 설립동기는 원불교의 교육·교화·자선의 3대 목표인 설립정신에 바탕하여 취학전 아동들에게 적절한 학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심신발육의 건전한 발전과 종교적·도덕적 신념을 길러주고 민주시민의 육성에 두고 있다.

설립당시의 본 유치원은 속초시 동명동 443-1의 대지 203평에 건물 3동 59평과 놀이터의 규모를 갖추어 원장에 최인춘교무를 임명하고 교사 1명이 50명의 유아를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崔 仁 春(春江)	女	1944. 11. 11	70. 3.~71. 2.	
2	徐 爲 眞(松柱)	〃	1944. 12. 23	71. 3.~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03평, 놀이터 100평, 건물 59평 (놀이실, 학습실)

◇ 교사 : 2명(여), 원아수 : 53명(남34, 여19)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1	23	10	13	23	10	13	
2	72	18	9	9	41	19	22	

34. 통영 원광 유치원

* **주소** : 충무시 도천동 37
* **전화** : (0557) 2－4324
* **설립** : 원기70년(1985) 1월 4일

원 훈
둥 글 게

가. 설 립

설립동기는 교육·교화·자선 3대 목표의 원불교 설립정신에 근본하여 교육법에 정한 정신으로 취학전 아동들에게 깨끗하고 밝은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협동과 봉사·자립정신을 함양시키며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종교적·도덕적 신념을 길러 주어 민주시민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데 있다.

서세원교도외 일반교도의 공로에 힘입어 특별회사 2,165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어 충무시 도천동 37－2의 대지 325평에 건물 2동 64평과 화장실 5평, 놀이터 88평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의 원장은 최영명교무가 역임하였고, 교사 3명이 2학급의 원아 80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崔 靈 明(芝順)	女	1938. 3. 5	70. 1. 4～71. 2.26	
2	沈 益 舜(敬任)	〃	1931. 12. 25	71. 2.26～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325평, 놀이터 88평, 건물 69평(교실·응접실·화장실)

◇ 교사 : 3명(여), 원아수 : 80명(남35, 여45)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1	74	40	34	74	40	34	
2	72	77	40	37	151	80	71	

35. 삼랑진 원광 유치원

* **주소** : 밀양군 삼랑진읍 송지리 166－32
* **전화** : (0527) 6－2511
* **설립** : 원기70년(1985) 6월 29일
* **인가** : 원기70년(1985) 9월 1일

원 훈
착하게
슬기롭게
씩씩하게

가. 설 립

어린이교화와 일반교화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의 유아교육에 기여하고자 설립하게 되니 본 유치원은 특별희사금 1,600만원과 부채 5백만의 기금으로 밀양군 삼랑진읍 송지리 166－32의 대지 237평에 건물 3동 60평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의 원장에는 김기덕교무가 역임하고 교사 2명이 1학급의 원아 45명(남 20, 여 25)을 교육하였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金基德(英子)	女	1947. 6. 14	67. ～70.	
2	宋仁明(春)	〃	1946. 1. 16	71. ～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37평, 놀이터 30평 그리고 건물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유 희 실	법당, 학습 겸용	25
원 장 실	사무실 겸용	2
양 호 실	사무실 겸용	2

◇ 교사 : 2명(여), 원아수 : 27명(남12, 여15)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45	20	25	45	20	25	
2	69	25	10	15	70	30	40	
3	70	33	13	20	103	43	60	
4	71	34	23	11	137	66	71	
5	72	23	11	12	160	77	83	

36. 남춘천 원광 유치원

* **주소** : 춘천시 효자 2동 697-33
* **전화** : (0361) 2-6918
* **설립** : 원기70년(1985) 10월 31일

원 훈
태양처럼 밝게
샘물처럼 맑게
잣대처럼 바르게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종법사의 유아교육 유시를 받들어 교화의 불모지인 강원도 교화의 활성화를 꾀하고 취학전 아동의 유아교육에 기여코자 함이다.

김남명교무의 특별한 관심과 공로로 특별회사금 800만원과 현금 2,000만원 그리고 6,000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춘천시 효자 2동 697-33의 대지 174평에 건물 1동 154평의 규모로 갖추게 되었다.

설립당시 원장에는 김남명교무가 역임하고 교사 3명이 2학급의 원아 120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金 南 明(貞禮)	女	1945. 11. 1	70. 3. 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74평, 놀이터 100평, 건물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2 층 법 당	웅변학원 · 유치원 · 유원장 (백합반, 목련반)	70
1 층 2 간	교실 (수련반, 연화반)	70
원 장 실(1층)		4
급 식 실 〃		6
사 무 실 〃		4
아 가 방 〃	개나리반 교실	8

◇ 교사 : 4명(여), 원아수 : 250명(남140, 여110)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2	120	70	50	120	70	50	

37. 강남 원광 유치원

* **주소** : 서초구 도곡동 511－6
* **전화** : (02) 574－8849
* **설립** : 원기70년(1985) 11월 27일
* **인가** : 원기70년(1985) 12월 19일

원 훈
어린이를 슬기롭게
어린이를 천진스럽게

가. 설 립

교화도량에서의 유아교육은 종교적·도덕적인 발달은 물론 아동과 부모의 교육연계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동기에서 본 유치원이 설립하게 되었다.

총 2,500만원의 경비를 들여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11－6의 대지 293.3평에 건물 1동 227.6평의 규모를 갖추고 원장에 박청수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3명이 2학급의 원아 43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朴 淸 秀(姬淑)	女	1938. 10. 21	71. 3. 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93.3평, 놀이터 65.75평, 건물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유 희 실	보통교실 2개	35.76
	교 무 실 1개	6.33

◇ 교사 : 3명(여), 원아수 : 54명(남27, 여27)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2	46	24	22	46	24	22	

38. 당리 원광 유치원

* **주소** :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212
* **전화** : (051) 29－0415
* **설립** : 원기71년(1986) 2월
* **인가** : 원기72년(1987) 2월 26일

원 훈
등 글 게
바 르 게

가. 설 립

교화와 교육의 목적으로 현금 100만원과 부채 1,000만원으로 설립된 본 유치원은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212의 대지 200평에 건물 1동 60평의 규모를 갖추고 원장에 최영명교무가 임명되고, 교사 2명이 1학급 20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시설의 미비와 신학기가 지난 상태에서의 개원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부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崔 靈 明(芝順)	女	1939. 3. 5	71. 2.27～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00평, 놀이터 60평, 건물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교 실	수 업 용	60평(2개)	양 호 실	환자보호실	2평
사 무 실	집 무 실		화 장 실		3평

◇ 교사 : 2명(여), 원아수 : 59명(남32, 여27)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2	22	11	11	22	11	11	

39. 울산 원광 유치원

* **주소** : 울산구 중구 교동 256－21
* **전화** : (0522) 2－4310
* **설립** : 원기71년(1986) 3월 6일
* **인가** : 원기71년(1986) 2월 17일

원 훈
참되게 가꾸자
슬기롭게 배우자
씩씩하게 자라자

가. 설 립

설립동기는 교화·교육의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봉사와 국가사회의 공헌을 목적하고 설립하게 된 바 허용과 박진복화 외 교도일동의 공로로 7천만원의 회사금을 포함하여 총 1억원의 경비를 들여 울산시 중구 교동 256－21의 대지 212평에 건물 1동 55평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의 원장에는 문국선교무가 역임하고 교사 4명이 2학급의 원아 96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文 國 善(文順)	女	1941. 11. 22	71. ～	원 장
	張 珠 玄(玉順)	〃	1955. 1. 19	71. ～	원 감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12평, 놀이터 120평, 건물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유 희 실 2	교 실 2	40
사 무 실	사 무 실(자 료 실)	5
화 장 실	화 장 실	10
원 장 실(기존)	원 장 실	5
양 호 실(기존)	양 호 실	3
대 강 당(기존)	대 강 당	40

◇ 교사 : 2명(여), 원아수 : 83명(남40, 여43)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2	73	33	40	73	33	40	

40. 포항 원광 유치원

* **주소** : 포항시 죽도 2동 32-2 1통 7반
* **전화** : (0562) 74-3478
* **설립** : 원기72년(1987) 1월 24일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종법사의 유아교육 유시를 받들어 지역의 유아교육과 교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설립기금 현금 500만원과 특별회사 500만원의 총 1,000만원으로 포항시 죽도 2동 32-2의 대지 200평에 건물 2동 200평의 시설규모를 갖추었으며 원장에 유경희교무가 역임하고 교사 3명이 2학급의 원아 85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柳 敬 熙(京淑)	女	1943. 9. 9	72. 1.24~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50평, 놀이터 10평, 다음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유 희 실	교실 2간	40	놀 이 터	놀이지도	8
사 무 실		2			

◇ 교사 : 2명(여), 원아수 : 77명(남40, 여37)

41. 해남 원광 유치원

* **주소** :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250
* **전화** : (0634) 2-3752
* **설립** : 원기72년(1987) 1월 31일

원 훈
햇빛처럼 밝게
냇물처럼 꾸준히
꽃처럼 아름답게

가. 설 립

본 유치원은 원기72년(1987) 1월 31일에 인가되고 동년 3월 7일에 개원 및 입학식을 하였다.

본 유치원의 설립동기와 방침은 교육과 보육의 병행과 과학과 도학교육의 원만한 인간상 구현, 종교심 앙양으로 인한 인성지도의 강화에 두고 있다.

나. 현 황

◇ 원아현황

구분 / 성별	4~6세	6세	7세	계	비 고
남	6	4	6	16	
여	4	4	7	25	
계	10	8	13	41	

◇ 교 사

구분 / 성별	1학급	보 조	원 장	계
여	2	1	1	4

42. 남서울 원광 유치원

* **주소** : 서울 동작구 흑석동 1-3
* **전화** : (02) 812-4798
* **설립** : 원기68년(1983) 10월

원 훈
착 하 게
바 르 게

가. 설 립

본 유치원은 원기68년(1983) 10월에 원광 유아원으로 설립과 동시에 인가되어 원기72년(1987) 3월에 원광유치원으로 설립되었다.

설립동기는 서울회관 건립 목적사업인 복지·교화·교육·훈련에 바탕하여 본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동작구 흑석동 1-3의 대지 1,942평에 건물 1동 105평과 놀이시설이 규모를 갖추는데 1,300만원의 경비가 소요 되었으며 원장에 유현정교무가 역임하고 교사 2명이 2학급의 원아 65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柳 玄 正(賢秀)	女	1940. 11. 4	68.12. 2~71. 2.20	
2	朱 正 宣(貞一)	〃	1927. 3. 27	72. 3. 6~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942평, 놀이터 80평, 다음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착 한 반	교 실	32.34	화 장 실		7.84
예 쁜 반	교 실	25.14	취 사 실		3.50
교 사 실		12.46	복 도		14.70
원광아동상담실		10.00	계		105.98

◇ 교사 : 4명(여), 원아수 : 67명(남33, 여34)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	87	45	42	87	45	42	
2	71	68	36	32	155	81	74	
3	72	51	25	26	206	106	100	

〔2〕유 아 원

1. 대연 원광 새마을유아원

* **주소** : 부산시 남구 대연 2동 1204－39
* **전화** : (051) 645－3057
* **설립** : 원기63년(1978) 12월 23일

가. 설 립

본 유아원은 원기63년(1978) 12월 23일 인가와 동시에 설립되었다.

설립동기는 유아교육을 통해 어린이교화와 일반교화의 활성을 도모하자는데 있으며 특히 하묘원교도의 관심과 희사로 부산시 남구 대연 2동 1204－39의 대지 186평에 건물 2동 150평의 규모를 갖추고 원장에는 정연석교무가 역임하며 교사 3명이 2학급의 원아 100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鄭 蓮 石(奉順)	女	1943. 3.13	64. 2～67. 2	梁慧經교무
2	朴 舜 正(京子)	〃	1939. 3.23	67. 2～70. 2	
3	康 舜 常(春子)	〃	1941. 4.30	70. 2～71. 2	
4	南官善鳳(喜仙)	〃	1939. 8.17	71. 2～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86평, 놀이터 30평, 건물은 1, 2층의 150평이며 다음의 내용이다.

실 명	용 도	평
교 사 실	교사업무처리	1.5
자 료 실	교사자료 및 아동자료	1.5
폐 품 수 집 실	아동폐품수집	1
교 실	학 습(아동)	40
유 희 실	아동놀이(2층)	70
화장실·세면실	아동화장실, 세면	4
원장·양호·취사실	원장실, 양호실, 취사실	20
소 꿉 실	아 동 놀 이	2
기 타		12

〈이전신축 및 활동〉

구 분	연 월 일	주 소	시설내용		시 설 경 비		
			실 명	평	총 액	기 금	부 채
화 장	69	부산시 남구 대연			1,000만원		
세 면 장	〃	2동 1204-39	세면실	4			
화 장 실	〃		화장실	4			
취 사 실	〃		취사실	20			
교 사 실	〃		교사실	1.5			
자 료 실	〃		자료실	1.5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5	100	46	54	100	46	54	
2	66	100	52	48	200	98	102	
3	67	100	45	55	300	143	157	
4	68	105	55	50	405	198	207	
5	69	115	65	50	520	263	257	
6	70	105	58	47	625	321	304	
7	71	105	58	47	730	379	351	
8	72	98	58	40	828	437	391	

2. 유린 새마을유아원

*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572-2
* **전화** : (02) 433-1472
* **설립** : 원기64년(1979) 12월 28일
* **인가** : 원기64년(1979) 12월 19일

원 훈
냇물처럼 맑게
태양처럼 밝게
잣대처럼 바르게

가. 설 립

본 유아원은 원기64년(1979) 12월 19일에 인가되고 다음날인 12월 20일에 설립되어 운영해 오다가 원기72년(1987)에 재단법인 원불교에 인계 되었다.

본 유아원의 설립동기는 그동안 유린 보육원으로 운영해왔으나 운영이 어려워 유아교육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설립 유공인 한인해, 윤치덕교도의 특별한 신심과 서원으로 동대문구 신내동 572-2의 대지 1,062평에 5동 144평에 규모의 유아원을 본 교단에 회사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尹 致 德(貞植)	女	1900. 8.24	64.12.19~72. 8.31	
2	太 成 實(貞模)	〃	1950. 9.23	72. 9. 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062평, 놀이터 800평과 다음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교 실(1)	유아원 교실	42
교 실(2)	〃	39

◇ 교사 : 3명(여), 원아수 : 80명(남45, 여35)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6							
2	67							1~6회 졸업자 명단이 無(원불교 인수前)
3	68							
4	69							
5	70							
6	71							
7	72	11	6	5	11	6	5	

3. 이리 원광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이리시 남중 1가동 147-27
* **전화** : (0653) 3-2629
* **설립** : 원기65년(1980) 4월 14일
* **인가** : 원기65년(1980) 4월 1일

원 훈
아름답게 가꾸자
슬기롭게 배우자
씩씩하게 자라자

가. 설 립

설립동기는 김복환교무의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토회·교역자 자녀들의 교육기회의 제공과 혜택을 베풀며 지역사회의 기여에 두고 있다.

당시의 본 유아원의 규모는 이리시 남중동 1가 147-27의 대지 196평에 건물 212평을 갖추었으며 원장에 김복환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1명이 1학급의 원아 20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金 復 煥(復煥)	女	1938.12.10	65. 4. 1~71. 2.30	
	文 心 圓(正植)	〃	1953.11.15	65. 4. 1~67. 2. 1	원 감
	金 恩 珠(恩珠)	〃	1950.10. 6	67. 2. 1~	〃
2	高 圓 善(柔善)	〃	1947. 2. 3	71. 2. 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96평, 놀이터 96평 다음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교 육 실	교육학습 활동과 유희실	156
사 무 실	사무와 공사	6
화 장 실	용 변	6
취 사 실	중식·간식	6
창고자료실	비품실, 자료실	30
운 동 장	모 래 장	56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 업 년 도	배 출 수			누 계			실제입원한수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	65	20	8	12	20	8	12	40	18	22
2	66	106	56	50	126	64	62	140	82	58
3	67	113	60	53	239	124	115	186	91	95
4	68	90	59	31	329	183	146	200	120	80
5	69	96	62	34	425	245	180	200	115	85
6	70	90	56	34	515	301	214	215	125	90
7	71	90	69	21	605	370	235	165	85	80
8	72	96	50	46	701	420	281	186	95	91

4. 애월 원광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남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2152−1
* **전화** : (064) 99−0376
* **설립** : 원기65년(1980) 6월 3일
* **인가** : 원기65년(1980) 1월 6일

원 훈
방글방글 웃으며
슬기롭게 배우고
예쁘게 자라자

가. 설 립

어려운 농어촌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어 전인적인 인격의 발달을 도모하자는데 설립동기를 두고 특별희사금 1,000만원과 현금 500만원, 부채 500만원의 총 2,000만원의 경비를 들여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2/52-1의 대지 859평에 3동 83평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초대원장에 이명선교무가 역임되어 2명의 교사와 함께 2학급 80명을 교육하였다. 특히 설립당시 이명선교무는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등 교도와 자모들의 특별 봉사가 컸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 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李明善(鉉任)	女	1950. 3. 15	65~71	
2.	李守眞(琴月)	〃	1943. 4. 15	7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864평, 놀이터 250평, 건물 83평이며 건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법 당(교실)	유아원 유희실	44
교 실 2	〃	18

〈이전신축 및 확장〉

구 분	연월일	주 소	시설내용		시설경비		
			실 명	명	총 액	기 금	부 채
신 축	65.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2152-1	유희실	62			
			원장실	6			
			양호실	4	2천만원		

◇ 교사 : 2명(여), 원아수 : 46명(남23, 여23)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6	17	8	9	17	8	9	

2	67	19	9	10	36	17	19	
3	68	28	15	13	64	32	32	
4	69	20	9	11	84	41	43	
5	70	19	9	10	103	50	53	
6	71	12	6	6	115	56	59	

5. 영암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교동 2-4
* **전화** : (0693) 73-2354
* **설립** : 원기66년(1981) 1월 26일
* **인가** : 원기66년(1981) 7월 10일

원 훈
냇물처럼 맑게
햇빛처럼 밝게
꽃처럼 아름답게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어린이교화와 일반교화의 활성화를 고심하던 중 군 유아원을 위탁받게 되었다.

설립당시 본 유아원은 영암군 영암읍 교동 2-4의 대지 200평과 건물 1동 50평의 규모에 원장에는 유경희교무가 임명되고 2명의 교사가 2학급의 원아를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 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柳 敬 熙(京淑)	女	1943. 9. 9	66. 7~68. 1	
2	鄭 貴 圓(權柱)	男	1951. 1. 1	68. 2~69. 12	
3	朴 施 峻(俊一)	〃	1934. 3. 7	70. 1~71. 1	재가교도
4	梁 燦 熙(点熙)	女	1957. 1. 4	71. 2~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00평, 놀이터 148평

◇ 교사 : 2명(여), 원아수 : 56명(남30, 여26)

라. 졸업생 배출 현황

본 유아원은 제 6회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은 총 323명이다.

6. 신태인 평화 유아원

원 훈
아름답게 가꾸자
슬기롭게 배우자
씩씩하게 자라자

* **주소** : 정읍군 신태인읍 평화동 345
* **전화** : (0681) 4-2244
* **설립** : 원기66년(1981) 9월 12일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설립유공인 유화신교도의 특별한 공로에 힘입어 종법사의 유시를 받들고 지역의 봉사와 유아교육의 기여, 어린이교화 및 일반교화를 위해 본 유아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당시의 규모는 정읍군 신태인읍 평화동 345의 대지 40평의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원장에 김은신교무가 역임되고 1명의 교사가 1학급 30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金 恩 信(三玉)	女	1937. 12. 24	67~70	
2	李 維 寬(尹禮)	〃	1936. 5. 23	7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40평, 건물 1동(유희실, 소꿉실, 사무실)

◇ 교사 : 2명(여), 원아수 : 50명(남31, 여19)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30	16	14	30	16	14	
2	69	38	20	18	68	36	32	
3	70	36	22	14	104	58	46	
4	71	43	25	18	147	83	64	
5	72	45	30	15	192	113	79	

7. 장학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정읍군 정우면 장학리 563-2
* **전화** : (0681) 32-3574
* **설립** : 원기66년(1981) 9월
* **인가** : 원기68년(1983) 5월 4일

원 훈
방글방글 웃으면서
모두모두 고마워요
그래그래 도와줄께

가. 설 립

본 유아원의 설립동기는 지역내의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방안 및 바람직한 부모교육 지역사회 봉사교육의 목적에 두고 있다.

김정원교도회장의 공로에 힘입어 정읍군 정우면 장학리 장재동의 대지 24평에 유아원을 설립하여 원장에 김재한교도를 임명하고 교사 1명이 1학급의 원아 40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 대 원 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金正天(在漢)	男	1926. 10. 12	67~68	
2	文熙圓(英子)	女	1951. 8. 23	68~70	
3	鄭圓雅(圓子)	〃	1951. 1. 30	7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4평과 아래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교 실 운동장 화장실	• 유희, 작업, 이야기 나누기 등의 활동공간 • 시이소오, 그네, 미끄럼틀 등의 신체활동에 도움을 주는공간	

〈이전신축 및 확장〉

구 분	연월일	주 소	시설 내용		시설경비		
			실 명	평	총액	기금	부채
신 축	68	정읍군 정우면 장학리	교 실 운동장 화장실	24			

◇ 교사 : 1명(여), 원아수 : 34명(남19, 여15)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 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11	5	6	11	5	6	
2	69	13	7	6	24	12	12	
3	70	12	6	6	36	18	18	
4	71	13	7	6	49	25	24	

8. 양정 원광 유아원

* **주소** : 부산진구 양정 3동 352－26
* **전화** : (051) 82－1860
* **설립** : 원기66년(1981) 12월 6일
* **인가** : 원기66년(1981) 12월 16일

원 훈
둥 글 게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진정한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조기교육에 있다.」고 원기50년 중반부터 부촉한 종법사의 유시를 받들어 본 교당 교화, 유지, 교육의 삼방면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다.

설립유공인 김성수, 조도춘, 김명덕, 이양전화, 김진선교도의 협력으로 특별희사금 1,500만원과 비품희사 400만원 상당 그리고 부채금 100만원의 총 1,900만원의 기금으로 부산시 진구 양정 3동 356－26의 대지 152평에 건물 1동 150평의 시설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설립과정시에 충분한 기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교육의 의미와 신념만 가지고 시작한 사업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랐다.

일부 요인들의 비협조속에 2,000여만원의 회사금을 마련한 점

유아 모집시일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선인가 후시설의 애로 점

시설 완료이후의 이웃 5개 유아교육기관과의 경쟁 모집의 문제에 임직원이 총동원하여 호가 방문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당시의 원장에는 김장원교무가 역임하고 교사 4명이 3학급의 원아 114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金長源(香基)	男	1942. 5. 2	67. 3. 17～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52평, 건물 150평.

◇ 교사 : 6명(여), 원아수 : 149명(남81, 여68)

〈이전신축 및 확장〉

구 분	연월일	주소	시설내용		시설경비		
			실 명	평	총액	기금	부채
기존시설을 개조하였음			원장실 씨앗반 새싹반 열매반 놀이실 양호실 대강당 놀이터 보온실 공양실 교무실		1천6백만원	1천5백만원	1백만원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99	49	50	99	49	50	
2	69	119	74	45	218	123	95	
3	70	140	61	79	358	184	174	
4	71	154	91	63	512	275	237	
5	72	137	71	66	649	346	303	

9. 운봉 원광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남원군 운봉면 동천리 462-2
* **전화** : (0671) 34-0039
* **설립** : 원기67년(1982) 2월 6일

원 훈
햇님처럼 둥글둥글
사이좋게 방실방실
씩씩하게 자라자

가. 설 립

원기 67년(1982) 2월 6일에 설립·인가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북 남원군 운봉면 동천리 462-2의 주소에 대지 600평, 건물 2동 38평의 규모를 갖추는데 총 공사비 12,390만원(정부보조 5,500만원, 현금 6,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원장에는 김대훈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2명이 2학급의 원아 56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金 大 薰	男		67. 3. 15~68. 10. 14	
2	崔 素 圓(順禮)	女	1948. 1. 6	69. 1. 22~70. 2. 16	
3	洪 正 仁(永蘭)	〃	1950. 10. 7	70. 2. 16~72. 1. 18	
4	柳 理 鏡(春子)	〃	1143. 10. 26	72. 3. 23~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600평, 놀이터 100평이며 건물은 아래와 같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유 원 장		400	화 장 실		3
유 희 실		35	사 무 실		3
목 욕 탕		3			

◇ 교사 : 2명(여), 원아수 : 60명(남38, 여22)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52	23	29	52	23	29	
2	69	50	24	26	102	47	55	
3	70	50	23	27	152	70	82	
4	71	54	24	30	206	94	112	
5	72	60	32	28	266	126	140	

10. 서면 원광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부산진구 부암 1동 80－39
* **전화** : (051) 805－3359
* **설립** : 원기67년(1982) 3월 15일
* **인가** : 원기67년(1982) 12월 31일

원 훈
착한 어린이
명랑한 어린이
씩씩한 어린이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교당이 자리잡게 됨으로써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천심 불심 성심의 품성을 기르고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고자 함이었다가 새마을 유아원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유공인 김성진, 정정기화, 도진월, 조명근, 양봉진, 강덕성화, 김정윤, 박귀인, 박기만, 박금윤, 윤만덕화, 박익순, 정도인, 신행업, 이법순, 박영심, 양만규, 엄정경화, 김관옥교도의 협력으로 특별회사 2,000만원과 현금 400만원, 부채 600만원의 총 기금 3,000만원을 들여 부산시 진구 부암 1동 80－39의 대지 241평에 건물 2동 222평과 옥상에 수영장 및 실외 놀이터의 시설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초대원장은 이혜정교무가 역임하였고 교사 3명이 2학급의 원아 95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李 慧 定(愛子)	女	1937.12. 9	67～70	
2	朴 圓 錫(惠子)	〃	1941. 9.28	7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41평, 놀이터 30평 그리고 다음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원장실	원장님 집무실		유희실	3학급(3개)	
사무실	사무실및 양호실 활용, 도서및 비품 비치		강 당	법당 및 전체모임 활용	

◇ 교사 : 4명(여), 원아수 : 121명(남71, 여50)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7	95	52	43	95	52	43	
2	68	90	40	50	185	92	93	
3	69	95	35	60	280	127	153	
4	70	106	52	54	386	179	207	
5	71	118	67	51	504	246	258	

11. 관촌 원광 새마을 유아원

원 훈
햇빛처럼 밝고
냇물처럼 맑고
꽃처럼 아름답게

* **주소** :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501-6
* **전화** : (0673) 42-0071
* **설립** : 원기67년(1982) 3월 16일

가. 설 립

본 유아원의 설립동기는 아동의 조기교육을 통해 본 교의 이념인「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를 실현하고 지역의 교화를 위함에 있다.

설립당시의 본 유아원의 규모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 501-6의 대지 100평에 건물 1동 48평이었으며 초대원장에는 정상훈교무가 역임하게 되었고 2명의 교사가 2학급 109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鄭常薰(英子)	女	1942. 8. 15	67. 3. 16~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373평, 놀이터 299평 그리고 아래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교 실	유회실, 영역실 교실	48
급 식 실	유아들 급식 및 교실	12
창 고	교재•교구 저장 실외놀이기구 보관 및 폐품 등 자료 정리	6
사 무 실	원장님 이하 교사 이용 학부모 상담소·양호실로 사용	8
놀 이 터	여러가지 실외기구 배치 모래영역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	299
화 장 실	유아용 소변기, 대변기 설치 사용	

〈이전신축 및 확장〉

구 분	연월일	주 소	시설내용		시설경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68	전북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501~6		48	1, 600	600	1,000 정부보조

◇ 교사 : 3명(여), 원아수 : 95명(남52, 여43)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 출 수			누 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88	58	30	88	58	30	
2	69	72	45	27	160	103	57	
3	70	72	41	31	232	144	88	
4	71	76	43	33	308	187	121	
5	72	77	40	37	385	227	158	

12. 함열 원광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익산군 함열읍 와리 201-4
* **전화** : (0653) 6-0366
* **설립** : 원기67년(1982) 3월 20일
* **인가** : 원기68년(1983) 6월 1일

원 훈
둥 글 게
슬기롭게
씩씩하게

가. 설 립

본 유아원 설립동기는 보호자의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아동을 수학 보호하므로써 건전 보호 육성과 전인적 인간구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봉사 및 농촌 새마을 사업의 일익을 담당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립유공인 신경란교도의 협조로 익산군 함열읍 와리 201-4의 대지 350평에 건물 1동 68평의 규모를 갖추고 원장에 전경화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1명이 1학급의 원아 23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 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全敬和(永蘭)	女	1925. 9. 26	67~68	
2	朴道完(玉基)	〃	1937. 2. 23	69~	〃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350평, 놀이터 250평, 건물 68평, 건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교실 2간	원아 교육 및 유희실	48

◇ 교사 : 2명, 원아수 : 65명(남28, 여37)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20	8	12	20	8	12	

2	69	38	16	22	58	24	34	
3	70	35	20	15	93	44	49	
4	71	60	28	32	153	72	81	
5	72	53	25	28	206	97	109	

13. 황등 원광 유아원

* **주소** : 익산군 황등면 보삼리 999－140
* **전화** : (0653) 52－0875
* **설립** : 원기67년(1982) 8월
* **인가** : 원기68년(1983) 1월 14일

원 훈
맑 고
밝 고
바 르 게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전인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단법인 원불교의 후원을 얻어 지역사회의 유아교육에 공헌하고자 함에 있다.

설립당시의 규모는 익산군 황등면 보삼리 999－140의 대지 300평에 건물 3동 65평과 생활관 25평이었으며, 원장에 이주영이 임명되고 교사 2명이 1학급의 원아 43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李 珠 靈	女	1946. 7. 6	67～68	
2	崔 道 仁	〃	1947. 12. 18	69～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300평, 놀이터 100평, 건물 750평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교 육 실	원아교육장	20	창 고, 화장실	비품등	12
유 희 실	놀 이	20	조 리 실	간식, 중식	5
사 무 실	회 의		생 활 관		25

◇ 교사 : 2명(여), 원아수 : 84명(남53, 여31)

〈이전신축 및 확장〉

구 분	연월일	주 소	시설 내용		시설 경비		
			실 명	평	총액	기금	부채
신 축	66. 10. 25	황등면 보삼리 999-140	교육실	20			
			유희실	20			
			양호실	25			
			사무실	10			
			조리실		3,150		
			화장실	12			
			창 고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 출 수			누 계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120	12	108	120	12	108	
2	69	19	9	10	139	21	118	
3	70	34	16	18	173	37	136	
4	71	30	18	12	203	55	148	
5	72	38	23	15	241	78	163	

14. 강경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논산군 강경읍 북옥동 109-4
* **전화** : (0641) 4-0222
* **설립** : 원기67년(1982) 9월 1일
* **인가** : 원기67년(1982) 1월 28일

가. 설 립

설립동기는 교당 교화의 활성화와 대산 종법사의 유시에 따라 어린이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본 유아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특별한 유공인이 없이 교무와 교도의 혈성으로 13,890,000원의 기금으로 충남 논산군 강경읍 북옥동 109-4의 대지 589평에 건물 1동 90평의 시설규모 및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다.

초대원장에는 이덕조교무가 역임하고 교사 2명이 1학급의 30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 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李德照(敬子)	女	1940. 8. 4	67. 9. 1~71. 2. 24	
2	金仁卿(仁卿)	〃	1951. 9. 23	71. 2. 24~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589평, 놀이터 439평 다음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원장실	법당 생활관	법당, 생활관, 유아원교실 1개	100
(양호실, 식당)	유아원 1채	교실 2개	30
(유희실)	화장실	실외	20

〈이전신축 및 확장〉

구 분	연월일	주 소	시설내용		시설경비		
			실 명	평	총액	기금	부채
담장, 화장실	82(61)	강경읍 북옥동 109-4	화장실	20	890,000		890,000
교 실	67	〃	교 실	30	700만		700만
놀이기구		〃	놀이기구		300만		300만
차 량		〃	봉고12人		300만	(교도적극적)	300만

◇ 교사 : 5명(남1, 여4), 원아수 : 87명(남51, 여36)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2	70	45	23	22	45	23	22	
3	71	39	18	21	84	41	43	
4	72	60	34	26	144	75	69	

15. 청학 원광 유아원

* **주소** : 부산시 영도구 청학 2동 31 21통1반
* **전화** : (051) 49-5919
* **설립** : 원기67년(1982) 12월 6일
* **인가** : 원기68년(1983) 3월 10일

원 훈
기 쁨
슬 기
예 쁨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유아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어린이, 젊은 교도의 교화를 하고자함이다.

설립유공인 이영신화, 성도영 등 교도들의 협력속에 특별회사 3,395,000원과 부채 6,500,000을 들여 부산시 영도구 청학 2동 31 21/1의 대지 121평에 건물 1동 85평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원장에 김성효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2명이 1학급의 원아 55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金性孝(貞善)	女	1953.12.6	68. 3. 10~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21평, 놀이터 40평 그리고 다음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교 실 ②	원아 교육	30	유 희 실 (법 당)	원아 전체 교육장	30
교 사 실	교육준비물	4	화 장 실		5
양호실(식당방)	원아휴식, 응급간호	4			

◇ 교사 : 4명(여), 원아수 : 92명(남47, 여45)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47	30	17	47	30	17	
2	69	44	27	17	91	57	34	
3	70	68	35	33	159	92	67	
4	71	81	45	36	240	137	103	
5	72	92	47	45	332	184	148	

16. 혜화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종로구 명륜동 4가 1
* **전화** : (02) 743-2694
* **설립** : 원기67년(1982) 12월 28일

가. 설 립

본 유아원은 원기67년(1982) 12월 28일에 설립과 동시에 인가되었다.

설립동기는 정부가 각 기관 단체에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유아원을 설립 할 때 위탁 운영체가 되어 건실한 교육, 책임있는 운영 담당을 해보고자 함에 있다.

설립당시의 규모는 서울시 종로구 명륜 4가 1번지의 대지 89.33평과 건물 89.33평에 시설을 갖추고 원장에 이정무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2명이 1학급의 원아 67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李正務(正務)	女	1934. 1. 3	67. 12. 28~71. 3. 4	
2	金一相(炯斗)	男	1948. 2. 7	71. 3. 5~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89.33평, 놀이터 89.33평(옥상 모래밭) 그리고 다음과 같은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유희실	놀 이	34.20	취침실	유아 휴식	10.11
급식실	식 당	7.04	화장실		10.11
취사실	간식, 증식	9.71	기 타	비 품	11.13
사무실	회 의	7.03			

◇ 교사 : 3명(여), 원아수 : 88명(남42, 여46)

라. 졸업생 배출 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67	40	27	67	40	27	
2	70	70			137			
3	71	69	29	40	206			
4	72	59	29	30	265			

17. 안동 원광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안동시 옥정동 99-3
* **전화** : (0571) 2-2052
* **설립** : 원기68년(1983) 2월 15일

가. 설 립

본 유아원은 원기68년(1983) 2월 15일에 설립 인가 되었다.

대산 종법사의 유시에 따라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사회의 봉사와 교화의 활성을 도모코자 본 유아원은 설립하게 되었다.

당시의 규모는 안동시 옥정동 99-3의 대지 200평에 건물 2동 80평의 시설을 갖추고 원장에 최강연교무가 역임하고 교사 2명이 2학급의 원아 78명을 교육하는 교육장이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崔康然(金佐)	女	1942. 5. 2.	68. 2.15~69. 2.13	
2	鄭守德(金珠)	〃	1937. 7. 27.	69. 2.14~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660평, 놀이터 200평 그리고 다음의 건물이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법 당	전체모임장소	50		교사실〈집무실〉	5
교실2동	목련반교실(점심식사시)	25	취사장	간식, 중식제공	15
	백합반교실	20	세면실	목욕탕 1개, 세면대 5	10
	연꽃반교실(유희실)	40	화장실	남用2개 여用2개	4

◇ 교사 : 4명(여), 원아수 : 120명(남60, 여60)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50	20	30	50	20	30	
2	70	83	43	40	133	63	70	
3	71	87	47	40	220	110	110	
4	72	87	50	37	307	160	147	

18. 혜중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남원시 동충동 446-3
* **전화** : (0671) 2-2610
* **설립** : 원기68년(1983) 1월 1일
* **인가** : 원기68년(1983) 3월 1일

원 훈
둥근마음
밝은마음
착한마음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지역의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교육·보육하고 지역사회의 봉사·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립유공인 김혜중교도의 특별회사 4,000만원으로 남원시 동충동 446-2의 대지 525평에 건물 2동 62평과 놀이시설 및 교구를 갖추게 되었으며 초대원장에는 김덕현교무가 역임되고 2명의 교사가 2학급의 원아 65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金 德 賢(恭淑)	女	1939. 5. 31	68~70	
2	張 正 現(在洙)	男	1923. 4. 2	70~	

다. 현 / 황

◇ 시설규모 : 대지 525평, 놀이터 65평, 건물 62평 (유희실 40평, 급식실 20평) 건물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유희실	놀 이	42
원장실	집 무	3
양호실	응 급 치 료	3

〈이전신축 및 확장〉

구분	연월일	주소	시설내용		시설경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개축	67	남원시 동충동 446-2	유회실	42		4천만원	
			원장실	30			
			양호실	3			
			급식실	20			

◇교사 : 3명(남1, 여2), 원아수 : 70명(남30, 여40)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56	30	26	56	30	26	
2	69	63	30	33	119	60	59	
3	70	74	51	23	193	111	82	
4	71	71	37	34	264	148	116	

19. 도순 원광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서귀포시 도순동 802-1
* **전화** : (064) 32-0561
* **설립** : 원기68년(1983) 3월 2일

원 훈
아름답게 가꾸자
슬기롭게 배우자
튼튼하게 자라자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지역에 유아원이 없는 관계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아원 설립이 절실했으며, 초창교당의 교화와 지역의 유대관계를 도모코자 함에 있다.

설립당시의 규모는 서귀포시 도순동 802-1번지의 대지 483평에 건물 2동 57평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초대원장에는 김인진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1명이 1학급의 원아 24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金仁眞(寶培)	女	1949. 7. 24	68. 3. 2~69	
2	李宗寬(順終)	〃	1952. 10. 19	69 ~71	
3	林德盛(根淑)	〃	1950. 12. 15.	71 ~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473평, 놀이터 200평, 다음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유희실	유아들의 일체생활하는 곳	30

◇ 교사 : 1명(여), 원아수 : 45명(남23, 여22)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17	10	7	17	10	7	
2	70	13	7	6	30	17	13	
3	71	17	8	9	47	25	22	
4	72	19	9	10	66	34	32	

20. 영산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남원군 이영면 청계리 30
* **전화** : (0671) 32-5031
* **설립** : 원기68년(1983) 3월 7일
* **인가** : 원기68년(1983) 10월 3일

원 훈
둥근마음 가진 어린이

가. 설 립

본 유아원의 설립동기는 교육의 기회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전인적인 인간발달을 도모하자는데 있으며, 또한 교화와 교육의 연계를 이루고자 함에 설립의 동기를 두고 있다.

설립당시 본 유아원은 남원군 아영면 청계리 30의 대지 135평에 건평 33평의 규모를 갖추었으며 초대원장에 정준원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2명이 1학급의 원아 47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鄭俊圓(俊順)	女	1945. 5.18	68. 3. 7	
2	沈正秀(櫻順)	〃	1954. 5.11		
3	李如正(如正)	〃	1953. 3.26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35평, 놀이터 80평이며 다음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80	세면장	손씻기, 청결유지	1
사무실	교사실무	2	화장실	대·소변 가리는 곳	2
유희실	실내놀이	18	조리실	영양공급	2

◇ 교사 : 2명(여), 원아수 : 50명(남27, 여23)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	47	20	27	47	20	27	
2	71	50	26	24	97	46	51	
3	72	50	30	20	147	76	71	

21. 원평 원광 유아원

* **주소** : 김제군 금산군 쌍용리 476-9
* **전화** : (0658) 43-0061
* **설립** : 원기68년(1983) 3월 15일
* **인가** : 원기68년(1983) 11월

원 훈
참되게 살자
슬기롭게 살자
부지런히 살자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이철원 종로교도회장과 김명환주무가 선친 이득춘선생과 한정보화선생의 명복을 기리기 위하여 고향인 원평교당에 유아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설립당시의 본 유아원은 전북 김제군 금산면 창용리의 대지 600평에 건물 1동 50평의 시설을 갖추고 원장에 이양신교무가 역임되어 교사 4명과 함께 2학급의 원아 90명을 교육하는 규모가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李 良 信(良信)	女	1941. 6. 26	68. 3. 15~	원평교당교무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600평, 놀이터 500평, 다음 내용의 건물이 있다.

실명	용도	평
유희실	2	40
사무실, 양호실	1	5
취사실	1	5

◇ 교사 : 3명(여), 원아수 : 82명(남42, 여40)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78	38	40	78	38	40	
2	69	63	33	30	141	71	70	
3	70	75	40	35	216	111	105	
4	71	75	40	35	291	151	140	

22. 한림 원광 유아원

* **주소** :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546
* **전화** : (064) 96－3028
* **설립** : 원기68년(1983) 3월 20일

가. 설　　립

설립동기는 무연지 개척 교당으로 교화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의 장을 제공하여 교화 교육의 역할을 하기위함에 있다.

설립유공인 이광철교도의 협력속에 특별회사 2,200만원과 부채 1,000만원, 현금 300만원의 총 3,500만원의 기금으로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546의 대지 308평과 건물 2동 61평, 화장실 놀이시설을 갖춘 규모로 고진양교무가 원장으로 부임하여 교사 2명과 2학급의 원아 65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高 眞 陽(正子)	女	1949. 3. 30.	68. 3. 20～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308평, 놀이터 120평 그리고 다음 내용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유희실(1)		36	자 료 실	비 품	2평
〃 (2)		10	양 호 실	응급치료	2.5평
원 장 실	집 무	2	취 사 실	증식, 간식	2.5평
사 무 실	회 의	3			

〈이전신축 및 확장〉

구 분	연월일	주 소	시 설 내 용		시 설 경 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확 장	71. 8.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546	사무실	2.5	290만	290만	
〃	72. 8.	〃	유희실	7	330만	130만	200만

◇ 교사 : 3명(여), 원아수 : 120명(남70, 여50)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20	10	10	20	10	10	
2	70	20	12	8	40	22	18	
3	71	40	23	17	80	45	35	
4	72	50	37	13	130	82	48	

23. 감곡 원광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정읍군 감곡면 방교리 622-3
* **전화** : (0681) 4-3009
* **설립** : 원기68년(1983) 4월 1일
* **인가** : 원기69년(1984) 4월 9일

원 훈
참되게 살자
슬기롭게 살자
부지런히 살자

가. 설 립

본 유아원이 설립하게 된 동기는 소외되어 가고 있는 농촌지역에 원불교 정신에 바탕한 도덕적인 인성의 계발과 전인적인 교육을 하고자 함이다.

전용현 교도회장과 교도 일동의 협력으로 정읍군 감곡면 방교리 622-3의 대지 500평에 건물 40평을 설립하여 교실 겸 법당으로 사용하였다.

초대원장에 양재원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1명이 1학급의 원아 30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梁在圓(善玉)	女	1947. 4. 1	68. 4. 1~71. 2. 20	
2	金亨模(姬順)	〃	1943. 10. 22	71. 2. 20~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500평, 놀이터 200평, 건물 40평의 건물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유 희 실	유아 실내교육	22	세 면 실	세면·목욕	2
사 무 실	유아교육에관한 일체사무	3	화 장 실		3
조 리 실	간식 및 중식 준비	5	기 타		5

〈이전신축 및 확장〉

구 분	연월일	주 소	시설내용		시설경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유아원신축준공	68.8.11	정읍·감곡·방교 622-3	유희실	22			
			사무실	3			
			조리실	5			
			세면실	2			
			화장실	3			
			기 타	5			
유아원신축	68.8.11	〃	유아원	40	600만원	600만원	

◇ 교사 : 1명(여), 원아수 : 40명(남25, 여15)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30	17	13	30	17	13	
2	70	48	25	23	78	42	36	
3	71	35	21	14	113	63	50	
4	72	29	17	12	142	80	62	

24. 평화 원광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전주시 평화동 1가 562
* **전화** : (0652) 84－2528
* **설립**:원기68년(1983) 4월 5일
* **인가** : 원기68년(1983) 9월 1일

원 훈
맑고 깨끗하게
밝고 슬기롭게
바르게 씩씩하게

가. 설 립

설립동기는 대산 종법사의 유아교육 유시를 받들고 국가시책에 응하여 지역에 공헌하고 봉사코자 함이다.

설립유공인 이수도의 협력과 전교도의 특별희사로 1,2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어 전주시 평화동 1가 540－6의 대지 320평에 건물 1동 40평의 시설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원장에 김제명교무가 임명되고 2명의 교사가 2학급의 원아 80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金濟明(明子)	女	1944. 9. 9	68. 4. 5～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320평, 놀이터 100평 그리고 다음 내용의 건물이다.

실 명	용 도	평
사무실	일체사무	4
유희실	유아실내교육	40
화장실		4

〈이전신축 및 확장〉

구분	연월일	주 소	시설내용		시설경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신축	71년		유희실	40	220,000,000		
			사무실	4	2,200,000		
			화장실	16	8,800,000		

◇ 교사 : 3명(여), 원아수 : 101명(남57, 여44)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44	23	21	44	23	21	
2	70	50	27	23	94	50	44	
3	71	55	30	25	149	80	69	
4	72	68	38	30	217	118	99	

25. 좌포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821
* **전화** : (0655) 32－9087
* **설립** : 원기68년(1983) 5월 2일
* **인가** : 원기68년(1983) 9월 1일

원 훈
아름답게 가꾸자
슬기롭게 배우자
씩씩하게 자라자

가. 설 립

설립동기는 농촌지역의 혜택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바른교육과 바람직한 인간상의 구현, 실현에 두고 있다.

설립기금 총 22,506,000원 현금 4,458,000원, 특별회사 10,048,000원, 정부보조 6,000,000원 부채 2,000,000원을 들여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821번지의 대지 180평에 건물 1동 45평의 시설을 갖추고 원장에는 이영덕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2명이 2학급의 원아 42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李永德(英子)	女	1939. 9. 20	68. 5. 2~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80평, 놀이터 90평 그리고 다음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교실		30	주방, 양호실, 목욕실		7
현관, 사무실, 자료실		8	화장실		3간

◇ 교사 : 2명(여), 원아수 : 36명(남24, 여12)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	11	7	4	11	7	4	
2	71	22	12	10	33	19	14	
3	72	21	13	8	54	32	22	

26. 월랑 유아원

* **주소** :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110-3
* **전화** : (0655) 2-2202
* **설립** : 원기66년(1981) 6월 1일
* **인가** : 원기68년(1983) 6월 1일

원 훈
맑고 깨끗하게
밝고 슬기롭게
바르고 씩씩하게

가. 설 립

본 유아원의 설립동기는 어린이 교육의 일환으로 원불교 진안교당에서 유아원 설립을 염원하던 중 진안군청에서 운영하던 유아원을 인수받게 되었다.

이성희교무와 교도일동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성에 의하여 설립된 본 유아원은 정부보조 1,200만원과 특별희사 1,500만원 그리고 부채 1,0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으며 설립당시의 규모는 전북 진안군 군하리 110-3번지의 대지 70평과 건물 1동 79평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초대원장에 이성희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2명이 1학급의 원아 40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李誠喜(鎭子)	女	45. 2. 7	68. 4. 6~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400평, 놀이터 150평 그리고 다음의 건물이 있다.

실명	용 도	평
유희실	담화 및 율동과 놀이실	40
놀이실	원아들 장난감 및 교재교구실	2
주방	중식 및 간식 준비실	2
원장실 및 생활관(2층)		30
화장실		3

〈이전신축 및 확장〉

구분	연월일	주 소	시설내용		시설경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68. 9. 15	군하리 110-3	유희실	40			
			놀이실	2			
			사무실	2			
			주 방	2			
			원장실	30			
			화장실	3			

◇ 교사 : 2명(여), 원아수 : 47명(남26, 여21)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44	24	20	44	24	20	
2	69	45	28	17	89	52	37	
3	70	43	24	19	132	76	56	
4	71	43	18	25	175	94	81	

27. 담양 천변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196-17
* **전화** : (0684) 83-2962
* **인가** : 원기59년(1974) 7월 1일(어린이 집)
* **설립** : 원기68년(1983) 3월 1일(유아원)

원 훈
높고(생각)
크고(꿈)
넓게(마음)

가. 설 립

본 유아원의 설립동기는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설립기금의 내역을 보면 현금 6,500만원과 특별회사 2,000만원, 부채 300만원 그리고 정부보조 3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설립당시의 규모는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196－17의 대지 165평과 건물 1동 100평의 시설을 갖추고 원장에는 박정혜교무가 역임되어 교사 3명과 함께 1학급의 원아 45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朴貞慧(東順)	女	1942. 3. 10	68. 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65평, 놀이터 40평 그리고 다음의 건물이 있다.

실명	용도	평
법당 및 교실	유희실 법회	65
교사실	교사실	4
양호실	교무님 방. 양호실	7
지하실	창고	10
자료실	자료보관	
화장실		5
식당	간식 및 중식 준비	4
세면장	목욕실 및 세면	3

〈이전신축 및 확장〉

구분	연월일	주소	시설내용		시설경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이전신축	70.11.16	담양군·읍 천변리196－17	유희실	65	6,200만원	2,300만원	300만원
			교사실	4			
			양호실	7			
			화장실	5			
			자료실	2			
			급식실	4			
			세면실	3			

◇ 교사 : 5명(여), 원아수 : 130명(남72, 여58)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8	56	30	26	56	30	26	
2	69	38	21	17	94	51	43	
3	70	34	18	16	128	69	59	
4	71	28	16	12	156	85	71	
5	72	49	25	24	205	110	95	

28. 금일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서울 성동구 금호 1가 산 37
* **전화** : (02) 234－8629
* **설립** : 원기68년(1983) 8월 29일

원 훈
참 되 자
올바르자
감사하자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지역주민의 생활이 영세민과 맞벌이 부부가 많으므로 소중한 자녀교육을 일부 담당하여 현시대에 요구되는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고 가정 사회 국가세계의 주인을 양육하고자 함이다.

설립당시의 본 유아원은 서울시 성동구 금호 1가 산 37번지의 대지 140평에 건물 1동 68평의 규모를 갖추고 원장에 황영규교무가 역임되어 교사 3명과 함께 3학급의 원아 120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黃英奎(淑熙)	女	1941. 7. 23	68. 8. 29～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40평, 다음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교실 1	유희실		관리실		
교실 2	작업실		양호실	응급치료	
교실 3	〃		화장실및 세면실		
교사실			자료실	비품	
취사실	간식, 중식				

◇ 교사 : 3명(여), 원아수 : 100명(남62, 여38)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120	62	58	120	62	58	
2	60	120	60	60	240	122	118	
3	71	113	74	39	353	196	157	
4	72	109	68	41	462	264	198	

29. 신정 3동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서울 양천구 신정 3동 1160－38
* **전화** : (02) 694－7036
* **설립** : 원기68년(1983) 9월 13일
* **인가** : 원기69년(1984) 4월 12일

원 훈
둥글둥글 둥근마음
서로서로 도우면서
씩씩하고 슬기롭게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따른 국가시책과 교화차원에 따라서 위탁운영하게 되었다. 설립기금 총 9,000만원, 현금 5,000만원, 특별희사 5,000만원, 정부보조 4,000만원이 소요

되어 서울시 강서구 신정 3동 1160-38의 대지 169.7평과 건물 84.65평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원장에는 박상진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3명이 3학급의 원아 120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朴 常 眞(德潤)	女	1948. 10. 5	69. 4~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69.7평, 놀이터 10평, 건물 84.65평, 건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 명	용 도	평
유희실	놀 이 지 도	23.23
유희실	〃	22.94
화장실 세면실		8.03
보일러실		8.59
홀 및 현관		8.92
창고(자료실)	비 품 보 관	2.46
급식(식당)	간 식, 중 식	4.01
양호실	응 급 치 료	2.77
교사실		3. 7

◇ 교사 : 3명(여), 원아수 : 115명(남58, 여57)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	120	63	57	120	63	57	
2	71	119	79	40	239	142	97	
3	72	108	56	52	347	198	149	

30. 덕진 원광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전주시 덕진동 1가 1420－2
* **전화** : (0652) 3－8971
* **설립** : 원기68년(1983) 10월 30일
* **인가** : 원기68년(1983) 11월 1일

원 훈
밝은 마음
맑은 마음
바른 마음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우리나라 미래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을 보다 착하고 슬기롭게 은혜를 알아 감사할 줄 아는 훌륭하고 원만한 인물을 교육하기 위하고자 함이다.

설립당시 본 유아원은 전주시 덕진동 1가 1420－2의 대지 160평과 건물 2동 140평의 시설을 갖추고 명예원장에 박민규교도·원장에 한도봉교무가 역임되어 교사 2명과 함께 2학급의 원아 80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朴 敏 圭	男	1940. 3. 14	69. 3. 1～71. 2. 28	〈명예 원장〉
	韓 道 鳳(貴洙)	女	1942. 10. 17	〃	〈실 무〉
2	柳 香 元(香)	女	1935. 1. 19	71. 3. 2～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60평, 놀이터 90평 그리고 다음 내용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유아원교실(2)	달님반, 햇님반(교실사용)	35
화장실	원아 화장실	3.5
사무실	교사 사무실	7.5
식 당	원아 취사실	13
세면장	원아 세면실	3.5

◇ 교사 : 3명(여), 원아수 : 80명(남45, 여35)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	43	24	19	43	24	19	
2	71	53	27	26	96	51	45	
3	72	49	24	25	145	75	70	

31. 고창 원광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고창군 고창읍 천북동 72
* **전화** : (0677) 2-2501
* **설립** : 원기69년(1984) 3월 19일
* **인가** : 원기69년(1984) 6월 1일

원 훈
방글방글 웃으며
모두모두 고마워요
그래그래 도와줄께

가. 설 립

유아교육으로 아동의 건전한 인격형성의 기초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지역의 교화를 활성화하고자 본 유아원을 설립하였으며 정부보조 600만원을 들여 고창군 읍내리 72의 대지 200평과 건물 1동 22평, 기타 조립식 건물을 지어 유아원의 규모를 갖추고 원장에 조남훈교무가 역임되고 2명의 교사가 1학급의 원아 56명을 교육하기에 이르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趙南薰(五順)	女	1940. 4. 10	69. 3. 19~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00평과, 놀이터 15평 그리고 다음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조립식 건물	유희실	22
법당 사용	유희실	15
	화장실	5
	놀이터	15
	세면장	2

◇ 교사 : 3명(여), 원아수 : 83명(남49, 여34)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52	23	29	52	23	29	
2	70	79	39	40	131	62	69	
3	71	65	28	37	196	90	106	

32. 종로 원광 새마을 유아원

가. 설 립

설립하게된 동기는 교당주변에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므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육과 양육의 기회를 주어 지역에 봉사하고 따라서 교화의 장을 넓히고자 함이다.

원불교 종로교당이 설립 유공인이 되어 3,000만원의 설립기금을 들여 본 교당인 종로구 낙원동 58-9의 대지 201평의 건물 중 일부 42평에 시설을 갖추었고, 원장에는 최세진교무가 역임하여 교사 2명과 함께 1학급의 원아 30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崔洗塵(順德)	女	1939. 2. 12	69. 3. 13~71. 2. 17	
2	李明善(鉉任)	〃	1950. 3. 15	71. 2. 18~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01평, 놀이터 62평, 건물 80평이며 건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유희실(3)	유 희	70	양호실	양 호	2
식 당	취 사	3	화장실(2)		6
교사실	사 무	2			

〈이전신축 및 확장〉

구 분	연월일	주 소	시설내용		시설경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지하실 확장	70	교당 지하실	유희실	40	2백만원		
담장. 화장실.	70	교당 1층건물내	화장실	6	3백만원		
세면대			세면대				

◇ 교사 : 3명(여), 원아수 : 120명(남65, 여55)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	30	16	14	30	16	14	
2	71	80	43	37	110	59	51	
3	72	120	65	55	230	124	106	

33. 약대 원광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부천시 약대동 144-20
* **전화** : (032) 62-0700
* **설립** : 원기69년(1984) 3월 20일

원 훈
둥근마음 가진 어린이
감사할줄 아는 어린이
내일내가 하는 어린이

가. 설 립

설립동기는 지역의 봉사와 교화를 도모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삼경교도의 발원으로 회갑

기념비 200만원을 특별희사 하므로써 새마을유아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기금은 특별희사 2,500만원과 부채 3,000만원의 총 5,500만원이 충당되었으며 이에 경타원 이삼경교도와 능타원 최혜심교도의 공로와 경호연·홍이성행·강진명화 등의 기도와 특별모금으로 유아원 준공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설립당시의 본 유아원은 부천시 약대동 144－20의 대지 105평과 건물 1동 100평의 시설을 갖추고 원장에 이성호교무가 역임되어 교사 1명과 함께 1학급의 원아 35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李性浩(順子)	女	1947. 9. 8	69. 3. 20～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05평, 놀이터 20평 그리고 다음 내용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교실 2간 유희실 1간	교 실	100

〈이전신축 및 확장〉

구분	연월일	주소	시설내용		시설경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신축	69. 3. 20	부천시 약대동 144－20		105	5천만원	2,500만원	3,000만원

◇ 교사 : 2명(남1, 여1), 원아수 : 35명(남17, 여18)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	30	15	15	30	15	15	
2	71	40	17	23	70	32	38	
3	72	32	16	16	102	48	54	

34. 태인 육리 유아원

원 훈
예 쁘 게
착 하 게
무럭무럭

* **주소** : 정읍군 태인면 태창리 2
* **전화** : (0681) 34－4065
* **설립** : 원기69년(1984) 6월 23일

가. 설 립

유아원은 원기69년(1984) 6월 23일에 설립되었다. 설립기금 총 1,150만원 현금 550만원, 정부보조 600만원이 소요되어 전북 정읍군 태인면 태창리 2의 대지 50평에 건물 30평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원장에는 홍성기교도가 임명되고 교사 1명이 1학급의 원아 28명을 교육하였다.

나.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50평, 놀이터 15평 그리고 다음 내용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실 명	용 도	평
교 실	원아들 방	19	창 고	자료보관	2
화 장 실		5	식 당 방		3
사 무 실		3			

◇ 교사 : 1명(여), 원아수 : 40명(남22, 여18)

다.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69	28	16	12	28	16	12	
2	70	22	12	10	50	28	22	
3	71	38	20	18	88	48	40	

35. 문산 원광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207
* **전화** : (0591) 53－2260
* **설립** : 원기67년(1982) 5월 10일
* **인가** : 원기71년(1986) 1월 1일

원 훈
착 하 고
씩씩하고
아름답게

가. 설 립

교육과 교화의 연계성을 이루고 지역의 봉사를 고려하던 중 유아원을 인수하였으나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혀 창립주인 유윤전교도의 본인 집을 은행에 저당잡히는 등의 공로로 현금 1,350만원과 회사 600만원, 정부보조 300만원 그리고 부채 2,250만원의 총 4,500만원이 소요되어 경남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207번지의 대지 650평에 건물 3동 122평의 시설을 갖추고 원장에 이전원교무가 역임되어 교사 5명과 함께 3학급의 원아 108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李 典 圓(連玆)	女	1945. 12. 19	71. 1. 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600평, 놀이터 200평 그리고 다음 내용의 건물이 있다.

설 명	용 도	평
생활관	교당식구 생활	22
법 당	법당 및 유아원 강당	60
유아원교실	유아원 교실 및 교사실(사무실)	40
놀이터	유아원 유원장	200
정 원	꽃밭 정원	200
대 밭		78

◇ 교사 : 4명(여), 원아수 : 120명(남53, 여67)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2	108	58	50	108	58	50	

36. 남군산 원광 유아원

* **주소** : 군산시 나운동 606-7
* **전화** : (0654) 62-1037
* **설립** : 원기71년(1986) 3월 2일

원 훈
착 하 게
아름답게
씩씩하게

가. 설 립

설립동기는 남군산 교당이 위치한 지역이 군산시 개발지역으로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장차 교단과 국가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교육해야 할 필연성과 사명감에서 유아원 설립이 시작되었다.

교당과 본 유아원의 건물이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유아원의 건물을 매입할 것을 계획했으나 부도로 인해 경매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서진화교무를 중심으로 강경선, 전형수, 조충은, 임양훈, 이덕재, 이장은, 김양덕화, 박성진, 김보정, 구명인 등 교도일동의 특별한 헌신과 공로로 현금 3,400만원과(정부보조 3,400만원) 부채 6,600만원의 총 9,000만원의 설립기금을 마련하여 군산시 나운동 606-7의 대지 380평에 건물 2동 184평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초대원장에는 서진화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3명이 3학급의 원아 74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徐進華(永子)	女	1947. 2. 8	7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380평, 놀이터 150평 그리고 다음 내용의 건물이 있다.

실 명	용 도	평
교 실 3개	유아, 유치 진학반 3개반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연령에 맞는 교육을 함.	각 20
유희실 2개	활동적이고 지능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종 놀이기구를 구비하여 활용함	각 20
교재실 2개	각종 교재를 구비하여 참고자료를 함	각 2
원장실 1개	원장의 집무를 수행하기위하여 교재. 생활용품 갖춤.	8
주방	원아들의 식사 간식준비로	
화장실 3개		5

◇ 교사 : 3명(여), 원아수 : 103명(남47, 여56)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2	88	48	40	88	48	40	

37. 우아 원광 새마을 유아원

* **주소** : 전주시 우아동 3가 729－2
* **전화** : (0652) 4－4722
* **설립** : 원기71년(1986) 3월 7일

원 훈
맑 게
슬기롭게
바 르 게

가 설 립

본 유아원의 설립동기는 우아동에 교당을 마련하고자 임선양교무와 교도의 3년간에 걸친 노력과 기금마련의 준비 결과 유아원을 설립하여 교육과 교화를 아울러 하자는데 뜻을 모아 시작되었다.

설립기금 총 4,300만원(현금 3,000만원. 정부보조 1,300만원)을 들여 전주시 우아동 3가 729-2의 대지 240평과 건물 1동을 마련하여 원장에 백현인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2명이 2학급의 원아 60명을 교육하게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고
1	白賢麟(鍾淑)	女	1962. 6. 18.	71. 3~72. 1	
2	朴法宗(大鍾)	男	1958. 10. 11.	72. 2~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240평, 놀이터 100평, 교실, 취사장,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있다.

〈이전신축 및 확장〉

구분	연월일	주 소	시설내용		시설경비		
			실명	평	총액	기금	부채
확장			교 실 사무실 식 당		350만원		

◇ 교사 : 4명(여), 원아수 : 95명(남45, 여40)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2	49	27	22	49	27	22	

38. 좌산 새마을 유아원

원 훈
바 르 게
착 하 게
예 쁘 게

* **주소** :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620
* **전화** : (0655) 32－9082
* **설립** : 원기71년(1986) 9월(인수)

가. 설 립

본 유아원은 타부락에서 일반인이 운영하다가 폐원직전에 본 교당인 가수교당이 원기71년(1986) 9월에 인수하였으며 원기72년(1987) 2월에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620의 주소에 있는 구법당 건물을 120여 만원을 들여 시설을 갖추고 이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林 妙 俊(柱子)	女	1940. 2. 25	71. 9～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160평, 놀이터 80평, 건물 20평
◇ 교사 : 1명(여), 원아수 : 33명(남14, 여19)

[3] 기타 학원

1. 논산 원광 미술학원

* **주소** : 논산군 논산읍 반월 1동 33-93
* **전화** : (0461) 2-3691
* **설립** : 원기69년(1984) 2월 1일

원 훈
진실하게
지혜롭게
씩씩하게

가. 설 립

본 학원의 설립동기는 지역사회의 교화와 교육의 일환으로 대산 종법사의 유시를 받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설립과정에서 설립허가와 등록중 취득문제로 3개월이 걸리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조윤덕, 최주명, 이남훈교도의 공로와 특히 기독교인 김길대씨의 협력으로 충남 논산군 논산읍 반월 1동 33의 93의 대지 122평에 건물 1동 25평과 사무실 양호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초대원장에는 김삼인교무가 역임되고 교사 2명이 1학급의 원아 27명을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金三印(順禮)	女	1934. 10. 29	69. 2. 1~	

다. 현 황

◇ 시설규모 : 대지 122평, 놀이터 50평, 다음 내용의 건물이다.

실 명	용 도	평
사무실	사 무	38.54
양호실	건 강	3.58
(유희포함)	강의 유희	20

◇ 교사 : 2명(여), 원아수 : 43명(남24, 여19)

2. 남춘천 원광 웅변학원

원 훈
태양처럼 밝게
샘물처럼 맑게
잣대처럼 바르게

* **주소** : 춘천시 효자 2동 697－33 7/4
* **전화** : (0361) 2－6918
* **설립** : 원기71년(1986) 2월 25일

가. 설 립

본 학원이 설립하게 된 동기는 종법사의 특별유시를 받들어 유아교육을 통하여 지역의 봉사와 교화를 하기위함에서 시작되었다.

설립당시의 규모는 춘천시 효자 2동 697－33 7/4에 시설을 갖추었으며 김남명교무가 원장을 역임하고 교사 1명과 함께 70명을 교육하였다.

현재는 원아 80명이 교사 1명의 지도하에 있다.

3. 원일미술학원

* **주소** : 전주시 송천동 1가 474－62
* **전화** : (0652) 4－8615
* **설립** : 원기69년(1984) 3월 10일

가. 설 립

본 학원은 초창교당의 교화 활성화를 도모코자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당시 본 학원은 전주시 송천동 1가 474－62에 주소를 하고 전세 2층 홀 30평에 시설을 갖추었으며 원장에 박민규교도가 역임하고 교사 1명이 25명의 원아를 교육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원기)	비고
1	朴敏圭	男	1940. 3. 14	69. 3. 10~	

다. 현 황

◇ 시설규모 :

◇ 교사 : 1명(여), 원아수 : 31명(남12, 여19)

라. 졸업생 배출현황

회	졸업년도	배출수			누계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	70	24	9	15	24	9	15	
2	71	28	15	13	52	24	28	
3	72	26	16	10	78	40	38	

□ 社會敎育機關

1. 槪 觀

인간은 평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양 어느 곳에서나 인간상호간의 차별이 있었고 이에따라 많은 폐습을 낳았다. 대종사는 과거 불합리한 차별 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 조목을 반상·적서·노소·남녀·종족의 차별로 구분했다. 진리를 깨친 성자가 바라본 이 세계는 인간은 물론 우주 삼라만상이 사은이라는 은혜의 상보적 관계로 맺어져 있었고, 누구나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갈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도나 관습에 의해 기본적 권리 마저도 무시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차별 현상은 우주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부족으로 인

한 무지의 소치라, 인간의 평등을 일깨워 준 성자임에도 대종사는 한가지 차별 조목을 두었다. 智·愚 차별이 그것이다. 『정전』 교의편에 세상을 고르는 방법으로 제시한 인권·지식·교육·생활평등의 사요 중에는 지자를 본위로 하는 조목과 누구라도 가르쳐서 교육평등을 이루도록 하자는 타자녀교육 조항이 있다.

지자를 본위로 하는 차별은 「지자는 우자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하라」고 하는 강령을 통해 우자로 하여금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본의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 率性의 道와 인사의 덕행이 자기이상이 되거나, 모든 정사를 할 때 생활에 대한 지식과 학문 기술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이상이 되면 그를 스승으로 알고 배우되, 근본적 인간 차별이 아니라 구하는 때에 있어서 차별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이 없었으며, 교육의 제도가 여자와 하천한 사람은 교육받을 생의도 못하게 되었었다. 또 개인에 있어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는 사람이 적고, 언론과 통신기관이 불편한 데 따라 교육에 대한 의견 교환이 적었으며, 교육의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한 데 따라 유산자가 혹 자손이 없을 때에는 없는 자손만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였고, 무산자는 혹 자손 교육에 성의가 있어도 물질적 능력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여 교육이 보편화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문명이 지체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교육이 결함된 원인을 파악하여 교육의 기관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하고 모든 인간이 전인적 인격을 갖춤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 동포가 다같이 낙원의 생활을 하도록 함이 교육의 목적이다.

이러한 교리이념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 그 이념이 실행되어질 때 원불교는 시대화·대중화·생활화된 산 종교가 될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남녀노소는 물론 문명의 발달에 비례하여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개인으로는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함으로써 원만한 인격을 갖추고, 사회적으로는 대중의 인식과 제도적 폐습으로 인한 결함까지도 극복하여 근본적 인권평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바, 원불교의 대 사회적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회교육기관인 부산 예지원과 이리 사회교육센터, 근로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한 전주 공심야학과 이리 삼동야학, 노인복지 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리 노인학교와 서울 노인대학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社會教育機關

시대의 발전과 아울러 여가를 선용하는 문제는 이제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만의

활동차원이 아닌,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귀중한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엮어가는 활동으로 그리고 민주복지시민의 자격을 익혀가는 평생교육활동과 어둡고 작은 곳에서 하나가 되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필요성을 충족해주는 활동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심체가 되는데 사회교육의 목적이 있다.

더욱이 종교적 이상을 생활에 부합시켜 실현키로 하면 단순히 복지정책의 차원만이 아니라,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세대별 혹은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생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각 지역을 단위로 하는 사회교육은 바로 그 이념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원불교 부설로 설립된 사회교육기관으로는 부산의 〈예지원〉, 이리의 〈사회교육센터〉를 들 수 있는데, 다음에서 그 운영의 방향과 경과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예지원

1) 설립목적

〈예지원〉은 원기72년(1987) 3월, 부산 서부교구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지역 사회교화를 위한 문화교육센터 설립을 결의하고 각 교당의 협찬하에 「원불교 종지를 받들어 문화예술과 사회교육발전을 위한 사업과 운동으로 교구와 교단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부산지역 문화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사회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는

① 사회교육강좌 개설 :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시민들의 교양, 취미, 직업 등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교육 program을 개설함을 주 사업으로 한다.

② 문화사업전개 : 원불교 문화선양과 부산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각종 문화사업을 기획,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 교육의 대행 : 유치원 자모교육, 유치원 교사교육, 레크레이션 등 각종 전문교육을 기획 운영할 수 있다.

④ 출판업무 : 교당주보, 월보 등의 각종 인쇄물의 기획, 출판, 인쇄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조사사업 : 원불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종 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

⑥ 홍보사업 : 원불교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체계적인 홍보사업을 전개한다.

⑦ 기타 부대사업 : 예지원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2) 연 혁

72(1987). 2. 부산 서부교구 향타원 박은국교구장, 김순익사무장, 양주인교도 예지원 개설 준비모임 갖다.

72(1987). 3. 청년회 사무실내에 예지원 사무실을 정하다. 준비금 500,000원 받다. 초대 기획실장(상근) 양주인, 간사겸임 박미출

3. 27. 교구 상임위원회에서 부산지역 사회교화를 위한 문화교육센터 설립을 결의하고 각 교당의 협찬금으로 시작(부산 : 50만, 양정 : 30만, 영도 : 20만, 대신 : 30만, 부산진 : 30만, 서면 : 30만원)

4. 6. 수지침, 분재, 꽃꽂이강좌 개설하다〈수지침(문정옥), 분재(조만현), 한문(신영문교무), 3개월과정) 100명 참가하다.

5. 23. 제1회「할머니, 할아버지 놀이마당」개최. 200명 참가.
1부:종교생활과 노인건강. 강사:문한규박사. 2부:국악공연.

8. 6. 「시민들을 위한 하계무료특강」200명 참가.
1. 한문－강사 : 신영문교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2. 고려수지침－강사 : 송도평교무. 매주 월, 수요일 오후 7시－9시

8. 20. 강사 : 조만현선생「하절기 가정분재 관리」

8. 28. 강사 : 김성근교무.「다도와 우리문화」

10. 3. 가을 강좌「고전」강좌. ① 반야심경－강사 : 조쇠암선생. 매주 화, 수 오전 10－11시 30분. ② 명심보감－강사 : 신영문교무.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③ 동양의학의 이해－강사 : 송도평 교무.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④ 꽃꽂이 강좌－강사 : 양나영선생,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⑤ 금요고전 강좌－강사 : 박해권(전, 진주교대학장), 김승동교수(부산대 철학과) 9월 3일～10월3일까지 매주 금요일 시민들을 위한 동양사상특강을 갖다(100명참가)

나. 社會敎育센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일환으로 평생교육의 터전인 사회교육센터를 개원한 것은 원기72년(1987) 10월 12일, 원불교 중앙신용협동조합 부설기관으로 전 조합원의 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본래 신협운동은 그 설립에서부터「잘살기 위한 경제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을 3대 과제로 삼고 그에 따라 경제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 및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신협운동과 원불교 이념은 상응되는 부분이 많다. 원불교 기관으로 발족된 중앙신협은 바로 이와 같은 필연성에 의해「통합의 교육이며 산업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평생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아직은 설립취지 및 계획에 비해 호응도가 낮아 계획했던 강좌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지역사회의 대부분 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원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 사회적 교육은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운영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설립취지 및 기별 강좌

원불교중앙신용협동조합 사회교육센터 개설취지

신협운동은 그 설립에서부터 3대운동을 취지로 삼아왔습니다. 즉, 잘 살기 위한 경제운동, 사회를 밝힐 교육운동, 더불어 사는 윤리운동이 그것입니다.

금번 원불교 중앙신협이 사회교육센타를 개설하게 된 것은 이러한 신협 설립 취지에 따라 대부분의 신협이 주된 업무로 삼고 있는 경제운동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운동, 윤리운동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펼쳐 보고자 합입니다.

사회교육센터 운영

ㄱ. 조합원의 교육장
ㄴ. 조합원 자녀 문제 상담소
ㄷ. 원불교 교리 실천강좌
ㄹ. 외국어 번역센타 운영

제1기 강 좌

Program		수 지 침		꽃꽂이와 지점토 공예	염 색 공 예
월	요일 / 주	월 10:00~11:30	목 10:00~11:30	금 10:00~12:00	화 10:00~12:00
10	1	개요(동의학)	침구의료의 상식	직립 기본형(동양식)	오리엔테이션, 염색이론, 홀치기염 시범
	2	상응요법	상응요법	경사기본형(동양식)	판염을 이용한 명주마후라
	3	14기맥(1)	14기맥(2)	서구식 사방화.삼방화 제단화. 역T.S자형	파라핀염색기법을 이용한 방석
11	1	14기맥(3)	14기맥(4)	직립1형~2형	파라핀염식기법을 이용한 방석
	2	14기맥(5)	14기맥(6)	경사1형~2형	풀염을 이용한 넥타이
	3	14기맥(7)	임상편(중요혈)	서구식 꽃꽂이	풀염을 이용한 넥타이
	4	진찰편	五治 처방	분리형 꽃꽂이	풀염을 이용한 소품
12	1	五治처방	응급처방 활용	직립3형, 경사3형	풀염을 이용한 소품
	2	응급처방 활용	음양 맥진법	서구식 꽃꽂이	파라핀염색을 이용한 작품
	3	팔성혈 이용법	수증요법,기타종합	크리스마스 장식	파라핀염색을 이용한 작품
준비물		·침케이스 ·삼능침	·침 관 ·수지침	·꽃가위 ·꽃꽂이수첩	·염 료 ·옷감(명주.광목)
		·자석침	·처방집	·꽃가방	·염색붓
비고		준비물은 개별적으로 구입하셔도 되며 접수창구에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지점토 특강은 금 13:00~15:00까지 별도운영합니다.	준비물은 개별적으로 구입하셔도 되며 접수창구에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제1강좌 수강 출석 상황(3개월간)

월	주	수지침	염색공예	꽃꽂이	어학강좌	소리골화음	건강교실
10	1	월 목 21명	5명	15명	3명	7명	12명
	2	월 22명 목 22명	3명	23명	4명	12명	10명
	3	월 23명 목 21명	4명	21명	6명	8명	10명
11	1	월 23명 목 20명	4명	17명	1명	23명	11명
	2	월 17명 목 17명	4명	20명		12명	5명
	3	월 17명 목 19명	4명	18명		12명	9명
	4	월 18명 목 18명	5명	17명		14명	5명
12	1	월 18명 목 17명	2명	16명		14명	7명
	2	월 18명 목 19명	2명	16명		12명	5명
	3	월 19명 목 18명	1명	16명		15명	6명
합계		367	34	179	14	129	80

3. 夜 學 校

夜學은 生活平等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오는 시대의 산물이다. 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격동기를 지낸 80년대에 사회의 어두운 곳, 그 중에서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채, 생산현장에서 시달리는 그들을 발견하고 교육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 보은 봉공의 입장에서, 아울러 시대적 격동으로 인한 시련과 갈등속에서 학생회 자체 조직강화의 일환으로 夜學을 시작함으로써 함께 밝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원불교에서 시행된 야학은 전주 공심야학과 이리 삼동야학이 대표적이며 삼동야학은 원불

교 정토회관 지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가. 공심야학

사은의 은혜속에 감사생활을 영위해 온 전북대학교 원불교학생회는 보은활동의 실천장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한도봉교무와 오길영교도회장의 후원에 힘입어 덕진교당 청년회와 함께 청년봉사대를 조직하고 전주시 소재 팔복동 공단의 근로청소년과 인근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야간학교를 개설했다. 중앙청년회의 전폭적인 지지속에서 원청인의 봉공인상의 정립을 위해 노력한 공심야학교는 초대교감에 곽진영교우를 선출하였고 전북대학교 원불교학생회의 지속사업으로 필요성이 다할 때까지 유지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전북대교우회의 활발한 활동과 새로운 임원진(회장 김성욱, 부회장 이효, 전선영)의 구성에 따라 새로운 활력소를 되찾아 나갔다. 야학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한다. 80년대 국가는 정치적 격동기에 대학은 많은 시련과 갈등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全北大學校 원불교학생회에서는 자체 조직강화의 일환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사업을 모색하였다.

종교인의 사명은 自性佛을 깨쳐 成佛도 중요하지만 일체중생을 구원하려면 보은 봉공의 정신을 고양시켜야 된다. 평범한 사람도 조직사회에서는 삶의 기쁨을 내 이웃과 은혜를 함께 베풀어야 한다. 전위대요 운동체인 원청은 여건조성의 필연성보다는 시대사적 부름에 응하고저 사요사상의 하나인 타자녀 교육사업인 야학활동이 전개되어져 야학이 태동되었다.

야학의 태동은 원기65년(1980) 9월 26일 전북대 교우회에서 야간학교 개설의 발의에 따라 유문종, 곽종문 등이 회원중에서 교사를 모집, 소정교육과정을 수료시킨 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자체적으로 전주시 덕진동 1가 1275－18 3층에 야학장소를 확정하였다.

드디어 원기66년(1981) 1월 31일에 제1기 신입생 47명을 모집하여 국어·영어·수학 등의 안내교육과 필수과목 기초 수업을 끝마친 뒤 2월 9일에 개교하였다. 초대교장에 오길영(덕진교당 교도회장)과 지도교무 한도봉교무(덕진), 곽종문(임학과3)법우가 초대교감 등으로 선임되어 내일의 꿈벗들을 지도육성케 되었다. 그러나 집단활동이 금지된 시기라 덕진교당 청년봉사회로 운영하였으며 노동야학보다는 검시야학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사회성과 역사성을 함양키 위하여 주 2시간씩 교양시간과 교사와 학생합동법회를 월 1회 실시하여 一圓大道를 선양에 노력했다.

그들에게 배움의 전당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텅빈마음을 배우고 닮아가자는 空心으로 교명을 圓佛教 空心夜學校로 개칭하였다. 원기67년(1982) 4월 17일에는 3층에서 지하로 야학교를 이전하였다. 교실의 협소와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으나 全州교구와 독지가의 도움으로 운영하여 원기69년(1984), 3회 졸업생 60명과 제4회 입학생 14명이 함께한 공심야학은 동년 3월

30일 덕진교당 유아원으로 교사이전을 하여 아직도 면학의 길을 아쉬워 하는 그들의 보금자리로 성실하게 봉공이념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또한 원기72년(1987) 2월 17일에는 전주시 덕진동 1가 1401-21 영궁다방 지하로 교사이전들을 하였다.

애석한 점은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야학은 어두운 곳에 작은 불빛을 주고 함께 고통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심야학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물론 문을 닫기까지 몸살을 치룬 것이야 짐작할 수 있지만 때로는 서로에게 보람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는 실망과 좌절을 느낄만큼 침체된다고 해서 멈추어버린다면 인간의 역사는 영원한 패배의 역사요 다시 살아난 씨앗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기72년부터 휴교상태에 있는 전주 공심야학이 단지 「휴교」였을 뿐이라고 말하며 다시금 지역사회에 초롱이는 불빛으로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

空心야학교의 중요연혁은 다음과 같다.

공심야학활동

연 도	중요사업내용	인원	비 고
원기 66. 1.	신입생 모집	47명	초대교장:오길영, 지도교무:한도봉, 초
2.			대교감:곽종문
66.12.	월동비 마련, 엿장사	30명	20만원 기금마련
67. 2. 9	제1회 개교기념행사	100명	
67. 3. 2	제2대 교감취임		교감:김종천
67. 5. 3	제2기 신입생 입학식	45명	
67. 6.21	교가제정		작자:손정윤, 작곡:오선도
10.24	교사훈련	30명	상주선원
12.	월동비 마련, 엿장사	30명	20만원 기금마련
68. 2. 9	제1회 졸업식및 제2회 개교기념행사	150명	졸업생 14명
3. 2	제3기 신입생 입학식	35명	
12.	교사훈련		신도안 삼동원
69. 2. 9	제2회 졸업식및 제3회 개교기념행사		졸업생 12명
2.20	제3대 교감취임		교감:나안호
2.26	동창회 창립		제1대회장:유영화(1회)
3. 5	제4기 신입생 입학식	30명	
3.30	교사이전		원불교 덕진교당 유아원
5.21	제4대 교감취임		교감:진교열
8.	교사훈련(완도소남훈련원)	25명	
12.17	제5대 교감취임		교감:전병은

70. 2. 9	제4회 졸업식 및 개교기념 행사		
3. 2	제5기 신입생 입학식		
9. 2	제6대 교감 취임		교감 : 김보권
10. 1	제2회 공심·삼동 친선 체육대회		
71. 2. 2	제5회 개교기념식 및 학예발표회		
2. 9	제4회 졸업식		
4. 2	제7대 교감취임		교감 : 이희수(군도)
9.15	제3회 공심·삼동 친선체육대회		
10.10	제8대 교감취임		교감 : 유상용
72. 2. 2	제5회 졸업식		
2.17	영궁다방지하로 교사이전		
2.28	제9대 교감취임		교감 : 황중식
5. 1	제7회 입학식		
9. 1	제10대 교감취임		교감 : 노재중

〈현　　황〉

○ 교　　훈 : 둥글게 둥글게

○ 야학의 취지 : 1. 전인적 인간양성의 교육기관으로 육성

2. 원불교청년의 보는 실전장으로 육성

3. 원불교교화 사업장으로 육성

○ 교사헌장

물질이 만능하여 사익이 아니면 돌아보지도 않은 각박한 현실에 따뜻한 기운이 저 심층으로부터 차돌아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그 기운의 주인임을 자부하며 위로는 진리를 섬기고 아래로는 우리의 청운을 펴는 젊은이로서 천지만물이 생존하고 내가 생존하며 부모의 은혜로 세파의 두려움을 잊고 사농공상에 종사하는 동포와 더불어 사는 은혜를 배운다.

이에 내가 행동하는 바를 찾게 한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여기에 참여한다.

○ 학교운영방침

1. 교사 : 교사훈련을 통한 새마음 갖기 정례화

선배교사의 참된 전통확립

본교발전에 공이 큰 교사 표창

2. 학생 : 정서교육으로 합격율 향상

성실한 삶의 정신을 심어준다.

은혜에 감사함을 알게한다.

3. 운영 : 후원회 결성
봉사활동을 통한 자립기반 확립
교사들의 성실한 마음과 정성

4. 직위별 직무사항
교 무 : 명예직
교 장 : 명예직
교 감 : 실무최고 책임자
교무과 :
학생과 : 담임
서무과 :
문화과(72.6.8신설) : 회지 발간

5. 교사에 관한 규정 :
자격, 근무연한, 권리, 의무, 금지사항, 교감(임기), 권한대행, 교감선출, 교사의 일상의무

〈현재현황〉

○ 학 생 수 : 8명(평균출석수 3~4명)
○ 교 사 : 15명(교도 : 8명)
○ 건 물 :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매월지불
○ 재 정 : 원광대학교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후원금 연 80만원
교사회비 월 1인당 1,500원
연 1회 엿판매, 일일찻집
○ 역점사업 : 교사이전, 야학방향 전환

교 가

손정윤 작사
오선도 작곡

1. 배우고 일하면서 내일을 연다. 자갈길도 헤쳐가며 높은 산을 넘는다.
세계를 품에 안고 파도처럼 솟아라 우리는 희망찬— 세계의 광명
2. 슬기를 닦아가며 정의를 배운다. 밝은마음 건강한 몸 감사의 하루하루
우리는 법형제— 정다웁게 살—자 무궁한 장래는 양양도하다

3. 먹구름이 걷히면은 태양이 빛난다. 어려움을 이겨내면 영광도 찬란하다.
우리들 일심협력 뜨거운 혼으로 새역사 창조하는 등불이어라

후렴 둥근마음 배워가는 공심 공심야학교
둥근마음 닮아가는 공심 공심야학교

나. 삼동야학

1) 설립목적

원불교 삼동야학교는 오늘날의 대학생 젊은이들이 종교, 사상 등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웃을 위한 奉公活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기본 정신은 원불교의 제2대 교주이신 정산 宗師의 三同倫理인 「진리는 하나〔同源道理〕, 인류는 한 가족〔同氣鍊契〕, 세상은 한 일터〔同拓事業〕,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정신의 실천에 두고 있다.

2) 학교연혁

원기67년(1982) 2월 16일, 원불교 청년 대학생들이었던 이운원, 진상구, 박효인 세 사람이 신도안 삼동원에서 처음으로 야학개설을 위한 모임을 가진 후, 1년전 이미 개설된 전주 공심야학교의 운영을 모델로 하여 구체적인 학교 개설을 추진한 결과, 박윤철교무(교장)외 15인의 교사가 창립교사가 되고 학생을 모집하여 동년 4월 26일 학생 21명을 모아 역사적인 삼동야학교의 開校式 및 제1회 入學式을 거행하였다.

개교식 이후 가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야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무감독 시험의 실시, 가정방문, 심성계발훈련의 실시 등 다각도로 학생교육에 심혈을 경주하였으며, 동년 11월 29~30일 양일간은 이들 학생의 졸업할 경우, 진학을 돕기 위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엿과 귤을 판매하여 17만원의 장학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야학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보통 중·고등학교 학생들과는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야학생들의 전인교육(全人敎育)을 위하여 교사들의 재훈련을 매월 1회씩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동년 9월부터는 다음 해 교사로 일할 신입교사 모집 및 훈련에 착수하여 4개월간의 신입교사 훈련과정을 실시하여 11명의 2기 교사를 배출하고, 원기68년(1983) 1월 30일 교사 이·취임식을 가졌다.

원기68년(1983) 2월부터 한달동안 제2회 입학생을 모집하여 3월 2일에 25명의 학생이 새로 입학하였다. 이로써 본 야학은 고등학교과정 2년의 야학으로 명실공히 전학년을 수용하게 되

었고, 종래 1간의 교실과 1간의 교무실이었던 것을 원불교 정토회의 협조하에 1간의 교실을 더 확보하게 되었다.

원기68년(1983) 8월 5일에 실시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서 본 야학생 6명이 합격하여 학교에 첫 경사를 안겨주었다. 9월부터는 역시 3기 교사로 일할 신입교사훈련을 실시하여 동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 만덕산 훈련원에서의 전지훈련을 끝으로 역시 11명의 3기 교사를 배출하였고, 이듬해(1984) 2월 18일 제1회 졸업식 및 제2회 교사 이·취임식을 거행하여 졸업생 8명을 처음으로 배출하였다. 이들 8명중 5명이 대학에 진학하였는 바, 그 중 1명(女)은 원광대 원불교학과에 지원, 합격하여 聖職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였고, 나머지 4명도 각각 원광보건전문대, 한국방송통신대, 서해공업전문대학 등으로 진학하였다. 한편 학교에서는 그간 애써 마련한 장학기금에서 대학진학자 5명에게 각각 5만원씩의 장학금도 전달하였다.

원기69년(1984) 3월 7일에는 제3회 입학식이 거행되어 30여명의 학생이 입학하였으며, 동년 8월에 실시된 검정고시에는 4명의 학생이 합격하여 이듬해(1985)에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이들중 역시 1명(男)은 원광대 원불교학과에 지원하여 성직의 길로 들어섰고, 나머지 3명은 각각 원광대 법학과, 한국방송통신대 등에 진학하였으며, 학교에서는 이들에게도 각각 5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동년 8월 12일부터 3박4일 동안은 학생교사들이 함께 100km 도보행군훈련을 구례 화엄사로부터 전주까지의 구간에서 실시하여 극기의 의미, 교사들의 사명감 인식, 단체의 협동심 배양 등의 훈련을 이수하였다.

이듬해(1985) 1월 24일에는 4개월간의 신입교사훈련을 마친 17명의 제4기 교사의 취임 및 기존교사의 이임식, 그리고 제2회 졸업식을 함께 거행하여 10명의 제2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어 동년 3월 14일에는 제4회 입학식을 거행하여 현재 30여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3) 학교현황

삼동야학교의 대체적인 현황은 교사, 학생, 시설운영 등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교사현황

창립교사는 총 16명이었으며 이들중 대부분은 1년간의 의무 연한의 교사직을 마치고 사회 각계로 진출, 상당수가 교사가 되어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직접, 간접으로 야학과 관련을 맺고 야학을 위해 돕고 있다.

이들 교사의 종교별 구분을 보면 창립교사의 경우 16명중 10명이 원불교(62%), 기독교 4명(25%), 불교 1명(6.5%), 무종교 1명(6.5%)이었으나 2기, 3기, 4기로 내려올수록 기독교인 교

사의 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다음에서 볼 수 있다.

교사현황 제1기 교사명단(82. 4.26~83. 1.30)

순위	성 명	직책(과목)	부임일자	이임일자	재임기간	비 고
1	권 병 현 (남)	기술	67. 4. 26			원 불 교
2	김 덕 종 (〃)	한문	〃	68. 1. 30		〃
3	김 명 중 (〃)	국어	〃			원 불 교
4	김 미 순 (여)	수학	〃	〃		기 독 교
5	노 홍 만 (남)	정경. 영어	〃	〃		〃
6	문 성 기 (〃)	영어	67.			영어특강교
7	박 미 향 (여)	국사	67.			기 독 교
8	박 삼 규 (남)	정경	〃			원 불 교
9	박 윤 철 (남)	교장	〃			원 불 교
10	박 효 인 (여)	영어	〃			원 불 교
11	신 숙 희 (여)	수학	〃	〃		무
12	신 은 희 (여)	영어	〃			기 독 교
13	양 미 옥 (여)	수학	〃	〃		원 불 교
14	양 혜 연 (여)	가정	〃	〃		천 주 교
15	이 운 원 (남)	기술	〃			원 불 교
16	이 혜 경 (여)	가정	〃	〃		원 불 교
17	진 상 구 (남)	생물	〃			〃

제2기교사 명단(1982.10. 1~1984. 1.)

순위	성 명	직책(과목)	부임일자	이임일자	재임기간	비 고
1	김 구 한 (남)	기술	67. 10. 1			
2	김 석 원 (남)	영어	〃			기 독 교
3	김 성 란 (여)	가정	〃			원 불 교
4	김 영 주 (남)	정경	〃			천 주 교
5	김 중 효 (여)	윤리	〃			
6	문 경 신 (남)	수학	〃			기 독 교
7	문 명 량 (여)	국사	〃			원 불 교
8	박 현 옥 (여)	한문	〃			
9	신 미 숙 (여)	국사	〃			원 불 교
10	안 병 하 (남)	수학	〃			기 독 교
11	오 미 자 (여)		〃			
12	정 귀 연 (여)	국어	〃			
13	정 재 영 (남)	국어	〃			

14	최 정 숙 (여)	영어				기 독 교

제3기 교사명단(1983.10. 8~85. 1.)

순위	성 명	직책(과목)	부임일자	이임일자	재임기간	비 고
1	강 성 호 (남)	생물	68.10. 8			원 불 교
2	김 성 신 (여)	윤리	〃			무
3	김 성 자 (여)	국어	〃			기 독 교
4	김 원 중 (남)	국사	〃			원 불 교
5	김 진 숙 (여)	수학	〃			기 독 교
6	나 일(남)	영어	〃			무
7	박 운 구 (남)	영어	〃			원 불 교
8	박 희 주 (남)	정경	〃			천 주 교
9	이 은 주 (여)	가정	〃			무
10	이 현 균 (남)	수학	〃			기 독 교
11	채 경 래 (남)	영어	〃			기 독 교
12	최 백 림 (여)	국사	〃			기 독 교
13	최 승 호 (남)	기술	〃			무
14	박 선 희 (여)	영어	69. 7.23			무
15	임 정 심 (여)	수학	69. 8. 2			기 독 교

제4기 교사명단(1984.10.10~86. 1)

순위	성 명	과목	부임일자	이임일자	재임기간	비 고
1	강 문 조 (남)	영어	69.10.10			기 독 교
2	김 경 진 (여)	국어	〃			원 불 교
3	김 기 석 (남)	정경	〃			불 교
4	김 성 리 (여)	수학	〃			천 주 교
5	김 양 란 (여)	윤리	〃			기 독 교
6	김 은 영 (여)	생물. 정경	〃			무
7	김 두 산 (남)	영어	〃			무
8	박 경 희 (여)	국어	〃			무
9	박 성 철 (남)	기술	〃			기 독 교
10	박 진 현 (여)	국어	〃			〃
11	석 은 순 (〃)	국사	〃			무
12	송 의 정 (남)	영어	〃			원 불 교
13	이 유 승 (여)	수학	〃			기 독 교
14	이 인 섭 (남)	수학	〃			기 독 교
15	이 재 호 (〃)	수학	〃			원 불 교
16	임 용 숙 (여)	국사	〃			무

17	한 귀 정(여)	가정	69. 10. 10	무
18	황 혜 란 (〃)	윤리	〃	기 독 교
19	송 백 련 (〃)	한문	70. 6	원 불 교
20	송 철 이 (남)	2학년담임	70. 7	

이들 야학교사들은 완전 자원봉사자로서 1년 이상 무보수로 일하게 되며, 〈오히려 월1,000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다〉 야학생들의 여러가지 문제 상담을 위해, 또는 학교운영의 여러 문제토의 및 해결을 위해 정신·육신·물질, 그리고 시간적으로 많은 봉사를 한다. 따라서 이같은 교사들의 봉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창립교사 이래 지금까지 교사로 부임하기 전, 소정의〈4개월 야학에서의 훈련, 3박4일의 전지훈련〉 훈련과정 이수를 의무화한 결과, 훈련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의 95%가 1년이상 충실히 야학교사로 봉직하였다. 이것은 보다 심화된 훈련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정식교사로 봉직하기 전 4개월 훈련과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要컨데 삼동야학교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따뜻한 인간애의 정신이 발휘될 때 소기의 교육 목적달성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사 배출 현황을 보면, 1기교사 16명(1982), 2기교사(1983) 11명, 3기교사(1984) 11명, 4기교사(1985) 17명 등 55명을 배출하였고 이중 현재 25명의 현직 교사가 계속 봉직하고 있다.

교사훈련 프로그램을 주로 선배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새로 교사를 지망한 대학생들을 야학교사로 발탁하기 위해, 해마다 9월초부터 시작하여 12월말(12.26~12.29, 3박4일, 전지훈련장소는 만덕산 훈련원으로, 일자, 기간, 장소는 전통화되어 현재 4기까지 불변이며 앞으로는 전지훈련은 변함이 없을 것임) 전지훈련을 끝으로 마치는 신입교사훈련이 있고, 야학교사로 근무하는 현직 야학교사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다.

신입교사훈련 프로그램중 중요내용은 삼동윤리강의, 기존 교사의 체험담, 타야학 탐방, 독서발표 상담법, 심성계발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① 시설현황

삼동야학교의 시설은 대부분의 야학이 그러하듯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교실은 정토회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준 25~30명 수용정도의 지하교실 1, 15~20명 수용의 지하교무실 1, 10~20명 수용정도의 지상 1층의 교실 1로, 책상·걸상은 원광고등공민학교에서 얻어온 것으로 약 40개를 확보하고 있는 정도이다.

여름이면 물이 넘치고 곰팡이 피는 교실에서, 겨울이면 19공탄 난로 1개씩,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놓이고, 교무실은 교사들의 몸에서 뿜어내는 열기로 추운 겨울을 지새고 있다.

그렇지만 학생 스스로 호주머니를 털어 교실의 환경을 정리하고, 월 1,000원의 교사회비로 학교에서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여 쓰고, 뜻있는 몇 분들의 후원에 힘입고, 정토회에서 한 분이 월 5만원씩 지원하는 돈으로 학교의 시설보수 그리고 학교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1회 졸업생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수여해오고 있으며, 현재 2회 졸업생까지 10명에게 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해오고 있다. 이같은 장학금 마련은 후원자들의 성금, 야학교사로 혹은 학생으로 삼동야학을 거쳐간 이임교사 및 졸업생들의 후원비, 그리고 가두판매 등의 이익금으로 마련해오고 있으며, 이 제도는 앞으로도 더욱 확충·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금년도 목표액 1백만원 중 이미 40여만원의 장학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시설현황에서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교실의 대여,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금의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원불교 정토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후원임을 꼭 밝히고 싶다.

② 학생현황

야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로부터, 부모 또는 가정으로부터, 기성세대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궁핍, 가정불화, 결손가정을 가진 학생이 많고 신체는 대체로 허약한 편이며, 어린 나이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 청소년과 가정의 경제적 궁핍으로 진학 못한 나이 많은 청년층과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탈락된 학생들이 모여든다.

제1회의 경우 21명의 학생이 처음 입학했고, 2년간의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는 동안 거쳐간 학생까지 합하면 거의 50명에 달했으나 2년의 학업과정을 모두 마치고 졸업한 학생수는 불과 8명이었다. 2회의 경우는 거의 엇비슷한 25명의 입학생들이 들어와서, 졸업한 학생은 10명이었으며 현재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수 역시 거의 비슷한 10~15명이며, 현재 1학년의 경우는 입학한지 4개월이 지났으나 25명 정도가 학교에 나오고 있다.

—이상은 초대교장 박윤철교무가 정리한 것—

※ 삼동야학 제1회~3회 졸업생 현황 및 주요 연혁 첨부.

졸업생현황

제1회 (입학 : 1982. 4. 26. 졸업 : 1984. 2. 18) 8명

1. 강춘희(여. 검시합격, 원불교학과 진학)

2. 김태희(남)
3. 나철수(남. 검시합격, 원불교학과 진학)
4. 송백련(여. 검시합격, 원보전 임상병리과 진학)
5. 이종학(남)
6. 정종운(남. 검시합격)
7. 조용관(남. 검시합격, 원보전 진학)
8. 진은희(여. 검시합격, 방송통신대진학)

※ 졸업생 8명중 6명 검시합격

제2회 (입학 : 1983. 3. 2. 졸업 : 1985. 1. 24) 10명

1. 김용기(남. 검시합격)
2. 김정수(남. 검시합격, 원대 법학과진학)
3. 김창윤(남. 검시합격, 방송통신대 진학)
4. 김평수(남)
5. 백용호(검시합격)
6. 이행선(남. 검시합격 원불교학과 진학)
7. 정병호(남. 검시합격, 서해공업전문대)
8. 정옥례(여. 검시합격)
9. 정춘영(여. 검시합격)
10. 최숙일(남)

※ 졸업생 10명중 8명 검시합격

제3회 (입학 : 1984. 3. 7 졸업:1985. 8. 30) 9명

1. 문유정(여)
2. 박계숙(여)
3. 박병구(남)
4. 박종석(남)
5. 배이섭(남)
6. 엄진용(남)
7. 이인숙(여)
8. 차경주(여)
9. 최영목(여)

※ 졸업생 9명중 검시합격자 없음

연 혁

67(1982) 3월 2일 원불교 정토회관 봉사회 산하《삼동야학교》발족

67(1982)	3월1일	제1기 교사모집
	3월16일	학생모집공고
	4월 3~6일	교사훈련
	4월26일	제1회 입학식(21명)
	8월 6~7일	검정고시 응시
	8월 9일	1학기 종업식
	8월23일	개학
	9월15~28일	제2기 교사모집
	10월 1일	교사훈련 실시
	12월23일	2학기 종업식
68(1983)	1월 4일	개학
	1월27일	신입생모집
	1월30일	교사 이·취임식
	3월 2일	제2회 입학식(25명)
	4월17일	검정고시 응시
	4월26일	제1회 개교기념식
	8월 5일	검정고시 응시
	8월22일	2학기 개학식
	8월27~28일	제1회 학생훈련
68(1983)	10월 1~3일	2학년 졸업여행
	11월 8일	제3기 교사훈련시작
	12월24일	종업식
	12월26~29일	제3기 교사 전지훈련
69(1984)	1월 9일	개학식
	1월22일	제3기 학생모집공고
	2월18일	제1회 졸업식(8명)
	3월 7일	제3회 입학식(30명)
	4월15일	검정고시 응시
	4월 27일	제2회 개교기념식
	8월 3일	검정고시응시
	8월 4일	종업식
	8월12~15일	교사·학생훈련
	10월 4일	제4기 교사훈련
	12월24일	종업식
	12월 26~29일	제4기 교사전지훈련
70(1985)	1월 7일	개학식
	1월24일	제1회 졸업식(10명)
		제3기 교사 이·취임식

70(1985)	3월18일	제4회 입학식
	9월 1일	제5회 입학식-9월학기제
	월13일	제1회 삼동인의 메아리
71(1986)	5월25일	제1회 동문 체육대회
	6월 8일	제1회 이리 야학연합체전
	9월 5일	제6회 입학식
	11월29일	제2회 삼동인의 메아리
72(1987)	4월25일	제6회 개교기념일
	5월24일	제2회 동문 체육대회
	6월28일	제2회 이리 야학연합체전
	8월29일	제5회 졸업. 6기교사 이·취임
	9월 1일	제7회 입학식

4. 老人學校

가. 이리〈노인학교〉

「사회복지 사업법의 本旨에 의거하여 노인휴양을 위하는 교양강좌를 열어 날로 발전해가는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소외되는 외로움을 덜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이 되게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래 「노인학교」는 이리교구 부설기관으로 원기60(1975) 3월에 개원했다.

남녀 구별없이 62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50명 정원, 수업년한 1년으로 정규과정과 과외활동 등으로 실행되었다.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의 미덕을 살펴 자손의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심신의 안전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조항을 실현하기 위해, 고유의 가족제도 아래 경노효친과 인보상조의 미풍양속을 지닌

국민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노인을 경애하고 봉양하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하는 노인복지증진과 아울러 만생령 구원의 원불교적 이념에 바탕하여 현재 14회 졸업식을 한 이리 노인학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본교연혁

60(1975) 11월 원불교 이리교당 박제권교무의 발의로 교도회장인 오진상교도와 합심하여 노인학원을 설치키로 함.

61(1976) 3월14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이리노인대학원을 설립함(발기인 조재현외 26인).

61(1976) 1월14일 본 대학원 창립 총회에서 학원의 경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조직함. 이사장 김병권, 이사 김삼룡 김윤창 문병량 박제권 박종근 백남철 서연로 송규현 윤부병 이봉녕 이삼노 이춘기, 감사 이희종, 간사 홍군표

61(1976) 1월15일 본 대학원의 직원으로 원장에 백남혁, 학감에 오진상, 교무에 조정근, 서무에 박영윤을 임명함.

61(1976) 4월 2일 신입학생 남자 39명, 여자 11명, 계 50명을 모집하여 1학급을 편성함. 동일 원불교 이리교당을 본 대학원의 가교사로 정하여 개교와 동시에 입학식을 거행함.

61(1976)11월26일 본 학원제1회 졸업식을 원광대학교 봉황각에서 성대히 거행함.

62(1977)11월18일 원광대학교 강당에서 제2회 졸업식을 거행함.

63(1978)11월17일 원불교 이리교당 법당에서 제3회 졸업식을 거행함.

64(1979) 3월 3일 본학원의 정관에 따라 교명을 이리노년학원으로 개칭함.

64(1979)11월20일 원불교 이리교당 법당에서 제4회 졸업식을 거행함.

65(1980)11월 제5회 학생회원이, 노년학원 창설이래 교육을 맡아서 헌신 노력한 백남혁원장과 오진상학감의 사은비와 김병주이사장과 박제권교감에게 감사패를 진정하여 향토의 경노사상 진작에 크게 기여함.

65(1980)11월21일 원불교 이리교당 법당에서 제5회 졸업식을 거행함.

66(1981)11월20일 원불교 이리교당 법당에서 제6회 졸업식을 거행함.

67(1982) 3월23일 건강관계로 오진상학감 은퇴함.

67(1982) 3월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김두봉학감을 임명함.

67(1982)11월11일 백남혁원장 병환으로 별세함.

67(1982)11월16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교명을 이리노인학교로 개칭함.

67(1982)11월26일 원불교 이리교당 법당에서 제7회 졸업식을 거행함.

68(1983) 4월10일 제2대 김종후학장, 제3대 조철원학감 취임.

68(1983) 4월15일 원불교 이리교당, 대법당에서 제8회 입학식을 거행함

68(1983)12월 9일 제8회 졸업식

69(1984)11월23일 제9회 졸업식

70(1985)11월22일 제10회 졸업식

71(1986)10월24일　개교10주년기념식 및 경노잔치를 이사회와 원불교 이리교당의 후원으로 원불교 이리교당 대법당에서 성대히 거행함.(졸업생 재학생 전원, 교수 저명인사 등 400여명 참석)

71(1986)11월28일　제11회 졸업식

72(1987)11월27일　제12회 졸업식

Ⅱ. 慈善機關

인간의 욕구충족으로 인해 발전된 과학문명은 좀 더 나은 문화적 혜택을 가져옴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인간의 문제를 낳았다. 그 문제에 해결로써 사회는 종교제도, 가족제도,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수 많은 제도를 만들어 과학문명이 낳은 산물들을 기능적으로 대처하였다.

소태산대종사는 이러한 문명사회의 문제를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 일체생령을 낙원세계로 인도할 것을 천명했으며, 그 방법으로써 교화·교육·자선의 병진을 표명했다.

이와같은 교의를 지닌 원불교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사회문제에 뛰어들어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시기는 원기30년(1945) 해방을 맞이하면서 부터다. 무정부의 혼돈속에 밀려오는 전재동포에 대한 구호사업은 수 많은 전재고아를 수용, 서울보화원의 발족과 더불어 새 회상 자선사업기관의 효시를 이루게 되었다. 반면에 원불교 자선기관의 태동과 함께 교단에서는 구호사업 중 전염병으로 인해 송도성교무를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 후 6·25동란을 계기로 이리의 익산보화원과 이리보육원이 늘어나 원불교 사회사업의 면목을 갖추었다.

고아사업의 발전에 비하여 양노사업은 늦게 출발하였다. 원기34년(1949) 5월경 전주 지부장인 吳頭山교도의 자택에서 무의탁 노인 3명을 수용하여 전주양노원을 설립하였으나 원불교 최초의 양노원 설립인가는 원기37년(1952) 신용요양원을 들 수 있다.

양노사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신용양노원과 그후 신설된 양노원은 노년에 정신수양을 강조하는 원불교 교지에 바탕하여 수양원 또는 요양원의 형태로 명칭을 달리 사용하였다.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원불교 자선기관이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했던 시기는 원기60년(1975)대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의 발족과 부랑인 보호시설인 자선원의 개원, 중앙수양원의 장수분원 설립, 원기71년(1986) 원광노인요양원의 설치인가 또한 재가교도의 자선사업기관인 한국보육원과 유린새마을유아원 영입 등이 있었다.

□ 아동복지기관

1. 서울보화원

가. 설립배경

원기30년(1945) 8·15해방을 맞이하자 세계각지에 흩어져 있는 전재동포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왔다. 전재동포들의 구호사업과 아울러 나타난 전재고아의 수용은 불가피한 상황이였으며, 이것은 원불교 고아 자선사업의 효시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고아의 문제가 직면함에 따라 宋道性교무는 고아들을 모았고, 모아진 18명의 고아들을 원기30년(1945) 12월 10일 동대문병원(現이대부속병원)에 수용하였다.

원기31년(1946) 2월에 다시 고아들을 한남동의 正覺寺로 옮겼다. 정각사는 원래 이동방문제등실의 원찰이었는데 중천 권태랑 등의 역할로 약초관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 중천 권태랑이 중앙총부에 와서 소태산대종사의 큰 뜻을 알아보기도 하고 송도성교무와의 대면 끝에 약초관음사를 인수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황정신행교도가 그곳에 갔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 이동진화, 황정신행, 송도성, 이성신 등이 묵고 있었으며 그곳을 소유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고아들을 수용했다. 일단 명분이 서게 되므로 《전재 구호소》라고 간판을 걸고 실적을 올림으로써 보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재구호소는 후에 《서울보화원》이라 개명하였다.

개원 당시 원장에는 黃淨信行(溫順)교도가 취임했으며 수용된 원아는 유아 15명을 포함해서 35명이였으며 임원은 20명이었다.

이 당시 송도성교무는 외부원조만으로는 불어나는 원아들을 돌볼 수 없다는 판단아래 동 3월에 고아원 운영 지원방안을 협의차 중앙총부에 내려오는 도중 과로에 겹쳐 발진티푸스에 감염되어 치료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동 3월 27일에 열반하였다.

사회유지와 외국사절단들의 지대한 관심이 지속되었던 서울보화원은 정부의 관심속에 황정신행원장이 사회사업시찰단의 일원으로 동 4월에 런던으로 떠났으며, 그 후임으로 曺一貫교무가 원장에 취임했다.

원기35년(1950) 서울보화원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원사의 소실과 시국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존속난에 봉착하자 원아를 총부로 이송했으며, 이것이 나중에 익산보화원의 모체가 되었다.

나. 서울보화원의 분산 및 폐쇄

1) 분　산

6·25사변으로 인하여 원아들을 피신시켜야 할 상황에 처함에 따라 원장인 조일관교무는 일부 고아들을 데리고 수원근교의 용주사로 피난했으며, 나머지 원아들은 총무인 박동진과 김은숙이 이끌고 중앙총부로 내려오게 되었다.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이리의 원아들은 그대로 남아서 익산보화원으로 별립되고 수원 용주사 원아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리원아들은 박동진이 맡고 서울은 원장인 조일관교무와 총부에서 파견된 이수오교무가 조력하게 되었다.

조일관교무는 한남동 서울보화원으로 돌아갔으나 6·25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되어 보화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결국 미군의 도움을 받아 전임원장인 황정신행교도 소유의 이대부속 병원으로 들어갔다.

고아들은 일선에서 매일 100여명씩 밀려 들어왔다. 고아들의 수용인원은 500여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때의 서울보화원은 서울중립아동보호소 대행역할을 했다. 그리하여 밀려 들어오는 고아들을 수용함과 동시에 매일 100여명씩 지방으로 배치시키는 일을 하였으며 이때 교육부장은 이수오교무가 섭외는 조창돈교도가 총무에는 오홍인이 부임했다.

한편 황정신행교도는 원기22년(1937)에 동대문 부인병원을 인수했다. 원기26년(1941) 3월, 3년기한으로 이화여대에 빌려주었는데 해방이후 이대측 金活蘭과 소유권 쟁의가 벌어졌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운영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화여대에서 운영할 수 없어서 팔때 샀다. 그런데 6·25이후 선교사들이 돌아와 돌려달라고 해서 재판이 붙었으나 패소하여, 동대문병원이 10여년의 소송끝에 梨大측에 明渡를 당하게 되었다. 수백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동대문병원에 있는 원아들을 강제 퇴거시켰다. 갈곳이 없어진 고아들은 세 갈래길로 분산하게 되었다. 이수오교무는 유치부 100여명을 이끌고 한남동 정각사의 부속건물로 들어가고 趙日敎는 원아의 일부를 이끌고 博文寺(現 호텔신라 자리)로 가고 오홍인은 홍제보육원으로 별립하여 나갔다.

결국 홍제보육원과 박문사 고아원은 완전히 별립하여 나가고 정각사 고아원만이 서울보화원의 명맥을 계승하였다.

한편 박문사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불하받지 못하고 조일교는 원아들을 이끌고 경기도 포천방면으로 옮겨갔다.

2) 폐　쇄

정각사는 수도원장 李共珠교무의 사재로 불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서울보화원은 언젠가는 자리를 옮겨야할 형편이었다.

원기49년(1964) 11월 수도원 지방대표자 회의에서 재산운영권을 수도원에 이양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서울보화원은 폐쇄하기로 하였다.

서울보화원을 폐쇄하기로 했을 때에는 몇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 첫째, 전쟁이 끝난 지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고아의 수효가 격감하였다. 둘째, 당시 원광고교의 부채관계로 수도원 부지 3천여평이 매각 처분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시의 허가를 얻어 고아원을 폐쇄하기로 하고 남은 고아들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와 홍제고아원 및 한국보육원으로 분산시켰다.

3) 운 영

원기35년(1950) 제3회 중앙교의회에서 서울보화원유지책이 상정된 바 있으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6·25를 맞았다. 이후 9·28수복 후 원장인 曺一貫교무의 헌신적인 노력과 총무인 李修悟교무의 노력으로 힘들게 꾸려나갔다.

경제적인 후원은 국고보조(서울시청)와 미8군 사령부의 후원이 있었으며, 한때 양주농장을 운영하였다.

2. 익산보화원

가. 설립배경

9·28수복으로 서울원아들이 일부 상경하였으나 남아있는 원아들은 前學林校舍에 수용하였다. 점차로 원아가 증가되고 당국의 권유가 있자 교단에서는 익산보화원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초대원장에 宋慧煥(당시 보화당 한약방 원장 겸임)교무, 부원장에는 朴東鎭, 경리는 朴永權이 맡았다.

원기38년(1953) 운영실무자로 金仁龍교무가 부원장으로 부임하고 정부로부터 원사신축자재를 지원받아 중앙총부 도원(현 원광대학교 중강당 앞)에 건평 120평의 원사 3동을 짓고 완전 이사하였다. 원기47년(1962) 8월 鄭性德교무가 국립사회복지 연수원에서 사회사업지도자과정 3개월 코스를 이수하였다. 원기50년(1965) 4월 8일 원광대학의 확장계획에 따라 원사를 폐쇄하고 이리보육원으로 통합하였다. 이로써 익산보화원은 설립된 지 15년만에 통폐합 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 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宋 慧 煥(東煥)	男	1905. 2.12	36. ~41.	
2	朴 將 植(天植)	〃	1911. 1. 9	41. 12~42	몇달동안 재직
3	趙 甲 種(孝南)	〃	1905. 5.13	42. ~49.	

다.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 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부 원 장	朴 東 鎭(鍾遠)	男	1926. 8. 3	36.~38.	
부 원 장	金 仁 龍(判龍)	〃	1922.10.16	38.~	
총 무	朴 永 權(明德)	女	1918.11.13	36.~41.	
〃	李 百 徹(致炯)	男	1927. 4. 9	41.~47.	
〃	鄭 性 德(弼煥)	〃	1930. 8.20	47. 8~	

라. 자산현황

- 주소 : 이리시 신용동(現 원광대학교 중강당 앞)
- 창립당시(원기36년) 농산 및 축산 시작
- 원기38년(1953) 중앙총부 과수원인 현 원광대 중강당 자리에 건평 120평(3동) 축조
- 대지 1,000여평, 과수원 1,000여평, 논 44,300평, 답 2,400평.

마. 연도별 수용인원

원기36년(1951)~원기50년(1965)

연 도	36	37	39	41	42	43	44	49
인 원	80명	150명	200명	200명	150명	250명	250명	85명

바. 특별활동

1) 부설 고등공민학교 운영

원기39년(1954) 2월부터 시작된 1천여평의 대지를 정리한 후 강당 숙사 취사장 창고 등 건축을 완료하고 12월 20일 입주를 마치었으며, 그동안 미취학 아동들의 園內교육을 실시해 오

다가 원생의 학업지도와 지역사회봉사를 위해 원광고등공민학교 설립을 추진했다. 원기40년(1955) 6월 1일 중앙총부에서 夏享祭를 마치고 오후에 개교식을 가졌다. 교장은 중앙총부 교무부장인 정광훈교무가 겸임하고 교사들은 보화원 직원과 특별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였는 바 당시 교사진은 鄭性德, 朴利之(교감), 趙正勤, 鄭維誠, 崔泰根, 金根玉, 朴正基, 韓海仙 등이다.

원기42년(1957) 공익부 산하 동화병원 건물이 비게 되자 고아원에서 독립하였다. 그러나 운영지원이 전혀 없었으므로 학생들로부터 약간의 찬조금과 자원봉사 교사들(원대생)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수년이 경과한 후 공익부장 宋圓徹교무의 영단으로 신축교사를 지어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게 된다.

부설 고등공민학교는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 진학의 기회를 열어주었으며 원불교 교역자 인재육성기관으로 역할을 대행하기도 했다.

2) 자영농장 운영

보화원내에 자영농장을 운영 종교적인 교양주입과 농원경영을 통한 실습지도로써 자력심을 향상시켰다.

사. 배출된 전무출신

번호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천교무	비고
1	金 用 植(容順)	女	1915. 1. 19	19. 3. 19	42. 5. 10	李 百 徹	
2	崔 靈 石(順子)	〃	1917. 2. 20	28. 1. 28	38. 6. 30	徐 大 仁	

3. 이리보육원

가. 설립배경

원기9년(1924) 이리시 旭町(지금의 갈산동)에서 具然穆씨 등이 10여명의 부랑아동을 모아 시작한 것이 처음이었다. 8·15해방을 맞이하여 시내 마동(舊 농장)으로 이동하여 시립애육원으로 발족하고 기독교인에게 관리를 운영케 하였다. 원기38년(1953) 5월 28일 관리 운영의 부실로 이리시청으로부터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도록 위임되었다. 초대원장은 송혜환교무, 총무는 박동진이었다. 수용아동은 320명이었고 취학아동은 고등학교 3명, 중학교 12명, 국민학교 100명이었다. 직원 16명중 교사 8명이 원내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과정은 유치부(국교1~6년 과정)와 중등부(중학1~2년 과정)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원기42년(1957) 3월 이리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리시 소유의 대지와 건물을 불하받고 동 4월 25일자로 재산권을 이양받았으며 동 9월 20일자로 재단법인 원불교 사회복지시설로 인가받았다. 이로써 서울, 익산의 두 보화원에 이어 세번째의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되었다. 총무 이철행교무는 동 9월 20일자로 원장에 취임하였으며 아울러 시설명칭도 이리보육원으로 개칭하였다.

나. 익산보화원의 통합 및 이동

원기50년(1965) 4월 8일자로 익산보화원이 폐쇄되자 이리보육원에 통합되었으나 익산보화원은 원광대학 캠퍼스의 확장으로 불가불 옮겨야 할 처지인데다가 고아의 숫자도 줄어드는 추세였으므로 이리보육원으로 통폐합된 것이다. 신임 실무책임자로 박해운을 부원장에 발령하고 원장에는 조갑종교무가 취임하였다. 정부의 자립시책 10개년 계획(1966~1975)에 따라 자체 시설보수와 영농, 양계, 양돈 등을 강화하였다.

원기50년(1965) 12월 이리시 도시계획에 따라 시설이 일부가 철거되었다.

이리수출자유지역 공업단지가 보육원 부근으로 확정되고 시장이 개장됨에 따라 보육원 원사는 옮겨야 할 처지가 되었다. 원기51년(1966) 3월 마동의 원사를 매각 처분한 자산으로 신동에 새로운 원사를 지어 동 9월에 준공 이사하였다.

시설의 증축에 따라 수용정원 130명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갱신허가를 받고 원기66년(1981) 7월에는 수용인원을 150명으로 늘리었다. 동년 6월 29일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의 발족에 따라 동 법인 시설로 통합되었다.

다.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 명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具 然 穆	男	1904. 3. 25	~19.	
2	宋 姓 女	女		19. ~20. 9	
3	裡里市長	男		20. 9 ~30. 9. 15	
4	宋 慧 煥(東 煥)	〃	1905. 2. 12	37. ~37. 5. 25	
5	趙 甲 鍾(孝 南)	〃	1905. 5. 13	37. 5. 25~39.	
6	李 喆 行(喆 行)	〃	1928. 12. 12	41. 7. 30~49. 4. 5	
7	李 亨 局(亨 淑)	〃	1899. 11. 23	49. 4. 8~50. 4. 2	
8	趙 甲 鍾(孝 南)	〃	1905. 5. 13	50. 4. 23~51. 5. 2	
9	朴 海 維	〃	1913. 7. 10	51. 5. 3~56. 3. 31	
10	金 西 悟(書 男)	〃	1926. 12. 16	56. 4. 1~	

라. 역대 재직 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 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서 무	徐 大 仁(今禮)	女	1914. 12. 11		
서 무	丁 盛 熟(石鐵)	〃	1922. 9. 5		
교 사	姜 雲 祥(東日)	男	1934. 8. 24		
주 무	李 亨 局(亨淑)	〃	1899. 11. 23	41. 4. 20~51. 4. 23	
서 무	鄭 敬 薰(達柱)	〃	1936. 12. 10		
총 무	張 正 現(在洙)	〃	1923. 4. 2	49. 3. 2~49. 11. 25	
총 무	金 光 昌(基豊)	〃	1922. 7. 9	49. 11. 26~50. 7. 6	
서 무	金 剛 仁(磁煥)	〃	1930. 5. 13	50. 4. 15~54. 7. 24	
생활지도	金 淵 聖(七星)	男	1934. 12. 7	50. 12. 21~53. 10. 31	
감 원	李 永 華	女	1927. 1. 10	55. 2. ~56. 2.	
총 무	吳 聖 洙(聖培)	男	1934. 11. 20	55. 12. 1~56. 6. 1	
〃	河 大 淵(祥均)	女	1933. 4. 4	56. 4. 1~	
〃	姜 主 煥(未子)	〃	1941. 1. 14	56. 5. 1~	
서 무	安 世 雄(天容)	男	1946. 7. 26	58. 4. 1~	
서 무	朴 純 基(寶順)	女	1942. 10. 13	58. 3. 1~58. 4. 30	
총 무	金 兆 允(永錫)	男	1928. 9. 3	39. 9. 17~44(59.1.4~)	
교 무	金 正 敏(有德)	女	1945. 2. 21	59. 4. 15~61. 3. 31	
생활지도	金 性 圓(末順)	〃	1947. 5. 17	59. 4. 15~	
보 모	趙 啓 雲	〃	1932. 7. 20	59. 9. 2~	
총 무	金 正 文(炳武)	男	1935. 5. 30	59. 11. 30~67. 3. 23	
보 모	姜 南 薰(福順)	女	1940. 2. 5	62. 2. 19~71. 3.	
교 무	南 宮 恩(花子)	〃	1942. 12. 16	63. 1. 1~66. 7. 31	
교 무	金 蓮 奎(順禮)	〃	1948. 8. 13	63. 1. 1~70. 1. 31	
서 무	韓 英 覺	〃	1957. 11. 20	64. 10. 1~65. 9. 30	
교 무	金 道 運(有任)	〃	1952. 1. 21	66. 8. 1~67. 3.	
교 무	申 孝 碩(英淑)	〃	1951. 3. 12	70. 2. 1~71. 1. 31	
서 무	李 明 心(惠 淑)	〃	1959. 1. 17	68. 1. 1~68. 4. 10	
교 무	劉 妙 圓(貞子)	〃	1953. 9. 15	71. 3. 1~	
교 무	姜 敬 悟(期午)	男	1955. 4. 18	71. 3. 1~	

마. 자산현황

• 주소 : 이리시 신동 765-24

• 총 8,942평(논 2,802. 밭 5,714. 건물 13동 426평)
• 기숙사 2, 식당 1, 목욕탕 2, 독서실, 피복실, 창고 등
• 자산수입 3%, 영농수입 6%, 국고보조 85%, 성금 6%

바. 연도별 수용 인원

연 도	수용정원	현 원			신입자수			배출자수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52	90	111			25			30			
56	〃	77			8			10			
57	〃	91	54	37	30			16			
58	〃	93	55	38	13			11			
59	〃	90	56	34	21	11	10	24	10	14	
60	〃	90	59	31	38	22	16	41	18	23	
61	130	107	69	38	29	18	11	12	8	4	
62	〃	120	81	39	24	20	4	11	8	3	
63	〃	125	83	42	38	22	16	33	20	13	
64	〃	129	88	41	44	27	17	40	22	18	
65	〃	176	43	133	27	17	10	23	15	8	
66	150	143	93	50	33	22	11	23	19	4	
67	〃	150	98	52	43	26	17	36	22	14	
68	〃	150	95	55	16	9	7	16	12	4	
69	〃	150	103	47	22	17	5	22	9	13	
70	〃	150	100	50	19	10	9	19	10	9	
71	〃	150	99	51	10	6	4	10	7	3	
72	〃	150	95	55	15	7	8	15	11	4	

사. 배출된 전무출신

번 호	법명(호적명)	성 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천인	비 고
1	徐 正 稷(升源)	男	1958. 11. 4	59. 3. 29	66. 1. 15	金 西 悟	
2	朴 彰 修(敏權)	〃	1963. 9. 5	64.	67. 1	〃	
3	金 圓 眞(鍾德)	〃	1967. 5. 20	65. 5.	69. 1	〃	
4	申 宰 圓(正元)	〃	1964. 1. 1	63.	68. 1	〃	
5	金 現 吉(鍾福)	〃	1965. 4. 30	65. 3. 13	69. 1. 2	〃	
6	孫 成 振(昌英)	〃	1967. 6. 24	65. 3	70.	〃	

7	鄭 敬 薰(達柱)	男	1936. 12. 10	40. 3. 25	50. 12.	李 喆 行	
8	曺 喜 悅(喜錫)	〃	1915. 3. 17	16.	46. 1. 15	李 亨 局	

아. 후원단체 및 후원인

번호	후원단체 및 후원인	결성년월일	후원내용	비 고
1	미국아동재단	60	양육비 및 축하금	존 속

자. 수상내역

상장번호	종 별	수상년월일	수 상 자	공 적	비 고
	전 북 도 청	39. 3. 5	이리보육원	모 범 시 설	
	〃	53. 5. 10	〃	무 용	
	〃	54. 5. 9	〃	〃	
	〃	54. 10. 2	〃	축 구	
	〃	55. 9. 30	〃	배 구	
	대 한 민 국	70. 1. 7	金 西 悟(書男)	동 백 장	
	이 리 시	70. 11. 1	〃	공 익 부 문	

4. 한국보육원

가. 설립 배경

원기35년(1950) 6·25로 인한 전쟁고아를 서울 종로국민학교에 임시 수용하고 《서울시립아동양육원》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듬해 1·4후퇴에 따라 미국 공군 Hess대령의 도움으로 인천부두에 방치된 907명의 고아가 제주도에 공수되었다.

동년 3월에 이승만 대통령의 제의로 황정신행(온순)이 원장직을 맡아 《한국보육원》이라 명명하고 운영해 왔다. 즉 이승만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장관 이기붕이 제주도에 가서 한국보육원을 운영해 달라고 부탁, 이때 Hess대령이 일본 구주 미공군에게 연락하여 비행기 17대로 한달 먹을 양식과 고아를 수송해 주었다. 제주도 제주농업학교 간판을 떼고 《한국보육원》이라

써서 붙였는데, 그 당시 원아들은 901명, 교사는 105명이었다. 모두 예수교 신자이고 황정신행원장 혼자 불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원기51년(1966) 그 당시 영화를 찍기 위해 생존 원아 35명, 교사 5명, 황원장이 미국 할리우드로 초청되어 「전송가(비틀힘)」를 촬영하기도 했다.

원기40년(1955) 11월 제주도에서 서울 휘경동(現 휘경여중)으로 이전하였다가 원기43년(1958) 7월 《재단법인 한국보육원》으로 법인인가를 취득하고 원기55년(1970) 1월에 경기도 양주군(現 위치)으로 시설을 이전 수용하였다.

설립당시 인원은 46명(남24, 여22)이었으며, 한국보육원이 휘경동으로 오기까지 7년동안 교역자로서 헌신적인 봉사를 해왔던 사람은 丁慶浩교무였다.

원기62년(1977) 8월에 기독교 계통인 대한복지회에 시설운영을 맡겼으나 여의치 않아 원기67년(1982) 4월에 시설 및 재산을 반환 받았다.

朴昌基교무는 公道者崇拜의 少太山大宗師의 일원대도 정신 실천을 위하여 교단의 공도자인 황정신행교도의 자제 강필국을 6·25의 전화로부터 구출하려다 2인이 함께 참사를 당하였다.

이들의 사망지인 경기 장흥 한국보육원을 사회복지법인《昌弼財團》이라 명명하였다. 황정신행교도는 이 사회복지법인 창필재단을 설립하여 원불교에 희사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초 대	黃淨信行(溫順)	女	1903. 7. 10	36. 3.~	

다. 역대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명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부 원 장	金 正 文(炳武)	男	1935. 5. 30	67. 3. 24~68. 1. 1	
보 모	鄭 潤 才(福禮)	女	1925. 7. 25	67. 4. 1~68. 1. 30	
〃	金 道 運(有任)	〃	1952. 1. 21	67. 4. 1~68. 1. 30	
부 원 장	姜 雲 祥(東日)	男	1934. 8. 24	68. 1. 1~71. 2. 28	
보 모	成 基 潤(英順)	女	1955. 2. 28	68. 1. 1~71. 2. 28	
〃	卞 大 振(善心)	〃	1951. 12. 8	68. 4. 1~68. 10. 30	
부 원 장	鄭 貴 圓(權柱)	男	1951. 1. 1	71. 3. 1~72. 1. 31	
총 무	李 心 眼(銀子)	女	1952. 10. 26	71. 3. 1~72. 1. 31	
부 원 장	金 正 有(載璟)	男	1951. 2. 21	72. 2. 1~	
총 무	金 淵 中(映禮)	女	1957. 12. 27	72. 2. 1~	

라. 자산현황

- 주소 :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10
- 대지 : 924평
- 건물 : 4동 344.174평(아동숙사 238.25평, 단층창고 32.857평, 단층법당 40.189평, 단층매점 22.73평, 단층숙사 8.924평, 단층변소 1.224평)
- 기타부동산 : 11,091평(밭 6,798평, 논 1,982평, 임야 602평, 잡종지 1,709평)

마. 연도별 수용인원

연 도	수용정원	현 인 원			신입자수			배출자수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7	50	39	22	17	3	2	1	9	5	4	
68	50	42	24	18	5	2	3	3	1	2	
69	50	43	25	18	8	5	3	8	5	3	
70	50	46	25	21	8	2	6	5	2	3	
71	50	46	25	21	6	4	2	6	5	1	
72	50	55	29	26	12	8	4	3	3		

바. 후원단체 및 후원인

번호	후원단체 및 후원인	결성년월일	후 원 내 용	비 고
1	한국어린이재단	67	아동후원자 결연	존 속
2	서울 동·서부 봉공회	〃	물품 및 노력봉사	〃

사. 특별활동

활 동 명	기 간	주관처	목 적	대 상	활 동 내 용	비고
원불교동·서부교구 봉공회봉사활동	69. ~ 현재	동·서부교구 봉 공 회	보육원 일손돕기	매 주 5~10명	매주1회 농사일돕기, 세탁봉사, 부식 및 생활용품 보조	
원불교서부교구청년회 일요교사학습활동	72.4~ 현재	서부교구 청 년 회	원아들 학습지도	10명	매주 일요일 오전 원아 학습지도 실시	

5. 개성유린관

원기71년(1986) 1월 16일 중앙총부 원의회는 종로교당(개성교당 출신) 尹致德교도의 희사를 받아들여 사회복지법인 개성유린관을 원불교 교단의 사회복지기관으로 발족시키기로 하였다. 서울 동대문구 신내동 572-2에 위치한 대지 1,060평, 연건평 2백평의 건물 4동의 유린새마을유아원을 인수하고 이사 7인중 3명은 윤교도 가족으로 하고 4인은 교단측에서 선임하여 운영키로 합의하였다.〈※자세한 내용은 교구교당편=서울동부교구 유린교당참조〉

□ 노인복지기관

1. 중앙수양원

가. 설립 배경

원불교 창립 원로들의 노후 요양대책이 교단 내적으로 절실하게 제기 되었다. 이에 원기34년(1949) 4월 총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 의제로 거론되었으나 원기35년(1950) 6·25사변으로 실현이 연기되었다. 원기37년(1952) 3월 15일 전라북도 당국으로부터 설치인가를 받았는 바, 이것이 중앙수양원의 전신인 신용양노원(익산양노원)이다.

설립장소는 총부구내(금강원 방 2간을 빌려 시작하였으며 설립대표자는 宋慧煥(東煥·보화당원장)교무이었다. 원기40년(1955) 7월 중앙총부입구 신동 280-11번지에 본관 50간 식당 6간의 시설을 마련하여 대내외의 양노원 면모를 드러냈다. 당시 건축기금은 자체예산과 전라북도 당국의 구호자재로 이루어졌다.

신용양노원은 원기69년(1984) 4월 23일 중앙수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 바, 그 이유는 우선 양노라는 통상명칭이 노쇠한 육신을 보양한다는 어감을 풍기기 때문에 老來에 정신수양을 강조하는 원불교 전통에 적합치 않다는 의견과 수양원 노인들의 대부분이 원불교의 교역자를 역임하였거나 독실한 원불교 신앙인이기 때문이며, 또한 일과생활이 수도인의 일과를 준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임원은 원장 1인, 부원장 1인, 총무 1인, 간호사 1인, 보모 3인, 취사원 2인이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宋 慧 煥(東煥)	男	1905. 2. 12	34. 4. 26~43. 2. 25	
2	趙 甲 鍾(孝南)	〃	1905. 5. 13	43. 2. 25~47. 5. 1	
3	成 丁 哲(丁鎬)	〃	1902. 11. 2	47. 5. 1~66. 3. 1	
4	權 誠 天(莊植)	〃	1922. 10. 25	64. 3. 1~66. 2. 28	
5	尹 致 聖(致遠)	〃	1922. 4. 28	66. 3. 1~	

다. 역대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부 원 장	鄭 碩 德(宗吉)	男	1924. 3. 10	56. 4. 30~70. 3. 1	
〃	鄭 潤 才(福禮)	女	1925. 7. 25	68. 3. 1~	
총 무	金 西 悟(書男)	男	1926. 12. 16	39. 4. 5~56. 2. 28	초창공인
〃	權 俊 圓(在完)	〃	1940. 4. 25	57. 4. 1~59. 5. 25	
〃	金 三 印(順禮)	女	1934. 10. 29	59. 5. 26~62. 5. 30	
〃	金 理 聖(忠鉉)	男	1928. 2. 8	62. 5. ~64. 1.	
〃	羅 今 柱	〃	1930. 1. 20	64. 2. 1~66. 7. 30	
〃	吳 光 益(碩毛)	〃	1947. 12. 29	66. 8. 12~68. 2. 28	
〃	成 時 鍾(時鍾)	〃	1953. 4. 14	69. 12. 10~72. 2. 28	
〃	金 兆 允(永錫)	〃	1928. 9. 3	71. 2. 1~	
농 감	申 普 根(鳳雨)	〃	1929. 1. 14	69. 3. 1~	
영 농	高 大 奉(一錫)	〃	1935. 10. 30	66. 3. 1~	
교 무	趙 啓 雲	女	1930. 6. 29	54. 6. 7~58. 2. 28	
〃	崔 純 圓(今順)	〃	1935. 6. 25	62. 5. 1~67. 2. 28	
〃	李 惠 善(玄南)	〃	1937. 9. 21	65. 8. 20~66. 8. 30	
〃	尹 順 培(次順)	〃	1916. 6. 30	57. 4. 1~59. 5. 25	
〃	張 三 正(현증)	〃	1952. 6. 4	66. 3. 1~67. 2. 20	
봉 공	韓壽福華(福德)	〃	1918. 1. 14	51. 1. 1~69. 12. 31	
〃	崔 敬 仁(正順)	〃	1929. 2. 27	60. 4. 5~61. 12. 31	
〃	李 佑 正	〃	1918. 6. 30	60. 4. 5~61. 12. 31	
〃	金 順 局(允成)	〃	1919. 5. 14	61. 3. 1~72.	
〃	金濟船華(今子)	〃	1925. 2. 19	62. 6. 10~65. 12. 30	
〃	朴 順 玉(玉姬)	〃	1934. 4. 30	68. 3. 1~72.	
〃	金 淨 勤(載德)	〃	1917. 3. 15	68. 3. 1~69. 12. 31	
〃	金 道 耕	〃	1939. 2. 10	69. 3. 1~72.	

라. 배출된 전무출신

번호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천교무	비 고
1	朴 贊 明(秀子)	女	1940. 7. 20	39. 11. 2	46. 5. 1	金 大 根	
2	安 世 雄(天容)	男	1946. 7. 26	49. 2. 28	47. 3. 28	成 丁 哲	
3	李 倫 正(玉衍)	女	1929. 3. 12	43. 2. 25	45. 5. 5	曺 專 權	
4	韓壽福華(福德)	〃	1919. 1. 9	49. 6. 5	67. 11. 30	尹 致 聖	

마. 자산현황

• 주소 : 이리시 신동 280-11

원기71년(1986) 현재 시설규모는 대지 1,674평, 건평 405(18동) 수용인원 80명(남 8, 여 72)이다.

운영재정은 국고보조 65% 영농수입 18% 기본자산수입 13% 성금 4%의 실적으로 비교적 자립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바. 연도별 수용인원

연 도	수용정원	현 원			신입자수			배출자수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34		15	5	10							
63	60	60	8	52				3		3	
64	〃	59	7	52	4		4	5	1	4	
65	〃	60	5	55	9	1	8	8	3	5	
66	〃	60	3	57	6		6	6	2	4	
67	100	60	4	56	7	1	6	7	1	6	
68	〃	72	8	64	18	4	14	6		6	
69	〃	71	6	65	2		2	3	2	1	
70	100	78	6	72	8		8	1		1	
71	〃	88	7	81	12	1	11	2		2	
72	〃	94	7	87	8		8	2		2	

사. 수상내역

상장번호	종 별	수상년월일	수 상 자	공 적	비 고
5059	전 북 지 사	1978. 5. 8	鄭 碩 德(宗吉)	사회복지사업공로상	부원장
1201	대 통 령	1980. 5. 8	成 丁 哲(丁鎬)	국민훈장석류상	원 장
52705	대 통 령	1981. 5. 8	韓壽福華(福德)	봉사공로상	봉 공

2. 전주양노원

가. 설립배경 및 연혁

중앙수양원이 출가들의 발의로 총부구내에 세워진데 대해 전주양노원은 재가들에 의해 지방에서 설립된 양노원이라는 데에 특징이 있다. 원기34년(1949) 5월 15일 전주지부 金永信·全基徹교무 및 吳頭山지부장 외에 趙容碩·白妙一行·趙循環·崔恩惠華·金奉淑·柳秋成·林昌一 등이 발의하여 동년 6월 1일 완주군 상관면 대성리 65번지 吳頭山 지부장댁을 빌려 개원하고 최초로 白妙一行·趙循環·金奉淑 3인을 수용하였다. 원기37년(1952) 3월 10일 전주시 완산동 50번지에 대지 100평, 목조와가 1동을 매입하여 이전하고 원기42년(1957) 7월 10일 전북사인 제8호, 동 10월 25일 전북문사 제1806호로 후생시설 인가를 받았다. 원기44년(1959) 9월 10일 중앙총부에서 처음으로 吳性洙교무를 총무로 임명하여 전주지부에서 중앙총부 관할로 전환하였다. 원기45년(1960) 3월 10일 전주시 교동 2가 89－1번지 前 원불교 전주지부 사옥을 매입하여 이전하였고 원기46년(1961) 6월 30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사회단체 등록을 받았다.

원기50년(1965) 9월 25일 권성천교무가 총무로 취임하였다. 원기51년(1966) 4월 25일 현소재인 전주시 덕진동 1가 1358－1번지외 1필 대지 1,017평과 와가 1동을 매입하여 이전하였고 원기52년(1967) 4월 30일에는 권성천교무가 원장에 취임하였다. 원기58년(1973) 11월 숙소 25평 1동 및 15평 1동을 개축하고 원기60년(1975) 7월 법당 31평 1동을 신축하였으며 원기62년(1977) 12월 목욕탕 8평 동년 6월 29일 중앙총부 재무부에서 보건사회부 제615호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인가를 받고 10월 29일 전주시장의 양노시설 인가를 받았다. 원기68년(1983) 11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2층 104평 1동(1층 식당 2층 숙소)를 신축하고 원기69년(1984) 1월 창고 10평 1동을 증개축하였다.

당시 자립기반이 빈약하고 국가보조 및 법인부담이 열악했던 조건하에서 운영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손수레를 끌고 음식점을 찾아 다니기도 하고 양돈 전작 과수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 90명 정원에 이르고 있다.

직원은 원장 1인, 총무 1인, 간호사 1인, 보조원 2인, 취사원 1인 등 모두 6명이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고문	吳 頭 山	男		34. 6. 1~50. 3.	
1	趙 容 碩	〃		34. 6. 1~50. 3.	在 家
2	閔 道 淵	〃	1905. 2. 5	50. 4. ~51. 3.	出 家
3	權 誠 天(莊植)	〃	1921. 10. 7	50. 9. ~	〃

다. 역대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총 무	吳 聖 洙(聖培)	男	1934. 11. 20	44. 9~49. 3.	
〃	丁 應 文	〃	1931. 4. 26	49. 4.~50. 9.	
〃	權 誠 天(莊植)	〃	1922. 10. 25	50. 9.~56. 4.	
〃	卜 善 根	〃	1942. 4. 5	56. 6.~57. 3.	
교 무	李 永 華(正順)	女	1926. 12. 7	51. 3.~52. 2.	
〃	金 正 根(旺禮)	〃	1929. 10. 12	54. 3.~56. 2.	
〃	李 敬 倫(敬淑)	〃	1935. 1. 17	63. 7~66. 2.	
〃	宋 德 常(銀順)	〃	1949. 2. 26	67. 1.~	

라. 배출된 전무출신

번호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천교무	비 고
1	宋 慧 慈(金英)	女	1950.10.19	48. 5	55.	全 基 徹	
2	李 眞 誠(粉順)	〃	1950. 6.20	50. 1.	51. 1	權 誠 天	
3	崔 眞 光(成春)	男	1955. 4. 9	59.10.24	66. 1.15	全 二 昌	
4	韓 明 正(順子)	女	1941. 8.17	49.12. 2	49. 9.15	安 理 正	

마. 자산현황

• 주소 : 전주시 덕진동 1가 1358−1

원기71년(1986) 현재 재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밭 3,709평, 논 5,848평, 대지 1,017평, 건물 10동 310평

바. 연도별 수용인원

연 도	수용정원	현 원			신입자수			배출자수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34		3		3							
38		3		3							
40		5		5	2		2				
44		5	1	4	1	1		1		1	
47		6	1	5	1		1				
50		7	1	6	2		2	1		1	
59		40	3	37	5	1	4	3		3	
60		44	5	39	6	2	4	2		2	
61		46	6	40	5	1	4	3		3	
62		47	4	43	5		5	4	2	2	
63		50	7	43	8	3	5	5		5	
64		55	8	47	8	2	6	4	1	3	
65		60	9	51	10	2	8	5	1	4	
66		60	9	51	6	1	5	6	1	5	
67		65	8	57	11		11	6	1	5	
68		76	8	68	14	1	13	3	1	2	
69		81	9	72	10		10	6		6	
70		84	9	75	10	1	9	7	1	6	
71		86	10	76	9	2	7	7	1	6	
72		84	11	73	7	2	5	9	1	8	

바. 수상내역

상장번호	종 별	수상년월일	수 상 자	공 적	비 고
1238	표 창 장	54. 12. 31	權 誠 天	양 노	전북도지사
760	〃	55. 10. 3	〃	〃	〃
777	〃	57. 12. 30	〃	〃	〃
1804	〃	59. 8. 15	〃	〃	〃
2542	감 사 장	60. 5. 8	〃	〃	〃
6194	표 창 장	61. 5. 8	〃	〃	〃
350	〃	61. 5. 17	〃	〃	보사부장관
57407	〃	68. 5. 8	〃	〃	대 통 령

3. 장수수양원

가. 설립배경

원기44년(1959) 10월 장수교당 윤석인교도의 회사로 목조와가(12평)를 개수하여 임시 수양시설을 개설하였다. 원기64년(1979) 6월 15일 장수교당이 장수읍으로 신축이전하고 현 건물(장수군 장수읍 동촌리)은 동촌교당으로 개명하여 신선혜교무가 취임하였다. 잠시 운영하다가 정산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후일에 전무출신 요양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총부 공익부로 운영과 재산권을 이양했다.

원기69년(1984) 11월 5일 제212회 임시원의회에서 중앙수양원 장수분원 설치를 결의함과 아울러 원기70년(1985) 3월 4일에 초대원장으로 정석덕교무가 취임했다. 원기71년(1986) 11월 14일 장수군청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허가를 취득했다. 원기71년(1986) 4월 1일에 숙소 3간을 확장하여 정식 개원을 하고 무의탁노인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원기72년(1987) 현재 임원은 원장 1인, 총무 1인, 간호사 1인, 감원 2인이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鄭 碩 德(宗吉)	男	1924. 3. 10	70.~	

다.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교 무	朴 世 正(正順)	女	1932. 9. 6	71. 3. 24~	
총 무	金 義 謙(義謙)	男	1956. 7. 19	72. 8. 3~	

라. 자산현황

• 주소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443-1
대지 425평, 건물 50.5평(3동)

마. 연도별 수용인원

연 도	수용정원	현 원			신입자수			배출자수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1	50	12	4	8							
72	〃	19	6	13	8	3	5	1	1		

4. 원광노인요양원

가. 설립배경

전북 유일의 노인 치료전문 요양기관이 이리시의 재정상태가 취약한 관계로 설립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원기71(1986)년 1월 16일 제15회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교단 6대사업의 하나인 자선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요양원 설립을 승인했다. 동년 1월 23일에 보건사회부 및 이리시로부터 건축보조금 지원을 약속받고 가인가를 받은 후 10개월 동안의 노력끝에 12월 31일 이리시로부터 정식 원광노인요양원 설립허가를 받아 이리시 신용동 235-1번지에 개원을 하였다. 공사도중 주인의 허락없이 120평이 도로로 개설되자 주인의 도로 차단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서대인교무의 배려로 도로에 인접한 밭 60평과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사가 다시 진행되었으며 인식이 부족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속에 유정완교무의 노고가 많았다.

임원은 원장 1인, 총무 1인, 교무 2인, 간호사 1인, 물리치료사 1인, 조무사 3인, 취사 1인, 촉탁의사 1인이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柳 正 完(珍玉)	男	1931. 11. 29	71. 12. 31~	

다.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원 장	柳 正 完(珍玉)	男	1931. 11. 29	71. 12. 31~	
총 무	姜 慶 樂(甲東)	〃	1943. 6. 2	71. 12. 31~	
교 무	申 善 慧(恩玉)	女	1938. 5. 4	71. 12. 31~	
〃	柳 心 明(三禮)	〃	1956. 10. 8	72. 2. 9~	

라. 자산 현황

• 주소 : 전북 이리시 신용동 235-1

대지 645평, 건물 276평(1동), 기타 부동산 : 밭 490평

마. 연도별 수용인원

연 도	수용인원	현 원			신입자수			배출자수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2	70	42	9	33	45	10	35				

5. 제주원광요양원

가. 설립 배경

대산종법사는 제주교구장인 박은섭교무와 중앙수양원 윤치성교무에게 「제주국제훈련원에 양노원이나 노인요양원을 병설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하명을 하였다. 이에 관계기관 설립을 추진하던 중 보건사회부에서 각 시·도별 노인요양원 1개소설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 원기71년(1986) 9월 30일 제219회 임시원의회에 제주요양원 설립안을 상정했다. 즉 건축비 전액(2억4천4백여만원중 국비 77,656,000원, 지방 52,344,000원, 자부담 114,220,000원)이 국가보조로 충당되며 관리직에 원장 1, 총무 1, 진료직에 의사 1 간호사 2, 물리치료사 1, 보호직 10명당 1인(50명에 5인) 취사세탁 1인이 담당한다는 내용과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시설운영비 전체의 20%와 인건비 10%를 재단이 충당해야하며 재단법인 원불교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를 복지법인 삼동회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제주원광요양원은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7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1,148평 건물 441평(2동)에 원장은 제주교구장인 朴恩燮교무가 겸임하고 있다.

□ 장애자 복지기관

1. 이리자선원

가. 설립배경

원기66년(1981) 5월 7일 제188회 임시원의회에서 공익부 산하에 부랑인 복지시설로 자선원을 발족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동년 8월 27일자로 이리시청으로부터 이리시 마동 산 40번지 소재의 자활원 건물 39평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서가 나왔다.

이 건물은 본래 박인홍이 원기48년(1963) 1월 20일 시내의 부랑자들을 모아 휴지수거를 시켜 자활대책을 지도해오던 《희망원》이라 부르던 곳인데, 박씨가 떠나자 시내 우범자 소굴로 이용되어 당국에서도 단속에 고민했던 곳이다.

원기66년(1981) 9월 8일 중앙총부에서는 초대원장으로 金西悟교무를 이리보육원장과 겸임 발령하고 실무책임자로 부원장인 申在一교무와 감원으로 李慧善교무를 파견하여 개원준비를 서둘렀다. 이리시보조금 411,000원과 재단(공익부)에서 5,000,000원을 투자하여 개수를 끝내고 동년 12월 1일 《이리자선원》 개원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원기68년(1983) 1월 17일 부원장에 金正文교무가 부임하고 동년 9월에 보건사회부로부터 5천7백만원, 이리시 지원 1천만원, 재단지원 4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이리시 신용동 75번지에 건평 148평의 원사를 착공, 원사를 신축하고 동년 12월 3일 舊희망원 자리에서 신축원사로 이전, 동년 12월 24일자로 시설허가가 승인되었다.

임원은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무 1인, 원감 1인, 기사 1인이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金 西 悟(書男)	男	1926. 12. 16	66. 9. 8~69. 12. 31	
2	李 修 悟(在福)	〃	1929. 4. 17	70. 1. 19~	

다.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교 무	李 惠 善(賢南)	女	1928. 8. 24	66. 9. 8~	
부 원 장	申 在 一(載珉)	男	1928. 1. 19	66. 9. 8~68. 7. 20	
〃	金 正 文(炳武)	〃	1935. 5. 30	68. 1. 17~	
감 원	姜 南 薰(福順)	女	1940. 2. 5	71. 1. 1~	
교 무	張 善 志(志煥)	男	1958. 1. 20	72. 1.	

라. 자산 현황

• 주소 : 이리시 신용동 75-2

대지 1,800평, 건평 343평(2동) 운영은 국고·지방비 92%, 성금 8% 자체사업으로 양돈·양우 등 목축사업

마. 연도별 수용인원

연 도	수용정원	현 원			신입자수			배출자수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7	30	30	20	10	30	20	10				
68	40	40	25	15	10	5	5	10	9	1	
69	110	79	57	22	39	32	7	61	55	6	
70	110	104	71	33	23	14	9	95	61	34	
71	110	139	96	43	124	89	35	89	64	25	
72	110	125	90	35	51	40	11	65	46	19	

바. 특별 현황

☆ 자활통장 발급

원생들의 자활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이나 이리공단지역에서 단순작업이 요청되는 일감을 얻어다가 소득을 올려 개인별로 저축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다.

사. 후원단체 및 후원인

원불교 청운회 연합회의 〈보은동산회〉 발족과 더불어 후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다.

2. 삼 정 원

가. 설립 배경

원기69년(1984) 11월 1일 대산종법사의 「물질문명의 발달로 초래된 정신질환자의 수용시설에 대한 시급성」의 유시에 따라 자선사업회에서 그 과제를 부여받고, 동년 12월 10일 자선사업회 산하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이사회에서 정신요양원 설립을 의결했다.

원기70년(1985) 10월 17일 국가보조금 35,565,000원, 교단지원 40,360,000원으로 착공된 삼정원이 개원되었다.

임원은 원장 1인, 총무 1인, 교무 2인, 서기 1인, 생활지도 2인, 간호사 1인, 보조원 2인, 경비 1인 등이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金 西 悟(書男)	男	1926. 12. 16	69. 12. 10~71. 12. 31	
2	姜 雲 祥(東日)	〃	1934. 3. 24	72. 1. 1~72. 10. 14	
3	吳 聖 洙(聖培)	〃	1934. 11. 20	72. 10. 15~	

다.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원 장	金 西 悟(書男)	男	1926. 12. 16	69. 12. 10~71. 12. 31	
총 무	金 兆 允(永錫)	〃	1928. 9. 3	70. 3. 1~71. 1. 31	
부 원 장	金 大 根(榮薰)	〃	1919. 3. 26	71. 1. 1~71. 12. 30	
교 무	崔 純 圓(今順)	女	1935. 6. 25	71. 4. 1~72. 10. 14	
생활지도	金濟船華(今子)	〃	1925. 2. 19	71. 4. 1~72. 10. 14	봉 공 직
원 장	姜 雲 祥(東日)	男	1934. 3. 24	72. 1. 1~72. 10. 14	
보 조 원	朴 吉 男(吉男)	〃	1943. 8. 16	72. 1. 1~72. 10. 14	
원 장	吳 聖 洙(聖培)	〃	1934. 11. 20	72. 10. 14~	
총 무	朴 主 明(在明)	〃	1959. 5. 16	〃	
관 리	朴 桂 鎭(載潤)	〃	1942. 1. 25	〃	
보 조 원	金 南 昊(聖豪)	〃	1934. 8. 27	〃	봉 공 직

라. 자산현황

• 주소 : 전북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 산 61~1

대지 1,532평, 건물 220평(2동), 밭 2,493평(수용자들의 작업장)

마. 연도별 수용인원

연 도	수용정원	현 원			신입자수			배출자수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70	50	27	22	5							
71	〃	112	70	42	89	52	37	4	4		
72	〃	159	102	57	43	23	20	18	13	5	

바. 후원단체 및 후원인

원광대학교 의대부속 제2병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환자의 통원치료 및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
원불교청운회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 상담복지기관

1. 삼동청소년상담실

가. 설립배경

원기70년(1985) 1월 국제 청소년의 해에 즈음하여 원불교 대각개교절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정토회교당 요인회에서 청소년 상담실 개설을 결의하였다. 원기70년(1985) 2월 제10차 준비모임에서 창설준비위원 10명(김복환교무, 박인원교무, 윤성규, 김성윤, 정순영, 김복균, 성보영, 정기훈, 김옥엽, 박미향)이 서울의 《생명의 전화》와 서울청소년지도 육성회상담실(청소년회관)을 견학하고 각종자료를 수집했다. 동년 3월 4일부터 1개월에 걸친 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이 실시하였다. 3월 15일부터 홍보에 나섰으며, KBS－김옥엽, MBC－김복환, 기독교방송국－정세훈, 전북일보, 원불교신보 등 각종 매스컴을 이용하였다.

동년 4월 자문 및 후원위원회를 발족하고 후원위원장에 원광대학교총장 박광전(길진)교무가 취임되었다. 동년 5월에 원광대부속 제2병원의 협조로 吳相守교수를 초청 「상담면접의 기초」강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6월 12일 정식 개원식을 가졌다.

상담내용은 청소년의 진로, 학업, 여가선용, 정서, 성격, 가정생활, 신체 및 정신건강 등에 걸쳐 전화상담, 면접상담, 서신상담에 응하고 있다. 상담요원은 자원봉사자로 충원하고 있으며 수시 자원봉사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 임 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재 직 년 도	비 고
운 영 위 원 장	金 復 煥(復煥)	女	70. 6. 12~	정토회교당교무
후 원 위 원 장	朴 光 田(吉眞)	男	70. 6. 12~71. 12.	원 광 대 총 장
후 원 위 원 장	金 正 勇(三龍)	〃	71. 1. 3~	원 광 대
자 문 위 원 장	朴 正 圓(鍾珠)	〃	70. 6. 12~71. 12.	재 가
자 문 위 원 장	朴 (南鎭)	〃	71. 12.~	재 가
상 담 원 회 회 장	鄭 順 永	女	70. 6. 12~	정 토 회 원
상 담 실 장	김 (옥엽)	〃	70. 6. 12~	재 가
사 회 복 지 사	김 (민준)	〃	71. 3.~	재 가
사 회 복 지 사	김 은 중(숙경)	〃	72. 10.~	정 토 회 원
상 담 원	정 (정진)	〃	72. 10~	재 가

다. 자문위원

구 분	성 명	직 함	비 고
의 학 계	김 종 주	원광대학교 부속 제2병원 원장	
	오 상 우	원광대학교 부속 제2병원 교수	
	신 상 훈	신산부인과 원장	
	장 전	전일의원 원장, 이리시 의사회장	
교 육 계	신 길 수	원광대학교 교수	
	서 문 식	이리시 교육장	
	정 성 숙	원광여자종합고등학교 교장	교 무
	김 동 수	대일학원 원장	
	정 규 두	(前) 이리시 교육장	
	성 보 영	원광여자중학교 교사	정토회원
종 교 계	고 경 훈	창인동 천주교 본당신부	
	허 영 근	허영근약국(제일교회 청년회 지도담당)	
	이 택 익	전북불교 연합회 사무국장	
	김 팔 곤	원광대학교 교수	남중동교당
법 조 계	전 팔 현	군산지청장(검찰청)	後 변호사 개원
행 정 계	육 종 진	이리시장	
	김 덕 영	이리경찰서장	
	김 한 봉	근로청소년회회장	
	정 인 영	이리소방서장	
언 론 계	윤 대 작	KBS 전주방송국	
	김 영 석	MBC 전주문화방송국	전주효자교당
	허 명 숙	전북일보사	

라. 운 영

상담실 운영은 9명의 임원보조와 22명의 자문위원의 협조아래 월 성금 1천원을 기본단위로 한 후원위원의 재정지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상담현황〉

구분 \ 연도·면접	70. 6. 12~12.31			71. 1. 1~12. 31			72. 1. 1~12. 31			누계		
	면접			면접			면접			면접		
	건수	회수	평균	건수	회수	평균	건수	회수	평균	건수	회수	평균
진로·학업(진학·취업)	29	79	2.7	83	241	2.9	93	228	2.5	205	548	2.7
성				5	13	2.6	4	11	2.8	9	24	2.7
가정, 생활	67	135	2.0	9	37	4.1	9	27	3	85	199	2.3
정서, 성격, 인간관계	11	43	3.9	23	119	5.2	14	62	4.4	48	210	4.3
종교							1	1	1	1	1	1
정보안내	1	1	1	3	4	1.3	1	3	3	5	7	1.4
비행	3	3	1	7	41	5.9	2	4	2	12	48	4
이성	4	17	4.3	11	21	1.9	7	26	3.7	22	64	2.9
기타				2	6	3	4	12	3	6	18	3
소계	115	278	2.4	143	482	3.4	135	374	2.8	393	1,119	2.9

마. 역대 재직교역자

직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교무	金復煥(復煥)	女	1938. 12. 10	70. 6. 12~71. 1. 20	상담실창립
〃	朴仁源(順鳳)	〃	1954. 12. 17	〃	〃
〃	高圓善(柔善)	〃	1947. 2. 3	71. 1. 20~	상담실운영
〃	裵賢誦(玄貞)	〃	1958. 7. 23	〃	〃
〃	張敬道(敬道)	男	1958. 7. 10	〃	〃

바. 홍보내력

내용	분류	일시	참가자	비고
원불교청소년상담실 개설	한국일보	70(1985) 6. 15		
삼동청소년상담실 개설	주간종교	70(1985) 6. 26		
삼동청소년상담실 개설 기념세미나	원불교신보	70(1985) 6. 26		
청소년상담 및 선도방향	원불교신보	70(1985) 9.	김복환	

삼동청소년상담실 개설 안내	KBS제1라디오 오전 09 : 10	70(1985) 6. 12	김 복 환	
삼동청소년상담실 개설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대화의 장	KBS제1라디오 오후 10 : 00	70(1985) 6. 14	김 복 환 윤 성 규 김 옥 엽	
삼동청소년상담실 활용에 대하여	KBS제1라디오 오전 09 : 30	70(1985) 6. 21	김 옥 엽	
자녀와의 대화법 강좌 안내	KBS 제1라디오 오전 09 : 30	70(1985) 11. 1	김 옥 엽	
상담실활용안내	KBS제1라디오 공지사항, 심야방송	70(1985) 6~8월 (3개월간)		
상담실활용 안내	MBC라디오 심 야 방 송	70(1985) 7~ 9월 (3개월간)		
상담실활용 안내	이리시내버스 학생회수권뒷면	70(1985) 10월 부터 현재		원 광 마 을 금 고 제 공

사. 수상내역

상장번호	종 별	수상년월일	수 상 자	공 적	비 고
14405	전 북 도 지 사 이 리 시 장	71. 5. 5	김 복 환 윤 성 규	청소년선도	

아. 특별활동

행 사 내 용	초 빙 자	일 시	장 소	참 석 인 원
제1회 초청음악회	송광선, 이봉기	71(1986). 4. 27	시 민 회 관	약 1,300명
제2회 초청음악회	이 봉 기	72(1987). 3. 28	원광대학교대강당	약 1,400명

2. 혼인상담소(서울교구)

가. 설립배경

원기71년(1986) 12월에 서울교구 봉공회에서는 원불교 봉공활동의 일환으로 「자녀들의 혼인상담과 결연을 책임있게 수행하여 인륜대사가 보다 신중하고 처지와 형편에 따라 슬기롭

게 진행되어 한 가정이 신뢰와 은혜로운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아래」 혼인상담소를 개설하기로 결의했다. 그후 한달동안의 준비끝에 원기72년(1987)부터 본격적으로 숙원사업이 진행되었다.

나. 운 영

상담실 운영은 봉공회 부설이므로 봉공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신청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의 신청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은 봉공회 집행위원들로 구성된다. 각 교당 봉공회장들은 4개단으로 나누어 매주 월요일 2시에 모여 자료를 수집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한다.

사무실에는 상주위원 1명이 전화상담과 접수를 받는다.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고 정기 봉공월례회와 집행위원회에 수시보고 한다.

다. 임원 현황

직 책	법 명	성 별	재 직 년 도	비 교
고 문	양 혜 경	女	72. 2.	서부교구장
소 장	차 원 경	〃	〃	봉공회장
자문위원	장 혜 성	〃	〃	방배교당교무
〃	장 경 진	〃	〃	신촌교당교무
〃	김 대 선	男	〃	서부교구사무장
준비위원	유 경 수	女	〃	봉공회부회장
〃	이 영 옥	〃	〃	총 무
〃	이 영 근	〃	〃	재 가
〃	구 명 신	〃	〃	재 가

라. 자산현황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3 원불교 서울회관 416호 서울교구 봉공회 후원 및 신청자 회비로 운영.

마. 연도별 접수현황

연 도	남	여	합 계	중 매	결 혼	비 고
72	189	245	434	172	1	

3. 아동상담소

가. 설립배경

원기72년(1987) 5월 서울동부교구 봉공회에서는 산업화 사회의 여파로 생겨나는 부적응 아동의 문제를 돕기 위해 사회를 위한 봉공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상담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아동상담소는 주정일교도를 상담실 소장으로 하여 김영희, 노치현, 신철희, 염숙경, 유미숙, 황영희 등이 전문 상담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나. 운영현황

정서적으로 부적응 아이를 대상으로 치료하면서 어려움을 가진 아동과 부모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한 부모상담과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부모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다. 상담방법

전화상담 및 면접 서면 상담 등으로 접수를 한 후 상담시간과 담당 상담원으로 결정한다. 주 1회 50분정도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증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능검사, 적성검사, 인성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 기 타

1. 영모묘원

가. 설립배경

영모묘원은 원불교 예법에 바탕 조상들에게 영면의 안식처를 만들어 보본의 도리를 다하게 하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을 계획하며 묘지를 공원화하여 국토이용의 능률화에 기여하고 가정의례 준칙의 기본정신을 선양함으로써 국민도의 함양에 앞장섬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목적달성을 위해 공원묘지 운영 및 유지 관리사업, 공예, 석수공사업, 조립사업, 장의사 및 운구 등의 사업을 한다.

원기62년(1977) 교정위원회에서 과거 상조부에서 주관하던 제사자금 제도를 부활하자고 결의했다. 원기63년(1978) 1월 교정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영모원을 발족하여 그동안 알봉에 조성했던 묘지를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던중 원기67년(1982) 10월 21일 익산군 왕궁면 동봉리 산 109번지에 41,520평을 매입하고 초지 대치 조성을 진안군 성수면 만덕산에 하였다. 원기64년(1979) 영모원 초대원장에 李正和교무가 부임하고 원기65년(1980) 묘지법인 허가를 취득했다.

원기68년(1983) 6월 16일 재단법인 영모묘원으로 구역변경허가를 받았으며 7월 2일에 익산군으로부터 시설묘지 및 시설허가를 취득했다.

원기68년(1983) 7월 18일 大山宗法師, 박광전교무 및 총부간부와 훈련교무 100여명이 방문을 했으며, 8월 26일부터 공원묘지 현장 벌목작업을 시작했다.

원기69년(1984)부터 알봉묘지 이장작업을 시작하여, 마무리하고 현재 총 101,079평(임야 97,590, 논 3,489평)의 묘역을 조성하였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李 正 和(漢化)	女	1918. 7. 19	64. 2. 25~67. 12. 11	열 반
2	李 百 徹(致炯)	男	1927. 4. 9	67. 12. 12~70. 12. 30	
3	辛 濟 根(順任)	女	1923. 12. 29	71. 1. 1~	

다.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주 사	李唯新(仁新)	女	1947. 5. 9	64. 2. 25~66. 8. 31	
총 무	金 玄(奉鎭)	男	1947. 10. 15	65. 3. 21~67. 12. 31	
부원장	尹致聖(致遠)	〃	1922. 4. 28	65. 5. 9~66. 2.	
〃	李百徹(致炯)	〃	1927. 4. 9	66. 3. 14~70. 12. 31	
주 사	金中觀(光國)	〃	1954. 12. 2	66. 4. 30~68. 7.	환 속
〃	李貞吉(貞吉)	女	1957. 9. 20	66. 9. 4~71. 2. 5	
부원장	李善友(平宰)	男	1921. 11. 26	67. 9. ~68. 9.	
총 무	金泰成(基成)	〃	1949. 5. 25	68. 1. 4~	
부원장	申在一(載珉)	〃	1928. 1. 19	68. 10 ~	
주 사	趙道權			68. 8. ~68. 12. 31	
과 장	朴主仁	女	1948. 10. 21	71. 2. 6~71. 12. 31	
〃	金玟蓮(玟濂)	〃	1952. 5. 21	72. 2. 2~	

라. 자산현황

• 주소 : 전북 익산군 왕궁면 산 109번지

총 101,079평(임야 97,590평, 논 3,364평, 관리사무소 : 125평)

마. 연도별 입묘현황

연도	입묘자수	현 원			신입자수			배출자수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9	146							146			
70	450	31	22	9	104	48	56	315			※일반묘역에 전무출신 2위
71	148	1	1	0	2	0	2	145			(박영식, 김장권)
72	207	2	2	0	6	3	3	199			※알봉이장 11위 포함

2. 보은동산회

가. 설립배경

원기71년(1986) 12월 6일 청운회연합회는 이리 이화장여관에서《보은동산회》회칙안을 심의, 채택하고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임원을 확정하여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보은동산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 계기는 원기71년(1986) 4월에 전주청운회가 발족한《봄동산》과 동년 9월에 서울청운회가 발족한《보은동산》의 활동이 밑받침 되었다.

보은동산회의 목적은「보은과 자비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원불교 청운회연합회의 행동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목적사업은 무의탁노인, 요양사업, 부랑인 선도사업, 정신질환자 요양사업, 음성나환자 정착사업, 특수장애자 보호사업,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후원사업 등을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동년 동월 7일 대산종법사를 배알한 후, 삼정원을 방문하여 대형탈수기 구입보조금 1백만원을 희사하고, 자선원에 연탄 2천장을 전달하면서 첫 출발했다.

나. 임 원

직 책	법 명(호적명)	지 역	비 고
회 장	趙 正 濟(正濟)	서 울	
부 회 장	權 吾 仁(吾潤)	서 울	
〃	姜 (信行)	대 전	
〃	黃 (義度)	전 주	
〃	李 (雲造)	부 산	
〃	鄭 (長植)	마 산	
감 사	金 道 隆(杌坤)	이 리	
〃	夫 慧 光(拓量)	광 주	
이 사	吳 (鐵正)	서 울	
〃	金 元 道(平洙)	서 울	
〃	房 (保雄)	대 구	
〃	朴 正 圓(鍾珠)	이 리	
〃	尹 光 俊(乙重)	서 울	

이 사	辛 英 吉	정 주	
〃	정 천 문	전 주	
〃	宋 仁 峯(正鐸)	군 산	
〃	朴 淸 秀(姬淑)	서 울	출가(청 년 회 장)
사 무 국 장	金 性 圓	서 울	출가(서울사무소)
간 사	徐 光 德(南龜)	서 울	출가(서울사무소)

□ 원불교 자선사업의 발전과 전망

가. 개 요

원불교는 제생이세의 이념으로 교화·교육·자선의 3대사업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자선사업의 출발은 소태산대종사 당대부터 이념화되었지만 대외적인 전개는 8·15해방 후 전재동포 구호사업에서부터 비롯됨을 알 수 있다. 현재는 고아·양노사업의 단순한 자선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사업의 일환인 상담실 개설 및 장의사 운영 등의 사업과 더불어 신앙실천활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나. 자선사업회의 전개

산재된 자선기관의 연합활동과 자선사업의 통합추진의 필요성을 느낀지는 원기50년대(1965)부터이다. 원기48년(1963) 12월 9일 자선기관장 회의에서 「3대사업목표중의 하나인 자선을 담당할 연합회」의 추진이 논의 되었다. 동일 중앙총부 교정원 주관하에 「자선기관연합회」가 발족되었다.

원기50년(1965) 8월 27일 공익부 부속단체로 원불교 자선사업회가 발족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원기50년(1965) 제13회 임시 교정위원회에서 11월을 「자선의 달」로 정하였고, 원기60년(1975) 3월 30일 제31회 임시 교정위원회에서 사대봉공회를 발족하였다.

자선사업회의 산하에는 약간의 수익기관으로 북일원광한의원, 대구원광한의원, 군산원광한의원이 있고, 농장으로는 제주 이리 김제 영광 등 4개소 부동산 점포 등 5개소가 있다.

다. 복지법인의 발족

원기55년(1970)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공포되자 원불교 자선사업기관도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원기66년(1981) 6월 29일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를 발족하고 원불교산하의 자선기관을 통합하였다. 삼동이란 「同源道理 同氣連契 同拓事業」의 三同倫理에서 유래한 것이다.

삼동회의 목적사업으로 양노시설·영육아시설·정신요양시설·부랑인시설·노인요양시설·기타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을 들고 있다.

이외에도 원기67년(1982) 1월에 〈사회복지법인 창필재단〉과 원기71년(1986) 1월에 〈사회복지법인 개성유린관〉을 받아드렸다.

라. 원불교자선사업의 전망

현대문명의 위기를 직시하고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의 인도」의 개교동기와 교화·교육·자선 3대사업의 실천을 천명한 소태산대종사의 이념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 사업을 도약적으로 수행함으로써 敎旨의 본 뜻을 잘 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선사업의 현황은 종교의 至高目標라고 할 수 있는 사회, 국가,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해 희생 봉공하는 공익성을 현시한 것이다.

교단의 복지사업운영에 있어서 괄목할 수 있는 것은, 보호양육적인 기능이외 자력배양과 노후의 정신수양을 위해 수도인의 일과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완성을 향한 사요실천과 자아완성을 위한 삼학수행의 통합적인 전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역자들의 의식의 97%가 원불교복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교단적인 관심이 확산된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3대사업의 실천으로서 뒤떨어져 있던 자선사업이 발전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Ⅲ. 文 化 機 關

원불교의 문화기관은 원불교 초창기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원불교 초창기의 문자화된 간행물로 교서외에도 기관지격인 『월말통신』이 원기13년(1928)에 발행되어 현재의 『원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단의 발전과 함께 각급 문화기관이 분립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여기서는 문화기관을 언론기관, 출판기관, 문화기관으로 三大別하고, 언론기관에 월간『원광』과 원불교신보사를, 출판기관에 원광사와 원불교출판사 그리고 교서간행을 맡았던 정화사를, 문화기관에 중앙문화원, 중앙박물관과 서울회관을 엮어서 그 연혁과 자료 등을 일람하기로 하였다.

□ 言論機關

원불교 언론기관으로는 월간『원광』과 원불교신보사를 들 수 있다.

이 두 곳에서 발행하는 교단 정기간행물로는 『원불교신보(圓佛敎新報·순간)』와 『원광(계간)』 두 종류가 있다.

우리 선진들은 정기간행물의 필요에 대해 일찍 눈을 떠, 원기13년(1928) 5월 당시 총회원 438명, 총부 포함 전체 회관(교당) 3개 지부뿐이었던 때에 매월 묵사본 『월말동신(月末通信)』 3~5통을 내기 시작하여, 극심한 경제공황 속에서 1년간(원기16년) 휴간하면서도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원기17년(1932)부터는 『월보(月報)』로 개제하여 프린트판으로 20~50부씩 발행하였다. 이후 일제의 검열로 압수당하기도 하였으나 제목을 바꾸어 『회보(會報)』를 냈고, 원기19년(1934)에는 대폭 부수를 늘여 인쇄본으로 발행하였다.

이렇듯 시련을 겪을수록 우리의 간행물은 체제를 더욱 튼튼히 끈기있게 열두 해 동안 불법연구회의 눈과 귀 노릇을 하다가, 원기25년(1940) 일제의 조선언론 말살정책으로 정간을 당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6년 뒤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동인지 『금강(金剛·1947.5)』 프린트판이 나왔고, 『금강』지 편집의 주요 임원들에 의해 『원광』이 창간되었다.

한편 『원불교신보』는 원기53년(1968)에 교정원 교화부의 교화자문위원회에서 〈신문발간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동안의 준비 후 원기54년(1969) 3월 1일 창간되었다.

1. 月刊 『圓光』

국내의 우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이름있는 잡지들이 창간된 지 수년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간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원불교에서 발행하고 있는 『원광(圓光)』은 도도한 맥을 35년간이나 이어오며 전통과 역사를 쌓아온 것은 실로 평가할 만하다.

『원광』이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5년이나 맥을 이어 온 것은 『원광』지를 내기 위해 《원광사(圓光社)》라는 인쇄소(기관)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잡지 하나를 내기 위해서 기관을 발족시키고, 인쇄시설을 갖추어 온 것은 선진들이 출판문화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3년째 되던 원기33년(1948) 2대종법사인 정산종사(鼎山宗師)는 《불법연구회(佛法硏究會)》라는 명칭을 《원불교(圓佛敎)》라 개명하고, 원불교 인재 양성기관인 《유일학림(唯一學林)》 1기생이 졸업하자 졸업생중 2명을 선발하여 원불교 기관지 『원광』을 창간토록 하고 원기34년(1949) 5월 《원광사》를 발족시켰다.

정산종법사는 기관지 제호를 『圓光』이라 한 것은 「일원(一圓)의 광명이 온 누리에 두루 비치라」는 교세확장의 염원을 함축하고 내리신 것이다.

『원광』 창간은 유일학림을 갓 졸업한 청년들에 의해 준비되었다. 이은석교무(열반)가 주간을 맡았고, 이공전교무(현 원광사사장)는 편집장을 맡았다.

창간 비용은 종법실에서 얼마를 대어 그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고, 편집실은 송대 큰방이었다. 전주일보(全州日報, 현 전북일보)사에서 인쇄하여 7월 31일자로 발행된 『원광』 창간호는 『회보』 정간 후 실로 9년만에 복간된 교단의 기관지인 셈이다.

2호부터는 이리 활문당에서 인쇄하였다. 3·4개월 간격으로 부정기적인 간행을 하던 『원광』은 5호 인쇄가 끝날 무렵 6·25동란을 당하였다. 서둘러 지방 곳곳에 발송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한 혼란한 사회상황속에 『원광』 5호는 아주 희귀본이 되고 말았다.

이후 원광은 계속 휴간이 되었다. 4년만에 시국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이리 고등선원(현 동산선원) 책임자로 있던 이운권교무가 주선하여 보화당의 지원으로 6호가 발행되었다. 6호부터 이리 고등선원에 사무실을 두고 이리 남성문화사 인쇄로 발행되었다. 발행인은 송혜환

교무(보화당 사장), 주간은 이운권교무 명의로 되었다.

실무진은 이은석교무와 이종원교무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때부터 이종원교무는 106호까지 26년간 『원광』지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교무는 오늘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원광』의 산 증인으로 건재하고 있다.

9호(원기40년 3월)부터 원광사는 다시 총부로 옮기어 도서실(현 종법실 자리)에 간판을 붙이고 업무를 보았다. 주간에 이공전(당시 법무실장)교무, 편집진으로는 이종원·김석정·이중정 교무 이었다.

5·16 이후, 한때 『원광』은 납본 불이행 건으로 정간당하기도 했으나 곧 수습하여 속간하였다.

원기48년(1963) 이종원 상임편집위원이 사정으로 휴무하게 되자 『원광』지는 교무부로 업무를 이관하여 47호부터 편수과장 박제중교무, 주사 손정윤교무가 편집을 맡게 되고, 49호부터 54호까지는 손정윤교무가 전담 편집하였다.

〈역대임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 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주 간	李 恩 錫(俊行)	男	1925. 1. 12		
편 집 장	李 空 田(順行)	〃	1927. 3. 24		
주 간	李 雲 捲(雲行)	〃	1914. 5. 3		
편 집 장	李 恩 錫(俊行)	〃	1925. 1. 12		
편 집 보 조	李 鍾 圓(鍾甲)	〃	1930. 10. 6		
주 간	李 空 田(順行)	〃	1927. 3. 24		
편 집 장	李 鍾 圓(鍾甲)	〃	1930. 10. 6		
편 집 보 조	김 석 정	〃			
주 간	李 恩 錫(俊行)	〃	1925. 1. 12		
편 집 장	李 鍾 圓(鍾甲)	〃	1930. 10. 6		
편 집 보 조	김 석 정	〃			
〃	李 宗 明	〃	1933. 3. 5		
〃	宋 天 恩(天恩)	〃	1936. 7. 9		
〃	朴 濟 衆(煥斗)	〃	1936. 5. 31		
〃	孫 正 允(鍾鉉)	〃	1939. 6. 14		
주 간	李 鍾 圓(鍾甲)	〃	1930. 10. 6		
편 집 장	金 志 貞(貞淑)	女	1939. 7. 20		
주 간	孫 正 允(鍾鉉)	男	1939. 6. 14		
〃	朴 達 識(世雄)	〃	1945. 1. 7		
편 집 보 조	鄭 仁 信(仁淑)	女	1951. 3. 12		
〃	장 재 윤	〃			

2. 원불교신보사

가. 설립일자 및 목적

원불교신보사는 원기54년(1969) 3월 1일에 중앙총부에 발족된 기관으로서, 원불교의 대내적인 성장과 일원대도의 대외적인 선양을 통해 인류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과 취지 아래 『원불교신보』를 발간해 오고 있다.

나. 설립과정

원기54년(1969) 6월 1일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원기72년(1987) 12월 31일 현재 지령 제507호의 신문을 발행했다. 원불교신보사가 설립된 경위와 『원불교신보』가 창간되기까지의 과정을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기53년(1968) 4월 4일 교정원 교화부 산하의 「교화자문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신문발간연구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동년 5월 11일 「신문발간연구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어 위원장에 金中默교무, 위원에 김근수, 김윤중, 김정용, 이공전, 송원철, 이철행, 유기현, 한정원, 조정근교무 등 10인이 선임되었다. 동년 9월 17일 신문발간연구위의 합의에 따라 제29회 원의회(정기회)에서 『원불교신문』을 창간키로 결의하고, 제16회 교역자강습중에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그리하여 원기53년(1968) 11월 1일 제16회 교역자 강습기간중에 공청회를 열어 신문발간에 관한 제반의견을 나누었고, 동 2일 제12회 교정위원회(임시회)에서 『원불교신문』을 발행키로 결의하고 신문발간추진회를 구성, 추진위원에 정광훈, 김정용, 김근수, 이공전, 이철행, 유기현, 송천은, 이경순, 김지현, 윤주현, 이성신교무 등 11인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신문발간추진위원회는 원기53년(1968) 11월 5일 첫 회의를 열어 신문발간에 소요될 예산을 수립했으며, 동년 12월 2일 2차 회의를 열고 원불교신문사 사칙을 심의하여 원의회에 상정하였다.

원기53년(1968) 12월 23일 제54회 원의회(임시회)에서 원불교신문사 간부를 선정하고 사칙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선정된 원불교신문사 초대 임원진은 발행인(회장) 박장식교무(교정원장당연직) 편집인(사장) 김정용교무 주필 이공전교무로 구성되어, 원기54년(1969) 3월 1일 《원불교신문사》가 정식기관으로 출범하여 중앙총부 교정원 사무실에서 집무를 개시했다.

동년 4월 2일 사무실을 정화원 3층으로 이전하여 신문간행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면서, 『원불교신문』 등록신청을 하여, 원기54년(1969) 5월 27일 문공부에 신문의 제호를 『원불교신보』

로 정식 등록됐다(등록번호 제다-223).

원기54년(1969) 6월 1일 『원불교신보』 창간호(다블로이드판 12면)을 4,500부 발간했다. 제호는 강암 송성용선생이 써서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제호를 『원불교신보』로 문공부에 등록함에 따라 기관명칭도 《원불교신보사》로 개칭하여 격주간(월2회)으로 발행했다.

원불교신보사는 정화원 3층에서 임시로 사무를 보다가 원기57년(1972) 4월 2일 기념관 3층으로 옮겼으며, 원기60년(1975) 10월 5일 다시 기념관 1층으로 이전하였다가, 원기64년(1979) 9월 3일 신축된 중앙문화회관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현 황

원기72년(1987) 12월 31일 현재의 원불교신보사는 발행인 김윤중교무(교정원장당연직), 편집인(사장) 이공전교무, 주필 이종원교무, 인쇄인 김홍철교무(원광사사장)이며 편집국장 유진근교무, 업무국장 박혜명교무를 비롯, 기자에 유용진, 송인걸, 조상원, 이도전, 김동선교무와 김양신·주경철이 간사로 근무하고 있다.

시설은 중앙문화회관 2층 사무실 약 35평을 원기64년(1979) 9월 3일 1천여만원을 투자하여 확보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원불교신보』는 원기72년(1987) 12월 31일 현대 지령 507호를 발간하였는데 원기65년(1980) 12월 6일자부터 순간(월3회)으로 전환하여 신문판 4면을 약 1만부 발행해오고 있으며 연 4~5회 정도 8면으로 특집을 마련하고 있다.

라. 조직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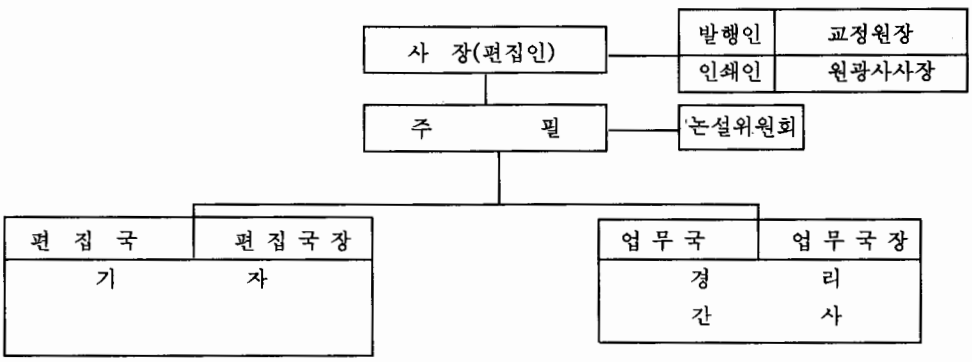

바. 역대기관장 및 재직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사 장	金 正 勇(三龍)	男	1926. 3. 1	54. 3. 1~68. 1.21	
사 장	李 空 田(順行)	〃	1927. 3.24	68. 1.21~	
주 필	〃	〃	〃	54. 3. 1~56. 4.30	비상임
주 필	趙 正 勤(年九)	〃	1935.12. 6	54. 3. 1~62. 2.28	초대편집국장 및 업무국장
편집국장	李 聖 恩(榮)	〃	1942. 5.17	54. 3. 1~62. 4. 1	기자
				66. 3. 2~68. 1.17	상임논설위원
취재부장	李 淸 南(鶴宰)	〃	1939. 2. 2	54. 3. 1~54.10. 1	
주 필	孫 正 允(鍾鉉)	〃	1939. 6.14	54.10. 1~56. 4.30	편집부국장
	〃	〃	〃	62. 3.21~64. 8.20	주필
업무국장	朴 慧 明(靖姬)	女	1942. 7.18	54. 3. 1~58. 2.28	기자
	〃	〃	〃	62. 4.25~	업무국장
기 자	金 學 仁(學仁)	男	1940. 1.15	56. 5. 1~57. 2.28	
〃	金 晶 曛(京子)	女	1948. 1.24	56. 5. 1~57. 2.28	
〃	羅 文 正(景德)	〃	1945. 5.10	58. 3.15~60. 2.28	
〃	趙 圓 悟(庸兌)	男	1947. 4.11	58. 7.20~62. 3. 6	
편집국장	朴 達 識(世雄)	〃	1945. 1. 7	59. 3. 3~68. 1.17	기자 및 서울특파원 포함
기 자	韓 喜 允(明姬)	女	1950. 2. 9	60. 3.10~61. 3. 1	
〃	趙 學 心(崇永)	〃	1951. 4. 4	61. 3. 5~63. 3. 5	
〃	金 仁 剛(南基)	男	1948. 7.28	62. 3.15~65. 2.28	
〃	金 宗 天(成圭)	〃	1947. 2.16	62. 4. 1~63. 2.28	
〃	朴 圓 玄(榮鶴)	〃	1947. 1.22	63. 2.10~64. 2.28	
〃	梁 元 奎(連玉)	女	1955. 2.29	63. 2.10~66. 2.28	
〃	申 平 淑(永徹)	男	1953. 9. 5	64. 8. 1~69.12.31	
주 필	李 鍾 圓(鍾甲)	〃	1930.10. 6	64. 8.20~	
편집국장	柳 眞 根(光洙)	〃	1952. 2. 2	65. 8.15~	기자
기 자	李 曉 泉(今淵)	女	1953.11.15	67. 3. 2~72. 4.30	
〃	金 周 暎(太欽)	男	1947. 7.13	67. 7.27~70. 1.30	
〃	柳 容 眞(光秀)	〃	1956. 9.25	68. 1. 4~	
〃	金 大 禪(炅泳)	〃	1953.12.19	70. 2. 4~71. 1.31	
〃	宋 仁 傑(祐根)	〃	1957. 1. 3	70. 2. 4~	
〃	曺 常 圓(起虎)	〃	1955. 7. 4	71. 2.23~	
〃	李 道 田(海應)	〃	1955. 3.26	72. 2. 2~	
〃	金 東 宣(炳吉)	〃	1958.11. 2	72. 2. 2~	

사. 중요사업 및 활동

한국주간신문협회가입	54. 5.27	회원가입, 회비납부(도중탈퇴)
창간1주년기념	55. 6. 1	대각전에서 기념리셉션
지면확장	56. 1. 1	월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매회 8면)
교구보내기운동	56. 1.15~ 3. 5	해룡중학에 교구 333점과 현금 463,300원 전달
지면축소	57. 3. 1	월16면에서 8면으로 축소(서울회관관계)
판형확대	58. 5.24	다블로이드판에서 다블로이드배판으로 확대(등록변경)
창간4주및판형확대기념	58. 6. 5	원광대 싸롱에서 자축연
상동배판4면발행	58. 6.10	다블로이드 배판 4면 발행
신보보내기운동	58. 8.25	해외교도, 군장병, 교도소 등에 신보보내기운동 전개(군교화위후원).
지면임시증면	59. 6.10	창간 5주년기념 8면 발행
성지나무심기운동	60. 3. 1~ 4.30	총부·영산에 나무심기운동 전개. 2,951구좌(1구좌 5백원). 현물 2,002그루 모집
월례강좌	60. 3.22	강사 : 이재성교무. 주제 : 원불교에서 본 인간회복. 본사주최, 교화연구소주관으로 이리 로타리회관에서 월례강좌실시.
교서보내기운동	60.10.10~61.10.31	해외, 교도소에 교서보내기운동 전개. 총1,739구좌(1구좌 1천원) 기탁
문화회관성금접수	64. 4.25	중앙문화회관 신축성금접수. 본사 1천만원투자
사무실마련	64. 9. 3	신축된 문화회관 2층(34.5평) 사무실 확보
신문활자변경	65.10.10	신문활자를 6.3포인트로 변경(서울 신성자모사개발)
등록변경	65.11. 3	순간발행으로 등록변경인가
순간발행	65.12. 6	격주간에서 순간으로 발행. 6,16,26일자 발행
창간12주및순간발행기념	66. 6. 9	문화회관 3층에서 기념식 갖고 기관대표, 역대임원과 논설위원에게 기념품증정.
평생구독회원모집	66.11. 6~67. 5.31	본보 평생구독회원모집. 10만원 납입
신서발간	67. 7.12	원불교신보 신서 제1권『인생 그리고 종교』3,000부 발행. 평생독자는 무료증정
문화원개원	68. 1.21	중앙문화원 개원으로 본사 문화원으로 소속
신문활자확대	69. 6.16	종전 6.3p에서 6.8p로 확대. 서울기종문화사
지면임시증면	72.10. 6	지령 500호 기념 8면 발행

지령500호기념사업	72.10.10	기념품제작(1인용 다기) 기관장 및 평생구독자에게 증정. 1~500호 소장자도 기념품 증정
지 면 임 시 증 면	72.11.16	총회 보도관계로 8면 발행

아. 배출된 전무출신

법 명(호적명)	성 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 천 인	비 고
金 觀 中(漢奎)	男	1954. 12. 11	57. 9. 1	61.	趙 正 勤	
李 春 植(椿鎬)	〃	1958. 8. 9	55. 5. 8	61. 1.	丁 光 薰	
安 重 薰(泰鉉)	〃	1957. 1. 10	57. 3.	62. 1	朴 明 濟	
卓 明 哲(炳文)	〃	1958. 9. 16	68.	69. 9	沈 益 順	
朱 敬 哲(永郁)	〃	1969. 12. 17	69.	71.	趙 敬 蓮	

□ 出版機關

원불교의 출판기관은《원광사》와《원불교출판사》를 꼽을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원광사는 종합인쇄기술을 성숙시키며 교단내 각종 간행물의 발행에 선봉에 서 왔으며, 원불교출판사는 인쇄와 출판의 분화과정에서 새롭게 분립한 근래의 기관이긴 하나 그 역할과 광활한 개척분야로 볼 때 실로 무거운 짐을 진 기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는 출판기관으로 원광사와 원불교출판사를 별도로 정리하기로 했는 바, 이에 앞서 원불교교서의 편수를 전담 수행하고 해체되었던《정화사》를 먼저 다루어 그 연혁과 자료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1. 正 化 社

원불교 9대교서를 결집한 정화사는 정산종법사가 교재정비의 경륜에 따라 최우선을 삼아 세워진 출판기관이다.

소태산대종사 열반 13년 후인 원기41년(1956) 5월에야 대종경편수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교단발전의 기초엔 교서편찬이 시급하다고 관망한 정산종법사는 원기43년(1958) 수위단회와 교무연합회의 협찬을 통해 정화사를 발족하였다.

정화사의 교서편찬을 연차적으로 정리하면

원기47년(1962) 원불교교전(정전·대종경)

원기50년(1965) 불조요경

원기53년(1968) 원불교예전, 원불교성가

원기54년(1969) 정산종사법어(세전·법어)

원기60년(1975) 원불교교사

원기62년(1977) 원불교교헌의 순이 된다.

이상과 같이 교단 7대교서를 완간한 정화사는 원기63년(1978) 제2대 2회기념대회시에 『원불교전서』로 7대교서를 묶어 발간, 공양하고 교서편수 과업의 완결을 봉고하였다.

이제 정화사의 발족에서 해체까지의 주요자료를 정리하기로 한다.

가. 정화사 설립요강(四三, 四, 圓光22號卷頭)

一, 진전하는 교세에 대응하여 각종 교서의 편찬을 조속 추진하며 그 번역과 출판의 임에 당하는 기관으로서 《정화사》를 설립한다.

一, 정화사는 그 본부를 종법사의 지정하는 장소에 두며 연차계획에 의하여 그 업무를 진행한다.(계획서는 따로 정한다)

一, 정화사는 종법사를 총재로 하고 남녀수위단의 중앙단원을 지도위원으로 하며, 편찬위원, 번역위원, 경제위원 및 직원 약간명을 두어 그 업무에 당하게 하고 남녀수위단원 전원을 자문위원으로 하여 수시로 자문에 응하게 한다.

一, 정화사에서 출판 및 번역출판할 교서는 정전, 대종경, 예전, 악전, 세전 및 교헌, 교사이며 총재가 지정하는 교재로 한다.

一, 각 교서는 그 편찬위원들이 그 편찬을 분담 당무하며 번역 또한 번역위원들이 그의 한역, 영역, 일역 등을 분담 당무한다.

一, 정화사의 운영비 및 출판기금은 경제위원들이 그 기금조달을 담당하며, 후원회를 두어 이 사업을 협찬케 하되 총지부 및 각기관 임원은 전부 그 위원이 된다.

一, 정화사는 원기43년(1958) 5월에 장수교당에서 우선 그 업무를 개시하며, 대종경편수위원회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본사에서 그 업무를 계승한다.

나. 정화사 위원구성(四三, 四, 一九 首位團會錄)

정화사 △총재 : 종법사 △지도위원 : 양중앙단원 △편찬위원 : 이완철, 이공전, 김용성(윤중) △번역위원 : 유허일, 정자선, 박광진, 박광전 △경제위원 : 이동진화, 송달준 △연구위원 : 이운권, 박장식, 정광훈, 김근수, 이은석, 김정용, 이중정 △사무장 : 이공전 △서무 : 김정관 △주사 : 박정훈 △감원 : 이대기화, 이혜선 △자문위원 : 남녀수위단원 전원 △보행위원(추후)

다. 사칙 및 위원직원명단(四三, 九, 五 正化社)

정화사발 제11호 원기43년(1958) 9월 5일

각위원제위 귀하

정화사 사칙 및 위원 직원명단 통보의 건

표기의 건 법제위원회에서 제정한 당사 사칙과 사서부에서 통고해온 당사 위원 및 직원명단을 자에 통보하오니 조람하시기 경망하나이다.

정화사 사칙

제1조 본사는 진전하는 교세에 대응하여 각종 교서의 편찬을 조속 추진하며 그 번역과 출판의 임에 당하는 기관으로 설립하고 원불교정화사라 칭한다.

제2조 본사는 그 본부를 종법사의 지정하는 장소에 두며 연차계획에 의하여 그 사무를 진행한다.

제3조 본사는 종법사를 총재로 하고 남녀 수위단의 중앙 단원을 지도위원으로 하며 편찬위원·번역위원 및 번역연구원·연구위원·경제위원·보행위원 각 약간인을 두어 업무를 분담하고, 남녀수위단원 전원을 자문위원으로 하여 각 위원의 수시증문과 편찬된 초안의 교열에 응하게 한다.

제4조 각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지도위원은 총재를 보좌하고 각 위원의 업무진행을 지도한다. 편찬위원은 각교서의 편찬을 분담 당무한다. 번역위원은 편찬된 교서의 각종 번역을 분담당무하며 번역연구원은 각기 분담번역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며, 번역위원의 업무를 보좌한다. 연구위원은 편찬의 자료를 연구 제공하며 편찬된 초안을 열람한다. 경제위원은 본사 운영 및 출판기금의 조달에 당무한다. 보행위원은 본사 운영 및 출판기금을 회사한 독지가로 한다.

제5조 본사는 각위원의 업무진행을 상호연락하고 회의 및 운영 일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과 소속직원 약간인을 둔다.

제6조 본사 각위원과 직원의 선임 및 해임·개선은 수위단회에서 행한다.

제7조 본사에서 편찬 및 번역·출판할 교서는 정전·대종경·예전·악전·세전 및 교헌·교사이며, 총재가 지정하는 기타 교재로 한다.

제8조 본사의 사업을 거교적으로 협찬하기 위하여 총지부 각 기관의 임원은 전부 본사의 후원회원이 된다.

제9조 본사는 원기43년 5월에 장수에서 우선 그 업무를 개시하며 대종경편수위원회는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본사에서 그 업무를 계승한다.

제10조 본사 업무의 연차계획은 이를 따로 정하며 계획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중앙교의회에 그 사업을 보고하고 해체한다.

附, 정화사 위원 및 직원명단

△총재: 송정산. △지도위원 : 김대거, 이공주. △편찬위원 : 이완철, 이공전, 김윤중. △번역위원 : 박광전, 유허일, 이군일. △번역연구원 : 정자선, 박광진, 송천은, 유기현, 한정원, 이선경. △연구위원 : 박장식, 이운권, 정광훈, 김근수, 이은석, 김정용, 이중정, 장성진. △경제위원 : 이동진화, 송달준. △보행위원(추후발표) △사무장 : 이공전. △서무 : 김정관. △주사 : 박정훈. △감원 : 이대기화. △공양원 : 김원숙. △자문위원 : 박장식, 이운권, 성정철, 조갑종, 유허일, 김홍철, 박광전, 이완철, 오종태, 이경순, 김영신, 조전권, 서대인, 이태연, 양도신, 이동진화(원기43년(1958) 9월 1일 장수정화사발행).

라. 정화사 사칙 개정의 건(원기52년(1967) 10월 18일, 13회 정기수위단회)

이공전(정화사사무장) : 정화사 사칙은 원기43년(1958) 8월 수위단회에서 채택시행되고 원기46년(1961) 12월 종법사특별유시에 의하여 감수위원제신설 등 그 일부가 실질적으로 개정 시행되었고 그 후 누차의 단의에 의하여 발간교서의 종목 명칭 기타 등 개정보완된 조례가 허다하므로 이를 일괄개정하여 이에 상정합니다.(별첨)

「결의」 제5조와 제11조에 자구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다.

「별첨」「수위단회의안」 정화사 사칙 개정에 관한 건(정화사제안)

결의주문 : 정화사 사칙을 별첨「개정안」과 같이(현실화) 시행한다.

〈제안설명요지〉「정화사 사칙」은 원기43년(1958) 4월 수위단회에서 채택시행 되던 바 원기46년(1961) 12월 26일 종법사 특별유시에 의하여 감수위원제 신설 등 그 일부가 실질적으로 개정시행 되었고 그 후 누차의 단의에 의하여 발간교서의 종목 명칭 기타 등에 개정보완된 조례가 허다하므로 이를 일괄 개정(현실화)하여 이에 상정하오니 번역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제1조〈과업과 명칭〉 정화사는 진전하는 교세에 대응하여 본교 교서의 편찬을 신중 조속히 추진하며 그 발간 보급의 임에 당하는 특설기관으로 교헌 제71조에 의하여 설립하고「원불교정화사」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와 업무〉 정화사는 그 사무소를 본교중앙총부구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임시사무소를 종법사의 지정하는 장소에 두며 연차계획에 의하여 그 업무를 진행한다.

제3조〈총재와 임원부서〉 정화사는 종법사를 총재로 하고 수위단의 남녀중앙단원과 총재가 지명한 수위단원 약간인을 감수위원으로하며 총재가 임명한 사무장 1인과 사무원 편찬위원 경제위원 약간인을 두어 사무를 분담하고 남녀수위단원 전원을 자문위원 교정위원 전원을 연구위원으로 한다.

제4조〈임원의 임무〉 정화사의 총재와 모든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총재는 교헌 제21조에 의하여 모든 교서의 편정을 총괄주재하고 그 초고를 최종 감정한다. 감수위원은 각 교서의 편찬 초고를 합의 감수하며 수위단원인 감수위원은 총재를 보좌한다. 사무장은 각위원의 업무진행을 상호연락 독려 총합하고 회의와 운영일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며 사무위원은 사무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편찬위원은 담당교서의 시안을 작성하여 사무장에게 제출하며 경제위원은 출판기금의 조달운영과 사일반운영에 과한 사무장의 자문에 응한다. 자문위원은 사무장 및 각위원의 수시자문과 편찬 초고의 교열 및 운영일반에 관한 사무장의 보고에 응한다. 연구위원은 편찬의 자료를 연구제공하며 편찬 초고의 공람에 응한다.

제5조〈보행위원과 임시위원〉 정화사에 일만원 이상의 출판기금을 희사한 분과 그에 해당한 경제적 공로있는 분을 정화사 보행위원으로 등록대우하며 편찬자료의 수집 및 고증 윤문 교정 기타의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을 수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면〉 본칙 제4조 소정 각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총재가 행하고, 제5조 소정 각위원의 위촉과 해촉은 사무장의 제청으로 총재가 한다.

제7조〈편간의 종목〉 정화사에서 편찬 발행하는 교서는 원불교 교전(정전·대종경), 불조요경, 예전, 악전, 정산종사법어(세전·법어), 교헌, 교사이며 총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 기타 보충교재로 한다.

제8조〈연차계획〉 정화사 교서발간 연차계획은 다음과 같다. 제1차 과업『원불교교전』원기47년(1962)도, 제2차 과업『불조요경』원기50년(1965)도, 제3차 과업『예전악전』원기52(1967)년도, 제4차

과업『정산종사법어』원기54년(1969)도, 제5차 과업『교헌·교사』원기56년(1971)도, 보충과업 기타 보충 교재 원기60년(1975)도

제9조〈중판권〉 정화사에서 발간한 모든 교서와 교재의 판형은 이를 교무부에 인도하며 따라서 그 중판권은 교무부에 귀속된다.

제10조〈편수의 절차〉 정화사 업무의 계획책정과 편찬 감수감정 등 모든 절차는 교단만대의 법보결과라는 대사명감 아래 신중과 최선을 이에 다하며 모든 절차의 진행완결은 매양 그에 해당한 충분한 공청과 토의를 거친 후에 한다.

제11조〈교서의 판매보급〉 정화사에서 발간한 모든 교서는 정화사 및 본교 각 교당과 정화사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판매하며 각 교당 기관 판매책임 교역자는「교서보급이 곧 전도포교의 대경」이라는 자각아래 성의와 최선을 이에 다한다.

제12조〈보완물발행과 해체〉 정화사는 그 업무의 공지와 출판교서의 이해보급 등에 도움이 될「정화사통신」등 보완물을 발행할 수 있으며 본칙 소정의 모든 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수위단회와 중앙교의회에 그 사업을 보고하고 해체한다. 해체당시의 잔여자금은 수위단회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과 사칙은 원기43년(1958) 9월 수위단회에서 채택시행한 바를 원기46년(1961) 12월 26일 종법사 특별유시에 의하여 제1차로 개정시행하고 원기52년(1967) 10월 수위단회에서 제2차로 개정, 이에 공포시행한다.

마. 교전간행에 즈음한 종법사치사(원기48(1963). 9.26. 종법사·정화통신)

전만고 후만고에 회유한 대법보

『정전(正典)』이 초간(初刊)된 지 만 19년이요,「대종경 편수위원회」가 구성된 지 만 9년이며,『정전』과『대종경』의 편수 완결을 촉구하시는 정산(鼎山)종사의 유시를 받든 지 만 9개월이 된 오늘, 비로소『원불교교전』의 발간을 보게 됨에 즈음하여, 그동안 이 일에 당무한 동지들과 힘을 모은 동지들께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융창할 교운(教運)을 자축(自祝)하는 동시에 몇마디 소회를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옛 말씀에「성인들이 나시기 전에는 진리가 천지에 있고, 성인들이 가신 뒤에는 진리가 그 경전에 있다」하였으며, 불교에서는 삼보(三寶) 가운데 법보(法寶)가 그 하나를 차지하였으니, 이것은 다 경전의 소중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로, 경전은 모든 진리의 결집(結集)된 바로서, 우리들의 마음의 등불이며 전 인류의 태양이 되어, 영원한 앞날에 중생의 혜복 문로(慧福門路)를 개방해 놓은 것이니, 이와같이 소중한「경전의 간행」은 불사(佛事)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사업이며 삼계 중생이 다 같이 축복할 경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교전』으로 말씀하자면 역대 어느 경전에도 비할 바가 아니어서, 앞으로 천여래 만보살을 배출하여 구류 중생(九類衆生)이 다 함께 제도를 받으며, 일체 생령의 혜복문로를 열어 주고도 남음이 있을 전만고 후만고에 회유한 대법보(大法寶)입니다.

이 세계가 너르고 너르나 대소유무(大小有無)의 이치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이 다단하나 시비이해(是非利害)의 일에 벗어나지 아니한 바, 이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이해의 일을 남김없이 밝혀 놓으신 것이 바로 이 한권의 교전입니다. 또는,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공부가 많으나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써 나가는 공부보다 더 크고 긴요한 공부가 없는데, 이러한 공부 길을 누구

나 쉽게 행할 수 있도록 물샐 틈 없이 짜놓은 것이 이 한권의 교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가나 정치가나 문학가나 철학가나 실업가를 막론하고, 이 한권의 교전에 의하여, 하나의 큰 진리를 연마하고 해득하고 실행해 간다면, 복혜의 문로는 자연히 열릴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동지들은 시방 삼계(十方三界) 육도 사생(六道四生)과 함께 이 『교전』의 발간을 환희 경축하는 동시에 이 공부 이 사업에 더욱 힘써서 이 법은(法恩)이 무량세계의 무량중생에게 고루 미치도록 전하는 데 함께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원기48년(1963) 9월 26일 宗 法 師

바. 원불교 정기 간행물 소사(원기53(1968). 10. 26, 정화통신)

*일정하 시대의 본교 정기간행물

월말통신·월보시대와 회보시대 (이공주)

1. 『월말통신』 제1호(시창13(1928)년 5월 창간)부터 제44호(시창15(1930)년 12월)까지는 송도성교무가 주간(主幹) 편집, 복사판으로 발행하다가, 시창16년(1931) 1월부터 시창17년(1932) 3월까지 15개월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간(停刊)되다.

2. 『월말통신』 제35호(시창17년(1932) 4월)와 『월보』로 개제(改題)한 제36호(시창17년(1932) 5월)부터 제47호(시창18년(1933) 5월)까지와, 정식 출판허가를 얻어 발행한 『회보』 창간호(시창18년(1933) 9월)부터 제12호(시창19년(1934) 10월)까지는 전음광교무가 주간 편집, 등사판으로 발행한 바, 그중 『월보』 시창18년(1933) 6월, 7월호가 출판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전부 압수되고, 그해 9월, 『회보』 창간호부터는 원고를 미리 경찰서와 경무국에 제출하여 사전 검열을 마친 후 발행하다.

3. 『회보』 제13호(시창19년(1934) 12월)부터 제65호(시창25년(1940) 6월)까지는 통신부장 이공주교무가 주간 편집, 인쇄판으로 발행하다가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국내 정세와 회중 사정이 점점 긴박하게 되매 또다시 중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해방후의 본교 정기간행물

원광시대와 교보·통신·회보 등 병간시대 (이공전)

1. 우리가 해방을 맞아 원광사(圓光社)를 설립하고 『圓光』을 교단 기관지로 창간한 것은 원기34년(1949) 이은석, 이공전교무의 공동 편집으로 7월에 창간호를 발행. 격월(隔月)로 제5호까지 발행하다가 6·25사변이 발발, 태반의 부수가 각 교당에 제대로 배달도 못된 채 발행 중단.

2. 원기39년(1954) 4월, 보화당(이사 송혜환교무)의 재정원조, 이운권교무(동산선원장)의 주간, 이은석, 이종원교무를 편집으로 동산선원에서 복간 제6호 발행, 원기40년(1955) 3월 교무부 직접 주간으로 총부에서 제9호 발행.

3. 원기40년(1955) 4월부터 이공전교무가 주간으로 4년간 발행. 그간 총무 박은섭교무의 활동과 부산 김백연교도 등의 희사로 숙원이던 원광사 자영(自營)인쇄시설, 원기43년(1958) 1월 제21호부터 자체시설로 인쇄. 그동안 이경원, 김석정, 이종명 교무 등이 차례로 편집실무에 당무.

4. 원기44년(1959) 4월부터 교무부장 이은석교무가 주간 겸임. 원기49년(1964) 5월부터 다시 교무부 직접 주간 원광사 인쇄 발행으로 계속중인 바 그간 송천은, 박제중, 손정윤(교무부편수과),이경원교무 등이 차례로 편집 실무를 담당, 현재(61호)에 이름.

5. 이밖에 『금강』이 해방 다음해 5월, 금강청년회에 의해 이공전교무의 편집으로 발행되어 회보 폐간후 『원광』 창간전 하나의 가느다란 가교(架橋)가 되었고, 계간(季刊) 영문지 『WON BUDDHISM(원부디즘)』 이 원기47년(1962) 봄 해외포교연구소에 의해 창간되어 전팔근교무의 편집으로 10호까지 발행되었으며, 월간 『圓佛教教報』가 원기49년(1964) 5월 교정원에 의해 창간되어 현재(55호)에 이르렀고, 『정화통신』이 정화사(正化社), 『육영통신』이 육영부(育英部)에 의해 각각 부정기(不定期)로 발행되고 있으며, 『원불교청년회보』가 원기51년(1966) 9월 청년회에 의해 창간되어 회장 김정용교무 주간 조정근교무로 현재(24호)에 이름. 편집 서경전, 이청남교무

사. 정화사연혁개요

원기41년(1956) 5월 대종경편수위원회발족. 총재 송정산, 전문편수위원 이공전교무 취임.
원기43년(1958) 5월 정화사 장수에서 발족. 총재 송정산, 사무장 이공전교무 취임.
원기45년(1960) 1월 정전의 자구수행 및 재간업무위임(수위단회).
원기46년(1961)12월 정산종법사 최종유시로 직제개정. 감수위원 김대거, 이공주, 이완철, 박광전, 이운권, 박장식교무 취임
원기47년(1962) 2월 초대총재 열반으로 제2대 총재 대산종법사 취임
원기47년(1962) 7월 『원불교교전』 원고의 감수, 감정 수위단회 봉찬완결. 번역업무 해외포교연구위에 위임하고 『정산종사법어』 새 과업으로 추가(수위단회).
원기47년(1962) 9월 『원불교교전』 초판 발행.
원기47년(1962)10월 새 『교전』 국내정계, 학계, 종교계, 언론계와 해외 14개국 불교단체 및 도서관에 기증.
원기49년(1964) 4월 『교전』 판형 교무부 통해 원광사에 기증.
원기50년(1965) 6월 사무장 한국6대종교인의 대회 한국종협의 발기 종교계의 창간에 참여.
원기50년(1965)12월 『불조요경』 초판 발행. 『정화통신』 창간(5호까지 총 35,000부).
원기52년(1967)10월 정화사 사칙개정 현실화(수위단회) 교고총간 사업주관수임(교정위원회).
원기53년(1968) 2월 새 성가 80곡, 옛 성가 20곡 작편곡완료(작편곡 별도예산 500,000원).
원기53년(1968) 3월 『예전·성가』 초판 합간판 및, 별간판 발간 김동진 나운형초청 「성가 발간기념 발표회」개최(금메달 2, 동메달 20개 발행).
원기53년(1968)10월 『교고총간 제1권·월말통신 월보편』 발간.
원기54년(1969) 6월 『교고총간 제2권 회보편Ⅰ』 발간.
원기54년(1969) 7월 『성가』 판형 원광사에 대여. 축쇄판 『교전·성가』 발간(원불교출판사).
원기54년(1969) 9월 『교고총간 제3권 회보편Ⅱ』 발간.
원기55년(1970) 9월 『교고총간 제4권 초기교서편』 발간.
원기55년(1970)10월 사무장 제1차 세계종교자평화회의 참가(일본 경도)
원기56년(1971) 4월 개교반백년사업회에 성미 헌납(40叭).
원기56년(1971) 9월 하섬에 「정화대」 건축 기증.
원기57년(1972) 1월 『정산종사법어』 초판 발간.
원기57년(1972) 3월 교사편수요강 교헌수정요강 채택(수위단회).

원기57년(1972) 8월 서울회관수습분담금 납부(1,400,000원)
원기57년(1972)10월 새 생활운동에 호응『예전』증정운동
원기58년(1973) 8월 『교고총간 제오권 기본사료편』발간
원기59년(1974) 9월 『정산종사법어』『예전』『불조요경』의 판형 필림화
원기59년(1974)11월 『원불교교사』초안 공개자문(제2차)
원기59년(1974)12월 『교고총간 제6권 각항자료편』발간으로 교고총간 완간『교고총간』완간기념 대법공(무료증정 및 반 증정 500부).
◇附 : 정화사 과업완결예정일정
원기60년(1975)10월 『원불교교사·교헌』합간판 및 별간판간행.
원기61년(1976) 3월 『원불교전서』간행, 정화사 과업종결 및 개교60주년 기념대법공(5,000부).
◇附 : 교전·교서편수담당일람 및 역대사무위원
① 대종경편수=이공전(41~47년) ② 정전재편=이공전(45~47년) ③ 불조요경편수=이공전(49~50년) ④ 예전편수=정광훈(45~47년) 이공전(48~53년) ⑤ 성가편수=이공전(48~59년) ⑥ 세전편수=이공전(54~57년) ⑦ 법어편수=송순봉(54~55년) 이공전(56~57년) ⑧ 교사편수=이은석(45~56년) 이공전(57~60년) ⑨ 교헌편수=김윤중(43~60년) ⑩ 역대사무위원=오회원, 김정관, 박정훈, 송순봉, 조정중, 송영봉, 김대관, 정원일, 이덕조, 정숙현.

아. 교전·교서중간총람(원기59년(1974) 9월)

원불교교전 원기47년(1962) 9월 26일 초판 8,000부(동아출판사 인쇄－정화사 발행)
〃 원기49년(1964) 9월 1일 재판 2,000부(〃 －원광사)
〃 원기50년(1965) 7월 20일 3판 20,000부(〃)
〃 원기51년(1966) 9월 1일 4판 20,000부(〃)
〃 원기52년(1967) 9월 1일 5판 20,000부(삼화인쇄－원광사)
〃 원기53년(1968) 7월 30일 6판 20,000부(풍유인쇄－ 〃)
〃 원기54년(1969) 3월 30일 7판 20,000부(영풍인쇄－ 〃)
〃 원기55년(1970) 4월 26일 8판 20,000부(교학사－원불교출판사)
〃 원기56년(1971) 7월 1일 9판 20,000부(〃)
〃 원기57년(1972) 7월 1일 10판 20,000부(〃)
〃 원기58년(1973) 6월 1일 11판 3,000부(서울신문－원불교출판사)
〃 원기59년(1974) 7월 1일 12판 3,000부(〃)
불조요경 원기50년(1965) 12월 8일 초판 7,000부(광명인쇄－정화사)
〃 원기58년(1973) 4월 8일 재판 1,000부(서울신문－ 〃)
예전·성가(합간) 원기53년(1968) 3월 26일 초판 8,000부(평화당－ 〃)
〃 원기55년(1970) 12월 26일 재판 20,000부(서울신문－ 〃)
〃 원기59년(1974) 4월 1일 삼판 1,000부(평화당－ 〃)
원불교예전 원기53년(1968) 3월 26일 초판 20,000부(〃)
〃 원기55년(1970) 12월 26일 재판 1,000부(서울신문－ 〃)

원불교성가 원기53년(1968) 3월 26일 초판 20,000부(평화당－정화사 발행)
〃 원기53년(1968) 9월 26일 재판 4,000부(〃)
〃 원기55년(1970) 12월 26일 3판 20,000부 (서울신문－ 〃)
〃 원기57년(1972) 7월 26일 4판 1,000부(서울신문－ 〃)
〃 원기58년(1973) 1월 26일 5판 20,000부(〃)
〃 원기59년(1974) 4월 1일 6판 1,000부 (서울신문－원불교출판사)
〃 원기59년(1974) 9월 26일 7판 1,000부(〃)
교전·성가(축쇄판) 원기54년(1969) 7월 15일 초판 5,000부(교학사－원불교출판사)
〃 원기55년(1970) 7월 26일 재판 20,000부(〃)
〃 원기56년(1971) 8월 1일 3판 20,000부(교학사－ 〃)
〃 원기57년(1972) 7월 1일 4판 20,000부(〃)
〃 원기58년(1973) 6월 1일 5판 3,000부(서울신문－ 〃)
〃 원기59년(1974) 4월 1일 6판 3,000부(〃)
鼎山宗師法語 원기57년(1972) 1월 24일 초판 7,000부(평화당－정화사)
〃 원기58년(1973) 8월 4일 재판 1,000부(서울신문－ 〃)
〃 원기59년(1974) 4월 1일 3판 1,000부(〃)
〃 원기59년(1974) 9월 26일 4판 1,000부(〃)
附 : 원불교교고총간 제1권 원기53년(1968) 10월 26일 초판 500부 별쇄 200부(원광사－ 〃)
〃 제2권 원기54년(1969) 6월 30일 〃 (〃)
〃 제3권 원기54년(1969) 9월 26일 〃 (〃)
〃 제4권 원기55년(1970) 9월 26일 〃 (〃)
〃 제5권 원기58년(1973) 8월 26일 〃 (〃)
〃 제6권 원기59년(1974) 12월 26일 〃 (〃)

자. 정화사 보행위원보

△특별보행위원＝오철환(군산) 임제안(경남) 윤안택(부산진) 황정신행(서울) 송경심(원남) 김서경(종로).

△보행위원＝김성진 김보원 최행덕 한덕형 최인수 정도진 김도진행 송정호 조정복(원남) 공덕종 김묘영 남궁법 홍인덕 장귀만 장근정 이철원 김명환(종로) 김도영 손성인화(사직) 이건세 김춘국 윤공덕해 백인철 김견성화(동래) 진명일 백은명(마산) 류대신행(서성로) 서유성 유영근 방성심 장혜상 서영천(대구) 백자인(동산) 양영진 백봉시화(전주) 박은시화(대신) 이만수화(통영) 문종건 서성도행 김명중 성의철 문동현 황도영 조추연(서울) 김성윤(이리) 변몽선 이현성화 김광준 신항준(광주) 김진여행 김양진 박만성(목포) 감원도 윤법중(불광) 류청사(남원) 이운외 여청운 최상옥 송순봉 정안심행(총부) 문봉림(당리) 유선용(부산진) 조도연행 유청정월 권봉안 조법옥화(신촌)

△공로보행위원＝전이창 송달준 양도신 이경순 이성신 윤주현 이철행 박성경 서세인 이정은 박은국

이정무 송영봉(총부) 유귀만(장수) 김백연(경남)

보화당약방 원광대학교 원광중·고등학교 원광여자중·고등학교 하섬수양원 원광사 원불교신보사 이리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동래지부 신촌지부 산동지부 장수지부 종로지부

*편자주 : 특별보행위원은 50,000원 이상, 보행위원은 10,000원 이상(공로보행위원은 보행여장 등 유공자)

2. 圓佛敎 圓光社

가. 설 립

원광사는 원기33년(1948) 정산종법사가 《불법연구회》라는 명칭을 《원불교》라 개명하고 교단 인재 양성 기관인 유일학림 1기생이 졸업하자 졸업생중 2명을 선발하여 교단기관지인 『원광』을 창간토록 하고 그 인쇄 제작을 위해 발족되었다.

원기40년(1955) 신임 총무로 박은섭교무가 부임하여 자영 인쇄시설을 발원, 각방으로 주선 끝에 경남교당 김백련교도의 희사를 받게 되었다.

박은섭교무의 주선으로 인쇄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원광사는 편집실만 있던 체제에서 인쇄소까지도 겸하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의 원광사로 발전할 수 있었던 기틀이 된 것이다.

이리하여 원기43년(1958) 1월 20일 마침내 인쇄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호남일대에서 정평있는 일류 기술자를 유치하였으며, 편집 실무도 이종원·이종명교무가 맡게 되었다.

자영 인쇄시설을 갖추자 교단 문화사업에 기여하고 일선교화자들에게 교화자료를 제공한다는 큰 뜻으로 교단시설로는 최초인 단행본 『설화집(說話集)』을 발행하게 되었다(원기43년(1958) 12월 30일·설화편찬위원회편·교무부발행).

원기44년(1959) 신임교무부장(현 교화부)에 이은석교무가 부임하면서 원광사 주간을 겸임하게 되고 『원광』 32호부터 54호까지 발행에 있어서는 교화부 편수과와 긴밀한 협조 체제아래 발간 되었으며 그 때 교무부 편수과 주사 송천은교무가 편집보조를 했다.

원기47년(1962) 9월 30일 정산종법사 법설을 모아 선진유고선집 1권 『정산종사 법설집』을 원광사 자체에서 편집하고 인쇄하여 지방에 배포했다. 정산종법사 법설집이라서 지방에서의 호응도 대단하여 발간하자마자 매진도 되었지만 현재의 『정산종사법어』보다 10년이나 앞서 발행된 것으로 교단적으로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또한 교단시설로는 처음으로 발간한 교단관계 단행본이었다.

원기48년(1963) 원광사는 체재를 정비하여 초대 사장에 김영신교무가 취임하였으나, 이듬해에 김홍철교무 명의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원광사 책임자를 사장으로 발령한 것은 이제까지 원광사가 『원광』지 편집과 운영을 같이하여 오면서 책임자를 주간이나 발행인이라고 호칭했던 시대와 구분하여 『원광』지 편집, 발행보다도 인쇄사업에 중점을 두는 한 분기점이 되었다.

한편 원광사 인쇄(영업부)는 원기49년(1964) 9월 10일 동화병원으로 사옥을 옮겨 대외적인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원기51년(1966) 8페이지 인쇄기를 구입하였으며, 원기53년(1968)에는 신문사 설립을 위하여 기본시설인 8포인트 주조기 자모 2천종과 대형 인쇄기를 부채를 안은채 사들였다. 원불교청년회에서 발행하는 『청년회보』와 원광대학에서 발행하는 『원대학보』를 접수하고 정기 인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부터 인쇄에서 신문도 인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춤과 동시에 대형판 인쇄도 할 수 있는 기술의 축적을 하게 된 것이다.

원기54년(1969) 4월 13일에는 보다 대외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인쇄소를 시내 원광여자중·고등학교 부속건물(이리시 창인동 소재)로 옮겼다. 이 해에 새로 창간된 《원불교신보사》의 공무국으로 약정 계약을 맺고 격주간제로 정기 인쇄를 하였다. 또 이 해 원광사는 단행본 간행의 필요를 느끼고 《원불교 출판사》를 발족시켰고 『원광』지도 문화공보부에 계간 등록을 하였다. 출판사 사장에는 당시 교정원장, 편집인은 교무부장, 주간은 원광 편집장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원불교 출판사 발족과 함께 교단 인쇄사상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축쇄판(포켓용 소형) 교전(성가합권)을 발행하였다.

축쇄판 교전이 발행되자 교도들의 수요는 급증하여 오히려 큰 교전보다 수요자가 더 많았다. 성가가 함께 수록되어 그 전에는 두권을 가져야 법회를 보았는데 간편하게 한권이면 되었다.

원기56년(1971) 이 해에 특기할 만한 일은 반백년 교단을 문화사적으로 조감해 본 교단문화의 총결집인 『원불교개교 반백년 기념문총』(회장 박광전교무)을 발간했다는 사실이다.

원기59년(1974) 구 천일고무공장자리로 사옥(전세)을 옮겼다.

이때까지 시설투자로 빚에 짓눌려 있던 원광사의 경영을 쇄신하여 부채를 청산하고 적은 기금이지만 자체 사업자금을 적립하게 되니 이는 원광사 발전의 또 하나 전기를 이루었다.

원기62년(1977)에는 원광사 시설 확장을 서둘렀다. 본문용 활자 주조기, 제책 철사기, 8페이지 인쇄기, 본문 자모 5만4천종을 구입하여 활판 인쇄소로서의 손색없는 시설을 갖추고 활판 인쇄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활자용 납도 1만관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원기64년(1979) 가을, 숙원 사업인 문화회관이 총부 정문에 준공되면서 원광사는 총부로 돌아왔다. 애당초는 총부의 중심지인 현 종법실 자리에 간판이 걸려 있었으나 네 번의 이사 끝인 30년만에 총부 정문에 정착하였다.

안정된 사옥에 정착하게 되면서 원광사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국전 칼라 옵셋기, 국반 칼라 옵셋기, 사진 식자기, 전자동 청타, 카메라 시설, 제판, 소부시설 등을 완비

하여 급변하는 인쇄문화의 흐름에 대비하였다. 한편 활판 인쇄에도 신문용 활자(6·3포인트) 주조기, 동판기, 연판기를 구입하고 제본 접지기도 들여왔다. 지하 1층은 활판 인쇄와 제본실, 지상 1층은 문선실·옵셋실·사무실, 지상 2층은 사진 제판·사진식자실 등 한 사옥에 활판, 옵셋, 제본시설을 갖추기는 호남에서는 단 하나뿐인 인쇄소가 되었다. 50여명의 직원들의 기동성있는 출퇴근을 돕기 위해서 25인승 버스도 구입하였다. 원광사의 일대 변모는 문화원 입주를 계기로 하여 대약진의 발판이 되었다.

원기67년(1982) 원광사는 또한번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활판 인쇄가 인건비의 과다 지출, 제작 시간의 지연 등 계속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함을 통감하고 활판 인쇄를 폐지하고 옵셋 인쇄 체제를 보강하였다. 남은 인력을 이용하여 제본시설을 강화하고 반자동 재단기를 처분, 자동 재단기, 일조기, 금박기, 함마기 등을 갖추었다. 청타조판기도 9대를 구비, 최신 타이프린다 시설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전북교육사 제작 입찰에 응하게 되어 외부인쇄물을 처음 발주받아 인쇄 제작한 결과 전북교육원 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케 되었다.

원기68년(1983) 종전까지 쓰던 세로쓰기 『교전, 전서』를 가로쓰기로 신조판 인쇄하게 되어 원기47년 9월26일 정화사 발행 동아출판사 인쇄 『교전, 전서』가 21년만에 원광사에서 인쇄됐다는 사실은 실무자들로써 감회 깊은 일이였다.

원기69년(1984) 5월 11일 창립 3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원광』誌를 계간 발행에서 월간으로 발행하게 되니 『원광』을 인쇄키 위해 설립한 인쇄소가 제임무를 다 한것 같다. 또한편 원불교 자료총서 『월보→회보』『영인본 10권 별책 1권』을 제작해서 교단 귀중한 재료를 결집한 셈이 되며, 『대산종법사 법문집』『정전대의』『종사문집 6권』『삼가정수』『한국불교사상사』 등은 특기할 만한 교단출판물이 된다. 시설로는 대학앨범을 제작키 위해 사진카메라 제판시설을 보강하여 사진방향을 시도하고 원기71년(1986) 『사진으로 본 오늘의 원불교』 화보를 편집, 인쇄, 제작하게 되니 읽는시대에서 보는 시대의 한 장을 열게되어 교단과 더불어 인쇄물 기획, 인쇄, 제작, 출판물을 담당 문화사업에 일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원불교출판사는 교단의 출판물을 출판사 이름으로 발행하고 원광지는 자체운영하도록 하는 『출판사』와 『월간 원광』 자립 시기가 머지 않는 것 같다.

망망대해 가운데 하나의 섬이 있기까지는 바다 속 깊이 뿌리박은 밑받침이 있다. 산정의 기암 괴석이나 골짜기에 함초름히 핀 향기좋은 꽃 몇 송이가 그 섬의 전체를 대변한다 볼 수 없다.

이제 창사 35주년을 맞이한 원광사는 이공전사장·박정기부사장·심도윤전무·이혜진공장장·김신전부장·이정청안전부장을 주축으로, 창간 35주년을 맞이한 『원광』지는 박달식주간·김지정편집장을 주축으로 모든 사원들이 향후 5~6년간을 교단 문화사업을 새롭게 밑받침하고 주도하는 해로 설정하고, 한울안 한마음 공동체의식을 통한 모든 원광인의 총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영목표에서는 교무들의 일선 교화를 지원하는 문화적인 사업체가 되는 데에 지향점을 두고, 『원광』지 월간 발행, 정기간행물 및 대량인쇄물 유치, 혁신적인 시설 투자와 원가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최고·최신의 품질수준, 교단의 개성적인 연구개발력 확보, 끊임없는 노력과 봉공정신 발휘 공부하면서 일하는 원광사를 만들자는 노력을 실천과제로 삼고 있다.

〈이전 신축 및 확장〉

구 분	연 월 일	주 소	대지	건물	시 설 경 비		
					총액	기금	부채
신 축	43. 1. 20	중앙총부 구내					
이 전	49. 9. 20	구동화병원 구내					
〃	54. 4. 13	원광여자중·고교 부속건물					
〃	59. 11. 12	남중동(구 천일고무공장)					
건립이전	64. 10.	원불교문화회관내					

나. 조직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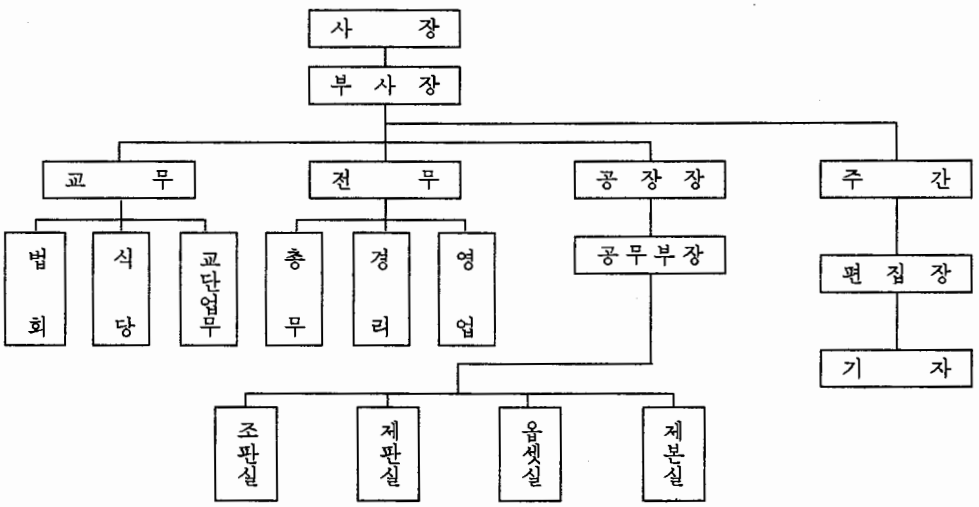

다.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편집발행인	李 共 珠(慶子)	女	1897. 12. 23	34.10. 1~49. 4.20	
주 간	李 恩 錫(俊行)	男	1925. 1. 12	〃	
편집발행인	宋 慧 煥(東煥)	〃	1905. 2. 12	39. 4.20~40. 4.25	

주 간	李雲捲(雲行)	男	1974. 5. 3	39. 4.20～40. 4.25
〃	李鍾圓(鍾甲)	〃	1930. 10. 6	39. 4.20～68. 1.
편집위원	金石晶	〃		40. 4.26～44. 4.25
총 무	朴恩燮(玉南)	女	1933. 3. 5	40. 4.26～44. 4.25
편 집 장	李宗明(宗丙)	男	1924. 5. 29	42. 4.26～44. 4.24
편집위원	李中正(鍾行)	〃	1926. 6. 14	〃
서 무	沈道正(大燮)	〃	1936. 11. 18	〃
내 무	朴正基(炅永)	〃	1937. 7. 17	〃
공장주무	金法宗(鍾鎬)	〃	1937. 5. 15	43. 4.26
〃	金永俊	〃		44. 4.26～46. 3.19
총 무	殷正文			44. ～46.
서 무	李運徹(鉉澤)	男	1939. 2. 8	44. 4.26～46. 3.19
〃	張敬眞(在觀)	女	1937. 7. 22	45. 4 ～46. 4
	李慧鎭(潤錫)	男	1935. 10. 20	45.10.24～62. 2
총 무	金正貫(鎬炳)	男	1932. 11. 29	46. 3.19～51. 4.25
사 장	金永信(順得)	女	1908. 2. 6	
〃	金洪哲(忠烈)	男	1902. 9. 19	49. 2.26～56. 4. 9
	李正淸(南淑)	〃	1931. 8. 26	49. 9.25～52. 3
외무·총무	金聖現(永彩)	〃	1938. 3. 1	50. 5.20～54. 3.20
공장주무	尹順培	女	1917.	50.11.25～54. 2
	金信田(貴鉉)	男	1948. 8. 9	50.10.20～69
공무부장	〃	〃	〃	69. ～
내무·총무	朴正基(炅永)	〃	1936. 11. 18	53. 1. 2～58. 2.28
서 기	金三印(順禮)	女	1934. 10. 29	53.10 ～54. 2
사 장	李百徹(致炯)	男	1927. 4. 9	56 ～58
〃	趙正勤(年九)	〃	1933. 12. 6	59 ～61
총 무	林允徹(海龍)	〃	1935. 12. 15	59.
사 장	李廣淨(建衡)	〃	1936. 9. 1	62
전 무	徐三省	〃		62. ～67.
〃	朴正基(炅永)	〃	1937. 7. 17	67. 6. 1
공 장 장	李慧鎭(潤錫)	〃	1935. 10. 20	65. 7
주 간	孫正允(鍾鉉)	〃	1939. 6. 14	66. 7. 1

주 간	金 志 貞	女	1939. 7. 20	64. 7.25~70. 5.20	
사 장	李 空 田(順行)	男	1927. 3. 24	67. ~68.	
부 사 장	朴 正 基(炅永)	〃	1937. 7. 17	68.	
주 간	朴 達 識(世雄)	〃	1945. 1. 9	68.11.17	
편 집	鄭 仁 信(仁淑)	〃	1951. 3. 12	69. 1.10	
전 무	沈 道 潤(範澤)	〃	1947. 9. 27	64. 1.25~	

〈배출된 전무출신〉

번호	법 명 (호 적 명)	성별	생 년 월 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 천 교 무	비 고
1	沈 道 正(大燮)	男	1936. 11. 18	32.	42. 4. 20	安 理 正	
2	朴 正 基(炅永)	〃	1937. 7. 17	39.	42. 4. 20	宋 靈 鳳	
3	金 法 宗(鍾鎬)	〃	1937. 5. 15	40. 4. 10	42. 4. 26	金 勤 修	
4	金 永 準	〃					
5	李 運 撤(鉉澤)	〃	1939. 2. 8	42.	44. 4. 26	金 洪 哲	
6	張 敬 眞(在觀)	女	1937. 7. 22	40. 3. 28	45. 4. 21	朴 濟 權	
7	李 正 淸(南淑)	男	1931. 8. 28		49. 9. 25	〃	
8	李 慧 鎭(潤錫)	〃	1935. 10. 20	46. 8. 19	49. 10. 15	金 洪 哲	
9	金 信 田(貫鉉)	〃	1948. 8. 9	49. 3. 27	60. 2. 16	李 百 徹	

라. 간행물

〈정기간행물〉

제호	간행물	지령	판형	발행인	인쇄인	편집인	목 적	비 고
158	원광	65모	크라운판	김 환 열	이 공 전	이 공 전	교 화	34. 7.31
499	원불교신보	신문54 g	2절	〃	김 충 열	〃	〃	54. 6. 1
90	원불교교보	서적 70	16절	총 무 부	원 광 사	총 무 부	〃	49. 5. 1
	청 년 회 보	〃	〃	〃	〃	〃	〃	51. 9
7	어린이교화	〃	〃	교 화 부	〃	교 화 부	〃	
19	육 영 통 신	서적 70	16절	교 육 부	원 광 사	교 육 부	〃	
	교화자료모음	〃	〃	교화연구소	〃	교화연구소	〃	

〈간행물〉

제 목	발간년월일	총발행부수		판형	페이지	저 자 역 자	발행	인쇄	등록 번호	목적·내용	비 고
		판	부								
교 전 공 부	59(74) 1.31	1	1,000	국판		신도형		○			
용 어 사 전	65(80)12. 3					손정윤		○			
대 종 사 일 화	62(77)12. 3		4,000	4×6		〃		○			
인 과 의 세 계	64(79) 7.20		1,000	국판		김중묵		○			
원불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65(80)12. 3					교화부		○		교 화	
교 리 개 요	65(80)12. 3		2,000		40p	이광정		○			
대산종법사법문집	62(77) 1. 1					김대산		○			
정 전 대 의						〃		○			
항 타 원 문 집	64(79)11.11					항타원		○			
응 산 문 집	66(81) 5. 1					응 산		○			
심 고 문 집	61(76) 3.26					교화부					
둥그신빛을찾아서	67(82)10.25					김은준		○			
한마음한길로	69(84) 6.20		2,000	4×6		청 아					
묵 산 유 고 집	70(85) 1.20		2,000	4×6		박창기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	69(84) 7. 1			크라운판		손정윤					·만고일월 ·새회상 거룩한
숭 산 예 화 집	69(84) 8. 1		2,400	4×6		박광전					
삼 가 정 수	61(76)12.30					이운권					
사진으로본 오늘의원불교	71(86). 9					원광사					
교리실천도해	71(86). 6					법무실					
정 전 대 의	71(86). 7					법무실					
원불교이해의첫걸음	72(87). 4		문고판			김일상					
범 범 록	72(87). 4		502	국판		이공전					
큰힘되게하소서	72(87). 6		2,000	국판		김인강					
한국지성이본원불교	72(87). 6		2,000			김성철					
효부가된며느리	72(87). 8		2,000	국판							

3. 圓佛敎出版社

가. 설 립

원불교출판사는 원기54년(1969) 7월 15일 교단의 각종 출판물들을 발행하여 보급하는 것을 주임무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출판사업을 통하여 원불교의 이념과 교리를 널리 선양하는 동시에 일원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불교출판사는 본래 원불교 원광사 내에 소속되어 출판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가, 원기71년(1986) 6월 3일 원광사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원불교출판사가 최초 설립될 당시의 기관장은 박장식교무가 담당하여 원기68년(1983) 2월 27일까지 대표를 맡았으며, 이어 이공전교무가 기관장으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조직 기구도

원불교출판사는 사장이 기관을 대표하며 그 밑에 편집주간이 있고, 또한 그 밑에 총무가 있어 영업부와 편집부를 관장하고 있다.

〈조직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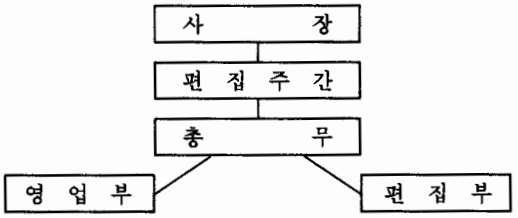

원불교출판사는 중앙문화회관 1층에 사무실과 창고 등 약 9평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다.

다. 역대기관장 및 재직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사 장	朴 將 植(天植)	男	1911. 1. 9	54. 7.15~68. 2.27	
사 장	李 空 田(順行)	〃	1927. 1.21	68. 2.28~	
부 사 장	朴 正 基(炅永)	〃	1937. 7.17	69. 3.17~	
편 집 인	金 勤 修(益洙)	〃	1922. 6. 9	54. 7.15~68. 2.27	

주 간	李 鍾 圓(鍾甲)	男	1930.10. 6	54. 7.15~68. 2.27	
편집주간	金 學 仁(學仁)	〃	1940. 1.15	71. 3.15~	
총 무	朴 仁 海(成洙)	〃	1953.11.17	71. 2. 6~	

마. 출판현황

도 서 명	편역저자	정 가	면수	판수	판형	발행일	비 고
원 불 교 교 전	원불교정화사	1,500	408	24	46판	70. 6.	
원 불 교 교 사	〃	1,000	189	1	〃	60. 9.	
예 전	〃	1,000	201	4	〃	61. 4.	
성 가	〃	1,000	138	11	〃	65. 9.	
정 산 종 사 법 어	〃	1,000	379	8	〃	63. 6.	
원 불 교 교 서	〃	2,500	851	1	〃	70. 3.	
원 불 교 전 서	〃	6,000	1,339	11	〃	70. 3.	
원불교교전성가(축소판)	〃	1,000	544	18	〃	69. 1.	
원불교전서(축소판)	〃	3,000	1,610	3	〃	68. 5.	
원불교자료총서(전10권)	원광사편	120,000		1	46판	69. 8.	교단초기 간행물영인
설 화 집	원불교교무부편	2,000	287	1	〃	57. 9.	
일 원 상 대 의	박정식저	2,500	292	1	〃	60. 5.	
소 태 산 대 종 사	손정윤저	2,500	292	1	〃	60. 7.	
저 푸 른 하 늘 을 보 라	박혜명저	3,500	407	1	〃	61. 7.	신앙실록1
세 계 가 함 께 보 는 구 슬	청하문총간행회편		461	1	〃	61. 10.	
예 화 집	정자선편	6,000	784	1	〃	62. 12.	
소 태 산 대 종 사 일 화	손정윤편	2,500	359	1	〃	62. 2.	
은 혜 의 꽃 은 피 고	박혜명저	3,500	392	1	〃	63. 6.	신앙실록2
행 복 자 는 누 구 인 가	교화부편	2,500	390	1	〃	64. 5.	조전권설교집
원 불 교 용 어 사 전	손정윤편저	4,000	743	1	〃	65. 7.	
교 전 공 부	신도형저	5,000	757	3	〃	66. 3.	
원 불 교 입 문	손정윤저	2,200	303	1	〃	66. 9.	
한 울 안 한 이 치 에	박정훈편	3,000	361	2	크라운	67. 3.	정산종사법설집
인 생 그 리 고 종 교	신보사편	2,000	241	1	〃	67. 7.	
둥 그 신 빛 을 찾 아 서	김은준저	3,000	431	1	〃	67. 10.	방송설교집
내 일 을 여 는 서 원	박혜명저	3,000	318	1	46	67. 12.	신앙실록3
경은길이요빛이요생명이니	김일상저	2,000	231	1	〃	67. 12.	설교집
새 회 상 시 가 모 음	문화부편	2,000	185	1	크라운	67. 12.	
대 산 종 법 사 법 문 집	법무실편	3,000	551	1	46	68. 3.	

텅비어가득차게하소서	손정윤저	2,000	329	1	46	68. 6.	기도문집
선 진 종 사 문 집 (전 5 권)	교화부편수과 선진문집편찬위원회편	15,000		1	〃	69. 3.	
원불교경강설교자료집1	김일상·성도종·신명국편	12,000	641	1	〃		
금 강 산 의 주 인	청하문총간행회편		289	1	〃	69. 6.	
한 마 음 한 길 로	〃		333	1	〃	69. 6.	
예 화 집	박광전편	1,000	200	1	문고	69. 8.	
일 원 가 족 의 합 창	문화부편	1,000	277	3	〃	70. 1.	노래모음
호 수 에 달 잠 기 듯	손정윤편		424	1	크라운	70. 1.	정광훈글모음
묵 산 정 사 문 집	청하문총간행회편		276	1	〃	70. 1.	박창기글모음
청풍월상시만상자연명	손정윤저	4,000	665	1	〃	69. 7.	소태산전기
합 장 하 는 마 음	이종진저	3,000	309	2	〃	70. 4.	방송설교집
대 종 경 선 외 록	이공전편	1,500	201	3	46	70. 5.	
원불교는어떠한종교인가	교화부편수위원회편	100	63	6	문고	70. 5.	입문서1
원 불 교 교 리 문 답	〃	100	75	6	〃	70. 8.	입문서2
하 나 의 진 리 를 밝 힌 새부처님(대종사생애)	〃	300	91	1	〃	70. 5.	입문서3
신 입 교 도 를 위 한	〃	100	22	1	〃	70. 6.	입문서4
정 다 운 친 구	교화부편	500	142	3	46	71. 8.	어린이노래집
일원가정으로가는길	〃	200	35	1	국판	71. 8.	가정교화입문
예의범절은이렇게	〃	300	86	1	〃	71. 8.	가정교화입문
이 젠 바 람 이 불 어 도	백지명저	1,500	109	1	크라운	70. 6.	시집
만 고 일 월	손정윤저	1,000	137	1	문고	70. 4	원광문고1
새 회 상 거 룩 한 터	박달식·김영수저	1,500	240	1	〃	11. 7.	원광문고2
상 용 예 식 문 집	교화부편	2,000	107	1	크라운	68. 4.	
철 자 집	김기천저	1,000	92	1	46	65. 5.	
독 경 집	원불교출판사편	200	32		크라운		
대 종 사 가 사 집	교화부편수과	1,200	101	1	46	64. 11.	
아 흡 선 생 의 이 야 기	〃	700	245	1	46	64. 5.	
그 림 대 종 사 1	조명심글·김찬그림	1,000	181		크라운	60. 3.	
그 림 대 종 사 2	〃	2,000	302		〃	63. 8.	
어 린 이 교 전 공 부	교화부편수과	300	151	1	46	61. 6.	
방 송 설 교 집	이광정저		194	1	〃	64. 5.	
운 형 수 제	남자정화단		213	1	크라운	70. 8.	
정 전 해 의	한산정전해의편찬위원회	3,000	781	1	46배	70. 7.	
참 고 문 헌 부	이광정편		176	1	문고	59. 3.	
청 림	김지정·이성전·강숙원저		104	1	〃	71. 12.	수필집
개 벽 의 일 꾼	원불교여자정화단		181	1	크라운	70. 11.	

인 과 의 세 계	김중묵저	2,500	338	6	〃	71. 4.	
빛 은 동 방 에 서	전음광저	5,000	470	1	〃	71. 4.	회설모음
교 리 실 천 도 해	법무실편	2,000	54	2	국배	71. 6.	
일 원 의 광 장	서경전저	3,500	288	2	국	71. 7.	설교집
삼 가 정 수	이운권저	5,000	435	3	국	71. 7.	
정 전 대 의	법무실편	3,000	260	2	크라운	71. 7.	
구도의길로매진하세요	김정인여사추모회		151	1	〃	71. 7.	
한 생 벗 겨 지 는 소 리	박재윤저	2,500	200	1	국	71. 3.	
사진으로본오늘의원불교	원광사편	5,000	119	2	국배	71. 9.	칼라화보
은혜와고통으로크리라	김인강편저	2,000	231	1	크라운	71. 12.	
범 범 록	이공전편저	8,000	843	3	〃	72. 4.	
원불교이해의첫걸음	김일상저	1,000	168	7	문고	72. 4.	
눈이큰아이귀가큰어른	양해관저	2,500	215	1	크라운	72. 5.	유아자모교
불 교 개 론	한종만저	3,000	216	2	〃	72. 5.	
큰 힘 되 게 하 소 서	김인강편저	2,500	229	1	국	72. 6.	기도문집
한국지성인이본원불교	김홍철편	4,500	419	1	크라운	72. 6	
효 부 가 된 며 느 리	김일상글·김찬그림	1,000	100	1	〃	72. 8.	만화
대 도 론	장성진저	3,000	399	3	〃	72. 10.	
THE CANONICAL TEXT BOOK OF WON BUDDHISM	전팔근역		384	1	46	56.	영어판교전

□ 문화기관

1. 원불교중앙문화원

가. 설 립

중앙문화원은 대산종법사의 하명에 의하여 새회상 문화의식의 고양과 원불교 문화전통의 정립을 목적으로 원기68년(1983) 1월 21일 설립된 기관으로 이공전초대원장이 현재 원불교신보사와 원불교원광사 및 원불교출판사를 산하기관으로 통괄하여 언론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중앙문화원이 설립되기 까지에는 교정원 문화부(당시 이광정부장)를 비롯, 원불교원광사,

원불교신보사 및 마산교당 김기만교도의 협력과 전교도의 성금으로 문화회관을 세우게 된 것이 기초가 되었다.

나. 조직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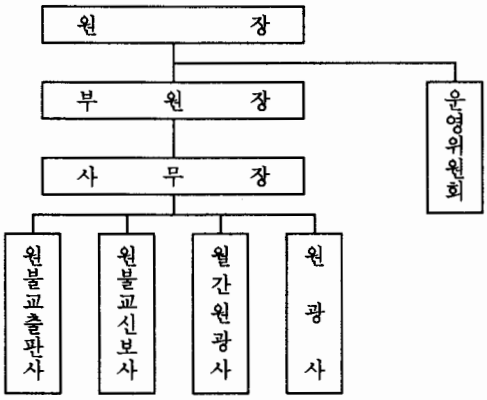

다. 역대기관장 및 재직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원 장	李空田(空田)	男	1927. 3.24	68. 1. ~	
부원장	李鍾圓(鍾甲)	〃	1930.10. 6	〃	
사무장	朴龍德(秀會)	〃	1949. 3. 6	68. 1. ~69. 1.	
〃	朴達識(世雄)	〃	1945. 1. 7	69. 1. ~	
교 무	朴慧明(靖姬)	女	1942. 7.18	68. 1. ~	
〃	韓聖心(德禮)	〃	1955. 2.25	69. 1. ~72. 1.	
〃	李吉良(吉良)	〃	1955.12.29	72. 1. ~	
운영위원	朴正基(炅永)	男	1937. 7.17	68. 1. ~	
〃	金學仁(學仁)	〃	1940. 1.15	71. 1. ~	

라. 중요사업 및 활동

1) 전국 중요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교서보내기

• 중앙문화원 개원기념 및 대각개교절 기념행사로 마산교당 김기만교도회장의 문화기금 1천만원으

로 이루어진 사업

• 일시 : 원기68년(1983) 4월 28일~8월 31일

• 실적 : 500여개 기관에 7종교서 4,000권 기증

2) 교단 중요 사적지에 기념비 건립

• 원기68년(1983) 6월 1일 사적지 매입 시작, 기념비 건립운동 전개

ㄱ) 연화삼매비

• 사적지주소 : 전북 고창군 심원면 연화리 산77

• 건 립 일 시 : 원기69년(1984) 5월 21일

• 건 립 내 용 : 소태산대종사의 입정 초기인 원기진 3년 한겨울 3개월간 머무르시며 정진하시던 곳을 기념

ㄴ) 소성구도비

• 사적지주소 : 경북 성주군 초전면 구성동 박실마을

• 건 립 일 시 : 원기69년(1984) 12월 3일

• 건 립 내 용 : 정산종사의 구도성장지를 기념

ㄷ) 만덕초선비

• 사적지주소 :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 건 립 일 시 : 원기70년(1985) 8월 26일

• 건 립 내 용 : 소태산대종사가 친히 행가하시어 원기8년(1923) 교단 최초로 선(禪=교리훈련)을 실시하신 터를 기념

ㄹ) 화해재우비

• 사적지주소 : 전북 정읍군 북면 화해리

• 건 립 일 시 : 원기71년(1986) 6월 21일

• 건 립 내 용 : 소태산대종사와 정산종사의 처음 만나신 땅 기념

3) 영산성지 간석지 허가대장 발굴

원기65년(1980) 12월 20일 전라남도도청 서고에서 간석지 허가원 발견, 사본하여 영산성지에 보관

4) 《원불교출판문화대상》 제정

중앙문화원 개원 3주년 기념사업으로 일원대도 선양과 원불교 문화창달을 위하여 애쓰는 일꾼들을 격려·고무하기 위한 사업

ㄱ) 〈제1회〉

① 심사대상기간 : 원기68년(1983) 1월 21일~원기70년(1985) 7월 31일

② 시 상 일 : 원기71년(1986) 1월 21일(원불교중앙문화회관)

③ 시 상 부 문

• 본 상(출판문화대상) : 개부문중 최우수작

• 우수상(출판문화우수상) : 학술·문화·홍보 3개 부분중 우수작

④ 시 상 내 역

• 본 상 : 『원불교자료총서』 전10권 편찬·원불교원광사

• 저술상 : 『한국근대종교사상사』 편찬·승산박길진박사 고희기념사업회

• 문화상 : 『圓美』 발행·원불교대학생미술인회

장려상 : 『원불교제주교당주보』 발행·제주교당
『삼밭재』 발행·돈암교당청년회

• 홍보상 : 포스터 「솜리어린이민속큰잔치」 제작·원불교 교정원 문화부
장려상 : 「둥근소리합창단모집」 제작·서울교구사무소
「원청20주년기념대회」 제작·원불교청년회

ㄴ) 〈제2회〉

① 심사대상기간 : 원기70년(1985) 8월 1일~원기72년(1987) 7월 31일
② 시 상 일 : 원기73년(1988) 1월 21일(원불교중앙문화회관)
③ 시 상 부 문
• 본 상(출판문화대상) : 5개 부문중 최우수작
• 부문상(출판문화우수상) : 제작·저술·홍보·회지·회보(5개 부문)
④ 시상내역
• 대 상(본상) : 『원불교 제1대 창립유공인 역사』 전7권(제1대 성업봉찬사업회 이공주)
• 우수상(부문상)
• 제작상 : 『한국문화와 원불교사상』(문산화갑기념사업회)
장려상 : 『원불교청년회 20년사』(원불교청년회)
• 저술상 : 우수상 없음
장려상 : 『정산송규종사』(김일상)
『은혜의 고통으로 크리라』(김인강)
• 회보상 : 『여의도회보』(여의도교당)

2. 중앙박물관

가. 설 립

원기60년(1975) 9월부터 교정원 교화부에서 소태산대종사의 창교이념과 회상창립의 얼을 교단만대에 계승케하고 재가·출가 전교도와 전세계 인류에 전할 것을 목적으로 소태산대종사 이하 종사 및 교단의 사진·유물 등을 수집하여 원기64년(1979) 3월 2일에 중앙박물관이 신설되었다. 설립당시 박제중교무가 초대 박물관장으로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백년기념관 3층에 전시실을 마련하여 박물관이 문을 연이래 매년 수천명의 교도와 내외인사가 전시실을 둘러 보았다. 중앙박물관은 사무실 9평, 진열실 42평의 규모이고 관장 아래

자료과와 시설과를 두고 있으며, 한국민속관을 부설로 운영하고 있다.

나. 역대기관장 및 재직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관 장	朴 濟 衆(煥斗)	男	1936. 5.31	64. 3. 2~	
주 사	申 宗 熙(大熙)	〃	1948. 2.22	62. 3. 2~64. 2.28	

다. 중요사업 및 활동

기 관 발 족	64. 3. 2	기관명 : 중앙박물관. 장소 : 사무실-기념관 2층, 진열실-기념관 3층. 초대관장 : 박제중교무
관 규 공 포	67.10.26	명칭 : 중앙박물관규정. 내용 : 전문 14조
부설민속관임시전시회	67.10.26~31	장소 : 중앙훈련원 대법당 로비. 내용 : 수집(교도들로부터) 민속품중 60여점 전시

라. 배출된 전무출신

연 도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추 천 인	비 고
70.	河 明 奎(正滿)	男	1959. 2. 19	朴 濟 衆	

마. 소장품 목록

① 원기61년 4월 20일(교화부로부터 인수)

대종사 유물 및 사진 296점 정산종사 유물 및 사진 70점

교 단 〃 13점 주산종사 〃 21점

② 원기61년 8월 10일~원기64년 1월 30일

대종사 유물 36점 정산종사 유물 13점

교 단 〃 26점 주산종사 〃 7점

③ 원기64년 1월 31일 공타원종사 57점 5월 10일 육타원종사 53점

6월 10일 항타원종사 35점

④ 원기65년 7월 4일~원기66년 12월 31일

교 단	17점	정산종사	4점
		주산종사	4점

⑤ 원기67년 1월 1일~원기67년 12월 31일

대 종 사	5점	주 산 종 사	1점
교 단	9점	공타원종사	1점
정 산 종 사	66점	항타원종사	1점

⑥ 원기68년 3월 11일~원기68년 10월 12일

대 종 사	1점	정 산 종 사	4점
교 단	11점	공타원종사	1점

⑦ 원기69년 2월 24일~원기69년 11월 6일

교 단	7점	육타원종사	2점
정 산 종 사	3점	기 타	1점
공타원종사	21점		

⑧ 원기70년 3월 28일~원기70년 7월 9일

대 종 사	4점	항타원종사	3점
교 단	18점	응 산 종 사	12점
정 산 종 사	5점	삼 산 종 사	1점

⑨ 원기71년 6월 11일~원기71년 7월 15일

대 종 사	7점	정산종사	43점
교 단	8점	주산종사	6점

⑩ 원기72년 3월 30일~원기72년 12월 10일

대 종 사	1점	주산종사	1점
정산종사	2점	삼산종사	1점

3. 서울회관

가. 설 립

서울회관은 수도 서울에 교단의 교화 교육 훈련 문화·복지 등의 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된 종합회관으로 원기67년(1982) 10월 10일 개관되었다. 서울회관은 당시 서울교구에서 4억원, 지방 기타 특지가로부터 3억5천원, 이공주교무가 3억원, 최준명교도가 1억원, 김법계화교도가 1억원, 헌천장학회가 2억원, 이리보육원대지처분대 1억원 등 총15억5천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동작구 흑석동 1-3번지에 대지 1,942평, 연건평 1,932평의 지하 1층, 지상 6층의 회관을 완공했다. 개관당시 초대 관장으로 이철행교무가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정형정을 전무출신으로 배출했다.

나. 연 혁

원기54년(1969) 1월 22일 : 서울기념관 건립 결의
원기54년(1969) 7월 2일 : 건축추진위원회 발족
원기55년(1970) 10월 3일 : 기공식거행
원기56년(1971) 4월 26일 : 삼환기업과 공사계약
원기56년(1971) 5월 10일 : 건축중단 통고받음
원기56년(1971) 7월 20일 : 수습위원회 구성
원기56년(1971) 8월 4일 : 제67회 원의회에서 전문수습위원으로 이철행, 조정근을 선정함.
원기58년(1973) 5월 4일 : 매립된 양수 받음
원기58년(1973) 5월 28일 : 기념관건립기성회결성. 회장 정광훈, 부회장 이철행교무
원기58년(1973) 8월 1일 : 공유수면 매립 호안공사, 이공주교무의 특별후원으로 착공함
원기59년(1974) 10월 30일 : 1,583평의 대지 소유권 취득
원기65년(1980) 9월 13일 : 6년간의 공백끝에 건축허가를 받음
원기65년(1980) 10월 6일 : 총 공사비 1억9천만원으로 새로운 설계에 의해 골조공사를 요진산업이 착공함
원기65년(1980) 10월 25일 : 동작구 흑석동 116-24번지를 불하받음
원기65년(1980) 12월 30일 : 동작구 흑석동 1-24번지를 불하받음
원기66년(1981) 4월 18일 : 상량식거행. 상량문에는 「漢陽佛日大照萬邦軒」으로 씀

원기66년(1981) 4월 18일 : 총 공사비 7억원으로 요진사업이 마감공사를 착수

원기66년(1981) 12월 28일 : 동작구 흑석동 1-8번지를 불하받음

원기67년(1982) 4월 10일 : 광장 및 진입로 시멘트포장공사

원기67년(1982) 10월 6일 : 건물 가사용 승인

원기67년(1982) 10월 10일 : 동작구 흑석동 1-3번지에 대지 1,942평 건평 1,932평의 지상 6층, 지하 1층의 회관을 완공하고 건물준공 및 봉불식을 거행

다. 시설 및 용도

명 칭	용 도	층	평 수	비 고
명수대	식당	지하	382	김중규(입주자)
보은의집	스넥	〃	15	남서울교당 봉공회
한강예식장	예식장	1층	276	한영석
원광유치원	유치원	〃	53	
아동상담실	교육	〃	10	동부 봉공회
교화센터	판매	〃	8	서울회관 직영
교당법당	교화	2층	30	남서울교당
생활관	숙소	〃	214.5	
오경물산	사무실	3층	23	임대
동민개발	〃	〃	20	〃
여성사회	사무실	3층	11	임대
현대중기	〃	〃	11	〃
삼우통상	〃	〃	14	〃
번성건업	〃	〃	12	〃
동작대성	〃	〃	10	〃
대영주철	〃	〃	21	〃
협주실업	〃	〃	11	〃
보은상회	〃	〃	20	〃
삼보주택	〃	〃	11	〃
미성제박	〃	〃	23	〃
한밀	〃	〃	11	〃
동아양행	〃	〃	9	〃
농우실업	〃	〃	15	〃
총부사무소	〃	4층	18	22평은 제외
회관사무실	〃	〃	22	총부사무소와 함께 사용

동부교구	〃	〃	45	
서부교구	〃	〃	39	
소법당	교화	〃	52	양, 교구와 남서울 병용
원대연	사무실	〃	10	
타임	학원	〃	46	영어학원(임대)
서부봉공회	상담	〃	12	혼인상담소
대법당	교화	5층	244.5	무행사시 회관이 사용
자모실	〃	6층	121.3	〃
옥탑		옥상	27.2	승강기실, 물탱크
총계	연건평		1,847.5	대지 1,942평, 교화용 1,029평, 임대용 703평

라. 조직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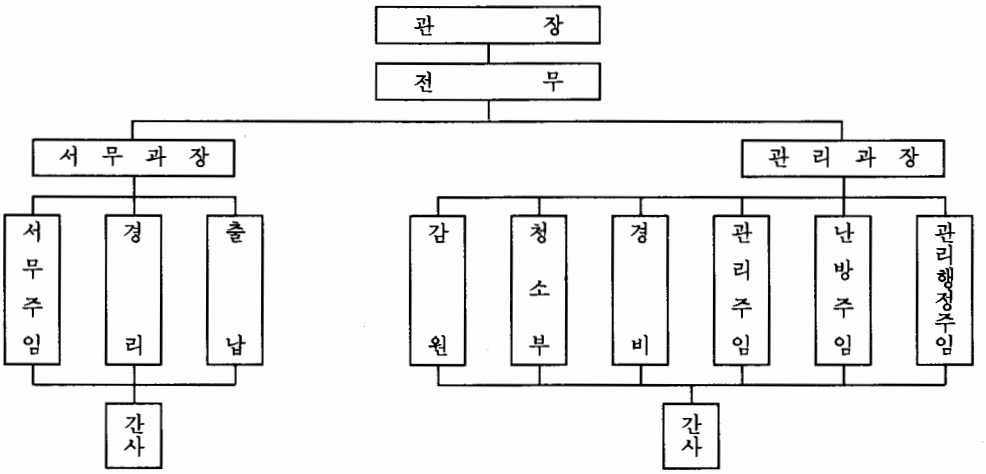

마. 역대기관장 및 재직교역자

직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관장(초대)	李 喆 行(喆行)	男	1928.12.12	67.11.26~	서울회관건축기성회 및 추진위원회 당시의 임원을 특기사항에 수록함
서기	金 祥 益(廣水)	〃	1944. 6. 3		
회계	馬 圓 宗(英淑)	女	1944. 6. 6		
전무	朴 正 基(炅永)	男	1937. 7.17	66. 3. ~68. 1.	

총 무	崔 敬 道(承哲)	〃	1950.10. 4	65. 3. ~68. 1.	
회 계	李 心 眼(銀子)	女	1952.10.26	65. 3. ~66. 8.	
감 원	辛一覺圓	〃		65. 3. ~66. 8.	
관 리	安 世 雄(天容)	男	1948. 7.25	67. 4.25~	
서무및부교무	李 冠 道(鉉淑)	女	1956. 1.10	67. 4.25~	
서무및교무	柳 玄 正(賢秀)	〃	1940.11. 4	68. 2. 1~72. 1.15	
서 무	金 瑞 鶴(吉萬)	男	1948.11. 2	67.10.20~68. 9.	
부 관 장	趙 正 中(云記)	〃	1938.12. 8	67.11.20~70. 2.	
서 무	金 圓 宗(石鍾)	〃	1946.10.18	70. 2. 1~	

마. 중요사업 및 활동

부 속 교 당 신 설	68. 3.20	부속교당을 신설하여 남서울교당이라 칭하고 교화담당자 임관하다
준 공 필	68.10.27	동편 옹벽공사의 시설미비로 준공보류, 법률적 문제해결하고 준공필
원광유아원개원	68.12. 2	교화사업 및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유아원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유아교육에 기여
경 노 잔 치	69. 5.11	흑석1동 노인대상 경노잔치 선물전달(200명)
수 해 복 구	69. 9. 1~30	9월초 서울지방 집중폭우로 인해 지하실 침수, 기관실의 제반 기계수리 및 건물의 하자 보수 등 복구작업전개
상 징 탑 공 사	70. 5.16~ 6.10	상징탑의 타일철거 및 본타일공사(798만원)
의 료 보 험 가 입	70. 7.15	서울 제17지구 의료보험조합에 회관전직원 가입
기 관 보 조	70.	총부서울사무소, 교구사무소, 봉공회사무소, 국제훈련원 기관보조(합계 10,300,000원)
원 미 전 전 시	71. 1.10~25	중앙총부 문화부 주관으로 원미술대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회관에서 전시
김 해 건 해 결	64. 5.26~71. 8.18	1.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 82-7 대지 및 지상건물 1동을 김소보씨로부터 기증받음 2. 김소보씨의 친정조카 김기엽 등에게 1차 2,000만원, 2차 1,500만원 그후 몇차례 합 1,350만원을 지불함 3. 69. 4.26 김소보씨의 조카들이 건물에 무단입주하였으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70. 1.31 승소판결을 받아 자진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 강제집행, 재침입, 형사소송제기 등의 수속을 가진 후 71. 7.11 자진 이사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원만히 해결하였음

기 관 보 조	71.	국제훈련원 1,000,000원, 성지사업회 1,000,000원, 서울사무소 5,983,280원, 서울동서부교구 2,945,500원, 서울동서부봉공회 840,000원, 성업봉찬회 500,000원, 미주교구교화비 5,000,000원
소 화 전 설 치	71.11.	단수시 화재진압용으로 원선에 소화전설치
화 재 발 생	72. 3.17	한강예식장 홍실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발생. 총 복구공사비 67,420,000원
옥 상 누 수 방 지	72. 5.30	건물옥상의 누수현상방지를 위한 보완공사
성 지 순 례	72. 6. 2~ 3	전직원 영산성지순례
옥 외 창 고 신 축	72. 6.20	창고부족으로 건물 동편에 창고신축 2,400,000원
특 별 천 도 재	72. 6.22~28	서울동서부교구 교역자와 교도 1,000여명이 참석하여 한강수물 유주무주고혼을 위한 특별천도재 거행
기 관 보 조	72.	서울사무소 2,600,000원, 육영·법은사업회 2,000,000원, 기타기관보조 5,500,000원, 영산성지학교 1,040,000원
교 화 비 보 조		미주교구 교화비보조 10,000,000원, 기타 1,000,000원

Ⅳ. 訓 練 機 關

훈련은 원불교의 특징으로 꼽힐만큼 종교로서는 특이하게 강조해온 덕목이다. 개교의 동기에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광대무량한 낙원에로의 인도를 위한 강령으로 밝히고 있다. 더우기 정전 수행편에서는 일상수행의 요법 다음항으로 훈련법을 두어 종교수행인의 기질변화, 인격도야의 근간으로 전문입선을 원불교인의 의무조항으로 법을 짜시었는 바, 이러한 교법의 정신에 근원하여 교단은 교단초창기부터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의 시각으로 보면 저축조합, 방언공사, 법인기도까지도 훈련의 형태로 파악해 볼 수 있으며 변산에서의 대중생활 또한 초기훈련의 형태로 범주화할 수 있고 만덕산의 초선을 정기훈련의 연원으로 삼을 수 있다.

그후 원기9년(1924) 불법연구회의 창립으로 비롯된 공동생활과 동·하 3개월씩의 선(禪)이 원기13년(1928)부터 시행되었으며 이것이 곧 훈련의 확립된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훈련기관으로서 원기43년(1958) 중앙선원이 설립되었고, 교단의 성장에 따라 각 훈련기관이 필요에 따라 설립되어 왔는 바 그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원기43년(1958) 5. 7. · 중앙선원 개설
- 원기49년(1964) 수계농원 훈련시작
- 원기52년(1967) 10. 19. 삼동원 설립
- 원기56년(1971) 3. 27. 중앙훈련원 설립
- 원기66년(1981) 하섬훈련원 개원
- 원기66년(1981) 7. 11. 동명훈련원 설립
- 원기66년(1981) 8. 28. 소남훈련원 설립
- 원기67년(1982) 12. 만덕산훈련원 설립
- 원기69년(1984) 10. 30 제주국제훈련원 설립

1. 중앙상주선원

가. 설 립

소태산대종사의 영육쌍전의 경륜에 바탕하여 본교 창립 초창당시부터 九人선진을 비롯한 출가교역자들의 선도량화를 위한 일상생활의 진면목이며 정신적 주체확립의 근원이 되었던 것은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생활 풍토였다.

주간에는 각종 사무와 사업에 전일하고 야간 석반 후에는 매일 법당에 모여 소태산대종사를 모시고 단원들의 공부 성적조사 및 일기기재와 아울러 회화 강연 청법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단원들의 공부방향이 세워지고 각자의 수행정도를 스스로 살펴서 분발정진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친목, 당일 경과보고, 내일을 향한 준비공사, 상호의견교환 등으로 서원, 신심, 공심, 공부심이 증강되어 갔다. 주경야독하는 중앙총부 임직원의 공동생활 그대로가 상주선원이었다.

인재양성기관의 하나인 중앙선원의 운영이 어려워 짐에 따라 원기54년(1969)부터는 중앙총부 구내 상주선원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여 오다가 그후 중앙훈련원으로 발족됨과 동시에 중앙총부 임직원의 공부풍토를 조성하는 상주선원이 다년간 개원되지 아니하여 중앙총부구내 선풍이 진작되지 못하였고 또한 임직원의 정신적 주체가 약화되어 감에 따라 신심, 공심, 공부심이 퇴보되었다.

이를 직감한 대산종법사는 원기63년(1978) 1월 27일 제74차 임시수위단회의에서 중앙총부 구내 상주선원 개설을 제의하시니 본회의에서는 상주선원 개설을 결의하고 초대원장에 장성진교무를 임명하였으며 인사당국에서는 전담교무에 이대광교무, 주사에 송현자교무를 발령하였다.

동년 3월 12일 개원식 및 기념법회와 아울러 현판식을 가졌으며, 4월 3일부터 역사적인 총부 임직원 수련을 위한 결제가 시작되었다.

나. 연 혁

9(1924).	중앙총부건설
13(1928).	총부 冬夏禪 개설
43(1958). 5. 7	중앙선원 개설
45(1960).	교학과와 동산선원 함께 중앙선원. 교육기관으로 발족 교역자 양성

54(1969). 3.	중앙선원은 중앙훈련원 체제로 개편
63(1978). 1. 27.	중앙총부의 선풍을 진작하여 오던 중 중앙선원이 중앙훈련원으로 발족됨에 따라 총부임직원의 공부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74차 임시수위단 회의에서 중앙상주선원 개설을 결의
63(1978). 3. 12.	중앙총부 대각전에서 개원식 및 기념법회 거행
63(1978). 4. 3	중앙총부교당 법회운영 및 임직원 공부주관 업무 수임에 따라 수련
63(1978). 9. 28	결제식 거행
68(1983). 3. 3	교정원 제7회 상임위원회의에서 본 선원 원규 승인
68(1983). 3. 15	원규 및 교무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단기과정 재가·출가교역자 모집
68(1983). 4. 20	응모자 12명을 중심으로 제1기생 입선 결제식 거행
68(1983). 6. 22	중앙 상주선원생의 자치 능력배양. 의사진행의 자율화, 교화단활동강화, 상호협동정신고취를 목적으로 조직
68(1983). 7. 2	자치회 활동 일환으로 인재양성의 원동력인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상주 선원생 동문장학회를 조직하고 결성식거행
68(1983). 1. 1~10. 1	교육 및 교화에 필요한 시설 보완 및 환경정리 비품(기재) 구입비로 약 400만원상당의 사업추진
69(1984). 2. 24	중앙 상주선원 제1기 수료식(23명)
69(1984). 3. 5	중앙 상주선원 제2기 결제식(9명)
70(1985). 2. 16	중앙 상주선원 제2기 수료식 수료자(16명)
70(1985). 3. 4	중앙 상주선원 제3기(11명)
71(1986). 2. 20	제3기 19명 수료
71(1986). 3. 7	제4기 14명 결제
72(1987). 2. 20	제4기 14명 수료
72(1987). 3. 6	제5기 4명 결제

다. 상주선원 입선 및 수료자

제1기 68. 4. 20 입선~69. 2. 24 수료. 23명
제2기 69. 3. 5 입선~70. 2. 16 수료. 16명
제3기 70. 3. 4 입선~71. 2. 20 수료. 19명
제4기 71. 3. 7 입선~72. 2. 20 수료. 14명
제5기 72. 3. 6 입선~ 4명

라. 역대임원

번호	직 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院 長	張 聖 鎭	男	1924. 12. 5	63. 3. 2~	
2	敎 務	李 大 光	〃	1937. 2. 28	63. 3. 2~69. 2. 1	
3	主 事	宋 賢 慈	女	1950. 9. 6	63. 3. 2~64. 5. 2	남해교무
4	〃	李 禮 性	〃	1946. 2. 1	64. 6. 29~68. 2. 6	익산수도원교무
5	〃	李 宗 寬	〃	1952. 10. 19	68. 2. 15~71. 1	
6	간 사	趙 元 亨	男	1958. 7. 7	68. 1. 1~70. 1	
7	교 무	吳 光 益	〃	1947. 12. 29	69. 2. 1~71. 1	
8	교 무	李 正 珠	女	1941. 1. 12	69. 2. 1~71. 1	
9	간 사	李 揚 明	男	1968. 10. 26	70. 1~	
10	교 무	金 性 憙	女	1952. 8. 15	71. 1~	
11	〃	鄭 貴 圓	男	1951. 1. 1	72. 1. 25~	

2. 中央訓練院

가. 설 립

중앙훈련원은 중앙선원을 모체로 원기56년(1971) 3월 27일 설립하였다.

원기41년(1956) 정산종법사의 유시로 개설된 중앙선원이 원기49년(1964) 휴원하였다가 원기55년(1970) 재 개원하였으나 교역자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기관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자 대산종법사의 유시로 원기56년(1971) 제42회 수위단회에서 중앙선원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전 교역자훈련, 교도훈련, 국민훈련, 인류훈련으로 활불을 만들고 활불세계를 건설하자는 취지하에 설립되었다.

신축당시 전신인 중앙선원 유지답 12,000여평을 토대로 출가·재가 전 교도의 거교적인 성원과 특히 김명환, 강만선교도를 중심한 3·3회원들의 성금에 힘입어 대지 6,050평에 건평 1,264평을 2억원을 들여 콘크리트 3층건물을 신축하였다.

특히 중앙훈련원 건축 도중 초대원장 조전권교무가 열반하시어 안이정교무가 부임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설립유공인은 다음과 같다.

〈중앙선원 유공인(훈련원전신)〉

1. 成玄珠 2. 李元永(중앙선원주무) 3. 李敬一

〈중앙훈련원 유공인〉

이 철 원(종로)	오 철 환(군산)	김 명 환(종로)	김 명 덕(양정)
박 화 선(수원)	홍 인 덕(종로)	전봉덕행(초량)	김 서 경(종로)
임 제 안(부산)	김연지행(대구)	김 용 복(신촌)	최 준 명(신촌)
송 경 심(원남)	양 성 봉(종로)	성 의 철(서울)	
서재원화(원남)	백 기 덕(종로)	이정심화(신촌)	하 명 선(제기)
주 영 준(공항)	박영선화(〃)	김 법 원(〃)	유 성 애(〃)
김 정 인(송천)	정 성 규(〃)	김선법행(〃)	김 혜 전(〃)
박 덕 륜(사직)	송 선 주(〃)	이 효 성(〃)	김 동 원(〃)
황 화 형(〃)	금 상 성(중구)	박도원행(제기)	김 정 심(사직)
윤 성 규(정토)	김 성 윤(정토)	김 총 진(이리)	윤 자 혜(정읍)
김 혜 정(전주)	전 광 순(전주)	김 정 근(총부)	김 문 국(총부)
김 만 행(서전주)	민 제 순(서전주)	신 지 양(동전주)	이수도화(교동)
장 원 명(교동)	이 성 란(김제)	이 자 운(교동)	박 정 은(대구)
서 영 천(대구)	구 제 웅(대구)	방 정 덕(대구)	이 성 훈(대구)
정도원행(대구)	조 대 진(수원)	박 도 경(초량)	이지인행(서울)

나. 연 혁

41(1956). 2. 21	선학원 졸업자 합동 훈련 기관으로 중앙 선원개설을 결의
41(1956). 11. 6	중앙선원 개원 초대회장 이완철교무
42(1957). 3. 1	졸업생 배출(12명)
42(1957). 4.	휴원
43(1958). 5. 6	중앙선원 재 개원 원장 이완철교무
46(1961). 4	동산선원 중앙 선원에 병합
47(1962). 3. 2	졸업생 배출(15명)
48(1963). 3. 5	졸업생 배출(7명)
49(1964). 3. 30	졸업생 배출(12명)
49(1964). 4. 6	동산 영산 선원 독립으로 잠정적 휴원
55(1970). 2. 4	재 개원
56(1971). 3	중앙훈련원 발족 결의
56(1971). 3. 31	선학원 졸업생 20일간 훈련 실시(중앙훈련원 개원)
59(1974). 1. 7	선학원 졸업생 2개월간 훈련실시

60(1975). 10　　원사 신축 추진 위원회 구성 위원장 박광전교무
61(1976). 9. 20　　원사 신축 기공
62(1977). 5. 24　　훈련 사업회 발족
62(1977). 11. 5　　봉불 및 준공식
67(1982). 3. 28　　서울 경동 한의원 개설
68(1983). 9. 8　　교무 강의실 완공
68(1983). 9. 10　　도서실 마련
70(1985). 3. 10　　대법당 슬라브 지붕 만들기

다. 현　　황

1) 연도별 훈련시행 횟수 및 참가인원

연도	훈련횟수	훈련횟수누계	훈련일수	훈련일수누계	참가인원	참가인원누계	비 고
56	1	1	20	20	25	25	〃
59	6	7			1701	1726	
60	4	11			396	2122	
61	1	12					
62	1	13					
63	10	23	228	354	744	2866	
64	8	31	211	565	709	3575	
65	9	40	245	810	948	4523	
66	9	49	230	1040	713	5236	
67	8	57	226	1266	1020	6256	
68	9	66	235	1501	924	7180	
69	9	75	231	1732	894	8074	
70	11	86	258	1990	1358	9432	
71	9	95	251	2241	934	10366	
72	11	106	90	2331	1050	11416	

2) 연도별 훈련시행 내력

연도	명　　칭	기간	훈련대상	인원	훈 련 내 용
56	졸업생훈련	20일	禪學院卒業生	25명	
59	〃	60일	〃	41명	
	재가요인		재가요인	306명	
	청년		청년	236명	
	學生		學生	632명	
	敎役者		敎役者	486명	
60	일반교도		일반교도	152명	

	在家要人		在家要人	86명	
	青年指導者		青年指導者	54명	
	敎役者		敎役者	104명	
61	기관장		기관장		만수. 만연. 만덕. 정식 세계건설
62	추계교무훈련	17일	교무		
63	동계교무훈련	16일	〃	112명	
	졸업생훈련	180일	선학원졸업생	30명	
	건축유공인훈련	2일	훈련원건축 유공인	26명	
	간부훈련	4일	기관간부	34명	
	기관교무훈련	14명	기관교무	97명	
	기관임원	10일	기관임원	30명	
	재가요인	3일	재가요인	155명	
	추계교무	16일	교무	260명	
64	동계교무훈련	21명	교무	115명	
	졸업반교무	150일	졸업반교무	44명	
	3·3회원훈련	3일	운영위원 및 3·3회원	43명	
	간부훈련	4일	교단간부	63명	
	교무훈련	13일	기관교무	90명	
	임원훈련	4일	기관임원	30명	
	요인훈련	4일	재가요인	62명	
	교무훈련	12일	교무	262명	
65	교무훈련	21일	〃	113명	
	새교무훈련	180일	선학원졸업반	42일	
	3·3회원훈련	3일	운영위원 및 3·3회원	22명	
	요인훈련	4일	재가요인	24명	
	간부훈련	5일	교단간부	65명	
	교무훈련	6일	기관교무	62명	
	〃	6일	〃	73명	
	요인훈련	3일	재가요인	123명	
	교무훈련	16일	교무		
66	〃	16일	부교무		최초법어, 교역자사명감, 교화활성화
	졸업생훈련	180일	졸업생훈련		
	요인훈련	4일	요인	30명	
	〃	3일	3·3회원	22명	
	교무훈련	6일	기관교무	42명	
	〃	6일	〃		
	〃	5일	〃		
	교도훈련	3일	전국요인		

	추계교무	15일	교무	254명	
67	동계교무	15일	〃		병든사회와 우리의 역할
	졸업생	180일	졸업생교무	49명	
	교도훈련	3일	3.3회원		
	교무훈련	7일	기관교무	50명	
	〃	5일	기관장 및 간부	80명	
	〃	7일	기관교무	11명	
	〃	9일	전국재가요인	376명	
	추계교무	15일	교무	330명	
68	새교무	300일	졸업생	37명	
	교도회장단	3일	전국회장단	87명	
	3·3회원	3일	훈련원유공인 및 3·3회원	33명	
	부교무훈련	21일	5급교무	158명	
	간부훈련	6일	간부급	100명	
	하계교무 1차	6일	교무	104명	
	하계교무2차	6일	교무	93명	
	추계교무1차	6일	교무	135명	
	추계교무2차	6일	교무	177명	
69	새교무	300일	선학원졸업생	47명	
	교도회장단	3일	각교당회장단	68명	
	훈련사업회원	3일	3.3회원 및 특별유공인	31명	
	1차교무	15일	65~68년졸업교무	146명	
	2차교무	10일	44~64년졸업교무	86명	
	3차교무	10일	43년이전 졸업교무	78명	
	4차교무	10일	44~64이전졸업교무	95명	
	5차교무	10일	47~57년이전교무	169명	
	6차교무	10일	58~68년이전졸업교무	191명	
	청소년지도자훈련	5일	초급교무	48명	
70	봉공직전무출신	10일	봉공직전무출신	57명	
	교도회장단	3일	전국교도회장단	127명	
	청소년지도자	4일	초급교무	56명	
	1차교무	15일	66~69년졸업	144명	
	2차교무	7일	48~58년졸업	116명	
	3차교무	7일	교무	107명	
	교립학교간부	1일	원광남여중고생 간부	191명	
	4차교무	7일	교무	105명	
	5차교무	10일	49~55년졸업	187명	

70	청운회훈련	2일	전국청운회원	179명	
	6차교무	10일	교무	168명	
71	초급교무	300일	선학원졸업생	54명	
	1차교무	15일	부교무	164명	禪의 生活로 정진하자
	2차교무	7일	49년이전졸업	150명	〃
	3차교무	7일	50~55년이전졸업	137명	〃
	4차교무	7일	56~59년이전졸업	123명	〃
	5차교무	7일	60~62년이전졸업	130명	〃
	6차교무	10일	63~66년이전졸업	150명	禪의 生活로 정진하자.
	봉공직교무	7일	봉공직전무출신	26명	〃
72	훈련요원훈련	5일	훈련원직원	9명	
	교도회장단	3일	전국교도회장단	87명	하나되어 크게 보은 하자
	청운회회장	2일	전국청운회	88명	〃
	1차교무	15일	68년 70년졸업	70명	〃
	2차교무	15일	69년 71년졸업	90명	〃
	3차교무	7일	54~58년졸업	112명	〃
	4차교무	7일	59~61년졸업	102명	
	5차교무	7일	47년이전졸업	102명	
	6차교무	7일	48~53년졸업	140명	
	7차교무	10일	62~64년졸업	119명	
	8차교무	10일	65~67년졸업	114명	
	봉공직훈련	7일	봉공직전무출신		

3) 시 설

〈토 지〉

대지 6,058평. 밭 767평. 논 10,839평

〈건 물〉

건물명	용 도	평	비 고
1층	숙소, 식당, 사무실	383. 16	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
2층	숙소, 소법당	303. 76	
3층	대법당, 속소	319. 3	
지하	기계실, 창고	83.95	
옥탑	물탱크	4.5	연와조 스라브조
	창고	16.33	〃

변소	21. 79	연와조 스라브조
〃	약 20	〃
창고, 침실 2	약 40	〃
식당방	약 16	1980년 증축
강의실	약 21	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
창고	약 15	목조스레트 1981신축

라. 역대임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원 장	曺 傳 權(玉順)	女	1909. 12. 21	56~61	
교 감	張 聖 鎭(和鍾)	男	1924. 12. 5	56~61	
총 무	宋 達 俊(五俊)	女	1913. 1. 3	56~62	
교 감	全 二 昌(在禮)	〃	1925. 10. 3	59~66	
사 무 장	李 廣 淨(建衡)	男	1936. 9. 1	59	
주 사	梁 正 理(琯淑)	女	1944. 12. 16	59~61	
〃	張 道 英(承煥)	男	1949. 10. 16	59~61	64~65년
훈련부장	趙 正 中(云記)	〃	1938. 1. 28	60~63	
	李 龍 煥(炫根)	男	1950. 7. 19	61	
서무주임	金 孝 明(明煥)	男	1947. 1. 24	61	
총 무	徐 淨 蓮(澄子)	女	1928. 4. 10	62~67	
주 사	朴 井 厚(在鎬)	男	1948. 8. 15	62	
주 사	金 弘 善(南淑)	女	1952. 11. 3	62~66	
교무과장	金 慧 奉(貞漢)	〃	1947. 3. 19	63~67	
서무주임	安 世 雄(天瑢)	男	1946. 7. 26	63~64	
서무주사	辛 道 暻(亨元)	〃	1947. 12. 22	64~71	
교 무	李 宗 眞(康昊)	〃	1939. 11. 24	65~67	
교 감	金 壯 權(淸基)	〃	1931. 11. 3	66~67	
〃	金 大 觀(大觀)	女	1935. 3. 22	66~70	
주 사	全 明 眞(貞順)	〃	1949. 8. 16	66~67	
〃	全 圓 德(在德)	男	1950. 11. 20	66~70	
교 무	李 成 澤(和澤)	〃	1943. 3. 13	68	
〃	高 圓 善(柔善)	女	1947. 2. 3	68~70	
주 사	李 智 蓮(順子)	〃	1956. 9. 12	68	
〃	姜 敬 悟(期午)	男	1955. 4. 18	68~69	
주 임	朴 允 哲(孟洙)	〃	1955. 11. 12	70	
부 원 장	李 中 正(鍾行)	〃	1926. 6. 14	71	
교 감	朴 濟 現(英姬)	女	1932. 2. 4	71	

교	무	金 慧 信(善子)	女	1947. 1. 26	71~72. 7		
〃		李 敬 峯(韓馥)	男	1949. 10. 8	71		
주	사	白 仁 赫(亨基)	〃	1956. 10. 9	71		
〃		崔 明 圓(基仙)	女	1958. 6. 6	71		
〃		李 重 薰(貴相)	男	1952. 2. 16	72		
교	무	李 正 珠(正南)	女	1941. 1. 12	72. 8.		
감	원	任福田行(福順)	〃	1932. 2. 10	58~61		

3. 三 同 院

가. 설 립

삼동원은 정산종법사가 제창하신 三同倫理(同原道理, 同氣連契, 同拓事業)의 精神을 實現하며 모든 宗敎와 民族과 思想의 장벽을 넘어서 누구나 이곳에서 修道하고 訓練하고 遼養할 수 있는 自然含養의 道場, 自然訓練의 道場, 自然遼養의 道場을 이룩하기를 目的하고자 원기52년(1967) 10월 19일에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당시 원기44년(1959)부터 원기50년(1965)까지 종법실, 김지원행, 문한규, 이양인, 유덕중, 조도운행, 송경심, 박금용, 박석원, 현대성화, 김응수, 이정선, 부산진교당, 대구교당 등의 희사금으로 대지 2,976평에 강당 1동 수양실 3동을 건축하였고 밭3,474평, 논1,533평을 매입하였다.

나. 연 혁

21(1936). 4.	소태산대종사가 제자 2인과 함께 신도안을 왕래하시며, 그곳에 수도도량을 시설하도록 함
43(1958). 4.	정산종법사의 하명으로 제자 2인이 현지(논산군 두마면 부남리) 답방
44(1959). 10. 24	신도안「佛宗佛朴」바위 옆 초옥 1동 매입
45(1960). 9. 14	남선교당을 신도안으로 이전하여《신도교당》이라 함
46(1961). 8. 25	삼동원 설립 부지로서 대지 1,123평 매입
46(1961). 10.	대산종법사가 삼동원 건설의 기초작업을 착수함
46(1961). 10.	대산종법사가 이병은교무에게 하명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야학원을 설치함. 7년간 운영

47(1962). 4. 12 일만일 적공 기도 결제
47(1962). 5. 삼동림 1만평 매입
48(1963). 12. 부남리 저수지 축조로 개판농장 기초확립
49(1964). 3. 7 법당 1동, 수양원 3동 건립
52(1967). 10. 19 수위단회에서 신도교당과 분리하여 《삼동 수양원》으로 승인함
58(1973). 10. 천양원 대지 40평에 26평의 콘세트 건물건립
59(1974). 4. 종법사 하명으로 보은장학회 결성
59(1974). 6. 축산업(돼지, 토끼, 소, 닭) 시작
59(1974). 9. 16 천양원 2,400평 국유림 개간
59(1974). 10. 수위단회에서 《삼동원》으로 개칭 승인
59(1974). 11. 20 하천부지 1만평 보토작업
61(1976). 1. 30 삼동원 경내를 통과하던 마을 도로를 부지전후로 돌림
62(1977). 1. 30 정진원 신축공사 착공
63(1978). 1. 만성전 부지 6,570평 매입
63(1978). 5. 30 정진원 3동, 만성전 1동, 축사 1동, 퇴비장 1동 준공(총 건평 537평, 공사비 7천만원)
65(1980). 3. 30 엿공장 신축
65(1980). 5. 21 동산원 신축
68(1983). 6. 20 국가계획에 의해 6. 20사업이 확정 공포됨
69(1984). 3. 1 신도안 삼동원 철거 봉고식
69(1984). 3. 7 이설 부지로서 논산군 벌곡면 양산리 35번지 일대 30여만평 매입 계약
69(1984). 4. 대전시 가수원동 산 4,000평을 1억5천만원에 매입
69(1984). 4. 8 제주시에 대지 54평 건평 147평 2홉을 1억3천만원에 매입 원광한의원 개설
70(1985). 2. 15 논산 시내버스(덕성여객) 2대를 82,100,000원에 매입
70(1985). 2. 19 덕곡리 산 219,600평을 102,000,000원에 매입
71(1986). 4. 8 벌곡면 한삼천리 대지 601평 건평 33평 2홉의 주택을 27,500,000원에 매입하여 6,797,800원을 들여 교당으로 개수

다. 현 황

1) 연도별 훈련시행 횟수 및 참가현황

연 도	훈련횟수	누 계	훈련일수	누 계	참가인원	누 계	비 고
49	1	1	15	15	50	50	
50	1	2	14	29	30	80	
57	2	4	6	35	70	150	
59	2	6	4	39	50	200	
63	2	8	5	44	1,540	1,740	

64	1	9	1	45	1,075	2,815	
65	7	16	20	65	1,660	4,475	
66	10	26	29	94	924	5,399	
67	15	41	36	130	1,527	6,926	
68	8	49	22	152	626	7,552	
69	8	57	20	172	307	7,859	
70	12	69	32	204	923	8,782	
71	6	75	14	218	310	9,092	
72	9	84	25	243	413	9,505	

2) 연도별 훈련시행 내력

명 칭	기 간	훈 련 대 상	인원	훈 련 내 용
단 기 강 습 회	49. 8. 3~18	부교무 및 각기관실무자	50	
수 련 강 습 회	50. 8. 20~ 9. 3	선학원 졸업자	30	
어 린 이 훈 련	56. 1. 18~20	서울교구 어린이	50	
원 친 회 훈 련	57. 8. 3.~ 6	원친회 학생 정토회원	70	
결단식및정기법회	59. 6. 6	남자정화단	20	
청 년 훈 련	59. 8. 5~ 8	청년지도자	30	
강 습 회	59. 7. 1~31	일반교도		
교 도 훈 련	63. 8. 10	전국교도	1,290	
학 생 훈 련	63. 8. 28~31	전국학생간부	250	
교 도 훈 련	64. 8	전국교도	1,675	
교관단위탁훈련	65. 2. 4~ 7	새마을연수원교관	38(48)	초급교무동행
학 생 훈 련	65. 2. 26~30	군산둔율천주교학생	78	
학 생 피 정	65. 3. 22~26	함열천주교학생	28	
어 린 이 캠 프	65. 7.28~31	서울교구 어린이	130	
의 료 인 훈 련	65. 9. 6	전국의료인	60	
회 장 단 훈 련	65. 9. 6	서울교구회장단	75	
교 도 훈 련	65. 9. 25	전국교도	1,350	
어 린 이 훈 련	66. 1. 10	서울교구 어린이	100	
학 생 수 련	66. 7. 27~30	전국원불교학생	200	
청 년 수 련 회	66. 8. 10~14	전국 청년	250	
3 · 3 會 훈 련	66. 8. 11~13	전국 3.3회원	60	
학 생 훈 련	66. 8. 14~16	전국방송통신대학생	80	
연 화 단 훈 련	66. 9. 22~23	부산교구 연화단	108	
청 년 연 합 법 회	66.11. 1	대전교구 청년	45	
서 원 회 훈 련	66.12. 22~26	서울대원불교교우회원	21	

중학생회원훈련	66.12. 23~25	서울교구 중학생	40	
청년회원훈련	66.12. 25~27	원남교당 청년	20	
원대간부훈련	67. 2. 16~18	원대원불교대학생간부	51	
학생피정	67. 2. 16~18	군산천주교 학생	25	
청년훈련	67. 3. 17~18	임실군관촌면13개부락 청년지도자	45	
교우회훈련	67. 4. 3~ 4	충남대원불교 교우회원	35	
청년회훈련	67. 4. 20~21	새마을청년	13	
고적답사	67. 4. 28~29	서울대 국문과생	42	
학생훈련	67. 6. 13	전주교구 학생	42	
학생훈련 1 차	67. 7. 21-23	전국원불교 학생	200	
학생훈련 2 차	67. 7. 26~29	전국원불교 학생	400	
청년훈련	67. 7. 31~ 8. 3	전국원불교 청년	193	
어린이훈련	67. 8. 6~ 8	서울교구 어린이	200	
어린이훈련	67. 8. 10~12	이리교구 어린이	70	
중학생훈련	67. 8. 13~14	서울교구 중학생	60	
간부훈련	67. 8. 16~18	원대 학도 호국단 간부	77	
회장단훈련	67. 9. 4	서울교구교도회장단	56	
학생간부훈련	68. 1. 24~26	전국원불교 학생회간부	149	
간부훈련	68. 2. 17~19	원대써클회장단간부	35	
청년수련회	68. 3. 19~21	대전교구청년	17	
간부훈련	68. 7. 2~ 3	원불교 청년간부	35	
대학생훈련	68. 7. 13~17	서울대. 경희대. 고대생	30	
학생훈련	68. 7. 28~30	대전 이리 부산교구학생	266	
교의회훈련	68. 8. 10	이리교구교의회의원	34	
교도훈련	68. 8. 22~23	3.3회원원화단 연화단	90	
학생청년수련회	69. 8. 11~13	유성교당청년학생	25	
어린이훈련	69. 8. 13~15	벌곡교당 어린이	40	새부처님대종사
청년합동법회	69. 9. 30~10. 1	대전교구 청년	60	
교도훈련	69.10. 15	종로 원남 원화 연화단	29	
부교무훈련	69.10. 17~19	서울교구 부교무	19	
청년훈련	69.12. 15~16	동이리교당 청년	10	
중학생훈련	69.12. 24~26	서울교구 중학생	67	
어린이훈련	69.12. 26~28	서울교구 어린이	62	
원친회훈련	70. 1. 2~ 4	원친회 고3년생	11	
청년훈련	70. 1. 19~20	신촌교당청년	16	
교무훈련	70. 1. 22~23	부산교구교역자 제5단	11	
3.3 회훈련	70. 4. 15~16	호남 3.3.회원	25	

간 부 훈 련	70. 6. 22~23	원청년합회간부	52	
청 년 훈 련	70. 7. 5~ 7	전국원불교 청년	400	이민족에게 한걸음더
어 린 이 훈 련	70. 7. 19~21	서울교구 어린이	250	뿌리고 가꾸고 베풀자
원 친 회 훈 련	70. 7. 29~71	원친회어린이	60	
어 린 이 훈 련	70. 8. 1~ 3	벌곡 어린이	39	대종사님은 누구신가
교 도 훈 련	70.12. 20~22	원남교당부설회원	15	
중 학 생 훈 련	70.12. 23~25	서울교구 중학생	30	
청 년 훈 련	70.12. 26~28	원남교당 청년	15	
청 년 훈 련	71. 1. 29~31	성동교당 청년	10	
학 생 훈 련	71. 2. 1~ 2	남대전교당 학생	15	
학 생 훈 련	71. 7. 23~25	이리교구 학생	180	학생회는 우리의 손으로
청 운 회 훈 련	71. 8. 2~ 3	대전교구 청운회원	32	무시선
어 린 이 훈 련	71. 8. 5~ 7	벌곡교당 어린이	36	미래를 준비하는어린이
요 인 훈 련	71. 8. 6	남대전교당 요인	25	
청 년 훈 련	71.12. 26~28	원남교당청년	20	하나이니하나로, 한형제이니 한마음으로 한일터이니 다함께
청 년 훈 련	72. 1. 17~18	동이리교당 청년	24	하나로 사세
청 년 회 원	72. 5. 23~24	에스페란토 회원	55	
대 학 생 훈 련	72. 6. 8~10	원대원불교학과 1년	22	
청 년 회 원	72. 7. 17~19	이리교구청년	69	나를새롭게 이웃을 새롭게 그리고 민족을 하나로
어 린 이 훈 련	72. 7. 18~20	남대전교당어린이	40	하나로 사세
어 린 이 훈 련	72. 7. 20~22	대전교당 어린이	25	하나로 사세
학 생 훈 련	72. 7. 24~26	대전교구 학생	70	하나로 사세
어 린 이 훈 련	72. 7. 30~ 8. 1	벌곡교당어린이	41	하나로 사세
청 년 훈 련	72. 8. 14~16	대전교구 청년	72	신앙관정립과 창립정신체득

3) 시 설

〈토지〉

대지 82坪. 밭 11,934坪. 논 7,096坪. 임야 632,284坪

〈건물〉

건 물 명	용 도	평	비 고
東山院	대 법 당	110坪	
敎 堂	벌곡교당	33.7坪	
주 택	祖 室	26坪	
주 택	숙 소	10坪	

라. 역대임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서 무	李 龍 煥(炫根)	男	1950. 7. 19	50. 2. 19~61. 2	
교 무	柳 日 新(文子)	女	1943. 9. 4	52. 10. 19~55. 2	
총 무	朴 巽 一(載錄)	男	1934. 8. 25	53. 3. 28~54. 2	
교 무	吳 曉善(順玉)	女	1946. 3. 15	59. 4. 9~68. 2	
기 획	金 慧 峰(澤根)	男	1947. 11. 12	61. 3. 1~	
총 무	李 中 天(仲烈)	男	1948. 3. 10	62. 3. 2~64. 8	
총 무	金 泰 成(基成)	男	1945. 5. 25	64. 8. 15~68. 1	
교 무	李 眞 道(敬淑)	女	1945. 3. 17	66. 9. 4~72. 1. 16	
총 무	宋 基 圓(基煥)	男	1952. 8. 22	68. 1. 1~71. 2. 22	
교 무	張 法 元(春子)	女	1954. 8. 24	69. 1. 28~	
총 무	朴 昌 運(東準)	男	1941. 3. 20	71. 2. 19~	
교 무	崔 定 安(在姬)	女	1954. 10. 27	72. 1. 31~	

4. 제주 국제훈련원

가. 설 립

대산종법사의 완도 정양중, 해외교화의 발판을 삼고 국제적인 훈련을 실시하며 교단 해상훈련 및 제주 교화의 중추적 역할을 위하여 원기69년(1984) 10월 30일 제주도에 국제훈련원 설립을 발원하시었다.

이에 성업봉찬회 및 교당 기관과 호법제위가 뜻을 받들어 400고지의 한라산 중턱에 임야37,465평을 마련하고 건물 4동 건평 376평을 건립하였으며, 설립기금 총액은 4억3천만원이었다.

설립 추진위원장에 이철행교무, 부위원장 박은섭 전팔근 유정완교무, 감사 김인철, 송순봉교무, 사무장에 이성국교무, 사무차장 마원종, 박창운교무이었으며, 회사 유공기관으로는 성업봉찬회, 자선원, 사대봉공회, 부산교당, 부산교구, 제주교당, 제주교구 및 교정원외 38개 교구 기관이 힘을 합하였으며 회사유공인은 다음과 같다.

이공주, 오철환, 김법용심, 이성연, 이남도, 정규룡, 김서경, 이덕화, 손자은, 임제만, 김연지행, 김선원 이광철.

나. 연 혁

67(1982). 6. 25 대산종법사에 의해 훈련원 부지 현장 답사차 제주 래도
67(1982). 6. 20 북제주군 애월읍 산 98번지 35.331평 매매 계약 체결
67(1982). 6. 14 원의회에서 제주 국제훈련원 건축 개발위원회 구성안 통과. 위원장 이철행, 부위원장 유정완 전팔근 박은섭교무
69(1984). 5. 10 건축시공(동방건설 주식회사) 총 공사비 231,000,000원
69(1984). 10. 30 훈련원 본관건물 완공
70(1985). 1. 19 원장에 박은섭교무 부임
70(1985). 5. 15 훈련원 개원 봉불식 종법사외 전국 2,000여 교도 참석
70(1985). 5. 16 한라산 어리목 광장에서 1,500여명 참석하여 평화통일 기원 대법회 개최

다. 현 황

1) 연도별 훈련시행 횟수 및 참가인원

연도(원기)	훈련횟수	누 계	훈련일수	누 계	참가인원	누 계	비 고
70	17	17			5,000	5,000	
71	9	26			278	5,278	
72	29	55			1,586	6,864	

2) 연도별 훈련시행 내역

번호	훈 련 명	기 간	인원	훈련대상	비 고
1	제주교구 교무훈련	70.10. 1~ 3			
2	제주교구 교도훈련	71. 1.18~19	27명		
3	제주교구 어린이훈련	71. 1.20~22			
4	제주교구 학생훈련	71. 1.25~27	52명		
5	제주교구 청년훈련	71. 2. 1~ 2	21명		
6	제주교구 학생훈련	71. 7.29~31	55명		
7	제주교구 어린이훈련	71. 8. 4~ 6	60명		
8	제주교구 일반훈련	71. 8.23~24	48명		
9	제주교구 청년훈련	71. 8.15~17	15명		
10	전국대학생 원리연구회	71.12.24~1.10	100명	통일교	
11	원불교 제주교구 일반교도훈련	72. 1.17~18	65명	제주교구	
12	어린이 겨울훈련	72. 1.19~21	55명	제주교구	
13	학생훈련	72. 2. 4~ 6	52명	제주교구	
14	청년훈련	72. 2.13~14	28명	제주교구	
15	원미 회원훈련	72. 2.21~23	30명	이리원미, 제주원미	

16	제주 제일고학생간부훈련	72. 2.19~21	43명	제주 제일고등학교학생	
17	제2회 남녀고등학교교사연수	72. 2.23~25	32명	남녀고교 이사회	
18	제주동여야간학교교사연수	72. 2.28~31	31명	교사협의회 및 제주 교육위원회	
19	제주전문대간부훈련	72. 3.13~15	42명	전문대학생회 및 학생과	
20	한국제주청소년연맹	72. 4.11~12	110명	한국청소년연맹제주교구	
21	한국청소년지도자훈련	72. 4.26~56	60명	〃	
22	목포교당교도안양훈련	72. 5.12~15	23명	원불교 목포교당	
23	청소년연맹교사연수	72. 5.16~17	51명	한국청소년연맹	
24	승공강연회	72. 6.26~27	37명	제주국제승공연합	
25	전국대학생 원리연구회	72. 6.29~7.13	110명	통일교원리연구회	
26	원광유치유아원 여름캠프	72. 7.16~17	127명	원불교제주원광	
27	제주여고학생 간부훈련	72. 7.21~22	70명	제주여고학생회 및 학생과	
28	신제주유치원	72. 7.24~25	77명	신제주유치원	
29	크라리넷 합주단 연수	72. 7.28~8.18	20명	대구송재호씨	
30	교구어린이 여름훈련	72. 8. 7~ 9	74명	원불교 제주교구	
31	교구청년 여름훈련	72. 8.15~16	17명	〃	
32	일반교도 여름훈련	72. 8.22~23	52명	〃	
33	승공지도자 연수회	72. 9. 8~ 9	26명	제주 승공연합	
34	영농 후계자 부인연수회	72. 9.15~16	30명	제주 농촌진흥원	
35	연동유치원 가을캠프	72. 9.28~29	95명	제주 연동유치원	
36	영산선원수학여행	72.9.29~10.1	20명	영산선원	
37	제주대 청소년연맹수련	72.11.14~15	36명	제주청소년연맹	
38	기독학생회수련회	72.12.20~73.1.3	73명	통일교 기독학생회	

3) 시 설

〈토지〉

대지 376坪. 임야 37,841坪. 운동장 1,000坪

〈건물〉

건 물 명	용 도	평	비 고
본관	숙소 및 식당, 법당	298평	
별관 3동	숙소	68평	
기타	건조장, 세탁장, 부엌	20평	

라. 역대임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원 장	朴 恩 燮(玉南)	女	1924. 5. 29	70. 2~	교구장겸임
총 무	朴 昌 運(東準)	男	1941. 3. 20	69. 11~71. 2	사무장겸임
부 교 무	姜 慧 禪(貞淑)	女	1954. 5. 8	70. 2~	
총 무	朱 道 光(宰萬)	男	1960. 6. 22	71. 2~72. 2	
부 교 무	李 庸 勉(種盛)	〃	1956. 11. 17	72. 2~	

5. 하섬 훈련원

가. 설 립

원기38년(1953) 11월 하섬은 수양기관으로 발족하였으나 입지적 조건으로 인하여 해상훈련 도량으로 많이 活用되고 있다.

나. 훈련현황

1) 연도별 훈련시행 횟수 및 참가인원

연도	훈련횟수	훈련횟수누계	훈련일수	훈련일수누계	참가인원	참가인원누계	비 고
66	5	5	14	14	370	370	
67	2	7	6	20	100	470	
68	1	8	7	27	130	600	
69	10	18	33	60	362	962	
70	23	41	80	140	1,225	2,187	
71	23	64	104	244	720	2,907	
72	23	87	102	346	701	3,608	

2) 연도별 훈련시행 횟수및 참가인원

연 도	훈 련 명	인원(명)	기 간	비 고
66. 7	서울교구 어린이 훈련	130명	7일간	

66. 8	이리교구 원친회 훈련	70명	2박 3일
66. 8	이리 노인대학 훈련	50명	2박 3일
66. 8	영광교구 원친회 훈련	70명	1박 2일
66. 12	총부 기숙사생 훈련	50명	5박 6일
67. 7	남원 교구 청년 훈련	50명	2박 3일
67. 8	이리 노인대학 훈련	50명	2박 3일
68. 8	서울교구 어린이 훈련	130명	7일간
69. 7	서울교구 둥글게 훈련	30명	5박 6일
69. 7	이리 정주교구 교무훈련	50명	2박 3일
69. 7	군산 교화단 훈련	15명	1박 2일
69. 7	남원교구 학생훈련	85명	2박 3일
69. 8	서울 고려대 원불교 훈련	20명	2박 3일
69. 8	영동 교도 훈련	40명	2박 3일
69. 8	원대 원불교 훈련	15명	2박 3일
69. 1	동산선원생 훈련	20명	3박 4일
69. 7	정토회 학생 훈련	47명	2박 3일
70. 1	동산선원생 훈련	15명	3박 4일
70. 2	이리교구 어린이훈련	70명	3박 4일
70. 4	이리교구 학생 훈련	30명	4박 5일
70. 6	마산교구 교무 훈련	20명	2박 3일
70. 7	이리교구 유치원 훈련	100명	2박 3일
70. 7	연산교당 학생 훈련	13명	3박 4일
70. 7	진북유치원 훈련	50명	2박 3일
70. 7	원평 유치원 훈련	50명	2박 3일
70. 7	연산 유치원 훈련	40명	2박 3일
70. 7	남원 유치원 훈련	40명	2박 3일
70. 7	정주 유치원 훈련	33명	2박 3일
70. 7	백산 학생 훈련	25명	3박 4일
70. 7	오수 유치원 훈련	20명	2박 3일
70. 7	관촌 교도 훈련	60명	2박 3일
70. 7	원불교 교수 연수회	20명	2박 3일
70. 8	원광대 의료원 훈련	300명	2박 3일
70. 8	원남교당 요인 훈련	16명	3박 4일
70. 8	원불교 유아교육자 훈련	180명	3박 4일
70. 8	총부 간사훈련	30명	2박 3일
70. 8	남원교구 교무훈련	20명	2박 3일
70. 12	동래 학생훈련	39명	2박 3일
70. 12	수원학생훈련	14명	2박 3일

70. 12	총부교학과생 훈련	40명	5박 6일	
71. 1	하섬 동선 훈련	20명	20일간	
71. 2	하섬 동선 훈련	20명	20일간	
71. 1	관촌 학생훈련	25명	2박 3일	
71. 1	전주 학생훈련	30명	2박 3일	
71. 1	돈암 청년 훈련	12명	7일간	
71. 1	해룡 고교 학생훈련	28명	3박 4일	
71. 1	모현교당 학생훈련	15명	1박 2일	
71. 7	이리 어린이 훈련	70명	2박 3일	
71. 7	이리 어린이 훈련	70명	2박 3일	
71. 7	원대법당 훈련	40명	1박 2일	
71. 7	송학 어린이 훈련	30명	2박 3일	
71. 7	연산 어린이 훈련	40명	2박 3일	
71. 7	원평 어린이 훈련	70명	2박 3일	
71. 7	전주 청운회 훈련	40명	1박 2일	
71. 7	원대 대의원 훈련	25명	2박 3일	
71. 7	백산 학생훈련	40명	3박 4일	
71. 7	원남 청년 훈련	34명	2박 3일	
71. 8	원광대 교역자 훈련	40명	1박 2일	
71. 8	정토회 어린이 훈련	26명	2박 3일	
71. 8	인천 학생 훈련	40명	3박 4일	
71. 8	정주 학생훈련	20명	3박 4일	
71. 11	동이리 학생 훈련	19명	1박 2일	
71. 12	고창 학생훈련	23명	1박 2일	
71. 12	서면 학생 훈련	13명	1박 2일	
72. 1	이리교당 학생 훈련	30명	2박 3일	
72. 1	해룡고교 학생 훈련	38명	2박 3일	
72. 2	교학과 3년 훈련	39명	10일간	
72. 2	돈암 청년 훈련	19명	1박 2일	
72. 3	이리교구 청년 훈련	17명	1박 2일	
72. 4	원광 보건대 훈련	77명	1박 2일	
72. 6	부안 학생 훈련	26명	2박 3일	
72. 6	종로 청년 훈련	23명	1박 2일	
72. 6	5급 교무 훈련	22명	1박 2일	
72. 6	원광대 공대교수 훈련	21명	1박 2일	
72. 7	원대교학과 학생훈련	44명	1박 2일	
72. 7	원대 치대 학생 훈련	30명	8일간	
72. 7	부안 청년 훈련	12	1박 2일	

72. 7	정주교구 학생 훈련	136	1박 2일	
72. 7	평화 교도 훈련	44	1박 2일	
72. 7	동이리 유아훈련	71	1박 2일	
72. 7	정주 유아원	32	2박 3일	
72. 8	진북 학생 훈련	20	1박 2일	
72. 8	이리교당 교도 훈련	39	2박 3일	
72. 8	고창 유아원 훈련	14	1박 2일	
72. 8	중구 청년 훈련	25	2박 3일	
72. 1	하섬동선	20	20일간	
72. 2	하섬동선	20	20일간	

6. 수계 훈련원

가. 설 립

원불교의 창립정신을 바탕으로 生活宗敎로서의 영육쌍전 이사병행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설립된 수계농원은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육성에 힘쓰며 活佛배출의 훈련도량으로 발전을 보게 되었다.

나. 훈련현황

1) 연도별 훈련시행 횟수 및 참가인원

연 도	훈련횟수	누계	훈련일수	누계	참가인원	누계	비 고
49(1964)	1	1	25	25	22	22	
50(1965)	1	2	50	75	29	51	
51(1966)	1	3	60	135	27	78	
52(1967)	1	4	78	213	25	103	
53(1968)	1	5	67	280	27	130	
54(1969)	1	6	60	340	20	150	
55(1970)	2	8	61	401	59	209	
56(1971)	1	9	47	448	22	231	
57(1972)	1	10	40	488	25	256	
58(1973)	1	11	62	550	26	282	
59(1974)	1	12	60	610	27	309	
60(1975)	1	13	52	662	19	328	
61(1976)	1	14	50	712	22	350	
62(1977)	1	15	42	754	16	366	

63(1978)	2	17	70	824	41	407	
64(1979)	2	19	100	924	66	473	
65(1980)	2	21	70	994	63	536	
66(1981)	3	24	76	1070	73	609	
67(1982)	3	27	103	1173	95	704	
68(1983)	2	29	77	1250	52	756	
69(1984)	2	31	71	1321	62	818	
70(1985)	1	32	43	1364	66	884	
71(1986)	7	39	83	1447	199	1083	
72(1987)	15	54	98	1545	490	1573	

4) 연도별 훈련시행 내역

연 도	명 칭	기 간	훈련대상	인 원	훈련내용	비고
49(1964)~54(1969)	자체동계훈련	30~60일정도	농원임직원	20~30명선	신심고취 기본교리이해 정기훈련 체질화	6회
55(1970)	〃 예비교역자훈련	〃 7~10일	〃 선·학원 수학생	〃 18~45명	〃 창립정신 구현과 정기훈련실시	2회
56(1971)~62(1977)	자체동계훈련	30~60일	농원임직원	20~30명	신심고취 기본교리 이해 정기훈련 체질화	7회
63(1978)~65(1980)	〃 초급교무산업훈련	〃 30~60일	〃 초급훈련교무	〃 30~50명	〃 전무출신 자세확립 창립 정신 구현	6회
66(1981)	〃 〃 예비교역자훈련	〃 〃 7~10일	〃 〃 선·학원수학생	〃 〃 18~45명	〃 〃 창립정신 구현과 정기훈련 실시	3회
67(1982)	〃 〃 농대 및 농고생 실습	〃 〃 15~30일	〃 〃 농대 및 농고재학생	〃 〃 1년에5~10명	〃 〃 기본영농실습 진로 및 정신교육 생활훈련	3회
68(1983)~69(1984)	〃 〃	〃 〃	〃 〃	〃 〃	〃 〃	4회
70(1985)	초급교무 산업훈련	30~60일	초급훈련교무	30~50명	전무출신 자세확립 창립정신구현	1회
71(1986)~72(1987)	초급교무	30~60일	초급훈련교무	30~50명선	전무출신 자세확립 창립정신구현	
	청년회하계훈련	3~7일	각교당청년회원	10~20명	하계봉사를 겸한 자체훈련	
	대학생훈련	3~10일	각대학써클회원	10~20명	교리토론 및 자체 연구발표	
	단체 및 발표회	2~3일	단체회원	15~50명선	자체훈련 및 연구발표	22회

71(1986)~72(1987)	예비교역자훈련	7~10일	선·학원수학생	18~45명	창립정신구현과 정기훈련실시	
	중고생훈련	2~3일	학생회원	70~117명	교리훈련 심성계발 정기훈련	
	농대 및 농고생교육실습	15~30일	농대 및 농고재학생	1년에5~10명	기본영농실습 진로 및 정신교육 생활훈련	
	자체동계훈련	30~60일	농원임직원	20~30명	신심고취 기본교리이해 정기훈련체질화	

7. 東明 訓練院

가. 설 립

동명훈련원은 佛心이 돈독한 呂東明 居士가 원기51년(1966) 불교중흥과 부모님의 은혜에 보은하고자 동남아 7개국(인도, 태국, 세이론, 버마, 대만, 일본, 한국)의 특색있는 불교 건축양식을 모방하여 대구 봉무동 金盤山 기슭 1만여 대지위에 많은 정재를 들여 건립하였었다.

원기59(1974)년 呂東明 居士가 열반한 후 장남인 여운영교도 내외가 본교에 入教한 후 원기65년(1980) 교단에 희사하였고 교단에서는 대구교구 동명훈련원으로 원기66년(1981) 9월 28일 개원하여 종교, 교육, 문화를 위한 정신개벽의 훈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연 혁

65(1980). 1. 2 동명정사를 재단법인 원불교에 희사
66(1981). 3 동명훈련원 복원추진회 결성
66(1981). 9. 28 개원 봉불식 거행
69(1984). 6. 2 동명훈련원 후원회 발족

다. 현 황

1) 연도별 훈련시행 횟수 및 참가인원

연 도	훈련횟수	누계	훈련일수	누계	참가인원	누계	비고
66	3	3	12	12	97	97	
67	4	7	10	22	129	226	
68	4	11	10	32	200	426	
69	5	16	8	40	268	694	
70	7	23	15	55	200	894	
71	7	30	19	74	415	1,309	
72. 11~	16	46	36	110	586	1,895	

2) 연도별 훈련시행 내역

명 칭	기 간	훈 련 대 상	인원	훈 련 내 용	비고
대구교구학생 훈련(3회)	66. 7.29－31	교구 중·고생	73	새돌회원 수련	
전지훈련		동산선원생	9		
		〃	15		
학생연합회 수련대회	67. 2.15－17 67. 2.28－ 3.1	대학생	50		
청년회원훈련	67. 4. 3－5	교구청년	31		
청년수련회	67. 5. 8－9		32		
대학생훈련		시내교당 대학생	16		
제5차학생훈련	68. 8. 2－ 8. 5	중·고생(교구)	100	참회와 새생활	
어린이훈련	68. 8. 6－ 8. 8	국민학생	50	나와 우리	
남자교도훈련	68. 9. 3－ 9. 4	교구남자교도	40		
단합훈련	68.10. 2－10. 3	청년·학생	30		
교당주무훈련	68.10.28－	교당주무	10		
제2차신입생 오리엔테이션	69. 2.24－25	대학생	30	교리를 통한 원불교의 이념 정립	
학생훈련	69. 7.26－28	중·고생	126	믿음은 하나되어	
제3차어린이훈련	69. 7.29－31	국민학생	80	믿음을가진 어린이	
감원훈련	69. 8. 5－ 6	각교당감원	10	믿음과 화합	
남자교도훈련	69. 9. 1－ 9. 2	교구 남자교도	10	믿음으로 법위향상	
제4차신입생 오리엔테이션	70. 2.16－17	대학생	38		
법사단훈련	70. 2.28－29	교구 법사단	30		
임원훈련	70. 4.16－17	연합회 임원	80		
교리세미나	70. 6. 6－ 6. 6	청년	9		
전지훈련	70. 7.13－16	예비교역자	13		
대학생연합회	71. 1.21－22	대학생	15		
청년훈련	71. 2.22－23	서성로교당 청년	30		
청년간부훈련	71. 5. 3－ 5	교구청년	80	원청의 미래	
의대생훈련	71. 6. 1－ 6	서울대·의대생	45		
학생간부훈련	71. 7.25－27	교구학생 간부	80	미래의 주인	
어린이훈련	71. 7.28－29	부산서부교구, 어린이	150		
숙연훈련(3차)	71.11. 1－2	서성로교당 청년	20		

에스페란토훈련	72. 1.23－26	전국에스페란토어회원	80		
중·고생감수성훈련	72. 1.27－28	부산서부교구중·고생	15		
청년지도자훈련	72. 2. 7－ 8	서성로교당 청년	15	하나로 사세	
청년훈련	72. 2.13－15	대현교당 청년			
사물놀이훈련	72. 2.14－19	대학생불교연합회원	20	사물놀이 이론과 실제	
중·고신입회원훈련	2.21－22	대구교당 중고생			
신입생오리엔테이션	72. 2.24－25	교구 대학생	25	하나의세계. 하나의 등불로	
학생춘계훈련	72. 2.25－26	대구교당 중·고생	35	예절교육중심	
학생간부심성훈련	72. 2.26－27	부산서부교구중·고생간부	14		
청년훈련	72. 2.28－29	대구교당·청년	13		
원청영남지역회장단훈련	72. 3. 7－ 8	영남지역 청년	58		
원대청년훈련	72. 5. 9－10	교구청년	70	원청을알차게 민족을새롭게	
대불련문화페학생훈련	72. 7.13－19	불교 고등학생	19		
어린이여름훈련	72. 7.22－24	교구 국민학생	68	하나로 사세	
학생훈련	72. 7.28－30	교구 중·고생	75	하나로 사세	
학생훈련	72. 8. 5－ 6	진주교구 중고생	80		

3) 시　　설

〈토지〉

대지 504坪. 논 2,809坪. 임야 4,550坪. 운동장 130坪

〈건물〉

건 물 명	용　　도	평	비　고	건 물 명	용　　도	평	비　고
보궁전	법당	23평 2홉 1작		무설전	여직원숙소	16평2홉	
반야전	법당	27평		소법당	소법당	15평3홉7작	
숙　소	요사	56평 4홉 3작		응접실	응접실	25평1홉1작	
식　당	식당	4평		탑　방	기도실	11평6작	
변　소	변소	4평4홉		산신각	산신각	2평	
누　각	누각	23평5홉6작					

라. 역대임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교　무	李 法 峻(昌根)	男	1936. 8. 3	65. 8. 2~71. 2. 16	
〃	鄭 仁 成(吉子)	女	1941. 1. 3	66. 5. ~68. 1. 21	
〃	全 圓 德(在德)	男	1950. 11. 20	71. 2. 25~	
〃	孫 德 宣(太植)	女	1929. 3. 21	72. 1. 28~	

8. 萬德山 訓練院

가. 설 립

만덕산은 교단 初禪의 聖地이다. 원기16년(1931) 李共珠교무의 특지로 산 150,000坪을 매입하여 성지수호와 산업생산을 통한 영육쌍전의 산업도량으로 그 기능을 다하다가 전주교구 훈련장으로써 원기67년(1982) 12월 전주교구 각 교당의 협력으로 총 공사비 4천만원을 들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법당 및 생활관 취사장을 건립하므로써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나. 연 혁

67(1982) 12　　대법당. 생활관 취사장 준공
72(1987) 9. 9.　　훈련원 본관 및 숙소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2층 준공 공사비 9천만원

다. 현 황

1) 연도별 훈련시행 횟수 및 참가인원

연도	훈련횟수	훈련횟수누계	훈련일수	일수누계	참가인원	인원누계	비고
67	12	12	70	70	273	73	
68	8	20	28	98	655	928	
69	14	34	77	175	617	1,545	
70	13	47	68	243	534	2,079	
71	14	61	56	299	537	2,616	
72	17	78	74	373	908	3,524	

2) 년도별 훈련시행 내력

번호	훈 련 명	기 간	참가인원	훈련대상	비고
1	10회동선	66.12.22~67. 1.21	29	자체	
2	삼동야학교사	67. 2.26~ 3. 1	7	삼동야학교	
3	전주교구청년회운영위원	67. 4.10~ 4.11	17		
4	진안청년	67. 7. 3~ 7. 4	8	봉공수련	
5	대원학년	67. 7.13~ 7.17	42	전지훈련	

6	종로청년	67. 7.17~ 7.26	26	봉공회	
7	이리교구청년	67. 7.17~ 7.19	22	봉공회	
8	평화교당 학생	67. 7.30~ 8. 2	17	〃	
9	남중학생	67. 8. 2~ 8. 5	43	〃	
10	전주교구청년회	67. 8.13~ 8.15	11	〃	
11	전주교구청운회	67.11.13~11.14	37		
12	삼동야학교사	67.12.26~12.29	14		
13	11회 동선	67.12.22~ 1.21	26	봉공수련	
14	전주교구 청년	68. 6.18~ 6.19	240		
15	전국대학생회	68. 7.19~ 7.22	37		
16	훈련교무	68. 7.21~ 7.30			
17	진북유아	68. 7.27~ 7.28	171		
18	전주어린이	68. 8. 1~ 8. 4	179		
19	전주 남원교구 학생회	68 8. 5~ 8. 7	14		
20	삼동야학교사	68.12.26~12.29			
21	12회 동선	68.12.26~69. 1.21	25		
22	정토회 청년	69. 2.11~ 2.12	14		
23	성불학년	69. 3.26~ 3.29	31		
24	전주원심회	69. 6. 8~ 6. 9	40		
25	서울교구교무	69. 7. 4~ 7. 6	54		
26	원남 청년	69. 7. 8~ 7.13	19		
27	전주공간미술학원 어린이	69. 7.11~ 7.13	60		
28	인후 진북어린이	69. 7.16~ 7.18	40		
29	평화 덕진유아	69. 7.19~ 7.20	80		
30	동산어린이	69. 7.23~ 7.25	18		
31	전주교구학생	69. 7.26~ 7.28	65		
32	종로청년	69. 7.29~ 8. 2	15		
33	전주교구어린이	69. 7.30~ 8. 2	130		
34	삼동야학교사	69.12.26~12.29	22		
35	익산학생	70. 1. 4~ 1. 3	30		
36	13회 동선	70. 1. 4~ 1.31	23		
37	전대연간부	70. 2. 1~ 2. 4	50		
38	원불교학과 1년	70. 5. 6~ 5.10	50		
39	재중학년	70. 6.29~ 7. 5	67		
40	평화유아	70. 7.18~ 7.19	70		
41	덕진유아	70. 7.19~ 7.20	70		
42	동산유아	70. 7.22~ 7.23	22		
43	전주교구어린이	70. 8. 1~ 8. 4	70		

44	좌포학생회	70. 8.12~ 8.14	20		
45	중길어린이	70. 8.16~ 8.18	25		
46	영산교사반	70. 8.20~ 8.22	11		
47	삼동야학	70.12.26~12.29	26		
48	14회 동선	71. 1. 5~ 1.19	28		
49	익산학생	71. 1.23~ 1.26	36		
50	한의·약대생	71. 2.14~ 2.19	13		
51	공심야학교사	71. 5.23~ 5.24	10		
52	삼심학년	71. 6.28~ 7. 6	38		
53	선심회	71. 7. 6~ 7. 8	8		
54	교동유아	71. 7.14~ 7.15	80		
55	덕진유아	71. 7.15~ 7.16	70		
56	평화유아	71. 7.16~ 7.17	70		
57	인후, 동산, 진북, 유아	71. 7.18~ 7.20	60		
58	전주교구학생	71. 7.27~ 7.29	50		
59	이리교구청년	71. 8.15~ 8.17	40		
60	청주청년	71. 9.27~ 9.28	20		
61	삼동야학교사	71.12.26~12.29	14		
62	15회 동선	72. 1. 4~ 1.16	33		
63	서울지구대학생1차요인훈련	72. 1.19~ 1.27	26		
64	한의·약대생	72. 2.14~ 2.18	12		
65	원의회	72. 2.21~ 2.23	12		
66	제세학년	72. 6.29~ 7. 5	37		
67	인후, 동학, 유아	72. 7.13~ 7.15	50		
68	동산, 진북유아	72. 7.16~ 7.18	75		
69	전주교구어린이	72. 7.20~ 7.22	120		
70	전주 학생회	72. 7.24~ 7.26	57		
71	서울종로청년 합동	72. 7.26~ 7.29	33		
72	감곡학생회	72. 7.27~ 7.29	23		
73	창원교도	72. 8.22~ 8.23	32		
74	원창회서울동서호남	72. 8. 9~ 9.11	188		
75	군산교구교도	72. 9.14~ 9.15	130		
76	전북대 학생회	72. 4. 4~ 4. 5	20		
77	서울동부학생회	72.12.25~12.27	46		
78	삼동야학교사	72.12.27~12.30	14		

3) 시 설

〈토지〉

대지 900坪. 밭 2,500坪

9. 小南 訓練院

가. 설 립

완도에 위치한 소남훈련원은 원기48년(1963) 小南 金正光선생의 대지, 밭, 임야 16,000평의 회사로 먼저 농원을 이루었던 사업이 근간이되었다. 당시부터 완도철산농원으로 개발되어 온 이곳에 원기65년(1980) 교정원 공익부가 대산종법사의 하명을 받들어 먼저 25평의 요양원을 건립하였으며, 이듬해 2차 정양을 오신 大山종법사께서 이곳에 훈련원을 건립하여 千佛萬聖을 배출하며 해외교화의 전진기지로 삼자 하시자 부산진교도 김선도행과 광주교구 호법동지들의 합심으로 곧 건축에 착수하여 원기68년(1983) 6월 28일 240평의 2층건물을 낙성하고 봉불식을 가짐으로서 소남선생의 명호를 딴 소남훈련원은 설립되었다.

나. 연 혁

48(1963).	4월 小南 金正光先生께서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숙승봉 밑 대지 밭 임야 등 16,000여평을 회사하시었다.
58(1973).	당시 佛目敎堂 金仁碩교무 本院터전 개척
65(1980).	황청원교도 주재관리
66(1981).	李皓濬교도 주재관리
66(1981).	공익부에서 요양원 명의로 숙소 25평 건축
66(1981). 6. 6	大山宗法師 정양(2개월)
66(1981). 10	식당 35평 완공
67(1982). 6.	조실 57평 완공 大山宗法師 2차 정양
67(1982). 7	전국 각교구 교무훈련 실시
67(1982). 9. 5	道善院(法堂) 착공
68(1983).	부대시설 및 도로공사

68(1983). 6. 28 전국 각교당에서 오신 3,000여명의 교도가 운집한 가운데 萬佛殿에서 奉佛낙성식 거행
68(1983). 10 修道院부지 5천여평 구입
68(1983). 12 김재백박사(小南先生 三男) 임야 9,048m²희사
69(1984). 5 수도원 터 연결 다리공사 1개월간작업
69(1984). 7 大山宗法師 4차 정양
70(1985). 7 大山宗法師 정양 1개월
71(1986). 8. 12 송대집 건립 77평 6개월공사
71(1986). 8 죽림정사 완공(76평)
71(1986). 8 시작해서 운동장 600평공사
72(1987). 임야 1,680평 황인만씨로부터 구입
72(1987). 밭 8,200평 논 김재덕씨에게서 구입
72(1987). 논, 가옥 24,000평 김성원에게서 구입
72(1987). 10월 죽림정사 부지조성 3月 작업

다. 역대임원

〈 원장(광주교구장)〉

대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鄭 眞 淑(賢 淑)	女	1920. 10. 4	67~60	
2	趙 正 勤(年 九)	男	1935. 12. 6	69~71	
3	柳 聖 一(順 姬)	女	1928. 7. 26	71~	

〈역대 재직 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金 惠 實(吉仙)	女	1936. 3. 25	68. 5. 2~	교무
2	成 正 在(正在)	〃	1936. 7. 25	69. 3.20~	〃
3	白 仁 赫(亨基)	男	1956. 10. 9	69. 1.10~	주사

V. 研究機關 및 團體

각종 연구소와 연구단체는 개교반백년을 전후로 설립되었다.

원불교에서는 개교반백년을 앞두고 교세확장에 거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소의경전이 갖추어지고 敎化活動이 활발해 지면서 교의사상과 敎化方法의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된 것이다. 원광대학의 발전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켰고, 부설 연구기관(해외포교문제연구소, 종교문제연구소, 원불교사상연구원)들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연구업적을 내기 시작했다. 이와 아울러 교정원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의 제반현상에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화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원기59년(1974) 3월 30일에 교화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연구기관들이 설립되기 이전인 원기40년(1955) 6월에 원불교학과 학생들이 교학연구회를 발족하여 자체적으로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연구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하였다. 원기67년(1982) 2월에는 원불교 교무로서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상당수(약 45명)에 이르게 되자 이들 스스로 친목도모와 학문상 교류, 그리고 연구분위기 촉진을 위하여 신룡교학회를 발족하여 연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와같은 각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의 성격을 살펴볼 때 원불교사상 연구분야와 교화 연구분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원불교사상의 연구는 원광대학교 부설연구기관인 종교문제연구소와 원불교사상연구원 그리고 학생자체단체인 교학연구회와 대학원에 재학 또는 졸업한 교무들로 구성된 신룡교학회가 속하며 교화연구분야에는 원광대학교 부설 해외포교문제연구소와 교정원부설 교화연구소라 할 수 있는데 해외포교문제연구소는 최초에 설립된(원기45년(1960) 1월 24일) 연구소로써 그 의미가 크며 교화연구소는 교단의 어떠한 기관에 부설된 연구소가 아닌 교정원에서 직접 설립 운영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각 연구소 및 연구단체의 설립상황은 다음과 같다.

연구기관 및 단체명	설 립 년 월 일	초대회장	비 고
해외포교문제연구소	원기45년(1960) 11월 24일	朴光田(吉眞)	원광대학 부설
종 교 문 제 연 구 소	원기52년(1967) 3월 1일	柳基現(炳德)	〃
원불교사상연구원	원기59년(1974) 7월 4일	朴光田(吉眞)	〃
교 화 연 구 소	원기59년(1974) 3월 30일	李廣淨(建衡)	교정원 부설
교 학 연 구 회	원기40년(1955) 6월		원불교 학과

신 용 교 학 회	원기67년(1982) 2월 7일	金聖觀(聖觀)	대학원 재학 및 졸업교무

□ 研究所·研究院

1. 海外布教問題研究所

원불교 최초의 해외교화는 원기16년(1931) 11월 26일 조송광의 일본교화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어 원기21년(1936)에 장적조에 의해 만주교화의 서장을 열게 되었다. 원기41년(1956) 1월에 원광대학 학장 朴光田교무가 미국 등을 비롯한 구미각국과 동남아, 일본 등지를 시찰하여 각국 불교 및 기타 종교 단체와 유대관계를 맺게 되면서 해외교화 포석의 기연을 심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교단내에 해외교류를 전담하는 부설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원기45년(1960) 11월 24일 원광대학의 부설기구로 해외포교연구회를 설립하고 초대회장에 원광대학 학장인 朴光田교무가 선임 되었고 규약 및 부서를 제정하였다.

다음은 〈원광대 학보 15호〉에 게재된 해외포교연구회의 창립 기사이다.

본 대학 학장인 박길진(朴光田)교수는 1956년(원기41) 원불교 해외 포교의 첫 일로서 歐美를 일주한 바 있었고 1958년(원기43)에는 제5차 세계 불교도대회에 참석차 태국을 위시하여 남방 불교도 시찰하고 돌아온 바가 있다. 남다른 품위와 지견을 가진 박학장은 이러한 세계적 견문을 계기로 최근에 와서는 원불교 해외포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미 2회에 걸친 모임을 가졌던 것이니 그간의 경로와 연구회 규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준비회=원기45년(1960) 11월 14일 하오 7시 해외포교연구회(가칭)준비회를 개최한 바 참석인원은 박광전(길진), 이공전, 김윤중, 이중정, 유기현(병덕), 송천은 등 6인이었다. 박학장으로부터 본교 교세가 일취월장함에 따라 이제는 국내 포교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좀더 시야를 넓혀서 해외 각국을 상대로 힘을 기울여야 할 터인데 아직 우리의 형편이 직접 해외로 포교를 할 단계 이르지 못하였으니 우선 해외포교문제연구회를 구성하여 각 부문으로 나누어 전문 연구를 촉진시켜야 된다고 시사하고 이에 본회를 발기하는 바 회원된 자는 기운과 뜻을 합하여 적극 협력할 것을 바란다는 요지로써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잠시 동안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이 있었던 바 이 모임의 규약 초안을 김윤중, 이중정 양씨에게 위촉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 찬성 회의를 열기로 하고

1. 우선 불교 연구서나 성서의 영문판을 구독할 것.
2. 해외 불교 상황의 자료수집(이에 본 대학 도서관에 정기적으로 보내오는 각국 불교 잡지를 추

려서 공개할 것)

3. 매월 1회 이상의 집회를 가질 것.

등등의 결의를 보면서 매우 진지한 토론이 있은 다음 폐회하였다.

△ 창립총회=원기45년(1960) 11월 24일 하오 6시에 원광대학 학장 부속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박광전(길진), 이중정(종행), 김정용(삼룡), 이공전(순행), 김윤중, 박광진(길연), 유기현(병덕), 정성숙, 전팔근, 송천은, 정봉길, 이선경 등 12인이었으며, 박학장으로부터 간단한 취지 설명이 있은 다음 규약통과로 들어갔다.

한동안 회의장내는 이 모임의 명칭에 관하여 이견이 분분하였으나 결국 해외포교연구회라는 명칭으로 결정을 보았다. 이어 규약에 의한 부서를 선정한 것이니 그 규약과 부서 및 임원은 다음과 같다.(…規約 省略…)

· 회장 : 박광전(길진)교무　　부회장 : 박장식, 이운권교무

· 간사장 : 이중정교무. 영역주간 : 박광진(길연). 일역주간 : 김정용(삼룡)교무. 중역주간 : 이선경교무

○ 연구원 명단

· 영역부분 : 박광진(길연), 유기현(병덕), 전팔근, 정자선, 송천은, 정봉길, 송수은

· 일역부분 : 김정용(삼룡), 박광전(길진), 박장식, 김윤중, 이은석, 이공전, 이중정, 정성숙, 오회원, 박재현

중역부문 : 이선경, 이운권, 윤정운, 조달원(無順)

끝으로 이날 창립 총회의 결의사항을 보면 ① 외서 구입의 건, ② 계간으로 외국어 잡지를 발간할 것, ③ 정기회시 외국 논문 1건 이상 또는 해외 종교 뉴스를 보도할 것, ④ 정기집회를 매월 첫 일요일 하오 2시로 개최할 것 등등이다.　　－원대학보 15호, 1960. 12. 15

해외포교연구회는 원기47년(1962) 정식으로 문교부 인가의 《해외포교문제연구소》 설립을 보게 되었으며, 원기56년(1971) 6월부터 그간 연구소의 실무를 담당해 오던 전팔근교무가 제2대 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본 연구소는 해외각국의 종교분포와 포교 활동상황, 그리고 사업시설 운영들을 조사 연구하고 구미(歐美), 동남아시아를 위시한 세계 각국의 종교관계 연구기관 단체들과 서신, 문헌 등의 교류로 친선을 도모하고 장차 원불교 해외포교 계획을 수립, 종교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 혁

45(1960)	11. 14	해외포교연구회(가칭)준비회 개최
45(1960)	11. 24	해외포교연구회 창립총회. 초대회장 박광전(길진)교무 취임
47(1962)		《해외포교문제연구소》 문교부 인가
47(1962)	3～	기관지 『Won Buddhism』 발간 현재 통권 4권 4호까지 계속 발행하다.
56(1971)	6.	2대 소장 전팔근교무 취임

56(1971) 10. 원불교 반백주년 기념사업으로 『원불교교전』 영역판 출간

〈역대임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회 장	朴 光 田(吉眞)	男	1915. 3. 23	45.11.24~56	
부 회 장	朴 將 植(天植)	〃	1911. 1. 9		
〃	李 雲 捲(雲行)	〃	1914. 5. 3		
간 사 장	李 中 正(鍾行)	〃	1926. 6. 14		
영역주간	朴 光 振(吉然)	〃	1926. 11. 13		
일역주간	金 正 勇(三龍)	〃	1923. 11. 1		
중역주간	李 善 慶	〃			
영역위원	柳 基 現(炳德)	〃	1930. 9. 2		
〃	全 八 根(八根)	女	1927. 3. 2		
〃	丁 慈 善(在善)	男	1922. 9. 26		
〃	宋 天 恩(天恩)	〃	1935. 6. 9		
〃	鄭 維 誠(奉吉)	〃	1936. 5. 20		
〃	宋 修 恩(修恩)	〃			
일역위원	朴 光 田(吉眞)	〃	1915. 3. 23		
〃	朴 將 植(天植)	〃	1911. 1. 9		
〃	金 允 中(遵烈)	〃	1927. 12. 7		
〃	李 恩 錫(俊行)	〃	1925. 1. 15		
〃	李 空 田(順行)	〃	1927. 3. 24		
〃	李 中 正(鍾行)	〃	1926. 6. 14		
〃	丁 盛 熟(石鎭)	女	1922. 9. 5		
〃	吳 曈 圓(男苗)	〃	1947. 7. 13		
〃	朴 濟 現(英姬)	〃	1932. 2. 4		
중역위원	李 雲 捲(雲行)	男	1914. 5. 3		
〃	尹 正 運(斗炳)	〃	1900. 2. 9		
〃	조 (달원)	〃			
소 장	全 八 根(八根)	女	1927. 3. 2	56. 6~	
연구위원	宋 天 恩(天恩)	男	1935. 6. 9		
〃	柳 基 現(炳德)	〃	1930. 9. 2		
〃	韓 正 圓(基斗)	〃	1933. 8. 30		
〃	金 聖 徹(洪喆)	〃	1938. 9. 15		
〃	金 亨 徹(順任)	女	1938. 1. 21		
〃	徐 慶 田(昶烈)	男	1939. 10. 15		

연구위원	宋 官 恩(恩)	女	1941. 1. 25		
〃	李 運 徹(鉉澤)	男	1938. 2. 8		
〃	李 (相五)	〃			재 가
〃	金 道 隆(杌坤)	〃	1933. 11. 11		〃
〃	金 聖 澤(永斗)	〃	1943. 7. 3		
번역위원	李 (棟求)	〃			재 가
〃	李 (相五)	〃			〃
〃	全 八 根(八根)	女	1927. 3. 2		
〃	William H, Brehm	男			
간 사	尹 (錫花)	〃			재 가
연 구 원	金 基 圓(洛必)	〃	1949. 10. 16		
〃	成 大 振(一虎)	〃	1955. 3. 14		

가. 『Won Buddhism』의 발간

원기45년(1960) 9월, 영문판 기관지 『Won Buddhism』을 동하(冬夏) 연 2회씩 발행하기로 결의하여 원기47년(1962) 제1호가 창간된 이래 원기72년(1987) 현재 통권 4권 4호까지 계속 발간되고 있다. 『Won Buddhism』은 원불교 교리사상과 원광대학을 소개하는 영문판 기관지로써 해외포교와 문화교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26개국 약 300여의 종교·교육단체와 국내의 각 대학 도서관과 종교단체와 원불교 교당에 배포되고 있다.

다음은 『Won Buddhism』의 목차이다.

Vol. I No. 1 원기47(1962)

- Editorial
- Main Philosophical Aims of Won Buddhism
- What is the Perfect World?
- The Attitude of Awareness
- Golden Rules
- Dialogue
- Man and Zen ····· *Park Kil-Chin*

Vol. I No. 2 원기47(1962)

- Editorial
- What is Won Buddhism
- A Real Buddhist Mass
- Moral Culture Indispensable for Human Life
- Golden Rules
- What is the Relation between Won and Human Being
- The Rules of Moral Discipline of Won Buddhism

Vol. I No. 3 원기48(1963)

- Editorial
- What is Won Buddhism?
- Sitting Meditation
- Do Good And Never Do Evil—However
- Questions and Answers
- Golden Rules
- Worship and Practice in Won
- Western Thinkers Who Suggested Won
- Trifling It May Be
- News Corner

Vol I. No. 4 원기48(1963)

- Editorial
- What is Won Buddhism?
- The World Affected with Diseases
- Ch'an—na in Won Buddhism
- Publications Received
- Golden Rules
- The Study of Moving and Being Quiet
- What is the Buddha?
- News Corner

Vol. I. No. 5 원기49(1964)

- Editorial
- What is the Living Sutra?
- A Brief Introduction to Won Buddhism
- Brief Impressions about Won Buddhism
- Publications Received
- Everytime Chan(Zen)
- Won as a Symbol of the Truth
- 30 Disciplinary Abstentions for Won Buddhists
- News Corner

Vol I No. 6 원기49(1964)

- Editorial
- News Corner
- Publications Received
- An Epitome of Won Buddhism
- What is the Largest and Eternal Enterprise?

Vol. I No. 7 원기50(1965)

- Editorial
- Complete Integration of Body and Spirit
- The Principle of Calling the Name of the Buddha
- *My Impressions of Won Buddhism* ····· *Linda S. Svece*
- News Corner
- Worldly Pleasure and Heavenly Pleasure
- Golden Rules
- Happiness ····· *Park kil-Chin*
- Diseased Society and the Methods of Its Treatment

Vol. I No. 8 원기50(1965)

- Editorial

-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Won and Buddha? ····· *From the Supreme Scriptures of Won Buddhism*
- Buddha Dharma is Life is no other than Buddha Dharma
- Won Buddhism in Korea ····· *Ronald S. Suleski*

Vol. I No. 9 원기51(1966)

- Editorial
- The Sunlight Reaches the Summit of Mountain First *(From the Supreme Scriptures of Won Buddhism)*
- Four Forms of Obligation ····· *R. E. Suk*
- The Virtuous Path
- What is Buddhism as a Religion? ····· *P. K. C.*
- Buddhism and its Liberal Thought ····· *Song Chun-Eun*
- My Approach to Won Buddhism Human

Vol. I No. 10 원기52(1967)

- Editorial ····· *Yoo Byung Duk*
- Golden Rules
- An Integral World Established by Both
- Spiritual Culture ang Material Civilization ···*From the Supreme Seripture of Won Buddhism*
- The Ontological Research of "Eun" or Obligation —*The Fundamental Concept of Won Buddhist Faith*—
- The Thought of Won in the East····· *P. K. C.*
- Cultivatin of Ming ····· *S. C. H.*
- The Way to Paradise on the Earth ····· ····· *Stephen Bela Renovich*
- Notes on Our First Impression of Won Buddhism Mass

Vol. II No. 1 원기52(1967)

- Editorial
- Golden Rules
- The Way of Cultivation of Mind
- The Meanings of Chana····· *Park Kil-Chin*
- Realization and Bliss···*Won Il Kuang(Ralph L. Goggin)*
- Why is Buddhist Reformatiom Considered Inevitable ····· *Song Chun-Eun*
- The Modernization of Buddhism ····· *Richard A. Gard*

Vol. II. No. 2 원기55(1970)

- Editorial
- The Nature of Won Truth ····· *Song Chun-Eun*
- The Vowing Words to Il—Won-Sang —*from Won Buddhist Kyo Chun*—
- Won Buddhism in Korea····· *Kang Wi-Jo*
- The Heart Sutra—*form Won Buddhist Scripture*—
- Now is Life Eternal ····· *Kalph L. Goggin*

Vol. II No. 3 원기57(1972)

- Editor's Note
- The Prime Master's Half—*Centennial Address.*
- Commemorative Address
- A Declaration of Objectives for the Future
- The Direction of Religion in the Future and Won Buddhism ····· *Richard A Gard*
- Proof of the Experience of IL—WON—SANG ····· ····· *Yoo Byung—Duk*
- Approaches Toward One World ····· *Lee Kong—Jeon*
-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n Buddhism ·····

……*Song Chun—Eun*

Vol. II No. 4 원기57(1972)

- Editorial
- The World is One, Peoples Are One … *Park Kil—Chin*
- Fundamental Policy of Peace…… *Atawon*
- Religious Life …… *Chon Pal—khn*
- A Half Century's Growth of Won Buddhism ……
  ……*Kim To—Yoong*
- Photos & News

Vol. II No. 5 원기58(1973)

- Editorial
- Be a Moral Master Creating a New History·· *Tai—San*
- The Dharma Words of Rew. Jung—San
- The Reason Truth is Symbolized in A Circle(Il-Won-Sang)…… *Chon Pal—Khn*
- The Three Evils, Five Desires, and Attachment *Atawon*
- A Morning Practice at the Headquarters of Won Buddhism …… *Nah Tao—Kook*
- Venerable So-Tae-San, The Great Master…*Yoo Byung-Duk*
- Won Buddhism: An Outsider's View…*Dennis Puccinelli*
- News Corner

Vol. II No. 6 원기58(1973)

- Editorial
- What is the meaning of 'Grace' in Won Buddhism?
  …… *Chon Pal—Khn*
- The Ideal Garden of Happiness …… *Song Chun—Eun*
- Channa …… *Adrian Kittner(Won Tao—Sil)*
- The Trend of World Buddhism…… *Makida Teiryo*
- The Role of Religion in Modern Life…*H. Byron Earhart*
- News Corner

Vol. II No. 7 원기59(1974)

- Editorial
- The Mission of the Won Buddhist Youth Association
  …… *Kim Pal—Kon*
- The Full Integration of the Spirit and the Body
  …… *Song Chun—Eun*
- The Direction for Modernizing the Missionary Service of Buddhism …… *Etani Ryukai*
- A Survey on Voidness from the Point of Channa(Meditation) …… *Chon Pal—Khn*
- News Corner

Vol. II No. 8 원기59(1974)

- Editorial
- Words of the Prime Master Taesan
- All Religions Rooted in One Source from the Canonical Textbook of Won Buddhism
- The Great Master Sotaesan, Founder of Won Buddhism …… *Han Ki—Doo*
- The Open Address to the First International Convention of Won Buddhism
- The Prime Master's Address
- A Brief Historical Sketch of Won Buddhism
- What Religions Can do for World Peace
  …… *Park Chang—Sik*

- World Peace and The Mission of Won Buddhism ····· *Chon Pal-Khn*
- How Does Won Buddhism Differ from the Old Buddhism ····· *P. K. C*
- Buddhist Stories
- News Corner

Vol. II No. 9 원기59(1974)

- Editorial
- From Dharma Words on the New Year Day Service
- The Relation between Buddhist Truth and Daily Life ····· *Song Chun-Eun*
- The Four Graces ····· *Kim Pal-Kon*
- The Ethics in the New Age····· *Chon Pal-Khn*
- Religion and Science ····· *Atawon*
- Do Your Best to Realize Justice ····· P. K. C.
- The Greater Profit
- A Vital Faver Repaid
- News Corner

Vol. II No. 10 원기60(1975)

- Editorial
- From *the Canonical Textbook of Won Buddhism*
- Moving and Being Quiet are of One Suchness ····· ····· *Song Chun-Eun*
- Truthful Religion ····· *Kim Pal-kon*
- The Essence of Grace in Won-Buddhist Thought ····· *Lee Uoon-Chul*
- Il-Won-Sang:Faith and Practice····· *Park Chun-Sik*
- A Bold and Wise Girl
- News Corner

Vol. III No. 1 원기61(1976)

- Editorial ····· *Song Chun-Eun*
- From *the Canonical Textbook of Won Buddhism*
- Prime Master's Greetings to the New Year
- "A Won Buddhist Temple Liberating Human Spirits"
- From *the Canonical Textbook of Won Buddhism*
- Spiritual Paradise in Material Civilization
- The Won Buddhist Outlook on Salvation *Kim Pal-Kon*
- The Social View Emphasizing Practice of the Four Essentials ····· *Yoo Byung-Duk*
- The Way to Peace and Revolution ··· *Chon Pal-Khn*
- News Corner

Vol. III No. 2 원기62(1977)

- A New Year's Message in 1977 ····· *Tae-san*
- The Three Principles of Life
- The Grace of Heaven and Earth····· *Kim Pal-Kon*
- The Grace of Parents ····· *Song Chun-Eun*
- The Grace of Brethren ····· *Shu Chang-Nyul*
- The Grace of Law ····· *Kim Hong-Chul*
-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Politics ····· *Chon Pal-Khn*
- Buddhist Story
- News Corner

Vol. III No. 3 원기63(1978)

- Editorial
- The Threefold Trainings of Won Buddhism ····· *Suh Kyung—Jun*
- The Cultivation of Spritual Stability····· *Kim Pal—Kon*
- The Study of Facts and Principles ····· *Han Kee—Doo*
- The Selection of Right Conduct ····· *Kim Hong—Chul*
- What is Won Buddhism?
- Buddhist Stories
- Pictures
- News Corner

Vol. Ⅲ No. 4 원기63(1978)

- Editorial
- The Ideal of the Four Essentials
- On the Cultivation of Self-Ability ····· *Kim Yung—Too*
- On the Wise Mam First ····· *Shu Kyung—Jun*
- The Education of the Children of Others ····· *Kim Hong—Chul*
- Respect for Those Dedicated to the Public Welfare ····· *Kim Hyung—Chul*
- The Four Essentials From *the Canonical Textbook of Won Buddhism*
- How to Cultivate Mind in Won Buddhism ····· *Kim Pal—Kon*

Vol. Ⅲ No. 5 원기65(1980)

- Editorial
- The New Year Messages from the Prime Master of Won Buddhism
- Nature of Essentials of Daily Moral Practice ····· *Chon Pal-Khn*
- The Nine Rules of Moral Discipline of Won Buddhism
- A Faith in a Religion Based on Truth ····· *Ataawon*
- Practical Utilization of Buddhism ····· *Kim Pal—Kon*
- The Won Buddhist Thought on Grace··· *Han Kee—Doo*
- The Four Duties of Won Buddhism Members
- The Way to Practice Buddhism in Our Real Life
- The Necessity of Education····· *Thomas Walsh, Peace Corps*
- News Corner

Vol. Ⅲ No. 6 원기66(1981)

- Editorial
- Dae San Prime Dharma Master's New Year's Dharma Lecture in Won Buddhist Year 66
- The Path of Study in Our Lives ····· *Park Kil—Chin*
- Ethics between the Superior and inferior in Their Progressive Course ····· *Chon Pal—Khn*
- A Research of Ven, Sotaesan, the Founder of Won Buddhism ····· *Song Chun—Eun*
- Don't Take a Part in Miscellaneous Gams ····· *Lee Seong—Taek*
- News Corner

Vol. Ⅲ No. 7 원기66(1981)

- Editorial
- Proclamation
- Series of Dharma Words ····· *Park Kil—Chin*
- The Modernization of Rules of Decorum *Han Jeong-Suk*

• A Research of Ven. Sotaesan, The Founder of Won Buddhism ····· *Song Chun—Eun*
• Not Commenting on the Faults of Others ····· *Lee Seong Taek*
• Practicing Won Buddhist Doctrine in Our Everyday Lives ····· *William H. Brehm*

Vol. III No. 8 원기67(1982)

• Editorial
•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Religions(U. R)
• The Dharma Words of Ven ····· *Park Kil—Chin*
• The Cultivation of Spiritual Stability ··· *Song Chun—Eun*
• Scientific Civilization and Won Buddhism ····· *Chon Pal—Khn*
• Education of the Children of Others ····· *Kim Nak—Pil*
• Il—Won—Sang
• News Corner

Vol. III No. 9 원기68(1983)

• Editorial
• A View of Oriental Religions on Women ····· *Chon Pal—Khn*
• Maitreya Belief of Korea ····· *Kim Sam—Yong*
• The Influence of Won Buddhism upon Korean Society ····· *Yoo Byung—Duk*
• "*Ox—herding*" Represented in the Canonical Textbook of Won Buddhism ····· *Han Ki—Doo*
• On Symbol and Il—Won—Sang ····· *Suh Kyung—Jun*
• On the Law of Causation
• News Corner

Vol. III No. 10 원기68(1983)

• Editorial
• Sitting Mediation ····· *Park Kil—Chin*
• The Basic Moral Principle in Won Buddhism ····· *Chung Bong—Kil*
• The Basic Tenets of Won Buddhism ····· *Han Chong—Man*
• The Brief History of Won Buddhism until 1943
• For the Reform of Traditional Korean Buddhism from the Collection of Won Buddhist Publications(Vol. IV)
• *Silhak* Thoughts Represented in Won Buddhist Slogans ····· *Song Chon—Eun*
• News Corner

Vol. IV No. 1 원기69(1984)

• Editorial
• Won Buddhist View of Women Shown in the Won Buddhist Faith ····· *Chon Pal—Khn*
• On Threefold Learning ····· *Chung Bong—Gil*
• The Truth of Il—Won—Sang(One—Circle—Figure)
• A Message to the 14th W. F. B. Members ····· *Park Kil—Chin*
• A Message to the 4th W. C. R. P Members ····· *Park Kil—Chin*

- A Brief History of Won Buddhism by P. K. C.
- Won Buddhism and Practical Learning (The Influnence of Practical Learning on Salvation Consciousness) ..... *Yun Sa-Soon*
- the Dialogue Decalogue
- Ground Rules for Interreligious Dialogue Leonard Swidler
- News Corner

Vol. IV No. 2 원기70(1985)

- Editorial
- Won Buddhist View on Equality..... *Chon Pal-Khn*
- Moving and Being Quiet are of One Suchness ..... *Han Ki-Doo*
- A View on Social Enlightenment of Won Buddhism ... *Suh Kyung-Jun*
- A View on Tao in Won Buddhism ..... *Yang Hyun-Soo*
- Dharma Words on Happiness and Suffering ..... *Park Kil-Chin*
- News Corner

Vol. IV No. 3 원기71(1986)

- Editorial
- Obituary
- A Brief History of the Late..... *Park Kil-Chin*
-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Il-Won-Sang and Human Beings? -*From the supreme scriptures of won Buddhism*
- The World is One..... *Park Kil-Chin*
- The Dharma Words of Ven Soongsan
- Is Human Nature Good ..... *Chung Bong-Gil*
- Ven Sotaesan's Life shown in the Pictures ..... *P. K. C*
- My Three Proposals by ven. Dae San, the prime Master of Won Buddhism
- ACRP/SEOUL
- News Corner

Vol. IV No. 4 원기72(1987)

- Editorial
- Meanings of Founding Mottos of Won Buddhism and the Founding Motive of Won Buddhism
  Ven. Daesan, the Prime Master of Won Buddhism
- The Life and Thought of Ven. Soongsan ..... *Kim Sam-Yong*
- The Disease of Society and the Role of Religion ..... *Yang Hyun-Soo*
- *Historical Approach of Buddha-body of Won Buddhism* ..... *Sung Il-Ho*
- On the Sudden Awakening of Ch'an School in Dharma Teaching of the Mind Ground ..... *Han Ki-Doo*
- News Corner

나. 교서번역

원불교의 교서번역은 일찍부터 (원기28년) 시도되었다. 그러나 매우 조심스러운 가운데 우선 원불교의 간단한 소개를 할 수 있는 요람부터 번역하기 시작하여 원불교 교전의 영문판 발행은 당시 해외포교연구소 소장인 전팔근교무가 원기54년(1969) 미국 유학에서 귀국하여 교전 영역에 착수하여 원광대 영어강사 Jay Steptoe, Brain Copp, 캐나다 선교사 Russel Young, 불교학자 Richard A. Gard 박사 등 외국인의 협력을 얻어 교단 반백년 기념대회의 해인 원기56년(1971) 4월에 영역본을 간행하게 되었다.

1) 원불교요람 번역

번호	간행년월	제 목	번역문자	내 용	크 기	비 고
1	28(1943). 9	佛法研究會要覽	일역	불법연구회안내	4×6판, 25쪽	
2	43(1958)	Manual of Won Buddhism Korea	영역	원불교 안내	수첩크기. 23쪽	
3	48(1963).	圓佛教要覽	일역	〃	4×6판, 8쪽	
4	50(1965). 9	圓佛教要覽	중역	〃	프린트판 국판 20쪽	
5	54(1969). 4	Manual of Won Buddhism	영역	〃		교 무 부
6	56(1971)	Meditation	영역	좌선법, 석가모니불과 일원상, 원불교약사	4×6판, 28쪽	교 무 부
7	60(1975).	圓佛教について	일역	원불교 안내	21쪽	교 무 부
8	63(1978).	Material Civilization Develops, Cultivate Spiritual Civilization Accordingly.	영역	원불교 소개	12×23변형판 8쪽	교 화 부
		物質が 開闢した, 精神を開闢しよう	일역			
9	70(1985). 4	As Material Civilization Develops, Cultivate Spiritual Civilization Accordingly.	영역	사진, 안내팜프렛	22×18cm변형판 10쪽	문 화 부
		物質が 開闢した, 精神を開闢しよう	일역	〃		〃
10	71(1986)	Photos, Today's Won-Buddhism	영역	사진, 안내서	올칼라아트지 국배판 118쪽	원 광 사
		寫眞で 見る 今日の 圓佛教	일역	〃	〃	〃
11	71(1986). 8	GVidlibro de Uon BulGjo	에스페란토어	원불교 안내서		종로교당 에스페란토어회

2) 원불교 교전 번역

- 원기56년(1971) 4월－영역판『원불교 교전』
- 원기60년(1975) 7월－일역판『원불교 교전』
- 원기64년(1979) 10월－일역판『원불교 교사』
- 원기65년(1980) 7월－일역판『원불교 예전』

영문판, 일어판 교서가 간행되기에 앞서 원기52년(1967) 10월에 교전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프린트판으로 나왔으나 보급되지 못하였으며 교서 번역외에 원기61년(1976) 8월에는 대산종법사의『교전대의』와『교리도』를 정유성교무가 번역하였다.

다. 국제수련대회 개최

원기59년(1974)에 시작된 국제수련대회는 해외포교연구소의 중요한 행사의 하나로서 국내외 교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해외에 거주하는 출가 재가교도들의 실정을 파악·후원하고 해외문물에 접하므로써 견문을 넓히고, 국내외 교도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을 돈독히하며 원불교 해외교화의 의의를 재인식 하게 하였다. 연구소장 전팔근교무의 주도로 운영되는 동 수련대회는 원기59년(1974)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회 모임을 가진 아래 격년제로 실시되어 왔다. 이 수련대회는 실질적으로 원기67년(1982) 7, 8월에 개최되었던 제5차로써 일단 끝을 맺게 되었다.

다음은 제1회 국제수련대회부터 제5회 수련대회까지의 행사 내용이다.

제1회 원기59년(1974). 4. 28~29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의 사명」이란 주제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은 국제 수련대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4월 27일 오후 2시 U.S.C. 핸록 강당에서 있은 제2차 종교대강연회로부터 시작된 수련대회는 28일 나성교당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회와 기념대법회, 그리고 원불교 해외포교의 방향에 대한 좌담회로 진행되었다.

60여명의 韓美교도와 1백50여명의 미국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종교대강연회는 任香根국제신도대회장의 인사와 李共珠교무가 대독한 종법사 치사가 있었으며 마이클 헤넌(변호사)씨와 틱 티넌(국제 선학원장), 존 헤라로(로스앤젤레스 시장대리)씨의 축사가 있었다.

다음은 4명의 초청인사의 강연이 시작되었는데「세계평화와 종교인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朴將植교무(원불교서울사무소장)가 강연했으며,「세계평화와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마이어 존슨박사(캘리포니아대학 교수)가「세계평화와 기독교인의 사명」에 대하여 김하태박사(휠티어대학 교수)가「세계평화와 원불교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全八根교무(원광대 사범대학장)가 각각 강연했다. 또한 韓美교도들은 시

카고 교당을 방문하여 법회도 보았으며 나성교당에서는 월 1회 샌프란시스코에 출장법회를 보기도 했다(원불교신보 120호).

제2회 원기61년(1976) 8. 8

8월 8일부터 美國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는 제2회 국제 수련대회 참가단 10명이 8월 4일 渡美하였다(원불교신보 170호).

제3회 원기63년(1978) 10. 28~11. 16

제3차 원불교 국제수련대회가 10월 28일~11월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다. 전팔근교무의 인솔, 국내대표로 참석한 송인천(청주)부회장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교 감상담을, 박보영(숭신여고 교장, 원남)교도는 뉴욕교당주최 대법회에서 감상담을 발표하였다(원불교신보 223호).

제4회 원기65년(1980) 7. 26~8. 19

전팔근교무(해외교화교감, 원광대 대학원장)는 제4차 국제수련대회를 위하여 7월 26일 向美하여 8월 19일 귀국했다.

전팔근교무는 대회를 마치고 미주교화 현황을 둘러보고 귀국길에 자유중국에 잠시 들려 본교 교화 전망에 대한 현지상황을 살피고 귀국했다(원불교신보 261호).

제5회 원기67년(1982) 7. 21~8. 15

제5차 원불교 국제수련대회가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동남아·유럽·미국 등지에서 개최됐다.

全八根(국제부장)·李廣淨(문화부장)·張仁中교무를 비롯 재가교도 14명 등 17명의 일행은 동남아와 유럽 각국의 종교계와 문화계를 탐방하고 미국내 교당을 순례하며 수련대회를 가졌다.

금년 수련대회는 한미수교 1백주년을 기념하여 미국내 교당들이 참여하는 수련대회로써 민간외교에도 한 몫을 담당했다.

특히 제3차 아세아종교자 평화회의(ACRP)를 원기71년(1986)에 한국에서 개최키로 유치한데 대한 준비과정으로써 이번 수련대회의 의의가 크다(원불교신보 325호).

2. 宗教問題研究所

《종교문제연구소》는 원광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써 원기52년(1967) 3월1일에 현 연구소장 유기현(병덕)교무를 중심으로 발족되었다.

설립목적은 한국을 위시한 동남아 및 세계 각 민족의 신앙형태, 종교사상에 관한 제반 사회문제를 조사연구 함으로써 인류생활의 건전한 이념과 사상을 제시하여 생활지표를 모색하는데 있다.

사업목적은 1) 한국 및 동남아시아, 세계의 종교를 조사연구하며 2) 도서와 정기간행물을 발간함으로써 이들 연구결과를 집성하며 3) 학술회의 개최에 의해 종교사상 및 문화를 교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업적으로써는 대체로 『한국 신흥종교의 유사종교 규정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한·중·일 삼국 신종교 실태 비교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으며, 한국내외의 신흥종교 실태 등 각종 연구조사와 『백과사전』의 종교편 집필, 『원불교사전』 편집간행 등 종교사상의 정립과 원불교학 형성에 공헌하여 왔다. 한편 〈한·일불교학술회의〉를 중심으로 한·일학술문화 교류에 기여한 점과 제12집까지 꾸준히 발간해온 연구지 『한국종교』는 이러한 종교문제연구소의 활동을 총망라하고 있다.

가. 역대임원 명단

번호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소 장	柳基現(炳德)	男	1930. 9. 2	52~	
	이 사	金正勇(三龍)	〃	1923. 11. 1	52~	
	〃	韓正圓(基斗)	〃	1933. 8. 30	52~	
	〃	宋天恩(天恩)	〃	1935. 6. 9	52~	
	간 사	金慧奉(貞漢)	女	1947. 3. 19	52~55	
	연구위원	金正勇(三龍)	男	1930. 9. 2	54~56	
	〃	全八根(八根)	女	1927. 3. 2	54~56	
	〃	韓正圓(基斗)	男	1933. 8. 30	54~	
	〃	宋天恩(天恩)	〃	1935. 6. 9	〃	
	〃	韓正釋(鍾萬)	〃	1932. 1. 11	〃	
	〃	河一誠(載昌)	〃	1938. 2. 10	〃	
	〃	金道隆(杌坤)	〃	1933. 11. 11	〃	재 가
	〃	金大鉉(大鉉)	〃	1938. 8. 30	54~56	대만주재
	〃	鄭維誠(奉吉)	〃	1936. 5. 20	54~	미국주재
	〃	鄭道天	〃		54~56	홍콩주재
	연구조수	金聖徹(洪喆)	〃	1938. 9. 15	54~56	
	〃	李運徹(鉉澤)	〃	1939. 2. 8	54~64	
	〃	沈道正(大燮)	〃	1936. 11. 18	54~64	
	〃	徐慶田(昶烈)	〃	1939. 10. 15	54~56	
	〃	李大光(榮植)	〃	1937. 2. 28	54~64	
	〃	金恩俊(俊謙)	〃	1950. 10. 6	54~64	
	〃	朴聖基(薰)	〃	1944. 1. 6	54~64	
	연구위원	徐慶田(昶烈)	〃	1939. 10. 15	57~	
	〃	白智明(承熙)	女		57~	
	연구조수	成仁鍾(仁鍾)	男	1944. 8. 6	57~64	
	〃	羅道國(哲鎬)	〃	1945. 4. 27	57~64	
	〃	金慧奉(貞漢)	女	1947. 3. 19	57~64	

	연구조수	成正在(正在)	女	1936. 7. 3	57~64	
	간 사	이강대	男		71~72	재 가
	〃	최홍섭	〃		72~	〃
	연구위원	金道宗(道宗)	〃	1953. 12. 8	〃	
	〃	金聖觀(聖觀)	〃	1948. 7. 12	〃	
	〃	金成薰(成長)	〃	1947. 6. 18	〃	
	〃	申明局(淳鐵)	〃	1951. 1. 13	〃	
	연 구 원	金慧光(貴聲)	〃	1951. 11. 18	〃	
	〃	양주인	〃		〃	재 가
	연구조수	金聖澤(永斗)	男	1943. 7. 3	57~64	
	간 사	金 玄(奉眞)	〃	1945. 10. 15	57~58	
	〃	梁賢秀(銀容)	〃	1947. 8. 19	58~60	
	〃	朴光秀(相權)	〃	1948. 5. 26	60~62	
	연구위원	金聖徹(洪喆)	〃	1938. 9. 15	60~	
	간 사	金基圓(洛必)	〃	1949. 10. 16	62~64	
	연구위원	金大鉉(大鉉)	〃	1938. 8. 30	64~	
	〃	洪 (潤植)	〃		〃	재 가
	〃	金亨徹(順任)	女	1937. 12. 20	〃	
	〃	梁賢秀(銀容)	男	1947. 8. 19	〃	
	연구조수	朴光秀(相權)	〃	1948. 5. 26	64~67	
	〃	許光永(宗奎)	〃	1951. 5. 5	64~	
	간 사	成時鍾(時鍾)	〃	1952. 4. 14	64~	
	연구위원	金正勇(三龍)	〃	1923. 11. 1	67~	
	〃	이 (숭엽)	〃		〃	재 가
	〃	李運徹(鉉澤)	〃	1939. 2. 8	〃	
	〃	金聖澤(永斗)	〃	1943. 7. 3	〃	
	〃	朴光秀(相權)	〃	1948. 5. 26	〃	
	〃	魯大薰(權用)	〃	1945. 11. 7	〃	
	〃	金基圓(洛必)	〃	1949. 10. 16	〃	
	간 사	河常義(正南)	女	1955. 6. 26	67~69	
	〃	朴光秀(相權)	男	1943. 7. 3	69~	
	연구위원	鄭玄仁(舜日)	〃	1953. 1. 9	71~	
	연구조수	柳聖泰(聖泰)	〃	1957. 3. 18	〃	
	〃	金仁宗(仁宗)	〃	1958. 9. 6	〃	
	〃	조용헌	〃		〃	재 가

나. 전문도서 보유 현황

- 외국학술지 : 30종, 500권
- 국내학술지 : 50종, 700권
- 단 행 본 : 1,800권
- 총 계 : 3,000권

다. 정기간행물 『한국종교』 발간 현황

간행물명	발간년월일	발행면수	수록논문수	지 원 액	지 원 처
제 1 집	1971. 12	151	5		소장자비출판
제 2 집	1975. 7	176	20		소장자비출판
제 3 집	1976. 8	192	14		소장자비출판
제4·5집	1980. 6	192	25		소장자비출판
제 6 집	1981. 2	181	13	100만원	문 교 부
제 7 집	1982. 5	238	8		소장자비출판
제 8 집	1983. 12	361	18	150만원	문 교 부
제 9 집	1984. 9	211	12		소장자비출판
제10집	1985. 10	290	9		소장자비출판
제11·12집	1987. 12	330	21	50만원	원대출판국

라. 국제교류 현황 및 학술회의

〈국제교류 현황〉

일본 : 京都 불교대학 불교문화 연구소(한·일불교 학술회의, 한·일 불교문화 교류연구)

미국 : Stony Brook대학 세계종교 연구소(세계종교 정보자료 교환, 동양종교와의 비교)

중국 : 문화대학 한국학 연구소(한·중문화의 교류관계 연구)

〈한·일불교 학술회의〉

학술회의명	개 최 일 시	참석자수	발표과제수	지원처	주 최 장 소
제 1 회	58(1973) 5. 11~15		7	교 비	원광대학교(한국)
제 2 회	59(1974) 6. 1~2		12	교 비	경도불교대학(일본)
제 3 회	60(1975) 11. 25~26		10	교 비	한 국
제 4 회	61(1976) 11. 27~28		8	교 비	일 본
제 5 회	62(1977) 7. 1~3		7	교 비	한 국

제 6 회	63(1978) 5. 27~28		7	교 비	일 본
제 7 회	65(1980) 11. 4~5		10	교 비	한 국
제 8 회	67(1982) 5. 29~30		10	교 비	일 본
제 9 회	69(1984) 5. 19~20		11	교 비	한 국
제10회	71(1986) 5. 31~6.1		13	교 비	일 본

제10회 이후로는 원불교 사상연구원으로 이전 개최함.

마. 종교조사 연구활동

- 52(1967)－유병덕 :「계룡산하 종교집단체와 모악산 종교집단체의 비교연구」(문교부 보조)
- 53(1968)－유병덕 :「한국 신흥종교의 유사종교 규정에 관한 연구」(문교부 보조)
- 54(1969)－유병덕외 :「신흥유사종교 실태조사」(문공부 보조)
- 58(1973)－유병덕외 :『세계대백과사전』종교편 조사집필(태극출판사)
- 65(1980)－유병덕외 :『한국백과사전』종교 철학편 조사 집필(한국정신문화 연구원)
- 70(1985)－유병덕, 김홍철외 :「한국신흥종교 실태조사」(문교부)

바. 편집 출판활동

58(1973) 5. 『한국종교개관(한국종교대계1)』김태곤, 이기영, 유승국, 정진국, 윤성범, 최동희, 문상희, 유병덕 공저

58(1973) 6. 『원불교(한국종교대계4)』송천은, 유병덕, 한종만, 한기두, 김삼룡, 김팔곤 공저

59(1974) 5. 『한국신흥종교(한국종교대계8)』유병덕 저

59(1974) 8. 『한국불교(한국종교대계3)』한기두, 홍윤식 공저

59(1974) 11. 『원불교사전』박광전, 박장식, 이공주 감수. 송천은, 유병덕, 한기두, 한종만 편집. 김법종외 40명 집필

61(1976) 9. 『천도교(한국종교대계7)』최동희, 김용천 공저

69(1984) 11. 『포광 김영수박사전집 한국불교사상논고』(권1－불교문화사상사, 권2－연구논문, 권3－일반논문, 권4－국역불전, 부록) 유병덕, 송천은, 한종만, 김홍철, 양은용 편

70(1985) 『한국신종교 실태조사 보고서』공저, 한국종교학회.
『한국민중종교 사상론』편저, 시인사

71(1986) 『전환기의 한국종교』공저, 집문당

71(1986) 『종교철학』감역, 원광대출판국

71(1986) 『원불교와 한국사회』(개정신판), 시인사
72(1987) 『한국신흥종교』(개정신판), 시인사
72(1987) 『동학 천도교』 편저, 시인사

사. 기타 연구실적 현황

1) 미래를 바라보는 학술회의

72(1987) 4. 15 제1차 발표회, 주제 : 〈미래사회와 종교〉
발표자 : 김재백－과학의 오늘과 내일
홍윤식－미래사회의 역사적 조명
유병덕－미래사회에 있어 종교의 역할

72(1987) 6. 11 제2차 발표회, 주제 : 〈현대사회와 종교〉
발표자 : 홍대표－문학과 종교
김병국－매스컴과 종교
유기수－과학과 종교대립과 상보의 과학사상

2) 외래교수 초빙강좌

55(1970) 6. 25 文相熙박사(연세대 신학대학교수)－한국신흥종교와 원불교
60(1975) 6. 10 前田惠學박사(일본 애지학원대학교수)－동남아 종교의 현상
61(1976) 7. 15 柳川啓一박사(일본 동경대교수)－한국종교와 일본의 종교

아. 한국종교 발간

• 제1집 원기56년(1971) 12.

창간사 ····· 柳炳德
정역사상의 연구 ····· 柳南相
성기신앙의 연구 ····· 金泰坤
한국선사상에 있어서 2종선과 3종선의 논쟁점고찰 ····· 韓基斗
원불교 교리의 형성과정과 그 기본성격 ··· 韓鍾萬
만남의 철학 ····· 金杌坤
<자료편>
한국신흥종교<1> ····· 柳炳德
① 갱정유도(일심교)
② 미륵불교(미륵불 영원회)
<부 록>
연혁 및 정관

제2집 원기60년(1975) 6

제1편 종교연구

한국유학의 특징 ····· 柳 正 東

제2편 한·일 불교학 학술회의(제1회)

취지문 ····· 대회장 柳 炳 德

〈주제발표〉

백제의 불교와 일본 ····· 趙 明 基

한국 전통불교의 성격 ····· 李 箕 永

근대 한국불교의 실학적 경향 ····· 韓 基 斗

신라불교와 일본불교와의 교류 ····· 惠谷隆戒

한·일 서민불교의 비교연구에 대하여 ··· 牧田諦亮

〈불교사상강연〉

불교교화의 현대적 방향 ····· 惠谷隆戒

불교의 세계적 동향 ····· 牧田諦亮

원불교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 柳 炳 德

〈종합토론〉

불교의 현대화 방향 ····· 사회 宋 天 恩

제3편 한·일 불교학 학술회의(제2회)

취지문 ····· 대회장 坪井俊映

〈불교사상강연〉

아세아에 있어서 한국불교의 위치 ···· 中 村 元

〈주제발표 및 연구발표〉

한국불교의 역사적 반성 ····· 韓 鍾 萬

불교교화의 현대적 방향 ····· 宋 天 恩

선과 불교의 현대적 방향 ····· 韓 基 斗

원불교에서 본 불교의 현대화 ····· 柳 炳 德

의례면으로 본 불교의 현대화 ····· 洪 潤 植

일본불교교단의 현대화에 관하여 ···· 水谷幸正

정토교의 현대화에 관하여 ····· 藤吉慈海

조당집에 관하여 ····· 柳田聖山

삼론종·섭론종의 전래에 관하여 ····· 中井眞孝

〈종합토론〉

불교의 현대화 방향 ····· 사회 牧田諦亮

제4편 한국신흥종교 자료〈2〉

대한불교 미륵종 ····· 金 洪 喆

〈부록〉 종교문제연구소 동정

• 제3집 원기61년(1976) 9

개항과 신교자유문제 ····· 柳 洪 烈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 ····· 閔 庚 培

한국불교의 특성 ····· 韓 基 斗

이조초·중기 성리학과 이조후기 실학의 관계고찰 ····· 金 杞 坤

한국신흥종교자료〈3〉

동도교 법종교회 ····· 金 洪 喆

동도교 진화교회 ····· 李 鉉 澤

〈학술발표〉

—제3회 한·일불교학 학술회의—

중도의 해명 ····· 金 斗 憲

불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 ····· 宋 天 恩

한국 불교문학에 있어서의 인간상 ····· 李 相 斐

한국인의 관음신앙과 영험전 ····· 安 啓 賢

각과 실존의 문제 ····· 柳 炳 德

일본 정토교에 있어서의 인간관 ····· 坪井俊映

불교의 여성관 ····· 香川孝雄

일본에 있어서 遁世者와 그 인간상 ····· 伊藤唯眞

불교에서 본 인간 ····· 高橋弘次

長門尼僧考 ····· 二宮啓任

• 제4·5집 원기65년(1980) 6

고대한일 불교문화교류에 관한 연구(1)· 柳 炳 德

일원상의 진리와 존재신비주의 ····· 邊 鮮 煥

水雲·甑山·少太山의 儒·佛·仙의 삼교관· 金 洪 喆

한국신흥종교자료〈4〉

眞東學濟和敎 ····· 李 鉉 澤

〈학술발표〉

—제4회 한·일불교학 학술회의—

일본민간에 있어서 蓋蘭盆의 시음습속에 대하여 …… 平 祐 史
한국불교와 민간신앙 …… 洪 潤 植
무속에 나타난 불교의 영향 …… 李 相 斐
일본민간신앙에 있어서 백만편염불 …… 伊藤眞徹
麗代風水圖讖思想에 대한 고찰 …… 趙 東 元
석탑묘불단합체 …… 竹田聽洲
무속과 불교와의 관계 …… 金 泰 坤
한역불교권에 있어서 父母恩重經의 유전 …… 牧田諦亮

— 제5회 한·일불교학 학술회의—

일본에 있어서 관음신앙의 제형태 …… 成田俊治
정토종의 신앙형태 …… 藤堂恭俊
한국불교의 신앙형태 …… 韓 基 斗
聖德太子 신앙의 일형태 …… 成田貞寬
민간에서 행해진 칭명염불의 제형태 …… 伊藤貞徹
일본에 있어서 염불신앙과 민간신앙 …… 平 祐 史
원불교의 신앙형태 …… 韓 鍾 萬

—제6회 한·일불교학 학술회의—

당마사를 감싼 종교민속 …… 伊藤唯眞
한국불교와 민간신앙 …… 柳 炳 德
조계선의 신앙관 …… 韓 基 斗
뽁구리 신앙의 실태 …… 芝崎眞悟
일본염불신앙형태 …… 深具玆孝
원불교의 四恩信仰 …… 宋 天 恩
원불교의 신앙문에 나타난 여성관 …… 全 八 根

• 제6집 원기66년(1981) 2

水雲·甑山·少太山의 비교연구 …… 金 洪 喆
楞伽山 月明庵 實相寺攷 …… 金 永 斗
요가와 서양(Yoga und Der Westen) …… C.G.Jung著 金 聖 觀譯

한국신흥종교자료〈5〉

大韓佛教龍華宗 …… 李 鉉 澤

〈학술발표〉 제7회 한·일불교학 학술회의

도교와 불교 …… 森三樹三郎
한국문화사상의 불교와 도교 …… 李 箕 永
한국인의 불교신앙과 「守庚申」 …… 安 啓 賢
天台顗의와 도교 …… 小玉大圓
조선조초기의 노·불융합론 …… 韓 鍾 萬
大江匡房과 「本朝神仙傳」에 대하여 …… 西田圓我
도덕경과 범어역의 제문제 …… 卞 圭 龍
한국도가철학에 있어서의 학적 성립의 始端 …… 宋 恒 龍
淨土教와 神仙思想 …… 池見澄隆
한국칠성신앙을 통해본 도·불 교섭관계 …… 徐 慶 田

종합토론

• 제7집 원기67년(1982) 5

正易에 대하여 …… 李 正 浩
단군설화의 기본과제 …… 李 乙 浩
菩提達磨의 二入四行論 연구 …… 金 永 斗
高麗道教의 淨事色考 …… 梁 銀 容
민족사상 맥락에서 본 원불교사상 …… 朴 相 權
長恨歌攷 …… 朴 順 浩
기도의 본질 …… Friedrich Heiler 金洛必譯

Won Buddhism as a Mahayana Buddhism …… Ryu, Byung-Duk

한국신흥종교 자료〈6〉

世界一主平和國 …… 李 鉉 澤

〈부 록〉

長恨歌라〈未發表 佛教歌辭〉 …… 朴 順 浩 〈所藏本〉

· 제8집 원기68년(1983) 12

日本佛教의 現代化 方向 …… 韓 鍾 萬
『華嚴原人論』 研究 …… 鄭 舜 日
「物心關係」에 對한 佛教唯識學과 分析心理學의 견해 비고 …… 金 聖 觀
正易 后天에서 본 乾卦·坤卦論 …… 李 正 浩
霞谷哲學 研究 …… 金 順 任
愛國啓蒙運動期의 儒教改革思想 運動 … 申 淳 鐵
韓國新興宗教 資料〈7〉
甑山教 …… 李 鉉 澤
〈학술발표〉 제8회 韓·日佛教學 學術會議
－基調講演－
日本における道教思想の傳流 概要…… 村山修一
韓國精神史에 있어서 道教의 特徵 …… 柳 炳 德
－研究發表－
高麗時代의 道教와 佛教 …… 梁 銀 容
朝鮮朝 初期 金時習의 佛教와 道教 受容 ……韓 鍾 萬
「海東傳道錄」을 통해본 道教의 哲學的 性格 …… 李 楠 永
韓國新宗教에 나타난 道·佛交涉 …… 金 洪 喆
韓國道教についての一私見 …… 安居香山
日本における長生思想の民間普及について …… 平 祐 史
談論道教的 教團…… 釋 淨 心
臺灣「拜拜」之原理 …… 楊 白 衣
〈부록〉
睡隱 姜沆의 四書五經 親筆 跋文에 대하여 …… 韓 鍾 萬
姜沆의 日本에 남긴 儒書 袖珍本 …… 日本皇室圖書館內閣文庫所藏

· 제9집 원기69년(1984) 9

一乎一夫論 …… 李 正 浩
韓國歷史上에 나타난 理想社會 建設運動 …… 洪 潤 植
「海東傳道錄」에 나타난 道教思想 …… 金 洛 必
〈學術發表〉 제9회 韓·日佛教學 學術會議
開會辭…… 所長 柳 炳 德
歡迎辭…… 總長 朴 吉 眞
－主題發表－
佛教と社會倫理 …… 坪井俊映
－日本佛教を 中心として－
佛教와 社會倫理 …… 韓 基 斗
－韓國佛教를 中心으로－
－研究發表－
初期 海東華嚴의 倫理…… 金 知 見
法然淨土教の 倫理性…… 高橋弘次
新羅佛教의 戒律과 社會倫理 …… 蔡 印 幻
都市化社會における淨土教 倫理…… 清 水 澄
鈴木正三にみる 佛教と 世俗倫理…… 池見澄隆
韓國近代佛教와 社會倫理…… 韓 鍾 萬
－特別發表
祖堂集과 圓相集에 대하여……閔 泳 珪

· 제10집 원기70년(1985) 10

韓國文化史上의 佛教와 道教 …… 李 箕 永
朝鮮朝 初期의 老·佛融合論 …… 韓 鍾 萬
韓國七星信仰을 通해 본 道·佛交涉關係 ……徐 慶 田
韓國道家哲學에 있어서의 哲學成立의 始端 …… 宋 恒 龍
『道德經』과 梵語譯의 諸問題 …… 卞 圭 龍
高麗道教의 歷史資料 …… 梁 銀 容
崔致遠의 宗教觀 …… 柳 聖 泰
普天教 初期教團의 布教에 關한 研究 … 洪 凡 草
阿賴耶識의 相續性 …… 金 聖 觀
韓國新興宗教資料〈8〉
順天道 法文派 …… 金 洪 喆

· 제11, 12집 원기72년(1987) 12. 10

韓國 新宗教 思想研究 …… 金 洪 喆
圓佛教 思想과 융思想의 精神史的 背景…金 聖 觀
Human Nature and Morality— *in won Buddhism*
…… *Bong-Kil Chung*
外來宗教의 受容問題 …… 金 善 陽
日韓佛教文化交流についての諸問題…… 坪井俊映
思想史의 方法論에 대한 諸問題 …… 洪 潤 植
崔致遠의 韓民族觀 …… 柳 聖 泰
韓國新宗教 資料〈9〉
甑山系 三德教 …… 洪 凡 草
天眞教 …… 金 永 修
〈學術發表〉 제10회 韓·日佛教學 學術會議
はじめに …… 坪井俊映
—主題發表—
日本佛教の倫理思想 …… 柳田聖山
佛教와 社會倫理 …… 宋 天 恩
性理學의 理氣論과 道教의 性命雙修論
…… 金 洛 必
Contributions of Eastern Philosophy to Western Science in the Modern World …… *Eduard R. Canda*
—研究發表—
明惠上人と世俗倫理 …… 成田俊治
元天錫의 三教 一理論에 대하여 …… 梁 銀 容
社會倫理與佛教 …… 成 一
圓佛教의 禮法革新과 社會倫理 …… 李 鉉 澤
法然と倫理 …… 藤本淨彦
知訥의 禪教會通思想 …… 韓 基 斗
インド佛教の倫理 ……田中典彦
佛教倫理的 特色 …… 淨 心
韓國僧團과 社會倫理 …… 洪 潤 植
附錄—研究所日誌

3. 圓佛教思想研究院

원불교사상연구원은 원불교 사상을 바르고 넓고 깊게 연구함으로써 원불교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원기59년(1974) 7월 4일 원광대학 부설연구소로 설립되었다. 원불교의 교학과 사관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원광대학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본 연구원은 초대원장에 원광대총장인 박광전(길진)교무가 선임되고, 부원장 김정용(삼룡), 사무장 한정원(기두), 간사 김성택(영두)교무 그리고 명예위원 이공주교무 등 4명, 상임연구위원으로 김도용(팔곤, 철학과)교수외 8명의 연구위원으로 출범하였다. 정기적으로 월례발표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원기72년(1987)말 현재 50차의 발표를 가졌으며 사상총발표회를 7회까지 개최하였고 연구지로 『圓佛教思想』이 11집까지 발간되었으며 기관지로는 『院報』를 계속 발행하면서 원불교 사상의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역대임원〉

대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원 장	朴光田(吉眞)	男	1915. 3. 23	59. 7. 4~71. 12. 3	원광대총장
	부 원 장	金正勇(三龍)	〃	1925. 11. 1	59. 7. 4~71. 12. 3	
	사 무 장	韓正圓(基斗)	〃	1933. 8. 30	59. 7. 4~71. 12. 3	
	간 사	金聖澤(永斗)	〃	1943. 7. 3	59. 7. 4~67.	

	명 예 위 원	李共珠(慶子)	女	1897. 12. 23		
	〃	朴將植(天植)	男	1911. 1. 9		
	〃	金勤修(益洙)	〃	1922. 6. 9		
	명 예 위 원	丁光薰(炳球)	男	1917. 8. 30		
	상임연구위원	柳基現(炳德)	〃	1930. 9. 2	59. 7. 4~	
	〃	全八根(八根)	女	1927. 3. 20	〃	
	제1연구실					
	상임연구위원	韓正圓(基斗)	男	1933. 8. 30	59. 7. 4~70.	
	〃	金道隆(机坤)	〃	1933. 11. 11	〃	철 학 과
	〃	河一誠(在昌)	〃	1938. 2. 10	〃	〃
	제2연구실					
	상임연구위원	宋天恩(天恩)	〃	1935. 6. 9	〃	
	〃	徐慶田(昶烈)	〃	1939. 10. 15	〃	
	제3연구실					
	상임연구위원	韓正釋(鍾萬)	〃	1932. 1. 11	〃	
	〃	金聖徹(洪喆)	〃	1938. 9. 15	〃	
	간 사	鄭玄仁(舜日)	〃	1953. 1. 9	67. ~70.	
	연 구 위 원	金亨徹(順任)	女	1937. 12. 20	67.~	
	〃	金聖澤(永斗)	男	1943. 7. 3	〃	
	〃	李運徹(鉉澤)	〃	1939. 2. 8	〃	
	〃	魯大薰(權用)	〃	1945. 11. 7	〃	
	〃	金基圓(洛必)	〃	1949. 10. 16	〃	
	〃	沈道正(大燮)	〃	1936. 11. 18	〃	
	〃	梁賢秀(銀容)	〃	1947. 8. 19	〃	
	〃	金成薰(成長)	〃	1947. 6. 18	〃	
	〃	朴光秀(相權)	〃	1943. 7. 3	〃	
	간 사	梁賢秀(銀容)	男	1947. 8. 19	70. ~	
	조 교	김 (금란)	女		〃	재 가
	연 구 위 원	柳基現(炳德)	男	1930. 9. 2	〃	
	〃	宋天恩(天恩)	〃	1935. 6. 9	〃	
	〃	韓正釋(鍾萬)	〃	1932. 1. 11	〃	
	〃	徐慶田(昶烈)	〃	1939. 10. 15	〃	
	〃	全八根(八根)	女	1927. 3. 20	〃	철 학 과
	〃	金聖徹(洪喆)	男	1938. 9. 15	〃	
	〃	金道隆(机坤)	〃	1933. 11. 11	〃	
	〃	鄭玄仁(舜日)	〃	1953. 1. 9	〃	
	원 장	金正勇(三龍)	〃	1925. 11. 1	71. 12. 5~	
	부 원 장	韓正圓(基斗)	〃	1933. 8. 30	〃	
	사 무 장	梁賢秀(銀容)	〃	1947. 8. 19	〃	
	간 사	柳聖泰(聖泰)	〃	1957. 3. 18	〃	
	전임연구원	〃	〃	〃	〃	
	〃	최 (재규)	〃		〃	재 가

가. 월례연구발표회

제1차 원기59년(1974) 11. 14	宋天恩·韓鍾萬 : 圓佛敎와 佛敎의 關係
제2차 원기60년(1975) 3. 17	李空田 : 圓佛敎敎史 諮問版의 경위
	柳炳德 : 歷史意識과 史觀定立의 方向
	金洪喆 : 敎史諮問版의 問題點
제3차 원기60년(1975) 4. 3	토론회 : 敎史諮問版에 관하여
제4차 원기60년(1975) 5. 28	韓基斗·徐慶田 : 圓佛敎學의 硏究方法
제5차 원기60년(1975) 6. 26	柳炳德 : 圓佛敎學의 硏究方法
제6차 원기60년(1975) 10. 13	金杌坤 : 專務出身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제7차 원기60년(1975) 12. 5	朴沆植 : 내가 본 圓佛敎
	洪潤植 : 開敎標語에서 본 圓佛敎 歷史意識
제8차 원기61년(1976) 4. 7	韓基斗 : 佛敎革新論이 주는 意味
	徐慶田 : 開敎標語가 주는 意味
제9차 원기61년(1976) 5. 3	金洪喆 : 韓末社會狀況의 精神史的 考察
제10차 원기61년(1976) 6. 16	朴東賢 : 無時禪과 腰骨竪立의 問題
	金杌坤 : 圓佛敎의 新生活 운동
제11차 원기61년(1976) 11. 6	徐慶田 : 少太山의 새 生活 運動
	李普圓·宋天恩 : 一圓相 信仰
제12차 원기61년(1976) 11. 24	韓鍾萬 : 圓佛敎의 信仰觀
	金杌坤 : 一圓相과 四恩의 關係
제13차 원기62년(1977) 4. 11	宋天恩 : 宗敎史에서 본 諸宗敎混合現狀
제14차 원기62년(1977) 12. 5	宋天恩 : Whitehead의 宗敎觀
제15차 원기63년(1978) 5. 22	宋天恩 : 科學과 宗敎의 調和方法論
	金永斗 : 圓佛敎 自然觀 硏究
	李和澤 : 圓佛敎 訓練法 硏究
	金成長 : 圓佛敎의 宗敎機能 硏究
제16차 원기63년(1978) 7. 4	宋天恩 : 圓佛敎 恩思想의 本質
제17차 원기63년(1978) 10. 13	金杌坤 : 現象學과 禪의 만남
	徐慶田 : 敎化와 敎育 比較
제18차 원기65년(1980) 4. 30	金洪喆 : 開化期 韓國宗敎에 나타난 後天開闢思想
제19차 원기65년(1980) 12. 13	李和澤 : 訓練平價의 問題
	金成長 : 靑年敎化의 活性化 方案
제20차 원기66년(1981) 5. 17	徐慶田 : 一圓相象徵과 諸宗敎象徵의 比較 硏究
	金聖觀 : Jung의 分析心理學의 自己實現과 圓佛敎의 自性回復에 관한 比較
제21차 원기66년(1981) 12. 14	辛日敎 : 開敎動機의 새로운 認識
제22차 원기67년(1982) 4. 7	金永斗 : 二入四行論과 圓佛敎 禪思想

제23차 원기67년(1982) 5. 12 金道宗 : 平等問題에 대한 視角
제24차 원기67년(1982) 9. 27 宋天恩 : 一圓相 信仰의 諸問題
제25차 원기67년(1982) 11. 1 柳炳德 : 圓佛教教團과 世界에 당면된 諸問題
제26차 원기68년(1983) 3. 14 朴龍德 : 『曺沃政百年史』考
제27차 원기68년(1983) 4. 18 申淳鐵 : 鼎山宗師의 儒學과 公山
제28차 원기68년(1983) 5. 16 金洛必 : 修心正經의 道家的 性格
제29차 원기68년(1983) 9. 12 徐慶田 : 創立精神論의 再考
제30차 원기68년(1983) 10. 17 朴相權 : 教學研究의 價値考察
제31차 원기68년(1983) 11. 14 梁銀容 : Prajnaparamit hrdaya sutra의 漢譯問題
제32차 원기69년(1984) 4. 2 金聖觀 : 物心關係에 대한 佛教唯識學과 分析心理學의 견해 비교
제33차 원기70년(1985) 4. 2 宋天恩 : 現代와 圓佛教倫理
제34차 원기70년(1985) 6. 4 원탁토론회 : 聖業奉贊事業의 理念定立
제35차 원기70년(1985) 9. 24 金永斗 : 圓佛教의 頓悟·漸修觀
제36차 원기70년(1985) 3. 24 元奭朝 : 社會正義論과 圓佛教의 正義論
제37차 원기71년(1986) 5. 8 한기두 : 유럽의 한국학연구 동향
제38차 원기71년(1986) 6. 16 김홍철 : 원불교와 민족종교
김낙필 : 초기교단에 있어서의 道教사상 수용
제39차 원기71년(1986) 8. 3~4 원불교와 불교
정순일 : 불교와 원불교의 관계정립을 위한 한 제언
김영두 : 소의경전과 教相判釋
노권용 : 불교와 원불교 관계에 있어서 教相문제
양은용 :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규명에 대한 한 제언
제40차 원기71년(1986) 9. 5 한기두 : 원불교학 당면과제
제41차 원기71년(1986) 10. 28 김팔곤 : 원불교의 사회교화 방안
제42차 원기72년(1987) 1. 26 한기두 :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
제43차 원기72년(1987) 4. 3 양은용 : 고려불교의 연구
제44차 원기72년(1987) 4. 21 서경전 : 원불교 교화의 현대적 과제
제45차 원기72년(1987) 5. 13 김성관 : 원불교 심성론의 개념규정에 관하여
제46차 원기72년(1987) 5. 29 박윤철 : 초기교단의 제문제
제47차 원기72년(1987) 6. 18 정성숙 : 대종사 법설 청문담
제48차 원기72년(1987) 9. 9 원석조 : 「종교와 사회계층」-막스 베버를 중심으로
제49차 원기72년(1987) 10. 20 박종주 : 「국가와 종교」-정교동심의 현실적 의미
제50차 원기72년(1987) 11. 26 박용덕 : 훈산 이춘풍선생의 산중풍경에 관한 고찰

나. 학술회의

제1회 韓國의 人本思想 : 원기62년(1977) 6. 4

- 柳承國 : 韓國固有思想에 나타난 人本思想
- 李箕永 : 韓國佛教의 人本思想

- 柳炳德 : 韓國佛教의 教育論的 人本思想
- 尹絲淳 : 性理學에서 본 人本思想
- 李乙浩 : 實學에서 본 人本思想
- 崔東熙 : 天道教에서 본 人本思想
- 宋天恩 : 圓佛教에 나타난 人本思想

제2회 韓國의 傳統思想과 圓佛教 : 원기65년(1980) 10. 11

- 柳承國 : 儒教思想과 圓佛教
- 金知見 : 佛教思想과 圓佛教
- 韓昇助 : 近世思想과 圓佛教
- 韓鍾萬 : 圓佛教의 基本思想

제3회 科學文明과 圓佛教 : 원기66년(1981) 7. 18

- 鄭奉吉 : 科學文明과 圓佛教道德
- 高允錫 : 現代物理學과 圓佛教
- 吳熙弼 : 未來의 科學과 圓佛教
- 金容九 : 東西思想과 圓佛教

제4회 開化思想과 圓佛教 : 원기67년(1982) 11. 27

- 李鉉宗 : 開化期思想界의 推移
- 柳炳德 : 開化期 日帝時의 民衆宗教運動
- 姜吉遠 : 日帝下의 經濟自立運動의 一研究
- 韓基斗 : 1920年代 圓佛教의 새 文明世界 建設運動

제5회 實學思想과 圓佛教 : 원기68년(1983) 12. 22

- 李乙浩 : 圓佛教教理上의 實學的 課題
- 尹絲淳 : 濟度意識의 實學的 變容
- 宋天恩 : 圓佛教教典 標語上의 實學的 性格

제6회 현대 한국사회와 종교의 역할 : 원기71년(1986) 5. 10

- 李箕永 : 現代 韓國社會와 佛教의 役割
- 尹絲淳 : 現代 韓國社會와 儒教의 役割
- 邊鮮煥 : 現代 韓國社會와 基督教의 役割
- 韓鍾萬 : 現代 韓國社會와 圓佛教의 役割

제7회 원불교와 미래사회 : 원기72년(1987) 12. 6

- 柳炳德 : 少太山大宗師가 본 韓國未來像
- 金在百 : 科學時代와 圓佛教
- 徐慶田 : 未來社會에 있어서 圓佛教의 役割

다. 사상총발표회

제1회 원기67년(1982) 2. 2~3

- 辛明教 : 甑山의 解冤思想과 少大山의 報恩思想 比較考察
- 金鎔貞 : 現代科學의 宇宙論과 圓佛教의 一圓相
- 庚基洙 : 自然(哲學)과 圓佛教
- 金洛必 : 圓佛教 事理概念의 特性
- 金順任 : 朱·王의 格致說과 事理研究
- 金永斗 : 圓佛教 丹田住禪法의 特徵攷
- 魯權用 : 起信論의 一心三大思想을 通해 본 圓佛教의 一圓相信仰小考
- 金三龍 : 韓國彌勒信仰의 研究
- 韓基斗 : 圓佛教 修行上에 나타난 牧牛
- 金成長 : 信仰行爲의 儀式化 問題
- 徐慶田 : 少太山大宗師의 歷史創造意識과 大衆化意識
- 全八根 : 圓佛教 標語에 對한 一見
- 朴鍾珠 : 圓佛教의 公益觀에 關한 一考察
- 金杌坤 : 四恩倫理의 現代的 意義
- 宋天恩 : 機能主義的 解釋과 圓佛教의 恩觀
- 김영기 : 우리는 왜 道德的으로 살아야 하는가?
- 崔元圭 : 六堂의 時調와 一圓相
- 李和澤 : 信仰方法으로서의 四要의 再認識
- 沈大燮 : 四要에 있어서 自由와 平等
- 柳炳德 : 圓佛教信仰의 特徵

제2회 원기68년(1983) 2. 3~4

- 朴吉眞 : 日帝狀況下의 圓佛教
- 徐慶田 : 圓佛教 信仰의 對象 呼稱問題
- 金成長 : 法名授與의 由來와 教徒證 發給에 對한 小考
- 金永斗 : 圓佛教禮法의 特徵과 機能
- 金道宗 : 個體 發生에 대한 考察
- 金永斗 : 圓佛教 開教動機에 대한 社會學的 理解
- 李成澤 : 圓佛教의 豫算構造에 關한 小考
- 金聖觀 : 感應現象에 대한 圓佛教思想과 Jung 心理學의 見解 比較
- 魯權用 : 佛身觀에 關한 小考
- 金順任 : 一圓相 法語의 特徵
- 金三龍 : 韓國의 彌勒思想 硏究
- 朴將植 : 『佛教正典』 편찬의 전말
- 李鉉澤 : 圓佛教 恩思想과 甑山教 報恩相生思想의 比較 考察
- 金洪喆 : 日帝侵略下 圓佛教의 民衆運動에 關한 硏究
- 韓基斗 : 日帝時代 圓佛教의 教化方向
- 朴鍾珠 : 圓佛教의 平等觀
- 李和澤 : 社會 佛供方法으로서의 四要의 再認識
- 金洛必 : 精神槪念의 性格
- 宋天恩 : 圓佛教 丹田住禪의 性格
- 金杞坤 : 圓佛教 倫理思想의 學的 基礎試論 Ⅰ
- 柳炳德 : 三段輪入의 論理와 理·光·力

제3회 원기69년(1984) 2. 8~9

- 李空田 : 『圓佛教教典』 成立의 歷史的 顚末
- 柳炳德 : 圓佛教와 在來佛教
- 鄭舜日 : 『佛祖要經』所收 『四十二章經』의 性格
- 金道宗 : 擬人觀과 原理自體의 世界
- 魯權用 : 四恩의 信仰性 意味에 關한 一考察
- 李鉉澤 : 四恩信仰의 特性 小考
- 李和澤 : 強弱의 構造와 關係 類型
- 金洛必 : 靈氣質論의 思想史的 意義
- 韓基斗 : 鼎山宗師의 思想
- 徐慶田 : 圓佛教 創立精神의 새로운 摸索
- 金成長 : 教理表現 말과 意味傳達 관계 고찰
- 金永斗 : 圓佛教 禮法의 機能主義的 考察
- 金洪喆 : 새마을 運動과 圓佛教 民衆宗教 運動의 相關性 硏究
- 金杞坤 : 圓佛教 倫理思想의 學的 基礎試論 Ⅱ
- 鄭熙彪 : 天台少止觀과 圓佛教 禪法의 比較 考察
- 梁銀容 : 法位等級의 教判的 性格
- 河正男 : 圓佛教 女性學 序說
- 韓鍾萬 : 陰陽相勝과 因果報應 原理와의 關係

제4회 원기70년(1985) 2. 1~2

- 金洪喆 : 圓佛教의 社會倫理
- 李和澤 : 強弱의 變動構造
- 韓鍾萬 : 一圓相信仰章 硏究
- 元奭朝 : 文化遲滯와 精神開闢
- 沈大燮 : 圓佛教 市民像 定立問題
- 金洛必 : 恩思想의 生哲學的 照明
- 柳炳德 : 圓佛教 正義論 硏究
- 梁海寬 : 實踐教學試論
- 趙庸堯 : 三山宗師 『綴字集』에 對하여
- 徐慶田 : 教化와 象徵
- 金成長 : 少太山과 라다크리쉬난의 宗教思想
- 李空田 : 少太山大宗師 聖碑銘에 對하여
- 韓良善 : 圓佛教 兒童教育觀
- 宋天恩 : 一圓相信仰의 諸問題
- 梁銀容 : 默山受筆 『莫問莫說』에 대하여
- 金奉鎭 : 靈山聖地 莊嚴事業에 關한 硏究(Ⅰ)
- 郭桂煥 : 靈山聖地 莊嚴事業에 關한 硏究(Ⅱ)
- 鄭舜日 : 徐大圓의 『愚堂手記』考
- 金三龍 : 圓佛教의 未來觀
- 金順任 : 圓佛教의 無時禪과 王陽明의 事上磨鍊 比較考察
- 金鎬炳 : 鼎山의 救國觀
- 孫仁哲 : 圓佛教 丹田住禪法의 特徵
- 金永斗 : 圓佛教의 頓悟漸修觀

제5회 원기71년(1986) 2. 1~2

- 金机坤 : 宗教聯合運動의 方向摸索
- 韓鍾萬 : 創立精神論
- 孫正允 : 開教半白年 紀念事業
- 金永斗 : 禮法革新과 새 生活運動
- 李 榮 : 教團의 組織制度 變遷史
- 宋天恩 : 圓佛教 出現의 宗教思想的 背景
- 金成長 : 第一代 聖業奉贊事業
- 金仁喆 : 聖業奉贊의 意義와 方向 및 課題
- 金洪喆 : 圓佛教 産業經濟史
- 金鉉澤 : 圓佛教 善惡觀
- 李成澤 : 圓佛教 訓練의 歷史와 그 方向
- 李共珠 : 少太山法門受筆談
- 金洛必 : 鼎山의 生涯와 思想
- 韓基斗 : 佛教革新理論의 再檢討
- 李聖田 : 圓佛教 女性運動史
- 徐慶田 : 圓佛教 解釋學序說
- 魯權用 : 圓佛教 佛身論의 再照明
- 柳炳德 : 少太山 實踐實學
- 沈大燮 : 圓佛教 市民像 定立問題(Ⅱ)
- 朴相權 : 圓佛教 出現의 社會的 背景
- 元奭朝 : 大學生의 宗教意識에 관한 調査研究(Ⅰ)
- 梁銀容 : 大學生의 宗教意識에 관한 調査研究(Ⅱ)

제6회 원기72년(1987) 2. 4~5

- 李鉉澤 : 圓佛教의 儒·佛·仙 三敎 受容의 精神
- 金順任 : 圓佛教의 大同思想 特性 考察
- 金洪喆 : 同源道理의 研究
- 魯權用 : 圓佛教와 佛教 -教主를 中心으로-
- 韓鍾萬 : 圓佛教와 佛教의 關係
- 徐慶田 : 宗教間의 만남과 一圓思想
- 金永斗 : 圓佛教 解釋學에 關한 研究
- 權容甲 : 法身佛信仰의 再照明 -實踐教學의 立場에서-
- 金成長 : 專務出身 理想과 現實에 關한 小考
- 李和澤 : 圓佛教 思想의 民族主義的 接近
- 金榮熙 : 圓佛教의 教化方法에 關한 커뮤니케이션 理論的 考察
- 張夏烈 : 現代家庭의 變動과 圓佛教青少年家庭教育
- 朴南鎭 : 一圓相의 精神修養과 精神治療의 多樣性
- 金聖觀 : 心性과 人間類型 -圓佛教思想과 칼·융사상의 비교-
- 徐 允 : 無我奉公 精神과 Volunteer 활동
- 沈大燮 : 삼학과 사회봉사 -삼학의 사회성 연구-
- 金成天 : 소태산의 상담원리에 대한 서설적 연구
- 梁銀容 : 『근행법』의 교의적 성격
- 金仁喆 : 총부 종합건설계획에 대하여(Ⅰ)
- 郭桂煥 : 총부 종합건설계획에 대하여(Ⅱ)
- 金貴聲 : 默山의 佛法研究會 教育政策 연구
- 柳炳德 : 원불교의 정토사상 수용에 관한 연구
- 朴相權 : 원불교의 계율정신
- 鄭舜日 : 虛空法界의 의미
- 柳聖泰 : 좌선과 坐忘의 연구
- 申淳鐵 : 원불교 역사관 시론
- 朴孟洙 : 소태산의 역사의식
- 韓基斗 : 일원상과 원불교

라. 학술강연회 및 연구발표회

창립기념학술강연회. 원기59년(1974) 7. 4

- 朴吉眞 : 圓佛教와 佛教의 關係
- 田元培 : 내가 본 圓佛教

제1회 硏究發表會 : 少太山의 宗敎觀. 원기61년(1976) 9. 25

- 朴吉眞 : 少太山의 宗敎觀(기조강연)
- 韓基斗 : 少太山의 佛敎觀
- 金洪喆 : 少太山이 본 宗敎의 未來像
- 柳炳德 : 少太山이 본 政治와 宗敎의 相關性

제2회 硏究發表會 : 少太山의 人間像. 원기62년(1977) 10. 8

- 金三龍 : 少太山의 人間像(기조강연)
- 宋天恩 : 求道者로서의 少太山
- 韓鍾萬 : 社會改革者로서의 少太山
- 金杌坤 : 平和實現者로서의 少太山

제3회 硏究發表會 : 圓佛敎가 志向하는 宗敎觀. 원기63년(1978) 4. 16

- 金三龍 : 圓佛敎가 志向하는 宗敎像(기조강연)
- 韓基斗 : 圓佛敎의 基本 眞理
- 宋天恩 : 圓佛敎의 恩의 倫理
- 金勝東 : 圓佛敎의 社會福祉觀

崇山 朴吉眞博士 古稀紀念 學術講演會 : 韓國宗敎의 近代化 方向. 원기69년(1984) 11. 10

- 李箕永 : 佛敎의 立場에서
- 李乙浩 : 儒敎의 立場에서
- 邊鮮煥 : 基督敎의 立場에서
- 韓鍾萬 : 圓佛敎의 立場에서

마. 『원불교사상』의 목차

제1집 원기60년(1975) 12.

- 一圓相 眞理의 相卽性 …… 韓鍾萬
- 圓思想論 …… 柳炳德
- 圓佛敎 思想의 硏究 …… 宋天恩
- 無時禪의 本質 …… 韓基斗
- 圓佛敎 社會改革方案에 關한 硏究 … 金洪喆
- 世界平和建設을 위한 새 倫理의 模索 …… 金杌坤
- 敎化相談論 ……徐慶田

제2집 원기62년(1977) 11.

- 舊韓末社會 狀況硏究 …… 金洪喆
- 一圓相 眞理 小考 …… 金杌坤
- 一圓相 信仰의 歷史的 意義 …… 韓基斗
- 最初法語硏究 …… 韓鍾萬
- 새 生活 運動考 …… 徐慶田
- 圓佛敎 女性觀 ……全八根
- 儀禮面에서 살핀 圓佛敎 性格 …… 洪潤植

제3집 원기64년(1979) 2.

- 圓佛敎 宇宙觀에 關한 硏究 …… 金洪喆
- 圓佛敎 恩思想 考察 …… 金勝東
- 禪宗의 禪思想과 圓佛敎 禪思想(Ⅰ)‥ 金杌坤
- 敎化와 敎育의 比較考察 …… 徐慶田
- 圓佛敎 敎團行政 理念에 關한 一考察 …… 朴鍾珠
- 圓佛敎 自然觀 硏究 …… 金永斗
- 圓佛敎 訓練過程에 關한 硏究 …… 李和澤
- 圓佛敎의 宗敎的 機能考察 …… 金成長

제4집 원기65년(1980) 2.

- 少太山의 人間觀 硏究(Ⅰ) …… 金順任
- 韓國精神史의 脈絡에서 본 圓佛敎 … 韓昇助
- 圓佛敎의 後天開闢 思想 …… 金洪喆
- 圓佛敎의 禪法 考察(Ⅰ) …… 金永斗
- 社會變遷과 敎堂의 機能 …… 徐慶田
- 圓佛敎 倫理와 自然法 …… 李東燁
- 圓佛敎正義論 硏究 …… 李鉉澤
- 圓佛敎의 經濟觀에 대한 小考 …… 趙正濟

제5집 원기66년(1981) 10

- 一圓相 象徵과 諸宗教 象徵의 比較 考察 …… 徐慶田
- 少太山의 人間觀 研究(Ⅱ) …… 金順任
- 禪宗의 禪思想과 圓佛教의 禪思想(Ⅱ) …… 金杌坤

제6집 원기67년(1982) 1.

- 少太山大宗師의 歷史創造意識 …… 徐慶田
- 四恩倫理의 現代的 意義 …… 金杌坤
- 信仰方法으로서의 四要의 再認識 … 李和澤
- 事·理 概念의 구조적 특성 …… 金洛必
- 無時禪法의 研究 …… 韓基斗
- 圓佛教 丹田住禪法의 特徵攷 …… 金永斗

제7집 원기68년(1983) 12

- 圓佛教 信仰의 對象 呼稱問題 …… 徐慶田
- 社會佛供 方法으로서의 四要의 研究 李和澤
- 無時禪의 實際 -牧牛行- …… 韓基斗
- 圓佛教 革新禮法의 特徵 考察 …… 金永斗
- 圓佛教 倫理思想의 學的 定礎 I …… 金杌坤
- 圓佛教 社會福祉觀 …… 沈大燮
- 日帝侵略下 圓佛教의 民衆運動에 關한 研究 …… 金洪喆

제8집 원기69년(1984) 12.

- 佛陀觀에 관한 研究 …… 魯權用
- 圓佛教 信仰論 研究-陰陽相勝과 因果報應 原理와의 관계를 中心으로 …… 韓鍾萬
- 修心正經의 仙家的 性格 …… 金洛必
- 強弱의 概念과 變化類型 …… 李和澤
- 圓佛教 倫理思想의 學的 定礎(試論 其二) …… 金杌坤

제9집 원기71년(1986) 2.

- 宗教와 社會福祉 …… 金泳模
- 圓佛教의 福祉理念 …… 沈大燮
- 圓佛教와 福祉理論 …… 元奭朝
- 圓佛教의 福祉施設 …… 梁銀容
- 圓佛教福祉의 展望과 課題 …… 金成天

제10집, 11집 원기72년(1987) 6.

- 一圓相信仰章의 研究 …… 韓鍾萬
- 法界概念考 …… 鄭舜日
- 圓佛教 禪法 考察(Ⅱ) …… 金永斗
- 訓練評價에 關한 研究 …… 李和澤
- 産業發展과 精神開闢 …… 李成鐸
- C. G. Jung 分析心理學의 自己實現과 圓佛教 思想의 自性回復에 關한 比較 …… 金聖觀

- 圓佛教의 公益觀에 관한 一考察 …… 朴鍾珠
- 圓佛教와 科學 …… 鄭奉吉
- 起信論의 一心三大思想을 통해 본 一圓相 信仰 小考 …… 魯權用
- 現代科學의 宇宙論과 圓佛教의 一圓相 …… 金鎔貞

- 圓佛教 思想과 甑山教 報恩相生思想의 比較 考察 …… 李鉉澤
- 感應現象에 대한 圓佛教思想과 융心理學의 見解 比較 …… 金聖觀
- 個體의 發生에 對한 考察 …… 金道宗
- THE INFLUENCE OF WON BUDDHISM IN KOREAN SOCIETY …… 柳炳德

- 圓佛教 教團 創立精神論의 새로운 模索 …… 徐慶田
- 教理용어의 의미 전달문제 …… 金成長
- 佛祖要經本 四十二章經의 研究 …… 鄭舜日
- 圓佛教 教理上의 實學的 課題 …… 李乙浩
- 濟度意識에 있어서의 實學的 變容 … 尹絲淳
- 圓佛教教典 標語의 實學的 性格 …… 宋天恩

- 圓佛教의 未來觀 …… 金三龍
- 恩思想의 生哲學的 照明 …… 金洛必
- 強弱의 變動構造 …… 李和澤
- 圓佛教의 兒童教育에 관한 一研究 … 韓良善
- 靈光文化와 圓佛教 …… 徐慶田

- 圓佛教 開教動機論의 四諦的 照明 … 徐慶田
- 一圓相과 圓佛教 …… 韓基斗

- 圓佛教의 社會觀 …… 柳炳德
- 圓佛教 善惡觀에 關한 考察 ……李鉉澤
- 圓佛教의 苦樂觀 …… 徐慶田
- 戒律精神의 硏究 …… 朴相權
- 坐禪과 坐忘의 硏究 …… 柳聖泰
- 同源道理의 硏究－基督教 思想과의 만남을 中心으로 …… 金洪喆
- 法身佛 信仰의 再照明－實踐教學의 立場에서 …… 權容甲
- 圓佛教의 教化方法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理論的 考察 …… 金榮熙
- 圓佛教의 靑少年 家庭教育硏究 …… 張夏烈·宋洵
- 圓佛教 家庭教育에 관한 一硏究 …… 韓良善
- 圓佛教 社會福祉에 대한 接近方法 … 徐 允
- 少太山大宗師의 相談原理에 대한 序說的 硏究 …… 金成天
- 一圓相의 精神修養과 精神治療의 多樣性 …… 朴南鎭
- Paychotherapeutic Implication in Won Buddhism …… Chung Bong－Kil
- 『大宗師 略傳』考 …… 朴龍德
- 默山受筆『法說集』의 序說的 硏究 … 梁銀容
- 默山의「佛法硏究會 教育政策」考 … 金貴聲
- 初期教史 硏究上의 諸問題(上)－佛法硏究會 創建史를 中心으로 …… 朴孟洙
- 初期教團의 道教思想受容 …… 金洛必
- 大學生의 宗教意識에 關한 調査硏究(Ⅰ)－圓光大學生을 中心으로 …… 元奭朝
- 大學生의 宗教意識에 관한 調査硏究(Ⅱ)－圓佛教 豫備教役者를 中心으로 …… 梁銀容
- 圓佛教人의 意識에 關한 調査硏究 … 梁海寬
- 禪의 跏拳道修練 實用化에 關한 硏究 …… 金哲·金泓植
- 蘆沙 奇正鎭의 理一分殊觀 …… 李相坤
- 韓末民族運動의 一硏究－遯軒 林柄瓚을 中心으로 …… 申圭秀
- 『論理哲學論』에 나타난 意味論에 關한 考察 …… 鄭京吉
- Lewis의 新趣向文化論에 관한 이해 朴鎣鶴
- 全北 愛鄕運動이 地域福祉에 미치는 影響 …… 沈大燮
- 編輯後期 …… 韓基斗

바. 기타

① 崇山 朴吉眞博士華甲紀念文集

『韓國佛教思想史』 원기60년(1975) 10

第一篇 三國時代의 佛教

- 佛教 傳入前의 韓國 上代 社會相 … 金貞培
- 高句麗 佛教思想 …… 金煐泰
- 僧朗과 三論思想 …… 柳炳德
- 百濟佛教 …… 洪潤植
- 新羅佛教思想 …… 金煐泰
- 三國時代의 佛教 信仰儀禮 …… 洪潤植

第二篇 統一新羅時代의 佛教

- 新羅佛教의 教學 …… 趙明基
- 經典引用에 나타난 元曉의 獨創性 … 李箕永
- 元曉思想의 實踐原理 …… 高翊晋
- 新羅 華嚴學의 主流考 …… 金知見
- 圓測의 唯識思想 …… 元義範
- 新羅의 彌勒思想 …… 徐閏吉
- 新羅 淨土教學의 諸問題 …… 安啓賢
- 新羅의 禪思想 …… 韓基斗
-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思想 …… 金煐泰
- 統一新羅의 信仰儀禮 …… 洪潤植

第三篇 高麗時代의 佛教

- 高麗佛教의 僧科·僧錄司制度 …… 李載昌
- 均如의 華嚴思想과 文學的 位置 ……金雲學
- 高麗天台宗 開立과 義天 …… 洪庭植
- 知訥의 禪思想 …… 宋天恩
- 知訥의 華嚴思想 …… 李鍾益
- 高麗佛教의 結社運動 …… 韓基斗
- 高麗의 居士佛教 …… 徐景洙
- 高麗後期의 禪思想 …… 韓基斗
- 高麗佛教의 信仰儀禮 …… 洪潤植

第四篇 朝鮮時代의 佛教

- 李朝佛教의 構造 …… 丁仲煥
- 麗末鮮初의 排佛·護佛思想 …… 韓鍾萬
- 己和의 思想 …… 宋天恩
- 雪岑 金時習의 思想 …… 韓鍾萬
- 普雨大師의 思想 …… 徐閏吉
- 休靜의 思想 …… 宋天恩
- 惟政의 思想 …… 金東華
- 西山門徒의 思想 …… 金恒培
- 淨休禪師의 禪 思想 …… 金仁德
- 淨休의 門徒 …… 金仁德
- 震默의 法風 …… 韓基斗
- 栢巖의 思想 …… 性 陀
- 蓮潭 및 仁岳의 私記와 그의 教學觀 智 冠
- 白坡와 草衣時代 禪의 論爭點 …… 韓基斗
- 李朝佛教의 信仰儀禮 …… 洪潤植

第五篇 最近世時代의 佛教

- 鏡虛의 禪 思想 …… 性 陀
- 佛教維新思想 …… 韓鍾萬
- 日帝時代의 佛教 …… 柳炳德

別 篇

- 益山의 百濟佛教遺蹟 …… 黃壽永
- 新羅 淨土教의 特色 …… 惠谷隆戒
- 高麗 雲墨和尙과 禪 思想 …… 閔泳珪
- 現代思潮의 轉向과 禪 思想 …… 高亨坤

② 崇山 朴吉眞博士 古稀紀念文集

『韓國近代宗教思想史』 원기69년(1984) 10.

第一篇 韓國宗教思想과 近代社會

- 韓國佛教의 思想的 흐름 …… 李箕永
- 儒教·佛教思想의 歷史的 展開 …… 裵宗鎬
- 近代 巫俗思想 ……金泰坤
- 近代韓國의 圖讖思想 …… 梁銀容
- 近代 七星信仰觀 …… 徐慶田
- 愛國啓蒙運動과 宗教思想 …… 金善陽
- 韓國近代宗教의 社會福祉活動 …… 沈大燮
- 日帝의 宗教政策과 韓國宗教 …… 朴相權

第二篇 佛教의 思想

- 近代佛教의 宗統 宗脈 …… 金煐泰
- 近代韓國의 禪 思想 …… 韓基斗
- 近代 居士佛教 思想 …… 李永子
- 近代佛教講院의 履歷制度 …… 蔡印幻
- 近代佛教의 教育活動 …… 南都永
- 韓國의 近代文學과 佛教思想 …… 李相斐
- 開化思想家와 佛教 …… 徐京洙
- 白龍成의 大覺教思想 …… 韓鍾萬
- 朴漢永의 佛教思想과 維新運動 …… 魯權用
- 韓龍雲의 佛教思想 …… 鄭舜日
- 李能和의 學問과 佛教思想 …… 梁銀容
- 近世韓國의 彌勒思想 …… 金三龍
- 近代韓國佛教의 信仰儀禮와 民衆佛教 …… 洪潤植

第三篇 儒教의 思想

- 近代儒教思想의 歷史的 變貌 …… 尹絲淳
- 近代儒學의 斥邪衛正思想 …… 李乙浩
- 華西의 儒學思想 …… 李振杓
- 蘆沙學派의 儒學思想 …… 安晋吾

- 惠岡氣學의 構造와 性格 …… 金洛必
- 艮齋學派의 學問的 性格 …… 吳鍾逸
- 後期嶺南學派의 主理思想 …… 劉明鍾
- 韓國 近代 陽明學 思想 …… 金順任
- 『四禮便覽』에서 보이는 近代의 儒教儀禮 …… 盧仁淑
- 韓國近代 儒學의 孔子教運動 …… 琴章泰

第四篇 天主教·改新教의 思想

- 天主教의 受難史 …… 朱明俊
- 崔良業 神父의 宣教觀 …… 李載順
- 天主歌辭의 思想 …… 金眞召
- 在韓 天主教 宣教師의 韓國觀과 宣教政策 …… 崔奭祐
- 日帝下 天主教의 民族運動 …… 盧榮澤
- 韓國神學의 發展 過程史 …… 朱在鏞
- 初期改新教 宣教師들의 宣教理念 … 宋吉燮
- 民族史觀에서 본 韓國基督教 …… 閔庚培
- 李龍道의 苦難의 神秘主義 …… 邊鮮煥
- 神社參拜와 韓國改新教의 抵抗運動 洪致模

第五篇 新宗教의 思想

- 崔濟愚의 東學思想 …… 李炫熙
- 崔時亨의 汎天論的 東學思想 …… 申一澈
- 天道教의 教理思想 …… 崔東熙
- 東學思想과 民衆蜂起 …… 金昌洙
- 李敦化의 新人哲學思想 …… 黃文秀
- 金恒의 正易思想 …… 柳南相
- 姜一淳의 宗教思想 …… 張秉吉
- 日帝下의 甑山教運動 …… 盧吉明
- 李正立의 大巡哲學思想 …… 金洪喆
- 羅寅永(喆)의 大宗教思想 …… 李康五

第六篇 圓佛教의 思想

- 圓佛教 教團形成史 …… 金洪喆
- 少太山의 一圓相眞理 …… 宋天恩
- 圓佛教 恩思想 …… 李鉉澤
- 圓佛教의 禪思想 …… 金永斗
- 圓佛教의 佛教觀 …… 柳炳德
- 圓佛教의 會通思想 …… 韓鍾萬
- 圓佛教의 心性觀 …… 金聖觀
- 圓佛教 儀禮의 性格 …… 金成長
- 鼎山의 思想 …… 韓基斗

③ 文山 金三龍博士 華甲紀念文集

『韓國文化와 圓佛教思想』 원기70년(1985) 10.

- 韓國宗教脈絡에서 본 圓佛教思想 … 柳炳德
- '하나'의 讚美, '하나'의 實現 …… 李箕永
- 韓國史의 脈絡에서 본 圓佛教 …… 洪潤植
- 韓國 先史時代의 陶文 …… 李亨求
- 日本稻作文化의 傳播經路 …… 全榮來
- 彌勒寺有感 …… 金正基
- 日本 觀松院所藏 百濟金銅半跏像 … 鄭永鎬
- 扶餘 窺岩出土 百濟 方形 무늬벽돌 朴容塡
- 韓國石碑樣式의 變遷 …… 趙東元
- 高麗陶磁의 起源과 發展 …… 尹龍二
- 韓國傳統民家의 平面構成 發展과 日本住宅의 平面構成 基本要素와의 比較考察 張慶浩
- 保寧 鎭唐山城 調査報告 …… 成周鐸
- 山中他界觀과 彌勒淨土 …… 宮田 登
- 劍·鏡·玉과 古代의 文化와 社會 …… 金貞培
- 百濟文化의 性格 一考 …… 朴性鳳
- 高宗의 海牙特使 派遣에 關한 小考 李東宇
- 日帝侵略期의 民族教育에 대한 研究 趙載福
- 南晋南北朝時代中國與百濟之關係 … 陳捷先
- 日本福岡縣·穴ケ葉山古墳の線刻壁畵 …… 小田當士雄
- 三體彌勒像を本尊とする日本古代寺院 …… 藤澤一夫
- 益山彌勒寺 信仰の基盤 …… 芳賀 登

- 古代日本人の百濟觀 ……井上秀雄
- 空의 論理 …… 徐景洙
- 中論頌에 밝혀지는 眞理性 …… 金仁德
- 三國의 佛敎受容과 그 宗敎的 意義 ··鄭泰赫
- 百濟의 尼衆受戒와 尼僧職 關係 …… 金煐泰
- 瑜伽唯識을 통한 彌勒信仰 傳來 …… 吳亨根
- 中國禪宗史上 新羅無相大師의 地位와 그 傳燈譜 …… 李鐘益
- 新羅 彌勒淨土思想의 特性 …… 蔡印幻
- 高麗 了圓撰〈法華靈驗傳〉의 硏究 … 梁銀容
- 休休菴坐禪文 硏究 …… 韓基斗
- 沙門 雪岑像 素描 …… 金知見
- 梅月堂 金時習의 佛敎思想 硏究 …… 韓鍾萬
- 中國彌勒信仰的比較 …… 楊白衣
- 《華嚴經》入法界品における遊女の物語 …… 中村 元
- 高句麗佛敎의 開敎者 …… 鎌田茂雄
- 圓佛敎 根本眞理의 構造的 特徵 …… 朴相權
- 四恩의 信仰的 意味에 관한 再認識 ··魯權用
- 實踐的 理念化의 方向에서 본 四大綱領 …… 鄭舜日
- 精神槪念의 淵源과 特性 …… 金洛必
- 圓佛敎 頓悟 漸修觀 …… 金永斗
- 圓佛敎 道德思想의 一考察 …… 金順任
- 佛法硏究會 創建史의 성격 …… 申淳鐵
- 敎化學의 展望과 課題 …… 徐慶田
- 圓佛敎 敎理의 實學的 性格 …… 宋天恩
- 象徵과 心性 …… 金聖觀
- 文化遲滯와 精神開闢 …… 元奭朝
- 圓佛敎思想에 나타난 社會變動 要因에 關한 硏究 …… 金洪喆
- 圓佛敎と社會福祉活動 …… 上田千秋
- MORAL PERFECTION AND THE ETHICS OF GRACE IN WON BUDDHISM …… Chung Bong-Kil
- 先天學的 歷史認識의 考察 …… 金道宗
- 百濟窯址에 對한 考察 …… 鄭明鎬
- 民族宗敎의 커뮤니케이션 기법 고찰·朴瑩鶴
- 台灣原住民布農族之生命禮俗田野調查報告 …… 金在先
- 三體彌勒像を本尊とする日本古代寺院·補遺 …… 藤澤一夫

④ 한·일불교 학술회의

한·일불교 학술회의는 종교문제연구소에서 원기58년(1973) 5월부터 시작한 뒤 제9회(원기69년) 5월까지 개최한 회의를 이관하여 10회부터 주관하기로 하였다.

제10회 佛敎와 社會倫理. 원기71년(1986) 5. 31~6. 1

- 송천은 : 불교와 사회윤리
- 양은용 : 元天錫의 三敎倫理에 대하여
- 이현택 : 원불교 예법혁신과 사회윤리
- 한기두 : 知訥의 선교회통사상
- 홍윤식 : 한국 승려와 사회윤리

4. 敎化硏究所

교화연구소의 설치는 원기58년(1973) 5월 10일 제94회 임시원의회에 제안되어 원기58년

(1973) 10월 5일 제103회 임시원의회에서 연구소의 설치를 인가하고 그 규정은 위원인 김윤중, 조정근, 유기현, 이광정교무가 검토키로 하였다. 원기59년(1974) 3월 30일 본 연구소가 정식으로 발족되고 초대소장에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이광정교무가 취임하였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시대인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발족된 본 연구소는 교화에 관한 모든 문제를 연구하여 교화정책 수립에 공헌함을 모든 문제를 연구하여 교화정책 수립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① 교화부 업무 전반에 관한 연구, ② 각종 교화자료 수집, ③ 사회문제 및 타종교 연구, ④ 연구지 및 연구문헌 발행, ⑤ 기타 교화연구에 필요한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각 분과별 회의와 토론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였다(타종교 연구, 사회문제 연구, 각종 교재 연구, 교육훈련 연구, 교화행정 연구, 해외교화연구, 청소년교화 연구 등).

그간의 업적으로는 ① 교화백서 발행, ② 교리실천 강좌(교화발표회) 개최, ③ 교화통신(敎化) 발행, ④ 교화교재 발행 등 각종 교화자료 수집의 일을 하였다.

가. 역대직원

번 호	직 명	성 명	성별	재 임 기 간	비 고
1	소 장	李 廣 淨	男	59. 4. 1~62. 4. 17	교화부장
2	간 사	朴 慧 明	女	59. 4. 1~62. 4. 17	
3	소 장	朴 正 薰	男	62. 4. 18~68.	교화부장
4	간 사	李 善 照	女	62. 4. 18~63. 7. 25	
5	간 사	辛 大 誠	男	63. 7. 25~66. 3. 1	
6	간 사	鄭 大 安	女	66. 3. 1~68.	
7	소 장	孫 正 允	男	68. ~	
8	연 구 원	金 仁 剛	〃	70. 2. 24~71. 7. 15	
9	〃	金 昊 誠	〃	71. 2. 24~	
10	〃	張 成 恩	〃	72. 2. 15~	
11	〃	成 道 宗	〃	72. 7. 16~	

나. 교화백서 발행

원기60년(1975) 1월 59년도 교화백서 발행을 시작으로 꾸준히 계속 발간하고 있다. 교화백서에는 교도의 출석상황, 입교상황, 각 교당 활동상황, 교도훈련상황 등을 수록 교화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최초에(원기60년) 발행한 교화백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석상황
2. 법신불봉안, 입교상황 비교
3. 상시일기, 출석상황 비교
4. 발인, 1~6재 종재상황
5. 열반기념제사, 특별재
6. 개인기도 상황
7. 의식교화 현황
8. 각 교당 활동상황
9. 청년, 학생, 어린이회 결성교당
10. 각 교당 서클결성
11. 교도소 출장교당
12. 출장법회 실시
13. 출장설립예정 교당
14. 시, 도별 교도훈련

다. 교화통신

교화통신은 원기61년(1976) 5월 20일 제1호가 발행되어 월간으로 제67호(원기66년 12월호)까지 계속되다가 원기67년(1982) 1월호부터는 「敎化」라는 제호로 형태를 달리하여 월간으로 계속 발행되다가 통권 제78호(원기67년 11월호)를 마지막으로 그 발행을 쉬게 되었다.

그 변형과정은 다음과 같다.

원기61년(1976) 5월 20일－창간 4면

원기62년(1977) 7월 20일－6면으로 증면

원기65년(1980) 1월－8면으로 증면

원기67년(1982) 1월－제16면 변형 敎化로

교화통신의 내용은 체험적 교화론, 공지사항, 이달의 교화, 교화현장, 교화일선의 이모저모, (4면), 교화엣세이, 공지사항, 이달의 교화, 교화 Program, 교화일선의 이모저모 등이며(6면) 8면으로 증면되어서는 일반, 학생, 어린이 설교안이 수록되었다. 제자를 『敎化』로 바꾸면서 16면으로 증면하고 그 내용도 변형되었다. 다음은 월간 『교화』에서 특집으로 다룬 내용의 목차이다.

제69호. 원기67년(1982) 2

- 효율적인 어린이 지도를 위한 교당·학교·가정의 관계
- 중·고생교화·퀴즈법회 프로그램
- 원청운동의 바람직한 방향
- 가정단회 및 가족법회를 위한 식순
-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교화

제70호. 원기67년(1982) 4

- 교화, 사업, 운영계획(청주교구 청주교당)
- 교화단 교화를 통한 조직교화의 결실(이리교구 남중교당)
- 종법사 유시 실천계획
- 타종교 교화현장(생명의 전화운동)

제71호. 원기67년(1982) 5.

- 청소년교화의 활성화
- 교무론(上)
- 5월의 설교(보살삼보와 범부삼보)
- 교화연구(연원달기운동 전개방안)
- Program의 이론과 실제

제72호. 원기67년(1982) 6

- 청년교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교무론(下)
- 청년교화－선진법회 Program
- 학생교화－교리퀴즈 문제
- 교화연구－교화방법으로서의 상담

제73호. 원기67년(1982) 7

제74호. 원기67년(1982) 8

- 학생회 조직과 운영의 실제
- 농촌교화의 실태와 농민선교의 방향
- 어린이교화－월초기도 법회
- 교화연구－교화방법으로서의 상담
- 청소년을 위한 심성계발 프로그램

제75호. 원기67년(1982) 9

- 원불교 교화이념과 정책방향
- 청소년교화 농촌교화의 방향
- 중·고생교화－교리퀴즈 문제
- 어린이교화－신앙심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 교화연구－교화방법으로서의 상담
- 프로그램의 실제－청소년을 위한 심성계발 Program

제77호. 원기67년(1982) 10

제78호. 원기67년(1982) 11

- 교서 보급회를 결성하자
- 청소년을 위한 심성계발 program
- 교화연구－원불교 여성교화를 위한 방향 모색

라. 교리실천강좌(교화발표회)

교리실천강좌는 원기70년(1985) 9월 21일 제1차 발표회를 시작하여 원기72년(1987) 6월 30일 제3차부터 명칭을 교화연구발표회로 바꾸어 계속 열어오고 있다.

제1차 원불교와 단전주선. 원기70년(1985) 9월 21일

- 송천은－원불교 단전주선
- 박장식－대종사 당대의 선풍
- 대담 : 안이정, 양도신, 김중묵, 서대인교무

제2차 연고계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원기71년(1986) 3월 22일

- 한정원－계문의 형성과 원불교의 연고계문
- 대담:김중묵, 안이정, 한정원, 손순봉교무

제3차 교화단 조직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원기72년(1987) 6월 30일

- 김일상－교화단조직과 일반조직과의 관계
- 김관중－청년교도 교화단관리 어떻게 하고있나.
- 이명수－학생회 교화단의 조직과 관리
- 배현송－어린이회 교화와 교화단 활용

마. 각종 교화자료 발간

- 신앙신록1집『저 푸른 하늘을 보라』발행－원기61년(1976) 7월
- 신앙신록2집『은혜의 꽃은 피고』발행－원기63년(1978) 6월 24일
- 독경집 카셋트 발행－원기63년(1978) 7월 24일
- 『그림대종사』발행(下권)
- 『교화자료 모음집』발간－원기70년(1985) 1월, 원기72년(1987) 4월
- 『교리퀴즈 문제집』발간－원기72년(1987) 11월 28일

이 밖에『단장중앙 수첩』,『그림대종경』,『연간교화계획서』,『대종경이야기』,『통신강좌(원기68년부터 훈련부로 이관)』등 교화부에서 발행하는 교재발간 사업의 업무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다.

다음은 원기70년(1985) 1월부터 발행한 교화자료 모음집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원기70년(1985) Ⅰ

1. 아이들의 시집살이
2. 5천달러 시대를 위한 사람과 삶
3. 세가지 질문
4. 만인이 하느님앞에 평등한 생명입니다.
5. 기도에 대하여
6. 당신이 교감이오
7. 꽃 전설
8. 좋은 부모가 되려면
9. 미국의 소년 비행 실태
10. 대도시의 범죄문제
11. 얼굴없는 자선 20년 역전「지게꾼 회장」
12. 청소년 교육
13. 노인 교육

원기70년(1985) Ⅱ

1. 김유신 어머니 만명부인
2. 나환자와 아픔함께「타국의 삶」18년
3. 구공탄 철학
4. 말을 위한 기도
5. 정직한 아이들
6. 과짜를 천재로 키우자
7. 가정불화의 근본원인
8. 청소년과의 대화
9. 마음의 공해
10. 청소년 비행 부채질하는 부모의 무관심
11. 청소년 비행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12. 미국의 소년 비행문제
13. 종교적 측면에서의 태중교육
14. 외채문제 해결과 경제구조 개편

원기70년(1985) Ⅲ

1. 무소의 뿔처럼 홀로가라.
2. 아! 당신이었군요
3. 청소년 문화의 벽과 수렁
4. 현대 시민의식
5. 뉴질랜드 소고기야
6. 불량화 조기진단

7. 난세인가 태평성대인가.
8. 정서 발달
9. 청년기의 정신건강
10.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소서.
11. 매미와 개미
12. 부부싸움의 해학
13. 혀가 입힌 상처는 칼날이 입힌 상처보다 깊어
14. 우리나라 아내 42%가 매맞고 산다.
15. 바람직한 가정운영
16. 아동기의 성교육
17.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
18. 성교육 실례
19. 이성 교제 결코 서둘러서는 안되요.
20. 신경과민 여고생
21. 위인의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특성.
22. 증도가

· 원기70년(1985) Ⅳ

1. 옛날에는 이웃간에 달빛도 함께 나누었지요.
2. 부드러운 것이 좋다.
3. 한국인의 아동 교육관
4. 사춘기의 우울증
5. 나누어 주는 미덕
6. 등잔과 병풍
7. 고아의 어머니 황온순
8. 수행비서 옆에 있어도 수상이 가방들고 다닌다.
9. 역사속에 비친 여인 윤씨부인
10. 변치않는 우정을 간직하십시오.
11. 무엇이 어떻게 얼마큼 들어오나.
12. 왜 기도가 필요한가.
13. 외상 좋아하는 국민학생, 외상값 받으러 학교까지.
14. 「순간」을 사는 지혜가 있으려면
15. 사회는 교실이다.
16. 작아지는 사람
17. 이 사회 지도자들은 그렇게도 계절감각이 없다.
18.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모들
19. 손거울에서

· 원기70년(1985) Ⅴ

1. 열반경 말씀
2. 이렇게 살리
3. 믿음은 건강의 초석이다.
4. 직업에 대한 이해
5. 내가 바라는 한국 청소년은
6. 기쁨의 아름다움, 사랑의 아름다움
7. 아부로 하는 출세는 한계가 있는 법
8. 일등 국민이라는 자부심
9. 가난한 부자의 삶, 돈많은 가난뱅이 세상
10. 밥통같은 사람이 되자.
11. 내 나라를 버리기 위한 영어 공부인가.
12. 부모의 교육관
13. 한국찬가와 나라사랑
14. 다시 새겨 읽는 채근담
15. 성채(생떽쥐베리)
16. 폭풍속에서
17. 사슬에 묶인 자
18. 사랑의 가정
19. 아이들이 크는 동안에 배우는 것
20. 자녀지도
21. 사람이 두려운 남고생
22. 어린이가 느끼는 학교 공포증
23. 유아문제
24. 자녀교육 상담실
25. 육체에서 오는 변화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26. 한국 가정에 있어서의 청소년
27. 역사속의 여인 곽낙원(김구의 어머니)
28. 간디의 사상
29. 레크레이션

· 원기70년(1985) Ⅵ

1. 효자 집안에 효자난다.
2. 오른손으로 벌을 주면 왼손으로 안아줘라.
3. 자녀를 야단친 날이라도 재울 때는 다정하게 해준다.
4. 심리학으로는 심리적 부재가 무섭다.
5. 형제간의 질투
6. 남존여비 사상「우리의 것」이다.
7.「괜찮아요」와 표리부동
8. 한국판 종교전쟁 두고만 볼 수 없다.
9. 국민의 8할이 정신 이상자인 아르헨티나
10. 미국박사 풍년에 멍드는 한국교육
11. 우리나라의 대화문화, 이런게 문제다.
12. 부모가 모르면 큰일날 3가지문제
13. 스킨 쉽－게임
14. 역사속의 여인 허씨부인
15. 남을 위해 사는 마음
16. 교만과 겸손
17. 나는 그와 말할 수 있네
18. 본성(本姓)과 명덕(明德)
19. 그림책과 만화 부모가 함께 본다.
20. 가정예찬론
21. 열어 주소서

· **원기70년(1985) Ⅶ**

1. 우물밖의 개구리가 되자.
2. 가을의 기도
3. 부모와 가정교육
4. 교육열, 너무 뜨겁다.
5. 글쓰기 지도자료(나의 주장)
6. 情을 기른다(자녀교육).
7. 동요모음
8. 청소년문화, 문제있다.
9. 커피한잔 4천 5백원
10. 생각하며, 기도하며
11. 사찰마다 백일기도 열기
12. 가정교육 어머니 전담아니다.
13. 가난한 교회로 돌아가자
14. 청소년 독서문화
15. 슬기로운 자녀로 키우려면
16. 고교생의 이성교재
17. 민중정공과 유적비
18. 시와 재산
19. 무서운 사람들
20. 외국유학, 무엇을 배워왔나
21. 이 땅의 교회 문제있다.
22. 정신과 의사의 사회진단
23. 한국에 타격 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24. 외채 지옥에 빠지기전에
25. 라즈니쉬교의 실상
26. 슈베르트이야기
27. 이달의 말씀

· **원기70년(1985) Ⅷ**

1. 바탕이 깨끗하면
2. 수행자에게 보내는 글
3. 한 마리의 나비
4. 거북을 잡은 어린이
5. 정신과 의사의 사회진단
6. 살아있는 부정부패
7. 청소년과 약물
8. 민족적 각성이 필요할 때
9. 한글의 중요성과 국어의 중요성
10. 우리 말이 살아야 민족혼이 산다.
11. 천주교 주교단의 현장생활체험
12. 문학과 종교 그리고 가을
13. 빈자의 소리
14. 소비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15. 시계 한개의 경제학
16. 한국의 테레사
17. 노래에 나타난 아기 기르는 슬기
18. 한국인의 부부상
19. 백점 어머니의 조건 10조
20. 금언과 예화

· **원기70년(1985) Ⅸ**

1. 머리글
2. 부자와 사제간의 도리
3. 원불교의 단전주선
4. 원불교 선의 역사적 맥락
5. 생활속의 무시선
6. 도인법
7. 국선도의 수련
8. 坐禪儀
9. 선, 인간회복의 길
10. 선종의 형성과정
11. 좌선의 방법
12. 자기통제법과 선
13. 호흡요법
14. 기타

• 원기70년(1985) X

1. 이달의 말씀
2. 이렇게 살리
3. 보현십원가
4. 귀신굿과 광대
5. 구원사상의 인간학
6. 불교설화
7. 「나」를 버린 사람들
8. 거룩한 돼지(동화)
9. 감각감상
10. 일등신부가 되고 싶어요
11. 직장인의 스트레스
12. 나의 어머니
13. 어린이의 세계
14. 자녀의 사춘기
15. 정을 기른다
16. 한국의 명시
17. 선진국의 수입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18. 우리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19. 일회용 상품시장
20. 외채, 내핍없이 못줄인다
21. 이웃나라 사람들(대만)
22. 한국인은 왜 서두르는가?
23. 문화변동과 다종교 상황의 문제
24. 직장인과 세모
25. 관음찬

• 원기71년(1986) I

1. 이달의 말씀
2. 하나씩 하나씩
3. 이성철 종정 신년법어
4. 교황 신년메시지
5. 설교안 1. 2. 3
6. 세계의 식량문제
7. 삶
8. 장애자는 골방에 갇혀 있어야 하나
9. 누가 장애자를 모른다고 하려나
10. 고아 아닌 고아가 늘어난다.
11. 미혼모와 입양아의 실태
12. 꽃동네 이야기
13.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14. 제3세계의 젊은이들
15. 명인어록
16. 겨울에 마시는 차
17. 진정한 우리 것
18. 할머님의 속사정
19. 불교설화
20. 말씀의 숲
21. 보왕삼매론

• 원기71년(1986) II

1. 가정의 기능
2. 가정의 역할
3. 가정교육의 병적 요인
4. 가족 관계
5. 현대 가정의 표정
6. 가출하는 아이들 어디로 가나
7. 부모의 역할과 지도
8. 가정교육과 부모의 역할

9. 부모와 자녀의 대화방법
10. 어린이가 본 부모의 언어
11. 각 종교의 자녀교육
12. 기독교의 가정과 교육
13. 살아있는 환경, 껍대기의 환경
14. 세계 주요국의 남녀 평등시책 실천상황
15. 미혼여성의 결혼관 및 직업관
16. 여성 교육
17. 가정과 경제생활
18. 외채를 줄이는 길
19. 외래품 그만 씁시다
20. 외채문제 해결과 경제구조 개편
21. 농민들의 부채, 얼마나 심각한다.
22. 생활경제 교실

• 원기71년(1986) Ⅲ

1. 자료를 모우면서
2. 가정의 도
3. 일원상 봉안식 및 가족법회 식순
4. 심고문 및 기원문 예
5.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건전한 가정상
6.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가족
7.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
8. 불자의 자녀교육(불교)
9. 가정생활과 유치원
10. 부모와 자녀사이의 무의식세계
11. 아내들의 결점 10가지
12. 부모 자녀 가족관계
13. 가정의 언어생활
14. 자녀와의 대화
15. 가정의 정서생활
16. 가정교육
17. 가정과 청소년
18. 가정관의 변화와 교회의 역할
19. 한국 주부들의 생활의식구조
20. 6개국 의식구조 비교조사
21. 발원문

• 원기71년(1986) Ⅳ

1. 마음의 창을 엽시다
2. 기 도
3. 수행덕목 6가지
4. 성가를 부르면
5. 기도 1, 2
6. 바람직한 하루일과
7. 아침심고문 예 1, 2
8. 저녁심고문 예 1, 2
9. 산다는 것의 의미
10. 손거울
11. 마애불이 되신 신라적 스님
12. 나라사랑의 두가지 인간상
13. 불교의 수행과 효도의 관계
14. 살림을 꾸리는 젊은이들에게
15. 두 손이 아닌, 두 발로 그린 그림
16. 떡 장수 어머니
17. 난지도에서 찾아낸 천사이야기
18. 미국에서 보내온 편지
19. 청소년 범죄의 가정적 요인
20. 가정내 폭력
21. 바람직한 교사환경
22. 회칠한 사회복지
23. 버려지는 음식도 외채이다
24. 생각해 봅시다
25. 한국의 새 주부상
26. 도시 하층근로자의 취업 그늘
27. 시장개방과 농민
28. 석유가 재채기를 하면
29. 신사의 나라, 영국사람
30. 북한의 종교실태
31. 극락을 찾는 이들에게
32. 주춧돌이 튼튼해야

• 원기71년(1986) Ⅴ

1. 이달의 말씀
2. 나는

3. 법구경 말씀
4. 어른을 공경하는 정신
5. 가정이 화목하려면
6. 행복한 결혼생활의 지혜
7. 30일간의 부부 대화
8. 권태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9. 이혼의 천국, 프랑스
10. 이 시대를 위하여
11. 한국 교회의 주일 학교 문제있다.
12. 종교 박람회
13. 일어나 빛을 발하라
14. 홀트 학교의 주인
15. 손거울
16. 해외 감동 화제
17. 독일인의 절약 정신
18. 국제 외채위기
19. 우리가 져야할 짐
20. 청소년이 본 아버지
21. 아내가 본 남편
22. 한국의 20대, 무엇을 생각하나
23. 생각해 봅시다
24. 생각하는 동화
25. 선가귀감 중에서
26. 자녀교육 명언록
27. 아끼고 절약하고
28. 만평

• 원기71년(1986) Ⅵ

1. 나의 길
2. 죄
3. 자비의 마음으로
4. 이성철스님 법어
5. 김수환추기경 메시지
6. 올바른 기도의 자세
7. 바람직한 대각개교절 행사
8. 이규태 칼럼
9. 무책임한 중매행위
10. 늘어나는 이혼과 그 치료
11. 가정의 불행 10가지
12. 크리스찬가정교육의 방향
13. 아이들을 이렇게 키웁시다
14. 이 시대를 사는 부모들에게
15. 모원병이란 무엇인가
16. 잔소리와 어린이의 식욕부진
17. 효에 대하여
18. 손거울
19. 미국교육이 저질화되고 있다.
20. 영남의 종가, 종부들
21. 보호실의 어린이들
22. 아부의 사회학
23. 생각하는 동화
24. 티없는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줄까

• 원기71년(1986) Ⅶ

1. 이 달의 말씀
2. 지금 댁의 자녀는
3. 생각하게 하는 시
4. 행 복
5. 바른 길을 찾는 이들에게
6. 무량수경중에서(석존의 고행상)
7.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8. 어린이와 매질
9. 부모가 해서는 안될 말
10. 한국 여성은 누구인가?
11. 이규태 칼럼중에서
12. 돈, 바르게 벌고 바르게 씁시다
13. 손거울
14. 수필
15. 풍자의 세계
16. 요가를 알고 계십니까
17. 아직도 담배를 피웁니까?
18. 금연 구역을 설정하자
19. 담배 끊기
20. 늘어나는 알콜 중독자들
21. 음주 운전 초비상
22. 술과 건강

23. 범죄 예방책, 파출소장이 가르쳐 주는
24. 실업과 공해 문제
25. 산업 스파이전의 윤리적 한계
26. 호화 혼수가 사회를 병들게 한다
27. 오늘의 관혼상제
28. 시장 개방과 노동 운동
29. 나이란 무엇인가
30. 노인 복지, 노인 교육 프로그램
31. 레크리에이션
32. 생각하는 동화
33. 부처님 말씀

• 원기71년(1986) Ⅷ

1. 바탕이 깨끗하면
2. 수행자에게 보내는 글
3. 한 마리의 나비
4. 거북을 잡은 어린이
5. 정신과 의사의 사회진단
6. 살아있는 부정부패
7. 청소년과 약물
8. 민족적 각성이 필요한 때
9. 한글의 중요성과 국어의 중요성
10. 우리말이 살아야 민족혼이 산다
11. 천주교 주교단의 현장생활체험
12. 문학과 종교 그리고 가을
13. 빈자의 소리
14. 소비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15. 시계 한개의 경제학
16. 한국의 테레사
17. 노래에 나타난 아기 기르는 슬기
18. 한국인의 부부상
19. 백점 어머니의 조건 10조
20. 금언과 예화

• 원기71년(1986) Ⅸ

1. 태교의 도
2. 태중 교육의 개념
3. 종교적 측면에서의 태중 교육
4. 태교와 태모
5. 우리 나라 전래 태교, 어떻게 해왔나?
6. 태교를 해야 되는 이유
7. 미래의 어버이(태교 상식)
8. 태교는 어머니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9. 태와 잊지 못할 대화를
10. 태교의 전래 습속(習俗)과 민간 신앙
11. 한국 어머니의 옛 육아법
12. 정몽주 어머니의 태중 교육론
13. 슬기로운 태교
14. 태교
15. 임신에서 출산까지
16. 임신중의 보약
17. 태아는 알고 있다
18.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자
19. 태교의 과학적 입증

• 원기71년(1986) Ⅹ

1. 이달의 말씀
2. 이 대지는 모든 중생의 뿌리
3. 도착된 삶의 뿌리
4. 이규태 칼럼에서
5. 너무들 먹어 댄다
6. 전통육아, 현대육아
7. 조상의 얼과 지혜를 찾아서
8. 왜, 돼지는 꿀꿀 거릴까
9. 어린이들이 존경할 수 있는 어른
10. 어른들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
11. 세계의 10대
12. 10대의 언어
13. 유럽의 20대
14. 왜 20대는 소중한가
15.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
16. 꼬부라진 혀
17. 부자 간에도 통역이
18. 왜 자살하는가

19. 청소년의 잇단 자살
20. 정신병원 찾는 학생 많다
21. 당신의 입에서 가시가 돋아난다
22. 천국의 레저
23. 환갑 나이에 고입검정고시 합격
24.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25. 산업 폐기물의 행방
26. 버리는 종이가 없게하자
27. 말 한마디와 생명
28. 가정안에서의 분노
29. 억압된 분노, 질환을 낳는다
30. 희망과 지성
31. 가정주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32. 결혼생활에 장애가 되는 그릇된 생각
33. 주부의 우울증
34. 여성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35. 가족의 스트레스
36. 주부의 재교육현장
37. 부처님 말씀
38. 프랑스는 독신자 천국인가
39. 갈 곳 없는 여성박사들
40. '86 여성동아대수상자
41. 세월이 약
42. 노인의 역할
43. 다함께 노인문제를
44. 약있는 곳에 화 있다
45. 가공식품, 알고나 먹읍시다
46. 명언록
47. 종교적 독선과 이단시비
48. 말도 많고 탈도 많고
49. 야합이냐, 투쟁이냐
50. 과시와 낭비의 잔치판
51. 농촌여성, 얼마나 일하나
52. 학교교육, 문제있다
53. 꿈나라
54. 가슴속에 핀 꽃
55. 새싹
56. 옛날 옛날에
57.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들
58. 효는 백행의 근본
59. 이제는 벗어 던져도 좋다

* 알리는 말씀

• 원기72년(1987) I

1. 발원문
2. 평 화
3. 어머니의 기도
4. 설교안(1)
5.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6. 위대한 어머니가 되자
7. 훌륭한 아버지가 되자
8. 삼촌이나 사촌은 한 가족
9. 몇점짜리 부모입니까?
10. 부부싸움을 피하는 10가지 지혜
11. 아내의 바가지
12. 궁합보는 사람들
13. 행복한 가정부부 10계명
14.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15. 남편을 피곤하게 하는 아내
16. 가정에 대한 명언 예화
17.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명언 예화
18. 모성애, 술과 담배, 화목, 화평, 평화에 대한 예화자료
19. 주부들의 화투놀이
20. 비행아로 만드는 12개 원칙
21. 청소년들의 새 풍속도
22. 고입 재수생은 미운 오리새끼인가
23. 외상거래하는 어린이들
24. 어린이에 대한 명언들
25. 고3병의 대책과 문제
26. 고교생들, 말을 할줄 모른다.
27. 똑똑한 요즘 아이들
28. 어린이 빈혈환자 늘고 있다.
29. 미혼모의 아이들, 어디로 가나
30. 미혼모와 사생아들

31. 금연·금주학교를 가다
32. 음주와 범죄
33. 청소년과 흡연
34. 건강교실
35. 산성체질
36. 당뇨병이란?

• 원기72년(1987) Ⅱ

1. 법구경 말씀
2. 어머니
3. 성철종정 법어(초파일)
4.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교육
5. 미국의 가정교육
6. 프랑스의 가정교육
7. 일본의 가정교육
8.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
9. 부모와 자식사이
10. 가정헌장
11. 파멸의 조건
12. 어린이들의 글속에 비친 어른들 모습
13. 자녀앞에서 교사를 헐뜯지 말라
14. 작은 성취도 칭찬하라
15. 일방적으로 훈계하지 말라
16. 모든 대학을 인류로 생각케 하라
17. 회초리를 마련해 두라
18. 형제가 다툴땐 동생을 꾸짖어라
19. 세계 아동의 상태보고서(1987)
20. 덜 죽을수록 덜 낳는다
21. 정신과 의사가 본 주부문제
22. 무심결 저지르는 살인
23. 아가들의 소리
24. 미국의 경제위기는 문맹때문
25. 산처럼, 바다처럼 산다.
26. 서울공기, 마시기가 겁난다
27. 일기는 수술대이다
28. 남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29. 희망의 정치를 고대하며
30. 마음의 38선을 지워야 한다
31. 젊은이는 어른의 아버지
32. 민족의 공동체를 꿈꾸며
33.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는 것이 문제다
34. 부처님 말씀
35. 민족의 미래상
36. 약과 식사의 금기사항
37. 부당한 대우는 더이상 못참겠다
38. 생명운동 이대로 계속될 수는 없다
39. 누가 스포츠를 오염시키는가?
40. 정신이 흐르는 육체의 나무
41. 성공의 뿌리
42. 술의 해독
43. 우리들의 시
44. 잠을 설치는 까닭은 무엇인가
45. 과다혼수 이대로 좋은가
46. 어린이날의 어른반성
47.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까?
48. 중심이 튼튼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49. 기억력은 감퇴하지 않는다
50. 어디로 갈까?
51. 마음속에 증오가 일어나면
52. 세월이 약

• 원기72년(1987) Ⅲ

1. 높이 날기
2. 엄마의 6가지 죄
3. 아동의 학대와 재범자
4. 불량환경과 심리적 질환(소련)
5. 괴롭히기 일지(일본)
6. 훌륭한 자식 길러낸 일등어머니
7. 한 자녀 어떻게 길러야 할까?
8. 20~30년후 한 자녀 성인사회 전망
9. 딸은 엄마를 닮는다
10. 엄마가 들려주는 유머
11. 불교도?
12. 나쁜 버릇(어린이문제 행동 지도법)
13.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일생좌우
14. 사랑으로 피는 꽃(동화)

15. 격몽요결(율곡선생의 가정교육 지침서)
16. 조선왕조의 세자교육
17. 대가족 제도와 산업사회
18. 한국의 아동구타 현황과 대책
19. 단하나 남은 가정
20. 왜 돼지는 꿀꿀거리나?
21. 정신과의 창에 비친 한국의 중년여성
22. 중년기 정신질환
23. 의학상식(과호흡증후군은 심리적 요인)
24. 현대인의 정신건강
25. 사상의학
26. 소음과 정신건강
27. 욕심과 정신건강
28. 욕심의 유형들
29. 사랑하는 아빠가(시)
30. 청소년의 약물남용
31. 대만의 약물 남용과 보호수용소
32. 지구촌의 공적(마약)
33. 청소년 지도자의 자질
34. 청소년 이성교재
35. 청소년과 환경
36. 독서실인가 독소실인가
37. 전화목회
38. 예화사용은 이렇게
39. A.P.T지역의 효율적인 목회
40. 금언(金言)

• 원기72년(1987) Ⅳ

○ 통일은 오는가
1. 통일 민족의 대 과업을 앞두고
2. 통일 논의에 관한 제언
3. 북한은 개방될 것인가
4. 백두산에 다녀와서
5.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될 철원
○ 중공의 변화
1. 구원상의 정점에 서있는 중공
2. 중공 개방 정책의 후유증
3. 한과 고난의 땅 북간도에서 온 정철수
4. 중공도 《무작정 상경 소녀》로 골치
5. 미 의식에 눈뜨는 중공 여성들
6. 중공풍자 신조어 홍콩에 유행
7. 중공 대만인과 적극접촉
8. 중공의 윤동주 유적 공개
○ 카톨릭, 기독교의 북한, 중공 선교 정책
1. 통일의 책임수행은 신자부터
2. 중공에서 온 편지
3. 한·중 기독교 친선협회 창립
4. 태권도를 통한 중공선교 꿈꿔
5. 오늘의 중공교회
6. 중공대륙이 우리를 부른다.
7. 중공 복음화를 눈에 보면서
8. 중공을 주시하여 본다
9. 삼백만 동족을 잊을 수 있으랴
10. 북한에도 복음의 메아리를
11. 북한 선교는 민족 복음화에 최대과제
12. 북한동포위해 기도 희생촉구
13. 북한 선교에 관심을
14. 북한 선교를 향한 우리의 자세
15. 북한 선교 10만 정병을 양성한다
16. 침묵교회위한 기도의 날 메시지
○ 원불교의 교화
1. 원불교 교화 생각하여 본다
   a. 점진적인 교화의 묘용(초입교도훈련)
   b. 어려운 만큼 보람있는 교화(비교도 교화)
   c. 법열로 충만된 법회로의 성숙
2. 교당 무엇하는 곳인가
   a. 교당의 본질과 기능
   b. 교당의 사회적 역할
   c. 교당의 교화 방법론
   d. 교당의 합리적 운영 방안
○. 기독교의 목회 활동
1. 청년 목회의 지도 이념과 방향
2. 목회자와 설교
3. 설교를 통한 교회 성장
4. 목회자와 자료관리
5. 교회 성장을 위한 설교의 갱신

6. 좋은 자료가 좋은 설교 낳는다.
7. 교인수 증가 시키는 법
8. 효율적인 전화목회
9. 도시교회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10. 새해 목회 방향의 설정
11. 새 신자 육성을 말한다.
12. 순교교도 안내(돈암교당)

○ 기타

1. 청소년의 집단행위(청소년 비행)
2. 심부름 센터
3. 만화 범람시대

□ 研究團體

1. 教學研究會

교학연구회는 원기40년(1955)년 6월 창립된 원광대학 원불교학과 학생자치활동기구이다. 주로 연구발표, 토론회, 농촌계몽 및 봉사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밖에 공개강좌 교리상담 원불교사 자료조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원불교학의 定立에 노력하였다. 초기 연구회 활동은 기록의 인멸로 상세치 못하나, 교학연구회는 원기39년(1954년 한글날을 기해 박길진, 김영수, 김구용, 강호륜, 박중관교수의 校閱과 임종권 주해강설로 『한글 金剛經(국판 372쪽)』을 발행하였으며, 원기40년(1955) 12월에는 해인사 방장산 등의 佛蹟을 답사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고, 원기43년(1958) 5월 27일에는 교학연구회 주최 「人生論」 토론회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그후 연구발표회를 통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해 오던 중 원기51년(1966) 11월부터는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教史研究班, 先進研究班, 他宗教研究班의 세반으로 분리, 조직하였다.

교학연구회 활동 중 가장 특기할 만한 것으로서는 대학생종교제이다. 이 종교제는 종교간의 불신과 반목을 극복하고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하여 각 종단의 예비교역자들이 참석한 「만남의 場」이었다. 또한 원기50년(1965) 창간한 『教學研究』誌는 1, 2집이 교수 위주의 논문으로 구성된데 비해 3집에는 학생들의 연구반 활동이 두드러졌다. 프린트본 연구지는 제3호로 중지되었다가 원기55년(1970)에는 인쇄본으로 제4집을 내어 원기72년(1987)말 현재 제17집까지 계속 발행하고 있다. 주로 교사, 선진, 타종교연구반이 개편된 教史, 教理, 教化연구반의 연구활동 보고와 연구성과를 수록하였다.

가. 역대임원

번호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명예회장	朴光田(吉眞)	男	1915. 3. 23	41～57	학 장
	회 장	李龍源(龍源)	〃		41～42	
2	〃	宋天恩(天恩)	〃	1936. 7. 9	42～43	
3	〃	鄭維誠(奉吉)	〃	1936. 5. 20	43～44	
4	〃	姜雲祥(東日)	〃	1934. 8. 24	44～45	
	부 회 장	崔奉根	〃		〃	
	〃	金復煥(復煥)	女	1938. 10. 19	〃	
5	주임교수	李中正(鍾行)	男	1926. 6. 14	45～46	
	지도교수	柳基現(炳德)	〃	1930. 9. 2	〃	
	회 장	林允徹(海龍)	〃	1935. 12. 15	〃	
	부 회 장	權峻圓(在完)	〃	1940. 4. 26	〃	
	〃	朴淸秀(姬淑)	女	1937. 10. 21	〃	
6	주임교수	柳基現(炳德)	男	1930. 9. 2	46～47	
	지도교수	金正勇(三龍)	〃	1923. 11. 1	〃	
	〃	李中正(鍾行)	〃	1926. 6. 14	46～	
	〃	宋天恩(天恩)	〃	1936. 7. 9	46～49	
	회 장	朴利元	〃		46～47	
	부 회 장	沈道正(大燮)	〃	1936. 11. 18	〃	
	〃	朴淸秀(姬淑)	女	1937. 10. 21	〃	
7	주임교수	金正勇(三龍)	男	1923. 11. 1	47～48	
	지도교수	柳基現(炳德)	〃	1930. 9. 2	〃	
	〃	韓正圓(基斗)	〃	1933. 8. 30	47～55	
	지도교수	全八根(八根)	女	1927. 3. 2	47～52	
	회 장	沈在喆	男		47～48	
	부 회 장	丁道允(炳允)	〃	1933. 5. 15	〃	
	〃	吳恩聖(貞嬋)	女	1932. 12. 15	〃	
8	주임교수	柳基現(炳德)	男	1930. 9. 2	48～49	
	지도교수	金正勇(三龍)	〃	1923. 11. 1	48～57	
	회 장	丁道允(炳允)	〃	1933. 5. 15	48～49	
	부 회 장	金聖徹(洪喆)	〃	1938. 9. 15	〃	
	〃	朴 (永雲)	女		〃	
9	주임교수	宋天恩(天恩)	男	1936. 7. 9	49～55	

	지도교수	柳基現(炳德)	男	1930. 9. 2	49~57
	회 장	李運徹(鉉澤)	〃	1939. 2. 8	49~50
	부 회 장	李 (鶴宰)	〃		〃
	〃	朴 (京子)	女		〃
10	회 장	金聲振(春會)	男	1939. 10. 13	50~51
	부 회 장	羅道圓(哲浩)	〃	1945. 8. 27	〃
	〃	南宮善鳳(喜仙)	女	1939. 8. 17	〃
11	회 장	張應哲(由錫)	男	1940. 9. 8	51~52
	부 회 장	姜慶樂(甲東)	〃	1942. 12. 1	〃
	〃	柳日新(文子)	女	1943. 9. 4	〃
	지도교수	韓正釋(鍾萬)	男	1932. 1. 11	52~60
12	회 장	姜慶樂(甲東)	〃	1942. 12. 1	52~53
	부 회 장	魯大薰(權用)	〃	1945. 11. 7	〃
	부 회 장	朴慧明(靖姬)	女	1942. 7. 18	52~53
13	회 장	魯大薰(權用)	男	1945. 11. 7	53~54
	부 회 장	趙 (明烈)	女		〃
	〃	金主圓(允謙)	男	1948. 10. 10	〃
14	회 장	金主圓(允謙)	〃	1948. 10. 10	54~55
	부 회 장	李建仁(建仁)	女	1947. 4. 15	〃
	〃	朴光秀(相權)	男	1948. 5. 26	〃
15	주임교수	韓正圓(基斗)	〃	1933. 8. 30	55~56
	지도교수	宋天恩(天恩)	〃	1936. 7. 9	55~57
	회 장	成道鍾(道鍾)	〃	1949. 7. 17	55~56
	부 회 장	柳應現(德順)	女	1945. 3. 26	〃
	〃	申明局(淳鐵)	男	1951. 1. 13	〃
16	회 장	朴南周(漢圭)	〃	1947. 9. 19	56~57
	부 회 장	鄭淑現(春子)	女	1952. 1. 15	〃
	〃	金正有(載璟)	男	1951. 2. 21	〃
17	명예회장	柳基現(炳德)	〃	1930. 9. 2	57~63
	지도교수	徐慶田(昶烈)	〃	1939. 10. 15	57~60
	회 장	金正有(載璟)	〃	1951. 2. 21	57~58
	부 회 장	黃明信(春德)	〃	1947. 5. 17	57~58
18	회 장	黃仁喆(義兌)	女	1952. 6. 2	58~59
	부 회 장	韓喜允(明熙)	〃	1949. 2. 9	〃
19	회 장	하대오(대홍)	男		59~60
	부 회 장	文善慧(慧明)	女	1947. 11. 9	〃
20	주임교수	韓正釋(鍾萬)	男	1932. 11. 1	60~64
	반 장	金宗天(成奎)	〃	1947. 2. 16	60~61

	부 반 장	姜淑圓(仁淑)	女	1952. 10. 17	60~61	
21	반 장	成大眞(一虎)	男	1955. 3. 14	61~62	
22	〃	서동령(동범)	〃		62~63	
	부 반 장	梁道承(貴子)	女	1955. 3. 9	〃	
23	명예회장	宋天恩(天恩)	男	1936. 7. 9	63~64	
	반 장	韓德天(忠鎬)	〃	1957. 2. 28	〃	
	부 반 장	李正仁(正仁)	女		〃	
24	명예회장	韓正釋(鍾萬)	男	1932. 1. 11	64~65	
	주임교수	徐慶田(昶烈)	〃	1939. 10. 15	〃	
	반 장	金圓永(龍完)	〃	1956. 5. 2	〃	
	부 반 장	李性玉(性玉)	女	1951. 8. 6	〃	
25	반 장	盧永寬(煥周)	男	1955. 7. 13	65~66	
	부 반 장	黃旻政(賢淑)	女	1954. 9. 13	〃	
26	반 장	金禪瓊(炳喆)	男	1954. 3. 17	66~67	
	부 반 장	柳世明(淑哉)	女	1952. 8. 13	〃	
27	반 장	朴道廣(光洙)	男	1958. 1. 21	67~68	
	부 반 장	余根榮(福榮)	女	1957. 4. 15	〃	
28	반 장	鄭仁德(德柱)	男	1958. 10. 25	68~69	
	부 반 장	李三德(京烋)	女	1959. 9. 13	〃	
29	학 회 장	鄭仁誠(仁鎬)	男	1957. 1. 24	69~70	
	사 무 장	宋聖堯(姬順)	女	1961. 1. 18	〃	
30	학 회 장	朴允圓(憲默)	男	1957. 11. 27	70~71	
	사 무 장	李常善(希英)	女	1961. 12. 28	〃	
31	학 회 장	朴道範(喜直)	男	1959. 7. 15	71~72	
	사 무 장	姜德濟(昌福)	女	1963. 9. 24	〃	

나. 『敎學硏究』誌 목차

제1집 원기50년(1965) 9. 25

- 宗敎定義問題 …… 柳炳德
- 本來心과 對境界 ……韓基斗
- 諸法無我에 對한 考察 …… 宋天恩
- 空 …… 朴政植

제2집 원기51년(1966)

- 우리의 座標…… 柳炳德
- 四恩思想의 考察…… 宋天恩
- 祈禱와 大禍의 精神 …… 沈道正
- 座談/靑年宗敎人의 先決問題

제3집 원기52년(1967) 7

- 基督敎 槪觀…… 柳炳德
- 敎學竪立上의 基礎課題…… 韓基斗
- 空·圓·正의 解義…… 朴政植
- 敎史硏究의 基礎問題…… 韓鍾萬

* 教史研究先進班 一次報告(逸話篇)
- 主山先生님 逸話
  … 權世圓, 羅道國, 趙仁圓, 鄭祥根, 宋仁鎬
- 三山先生님 逸話
  …… 徐三省, 韓道鳳, 柳玄實
- 八山先生님 逸話
  …… 李道明, 鄭道中, 朴公圓, 金正德
- 道山先生님 逸話 …… 李良信, 許恩振
- 公山先生님 逸話 李德照, 曺英振, 姜慶樂

* 教史研究史蹟班 一次報告
- 十人組團小考 …… 張應哲
- 創立精神 …… 崔柔圓

* 他宗教研究班
- 퓨리턴의 宗教改革 …… 朴慧明
- 基督教의 問題点과 修行 …… 李壯榮

제4집 원기55년(1970) 3. 26
- 教理圖의 問題点 …… 宋天恩
- 基本教書 發展史 …… 教史研究班
- 圓佛教 禮法의 基本性格 …… 韓鍾萬
- 座談/圓佛教의 信仰觀 …… 教理研究班
- 恩으로 본 圓佛教의 倫理觀 …… 韓基斗
- 國內 宗教 實態調査 및 教團問題 의견 수집 …… 教化研究班
- 한국 新興宗教의 전망 …… 李康五
- 類似宗教의 規定에 관하여 ……柳炳德

* 제2회 대학생 종교제 심포지움. 주제:젊은 종교인은 한국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 종교인의 사명의식 … 대전신학대학 조비오
- 올바른 가치관 설정 … 동국대학교 권정옥
- 종교 권위의 탈을 벗자
  …… 서울대학교 이상현
- 봉공 봉사의 정신 …… 원광대학 김은준
- 한국인이 나아갈 새 방향
  …… 천도교대학생회 정 탁
- 인간의 성실한 능력 성균관대학교 이창배
- 바람직한 4·19세대 … 연세대학교 김쾌상
- 적극적인 참여 자세 ·· 한국신학대학 황장욱

제5집 원기57년(1972) 4. 25
- 大宗師의 歷史觀 …… 柳炳德
- 教團創建의 발자취 …… 韓基斗
- 圓佛教 開教動機論 …… 宋天恩
- 圓佛教 教憲의 形成過程 …… 韓鍾萬
- 教化相談學試論 …… 金杌坤
- 一線教化의 問題点 …… 徐慶田
- 歷史 原理로 본 強者 弱者 進化上 要法
  …… 金奉鎭
- Recreation이 教化에 미치는 영향-원불교 Recreation의 방향모색 …… 徐光海
- 圓佛教 定期刊行物의 方向 …… 申淳鐵
- 연구활동 보고/圓佛教 開教 半百年 紀念大會 概要 …… 教史研究班

* 제3회 전국 대학생 종교제 제1부 사상강연. 주제 : 현대 지성인이 본 종교관
- S. Radha krishnan의 종교관 …… 韓基斗
- 토인비가 본 종교관 …… 지명관
- 헉슬리가 본 종교관 …… 이종진

* 제2부 심포지움. 주제 : 새 時代의 宗教像
- 발제강연 …… 柳炳德
- 내면적 명증의 반복 …… 송영섭
- 전위대로서의 교회 …… 장상훈
- 정신문명의 혁명 …… 魯大薰
- 새로운 종교의 가치관 …… 김 활
- 공자의 종교사상 …… 이동희
- 종교와 과학의 공존 …… 구창복

* 제3부 좌담 주제 : 청년의 가치관과 종교

제6집 원기59년(1974) 5. 20

- 處處佛像 信仰論 …… 韓鍾萬
- 圓佛教理念의 倫理的 考察 …… 朴相權

* 特輯 : 圓佛教學의 WISSENSCHAFT化

- 圓佛教學의 基礎概念 …… 韓基斗
- 새로운 人間像 …… 朴營鶴
- 圓佛教學의 方向 …… 柳炳德
- 青年과 教化相談 I …… 黃義兌
- 圓佛教學의 研究方法 …… 徐慶田
- 회람·인도 Humanism의 比較研究 辛日教
- 圓佛教學의 研究方法 …… 金洪喆
- 三學工夫 …… 金復仁
- 一圓相象徵의 研究 …… 朴 薰
- 中道思想의 考察 …… 金洛必

제7집 원기60년(1975) 6. 25

- 圓佛教 開教 動機의 研究 …… 金机坤
- 教役者의 資質과 矯導 例會 出席 增減의 關係 研究 II …… 金炯斗
- 四要의 研究 II - 平等의 概念에 對하여 …… 金道宗

* 研究班 研究活動 報告

- 〈佛法研究會創建史〉 研究 - 圓佛教의 韓國史的 이해를 위하여 …… 教史研究班
- 圓佛教 中央總部 建物 略史 … 教史研究班
- 圓佛教 教理의 形成史 …… 教理研究班

* 자료

- 圓佛教教報 목차(1호~60호)
- 圓佛教 青年會報 목차(1호~26호)

제8집 원기63년(1978) 3. 25

- 佛供의 原理에 대한 研究 …… 韓鍾萬
- 少太山 名稱考 …… 朴龍德
- 佛教와 圓佛教 …… 韓基斗
- 初期資料에서 찾아본 一圓相과 四恩의 表現過程 …… 金福姬
- 圓佛教學研究의 方法 …… 宋天恩
- 韓國念佛信仰의 展開 …… 金鎬炳
- 少太山 融化會通精神小考(I) … 成一虎

제9집 원기64년(1979) 4. 10

- 圓佛教 法律恩 研究 - 正義論을 中心으로 …… 李鉉澤
- 圓佛教 戒文이 教化에 미치는 영향 …… 朴德潤
- 祈禱에 關한 研究 …… 張僖淑
- 少太山의 社會觀 研究 …… 朴孟洙
- 父母報恩에 關한 研究 …… 金進東
- 11科目의 Program化 …… 梁海寬

제10집 원기64년(1979) 8.30

- 一圓相 信仰의 再考 …… 韓忠鎬
- 圓佛教 自善事業에 對한 小考 …… 李南淑
- 生態學的 倫理觀에서 본 恩思想 考察 …… 金成奎
- 農村 地域社會 開發에 있어서 岫溪農園의 役割 …… 張夏烈
- 少太山의 未來觀 …… 徐 允
- 부록/圓佛教의 殉教精神 - 法認精神의 歷史的 意味 …… 金机坤
- 圓佛教 受難史 小考 …… 李壯善
- 圓佛教 教化方法論 - 教化團 活用方案 中心으로 …… 李正仁

제11집 원기65년(1980) 12. 25

- 教化 年間計劃 作成 方案 …… 徐慶田
- 少太山 九人弟子에 대한 小考 …… 宋耘根

- 效率的 敎化를 爲한 圓佛敎 用語 考察 …… 柳聖泰
- 宗立學校에서의 宗敎敎育에 關한 硏究 …… 崔蓮順

제12집 원기67년(1982) 4. 20

- 少太山의 職業倫理 …… 安俊彦
- 分析心理學에서 본 無意識의 意識化와 圓佛敎 思想에서 본 心田啓發에 關한 比較 …… 柳美賢
- 少太山 思想에 있어서 Humanism的 傾向에 關한 考察 …… 金仁宗
- 少太山의 人間指導方法論 小考 … 梁貞禮
- 圓佛敎 開敎理念에 나타난 革命性의 問題 …… 金龍完

* 부록/圓佛敎學科生 多季訓練 PROGRAM啓發

1. PROGRAM啓發의 必要性 …… 李成澤
2. PROGRAM理論과 實際 …… 成道鍾
3. Program實例 몇 가지/① 대각개교절과 이리지역사회의 역할 ② 노인문제 상담소설치운용 ③ 병든 사회 치료를 위한 도시 빈민지역 교화

제13집 원기68년(1983)

- 三同倫理를 通해 본 人類平和 方案 硏究 …… 柳淑哉
- 因果報應의 理致와 陰陽相勝과의 關係에 관한 硏究 …… 李明熙
- 三·一思想을 通해 본 信仰의 對象論－佛敎, 基督敎, 大倧敎 中心으로 …… 吳恩均
- 圓佛敎가 한국의 女性開化에 미친 영향 …… 鄭恩福
- 『朝鮮佛敎維新論』과 『朝鮮佛敎革新論』의 比較考察 …… 趙秀子
- 少太山大宗師의 봉래산 입산 過程과 意義 …… 金炯寧
- 三山 金幾千宗師의 生涯와 思想 … 金漢奎
- 圓佛敎 音樂의 성립과 역할에 대한 考察 …… 崔基仙

제14집 원기69년(1984) 4. 28

- K. Jasperse의 哲學的 信仰을 통해 본 一圓相 信仰 硏究 …… 金宣宇
- 圓佛敎 思想에 나타난 調和의 精神 …… 裵玄貞
- 日帝侵略下의 圓佛敎 農民運動 … 朴光洙
- 『建國論』에 나타난 國家發展 理念 …… 趙秀子
- 都市底層 社會에서의 圓佛敎 敎化方向 摸索 …… 張永成
- 圓佛敎 兒童과 無宗敎 兒童間의 道德的 判斷力 發達에 관한 比較 硏究 … 洪美玉
- 圓佛敎 農村敎化의 史的 展開 過程 …… 崔秉基

제15집 원기70년(1985) 7. 20

- 소태산대종사의 노동관 …… 金鎭根
- 원불교 사상에 나타난 佛에 關한 硏究 …… 吳大煥
- 圓佛敎 正義觀에의 接近 …… 安泰鉉
- 唯識思想의 修行과 圓佛敎의 心性啓發 …… 朴炳洙

- 圓佛教 民衆教育의 一考察 …… 張敬道
- 圓佛教 教徒의 信仰感情에 關한 研究 …… 金秀珠
- 圓佛教 社會變動 理論에 관한 研究 … 申俊默
- 圓佛教 女性學 序說 …… 河正男

제16집 원기72년(1987) 1

- 生氣論의 側面에서 본 圓佛教 恩思想 …… 姜性眞
- 圓佛教 信仰論에 대한 一考察－陰陽相勝과 因果報應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 金永日
- 圓佛教 念佛法 研究 …… 朴炳淑
- 鼎山宗師 性理說 研究 …… 朴憲默
- 貞觀坪再防堰工事에 대한 研究 …… 趙祥鎬
- 圓佛教 社會福祉에 對한 小考 …… 李永觀
- 圓佛教 青年訓練의 實際에 關한 研究 …… 金洋元

제17집 원기72년(1987) 12

- 圓佛教 思想에 나타난 儒·佛·仙 三教會通에 關한 小考 …… 李珍宰
- 圓佛教 性理說에 關한 研究 …… 徐銀愛
- 少太山의 歌辭研究 …… 陸根鳳
- 朝鮮性理學의 흐름에서 본 靈氣質의 의미 …… 宋性鎭
- 圓佛教 農村教化의 活性化에 대한 연구 …… 朴恩珍
- 圓佛教 結婚教役者의 가정생활에 대한 고찰 …… 李永宰

* 부록

- 1987학년도 학사논문 제목

다. 교학 연구발표회

제38차 원기57년(1972) 9. 11	• 원불교 경제관	유병덕
	• 四要 연구	김도종
제39차 원기57년(1972) 11. 11	• 處處佛像과 六大緣起說의 비교연구	최동완
	• 開校의 동기	송천은
제40차 원기58년(1973) 9. 22	• 학생교화의 문제점	황의태
	• 원불교 교화활동의 몇가지 문제	서경전
제41차 원기59년(1974) 3. 23	• 휴머니즘의 일반적 고찰	신일교
제42차 원기59년(1974) 4. 12	• 教徒論	서경전
	• 종교의 제3分化 조직이 종교발전에 미치는 영향	양현수
제43차 원기59년(1974) 4. 25	• 動과 靜	송천은
	• 三學공부	김복인
제44차 원기59년(1974) 5. 4	• 교도 출석 증감과 교역자 자질에 관하여	김형두
제45차 원기59년(1974) 5. 11	• 현대종교의 지향성 圓佛教 救援觀	유병덕
	• 禪과 불교의 현대화	한기두
	• The Omegar Poing of Teilhard de chardin	김남기
제46차 원기59년(1974) 5. 20	• 中道사상의 고찰	김낙필

제47차 원기59년(1974) 9. 14
- 원불교학의 방법 …… 김도종

제48차 원기59년(1974) 9. 21
- 개교동기에 관한 연구 …… 송천은

제49차 원기59년(1974) 11. 16
- 일원론적 측면에서 본 유교의 철학사상 …… 김남기
- 揚名의 致良知와 일원상 수행 …… 김순임

제50차 원기60년(1975) 3. 15
- 禪과 頓漸의 연구 …… 김영두

제51차 원기60년(1975) 4. 19
- 四要연구－평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 김도종

제52차 원기60년(1975) 4. 19
- 少太山의 人性觀 …… 성익진

제53차 원기60년(1975) 5. 31
- 민주적 지도자의 자세에 관하여 …… 양성원

제54차 원기60년(1975) 6. 7
- 예비교역자 자세에 관한 小考

제55차 원기60년(1975) 6. 21
- 『불법연구회 창건사』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문제점 …… 교사연구반

제56차 원기60년(1975) 11. 19
- 교화 현장 …… 최동완
- 정신수양(76. 8. 31) …… 김보중
- 教法의 총설(76. 9. 29) …… 황도국
- 일원상 수행에 대하여(76. 10. 6) …… 장희숙
- 원불교 사회관(77. 6. 14) …… 박맹수
- 교화부분에 관한 것들(78. 4. 26) …… 양해관
- 원불교 지도자상 연구(78. 5. 3) …… 박맹수
- 원불교 한국관(78. 6. 7) …… 조기호
- 예비교역자훈련의 상시성 정기성 분석(78. 9. 2) …… 양해관
- 四恩의 일반적 고찰(79. 6. 9) …… 이건태
- 교리 해석학 방법론(79. 9. 8) …… 최문채
- 원불교 용어 특징 고찰 …… 유성태
-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종교상(79. 9. 15) …… 한명희

제3회 학술 발표회
원기65년(980) 11. 25
- 창립정신 실현 방안 …… 오은균
- 원불교의 민족운동 …… 유미현
- 사회발전 원리로서의 四要 …… 배현정
- 소태산과 라다크리슈난의 會通사상 …… 유성태

제4회 학술 발표회
원기66(1981.)
- 소태산의 직업관 …… 안준언
- 실존적 측면에서 본 원불교사관 이해 …… 이명회
- 사요에 나타난 사회복지관 …… 김수주
- 신앙의 대상 고찰 …… 서남구
- Personality에 관한 小考 …… 사회학연구반
- 소태산의 풍류관 …… 최기선
- 인간 소외와 四恩 …… 서영수

제5회 학술 발표회
원기67년(1982) 5. 11
- 三·一思想을 통해 본 신앙의 대상론
- 대종사 蓬萊山 入山에 대한 小考 …… 김형녕
- 『朝鮮佛教革新論』과 『朝鮮佛教維新論』의 비교 고찰 … 조수자

제5회 학술발표회
- 恩의 인식에 대한 論考 …… 신준묵
- 대각개교절 儀式 실현 방향 …… 김병철

제6회 추계학술발표회.
원기67년(982) 9. 24
-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고찰 …… 김주연
- 원불교 음악에 대한 고찰 …… 최기선
- 소태산의 사회개혁론 …… 여옥분
- 唯識思想의 수행과 원불교 心性 계발 …… 박병수
- 가정환경이 자녀 성격에 미치는 영향 …… 전욱선
- 원불교 경제관에 대한 고찰 …… 백범기
- 청소년과 여가 선용 …… 김숙경
- 청소년 가정 교화와 방향 모색 …… 정천경

제7회 춘계학술발표회.
원기68년(1983)
- 원불교 사회 이론에 관한 연구 …… 신준묵
- 한국 농촌에서의 원불교 역할에 관한 연구 …… 최진원
- 圓光人의 Symbol정립에 대하여 …… 이원조
- 원불교 교사 사료 편성에 관한 고찰 …… 김영수

제8회 추계학술발표.
원기(1983) 10. 8
- 원불교와 기독교의 인사행정에 관한 비교 연구 …… 이영관
- 원불교 교화 방법론의 접근 …… 백범기
- 실학과 원불교 사상－제도개혁과 영육쌍전을 중심으로 …… 김신원
- 사회발전을 위한 원불교적 접근에 관한 고찰 …… 사회과학반

제9회 춘계학술발표.
원기69년(1984) 5. 25
- 교단경제 형성발전에 관한 연구 …… 유원곤
- 신앙 대상의 諸類型과 일원상 신앙에 관한 연구 …… 안 기
- 복지국가 문제에 대한 원불교적 접근－急進主義 비판을 중심으로 …… 박 승
- 설교 기초로서의 話術 …… 김성봉

제10회 춘계학술발표.
원기71년(1986) 6. 9
- 원불교 사회복지에 대한 小考 …… 이영관
- 한국 근대 가사의 맥락에 있어서 소태산 가사의 위치 정성남
- Carl G. Jung의 心性과 원불교 心性 …… 김자연

2. 신룡교학회

원기66년(1981) 8월 하계기관교무훈련에 참석한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13명이 모여 학문상의 정보교류 연구촉진 및 친목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시 임원진을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연구발표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발기인 대표 김성관, 성도종, 김기원, 심명국, 한희윤교무 등은 원기67년(1982) 제1차 연구발표회를 개최하면서 초대의 글에 「원불교 교역자로서 대학원에 진학하여 수학중인 교무들의 숫자가 상당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공부하다 보니 서로의 관심분야와 전공에 관한 의견교환이나 학문적인 정보교류가 소홀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원불교 교역자로서 각 대학원에 재학중인 교무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그간의 연구업적을 종합 정리하고 토론하여 교단의 발전과 원불교학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서로의 친목을 도모키 위해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원기67년(1982) 2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간 충청도 계룡산 계곡에 있는 삼동원에서 제1차 연구발표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연구모임은 시작되엇다. 제1차 연구발표회는 「한국근대문화와 원불교」라는 주제로 신명국(한국근대사와 원불교운동), 한희윤(한국근대여성운동의 측면에서 본 원불교)교무의 발표와 권도갑, 이하정교무의 대표질문이 있었고 토론시간도 마련했다. 다음날인 2월 7일 김기원(한국근대성리학과 원불교사상), 신명교(증산사상과 원불교사상), 조원오(한국근대유학과 원불교사상), 성도종(원불교 교육정책의 방향)교무의 발표와 이성전, 정현인, 노대훈, 이정인 교무의 대표질문이 있었다. 이어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모임의 임시명칭을 《원불교 교역자 대학원 재학생회》로 결정하고 임시 임원진을 정식 임원으로 인준하였다. 초대 회장으로 김성관교무, 간사로 총무－성도종, 연구－김기원, 섭외－신명국, 편집－신명교, 재정－한희윤, 서기－이하정교무가 선임되었으며 책임편집위원으로 신명교교무, 간사 전원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기로 결의하였다. 창립총회에서 마련된 회칙에서 그 목적사업을 ① 연구발표회 개최, ② 연구지 발간, ③ 회원훈련으로 정하였으며 원기68년(1983) 8월 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개정하고 명칭을 《신룡교학회》로 확정하였다.

가. 연 혁

66(1981) 8. 발기인들의 모임－하계기관교무훈련에 참석한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13명이 모여 학문상의 정보교류 연구촉진 및 친목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우고 임시 임원진을 선정함.

66(1981) 8. 임시임원회－제1차 연구발표회 주제 및 발표자 질문자 선정·임원진 보강

66(1981)11. 임시임원회－제1차 연구발표회 장소 및 일자 결정

67(1982) 2. 6～7 제1차 연구발표회 개최. 주제 : 한국근대문화와 원불교. 장소 : 삼동원

67(1982) 2. 7 창립총회개최－모임의 임시 명칭을 원불교 교역자 대학원 재학생회로 결정. 임시 임원진들 정식 임원으로 인준받음.

67(1982) 6. 1 임원회 : 82년도 하계 연구발표회 주제 발표자 질문자 및 장소 일자 결정, 업무분담(총무 연구 홍보 편찬 재무 서기). 발표회를 동·하계 2회 개최하기로 함.

67(1982) 7.2ᄋ 임원회 : 하계 발표회 계획안 확정

67(1982) 8.21～22 제2차 연구발표회 개최. 주제 : 현대사상과 종교. 장소 : 삼동원

67(1982) 8.22 제2회 정기총회 개최－임원회 결의사항 인준받음. 제3차 연구발표회 주제 및 발표자 질문자 선정. 연구지 발간을 결의

67(1982)10.13 임원회－제3차 연구발표회 장소 일자 결정. 연구지 발간 계획 확정(명칭 : 정신개벽. 발행부수 : 500부)

68(1983) 1.21～22 제3차 연구발표회 개최. 주제 : 한국도시문제의 인식. 장소 : 중앙총부 문화원

68(1983) 8. 6～7 제4차 연구발표회 개최. 주제 : 원불교 교육의 이념과 과제. 장소 : 영산선원

68(1983) 8. 7 정기총회－결산보고 및 인준과 정신개벽 2집(신명교교무 추모집) 발간의건 및 회칙개정

본회명칭 : 원불교교역자 대학원 재학생회에서《新龍敎學會》로 변경

68(1983) 9.16～17 임원회의－편집간사에 장연광교무 선임 및 편집위원 선정

제5차 발표회부터 신룡교학회 제반운영을 편집위원들에게 일임하고 회장 및 간사들은 적극 지원해주기로 함

69(1984) 2.18～19 제5차 연구발표회 개최. 주최 : 교단과 경영. 장소 : 만덕산 훈련원

69(1984) 2.19 정기총회－제6차 발표회 주제 선정

69(1984) 3. 1 편집위원회의－제5차 발표회 평가 및 제6차 발표회 준비사항 토의

69(1984) 7.28～29 제6차 연구발표회 개최. 주제 : 교화이론과 그 실천방안. 장소 : 원광선원

69(1984) 7.29 정기총회－제7차 발표회 주제 선정 및 신임회장 및 임원선출

69(1984) 9. 7 편집위원회의
70(1985) 1.19～20 제7차 연구발표회 개최. 주제 : 소태산의 인간훈련. 장소 : 원불교수계농원
70(1985) 1.20 임시회－결산보고 인준 및 제8차 연구발표회 주제선정
70(1985) 3.20 편집위원회의－연구발표진행 평가 및 제8차 연구발표회 준비
6.12 편집위원회의－제8차 연구발표회 발표자 확정 및 일자. 장소 선정
70(1985) 6.29～30 제8차 연구발표회 개최. 주제 : 원불교문화의 방향. 장소 : 영산선원
70(1985) 6.30 정기총회－결산보고 및 인준과 제9차 발표회주제선정
70(1985)10.25 편집위원회의－연구발표 진행평가와 정신개벽 4집 편집발간문제토의
70(1985)11.30 편집위원회의－제9차 발표준비진행점검과 연구지 발간준비사항 점검
71(1986) 1. 5 편집위원회의－제9차 연구발표회 일정 장소 확정
71(1986) 1.18～19 제9차 연구발표회 개최. 주제 : 원불교신앙의 제문제. 장소 : 하섬수양원
71(1986) 1.19 정기총회－결산인준과 제10차 연수발표 주제선정
71(1986) 3.12 편집위원회의－9차 발표회 평가 및 제10차 발표회 발표자와 질의자 선정
71(1986) 6.10 편집회의－제10차 발표회 일자 장소 선정
71(1986) 6.28～29 제10차 연구발표회. 주제 : 원불교선과 동양전통의 수련법. 장소 : 영산선원
71(1986) 6.29 정기총회 제11차 연구발표 방향토의 및 주제선정, 임원인준(서기 조상원)
71(1986) 9.15 편집회의
71(1986)11.25 편집회의－제11차 연구발표 일자, 장소 결정
72(1987) 1. 7 편집회의－발표일자조정과 정신개벽 제5집 발간준비
72(1987) 2.26 정신개벽 제5집 발간
72(1987) 2.21～22 제11차 연구발표회 개최. 주제 : 원불교와 사회. 장소 : 원불교이리교당
72(1987) 2.22 임시회－제12차 발표주제논의
72(1987) 3.20 편집회의
72(1987) 5.30 편집회의－제12차 발표일정과 장소 확정
72(1987) 6.27～28 제12차연구발표회 개최. 주제 : 원불교 개교의 동기. 장소 : 영산선원
72(1987) 6.28 정기총회－결산보고 및 신임임원 선출과 인준
72(1987) 8.30 임원회의－정신개벽 6집 편찬의 건. 신룡교학회 일지 및 사진첩작성의 건과 제13차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선정
72(1987)12.10 임원회－차기발표회 일정 장소 확정

나. 역대임원

대	직 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출신대학원	비 고
1	회 장	金 性 觀	男	1948. 7.12	67. 2. 7~69. 7.27	원 광 대	
	총 무	成 道 鍾	〃	1949. 7.19	67. 2. 7~72. 6.27		
	연 구	金 基 圓	〃	1949.10.16	67. 2. 7~69. 7.27	원 광 대	
	섭 외	申 明 局	〃	1951. 1.13	67. 2. 7~72. 6.27	고 려 대	
	편 집	辛 明 教	〃		67. 2. 7~72. 6.27	부 산 대	
	재 정	韓 喜 允	女	1949. 3. 9	67. 2. 7~72. 6.27	원 광 대	
	서 기	李 河 淨	〃	1957.11.25	67. 2. 7~72. 6.27	〃	
2	회 장	金 基 圓	男	1949.10.16	69. 7.28~72. 6.27	〃	
	연 구	梁 賢 秀	〃	1047. 8.19	69. 7.28~72. 6.27	원 광 대	일본유학
3	회 장	梁 賢 秀	〃	1947. 8.19	72. 6.28~	〃	〃
	총 무	張 淵 光	〃	1947. 1.28	72. 6.28~	연 세 대	
	연 구	朴 圓 鉉	〃	1947. 1.12	72. 6.28~		
	섭 외	南 宮 誠	〃	1950.10. 1	72. 6.28~	전 남 대	
	편 집	朴 光 秀	〃	1948. 5.26	72. 6.28~		
	홍 보	薛 允 煥	〃	1946. 8.30	72. 6.28~		
	재 무	李 聖 田	女	1953. 5.15	72. 6.28~	원 광 대	
	서 기	曺 常 圓	男	1955. 7. 4	72. 6.28~	청 주 대	

다. 연구발표회

연구발표회는 회원들의 연구촉진과 상호간의 학문적 정보교환 그리고 연구풍토 조성과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1차 연구발표회(원기67년 2월 6일)를 시작으로 연 2회씩 계속되어 지고 있다. 다음은 연구발표회의 주제와 발표자의 명단이다.

제1차 : 韓國 近代文化와 圓佛敎 원기67. 2. 6~2. 7

- 韓國近代史와 圓佛敎運動 …… 신명국
- 韓國近代女性運動의 측면에서 본 圓佛敎 …… 한희윤
- 韓國近代性理學과 圓佛敎思想 …… 김기원
- 甑山思想과 圓佛敎思想 …… 신명교
- 韓國近代留學과 圓佛敎思想 …… 조원오
- 圓佛敎 敎育政策의 方向 …… 성도종

제2차 : 現代思想과 宗敎 원기67. 8. 21~8. 22

- 實存主義에서 본 宗敎 …… 박윤철
- K. Marx의 宗敎觀 …… 김도종

- M. Weber의 宗教觀 …… 정현인
- C. G. Jung의 宗教觀 …… 김성관

제3차 韓國都市問題의 認識 원기 68. 1. 21~22

- 韓國의 都市化過程과 그 問題 …… 설윤환
- 都市家族 問題와 教化 …… 성시종
- 都市社會와 大衆文化 …… 박원현
- 都市社會와 女性問題 …… 서원주
- 都市貧民地域의 實態와 教化 …… 한창민

제4차 : 圓佛教 教育의 理念과 課題 원기68. 8. 6~8. 7

- 圓佛教學科의 교육과정에 관한 硏究 …… 서광원
- 圓佛教 教育觀 형성을 위한 연구 … 김혜광
- 少太山의 人間教育思想 …… 남궁 성
- 圓佛教 社會教育의 方向 …… 장연광

제5차 : 教團과 經營 원기69. 2. 18~2. 19

- 教團行政의 효율화를 위한 一考察 …이성은
- 圓佛教創立精神과 管理精神에 관한 小考 …… 최경도
- 社會發展과 企業倫理 …… 최영진
- 圓佛教 女性學序說 …… 하상의
- 莊子의 生死觀 …… 유성태

제6차 : 教化理論과 그 實踐方案 원기69. 7. 28~7. 29

- 教化의 理念(발제강연) …… 서경전
- 教化行政의 主要課題 …… 김주원
- 教化活性化를 위한 교역자 교육과정 개선 방향 …… 서광원
- 教團의 社會認識과 教化 …… 신명국
- 大學生教化의 現實과 對策 …… 김성훈
- 禪과 健康 …… 손홍도
- 實踐教學의 行動科學的 접근 …… 양해관

제7차 : 少太山의 人間訓練 원기70. 1. 19~1. 20

- 少太產大宗師의 心田啓發訓練 …… 김인소
- 戒文實踐과 教堂教化訓練의 方向 … 권도갑
- 定期訓練의 意義와 그 實踐의 反省 김경일
- 靑少年 教理訓練의 方向 …… 이성전

제8차 : 圓佛教文化의 方向 원기70. 6. 29~6. 30

- 圓佛教文化의 본질적 성격 …… 박원현
- 圓佛教禮樂論의 理念 …… 김기원
- 圓佛教聖歌에 나타난 음악정신 …… 오선도
- 文化意識과 教化 …… 박광수

제9차 : 圓佛教 信仰의 제문제 원기71. 1. 18~19

- 원불교 신앙대상의 호칭 연구(기조발표) … 서경전
- 佛身觀과 圓佛教信仰 …… 노권용
- 信仰에 있어서 心告와 祈禱 …… 박윤철
- 교화일선에서의 신앙체험문제 …… 이원경
- 법회의식에 있어서 신앙성 연구 … 정현인

제10차 : 圓佛教禪과 동양전통의 修練法 원기71. 6. 28~6. 29

- 看話禪과 默祖禪의 본질 …… 김경일
- 圓佛教 坐禪法의 특징 …… 김성택
- 圓佛教 禪學硏究의 현상과 과제 … 양현수
- 老·莊의 수련법 연구 …… 유성태
- 禪과 신비주의의 비교 …… 하상의
- 陰陽論의 漢醫學上 應用 …… 김학종

제11차 : 圓佛教와 社會 원기72. 2. 21~2. 22

- 한국 민족주의 관점에서 본 원불교 신명국
- 불법연구회 민중교육 …… 김혜광
- 원불교와 사회복지 …… 성시종
- 사회교육적 관심에서 본 원불교 … 장연광
- 농촌사회 개발로서 수계농원의 역할 …… 김명덕

제12차 : 圓佛教 開教의 動機 원기72. 6. 27~6. 28

- 낙원사상의 흐름과 개교의 동기 … 김인소
- 인본주의와 개교의 동기 …… 박광수
- 개방사회론과 개교의 동기 …… 박원현
- 신과학 운동과 동양사상 …… 조용헌

라. 『精神開闢』誌 발행

연구지의 발행은 신룡교학회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며 업적이다. 창간사에 「연구지 발간을 통해서 우리 젊은 뜻이 교단발전과 교학수립에 일익이 되고 나아가 인류구제를 향한 精神開闢의 敎理精神이 弘布되는데 一助가 되기를 심축하는 바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연구지는 매년 개최되는 연구발표회의 내용과 특별기고, 논문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원기67년(1982) 11월 1일 제1집을 시작으로 매년 발행하고 있다. 다음은 『精神開闢』誌의 目次이다.

제1집 원기67(1982)

- 近世性理學의 圓佛敎思想 김낙필(기원)
- 甑山思想과 圓佛敎思想… 신일교(명교)
- 近代儒學과 圓佛敎…… 조용렬(원오)
- 韓國近代女性運動의 側面에서 본 圓佛敎 …… 한명희(희윤)
- C. G. Jung의 宗敎觀 …… 김성관(성관)
- K. Marx의 宗敎에 대한 태도 …… 김도종(도종)
- Max Weber의 宗敎觀…… 정순일(현인)
- 存在主義에서 본 宗敎 … 박맹수(윤철)
- A study of Alaya Vijnana in the lanka vatara sutra …… 김복인(복인)

제2집 원기68(1983)

- 圓佛敎 正義槪念에 대한 考察 …… 신일교(명교)
- 少太山大宗師 碑銘의 연구 …… 양은용(현수)
- 豫備敎役者 교육을 위한 前提 …… 이화택(성택)
- 圓佛敎社會敎育方向의 硏究 …… 장하열(연광)
- 圓佛敎 敎育觀에 관한 고찰 …… 김귀성(혜광)
- Hegel 哲學에서의 宗敎… 김도종(도종)
- 자유언론과 정부와의 갈등에 관한 연구 …… 박영학(원현)
- 都市 家族問題와 敎化 … 성시종(시종)

제3집 원기69(1984)

- 圓佛敎 敎團의 行政文化的 토양에 관한 一考 …… 이성은
- 敎化活性化를 위한 교역자 교육과정 개선방향 …… 서광원
- 少太山과 莊子의 言語觀 比較… 유성태
- 「論理硏究」에 나타난 E. Husserl의 言語 哲學 …… 배의용
- 社會發展과 企業倫理 ……최영진
- 鈴木著 "大解說"의 序言 ……Von C. G. Jung 김성관(註)
- 宗敎간의 大禍 十誡命 …… 스위들러 최준석(註)

제4집 원기70년(1985)

- 戒文實踐과 敎堂敎化 訓練의 方向 …… 권용갑(도갑)

- 定期訓練의 意義와 그 實踐의 反省 …… 김정관(경일)
- 圓佛教 文化의 지향 …… 박영학(원현)
- 圓佛教 禮樂論의 淵源과 理念 …… 김낙필(기원)
- 圓佛教 聖歌에 나타난 音樂精神 …… 오재신(선도)
- 道德教化의 問題…… 김귀성(혜광)
- 元曉의 倫理觀…… 강귀례(명진)
- 「易經」에대 한 序言 …… Von C. G. Jung 김성관(註)
- On anatta doctrine in Pali Nikayas …… 김준식

제5집 원기71년(1986)

- 圓佛教 開闢思想의 硏究 김정관(경일)
- 圓佛教 無時禪의 硏究 … 이정원(하정)
- 青少年期 道德性 發達의 硏究 …… 장하열(연광)
- 栗谷의 教育思想에 관한 硏究 …… 이성전(성전)
- 陰陽論의 東醫學的 考察 김종성(학종)
- 莊子의 生死觀 硏究 …… 유성태(성태)

마. 신룡 교학회 회칙

1(명칭) 본회는 신룡 교학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원불교 교역자들의 연구 활성화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발표회, 연구지 발간, 회원훈련 등의 활동을 한다.

4(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원불교 교역자로서 평의원 2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5(임원 및 선거) 본회의 회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이사 약간인 및 감사 2인을 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회의 업무를 분장하고 본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5)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 평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단의 추천과 평의원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한다.

(6)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고문) 본회에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7(총회) 본회는 정기 평의원 총회와 임시 평의원 총회를 둔다.

(1) 평의원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정기 평의원 총회는 매년 7월에 개최하며, 임원 선출 예·결산심의, 사업계획 수립 등 본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3) 임시 평의원 총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본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8(임원회) 본회는 임원회를 둔다.

(1)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출석시킬 수 있다.

(2) 임원회에서는 평의원 총회의 위임 사항 및 본회 활동에 관한 기타 사항을 의결한다.

9(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회사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10(부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Ⅵ. 修養·療養機關

소태산대종사는 일생을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누고 노년기에는 「경치좋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세간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대사를 연마」하도록 하였다. 정산종사도 「노년기에는 주로 수양에 전일하여 영원한 세상에 정신의 종자를 충실히 길러야 한다」고 하여 휴양의 도와 해탈의 도를 밝혔다.

이와같은 敎旨가 제시하는 것은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수양·요양기관 및 노인자선기관이 일반사회에서 정의하는 노인복지기관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 둔 것이다.

원불교 수양·요양기관의 정의는 「원불교 이념에 바탕하여 교화에 전념하다가 휴양하는 곳, 老來에 生死해탈을 얻기 위한 수양기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일과가 「아침에는 수양정진시간, 낮에는 보은노력시간, 저녁에는 참회반성시간」으로 정해져 자발적인 정진을 하고 있다.

수양·요양기관에 있어서 修道院은 少太山大宗師 在世당시 李共珠교무에게 女子전무출신 특히 貞女들의 장래를 보살펴 주라는 간곡한 부촉에 의해서 發足된 기관이다. 즉 일터에서 퇴임 후 후생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사업이다.

수도원의 모체는 현재의 한남동 수도원이였다. 일찌기 교단에서 전재동포구호사업 중 緣故權을 얻어 拂下되었고 그뒤 국가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매각되었으나 교단적인 절실한 요청에 따라 修道院의 몫으로 定해졌던 것이다. 즉 원기43년(1958) 8월 4일 한남동 토지를 拂下받으면 수도원을 건립한다는 재단법인 원불교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으며, 원기48년(1963) 4월 3일에 이공주교무가 여자전무출신에게 私有財産일부를 양도함에 따라 수도원은 점진적인 발전을 해왔다.

수양기관은 교도들의 염원에 의해서 또는 교단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수양기관의 효시는 원기32년(1947) 9월 당리수양원과 원기34년(1949) 8월 개성수양원이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가장 오래된 곳은 원기38년(1953) 11월부터 시작한 하섬수양원이다. 연령에 구분없이 또한 재가·출가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도량이다.

요양기관은 원기35년(1950) 4월 금평요양원이 효시가 되었다. 전무출신들이 교단의 사업에 전념하다가 휴양하는 곳으로 또는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직접적인 동기는 원기45년(1960) 9월 24일 회갑을 맞이하신 정산종사의 유시에 의해서이다. 교단에서는 원기47년(1962) 4월 26일 정산종사회갑기념 기금으로 《법은재단》을 발족하여 전

무출신 요양 및 치료시설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후에 변중선교무의 노력으로 발전적인 기반을 다져왔었다.

현재 원불교 수양·요양기관은 수도원 4개, 수양원 5개, 요양원 6개(3개는 폐쇄)가 있다.

□ 修 道 院

수도원은 全教役者中 多數 貞女들의 老後와 厚生福祉 등 諸般을 밑받침하기 위하여 이룩되었다.

少太山大宗師께서 貞女들의 눈물을 빼지 않도록 하라시는 부촉이 계시고 鼎山宗師께서 선물로 받으신 所藏貴重品 탁상시계와 금덩이를 내 주시며 修女院의 基礎를 닦으라 督勵하시고 大山宗法師께서는 要所 要所에 修道院 몫으로 우선하여 將來를 준비하게 하심은 수도원 문제가 교단적 重要 課題가 되어 있음이며 그러므로 일찍부터 깊은 관심속에서 胎動되었다.

그러던 중 해방 以後부터 교단에서 緣故權을 가지고 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山 10번지를 비롯한 垈地 및 林野를 拂下, 確保하여 修女院을 建設할 것을 결의통보(43.8.4)받아 少太山大宗師께 貞女들의 將來에 대하여 부촉받으신 바 있는 감찰원장 李共珠교무는 이 일에 앞장서서 서울 要人 몇사람의 힘을 입어 원기46년(1961) 7월 4년여에 걸쳐 拂下를 마치어 垈地 3,210평과 林野 9,790평(風致地區)의 完全한 所有權을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拂下에 參與한 各人分 分離하고 산 6,200여평에서 원기51년(1966) 1월에 3,500여평을 매각하여 圓高負債 1,200만원을 淸算한데 이어 그 뒤로도 서울 普和園에 관련된 負債를 담당 원기52년(1967) 6월에는 普和園 解體에 따른 諸般經費 125萬원을 支拂, 서울사무소의 負債 元利 200萬원을 상환, 하섬취득과 유지답 마련을 支援, 끝내는 한남동 증발 보상금(58.1.15)을 받아 서울회관 建立에 9,000萬원을 支援 숙제를 풀게 되는 등 교단적 急所에 救急을 담당하였으나 지금은 公園用地로 묶이고 公有化 措置되어 풀지 못한 채 새로운 施設이 어렵게 되어 있다.

修道院으로서는 現在 서울수도원으로 使用하고 있는 旣存建物외 垈地 및 林野 2,300여평이 남아(47.6 남산공원공사 도로에 483평 편입) 있으며 그간 증발 보상금을 殘分으로 生産性 方向에 투자하자는 決議에 따라 故 宋玄風先生이 喜捨한 땅 3萬평(수호인 7,000평 떼어줌)의 楊州 林野에 農場을 開設(50.1~53.12)하였으나 軍用비행장으로 편입됨에 따라 철수하고 다시 꽃집을 종로구 낙원동에 開設(54.5~55.1)했다가 철수 원기55년(1970)에는 종로 5가 33-1에 55평 建物을 當時價 25,788,000원에 買入 修理하여 6월 30일에 한약업 서울보화당을 開設하여 現在 경영중에 있다.

원기58년(1973) 3월에 益山郡 선용동 所在 徐氏 所有 山 5,000평을 300여만원에 買入 現 益山 修道院의 基幹이 되었고 同年 4월에 종로교도 申圓觀 全隱德부부로부터 서울 도봉구 쌍문동 542에(垈地, 田, 林野) 3,000평(약 200평은 문제로 제외)을 희사받아 수도원 몫이 되어 그 引受 경비 등을 責任하여 우이동수도원으로 기관을 증설하였으나 그린벨트로 묶이어 역시 施設이 어렵게 되어 法의 解制를 주선하며 수호하고 있으며 同年 6월 20일에 종로 5가 30-1(32)에 垈地 80평의 家屋을 買入 4층으로 증축(59.9.28)하여 一時 서울수도원으로 사용(59.11.27~61.12.11)하였고 겸하여 서울사무소 青年會의 開所式(60.3.23), 모원회의 모임 등이 이루어져 初期 産婆役을 도왔으며 현재 일부는 서울보화당에서 使用 一部는 임대관리하고 있다.

원기65년(1980) 5월 28일에는 종로보화당에서 성남시 태평 2동에 보화당 지점을 開證 수도원 장학생 孫興道교무가 졸업과 함께 初代 院長으로 부임 生産機關을 增設하였다.

원기67년(1982) 5월에 전주시 평화동 山 1,000평을 金鍾一(김성훈교무 父親)씨로부터 희사받아 평화교당에서 일부를 쓰고 약 400평(林)이 남아 있고 同年에 밭 600평을 3,000만원에 매입(정단)하여 현재 위탁 영농하고 있다.

서울의 修道院 建立을 한남동에서 우이동으로 계획하였으나 다만 아직도 守護하는데에 그쳐있고 총부의 익산 수도원 설립을 준비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退任元老(女子·교무)들을 수용 貞和團(정남정녀 친목단체)에서 買入한 維持畓 등의 收入과 총부예산의 지원과 수도원 운영위원(30명)을 비롯 一線교무들의 알뜰한 聲援에 힘입어(원기66년부터 총부지원 예산편성) 운영되고 있다.

수도원은 어떤 기구가 結成되기 전부터 일찍 뜻으로 말로 서둘러 뜻있는 어른들의 숙제가 되어 있었고 원장인 李共珠교무는 어떤 任務에도 本業이 되어 자동 수도원장을 兼하였고 해당되는 貞女自身들은 스스로 至大한 關心대상이 되었으며 원기48년(1963) 9월 15일 제11회 교역자강습중 교정위원회에서 수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거론하던 때를 비롯 자체에서 운영위원을 互選(49.11.26~53.8.26) 때따라 제반문제를 熟議하여 왔다.

원기58년(1973) 1월 13일 제51회 수위단회의에서 수도원 원규가 심의제정(64년 1부개정)됨에 따라 운영의 법적 근거를 세우게 되었고 수도원 원장에 李共珠교무를 정식 승인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처에서 사무를 관장 집행하게 되어 있다.

사무기구인 수도원의 역대임원은 다음과 같다.

〈역대임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근 무 기 간	비 고
원 장	李 共 珠(慶子)	女	1897. 12. 23	58. 1. 13~	※ 48년부터 무사령 전임 52~55 감찰원장겸
부 원 장	宋 圓 徹(金道)	〃	1926. 5. 8	58. 5. 12~62. 9	익산분원장 겸임

사무처장	李 百 徹(致炯)	男	1927. 4. 9	60. 2. 5~63. 4	서울보화당사장 겸임
부 원 장	徐 大 仁(今禮)	女	1914. 12. 11	67. 11. 15~	64년부터 무사령 선임(운영위에서)
사무처장	田 宗 哲(淳和)	〃	1934. 10. 5	67. 11. 15~	서울보화당 파견 겸임(69.12.15~) 64년부터 무사령 선임(운영위에서)

〈수도원 운영위원〉

번호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비 고	번호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비 고
1	李共珠(慶子)	女	1897. 12. 23		16	金理玄(玉禮)	女	1930. 8. 28	
2	徐大仁(今禮)	〃	1914. 12. 11		17	金智玄(智順)	〃	1924. 6. 3	
3	柳壯順(順子)	〃	1923. 12. 21		18	金大心(大德)	〃	1926. 8. 21	
4	田宗哲(淳和)	〃	1934. 10. 5		19	金成洙(壽珠)	〃	1928. 10. 6	
5	朴圓根(寬植)	男	1936. 4. 29		20	宋慈明(敦任)	〃	1926. 9. 6	
6	李聖信(玉禮)	女	1922. 12. 1		21	李正務(正務)	〃	1932. 11. 15	
7	朴恩局(永愛)	〃	1923. 1. 22		22	宋順鳳(順鳳)	〃	1933. 3. 6	
8	李正恩(正福)	〃	1924. 11. 27		23	李空田(順行)	男	1927. 3. 24	
9	朴恩燮(玉南)	〃	1924. 5. 29		24	金仁龍(判龍)	〃	1922. 10. 16	
10	丁慶浩(吉皓)	〃	1925. 12. 24		25	李建春(建淑)	〃	1920. 12. 12	
11	柳聖一(順姬)	〃	1928. 7. 26		26	李喆行(喆行)	〃	1928. 12. 12	
12	梁慧經(榮植)	〃	1930. 4. 30		27	金仁喆(永千)	〃	1934. 12. 4	
13	丁盛熟(石鎭)	〃	1922. 9. 5		28	徐聖範(金成)	〃	1940. 9. 25	
14	林善揚(成禮)	〃	1923. 3. 8		29	趙正勤(年九)	〃	1935. 12. 6	
15	朴性敬(敬順)	〃	1929. 2. 27		30	李廣淨(建衡)	〃	1936. 9. 1	

〈수도원 장학생〉

번호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천교무	비 고
1	孫興道(仁喆)	男	1949. 7. 22	51. 3. 2	55. 1	丁 光 薰	
2	李道寬	女					
3	全大熙(熙景)	男	1959. 8. 11		64. 1. 10	辛 濟 根	

마. 후원단체 및 후원인

번 호	후원단체 및 후원인	결성년월일	후 원 내 용	비 고
1	수도원 운영위원회	59	원연발전협의 및 운영비 보급	위원 30명
2	여자 정화단	59	유지답매입 및 건축지원	생활지원

3	성현주	67.11	논 1필지 희사	
4	정화제복사	67. 1	이익금 지원	부설사업
5	서울보화당	55. 6. 30	후원지정 산업 기관	

1. 서울 修道院

가. 설립배경

서울 修道院은 수도원의 母體로써 교단의 절실한 要請과 소태산대종사의 부촉을 받든 李共珠교무의 發願이 어울려 원기48년(1963) 4월에 총부 淸河院 私宅과 살림 一切를 수녀들에게 양도하고 그뒤 서울에 자리를 잡게 됨으로 비롯되었다.

원기48년(1963) 9월에 한남동 서울보화원 동편 園舍의 後庭空地에 베란다를 신축 식당과 응접실로 並用하였으며 上水道를 가설하고 온돌과 마루를 修理하였으며 원기49년(1964) 7월에 비닐하우스 온상을 만들고 경계철망을 치고 修道院 간판을 붙였다.

원기52년(1977.6.7~7.13) 함께 있던 보화원이 解體되자 보화원 재산이 수도원으로 이양됨을 통보(52.6.3)받고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園舍를 改修 강당(法堂)을 增築하였고 同年 10월 20일에 수도원 開設을 自祝하는 교역자 초청모임(200여명 인천 공단 등 순회 견학겸)을 가졌다(이후 3년간은 이공주원장 감찰원장으로 在任 총부에 주재).

원기56년(1971) 한남동에 李共珠교무가 주재 수도원의 이곳 저곳을 살피고 원기59년(1974. 11. 27)에는 종로 5가 4층집으로 일시 移徙居住하는 동안 송원철교무가 주재하며 원기61년(1976년 5월~6월) 한남동 수리공사와 전화가설을 하였으며 同年 9월 9일부터 12월초까지 구옥 2동을 헐고 改築修理한 후 다시 同年 12월에 종로에서 이사를 하였다.

원기62년(1977) 4월에는 대문柱를 세우고 정식간판을 붙였으며 이어 上水道工事 정원정리 지붕 차양 베란다 수리 등을 마치고 6월 19일 서울수도원 부속교당을 설립 7월 24일에 서울 일원의 교무 일동이 수도원 法堂에서 法認節 기도식을 擧行하였으며 이후 서울, 성남보화당을 포함한 任員 一同이 일요법회와 교단행사를 거행하고 있으며 원기63년(1978) 6월 8일 李共珠 교무 소장품 전시회를 가질만큼 교단적 史料와 一般장서며 物品 수집 등 文化的 産室을 겸하며 수호와 함께 수도원 本院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나. 역대재직 교역자

직 체	법 명 (호 적 명)	성별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원 장	李共珠(慶子)	女	1897. 12. 23	48. 1 ~	
부 원 장	李正滿(玉任)	〃	1914. 6. 11	50. 1. 7~53. 12. 14	양주농장 72. 12. 23 열반
외 무	朴正基(炅永)	男	1937. 7. 17	50. 1. 7~53. 12. 14	양주농장
외 무	朴明旭(鍾桓)	男	1938. 1. 18	50. 1. 7~53. 12. 14	양주농장 53년 퇴역
식 당	李宣道(正琴)	女	1936. 1. 18	49	
부 원 장	柳壯順(順子)	女	1923. 12. 21	53. 3 ~54. 3	
사 장	張景晏(順愛)	〃	1924. 5. 14	54. 5 ~55. 1. 9	파고다꽃집
직 원	李宣道(正琴)	〃	1936. 1. 18	54. 5 ~55. 1. 9	〃
부 원 장	宋圓徹(金道)	〃	1926. 5. 8	58. 1 ~61. 9	62. 9월 열반
시 봉	申純仁(純子)	〃	1943. 5. 29	57. 1 ~58	퇴 역
식 당	李宣道(正琴)	〃	1936. 1. 18	56 ~62. 5	
시 봉	李壽現(鳳玉)	〃	1947. 6. 22	59 ~60	
사무처장	李百徹(致炯)	男	1927. 4. 9	60 ~	보화당 사장겸
시 봉	太成實(貞模)	女	1949. 4. 1	61 ~62	
〃	安民順(泯淳)	〃	1946. 9. 19	63 ~64	
〃	徐德兆(贊順)	〃	1935. 10. 30	62 ~65. 7.31	
〃	金常重(惠子)	〃	1950. 6. 5	65.	
〃	許靖智(丁斗)	〃	1947. 12. 26	66. ~67	
〃	鄭喜行(多喜)	〃	1936. 4. 2	66 ~67	
부 원 장	徐大仁(金禮)	〃	1914. 12. 11	67. ~	
사무처장	田宗哲(淳和)	〃	1934. 10. 5	67. ~	
시 봉	崔定安(在姬)	〃	1954. 1. 27	68 ~69	
식 당	高玄聖(永禮)	〃	1936. 2. 2	68.	
시 봉	朴圓任(善喜)	〃	1949. 9. 15	69 ~70	
시 봉	許靖智(丁斗)	〃	1947. 12. 26	70 ~71	
감 원	金德眞(福禮)	女	1925. 8. 22	48. ~49. 3	
시 봉	金淨勤(載德)	〃	1918. 3. 15	48 ~52	
주 사	朴道完(玉基)	〃	1937. 2. 23	48 ~54	
〃	姜法信(德任)	〃	1957. 1. 21	71 ~72	

〈배출된 전무출신〉

번호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천교무	
1	金淨勤(載德)	女	1918. 3. 15		40. 3	徐大仁	
2	朴智明(地順)	〃	1951. 11. 29	38. 1. 29	61. 1	李共珠	

2. 우이동 수도원

가. 설립배경

우이동 수도원은 원기58년(1973) 4월에 종로교당 申圓觀, 全隱德교도의 희사로 서울 도봉구 쌍문동 542번지에 分院으로 設立되었다.

서울 修道院 建立이 한남동에 무산되자 適地를 물색중에 우이동을 얻게 되어 다시 새로운 希望속에 수호하던 집과 鷄舍로 있던 집 등을 손보아 宋圓徹 부원장이 分院長을 겸, 주재하며 원남 종로 등 각 교당의 후원을 입어 佛前도구와 살림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린벨트가 완화되지 않아 주선중에 원기60년(1975)에는 종로교당 梁道信교무가 부원장으로 수호와 林野관리의 책임을 맡았고 李善均감원이 지키다가 원기62년(1977) 후반부터 李宣道감원이 하숙을 치는 일방, 정구장을 경영 2년여를 자립 해결하였다.

원기64년(1979)에는 守護의 방향을 轉換하여(운영위 의결) 敎化와 시설추진의 兩面役을 기대하고 朴淸秀교무를 파견, 鷄舍를 法堂으로 改修 8월 9일에 奉佛式을 거행한뒤 3월 1일 法會와 교구의 각종 集會를 유치, 활발한 교화가 이루어졌으나 감사원 감사 구청의 계사복원의 추궁 등으로 시설의 여건은 百方의 노력에도 잘 풀리지 않아 원기67년(1982) 2월 교당은 강남으로 교당을 마련하여 이사하고 本院은 다시 金正局교무가 就任하여 정구장관리와 종로교당의 후원금과 보화당의 지원을 받아 수호를 하며 교구의 훈련장으로 활용 간접교화장이 되어 있다. 원기71년(1986) 7월에 1,300평 정도가 宗敎敷地로 고시되어 우이동 개발추진위원회(제220회 원의회 71.10.29)를 구성하고 시설의 인허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기72년(1987)에는 순교감 김치국순교무의 왕래지도하에 그의 딸이 집에 들어 살며 임시수호를 돕고 있다.

나. 역대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원 장	宋圓徹(金道)	女	1926. 5. 8	58. 4 ~60. 2	
총 무	全基徹(順福)	〃	1924. 2. 16	58. 4 ~58. 7	
원 장	梁道信(小淑)	〃	1918. 8. 2	60. 2. 5~	종로교무겸임
부교무	李喜仁(順子)	〃	1947. 11. 2	58. 4 ~	
감 원	李善均(基順)	〃	1926. 5. 24	60 ~62. 5	
감 원	李宣道(正琴)	〃	1936. 1. 18	62. 1 ~64. 16	
교 무	朴淸秀(姬淑)	〃	1937. 10. 21	64. 6 ~67. 2	
부교무	金善道(善玉)	〃	1946. 8. 17	64. 6 ~67. 2	
교 감	金正局(貞先)	〃	1926. 10. 1	67. 2 ~72. 2	
교 무	成正在(正在)	〃	1936. 7. 3	67 ~67. 12	

다. 후원단체 및 후원인

번호	후원단체 및 후원인	결성년월일	후원 내용	비 고
1	종로교당	60	월10만원	

3. 익산수도원

가. 설립배경

益山수도원은 退任女子元老를 收容하는 기관으로 익산군 신용리 山 46(徐氏所有山 매입)의 位置에 원기59년(1974) 4월 9일 제115회 임시원의회에서 益山分院의 建立과 新築承認을 받아 발족되었다.

송원철교무가 分院長을 겸, 선두에서 원기59년(1974)에 벽돌집 와가 34평을 건립하고 그 익년(60년)에는 다시 시영주택 2동 연립 22평을 증축하여 장차 退任元老를 收容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등 諸般構想을 하였고 초대총무로 崔純圓교무가 취임 하숙을 치는 등 初創의 어려움을 함께 하였다.

원기63년(1978)부터 정화단에서 維持畓이 마련되어 維持의 基本이 되었고 病弱한 元老를 비롯 원기65년(1980) 正式 첫 退任者가 入院하게 되었다.

宿所 增築이 필요에 따라 2년간(64, 65) 自體積立하고 거듭 교단적 힘(정화단원 주축)을 모아 원기66년(1981) 3월에 着工 벽돌조 2층 스라브집 260평을 造景費포함 1억3천여만원으로 완공 同年 11월 8일에 낙성 봉불하였으며 그 이듬해(67년) 봄에 부속건물 25평을 附設하여 새 숙사로 입주하였다.

원기66년(1981) 貞和團에서 製服社를 설립케 되어 舊舍屋을 사용 그 발족과 추진에 따른 임원의 숙식을 제공 육성에 밑받침하였고 시영주택을 계속(13년간) 年賦金을 넣어가고 있으며 원기66년(1981)부터 총부지원을 받게 되어 정규 수입지출 예산액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용부지는 원래 徐氏山 5,000평중 중앙훈련원에서 약 4,000평 정도를 사용 논 2필지와 교환하였으며 新築基地 일부로 총부 논 600여평(726번지)이 들어와 약 2,000평 정도를 수도원에서 전용하고 있다.

수도원 法堂에서는 원기68년(1983) 자체법회와 강습을 가졌고 매일 朝夕日課와 수시법회를

거행, 특히 매월 15일 기도에 보은헌금을 올려 성업봉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수도원은 산 역사의 증인 원로들이 계셔서 총부도량의 훈증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교단의 일로써 상주하는 후진이나 방문객에게 무언의 교화가 되고 있으며 晩年수도정진과 分에 따른 報恩의 길에 정성 다 하시는 일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역대임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원 장	宋圓徹(金道)	女	1926. 5. 8	59~62	62. 9 열반
총 무	崔純圓(今順)	〃	1935. 6. 25	59. 6. 2~62. 4. 30	
부원장	柳壯順(順子)	〃	1922. 7. 11	62. 5. 1~62. 9	원장승진
교 무	李禮性(鍾玉)	〃	1946. 2. 1	68. 2. 1~69	
감 원	張德善(喜順)	〃	1929. 9. 9	65. 2. 5~	봉공직
간 병	李宣道(正琴)	〃	1936. 1. 8	71. 1. 1~	봉공직
원 장	柳壯順(順子)	〃	1922. 7. 11	62. 9~	

다. 연도별 수용현황

연도	수 용 인 원			신 입 자 수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63	1		1	1		1	
64	1		1				
65	2		2	1		1	
66	6		6	4		4	
67	10		10	4		4	
68	12		12	4		4	열반(1), 사가휴양(1)
69	12		12				열반(1)
70	11		11				열반(1)
71	14		14	3		3	
72	13		13				열반(1), 사가귀환(1)

라. 배출된 전무출신

번호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천교무	비 고
1	宋 德 信(德順)	女	1938. 8. 2	46	49. 6	朴濟權	
2	李 智 蓮(順子)	〃	1956. 9. 12	54. 6. 19	61. 1	李孝源	
3	全 海 德(南海)	〃	1953. 3. 2	56	61. 1	宋圓徹	
4	金濟船華(今子)	〃	1925. 2. 19	39. 11. 7	62. 2. 9	崔純圓	
5	張 德 善(姬淳)	〃	1928. 11. 7	36. 3. 20		柳壯順	
6	金 智 宗(福順)	〃	1962. 10. 1			柳壯順	
7	金 容 聖(鍾允)	男	1963. 6. 30	62. 8. 9	69. 1	柳壯順	
8	白 淨 仁(吉男)	女	1953. 3. 2			柳壯順	

4. 원 로 원

가. 설립배경

원기70년(1985) 12월 24일 교단의 男子元老先進을 모시기 위해 성업봉찬회에서는 총 공사비 1억5백만원을 들여 이리시 신동 280-7번지에 2층 148평 콘크리트와가(방11개)를 신축하여 개원식을 가졌다.

원기71년(1986) 3월 여자요양원을 개조하여 식당건물로 사용하였으며 원기71년(1986) 1월 29일 제220회 임시원의회에서는 원로원의 예산 운영 등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 운영위원을 구성하였는 바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원로원 운영위원〉

번호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비 고	번호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비 고
1	金正勇(三龍)	男	1925. 11. 1		8	金西悟(書男)	男	1926. 12. 16	
2	金貴根(永春)	〃	1929. 3. 5		9	李修悟(在福)	〃	1929. 4. 17	
3	安理正(重泰)	〃	1918. 2. 8		10	趙正中(云記)	〃	1938. 1. 28	
4	柳基現(炳德)	〃	1930. 9. 2		11	李普圓(萬宰)	〃	1934. 9. 13	
5	韓正圓(基斗)	〃	1933. 8. 30		12	尹周現(殷炳)	女	1924. 2. 19	
6	韓正釋(鍾萬)	〃	1932. 1. 11		13	辛濟根(順任)	〃	1923. 12. 4	
7	丁道允(炳允)	〃	1933. 5. 15		14	徐大俊(榮燮)	男	1935. 6. 9	

15	張仁中(萬植)	男	1927. 6. 12		23	李聖信(玉禮)	女	1922. 12. 1	
16	金法宗(鍾鎬)	〃	1937. 5. 15		24	朴恩局(永愛)	〃	1923. 1. 22	
17	張應哲(由錫)	〃	1940. 9. 8		25	丁盛熟(石鎭)	〃	1922. 9. 5	
18	吳曦圓(男苗)	女	1931. 12. 20		26	李喆行(喆行)	男	1928. 12. 12	
19	金大觀(德順)	〃	1935. 3. 24		27	李建春(建淑)	〃	1920. 12. 12	
20	全八根(八根)	〃	1927. 3. 2		28	李正恩(正福)	女	1924. 11. 27	
21	朴慧順(柔順)	〃	1933. 12. 19		29	金智玄(智順)	〃	1924. 6. 3	
22	韓濟船(洋洙)	〃	1935. 10. 30		30	朴性敬(敬順)	〃	1929. 2. 27	

나. 역대재직교역자

직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근 무 기 간	비 고
총무	李敬倫(敬淑)	女	1938. 12. 18	71. 1. 30~	
주임	金眞光(大會)	男	1954. 11. 8	71. 3. 10~72. 1. 31	
주사	張德圓(德圓)	男	1961. 2. 17	72. 1. 24~	

다. 수용인원 상황

번호	법명(호적명)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비 고
1	李雲捲(雲行)	1914. 5. 3	18. 12. 30	18. 3	
2	金中默(泰八)	1920. 6. 22	25. 12. 9	26. 4. 26	
3	金勤修(益洙)	1922. 6. 9	30. 4. 12	34. 4	
4	朴將植(天植)	1911. 1. 9	21. 2. 23	26. 2. 23	
5	成丁哲(丁鎬)	1902. 11. 21	10. 6. 21	13	72. 4 열반
6	金洪哲(忠烈)	1902. 9. 19	13. 3. 1	15. 2	72.12 열반
7	李中和(住衡)	1903. 8. 17	18. 5.	31. 4. 1	
8	池海元(海元)	1912. 8. 2	35. 4. 2	36	72. 2 열반

□ 수 양 원

1. 이리수양원

가. 설립배경

원기46년(1961) 동이리교당 김선지행교무가 李仁義華, 郭賢信華 등 수명의 동지를 모아 재가교도 수련도량을 건립하기로 결의했다. 먼저 기금조성을 위해 백미 20가마를 마련하기 위한 계를 조직하였다. 원기57년(1972) 6월, 10년만에 원료된 계의 기금과 이익금으로 동산동에 땅을 마련하여 대지 535평 건평 104평의 2층양옥을 건립했다.

원기57년(1972) 10월 16일 봉불 및 낙성식을 거행하였으며 대산종법사는 그 건물을 《養精院》이라고 명명하였다. 동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 제1회 夏禪을 김중묵교무를 강사로 모시고 실시했다. 원기62년(1977) 4월 양정원을 《裡里 修養院》으로 개명하였다.

원기66년(1981) 10월 5일 동이리교당 曺明亮 教徒會長과 金善地行교무의 공동소유재인 동산동에 213-16번지의 대지 535평, 213-2번지의 대지 90평, 산 24-2번지의 임야 773평, 산 24-6번지에 임야 270평을 재가 수양기관 부지로 회사하여 원불교 財團法人에 귀속시켰다.

원기68년(1983) 5월 3일 운영회를 조직하였는바 회장에 尹聖奎, 부회장에 梁普仁, 崔眞一, 고문에 李宗善, 趙明亮, 金彰曼, 총무에 高性出교도 등이 선임되었다. 원기70년(1985) 10월 24일 이리수양원 증축건이 원의회를 통과했으나 원기72년(1987) 4월 이리 수양원을 건립할 때 입회인들의 투자로 지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있어 원점으로 돌아갔다.

나. 역대임원

직책	법 명 (호 적 명)	성별	생년월일	근 무 기 간	비 고
원장	金善地行(麟善)	女	1915. 4. 9	58~	출 가
총무	高 性 出(貞熙)	〃		62. 10~69. 1	재 가

다. 자산현황

주소 : 이리시 동산동 213-16

대지 625평, 건물 88.6평(2층 1동), 임야 1,081평, 밭 226평, 논 2,400평

라. 연도별 수용현황

연 도	수 용 인 원			신 입 자 수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연평균	9		9				72년 까지

마. 배출된 전무출신

번호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 천 인	비 고
1	成貞進(奇順)	女	1958. 6. 21	58. 3. 2	62. 1	李正恩	
2	趙和秀(秀子)	〃	1958. 12. 14	48. 12. 2	62. 1	金善地行	
3	朴良和(宗金)	〃	1947. 3. 5	51. 7. 14	72. 1. 10	金善地行	
4	朴主誠(銀燮)	男	1957. 11. 7	61. 4. 28	67. 12.	張應哲	

바. 후원단체 및 후원인

번호	후원단체 및 후원인	결성년월일	후원내용	비 고
1	李宗善	62	백미 100가마	
2	曺明亮, 金善地行	66	대지, 밭, 임야	
3	李宗善	68	채무정리(365만)	
4	운영위원회 6인	68		설립배경에 수록

2. 동래수양원

가. 설립배경

원기47년(1962)에 부산지역 교도들이 傳法 30여년을 맞이하는 동안 수고한 부산지역 10여개 교당창립유공자들의 老來휴양기관을 만들고져 염원했었다. 초량교당 박은섭교무 주선으로 김계옥, 박효숙, 라용선, 김성명화 제씨와 영남일대 동지의 후원으로 이루어져 부산직할시 온천동에 임시수양원을 마련하였다.

원기47년(1962) 4월에 정기수위단회의 승인을 얻어 동래수양원을 발족하고 초대총무로 鄭安心行이 부임했다. 원기48년(1963) 6월 17일 원장에 정양선교무가 부임하여 원기49년(1964) 6월 23일 曺專權교무를 초빙하여 봉불식을 가진 후 동년 7월 23일부터 매월 3회 법회를 실시했다. 원기55년(1970) 상주선객이 늘어남에 따라 김계옥, 강덕성화, 박효숙, 김법리화, 최상조, 윤현지행의 주선으로 35평 양옥을 마련했다.

원기62년(1977) 7월 26일 수양원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4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약간의 기금을 마련한 후 총 2천5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2층법당과 생활관을 마련했다.

나. 역대임원

직 책	법 명 (호 적 명)	성별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원 장	鄭安心行(淑尹)	女	1905. 3. 8	47~48	
감 원	金 圓 正	〃			
원 장	丁 良 善(連弘)	〃	1914. 7. 4	48~66	
서 기	鄭 日 中(畢洙)	〃	1928. 5. 30	50~54	
부교무	柳 義 明(義善)	〃	1946. 8. 24	55~59	
교 무	申 慧 權(海坤)	〃	1943. 9. 15	60~61	
부교무	徐 進 華(永子)	〃	1948. 2. 15	60~63	
순 교	柳 寬 眞(玉今)	〃	1916. 3. 14	57~59	
교 무	姜 妙 眞(錦順)	〃	1934. 1. 30	62~63	
교 무	鄭 慶 圓(慶姙)	女	1928. 2. 6	64~65	
〃	朴 順 道(英子)	〃	1945. 2. 19	65~65	
원 장	宋 慈 明(敦任)	〃	1926. 9. 6	66~	
부교무	金 貞 淑(順子)	〃	1950. 11. 7	66 ~70	
간 사	林 相 圓	〃	1963. 9. 4	67~70	
부교무	柳 心 明(三禮)	〃	1956. 10. 8	70~71	
부교무	李 勤 行(相祚)	〃	1952. 10. 17	71~	
간 사	黃 允 和	〃	1960. 1. 25	65~66	

다. 연도별 수용인원

연 도	수 용 인 원			신 입 자 수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55(1970)	5		5				
64(1979)	8			3		3	
65(1980)	9			9		1	
67(1982)	10			10		1	68년부터 신입자를 받지 않음
72(1987)	3		3				

라. 배출된 전무출신

번호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 천 인	비 고
1	白明眞(英子)	女	1955. 9. 22	62. 11. 25	66. 1. 15	宋慈明	
2	房仁性(順子)	〃	1956. 11. 3	57. 4. 3	66. 1	丁良善	
3	徐道現(順子)	〃	1959. 3. 26	62. 8. 14	65. 1	鄭慶圓	

4	金正敏(有德)	女	1946. 2. 21	48. 7. 8	51. 2. 1	丁光薰	
5	朴亮德(貴葉)	〃	1947. 10. 2	54. 6. 30	69. 1	柳義明	

마. 수상내역

상장번호	종 별	수상년월일	수 상 자	공 적	비 고
431	종 법 사	64. 3. 13	柳秀明	신축공로상	
563	교정원장	64. 3. 13	최재성	건축공로상	

바. 활동

동래수양원은 원기54년(1969) 12월 13일 제1회 동선결제를 하여 3개월간 훈련을 마치고 그 후 동·하 6개월간 훈련을 해오다가 원기66년(1981) 동선부터 1개월씩 훈련하여 현재 30회 훈련을 가졌다. 대상은 60세~90세까지이다. 매회 동·하선 평균 20~30명씩 참석하고 있다. 매월 3·6일(6, 16, 26일)로 일반법회, 기도 및 다양한 활동과 함께 온천교당의 역할을 다해 왔다.

3. 마산수양원

가. 설립배경

원기64년(1979) 10월 10일 마산교당 요인 길명인, 최숙연, 김운수화, 남명덕, 김원일화, 백은명, 김공덕화, 이정봉, 주삼중, 최대법, 이해진, 허삼선, 김도은화교도 등이 중심으로 수양회를 조직하고 노후나 병약시 수양할 장소를 마련코자 물색하던 중 現 의창군 동면 용잠리 381번지 대지 333평 및 건물을 3천만원에 매입하였다.

원기65년(1980) 6월 24일 설립허가를 얻어 3차례의 수리 및 확장을 통해 완전한 수양시설을 갖추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 (호 적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李正恩(正福)	女	1924. 11. 27	65. 6. 24~71. 1. 31	마산교구장
2	金智玄(智順)	〃	1924. 6. 3	71. 2. 1~	마산교구장

다. 역대재직교역자

직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교무	崔道正(花子)	女	1940. 8. 30	65. 3. 15~68. 1. 10	
〃	柳希振(英姬)	〃	1948. 12. 9	68. 2. 6~	

라. 연도별 수용인원

연 도	수용인원			신 입 자 수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65	5		5				
66	6		6	1		1	
67	5		5				
68	5		5				
69	4		4				
70	3		3				
71	5		5				
72	5		5				

4. 하섬수양원

가. 설립배경

하섬이 본교당과 인연이 된 것은 원기4년(1919) 10월 26일 변산 쌍선봉에 올라가 법인기도 해제식에서 소태산대종사께서 하섬을 가리키시며 연꽃같다 하신데서 부터이다. 그후 원기38년(1953) 11월 교무연합회의 승인을 얻어 성립되었다. 원기40년(1955) 1월 하섬요양원은 하섬수양원으로 개칭과 더불어 대지 및 일반가옥(80평 4동)을 구입하였고, 원기41년(1956) 1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여 일부대지를 구입하고 원기43년(1958) 3월 섬전체를 매입하였다. 원기43년(1958)부터 원기54년(1969)까지 10여년간 소유권문제로 법정에서 재판을 해오다가 勝訴하였다.

원기46년(1961) 매년 200여명의 교도들의 내왕으로 인하여 源泉水을 얻기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결국 1개월의 고투끝에 360명의 總人夫와 3만원의 경비로 37척의 깊이에서 원천수를 찾는데 성공했다. 동년 7월 13일 水陸齋의 特別作禮를 통해 인근주민과 法緣을 맺게 되었다. 원

기55년(1970) 12월 17일 목조 3.7톤의 인명호가 종로교당 홍인석, 김명환교도의 희사로 마련됐다.

원기59년(1974) 5월 식당과 소법당(恩貞院)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休休庵, 丙辰館, 遠明堂 등을 건축했다. 원기65년(1980) 하섬연락소를 만들고 원기67년(1982) 5월에 연락선(청아호)를 구입했다. 원기68년(1983) 3월 대법당을 신축하고 원기69년(1984) 9월 하섬분원을 설립하고 원기72년(1987) 연락선(홍제호)를 구입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丁良珍(鳳善)	女	1924. 8. 12	40 ~42. 4. 26	
2	丁光薰(炳球)	男	1917. 8. 30	42. 4. 26~62. 1	
3	李空田(順行)	〃	1927. 3. 24	62. 3. 26~66. 3	
4	李玄度(同宰)	〃	1924. 7. 21	66. 3. 28~	

다. 역대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근 무 기 간	비 고
원 장	丁良珍(鳳善)	女	1924. 8. 12	40 ~42. 4.26	
직 원	李俊鏡(奇春)	男	1896. 10. 24	41. 2 ~41. 9.	
감 원	李淳一(七順)	女	1933. 11. 12	41. 5. 15~69	
총 무	金碩元(浩源)	男	1937. 5. 10	41. 6. 2 ~62.	
원 장	丁光薰(炳球)	〃	1917. 8. 30	42 ~62	
총 무	李亨圓	男	1923. 2. 2	46 ~47	
직 원	鄭泰飮(泰浩)	〃	1918. 4. 28	47 ~56	
총 무	鄭碩德(宗吉)	〃	1924. 8. 29	47 ~56	
직 원	姜慶樂(甲東)	〃	1942. 12. 1	46 ~50	
직 원	曺喜悅(喜錫)	〃	1915. 3. 7	51 ~52	
원 장	李空田(順行)	〃	1927. 3. 24	62 ~66	
교 무	鄭俊圓(俊順)	女	1944. 5. 18	62 ~63	
〃	鄭淑賢(春子)	〃	1951. 1. 15	63 ~65	
총 무	朴哲柱	男	1946. 12. 19	64 ~66	
교 무	金正悟(政淑)	女	1949. 6. 16	66 ~69	
원 장	李玄度(同宰)	男	1924. 3. 12	66 ~	
교 무	柳永眞(吉禮)	女	1942. 10. 7	70 ~72	
교 감	金致國(相國)	男	1924. 4. 23	71 ~	
부 교 무	李敬護(成南)	男	1959. 5. 10	72 ~	

라. 자산현황

• 주소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102
총 3만평(대지 800평, 건물 214평)
분원 대지 400평, 건물 50평

마. 훈련 유치 현황

연도	훈 련 명	인원(명)	기 간	연도	훈 련 명	인원(명)	기 간
66. 7	서울교구 어린이훈련	130	7일간	70. 7	남원중앙교당 유치원 훈련	40	2박 3일
66. 8	이리교구 원친회 훈련	70	2박 3일	70. 7	정주교당 유치원 훈련	33	2박 3일
66. 8	이리 노인대학 훈련	50	2박 3일	70. 7	백산교당 학생 훈련	25	3박 4일
66. 8	영광교구 원친회훈련	70	1박 2일	70. 7	오수교당 유치원훈련	20	2박 3일
66. 12	총부 원불교학과생훈련	50	5박 6일	70. 7	관촌교당 교도훈련	60	2박 3일
67. 7	남원교구 청년훈련	50	2박 3일	70. 7	원불교 교수 연수회	20	2박 3일
67. 8	이리 노인대학 훈련	50	2박 3일	70. 8	원광대 의료원 훈련	300	2박 3일
68. 8	서울교구 어린이훈련	130	7일간	70. 8	원남교당 요인훈련	16	3박 4일
69. 7	서울교구 둥글게 훈련	30	5박 6일	70. 8	원불교 유아교육자 훈련	180	3박 4일
69. 7	이리정주교구 교무훈련	50	2박 3일	70. 8	총부 간사 훈련	30	2박 3일
69. 7	군산교당 교화단 훈련	15	1박 2일	70. 8	남원교구 교무훈련	20	2박 3일
69. 7	남원교구 학생훈련	85	2박 3일	70. 12	동래교당 학생훈련	39	2박 3일
69. 8	안양교당 교도 훈련	40	2박 3일	70. 12	수원교당 학생훈련	14	2박 3일
69. 8	고려대 교우회훈련	20	2박 3일	70. 12	총부 원불교학과생 훈련	40	5박 6일
69. 8	영동교당 교도 훈련	40	2박 3일	71. 1	하섬 동선	20	20일간
69. 8	원대 원불교 훈련	15	2박 3일	71. 2	하섬 동선	20	20일간
69. 1	동산선원생 훈련	20	3박 4일	71. 1	관촌교당 학생훈련	25	2박 3일
69. 7	정토회 학생 훈련	47	2박 3일	71. 1	전주교당 학생훈련	30	2박 3일
70. 1	동산선원생 훈련	15	3박 4일	71. 1	돈암교당 청년훈련	12	7일간
70. 2	이리교구 어린이훈련	70	3박 4일	71. 1	해룡고교 학생훈련	28	3박 4일
70. 4	이리교구 학생훈련	30	4박 5일	71. 1	모현교당 학생훈련	15	1박 2일
70. 6	마산교구 교무훈련	20	2박 3일	71. 7	이리교구 어린이훈련	70	2박 3일
70. 7	이리교당 유치원훈련	100	2박 3일	71. 7	원대법당 훈련	40	1박 2일
70. 7	연산교당 학생훈련	13	3박 4일	71. 7	송학교당 어린이훈련	30	2박 3일
70. 7	진북유치원 훈련	50	2박 3일	71. 7	연산교당 어린이훈련	40	2박 3일
70. 7	원평교당 유치원 훈련	50	2박 3일	71. 7	원평교당 어린이훈련	70	2박 3일
70. 7	연산교당 유치원 훈련	40	2박 3일	71. 7	전주 청운회훈련	40	1박 2일

71. 7	원대 대의원 훈련	25	2박 3일	72. 6	종로교당 청년훈련	23	1박 2일
71. 7	백산교당 학생훈련	40	3박 4일	72. 6	5급 교무훈련	22	1박 2일
71. 7	원남교당 청년훈련	34	2박 3일	72. 6	원광대 공대교수 훈련	21	1박 2일
71. 8	원광대 교역자훈련	40	1박 2일	72. 7	원대원불교학과 학생훈련	44	1박 2일
71. 8	정토회 어린이훈련	26	2박 3일	72. 7	원대 치대 학생 훈련	30	8일간
71. 8	인천교당 학생훈련	40	3박 4일	72. 7	부안교당 청년훈련	12	1박 2일
71. 8	정주교당 학생훈련	20	3박 4일	72. 7	정주교구 학생훈련	136	1박 2일
71. 11	동이리교당 학생훈련	19	1박 2일	72. 7	평화교당교도 훈련	44	1박 2일
71. 12	고창교당 학생훈련	23	1박 2일	72. 7	동이리교당 유아훈련	71	1박 2일
71. 12	서면교당 학생훈련	13	1박 2일	72. 7	정주교당 유아원훈련	32	2박 3일
72. 1	이리교당 학생훈련	30	2박 3일	72. 8	진북교당 학생훈련	20	1박 2일
72. 1	해룡고교 학생훈련	38	2박 3일	72. 8	이리교당 교도훈련	39	2박 3일
72. 2	원불교학과 3학년 훈련	39	10일간	72. 8	고창교당 유아원훈련	14	1박 2일
72. 2	돈암교당 청년훈련	19	1박 2일	72. 8	중구교당 청년훈련	25	2박 3일
72. 3	이리교구 청년훈련	17	1박 2일	72. 1	하섬동선	20	20일간
72. 4	원광 보건대 훈련	77	1박 2일	72. 2	하섬동선	20	20일간
72. 6	부안교당 학생훈련	26	2박 3일				

5. 봉래수양원

가. 설립배경

원기60년(1975)에 들어서면서 하섬수양원장이였던 李空田교무가 봉래산 제법성지 수호 및 관리도량의 설립을 절실히 염원하였다. 大山宗法師는 李空田교무의 간청을 받아들여 정읍교구장 徐世仁교무에게 연락하여 관리도량을 마련케 했다. 때마침 前 월명암 주지 鄭道田스님이 창건한 개인사찰이 있어 서세인교무와 정읍교당회장 羅喆重교도 등이 성금 350만원을 마련, 사찰과 부동산을 매입했다.

원장의 모친 金長信甲과 李福源을 입주시켜 9년간 수호케하고 이어 부원장 曺喜悅교무와 朴順誠감원이 부임했다.

원기66년(1981) 5월 8일 『변산제법성지』안내 책자를 발행하고 동년 5월 21일 일원대도비 봉고식겸 봉래수양원 봉불식이 600여명 하객들의 참석하에 실시되었다. 원기68년(1983) 2월 정읍교당 윤자혜교도의 희사금으로 밭 776평을 매입하고 원기70년(1985) 5월 郡費지원을 받

아 사자동에서 수양원까지 700m도로 확장 및 교량을 신설했다.

원기70년(1985) 李淳一, 金萬永 두 임원이 상주했고 이때부터 지하수개발, 전화가설, 도로확장공사 등 동·하선 수도도량으로써 면모를 드러내게 되었다.

나. 역대임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원 장	李 空 田(順行)	男	1927. 3. 24	64. 4~	출가
수 호 원	金長信甲(金禮)	女	1905. 10. 30	64. 4~65. 4	〃
부 원 장	曺喜悅(喜錫)	男	1915. 3. 7	65. 4~70. 4	출가
감 원	朴順誠(陽順)	女		65. 4~70. 4	재가
총 무	李淳一(良金)	〃	1933. 11. 5	70. 4~	출가
감 원	金 萬 永(貞任)	〃	1929. 10. 3	70. 4~	〃

다. 자산현황

주소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 19-1

대지 300평, 밭 1200평, 건물 25평(3동)

라. 연도별 수용인원

매년 2,000~3,000명 정도의 순례객이 다녀가며 정주교구 봉공회에서 후원하고 있다.

마. 특기사항

장차 변산 국립공원이 실시되면 세계상 모든 기념지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공원 중심지에 소재한 유적 및 기관으로 큰 각광을 받을 것이다.

6. 開城 및 堂里 修養院

◇ 開城修養院

원기32년(1947) 7월에 조직된 개성지부 교도 女子青年들이 수양원 창설을 결의했다.

원기34년(1949) 8월 開城 子男洞에 20여간의 가옥과 多少의 家產, 집기 등 구입하였다. 기금은 幾千萬圓이 들었다고 한다.

◇ 堂理 修養院

원기32년(1947) 9월 경남지부 요인 金性明華 회갑잔치를 중지하고 義捐한 2만원과 三支部 교도 몇명이 修養院기금으로 10만원을 出資하여 출발하였다.

□ 療 養 院

1. 중앙요양원

가. 설립배경

중앙요양원의 모체는 금산요양원이다. 원기38년(1953) 금산과원이 있는 금산요양원 위치가 금산수리조합(現 금평 저수지) 수몰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요양원을 옮기게 되었다.

원기40년(1955) 5월에 총부 근동 새말(現 新洞 원광대학교 정문앞)에 건평 52평의 현대식 양옥을 신축하고 정부의 허가를 얻어 북일면 진료소를 병설하였다. 원기42년(1957) 동 장소에 진료소 사옥을 건축하고 10월에는 東華病院으로 정식인가를 받았다. 이후 동화병원은 월 평균 7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한편, 보사부와 교섭하여 폐결핵 요양소를 개설하였다. 원기45년(1960) 9월 20일 비영리자선 의료단체 인지라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다.

그로부터 10년 뒤 원불교 반백년 결실성업을 다져 교정원사업부(현, 공익부)는 원기45년(1960) 9월 24일 정산종사 회갑식을 맞이하여 정산종사의 유시에 따라 전무출신 요양기관을 만들기 위해 모은 금액을 동화병원(요양원 겸함) 건축에 투자 했다. 그리고 다시 병원을 개수

하여 전문의 2명을 확보했으나 재정난으로 또다시 3년만에 휴업하고 말았다.

원기55년(1970) 9월에 요양기금 확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현 북일원광한의원자리에 변중선원장이 한약방을 개원하였다. 원기55년(1970) 9월 21일 뜻하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노성자 교무의 집으로 약재를 옮겼다. 박광진 집으로 요양원을 옮겨 지내다가 문화원이 들어서자 현재 원로원 위치에 과수원 겸 이영훈 사택(大山宗法師 私家)을 인수하여 정부 주택 지원금으로 연립주택 2동을 지어 생활했다. 그리고 원로원 아래에 있는 남자요양원은 박장식교무 私宅을 변중선원장이 인수했다.

원기60년(1975) 1월 25일 신리 280－17의 땅을 매입, 연립주택 2동(정부 주택자금 융자)을 신축하여 여자 요양 숙소 및 한약방을 경영했다.

원기61년(1976) 2월 변중선원장의 열반으로 한약방은 문을 닫게 되었으며 약재 모두는 북일 원광한의원으로 넘겼다. 따라서 북일원광한의원의 개원 계기가 되었다.

원기68년(1973) 6월 16일 신동 280－15에 남자요양원이 개원 봉불되었으며, 원기70년(1985) 8월 20일 원로원신축에 따라 여자숙소는 철거되고 대신 신용동 326－6에 중앙요양원이 신축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李東眞華(慶洙)	女	1894. 5. 5	35(1950)～38	
2	宋 慧 煥(東煥)	男	1905. 2. 12	38～42	
3	宋 圓 徹(金道)	女	1926. 5. 8	54～56	
4	邊 衆 船(極)	男	1903. 4. 22	54. 3～61. 2. 29	
5	全 基 徹(順福)	女	1924. 2. 16	61. 3. 1～현재	

다. 역대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원 장	宋 圓 徹(金道)	女	1926. 5. 8	54. 1. 1～56. 12	
법은회장	邊 衆 船(極)	男	1903. 4. 22	54. 1. 1～56. 12	
원 장	〃	〃	〃	52. 2. 9～65	
〃	全 基 徹(順福)	女	1924. 2. 26	65. 3. 1～	
부 원 장	全 基 徹(順福)	〃	〃	61. 3. 1～65. 2	
총 무	朴 賢 一 (玄順)	女	1929. 5. 2	54. 2 ～54. 12	

총 무	金 春 澤(永澤)	男	1937. 8. 30	61. 3. 1~65. 2	
주 임	〃	〃	〃	54. 9. 17~61. 2	
간 사	孔 慈 仁	女		55. 2. 1	
주 사	李 永 華(正順)	〃	1927. 1. 10	65. 1. 17	
감 원	高 玄 聖(永禮)	〃	1934. 1. 6	60. 3. 1~64	
〃	李 永 華(正順)	〃	1927. 1. 10	61. 3. 1~	
〃	韓 珍 成(順禮)	〃	1935. 9. 4	67. 3. 26~	
감 원	李 震 明(玉順)	〃	1911. 9. 1	53.~54	
교 무	黃 恩 奎(環姬)	〃	1945. 12	68. 1. 17	
〃	李 淨 善(春子)	〃	1947. 7. 3	68. 1. 17	
감 원	李 明 輪(順男)	〃	1928. 10. 17	68. 3~70	

라. 연도별 수용인원

연 도	수 용 인 원			신 입 자 수			퇴 원 자 수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57	10	2	8							
58	8	1	7				2	1	1	
59	3	1	2				5		5	
60	10		10	8		8	1	1		
61	7		7				3		3	
62	7	1	6	1	1		1		1	
63	3		3				4	1	3	
64	5	1	4	2	1	1				
65	2		2				3	1	2	
66	10		10	8		8				
67	17		17	7		7				
68	26	4	22	9	4	5				
69	13		13	4	1	3	17	5	12	
70	13		13							
71	17		17	4		4				
72	28		28	11		11				

마. 배출된 전무출신

번호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천교무	비고
1	朱 經 善(金 心)	女	1958. 8. 27	58. 8. 11	67. 1. 16	梁 慧 經	
2	崔 志 圓(京 子)	〃	1945. 9. 9		52. 3. 1	宋 圓 徹	

2. 원평요양원

가. 설립배경

원기70년(1985) 2월 종로교도회장 이철원, 김명환 내외분이 모친인 한정보화교도가 거주하다 원기69년(1984) 12월 29일 열반에 들자, 원불교 교역자 요양원이 원평에 있어야 됨을 절감하고 원평소재 대지 350여평, 건평 30평(1동)을 요양원으로 사용하도록 법은사업회에 회사했다.

이에 원기70년(1985) 3월에 공사비 350만(공익부 200만원, 원평교당 150만원)을 들여 구조변경 및 수리를 하여 바로 입주했다.

원장에는 공익부장이 겸임하고 교무는 원기72년(1987) 2월에 李蓮悟교무가 발령되었다.

나.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吳 曙 圓(男苗)	女	1931. 12. 20	70. 3. 1~70. 12	공익부장
2	李 慧 定(愛子)	〃	1937. 12. 9	71. 1 ~	〃

다. 역대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교 무	李蓮悟(蓮姬)	女	1952. 6. 12	72. 2	70년 9월에 요양하면서 근무하다가 72년도 2월에 발령장을 받고 정식 근무하게됨

3. 불목 요양원

1) 설립배경

불목요양원은 현재 완도 소남훈련원과 함께 소재한다. 불목요양원은 원기58년(1973) 당시 불목교당 辛濟根교무가 상주함으로써 인연이 되었다.

원기58년(1973) 金仁碩교무, 원기65년(1980) 황정원 등이 상주하여 관리수호해 오다가 동년 大山宗法師의 하명에 따라 전무출신요양원 건립에 착수했다.

원기65년(1980) 5월 17일 공익부에서 완도 불목리 소남농장을 요양원으로 개척하기 시작하

여 이듬해 6월 30일 건평 56평의 療養院舍를 신축했다.

원기67년(1982) 大山宗法師 2차 정양중에 훈련원 건립의 뜻을 밝힘에 따라 불목요양원은 훈련원과 함께 共存케 되었다.

4. 금산 요양원

가. 설립배경

湖南靈峰인 母岳山 아래인 원평, 正面 맞은 편에는 연자봉, 左에는 九峰山, 右에는 清道山이 둘려있고 中央 한복판에 목조 초집 二棟이 건립되었으니 이곳이 곧 《원불교금산요양원》이다.

금산요양원은 보화당약방(現 보화당 한의원)의 숙원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원기35년(1950) 4월 教議會에서는 보화당자금으로 김제 모악산하의 金山果園을 인수하여 장차 요양기관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의했다.

금산과원을 金山요양원이라 명명하고, 초대원장에 李東震華교무가 선임되었다. 운영은 果園과 農場經營의 이득을 積立하여 후에 대규모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산요양원이 설립된 지 3년만에 동 지역이 금산수리조합(現 금평저수지) 수몰지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부득불 총부로 요양원을 옮기게 되었으며 이듬해 4월 중앙요양원이 발족되었다.

Ⅶ. 醫療·藥業機關

원불교는 교화·교육·자선을 3대사업으로 삼아 창교이래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중 자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일제치하에서도 교단은 병원설립을 전제로 교도들의 신정예법 실시 등 허례허식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 저축하였으며 그 의례비를 투자, 먼저 건재약방 보화당을 설립 운영하고 그 이익금으로 濟衆院이라는 병원을 설립하여 종교의 사명인 자선사업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국이 각박하고 교단 형편상 해방 뒤인 원기35년(1950) 4월에야 보화당의 자금으로 모악산하에 금산요양원을 설립하였는 바 이는 자선병원 설립의 전초사업이라 하겠다.

금산요양원은 금산수리조합 수몰지구로 편입되어 원기38년(1953) 부득불 총부로 이전하여 이듬해 4월 중앙요양원으로 발족되었으며, 원기40년(1955) 5월 새말에 중앙요양원사를 신축하고 정부의 허가를 얻어 북일면 진료소를 병설 운영하게 되었다.

원기32년(1957) 동 장소에 진료소 사옥이 건축됨에 따라 10월에는 동화병원으로 정식인가를 얻었으며, 이것이 원불교 의료기관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동화병원은 보건사회부와 교섭하여 폐결핵 요양소를 개설하는 등 자선병원으로서의 한 몫을 착실히 수행하였으며, 원기39년(1954)에는 보건사회부의 지원을 받아 결핵요양 병동(2층, 건평 220평)을 신축하고 전북지역의 결핵퇴치사업에 앞장서 1만여 주민들의 결핵검사, 100여명 무료치료 등 성과를 올렸으나 영세민 대상의 봉사에만 치우친 까닭에 운영난에 봉착 원기40년(1955) 9월 시내로 이전개업까지 해보았으나 비영리 자선의료사업인지라 곧 재정난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

그로부터 10년 뒤, 반백년 결실성업의 사업종목에 포함되어 병원을 개수하고 전문의를 확보하여 재개업하였으나 3년만에 다시 휴업하고 말았다.

이후 원광대학에 원기40년(1955) 약학과가, 원기57년(1972) 한의예과, 원기65년(1980) 의예과 등이 차례로 인가를 얻음으로써 의료사업기관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능해짐으로써 원기60년(1975)에 종합병원에 한의학과 부속병원을 개설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명칭을 《원광한의원》이라 하였다.

원기61년(1976) 원광한의원은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으로 발전하고 원기63년(1978) 이리역 앞에 7층 1,331평의 한방의학 종합병원을 신축하여 《원광의료원》으로 개원하였으며 원기69

년(1984) 의료원 신축 이전과 정신과 진료의 제2병원 개설 등으로 의료원의 틀을 완성하게 되었다.

한편 한방의료기관으로 전국에 보화당 한의원이 차례로 개설 운영되었으니 원기72년(1987) 말 현재 14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에 원불교의 의료약업기관을 원광의료원과 보화당의 양대줄기로 구분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 원광의료원

의료원의 설립은 원불교 3대 목표인 교화, 교육, 자선사업의 하나로써 창교이래 끈질기게 추진되어 오던 숙원사업이었다.

본원은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원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동서의학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와 실습을 통하여 의학도 및 전공의를 수련, 배출하고 양질의 진료로써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본 의료원의 모체는 원기63년(1978) 9월 1일 이리시 중앙동 1가 13번지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과 원광보건전문대학 부속 치과병원을 개원하고 초대 의료원장에 원광대총장인 박광전교무의 취임으로부터 시작됐다.

그후 원기65년(1980) 12월 15일 이리시 동산동 144의 23번지에 200병상 규모의 시그레이브 기념병원을 인수하여 원광의대 부속병원으로 출범한 후, 원기69년(1984) 7월 이리시 신룡동 344의 2 현 위치에 대단위 종합병원을 신축 개원하므로써 양·한방을 겸한 명실 상부한 의료원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게 되었다. 원기70년(1985) 3월 1일 초대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2代)에 김정용교무가 취임, 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산하에 의대부속병원, 제2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광주한방병원을 두고, 행정을 통괄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두었다.

원기72년(1987) 3월 1일 제2대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3代)에 송천은(宋天恩)교무가 취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년 5월에는 이리시 신동 738-2번지에 (구 기독병원-대지 1,016평, 연건평 1431.6평, 지하 1층 지상 5층) 산부인과 소아과를 이전하였다.

현 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는 235명에 달하는 의사를 비롯하여 총 989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건평 14,333평의 건물에 839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총 자산은 약 188억원이며, 연간 총예산 규모는 약 198억원에 이르고 있다.

원광의료원에서는 매년 4월 28일 원불교 대각개교절을 맞이하여 각 병원별로 낙도 및 오지에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해나 기타 재해발생시에도 신속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

〈무료진료실적〉

연 도	진료인원	소 요 경 비	비 고
68	9,592명	16,071,400원	
69	2,172명	19,758,000원	
70	5,025명	52,145,280원	
71	6,111명	32,453,200원	
72	5,020명	39,474,960원	

가. 연 혁

58(1973). 12. 28 한의과대학 설치인가

62(1977). 1. 5 한의과대학부속 광주한방병원 개원

63(1978). 7. 30 이리시 중앙동에 의료원 준공(대지 382평, 연건평 1,331평)

63(1978). 9. 1 의료원 개원(한방병원, 치과의원 개원) 초대 의료원장에 원광대총장인 박광전(朴吉眞)교무 취임.

65(1980). 12. 15 시그레이브기념 이리종합병원 인수, 의과대학 부속병원 개원 초대 원장에 이혜수박사 취임

65(1980). 12. 22 치과대학 설치인가

67(1982). 5. 1 이리시 신용동 (원대 캠퍼스내)에 의료원 신축기공

67(1982). 10. 5 의과대학 설치인가

69(1984). 2. 3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개설허가

69(1984). 6. 20 의료원 신축 준공(연건평 6,826평, 지하 1층 지상 9층의 의대부속병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지하 1층 지상 3층의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

69(1984). 7. 11 의과대학부속 제 2병원(정신신경과) 개원, 150병상 규모(구 시그레이브병원 개수)

69(1984). 7. 23 원광의료원 개원(의대부속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 이전 개원)

70(1985). 3. 1 초대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2代)에 김정용(金三龍)교무 취임. 산하에 의대부속병원,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 의대부속제2병원, 한의과대학부속 광주한방병원을 두고 의료원 기획관리실을 설치

71(1986). 5. 6 이리기독병원 인수(이리시 신동 738-2 소재 대지 1,016평, 연건평 1,431.6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72(1987). 3. 1 제2대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3代)에 송천은(宋天恩)교무 취임

72(1987). 5. 8 산부인과 소아과 이전 개원(구 기독병원 건물)

나. 조직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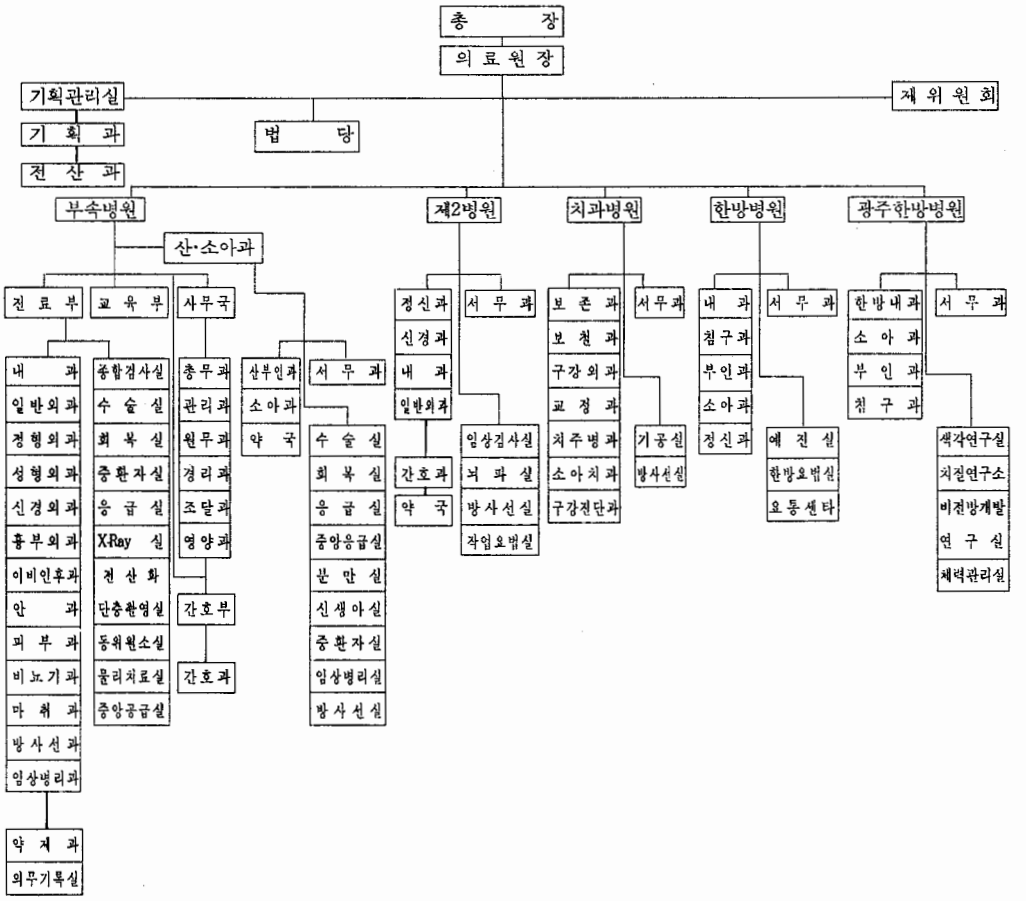

다. 역대 의료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朴 光 田(吉眞)	男	1915. 3. 23	63. 9. 1~70. 2. 28	
2	金 正 勇(三龍)	〃	1925. 11. 1	70. 3. 1~72. 2. 28	
3	宋 天 恩(天恩)	〃	1936. 7. 9	72. 3. 1~	

라. 역대 의료원 기획관리실 재직 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기획관리실장	吳 海 仁(海金)	男	1932. 1. 2	71. 3. 1~72. 2. 28	
기 획 과 장	尹 正 宇(錫俊)	〃	1948. 2. 8	70. 4. 1~71. 7. 14	
〃	趙 圓 悟(庸覺)	〃	1948. 4. 11	71. 8. 1~72. 2. 28	
기획관리실장	丁 華 聲(華聲)	〃	1928. 1. 4	72. 3. 1~	
기 획 과 장	李 龍 煥(炫根)	〃	1950. 7. 19	72. 3. 1~	
교당(법당교무)	鄭 玄 仁(舜日)	〃	1953. 1. 9	69. 11. 15~	원대전임 강사겸직
〃	張 正 髓(善子)	女	1942. 1. 2	71. 3. 10~	

마. 중요활동

직원 친절봉사 표어공모	71. 3. 20	송·죽·매 등 20명 선정 표어표구 제작 후 병원내 부착
대각개교절기념 무료진료	71. 4. 6~6. 20	부속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진료인원 508명
기관대항 성가대회 출전	71. 4. 28	원음상(대상)수상
이리기독병원 인수	71. 5. 6	산·소아과 개원
제2회 의료원 교직원 연수	71. 8. 1~8. 2 8. 9~8. 10	장소 : 내장산. 연수인원 : 631명
의료원소식 창간호 발행	71. 10. 1	다블노이드 8면 2,500부 발행
제1회 의료원 체육대회	71. 10. 11	장소 : 원대체육관. 참석인원 : 350명
87년 시무식 및 친절봉사상 시상식	72. 1. 3	송·죽·매 등 26명 시상
의대부속병원 개심수술100례 기념식	72. 2. 24	참석인원 : 200명
제3대 의료원장 취임	72. 3. 5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송천은교무

대각개교절기념 무료진료	72. 4. 1~4. 30	부속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인원 : 898명 진료
'87의대부속병원 수가표 발간	72. 4. 20	100부 인쇄, 각부서 배부
산·소아과병원이전개원	72. 5. 8	
의료원인사업무 대학으로부터 인수	72. 5. 10	6급이하 일반직원 임용
86년 의료원 결산 총괄	72.5.25~5.30	본부 간부회의 및 이사회 제안 설명
수해지구 무료진료 봉사	72. 7. 28~7. 31	진료장소 : 부여, 강경지구 진료인원 : 2,536명
부속병원 안내팜프렛 발간	72. 8. 1~8. 18	안내책자 3,000부, 팜프렛 5,000부
직원 친절안내서 발간	72. 8. 18	1,500부 인쇄 교직원 배부
의료원 전산화 추진	72. 9. 29	전산화 추진 위원회 개최 제안설명 및 모델, 용량 결정
의료보험 신·구증 교체	72.9.29~10.5	의료원 전직원 교체
친절안내 교육실시	72.10.19~10.23	교육인원 546명
제3회 의료원 연수	72.10.25~11.1	장소 : 계룡산. 연수인원 : 482명
예산과목 해설집 발간	72.11.20~12.4	각병원 예산과목 통일

1. 의과대학 부속병원

가. 설립일

원기65년(1980) 12월 15일

나. 설립목적

본 병원은 원광대학교의 설립재단인 원불교의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정신에 입각하여 의학을 연구하고 의학도를 수련하는 교육병원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함은 물론, 최신 의료장비와 고도의 의술로 진료를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의료 혜택을 줌을 목적으로 한다.

다. 연 혁

65(1980) 12. 15 재단법인 시그레이브기념 이리종합병원을 학교법인 원광학원에서 인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개원, 초대병원장 이혜수박사 취임
67(1982) 5. 1 500병상 규모의 신축병원 기공
68(1983) 7. 19 김기석박사 제2대 병원장 취임
69(1984) 6. 20 신축병원 준공
69(1984) 6. 17 신축병원으로 이전
69(1984) 7. 6 흉부외과, 비뇨기과 증설
69(1984) 7. 23 신축병원 준공개원식(의료원 개원)
71(1986) 6. 10 성형외과 증설
71(1986) 5. 6 이리기독병원 인수
71(1986) 12. 9 해부병리과 증설
72(1987) 5. 8 산부인과 소아과(구 기독병원 건물로)이전 개원식
72(1987) 9. 1 제3대 병원장 윤재승박사 취임
72(1987) 10. 5 신경과 정신과(외래) 증설

라. 조직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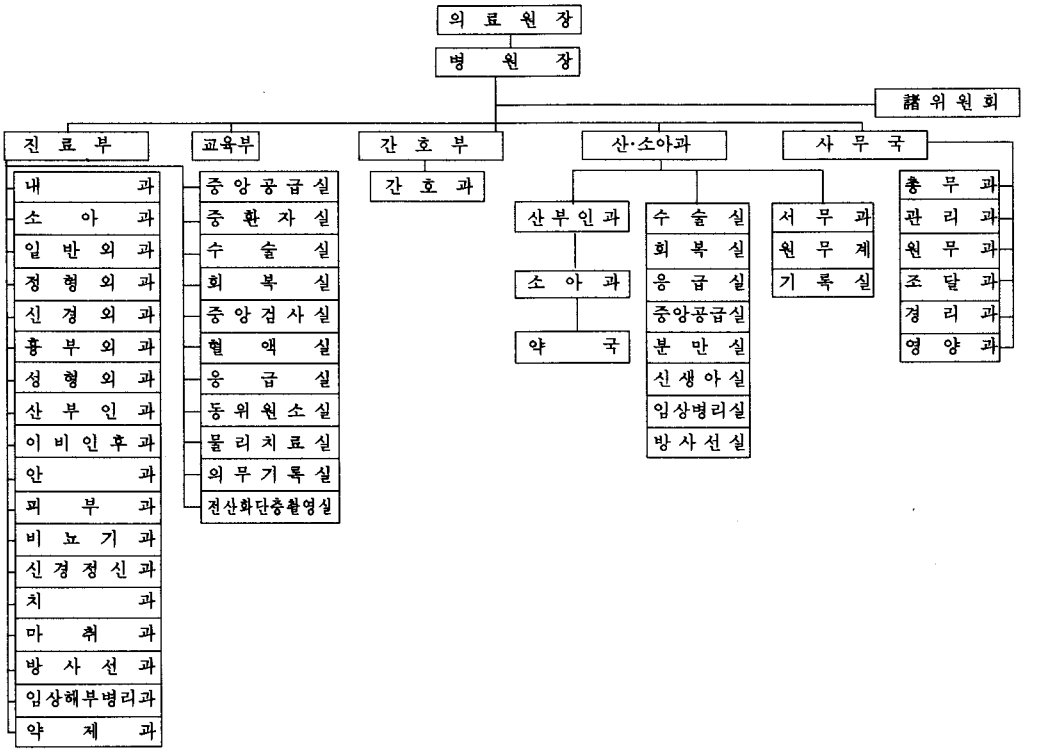

마. 현 황

1) 시설현황

(1) 건물현황

① 본원(관) : 이리시 신용동 344-2(캠퍼스내)

• 대 지 : 13,232평, • 건 평 : 6,826평, • 건물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지하1층, 지상9층

② 산·소아과관 : 이리시 신동 738-2

• 대 지 : 1,016평, • 건 평 : 1,431.6평,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1층, 지상5층

③ 간호사숙소 : 이리시 신동 783

• 대 지 : 317.2평, • 건 평 : 300평,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연립주택 25평형 12동

〈허가병상수〉

병상종류	일반병실	결핵병실	전염병실	격리병실	계
허가병상수	480	20	20	20	540

〈과별 가동병상수〉

과목별	가동병상수	과목별	가동병상수
내과	90 병상	산부인과	70 병상
소아과	70 〃	안과	20 〃
신경과		이비인후과	10 〃
정신과	(150) 〃	비뇨기과	10 〃
피부과	10 〃	결핵과	
일반외과	50 〃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20 〃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140 〃	기타	
신경외과	40 〃	계	540 〃
성형외과	10 〃		

〈의료장비 연도별 도입 현황〉 (단위 : 천원)

취득년도	자금구분 차관	자금구분 내자	품 명	수량	금 액	비 고
64(1979)	OECF		Audiometer 1 set 외	432종	1,315,682	개원시 진단용 치료용 필수장비
65(1980)		자체자금	Water Bath 1 set 외	2종	617	검사장비 외
66(1981)		〃	Bipolax 1 set 외	15종	40,923	진단용 및 수술용장비 외
67(1982)		〃	Oxygen Chamber 1 set 외	11종	19,429	진단용 및 수술용장비 외
68(1983)	OECF		Gamma Camera 1 set 외	25종	636,421	핵의학 검사 및 진단용 장비 외
〃		자체자금	Infusion Pump 1 set	14종	45,850	치료용 장비 외
69(1984)	OECF		Heart iung machine 1 set 외	9종	140,481	심장진단 및 수술용 주요장비 외
69(1984)		자체자금	Emersion Suction 5 set 외	38종	170,174	진단용 치료장비 외
70(1985)	OECF		C-T Scanner 1 set 외	10종	2,237,094	전신용단층 촬영기의 주요 진단 및 치료장비 외
〃		자체자금	Electro Surgical Unit 1 set 외	41종	229,453	진단용 치료장비 외
〃		리 이 스	Echo Cardiograph 1 set 외	7종	566,532	심장진단 및 특수검사장비 외
71(1986)	OECF		Yag Leaser 1 set 외	4종	219,830	야그레자를 이용 환자를 치료함
〃		자체자금	Nerve Stimulator 1 set 외	13종	1,061,960	수술실 확장에 따른 마취기 외
71(1986)	OECF		Angiograph Unit 1 set 외	16종	1,190,000	심장혈관 조영촬영기 외
72(1987)	OECF		Ultrasound System	1종	32,878	초음파 기기
〃		내자장비	Automatic Endoscope cleaner	1종	13,496	위내시경 자동세척기
〃		〃	Upper G-I Fiberscope Set	1종	33,919	내시경 기기
〃		〃	Ent Instrument Endoscope Set	1종	14,031	이비인후과용 의료기기
〃		〃	Hematology Blood Cell Counter	1종	23,052	혈구계산기
〃		〃	Automatic Glore Co-unditiner Complete Set 외	31종 30종	61,828	글러브 자동처리기외
〃		리 이 스	Opthalmic Operating Microscope 외 3종	4종	35,000	안과수술용 기구
계				707종	8,088,650	

〈주요장비〉 (단위 : 천원)

취득일자	품 명	수량	금액	용 도
68(1983)12. 1	Gamma Camera	1sys	260,839	핵의학의 진단용 첨단기로서 동위원소를 체내에 주입하여, 간·신장 등 각 부위의 병소를 찾는 기기임
69(1984)11.28	Heart Lung Machine	1sys	73,773	심장수술시 환자의 심장을 멈추게 한 후 심장기능을 대행하는 기기임
69(1984)11.28	Cardiac Catherterization	1sys	26,963	심장수술전 환자의 제반수술 조건 등 정확한 진단을 하는 기기임
70(1985)12.21	Whol Body C-T Scanner	1sys	889,224	컴퓨터 조정으로 몸전체의 각 부위를 단층촬영하여 환부를 찾는 기기임
70(1985)12.21	Esophagial Motility System	1sys	65,431	식도 및 위장의 역동검사를 실시하는 기기임
70(1985)12.21	Pulmonary Function	1sys	75,484	호흡기 계통의 기능 및 질환을 진단하는 기기임
70(1985)11.20	Echo Cardiograph	1sys	162,000	심장의 혈류 등 제반상태와 질환을 초음파를 이용 진단하는 기기임
70(1985)12.31	Argon Leaser	1sys	60,000	안과영역의 혈관 종양 및 출혈시 종양제거 및 지혈을 레이저광선으로 시술치 않고 시행함
70(1985)12.31	Chemical Analysis	1sys	117,600	인체혈액을 컴퓨터에 의해 자동 분석하여 각종 질환 진단을 보조하는 기기임
71(1986) 7.30	Yag Leaser System	1sys	91,000	야그레자빔을 이용하여 각종질환을 치료하는 기기임
71(1986)12.20	Angiograph Unit	1sys	930,000	심장혈관을 조영촬영하여 심장질환 진단 및 수술에 기여함
72(1987)	Ultrasound System	1sys	32,078	초음파 기기
〃	Automatic Endoscope cleaner	1sys	13,496	위내시경 자동 세척기
〃	Upper G-I Fiberscope Set	1sys	33,919	내시경 기기
〃	Ent Instrument E Endoscope Set	1	14,031	이비인후과용 의료기기
〃	Hematology Blood Cell Counter	1	23,052	혈구계산기
〃	Opthalmic Operationg Microscope외 3종	1	35,000	안과수술용 기구

2) 자산현황

유 동 자 산	5,186,394,149
투자및기타자산	42,918,000
고 정 자 산	8,494,295,761
이 연 자 산	1,544,587,247
총 계	15,268,195,157

※ 부채현황

유 동 부 채	1,859,487,354
고 정 부 채	5,253,423,317
계	7,112,910,671

※ 자본현황

자 본 금	8,234,041,150
이 익 잉 여 금	78,756,664
계	8,312,797,814

3) 예산규모(연도별)

67(1982)	3,660,415,000원	70(1985)	8,895,793,000원
68(1983)	4,342,190,000원	71(1986)	10,687,731,000원
69(1984)	6,498,896,000원	72(1987)	12,915,546,000원

4) 인원현황(원기73년(1988) 7. 30 현재)

직 종 별		현원
• 의 사	전 문 의	51
	전공의인턴	33
	전공의레지던트	72
	일 반 의	2
• 약 사	약 사	18
	(약사보조)	12
• 간 호 사	간 호 사	201
	(간호조무사)	78

직 종 별		현원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32
	방 사 선 사	17
	물리치료사	2
	의무기록사	2
	영 양 사	3
	(기사보조원)	26
• 행 정 직	사 무 원	93
• 기 타	기 능 직	36
	고 용 직	53
총 계		731명

바. 역대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李 (惠秀)	男	1927. 6. 19	64. 11. ~64. 6. 15	
2	金 亨 德(起錫)	〃	1937. 5. 27	68. 7. 19~72. 8. 31	
3	尹 (在勝)	〃	1940. 11. 8	72. 9. 1~	

사.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경 리 과 장	金 聖 現(永彩)	男	1938. 3. 1	66. 7. 15~	
보 급 계 장	張 行 善(慶男)	女	1951. 7. 6	68. 1. 1~	
간 호 부 장	盧 聖 子(蓮順)	女	1944. 5. 20	69. 3. 1~	
영 양 과 장	朴 純 基(寶順)	〃	1942. 1. 13	69. 3. 1~	
약 제 과 장	金 一 誠(恩淑)	〃	1948. 8. 12	69. 11. 1~	
관 리 과 장	張 正 一(祥奎)	男	1933. 5. 28	70. 4. 26~71. 2. 28	원대도서관전보
사 무 국 장	宋 慧 聖(熙一)	〃	1932. 11. 8	71. 3. 1~	
총 무 과 장	尹 正 宇(錫俊)	〃	1948. 2. 8	71. 8. 1~72. 2. 28	한방병원전보
총 무 과 장	金 正 常(南暎)	〃	1951. 1. 20	72. 3. 1~	
산·소아과 행정부장	權 峻 圓(在完)	〃	1940. 4. 25	72. 6. 1~	

아. 활동사항

1) 학술활동

- C. P. C (월3 회) : 희귀한 case 및 진단을 못 내린 상태에서 사망한 case의 사인토론
  주관 : 임상병리과(각과에 의뢰)
- I. D. C. (월3 회) : 각과에서 학술적으로 흥미있었던 case에 대한 각과간 토론회
  주관 : 교육부(각과에 의뢰)
- 학 술 토 론 회 (월1 회) : 각과 교수들이 어떤 질환이나 최신 동향에 관한 학술적 개요 및 분석을 발표하는 학술모임. 주관 : 교육부(각과에 의뢰)
  (주로 인턴, 레지던트의 교육과 타과에서의 이해 증진에 목적이 있다.)

• 방사선집담회 (수시) : 전형적인 X-ray나 애매한 상태의 환자를 모든 과들이 모여 어떤 방향으로 검사 및 처치를 해야 할까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
주관 : 방사선과

• 학술집담회 (월2~3회) : 매월2~3회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각분야에 걸쳐 최신 의학 연구에 대한 강의 및 토론을 기초학 교실과 임상각과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토론회임. 주관 : 교육부, 기초학교실

• 증례합병증사인토론회 (월3~4회) : 환자 치료중 발생한 합병증발생이나 사망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모임. 주관 : 교육부(각과에 의뢰)

2) 봉사활동(무료진료 현황)

연 도	병원명	진료장소	진료내용	진료인원	소요예산
68(1983) 5.11~13	부속병원	익산군 왕궁, 성당, 용안면	내과, 외과, 소아과	200	700,000
8. 31		이리시 모현동	〃	160	560,000
69(1984) 4.24~26	부속병원	옥구군 임피면 정읍군 북면	내과, 외과, 소아과	388	1,500,000
70(1985) 4.19~26	부속병원	부안군 백산면 정읍군 산내면 정읍군 고부면	내과, 외과, 소아과	399	1,300,000
71(1986)4.6~6.20	부속병원	병 원	이비인후과:만성 중이염, 편도, 아레노이드비후 성형외과: 화상후 구축성반흔 안과:선천성 녹내장, 노인성 녹내장	4	7,240,000
72(1987)4.22~24	부속병원	임실군 지사면 정읍군 감곡면 대천시 대관동	내과, 소아과, 외과	154	1,500,000
		충남부여,강경지구	내과, 소아과, 외과	1,247	6,000,000

3) 환자 진료 현황

(단위 : 명)

연 도	입 원	외 래	계
70(1985)	152,754	119,150	271,904
71(1986)	173,587	113,846	287,433
72(1987)	198,266	129,773	328,039

4) 주요진료실적

① 흉부외과 개심술 : 200례 돌파
② 일반외과 신장이식수술 : 5례 돌파
③ 연간수술 전신마취수술 : 2,721건
부분마취수술 : 233건
Spinal : 418건
계 3,372건
④ 연간방사선 촬영건수 : 직접촬영 : 65,376건
간접촬영 : 9,423건
특수촬영 : 4,593건
⑤ 연간 병리검사건수 : 일반검사 : 791,127건
조직검사 : 5,649건
부 검 율 : 3건
⑥ 1일평균 외래환자수 : 433명(300일 진료)
⑦ 1일평균 재원환자수 : 543명(365일 진료)
⑧ 평균재원일수 : 14일
⑨ 연간 신생아수 : 895명

2. 의과대학부속 제2병원

가. 설립일

원기69년(1984) 7월 11일

나. 설립목적

본원은 제생의세(濟生醫世) 정신에 입각하여 의학을 연구하고 의학도를 수련하는 교육병원으로서 지역 사회 및 의료 취약지구 국민의 의료 시혜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 연 혁

69(1984) 6. 17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부터 인수
69(1984) 7. 11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제2병원으로 개설. 초대 원장 고병학교수 취임
70(1985) 3. 1 제2대 원장 김종주박사 취임
70(1985) 4. 24 정신질환자 관리병원 지정
70(1985) 6. 1 원광정신의학지 창간(월간)
70(1985) 6. 27 치료감호 대용시설 인가
72(1987) 3. 1 제3대 병원장 박남진교수 취임

라. 조직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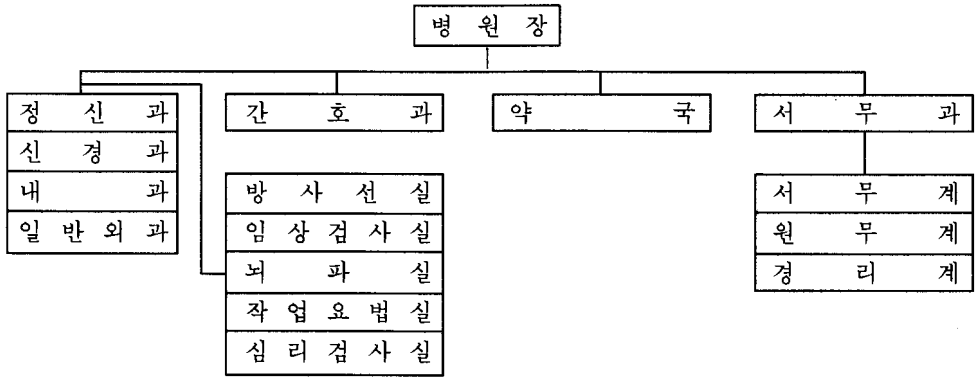

마. 현 황

1) 시설현황

① 소재지 : 이리시 동산동 144-23 3,340평
(대지) 이리시 마동 81-3 1,110평
② 건물 : 본관-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4층 : 1,785평
수위실-시멘트 벽돌조 평가건 : 14평
영안실-시멘트 벽돌조 평가건 : 9.8평
매 점-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 24.9평
기숙사-시멘트 벽돌조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 : 259평

의사기숙사－철근콘크리트 건와가, 지하 1층 지상 2층 200평

③ 병상현황

병상종류	실 수	허가병상수	병상종류	실 수	허가병수
소 아 병 실	1	8	1 인 실	20	20
6 인 실	5	30	10 인 실	1	10
2 인 실	3	6	4 인 실	19	76
			계	49	150

④ 장비현황

번호	품 명	수 량	금 액
1	거치식방사선 발생장치	1대	4,950,000원
2	자동 현상기	1대	3,850,000원
3	카세트(5종×3조)	1대	1,072,500원
4	현미경	1대	770,000원
5	헤마토 원심기(W/G 24본)	1대	880,000원
6	Spectrophometer	1대	1,320,000원
7	충격기	1대	880,000원
8	E. M. G.(전기생리학적 검사기)	1대	37,720,000원
9	E. K. G	1대	990,000원

2) 자산현황

유 동 자 산	246,499,456원	※ 부 채	222,598,284원
고 정 자 산	1,204,751,683원	※ 자 본	1,228,652,855원
자 산 계	1,451,251,139원		

3) 예산규모

연 도	예 산 액
70(1985)	625,036,000원
71(1986)	752,899,000원
72(1987)	760,905,000원

4) 인원현황

• 의 사	전 문 의	5명	10명	• 의료기사	방 사 선 사	1명	
	전 공 의 (R)	5명			임 상 병 리 사	1명	4명
• 간호직	간 호 사	17명			영 양 사	1명	
	간호조무사	7명	34명		작 업 요 법 사	1명	
	병 동 원	10명		• 사 무 직	부장, 계장, 사무원 등		12명
• 약무직	약 사	1명	2명	• 기 능 직	보일러공, 운전, 교환 등		6명
	보 조 원	1명		• 고 용 직	취사, 청소, 수위 등		7명
					계		75명

바. 역대 병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高 (炳鶴)	男	1938. 11. 4	69. 7. 11~69. 12. 7	
2	金 (鍾柱)	〃	1946. 4. 21	70. 3. 1~72. 2. 28	
3	朴 學 眞(南鎭)	〃	1942. 10. 28	72. 3. 1~	

사.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서무과장	趙 圓 悟(庸兢)	男	1948. 4. 11	70. 3. 1~71. 7. 31	원광의료원 전보
〃	權 俊 圓(在完)	〃	1940. 4. 25	71. 8. 1~72. 5. 31	의대병원 전보
〃	鄭 性 德(弼煥)	〃	1930. 8. 20	72. 6. 1~	

아. 활동사항

1) 학술활동

① 연구지 발간(원광정신의학 원기70년(1985) 6. 1창간) 1,000부

내용 : • 정신의학의 최신지견소개(원광정신의학 1987. 1. 1~20호까지 월간) 1,000부

• 지역사회 정신의학 실천에서 얻어지는 연구결과 발표(원광정신의학 1987. 2~6.

21호~계간) 1,000부

② 학회, 지부학회 논문 발표 1987년 총 6편

③ 초청강의 원기72년(1987) 총 10회 실시

2) 봉사활동

연 도	장 소	진 료 내 용	인 원	소요예산
69(1984)4.25~30	삼 정 원	신 경 정 신 과	50	500,000원
70(1985)4.20~29	수 양 원, 요 양 원	신 경 정 신 과	150	750,000원
71(1986)8.10~30	익 산 군 웅 포 면	신 경 정 신 과	100	650,000원
72(1987)4.27~5.1	익산군 삼정원, 자선원 수 도 원	신 경 정 신 과	50	500,000원

3) 순회 진료 봉사

원광의대 부속제2병원에서 2주에 한번씩 병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수용소인 송광성애원, 원암수양관에 순회진료를 하고 있음.

〈순회진료〉

일 시	담당의	진료장소	비고	일 시	담당의	진료장소	비고
72(1987)1. 7	박남진	송광성애원,원암수양관	원장	72(1987)7. 8	박남진	송광성애원,원암수양관	원장
1. 21	김종주	〃	교수	7.22	김종주	〃	교수
2. 4	박민철	〃	〃	8. 5	박민철	〃	〃
2.18	권혁일	〃	〃	8.19	이귀행	〃	〃
3. 4	박남진	〃	원장	9. 2	권혁일	〃	〃
3.18	김종주	〃	교수	9.15	박남진	〃	원장
4. 1	박민철	〃	〃	10.14	박민철	〃	교수
4.15	권혁일	〃	〃	10.28	권혁일	〃	〃
4.29	박남진	〃	원장	11. 4	이귀행	〃	〃
5.27	박민철	〃	교수	11.18	박남진	〃	원장
6.10	이귀행	〃	〃	12. 2	박민철	〃	교수
6.24	박민철	〃	〃	12.16	권혁일	〃	〃

* 원기72년(1987) 9월 23일부터 박남진원장은 촉탁의사로서 매주 수요일마다 삼정원 순회진료를 하고 있음.

4) 원광정신의학지 발행

제2병원이 추구하고 있는 지역사회정신의학의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일선에서 정신질환자들과 조우하는 의료인들에게 정신의학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정신질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원기70년(1985) 6월에 창간된 원광정신의학지가 해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성장 발전되어 이제는 정신질환자들에 관한 기초지식을 전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정신의학의 최신지견을 소개하고, 지역사회 정신의학을 실천해 나오면서 얻어진 연구결과들을 발표하는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창간 당시 월간으로 발간되었던 것이 내용의 충실을 기하고 질적인 향상을 꾀하면서 계간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총 26권이 발간되었고, 각 권의 발행부수도 1,000부에 달하고 있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 문공부 등록을 추진중에 있어 그동안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3.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가. 설 립 일

원기69년(1984) 2월 3일

나. 설립목적

본원은 치과대학 학생 및 수련의 교육 및 지역사회 치과 영역을 개발 함으로써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하여 인류 건강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연 혁

63(1978) 9. 1 이리시 중앙동1가13번지(구 원광의료원, 한방병원 병설)에 원광보건 전문대학 부속 치과의원 개원, 초대원장 전광익교수 취임.
65(1980) 12. 22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설치
66(1981) 5. 20 원광대학교 부속치과의원으로 명칭 변경
69(1984) 1. 13 이리시 신용동 344-2 원광의료원 치과병원 준공, 치과의원 이전
69(1984) 2. 3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개설 허가, 치과의원 폐업신고
69(1984) 3. 1 초대 병원장 김용관박사 취임
69(1984) 3. 3 사업자 등록
69(1984) 5. 23 군 수련기관 지정
70(1985) 3. 1 군 수련의 8명 선발(제1기)
70(1985) 3. 31 김용관 초대 원장 사임
70(1985) 8. 1 김남규 치과대학장 치과병원장 직무 대행
71(1986) 3. 1 군 수련의 8명 선발(제2기)
72(1987) 3. 1 김남규 원장(치과병원장)중임, 군 수련의 8명 선발(제3기)

라. 조직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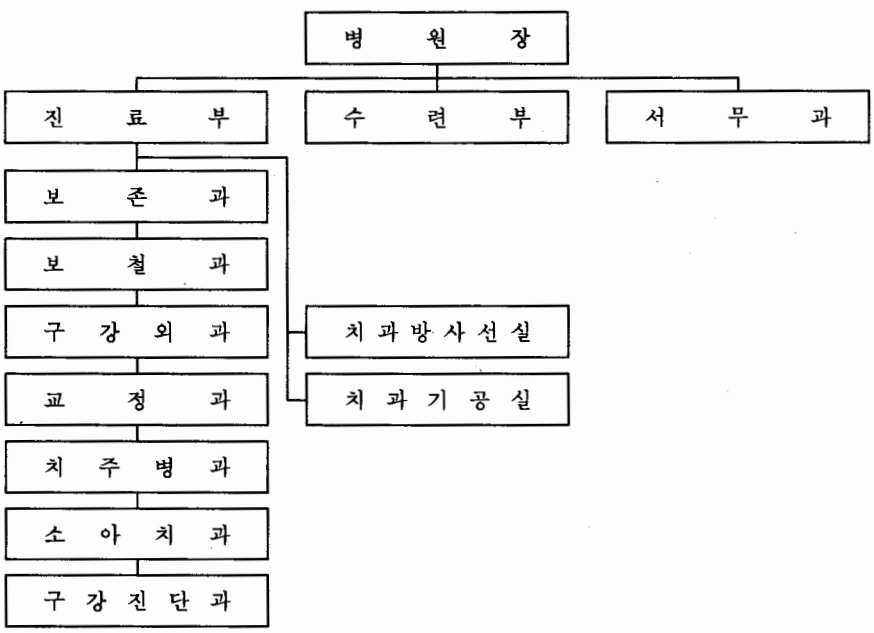

바. 현 황

1) 시설현황

① 건물 소재지 : 이리시 신용동 344-2

대 지 : 원광의료원 공용(13,232평)

건 평 : 1,024평

② 연도별 주요장비 도입현황

연 도	장 비 명	종 수	금 액	비 고
69(1984)이전	유니트체어셀외 1,213종	1,214	565,293,466	재단출연금
70(1985)	노기스외 41종	42	26,959,809	
	에어모타루브리캔외 249종	-250	-33,882,549	소모품으로 전환
71(1986)	개구기의 36종	37	2,459,100	
72(1987)	싸이클스캘러외 2종	3	194,500	
계	유니트체어셀외 1,045종	1,046	561,024,326	

③ 주요장비 내력

Unit & Chair set 51 set

Panorama & Chepalo x-ray 촬영기 2 set

치과용 x-ray 촬영기 7set

기공장비, 고주파 주조기외 100여종

2) 자산현황(1987년도)

유 동 자 산	133,644,581원
고 정 자 산	628,255,423원
총 계	761,900,004원

3) 연도별 예산규모

연 도	예산규모	비 고	연 도	예산규모	비 고
69(1984)	144,000,000원		71(1986)	479,708,000원	
70(1985)	300,000,000원		72(1987)	575,752,000원	

4) 연도별 직원현황

연 도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사무직	기능직	고용직	계
	교수	레지	인턴							
69(1984)	6		2		1	6	2	1	1	19
70(1985)	9	2	7		2	10	3	1	1	35
71(1986)	11	9	9		3	10	5	2	3	52
72(1987)	11	16	9	1	4	10	5	2	3	61

5) 연도별 환자 현황

연 도	외 래	
70(1985)	22,663명	(1일평균 76명)
71(1986)	24,050명	(1일평균 80명)
72(1987)	24,328명	(1일평균 81명)

바. 역대원장

대	성 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金 用 琯	男	1917. 3. 26	69. 3. 1~70. 3. 31	
2	金 南 奎	〃	1924. 5. 15	70. 4. 1~	

사.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서무계장	崔 義 馨(寶玉)	女	1951. 3. 12	64. 12. 1~	
서무과장	李 龍 煥(炫根)	男	1950. 7. 19	69. 10. 17~72. 2. 28	의료원 전보
서무과장	金 淵 聖(七星)	〃	1939. 1. 10	72. 3. 1~	

자. 활동사항

1) 봉사활동

연 도	진료장소	진료내용	진료인원	소요예산
70(1985)4. 4~5.24	병 원	언 청 이 수 술	20	6,599,920원
5.13~5.22	김제군 백구면	반 상 치 아 교 정	74	1,290,000원
71(1986)4. 7~5.15	병 원	언 청 이 수 술	4	1,000,000원
72(1987)5. 7~5.29	병 원	언 청 이 수 술	14	6,200,000원
7.28~7.31	충남, 강경, 부여지구	치 다 전 반	407	170,000원

2) 수련의 배출

연 도	군의요원	비군의요원	계	비 고
71(1986)		2	2	인턴:1) 수
72(1987)	6		6	레지던트:2) 료

4.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

가. 설립일 : 원기63년(1978) 9월1일

나. 설립목적

본원은 원광대학교의 설립재단인 원불교의 제생의세(濟生醫世) 정신에 입각하여 한의학(韓醫學)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수련병원으로써 지역사회의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우수한 의료 기술인력을 양성함은 물론 한방 고유의 인술에 바탕한 진료를 통하여 국민의료 복지와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연 혁

62(1977) 3. 15 이리시 중앙동1가 13번지 대지 378평 매입
62(1977) 6. 5 지하1층, 지상7층, 병원신축 착공
63(1978) 9. 1 병원 신축준공과 더불어 개원(의료원). 초대 병원장 김영만박사 취임. 초대 의료원장에 원광대총장 박광전(朴吉眞)교무 취임.
64(1979) 3. 23 제2대 병원장 박호식교수 취임
64(1979) 11. 23 제3대 병원장 오승환교수 취임
65(1980) 9. 15 제4대 병원장 박병렬교수 취임
67(1982) 4. 1 제5대 병원장 김경식교수 취임
67(1982) 9. 1 제6대 병원장 한상환교수 취임
69(1984) 7. 23 이리시 신용동 344-2 원광의료원 한방병원 신축건물로 이전 개원
70(1985) 3. 9 제7대 병원장 박병렬박사 취임

라. 조직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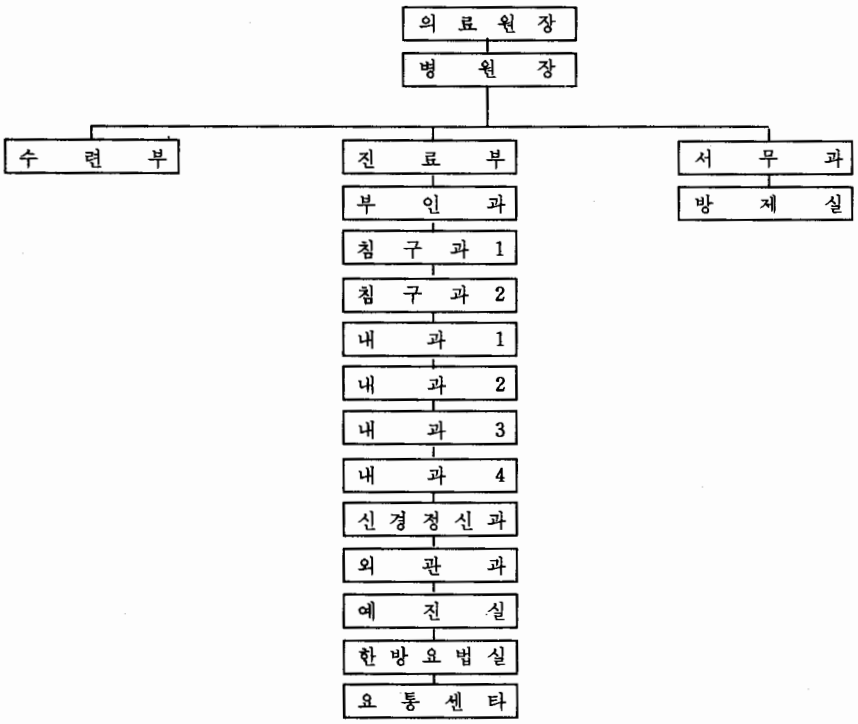

마. 현 황

1) 시설현황

• 건물 소 재 지 : 이리시 신용동 344－2

대 지 : 대학Campus(의료원 대지 13,232평 공용)

건 평 : 937평

건물구조 : 지상3층, 지하1층, 콘크리이트 라멘조

• 입원실현황 : 특실6실, 1인실 12실, 4인실 2실, 8인실 5실, 총 : 25실, 총병상수 : 66병상

2) 인원현황

구분 / 연도	한의사	수련의	간호사	간호보조원	영양사	물리치료사	치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사무직	총인원
63(1978)	6		6	10	1		3	1	1	20	48
64(1979)	6	1	5	6	1	2	3	2	2	13	41

65(1980)	4	4	1	9	1	1		2	2	21	45
66(1981)	4	4	2	8	1	1				17	37
67(1982)	6	1	2	8		2		1		18	38
68(1983)	5	2		7		2		1		17	34
69(1984)	5	2		7		2		1		17	34
70(1985)	9	1	3	9		3				18	43
71(1986)	10	2	4	10		3				21	50
72(1987)	11	4	11	5		3				27	61

3) 장비현황

〈주요장비〉

1. W. A형 전신치료기
2. Revive micro Radar(극초단파 치료기)
3. Ion 메추레스
4. Itolatpr 전자침
5. 카이르 프랙트 교정베드
6. 바브로프 야뇨증 치료기
7. 전기 온구기
8. 초음파 치료기
9. 맥진기
10. 맥파기
11. 양도락
12. 럭기
13. 자주파 치료기
14. 자외선 치료기
15. 스탠다튼 물리치료 3호기
16. 자동온도기
17. 맛사지기
18. 안마기
19. 동통탐지기
20. 적외선 치료기
21. 한방 컴퓨터 진료기
22. Tokki 침전극 펌프장치
23. 초단파 초음파 치료기
24. T. V monitor x-ray 촬영기
25. L. C. T(Thermography)

4) 자산현황(원기72년(1987) 2. 28 현재)

유 동 자 산 : 211,976,899원
투자및기타자산 : 10,000,000원
고 정 자 산 : 529,001,472원
자 산 통 계 : 750,978,371원

5) 연도별 예산 규모

• 70(1985)→ 431,361,000원 • 71(1986)→ 540,301,000원

• 72(1987)→ 786,445,000원

6) 환자 진료현황(단위 : 명)

연 도	입 원	외 래	1일 평균
70(1985)	6,484	19,097	입원 18, 외래 64
71(1986)	5,132	18,204	입원 14, 외래 61
72(1987)	7,683	18,717	입원 31, 외래 93

7) 수련의 배출 실적

연도	64(1979)	65(1980)	66(1981)	67(1982)	68(1983)	69(1984)	70(1985)	71(1986)	72(1987)
인원	1	4	4	1	2	2	1	2	2

바. 역대병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1	金 (永萬)	男	1926. 4. 28	63. 9. 1~64. 2. 28
2	朴 (鎬滉)	〃	1938. 9. 22	64. 3. 5~64. 8. 30
3	吳 (昇煥)	〃	1935. 1. 24	64. 11. 1~65. 2. 28
4	朴 仁 瑞(炳烈)	〃	1941. 12. 12	65. 9. 1~67. 2. 28
5	金 正 修(庚植)	〃	1943. 3. 29	67. 3. 1~67. 8. 30
6	韓 常 圓(相桓)	〃	1936. 12. 18	67. 9. 1~70. 2. 28
7	朴 仁 瑞(炳烈)	〃	1941. 12. 12	70. 3. 1~

사.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서 무 과 장	林 允 哲(海龍)	男	1935. 11. 15	63. 9. 1~64. 11. 30
의 무 과 장	韓 正 修(林洙)	〃	1936. 3. 5	63. 9. 1~64. 6. 30
관 리 과 장	李 增 元(建奉)	〃	1937. 10. 15	63. 9. 1~
서 무 과 장	朴 正 南(貞智)	女	1938. 7. 18	63. 9. 1~65. 3. 30
행 정 실 장	具 安 福(在奉)	男	1939. 11. 22	65. 3. 1~70. 4. 30
서 무 과 장	申 慧 權(海坤)	女	1943. 9. 15	65. 3. 1~
물리치료사	梁 圓 奎(連玉)	〃	1954. 4. 2	70. 4. 1~
행 정 부 장	尹 正 宇(錫俊)	男	1948. 2. 8	72. 3. 1~

아. 연도별 특별사업 및 활동

연도	사업 및 활동명	기간	주관처	목 적	대상인원	활동내용	비고·장소
63년 (1978)	지역사회의료봉사	12.4~ 1.31	한방병원	홍 보 (병원) 및 지역주민 의료봉사		침, 투약	병원에서
64년 (1979)	〃	5. 5 5. 12 5. 19	〃 〃 〃	〃	126명 150명 269명	침, 투약	익산 신석 김제 부용 함열 와리
65년 (1980)	대각개교절기념 무료진료	5. 6~ 6. 30	〃	〃		침, 투약 물리치료	병원에서
	개원2주년기념 무료진료	9.1~30	〃	〃		침, 투약 물리치료	〃
66년 (1981)	지역사회의료봉사	7. 15~30	〃	〃		침, 투약 물리치료	〃
67년 (1982)	개원4주년기념 무료진료	9. 1~30	〃	〃		침, 투약 물리치료	〃
68년 (1983)	대각개교절기념 무료진료	4. 24	〃	〃	157명	침, 투약 물리치료 (1,082,200원)	원불교 삼기교당
	〃	5. 15	〃	〃	327명	침, 투약 물리치료 (2,090,000원)	원불교 만경교당
69년 (1984)	〃	4. 22	〃	〃	350명	침, 투약 물리치료 (2,090,000원)	〃
	〃	5. 18	〃	〃	180명	침, 투약 (1,188,000원)	대야경로당
70년 (1985)	〃	4.8~22	〃	〃	1,286명	침, 투약 물리치료 (4,778,000원)	병원에서
	요통센타개설기념 무료진료	12. 16~ 30	〃	〃	1,123명	침, 투약 물리치료 (4,158,000원)	〃
71년 (1986)	대각개교절기념 무료진료	4. 25 5. 3	〃	〃	500명	침, 투약 물리치료 (1,836,660)	〃
72년 (1987)	〃	4. 26	〃	〃	200명	침, 투약 (1,836,660원)	원불교 서천교당
	〃	4. 30	〃	〃	250명	침, 투약 (1,364,750원)	원불교 임피교당
	수해지구무료진료	7.28~29	〃	〃	476명	침, 투약 (2,145,200원)	원불교 강경교당
	〃	7.30~31	〃	〃	405명	침, 투약) (2,279,400원)	부여석성국교 석성면사무소

5. 한의과대학 부속 광주한방병원

가. 설립일

원기61년(1976) 1월 5일

나. 설립목적

본원은 교육병원으로서 한의과대학의 학생 및 한방전문수련의의 교육과 환자의 진료 및 임상의학의 연구에 정진하며 심오한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완비된 최신 한방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여 한방 의료 사업을 통한 인류의 건강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연 혁

61(1976) 9. 대지 및 건물 매입. 전남 광주시 월산 2동 337번지 대지 301평, 건평 110평
61(1976) 12. 16 본교 한의과대학 부속 광주한방병원으로 개설인가
62(1977) 1. 5 개원식, 초대원장 박호식교수 취임
66(1981) 12. 14 광주시 서구 월산동 24－40번지, 대지 및 건물 매입 대지 250평, 건평 4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67(1982) 4. 27 이전개원

라. 조직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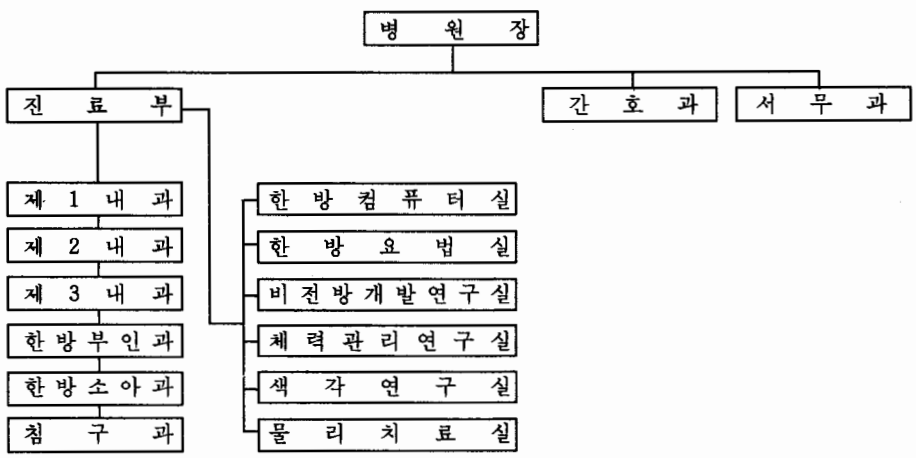

마. 현 황

1) 시설현황

① 건물 : 소재지 : 광주시 서구 월산 1동 24－40

대 지 : 250평

건 평 : 4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② 병실현황

1인실	25병실	25병상
2인실	1병실	2병상
6인실	1병실	6병상
계	27병실	33병상

③ 주요장비현황

번호	품 명	수량	금 액	구입년도	용 도
1	카본치료기	1대	1,010,000원	63(1978). 9. 1	치 료 용
2	Traction	1대	3,500,000원	66(1981). 2. 16	〃
3	Rolling bed	1대	1,650,000원	66(1981). 8. 3	〃
4	만능기	1대	4,500,000원	66(1981). 9. 25	〃
5	Auto spirometor	1대	7,730,000원	66(1981). 11. 10	진 찰 용
6	Cruiser	1대	5,610,000원	66(1981). 11. 10	치 료 용
7	양도락 컴퓨터 진찰기	1대	13,680,000원	67(1982). 4. 2	진 찰 용
8	초단파 치료기	1대	3,700,000원	68(1983). 12. 21	치 료 용
9	Topra	1대	3,000,000원	68(1983). 12. 21	〃
10	공기청정기	1대	440,000원	70(1985). 4. 13	공기정화용
11	고압소독기	1대	1,400,000원	70(1985). 9. 17	소 독 용
12	파라핀 베스	1대	350,000원	71(1986). 1. 31	치 료 용
13	고압압력 탕전기	1대	3,200,000원	71(1986). 4. 28	탕 전 용

2) 자산현황(1987. 2. 28 현재)

유 동 자 산 : 108,614,971원

투자와기타자산 : 85,614,971원

고 정 자 산 : 431,985,466원

자 산 계 : 626,215,408원

※ 부채 : 17,980,604원 ※ 자본 : 608,354,073원

3) 예산 규모

- 1985년도 : 911,568,161원
- 1986년도 : 769,541,000원
- 1987년도 : 959,734,000원
- 1988년도 : 1,462,516,000원

4) 인원현황

• 한 의 사	전 문 의 : 5명	8명	• 의료기사	물리치료사 : 2명	3명
	레지던트 : 3명			영 양 사 : 1명	
• 간 호 직	간 호 사 : 6명	10명	• 사 무 직	사 무 원 : 4명	4명
	간호조무사 : 4명		• 기 능 직	1명	1명
• 약 무 직	약품관리인 : 8명	8명	• 고 용 직	4명	4명
			합 계		38명

3) 환자 진료현황

연 도	입 원	외 래	계
66(1981)	490	36,091	36,581
67(1982)	1,448	42,423	43,871
68(1983)	2,300	42,996	45,296
69(1984)	2,064	30,528	32,592
70(1985)	2,033	36,194	38,227
71(1986)	2,181	35,652	37,833
72(1987)	4,320	39,925	44,245

바. 역대병원장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1	朴 (鎭湜)	男	1938. 9. 22	62. 1. 5~

사.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직기간
사 무 국 장	趙 誠 中(誠千)	男	1941. 8. 17	63. 8. 3~

아. 활동사항

1) 학술활동 및 포상현황

a)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체전선수 무료봉사 공로패(1980. 10. 18)
b) 전주문화방송사장으로부터 감사패(1981. 3. 27)
c) 교육사령관 소준열중장으로부터 감사패(1981. 2. 28)
d)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로감사패(1981. 6. 18)
e) 경남육상경기연맹회장으로부터 감사패(1981. 5. 30)
f) 본교 총장으로부터 공로패(1981. 5. 30)
g) 구례군수로부터 감사패(1981. 8. 13)
h)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감사패(1981. 10. 20)
i)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감사패(1982. 10. 30)
j)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감사패(1983. 10. 25)
k)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감사패(1984. 10. 25)
l) 대한한의사 협회장 공로패(1984. 12. 14)
m)전라남도지사로부터 감사패(1986. 7. 10)
n) 본교 총장(김삼룡)으로부터 공로패(1987. 5.)

2) 봉사활동

연도	기 간	진료장소	진료내용	진료인원	소요예산
68년	6. 1~10. 5	병 원	전남체전 선수치료	748	2,618,000
(1983)	7. 31~ 8. 2	신안군 임자면	한방내과, 소아과, 부인과, 침구과	8,000	9,028,000
69년	7. 1~10. 5	병 원	전남체전 선수치료	480	1,680,000
(1984)	7. 29~ 7. 31	흑산도, 홍도	한방내과, 소아과, 부인과, 침구과	713	13,000,000
70년	7. 30~ 8. 4	동도, 서도, 거문도	한방내과, 소아과, 부인과, 침구과	980	16,134,200
(1985)	7. 3~10. 5	전남체전 선수치료		965	3,542,500
71년	7. 26~ 7. 30	완도군 청산면	한방내과, 침구과, 소아과, 부인과	860	19,018,200
(1986)	6. 10~210. 5	전남체전 선수치료		643	2,215,000
72년	6. 4	무안군 해제면	한방내과, 침구과, 소아과, 부인과	540	1,849,410
(1987)	8. 10~ 8. 14	영광군 낙월도	한방내과, 침구과, 소아과, 부인과	830	13,534,000
	6. 10~10. 18	전남체전 선수치료		446	2,383,400

□ 韓醫 藥業

원불교는 초창기부터 濟生醫世의 서원하에 영육쌍전의 정신을 바탕으로 온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목적하는 의료 사업을 계획하였다. 그 일환으로 일제 치하에서도 교단의 三大 목표인 교화·교육·자선 사업을 후원하는 경제 기관을 창설하였는데 곧 한약의료원이다. 원기19년(1934)에 설립된 이리 합자회사 보화당약방이 교단의 최초 의료기관이었다. 보화당은 종교적 수행과 생활에 바탕하여 성실한 공신력을 가지고 自利利他의 商道 아래 지역사회와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여 온 지 54년이 되었다. 그래서 전국 한의업계는 물론 각지 각처에서 보화당의 상호를 알게 되었고, 약재의 상호 거래와 보화당을 찾는 환자의 수는 전국에서도 으뜸이었으며 도내에서는 지역 사회의 보건 향상으로 수차례 수상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중앙 총부 후원 사업에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 여세에 힘입어 이리 원광한의원(前 북일진료소), 서울보화당, 이리 역전보화당한의원, 전주보화당과 보화당제약사가 설립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부산보화당한의원, 대전보화당한의원, 대구원광한의원, 성남보화당한의원, 경동보화당한의원, 영등포보화당한의원, 군산원광한의원, 제주원광한의원, 부산원광한의원을 합하여 이리에 3, 서울에 2, 성남에 1, 전주에 1, 군산에 1, 대구에 1, 대전에 1, 부산에 2, 제주에 1 모두 14개의 한의원과 이리에 한개의 제약사를 운영하게 되어 명실공히 교단 경제의 한방의료 분야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5년 전에 정부에 누차 청원하여 한의과대학 설립을 인가받아 졸업생을 배출하여온 지 10년이 되었고 기타 국내 10개 한의과대학에서 수백명의 한의사를 배출함에 따라 오늘날 전국에 한방의료업이 도처에서 성행하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한방 진료를 원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정부의 한방의료 보건계획이 점차 국정에 반영되어 한방의료의 과학화 내지는 범세계적 의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시세에 병행하여 각 보화당의 사업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나 과거의 성장 속도에 비해 답보 상태에 머무는 감이 있으므로 보다 계획성 있는 발전의 도모가 요청된다.

현재 각 보화당에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침구 및 물리치료과를 전문진료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유치와 대민봉사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과거에 한약업사를 두고 약방을 운영하거나 관리 한의사를 두고 한의원을 경영하던 어려움을 덜고 지금은 6개의 보화당(이리보화당, 이리 역전보화당, 서울보화당, 부산보화당, 영등포보화당, 대구원광한의원)에서 교역자인 전무출신 한의사가 원장으로 취임하여 진료에 임하게 되었으며 더욱 진보된 의술 활용과 시대에 적응하는 과학적 치료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각 지역에서 명성있는 한의원으로 개진되고 있다. 보화당은 원불교 생산업체 약업기관으로 원광의료원과 더불어 교단 경제 발전에 중임을 다하고 있다.

1. 이리보화당한의원·보화당건재약방

가. 설 립

이리보화당은 「늘 정진 하자. 늘 쇄신 하자. 늘 봉사 하자」라는 당훈을 내걸고 靈肉雙全·理事並行·濟生醫世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며 종교수행과 회사 운영을 통해 원불교 인재양성, 경제기반 확립, 사회봉사에 목적을 두고 설립 되었다.

◆ 설립일자 : 원기19년(1934) 5월 20일

◆ 설립 유공인 : 李載喆, 李東安, 宋慧煥교무 3인이 발기인이었다.

◆ 설립 기금 : 당시 중앙총부 공익부 자본금 1만여원

◆ 설립 당시 주소 : 전라북도 이리시 본정 1정목(현재 이리시 인화동 1가 105)

◆ 명칭 : 합자회사 보화당약방

일제 치하에 설립된 합자회사 보화당약방은 당시 이리시 본정 1정목(현재 이리시 인화동 1가 105)에 자리하고 있던 治心堂 한약방을 매입하여 초대 대표로 이재철교무가 주무로 주재하다가 3개월 후에 李東安교무가 직접 감독으로 취임하여 한약업사 대리로 朴理碩을 두고 경영에 착수하였다. 李東安교무는 원기8년(1923)에 영광군 묘량면 신흥에서 출가하여 교단의 한약의료업을 계획하고 김제에 있는 서중안의 건재약방에서 몇 년간 한약에 대한 업무를 습득한 뒤 그의 포부와 역량을 발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역량이 탁월한 李東安교무는 박리다매(薄利多賣)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한약재를 품질이 훌륭한 약재로 정선하고 친절과 공신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였다. 그리고 약재의 상품을 구하기 위하여 전국의 우수한 대도시 약포마다 상호 거래하였고 한약의 母地인 중국에도 취인선을 두어 唐材를 직수입하였다. 당시는 아직 신의학(서양의학)이 들어 온 지 얼마되지 않았고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오던 한약(향약)이 민간의학의 전부나 다름 없었으므로 보화당의 활동성 있는 경영이 손쉽게 성장할 수 있었다. 李東安교무는 보화당을 창설한 지 5년만에(원기24년) 보화당 전무 이사직을 놓고 중앙총부 공익부장 겸 육영부장으로 다시 복직되고 이어 宋慧煥교무가 취임하여 만 17년간(원기24년~41년) 보화당을 반석의 토대 위에 오르게 하였다. 李東安교무는 보화당 창설의 직접 유공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출가 후 18년 동안 한결같이 회상의 창립에 다방면으로 공덕을 쌓아 少太山大宗師의 이동안교무에 대한 신임이 너무도 두터웠으며, 宋慧煥교무와 더불어 원불교 초창 사업분야에 뚜렷한 별들이었다. 보화당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명성이 도내는 물론 전국 각지에 알려져 약업과 건재 도매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였다. 중앙총부 기관 후원사업에 교단의 대들보 역할을 하였으며 원기35년(1950)에 북일진료소를, 원기49년(1964)에는 보화당 제약

사를 설립하고 원기59년(1974)에 서울보화당을, 원기57년(1972)에 보화당 역전한의원을 원기61년(1976)에 전주보화당을 설립하는데 중추적 후원을 하였다. 설립 초기 일제치하에 약포로 운영하던 양약은 해방 이후 보화당 양약국으로 개설 운영하다가 원기62년(1973)에 개인 임대로 내주었으나 재정난으로 곧 폐업하였다. 본 보화당 한약방은 3대 이사 송혜환교무가 보화당을 책임 운영하던 원기33년(1948)부터 보화당 근무를 시작한 張仁中교무가 한문에 능하고 두뇌가 명석하였으므로 근무시작 수년 후 의학 서적을 공부하고 진료방법을 익혀 곧 한의사의 대행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후 원기62년(1977)까지 30여년 이상 임상을 전담하여 4대이사 조희석교무가 한약업사 면허를 두고 보화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다가 원기62년(1977) 조희석교무의 열반과 더불어 한약업사 자격이 소멸되고 원기55년(1970)대 후반 이후 전국에 5개의 한의과대학이 신설되면서부터 국내에 한의원의 개설이 많아지자 정부의 보건사회부 행정이 강화되었다. 이에 보화당은 한약방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원기62년(1979)에 한의원으로 개설 신고하고 원기67년(1982)까지 6년간 관리 한의사를 두고 운영하던 중 원기68년(1983)에 김학종교무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연 혁

- 19(1934) 5. 이리시 인화동 1가 105번지의 치심당 약방매수 보화당 개설
  초대 대표 이재철교무가 주무로 주재
- 19(1934) 8. 2대 대표 이동안교무 감독에 취임
- 20(1935) 4. 인접가옥 1동 매수 확장(77평)
- 21(1936) 5. 약방일부 개수 지물포 병설
- 22(1937) 5. 야회를 개시하여 이리지부 모체 교당창설
- 23(1938) 5. 지물포 폐지 매약 청매 병설
- 24(1939) 5. 3대 대표 송혜환교무 이사에 취임
- 25(1940) 부여 구룡평야 농지 3만평 매수(원기35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
- 38(1953) 3. 성정철교무 부이사에 취임
- 42(1957) 3. 4대 이사에 조희석교무 취임
- 42(1957) 조준곡교무 부이사에 취임
- 44(1959) 이병은교무 부이사에 취임
- 46(1961) 양태설교무 부이사에 취임
- 47(1962) 이선우교무 부이사에 취임
- 48(1963) 이철행교무 부이사에 취임
- 48(1963) 6. 점포확장 및 경영체제 근대화 출납전표, 체제와 의자식 현대화
- 49(1964) 10. 보화당 제약사 병립, 보건사회부허가 제421호
- 50(1965) 5. 제약사 인접와가 1동 매수, 실험실 및 공장 확장 증축

• 51(1966) 6	이사실 및 양약부 일부 신축. 한·양약부 동일 점포화. 양약은 일제치하에 약포로 운영하다가 해방이후 약국으로 개칭 운영하였음.
• 52(1967) 6	식당 창고 및 방부창고 신축. 제약사 증축 보일러 확장
• 54(1969) 5	스레트 적벽돌창고 65평 신축
• 55(1970) 5	조희석교무 EXPO70 참관
• 55(1970) 6	서울보화당 개설(이철행교무 사장으로 겸임)
• 55(1970) 6	교화사업자금으로 서울보화당에 출자 500만원
• 55(1970) 9	숙지황 인삼제약 품목허가(267호). 2층 콘크리트 8평 건립 당크 보일러 건조실 완비
• 56(1971) 6	일본 대만에서 한약재 수입
• 56(1971) 8	제약사 독립 회계
• 56(1971) 10	점포 일부 개수 진찰실 확장
• 57(1972) 11	이리시 중앙동 3가 8번지에 역전지점 설립
• 59(1974) 5~8	제약사 기계확장 및 건조실 개수(약100만원)
• 59(1974) 9	법당 확장 개조
• 60(1975) 7	지점식당 매입 개축(14평7홉 200만원)
• 60(1975) 8	제약사 경옥고 탱크 확장공사
• 60(1975) 9	전주보화당 대지 153평 매입(2,300만원)
• 60(1975) 10	총부 교화사업회에 교화자금으로 450만원 희사
• 60(1975) 10.31	이철행교무 산업시찰 및 시장개척차 도일
• 61(1976) 3	전주시 다가동 1가 81의 1번지에 대지 98평
• 61(1976) 5.16	연건평 176평 2층건물 매입(3,800만원) 종전의 토요법회를 폐지하고 매주 일요일 오전 12시까지 폐문하고 정식 교무 주재하에 법회 시행
• 61(1976) 8.29	전주 보화당 개설 총자산액 8,000만원(건물비 및 시설비 5,000만원, 자본금 3,000만원)
• 61(1976) 8.30	전주보화당 총부 유지재단에 희사
• 62(1977) 4.11	총부 수위단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부이사 체제를 회장, 사장 체제로 전환하여 사장책임제로 변경, 조희석교무 회장으로 승인
• 62(1977) 4.28	윤산 김윤중교무 사장 취임

- 62(1977) 8 김윤중교무 대한한약조합이사에 선임
- 62(1977) 5 영업부(콘크리트 아스타일) 개조
- 62(1977) 6 창고장제도 신설하여 전상품 카드제실시 종전 후문 출입을 금지하고 점포로 출입 단일화
- 62(1977) 9 본점 양약부 개인에 임대
- 62(1977) 10 본점에 한의원 병설
- 63(1978) 1 회장 조희석교무 열반으로 보화당약방 한의원으로 전환
- 63(1978) 3 본점 지점제약사에 각기 전무제도를 신설하여 별도 경영체제로 운영
- 63(1978) 9 지점 점포예정 후보지 매입(대지 85평, 건평 140평 6,800만원)
- 63(1978) 9 김윤중교무 보화당 연합회장 피임
- 64(1979) 6 본점 건물 신축 기공
- 64(1979) 10 본점 건물 신축준공 준공식 거행 지하 1층, 지상 2층(연건평 140.85평) 공사비(4,200만원)
- 66(1981) 1 지점건물(현위치) 매입(대지 135평 건평 144평, 2억8천9백만원)
- 66(1981) 1 본점 제약사 부사장제도 신설
- 66(1981) 1 제약사 실험기구 및 기계시설 확장
- 67(1982) 10.16 초음파 진단기 구입(2,045만원)
- 67(1982) 11. 6 신용동 토지매입(논843평 2,400만원)
- 67(1982) 11.13 역전보화당 분리 독립(보조금 7,200만원) 이보원교무 사장 취임
- 68(1983) 8 의무실 확장(공사비 300만원). 건재약방 개설
- 69(1984) 10 제약사 경옥고·숙지황시설 개수(공사비 1,340만원)

〈확장 이전 및 신축〉

구 분	연월일	주 소	대지 (평)	건 물		시설 경비		
				용도	평	총액	기금	부채
점포·본건물 신축	64.10.20	이리시 인화동 1가 105	68	사무실 의무실 창 고	133.35	4,193 만원	자체 충당	없음

다.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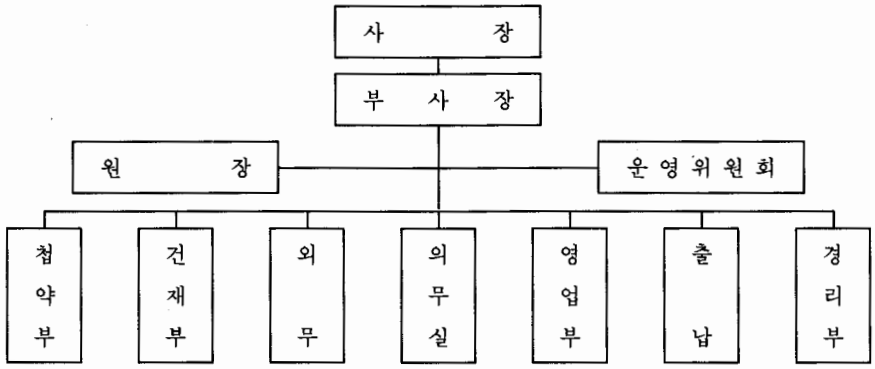

라. 운영 이념 및 지침

1. 원불교 일꾼다운 인재를 양성하는 도량 : 교리에 입각하여 商의 도를 실천하며 일하는 공부인 공부하는 일꾼을 양성하는 도량
2. 교단 3대의 사업목표를 뒷받침하는 도량 : 교단의 3대 목표인 교화 교육 자선사업을 뒷받침하는 경제요소를 증진하여 교단발전에 기여하는 도량
3. 영육쌍전의 실천도량 : 산업과 종교를 둘이 아니게 하며 수도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이사병행과 동정일여를 실천하는 도량
4. 사회봉사하는 도량 : 제생의세로서 봉사하여 인류동포의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도량

수 행 목 표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로 생활하는 수도인으로서 성불 제중코자 함.

영 육 쌍 전
이 사 병 행

당 훈

늘 정진하자
늘 쇄신하자
늘 봉사하자

운 영 지 표

재생의세의 서원하에 온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고 성실과 공신력으로 정당한 양식에 입각하여 교화 교육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단기간 생산업체로서 모범적 기업운영에 공헌코자 함

수행대요	임원명	운영요강
1. 자기 임무에 긍지를 가지되 집착심을 버린다.	1. 목표를 향해 정진하자. (탐구)	1. 부당한 이익을 배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향상한다.
2. 戒行에 淸淨하되 타를 이해한다.	2. 서로 기쁘도록 일하자. (융화)	2. 공인으로서 협조와 유기적 유대를 강화한다.
3. 생활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수시로 반성한다.	3. 작은 규율부터 지키자. (준규)	3. 사무계통을 자율적으로 확립한다.
4. 수도인으로서의 인격을 도야하고 대의 명분에 투철한다.	4. 일마다 다시 확인하자. (정확)	4. 계획성 있는 운영을 한다.
5. 동지를 이해하며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5. 말없이 일만하자. (무상)	5. 자기 임무에 충실하며 봉공정신을 망각하지 않는다.
6. 융화를 선행하며 매사에 정진한다.		6. 비판과 칭찬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마. 현 황

◇ 주소 : 이리시 인화동1가 105

◇ 명칭 : 보화당한의원 보화당건재도매

◇ 업종 : 한약의료업 및 한약건재도매업

◇ 대지 및 자산 : 대지 300평, 총자산 529,729,113원

동산(306,651,141원), 부동산(223,077,972원) 기타 부동산(논 : 900평, 밭 : 843평, 영산언답 : 120평)

〈건물〉

건물명	평	구조	건물명	평	구조
사무실·의무실	68.88	철근 콘크리트	창고	19.5	연와조 슬라브
사장실·창고	64.47	철근 콘크리트	건재창고 1	65.2	벽돌 스레트
법당	12	벽돌 슬라브	건재창고 2	14	벽돌 스레트
경리실	4	벽돌 슬라브	계	260.05평	
식당	12	목조			

〈직원 현황〉

	출가	재가	계	총계
남	5	9	14	17명
여	2	1	3	
내역	의사 2, 사장 1, 부사장 1, 교무 1, 기사 1, 사무 8, 식당 2			

바. 역대 이사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고
1	李 載 喆(載憑)	男	1891. 2. 11	19~30(1934~1945)	이 사
2	李 東 安(亨天)	〃	1892. 12. 23	19~23(1934~1938)	〃
3	宋 慧 煥(東煥)	〃	1905. 2. 12	24~41(1939~1956)	〃
4	趙 曙 錫(熙燮)	〃	1910. 11. 7	41~62(1956~1977)	〃
5	金 允 中(遵烈)	〃	1927. 12. 7	62~67(1977~1982)	사 장
6	李 普 圓(萬宰)	〃	1934. 9. 13	68~ (1983~)	〃

사.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고
순 교	朴 四 時 華	女	1867. 12. 18		
계 원	金 仁 龍(判 龍)	男	1923. 10. 6	26. 5~30. 4	
부 사 장	〃		〃	34. 5~37. 4	
서 기	李 恩 錫(俊 榮)	〃	1925. 1. 12		
서 기	李 炳 恩(炳 穆)	〃	1925. 4. 9	44.~45.	
감 원	安 慧 三 華	女	1895. 12. 7		
서 기	牟 相 俊(壽 童)	男	1923. 11. 27		
서 기	宋 成 讚(佐 翼)	〃	1929. 9. 8	~61. 8	
부 이 사	成 丁 哲(丁 鎬)	〃	1902. 11. 21	38. 3~41.	
부 이 사	趙 峻 谷(貴 同)	〃	1910. 12. 2	42.~43	
부 이 사	李 喆 行(喆 行)	〃	1928. 12. 12	48.~62.	
전 무	韓 正 洙(林 洙)	〃	1936. 3. 5	66. 3~67.	
부 사 장	〃	〃	〃	68. 3~72.	
주 임	李 增 元(建 奉)	〃	1936. 3. 22	38.~63.	
의 사 代	張 仁 中(萬 植)	〃	1927. 6. 12	33.~68.	
회 계	鄭 道 允(炳 允)	〃	1933. 5. 15	42.~46. 3, 49.~55.	
총 무	吳 海 仁(海 金)	〃	1932. 12. 2	42.~48	
총 무	柳 正 完(珍 玉)	〃	1931. 11. 29	44.~59.	
서 기	具 安 福(在 奉)	〃	1939. 11. 13	39.~45	

경 리	鄭 眞 明(映浚)	男	1940. 1. 20	44.3～48.8,52.3～58.9	
부 이 사	梁 泰 設(泰鎬)	〃	1924. 10. 16	45.～46.	
의 사 代	李 元 道(柄春)	〃	1911. 9. 4		
교무·출납	鄭 福 天(福順)	女	1926. 1. 13	48.～55.	
약 사	白 智 明	〃		52.～56.	
감 원	林 化 仁(妙任)	〃	1923. 2. 9	48.～	
주 임	趙 誠 中(誠千)	男	1941. 8. 17	62.～66.	
주 임	金 淵 聖(七星)	〃	1939. 1. 10	51.～62.	
경 리	鄭 敬 勳(達柱)	〃	1936. 12. 10	50.～60	
경 리	李 太 誠(大聖)	男	1943. 10. 15	52.～70.	
출 납	柳 玄 實(賢愛)	女	1942. 7. 26		
부 사 장	朴 大 成(星載)	男	1925. 2. 20	49.～67.	
약 사	金 慧 心(貞姬)	女	1946. 10. 19	48.～51.	
〃	金 一 誠(恩淑)	〃	1949. 10. 14	56. 7～64.	
교무·출납	朴 貞 南	女	1938. 7. 18		
〃	李 圓 明(仁淑)	〃	1950. 3. 10	64.～65.	
〃	徐 進 華(永子)	〃	1947. 2. 8	65.～68.	
〃	全 明 眞(貞順)	〃	1949. 8. 16	68. 1～70. 2.	
원 장	金 學 宗(鍾聲)	男	1956. 1. 13	68. 3～	
교무·출납	韓 濟 恩(貞恩)	女	1953. 6. 1	70. 2～72. 1	
〃	具 明 德(濟分)	〃	1950. 5. 14	72. 1～72. 11	
기 사	黃 釋 中(義權)	男	1957. 1. 19	69. 2～	
교무·출납	金 普 喆(淑子)	女	1953. 5. 22	72. 12～	

아. 연도별 사업 현황

연 도	총부 사업비	연 도	총부 사업비
58	8,422,700원	66	38,272,000원
59	8,555,160원	67	67,095,000원
60	13,459,730원	68	28,840,000원
61	15,203,560원	69	25,050,000원
62	28,282,920원	70	41,946,000원
63	31,193,350원	71	37,085,000원
64	35,542,103원	72	29,910,000원
65	46,545,000원		

자. 연도별 진료자 수

연 도	계(명)	남(명)	여(명)	누계(명)
61	12,500	5,090	7,410	12,500
62	13,000	4,500	8,500	25,500
63	13,500	7,000	6,500	39,000
64	10,000	2,900	7,100	49,000
65	9,500	4,300	5,200	58,500
66	9,250	4,550	4,700	67,750
67	9,400	4,600	4,800	77,150
68	8,500	4,300	4,200	85,650
69	9,600	5,080	4,520	95,250
70	10,100	3,900	6,200	105,350
71	9,910	5,000	4,910	115,260

2. 북일원광한의원

가. 설 립

원광한의원은 원불교의 제생의세·영육쌍전의 이념에 입각하여 일선 교화 선상에서 교화 활동을 하는 도중 건강상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자에게 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 설립일자 : 원기35년(1950) 4월

◆ 설립유공인 : ① 李東震華(중앙요양원 초대원장)
② 宋慧煥(요양원장겸 북일진료소 원장)
③ 宋圓徹(산업부장겸 동화병원 사장)
④ 邊衆船(원광대학교 부속원광한의원장·요양원장)
⑤ 吳曙圓(공익부산하 원광한의원사장)

◆ 설립 기금 내역 : 6,000만원(설립당시 금액 환산)

◆ 주소 : 전북 익산군 북일면 신리 311－2

◆ 명칭 : ① 중앙요양원(원기35년 4월) 개원
② 북일진료소(원기39년 8월) 개원
③ 동화병원(원기42년 10월) 개원

④ 원광대학교 한의대 부속 원광한의원(원기60년 5월)

⑤ (공익부 산하) 원광한의원(원기65년 4월)

◇ 업종 : 원불교 생산업체로써 한약의료업

◇ 설립 규모(설립 당시) : 대지 2,030평, 건물 3동 292평(연건평), 한의원 220평, 內舍 : 16평, 요양원 56평(현재無)

원불교는 8·15해방 뒤 원기35년(1950) 4월에 이리보화당의 자금으로 김제 모악산하의 과원을 인수하여 金山요양원(원장 : 李東震華)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는 요양기관 겸 자선병원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그 전초 작업이었다. 그러나 금산요양원은 설립된 지 3년만에 동 지역이 금산 수리조합(현 금평 저수지) 수몰지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부득불 원기38년(1953)중앙총부로 요양원을 옮기게 되었으며 이듬해 4월 중앙요양원을(원장 : 宋慧煥) 발족케 되었다. 원기40년(1955) 5월에는 중앙총부 근동 새말(新洞)에 중앙요양원舍를 신축하고 정부의 허가를 얻어 북일면 진료소를 병설하였다. 원기42년(1957) 동 장소에 진료소 사옥을 건축하고 10월에는 東華病院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이후 동화병원은 월 평균 7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한편 보건사회부와 교섭하여 폐결핵 요양소를 개설하였다. 원기44년(1959)에는 보건사회부의 지원으로 건평 220평(2층)의 결핵 요양 병동을 신축하고 전북도청 보건과의 후원으로 이리·익산·함열 등 각 지역을 순회하며 1만여 주민들의 결핵 감염 여부를 진료하고 중환자 100여명을 무료로 진료 치료하였다. 본 병원은 시외에 위치한 데다 영세민을 대상으로 주로 대민봉사에만 치중한 까닭에 운영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원기45년(1960) 9월 20일에는 시내 중앙동 1가 소재 2층 양옥으로 이전 개업까지 하였으나 비영리 자선 의료사업인지라 곧 재정난으로 폐쇄하고 말았다.

그후 10년 뒤, 원기55년(1970)대에 접어들면서 원불교 반백년 결실 성업을 다져 교정원 사업부(후에 공익부로 개칭)는 병원을 개수하고 전문의 2명을 확보(원장 : 조채기 외과의, 김양수 내과의), 극빈자 무료 치료, 불구자 복지사업, 정신환자 치료 및 수용, 원불교 교역자 무료 치료 등 의료봉사 기관으로 구 동화병원을 재정비 개업하였다. 그러나 종교 본래 정신에 입각하여 아무리 좋은 사업을 벌인다 하더라도 튼튼한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지속하기가 어려웠다. 개업 3년만에 다시 휴업하고 말았다. 그러나 원기57년(1972)초 원광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면서 한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누차 청원한 결과 지방 대학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한의과대학 설립 인가를 받아, 지역사회에 의료 혜택에 중점을 두고, 원기60년(1975) 10월 19일 그동안 휴원중인 동화병원에 부속병원을 개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광한의원이라 명칭하고 개원을 하여 초대 원장에 변중선 한의대 초대 학장이 원장으로 취임하여 운영해 오던 중, 원기65년(1980) 4월에 공익부 소속 원광한의원으로 이전되었다.

〈설립 당시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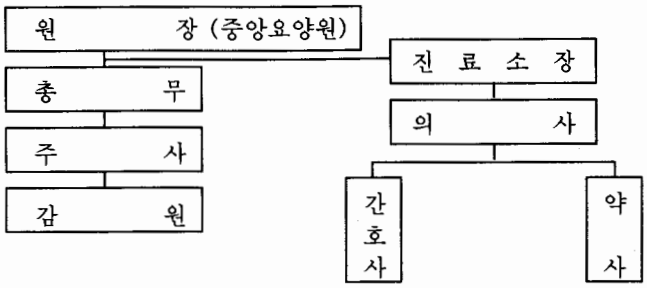

〈확장·신축〉

구 분	연 월 일	주 소	용 도	평	시 설 비
입원실개수	68. 4. 30	신동 311-2	입원용	9실	1,960,000
연탄창고증설	70. 3. 2	〃		6평	160,000
입원실1증설	72. 9. 28	〃		7평	1,180,000
차고신축	72. 4. 1	〃		10평	380,000

나.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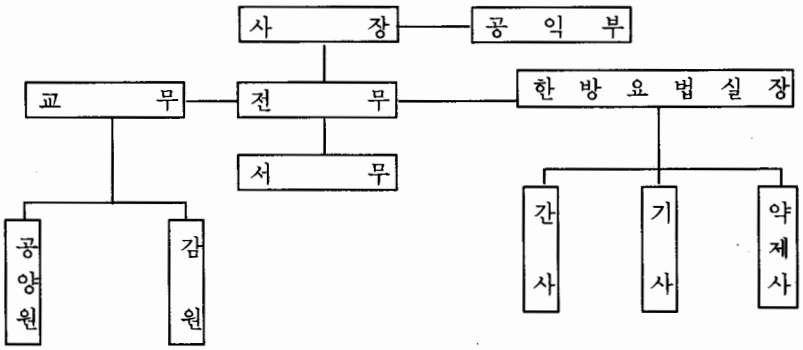

다. 현 황

자산내역 : 총 자산 143,122,367원

동산 49,842,367원, 부동산 1,654평(약93,280,000원)

〈건물(이리시 신동 311~2 대지 : 1,654평)〉

건 물 명	평	구 조
한 의 원	220	적연와조, 슬라브 2층
원 장 사 택	16	목조와가
창 고, 욕 실	10	시멘트 슬라브 단층
차 고	7	시멘트 블록 단층 스레트

〈임직원 현황〉

분류	의 사	사 장	사무원	감 원	약 제	기 사	간 사	계	男	女
인 원	1	1	2	2	1	1	1	9	6	3

라. 역대 원장

성 명	성별	재직기간	비 고	성 명	성별	재직기간	비 고
金鍾遠	男	38.~40.	북일진료소장	邊衆船	男	60.~61	원광한의대부속 원광한의원개원 초 대 원 장
金道一	〃	42.~43.	동 화 병 원 장				
金炳凋	〃	43.~44.	〃	金永萬	〃	61.~63.8	〃
安政善	〃	44.~45.	〃	孟雄在	〃	63.~63.9	원 장
蔡奎敏	〃	45~46.	〃	昇正于	〃	63.9~65.3. 65.4.~66.3	휴 업 공 익 부 산 하 원광한의원장
閔炳甲	〃	46.~47.	〃	金德宗	〃	66.3~68.3	〃
趙採記	〃	56.~58.	〃	張敬善	〃	68.3~69.3	〃
崔玄奎	〃	58.~59.	〃	方省心	〃	69.3~	〃

마. 역대 이사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李東震華	女	1894. 5. 5	35. 4~38	중앙요양원 초대이사
宋 慧 煥	男	1905. 2. 12	38~43	중앙요양원장
成 丁 哲	〃	1902. 11. 21	44.	북일진료소 동화병원
吳 曙 圓	女	1931. 12. 20	65. 4.~68. 4.	공익부장 겸임 원광한의원 이사장
張 仁 中	男	1927. 6. 12	68. 5.~	현중앙요양원 사장 겸임

바.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재임기간	비 고
사 장	李東震華(慶洙)	女	35. 4.~38.	중앙요양원 초대 사장
사 장	宋 慧 煥(東煥)	男	38.~43.	중앙요양원 2대 사장
총 무	宋 慈 明(敦任)	女	39.~44.	북일진료소 동화병원
이 사	成 丁 哲(丁鎬)	男	44	〃
주 사	朴 道 在	〃	39.~44.	〃
총 무	金 西 悟(書男)	〃	45	〃
서 무	鄭 敬 勳(達柱)	〃	〃	〃
총 무	李 喆 行(喆行)	〃	46	휴 업
병 원 장	趙 採 記	〃	56.~58. 2.	동화병원 재 개원
내 과 과 장	金 兌 秀	〃	56.~57.	
서 무 과 장	徐 三 省	〃	56.~58. 3.	
간 호 장	盧 聖 子(蓮順)	女	56.~58. 3.	
서 무 과 장	金 聲 振(春會)	男	58.~59. 2.	
교 무 간 호	金 玄 均(美今)	女	58.~59. 2.	병원 휴업
총 무	金 文 澤(文斗)	男	59.~59. 12.	
감 원	申 英 順	女	59.~69. 2.	
원 장	邊 衆 善(極)	男	60.~61. 2.	원광대학교 부속원광한의원 개원
물리치료실장	金 聲 振(春會)	〃	60.~61. 2.	
총 무	柳 聖 田(貞子)	女	60.~61. 2.	
물리치료기사겸서무	李 聖 奎(奎允)	男	60.~62. 2.	
감 원	李 明 倫(順男)	女	60.~67. 12.	한의원 휴업
총 무	李 道 蓮(玉姬)	〃	63.~65. 3.	
총 무	金 堯 明(明煥)	男	63.~65. 3.	
사 장	吳 曙 圓(男苗)	女	65. 4.~68. 4.	공익부장겸 사장(공익부 소속 원광한의원 개원)
전 무	金 春 澤(永澤)	男	65. 4.~	
교 무	金 慧 實(吉順)	女	65. 4.~66. 12.	
상 무	河 漢 善	男	66. 3.~67. 3.	
교무·출납	吳 仁 圓	女	66. 2.~69. 1.	
사 장	張 仁 中(萬植)	男	68. 5~	남자요양원 원장 겸임
교 무	李 修 眞(玉禾)	女	69. 32.~	
감 원	張 喜 順(三順)	〃	69. 10.	
감 원	高 玄 聖(榮禮)	〃	68. 8.~	

사. 배출된 교역자

번호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 천 인	비 고
1	安 民 順(泯淳)	女	1946. 9. 19	42.	55. 4	宋 慈 明	동화병원 근무
2	許 大 誠(玉基)	〃	1953. 10. 12	55. 5.10	57. 5. 1	吳 曛 圓	〃
3	安 勳(基)	男	1956. 2. 25	56. 7.19	61.12.30	朴 濟 權	원광한의원 근무

아. 연도별 진료자 수

연 도	계(명)	남(명)	여(명)	누계(명)
70	3,328	1,071	2,257	3,328
71	5,062	1,617	3,445	8,390
72	4,771	1,555	3,216	13,161

자. 연도별 의료 봉사 활동

구 분	일 시	진료숫자	진료 방법	장 소
한 방 무 료 진 료	65. 4. 13	34명	물리치료 침술 환약 투여	익 산 교 당
〃	65. 4. 20	13명	〃	신 용 교 당
〃	65. 4. 27	52명	〃	북 일 교 당
〃	65. 5. 4	101명	〃	동 이 리 교 당
〃	65. 5. 18	90명	〃	모 현 교 당
〃	65. 6. 29	15명	〃	정 토 회 교 당
〃	65. 7. 6	87명	〃	부 안 교 당
〃	65. 7. 20	161명	〃	황 등 교 당
〃	65. 7. 27	59명	〃	영 등 교 당
〃	65. 8. 3	26명	〃	변 산 교 당
〃	65. 9. 13	193명	〃	금 마 교 당
〃	66. 3. 22	119명	〃	본 원 진 료 실
〃	66. 4. 5	60명	〃	함 열 교 당
〃	66. 4. 12	133명	〃	팔 봉 교 당
〃	66. 4. 19	96명	〃	함 라 교 당
〃	66. 4. 26	106명	〃	황 등 교 당
〃	66. 5. 17	107명	〃	임 피 교 당
〃	66. 5. 24	132명	〃	용 신 교 당

한 방 무 료 진 료	67. 6. 13	187명	물리치료 침술 환약 투여	무 주 교 당
〃	68. 4. 26	105명	〃	본 원 진 료 실
〃	69. 5. 6	170명	〃	만성·초강교당
〃	70. 4. 14	130명	〃	금 마 교 당
〃	70. 4. 14	250명	〃	오 수 교 당
〃	70. 5. 12	70명	〃	고 부 교 당
〃	71. 4. 20	108명	〃	변 산 교 당
〃	72. 5. 3	200명	〃	승 부 교 당
계		2,804명		26개 교당

차. 연도별 특별 사업

연 도	금 액(원)	내 용	연 도	금 액(원)	내 용
69	7,200,000	공익부 법은 사업회 유지비	70	30,000,000	여자 요양원 신축 보조금
70	7,200,000	〃	71	10,000,000	〃
71	7,200,000	〃	72	10,000,000	〃
72	6,000,000	〃	70	200,000	자매결연 판교 교당 유지비
70	1,060,000	성업 봉찬 사업회	71	200,000	〃
71	2,000,000	〃	72	200,000	〃
72	1,500,000	〃			

3. 서울 보화당한의원

가. 설 립

서울 보화당한의원은 靈肉雙全·理事並行·濟生醫世의 이념하에 교단의 과제인 수도원 설립을 목적하고 보화당의 서울 진출을 토대로 교화사업의 활성화를 이루고 교단 산업체로써 수도원과 정남정녀 복지 대책 후원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설립 일자 : 원기55년(1970) 6월 30일

◆ 설립 유공인 : 중앙총부 교화사업회

◆ 설립 기금 : 총계 4,000만원, 현금 600만원, 부채 870만원, 부동산 2,530만원

내역 : 서울 수도원, 원불교 교화 사업회, 총부 육영 재단, 이리 보화당 한의원, 재무부, 공

익부에서 매월 공동 출자로 개설되었다. 초대 회장에 李共珠, 사장에 李喆行 이리보화당 부이사가 겸임. 원기59년(1974) 2월에 공동 투자액 원금을 환불하고 이익 배당금을 지불한 후 서울수도원 단독 운영체제로 개편하였다.

◆ 설립 규모 : 대지 55평 건물 2동 44평(연건평)

나. 연 혁

55(1970). 6.28~30	원불교 서울 수도원, 원불교 교화 재단 원불교 육영재단, 이리보화당, 원불교 재무부, 원불교 공익부 등의 공동 출자로 보화당 약방 개설, 초대 회장 李共珠교무, 사장에 李喆行교무 부임. 봉불 봉고 개원식
56(1971).11.	점포 개수 진료실 병설
59(1974). 2.	공동 투자액 원금 환불과 이익 배당금 지급, 수도원 단독 운영 체제로 개편
60(1975). 7.	학교법인 원광학원으로 등록
62(1977). 7.30~9.20	점포 확장, 2층 증축
64(1979). 5.	제분소 설치 임대 운영
64(1979). 5.	점포 개수 확장 전면 수리
65(1980). 5.28	성남 보화당 분원 개설
66(1981). 4.	대각개교절 기념 무료 의료봉사
66(1981).12.	3층 창고 증축
67(1982). 4.	대각개교절 기념 무료 의료봉사
68(1983).11.	세면장 개수 식당 수리
69(1984).	성남 보화당 독립 체제 운영
69(1984).	사장 李共珠교무 사장 부임(회장에서 사장으로 개편)
72(1987). 2.	제1회 직원 자체 훈련 실시
72(1987). 8.	하계 특별공부(명심보감), 전직원 일동
72(1987).	보은성금보내기 운동 성업봉찬 사업회 585,000원, 교서보내기 100,000원, 수재의연금 100,000원

다. 운영이념 및 지침

• 濟生醫世의 원불교 개교 이념에 입각한 산업기관이므로 그 실현을 위하여 산업 교화 도량으로 가꾸어 그 사명을 다한다.

• 일상 생활 속에서 교리를 활용하는 수행인으로 진리적 신앙과 훈련으로 소임에 정성을 다한다.

• 사회 보건을 위한 의약업의 본지를 다 하기 위하여 상도의를 갖추어 충실히 봉사한다.

• 교단의 산업체로서 교단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 함과 동시에 교단 발전에 응분의 합력으로 일익을 담당 수행한다.

• 언제나 찾아 주는 고객의 건강을 위하여 축원을 올리며 정성껏 봉사한다.

• 믿을 수 있는 약재, 깨끗한 품질, 본방에 따라 정교히 법제된 약품으로 공급한다.

• 자리이타의 정신 아래 가격을 조절하며 염가로 제공한다.

라.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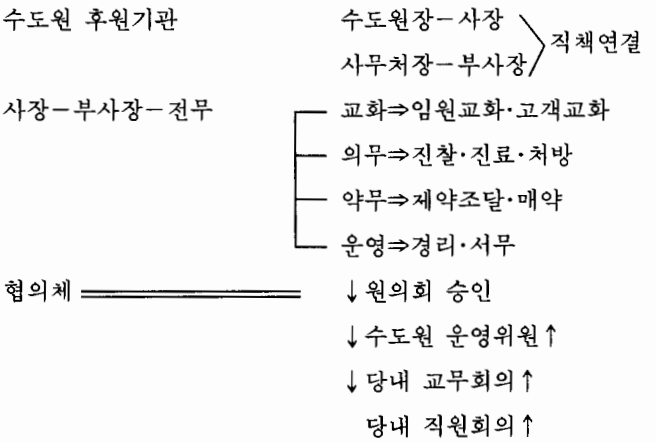

마. 현 황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33~1

◆ 명칭 : 서울보화당 한의원

◆ 업종 : 원불교 생산 업체로써 한약 의료법

◆ 현자산 : 4억7천만원(동산 7천만원, 부동산 4억원(55평))

◆ 임직원 현황 : 의사 1명, 사무직 11명, 총원 12명(남 : 8명, 여 : 4명)

〈확장·신축〉

구 분	연 월 일	주 소	건 물	평	경 비
증 축	62.7.30~9.20	종로5가 33-1	점 포	20	(점포·숙소 合) 1,200만원
〃	〃	〃	숙소 2층	20	
〃	66. 12.	〃	창 고	45	900만원

〈건 물〉

건 물 명	평	구 조
1층 점포	50	콘크리트
2층 숙소	20	〃
3층 창고	45	〃

바. 역대 원장

법 명(호적명)	성 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朴 仁 瑞(炳烈)	男	1941. 12. 12	55~64	관리한의사
姜 仁 峻(문석)	〃	1943. 3. 27	64~68	〃
李 圭 煥	〃	1935. 5. 19	68~71	〃
孫 興 道(仁喆)	〃	1949. 7. 22	71~	출가교역자

사. 역대 재직교역자 명단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회 장	李 共 珠(慶子)	女	1897. 12. 23	65~69.12.14	
사 장	〃	〃	〃	69. 12. 15	회장제에서 사장으로개편
〃	李 喆 行(喆行)	男	1928. 12. 12	55~61	
전 무	丁 道 允(炳允)	〃	1933. 5. 15	55~61	
상 무	朴 圓 根(寬植)	〃	1936. 4. 29	55~56	
전 무	〃	〃	〃	61. 3.~68.	전무로 재임
부 사 장	〃	〃	〃	68.~	부사장 승진
교 무	朴 道 完(玉基)	女	1937. 2. 23	55~68	
교 무	鄭 眞 明(暎浚)	男	1941. 2. 12	57~61	
부 사 장	李 百 徹(致炯)	〃	1927. 4. 9	60~63	
사 장	〃	〃	〃	61.	사장으로 승진
교 무	金 柔 賢(貞任)	女	1949. 4. 28	62~65	성남보화당으로 전임
상 무	吳 光 益(碩主)	男	1947. 12. 29	63~66	
의 사	孫 興 道(仁喆)	〃	1949. 7.22	65~5. 28	성남보화당으로 전임
원 장	〃	〃	〃	71~	원장으로 재임

부 사 장	吳聖洙(聖培)	男	1934. 11. 20	68.	
교 무	朴賢一(玄順)	女	1929. 5. 2	68~69	
전 무	李中天(仲烈)	男	1946. 3. 10	69.	
수석부사장	田宗哲(淳和)	女	1934. 10. 25	69~	수도원사무처장 겸임
교 무	崔素願(順禮)	〃	1948. 1. 6	70~72	2월 이임
교 무	崔善局(善禮)	〃	1949. 6. 21	72~	동순천교무에서

아. 연도별 진료자 수

연 도	계	남	여	누 계
70	4,730	1,576	3,154	4,730
71	6,124	2,041	4,083	10,854
72	7,632	2,544	5,088	18,486

4. 보화당 역전한의원

가. 설 립

보화당 역전 한의원은 재생의세의 서원하에 원불교의 四大奉公會 사업 기관으로써 질병과 빈곤·무지·재해 퇴치에 목적을 두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있으며, 이리 보화당의 자매 기관으로 영육쌍전, 이사병행의 정신을 산업 생활에서 직접 수행하여 원불교의 인재양성 및 경제 기반 확립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이리보화당(구시장 소재)은 이리시의 팽창에 따라 설립 당시와는 달리 지역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내의 중앙으로 진출하여 지역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리시 중앙동에 보화당 지점을 개설할 것을 결의하고, 원기57년(1972) 11월 1일에 이리시 중앙동 3가 8에 소재하고 있는 이리상공회의소 1층을 월세로 빌려 보화당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원기60년(1975) 3월에는 인접가옥 1동을 매입하여 식당으로 개수하였다. 초대 이사에 보화당 조희석교무 부이사에 이철행교무가 겸임하여 운영하여 오던중 원기62년(1977) 4월 28일 사장에 金允中교무가 취임하고 원기65년(1980) 2월에 원장으로 한의사인 김상익교무가 부임하였다. 원기63년(1978) 12월에 이리시 창인동 소재 대지 85평(건평 140평)을 점포 예정 후보지로 선정하여 6,800만원에 매입하였다. 원기66년(1981) 1월에 당시 임대로 사용중인 상공회의소 1층과 2층 건물(대지 135평, 건평 144평)을 2억7천만원에 매입한 후 보화당 역전한의원·보화당약국을 운영하였다. 기금은 이리보화당에서 50%, 역전보화당에서 50%를 부담하고 전북은행 부채 2억원을 매월 적금으로 분납하였으며, 원기68년(1983)

1월에 사대봉공회 소속 역전한의원으로 독립 운영하기로 중앙총부 원의회에서 결의되었고 동년 3월에는 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설립 당시 양약국도 동설하여 운영하였으나 운영난과 약사회측의 관리 약사 면허 대여 반대로 개업 15년 만인 원기72년(1987) 7월 31일에 폐업하고 보화당한의원만 경영하고 있다.

나. 연 혁

- 57(1972) 11 : 이리시 중앙동 3가 8의 이리 상공회의소 건물 1층을 임대로 역전보화당 한의원 개설
- 60(1975) 3 : 인접 가옥을 1동 매입하여 식당으로 개축함.
- 62(1977) 4 : 金允中(환열)교무가 사장으로 부임.
- 63(1978) 12 : 점포 예정 후보지로 이리시 창인동 소재 대지 85평, 건평 140평 매입.
- 66(1981) 1 : 역전 보화당 한의원 점포(현 점포지 : 이리시 중앙동 3가 8) 대지 135평, 건평 144평 매입
- 68(1983) 1 : 본원을 사대봉공회 소속으로 편입.
- 68(1983) 3 : 재단 법인 원불교 보화당 역전 한의원에서 학교 법인 원광학원 보화당 역전 한의원으로 전환.

다.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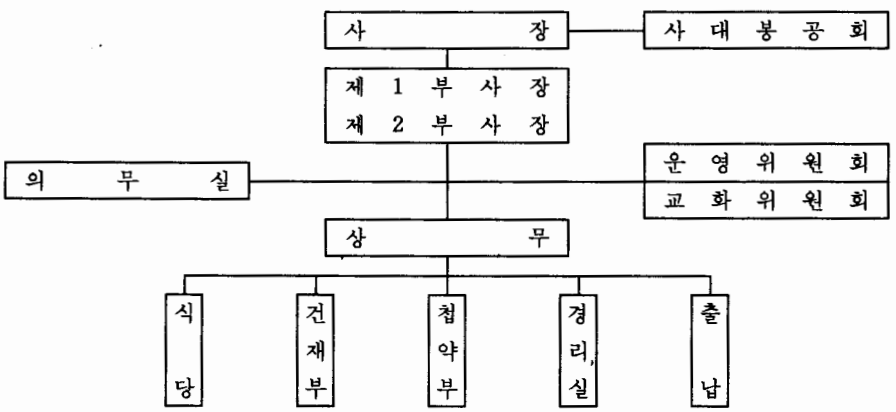

라. 현 황

◆ 주소 : 이리시 중앙동 3가 8
◆ 명칭 : 보화당 역전한의원

◆ 업종 : 한약의료업

◆ 자산 : 대지 296평, 건물5동(연건평 328.62평), 기타부동산 3억원(현싯가)

〈건 물〉

건물명	평	구 조	건물명	평	구 조
점 포	47.1	철근콘크리트	점 포	70	철근콘크리트
창 고	47.1	〃	〃	70	〃
창 고	50	목조와가집	의사사택	34	스라브집
식 당	20평4홉	목조스라브집			

〈임직원 현황〉

분류	사 장	부사장	의 사	사 무	남	여	계
수(명)	1	1	2	9	11	2	13

마. 역대 이사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趙 曠 錫(熙燮)	男	1910. 11. 7	57. 11. 1~62.	이 사
2	金 允 中(遵烈)	〃	1927. 12. 7	62. 4~72. 10. 30	사 장
3	鄭 敬 勳(達柱)	〃	1936. 12. 10	72. 11.~	사 장

바.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이 사	趙 曠 錫	男	1910. 11. 7	57. 11~62.(열반)
부 이 사	李 喆 行	〃	1928. 12. 12	57. 11~62. 3.
전 무	丁 道 允	〃	1933. 5. 15	57.~58.
의 사 代	李 元 道	〃	1911. 9. 4	57.
교무·출납	朴 公 圓	女	1943. 3. 21	
사 장	金 允 中	男	1927. 12. 7	62. 3. 31~
부 사 장	鄭 敬 勳	〃	1936. 12. 10	50. 12. 5~
원 장	金 詳 益	〃	1944. 6. 3	65. 2. 1~
상 무	李 中 天	〃	1948. 3. 10	64. 10. 1~68.
교무·출납	文 仁 眞	女	1944. 10. 14	62.~64.
〃	徐 進 華	〃	1948. 2. 15	
〃	李 圓 明	〃	1950. 3. 10	64.~69.
상 무	金 道 榮	男	1956. 2. 24	69. 1.10~
교무·출납	洪 理 仁	女	1947. 2. 15	70. 2. 4~72. 2. 1
〃	李 眞 道	〃	1946. 3. 17	72. 2. 1~

사. 연도별 진료자 수

(단위 : 명)

연 도	계	男	女	누계	연 도	계	男	女	누 계
68	11,520	2,600	8,920	11,520	71	11,500	3,600	7,900	45,720
69	10,500	1,640	8,860	22,020	72	8,100	1,400	6,700	53,820
70	12,200	3,100	9,100	34,220					

아. 연도별 특별 사업 및 활동

연 도	사 업 내 용	금 액(원)	년 도	사 업 내 용	금 액(원)
68	교 금	37,900,000	71	교 금	48,962,000
69	〃	31,858,400	72	〃	38,096,000
70	〃	49,060,000			

5. 부산 보화당한의원

가. 설 립

원기59년(1974) 3월 29일에 원불교 육영재단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재개발 후원기관으로 부산에 보화당한의원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고 동년 4월 9일 제15회 원의회에서 원불교 교육부 주축으로 교화·교육·자선의 3대 목표를 후원하는 사업기관으로 보화당한의원 개설을 승인하였다. 교육부 산하 부산보화당한의원은 설립 당시 원불교 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한 부산시 한의사협의회가 보화당 개설에 완강히 반대하여 개설이 불가하게 되었다. 중앙총부에서는 임원직을 철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임원진의 끈질긴 노력으로 3개월동안 한의사협의회의 이해 작업에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부득이 직원 숙소인 內舍에 한의원을 개설하고 현 점포는 양약국을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한의사협회측의 철회 요구로 6개월 만에 약국을 폐업 하고, 한의원을 이전 개업하였다. 초대사장에 朴濟現 당시 육영부장(당연직), 실무 부사장에 柳正完교무가 취임하고 초대원장에 方省心원장이 한의사로 개원 후 10년간(원기59~68년) 재임 하였다. 이후 方원장의 퇴임 후 4년간 관리 한의사를 두고 운영하다가 원기71년(1986) 11월에 宋道平교무가 원장으로 취임하여 진료에 임하고 있다.

◆ 설립 일자 : 원기59년(1974) 7월 28일

◆ 설립 기금 내역 : 총 9,000,000원(교육부 출자금)

◆ 주소 : 부산 동구 초량 2동 1207－5의 임대 전포

◆ 명칭 : 보화당 한의원

◆ 업종 : 원불교 생산 업체로써 한방 의료업

◆ 설립 규모 : 대지 14평, 건물 1동(14평)

◆ 당시 임직원 : 의사 1명, 약사 1명, 사무직 5명

〈설립 당시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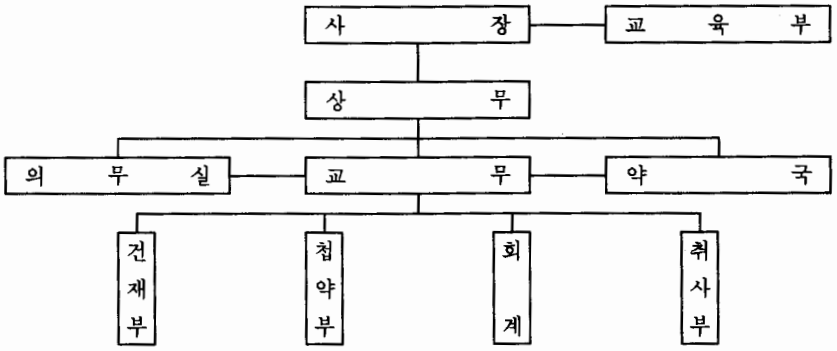

〈확 장〉

구분	연 도	주 소	대지	건 물		시설경비		
				용도	평	총액	기금	부채
매입	62	부산동구초량2동 1207~6	17	주택	93	3,500萬	1,000萬	2,500萬
〃	62	부산동구초량2동 1207~5	14	점포	36	1,600萬		1,600萬

나.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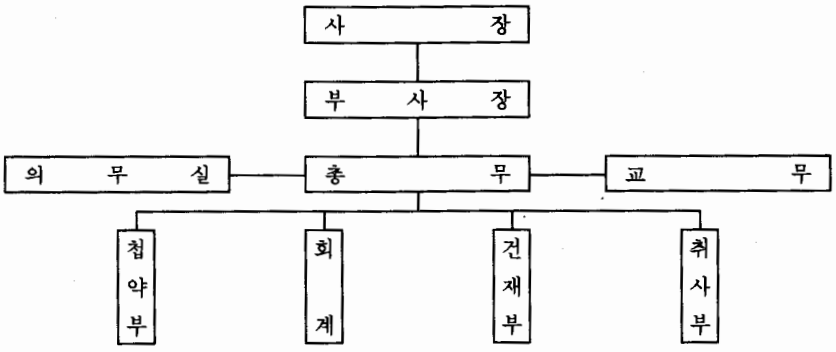

다. 현 황

1) 주소 : 부산 직할시 동구 초량 2동 1207~5, 6번지

2) 대지 : 31평, 건물 : 129평(한의원 : 129평) : 콘크리트 93평, 목조 36평

3) 자산내역 : 137,557,345원(총자산), 동산 : 56,057,345원, 부동산 : 81,500,000원

4) 임직원 수

구분	의사	사무직	남	여	계(명)
수	1	8	4	5	9

라. 역대 이사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朴 濟 現(英姬)	女	1931. 2. 24	59. 7. 28~70. 12. 30	당연직사장
2	柳 正 完(珍玉)	男	1931. 11. 29	59. 7. 28~72. 11.	부 사 장
3	金 復 煥(復煥)	女	1938. 12. 10	71. 1. 1~	당연직사장

마. 역대 재직 교역자 명단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사 장	朴 濟 現(英姬)	女	1932. 2. 24	59. 7. 28~70. 12. 30
〃	金 復 煥(復煥)	〃	1938. 12. 10	71. 1. 1~
부 사 장	柳 正 完(珍玉)	男	1931. 11. 29	59. 7. 28~72. 11.
교 무	李 明 仁(錦熙)	女	1938. 9. 20	59. 7. 28~62. 5. 5
〃	吳 信 聖(信聖)	〃	1942. 6. 25	62. 5. 5~
〃	朴 恩 心(禧玉)	〃	1957. 4. 27	69. 1 . 15~
감 원	柳 寬 眞(玉今)	〃	1916. 3. 24	59. 7. 28~66. 12. 30
서 무	朴 仁 道(基云)	男	1946. 3. 27	64. 8. 10~67. 12. 30
원 장	宋 道 平(正方)	〃	1955. 10. 20	71. 11. 2~

바. 배출된 전무출신

번 호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추 천 인	비 고
1	安 圓 珠(珠洙)	男	1956. 3. 29	柳 正 完	봉 공 직
2	成 智 眼(錫奎)	〃	1940. 4. 8	〃	〃
3	李 聖 心(全玉)	女	1967. 11. 22	〃	

사. 연도별 진료자 수

연 도	계	男	女	누 계	년 도	계	男	女	누 계
60	1,130	270	860	1,130	67	980	230	750	9,830
61	1,250	310	940	2,380	68	870	210	660	10,700
62	1,190	290	900	3,570	69	830	210	620	11,530
63	1,460	470	990	5,030	70	810	180	630	12,340
64	1,320	410	910	6,350	71	960	230	730	13,300
65	1,280	380	900	7,630	72	1,030	280	750	14,330
66	1,220	340	880	8,850					

아. 연도별 의료 봉사 활동 및 특별 사업

연도	사업 및 활동	기간	주관처	목 적	대상	내 용
60~72	부산마산교구 각교당순회진료	법회일	본 원	교화보조및 봉 사	전교도	의 료 (침구시술 환약투여)
〃	무의촌진료	년2회	한의협회	의료봉사	주 민	〃
〃	경노당진료	년4회	보건소	〃	경노대상	〃
〃	부산달동네진료	년1회	부산교구	〃	주 민	〃
〃	부산시청소부 무료진료	수 시	본 원	〃	청소부	침·뜸
〃	개설 13년 동안 1억1천만원을 교육사업(육영)비로 지급함. 四大봉공회, 서울회관, 제주훈련원, 성업봉찬사업, 기타 각 사업 보조금으로 5천5백여만원이 후원됨.					

6. 대전 보화당 한의원

가. 설 립

원불교의 3대 목표인 교화·교육·자선의 3대 목표 중 원불교 교화사업을 후원할 수 있는 경제기관 설립을 목적하고 중앙총부 교화부는 당시 군산교당 오철환 교화사업회 회장의 협력으로 설립기금 3천만원을 마련 원기60년(1975) 12월 3일에 대전시 동구 정동 27－4에 있는 단층 초가집을 매입(대지 61평) 대전보화당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초대 사장(당연직)에 교화부장 이광정 교무가 취임하고, 실무에 한정수교무가 부임하여 한의원을 경영한 지 만 3년만에 대전보화당은 전기 누전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밤사이에 보화당 전체를 완전히 소각시켜 버렸다.

일시에 모든 자재·한약 등을 잃어버린 직원은 곧 중앙총부에 화재사건을 신고하고 사후 처리를 논의한바 당시 교화부장 박정훈교무의 주선으로 복구사업을 전개하였다. 전국의 각 교당과 각 기관의 좌우 협력으로 3천만원 상당의 기금을 확충하여 화재발생 제자리에 4층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였다. 본원의 1층만 한의원으로 사용하고 지하는 다방으로 2층은 병원으로 3층은 교구사무소로 세를 내주고 4층은 생활관으로 사용하여 왔다. 개업당시 한의원 개설과 동시에 양약국도 함께 운영하였으나 운영난으로 원기62년(1977) 10월에 폐업하였다. 그동안 직원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활력을 되찾고 1,200만원에 상당하는 부채를 청산하였으며 지금은 교화사업회 후원기관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

◆ 설립 일자 : 원기60년(1975) 12월 3일
◆ 설립 기금 : 총액 3천만원
내역 : 건물 및 토지 매입비 : 2,400만원, 수리비 : 300만원, 운영자금 : 300만원
◆ 주소 : 대전시 동구 정동 27-4
◆ 명칭 : 대전보화당 한의원
◆ 업종 : 한약 의료업
◆ 설립 규모 : 대지 61평, 건물 1동(초가 : 약30평)
◆ 당시 임직원 수 : 총 7명(의사 1, 약사 1, 사무 5)

〈설립 당시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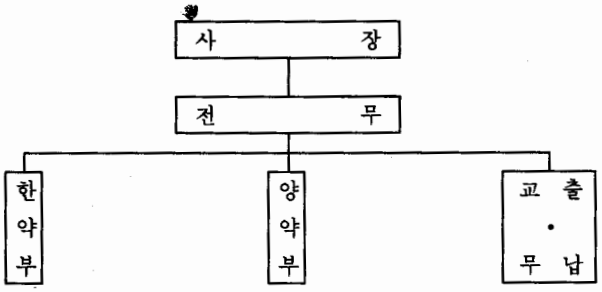

나.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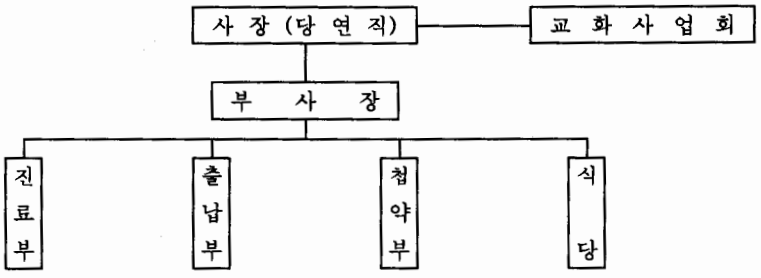

다. 현 황

◆ 주소 : 대전시 동구 정동 27－4

◆ 일시 : 원기63년(1978) 12월 12일

◆ 건물 : 대지 61평. 4층 콘크리트골조(212평)

◆ 자산 내력 : 총자산 155,168,730원, 동산 47,196,210원, 부동산 107,972,520원

〈건 물〉

건 물	용 도	평	비 고
지 하	다 방	42평	전세로 빌려 줌
1 층	한 의 원	47평	본원 사용
2 층	병 원	〃	전세로 빌려 줌
3 층	사 무 소	〃	전세(대전교구사무소)로 빌려 줌
4 층	생 활 관	29평	직원 생활관

〈직원 현황〉(총 5명 : 남 3, 여 2)

구 분	의 사	전 무	제 약	출 납	식 당	계
수	1	1	1	1	1	5

라. 역대 사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李 廣 淨(建衡)	男	1936. 9. 1	60. 12. 3～62. 4. 18	당 연 직
2	朴 正 薰(鍾煥)	〃	1934. 7. 21	62. 4. 18～68. 3. 1	〃
3	金 理 玄(玉禮)	女	1930. 8. 28	68. 3. 1～	〃

마. 역대 재직 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직 기 간	비고
사 장	李 廣 淨(建衡)	男	1936. 9. 1	60. 12. 3～62. 4. 18	
전 무	韓 正 洙(林洙)	〃	1936. 3. 5	60. 12. 3～62. 2. 10	
〃	李 泰 聖(大聖)	〃	1943. 10. 15	61. 4. 1～72. 11.	
교 무	李 宗 淑(鍾煥)	女	1941. 3. 8	61. 4. 20～66. 3. 7	
사 장	朴 正 薰(鍾煥)	男	1934. 7. 21	62. 4. 18～68. 3. 1	
교 무	徐 明 善(明仙)	女	1954. 12. 2	66. 3. 1～70. 2. 30	
사 장	金 理 玄(玉禮)	〃	1930. 8. 28	68. 3. 1～70. 2. 30	
부 사 장	韓 正 洙(林洙)	男	1936. 3. 5	68. 3. 1～	
교 무	朴 良 根(鎰洙)	〃	1958. 3. 9	72. 11.～	

바. 연도별 진료자 수

연 도	계	남	여	누 계	연 도	계	남	여	누 계
67	349	163	186	349	71	1,610	676	934	6,130
68	1,328	558	770	1,677	72	1,127	471	656	7,257
69	1,292	546	746	2,969	누 계		3,065	4,192	7,257
70	1,551	651	900	4,520					

사. 연도별 의료 봉사 활동

연 월 일	장 소	목 적	방 법	진료자 수(명)
67. 6. 20	유 성 교 당	교화보조 및 의료봉사	침구 및 물리치료, 환약 투여	122
67. 7. 17	신 도 교 당	〃	〃	139
67. 8. 18	추 부 교 당	〃	〃	161
67. 9. 15	도 곡 교 당	〃	〃	117
67. 10. 19	신탄진교당	〃	〃	169
67. 11. 21	신 도 교 당	〃	〃	66
68. 4. 17	추 부 교 당	〃	〃	56
68. 5. 15	무 주 교 당	〃	〃	235
68. 7. 17	금 산 교 당	〃	〃	293
69. 5. 20	제 원 교 당	〃	〃	105
70. 5. 12	영 동 교 당	〃	〃	121
71.4.19~4.30	본 원	〃	〃	172
71. 5. 25	영 동 교 당	〃	〃	110
72.5.20~5.30	본 원	〃	〃	111

7. 전주보화당한의원, 보화당 건재 도매

가. 설 립

전주 보화당한의원은 원불교의 기본 정신인 濟生醫世와 靈肉雙全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하며, 내적으로는 교단의 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여 교단의 목표인 교화·교육·자선 사업에 기여 함에 목적을 두고, 이리 보화당에서 서울보화당, 역전보화당을 개설한 뒤 전북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에도 보화당의 개설을 필요로 하였다. 이리보화당은 이사 趙曛錫교무와 부이사 李喆行교무의 주재 아래 간부 임원들의 결의로 원기60년(1975) 9월에 전주보화당 대지 153평을 2,300만원에 매입하고, 원기61년(1976) 3월에 다시 대지 98평을 매입하였으며, 동년 5월16일에 연건평 176평의 2층 건물을 3,800만원에 매입 하였다. 그 후 3개월 후 8월 30일에 전주시 다가동 1가 81－1에 보화당을 개설하였다. 전주보화당은 개설 후 곧 바로 총부 유지 재단으로 편입 시키고 李喆行 교무가 사장으로 부임 관리 한의사를 두고 한의원을 운영하여 왔다.

◆ 설립 일자 : 원기61년(1976) 8월 30일

◆ 설립 유공인 : 趙曛錫, 李喆行, 宋成贊, 趙喜悅, 朴大成, 鄭敬勳, 韓正洙, 金淵誠

◆ 주소 : 전주시 다가동 1가 81－1

◆ 명칭 : 보화당 한의원 보화당 건재 도매

◆ 업종 : 원불교 생산업체로써 한약 의료업

◆ 설립 규모 : 대지 98평, 건물 1동 170평(연건평)

◆ 설립 기금 내력 : 총계 67,640,000원(현금 8,286,502원, 주금3,390,000원, 부동산 55,963,498원)

그 기금은 이리 보화당한의원 건재약방, 이리 보화당약국, 이리 역전보화당 한의원, 보화당약국이 매월 분납 적금하여 충당하였다.

〈설립 당시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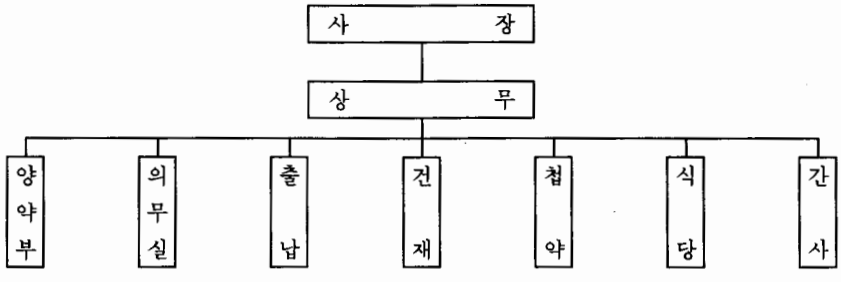

〈확장 이전〉

구 분	일 시	주 소	용 도	평	경비(만원)
3 층 증 축	64. 6. 5	전주 다가동1가	법당 창고	448	1,600
〃	65. 3. 3	〃	〃		120
사 슴 막 사	65. 6. 28	만덕산 농원 內	사슴2수 구입 및 막사	150	530+110
의 무 실 개 축	69. 12. 6	전주 다가동 1가	물리치료기 구입 및 의무실 개축		750+250
사슴농장이전	71. 10. 3	수계농원 內	사슴3수 구입 및 막사	300	1,908+462
〃	〃	〃	관사용	13	
〃	〃	〃	창고용(관사창고)	20	1,120

나. 조직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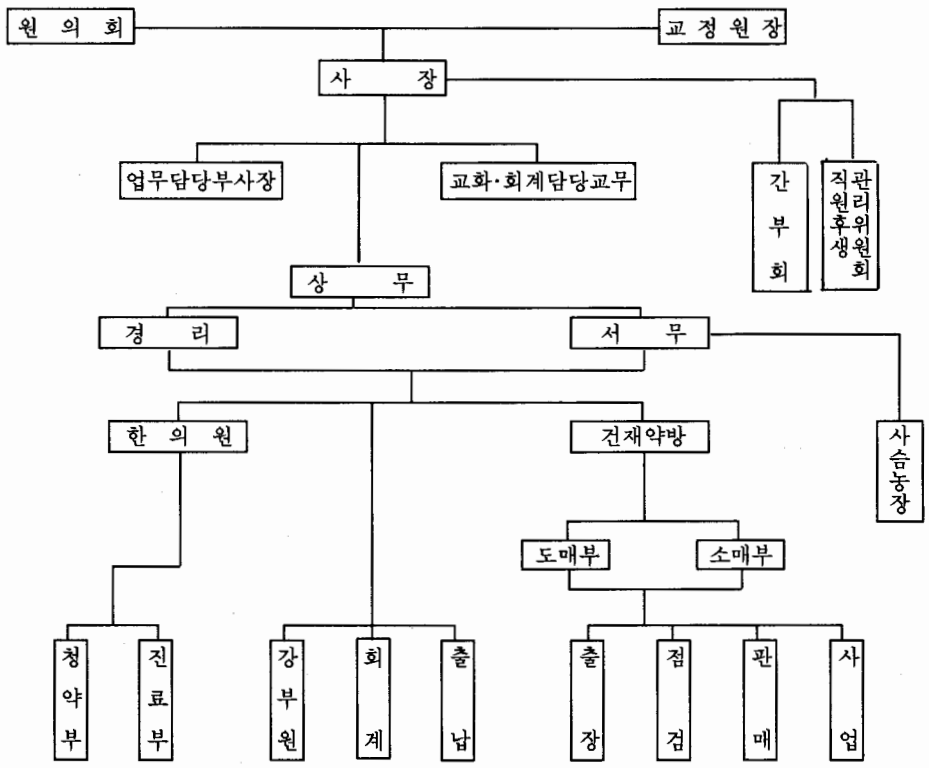

다. 현 황

◆ 현 자산 내역 : 총 665,976,868원

◆ 부동산 : 350,316,000원(토지 245,000,000, 건물 63,600,000, 기타토지 12,846,000, 주금 28,870,000)

◆ 동산 : 315,660,868(자본금 8,286,502, 총이득금 271,546,606, 특회자본금 15,500,000, 특이득금 20,327,760)

◆ 부동산 내역 : 토지 312평, 건물 212.8평(연건평)은 보화당 한의원 및 건재약방(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집) 대지 : 98평

〈임직원 현황〉

분류	사 장	의 사	간호원	사 무	기 타	男	女	계
인 원	1	2	1	5	6	11	4	15

라. 역대 사장

대	법 명(호적명)	성 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고
1	李 喆 行(喆行)	男	1928. 12. 12	61. 8. 30~72. 10.	
2	宋 成 贊(佐翼)	〃	1929. 9. 8	72. 11.~	

마. 역대 재직교역자 명단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사 장	李 喆 行(喆行)	男	1928. 12. 12	61. 8. 30~72. 10.	
부 사 장	宋 成 贊(佐翼)	〃	1929. 9. 8	61. 9. 20~72. 10.	
사 장	〃	〃	〃	72. 10.~73.	
교 무	梁 法 寬(愛願)	女	1926. 9. 27	68. 9. 5~	
전 무	朴 正 基(冥永)	男	1937. 7. 17	64. 12. 26~67. 4.	
상 무	金 淵 聖(七星)	〃	1939. 1. 10	62. 1.~63. 2.	
상 무	趙 誠 中(誠千)	〃	1941. 8. 17	62. 5.~65. 6.	
교 무	馬 圓 宗(英淑)	女	1944. 6. 6	62. 8. 30~64. 5. 31	
〃	崔 承 圓(承姬)	〃	1947. 10. 11	64. 5. 21~66. 11. 16	
약 사	金 一 誠(恩淑)	〃	1948. 8. 12	61. 9. 30~70. 8. 1	
〃	金 慧 心(貞姬)	〃	1946. 10. 19	70. 8. 1~71. 4. 10	
감 원	高 賢 聖(永禮)	〃	1934. 1. 16	65. 4. 30~67. 12. 28	
〃	申一覺圓(孟心)	〃	1928. 3. 21	61. 8. 30~	
간 사	朴 良 根(鎰洙)	男	1958. 3. 9	65. 3. 5~67. 2. 19	
〃	丁 亨 靜(學成)	〃	1962. 10. 14	64. 9. 6~67. 2. 19	
〃	金 慈 然(時鎬)	〃	1962. 1. 8	67. 10. 7~69. 2. 20	
〃	梁 圓 錫(金泳)	〃	1961. 9. 9	70. 10. 23~72. 2. 10	

바. 배출된 전무출신

번호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 천 인	비고
1	朴 法 一(仁淑)	女	1961. 6. 8	51.	66. 1.	李喆行	
2	朴 良 根(鎰洙)	男	1958. 3. 9	60. 4. 20	67. 1. 16	〃	
3	丁 亨 靜(學聲)	〃	1963. 10. 14	63.	69.	〃	
4	金 慈 然(時鎬)	〃	1962. 1. 8		68. 1.	〃	
5	梁 圓 錫(金泳)	〃	1960. 9. 10	62. 10	70. 9.	〃	
6	鄭 民 錫(玉參)	〃	1965. 2. 19			〃	

사. 연도별 진료자 수

연도	계	남	여	연도	계	남	여
62	4,000	1,900	2,100	68	31,000	14,000	17,000
63	20,000	8,000	12,000	69	32,000	15,000	17,000
64	21,000	9,000	12,000	70	30,000	14,000	16,000
65	24,000	11,000	13,000	71	33,000	15,000	18,000
66	28,000	13,000	15,000	72	28,000	13,000	15,000
67	30,000	14,000	16,000	누계	281,000	127,900	153,100

아. 봉사활동

일 시	사업활동	목 적	인 원	장 소
62. 9. 4	개업1주년기념	의무교화1차 의무교화2차	100 200	완주 수계교당 완주 구이면(평촌회관)
72. 5. 10	의 료 봉 사	〃	120	완주 봉동교당
72. 7. 12	〃	〃	200	고창 상하국교

8. 대구 원광 한의원

가. 설 립

대구 원광한의원은 제생의세 및 영육쌍전의 이념 아래 대산종법사의 유지를 받들어 법은

사업회 및 후생 사업회의 후원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 설립 일자 : 원기61년(1976) 11월 25일

◆ 설립 유공인 : 대산종법사, 오희원, 오성수, 유영근교도, 이의성교도, 김원도교무

◆ 설립 기금 내역 : 총액 3천만원 (법은사업회비 : 1,800만원, 후생사업회비 : 1,200만원)
현금 : 1천만원(수리비 500만원, 운영비 500만원). 부동산 : 2천만원(부지 매입비)

◆ 주소 : 대구시 중구 남성로 8-3

◆ 명칭 : 대구 원광한의원

◆ 업종 : 원불교 생산업체로써 한약 의료업

◆ 설립 규모 : 대지 29.46평, 건물 1동(연건평 25평)

◆ 당시 임직원 : 의사 1명, 사무직 2명

◆ 특기 사항 : 개업지를 물색하여 처음 목적한 곳을 중간 소개업자의 2중 소개로 무산되었고 두번째로 개업지를 선정 계약하였으나 전세인이 주택을 비워 주지 않은 관계로 재판까지 하였으며, 또한 원불교 기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역 한의사회의 반발이 심했고, 보화당의 상호를 타인이 먼저 사용하여 버렸으므로 원광한의원이라고 명칭을 하였다. 후원은 법은사업회로부터 3천5백만원을 후원받아 투자하였고, 원장이 그동안 관리의에서 출가 교역자 문상선 교무가 직접 진료에 임하고 있다.

〈설립 당시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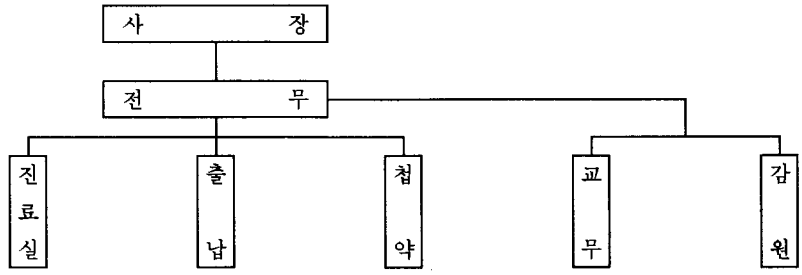

나. 연 혁

• 61(1976). 4. 20 : 대구 중구 남성로 8-3의 대지 29평 4홉 6작을 2천만원에 매입, 수리비 500만원과 운영비 500만원을 투자.

• 61(1976). 11. 25 : 중앙 총부 양원장과 대구 시내 교역자 및 교도 100여명 참석으로 봉불식

거행.

- 62(1977). 8. 3 : 2층 창고內에 방 1간 설치.
- 62(1977). 2. 24 : 진찰실·예진실에 보일러 설치(비용 : 20만원)
- 66(1981). 6. 10 : 본원이 장소가 너무 협소한 이유로 신축 건물을 계획하였으나 대지 평수가 작아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다행히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 됨에 따라 허가를 받게 되자 법은 사업회와 후생사업회의 임시운영회를 열어 재투자를 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고 同장소에 신축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66년 6월10일)
- 66(1981). 7. 28 :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 신축(연건평 98평), 건축비 4천만원을 투자 공사 착공, 3개월만에 완공.
- 66(1981). 11. 15 : 신축 건물 봉불식(오후 2시20분) 참석인원 200명, 총공사비 : 5천만원
- 67(1982). 3. 15 : 법은 사업회와 후생 사업회를 분립, 유동 자산을 분할함.
  대구원광한의원은 법은 사업회 소속, 부산 서면 원광한의원은 후생 사업회 소속, 후생사업회전출금은 공익부에서 6백만원, 대구원광한의원에서 6백만원 도합 1천2백만원 전출.
- 71(1986). 6. 1 : 공익부 산하 장학 교역자 한의사 문상선교무 원장 취임.
- 72(1987). 5. 7 : 한약 추출기 구입(180만원)

〈신축 확장〉

구분	연월일	주 소	대지(평)	건 물		경 비		
				용 도	98평	총액	기금	부채
신축	66. 7. 10	대구직할시중구남성로8-3	29.46	한의원	20평	5천만원	3천6백만원	1천4백만원
				사무실	21.6평			
				생활관	21.6평			
				창 고	21.6평			
				지 하	13.2평			

다.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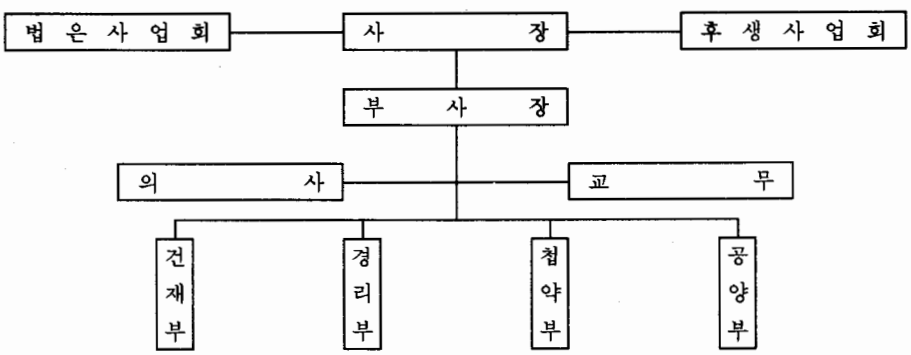

라. 현 황

◆ 주소 : 대구 직할시 중구 남성로 8-3

◆ 대지 : 29.46평

◆ 건물 : 98평(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 한의원 20평, 사무실 21.6평, 생활관 21.6평, 창고 21.6평, 지하 13.2평

◆ 자산 내역 : 총자산 : 1억8천만원(동산 3천만원, 부동산 98평)

〈임직원 현황〉(남 3명, 여 3명)

구 분	의 사	간 호 사	사 무	기 타	계
인 원	1	1	1	3	6

마. 역대 재직 교역자 명단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고
사 장	吳 曙 圓(男苗)	女	1931. 12. 20	61. 10. 1~70. 1. 30	
전 무	吳 聖 洙(聖培)	男	1934. 9. 7	61. 10. 1~64. 10. 29	
교 무	金 元 道(仁淑)	女	1946. 7. 18	61. 10. 1~	
서 무	河 漢 善(奉珍)	男	1943. 8. 11	64. 8. 7~66. 3. 31	
부 사 장	吳 聖 洙(聖培)	〃	1934. 9. 7	64. 10. 30~72. 10. 15	
원 장	文 常 禪(泳植)	〃	1959. 2. 12	71. 6. 1~	
사 장	李 慧 定(愛子)	女	1937. 12. 9	72. 11.~	

바. 연도별 진료자 수

연도	계	男	女	누 계	연도	계	男	女	누 계
62	1,709	824	885	1,709	68	1,248	621	627	11,243
63	1,594	875	719	3,303	69	1,309	548	761	12,552
64	1,913	965	948	5,216	70	1,187	605	582	13,739
65	1,797	678	1,119	7,013	71	1,164	737	427	14,903
66	1,516	457	1,059	8,529	72	1,420	596	824	16,323
67	1,466	703	763	9,995					

바. 연도별 의료 봉사 활동

연도	활 동 명	기간	주관처	목 적	대상인원	진료내용
62	무 료 진 료	6일	원광한의원	교화 및 봉사	150명	침·진찰·뜸·환약 투여
65	〃	1일	〃	〃	30명	〃
71	〃	14일	〃	〃	317명	〃
72	〃	3일	〃	〃	75명	〃

9. 성남보화당한의원

가. 설 립

성남보화당한의원은 원불교의 제생의세 및 영육쌍전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 사회의 교화 및 보건 향상에 힘쓰며 원불교 서울 수도원 후원 기관으로써 사업적 후원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

◆ 설립 일자 : 원기65년(1980) 5월 30일
◆ 설립 유공인 : 정대원(당시 성남 교도회장), 서울보화당한의원
◆ 기금 내역 : 현금 650만원(임대료), 수리비 160만원, 약재 500만원
◆ 명칭 : 원불교 보화당 한의원
◆ 업종 : 원불교 생산 업체로써 한약 의료업
◆ 주소 : 성남시 신흥 3동 211-31

나. 연 혁

성남 보화당 한의원은 서울 종로 보화당 한의원 지점으로 개설 되어 원기65년(1980) 5월 28일에 성남시 신흥 3동 211-3에 위치 하고 있는 정대원 성남교당 교도회장의 주택을 임대로 개업을 하였다. 당시 지역 한의사회의 개업 저지로 법정 시비까지 이르는 어려움을 이겨 내고 임대료 350만원 권리금 100만원을 내고 점포 수리 및 한약제 일체를 서울보화당에서 지원받아 개설되었다. 수리 비용 160만원과 한약제 500만원 상당을 구입하였으며 임원직에 사장으로 李共珠 서울수도원장, 원장에 손홍도교무가 부임하였다. 여러가지의 개업 초기 어려움을 인내하며 지역 사회의 주민과 융화하고 개업 의료원의 발판을 굳혀온 본원은 개업 만 3년에 동지역인 태평 2동 3368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 20평을 임대하여 운영되다가 다시 이전 3개월 만인 원기68년(1983) 10월 25일에 동지역

에 위치한 성남시 태평 2동 3309-475 건물 27평을 임대하여 이전하였다.(임대료 1천만원) 이듬해 3월 1일에 서울보화당으로부터 독립 운영하였으며 당시 현금 680,069원과 재고가 약 680만여원의 빈약한 재정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원기72년(1987) 6월에 군복무를 완료한 전대희 원장이 취임하여 교단의 산업기관으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의 성장에 적극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확장 이전〉

구분	일 시	주 소	용 도	평	경 비
이 전	68. 7. 7	성남 태평 2동 3368	한 의 원	20	
이 전	68. 10. 25	성남 태평 2동 3309~475	〃	27	

다. 현 황

◆ 주소 : 성남시 태평2동 3309~475

◆ 건물 : 정산 빌딩 27평 임대(콘크리트조)

◆ 임직원 현황 : 총계 5명(남3명, 여2명)

◆ 총자산 내역 :

라. 역대 재직 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고
원 장	孫 興 道(仁喆)	男	1949. 7. 22	65.~71. 8. 31	
교 무	金 柔 賢(貞任)	女	1949. 2. 25	65. 5.~68. 1. 31	
상 무	黃 天 日(浩善)	男	1937. 4. 13	65. 5.~67. 10. 1	
교 무	李 喜 仁(順子)	女	1947. 11. 2	68. 2.~	
원 장	全 大 熙(熙景)	〃	1959. 8. 11	72. 6. 20~	

마. 연도별 의료 봉사 활동

년도(원기)	주관처	목 적	대 상	활동내용 및 장소
67년 4월 (1회)	성남보화당	대 각 개 교 절 기 념 무 료 진 료	성남시 은행1동 주민	성남시 영세지역 은행1동 주민 대상으로 동사무소에서 의료상담 및 침·뜸·부황·환약 투여
5월 (1회)	〃	〃	〃	
6월	〃	〃	〃	〃

68년 3월 (2회)	성남보화당 성남시보건소	보건의 달 기념무료진료	성남시 신흥3동 주민	신흥3동 경노회관에서 건강 상담 및 한방진료
4월 (1회)	본 원	무 료 진 료	〃	〃
5월	〃	〃	〃	〃
69년 3월 (1회)	본 원	경노사상고취및 보은활동	성남시 태평2동 주민	성남시 태평2동 경노회관에서 한방 무료진료(침·뜸·부황·환약 투여 및 진료 건강상담)
5월 (1회)	〃	〃	〃	
6월 (2회)	〃	〃	〃	〃
7월 (1회)	〃	〃	〃	〃
10월 (1회)	〃	〃	〃	〃
70년 4월 (3일간)	본 원	대각개교절 무료진료	성남교당교도및 인근지역주민	성남교당에서 교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침·뜸·부황·환약 투여
70년 5월 (4회)	본 원	무 료 진 료	성남 태평2동 주민	성남 태평2동 경노회관에서 지역사회 영세민 무료 진료
6월 (4회)	〃	〃	〃	〃
7월 (3회)	〃	〃	〃	〃 1회는 성남국교에서 양방과 공동
8월 (1회)	〃	〃	성 남 시 민	성남 낙생국교에서 양방·치과·한방 동시 무료 진료
9월 (1회)	〃	〃	성남태평2동 주민	경노회관에서 한방 무료 진료
71년 4월 (2일간)	본 원	무 료 진 료	태평2동 주민 55명	태평2동 동사무소에서 건강상담 및 한방 진료(침·뜸·부황·환약 투여)
5월 (1회)	〃	〃	지역노인과 인근 주민(35명)	태평2동 경노회관에서 한방 무료 진료
6월 (10~25일)	〃	전국체전참가 훈련선수단격려	경기도대표 력비선수단	전국체전 출전팀 경기도 대표 진료 담당
8월 (1회)	〃	무 료 진 료	성남은행동 주민(105명)	성남 은행동 상원국교에서 Lions회 한방 담당
72년 9월 (1회)	〃	〃	성남시 무의촌 대민	한방 진료

10. 경동 보화당 한의원

가. 설 립

경동보화당 한의원은 원불교의 기본 이념인 영육쌍전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앙총부 중앙훈련원의 후원 기관으로써 발족하여 원기67년(1982) 3월 28일에 설립되었다. 교단의 千佛萬聖 배출의 훈련 도량인 중앙훈련원의 후원을 위하여 在家要人중 뜻있는 동지가 중심이 되어 3·3會(현재 원창회로 흡수됨)를 조직하고 일심합력으로 매월 성금을 모집하였다. 이 금액이 상당액에 이르자 이에 재가·출가가 합력하여 훈련 사업회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본 사업회에서도 장차 생산적인 사업회 구성을 목적으로 원기63년(1978) 12월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40－30의 소재 대지 21평 건물 11.61평(목조 와가 단층)을 2천5백만원에 매입하여 임시 임대하고 시기를 관망하여 오다가 원기67년(1982) 2월에 생산 사업체의 일환인 보화당 한의원을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에 상정한 바 원의회에서 허가를 얻었다. 초대 이사에 梁泰說교무를 임명하고 운영 자금으로 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제반 보수 및 시설을 완료한 후 同年 3월 28일에 정식으로 보화당 한의원을 개업하였다. 향후 수년을 경영하여 오던 중 장소의 협소를 절감하여 원기72년(1987) 초부터 양태설교무는 장소 확장 이전 계획을 세우고 백방으로 물색 주선 끝에 구장소의 대지 21평과 건물 11.61평을 1억6천만원에 매각하여 新장소의 제기동 964－2의 소재인 대지 45평 건물 95평(콘크리트 슬라브 3층)을 1억6천만원에 매입하였다. 후에 추가로 5백만원의 제반 비용을 들여 同年 9월 1일에 이전 개업을 하게 되므로써 本업체의 숙원 과제인 장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 설립 일자 : 원기67년(1982) 3월 28일
◆ 설립 유공인 : 33 회원
◆ 설립 기금 내역 : 총계 40,000,000원(현금), 부동산 30,000,000원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40－30
◆ 명칭 : 보화당 한의원
◆ 업종 : 원불교 생산 업체로써 한약 의료업
◆ 설립 규모 : 대지 21평, 건물 1동(연건평 : 11.6평)

〈확장 이전〉

구 분	일 시	주 소	대지	건 물	평	경 비
매입이전	72. 9. 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60－2	45평	점 포 생 활 관 창 고 기 타	22 44 22 7	총액1억7천 만 원

나.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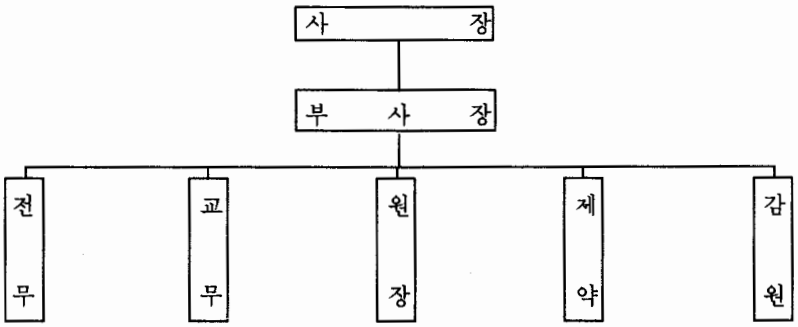

다. 현 황

◆ 임직원 현황 : 총계 5명(의사 2, 간호사 1, 사무직 2)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64－2

◆ 대지 : 45평

◆ 건물 : 95평(3층 양옥 :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 자산 내역 : 총자산 246,000,000원 (동산 : 76,000,000원, 부동산 : 170,000,000원)

라. 역대 재직 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 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고
전 무	河漢善(奉珍)	男	1943. 8. 11	67. 3. 5～70. 1. 31	
교 무	李敬倫(敬淑)	女	1935. 7. 5	67. 3. 5～68. 2. 3	
교 무	具耕田(貞順)	〃	1953. 8. 16	68. 1. 30～	
상 무	金瑞鶴(吉萬)	男	1947. 11. 2	71. 3. 17～71. 8. 31	
부 사 장	梁泰說(泰鎬)	〃	1924. 10. 16	67. 2. 8～	

마. 연도별 진료자 수

연 도	계	男	女	누 계	연 도	계	男	여	누 계
67	955	98	857	955	70	1,124	115	1,009	4,429
68	1,241	115	1,126	2,196	71	1,007	98	909	5,436
69	1,109	110	999	3,305	72	768	72	696	6,204

11. 영등포 보화당 한의원

가. 설 립

원불교 창립 2대 말과 대종사 탄신 100주년의 성업을 앞두고 범 세계적 종교로의 도약을 위해 원불교에서는 해외 교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영등포보화당은 교단의 3대 목표중 교육을 뒷받침 하는 해외 교역자 양성을 위한 장학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 설립 일자 : 원기67년(1982) 11월 21일

◆ 설립 유공인 : 吳利均교도, 李濟性, 李宗淑교무

◆ 설립 기금 내역 : 총계 : 374,600,000원(부채 : 4천만원, 특희사금 : 2천만원)

부동산 : 1,573평(314,600,000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01번지

◆ 설립 규모 : 대지 38평(연건평), 기타 부동산 2,700평

◆ 임직원 수 : 5명(의사 1명, 사무직 4명)

나. 연 혁

영등포보화당 한의원은 원불교 사직교당 吳利均회장의 조력으로 오회장의 과천에 소재하는 토지 2,700여평을 희사 받아 그 자산을 토대로 해외 교역자 장학 사업을 전개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영등포에 보화당 한의원을 개설하여 재단적 후원과 기금의 육성 및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오회장의 적극적 후원과 희사 금액 6천만원으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의 점포 1동을 2천만원에 전세로 임대하고 차액으로 점포를 수리하고 보화당 설립 기금으로 충당하여 한의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원기67년(1982) 9월 6일에 설립된 본원은 같은해 11월 21일에 법신불을 봉안하고 국제 육영사업회 운영회장에 오이균회장이 피선되고 당연직 사장에 당시 교육부장 박제현교무가 피임되었다. 개원 이후 3년만에 영등포구 당산동 1가에 건물 1동을 매입하여 수리한 후 이전 개업하였으며 관리 의사를 두고 운영하던 한의원은 원기71년(1986) 6월 박세원교무가 원장으로 부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확장 이전〉

구분	연월일	주 소	용도	평	경 비
확장이전	71. 6.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1가 88-1, 90-5	진 료 실 점 포 생 활 관	12 12 21.8	

다.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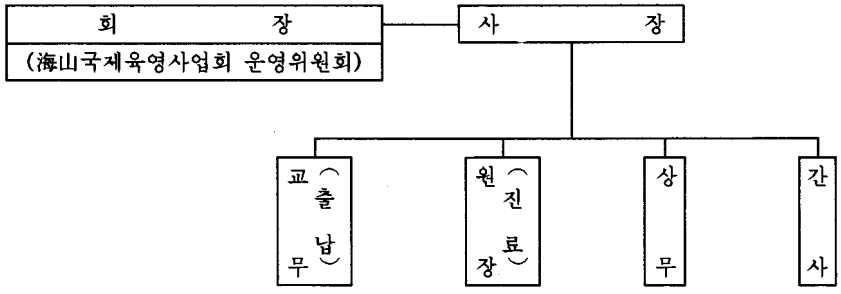

라. 현 황

◆ 주소 :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당산 1가 88-1

◆ 대지 : 45.8평

◆ 기타 : 부동산 : 과천 573평×500,000=286,500,000

◆ 자산 내역 : 총자산 : 3억6천만원〔동산 : 1억7천만원, 부동산 : 45.8평(1억8천만원)〕

부채 : 50,000,000원

〈건물〉

용 도	평	구 조	비 고
진 료 실	12	목 조 와 가	
생 활 관	21.8	〃	
점 포	12	〃	임 대 중

◆ 임직원 현황 : 총계 : 5명(남3, 여2)

마.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사 장	朴 濟 現(英姬)	女	1931. 2. 24	67. 9. 13~71. 2.	
교 무	李 宗 淑	〃	1944. 8. 21	67. 9. 13~71. 2. 28	
사 장	金 復 煥(復煥)	〃	1938. 12. 10	71. 2.~	
교 무	宋 賢 慈(在鉉)	〃	1950. 5. 23	71. 3. 1~72. 2. 20	
원 장	朴 世 源(世源)	男	1954. 6. 1	71. 6.~	
상 무	黃 天 日(浩善)	〃	1937. 4. 13	71. 1. 1~	
교 무	尹 敬 一(明男)	女	1948. 3. 2	72. 2. 23~	

바. 연도별 진료자 수

연도	계	男	女	누 계	연도	계	남	女	누 계
67	339	136	203	339	70	1,451	660	791	5,404
68	1,831	767	1,064	2,170	71	531	262	269	5,935
69	1,783	730	1,053	3,953	72	703	272	431	6,638

사. 연도별 특별 활동(의료봉사)

연 도	사업활동	기간	주관처	목 적	대상	내용
72	의 료 봉 사	1	강 화 교 당	대각개교절보은행사	교도50명	한방진료
72	서울소년원법회	매 주 토요일	서 울 서 부 교 구	교화보조 및 봉사	소년원생및 직원350명	법회훈련상담
72	圓쌍화차제조및 판 매	바자회 이후계속	본 원	우리차 보급과 건강증진	교도일반	

12. 군산 원광 보화당 한의원

가. 설 립

군산 원광 보화당 한의원은 교단의 3대 목표인 교화·교육·자선중 자선사업의 후원을 위하여 원의회에서 결의된 것을 종법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 설립 일자 : 원기67년(1982) 12월 10일

◆ 설립 유공인 : 김서오, 오회원, 박대성, 오성수, 이성규, 유향원교무

◆ 설립 기금 내역 : 총액(53,800,000원) : 현금 자선사업회 기금 후원기관(원의회 회의)

◆ 주소 : 군산시 평화동 41번지

◆ 명칭 : 원광 보화당 한의원

◆ 업종 : 한약 의료업

◆ 설립 규모 : 대지 61평 건물 2동(연건평 : 25평) : 목조와집을 전세로 사용함.

나. 연 혁

- 67(1982) 원불교 자선 사업회 수익 기관으로 발족
- 67(1982).10. 16 전북도 군산시 평화동 41 황도수氏(이대숙주무)의 점포 1간 및 안집 1동을 전세 임대.
- 67(1982). 11. 8 한의원으로 점포 수리
- 67(1982). 12. 5 군산시 보건소로부터 개설 신고 및 인가
- 67.(1982) 12. 12 초대 사장 오희원교무 임명, 부사장 박대성교무 취임, 교무 및 경리에 윤성지교무 취임 , 의사는 관리의
- 71(1986). 1. 30 사장 오희원교무 퇴임, 사장 이혜정교무 임명.
- 71(1986). 3. 1 인접 점포 1칸 임대 개조 진찰실 및 점포 확장.
- 72(1987).11. 박대성 부사장이 사장으로 취임.

다.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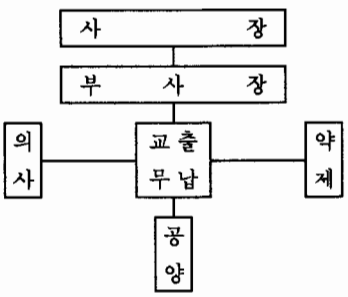

라. 현 황

◆ 자산 내역 : 총자산 65,949,000원

◆ 임직원 현황 : 총5명(의사 : 1, 약제 : 1, 사무 : 2, 공양원 : 1)

마. 역대 재직 교역자 명단

직 책	법 명(본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사 장	吳 曠 圓(男苗)	女	1931. 12. 20	67. 12. 12~72. 11.	
사 장	李 慧 定(愛子)	〃	1937. 12. 9	72. 11. ~	
부 사 장	朴 大 成(星載)	男	1925. 2. 20	67. 12. 10~	
교 무	尹 聖 智(金良)	女	1943. 9. 16	〃	

바. 연도별 진료자 수

연도	계	남	여	누 계
70	140	50	90	140
71	78	28	50	218
72	62	20	42	280

사. 연도별 의료 봉사 활동

연도	활 동 명	날 짜	주관처	목 적	대상	내 용
70	무의촌의료봉사	대각개교절	공익부	교화 및 봉사	140	침, 뜸, 부황, 환약 투여
71	〃	〃	〃		78	〃
72	〃	〃	〃		62	〃

13. 부산 원광 한의원

가. 설 립

부산 원광한의원은 원불교 기본 정신인 제생의세와 영육쌍전 정신에 입각하여 출가 전무출신 후생 사업을 목적하고 원기67년(1982)에 院議會의 결의를 얻어 후생 사업회와 사대 봉공회 및 항원 사업회(恒圓事業會)의 공동 투자로 설립 하였다. 장소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 1동 485~8의 건물 1동(대지 98평 연건평 28평)을 매입하여 원기67년(1982) 3월 12일에 원불교 재단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동년 8월 16일에 한의원 설립을 인가 받아 정식으로 한의원 개설이 시작되었다. 원기67년(1982) 9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2층 건물 전면과 내부 생활관 수리를 마치고 원광 한의원이라 간판을 내걸고 같은해 11월 15일에 개원하였다. 임원으로 당연직 사장에 당시 공익부장 오희원교무가 임명되고 실무에 金聖恩교무가 취임하였다. 설립 후 5년이 된 본 한의원에서는 과거의 한방을 현대식 한의원으로 만들고자 진료를 현대화 과학화 하고 각종 현대식 물리 치료 시설과 진단 기기를 갖추고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에 이르러 교역자와 임직원이 합심하여 부산에서 으뜸되는 한의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교단의 산업 기관으로 일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설립 일자 : 원기68년(1983) 11월 15일

◆ 주소 : 부산시 부산 진구 부전1동 485－8

◆ 건물 : 1동(연건평 : 28평, 대지 : 96평)

◆ 설립 기관 : 후생 사업회, 사대 봉공회, 항원 사업회 공동

◆ 초대 사장 : 오희원교무

〈설립 기금 내역〉

총 투 자 액	261,702,410원(비율)
사 대 봉 공 회 투 자 총 액	104,680,900원(40%)
후 생 사 업 회 투 자 총 액	104,680,900원(40%)
항 원 사 업 회 투 자 총 액	52,340,610원(20%)

〈투자 금액 세무 내력〉

투 자 기 관	1차금액(원기67. 3. 13)	2차금액(원기69. 12. 29)	비 율
사 대 봉 공 회	92,680,900원	12,000,000원	40%
후 생 사 업 회	92,680,900원	12,000,000원	40%
항 원 사 업 회	56,340,610원	6,000,000원	20%

〈1차 투자 금액 용도〉

용 도	금 액
1. 건물 매입비(부동산)	2억원
2. 건물 수리 및 한의원 개설비	3천만원
3. 이전 수속 경비	1,702,410원

나.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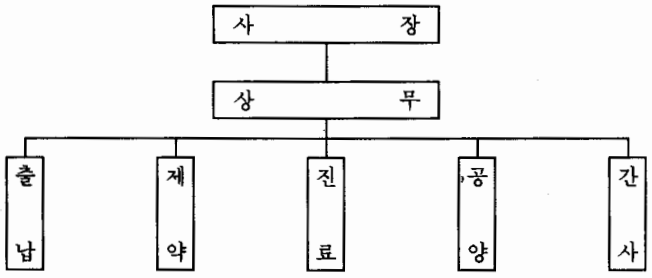

다. 현 황

〈건물〉

건 물	평	구 조	용 도
슬라브 1 동	32	벽돌조	
기와 1 동	20	콘크리트	
스레트 1 동	15	〃	

직원 현황 : 총6명 (남3, 여3)

구 분	의 사	간호사	사 무	기 타
인 원	1	3	2	

〈의료 시설 현황〉

번호	의료기명	구입일자	치료용도	구입비용
1	분말기	69. 6. 13	인삼 및 한약재 제분	
2	만능건강기	69. 9. 21	디스크 및 요통	
3	핫백탱크	〃	〃	
4	트랙션(견인장치)	69.12.19	중풍·요통	
5	저주파치료기	〃	각종 동통질환 및 외과	
6	초음파치료기	〃	〃	
7	적외선치료기	〃	〃	
8	기타운동구	〃	〃	
9	치료베드	〃	〃	총 800여만원
10	뇨분석기	70. 1. 8	당뇨·뇨단액·혈당 검사	200만원
11	저주파치료기	70. 7. 8	물리치료	80만원
12	컴퓨터진단기	70. 7. 21	한방진단기	277만원
13	약재절단기	70. 9. 2	한약절단	20만원
14	적외선치료기 2 대 드래쎙카	70. 9. 18	물리치료	173,000원
15	적외선쑥뜸기	70. 9. 26	〃	18만원
16	전동썩션기	70. 10. 23	〃	15만원
17	제환실신설	70. 12. 5		212만원
18	스팀트랙션	71. 2. 20	중풍 및 물리치료	300만원
19	현미경	71. 2. 28	병리검사	
20	텐스	71. 3. 28	중풍치료	90만원
21	핫백탱크	71. 4. 10	물리치료	28만원
22	사운드	71. 4. 12	〃	90만원
23	월풀	71. 7. 28	〃	100만원
24	간섭파	〃	〃	450만원

라. 확 장

연 도	건 물	대 지	용 도	경 비
67. 9. 9~10. 31	현 한의원 건물 전면 및 내부 생활관 수리	67평	점포·생활관	19,518,513원

마. 역대 재직교역자 명단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고
사 장	吳 曉 圓(男苗)	女	1931. 12. 20	68. 11.~72. 11.	당연직
사 장	李 慧 定(愛子)	〃	1937. 12. 9	72. 11.~	〃
교 무	申 眞 圓(行圓)	〃	1954. 5. 15	68. 11.~72. 2.	
교 무	吳 光 益(碩毛)	男	1947. 12. 21	68. 11.~	
상 무	金 聖 恩(聖恩)	〃	1944. 12. 9	68. 11.~	
교 무	朴 信 裕(愛子)	女	1955. 5. 4	71. 2.~	

바. 의료 봉사 활동

일 자	봉 사 내 용	대 상
69. 5. 27	건강상담·침구치료·병리검사	다 대 교 당 교 도
70. 3. 3	〃	연 산 교 당 교 도
70. 3. 21	〃	사 상 교 당 교 도
70. 6. 16	〃	문 현 교 당 교 도
70. 7. 7	〃	남 산 교 당 교 도
70. 7. 21	〃	안 락 교 당 교 도

사. 월간『원광인의 건강』발행

차 례	발 행 일 자	내 용	대 상
1호	70. 8. 4	당뇨병, 설사 예방과 치료	내 원 환 자
2호	70. 8. 29	요통의 예방과 치료	각 교 당
3호	70. 10. 4	수신 건강법, 감기치료	학 교
4호	70. 11. 11	건강과 보약, 두뇌명석법	은 행
5호	70. 12. 13	남성불임증	동 사 무 소
6호	71. 1. 18	운전기사의 직업병	
7호	71. 3. 11	피로, 남성 성기능 장애	
8호	71. 4. 5	심장병, 환절기병	
9호	71. 5. 4	스포츠맨과 디스크, 고혈압	

14. 제주 원광 한의원

가. 설 립

大山宗法師는 모든 교역자 그리고 일반교도들의 자연 요양, 자연 훈련, 자연 함양을 위하여 20여년 전에 신도안에 삼동원 도량을 건설하였다. 초대 원장에 이병은 교무가 취임하여 삼동원의 발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개척과 건설을 도모하였다. 그 중에서 생산성 있는 약초 재배 및 축산업 농장 등을 운영하였으나 수입성의 영세로 중도에 폐업하였다. 그후 식품공장을 건설하려고 허가를 추진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全二昌 2대 원장이 부임하여 대전시에 연탄 공장과 한의원을 경영하려 시도 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일단 보류되었는데 도중에 정부의 620사업으로 신도안의 일체 종교 및 민가가 철거되기에 이르렀다. 교단도 할 수 없이 삼동원을 철수하고 그 보상금을 지불받게 되었는데, 삼동원의 복원 사업으로 후원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제주시에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원기69년(1984) 7월 17일에 건물을 매입한 후 삼동원 임직원들의 각고의 정성으로 터를 닦은 후 개원하였다.

◇ 설립 일자 : 원기69년(1984) 12월 7일
◇ 설립 기금 내역 : 총액 191,133,720원(삼동원 투자)
◇ 주소 : 제주시 일도 1동 1171－5
◇ 명칭 : 원광한의원
◇ 업종 : 원불교 생산 업체로써 한약 의료업
◇ 설립 규모 : 대지 54평, 건물 1동(연건평 : 147.2평) : 철근 슬라브 4층 건물
◇ 초대 이사장 : 全二昌(在禮 : 1925. 10. 3일생), 재임기간(원기69년 12. 5～)

나.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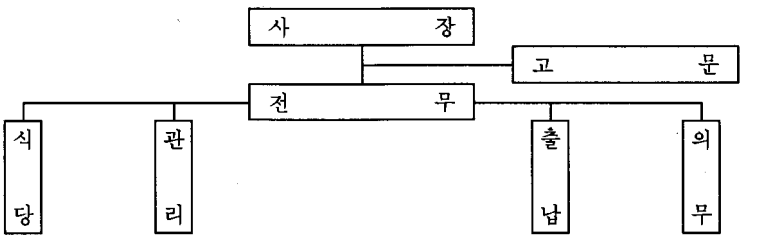

다. 활 동

◇ 자산 내역 : 총자산 234,207,037원(동산 57,804,537원, 부동산 176,402,500원)

〈임직원 현황〉(남 3, 여 4)

구 분	의 사	간 호 사	사 무	계
인 원	2	1	4	7

라. 역대 재직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사 장	全 二 昌(在禮)	女	1925. 10. 3	69. 12. 5~
고 문	李 元 道(炳春)	男	1911. 9. 4	69. 12. 5~
전 무	李 中 天(仲烈)	〃	1948. 3. 10	〃
교 무	李 仁 根(貞淑)	女	1956. 9. 30	〃

마. 연도별 의료봉사 활동

연 도	활동명	장 소	주관처	대상인원	내 용
70. 3. 20	무료진료	구 좌 읍	본 원	주민 100명	한방무료진료
70. 4.	〃	애 월 읍	〃	주민 200명	〃
70. 8. 25	〃	비 양 도	〃	주민 80명	〃
72. 5.	〃	우 도 면	〃	주민 70명	〃

15. 이리 보화당 제약사

가. 설 립

교단은 교단의 3대 목표인 교화·교육·자선에 중점을 두고 경제 산업기관으로써 제약사 설립을 구상하다가 이리보화당 조희석 이사와 이철행 부이사,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김재백 교수의 설립 추진 노력으로 원기48년(1963) 10월에 보사부로부터 설립 인가(보사부허가 제421호)를 받아내었다. 당시는 제약사 설립 허가가 지금처럼 크게 어렵지 않았으므로 일차적으로 원표 보화경옥고·보화소합원·선명수·경옥고시럽의 4가지 생산품목을 신청하고 출품에 착수하였

다. 장소는 당시 이리보화당 內舍에 간단한 시설을 설비하여 약 반년동안 운영하다가 이듬해 5월에 동쪽 인접 가옥 1동을 매입하여 시설과 장소를 확충한 후 이리보화당 자체 소속으로 운영하다가 생산 품목중 선명수와 보화시럽은 판매 부진으로 중도에 생산을 중단하고 경옥고와 소합원을 보화당 영업부와 전국 교당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수익금도 이리보화당 영업부 수입으로 하였으나 당시 한의원의 일일 매출금액에 비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다. 이후 원기 56년(1971)에 보화당제약사가 사장 일인 체제하에 이리보화당으로부터 회계만 독립하고 제약사 전무 제도를 실시하여 정성과 노력을 배가하였으나 발전적 성장을 가져 오지 못하였으며 지금에 이르는 동안 수차례 기계 시설의 보완과 수리 및 설치를 하여 여전히 경옥고·소합원·숙지황의 3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판매망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 한의서 동의보감 중 보약의 제일방으로 꼽히는 경옥고 생산 외에 숙지황 생산과 각종 한약제의 제분 및 제환을 하고 있는 보화당 제약사가 설립 연한 20년이나 되므로 국내 유명 제약사와 병행할 수 있도록 정신과 물자 그리고 인재 투자에 적극적 배려가 절실히 요청된다.

◇ 설립 일자 : 원기49(1964)년 10월 30일

◇ 설립 유공인 : 趙曠錫, 李喆行, 金在百

◇ 주소 : 이리시 인화동 1가 105

◇ 명칭 : 보화당 제약사

◇ 시설 규모 : 대지 108평, 건물 1동

나. 연 혁

• 원기49년(1964) 10	보화당 제약사 설립(보사부 허가 제421호)
• 원기50년(1965) 5	제약사 인접 와가 1동 매입, 실험실 및 공장 확장 증축
• 원기56년(1971) 8	제약사, 보화당으로부터 독립 회계 운영
• 원기59년(1974) 5~8	제약사 기계 확충 및 건조실 개수(총경비 : 100만원)
• 원기60년(1975) 8	제약사 경옥고 탱크 확장 공사
• 원기63년(1978) 3	한의원, 본점, 역전 지점 및 제약사에 전무 제도 신설 별도 경영 체제 운영
• 원기69년(1984) 10	제약사, 경옥고, 숙지황 시설 개수(총공사비 : 1,340만원)

다. 조직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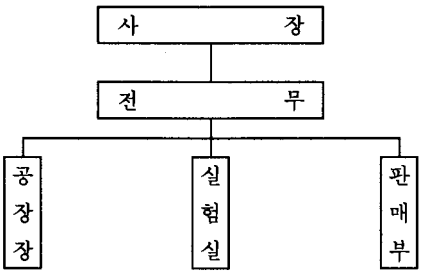

라. 현 황

◇ 자산 내역 : 총자산 : 141,230,755원(동산 : 117,870,755원, 부동산 : 23,360,000원)

◇ 임직원 수 : 총5명(남3, 여2)

〈건물 및 생산 품목〉

건 물	평	구 조	생 산 품 목	비 고
제품포장실	19.8	목 조 와 가	경옥고, 숙지황, 소합원	생 산 지 속
제 환 실	17.2	벽 돌 슬 라 브	소합원, 일체환약	〃
건 조 장	4.2	철 조 아 연	건지황	〃
공 장	7	벽 돌 스 라 브	경옥고, 숙지황	〃
실 험 실		철근콘크리트	선명수, 경옥고 시럽	중 도 절 산

〈기계 시설〉

◇ 제환 : 분쇄기 2대, 절환기 2대, 정한기 2대, 장환기 2대, 소합원 포장기 1대, 반죽기 1대, 혼합기 1대, 소합원 건조기 1대, 소합원 접착기 1대

◇ 경옥고 생산 : 스팀보일러 1대, 세척기 1대, 세병기 1대, 생지황 유착기 1대

◇ 기타 : 건지황 건조기 1대

마. 역대 이사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趙 暻 錫(熙燮)	男	1910. 11. 7	49~62	이 사
2	金 允 中(遵烈)	〃	1927. 12. 7	62~67	사 장
3	李 普 圓(萬宰)	〃	1934. 9. 13	68~	사 장

바. 역대 재직 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 별	생 년 월 일	재임기간	비고
약 사	金 慧 心(貞 姬)	女	1946. 10. 19	48. ~51.	
전 무	柳 正 完(珍 玉)	男	1931. 11. 29	~54.	
약 사	金 一 誠(恩 淑)	女	1949. 10. 14	56. 7. ~64.	
약 사	白 智 明	〃		52. ~56.	
전 무	曺 喜 悅(喜 錫)	男	1915. 3. 7	55. ~65. 3. 23	
부 사 장	朴 大 成(星 載)	〃	1925. 2. 20	65. 3. 23~67. 11. 25	
〃	韓 正 洙(林 洙)	〃	1936. 3. 5	67.11. 25~72. 11.	
전 무	金 淵 聖(七 星)	〃	1939. 11. 10		
상 무	朴 正 厚(在 鎬)	〃	1948. 8. 15	63. 3. 11~65. 3. 30	
〃	李 中 天(仲 烈)	〃	1948. 3. 10	65.11. ~68. 11. 1	
〃	金 恩 信(三 玉)	女	1938. 12. 24	63. 3. 11~66. 3. 20	

Ⅷ. 産 業 機 關

원불교 산업기관 설립은 소태산대종사의 영육쌍전 정신에 연원하고 있다. 대체로 종교인들은 현실보다는 이상을 물질보다는 정신을 숭상한 관계로 종교에 있어서 경제문제의 논의는 금기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소태산대종사는 교단창립의 첫 과정부터 현실생활과 종교수행을 둘로 보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도록 가르쳤으며 실제로 초창당시 저축조합, 방언역사 등으로 일범을 보이셨다. 그러한 가르침은 교리표어인「영육쌍전, 이사병행, 불법시생활, 생활시불법」등으로 잘 집약되어 있으며「영육쌍전법, 불공하는 법」등으로도 가르치고 있다.

원기20년(1935) 4월에 간행된『조선불교혁신론』에서는 시주 동녕의 철폐를 강조하였으며 그 이전인 원기19년(1934)의『불법연구회 규약』에는 사업부를 두도록 하여 농공상의 각종기관을 설치하여 무산 공부인의 공부비용을 장만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소태산대종사의 자립경제에의 가르침은 일제하의 민족을 향한 자주독립의 실다운 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교단사의 전개에 있어서도 정신적 기저가 되었다.

이러한 정신하에 교단사 72년동안 전개된 사업기관의 설립과 발전의 자취를 설립년도 순으로 대체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원기 9년(1924) 총부농원	원기24년(1939) 수계농원
원기14년(1929) 영산과원	원기31년(1946) 유일정미소
원기14년(1929) 황등농원(죽사울원)	원기36년(1951) 삼창공사
원기15년(1930) 만덕산농원	원기60년(1975) 완도철산농원
원기19년(1934) 이흥과원	원기68년(1983) 원광상사

부언하자면 생산기관으로 볼 수도 있는 보화당은 의료약업기관으로 분류했으며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 등도 따로이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제 상기의 산업기관들의 발자취를 각각 자료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1. 총부농원

가. 설 립

원기9년(1924) 총부를 익산군 북일면 신룡리에 정하고 3,459평의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한 것이 총부농원 설립의 배경이 된다. 당시 전무출신들은 인근의 송학리와 만석리에 있는 동양척식회사 소유의 논을 빌어 농사를 짓고 한편 황무지 개간을 시작하였다. 원기12년(1927) 산업부 창립단을 조직하고 모든 산업활동을 주관하게 되었는 바, 원기13년(1928)부터는 개간한 땅에 과수, 원예, 양잠을 실시하였다. 원기21년(1936)부터는 양계, 양돈, 양토, 야채 재배를 추가하여 종합농장으로 성장하였으며 한때는 총부농장의 계란이 만주까지 수출되기도 하였다

8·15해방이후 6·25를 거치면서 고등원예도 하지 못하고 수농에 의존하다가 원기57년(1972) 원광원예원과 총부농장을 구분하여 원예원은 정원수, 관상수를 재배하는 고등 원예농장으로 성장하고 농원은 전농, 수농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다가 원광원예원은 원기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원수 및 묘목관리에 그치고 상주하는 교무가 없이 재무부에서 관리했으며 총부농원은 원기65년(1980) 이후부터는 축산은 거의 없어지고 원장이 직접 임원관리를 하다가 원기67년(1982) 4월 재무부에 다시 귀속되었다.

총부농원은 현재 원예원 4,944평, 논 16,370평, 밭 5,467평이다.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吳 昌 建(在謙)	男	1887. 10. 17	9.10. ~10. 5. 4	서무부장
2	李 東 安(亨天)	〃	1892. 12. 22	10. 5. 6~12.	〃
3	李 載 喆(載馮)	〃	1891. 2. 11	12. ~13.	〃
4	金 幾 千(聖久)	〃	1890. 2. 5	13. ~14. 3.	〃
5	宋 萬 京(相冕)	〃		14. 3.26~15. 3.26	농업부장
6	李 東 安(亨天)	〃	1892. 12. 22	15. 3.15~19. 3.26	〃
7	宋 慧 煥(東煥)	〃	1902. 9. 19	19. 3.26~23. 9.	농업부장·서무부장(24년 공석)
8	李 建 陽(建初)	〃	1910. 1. 28	24.10.20~25. 4.26	산업부장(명칭변경), 서무부장별도
9	李 東 安(亨天)	〃	1892. 12. 22	25. 4.26~26. 4.	
	李 載 喆(載馮)	〃	1891. 2. 11	25. 4.26~29. 3.26	30년 공석(29.3~30.2)
10	金 洪 哲(忠烈)	〃	1902. 9. 19	30. 2. 1~31. 4.26	

11	曺 元 善(炯煥)	男	1896. 1. 13	31. 4.26～32. 4.	
12	趙 曦 錫(熙燮)	〃	1910. 11. 17	33. 4.28～35. 4.	재무부·서무부·산업부장이 각각존대
13	成 丁 哲(丁鎬)	〃	1902. 11. 21	35. 4.28～37.	
14	趙 曦 錫(熙燮)	〃	1910. 11. 17	38. ～	이후는 재무부산하에 산업과장을 둠 * 이후는 재무부 직원 명부참고
15	尹 致 聖(致遠)	〃	1922. 4. 28	59. 3. 1～66.	총부 농원장(산업부장겸)
16	柳 正 完(珍玉)	〃	1931. 11. 29	67.11. ～	교정원 부원장겸 총부농원장

〈직원명부〉

직 책	법 명(호 적 명)	성별	생년월일	재직기간	비 고
농업부원	朴 大 完(正立)	男	1885. 1. 5	13. 3. 26	
〃	李 寶 局(載昇)	〃	1881. 10. 17	〃	
〃	李 昊 春(載天)	〃	1902. 2. 13	13. 3. 26～17. 3	
서 기	權 大 鎬(六龍)	〃	1910. 9. 22	14. 3. 26	
감 원	金 光 旋(成燮)	〃	1897. 9. 6	15. 3. 25	
서 기	宋 奉 煥(在哲)	〃	1910. 2. 12	〃	
감 원	金 洪 哲(忠烈)	〃	1902. 9. 19	16.	25년
원잠주무	丁 一 持(士仁)	〃	1892. 7. 1	22.	25.
주 무	朴 修 權	〃		22. 3. 26	
부 원	金 秉 哲(興烈)	〃	1902. 2. 30	〃	24. 25 주무
〃	田 九 一(流顯)	〃	1910. 6. 15	22. 3. 26	24년 전농주 능력
원잠주무	田 九 一(流頭)	〃	1910. 6. 15	25～28	
원잠주무	金 秉 哲(興烈)	〃	1902. 2. 3	25.	
서 기	朴 永 權(明德)	〃	1918. 2. 13	26.	
採 圓	李江連華	女	1879. 5. 17	26.	
계 원	全 水 石(龍煥)	男	1921. 10. 8	26.	
〃	李 善 友(平宰)	〃	1921. 11. 26	25～27	
〃	梁 泰 說(泰鎬)	〃	1924. 10. 16	24～26	
〃	宋 時 經	〃		26.	
원잠주무	金 秉 哲(興烈)	〃	1902. 2. 3	27.	
원잠조력	金 中 默(泰八)	〃	1921. 11. 12	27.	
부 원	田 九 一(流顯)	〃	1910. 6. 15	27.	
농원주무	〃	〃	〃	〃	
계 원	全 水 石(龍煥)	〃	1921. 10. 8	27. 4. 26～30	28.
〃	李 善 友(平宰)	〃	1921. 11. 26	27. 4. 26～30	28.
〃	丁 一 秀	〃		〃	28.
〃	邊 大 植	〃		〃	

계 원	安 修 根(修根)	男	1927. 10. 3	27. 4. 26		
〃	吳 致 運(斗煥)	〃	1924. 9. 15	27. 4. 26～30	28.	
〃	申 在 一(載珉)	〃	1928. 1. 19	〃	28. 29	
〃	牟 相 峻(壽童)	〃	1923. 11. 27	27. 4. 26		
과수계원	金 中 默(泰八)	〃	1921. 11. 12	27	서무부 소속	
주 무	李 建 春(建淑)	〃	1920. 12. 12	27. 4～29. 4	28.	
부 원	文 鳳 疇(鳳吉)	〃	1889. 2. 26	27. 4～30.	28. 29	
〃	金 貴 根(永春)	〃	1929. 3. 5	27. 4～30.	28. 29	
〃	宋 濟 局(浚時)	〃	1920. 3. 17	28. 3～29	28.	
〃	全 水 石(龍煥)	〃	1921. 10. 8	28. 3		
〃	李 善 友(平宰)	〃	1921. 11. 26	28. 3		
〃	丁 一 秀	〃		28. 3		
서 기	丁 慈 善(在善)	〃	1922. 9. 26	28. 6. 10		
주 무	丁 一 持(士仁)	〃	1892. 7. 1	28. 6. 10～		
〃	李 貴 生(範燮)	〃	1883. 2. 17	28. 6. 10～		
〃	金 中 默(泰八)	〃	1921. 11. 12	28. 6. 10～32.4.26	29. 32. 4. 24	
서 기	丁 光 薰(炳球)	〃	1917. 8. 30	28. 6. 10～31. 3.		
〃	李 恩 錫(俊行)	〃	1925. 1. 12	30. 2. 26		
〃	宋 圓 徹(金道)	〃	1926. 5. 8	29. 4. 26		
이 사	李 建 春(建淑)	〃	1920. 12. 22	29. 4. 26		
〃	田 九 一(流顯)	〃	1910. 6. 15	〃		
부 원	崔 正 均(昌植)	〃	1924. 4. 20	29. 4. 26～		
〃	李 空 田(順行)	〃	1927. 3. 24	〃		
〃	李 龍 局	〃		〃		
〃	吳 富 哲(在述)	〃	1919. 6. 2	〃		
〃	張 正 現(在洙)	〃	1923. 4. 2	29. 4.26～32. 4		
〃	李 百 徹(致炯)	〃	1927. 4. 9	29. 4.26～32		
〃	金 正 勇(三龍)	〃	1925. 11. 1	29. 4. 26.		
〃	金 永 連(永連)	〃	1929. 7. 18	31. 4. 26		
〃	李 亨 道	〃		〃		
부 원	徐 仁 皓	男		31. 4. 26		
〃	金 致 局(相國)	〃	1924. 4. 23	〃		
〃	安 主 一(聖俊)	〃	1926. 7. 26	〃		
주 무	金 中 默(泰八)	〃	1920. 6. 22	32. 4. 26		
건작키	梁 濟 乘(承鉉)	〃	1925. 10. 12	〃		
수농원	李 玄 一(鷄鉉)	〃	1920. 12. 26	〃		
부 원	安 主 一(聖俊)	〃	1926. 7. 26	〃		
〃	金 永 連(永連)	〃	1929. 7. 18	〃		

부 원	柳 春 修	男		32. 4. 26	
〃	金 在 定	〃		〃	
〃	金 悟 修	〃		〃	
〃	金 昌 峻(昌永)	〃	1911. 8. 10	〃	
〃	韓歸智華	女	1890. 10. 1	〃	
용 인	鄭 宗 喜(眞淑)	〃	1929. 5. 29	〃	
부 원	鄭 泰 飮(泰浩)	男	1918. 4. 28	32～34	
산업부주무	金 中 默(泰八)	〃	1920. 6. 22	33.	
작업주임	梁 濟 乘(承鉉)	〃	1925. 10. 12	33. 4. 26	
부 원	金 永 連(永連)	〃	1929. 7. 18	〃	
〃	申 正 秀(正洙)	〃	1924. 1. 30	〃	
〃	鄭 泰 飮(泰浩)	〃	1918. 4. 28	〃	
〃	安 主 一(聲俊)	〃	1926. 7. 26	〃	
〃	崔 俊 才(月海)	〃	1927. 12. 17	〃	
공 양 원	柳 寬 眞(蔡順)	女	1916. 3. 13	〃	
부 원	李 光 玉	男		〃	
〃	李 平 日	〃		〃	
〃	崔 奎 學(順伊)	女	1930. 4. 7	〃	
	鄭 宗 喜(貞淑)	〃	1929. 5. 29	〃	
주 임	韓歸智華	女	1890. 10. 1	〃	
부 원	金 光 昌(基豊)	男	1930. 5. 13	34.～35	
〃	鄭 泰 飮(泰浩)	〃	1918. 4. 28	〃	
〃	金 永 連(永連)	〃	1929. 7. 18	〃	
〃	崔 俊 才(月海)	男	1927. 12. 17	〃	
〃	文 海 鎭	〃		〃	
〃	梁 濟 乘(承鉉)	〃	1925. 10. 12	〃	
공 양 원	韓歸智華	女	1890. 10. 1	〃	
〃	李 一 華	〃		〃	
〃	李 性 露(義淑)	〃	1925. 6. 13	〃	
부 원	李 平 日	男		34.	
〃	吳 哲 秀(順禮)	女	1879. 2. 30	〃	
〃	金 大 觀(德順)	〃	1935. 3. 24	〃	
〃	李道信華(春山)	〃	1891. 7. 30	〃	
〃	金 智 行(程敎)	〃	1928. 5. 5	〃	
과 원 계	吳 致 運(斗煥)	男	1924. 9. 15	35.	
부 원	金 永 連(永連)	〃	1929. 7. 18	〃	
	서 명 권	〃		〃	
	오 광 택	〃		〃	
	朴 德 濟	〃		〃	

산업부차장	梁泰說(泰鎬)	男	1924. 10. 16	36.		
부원	裵光現	〃		〃		
〃	池海元(海元)	〃	1912. 8. 2	〃		
〃	徐明權	〃		〃		
공양원	李三省華	女	1898. 5. 15	〃		
부원	金洛洙	男		〃		
〃	吳海仁(海金)	〃	1932. 12. 2	〃		
서기	金壯權(柱洙)	〃	1931. 11. 30	37.		
부원	張道恩	〃		〃		
〃	金世潤	〃		〃		
〃	李鏡明	〃		〃		
〃	姜學善	〃		〃		
차장	李三省華	女	1898. 5. 15	〃		
서기	金貴根(永春)	男	1929. 3. 5	〃		
차장	梁泰說(泰鎬)	〃	1924. 10. 16	〃		
서기	金壯權(桂洙)	〃	1931. 11. 30	〃		
부원	徐明權	〃		〃		
〃	張道恩	〃		〃		
〃	金世潤	〃		〃		
〃	李鍾明(鍾丙)	〃	1933. 3. 5	〃		
〃	金南植	〃		〃		
〃	姜永善	女		〃	원기58까지 재무부	
〃	李三省華	〃	1898. 5. 15	〃	직원명단 참고	
산업부농감	金秉哲(興烈)	男	1902. 2. 3	59. 3. 1	59.	
〃	金昌業	〃	1907. 2. 28	〃		
전작	김정운	女		〃		
간사	김태원	男		〃		
〃	鄭仁德(德柱)	〃	1958. 10. 25	59. 3. 1~61.		
원예원총무	李成澤(和澤)	〃	1943. 3. 13	59~60		
원예원주사	李南賢(南基)	〃	1949. 7. 14	59.		
부원	안명정	〃		59.		
간사	金禪璟(炳喆)	〃	1954. 3. 17	59.		
〃	崔永眞(文彩)	〃	1953. 7. 1	〃		
	이성록	〃		〃		
	김은광	〃		〃		
간사	柳容眞(光秀)	〃	1956. 9. 25	〃		

간 사	김 정 운	女		60. 3. 1	
간 사	박 상 규	男	1960. 2. 23	〃	
차 장	權 俊 圓(在完)	〃	1940. 4. 25	61~62	
과 장	金 文 澤(文斗)	〃	1941. 10. 1	61.	
주 임	朴 仁 道(基玉)	〃	1946. 1. 26	63. 4	
서 무	安 世 雄(天容)	〃	1946. 7. 26	62.	이하 재무부 명부 참조
감 원	柳 三 恩(在玉)	〃	1933. 1. 25	62. 63~65	
농 감	高 大 奉(日錫)	〃		62. ~66	
고 용 인	朴 明 仁	女		62.	
간 사	鄭 長 燮	男		63~64.	
고 용 인	朴 載 仁	〃		63~64	66재무부로 통합 운영

〈작무분담 현황〉(원기59년~66. 4월 총부농원과 원예원 분리운영시)

〈총부농원〉

직 책	법 명	직 무	비 고
원 장	尹 致 聖	대외 섭외사무, 산업원 일체지도 감독, 영농일체지도, 인부관리 주관, 방화방범관리 책임, 알봉묘지관리 주관, 창고관리 주관, 대지료 수납사무 주관	
수농주임	金 秉 哲	수농업무 주관, 축산관리사무, 농기계관리 주관, 총부임야관리, 알봉묘지관리, 인부관리 사무	
전농주임	金 昌 業	전농관리 주관, 채소관리 주관, 수농보조사무, 농기구관리, 인부관리, 농원청소 주관, 농원섭외	
전 작	김 정 운 박 순 애	전작 일체관리, 채소관리 주관, 식당조력 사무 청소조력 사무	
간 사	鄭 仁 德 鄭 誠 浩	영농 보조사무, 농원오물 정리사무, 축산관리사무, 청소 및 연락사무	

〈원광원예원(농원소속)〉

직 책	법 명	직 무	비 고
총 무	李 成 澤	원장보좌사무, 기안사무 및 기획사무, 운영 및 원예기술지도감독에 관한사무, 부원생활지도	
주 사	李 南 賢	총무보좌사무, 외무 및 경리출납에 관한 사무, 각종문서 분류 및 취급에 관한 사무, 부원 생활지도, 인부 및 농장관리 사무, 기타 업무	
부 원	안 명 정	파종상관리및 주사사무 보조	
	金 禪 瓊	묘포관리 및 작업주관	
	崔 永 眞	묘목판매 및 하우스관리	
	이 성 록	삼상관리 및 농기구 일체관리	
	김 은 광	묘목이식관리	
	柳 容 眞	묘목 병충해 관리	

다. 현 황

연 도	생산품목 및 사업현황	수익금	지출금	비 고
9. 4. 29	불법연구회 규약에 농업부 출범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시 7부 둠 (서무, 교무, 연구, 상조조합, 농업, 식사, 세탁부)
9. 8.	총부 농장시작 총부부지 3,459평 매입 및 개간			서중안회장 3천원과 건축비 6백여원 의연 각처 회원으로부터 8백여원 의연(동양척식회사소유의 송학리, 만석리 논 임대농사)
13.	농업부 창립단 조직(송만경 주선)			자본금 만원이 달할 때 토지를 매입하여 무산자에게 분배하고 그 수익금으로 공부시키도록 함
13. 10. 16	복숭아 과수원 시작(桃木 200본 매입)		1본당 20전씩	박대완의 의견을 받아들려 일본인 西本壽平許에게 복숭아 나무를 매입하여 대각전, 정화원 위치에 심음
13.	임대농사 850평			송만경의 권유로 북일면 현영리 이동진화씨 소유의 논을 임대하여 농사를 지었으나 수확량에 비해 가격이 하락해 손해보다
13.	황등 森精米所 미곡판매			50석을 97전5리씩 매입하여 다음해 2월에 1원 20전에 매각
13. 2	桑園組合인수 300여평 6800본 植樹 (현 유일정미소 위치)			이동안외 3인이 발기하여 시작했었던 조합. 고치값이 폭락하여 경영난에 처하자 농업부에서 이익금 1할을 주기로하고 인수
14. 3	桃園間種(生地黃·서과)植樹 복숭아 판매	26원 163여원	60여원	남·녀단을 구별하여 4:1의 분배로 개인성적에 수록(후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성적 사정)
	양잠수익	390원	120	양잠수익금으로 부근임야 3천평 매입(120원)
14.	양잠실건축	우비290.42 양잠390.89 농사2081.32 잡수입295.47	인 건 비 및 재료비 식당등 2545.02원	순이익 411원 98전 건축비 이공주 500원 회사

15.	양잠가격 폭락으로 위탁경영			이대교외 몇분에게 급여하여 분배하기로 결성
	作農	1290여원 (순이익 465.79원)		2400여원의 수익이 예상되었으나 홍수로 인해 큰 손실
16.	作農 양잠	1400여원	1620여원 134원	적자200여원 *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作米商 건의(1~2년후 갚도록하고 입선토록 훈시-대종사)
	인재양성단소관도원(桃園)			양잠은 인재양성단과 함께 운영키로 결정 복숭아 35,000개를 예상했으나 병충해로 15,000수학
	人材養成團所官桃苗 수박재배	120여수	20원	鄭熙永씨 소유의 총부동편 산 4,000평을 매입개간하여 농업부, 양잠부, 회중학원이 공동 재배
18.	양잠 및 도원풍작 산업부발족	450貫500匁		수량은 작년보다 적으나 값이 비쌈, 복숭아 4만개 이상 싸다(포장) 산업부장 송례환
19.	當年度 농업부 총수입(생산품목은 양잠, 복숭아 농작등) 투우대회 우승	851원75전 70원		 10월 22일 이리축산 共進會주최. 鬪牛대회 을조 1등
20.	농업부 총수입(생산품목은 去年과 같음)	919원61전		
21	알봉에 票本 700주 植樹 총부앞 桃木 1,000주 각종 묘목, 약초, 菜種재배			대각전아래 도목 350주 산업부상목 8,000여주(서무부) 몇년전부터 매년 5,600백원 수입(원기 15년 식수)
	산업부확장 및 신축		600원	산업부 자금 1만원 투자하여 보화당 건립확장후 양돈, 토끼 수천두 사육과 菜圃경영을 위한 기술자 초빙

22	토지 1461평 매입 양계 18간 축조 계란 만주 수출 산업부 총수입	 4541.27원	600여원	신용리 30번지(산업부근처) 원기19년에 양장값 폭락으로 총부상원과 債金320원 15전을 구내 사람들이 인수하여 공동출역 결과 원기21년에 193.15원. 원기22년에 45.49원. 원기23년에 89.18원의 수입으로 적자를 보상하고 8.47원이 저금됨(모든 수익은 개인성적에 기재하고 저금은 육영사업)
23.	총부부근밭 매입경작 (총부소속)			총부부근 익산군 신기부락 밭을 매입하여 산업부 경작지로 이용케 함
25	養鷄廢止			양계가 年來成績으로 보아 이익이 없자 서무부 창고와 변소로 移建
26	果園收入	1,482.82원		25년후 산업부의 총부부채는 (1,302.34원)임 원기26년 원잠주무 김병철이후로는 양계에 대한 직명이 없음. 전농, 수농, 과수, 축산이 주생산품임
27	산업부 농업부원 절약강화 果園收入	 724.56원		총부농업주원 일동 총부로 합동하여 식생활함으로써 경비지출 절약, 생산확충 강화
28.	과원수입	1,250.00원		
29.	과원수입	1.200.000원	1.302.34	
30				
31	작농수입 과원수입	293,306.50원 3,705.00원		
32	作農收入 과원수입	116,533.9 213,353.29		산업부자산 축산:17,429원, 정미소:737,059.94원, 과원:10,619.17원
33	잠실개조 과원수입	 241.524		유일학림의 총부분가로 인해 식당으로 수리되어 사용됨 財務部 損益對照表
34	畜産수입 재무부 과원수입	10,735원 246,300,000원		 영산, 삼례, 총부 과원 포함

35	산업부 부활			6. 25사변이후 산업부란 명칭으로 난중 유일의 총부 殘影이 되어오다가 총부 사무기관이 복구됨에 따라 서무부, 재무부의 직영하에 있던 정미소와 농원을 산업부에 귀속시켜 산업 일원화 시도(이전에는 주로 농업담당)
	재무부 수입중 총부과원 산업부	 386,400,000 786,206.33		
36.	재무부 수입중 과원수입 정 미 소 작농(산업부)	 5,000,000 2,166,540 1,700,000		
37	재무부 수입중 과원수입 이홍과원수입 작농 수농 수입	 15,000 37,000 41,200		
38	산업부 도원에 익산보화원 건축			익산보화원장 송혜환의 노력으로 산업부 도원에 원사를 지어 農產, 畜產 등 각종농업기술 지도목적(현 원광대 중강당 위치)
38	재무부 수입중 과원수입 작농수입 이홍과원 정미소	 23,695원 51,597원 20,000원 54,190원		
39~56	수농, 전농, 축산, 토지관리외 별다른 내용 없음			
57~72	수농, 전농, 채포, 축산, 원예			재무부에서 총부농원 원광원예원 구분 운영

라. 과제와 전망

원기13년(1928) 불법연구회 자산내역을 보면 토지 20,422원1전, 건물 9954원54전, 양돈 19원4전, 삼원 565원94전, 가옥 등 857원82전 이었다. 초기교단의 기금은 거의 作田과 作畓 그리고 축산 운영이 전부였기 때문에 총부농원은 교단수익의 전부였다. 농원이 발전함에 따라 각종

사업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반면에 총부농원의 기능은 약해졌다.

현재 총부농원은 총부구내를 가꾸는 원예작물과 구내지급을 위한 식량생산에 그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초기교단의 중추적인 역활을 수행해 왔던 총부농원의 기능이 쇠약해짐에 따라 자급자족에 의한 기관운영 및 총부의 산역사를 지켜왔던 영육쌍전, 주경야독의 배경이 소멸되어 감이다. 아울러 당시 수익사업이었던 뽕(누에고치), 복숭아, 논농사, 밭농사 그리고 선진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고 있는 아카시아, 엿, 유일정미소, 고무공장 생활에서 얽힌 사연들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고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문화의 자취를 소중히 하듯 총부는 기관의 확대기능 보다 선진들의 흔적과 정신을 잘 보관하는 기능(마음의 고향)이 필요하다. 현재 총부는 좋은 정원수와 잘 정돈된 잔디가 있지만 아카시아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작은동산은 없다. 또한 초창기 수익사업이였던 각종 과수, 원예, 논, 밭, 엿장사중 어느 한 분야라도 발전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엿의 경우-고급과자생산공장) 한편으로는 총부구내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뿌리를 통해 선진들의 숨결을 들을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다.

2. 영산과원

* 주소 :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용리
* 설립년도 : 원기13년(1928)

영산과원은 영광지구 農業部 創立 聯合團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원기13년(1928) 4월 8일 영광 농업부 창립연합단은 團金을 모으기 위한 변출책으로 주변의 밭과 논에서 일하여 그 수익금으로 창립단 기금을 조성키로 결정하고, 男子界에서는 劉巾을 중심으로 논 8두락을 女子界에서는 李願華를 중심으로 밭 6두락을 작농하여 순이익 110여원을 조성했다. 동년 11월 16일에 동 연합단의 가결로 同 地方 林野 4정보를 매입 개간키로 하고 李完喆, 李亨局의 단원들의 열정으로 薪炭을 代採하여 매각한 30여원의 순이익을 얻어 길용리 산판 매입시 引渡했다. 원기14년(1929) 전년도에 매입한 산판 약 6000평을 개척하여 일부는 밭을 만들고 나머지는 복숭아묘목 1,000본을 植樹했다.

원기21년(1936) 수확이 시작되어 매년 5~6백만원씩 수확되었으며 그해 밤나무묘목 400주와 복숭아묘목 200주를 추가 植樹하였다. 그리고 원기20년(1935) 1월에 길용리 지부 법당(65평) 신축시 총 공사비 3,300여원중 830원을 회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과수수입으로 매년 충당케 되었다.

6·25사변 후 영산지부장 李中和, 총무 李善友 등의 직원일동이 대각전 수리 및 언답 과수원 등을 완전 정리했으며 제2차, 제3차 방언공사 후 점진적으로 과수원이 축소되고 그 일대를 영산선원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3. 황등농원(竹寺果園)

* 주소 : 전북 익산군 황등면 죽촌리
* 설립 : 원기15년(1930)

황등농원(일명 竹寺果園)의 설립배경은 원기15년(1930) 전삼삼의 회갑시 절약금 8원과 공익부 창립을 위해 공익기금, 즉 학교 병원 유치원 등 시설하여 本會의 사업가와 女子界에게 敎養 및 保養을 위한 기금조성에 223명이 동참하여 290원75전이 형성되자 이를 공익금 이라고 명칭하고 수시로 모아진 기금을 통합하여 박사시화 소유의 황등면 죽촌리 산 1,500여평을 105원51전에 인수했다. 원기16년(1931) 6월 5일에 공익부 장래 사업계획으로 황등면 죽촌리 崔昌五소유의 임야 1,905평을 135원35전에 매입, 同地 崔像淳소유 임야 3,690평을 104원51전에 매입했다.

원기21년(1936) 3월에 황등수리조합소관 腰橋湖 간석지가 경매됨에 따라 총부 幹部會에서는 팔봉면 265 논 8,400평(평당 1원23전)과 황등면 황등리 12번지 논 3,600평(평당 96전2리), 同所 16번지 4,212평(평당 95전6리)을 구입하게 되었다. 同年 산업부에서는 각 지역에 흩어진 농원 및 임야에 대대적으로 유실수를 심었다(그당시 황등면 죽촌리 밤나무 2,400주, 알봉 밤나무 700주, 연구실 밭 복숭아 1천주, 영광 길용리 복숭아 200주, 만덕산 감나무 4,000주). 아울러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8천평의 임야, 밭을 매입하고 황등면 죽촌리 밤나무 밭사이에 끼인 他人의 밭 1,350평을 매입하여 밤나무 100본을 증식하였다.

원기23년(1948) 10월에 황등면 황등리 간척지중에 상조부소관 9,782평과 서무부소관 8,400평을 평당 1원45전(구입시 평균 1원15전)에 賣渡하였다.

원기48년(1963) 2월 황등 밤나무과원이 수년동안 용도가치를 잃게되자 백미 560석에 매도하여 代土轉換을 시도했다.

〈역대임원〉

직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주무	李 建 陽(建初)	男	1910. 1. 28	31. 2~32. 3	
부원	金 正 貫(鎬炳)	〃	1931. 10. 22	33. 2~37. 3	
〃	金 壯 權(桂洙)	〃	1931. 11. 30	34. 4~35. 3	

4. 만덕산 농원

* 주소 :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산 14-1
* 설립 : 원기15년(1930)

가. 설립과정

만덕산농원은 교단 초선의 성지로써 원기15년(1930) 임야 50정보를 매입 성지수호와 산업생산의 훈련도량의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설립당시 이공주교무는 임야 50정보의 매입대료 20원을 회사하였으며 이준경, 이보국, 정일지, 전구일 등 제씨가 초기 개척에 심혈을 경주하였다.

원기17년(1932) 개간임야에 감나무 5,300주를 심었으며 원기21년(1936)에는 15,000평을 개간하여 다시 감나무를 심었다. 그뒤 농원은 별투자없이 유지에 급급하다가 원기58년(1973) 종법사 특별유시로 농장개발이 활성화되어 표고재배, 인삼재배, 사슴사육 등 고등농장으로 변모하였으며 전주교구의 훈련도량으로도 개발되었다.

〈설립당시의 규모〉

* 건물 : 1동 5평(연건평)
* 기타 부동산 : 임야 50정 59묘

나. 확장 신축 및 이전

구 분	연월일	주 소	대지	건 물		시설경비		
				용도	평	총액	기금	부채
식당숙소		참나무 조짚지붕		식당	8			
구법당	52	朴樂天先生 建立	200	숙소 법당	25			
식당건축	61. 4~8	한식·함석	50	식당 지실	21	120		
전기가설	63	새마을 사업일환				30		
시외버스개통	66. 3. 23	버스상달까지 개통						
中吉교당건축	67	中吉里 中達	200	법회	51	500		
전화가설	67	삼례교당 회사				120		
통달교준공	69. 7							

다.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임기간	비 고
	張 正 現(在洙)	男	1923. 4. 2		
	梁 景 瑞(箕錫)	〃	1902. 2. 11		
	丁 一 持(士仁)	男	1892. 7. 1	16~19.4	부 원
	李 寶 局(載昇)	〃	1881. 10. 17	16~17.2	
	田 九 一(流顯)	〃	1910. 6. 15	17.2~21.2	
	韓 先 根	〃			
	梁 濟 乘(承鉉)	〃	1925. 10. 20	58. 4. 18~	

라. 역대임원

번호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임기간	비 고
	金 光 旋(成燮)	男	1897. 9. 6		
	宋 奉 煥(在哲)	〃	1910. 2. 12		
	吳 宗 泰(孝順)	女	1913. 12. 20		
	盧三九華(永淑)	〃	1987. 2. 27		
	李 載 文(載達)	男	1908. 4. 19		
	朴 元 吉	〃			
	朴 明 旭	〃			
	金 秉 哲(興烈)	〃	1902. 2. 30		
	金 碩 元(浩源)	〃	1937. 5. 10		
	尹 致 聖(致遠)	〃	1922. 4. 28		
	張 正 現(在洙)	〃	1923. 4. 2		
	金 亨 模(姬順)	女	1940. 10. 22	58. 5~64. 6. 28	
	崔 性 養(辰順)	〃	1948. 2. 3	64. 8. 10~66. 5. 30	
	金 中 觀	男	1954. 12. 2	66. 9. 8~69. 1. 26	재가로 전환
	梁 潤 誠(今順)	女	1955. 4. 8	69. 1. 24~70. 2. 6	
	梁 世 晶(貞禮)	〃	1954. 12. 5	69. 3. 7~70. 12. 30	
	金 德 信(明仁)	〃	1928. 5. 1	72. 4. 9~	
	尹 常 原(宗基)	男	1950. 11. 18	70. 1. 23~72. 1. 21	
	高 淨 鳳(祿賢)	女	1955. 1. 20	70. 2. 14~71. 3. 24	
	金 大 運(順淑)	〃	1950. 6. 15	72. 2. 9~	
	申 平 淑(永徹)	男	1954. 9. 5	72. 1. 27~	

마. 현 황

1) 시설규모

가) 토지 : 대지 : 300평, 전 : 2000평, 임야 : 392,540평,
기타(초지등) 30,000평

나) 건 물

건물명	평	구 조	비 고
法 堂	25	흑벽돌 기와집 원기52년	故 朴衆天先生建立
食 堂	21	木造 함석지붕 원기61년	工事費 120만원
倉 庫	20	벽도르 스레트	

2) 자산 내역

총계 : 1억원(부동산 : 1억원)

3) 임직원 계 : 8명(남 : 6, 여 : 2)

바. 연도별 전무출신 배출자

번호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 천 인	비고
1	金 瑞 鶴(吉萬)	男	1948. 11. 2	48. 12. 18	49. 3. 19	梁 濟 乘	
2	李 聖 圓(建平)	〃	1955. 8. 6		59. 1.	黃 周 男	
3	尹 常 原(宗基)	〃	1950. 11. 18	56. 2. 1	65. 1.	丁 道 允	
4	李 眞 道(敬淑)	女	1945. 3. 17	59. 10. 11	62. 1.	尹 周 現	

사. 연도별 사업현황

연 도	경작및 사업품목	수익금	지출금	비 고
16년	감나무 5,300수			구타원 종사의 투지로 洪谷山 일대 매입하여 유실수 심기 시작
32년				崔相玉가족이 상주하다가 安聖學이 관리, 6. 25사변으로 중단
52년				경영난으로 팔자고 했으나 정산종사의 不許와 朴樂天의 희사가 있었다(사업보고서 처음 등장).

56	표고버섯 재배시작			낙산 박락천의 착안
58. 4	표고종묘접종 15,000본	1,100,000원		향후 3,4년간 수입은 낙산과 반분키로 했으나 전액 회사
59	표고버섯접종 10,000본	1,000,000원	작업시 61,400원 토지매입금 242,611	논 250평, 밭 1,124평 매입
60	표고 6500본 접종 표고수학 4년생 잣나무 식수 통일찰벼 2두락 풍년	3,003,830원	종균 47,800원 경비:434,575원 토지매입340,000	밭 1,260 매입 조지석교도의 묘목 2,000본 회사 연 30석인데 60석 수확
61	표고 160관 수확	2,853,430원	경비 259,855 토지340,000	밭 1,280평 매입
61	암송아지 2마리구입		우사건축1,014,400	처음으로 총부유지 성금 50만원 보냄
62	낙엽송 5,000식수 밤나무 150식수 은행 150식수 표고수익	3,395,080원	경비:316,790	동부식수 도움
63	낙엽송 5000식수 표고접종 6,500본 은행나무 85식수 대추나무 100식수 표고수확	2,821,000	경비 864,395	총부식수 도움
64	은행나무 191식수 표고수익 표고접종 6,500본 약초재배 묘목 구입 양봉사업 시작(12월)	1,603,960원	비용110,840 한봉2군(225,000원)	 재무부 주관하에 총부 송대로 운반 재배 순창 팔덕의 김대형에게 구입
65	표고수확 호도나무 110식수 한봉 10군 매입	3,130,100	비용278,330 1,250,000원	 순창 김대형에게서 구입(성공치 못함)
67	표고수익 축산수익 약초수익(白지, 枸杞子)	1,276,000 2,357,000 280,000	비용 129,500 비용 642,230 비용 45,500	 소값파동으로 전부처분 약초는 첫 수확
68	표고수익 초지조성 3만평			
69				

70	표고접종 7,000본 초지추가 확장 1정보 저수지 완공 접종용기구구입 오미자250평식재(10월)		경비 200만원 110만원 30만원	 국비 3억3천3백만원, 주민3천7백만원 농원 200만원 종균접종요드릴 2대, 기계톱 2대
71	厚朴나무 700식수 표고재배용 차광망설치 건조기, 양수기호스 등 흑염소사육 6마리		30만원 250만원	
72	표고수학 표고접종 4,000본 후박나무 670(4월) 봉불식(9월 9일)	672만원		

아. 과제와 전망

현재 만덕산 농원의 현황은 수농, 감나무, 밤나무, 후박나무, 흑염소, 표고버섯, 잣나무, 은행나무, 약초(구기자, 작약), 감잎차 등이다. 만덕산 농원을 생산 자립기관으로써 무공해, 作農, 水農 특히 특용작물 재배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교당, 교구, 아파트)와 직거래 추진과 이에 대한 산업훈련 도량으로써 생산과 노동을 통해 훈련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문훈련 프로그램의 활용과 그 실행을 위한 인력수급이 절실하다.

5. 이홍과원

가. 설립배경

이홍과수원은 원기19년(1934) 봄에 영산지부 임원들의 근로저축금을 기본삼아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8,000평을 매입하게 되었다. 동년 가을에 當地 要人 이호춘의 발의로 6,000여평을 개척하여 복숭아, 사과, 감 등 과수를 식수했다. 그뒤 과원이사였던 김홍철, 주무 양경서, 김형

진 등이 운영해 오다가 수년간 계속되는 風災, 虫災 등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원기39년(1954) 초대 개척책임자였던 이호춘이 몇몇 동지와 뜻을 합하여 인수할 것을 건의하자 원기39년(1954) 3월 6일 원의회에서 이를 승인했다. 신임이사 이호춘은 과수이외에 부업으로 양계장을 설치하여 교단경제에 이바지 해왔으나 그후 여러가지 형편으로 운영난를 겪게 되었다. 원기44년(1959) 제3회 임시원의회에서 이사 이호춘을 출두케 하여 적자운영의 경위를 들은 후, 인수계약 만기일인 원기46년(1961)까지 운영케 했다.

원기46년(1961) 동화병원 차금을 변상키 위하여 이홍과원을 신흥지부에(쌀 100석) 정화매도했으며 남은 자금과 정산종사 장의비를 합하여 원기47년(1962) 12월에 총부 유지답 1,200평을 매입했다.

〈설립당시 규모〉

* 주소 : 전남 영광군 묘량면 신천리
* 부동산 : 약 8,000여평(원기38년도 재무부 자산 내역 551,918원 35전)

나. 임원 현황

〈임원현황〉

직 책	법 명(호 적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이 사	金 洪 哲(忠烈)	男	1902. 9. 19	30.	개간직후
주 무	金 亨 眞	〃		29. 4. 26~31	
감 원	田 現 闢(田氏)	女	1890. 9. 9	31~37	
공 양 원	金平數華(貴禮)	〃	1898. 8. 25	29. 4~33. 4	
부 원	李 玄 一(鷄鉉)	男	1920. 12. 26	27.3~31.3	
				32.2~34.2	
주 무	崔 俊 才(月海)	〃	1927. 12. 17	29.3~33.4	
간 사	金 水 石(龍煥)	〃	1920. 11. 14	32.3~34	
주 무	李 亨 局(亨淑)	〃	1899. 11. 23	28. 2~29. 2	
기 사	李 善 友(平宰)	〃	1921. 11. 26	34. 3~35. 3	
부 초	鄭 泰 飮(泰浩)	〃	1918. 4. 28	34. 4~37	
주 무	梁 景 瑞(箕錫)	〃	1902. 2. 11	36. 3~37	
주 무	李 昊 春(載天)	〃	1902. 2. 13	20. 3~27. 3	
책 임	〃	〃	〃	39~44	임대 책임경영

다. 사업현황

연도	생산품목 및 사업현황	수익금	지출금	참 고
19	매입및 개척사업 사과, 감, 복숭아, 등 植樹			6,000여평 개척
36	복숭아, 감, 사과 등 과수품목	37,000원		원기36년 재무부 대차대조표
39	상 동	20,000원		원기37년 재무부 대차대조표
39	상 동			年來로 風災, 虫災로 난관. 이호춘의 諸氏에게 임대 운영
40	과수품목이외 양계시작			이호춘의 난관극복 노력
46	신흥교당에 매도			신흥지부 유지 사업으로 전환

6. 수계농원

가. 설립과정

수계농원은 원불교의 창립정신을 바탕으로 靈肉雙全 理事並行의 생활종교로서의 이념을 구현하고 공익사업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총부유지금과 교당유지 적립금 약간을 기반으로 세워진 생산기관이다.

설립당시 이동안, 조갑종 등이 소태산대종사의 명을 받아 기지를 물색하였으며 당시 상조조합기금 1,097,523원으로 8만평의 야산을 매입하였으며 매입한 농원에 감, 밤, 복숭아, 사과 등의 과수를 심었다.

척박한 야산개발로부터 시작된 농원개척은 일반밭작물, 과수, 양계, 양돈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여 매각처분이 논의 되기까지 하였으나 정산종사의 만류로 다른 방도를 궁리하던 중 원기44년(1959)에 은산 김현관교도의 투지로 인삼재배에 착수하였으며 그 수익금으로 은산육영재단이 설립되어 교단의 인재양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원경제의 기반도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설립당시 규모〉

* 주소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산 13
* 설립년도 : 원기24년(1939)년 10월
* 대지 : 1,000평

* 건물 : 5동 70평(연건평)
* 기타 부동산 : 8만평

나. 확장 이전 신축

구분	연도	주 소	용 도	평수	경 비
이전신축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3	사무실(목조기와)	24	10만원
		〃	거실(목조초가)	17	8만원
		〃	돈사(목조초가)	21	2만원
		〃	헛간(목조초가)	8	18천원
		〃	창고(목조초가)	6	1만원
신축	50	〃	돈사(기와벽돌)	30	10만원
〃	52	〃	잠실(스레트 흙벽돌)	60	3백만원
〃	52	〃	창고(스레트 벽돌)	55	4십만원
〃	54	〃	여자숙소(스레트벽돌)	30	36만원
〃	56	〃	돈사(스레트벽돌)	40	33만원
〃	58	〃	돈사(스레트벽돌)	20	33만원
〃	60	〃	〃	130	36십만원
〃	62	〃	물탱크(벽돌콘크리트)	4	16십만원
〃	63	〃	법당(슬라브)	47	8백만원
〃	66	〃	식당창고(스레트벽돌)	25	3백만원
〃	71	〃	식당(슬라브)	50	23백만원
〃	71	〃	사슴사(스레트 슬라브)	37	13백만원

다.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金 碩 奎	男		26. 4~28. 10	주 무
2	李 亨 局(亨淑)	〃	1899. 11. 23	29. 2~34. 5	과원주무
3	梁 泰 說(泰鎬)	〃	1924. 10. 16	35. 5~35. 4	〃
4	李 善 友(平宰)	〃	1921. 11. 26	35. 5~36. 9	〃
5	池 海 元(炯石)	〃	1912. 8. 2	36. 9~43. 10	이 사
6	宋 日 煥(周鉉)	〃	1907. 1. 5	43. 11~44. 5	〃
7	權 正 進	〃		44. 6~47. 5	원 장
8	池 海 元(炯石)	〃	1912. 8. 2	47. 10~71. 2	〃
9	李 百 徹(致炯)	〃	1928. 1. 27	71. 3~	〃

라. 역대 재직 교역자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교 무	李 亨 局(亨淑)	男	1899. 11. 23	27. 4～28. 2	과원저기25～26
〃	宋 碧 照(寅驥)	〃	1876. 9. 11	27. 6～31. 4	29～31
〃	李 建 陽(建初)	〃	1910. 1. 28	28. 4～29. 6	과원주무 27.
순 교	盧三九華(永淑)	女	1897. 2. 27	28. 9～30. 2	
부 원	牟 相 峻(壽童)	男	1923. 11. 27	28. 2～30. 2	과원부원
감 원	吳 哲 秀(順禮)	女	1879. 2. 30	26. 4～31. 4	
부 원	金 日 鉉(周鉉)	男	1907. 1. 5	25. 4～26. 4	
교 무	全 二 昌(在禮)	女	1925. 10. 3	32. 4～33. 4	
부 원	金 永 連(永連)	男	1929. 7. 18	29. 4～32. 4	
〃	申 普 根(炳雨)	〃	1928.	33. 4～37. 4	
외무원	吳 富 哲(在進)	〃	1919. 6. 2	25. 4～27. 4	
부 원	鄭 碩 德(宗吉)	〃	1923. 8. 19	34. 4～38. 4	
공양원	全 光 順(福順)	女	1925. 2. 9	31. 4～32. 4	
감 원	張 善 擧(末禮)	〃	1917. 12. 11	37. 4	
감 원	尹 致 聖(致遠)	男	1922. 4. 28	27. 4～30. 9	
주 무	丁 光 薰(炳球)	〃	1917. 8. 30	30. 1～30. 9	
교 무	李 貴 生(鍾燮)	〃	1883. 2. 17	31. 4～32. 10	
〃	吳 宗 泰(孝順)	女	1913. 12. 20	32. 4～32. 12	
〃	成 丁 哲(丁鎬)	男	1902. 11. 21	31. 5～32. 4	과원주무
〃	崔修仁華(壽華)	女	1889. 4. 27	35～37	
내감원	韓歸智華(韓氏)	〃	1890. 10. 1	35～36	
〃	權 正 音(今順)	〃	1920. 11. 15	31. 1～33. 1	
순 교	金 奉 淑	女		32. 4～34. 5	
고 문	丁 一 持(士仁)	男	1892. 7. 1	37. 3～39. 4	과원감사
부원장	梁 濟 乘(承鉉)	〃	1925. 10. 12	38. 3～58. 3	
총 무	金 光 昌(基豊)	〃	1930. 5. 13	44. 9～44. 12	
〃	羅 聖 和	〃		45. 6～47. 10	
감 원	金 玄 淑	女		40. 4～44. 12	
교 무	金 中 默(泰八)	男	1920. 6. 22	45. 1～45. 12	
감 원	庾 善 勤	女	1912. 11. 17	45. 4～58. 4	
재 무	趙 智 聖(銀衡)	男	1934. 1. 2	46. 3～52. 4	
주 무	曺 善 勤	〃		46. 3～46. 12	
총 무	李 亨 遠	〃		48. 3～48. 12	
교 무	黃 直 平(熙薛)	〃	1932. 3. 17	49. 3～50. 2	
교 감	李 中 和(住衡)	〃	1902. 8. 19	51. 3～53. 4	
교 감	尹 正 運(斗炳)	男	1900. 2. 9	51. 6～56. 4	

교 무	李 大 光(榮植)	男	1938. 2. 28	51. 3~54. 9	
총 무	金 文 澤(文斗)	〃	1941. 10. 1	54. 3~59. 4	
축산주임	李 俊 一(秀雄)	男	1941. 5. 15	56. 3~60. 3	
교 무	李 安 秀(廷淑)	女	1940. 3. 1	57. 3~59. 4	
총 무	金 正 峻(淸人)	男	1943. 1. 20	58. 2~66. 12	
잠업주임	金 曉 明(明煥)	〃	1947. 1. 14	59. 3~61. 3	
축산주임	姜 德 煥(德周)	〃	1947. 1. 1	60. 3~62. 2	
작농주임	李 慧 徹(文澤)	〃	1948. 5. 28	61. 4~62. 3	
교 무	金 明 學(永會)	〃	1948. 1. 23	62. 5~63. 2	
축산주임	李 南 賢(南基)	〃	1949. 7. 14	64. 3~65. 3	
교 무	李 施 仁(聖子)	女	1946. 2. 7	64. 8~66. 3	
감 원	鄭法悅華(天根)	〃	1908. 2. 23	59. 3~72. 2	
부교무	朴 冠 德(吉男)	男	1943. 8. 16	64. 8~65. 3	
순교무	文 正 慧(正愛)	女	1945. 2. 12	65. 3~67. 11	
부교무	孔 明 根(在善)	〃	1950. 4. 2	67. 12~70. 1	
총 무	金 明 德(亨會)	男	1951. 8. 15	64. 9~	
재 무	金 和 道(孟甲)	〃	1934. 11. 29	59. 3~	
부교무	金 載 德(載任)	女	1953. 7. 26	70. 2~	
부교무	梁 常 德(成眞)	男	1957. 8. 27	70. 2~	

마. 현 황

1) 시설규모

가) 토지 : 대지 : 3,500평

전 : 40,000평

답 : 22,400평

임야 : 1,315평

기타(초지 등)

나) 건물

건물명	평	구 조	비 고
법 당	47	슬라브 콘크리트	
식 당	50	〃	
숙소(대중)	25	스레트목조	
〃	26	〃	
훈 련 숙 소	75	스레트 흙벽돌	
돈 사	32	기와 벽돌	

돈 사	45	스레트벽돌	
〃	18	〃	
우 사	155	〃	
사료창고	42	〃	
농기계창고	59	〃	
식당창고	25	〃	
사 슴 사	37	스레트 슬라브	

2) 자산내역

총계 : 542,995,000원　　동산 : 29,650,000원, 부동산 : 513,345,000원

3) 임직원　　계 : 23명(남 : 19, 여 : 4)

바. 연도별 전무출신 배출자

번호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출가년월일	추 천 인	비 고
1	李 善 友(善宰)	男	1921. 11. 26	25. 5. 13	25. 2. 6	金 洪 哲	
2	牟 相 峻(壽童)	〃	1923. 11. 27	27. 4. 30	27. 4.		
3	金 大 永	〃					
4	全 二 昌(在禮)	女	1925. 10. 3	25. 5. 11	28. 3. 4	李 正 滿	
5	黃 玉 根	男					
6	鄭 碩 德(宗吉)	〃	1924. 3. 19	34. 9. 26	34. 4. 26		
7	申 普 根(炳雨)	〃	1928. 12. 14	33. 6. 20	33.		
8	李 善 慶	〃					
9	趙 智 聖(銀衡)	〃	1934. 1. 2	35. 4. 26	35. 4. 28	池 海 元	
10	金 達 性	〃					
11	李 廣 淨(建衡)	〃	1936. 9. 1	39. 3. 20	39. 4. 1	池 海 元	
12	朴 眞 興(興基)	〃	1935. 9. 20	27. 1. 17	41. 3. 28	宗 日 煥	
13	黃 直 平(熙薛)	〃	1932. 3. 17	39. 11. 7	42. 4	李 圓 眞	
14	李 大 權	〃					
15	文 圓 景	〃					
16	朴 仁 淑(順孝)	女	1937. 6. 11	31. 3. 18	42. 5. 20	全 基 徹	
17	李 大 光(榮植)	男	1937. 2. 28	45. 9. 6	46. 5	朴 濟 權	
18	魯 春 秋	〃					
19	朴 達 識(世雄)	〃	1945. 1. 7	36. 2. 26	48. 7. 14	池海元	
20	李 俊 一(秀雄)	〃	1943. 5. 15	33.	49. 7. 13	〃	
21	趙 圓 悟(庸兌)	〃	1948. 4. 11	47. 12	50. 4	鄭 福 天	
22	朴 基 業	〃					
23	吳 光 益(錫讀)	〃	1947. 12. 27	48. 9. 13	49. 4. 11	梁 景 瑞	

24	金曉明(明煥)	男	1947. 1. 14	48. 7. 1	49. 3	池海元	
25	金正峻(淸人)	〃	1943. 1. 20	48. 4. 1	49. 6	朴恩燮	
26	姜德煥(德周)	〃	1947. 1. 1	50. 4. 8	50. 8. 26	池海元	
27	金義聖(福禮)	女	1944. 5. 29	50. 9. 10	51. 6. 4	〃	
28	崔潤圓	男		50. 9. 10	51. 6. 4	〃	
29	金明德(兌會)	男	1951. 8. 15		55. 1. 27	〃	
30	李南賢(南基)	〃	1949. 7. 14		53. 1. 16	〃	
31	金和道(孟甲)	〃	1934. 11. 29	49. 11. 30	52. 2	朴世經	
32	朴井厚(在鎬)	〃	1948. 8. 15	32. 4. 2	52. 1. 17	朴眞悟	
33	朴龍德(秀會)	〃	1949. 9. 6	56. 11	56. 5	池海元	
44	朴冠德(吉男)	男	1943. 8. 16	48. 3. 5	55. 9. 1	池海元	
45	姜亨信(孟成)	〃	1954. 6. 18	39. 12. 11	59. 1	〃	
46	姜敬悟(期午)	〃	1955. 4. 18	53. 2	59. 1	〃	
47	文正慧(正愛)	女	1945. 2. 12	54.	61. 1	〃	
48	姜在悟(吉卜)	男	1957. 12. 10	54.	61. 1	〃	
49	李仁景(光鎬)	〃	1958. 9. 25	44.	63. 1	〃	
50	金德寧(榮植)	〃	1950. 10. 9	52.	67. 1		
51	申基圓(永月)	女	1954. 8. 3	59. 1. 26	61. 1		
52	鄭仁誠(仁鎬)	男	1957. 1. 24	58. 11. 3	66. 1. 15	〃	
53	金明證(永基)	〃	1958. 8. 19	57. 3. 5	64. 1. 10		
54	鄭恩光(成男)	〃	1957. 1. 25	65. 12. 8	66. 1. 15	〃	
55	趙麒瑞(玟遠)	〃	1958. 8. 15	59. 4. 15	64. 1. 10	〃	
56	郭勇聖(偵晩)	〃	1962. 6. 22			〃	
57	申宰圓(正元)	〃	1964. 1. 1	63.	68. 1		
43	洪理仁(奉孝)	女	1947. 3. 7	55.	64. 1	尹周現	
35	金東玄(時鉉)	男	1938. 1. 15	41. 3. 15	44. 3. 26	黃周南	
36	金文澤(文斗)	〃	1941. 10. 1	36. 4. 26	42. 10	成丁哲	
37	金淵聖(七星)	〃	1935. 1. 10	44. 1. 30	44. 4. 23	李亨局	
38	梁泰說(泰鎬)	〃	1924. 10. 16	25. 3. 14	24. 2		
39	尹致聖(致遠)	〃	1922. 4. 28	24. 10. 24	26. 3. 4	柳成烈	
40	李道明(桂衡)	〃	1936. 3. 24	41. 2. 2	44. 4	李正恩	
41	鄭法悅華(天根)	女	1908. 2. 23	55. 10	59. 12	池海元	
42	崔熙景(定子)	〃	1953. 3. 17	52.	60. 1	曺永振	

바. 사업현황

연 도	생산품목 및 사업현황	수익금	지출금	비 고
24	토지69,920만여평 매입 桃木, 肺木, 票木, 沙果木 植樹		7,298원10전	이동안, 조갑종교무의 노력. 첫해:식목기사 정일지, 주무:김석규, 서기:김일현. 명칭은「삼례 과원」
37	양계, 양돈 병행 老朽果木 채벌			삼례과수원을 三昌果園으로 호칭하다. 원기37년에 수계농원으로 개칭
43	인삼재배 결정			錦山 鄭鎭萬의 권유
44	인삼재배 최적지로 판명됨			원기41년 시험재배 결과.(해방이후 운영난에 처하다가 김현관의 자금지원, 권정진의 노력의 결과)
45	인삼재배 3,900간			완주군 일대 인삼재배 지역으로 전매청으로부터 정식 인가
46	인삼재배 5,000평			육영재단 조성과 더불어 수익금을 반분하고자 했던 것을 완전회사(김현관, 권정진, 허인, 오두산 등)
47. 5	인삼재배 및 은산재단 발족			이사장:김현관, 이사:권정진, 허인, 오두산, 박광전, 성정철, 이운권, 조회석, 이철행, 감사:이공주, 박장식
48	인삼재배 1,200평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음에 따라 이전의 재배한 것과 신규 1,200평 인가
48	종합농장육성			양잠부, 농사부, 축산부, 생약부 계획
49	인삼6년근 700간 채굴 5년근 1,300간 채굴 水畓 5,529평 매입 田 부채 청산 桑木 5,000식부 고구마 수확	190만원 800가마	7,300원 40만원	완주 익산 지구 홍삼원료 재배 특정지구 지정(장동순, 박동현 협조) 편중적 農作을 입체식 농작으로 운영키로 결정
50	상목 2,000식부 축사건축(돼지 13두) 생약재배(작약 1000, 목단 3,000) 고구마 수확	 100가마	85,000	인삼, 양잠, 약초등 6만경에 자급비료 공급을 위해 돼지 사육 일반 生藥재배 시작
51	인삼채굴 6년근 1,500간 水農수입 축산수입 생약증식 畓 4,000여평 매입	200만원 10여만원 돼지150마리생산 작약6,500본	 80만원	

52	인삼 6년근 채굴(2회) 양돈 양잠 인삼 300간 식부 작약 4,000식부 강묘 6,000식부 답 25,000매입	5,029,240 100,000 800,000	 540,000	인삼재배 중지(토지조건으로 새로운 토지조성 해야함. 적자운영 예상)
53	作農, 인삼, 축산, 양잠 논 2700평 매입 목단 800주, 상묘 15,000식부 돈사 증축	150만원	 39만원	 축산(특히 돼지) 활성화 시기
54	作農, 生藥, 水農, 畜産 이외 생강 심기			
55	作農, 水農, 生藥, 畜産 이외 養鷄시작 생강굴 만듬	 1,000만원		 중추계(닭) 170수 구입 본격적인 생강경작(생강 50가마 저장능력)
56	새로운 품종으로 박 심음 3,000여평			桃木을 케고 그 구덩이에 박을 삼었으나 계속되는 장마로 썩어 실패
57	목단 800수 채굴 양돈 100두 양육	120만원		 전북 민간 종축장 지정(국가차원에서 돈육수출기여)
58	돈사및 도로확장 목단 2,000본 증식 菓生産위해 5,000본 증식 답 1024평 매입		28만원 37만원	
59	목단 3,000본 이식 돈사 증축 桔梗 양초 묘포3,000평		 200만원	묘목장 300평 설치
60	畜 13,000평 매입 繁殖母豚운동장 전화가설, 가옥 개축		290만원 15만원 390만원	
61	양돈 싸이로 설치 작농, 수농, 축산, 생약 재배는 예전과 동일			
62	지하수 개발		160만원	
63	법당신축		800만원	
64	돈사증축및 숙소정비		300만원	

65	농업기술연구파견			김명덕교무 스위스 파견(1년간)
66~67	특별사항 없음			
68	농기계구입(트렉터, 콤바인) 경지정리, 가옥수리		1,800만원 370만원	
69	젖소 6마리 구입 농업용 차량구입 스프링클러 구입 참께수확	50가마	1,080원 366만원 800만원	전천후 전작을 위한 기구로써 정부보조 640만원. 정부보조 과학적인 방법(참께 14가마째 절단)으로 다수확하여 인근마을 지도
70	파인애플 묘목 2만주 식수 화훼용하우스시설1,300평 수박 3,000여평 파종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71	식당건축 낙농냉각가 구입 곡물건조기 구입		230만원 277.7만원 214.5만원	
72	사슴위탁 관리	1,000만		전주보화당 위탁양육

사. 과제 및 전망

현재 현황은 목단, 작약, 도라지, 생강, 채소, 콩, 수농, 축산 등이다.

과학적인 농장경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농·공산품) 정책, 많은 경험, 지질의 성격, 농작물의 특성, 축산기술 등이 필요하다. 한해에 참깨를 다수확 할경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수확은 불가능하다. 그곳에 무우를 심을경우 다수확을 한다. 인삼은 한번 채굴하면 당근을 심어 지력을 회복한 후 10여년이 지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금융통을 위해서는 농산물과 공산물이 겸행해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한번 투자하면 1년이 걸리고 공산품의 경우 닭, 돼지는 6개월 젖소는 15일이면 자금이 회전하고(이 경우는 노동력이 절감) 축산물은 거의 3년마다 주기를 겪는다. 파인애플의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을 본 고급 농산물이다. 이러한 것 이외 더 중요한 것은 토지로 쌓아올린 교단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총부농원이 기능을 다하지 못한 인근에 대한 과학적인 영농방법 보급 및 특용작물·정원수·축산정착 등의 계획적인 배려와 산업훈련 도량의 기능(교단, 국가)으로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 계발이다. 그리고 순수자연농으로 인한 도시지역과의 교류를 통하여 교화보조 역할을 수행함을 기대한다.

7. 유일 정미소

가. 설립과정

그 당시 총부부근에는 총부농장에서 수확한 벼를 도정할 적당한 거리의 정미소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는 벼의 도정이외 고추, 밀가루, 떡가루 제분를 만들장소가 멀어 주변에 정미소가 만들어지길 원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부에서는 교단의 경제체제에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들의 수고를 덜기위해 원기31년(1946)에 정미소를 설립했다(그 당시 뽕나무밭) 건물신축 후 쌀, 보리 도정이외 밀가루, 쌀가루 제분을 했으며 한쪽에서는 양발가공(이완철교무가 임대운영)도 했었다.

원기35년(1950) 서무부와 재무부에 귀속되어 있던 정미소를 산업부에 귀속시켰다(농장경영포함). 이 당시(6. 25사변직후) 정미소는 교단의 유일한 식량보급소였으며 이곳에서 쌀겨, 싸레기 등을 얻어 죽을 써먹는 등 총부구내의 어려운 역경을 극복케 했던 유일한 産實이였다.

원기38년(1953) 제1회 정기원의회에서 재무부장 조희석교무의 건의에 따라 대폭적인 수리 및 제분기계를 도입하여 운영하다가 재무부의 인력부족으로 한동안 김지천(고창사람)에게 임대를 7년 동안 주었다(쌀20, 보리 20가마). 그후 다시 이리시 사람이 3년간 운영하였으며 원기48년(1963) 총부 직영하에 산업과장 윤치성교무가 담당했다. 또다시 임대를 주어 윤성규가 2년간 쌀 40, 보리 20에 운영하다가 새말(신동)에 정미소 개업을 했다. 그 후 이정훈이 6여년간 임대운영하다 실패하여 설레(현 모현동) 김만중이 3년간 운영을 했고 진도사람 장주원이 6년간 임대운영을 했다.

원기72년(1987) 3월에 비로소 30여년간의 임대운영을 마무리하고 재무부에서 이순원교무를 파견 근무케 했다.

* 주소 : 전북 이리시 신용동 344-2

나. 직원현황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원기)	비 고
원 장					당연직 재무부장
주 무	趙 謹 碩	男		32. 4. 26	
직 원	申 正 秀(正洙)	〃	1924. 1. 30	32. 4. 26~33. 2	정미소기사

직 원	金 悟 修	男		32. 7. 11~33	
주 무	李 新 德	〃		32. 4. 26~34	
〃	申 慶 旭	〃		32. 7. 11~34	
〃	吳 悔 仁(海金)	〃	1931.12. 2	35. 3	
〃	金 光 昌(基豊)	〃	1930. 5.13	38	
기 사	申 在 一(載珉)	〃	1928. 1.19	33. 2~34. 1	
주 임	李 守 榮	〃		34	
교 무	李 舜 圓(恂根)	〃	1953. 7.11	72	

〈원기72년(1987) 정미소 인수시 상황〉

원기66년(1981. 9. 1~1986. 8. 26)에 이찬형과 임대계약(임대료 쌀 40가마)을 했으나 이찬형이 부도를 내었고, 원기68년에 강수원(명원)이 구두 인수인계받아 운영했다.

원기71년(1986) 12월 18일 교단에서는 전북일보「안내」에 공시했다. 즉 원기72년(1987) 3월 1일부터 직접 재단내에 경영하기로 하고 3월 1일 이전의 부도액에 대한 쌍방합의를 보도록 하여 재단이 경영할 수 있는 법적절차를 마치었다. 원기72년(1987) 3월 1일부터 약 한달동안 내부수리 및 담장 신축 창고 정리 등 대대적인 수리를 했다.

정미소 이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아직은 이곳주민들로 부터 좋은 인식과 비록 농사짓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곳에 이관할 경우 고객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재단에서 확실한 부지설립 및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곤난하다고 판단하여 현 위치에 머물기로 했다. 정미소 부도는 고객이 적거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책임자가 정미소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다른 개인 사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쌀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 때문이다. 그리고 임대할 경우 불리한 것은 총부의 벼를 도정해도안좋은 쌀이 제공되고 계획된 양의 쌀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8. 삼창공사

가. 설립배경

三昌公社는 본교 재단의 기업체 전환으로 인한 유일의 기관으로써 원불교 삼대목표인 교화, 교육, 자선 등 각 기관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상단기관이었다. 원기35년(1950)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농지개혁령에 따라 나온 보상금과 금평과수원 매도금중 일부(일부는 동화병원에 투

자)를 가지고 기업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삼창과수원(현 수계농원)에서 생산되는 黃桃를 이용하여 그 精液으로써 양조사업 및 기타 기업종목을 가하여 상공업 병합추진을 하여 보기로 결의했다. 원기36년(1951) 6월 중앙총부 원의회에서 추진위원으로 송혜환, 조갑종, 박장식 교무가 피선되었고, 동년 8월 추진위원의 노력으로 이리시 북창동에 소재한 장유공장(간장)을 인수하여 《삼창공사》라는 간판을 붙였다.

원기37년(1952) 4월에 정식 임원 발령과 더불어 각종 양주기업 종목 허가가 나왔다. 그러나 잠깐 사업이 번창한 듯 하다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원기42년(1957) 교무회의와 동년 4월 8일 제14회 임시원의회에서 매각처분 하기로 결의했다.

〈설립당시 규모〉

* 주소 : 전북 이리시 북창동(창인동)
* 설립당시 규모 : 457,213원40전(원기38년 재무부 자산내력)

나. 역대 원장 및 임원현황

〈역대원장〉

대	직 책	이 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사 장	宋 慧 煥(東煥)	1905. 2. 12	37	보화당 사장겸임
2	사 장	朴 慧 運		38	

〈역대 임원현황〉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상 무	宋 慧 煥(東煥)	男	1905. 2. 12	37. 4	
〃	朴 慧 運	〃		38	
총 무	全 泰 守(泰英)	〃	1925. 6. 7	37. 4	
내 무	金 勤 修(益洙)	〃	1922. 6. 9	37. 4	
외 무	金 仁 龍(判龍)	〃	1922. 9. 7	37. 4	
경 리	丁 震 浩(仁碩)	〃	1927. 1. 18	37. 4	
내 감 원	柳 寬 眞(蔡順)	女	1916. 3. 13	37. 4	

다. 사업현황 및 품목

복숭아, 통조림, 과일주(酒), 과일주 도매업

라. 사업전개과정 및 문제점

원기20~30년대에 교단에서는 영광, 총부, 삼례 과수원(복숭아), 알봉(밤나무), 황등(밤나무) 등지에서 상당한 이익금을 얻었다. 이러한 교단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당시 이리시 동산동 보배 소주공장 위치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복숭아 통조림 공장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교단에서도 관심을 가졌었다. 해방이 되자 이 공장은 문을 닫게 되고 교단에서는 이를 착안하여 원기37년(1952)에 통조림 공장을 시작하고자 북창동(창인동)에 소재하고 있던 일본인 소유의 간장공장을 인수했다. 깡통이 없어 유리병을 사용했기 때문에 쉽게 부패되고 관리에 힘이 들었다. 홍콩에까지 연락하여 깡통과 기술지도를 요청했으나 6·25사변으로 인해 흐지부지 되었다. 한때 저축된 통조림을 서울 남대문시장에 싣고 갔으나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채 몇일동안 묶게 되었다. 결국 헐값으로 주변상점에 넘기고(차량비 정도) 돌아왔다. 이 사건은 사업에 대한 경험부족을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삼창공사의 운영에 대한 큰 타격을 가하게 했던 것이다.

복숭아 통조림(일명 빙스매)을 만든 후 즙을 내어 술을 만들었는데(나중에는 복숭아를 갈아서) 당시 나주에서 복숭아, 배로 주정하여 큰 성공을 했으므로 그곳에서 기술자를 1명을 데려왔다. 군산 주정공장에서 원액(94%)을 가져와 조선주로 제조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계속적인 운영난으로 인하여 양조도매업을 개업했던 김인용교무(삼창공사 업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읍에 양조도매원 개업 인계후 교단의 요청에 의해 이리보육원으로 갔음)의 사업을 인계받아 적자를 메꾸려 했으나 여전히 赴債와 이자를 당할 수 없어(6. 25 이후라서 물가 및 이자가 비쌈) 결국 원기42년(1957) 교무회의에서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교단적인 거대한 사업이 몇몇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나버린 동기를 생각해 볼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멀리 사업경영의 미숙함과 생산과 시장확보, 통조림에 대한 상품기간 등 둘째로 자본의 미약함을 들 수 있다. 셋째는 공적사업과 개인사업간의 운영방식상의 차이이다.

9. 완도농원

가. 설립배경

완도농원은 원기57년(1972) 본교의 표어인 靈肉雙全의 이념에 바탕하여 완도지역에 산교화의 도량을 이루고 산업훈련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김인석교무와 아영교도 박세정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경작물은 밀감으로써 각 유지들의 희사 투자로 경영되고 있다.

원기60년(1975) 당시 밭 1,422평, 산 24,756평, 뽕밭 1,806평, 대지 54평 등 총 28,098평이였으며 밀감나무는 총 3,557주중 개인소유가 1,737주, 교단희사 1,820주, 개인소유는 본인의 일생에만 관리비 공제수입하되 사후에는 상기 개인분 전부를 교단에 희사하기로 되어 있었다.

원기60년(1975) 1월 13일 126회 임시원의회에서는 완도농원을 기관으로 발족하기로 하고 원규를 제정, 同年 2월 10일 127회 임시원의회때 원규를 심의하여 완도농원 운영위원을 선임하였다. 그 위원을 재무부장, 완도농원장, 완도교무, 불목교무, 불목지부장, 김재천, 김도광교도 등이다.

원기61년(1976) 대밭 1,000평, 논 400평, 임야 2,250평을 매입하고 축산, 감귤농장 시설을 보충했다. 원기68년(1983)에 완도농원에서 완도철산농원으로 개칭하고, 원기70년(1985) 농원운영권을 총부 재무부에 귀속시켰다.

〈설립당시 규모〉

*주소 : 전남 완도군 군외면 남선리 162-4

*설립당시 : 건물 초가 2동(40평)

나. 역대원장

대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金 仁 碩(連眞)	男	1931. 10. 7	60~68	
2	徐 聖 範(金成)	〃	1940. 9. 15	71~	재무부장

다. 역대재직 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교 무	朴 世 正(正順)	女	1930. 9. 3	60.~71. 3	
〃	金 圓 祐(炳祐)	男	1943. 7. 26	61. 4. 1~61. 7	
〃	李 皓 濬	〃		68. 3~71. 3	
〃	高 大 信(성원)	〃		71. 3~	

라. 현 황

〈재산 현황〉(원기60년 1월 13일 기관인가시)

구분	내 용	수 량	단 가	참 고
부동산	답	4,470평	2,235,000	
	전	2,298평	459,000	
	임야	21,330평	3,839,400	
	가옥 3동	3동 (56평)		60년 3월 21일 함석이양(경비3만), 창고신축(경비 10만)
밀감부	밀감	3,557본	4,257,000	일본산 1,000본(단가 1본당 1,000) 중생종 1,000본(단가 1본당 1,200) 조생종 1,557본(단가 1본당 1,000)
축 산	돼지	2마리	20,000	
	개	1	3,000	
	농우	4	400,000	

〈연도별 생산 및 사업현황〉

연도	생산품목 및 사업현황	수익금	지출금	참고
57	밀감나무 및 축산시작	44,800	463,780	설립 및 밀감나무심기
58	밀감나무 및 축산	74,100	420,560	
59	〃		1004,630	
60	밀감나무 및 축산 밀감 3,557본 돼지 2마리 개 1마리 농우 4마리 토 지(답, 전, 임야)			개인소유(개인일생에만 관리비 공재수입) 1,737주 교단소유(개인이 회사한 밀감) 1,820주 총 28,098평(단가 6,120,360)
61	밀감, 축산 땅 매입		215,010원	 대밭 1,000평, 논 400평, 임야 2,250평
62.4	밀감, 축산 전기공사		 190,000	
68	밀감, 축산 농원 진입로 공사			 철산 김인석 교무의 49재 재비로 완공
69.5	소 2마리 구입			농협융자 180만원 받아 구입
6	전화가설		310만원	천경사장 회사
8	牛舍건축		460만원	조실, 농원, 교육부, 재무부 협조
70	밀감, 축산 농기구 다량구입			 경운기, 고성능분무기, 농약기계. 탈곡기등

70	향후 계획 농장운영 재무부로 귀속			토질을 검사하여 토질에 맞는 유실수와 유자나무 植樹 계획

10. 원광상사

*주소 : 이리시 신용동 344-2

*설립 : 원기70년(1985) 5월 24일

가. 설립과정

원광상사는 교단경제의 부흥이라는 기치를 들고 원기68년(1983) 10월 이원경, 최경도교무를 주축으로 하여 남자교역자 50명이 참여하여 창립하였다.

원기68년(1983) 10월 30일 창립총회시 정토회관에서 창립주주 52명중 34명이 출석한 가운데 대표이사 이원경, 전무 성도종, 상무 최경도교무가 선임되었다.

젊은 남자교역자들은 교단경제가 안고있는 문제를 생산기관의 부족으로 보고 본교에서 설립한 기관이 사용하는 용품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의 설립을 사업의 방향으로 정하였다. 처음 시작한 사업은 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곡물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익년 2월에는 식품사업을 병행하게 되었다.

이리시 남중동 1가 147-37 소재 원불교 정토회관 1층에 점포와 사무실을 두었으며 원기69년(1984) 9월에는 이리시 신동 785-5에 식품공장을 건축하여 참기름, 메주, 메주가루를 생산하였다. 처음에 곡물판매로 시작하여 원광대학교 원광의료원에 쌀을 납품했으나, 후에 서울교구 봉공회 사업의 일환으로 판매했던 참기름과 정토회관에서 연례행사로 만들어 왔던 메주, 메주가루를 인수받아 식품 사업을 시작했다.

원기69년(1984) 11월 5일 제212회 정기원의회에서 위의 사업에 대한 경위를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다. 원기70년(1985) 5월 16일 교정원 간부회의에 상정하여 「원광상사」를 발족키로 하고 자본금, 정관 및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원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안토록 결정했다. 원기70년(1985) 5월 24일 제14회 상임위원회에서 기존의 원광상사를 전부인수(개인 출자금 전액매입)하였고 그 재원은 총부 유지사업회 기금 6천만원으로 하였다. 사업은 식품사업부, 의식사업부, 건설사업부로 나누었다. 의식사업부는 원기69년(1984) 6월에 교정원 제2부원장인 유정완교무 주선으로 원광장의사 개업을 추진함에 따라 비롯되었다. 원기70년

(1985) 6월 15일 의식부(원광의료원 영안실)에 김명원교무를 내정하고 부원장 유정완, 재무부장 서성범교무와 김명원교무가 가능성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전북대병원 영안실을 다녀와 동년 6월 25일 원광대학교부속 원광의료원과 구두계약으로 원광상사에서 영안실 관리권을 위임 받았다. 동년 7월 15일 정식계약이 체결되었고 동년 8월 31일에 원광장의사 허가(염사자격증 취득)가 나와 장의사 대표로 김명원교무가 되었다.

건축사업부 원기68년(1983) 봄에 재무부장 서성범교무가 재무부 소관하에 추진했던 사업이었다. 정관에 의거하여 운영위원 9인, 감사 3인을 두고 운영위원장에 교정원장, 사장에 제2부원장, 부사장에 재무부장을 당연직으로 했다. 그러나 실재적인 운영은 각부의 전무가 일괄 담당하게 되었다.

원기70년(1985) 7월 8일 제214회 정기원의회에서 제14회 임시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보고받고 인준 받음에 따라 교단의 기관으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나. 사업별 현황

1. 건축사업부

〈설립당시 규모〉

* 주소 : 이리시 신동 785－5
* 설립 : 원기70년(1985) 5월24일
* 자산 : 3,800만원

〈직원현황〉

직 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전 무	崔 敬 道	男	1950. 10. 4	70. 3. 1~71. 8	출 가
전 무	장 이 석	〃		71. 8~	재 가
과 장	정 용 복	〃	1957. 8. 12	68. 4. 1~	재 가
기 사	김 진 수	〃	1959. 12. 18	70. 6. 1~71. 1	기독교
〃	정 창 환	〃	1958. 11. 23	71. 1. 6~	재 가
소 장	김 연 중	〃	1936. 5. 11	68. 7. 20~	〃
소 장	김 현 관	〃	1946. 1. 4	68. 3. 1~	〃
반 장	김 성 복	〃	1950. 1. 20	70. 5. 17~	〃
경 리	박 혜 경	女	1965. 8. 26	70. 7. 17~	〃

〈사업현황〉

〈건축현황〉

연도	교당 및 기관	주 택	비 고
68	덕진, 남군산, 경장, 장흥교당	이상기, 송천은, 박동욱	서성범, 안도순
69	원광한의원상가. 북일, 연산, 삼기교당	김환열, 중앙시장 상가	김효명
70	원로원, 요양원, 신협. 효자, 남춘천, 화곡교당		최경도
71	순천, 여천교당, 신정화원, 신보은원	은양	장이석
72	인천, 도곡, 합천, 김천, 운봉교당, 영모묘원	신동 주택 2동	

〈대차 대조표〉(원기 71. 8. 31 현재)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자 본	
현 금	545,815	차 입 금	113,050,000
예 금	6,857,390	가 수 금	28,731,425
가 불	791,590	외상매입금	27,030,558
미 수 금	160,008,000	미 지 불 금	54,801,680
예 치 금	3,000,000	이 월 이 익	949,045
〈신협하자 보증금〉		〈1985. 3. 31 인수인계시〉	
재 산	35,094,500	자 본 금	38,000,000
순 손 실	66,275,415		
(1985. 4. 1~1986. 8. 31 이자지급액)			
	272,572,708		272,572,708

2. 식품 사업부

〈설립당시 규모〉(70. 5. 24)

* 주소 : 이리시 신동 785-5
* 설립 : 원기70년(1985) 5월24일
* 기본자산 : 1,000만원

〈직원 현황〉(기관발족 이전 원기69. 12. 31 현재)

직 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대표이사	이 원 경	男	1946. 2. 2		출 가
사 장	최 경 도	〃	1950. 10. 4		〃
전 무	성 도 종	〃	1949. 7. 17		〃
이 사	김 현	〃	1945. 10. 15		〃
〃	박 달 식	〃	1945. 1. 17		〃
〃	윤 정 우	〃	1947. 2. 8		〃

이 사	박 남 주	男	1947. 9. 19		출 가
〃	박 정 후	〃	1948. 8. 15		〃
〃	김 주 원	〃	1948. 10. 10		〃
감 사	박 광 수	〃	1948. 5. 26		〃
〃	김 정 유	〃	1951. 2. 21		〃
영업과장	김 성 수	〃	1958. 8. 23	69. 2. 9	재 가
판매주임	최 두 환	〃	1949. 10. 10	69. 4. 16	〃
운전기사	최 승 길	〃	1945. 5. 17	69. 9. 21	〃
생산주임	성 수 종	〃	1958. 10. 16	70. 4. 12	〃
경 리	최 문 주	女	1965. 9. 7	69. 8. 11	〃

* 일반직의 사원들은 수시로 바뀌었음

〈직원 현황〉

직 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전 무	최 경 도	男	1950. 10. 4	68. 10~70. 2 71. 8~72. 1	출 가
전 무	신 도 경	〃	1947. 12. 22	72. 1. 23~	출 가
판매주임	최 두 환	〃	1946. 10. 10	69. 4. 6~	재 가
운전기사	임 재 현	〃	1959. 11. 11	68.10.4~72.3	〃
〃	노 준 철	〃	1946. 1. 29	72. 3. 25~	〃
경 리	최 은 희	女	1959. 11. 18	71. 4. 14~	〃
김치제조	최 보 선	〃	1945. 7. 6	69. 10. 1~	〃
〃	최 양 순	〃	1941. 8. 18	72. 3. 10~	〃

〈사업현황〉(원기72. 1. 24 현재)

〈대차 대조표〉 〈단위 : 천원〉

자 산		금 액	부책·자본		금 액
유 동 자 산		112,686,127	부 채		104,011,961
	현금과예금	9,381,676		외상매입금	17,011,961
	외상매출액	78,603,190		차 입 금	87,000,000
	재 고 상 품	14,701,261	자 본 금		14,494,000
	투 자 금	10,000,000			
고 정 자 산		20,013,900			
	건 물	16,100,000			
	비 품	608,900			
	차량운반구	3,000,000			
	전화가입권	305,000			
자 산 총 계		132,700,027	부 채 총 계		104,011,961
순 이 익		14,194,066			
부채및자본총계		132,700,027			

〈사업품목〉

해표식용유, 제재염, 백설표식용유, 새우표건미역, 미원, 여왕표세탁비누, 냅킨, 범표고무장갑, 카레, 밀가루, 퐁퐁, 보리차, 옥수수차, 국수, 빙초산, 전지분유, 탈지분유, 삼양라면, 전분, 설탕, 삼양콩간장, 금장콩간장, 삼표진간장, 삼원고추장, 진미짜장, 삼표된장, 담표된장, 진미콩간장, 행주, 수세미, 건포도, 완두캔, 케참, 마요네즈, 조림멸치, 가에리멸치, 조림멸치, 국멸치, 계란, 하이타이, 고추가루, 맛나, 다시다, 미풍, 미원, 백설표맛소금, 후추, 김, 당면, 표고버섯, 즐기미역, 하이스, 물개표고무장갑, 쥐어채, 메주가루, 참기름, 마늘, 김치 등 일용잡화.

* 단 참기름, 메주, 메주가루의 생산 및 판매권은 원기71년(1986) 11월 15일 로써 이성국교무에게 양도되었음.

3. 의식사업부

〈설립당시 규모〉

* 주소 : 이리시 남중동 1가 147－37 (정토회관 1층 전세)
* 설립 : 원기70년(1985) 6월 24일
* 기본자산 : 1,200만원(원기68년도 기관설립전 800만원 : 전세400만원 병원시설 300만원 영업비 100만원)

〈직원현황〉

직 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전 무	金 明 元	男	1946. 2. 7	68. 6. 15～	출 가
직 원	유 창 호	〃			재 가
〃	박 종 진	〃	1933. 2. 16	72. 8. 28～	〃
〃	양 태 호	〃	1960. 3. 20	72. 10. 18～	〃
회 계	金 聖 和	女	1960. 11. 1	72. 2. 6～	정토회원

〈사업현황〉(72년 12월 31일 현재)

〈대차 대조표〉 (단위, 천원)

자 산	금 액		부 채·자 본	금 액	
유 동 자 산		27,833,994	자 본 금		10,000,000
	현금과예금	7,557,089	부 채		155,000
	상 품	20,275,905		외상매입금	155,000
고 정 자 산		17,058,700			
	비 품	5,071,700			
	차량운반구	5,937,000			
	전 세 권	4,000,000			
	전화가입권	450,000			
	차량운반구감가상각충당금	1,600,000			

자 산 총 계	41,691,694	부 채 총 계	155,000
당 기 순 이 익	26,830,695		
부채및 자본총계	41,691,694		

〈사업 내역〉
장례절차 사전 상담
장의물품 판매 및 임대
장례시 모든 용역제공
공원묘지 상담 및 안내
영구차 안내 〈원광장의사에서는 구입치 못함〉
사망신고 대화장 증명서 발급대행
식장설비(영결식장 추도식장)

다. 과제 및 전망

원광상사의 발족은 교단역사상 젊은 남자교역자들의 신념속에 자생한 기관이였다. 생산기관의 설립은 교금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총부자체 유지관리와 젊은 교역자들의 후생문제 그리고 노후복지문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요청되어 왔다.

이러한 기대속에 출범한 원광상사의 발전은 전도가 양양했지만 3년의 운영과정 속에서 적지않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건축사업부의 경우 원불교 건축양식의 새국면을 장식하고자 했으나 다음과 같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운영의 문제로서 전문자의 의견수렴 부족과 기술적 인원 구성이 미흡했으며, 각 기관 교당의 협력부족으로써 무리한 요구와 하자기간의 무한대로 지나친 책임이며, 또한 공사비 미수금 회수가 부진하여 이자지급액 증가로 이와같은 문제로 인하여 건축부는 교단의 기대에 부흥치 못하고 해체하여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그러나 식품부의 경우에는 원광의료원이라는 안정된 시장이 확보되여 있어 튼튼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 반면에 식품부 사업중 매주가루와 메주·참기름 등의 제조권이 관촌으로 분리하여 넘어감에 따라 식품부가 발전했기 보다 기능이 축소되였다.

참기름 및 메주, 메주가루의 생산 및 판매권이 관촌공장으로 넘어간 경위는 다음과 같다. 식품부 설립당시 원기69년(1984) 9월 이리시 신동 785－5의 위치에 생산공장을 지었는데 그 일대가 주택지로 확장됨에 따라 메주의 발효냄새로 인하여 공장을 이전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이에 마땅한 자리를 물색하던중 관촌교당 정상훈교무의 도움으로 부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임실지역이 우리나라 3대 곡물지역으로 지명됨에 따라 농수산청에서는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곡물상품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장을 설립코자 그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이에 정상훈교무의 주선으로 메주·메주가루·참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권과 국가지원금을 받아냈다. 특히 이곳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했던 정상훈교무의 동기는 첫째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해 주고, 둘째 지역주민이 농하기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고, 셋째 작으나마 지역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러한 동기와 더불어 원기71년(1986) 11월 15일 전무였던 최경도교무의 증인아래 재무부장이였던 서성범교무와 이성국교무와의 판매권 양도계약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관촌교당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이성국교무는 공장건축을, 식품부에서는 기계값 500만원과 판매권 양도비 500만원(1,000원에 계약)를 투자했다.

그리고 원광의식부의 경우 식품부와 마찬가지로 원과의료원이라는 시장이 확보됨에 따라 안정된 출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식부가 좀더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장례예식장의 설립이다. 현재는 거의 한정된 고객과 한정된 의식과정만을 주도하고 있으나 장례예식장이 마련됨에 따라 종교적의식을 첨가함으로써 의식교화에 도움이 되고 여러방면의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좋다. 이 예식장의 마련은 이리뿐만 아니라 전국 교구별로 마련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터전을 마련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적이 합력이 필요하다.

Ⅸ. 信 協·金 庫

少太山大宗師는 원불교를 창립하면서 생활속에서 종교를 신앙하고 수행하도록 가르쳤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는 종교인과 경제관념이다. 경제와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그 구조 자체가 정신과 육신으로 대분되어 있고 그중에 어느 하나가 소홀하게 되어도 원만한 인간은 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과거 종교인들이 물질생활과 경제를 멀리하고 금기로 여겼다는 것은 원만한 인간생활을 포기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에 소태산대종사는 원불교를 창립하면서 현실생활과 종교생활을 둘로 보지 아니하고 생활속에서 종교를 신봉하도록 가르쳤던 것이다. 「靈肉雙全, 理事並行, 佛法是生活, 生活是佛法」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생산과 노동을 중시하게 하였으며 종교에 종사하는 교역자 스스로가 생산성있는 활동을 생활속에서 감행해 가면서 종교수행을 하도록 가르쳤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원불교 초창인 원기2년(1917) 8월 저축조합을 창설하고 허례폐지, 미신타파, 금주단연, 근검저축을 제자들에게 실행케하여 여기서 얻어진 돈으로 기금을 육성해 나갔으며 이는 뒷날 상조조합, 신협, 마을금고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 저축 조합

저축조합 운동은 소태산대종사가 20여 년간의 구도끝에 일원의 진리를 오도한 뒤 믿고 따른 제자들과 함께 맨 먼저 착수한 사업으로써 원불교 신협 운동의 시초라 할 수 있겠다.

저축조합의 창설은 원기2년(1917) 가을이었으며 그 취지는 회상 창립의 준비를 위한 전초로써 조합원의 정신 계발(금주, 금연, 공동출역 등) 새생활 운동의 전개와 상호친목 등을 통하여 종교성을 함양시키고 회상 창립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소태산대종사가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이끌었고 또한 40여명의 제자들이 그 조합원으로서 저축조합 운동을 전개해 나갔으며 정관까지 초안하고 매월 그믐에 저축금 수납일로 정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까지 갖추게 되었다.

소태산대종사가 사재 400원을 내어 자금을 조성하였고 금주, 금연, 공동출역, 근검저축 등을 통하여 저축된 금액이 800여원에 달하게 되었다.

저축조합 운동은 영산 방언공사의 기초를 이루었으며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교단의 형성과 더불어 사회의 응집력을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영산 방언 간척사업의 투자와 그의 성공은 결국 원불교 창립의 근간이 됨으로써 원불교 신협, 마을금고 운동에 효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영산 상조 조합

가. 연 혁

1) 설립년월일 : 원기67년(1982) 2월 13일

2) 설립 과정

가) 설립 취지(목적)

소태산대종사의 크신 경륜 아래 古來의 음울한 황폐 농촌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립의 여건을 마련코자 원기67년(1982) 2월 9일부터 성지 주변의 마을 주민들에게 농민학교 교육을 통해 성숙되었던 새 삶을 위한 의지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저축 금융 운동을 실시하여 보다 견실한 경제적 안정과 더 나아가 부흥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설립 유공인(발기인)

김봉진(김현), 박윤수, 박용근, 김석중, 한평교, 장영환, 강달남, 최대웅, 조길진, 이일봉, 신동훈, 김기룡, 최종섭, 김기택, 김재국, 김홍채.

3) 설립 당시의 규모

가) 설립 당시의 주소 :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9

나) 설립 규모

총계 ; 3,286,390원(자산 1,524,390원 출자금 126,000원 예탁금 1,636,000원)

4) 초대 이사장 : 金 奉 鎭(玄 : 영산사무소)

5) 이전 신축 및 확장

구 분	설립 년월일	주 소	대지	건물		시설경비		
				용도	평	총액	기금	부채
신 축	72. 7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9						

나. 역대 임원진(이사 및 감사)

직 책	법명(호적명)	성 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이 사 장	김 현(봉 진)	男	1947. 10. 15	67. 2~	
부이사장	김기택	〃	1925. 6. 13	68. 2~	
이 사	신동훈	〃	1940. 12. 11	68. 2~	
〃	장전원	〃	1946. 4. 16	69. 2~	
〃	장영환	〃	1939. 12. 22	70. 2~	
〃	황순회	〃	1940. 10. 2	68. 2~	
〃	이신정(현 남)	〃	1940. 6. 23	70. 2~	
〃	신종대	〃	1938. 4. 5	68. 2~	
감 사	김재국	〃	1935. 4. 20	69. 2~	
〃	박용국	〃	1939. 5. 1	69. 2~	

다. 역대 재직 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 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이 사 장	金 玄(奉 鎭)	男	1947. 10. 15	67. 2~	

라. 현 황

1) 자산 내역

총자산 : 37,865,864원(출자금;3,453,605원 예탁금;34,412,259원)

2) 임직원 : 계 2명(남2, 여1)

3. 信用協同組合

가. 圓佛敎中央信用協同組合

1) 연 혁

(1) 설립년월일 : 원기63년(1978) 1월 31일

(2) 설립 과정

가) 설립 취지(목적)

㉠ 교단의 초창당시 불법연구회 상조조합의 정신을 계승하여 반백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교단의 경제통일 방향 제시를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써 〈원불교 은행〉 설립을 목적으로 함.

㉡ 전무출신의 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함.

㉢ 전무출신의 기존 사재 통합 운영을 목적으로 함.

나) 설립 유공인(발기인) : 유덕순외 33명

(3) 설립 당시의 규모

가) 설립 당시 주소 : 이리시 신용동 344－2

나) 설립 규모 : 총계 57,700원(출자금 ; 57,700원)

다) 설립 당시 건물 : 1동 10평

(4) 초대 이사장 :李 炳 恩(炳穆)교무

(5) 이전 신축 및 확장

구 분	설립년월일	주 소	대지	건 물		시설경비		
				용도	평	총액	기금	부채
이 전	65. 6. 17	신용동 310－11		사무실	10			
이 전	66. 6. 19	신용동 344－ 2		〃	15			
신 축	71. 6. 11	신 동 760－10		〃	280	165,000,000		

2) 역대 임원진(이사 및 감사)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이 사 장	李 炳 恩(炳穆)	男	1926. 6. 7	63.～65. 8	65. 8월 열반
부 이 사 장	吳 曠 圓(男苗)	女	1931. 12. 20	63.～	65. 8.이사장직무대행
이 사	丁 道 允(炳允)	男	1935. 5. 15	63.～68. 3	
〃	李 廣 淨(建衡)	〃	1936. 9. 1	63.～68. 3	

이 사	黃 直 平(熙薛)	男	1928. 10. 17	63.~69. 2	
〃	徐 聖 範(金成)	〃	1940. 9. 25	63.~	
〃	金 復 煥(復煥)	女	1938. 12. 10	63.~64. 12	
〃	姜 雲 祥(東日)	男	1934. 8. 24	63.~68. 3	
상무이사	柳 應 現(德順)	女	1945. 3. 26	63.~	직무규정에의거전무발령
이사장	金 允 中(還烈)	男	1927. 12. 7	66.~71. 8	
이 사	金 貴 根(永春)	〃	1929. 3. 5	66.~71. 2	
감 사	金 東 玄(時鉉)	男	1938. 1. 15	63.~71. 2	
〃	羅 道 國(哲浩)	男	1945. 8. 27	63.~70. 5	
이 사	柳 正 完(珍玉)	〃	1932. 10. 5	68. 3~	71.8이사장직무대행
〃	金 東 玄(時鉉)	〃	1938. 1. 15	71. 2~	
〃	朴 濟 現(英姬)	女	1932. 2. 4	68. 3~	
〃	李 建 春(建淑)	男	1920. 12. 12	〃	
〃	宋 正 鎬(正鎬)	男	1931. 6. 25	〃	
감 사	金 泳 澤(進東)	男	1944. 11. 10	70. 6~	
〃	權 峻 圓(在完)	〃	1940. 4. 25	71. 2~	

3) 역대 재직 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근무기간	비 고
전 무	柳 應 現 (德 順)	女	1945. 3. 26	63. 1. 30~	
	徐 明 善(明仙)	〃	1955. 2. 6	63. 1. 30~65. 2. 28	
상 무	辛 大 誠(映默)	男	1953. 7. 22	65. 3. 1~	

4) 현황

(1) 시설 규모 : 대지 :124평

* 건물

건 물 명	평	구 조	비 고
원불교중앙신협	287평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지하1층 지상 3층	

(2) 자산 내역

총 자산 4,521,940,837원 { 출자금 241,373,687원 / 예탁금 3,403,128,370원 / 부동산 124평

(3) 임직원 : 계21명 (남13, 여8)

5. 특별 사업 및 활동

연도	사업및활용명	기간	주관처	목 적	대상(인원)	활동내용	비 고
1982	장학금 지급			지역사회개발	육영장학 2 조합원자녀 4 ┘6명	총지급액 100만원	교학1,선원1 원고2, 원종2
1983	의료공제사업			저소득층복지 증 진 일 환	이규윤외237명	〃 3,623,200	
	장학금지급			지역사회개발	육영장학2 원여종고6 조합원자녀7 ┘15명	〃 1,400,000	
1984	교 육 사 업			신 협 교 육	북일교당30 익산교당30 도원교당25 원불교총부 조합원100 ┘185명	신협이란 무엇인가 및 가정 경제 문제	
	의료공제사업			저소득층복지 증 진 일 환	오정선외 341명	총지급액 3,721,411	
	장학금지급			지역사회개발	육영장학2 원여종고6 원종고6 조합원자녀10 ┘24명	총지급액 1,940,000	원대선발지급의뢰 정기총회시
1985	교 육 사 업				월례회 235명 가정순방500명 관광교육 90명 ┘825명	월별 생일자 초청 교육 경 제 문 제 상 담 및 출자금 독려 양노원 경로관광 및 홍보교육	
	의료공제사업			저소득층복지 증 진 일 환	김명선외 286명	총지급액 3,351,465	
	장학금지급			지역사회개발	육영장학 1 원여종고 6 원종고 6 조합원자녀 9 ┘22명	총지급액 1,690,000	동산선원선발 지급의뢰 정기총회시
1986	교 육 사 업			지역사회개발	월례회및 가정순방 관광교육 ┘1455명		생일자 초청교육 조별구성 가정순방
	장 학 사 업			지역사회개발	육영장학 1 원여종고 5 원중고 5 영산 중 조합원자녀10 ┘21명	총지급액 1,710.000	정기총회시
1987 6.11	의료공제사업 장학사업 사회교육센타 개원				박병규외 240명 조합원자녀 10명	총지급액 5,344,000 총지급액 1,500,000	신축건물준공식

나. 원불교 영광 신용협동조합

1. 연 혁

(1) 설립년월일 : 원기65년(1980) 7월 14일

(2) 설립 과정

가) 설립 취지(목적)

조합원의 저축심을 함양하고 민주적 관리와 활용으로 조합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설립 유공인(발기인) : 이성열, 양정옥, 박재운, 이재복, 최홍식, 권재홍, 김정애, 장봉규, 한병종.

(3) 설립 당시의 규모

가) 설립 당시 주소 :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89번지

나) 설립 규모 : 총계 15,500원(자산:10,500원, 예탁금:5,000원)

다) 설립 당시 건물 : 영광읍 무령리 189번지 3평

(4) 초대 이사장 : 權世英(在弘)

(5) 이전 신축 및 확장

구 분	시설년월일	주 소	대지	건 물		시 설 경 비		
				용도	평	총액	기금	부채
확장(전세)	71. 12. 15	무령리 187	32坪	사무실	32坪			

2. 역대 임원진(이사 및 감사)

직 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대 이 사 장	權 世 英	男	1936. 11. 5	64. 2.24~67. 1.23	
부 이 사 장	여 강 식	〃	1932. 10. 5	〃	
이 사	한 병 종	〃	1929. 1. 8	〃	
〃	이 재 복	〃	1929. 4. 20	〃	
〃	이 환 식	〃	1938. 5. 28	〃	
〃	김 옥	女	1932. 1. 1	〃	
〃	이 윤 례	〃	1939. 11. 5	〃	
감 사	김 관 규	男	1925. 4. 1	〃	

감 사	정 인 근	男	1922. 4. 28	64. 2.24~67. 1.23	
2 대 이 사 장	여 강 식	〃	1932. 10. 5	67. 1.24~69. 1.23	
부 이 사 장	한 병 종	〃	1929. 1. 8	〃	
이 사	權 世 英	〃	1936. 11. 5	〃	
〃	이 환 식	〃	1938. 5. 28	〃	
〃	김 옥	女	1932. 1. 1	〃	
〃	이 윤 례	〃	1939. 11. 5	〃	
〃	정 인 근	男	1922. 4. 28	〃	
감 사	김 관 규	〃	1925. 4. 1	〃	
〃	진 재 식	〃	1922. 3. 22	〃	
3 대 이 사 장	이 환 식	男	1938. 5. 28	69. 1.23~71. 1.26	
부 이 사 장	이 윤 례	女	1939. 11. 5	〃	
이 사	여 강 식	男	1932. 1. 5	〃	
〃	權 世 英	〃	1936. 11. 5	〃	
〃	최 복 수	〃	1937. 1. 24	〃	
〃	김 상 관	〃	1942. 11. 23	〃	
〃	김 영 복	〃	1943. 6. 10	〃	
감 사	진 재 식	〃	1922. 3. 23	〃	
감 사	이 문 숙	女	1950. 10. 10	69. 1.24~71. 1.26	
4 대 이 사 장	여 강 식	男	1932. 10. 5	71. 1.27~	
부 이 사 장	김 덕 산	女	1939. 10. 5	〃	
이 사	정 인 모	男	1923. 6. 6	〃	
〃	조 기 현	〃	1932. 11. 7	〃	
〃	최 복 수	〃	1937. 12. 4	〃	
〃	이 상 형	〃	1940. 2. 15	〃	

3) 역대 재직 교역자

직 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이 사	김 영 부	男	1943. 6. 10		
감 사	정 귀 석	〃	1922. 5. 3		
〃	한 병 종	〃	1929. 10. 8		

4) 현 황

(1) 시설 규모 : 대지 32평

* 건물

건 물 명	평	구 조	비 고
신협사무실	32평	콘크리트	

(2) 자산 내역

총 자산 393,022,340원 { 출자금 : 98,737,170원 / 예탁금 : 264,239,620원 / 부 채 : 384,290,430원 }

(3) 임직원 : 계3명(남1, 여2)

다. 전주 원광 신용협동조합

1) 연 혁

(1) 설립년월일 : 원기57년(1972) 10월 22일

(2) 설립 과정

가) 설립 취지(목적)

조합원의 저축심을 함양하고 조합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으로 조합원의 자질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설립 유공인(발기인) : 김재열

(3) 설립 당시의 규모

가) 설립 당시 주소 : 전주시 경원동 3가 69번지

나) 설립 규모 : 총계 456,035원(자산 : 456,035원, 출자금 : 380,753원, 예탁금 : 6,900원, 부채 : 68,382원)

(4) 초대 이사장 : 조성재(두환)

(5) 이전 신축 및 확장

구 분	시설년월일	주 소	대지	건 물		시 설 경 비		
				용도	평	총액	기금	부채
이 전	71. 6. 29	경원동 3-69			98			

2) 역대 임원진(이사 감사)

직 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이 사 장	조 성 재	男	1919. 2. 3	57. 10. 22~66. 2. 22	
〃	노 시 중	〃	1925. 1. 9	66. 2. 23~70. 2. 24	
부 이 사 장	정 백 암	〃	1919. 2. 3	66. 2. 23~	
이 사	조 성 재	〃	1919. 2. 3	66. 2. 23~70. 2. 24	
〃	유 성 일	女	1928. 7. 26	〃	
〃	진 중 옥	男	1915. 1. 3	〃	
〃	이 양 구	〃	1922. 4. 8	〃	
〃	박 덕 천	〃	1928. 6. 21	〃	
〃	강 성 원	〃	1935. 9. 25	〃	

이 사	안 승 덕	男	1935. 4. 1	66. 2. 23~70. 2. 24	
감 사	유 치 원	〃	1920. 3. 13	〃	
〃	차 재 덕	〃	1933. 6. 28	70. 2. 25~	
이 사 장	유 성 일	女	1928. 7. 26	70. 2. 25~	
이 사	이 덕 기	男	1928. 5. 2	70. 2. 25~72. 2. 22	
〃	양 승 원	〃	1940. 12. 10	〃	
〃	곽 청 은	〃	1922. 11. 17	〃	
〃	황 의 석	〃	1933. 7. 24	〃	
〃	김 성 국	〃	1931. 8. 29	〃	
〃	성 일 도	〃	1928. 8. 14	〃	
감 사	유 성 진	〃	1921. 10. 20	〃	
이 사 장	송 영 지	女	1938. 10. 10	72. 2. 23~	
이 사	이 종 학	男	1942. 7. 30	〃	
〃	이 세 찬	〃	1942. 1. 10	〃	
〃	최 순 철	女	1937. 6. 4	〃	
감 사	강 서 원	男	1924. 2. 13	〃	
〃	이 석 준	〃	1936. 3. 15	〃	

3) 역대 재직 교역자

직 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이 사 장	柳 聖 一	女	1928. 7. 26	70. 2. 25~72. 2. 22	
상 무	金 周 映	男	1947. 7. 13	70. 3. 1~	
이 사 장	宋 靈 智	女	1932. 10. 10	72. 2. 23~	

4) 현 황

(1) 시설규모

* 건물

건 물 명	평	구 조	비 고
원불교 전주회관	98	라 멘 조	

(2) 자산내역

총자산 2,797,417,322원
- 출자금 290,200,588원
- 예탁금 2,413,649,267원
- 부 채 2,485,360,900원

(3) 임직원 계22명(남15, 여7)

라. 종로 원광 신용협동조합

1) 연혁

(1) 설립년월일 : 원기67년(1982) 2월 21일

(2) 설립 과정

가) 설립 취지(목적)

서울 교구내 교도를 공동 유대로 하여 원불교 창립정신에 근거한 근검저축 이사병행 일심합력의 정신으로 자산을 조성 교당 발전과 교도 가정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영육쌍전의 원만한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나) 설립 유공인(발기인)

고정석, 박영애, 김응준, 김옥례, 이운상, 정유석, 김정례, 박경자, 김복근, 김태흠, 김형두, 장승환, 한지현, 김순은, 김대희.

(3) 설립 당시의 규모

가) 설립 당시의 주소 : 종로구 낙원동 58－9

나) 설립 규모 : 총계 : 5,110,000원(자산 : 5,100,000원, 출자금 : 5,000,000원, 가입금 : 110,000원)

다) 설립 당시의 건물 : 4평

(4) 초대 이사장 : 고정진(정석)

2) 역대 임원진(이사 및 감사)

직 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이 사 장	高 井 振	男	1917. 5. 24	67～69	
이 사 장	李 廣 淨	〃	1936. 9. 1	70～	

3) 역대 재직 교역자

직 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전 무	金 性 圓	男	1953. 8. 1	67. 2. 21～	

마. 광주 원광 신용협동조합

1) 연혁

(1) 설립연월일 : 원기62년(1977) 11월 13일

(2) 설립 과정

가) 설립 취지(목적)

1. 조합원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 개발 사업
2.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출
3. 조합원에 대한 공제료 등의 대리 수납
4. 조합원 여유 자금의 외부 투자
5. 자금 차입
6. 조합원을 위한 교육사업 지역 사회 개발 사업
7. 조합원을 위한 각종 유가증권 귀금속 및 서류의 보호 예수 업무
8. 전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 업무

나) 설립 유공인(발기인)

추진수, 부척량, 정현숙, 김태환, 장인원, 김매수, 이기팔, 김선규, 임정택, 김한상, 김영수, 지갑례, 김희덕, 이경희, 최전아

(3) 설립 당시의 규모

가) 설립 당시의 주소 : 광주시 궁동 40번지

나) 설립 배경 : 광주 원불교 교도

총 계 : 889,320원(자산 : 889,320원, 출자금 : 889,320원)

(4) 초대 이사장 : 추진권(진수)

2) 임원진(이사 및 감사)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초대이사장	추 진 권 (진 수)	男	1915. 12. 18	62~71	
현 이 사 장	부 혜 광 (척 량)	〃	1934. 5. 1	62~	
이 사	정 진 숙 (현 숙)	女	1920. 10. 4	62~70	
〃	장 형 식 (인 원)	男	1940. 2. 14	62~66. 72~	현이사
〃	김 병 의 (태 환)	〃	1936. 12. 19	62~71	
〃	김 성 제 (희 덕)	〃	1940. 3. 9	62~64	
〃	김 명 렬 (매 수)	〃	1940. 2. 25	62~	현이사
〃	김 영 수 (영 수)	〃	1941. 9. 28	62~72	
〃	지 도 정 (갑 례)	女	1924. 5. 14	62~64	
〃	김 성 수 (홍 채)	男	1926. 10. 14	66~67	
〃	황 원 만 (만 석)	〃	1936. 9. 8	66~69	
〃	안 대 행 (태 식)	〃	1937. 1. 13	66~67	
〃	박 성 철 (광 수)	〃	1920. 10. 2	67~69	

부 이 사 장	임 동 명 (병 대)	男	1928. 7. 11	67~	현부이사장
이 사	변 인 서 (규 섭)	〃	1917. 2. 22	67~69	
〃	신 공 량 (용 식)	〃	1930. 9. 18	71~	현이사
〃	도 영 환 (응 태)	〃	1945. 7. 2	70~	〃
〃	이 남 현 (남 기)	〃	1954. 7. 14	70~71	
〃	김 홍 선 (남 숙)	女	1952. 11. 3	70~	현이사
〃	양 효 정 (석 호)	男	1954. 3. 3	70~71	
〃	한 상 석 (상 석)	〃	1955. 5. 25	72~	
〃	강 순 상 (춘 자)	女	1941. 4. 30	70~70	
〃	김 관 중 (한 규)	男	1953. 12. 11	72~	
감 사	임 중 제 (정 택)	〃	1932. 7. 26	62~64	
〃	안 대 행 (태 식)	〃	1937. 1. 31	62~64	
감 사	박 도 강 (화 성)	男	1934. 7. 10	66~69	
〃	김 지 선 (신 자)	女	1942. 12. 9	64~65	
〃	백 원 형 (형 덕)	男	1918. 11. 27	66~68	
〃	박 성 관 (건 순)	〃	1928. 5. 24	66~69	
〃	이 한 규 (순 빈)	〃	1932. 5. 4	69~	현감사
〃	신 공 량 (용 식)	〃	1930. 9. 18	70~71	
〃	강 순 식 (효 봉)	〃	1920. 11. 26	70~72	
〃	최 남 수 (남 순)	〃	1923. 8. 3	70~72	

3) 역대 재직 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이 사	李 圓 京 (基 八)	男	1940. 2. 2	62~72	
〃	鄭 眞 淑 (賢 淑)	女	1920. 10. 4	62~70	
〃	李 南 賢 (南 基)	男	1954. 7. 14	70~71	
〃	康 舜 常 (春 子)	女	1941. 4. 30	70~70	
〃	金 弘 善 (南 淑)	〃	1952. 11. 3	71~	
〃	金 觀 中 (漢 奎)	男	1953. 12. 11	72~	
감 사	金 至 善 (信 子)	女	1942. 12. 9	64~65	

4) 현 황

(1) 시설 규모

* 대지 : 39평
* 기타 부동산 : 채권관리

* 건물 16평 6호

건 물 명	평	구 조	비 고
주 택	39	콘크리트 슬라브	채권보존용(경락)

(2) 자산 내역

총자산 : 1,376,362,117원

출자금 : 299,775,003원
예탁금 : 969,601,197원
부 채 : 975,170,137원
부동산 : 23,518,280원

(3) 임직원 계19명(남13, 여6명)

5) 특별 사업 및 활동

년 도	사업및활동명	기 간	주 관 처	목 적	대상(인원)	활동내용	비 고
71~72	장학사업	1986~87	원광신협	인재양성 (불우이웃돕기)	대학생 3명 고등학생 5명 중학생 5명 계 13명		

바. 원불교 부산 신용협동조합

1) 연혁

(1) 설립연월일 ; 원기65년(1980) 11월 3일

(2) 설립 과정

가) 설립 취지(목적)

서로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교도들 끼리 자발적인 협동 조직을 통하여 이소성대의 원칙 아래 대종사 당시 저축조합 정신을 이어받아 근검 절약한 푼돈을 저축하여 목돈이 필요할 때 공정한 이율로 대부받아 이용하므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상부상조 자리이타 정신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나) 설립 유공인(발기인)

유진옥, 김향기, 방한철, 이운조, 김영철, 김승동, 임원선, 이균형, 신순임, 박세경, 이강임, 이신행, 양순금, 김옥득

(3) 설립 당시의 규모

가) 설립 당시 주소 : 부산시 중구 신창동 1가 38번지

나) 설립 배경

총계 : 6,681,023원(자산 : 6,681,023원, 출자금 : 4,345,650원, 예탁금 : 1,623,373원, 부채 : 1,623,373원)

4) 초대 이사장 : 柳正完(珍玉) 교무

2. 역대 임원진(이사 및 감사)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이 사 장	유 정 완 (진 옥)	男	1930. 11. 29	65. 11. 3~	
부 이 사 장	김 장 원 (향 기)	〃	1946. 5. 2	65. 11. 3~	
총 무 이 사	김 승 환 (승 동)	〃	1940. 12. 21	65. 11. 3~	
이 사	박 은 국 (영 애)	女	1923. 3. 22	71. 3. 24~	
〃	김 대 관 (대 관)	〃	1935. 3. 22	71. 3. 28~	
〃	송 자 명 (돈 임)	〃	1926. 9. 6	68. 2. 20~	
〃	양 남 근 (순 금)	〃	1915. 5. 27	65. 11. 3~	
〃	임 재 안 (원 선)	〃	1927. 1. 28	65. 11. 3~	
〃	최 성 조 (경 원)	男	1922. 11. 16	72. 7. 22~	
수 석 감 사	신 명 욱 (선 열)	〃	1918. 1. 15	70. 2. 24~	
감 사	심 보 중 (상 국)	〃	1924. 11. 16	70. 2. 24~	
〃	송 원 효 (재 환)	〃	1953. 5. 25	72. 2. 22~	
퇴 임 자	신 제 근 (순 임)	女	1922. 12. 29	65. 11. 3~71. 2. 23	
〃	김 성 오 (영 철)	〃	1921. 9. 1	65. 11. 3~71. 2. 23	
〃	양 혜 경 (영 식)	〃	1930. 4. 30	65. 11. 3~68. 2. 19	
〃	김법용심(옥득)	〃	1924. 2. 9	65. 11. 3~68. 2. 19	
〃	남 궁 원 (원)	男	1947. 12. 22	68. 2. 20~71. 2. 23	
〃	김 인 수 (수 영)	〃	1921. 4. 15	65. 11. 3~68. 2. 19	
〃	이 춘 일 (운 조)	〃	1941. 7. 27	65. 11. 3~72. 2. 21	
〃	방 성 심 (한 철)	〃	1916. 10. 7	65. 11. 3~68. 2. 19	
〃	송 영 지 (영 지)	女	1932. 10. 10	68. 2. 20~70. 2. 23	
〃	김 성 주 (농 주)	〃	1928. 10. 6	68. 2. 20~70. 2. 23	

3. 역대 재직 교역자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 년 월 일	재 임 기 간	비 고
이 사 장	柳 正 完(珍玉)	男	1932. 10. 5	65. 11. 3~	
부 이 사 장	金 長 源(香基)	〃	1946. 5. 2	65. 7. 3~	
이 사	朴 恩 局(英愛)	女	1923. 3. 22	71. 3. 24~	
〃	金 大 觀(大觀)	〃	1935. 3. 22	71. 3. 28~	
〃	宋 慈 明(敦任)	〃	1926. 9. 6	68. 2. 20~	

4) 현 황

(1) 자산내역

총 자산 : 1,573,294,678원
- 출자금 : 196,061,326원
- 예탁금 : 1,344,836,230원
- 부 채 : 1,349,827,445원

(2) 임직원 : 계16명(남8, 여8)

4. 마을금고

가. 원광 이리 새마을금고

1) 연혁

(1) 설립연월일 : 원기64년(1979) 12월 12일

(2) 설립 과정

가) 설립 취지(목적)

회원 상호간의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의 계발과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 계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 정신의 함양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설립 유공인(발기인)

김복환, 김팔곤, 이수웅, 김영두, 김성장, 한석진, 김의겸, 진견주, 김귀임, 이말희, 최승철, 김재경, 이병식, 이기팔, 김봉진.

(3) 설립 당시의 규모

가) 설립 당시 주소 : 이리시 남중동1가 147~37번지

나) 설립 규모 : 총계 : 361,000원(출자금 : 361,000원)

(4) 초대 이사장 : 金復煥(復煥)

(5) 이전 신축 및 확장

구 분	시설년월일	주 소	대지	건 물		시 설 경 비		
				용도	평	총액	기금	부채
이전(임대)	66. 10. 6	이리시 갈산동 205번지		영업	50			

2) 역대임원진(이사 및 감사)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이 사	김 복 환 (복 환)	女	1938. 12. 10	64. 12. 12~72. 1. 22	
〃	이 원 경 (기 팔)	男	1946. 2. 2	64. 12. 12~	
〃	김 현(봉 진)	〃	1947. 1. 15	64. 12. 12~68. 5. 25	
〃	김 성 윤 (분 임)	女	1931. 12. 29	64. 12. 12~67. 1. 10	
〃	김 성 택 (영 두)	男	1944. 7. 3	64. 12. 12~68. 5. 25	
〃	김 도 용 (팔 곤)	〃	1933. 11. 11	64. 12. 12~	
〃	윤 성 규 (석 심)	女	1930. 7. 25	64. 12. 12~70. 2. 8	
〃	이 성 국 (병 식)	男	1947. 12. 9	64. 12. 12~70. 28	
〃	이 준 일 (수 웅)	〃	1943. 5. 15	64. 12. 12~	현부이사장
감 사	김 정 연 (귀 임)	女	1935. 8. 23	64. 12. 12~68. 5. 25	
〃	김 성 훈 (성 장)	男	1947. 6. 18	64. 12. 12~67. 1. 16	
〃	최 경 도 (승 철)	〃	1950. 10. 4	64. 12. 12~	현이사
이 사	김 성 현 (영 채)	〃	1938. 3. 1	67. 1. 17~	현이사장
〃	이 성 은(영)	〃	1942. 5. 17	67. 1. 17~	
감 사	성 도 종 (도 종)	〃	1950. 7. 17	67. 1. 17~70. 2. 8	
이 사	구 안 복 (재 봉)	男	1939. 11. 13	68. 5. 26~72. 1. 22	
〃	김 강 인 (자 환)	〃	1938. 4. 14	68. 5. 26~	
〃	박 영 륜 (정 자)	女	1945. 4. 1	68. 5. 26~72. 1. 22	
〃	임 윤 철 (해 룡)	男	1935. 12. 15	68. 5. 26~	
〃	정 진 명 (영 준)	〃	1941. 2. 12	68. 5. 26~	
〃	조 명 량 (재 현)	〃	1921. 11. 7	68. 5. 26~	
〃	이 성 연 (군 자)	女	1944. 7. 29	68. 5. 26~	
〃	정 원 일 (균 삼)	男	1939. 2. 14	68. 5. 26~	
감 사	윤 정 관 (재 진)	〃	1935. 12. 6	68. 5. 26~	
〃	고 윤 성 (두 석)	〃	1952. 1. 26	70. 2. 9~	
〃	김 성 진 (춘 희)	〃	1939. 1. 13	70. 2. 19~	
이 사	박 달 식 (세 웅)	〃	1945. 1. 7	71. 1. 25~	
〃	김 복 원 (봉 한)	〃	1951. 8. 30	72. 1. 23~	
〃	박 광 수 (상 권)	〃	1948. 5. 26	72. 1. 23~	

3) 현 황

(1) 자산 내역

총자산 8,715,056,537원
- 출자금 : 1,043,059,871원
- 예탁금 : 7,007,364,094원
- 부 채 : 59,649,169원
- 부동산 : 106평
- 적립·충당금 : 604,983,397원

(2) 임직원 : 계42명(남29, 여13)

4) 특별 사업 및 활동

연도	사업 및 활동명	기간	주관처	목적	대상(인원)	활동내역	비 고
	장 학 사 업	65~71	이사장	장학사업	90명	8,400천원	
	교화사업지원	65~72	이사장	성업봉찬및교당지원		15,494천원	
	보호시설지원	65~72	이사장	고아원 양노원		6,409천원	
	(불우이웃)			외 불우이웃		30,303천원	

5) 역대 재직 교역자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상근부이사장	이 원 경 (기 팔)	男	1946. 2. 2	64. 12. 12~69. 9. 25	
전 무	김 청 유 (재 경)	〃	1951. 2. 2	64. 12. 12~72. 1. 30	
상근부이사장	이 준 일 (수 웅)	〃	1943. 5. 15	71. 10. 15~	
전 무	황 인 철 (의 태)	〃	1952. 6. 2	72. 2. 16~	

X. 青少年 團體

원불교의 청소년 단체의 시원은 해방이후 건국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戰災同胞救護事業이 끝날 무렵 이에 참가했던 교단내의 20代 청년 출가교도들이 구호사업 중 순직한 주산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원기31년(1946) 창립한 金剛青年團이었다. 그후 원기32년(1947) 운봉교당을 중심으로 재가 청년들이 금강청년회와 원기38년(1953) 여자금강청년단을 창립하며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한편 원기36년(1951) 1월에는 총부를 비롯한 익산지방 교도들의 자녀인 남녀 중학생 40여명이 「원불교 학생회」를 조직하였는 바 이는 원기38년(1953) 3월 14일 발전적 해체를 하여 중·고·대학생을 망라한 학생회로 변모하였다. 그러다가 대학생들은 교무회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었고 중·고학생들은 학생회를 계속 발전하여 원기42년(1957)에는 '원불교 학생연합회'를 발족하였다. 한편 분리된 교우회는 원기47년(1962) 교우회연합회를 결성하였으며 원기49년(1964) 제2차 정기총회시 '원불교청년회'로 개칭되었다.

원불교 대학생들은 교우회가 청년회로 개칭되면서 청년회에서 함께 활동해 오다가 원기63년(1978) '원불교 대학생연합회'를 결성하여 청년회와 분리하였다.

이와같은 원불교의 청소년 단체 발전분류의 과정을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단체 분화발전계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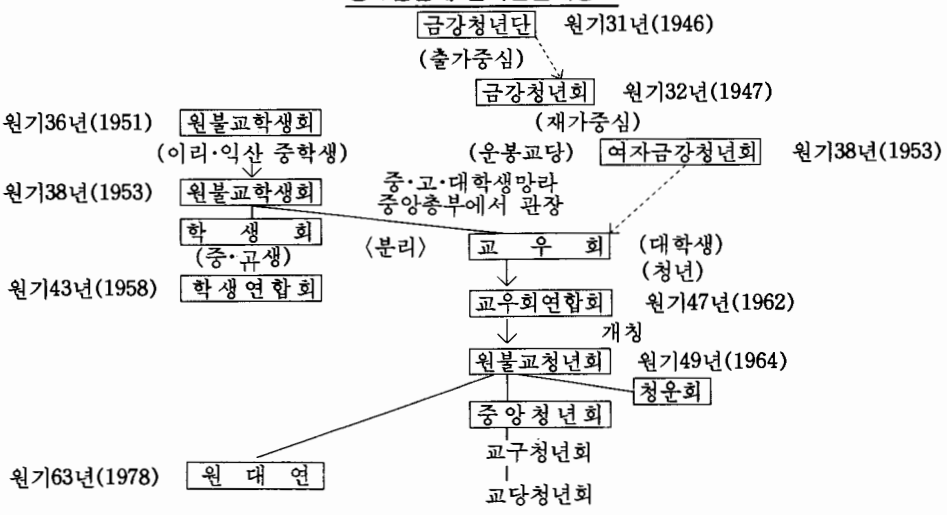

1. 원불교 청년회

가. 개 관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에서 비롯된 원불교는 대각 당시 26세이던 청년대종사를 중심으로한 청년들의 종교운동이었다. 따라서 원불교청년회는 원불교 교단사와 그 시원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내에서 자율성을 가진 조직적인 청년 단체로서는 원기31년(1946) 해방과 더불어 조직된 금강청년단이 그 시원이다.

해방 이후 건국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재동포구호사업이 끝날 무렵 이에 참가했던 교단내의 20대 청년출가교도들이 구호사업 중 순직한 주산 송도성(1907~1946)교무의 유지를 받들어 원기31년(1946) 4월 1일 "금강같은 굳은 단결, 금강같은 밝은 지혜, 금강같이 날랜 행동으로 破邪顯正에 앞장서자"라는 취지아래 남녀 108명의 단원이 창립총회를 가졌다.

원기32년(1947)에는 전주 운봉교당 등지에 재가청년을 중심으로 한 금강청년회가 조직되었고, 그후 원기33년(1948) 3월 대회에서는 재가 출가가 망라된 금강청년회의 발족이 있었다. 그러나 중앙총부의 금강청년단은 유일학림의 개설로 활동이 침체되었고, 대신 그 활동은 지방청년회로 옮겨졌다. 원기38년(1953)에는 운봉에 여자금강청년단이 조직되어 지역사회발전과 교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영광지회와 김제(현 원평)지회도 오랫동안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한편 원기36년(1951) 1월에는 총부를 비롯한 익산지방교도 자녀인 남녀 중학생 40여명이 '원불교 학생회'를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후 이 학생회는 원기38년(1953) 3월 13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중앙총부가 관장하는 중·고·대학생을 망라한 학생회로 변모하였다. 그러다가 학생회는 중·고등학생을 본위로 하게 되고 대학생 중심의 모임은 교우회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었다. 당시 교우회들은 지부에 소속 혹은 소속되지 못한 채로 활동하여 정확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 원기40년(1955)대 초에는 서울·부산·전주·이리 등지에 상당수의 교우회가 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직된 교우회들이 「원불교 교우회 연합회」를 결성하여 제1차 교우회 연합정기총회를 개최하니 그 때가 원기47년(1962) 8월 25일이었으며 원기49년(1964) 7월 5일 제2차 교우회 연합정기총회에서는 그 명칭이 개칭되어, 드디어 「원불교 청년회」가 탄생되었다.

나. 연 혁

금강청년단 조직 이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31. 4. 1 금강청년단 발족
32. 금강청년회 조직(재가청년 중심)
33. 3. 〃 발족(재가·출가 망라)
38. 여자금강청년단 조직
42. 중앙교우회 결성
47. 8. 25 원불교 교우회 연합회 결성
49. 7. 5 원불교 청년회로 개칭
49. 제1회 원불교청년회전국훈련대회
50. 7. 청년연합강습회
50. 7. 15 「청년회지」 발간, 청년회3대운동 전개
51. 7. 청년강습회
51. 9. 15 「원불교청년회회보」 발간
52. 청년회歌 발표
52. 7. 제4회 원불교 청년대회
52. 8. 유년회 지도자 강습
53. 7. 제5회 원불교청년회대회
54. 6. 원불교청년회보 폐간. 원불교신보로 전환
54. 7. 제6회 원불교청년회대회
55. 2. 전국청년지도자 대회
55. 7. 靑友會 발족(62. 靑耘會로 개칭)
55. 8. 제7회 원불교청년회대회
56. 7. 제1차 전국청년지도자 대회
56. 7. 제8차 원불교청년회전국수련대회
56. 10. 개교반백주년기념대회 참가. 종법사 원불교청년회기 하사
57. 한국청소년 단체 가입
57. 7. 원불교청년회 「10년史개요」 발간
57. 7. 제9회 원불교청년회대회
57. 10. 청년회지도위원 전국대회
58. 8. 제10회 원불교청년회하계수련대회

59. 4. 전국교리강연대회
59. 7. 한국청소년단체 연합봉사 참가
59. 일본 총리부 초청 박훈파견
59. 8. 제11회 원불교청년회하계훈련
59. 8. 제2차 원불교청년회지도자 훈련
60. 3 원불교청년회서울사무소 개설
60. 7. 제3차 원불교청년회지도자 훈련
60. 8. 제12회 원불교청년회훈련
61. 제1회 원불교청년회지도자 수련회 개최
62. 8. 제14차 원불교청년회훈련
62. 8. 제4회 원불교청년회지도자 훈련
63. 7. 원불교 교수협의회 결성
63. 전국대학생 연합회 결성
63. 12. 제4차 원불교청년회지도자 훈련
64. 4. 제2회 전국청년 교리강연대회
64. 8. 제16차 원불교청년회훈련
64. 10. 청년회 지도자 연수회
65. 4. 제3회 전국청년교리강연대회
66. 1. 제5차 원불교청년회지도자 훈련
66. 4. 제4회 전국청년교리강연대회
66. 원불교청년회20주년대회 준비위원회 결성(위원장 : 김도광)
66. 12. 제6차 원불교청년회지도자 훈련
67. 5. 제5회 전국청년교리강연대회
67. 8. 원불교청년 이념조직 세미나
67. 12. 제7차 원불교청년회지도자 수련회
68. 5. 제6회 원불교청년회교리강연대회
68. 7. 제19차 전국청년훈련
68. 12. 제8차 원불교청년회지도자 훈련
68. 12. 「원불교청년회운동의 이념과 실제」 발간
68. 12. 제7차 지도자 수련회
69. 7. 원불교청년회 20주년 기념대회
69. 10. 20주년 기념 종교 심포지움

69. 12. 제9차 원불교청년지도자 훈련
69. 3. 원불교 청년회보 발간(월간)
70. 3. 원불교청년 사회교화위원회 발족
70. 2. 「원불교청년 프로그램의 실제」 발간(200부)
70. 7. 원불교청년 훈련교재 발간(1,000부)
70. 7. 제21차 전국청년훈련(삼동훈련원)
70. 12. 20 원불교청년회 20년사 1,500부 발간
71. 4. 제1회 교구청년회 훈련요원교육실시
71. 7. 청년훈련의 교구단위 확산실시
71. 제2차 사회교화 연구 발표
72. 사회개벽청년단 조직(부산·대구·마산·이리 등)

다. 역대임원

대	직책	법명	재임기간	비고	대	직책	법명	재임기간	비고
	명예단장	박장식	31. 4. 1~	금강청년단	3	총재	박장식	51. ~53. 7.	
	고문	박광전	〃			교감	김중묵	〃	
	〃	송혜환	〃			회장	김정용	〃	
	〃	조회석	〃			부회장	조정근	〃	
	〃	조갑종	〃			〃	조경원	〃	영남지역
	〃	이운권	〃			〃	강을성	〃	서울지역
	단장	안이정	〃		4	총재	박장식	53. ~55. 7.	
	총재	교정원장	47. 8.25~49. 7. 4	교우회연합회		교감	김중묵	〃	
	회장	교무부장	〃			회장	김정용	〃	
	부회장	이춘일	〃	서울		부회장	조정근	〃	
1	〃	김정기	〃	광주		〃	김도광	〃	마산
	총재	박장식	49. 7. 5~50.	원불교청년회		〃	이길행	〃	
	교감	박은국	〃		5	총재	이운권	55. ~57. 7.	
	회장	권재홍	〃	서울		교감	이은석	〃	
	부회장	이춘일	〃	서울		회장	김정용	〃	
	〃	김승환	〃	부산		부회장	심도정	〃	
2	〃	노홍원	〃	마산		〃	장수진	〃	
	총재	박장식	50. ~51. 7.			〃	이법준	〃	부산
	교감	박은국	〃		6	총재	김근수	57. ~59. 7.	
	회장	김정용	〃			교감	이광정	〃	
	부회장	조정근	〃	상임		회장	조정근	〃	
	〃	조경원	〃	영남지역		부회장	이재성	〃	
	〃	강을성	〃	서울지역					

6	부 회 장	김 법 운	57.	~59. 7.
	〃	김 호 영		〃
	〃	김 도 광		〃
	〃	홍 정 덕		〃
	사무국장	김 도 융		〃
7	총 재	김 근 수	59.	~61. 7.
	교 감	이 광 정		〃
	회 장	김 경 원		〃
	부 회 장	김 성 철		〃
	〃	김 도 융		〃
	〃	김 호 영		〃
	〃	김 법 운		〃
	감 사	강 을 성		〃
	〃	홍 정 덕		〃
	〃	김 도 광		〃
	사무국장	라 도 국		〃
8	총 재	김 근 수	61.	~62.
	교 감	이 광 정		〃
	회 장	김 경 원		〃
	부 회 장	김 도 융		〃
	〃	김 수 진		〃
	〃	장 형 식		〃
	〃	송 관 은		〃
	〃	김 법 운		〃
	사무국장	강 운 상		〃
9	총 재	김 근 수	63.	~64.
	교 감	이 광 정		〃
	회 장	김 경 원		〃
	부 회 장	김 도 융		〃
	〃	송 관 은		〃
	〃	장 형 식		〃
	〃	김 법 운		〃
	〃	김 수 진		〃
	사무국장	강 운 상		〃
10	총 재	김 근 수	65.	~66.
	교 감	박 정 훈		〃
	회 장	김 도 융		〃

10	부 회 장	강 운 상	65.	~66.
	〃	박 청 수		〃
	〃	윤 광 준		〃
	〃	김 성 육		〃
	〃	김 도 광		〃
	사무국장	강 운 상		〃
	감 사	심 도 정		〃
	〃	김 법 선		〃
11	총 재	김 근 수	67.	
	〃	김 윤 중	68.	
	교 감	박 정 훈	67.	~68.
	회 장	김 도 융		〃
	부 회 장	강 운 상		〃
	〃	박 청 수		〃
	〃	윤 광 준		〃
	〃	김 도 광		〃
	〃	김 성 육		〃
	감 사	심 도 정		〃
	〃	김 법 선		〃
	사무국장	강 운 상	67.	
	〃	장 연 광	68.	
12	총 재	김 윤 중	69.	~70.
	교 감	김 이 현		〃
	회 장	김 도 광		〃
	부 회 장	강 운 상		〃
	〃	박 청 수		〃
	〃	윤 광 준		〃
	〃	박 정 원		〃
	〃	김 성 육		〃
	감 사	심 도 정		〃
	〃	김 법 선		〃
	사무국장	장 연 광		〃
13	총 재	김 윤 중	71.	~
	교 감	김 이 현		
	회 장	박 청 수		
	부 회 장	박 정 원		
	〃	김 혜 심		

13	부 회 장	김 원 도	71.	~		13	감 사	이 대 훈	71.	~
	〃	황 의 수		〃			사무국장	장 연 광		〃
	감 사	김 현		〃						

라. 조 직

원기31년(1946) 4월 1일 108명의 남녀단원으로 창립된 「금강청년단」은 단장예하에 인사·문예·선전·재무·체육·오락의 6부장을 두고 고문과 명예단장을 추대한 기구가 있었고 원기47년(1962) 8월 25일에는 「원불교교우회 연합회」가 결성되었으며 그후 원기49년(1964) 7월 5일 「원불교청년회」로 개칭되어 회장단이 구성되었으며 원기57년(1972)에는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원기59년(1974) 8월 4일 제12차 정기총회에서는 재가회장이 영입되고 사무국장에 전임교역자가 배치되는 변모를 가져왔으며 그후 서울에도 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1년후 폐소하고 말았다.

원기50년(1965) 6월에는 「원불교청년회 전북지구연합회」가 발족되었고 그 후 서울·전남지구 연합회가 계속 창설되었다.

당시의 전국의 청년회연합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구연합회	창 설	회 장	부 회 장	비 고
전 북	50. 6.19	김봉성(전주)	황정탁(남원),안윤교(정읍)	전북지역내 25개 지부청년회
서 울	51.10.29	장동윤	김호영,조정제	서울·종로·원남지부200여명. 58.3.10 해체
서울·경기	58. 3.25	김성육	최경곤,박정원,고영란	서울지구청년회에 경기일원의 청년회를 포함
전 남	52.11.26	김도응	변원중,박원초,김유진	전남내 8개지부 청년회
부 산	50.11.23 56. 3.21	박영하,윤형석	김익준,신금준,이재명	52.11.5 영남지구연합회 결성시 해체. 56.3.21 재결성
영 남	52.11. 5	조경원	김정천,이덕수,박충륜	56.3.21 부산지구연합회가 분리되자 마산지구연합회의 모체가 됨
정 읍	50. 4.14 58.(재결성)	신영문,조중천	정관석,변형태	
이리·익산				임시조직
남 원				임시조직

중앙청년회의 조직기구는 회장이 교감과 총재를 추대하고 부회장 5인, 사무국장 1인, 간사 약간인을 두고 집행부를 구성한다. 한편 의결기구로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총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감사를 두어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한다. 중앙청년회의 예하에는 현재 20여개의 각 교구연합회와 160여개의 각 교당청년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불교청년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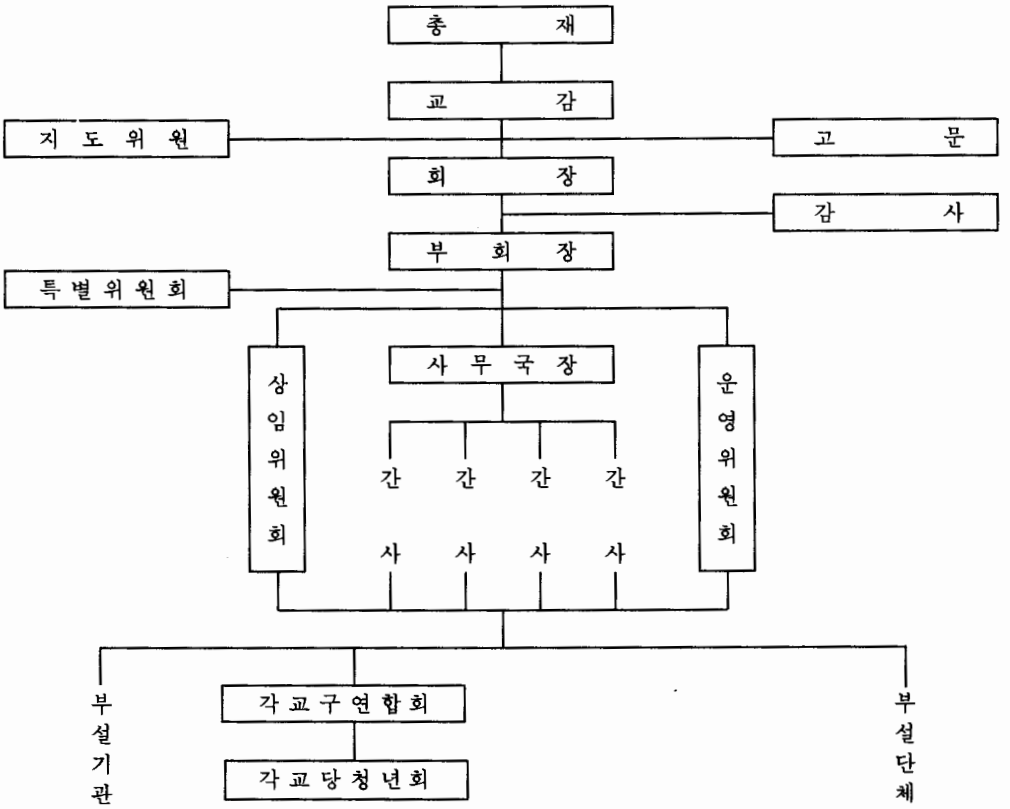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재는 총괄지도하는 교정원장이 당연직으로 추대된다. 교감도 당연직으로서 교정원 교화부장을 추대하여 총재를 보좌하고 지도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본회를 지도한다.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분과 회장이 추대한 분으로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지도위원회에 참석한다. 지도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회장이 추대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교감이 소집하는 지도위원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을 지도한다.

다. 역대정기총회

원불교 역사 속에 중요한 사항이 결의되어온 정기총회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47. 8. 25 청년회(교우회) 정기총회 총 26개교당 대표참가
49. 7. 5 회칙개정, 대학교우회조직, 봉사를 통한 교리실현
50. 7. 15 교전·원광지 보내기운동, 교리의 생활화·대중화 방안, 상조재단 설치, 순회집단지도
51. 7. 30 4대운동전개, 미결성교당 자매청년회조직, 청년회비책정, 수재의연금모금
52. 7. 23 원청 8대운동전개, 장기사업촉진방안모색, 청년회 순교감제도 확립
55. 8. 1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정, 반백주년사업동참
56. 7. 25 사무국개설, 사무국장제도마련, 청년회기제작
57. 7. 15 명예회장제도·사무국장, 일하며 공부하는 청년회 교리학교개설, 청년회전담순교무제, 식생활개선운동, 원불교 문화창조의 기수.
58. 8. 4
59. 8. 4 원청사무국의 서울이전, 청년회육성기금모금, 성가지도·새생활운동
60. 8. 3 원불교대학생회결성, 교역자훈련 등 청년회 정책발표
61. 결혼상담소개설, 청년담당교역자협의회, 교금 5%징수적극실시, 여성분과활성화
63. 7. 30 새청년상정립, 청년훈련프로그램개발, 성가발표회, 신협설립권장
63. 12. 25 조직체계강화, 교리실천 성공사례발표
64. 12. 23 원청이념·조직·운영 프로그램 세미나
66. 1. 25 교리강연대회 실시
66. 12. 27 훈련정책참여. 성지순례, 근로청소년 야학개설.
67. 12. 26 원청회보복간, 국제청소년단체와 교류, 원청20주년기념대회결의 실시
68. 12. 18 20년사 발간결의확정, 원청운동의이념과 실제 발간, 원청숲조성20주년전초행사(지리산 기원식),
69. 12. 23 정기총회. 원청20주년기념심포지엄(UR) 원청이념비건립결의

☆ 원청20주년 기념대회

원기69년(1984) 7월 7일 18시 농악대의 장단에 맞춰 단기를 앞 세우고 서로 만나 19시30분, 봉고식장에 모여 19시40분 이리교구청에 4일간 보존된 성화가 이리시가를 달려 20시15분 총부정문에 도착 드디어 점화되자 「개벽의 함성 온 누리에!」의 대회기념가 합창이 있은 후 봉고식 거행되었다. 김도광 중앙청년회장은 「구도인·봉공인·조화인·개벽인의 원청인상을 완성하여 조국통일과 인류화합을 위해 정신개벽의 기수로서 일원세계 건설의 역군이 되자」는 봉고문을 낭독했다. 21시 성가대의 합창 속에 서원의 촛불 행진이 있었고 22시가 되자 농악장단에 맞춰 강강수월래는 시작하였다.

8일은 새벽 5시 영모전 광장에서 禪시간을 갖은 후 덩더꿍체조로 몸을 푼 후 도량을 청소했다. 9시 빗 속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가진 후, 9시30분에는 기념식장인 원광대 실내체육관에 모여 「한국 사회구조의 변동과 청년의 자세」라는 주제로 임희섭교수의 강연이 있은 후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오후 1시 다짐의 마당에서는 창조에의 의지, 구도에의 의지, 상생에의 의지, 보은에의 의지, 자유에의 의지 등을 탈과 가슴 깊이 새겼다. 오후 3시 영모전 광장에서 개벽의 행진 발대식을 가진 후 3개조로 편성한 농악대 장단에 맞추어 이리시가를 행진 이리역에 운집하여, 정신개벽의 실천을 통한 청년운동을 끝없이 펼쳐나갈 것을 다짐한 후, 각자의 교당과 가정·직장으로 떠났다. 이로써 원청은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회고하면서 성년 원청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으며 역사 속에서의 원청의 역할을 재확인한 원청 20주년 기념대회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주년 기념개회에 참가한 각교구 청년회원과 총인원은 다음과 같다.

20년대회 참가자 현황

광 주 교 구 : 221명	남 원 교 구 : 77명	대 구 교 구 : 175명	영 광 교 구 : 106명
마 산 교 구 : 122명	부 산 교 구 : 335명	서 울 교 구 : 339명	제 주 교 구 : 9명
이 리 교 구 : 242명	전 주 교 구 : 147명	정 주 교 구 : 122명	
청 주 교 구 : 32명	춘 천 교 구 : 40명	대 전 교 구 : 182명	합 계 : 2,149명

원청20주년 기념대회 총 참가자수

일 반 청 년 : 2,149명	교 단 간 부 : 105명	지 방 교 무 : 317명	예 비 교 역 자 : 249명
본 부 임 원 : 94명	청 운 회 원 : 68명	외부초청인사 : 27명	기타(이리교구교도)823명
총 합 계 : 3,832명			

마. 활 동

1) 교화분야

① 교리강연대회

회수	일 시	장 소	주 제	참가교구, 교당 발표자
1	59. 4. 7 (1974)	서울교구 원남교당	청년의 신앙체험	〈학생부〉 임홍선(서 면) 서경훈(화 천) 임대정(팔 봉)우수상 윤순구(필 동) 양지안(사 직)최우수상 허은호(서 울) 〈청년부〉 이덕원(용 신)우수상 양성근(전 주)최우수상 이지철(부 산) 채정일(종 로) 이윤기(경북대) 추현석(신 촌) 조남형(원 남) 강대석(필 동)
2	64. 4.21 ~22 (1979)	전주교구 전구교당	원불교인의 신앙 1. 원불교 신앙의 특징 2. 원불교 신앙과 사은의 관계 3. 원불교 청년의 신앙생활 4. 신앙체험담(택1)	문성호(원대연) 이형로(운 봉) 이상정(금 산) 박성종(동이리) 한선화(전 주) 김용주(대 전) 최봉은(고 성) 조원각(영 광) 김헌철(신 촌) 한병현(영 광) 이귀봉(정 읍) 오양인(남 원)최우수상 임명준(삼 덕) 김중호(광 주) 오용현(전 주)우수상 백용만(남부민) 나도성(정 읍) 이진주(대 연) 구양호(대 구) 박제관(익 산) 권동우(서 울) 김응배(마 산)
3	65. 4.21 ~22 (1980)	부산교구 부산교당	4요 실천방안 1. 자력양성 2. 지자본위 3. 타자녀교육 4. 공도자 숭배(택1)	〈수상자〉 윤상덕(금산)－최우수상 하용묵(군산)－우수상
4	66. 4.25 ~26 (1981)	남원교구 남원교당	최초법어	〈수상자〉 김진선(운봉)－최우수상 백치용(대전)－우수상
5	67. 5. 8 ~ 9 (1982)	이리교구 이리교당		〈수상자〉 유원정(여수)* 백성화(봉덕)

6	68. 4.30 ~5. 1 (1983)	중앙총부 대 각 전	1. 참회와 새 역사창조 2. 현대사회와 정신개벽 3. 나의 인생설계 4. 개교정신과 원청이념 구현(택1)	〈수상자〉 김일정(남중) 최성호(영광)
7	70. 5. 4 ~ 5 (1985)	광주교구 광주교당	이웃에게 은혜를	유 정 후(광주) 김 홍 집(대전) 김 기 선(부산) 최 보 광(서울) 정 설 영(영광) 남궁성학(이리) 김 홍 만(전주) ※ 수상자 없이 발표, 논찬, 토론 중심
8	71. 5.10 ~11 (1986)	대전교구 대전교당	사회교화 운동의 활성화 방안	고경주(동광주) 김종덕(동대전) 정선기(해운대) 박인환(돈 암) 이지하(정토회) 김정곤(전 주) ※ 수상자 없이 발표, 논찬, 토론중심
9	72. 5.16 ~17 (1987)	정주교구 정주교당	민족경제 수호운동	홍창훈(광 주) 윤법경(대 전) 이상훈(부산동) 박수오(부산서) 최보광(서울동) 김종신(서울서) 박성진(이 리) 정준화(전 주) ※ 발표, 논찬, 토론 중심으로 진행함.

2) 훈련분과

1회 56. 7.24~25 강사 : 김정용회장－반백년기념대회와 청년회, 변중선교무－원불교청년회 사명(청년회 현황보고), 김도융교수－청년회의 당면과제(총회 주요안건보고), 이은석교무－교단에 있어서의 청년회, 전성완, 장동윤－원불교청년회는 어디로.

연합회의 밤(서울·전북·전남·부산 및 경남지구 현황보고 및 연예프로) 교지만필 경연대회. 중앙총부 기념관에서 지도자 훈련 150명 참석.

2회 59. 8. 5~ 8 강사 : 김도융교수－개교의 동기, 조정근교무－최초법어, 김인철교무－교리도. 그외 청년회운영문제(10인단법). 신분검사－이광정교무. 신도안 삼동원에서 종법사 모시고 지도자훈련. 150명 참석.

3회 60. 8. 2~ 4 강의제목－교리도, 청년지도자 대화의 시간. 무주구천동에서 종법사 모시고 훈련. 41명 참석.

4회 63.12.23~25 강사 : 조정근교무－오늘의 조국과 원불교청년, 송천은교무－개교정신 박정훈교무－우리의 신앙, 이재성교무－우리의 수행. 기타 64년도 원청의 방향. 무주구천동에서 실시 60명 참석.

5회 65. 1.21～25 강사 : 이공전교무－교사. 심도정교무－최초법어, 박정원교수－지도력 훈련. 김도융회장－원청지도자에 대한 부탁말씀. 부안내변산 원광선원에서 실시. 52명 참석.

6회 66. 1.21～26 사회 : 김현, 심도정교무. 강사 : 김도융회장－원청20년사에서 본 원청운동(발제Ⅰ), 심도정교무－원청20년사에서 본 원청운동(논찬), 유기현교무－병든사회와 그 치료법, 이성택교무－집단지도의 이론과 실제, 박정원교수－원청이념과 활동방향(발제Ⅱ), 이성은교무－원청이념과 활동 방향, 박청수교무－원청의 각오. 아침강의－박정훈교무. 그외 교구별 현황발표. 사례발표 토의 : 종합보고. 원청, 대학생정기총회·중앙총부중앙훈련원과 문화원에서 실시. 80명 참석.

7회 67.12.24～26 강사－김도융회장－원청의 이념, 토의사회 : 신명국교무, 박정원교수－원청의 조직관리, 토의사회 : 이종순대구연합회장. 김도광교무－원청20주년 사업계획, 토의사회 : 김성육원청부회장. 성도종교무－원청 훈련계획, 토의사회 : 교구별 훈련계획. 삼동훈련원에서 82명 참석.

8회 68.12.16～18 강사 : 박청수교무－나는 원청운동의 기수. 김일상교무, 양주인－교단, 교당 청년회 운영의 실제. 김도융교수－원청의 이념. 성도종교무－원청프로그램. 그외 원청오락개발, 원청20주년 교구별 프로그램계획, 촛불서원기도식 중앙훈련원에서 실시. 120명 참석.

9회 69.12.18～20 강사 : 김현교무－이웃에게 이웃을. 이덕천교무－원청운동의 사회적 접근. 양인기교수－원청이 나아갈 봉사대 활동. 박정원교수－주년 향후운동조직 아침설교 : 심도정교무－지금 세가지 물음앞에 나가자. 한희윤교무－봉공인의 즐거움. 그외 봉사활동으로써 병원방문 나의각오. 김인강교무－원청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마당. 송양진회장－교구청년회 조직확대의 과정 및 전망. 김선경교무－청년교화 사례소고. 양주인·김인선회장－교구청년회 조직확대의 과정 및 전망. 김홍만교우－중앙 및 교구토론에 대한 발표. 토론－원청봉공의 필연성과 방향. 중앙훈련원에서 120명 참석.

10회 70.12.20～22 강사 : 유기현교무－인간화 운동을 향한 지도자의 역할. 오정탁－인간화운동과 원청운동. 서경전교무－원불교 문화창달 재고를. 조정근교무－인간화운동을 위한 원청지도자의 역할. 이덕천, 남궁문교우－인간화운동의 실제, 1)부산교구 청년회의 청년회사무실과 전담인력의 배치 활용, 2)정신병자를 향한 인간화운동. 장연광교무－교구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소개. 유금봉교우－지도력 향상을 위한 레크레이션기법. 김도융교수－원청이 지향해야 할 사회교화 활동. 중앙훈련원에서 95명 참석.

11회 72. 4.14～ 5 강사 : 이종진교무－원청지도자의 신앙생활. 송봉원교우－원청의 역사와 현단계 과제. 정성길교우－원청운동의 실천방법. 김일상교무－중앙교구, 교당 청년회 협력방안. 장연광교무－원기72년 원청계획. 이덕천교우－원청조직체계의 강화를 위한 조직 발전. 김도융교수－인류사회의 신앙적 원류가 되어야 할 원청. 그외 민족경제 수호운동. 중앙훈련원에서 105명 참석.

3) 문화분야

① 발간물

발간물명칭	창간일시	내 용	비 고
원 불 교 청년회보	51. 9.15	〈원불교청년회보 창간호 내용〉 1) 창간사/김정용청년회장, 치사/박장식 청년회총재, 격려사/박길진 원광대학장, 축사/서경택 원불교전주지부장 2) 논단:청년과 원불교사회 한정원/교단에 향한 청년의 책임, 송천은/청년회에 대한 교단의 책임, 유기현/원불교적 청년상, 조정근/55주년과 청년회 3) 특집:원불교청년회의 나아갈 길(배심좌담회) 때·원기51년(1966) 7월 29일 오전10시 곳·원광대학 7강의실 사회/조정근 기록/성인종 배심원/박은국교무부장 이공전/정회사 주간 유기현/원광대 도서관장 김도융/누문지부 이윤중/서울지부 장법운/부안지부 심도정/예비교역자 김정용/청년회장 4) 교리강연대회 입상자 발표와 내용 수록 종법사상/조경원(마산) 총재상/윤광준(서울) 회장상/김용정(광주) 5) 원청소식란·정기총회내용·3대운동실천 시상및 4대운동 전개 6) 청년시단·미담·청년회 회칙·편집자 변	다블로이드판 4면. 월간. 인쇄:전주보광 출 판 사 사장:김정용 주간:조정근 편집:서경전 54.2.원불교신보 창간시 26호로 폐간
10년사개요	57. 7.15	1. 발간사, 2. 청년회 중요 약사, 3. 연혁의 개요, 4. 역대임원명단	4·6판. 38페이지. 프린트본
원청운동의 이념과실제	68.12.	1. 청년기의 이해, 2. 원청이념의 체계표(67.12.26 제작), 3. 원청20년의 운동, 4. 원청의 조직과 운영의 실제, 5. 집단지도의 이론과 실제, 6. 원청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7. 교구청년회 운영의 실제, 8. 교당청년회 운영의 실제, 9. 대학생회 조직운영의 실제, 10. 회의진행법	4·6판. 246페이지 원청이념도 수록

발간물명칭	창간일시	내 용	비 고
원불교청년	69. 3. 1	〈「원불교청년」 창간호 내용〉 1) 「원불교청년」을 내면서/청년회장 김도광 (제호·특집안내·목차) 2) 「원불교청년」 창간을 축하하며/윤산 김윤중(교정원장·원불교청년회총재 축사) 3) 원청 창립20주년의 의미/김도용(원청 명예회장) 4~7) 창간기념특집/한국 청소년의 오늘과 내일 한국청소년의 현실/정철희(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상담연구실장) 청소년의 바람직한 미래성/박정원(원광대교수·원청부회장) 8) 원청조직표, 원청 중앙 임원 및 교구연합회장 명단 및 주소, 원청게시판(공지사항)	16절지판 4~8면. 월보
원청Program의실제	70. 2. 1	1. 원청20주년 행사개요 2. 지리산 훈련 3. 원청20주년 기념대회 4. 종교간의 대회심포지움 5. 기념숲조성및 이념비 건립 6. 원청20주년 기념행사평가	4.6배판. 편집 : 원청사무국 발행 : 원광사
원불교청년회훈련교재	70. 6.10	1. 원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2. 원불교청년회의 이념 3. 건국론 부록:법어선·염송문·원불교교도가 알아야 할 일	문고판 120페이지

〈원불교청년 회지·회보〉

교 당	회지·회보	발행일	면수	종별	편집인	발행인	비 고
불 목	冬 柏	51.12.23	6	월간			
서울지구	圓 波	56.12. 2	120	연간	이우익 서원금 김용선 이정배	김호영	
원 남	새 슬 기	58. 6.15	4	월간	문 화 부	양 현 국	창간당시는 「원남청년회보」프린트本
	淸明法鼓		4	주보	윤 태 섭	이 경 철	
서 울	청년회보	59.10.17	12		양영진외4명	마 운 원	
	恩 童	66. 1. 5	8	월간	문 화 부	양 현 국	
면 목	한 일 터	59. 4.	80	연간	김정행 이종윤 김홍식	최 경 곤	
종 로	한 울 안	60.11.	24	연간	김 청 원	우 성 철	문예지
	참 빛	65.12.27	2	월간	고주신외9명	종로청년	8절지 4면
전 주	주간소식	53. 3.					
	옥 녀 봉						
	眞 理	63.12. 6				김 영 석	
	반 석	65. 6. 1	8	월간		〃	

② 예　　술

행 사 명 칭	일 시	비 고
서울지구연합회 청년성가대발표회	54.12.	10월 조직후 첫발표
圓 樂 會 조 직	56. 3.28	국악고교생 13명. 회장 : 우성철
圓 美 會 발 족	66. 9.	원광대학 미술대학생 60명. 71.5월 현재까지 10집의 「圓美」志발간
「소태산대종사」공연	67. 4.13~14	부산시민회관, 원불교극예술연구회(송원요교무, 연주연출가 석철우). 4회공연
〃	67.10.10	원불교서울회관 봉불낙성기념, 서울교구학생회
원불교대학생연합회 극예술연구회발족	68. 3. 1	
圓音합창단창단	69. 7.	단장 최세영, 지휘 방도웅, 대구교구청년회중심
圓 舞 會 창 단	70. 6.	원대무용과 11 (이강용, 이은주, 김순복 등)
청년농악대조직	70. 7.	부산지구

5) 교류분야

원청의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는 다음의 네 가지 흐름으로 정리된다.

첫째, 원청창립기에 교당청년회 단위로 이루어진 타종교 청년과의 소규모 친선교류와 회의 등의 종교간 교류

둘째, 청협·유네스코 등의 청소년단체를 통한 세미나, 지도자 연수 등의 이념적 학술 교류

세째, 예비교역자를 중심한 출가청년의 종교제, 종교심포지움, 타종교탐방 및 대화 등의 협력 화합을 위한 교류

네째, 해외의 기관과 청년단체들의 활동을 시찰 견학하고 국제세미나에 참가하는 등의 국제교류

이와같은 교류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청교류활동의 4대 흐름〉

① 종교단체와의 교류

50. 친목 배구대회(대구)
52. 불교청년체육대회(대구)
52. 종교청년협력회의(YMCA)
55. 제3차 종교청년협의회(원남)
57. 종교인 축구대회(서울)
58. 종교인 심포지움(전주)
60. 친선체육대회(금산)
69. 20주년 종교심포지움(서울)

② 청년단체와의 교류

연 구 세 미 나	훈 련 연 수
56. 청협 제5회	56. 청협 제4회 훈련
57. 청협 제7회	57. 청협 제5회 훈련
58. 청협 제8회	58. 청협 제6회 훈련
58. 청협 제9회	59. 청협 제7회 훈련
63. 청협 제10회	60. 청협 제8회 훈련
64. 청협 제11회	63. 청협 제9회 훈련
65. 청협 제12회	64. 청협 제10회 훈련
66. 청협 제13회	65. 청협 제11회 훈련
67. 청협 제14회	65. 청협 제12회 훈련
68. 청협 제15회	66. 청협 제13회 훈련
69. 청협 제16회	68. 청협 제14회 훈련
	68. 제1회 대학써클
	68. 제2회 대학써클
	69. 청협 제15회 훈련
	69. 청협 제16회 훈련
	69. 제3회 대학써클
	69. 제4회 대학써클
	70. 청협 제17회 훈련

③ 출가청년의 교류

종 교 제	타 종 교 탐 방
51. 제1회 종교제	62. 제1회 탐 방
54. 제2회 종교제	63. 제2회 탐 방

종 교 제	타 종 교 탐 방
56. 제3회 종교제	64. 제3회 탐 방
57. 제4회 종교제	65. 제4회 탐 방
58. 제5회 종교제	66. 제5회 탐 방
59. 종교심포지움	67. 제6회 탐 방
61. 초청강연회	68. 제7회 탐 방
62. 종교문제심포지움	69. 제8회 탐 방
63. 제6회 종교제	70. 제9회 탐 방
65. 학 림 제	
66. 초 청 강 연	
67. 제7회 종교제	
68. 제8회 종교제	
69. 제9회 종교제	
70. 제10회 종교제	

④ 국제교류

기 간	성 명	주 관	방 문 국	방 문 목 적
59. 9.19~10. 1	박 훈	일본총리부	일본 동경	일본총리부 초청으로 청소년관계시설 및 활동상황 시찰
64. 7.30~ 8. 8	강동일	일본중청련	〃	청소년 시설·활동 시찰
64. 8.10~19	장유성	청 협	인도네시아	각국청소년 관계시설견학, 양국청소년교류
65. 8.18~ 9. 2	김경미	〃	일본·대만	변화하는 국제정세 이해, 상호경험·정보교류 한국의 발전상홍보 참다운 국가의식 고취, 청소년단체간 협력
65. 8.18~ 9. 2	김용석	〃	태국·스리랑카·인도	〃
65. 8.18~ 9. 4	서영호	〃	호주·뉴질랜드	〃
66. 8. 2~ 8.17	윤문한	〃	일본·대만	〃
66.11. 3~12. 4	장연광	유 네 스 코	말레이지아·싱가포르·대만·일본·필리핀	청소년 지도력 개발
67. 8. 2~ 8.17	곽종문	〃	〃	〃
68.11.13~22	김태일	오만국정부	오 만 국	오만국 국경일 참가
68.12.19~	정경훈	청 협	호주·뉴질랜드·휘지	변화하는 국제정세 이해, 상호경험·정보교류, 한국의 발전상홍보, 참다운 국가의식 고취, 청소년단체간 협력
69. 6.21~29	박청수	청 협	일본·대만	각국청소년 관계시설및 활동견학·교류
70.	김종천	일본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	일 본	일본및 아시아청소년과의 교류

기 간	성 명	주 관	방 문 국	방 문 목 적
65.12. 4~12.31	장연광	개발도상국 지원청소년 지도자동남아연수계획	일본·필리핀·대만·말레이지아·싱가포르	청소년관계시설 및 활동상황 파악

〈원 청 이 념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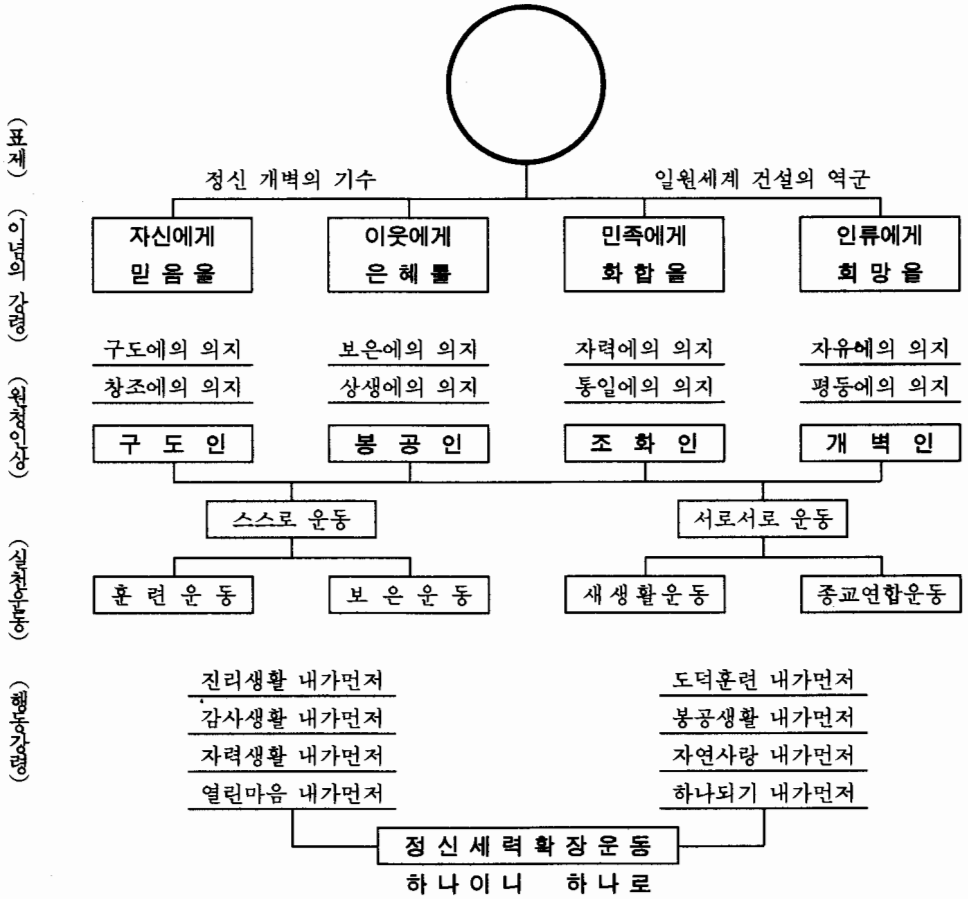

〈청년會歌〉

발표 : 원기52년도, 작사 : 이공전, 작곡 : 김동진

1. 푸른뜻 드높아라 젊은 원불교
앞서자 한맘으로 정신 개벽에
우리는 청년이다 원불교 청년
뭉치자 나아가자 개벽의 일꾼

2. 깃발도 드높아라 하나의 세계
바치자 참된정성 낙원 건설에
우리는 청년이다 원불교 청년
뭉치자 나아가자 개벽의 일꾼

2.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

가. 개 관

원청의 일원으로 성장해 온 원대연은 오늘에 이르러 전국적 조직 및 독자적 체제를 갖추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기38년(1953) 중학생 중심의 「원불교 학생회」가 해체되고 중·고등, 대학생을 망라한 학생회로 발전하였으며 그후 학생회는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대학생들은 「교우회」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후 원기40년대 초에 서울·부산·전주·이리 등지에 상당수의 교우회가 결성되었고, 그동안 조직된 교우회는 「원불교교우회 연합회」를 결성, 원기47년(1962) 8월 25일 정기총회를 가졌으며 원기49년(1964) 7월 5일 제2차 정기총회에서는 그 명칭을 「원불교 청년회」라 개칭한 이래 청년들과 함께 활동을 전개하여오다 원기63년(1978) 발족, 청년회와 분리 「원불교대학생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원기20주년 이후 원청의 슬하에서 분가해 나온 원대연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에서 학내 교우회가 처음 설립된 곳은 전북대로 원기46년(1961) 5월 26일의 일이다. 이 때는 중앙청년회를 물론 조직되어 있지 않았고 전국을 통해 교우회가 거의 없었다.

3~4년 후 원광대(원기49. 3. 1) 경북대(원기49.11. 1) 고려대(원기48) 부산대(원기50. 4. 3) 광운공대(원기50.11.30) 조선대(원기51. 5.30) 등의 대학교우회가 창립되었다. 이 때의 활동내용은 사상강연회 혹은 교양강좌·교리훈련 등이 위주였는데 이는 4·19 이후의 전반적인 풍조와 관련이 깊다. 원기53년(1968) 이후 서울지역 교우회 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한양대(원기53.11.17) 육사(원기54. 5. 6) 숙대(원기55.11.19) 동국대(원기57. 8.) 등 교우회가 각각 창립되어 학내외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활동은 내적 정체성 확립과 방향모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원기55년(1970) 5월에 전주지구 대학생회가 발족되고 원기57년(1972) 6월에는 전북지구 5개 대학이 참가한 전북연합회가 창립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서울지역에서도 원기58년(1973) 6월 서울대·고려대·동국대·한양대 등 4개교가 중심이 되어 서울지구 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원기46년(1961)부터 원기60년(1975)까지 15여년 동안 11개 교우회가 창립되었는 바 이중 10년 이상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 곳은 전북대·원광대·고려대였으며, 5년 이상 지속한 곳은 서울대·경북대 정도였다. 이 때의 활동을 되돌아 보면, 산발적·비연속적이었으며, 주로 내적인 정체성 확보와 활동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애쓴 시기이며, 청년회의 활동과는 아직 분리될 수

없는 이중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후 원기61년(1976) 10월 대학생연합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원기63년(1978) 8월 4일 중앙훈련원에서 39개 대학 90명이 참석하여 드디어 원불교 대학생 연합회를 창립하였다.

나. 조직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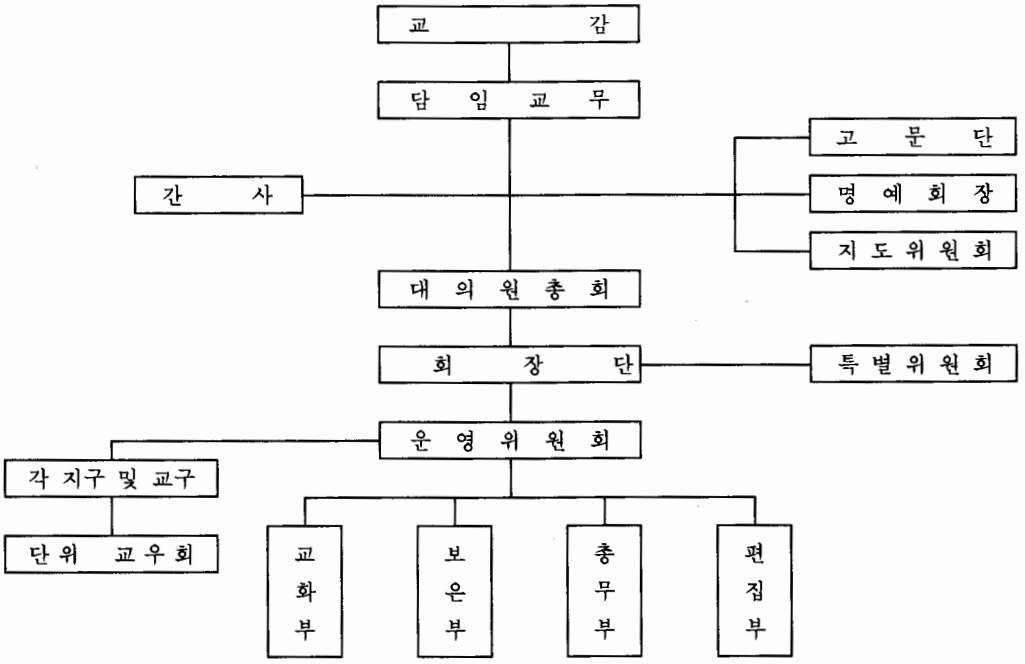

다. 역대임원

대	직 명	성 명	성별	주 소	지도교무	재 임 기 간
1	회 장	손 영 순	男	원광대 한의대 3년	강 운 상	63. 8. 4~64. 8.
	부 회 장	성 인 국	〃	서울대 3년	〃	〃
	〃	조 용 대	〃	부산대 3년	〃	〃
	〃	김 선 권	〃	전남대 2년	〃	〃
2	회 장	박 인 해	〃	원광대	〃	64. 8. ~65. 1. 25
	부 회 장	강 병 하	〃	서울대	〃	〃
	〃	박 성 태	〃	전북대	〃	〃
	〃	서 인 균	〃	동아대	〃	〃

2	부회장	김규학	男	경북대	강운상	64. 8. ~65. 1. 25
3	회장	정성길	〃	서울농대 3년	〃	65. 1. 25~66. 12. 27
	부회장	이원철	〃	원광대 3년	〃	〃
	〃	진금수	女	이화여대 2년	〃	〃
4	회장	정광일	男	서울농대	장연광	66. 12. 27~67. 12. 30
	부회장	이준석	〃		〃	〃
	〃	이효일	女	서울교대	〃	〃
	〃	이현기	男	부산대	〃	〃
	〃	김송영	〃	원광대	〃	〃
	〃	최남수	〃		〃	〃
	〃	강수열	〃		〃	〃
	〃	조영구	〃		〃	〃
	〃	김금수	〃		〃	〃
5	회장	정광일	〃	서울농대	〃	67. 12. 30~69. 1. 29
	부회장	선병수	〃	서울대	〃	〃
	〃	신완식	〃	계명대	〃	〃
	〃	김명은	女	동아대	〃	〃
	〃	양동화	男	전남대	〃	〃
	〃	나안호	〃	전북대	〃	〃
	〃	공성룡	〃	원광대	〃	〃
	〃	강대훈	〃	충남대	〃	〃
6	회장	이현기	〃	부산대	〃	69. 1. 29~69. 11. 24
7	〃	이상춘	〃	전북대	이선조	69. 11. 24~71. 1. 24
	부회장	김흥문	〃	부산대	〃	〃
	〃	김현오	女	〃	〃	〃
8	회장	이종선	男	서울대 3년	〃	71. 1. 24~71. 11. 23
	부회장	이중도	〃	원광대	〃	〃
	〃	정도중	女	이화여대	〃	〃
9	회장	선진호	男	서울대 수의학 3년	〃	71. 11. 23~72. 11. 29
	부회장	김선욱	〃	원광대	〃	〃
	〃	곽효순	女	성심여대	〃	〃
10	회장	강대훈	男	충남대 도서관 4년	정천경	72. 11. 29~
	부회장	박지상	〃	서울대	〃	〃
	〃	강명희	女	전북대	〃	〃

라. 중요행사 및 활동

61. 7.20　제13차 원청훈련시 손홍도·양주인·장연광·양해관 대학생연합회 발족 발의
61.10. 2～ 3　대학생연합회 준비위원회 발족
62.12.17～19　원불교대학생 전북연합 성지순례 대행진
63. 6. 3～ 4　원대연 방향모색 세미나
63. 8. 4　원대연 창립총회
63.11.30　「캠퍼스 교화」 창간호 발간(1,000부 발행)
63.12.17～20　제2차 성지순례 대행진
65. 2.19～22　제3차 성지순례 대행진
65. 5.10　원대연 연합회보 창간
65. 8.18～31　청년국제교류, 파견 : 서인균·김경의
66. 7.15～22　제1차 보은수련회 : 변산 125명
66. 9.　圓美會 창립
67. 7.23～28　제2차 보은수련회 : 영산성지, 215명
67.12.27～30　원대연 간부수련회 : 동명훈련원 60명
68. 7.19～22　제3차 (하계)보은수련회 : 만덕산훈련원 250명
69. 7. 4～ 7　제4차 보은수련회 : 중앙훈련원 270명
70. 2. 1～ 4　제3차 동계지도자 수련회 : 만덕산훈련원 60명
70. 7.22～27　제5차 보은수련회 : 성주군 박실마을 212명
70.11.23～24　원대연 세미나 : 중앙훈련원 40명
70.12.24～25　제1차 임원훈련 : 서울회관 14명
71. 1. 5～15　제1기 대학선방 : 소남훈련원 31명
71. 1.31～ 2. 3　제4차 원대연 지도자훈련 : 서울회관 19명
71. 7.22～28　제6차 보은수련회 : 영산성지 187명
71.11.22～23　원대연 세미나 : 중앙훈련원
72. 1. 5～14　제2기 대학선방 : 소남훈련원 52명
72. 7.23～27　제7차 보은수련회 : 중앙훈련원 120명
72. 7.23　원대연 노래모음집 발간(15×21㎝, p.157)

3. 학 생 회

가. 개 관

원불교 학생회의 창설은 해방 이후 건국사업을 통한 사회재건의 자각 속에서 어린 새싹들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이에 한글보급운동이 전개되고 야학이 활발히 실시되면서 학생교화에도 경주하게 되었다.

원기36년(1951) 1월 중앙총부에서는 익산지방의 교도자녀가 중심이 된 중학생 40여명이 자발적으로 학생회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원불교 학생회가 정식 발족한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총부의 학생회 결성을 계기로 원기38년(1953)부터는 전국 각 지부에서 속속 학생회가 결성되어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 학생회는 원기38년(1953) 3월14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까지 포함한 학생회로서 중앙총부가 직접 관장하는 학생회로 변모하였다. 그러다가 대학생들은 교우회라는 명칭으로 분리되었고 학생회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원기43년(1958)에는 중앙총부 교화부의 주관으로 전국학생회 교리강습회를 열고 이어서 8월8일에는 원불교 학생연합회를 창립하게 되었으며 원기56년에 이르러서는 회칙을 개정하여 교화부장을 당연직 총재로 모시고 지도교무의 지도를 받아 학생이 중심이 되는 명실상부한 전국학생연합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원기50년대 이후에는 꾸준히 교리강습회와 여름훈련을 실시하여 학생회 활동의 적극적으로 지원 아래 지속적인 발전속의 학생회를 통해 배출된 인재들은 각 대학 교우회와 청년회로 또는 전무출신의 서원으로 출가하여 교역자의 길에 들기도 하였다.

원기72년(1987)년대말 현재 279개교당에서 학생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9,000여명의 회원이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 연 혁

43. 8. 8	전국학생연합회 결성 60명, 제1차 학생연합회 정기총회
45. 8. 8	제2차 학생연합회 정기총회 15개교당 35명
47. 8.	제3차 학생연합회 정기총회
49. 8.	제4차 학생연합회 정기총회, 37개 교당에 학생회 설립(2,445명회원)
50. 7.23	제5차 학생연합회 정기총회

51. 8. 4　제6차 학생연합회 정기총회, 총부대각전
52. 8. 4　제7차 학생연합회 정기총회, 학생2대운동전개
53. 8. 4　제8차 학생연합회 정기총회
54. 8.　제9차 학생연합회 정기총회, 지구별 연합회 결성 결의
55. 8. 6　제10차 학생연합회 정기총회
56. 8.　제11차 학생연합회 정기총회, 64개 교당 학생회 결성
57. 7.31　제12차 학생연합회 정기총회
58.　제13차 학생연합회 정기총회, 74개 교당 학생회 결성
59. 7.31　제14차 학생연합회 정기총회
60. 7.　제15차　〃
61.　제16차　〃
62. 7.　제17차　〃
63.　제18차　〃
64.　제19차　〃
65.　제20차　〃
66.　제21차　〃
70. 1.27　제22차　〃
71. 1.25　제23차　〃
72. 1.25　제24차　〃

다. 역대임원

대	직 책	법 명	소속교당	재 임 기 간	비 고	대	직 책	법 명	소속교당	재 임 기 간	비 고
1	총 재	이완철		43. 8. ~45. 8. 7		4	부회장	문주형	전주	52. 8. 4~53. 8. 3	
	회 장	김근수		〃			〃	내성원	대구	〃	
	부회장	권도안	익산	〃		5	회 장	김근수		53. 8. 4~55. 8. 5	
	〃	박원규	초량	〃		6	부회장			55. 8. 6~56. 8.	
2	회 장	이은석		45. 8. 8~47. 8.		7	총 재	이은석		56. 8. ~58.	
	부회장	김성철	익산	〃		(1)	회 장	양성근	전주	〃	학생초대회장
	〃	이명철	영남	〃		8	총 재	이광정		58. ~60. 7.	
3	〃		이리	47. 8. ~52. 8.		(2)	회 장	하봉식		〃	
	〃		경남	〃		9	〃	홍현기		60. 7. ~61.	(3)
4	총 재	박장식		52. 8.14~53. 8. 3		10	총 재	박정훈		61. ~62. 7.31	
	회 장	김중묵		〃		11	회 장	김헌철		62. 8. 1~64.	(4)

12	회 장	신종호		54. ~66. 7.	(5)	16	회 장	김도영	이리	71. 1.25~72. 1.24	(8)
13	〃	정원국		66. 7.30~67.12.	(6)		부회장	유경화	대전	〃	
14	총 재	김이현		67.12. ~70. 1.26			사무장	유동일	서울	〃	
	지도교무	이선근		68. 1. ~72. 1			총 재	김이현		70. 1.26~	
15	회 장	김 경	이리	70. 1.27~71. 1.24	(7)		지도교무	이종화		72. 1.15~	
	부회장	한유미	〃	〃		17	회 장	황화경		72. 1.25~	(9)
	사무장	정도진	서울	〃			부회장	김은중	수원	〃	
							사무장	차홍은	대전	〃	

라. 조 직

전국학생연합회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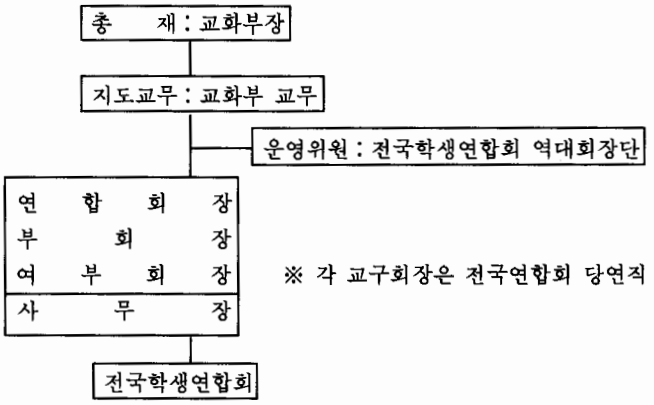

※ 각 교구회장은 전국연합회 당연직 부회장입니다.

마. 활 동

일 시	활 동 내 용	비 고
49. 8.18~20	제4차 학생연합강습회	
49. 8.21	학생연합실력경진대회및 성가콩쿨대회	
60. 8. 1~ 4	제5차 학생연합강습회	
51. 7.20~23	제6차 〃	
52. 8. 1	제7차 〃	
53. 8. 1~ 4	제8차 〃	
54. 7.20	BBS회원과 자매결연	광주학생회
54. 8. 1~ 4	제9차 학생강습회	
54.10.12	서울·경기지구 학생교리강연대회	종로학생회
54.11.20	「원향의 초대」	음악과 강연의밤, 전주시민문화회관, 교동학생회
55. 3.	제10차 학생연합강습회	

55. 9.20	성가대 KBS-TV 첫선	서울지구 학생성가대
55.10.17	서울·경기지구학생교리강연대회	종로학생회
56. 5.	국립맹학교 교양강좌실시	박청수교무, 21명
56. 6.	「원불교요람」점역	사직 맹학생회
56. 8. 5	학생백일장	177명, 중앙총부
57. 7.28~31	제12차 전국학생하계훈련	
57. 8. 2~ 5	전무출신자녀훈련	삼동훈련원
57.12.30	원불교보이스카우트 결성	서울·경기지구 학생연합회
58. 9.16	정전·성가 점자출판	사직 맹학생회
59. 7.28~31	전국학생간부훈련	주제 : 학생과 새생활
59.	제1회 전국교리경연대회	
60.	맹학생 장학금전달	박청수교무 우수학생에 1년간 학비지급, 계속
60. 7.17	자연부락에 학생회 결성	교당없는 영광 계송리부락, 해룡중고생 99명
60. 7.28~31	제15차 학생간부훈련	중앙총부
60. 9. 7	성가발표회	부산시민회관, 부산학생연합회
60.11. 9	교리퀴즈대회	서울교구 학생회
61.10.12	일본학생 총부방문	松風塾고교생 48명
61.11. 4	안도산전기 점역	사직맹학생회
62. 7.29~8.1	제17차 학생간부훈련	740명, 중앙총부
63. 7.28~31	제18차 〃	중앙총부 : 훈련과 참조
64. 7.28~31	제19차 〃	(원만한 원불교 학생)사요실천
65. 7.28~31	제20차 〃	(원만한 원불교 학생)사요실천
65.12.31	김해학생회 내무부장관표창	자연보호및 청소년선도
66. 7.27~30	제21차 학생간부훈련	600명, 중앙훈련원, 삼동원
67. 7. 9~12	전국학생지도자훈련	학생담임교무및 예비교역자 대상
67. 7.21~24	학생훈련	주제 : 병든사회치료와 원불교학생의 역할
67. 7.26~29	제22차 학생간부훈련	중앙총부, 삼동원
68. 1.24~26	제23차 학생간부훈련	
68. 8. 8~11	학생교리학교 개설	서울교구
69. 9.23	친선축구대회	정주교당학생회주최. 성결교회·대원사·옥천사·성공회·RCY정주지구·정주청소년연맹등 4백명참가
70. 1.25~27	제3차 학생회장단 훈련	133명 중앙훈련원
70. 7.24~31	기념비제막	학생전국대회 및 세계청소년의해 기념
70. 7.31	학생전국대회	2,378명
71. 1.24~26	제4차 학생회장단 훈련	
71. 1.26	전국학생합회지 「원의 향기」 창간	
71. 6.14~15	전국교구학생임원 훈련	15명, 총부교화연구소

71.11.15~16	전국교구학생임원 훈련	15명, 총부교화연구소
72. 1.23~25	제5차 전국학생회장단 훈련 및 정기총회	중앙훈련원
72. 2.23	「원의 향기」2호 발간	
72. 2.26~31	회장단 교구순례	
72. 4.18~19	전국학생연합회 전반기임원회의 및 훈련	
72. 7.26	수재의연금 모금(심장병어린이돕기)	13명, 전주교구청, 삼동원, 중앙총부86,500원
72. 9.19	전국학생연합회 후반기임원회의 및 「원의 향기」제3호 편집모임.	20명 총부교화 연구소

XI. 信行·奉公團體

신행·봉공단체는 원기33년(1948) 4월 26일 제정된 원불교교헌(제123조)에 의거,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신행 및 봉공활동을 목적으로 교당·교구 또는 교단적 단위로 조직된 단체로 수덕회, 정토회, 정화단, 원덕회, 청운회, 교수협의회, 중앙봉공회, 중앙교우회 등이 있는 바, 여기에서는 주로 교단적 단위로 조직된 단체만 정리한다.

1. 水德會

가. 창 립

수덕회는 물의 덕을 본받아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조직된 원불교 전무출신들의 친목단체로써 원기40년(1955) 1월 10일 개최된 교무연합회의에서 정산종법사의 수덕회 조직을 촉구하시는 유시를 받들어 발기를 하게 되었고, 동년 4월 2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회장에 박광전교무를 선출하였다.

창립당시 회원수는 180명(남73, 여107)이었다.

나. 조 직

조직은 총재와 회장 그리고 부회장 2인 및 운영위원 12명과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총재는 종법사가 당연직이 되고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다.

다. 현 황

창립당시 회원은 180명(남73, 여107)이었으며, 원기72년(1987) 12월 31일 현재 회원수는 1,164명(남379, 여785)이다.

라. 역대임원

대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1	회 장	朴光田(吉眞)	男	1915. 2. 23	40. 4. 25~47. 10. 16	
	부 회 장	曺專權(玉順)	女	1909. 11. 21	42. 4. 28~58. 10. 5	
2	회 장	朴將植(天植)	男	1911. 1. 9	47. 10. 17~58. 10. 5	
	부 회 장	曺專權(玉順)	女	1909. 11. 21	재 임	
3	회 장	金正勇(三龍)	男	1925. 11. 1	58. 10. 6~	
	부 회 장	金允中(還烈)	〃	1927. 12. 7	58. 10. 6~68. 11. 4	
	〃	吳曉圓(男苗)	女	1931. 12. 20	〃	
	운영위원	趙正中(云記)	男	1938. 1. 28	〃	
	〃	全八根(八根)	女	1927. 3. 2	〃	
	〃	朴濟權(京姬)	〃	1925. 8. 7	〃	
	〃	李喆行(喆行)	男	1928. 10. 16	〃	
	〃	徐大俊(榮燮)	〃	1934. 12. 29	〃	
	〃	田宗哲(淳和)	女	1934. 10. 5	〃	
	〃	金仁喆(永千)	男	1934. 12. 4	〃	
	〃	丁盛熟(石鎭)	女	1922. 9. 5	〃	
	〃	朴濟現(英姬)	〃	1932. 2. 4	〃	
	부 회 장	張應哲(由錫)	男	1940. 9. 8	68. 11. 5~71. 11. 6	
	〃	丁盛熟(石鎭)	女	1922. 9. 5	〃	
	운영위원	李空田(順行)	男	1927. 3. 24	〃	
	〃	金仁喆(永千)	男	1927. 3. 24	재 임	
	〃	李喆行(喆行)	〃	1928. 10. 16	〃	
	〃	徐大峻(榮燮)	〃	1934. 12. 29	〃	
	〃	全八根(八根)	女	1927. 3. 2	〃	

	운영위원	朴濟權(京姬)	女	1925. 8. 7	재 임	
	〃	朴濟現(英姬)	〃	1932. 2. 4	〃	
	〃	吳瞻圓(男苗)	〃	1931. 12. 20	〃	
	〃	田宗哲(淳和)	〃	1934. 10. 5	〃	
	부 회 장	李百徹(致炯)	男	1927. 4. 9	71. 11. 7~	
	〃	柳聖一(順姬)	女	1927. 7. 26	〃	
	운영위원	丁盛熟(石鎭)	〃	1922. 9. 5	재 임	
	〃	朴濟現(英姬)	〃	1932. 2. 4	〃	
	〃	吳瞻圓(男苗)	女	1931. 12. 20	재 임	
	〃	宋順鳳(順鳳)	〃	1933. 3. 6	71. 11. 7~	
	〃	朴正薰(鏞煥)	男	1934. 7. 21	〃	
	〃	柳正完(珍玉)	〃	1930. 11. 29	〃	
	〃	李慧定(愛子)	女	1937. 12. 5	〃	
	〃	宋靈智(靈智)	〃	1932. 10. 10	〃	
	〃	趙正勤(年九)	男	1935. 12. 6	〃	
	〃	李喆行(喆行)	〃	1928. 10. 16	재 임	
	〃	張應哲(由錫)	〃	1940. 9. 8	〃	

마. 연도별 회원수

연도	계	남	여	증감(▽)	연도	계	남	여	증감(▽)
40	180	73	107		57	536	180	356	24
41	184	74	110	4	58	556	183	373	20
42	214	83	131	30	59	598	196	402	42
43	228	92	136	14	60	647	211	436	49
44	239	95	144	11	61	678	217	461	31
45	254	100	154	15	62	719	226	493	41
46	269	99	170	15	63	746	234	512	27
47	278	103	175	9	64	790	245	545	44
48	298	109	189	20	65	823	251	572	33
49	326	124	202	28	66	856	259	597	33
50	353	136	217	27	67	907	275	632	51
51	365	142	223	12	68	938	285	653	31
52	385	152	233	20	69	984	299	685	46
53	421	161	260	36	70	1,060	325	735	76
54	451	165	286	30	71	1,115	352	763	55
55	484	166	318	33	72	1,104	369	735	49
56	512	173	339	28					

바. 중요사업 및 활동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립된 수덕회의 활동은 주로 회원의 애경상문 및 야유회,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였고, 원기68년(1983)부터는 교무훈련시 기수별로 수덕회의 밤을 실시하였으며 원기70년(1985)부터는 정년퇴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2. 正 土 會

가. 창 립

소태산대종사 재세시에는 정토회원을 출가교역자와 다름없이 관리하였으나 수가 늘고 소태산대종사께서 열반하시자 일괄적으로 관리하거나 챙겨주는 곳이 없고 소속이 불분명해서 애매하던 중 정산종법사로부터 전무출신 권장부들의 모임을 정토회(正土會)라 명명받고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원기40년(1955) 6월 2일 창립하게 되었다.

① 회원들의 신앙과 수행을 공고히 하여 불보살의 인격 도야
② 회원 상호간의 화합단결로써 친목 도모
③ 상부상조로써 정신과 경제의 자립력을 확립하여 전무출신의 권장에 힘씀
④ 불보살을 낳고 길러서 공도사업에 헌신 봉공토록 육성
⑤ 거진출진의 모범이 되어 교단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창립당시 회원수는 12명이었으며 초대회장은 박길선정토회원이었다.

정토회는 원기40년(1955) 창립되었으나 회원의 모임장소가 마땅치 않아 애로가 있고 적은 용금으로 교당을 유지 발전시키기가 어려워 정토회관 기금을 마련하고 경제적 무자력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원기65년(1980) 장갑공장인 「정토실업」을 개설 최충인, 강정신, 정순영, 유동명, 김성연 등 정토회원이 인천의 장갑공장에 가서 15일간 직접 일반공원들과 같이 숙식하면서 기술을 배워와 젊은 회원들에게 가르쳐 2년정도 장갑공장을 운영하였으나 하청업자의 부도로 인해 정토실업이 해체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것이 모체가 되어 마을금고와 원광상사라는 기관이 탄생하였다.

나. 조 직

정토회 조직은 원기67년(1982) 5월 7일 제정된 회칙에 고문 약간명, 회장 1인, 부회장 1인,

사무장 2인, 교화부 2인, 총무부 2인, 재무부 2인, 음악부 2인, 간사 2인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원기72년(1987) 12월 31일 현재 회장 1인, 부회장 1인과 원로단 및 20개 교화단으로 편성하고 고문, 단장, 중앙을 두어 훈련 및 공부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정토회원 자녀들을 중심으로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어린이부를 운영, 청소년 교화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학생회는 원기35년(1950) 원친회원 성보영, 송천은, 김복균 등이 박재록 서대준과 함께 처음 조직하였는데 이것이 전국 원불교 학생회 조직의 매체가 되어 1대내에 정산종사로부터 준5등 공인을 받기도 했다.

부속기관으로는 새마을유아원, 삼동야학, 삼동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밖에 친목단체로 원공회, 원정회, 원화회, 원명회, 원경회, 원양회 원선회, 원우회 등 8개의 세대별 모임이 있다.

〈조직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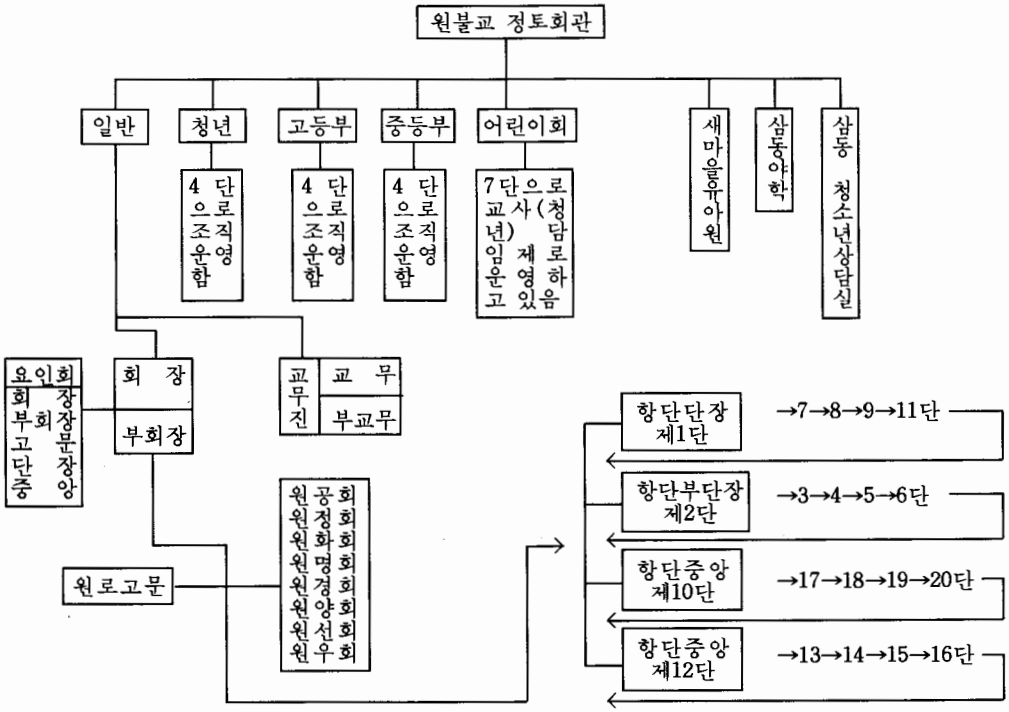

다. 현 황

원기72년(1987) 12월 31일 현재 정토회 자산은 총자산금 6억2천6십만원으로 부동산 5억5천만원, 동산 7천6십만원이며, 동산은 정토회원 자녀들의 모임인 원친회 장학금 6천6백5십만원

과 건축기금 4백1십만원이다.

회원수는 현재 300명이며, 정토회원 자녀를 중심으로 청년회원 129명(남54, 여75), 학생회원 151명(78, 여73), 어린이회원 189명(남102, 여87)이 모여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정토회 회원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회원수〉

연 도	계	여	증 감	비 고	연도	계	여	증 감	비 고
1	1	1	1		43	80	3	3	
3	6	5	5		44	83	3	3	
4	7	1	1		45	88	5	5	
7	8	1	1		46	97	9	9	
8	11	3	3		47	100	3	3	
9	12	1	1		48	104	4	4	
10	13	1	1		49	109	5	5	
12	17	4	4		50	114	5	5	
13	19	2	2		51	118	4	4	
15	23	4	4		52	124	6	6	
16	24	1	1		53	127	3	3	
18	27	3	3		54	131	4	4	
21	32	5	5		55	133	2	2	
25	34	2	2		56	136	3	3	
26	37	3	3		57	137	1	1	
27	39	2	2		58	138	1	1	
28	40	1	1		59	145	7	7	
29	42	2	2		60	150	5	5	
31	45	3	3		61	163	13	13	
32	48	3	3		62	177	14	14	
33	50	2	2		63	184	7	7	
34	54	4	4		64	195	11	11	
35	56	2	2		65	203	8	8	
36	59	3	3		66	217	14	14	
37	63	4	4		67	226	9	9	
38	66	3	3		68	240	14	14	
39	68	2	2		69	252	12	12	
40	74	6	6		70	261	9	9	
41	75	1	1		71	280	19	19	
42	77	2	2		72	293	13	13	

라. 역대교무

정토회의 발전과 정토회원의 신앙과 수행 증진에 혈심혈성을 다 하였던 역대교무는 다음과 같다.

〈역대교무〉

대	교무	성별	근 무 기 간	비고	부교무	성별	근 무 기 간	비 고
1	李智一	女	58. 5. 4~60. 4. 5		金義聖	女	61. 3. 1~64. 3.25	
2	金復煥	〃	60. 4. 6~71. 2.16		姜德煥	男	62. 3. 1~64. 1.14	공장보조
					尹舜明	女	62.10.30~63. 5.16	
					金正有	男	63. 3. 1~72. 1. 9	마을금고보조
					金善珠	女	63. 7.12~68. 2. 1	
					文心圓	〃	65. 3. 7~68. 2. 1	유아원보조
					李圓京	男	66. 4. 1~69. 2. 1	원광상사보조
					朴允哲	〃	67. 4.26~71. 6	야학교장
					朴仁源	女	68. 2. 6~71. 2.16	
					金恩珠	〃	68. 2. 6~	유아원원감
					崔敬道	男	69. 1.23~71. 2. 5	원광상사보조
3	高圓善	女	71. 2.16~		裵賢誦	女	71. 2. 6~	
					張敬道	男	71. 2. 6~	

마. 역대임원

번호	직 책	법명 (호적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회 장	朴吉善(곤례)	1909. 1. 2	58. 3~	
	부회장	李永勳(고막)	1912. 12., 29	58. 3~	

바. 중요사업 및 활동

정 토 회 창 립	40. 6. 2	정산종법사의 유시를 받들어 정토회원 관리 및 친목 창립 활동 : 정토회 기금조성과 자세확립. 박길선, 권동화, 이영훈, 이칠성, 윤성규, 김성윤, 최충인, 이화진 등 주축(여름 보리1말, 가을 쌀1말).
훈 련	48. 8.10	총부 교무부 주관으로 정기훈련 시작. 거진출진 자세와 교리공부 연마

정 기 총 회	50. 5. 8	제1차 정기총회(정토회 회칙개정). 회장 : 박길선, 부회장:이영훈, 사무장:임영전, 총무:윤성규, 재무:최충인, 간사:성보영
반백년기념성금	54. 4. 1	개교 반백년 기념사업회 기금 헌금. 내용:백미 100가마
서 울 회 관 헌 금	58. 3. 1	서울 회관 문제기금 헌금. 내용:1,033,640원
현 판 식	58. 5. 6	정토회 교당마련(최초간판걸음). 장소:남중동 1가 건물임대
부 지 매 입	59. 1.17	현 정토회관 부지마련. 장소:남중동 1가 147-37(90평). 금액:170만원
학 생 회 조 직	60. 5. 1	정토자녀 및 기타 원친학생회라 명명(회장:이건호, 부회장:오정회)
부 지 매 입	60. 9.30	정토회관 건립을 위한 일시적 투자. 장소:이리시 신동 229-7 (2500평. 후에 신동의 밭 1,360평과 대지 700평과 교환)
정토회교당매입	61. 9.30	콘크리트 2층건물(1,450만원). 장소:이리시 남중동 1가 147-49
어 린 이 회 결 성	62. 4. 6	정토자녀 및 지역어린이 원친 어린이회결성. 회장:심재성
일원가족성가대회	62. 6. 5	정토회가족친목 제1회 일원가족 성가대회. 참가가족:10세대(1등 오수원 가족)
정 토 회 관 봉 불	62.11. 4	정토회관 건립 및 봉불 건평:3층(225평), 4천만원 용도:3층 생활관 2층:독서실 1층:임대
소 록 도 방 문	63. 4.28	63회 대각개교절 보은봉공. 내용:침구, 녹음기, 타올, 위문품, 기타. 45명 참석
제 1 회 체 육 대 회	63. 5.28	정토회원친목 제1회 정토회원 체육대회. 장소:원광대학교. 116명 참석
공 장 매 입	63.10.30	정토회 자활터전 정토실업 운영. 위치:이리시 남중동 147-37 (2층). 면적:대지196평 건평210평. 내용:보세가공(미싱25대)
공 수 부 대 김 장	63.11.16	금마공수부대 김장봉사
발 표 회	64. 1.20	회원의 기능개발과 정서생활도야 제1회 종합발표회. 발표내용:교전쓰기, 펜글씨, 붓글씨, 정기일기, 양제품, 수예품, 한제품, 뜨개질, 우표수집, 각종 수공품
제 3 회 성 가 대 회	64. 1.27	정토회원 친목 제3회 성가대회. 15가족 참가. 최우수상:윤성규 가족
청 년 회 결 성	64. 2.26	정토자녀 및 자녀친목 정토청년회 결성. 회장:박성태
복 지 원 방 문	64. 4.29	제64회 대각개교절보은봉공. 대상:대전 종합 복지원. 내용:보은기도법회, 오락 T.V 3대 의류 침구 다과 떡 기타.
장 학 금 전 달	64. 6. 6	정토회자녀 및 모범학생(제1차). 내용:6명(총30만원).
법 호 수 여	64. 7.26	제1회 법호수여식. 내용:청타원 박길선외 19명
지 도 자 훈 련	64. 9.24	전북 종교새마을 지도자 훈련참가. 참가자:윤성규 정순영 나정하 정동인
새마을금고개설	64.12.12	원광새마을금고 개업 및 봉고식. 위치:정토회관 1층. 이사장 : 김복환, 상무:김정유교무

장 학 금 전 달	64.12.16	정토자녀 및 모범학생. 내용:7명(각 5만원씩 35만원)
원친장학금전달	65. 3.23	제3차 원친장학금 전달. 대상:정토자녀 및 모범학생. 내용:6명(5만원씩 30만원)
새마을유아원개설	65. 4.14	어린이교화 및 지역사회봉사 원광새마을유아원 모체 개원(탁아사업목적으로 시청 인가받음). 위치:이리시 남중동 147-27. 원장;김복환교무, 교사 3명, 원아 18명.
이리보육원방문	65. 5.25	제65회 대각개교절 보은봉공. 내용:보은기도법회. 선물 전달(모포 30장, 침구 20장, 학용품 장난감 직원내의 등)
신입정토회원훈련	66 1.13	제1회 신입정토회원훈련. 내용:원불교에 대해서, 전무출신의도, 교도기초 3단계 훈련
성 가 대 회	66. 2.15	정토회원친목 제4회 성가대회. 제7가족(최우수 최안국가족).
원광유아원개명개원	66. 4. 1	어린이교화 및 지역사회봉사 아동복지 시설 새마을유아원을 원광유아원으로 개명 개원
원친장학금전달	66. 4.30	회원자녀 및 모범청년 학생 제4차 원친장학금 전달 법회. 내용:5명(각 10만원씩 50만원)
보 은 봉 공	66. 5.17	제66회 대각개교절 보은봉공. 대상:청주보육원. 내용:츄리닝 100벌, 직원내의 20벌, 세탁비누 10상자, 떡 5말
여 성 강 좌	66. 5.25	제1회 현대여성강좌 개최. 목적:다원화와 지역사회여성의 지성함양. 내용:인생과철학, 예술, 문학, 가정법률, 자녀교육, 현대여성의 역할. 강사:이리시장, 전북부녀과장, 이종록, 심성경, 정종, 송은, 신석정, 이성택, 명형식 교수
종 법 사 내 방	66. 7. 3	대산종법사 및 원로수위단 총부간부 기관장. 훈련교무 내왕. 내용:정토회현황보고, 박광전교무설교. 저녁공양
마 을 금 고 이 전	66.10. 6	원광새마을금고 이전. 장소:이리교구청 1층
의 료 원 봉 사	66.10.19	원대부속병원 김장봉사
정 토 실 업 작 업	66.10.30	정토실업을 메주공장으로 활성화
마을금고기념식	67. 1.20	원광마을금고 자산 10억돌파 기념식
장 학 금 전 달	67. 2.14	제5차 원친장학금 전달 법회. 내용:5명(각 10만원씩 50만원)
버 스 구 입	67. 3. 1	원광 새마을유아원생 수송수단
원광유아원개칭	67. 4. 1	원광새마을유아원으로 개칭(원광어린이집을 학급 증설과 함께 정부시책에 따라 명칭 개정)
야 학 교 개 설	67. 4.26	근로청소년 교육기회 삼동야학교 개설 및 신입생 모집. 교장:박윤철교무
효 부 상 시 상	67. 5. 7	제1회 효부상시상. 대상:서영선회원
소 록 도 방 문	67. 5.30	소록도 나환자 방문. 내용:위문품 전달(60만원상당)
혜 화 학 교 방 문	67. 8.27	혜화학교 위문품 전달 및 빨래하기
교 서 보 내 기	67. 9.29	교전발간 20주년 기념법회 후 교화부에 35만원 기탁
원친장학금전달	68. 3. 6	제6차 원친장학금 전달. 내용:17명(각 10만원씩 170만원)

보 은 사 업	68. 4.26	제68회 대각개교절 보은사업. 내용:서이리창립지원 100萬, 영산성지온수 및 토지매입 75萬, 훈련원 도서기금 10萬, 기타 40萬 총 225萬원
효 부 상	68. 4.28	천규남회원
법 회 개 설	68. 6. 1	회원출석증가를 위해 화요법회. 저녁 7:00에 일요법회 참석치 못한 회원과 기타
양 노 원 방 문	68. 5.30	이리 상남양노원 방문. 전화 1대 가설 기증
효 도 관 광	68. 7.20	마을금고에서 60세이상 조합원 효도관광
정 토 실 업 해 체	68.12.30	정토실업 발전적 해체. 정토실업에서 생산하던 메주가루, 참기름 등 원광상사로 이양함
정 토 회 원 훈 련		제35회 정토회원 동계훈련. 주제:일원가족의 신앙지도. 내용:부모의 리더쉽, 청소년상담과 이론. 사은과 대화를 통한 심성계발, 유아발단단계 청소년신앙심 지도. 강사:송순봉, 김인강, 김일상, 안자은교무, 박정원, 심성경교수
삼 동 야 학 졸 업	69. 2.18	제1회 삼동야학 졸업
연 원 교 당 봉 불	69. 4. 1	문화촌교당 봉불. 내용:불전도구 및 비품(1,900만원)
원광의료원봉사	69. 4. 1~30	원광의료원 의료기구 싸는 보자기 1,000점제작
원친장학금전달	69. 4.29	제7차 원친장학금 전달. 대상:원친회원과 모범 학생. 금액:11명(10만원씩 110萬)
보 은 사 업	69. 5. 6	정주소년원에 법당과 도서설비. 금액:300만원
효 부 상 시 상	69. 5. 8	최원심회원 효부상 시상
총 부 봉 사	69. 6	총부 구내 제초작업
원 호 가 족 봉 사	69. 6	원호가족 1세대 도움. 내용:정토회원 전원이 쌀1홉씩
예 술 행 사	69. 8.26	제7회 원친예술제. 장소:원대중강당. 1,000명 참석
항단.원로단편성	70. 1. 3	전통적인 교화단 체제확립. 원로단 1단, 항단 2단, 평단 14단
항단.중앙.단장훈련	70. 1. 3	제1회요인훈련(교화단개편이후). 주제:교화단의 의의와 교화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
동 계 훈 련	70. 1. 5~20	제37회 동계훈련. 주제:나는 누구인가(과거·현재·미래). 참가인원 167명
성 가 대 회	70. 2.26	제5회 성가대회 실시. 내용:13가족 참가. 최우수:조세련가족
원친장학금전달	70. 2.26	제8차 원친 장학금전달. 내용:16명(각10만원씩 160萬원)
합 창 경 연 대 회	70. 4.28	이리교구 합창 경연대회. 최우수상
일일부모결연식	70. 5.12	제70회 대각개교절 보은사업. 내용:지역청소년가장과 일일부모 결연식. 39명 참가. 경비 450,000원
청소년상담실개설	70. 6.22	삼동청소년 상담실개설. 장소:정토회관 4층.시설비용 500만원
법 호 수 여 식	70. 6.23	서타원 최충인외 7명 법호 수여
효 부 상 수 상	〃	제4회 효부상 시상. 효부상:이윤옥. 김희준. 정지훈. 효녀상:김금진, 선행상:박정선

학생교리퀴즈	70. 6.30	이리교구 학생교리퀴즈대회 최우수상
하계훈련	70. 8.1~6	제38회 하계훈련. 장소:제주 국제훈련원. 주제:심신극기와 제주도 관광. 102명 참석
교리퀴즈	70.10. 6	이리교구청년 교리퀴즈대회 최우수상
상담실초청강연	70.11. 1	제1회 후원위원회 모임 및 초청강연. 내용:자녀와의 대화법. 강사:홍경진교수. 11명 참석
야학봉사활동	70.11.18	삼동야학교 가두 엿 판매. 이익금:380,000원
전무출신최다배출	70.12.30	전무출신 지원자 12명 배출
교화결산	70.1.1~12.30	원기70년도 교화 결산. 연원지도:600명, 교서보내기:267권. 가훈갖기:160가정. 성업봉찬:500탐. 순교:직접순교 3,037회, 간접순교 7,044회
상담원기본교육	71.2.17~21	상담원 및 후원위원교육 상담원양성 및 부모교육을 겸한 전반적인 내용. 내용:상담실의 기본정신과 역할, 정신위생, 심리검사, 심전경작, 종교와 인생, 청소년이해와 지도, 비행청소년지도 등. 강사:김복환교무, 오상우, 박종주, 김옥엽, 김경천, 정진국, 이성규, 정애자, 김도융교수 등
교구청년교리경연	71. 4.20	교구교리실천 강연대회 최우수상(이지하)
자선활동	71. 4.20	수도원:떡 2말 야구르트 120개. 삼정원:가스시설(120,000). 제2병원 방석 180개 재봉
어린이생일잔치	71. 4.27	대각개교절을 맞이한 어린이생일잔치. 참가인원 105명(색동옷)
성가경연대회	71. 4.28	총부 기관대항 3등, 교구대항 2등. 곡명:가고파, 성가 3장
대각개교절기념사업	71. 4.28	영산성지 대각지 주변에 화장실 신축(250만 지원)
체육법회	71. 5.18	제4회 체육법회 및 명랑운동회. 장소:원여중체육관 150명 참석
자선활동	71. 5	영모원, 자선원 방문. 내용:간장 1말, 된장 1봉, 베개 23개, 신흥교당 이불 3채를 회사
상담원교육	71.5.26~10	제6차 자원봉사 상담원 전문교육. 내용:정신 역동학(정신분열, 망상). 강사:박남진교수. 시간: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14회)
회보발간	71. 5.30	「따뜻한 마음을 청소년과 함께」 상담실 후원 회보창간. 계간지 3,000부 발간(230,000원)
초청음악회	71. 5.31	제1회 삼동청소년 상담실 1주기 초청음악회. 초청음악인:송광선. 장소:시민회관(1,400명)
기관방문	71. 6.20	자선원, 영산선원, 기숙사, 동산선원 등 식사공양 및 다과공양(144만원)
야학연합체육대회	71. 6.29	이리지역 4개 야학 합동체육대회 삼동야학교 우승
원친예술제	71. 8.31	제9회 원친예술제. 장소:총부기념관(600명관중). 행사비:500,000원

유년담임제실시	71. 9. 1	유년담임 김종미, 김효선, 김예선, 박원전, 배중곤, 전유성, 이원덕, 이순천 이상 청년, 김일정, 홍연준, 오세형 등 정토회원
기 관 방 문	71. 9.14	이리보육원 방문. 내용:돼지고기 30근. 계란 10판
삼동야학극기훈련	71. 9. 7	제1회 삼동야학 학생교사 극기훈련. 장소:금마~미륵산 도보왕래
삼동야학교사훈련	71.10.8~9	교사친목 및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철야훈련. 장소:계룡산동학산장, 갑사도보
상담실사례연구	71.10.25	참석:박윤철, 장경도, 김홍만외 13인. 월례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사례발표. 지도:오상우교수
학생득도법회	71.11. 1	후반기 학생 득도법회. 득도자:14명. 설교:고원선교무
어린이자선방문	71.11. 7	어린이 양노원 방문. 내용:귤 1박스, 쌀 3말 떡 등
청년득도법회	71.11.20	청년 득도법회. 득도자:8명. 설교:홍덕천이리교우회장
야 학 활 동	71.11.20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엿 판매. 장소 및 인원:이리지역, 교사 학생 24명.
학생교리강연	71.11.22	교당자체 교리강연대회. 결과:1등 이문하
학생영아원탐방	71.11.30	학생 영아원 방문. 유아신발 70켤레, 하이타이 전달
기 도 식	71.12.8~19	중3 연합고사를 위한 기도식(고3)
상 담 원 교 육	71.12.22~27	제2기 자원봉사자, 전화상담원 교육. 강사:김복환, 김성관교무, 김헌수, 오상우, 김옥엽, 박종주교수 등
교 사 훈 련	71.12.21~23	제6기 신입교사 훈련. 내용:야학의 이론 및 교육안 작성. 장소:야학교무실 및 2층 법당
학생임원훈련	71.12.21~23	학생 임원훈련. 내용:임원의 역활과 신년계획 수립. 장소:교당, 만덕산. 지도:배현숭교무
청년임원훈련	71.12.27~28	청년 임원훈련. 내용:임원의 역할 및 신년계획 수립. 장소:만덕산. 지도:장경도교무
71년교화결산	71.12.30	71년도 교화결산. 교서보내기:598권. 연원지도:339명. 가훈갖기:188가족. 순교(직접) 5,859건. (간접) 12,745건
일 반 훈 련	72.1.3~5	제40회 정토회원 동계훈련. 제목: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로 사세. 감사:황직평, 오회원 고원선, 이선조교무
일반요인훈련	72.1.6~8	72년도 교화단 세부계획 및 방향설정. 훈련지도:고원선교무
학생동계훈련	72.1.9~11	학생동계 훈련. 제목: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로. 강사:고원선, 양해관, 배현숭교무
학생적성검사	72. 1	중3,고1,고3, 진로선정을 위한 적성검사. 자문:청소년상담실. 총검사인원 35명
삼동야학이취임식	72. 1.27	제6기 교사이취임식. 교장:김홍만. 교사:11명.
합창경연대회	72. 2. 8	제7차 일원가족합창 경연대회. 내용:1등 허윤석 회원가족 등 17세대 참가. 강평:송관은교수
청년동계훈련	72. 2.14~15	제5차 청년동계훈련. 제목:교당과 나. 강사:전경진교수, 장경도교무

장 학 법 회	72. 2.22	제10차 원친장학금 전달 및 기원법회. 설교:전이창교무. 내용:총 32명지급(2,950,000)
삼동야학교사훈련	72. 3.1~2	삼동야학 동계교사 훈련. 장소:충남서천 춘장대
상담실자문위촉	72. 3.17	신임후원 위원장 및 자문위원회 위촉. 후원위원장:김정용교무(원광대총장), 자문위원장:박남진교수
검정고시기도	72.3.20~4.11	제2차 전국 및 삼동야학 검정고시생을 위한기도
청 년 강 연	72. 3.27	제5차 정기교리강연대회. 우승:김지인
상담실초청음악회	72. 3.28	제2회 청소년상담실 초청 이봉기피아노독주회. 장소:원광대학교 대강당. 2,000명 참관
보 은 관 광	72. 4. 9	원로 보은관광 실시. 장소:진해부곡. 후원:원화회(50대정토회원) 100萬원
교구강연우승	72. 4.12	교리실천사례 발표. 이리교구 교리실천강연대회우승. 우승자:박성진(전국대회진출)
보 은 사 업	72. 4.28	제72회 대각개교절 보은사업. 동산선원. 내용:도서실 마련
교구음악발표회	72. 5. 8	어머니날 경축음악회. 내용:정토회 합창단 60명 출전. 장소:총부기념관
가족합동법회	72. 5.10	제1회 일원가족 합동법회. 내용:장안전회원-내가 자녀라면, 한병도-내가 부모라면, 학생단막극, 유년 편지 낭독
영모원제초작업	72. 5.17	이리교구 영모원 제초작업 참가. 정토회원 50명
교구청년체육대회	72. 5.17	이리교구 청년체육대회 우승
총부구내제초작업	72. 6.21	총부구내 제초작업 및 법회. 설교:서대인교무
유년하계훈련	72. 7.19~21	유년하계훈련. 주제:하나로 사세. 장소:변산성지
위 령 재 실 시	72. 7.19	태풍피해에 의한 사망자 합동위령제
학생하계훈련	72. 7.23~26	학생하계 훈련. 장소:완도 소남훈련원
야 유 회	72. 7.28	정토회관 원정회 원화회와 함께. 주최:원공회(원로단). 장소:마이산, 냉천. 45명 참석
수 재 민 돕 기	72. 7.29	태풍 및 폭우로 인한 이재민구호사업. 내용:의복 10박스 구호금 전달(교구 4만, 동사무소 3만, 논산교당 20만, 도곡교당 30만원)
일반여름훈련	72. 8. 1~3	제43차 일반여름훈련(1,2차). 주제:좀 더 깊이,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장소:변산성지, 완도교당(2차). 162명 참석
야학교사훈련	72. 8. 6~8	제12차 삼동야학 교사훈련. 장소:지리산 덕동국민학교. 내용:삼동윤리와 바람직한 교사상(장경도교무). 민중교육사 및 기타
상 담 실 교 육	72. 8.11~14	자기표현법 훈련. 내용:자기표현 및 불안감소. 강사:김옥엽선생
청년하계훈련	72. 8.14~16	제5차 제1회 성지순례(도보대행진). 제목:개벽의 함성 온누리에. 장소:만덕산~원평(4km) . 28명 참석

중 · 고 분 리	72. 8.22	중·고분리를 위한 정기총회. 중등부회장:김승인. 부회장:심우석, 이지연. 60명 참석
청 소 년 성 교 육	72. 8.28	청소년상담실 성교육 실시. 대상:태창섬유 근로청소년. 강사:김옥엽선생
중등부임원훈련	72. 8.30	중등부 분리에 의한 임원 훈련. 지도교무:배현송. 교사:오선옥, 오성근
백 일 기 도 시 작	72. 9. 1	제12회 100일 정진기도 결제식. 내용:세계평화, 정토회원상 정립, 법위향상, 대종사탄생100주년 도약
영 모 원 작 업	72. 9.13	이리교구 영모원 풀뽑기 참가
작 품 전 시 회	72. 9.25~27	정토회원 작품 전시회. 품목:공예품(등공예, 지점토, 자수), 개인소장품. 주관:원양회
교구바자회참가	72. 9.28	이리교구 보은바자회. 품목:메주가루, 참기름, 공예품, 젓갈, 된장. 수입금액:215,500원
학생영아원방문	72.10.24	학생 영아원방문. 내용:빨래하기, 고추잎따기

사. 세대별 모임

이 름	결 성	대 상	활 동 내 용
圓空會	66. 3.31	회갑넘으신분	월1회 정기모임(31일). 공부사업권장. 친목도모. 애경사방문, 후진 챙기는일 등
圓正會	57	교당의요인들 고문	회장:임영전, 부회장:윤성규, 총무:김성윤 정순영, 16명. 정토회 원로님 모시고 저력을 형성하고 교단과 교구에도 큰영향 있음. 상호친목도모. 교단 교구 교당에 어려운일 앞장서서 해결함
圓和會	50 계형식 61정식으로	교당의 요인들 단장	회장:김양열, 총무:노대열 나정하 24명 월1회모임. 공부의견교환. 교당선진들로 교당내외에 적극적 협조로 교단 교구에 협력함. 선진님 보은관광을 비롯 후진챙기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했음
圓明會	62. 1.15	40세~48세	회장:최남진. 총무:정인봉. 총 20명 월1회모임 공부 의견교환. 교당중간층세대로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교당내외에 알뜰히 챙기고 있음. 예) 교당 T.V, 커텐 등
圓敬會	62	34~40세	회장:김덕선, 총무:전인신. 총 35명 월1회 예전공부하고 있음.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교당내외에 알뜰히 하고 있음. 상호친목, 애경사
圓養會	65. 1		회장:김도은, 부회장:이순영. 19명 세대교역자꿈. 상호친목도모. 72년작품전시회(1주정토회관등공예). 72년부터 주1회 교리공부
圓善會	68. 5.20	67.68결혼한 회원	회장:김진명, 부회장:신호연, 총무:이수현. 총 20명 월1회 모임. 예전공부. 사업:자선원, 기독영아원방문, 상호친목도모

圓佑會	71. 1.21~	69.70.71년 결혼한 회원	회장:오현덕, 부회장:정용선, 총무:황법란, 25명. 상호친목도모. 애경사 챙기고 신앙생활을 통한 정토회 발전에 기여함

아. 배출된 전무출신

〈원친회원〉

번호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출가년월일	추천인	부모성명(교당)
1	宋 奎(道君)	男	1900. 8. 4	4. 2	大宗師	父 송벽조, 母이운외(영산)
2	宋道性(道悅)	〃	1907.11.19	7.11	宋 奎	父 송벽조, 母 이운외(총부)
3	金洪哲(忠烈)	〃	1902. 9.19	15. 4	金光旋	父 김광선, 母 신정랑(영산)
4	丁良善(連弘)	女	1914. 7. 4	19. 4		父 정일지, 母 김동수(영산)
5	丁光薰(炳球)	男	1917. 8.30	20. 1	金大擧	父 정일지, 母 김동수(영산)
6	李正滿(玉任)	女	1914. 3.26	20. 4	李東安	父 이동안, 母 김윤덕(신흥)
7	李敬順(慶和)	〃	1915. 3.15	21. 2	李春風	父 이춘풍, 母 정삼리화(영산)
8	李泰然(福任)	〃	1914.10. 5	21. 5	李完喆	父 이완철, 母유화윤옥(신흥)
9	李正和(漢和)	〃	1918. 7.19	21. 11	李春風	父 이춘풍, 母 정삼리화(영산)
10	李光悟(斗行)	男	1920. 2.11	21. 4. 23	李東安	父 이동안, 母 김윤덕(신흥)
11	李聖信(玉禮)	女	1922.12. 1	24. 11. 4	〃	父 이동안, 母 전정관옥(신흥)
12	金智玄(智順)	〃	1924. 6. 3	21. 12	李共珠	父 김석규, 母 신범현(전주)
13	李空田(順行)	男	1927. 3.24	25. 8	宋道性	父 이호춘, 母김장신감(신흥)
14	朴光田(吉眞)	〃	1915. 3.23	26. 4	大宗師	父 대종사, 母 양하운(익산)
15	李正恩(正福)	女	1923.10.21	26. 6. 11	李共珠	父 이완철, 母 유화윤옥
16	朴昌基(南基)	男	1917. 9.14	17. 7. 30	大宗師	母 이공주(서울)
17	金貴根(永春)	〃	1929. 3. 5	27. 4	全飮光	父 김일현, 母 이해근(익산)
18	丁良珍(鳳善)	女	1924. 8.12	26. 1. 15		父 정일지, 母 김동수(영산)
19	宋靈鳳(靈鳳)	〃	1927.12. 3	27. 4. 7	曺滿植	父 송규, 母 여청운(영산)
20	李中正(鍾行)	男	1926. 6.14	27. 6		父 이형국, 母 노도봉화(신흥)
21	金大心(大德)	女	1926. 8.21	28. 4	李完喆	父 김홍철, 母 이보응화(영산)
22	朴濟權(京姬)	〃	1925. 8. 7	32. 4	朴四時華	父 박영식, 母 정봉숙(남원)
23	金大觀(德順)	〃	1933.11. 1	34.	金大擧	父 김홍철, 母 이보응화(영산)
24	宋靈智(靈智)	〃	1932.10.10	34. 12		母 최상옥(익산)
25	池性仁(淑姬)	〃	1932.11.16	36. 11		父 지해원, 母 이영근(광주)
26	朴濟現(英姬)	〃	1932. 2. 4	36. 12	朴將植	父 박장식, 母 강성수(익산)
27	李喆行(喆行)	男	1928.10.16	38. 4		父 이동안, 母 전정관옥(신흥)
28	李現照(現熙)	女	1933. 2.18	〃	李完喆	父 이호춘, 母 김장신감(신흥)
29	宋順鳳(順鳳)	女	1933. 3. 6	38. 4	宋 奎	父 송규, 母 여청운(영산)

30	金理玄(玉禮)	女	1930. 8.28	38. 4	金智玄	父 김석규, 母 신법현(익산)
31	吳瞳圓(男苗)	〃	1931.12.20	38. 6. 23	朴眞悟	母 박진오(익산)
32	宋天恩(天恩)	男	1935. 6. 9	29. 3	金中默	父 송도성, 母 박길선(이리)
33	金復煥(復煥)	女	1938.12.10	42. 3	金大擧	父 김대거, 母 이영훈(익산)
34	趙正中(云記)	男	1938. 1.28	43. 3	金中默	父 조희석, 母 이화진(익산)
35	宋明鎬(明鎬)	女	1939. 7.14	45. 4	尹順培	父 송봉환, 母 민성경(익산)
36	全八根(八根)	〃	1927. 3. 2	45. 5	李共珠	父 전음광, 母 권동화(총부)
37	曺喜悅(喜錫)	男	1915. 3. 7	46. 1	李亨局	父 조원선, 母 최문주화(익산)
38	曺英振(英子)	女	1943. 5.23	46. 4	李聖信	父 조희열, 母 이복원(이리)
39	朴濟仁(煥允)	男	1938. 6.13	47. 3	金勤修	父 박장식, 母 강성수(익산)
40	朴濟衆(煥斗)	〃	1936. 5.31	48. 3	朴眞吾	父 박장식, 母 강성수(익산)
41	金恩峻(峻謙)	〃	1943. 1.19	48. 3. 10	李炳恩	父 김대근, 母 김공훈(좌포)
42	權道圓(在烈)	〃	1944.12.12	49. 1	金善地行	父 권성천, 母 안익선(동이리)
43	金大鉉(大錫)	〃	1938. 8.30	49. 4	金勤修	父 김홍철, 母 이보응화(익산)
44	宋仁鎬(淑子)	女	1943.10. 3	49. 3	朴眞悟	父 송봉환, 母 민성경(익산)
45	權峻圓(在完)	男	1940. 4.26	49. 4	鄭潤才	父 권성천, 母 안익선(이리)
46	李英仁(建愛)	女	1942.10.18	50. 3	李正恩	父 이운권, 母 정득원(이리)
47	權世圓(在賢)	〃	1947. 2.25	51. 3	金善地行	父 권성천, 母 안익선(동이리)
48	朴井厚(在鎬)	男	1946. 8.15	52. 1	朴眞悟	父 박원길, 母 김경애(익산)
49	曺曉鏡(英淑)	女	1945. 6. 5	52. 3	丁盛熟	父 조희열, 母 이복원(이리)
50	李建仁(建仁)	〃	1947. 4.15	32. 3. 8	李正恩	父 이운권, 母 정득원(이리)
51	鄭安信(惠淑)	〃	1948.11.24	51. 3. 3	李百徹	母 장세진(화해)
52	金聖觀(聖觀)	男	1948. 7.12	52. 3. 8	金允中	父 김대거, 母 이영훈(익산)
53	宋敬鎬(敬鎬)	女	1948. 8.21	51. 3	朴眞悟	父 송봉환, 母 민성경(익산)
54	宋官恩(恩)	〃	1941. 1.25	54. 2	李敬順	父 송도성, 母 박길선(총부)
55	金恩珠(恩珠)	〃	1950.10. 6	54. 1. 29	太德權	父 김대근, 母 김공훈(좌포)
56	李正仁(正植)	男	1927. 7.30	54. 10	朴濟權	父 이완철, 母유화윤옥(신흥)
57	金慶元(吉永)	〃	1951. 8. 1	55. 3	太德權	父 김광창, 母 송정관(익산)
58	金仁卿(仁卿)	女	1951. 9.23	55. 3	丁盛熟	父 김윤중 母 임춘신(이리)
59	金慧光(貴聲)	男	1951.11.18	55. 3. 1	太德權	父 김병철, 母 김평심(익산)
60	鄭大安(蘭淑)	女	1951.12.22	55. 4	鄭性德	母 장세진(화해)
61	金道宗(道宗)	男	1953.12. 8	56. 3	太德權	父 김근수, 母 박중원(익산)
62	李聖田(聖田)	女	1953. 1.15	56. 3	丁盛熟	父 이중정, 母 김도진(이리)
63	李明鍾(鍾文)	男	1950.12.24	56. 3	鄭眞淑	母 최만진(좌포)
64	金貞心(貞順)	女	1948. 3.23	57. 12	丁盛熟	父 김홍철, 母 이보응화(백수)
65	張三正(賢德)	〃	1952. 5. 4	57. 12	金理玄	父 장성진, 母 이영순(영광)
66	金復仁(復仁)	〃	1954. 6.14	57. 3	丁盛熟	父 김대거, 母 이영훈(익산)
67	金曉善(順恩)	〃	1954. 3. 6	57. 3. 6		父 김치국, 母 김정국

68	張賢心(正德)	女	1949. 9.10	58. 3	柳聖一	父 장성진, 母 이병순(영광)
69	丁容熙(明聲)	男	1956. 4. 1	58. 1	朴濟權	父 정도윤, 母 장안전(이리)
70	梁潤誠(今順)	女	1955. 4. 8	59. 1	丁盛熟	父 양제승, 母 유법진(익산)
71	李吉良(吉良)	〃	1955.12.29	〃	李炳恩	母(익산)
72	李貞吉(眞吉)	女	1956. 9.20	59. 1	丁盛熟	父 이선우, 母 이윤옥(익산)
73	李敬中(敬中)	男	1957.10. 9	59. 3	趙峻谷	父 이병은, 母 장귀영(익산)
74	申眞圓(行圓)	女	1954.11.19	60. 3	丁盛熟	父 신보근, 母 김경인(익산)
75	李壯善(壯善)	〃	1956. 3. 9	〃	李恩錫	父 이은석, 母 김성근(종로)
76	金曉徹(順德)	〃	1957. 5.20	〃	丁盛熟	父 김서오, 母 최정신(남중동)
77	安慈恩(眞姬)	〃	1955. 9.26	61. 1	李正恩	母 손덕선(이리)
78	曺大性(首鉉)	男	1948. 1.23	〃	〃	父 조회열, 母 이복원(서울)
79	朴信裕(愛子)	女	1955. 5. 4	〃	金元滿	父 박원길, 母 김경애(익산)
80	梁常德(成眞)	男	1957. 8.27	〃	金復煥	父 양제승, 母 유법진(정토회)
81	李建直(建泰)	〃	1959. 4.20	〃	〃	父 이정인, 母 정수원(정토회)
82	朴恩心(禧玉)	女	1957. 8. 5	62. 1	吳信聖	母 서덕조(해운대)
83	朴主明(在明)	男	1959. 5.16	〃	尹致聖	父 박원길, 母 김경애(총부)
84	申誠鎬(誠鎬)	〃	1960. 4.14	〃	趙峻谷	父 신재일, 母 이이선(익산)
85	張敬道(敬道)	〃	1958. 7.10	〃	金復煥	父 장성진, 母 이병순(정토회)
86	金仁宗(仁宗)	〃	1958. 9. 6	63. 1	朴濟權	父 김장원, 母 송대은(이리)
87	李宗化(宗化)	〃	1960. 5. 3	〃	趙智聖	父 이백철, 母 김희준(익산)
88	張秉道(秉道)	〃	1946. 7.16	64. 1	金正勇	父 장성진, 母 이병순(원대)
89	李敬圓(敬圓)	〃	1959. 5.25	〃	金復煥	父 이병은, 母 장귀영(정토회)
90	李壯勳(建悅)	〃	1959. 9.14	〃	金理玄	父 이은석, 母 김성근(종로)
91	金圓謙(圓謙)	〃	1959. 3. 1	〃	金大勳	父 김대근, 母 김공훈(도양)
92	金義謙(義謙)	〃	1956. 7.19	65. 1	金復煥	父 김대훈, 母 김공훈(좌포)
93	朴道範(喜直)	〃	1959. 7.15	〃	李炳恩	母 서덕조(삼동원)
94	柳性元(圓坤)	〃	1961. 6. 2	〃	金復煥	父 유병덕, 母 성보영(정토회)
95	李敬悅(敬悅)	女	1961.10.30	〃	〃	父 이병은, 母 장귀영(정토회)
96	金海鱗(海鱗)	男	1954.11. 2	66. 1	金中默	父 김중묵, 母 정진근(이리)
97	金德常(德常)	〃	1963.11. 6	〃	金復煥	父 김대현, 母 최도심(이리)
98	朴法一(仁淑)	女	1961. 6. 8	〃	李喆行	母 고현성(전주보화당)
99	申重敬(淳鎬)	男	1060.10. 2	〃	金復煥	父 신재일, 母 이이선(익산)
100	申政鎬(連鎬)	男	1962. 8.24	66. 1	金復煥	父 신재일, 母 이이선(익산)
101	韓鏡天(秉仁)	〃	1962. 8.11	〃	〃	父 한해선, 母 노대열(이리)
102	朴賢心(喜正)	女	1961. 9.10	〃	安正眞	母 서덕조(인천)
103	宋正鎬(正鎬)	〃	1931. 6.25	〃	李用眞	父 송봉환, 母 민성경(익산)
104	李敬德(廷仁)	男	1962. 4.22	〃	李用眞	父 이선우, 母 이윤옥(익산)
105	金聖恩(聖恩)	〃	1944.12. 9	67. 8	金勤修	父 김대거, 母 이영훈(총부)

106	金泰圓(泰一)	男	1965. 7.10	68. 1	金復煥	父 김성진, 母 현묘원(정토회)
107	朴世範(喜昌)	〃	1959. 7.15	〃	吳曉善	母 서덕조(장수)
108	鄭善皓(大奎)	〃	1966. 4.17	69. 1	金復煥	父 정성덕, 母 강정신(정토회)
109	金道公(道公)	〃	1967. 7. 1	70. 1	〃	父 김성현, 母 정순기(정토회)
110	金泰性(泰成)	〃	1967. 4.10	〃	張應哲	父 김성진, 母 현묘원(정토회)
111	柳明元	〃	1965. 7. 6	〃	金復煥	父 유병덕, 母 성보영(정토회)
112	牟敬暻(敬暻)	女	1958. 9.26	70. 1. 17	金善地行	父 모성철, 母 최보순(동이리)
113	李道河(廷旼)	男	1967. 1.15	〃	金復煥	父 이성경, 母 장지성(정토회)
114	張聖旼	男	1967. 5. 8	70. 1	金復煥	父 장정현, 母 김효준(정토회)
115	趙仁珠(仁珠)	女	1966.10. 3	〃	〃	父 조정근, 母 오수원(정토회)
116	金賢鎭	男	1966.12.25	71. 1	〃	父 김춘택, 母 오상해(정토회)
117	徐光德	〃	1966. 4.22	〃	〃	父 서경범, 母 박정선(정토회)
118	徐賢祖(光善)	〃	1968. 8.25	〃	〃	父 서경범, 母 박정선(정토회)
119	辛明德(明德)	〃	1966. 5.13	〃	〃	父 신도형, 母 진인벽(정토회)
120	梁泰弘(成元)	〃	1959. 5.27	69.	〃	父 양제승, 母 유법진(정토회)
121	李壯恩(建恩)	〃	1961.12.26	71. 1	李廣淨	父 이은석, 母 김성근(종로)
122	李允德(廷鎬)	〃	1966. 1.12	72. 1	高圓善	父 이선우, 母 이윤옥(정토회)
123	林仁善	〃	1968. 4.11	〃	〃	父 임윤철, 母 김성화(정토회)

〈비원친회원〉

번호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출가년월일	추 천 인	출 신 학 교	비 고
1	金 圓 勇 (城 鍵)	男	1959. 1.21	68. 1	丁 盛 熟	원고	
2	金 德 主 (順 子)	女	1961. 8. 1	〃	金 復 煥	조대부여고	
3	姜 恩 聖 (椿 熙)	〃	1965. 9.14	69. 1	〃	고졸검정	
4	金 圓 浩 (鐘 勳)	男	1966.12.13	70. 1	〃	이리상고	
5	金 主 性 (鳳 亮)	〃	1967. 4.24	〃	〃	남성고	
6	羅 亨 文 (哲 洙)	〃	1963. 3.15	〃	〃	대입검정	
7	柳 應 住 (澤 烈)	〃	1966.11.24	〃	〃	남성고	
8	柳 公 圓 (貴 坤)	男	1967. 7.10	71. 1	〃	전북기계공고	
9	李 理 元 (行 善)	〃	1966.11.15	〃	〃	대입검정	
10	池 賢 官 (賢 寬)	〃	1968. 4. 1	〃	〃	이리고	
11	朴 聖 眞 (成 珍)	〃	1967. 1.26	72. 1	〃	전북대1년	
12	朴 重 薰 (炳 球)	〃	1962.10.30	〃	高 圓 善	대입검정	

자. 정토회원 명단

순	입회년도	법명(호적명)	생년월일	입교년월일	직 책	전무출신	비 고
1	1	梁 夏 雲(梁氏)	1890. 11. 3			大宗師	
2	3	辛 正 浪(辛氏)	1979. 8. 7	9. 4.29		金 光 旋	
3	〃	金 順 天(金氏)	1886. 5. 13	9. 4.29		金 載 千	
4	〃	鄭 順 月(鄭氏)	1887. 4. 12	13. 3. 1		朴 世 喆	
5	〃	張 河 旭(張氏)	1892. 11. 15	14. 7.30		吳 昌 建	
6	3	金 平 雲(金氏)	1890. 8. 13	15. 3.10		李 載 喆	
7	4	呂 淸 雲(貴仙)	1986. 3. 3	13. 3. 1		鼎山宗師	
8	7	朴 吉 善(곤례)	1909. 1. 2	13. 1. 2	회 장	宋 道 性	
9	8	朴 哲 信	1898			李 俊 鏡	
10	〃	全貞觀玉(潤德)	1898. 1. 3	13. 3. 1		李 東 安	
11	〃	權 動 華(次任)	1904. 12. 2	9. 4.29	고 문	全 飮 光	
12	9	李 雲 外(末禮)	1872. 1. 24	9. 4.29		宋 碧 照	
13	10	鄭三禽火(鄭氏)	1876. 2. 10	9. 4.29		李 春 風	
14	12	金長信甲(금례)	1905. 12. 29	13. 3. 1		李 昊 春	
15	〃	朴 明 性(明禮)	1914. 8. 27	16.10.20		趙 甲 鍾	
16	〃	金靈山華(金氏)	1881. 6.22	13. 3. 1		李 寶 局	
17	〃	金元明華(寶邑)	1890. 4. 24	29.12. 1		朴 大 完	
18	〃	金勸修華(金氏)	1892.10. 1	21. 4.16		〃	
19	13	李 七 星(李氏)	1903. 3. 7	50.10.19		成 丁 哲	
20	13	閔 聖 經				宋 奉 煥	
21	15	李報應華(李氏)	1905. 2. 19	13. 3. 1		金 洪 哲	
22	〃	金 東 壽(金氏)	1891. 2. 8	13. 3. 1		丁 一 持	
23	〃	劉華潤玉(華村)	1895. 9. 26	13. 3. 1		李 完 喆	
24	16	崔 鳳 頭				李 建 陽	
25	18	李 永 動(고막)	1912. 12. 29	19. 1.21	부회장	大山宗師	
26	〃	朴 靈 順	1897. 8. 14			丁 一 持	
27	〃	鄭 得 源(東北)	1909. 9. 30	18.12.30	고문	李 雲 捲	
28	21	崔文珠華				曺 元 善	
29	〃	尹 五 任	1895. 6. 3			李 君 一	
30	〃	李 化 眞	1907. 7. 3	20		趙 曠 錫	
31	〃	崔 明 洙	1936			朴 濟 奉	
32	〃	田 現 闢	1890. 9. 9			金 亨 眞	
33	22	河 聖 奉	1908. 2. 28	12		金 碩 奎	
34	24	盧道峰華(寶禮)	1906. 10. 13	13. 3. 1		李 亨 局	

35	25	李海根				金日鉉	
36	26	林靈田(鍾淑)	1924. 4. 15	26	고 문	朴光田	
37	〃	姜性修(貞玄)	1909. 12. 15	20. 9. 11		朴將植	
38	〃	鄭眞根	1919. 6. 1	36		金中默	
39	27	柳義貞				朴昌基	
40	28	全成要				宋日煥	
41	29	崔正眞(貴禮)	1928. 1. 20	41	항 단	金西悟	
42	〃	金道眞(年洙)	1928. 9. 27	30. 3.11	〃	李中正	
43	31	林春信	1931. 3. 27	31	항 단	金允中	
44	〃	鄭德善(五順)	1903. 10. 2	27.10. 2		李中和	
45	32	尹聖主(錫心)	1930. 3. 25	31.10.13	항 단	金仁龍	
46	〃	鄭光德(광덕)	1930. 12. 16			朴大成	
47	〃	曺妙順(묘실)	1925. 12. 25	20		李修悟	
48	33	韓基洪(정순)	1930. 7. 8	33		張仁中	
49	〃	金聖勳(이순)	1931. 1. 25			李恩錫	
50	34	李聖玉(필신)	1930. 2. 16	25	항 단	金貴根	
51	〃	張德山玉	1927. 3. 20	44		鄭碩德	
52	〃	朴中元(이순)	1928. 4. 11	28	항 단	金勤修	
53	〃	李善根	1908. 1. 8	56		池海元	
54	35	宋貞寬	1930. 11. 20	34		金光昌	
55	〃	柳法眞	1931. 6. 23	41		梁濟乘	
56	〃	崔忠仁(명수)	1931. 7. 7	35	항 단	牟相峻	
57	36	金滿中(은례)	1918. 1. 29	37		趙甲鍾	
58	〃	張貴英(귀월)	1929. 9. 8	36	항 단	李炳恩	
59	〃	金良中	1932. 11. 4	20	〃	丁慈善	
60	37	金聖潤(분임)	1929. 5. 29	37	〃	金正勇	
61	〃	金和正(일례)	1926. 3. 19	49		金秉哲	
62	〃	金喜俊	1934. 11. 9	38		李百徹	
63	〃	宋恩明(영자)	1935. 3. 1	36		梁泰說	
64	38	金敬仁	1932. 10. 10	32		申普根	
65	〃	許敬實(향귀)	1936. 10. 30	38		宋成讚	
66	〃	李炳淳	1924. 3. 9	46		張聖鎭	
67	39	張安全(말이)	1933. 8. 19	38	항 단	丁道允	
68	〃	李理善(이순)	1936. 4. 4	41		申在一	
69	40	鄭福月(복순)	1937. 8. 13	60	단 장	金正文	
70	〃	姜正信(正根)	1933. 4. 11	42	항 단	鄭性德	
71	〃	盧大悅(경순)	1936. 5. 13	40	단 장	韓海仙	
72	〃	李潤玉(순진)	1932. 10. 2	30		李善友	

73	40	丁舜永(순영)	1935. 12. 15	41	항 단	李 喆 行	
74	〃	金良悅(계순)	1934. 11. 27	31	〃	柳 正 完	
75	〃	李周完(말희)	1932. 5. 9	40	〃	李 建 春	
76	41	韓良權(순희)	1937. 8. 23	42	단장	吳 海 仁	
77	42	宋大恩(복례)	1935. 2. 6	28	〃	金 壯 權	
78	〃	成寶靈(보영)	1934. 5. 7	18	항 단	柳 基 現	
79	43	羅淨荷(만희)	1940. 2. 26	38	단 장	金 正 貫	
80	〃	權義眞(정복)	1934. 2. 10	39		李 鍾 圓	
81	〃	黃正眼(망례)	1937. 10. 23	44	단 장	鄭 圓 一	
82	44	張信英(성순)	1938. 5. 23	50		鄭 敬 薰	
83		朴良吉(양례)	1935. 8. 11	26	단 장	韓 正 釋	
84	〃	金淨蓮				韓 正 圓	열반
85	45	張至誠(난순)	1931. 11. 19	34		李 聖 敬	
86	〃	金正心(영심)	1937. 10. 9	45		徐 大 峻	
87	〃	金復均	1936. 1. 2	20		朴 選 一	
88	〃	金成和(영덕)	1940. 4. 17	45	단 장	林 允 哲	
89	〃	吳修圓(원묘)	1936. 10. 24	21	항 단	趙 正 勤	
90		金公勳(운규)	1922. 3. 20	26		金 大 根	
91	46	金孝俊(춘순)	1936. 5. 4	40	단 장	張 正 現	
92	〃	池敬仁	1938. 7. 28	41		朴 正 薰	
93	〃	河道審(서자)	1936. 12. 25	46		韓 正 洙	
94	〃	丁舜基(경자)	1942. 3. 2	37	단 장	金 聖 現	
95	〃	陳淨福(선례)	1943. 6. 15	48		李 正 淸	
96	〃	崔道審(영자)	1937. 11. 22	48	단 장	金 大 鉉	
97	〃	鄭賢珠(신자)	1940. 3. 25	49		金 淵 聖	
98	〃	李福源(복례)	1918. 1. 25	19		曺 喜 悅	
99	〃	夫世勳(귀순)	1939. 10. 22	48		趙 智 聖	
100	47	金敬信	1939. 10. 13	47		吳 聖 洙	
101	〃	崔安局(복순)	1936. 7. 21	48	단 장	金 剛 仁	
102	〃	朴性愛	1939			姜 雲 祥	
103	〃	玄妙圓(금식)	1936. 8. 10	52		金 聲 振	
104	48	李春淑(춘자)	1942. 10. 22	27	단 장	權 峻 圓	
105	〃	鄭義田(은자)	1951. 3. 11	59		金 愼 田	
106	〃	崔南眞(송자)	1942. 1. 14	50		沈 道 正	
107	〃	梁成學(정님)	1935. 11. 23	43		朴 眞 興	
108	49	金正河(명순)	1941. 8. 24	50		金 東 玄	
109	〃	趙恩澤(은제)	1940. 5. 8	49		李 鍾 圓	
110	〃	鄭常仁(순옥)	1943. 5. 21	48		金 達 性	

111	49	吳相慧(순애)	1944. 5. 9	50		金春澤		
112	〃	徐文澤(금연)	1939. 2. 25	51		李慧鎭		
113	50	朴正善(순화)	1944. 7. 1	56		徐敬範		
114	〃	김현경				李法俊		
115	〃	宋德勳(민자)	1941. 2. 16	50	단 장	朴濟衆		
116	〃	李仁成(현순)	1936. 5. 12	50		宋天恩		
117	〃	陳仁碧(현주)	1937. 3. 24	29	고 문	辛道亨		
118	〃	梁性緣(광자)	1943. 10. 4	54		李運徹		
119	〃	安益善	1917. 9. 3	40		權誠天		
120	51	黃敬勳(혜숙)	1941. 7. 4	51		李宗明		
121	〃	鄭知勳(명자)	1944. 9. 17	40	단 장	李道明		
122	〃	鄭世勳(숙자)	1941. 8. 13	50	단 장	朴濟仁		
123	〃	柳眞明(금수)	1936. 5. 28	45		宋慧聖		
124	52	金 眞(춘자)	1943. 6. 18	43	단 장	金聖徹		
125	〃	金明淑(순복)	1944. 12. 4	49		金碩元		
126	〃	全普勳				李泰聖		
127	〃	鄭慈勳(금순)	1945. 12. 1	51		鄭眞明		
128	〃	徐英善(영자)	1943. 2. 20	53	단 장	朱定鏡		
129	〃	崔普純(월남)	1921. 9. 5	18		牟成哲		
130	〃	金眞英(정희)	1930. 11	50		丁華聲		
131	53	辛蓮圓(연수)	1940. 6. 8	44		朴正基		
132	〃	趙順心	1940. 7. 17	52		太德權		
133	〃	柳東明(강영)	1943. 3. 10	45		李大光		
134	〃	李亨道(수자)	1943. 12. 18	53	단 장	金永鍾		
135	54	柳美先	1945. 6. 15	55		趙誠中		
136	〃	李忠然(점례)	1943. 4. 19	45	단 장	金恩峻		
137	〃	鄭秀源(복임)	1929. 9. 13	34		李正仁		
138	〃	金福慧	1941. 8. 22	25		高圓奎	미국	
139	〃	鄭仁鳳	1944. 3. 28	54	단 장	韓吉良		
140	55	崔眞慶(귀순)	1946. 8. 5	55	단 장	徐慶田		
141	〃	姜仁和(귀자)	1946. 6. 9	54	단 장	李宗眞		
142	〃	陳仁天				金亮秀	미국	
143	56	金庸善(영자)	1943. 6. 27	45		金學仁		
144	〃	金善敬	1947. 11. 18	55		具安福		
145	〃	鄭東仁(인자)	1948. 12. 18	40		李聖恩		
146	57	朴道順(금자)	1949. 7. 12	57		南宮圓		
147	58	全益眞				金圓友		
148	59	許允德(경덕)	1950. 3. 16	60	중 앙	曺首鉉		

149	59	尹淨熙(정이)	1952. 1. 17	60	중 앙	金 福 遠	
150	〃	李聖薰(옥례)	1952. 7. 19	59		金 玄	
151	〃	金照英(순희)	1948. 3. 1		단 장	河 一 誠	
152	〃	韓智환(정애)	1949. 4. 21	51	중 앙	李 性 照	
153	〃	朴奇奉(일윤)	1940. 5. 9	24		尹 正 觀	
154	〃	金影眞(영생)	1949. 12. 14	60	중 앙	趙 圓 悟	
155	〃	김현일(선옥)	1964. 8. 15	69		정 민 석	
156	60	陳尙順(성옥)	1949. 1. 26	60		成 仁 鍾	
157	〃	吳正信(정례)	1949. 12. 27	63		金 賢 悟	
158	〃	李惠淑(준례)	1952. 12. 18	53	중 앙	李 明 鍾	
159	〃	吳鳳蕙(선순)	1949. 9. 10	53	〃	李 聖 局	
160	〃	朴庸信(영숙)	1949. 10. 28	46	단 장	金 詳 益	
161	〃	곽수영	1948. 1. 18			金 圓 宗	
162	61	鄭仁勳(순애)	1945. 3. 28			權 道 圓	
163	〃	金智聖	1953. 3. 18	57		金 正 常	
164	〃	金德性(향래)	1950. 8. 29	49		崔 性 德	
165	〃	權淑仁(남희)	1949. 8. 3	50		梁 賢 秀	
166	〃	金性妍(혜숙)	1953. 2. 17	62		徐 光 圓	
167	〃	吳亨慈(정해)	1952. 9. 18	51	중 앙	姜 德 煥	
168	〃	李規蓮(연희)	1947. 6. 22	49		金 慧 峰	
169	〃	孫敬德	1949. 8. 3	46		金 聖 澤	
170	〃	辛英順	1941. 9. 24	38		金 文 澤	
171	〃	申智變	1945. 10. 26	30		牟 賢 哲	
172	〃	徐三受(학순)	1949. 9. 11	60	중 앙	李 眞 廈	
173	〃	成益眞				崔 應 眞	
174	〃	全仁新(길례)	1953. 10. 5	50		金 基 圓	
175	〃	曺恩慶(순자)	1954. 12. 25	56		朴 南 周	
176	〃	朴悟蓮	1949. 12. 8	50		金 一 相	
177	62	金德善(현숙)	1950. 10. 15	50		金 明 德	
178	〃	鞠天鏡(옥지)	1951. 1. 21	48		魯 大 薰	
179	〃	金報銀	1950. 1. 8	50		羅 道 國	
180	〃	朴賢田(점례)	1953. 12. 21	62		李 龍 煥	
181	〃	柳永眞	1930. 6. 23	34		金 慶 元	
182	〃	李聖心(두례)	1945. 11. 27	61	중 앙	李 俊 一	
183	〃	李修勳(순희)	1951. 7. 10	62		金 成 薰	
184	〃	林成材(춘임)	1949. 1. 20	61		신 영 은	
185	〃	張圓覺(순임)	1954. 5. 19	55	중 앙	尹 正 宇	
186	〃	鄭心圓(경희)	1950. 3. 26	62		金 主 圓	

187	62	崔聖容	1943. 3. 26	47		權世英	
188	〃	黃壯勳(선자)	1950. 2. 1	62		姜慶樂	
189	〃	韓熙眞(현희)	1952. 4. 26	62	중앙	朴光秀	
190	〃	黃亨勳(영숙)	1956. 10. 15	62	중앙	金正俊	
191	〃	蔡淵靜(정일)	1947. 12. 3	63		沈道潤	
192	63	金靜心(윤숙)	1955. 5. 23	54		金仁剛	
193	〃	金祥吉(계정)	1953. 11. 13	54	중앙	李敬峯	
194	〃	文恩京(은희)	1952. 6. 9	46		李圓京	
195	〃	金敬薰	1955. 7. 2	60		宋圓堯	
196	〃	朴靜中(귀순)	1957. 3. 5	59		金曉明	
197	〃	方明眞	1954. 1. 27	54		朴井厚	
198	〃	李德敬(정님)	1955. 11. 22	63		金明元	
199	〃	李德範	1954. 1. 23			鄭性徹	
200	〃	洪顯準(금자)	1956. 7. 7	60		黃仁哲	
201	64	金護德(인순)	1951. 10. 15	57		金大乘	
202	〃	金顯眞(정남)	1948. 4. 29	55	중앙	薛允煥	
203	64	金亨眞(영희)	1949. 12. 27	60		張秉道	
204	〃	朴忠仁(인순)	1956. 4. 5	63		金聖觀	
205	〃	吳德信(순자)	1954. 9. 3	63	중앙	金慧光	
206	〃	曺世蓮(세련)	1954. 3. 28	38		崔敬道	
207	〃	張賢德(현순)	1951. 8. 27	65		박길남	
208	〃	신원진	1956. 10. 25	47		李正宅	
209	〃	崔春德(춘례)	1951. 8. 14	63	중앙	李慧徹	
210	〃	崔惠德	1946. 4. 22	63		河漢仙	
211	〃	吳世炯(순모)	1957. 10. 10	45		辛大誠	
212	65	金德倫(금자)	1956. 8. 28	61		李敬中	
213	〃	柳慧圓(은숙)	1956. 8. 14	48		金道宗	
214	〃	朴惠榮(혜숙)	1952. 7. 15	40		金周暎	
215	〃	李周榮(계희)	1951. 1. 8	55		高允聖	
216	〃	千圭南	1953. 11. 30	55		安道淳	
217	〃	李寶榮(용여)	1940. 7. 22	55		金聖豪	
218	〃	元慧蘭	1949. 10. 26	55		朴達識	
219	〃	최화운				金性圓	
220	〃	李濟還	1957. 10. 2	50		孫興道	
221	66	文蓮憙	1955. 10. 22	46	중앙	申明局	
222	〃	李性璟(경숙)	1950. 6. 14	65		鄭玄仁	
223	〃	金潤信(명희)	1949. 8. 11	66		辛道暻	
224	〃	姜華珍(선옥)	1956. 1. 25	57		李道田	

225	66	林仁濟(명순)	1950. 5. 16	62		柳眞根	
226	〃	洪德天(덕순)	1955. 6. 19	65		金正有	
227	〃	李順榮(옥희)	1955. 11. 5	71		朴圓玄	
228	〃	金道恩(순애)	1954. 4. 12	60		成道鍾	
229	〃	權敬務(영순)	1955. 2. 20	60		金眞光	
230	〃	李珍鏡	1957. 8. 7			鄭貴圓	
231	〃	신혜신				韓昌民	
232	〃	육경신				金明學	
233	〃	申想信(복남)	1954. 8. 19			成明鍾	
234	67	宋淳敬(순)	1953. 5. 21	59		張淵光	
235	〃	이도관				鄭眞圭	
236	〃	金묘운(부덕)				宋正鎬	
237	〃	白世德(금자)	1949. 6. 13	67		金泰聖	
238	〃	車明恩	1954. 1. 30	66		許光永	
239	〃	柳慶勳	1952. 1. 14			李南賢	
240	〃	金玄才(순이)	1952. 1. 8	39		成時鍾	
241	〃	權善馥(숙희)	1958. 6. 8	63		全圓德	
242	〃	申忠善(선화)	1948. 8. 30	51	중 앙	金聖恩	
243	68	丁恩慶(의진)	1953. 11. 1	57		金慶日	
244	〃	鄭玄心(미경)	1960. 7. 5	65		金大禪	
245	〃	池仁勳(순애)	1955. 1. 18			崔世鍾	
246	〃	全益眞					
247	〃	金眞明(덕례)	1954. 6. 9	58		林道晳	
248	〃	金新星(윤순)	1961. 6. 25			金圓永	
249	〃	辛浩然(윤정)	1959. 1. 20	59		朴仁海	
250	〃	林德根(옥인)	1961. 10. 25	64		柳聖泰	
251	〃	金德善(광심)	1958. 2. 28	59		李重薰	
252	〃	孫明宗(월순)	1956. 10. 21	68		姜敬悟	
253	〃	李敬和(경애)	1955. 8. 2	49		黃釋中	
254	〃	李秀賢(선자)	1959. 6. 24	63		金眞誠	
255	〃	李慧仁(진숙)	1960. 12. 25	45		柳容眞	
256	〃	李閏德	1952. 9. 2	58		吳光益	
257	69	朴如心(덕선)	1955. 2. 25	67		宋基圓	
258	〃	李洪善(점자)	1956. 2. 1	53		金義謙	
259	〃	李靈照(영애)	1961. 3. 12	61		梁海寬	
260	〃	황연경(세진)	1956. 8. 25	56		盧永寬	
261	〃	金善永(영경)	1954. 5. 28	65		崔永眞	
262	〃	曺明恩(선심)	1959. 2. 27			張成恩	

263	69	徐珠圓				南宮信	
264	〃	黃法蘭(옥란)	1962. 2. 13	57		李正圓	
265	〃	吉慧先(순복)	1962. 3. 7	60		徐光德	
266	〃	金一正(복희)	1957. 5. 11	66		金觀中	
267	〃	李貴圓	1954. 6. 24	54		金禪瓊	
268	〃	崔靈旭(문주)	1954. 3. 13			李聖圓	
269	〃	강경순	1959. 3. 3	68		朴永度	
270	70	申和倫(화자)	1955. 8. 2			姜亨信	
271	〃	吳賢德(차숙)	1956. 3. 19	70		李洵圓	
272	〃	李明眞(명숙)	1957. 10. 21	70		張善志	
273	〃	李度貞(성경)	1960. 10. 25	60		申誠鎬	
274	〃	崔秀賢	1962. 9. 5			金學宗	
275	〃	왕성주(경성)	1960. 12. 13	61		姜文成	
276	〃	鄭龍善(은선)	1958. 10. 5			梁常德	
277	〃	張時圓(영화)	1960. 10. 9	61		宋仁傑	
278	〃	蔣仁德(말련)	1956. 4. 18			朴龍德	
279	〃	정송원(상아)	1959. 6. 11	59		朴道廣	
280	〃	이경인	1960. 11. 15	68		金道永	
281	71	林大成(은숙)	1959. 9. 29	61		張釋準	
282	〃	金聖和	1960. 1. 11	71		李道中	
283	〃	權三心(영주)	1958. 2. 1			姜在悟	
284	〃	李道運(정숙)	1956. 12. 10	61		宋道平	
285	〃	裵大善(효정)	1961. 1. 23			全世中	
286	〃	羅貞順(정희)	1963. 7. 23	71		金圓龍	
287	〃	계정심	1963. 1. 27	70		金永修	
288	〃	朴道善(인자)	1957. 7. 1	68		安 薰	
289	〃	金恩中(숙경)	1963. 7. 25	68		金東宣	
290	〃	金修眞	1961. 10. 29			金法聲	
291	〃	조인원	1963. 11. 22			韓德天	
292	〃	유명도				李春植	
293	〃					方德萬	
294	〃	허대원	1956. 8. 19			崔仁天	
295	〃	徐妙眞(榮淑)	1962. 12. 21			成大眞	
296	〃	홍인숙				李同喜	
297	〃	임혜성				金佑正	
298	〃	정인향				李敬浩	
299	〃	裵容蓮(옥희)	1956. 2. 28	61		張德薰	

301	71	金明元	1963. 1. 21	48		金仁宗
302	72	崔智賢(정근)	1934. 4. 28	56		韓正圓
303	〃	柳德敏(정님)	1961. 10. 29	64		李敬圓
304	〃	崔明眞(현정)	1961. 9. 22	61		崔眞船
305	〃	고순선(혜경)	1958. 11. 19			安重薰
306	〃	李明姬(영희)	1960. 11. 6	60		安仁錫
307	〃	李修蓮(영애)	1956. 9. 27			金象護
308	〃	崔賢眞(영희)	1962. 1. 17	70		白仁基
309	〃	楊明熙(경희)	1954. 7. 3	41		權道甲
310	〃	李惠田	1960. 3. 20	72		柳性元
311	〃	淳明慧(선혜)	1959. 4. 19			曺常好
312	〃	허장은				金圓謙
313	〃	白恩善(연옥)	1962. 2. 27	71		曺常圓
314	〃	최도옥(명옥)	1957. 5. 11			金明證
315	〃	趙聖德(춘자)	1960. 8. 8			朴法宗
316	〃	金明圓(금란)	1962. 8. 9	69		金觀眞
317	〃	敬仁德(정숙)	1962. 12. 9	68		李用勉
318	〃	金興德(육미)	1960. 9. 12	59		鄭仁德
319	〃	朴慈圓(순자)	1949			林道玄
320	〃	이정선				鄭恩光
321	〃	李顯眞(형란)	1958. 12. 11			文常禪
322	〃	李修瑛(의자)	1961. 4. 8	66		李眞秀
323	〃	황연복				백정윤
324	〃	韓仁昌	1950. 7. 15	47		박신유
325	〃	황성유(송자)	1944. 4. 9	67		양평강
326		李順動				尹致聖
327	〃	이보영				
328	〃	金智仁(순주)	1949. 10. 16	40		張道英
329	〃	金福緣	1941			조성근
330	〃	權昌完	1912	25		이창준
331	〃	김경애	1926. 6. 13	40		朴圓吉
332		金明照				
333		金正道	1962. 10. 13	69		韓昌民
334	〃	白南旋				金宗天
335	〃	宋正宣	1938			李濟性
336		史誠心	1954. 8. 20	63		
337	〃	宋順明				黃天一
338	〃	유도현				李亨遠

339	72	李容順(순영)	1953. 6. 26	56		趙仁圓	
340	〃	李倫珍(영인)	1957. 8. 24			李春宣	
341	〃	張貞恩	1956. 8. 7	58		安世雄	
342	〃	林順道	1931. 10. 15			金玄佑	
343	〃	鄭奉淑				朴榮植	
344	〃	丁德修圓				金正浩	
345	〃	表淳安	1932. 3. 9	41		張正一	
346	〃	崔德雨(춘우)	1953. 12. 4	63		李中天	
347	〃	黃海德				朴性基	

〈청년회 역대회장단〉

대	결성년월일	회 장	남부회장	여부회장
	64. 1. 4	박성태		
	65. 5. 1~	학원사태와	임시정지	
	67. 2. 28	지도자 결여		
1	67. 3. 1	김도현		유도순
2	67. 9. 9	김상덕	박경수	이옥인
3	68. 10. 5	김병권	조융선	이옥인
4	69. 9. 23	유성룡	장성철	이미영
5	70. 12. 6	김우종	조융선	변선안
7	72. 12. 4	유택열	김수영	이미영

〈학생회 역대회장단(고)〉

대	결성년월일	회 장	남부회장	여부회장
1	57	김덕종	(당시 익산 교당 회장)	
	종법사 뜻으로 원족회 만들고			
	법회는 1년에 한번 신도안 삼동원에서 훈련			
2	58	정덕길	(당시 동이리 교당 회장)	
3	59	이건직		김도현
	영타원님의 노력으로 원족회 → 원친회 따로 법회보기 시작			
4	60	이건호		오정희
5	61	박진석	이경원	
6	62	유성원		김문경
7	63	오성근	이정찬	이경렬
8	64. 1	김병권	박경수	조인덕

9	65. 1	김 우 종	오 상 권	이 지 하
10	66. 1	신 현 호	김 태 일	이 금 란
11	67. 1	심 재 성	전 유 성	이 원 덕
12	68. 1	이 정 민	김 도 공	이 효 선
13	68. 12. 25	서 광 선	지 현 관	이 신 복
14	69. 12. 29	김 경	한 인 보	김 인 자
15	70. 12. 28	심 재 한	신 승 룡	김 은 경
16	71. 12. 20	김 인 성	고 준 영	이 문 하
17	72. 12. 26	김 용 민	이 성 민	김 인 수

〈중등부 역대 회장단〉

대	결성년월일	회장	남부회장	여부회장
원기72년 중·고 분리				
1	72. 8. 22	김 승 인	신 우 석	이 지 연
2	73. 8. 20	주 현 웅	정 세 원	정 혜 령
3	74. 8. 12	김 상 경	김 태 형	조 영 란
4	75. 8. 25	이 원 광	김 상 인	김 은 덕

〈유년회 회장단〉

연 도	지 도 교 사	회 장	남 부 회 장	여 부 회 장
62	윤 순 명	심 재 성		
68	박 인 원	정 관 철	이 시 우	주 회 진
	김복회·오선옥			
	정 성 철			
69. 4. 15	박 인 원	서 원 복	김 현 국	박 유 신
	오선옥.김일정			
70. 2. 10	박 인 원	김 상 인	허 종 회	이 지 연
	김일정·홍현준			
	오 세 형		허 종 회	
71.	배 현 송	주 현 웅	윤 재 회	박 상 원
	김일정·홍현준			
	오 세 형			
72. 2. 1	배현송외 4명	김 상 경	김 태 형	조 영 란

※ 원기62년~67년까지 매월 7, 8월 사이에 어린이 여름훈련실시. 원기68년부터 유년회 결성 법회시작함.

차. 회 칙

원불교 정토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원불교 정토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원불교(이하 본교라함)의 종지를 받들어 회원 각인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본교의 교세발전과 전무출신 권장 및 회원상호간의 화합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회는 본교 전무출신 배우자로서 조직한다.

제4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본교 중앙총부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기 관

제5조(집행기관) 본회에서는 약간의 고문과 다음 위원을 둔다. 고문 약간명 교무부장(자동적) 회원중에서 약간명 선출

회 장 1인	사무장 2인	총 무 2인	간 사 2인
부회장 1인	교화부 2인	재 무 2인	음악부 2인

제6조(회장) 회장 부회장을 총회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유고시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사무장) 사무장은 회장의 천거로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8조(총무 재무간사) 사무장의 천거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간사 1인은 총부 교무부 직원중 교무부장의 천거로 회장이 위촉된다.

제9조(사무분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관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유고시에 대행한다. 3. 사무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집행 각부를 통리하며 회무전반의 책에 임한다. 4. 총무는 사무장을 보좌하여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ㄱ. 회원 가입 탈퇴에 관한 건 ㄴ. 회의에 관한 건 ㄷ. 교화에 관한 건 ㄹ. 상벌에 관한 건
ㅁ. 사업 추진에 관한 건 ㅂ. 후생 및 애경상문에 관한 건 ㅅ. 장학, 운영, 기획에 관한 건
ㅇ. 기타 사항

5. 재무는 사무장을 보좌하여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ㄱ. 사업에 관한 건 ㄴ. 후생 및 애경상문에 관한 건 ㄷ. 장학, 운영에 관한 건
ㄹ. 회비 징수에 관한 건 ㅂ.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건

6. 간사는 사무장을 보좌 하여 서류일체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10조(사업내용)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 한다.

1. 공부사업의 정진 및 생활개선 향상에 관한 연구 및 보급에 관한 건 2. 회원 후생에 관한 건. 3. 회원 상호간의 애경상문에 관한 건 4.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건 5. 회원 자녀의 장학에 관한 건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건

제11조(의결기관)

1. 본회의 의결 기관으로써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역원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매년 5월 첫 일요일로 정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시 역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4. 역원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사무장, 총무, 재무, 간사로 구성하고 필요시 의장이 소집하여 회무전반을 의결 처리한다. 5. 회의의 의장은 사무장이 되며 유고시는 회장이 임명한 자가 대행한다.

제12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리훈련 및 전무출신 권장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회장 부회장 선거 4. 예산안 결산서 심의 5. 상벌에 관한 사항 6. 역원회에서의 의결사항 7. 기타 사항

제13조(상벌)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회장은 역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포상,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공부와 사업 및 권장의 행이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포상) 2. 배우자인 전무출신자와 혼인 관계가 해소 되었을 때(제명) 3. 배우자가 전무출신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제명) 4.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때(징계) 5.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징계)(단, 사정을 보아 처리한다.) 6. 회원이 권장하는 전무출신자의 활동을 현저히 제약 또는 방해하였을 때(징계)

제3장 재 정

제14조(경비) 본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수입으로써 그 경비에 충당한다.

1. 회비 2. 특별 회사금 3. 기타 잡수입

제15조(회비) 회비는 1인당 100원씩(단 당시 물가에 의하여 적당히 조절할 수 있다) 연 1회 정기총회 소집시 납부한다.

제16조(예산) 재무는 매년초 예산안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17조(시행세칙) 본회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효력발생) 본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9조(회칙개정) 본회칙의 개정을 필요로 할시는 역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개정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본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원기52년(1967) 5월 7일

카. 정토회 선서문

정토회원 선서문

① 우리는 숙세의 서원으로 일원대도를 세계만방에 전하여 도덕으로 전하여 구제하는 전무출신을 권장하는 정토회원이 되었음을 자부하나이다.

② 우리는 어떠한 역경 난경을 당할지라도 삼학으로 마음을 잘써 나가고 사은 보은으로 감사생활을 하여 당하는 곳마다 선법화하고 대하는 곳마다 불은화하겠나이다.

③ 우리는 영겁을 이공부와 사업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대지(大地)가 되고 연꽃이 되어서 이회상과 전생령을 위하여 무명성자의 뒤를 따르겠나이다.

④ 우리는 불보살을 모시고 불보살을 기르며 스스로 천하 살림을 하여 나가는 불보살이라는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반대중과 교도의 모범이 되겠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과 대종사님성령과 삼세제불제성님께서는 저희들의 이서원을 증명하시고 큰 위력과 은혜를 항상 내려 주시옵소서

3. 圓德會

가. 창 립

원기65년(1980) 11월 27일 정기 중앙교의회에서 大山宗法師가 교도회장단의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를 결성하라는 유시에 따라 회원간 상부상조로써 법연을 돈독히 하고 공부사업을 촉진하여 교단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원기66년(1981) 7월 5일 창립하였고 단체의 이름을 대산종법사께 품의함에 따라 圓和會로 명명해 주셨다.

그후 원기66년(1981) 11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圓和會를 圓德會라 개명하였다.

창립당시 회원수는 130명이었고 초대회장에는 金經圓회장이 선출되었다.

나.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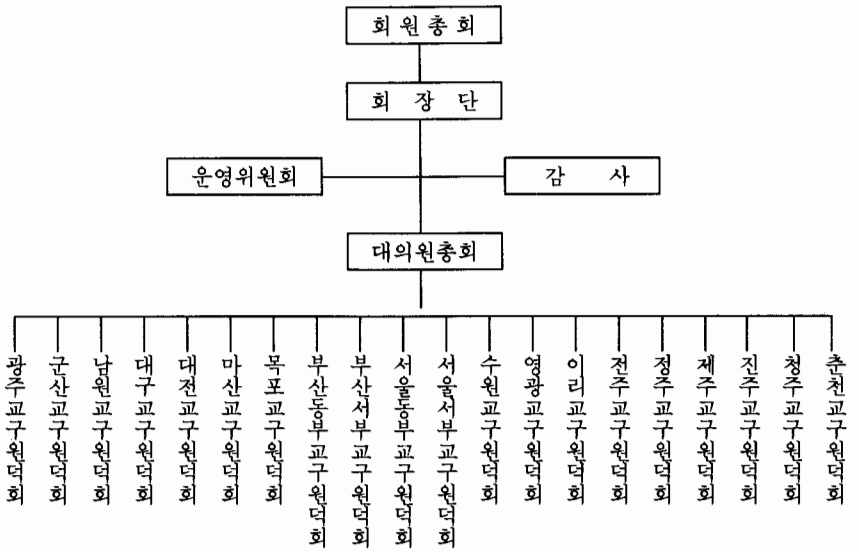

다. 현 황

원기72년(1977) 12월 31일 현재 회원수는 291명이고 자산은 2,208,048원이며, 연도별 회원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회원수〉

연 도	계	남	여	증 감	비 고
67	130				
68	173			+43	
69	210			+37	
70	259			+49	
71	277			+18	
72	291			+14	

라. 역대임원

대	법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1	金 經 圓 (弘 準)	男	1920. 3. 16	66. 7. 5~69. 11. 1	중 구 교 당
2	洪 正 觀 (正 杓)	〃	1916. 2. 21	69. 11. 12~	상 주 교 당

라. 중요사업 및 활동

원기65년(1980) 창립 이후 회원의 애경사 상문 등 회원 상호간 상조활동을 전개하였고 원기72년(1987) 3월 16일과 동년 9월 12일에는 이리교구 원음오케스트라가 재정부족으로 활동이 위축되자 원불교 문화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각각 60만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였다.

4. 貞 和 團

정화단은 정남정녀의 친목단체로써 단원 상호간의 서원을 확고히 하고 정의를 두터이 하며 이 공부와 사업을 권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남녀 정화단이 각각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다.

가. 男子貞和團

1) 가. 창 립

남자 정화단은 貞男으로서 한 생을 살아감에 있어 이 일생을 大誓願. 大積功. 大報恩期로 정하고 단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이 공부 이 사업을 권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기57년(1972) 10월 11일 창립하였다.

창립당시 회원은 17명이었으며 초대회장에는 정광훈교무가 선출되었다.

2) 역대회장

대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丁 光 薰	男	1917. 8. 30	56. 10. 5~62. 8. 26	
2	安 理 正	〃	1919. 2. 21	62. 8. 26~65. 11. 21	
3	李 空 田	〃	1927. 1. 26	65. 11. 22~72. 11. 14	
4	黃 直 平	〃	1932. 3. 17	72. 11. 15~	

3) 조 직

남자정화단은 종법사를 총재로 추대하고 지도위원 약간인과 단장 1인, 부단장 2인, 총무 1인, 간사 1인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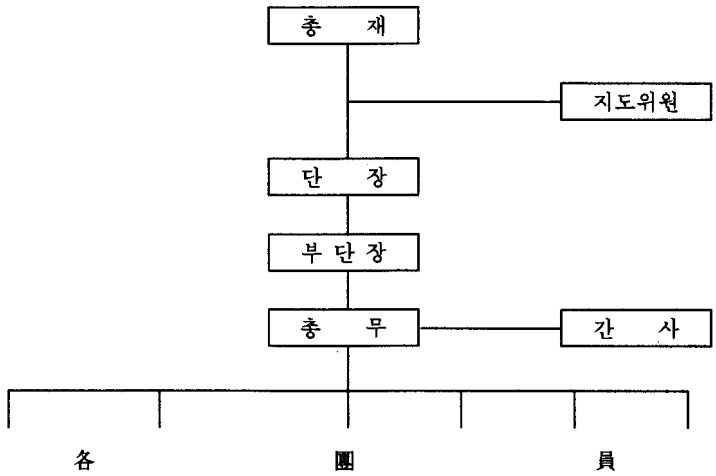

4) 현 황

원기72년(1987) 12월 31일 현재 회원수는 38명이며 연도별 회원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회원수〉

연 도	신입회원수	누 계	증	감	비 고
57이전	4	4	17		
57(1972)	17	21	2		
61(1976)	2	23		1	열 반
62(1977)	1	24	3		
63(1978)	3	27	1		
65(1980)	1	28	1		
66(1981)	1	29		2	열 반
68(1983)	2	31			
69(1984)	3	34	3		예비단원
72(1987)	4	38	4		

마. 중요사업 및 활동

사업·활동명	일 시	활 동 내 용
합동수련대회	65. 6.26	정진훈련 및 친목
〃	67. 7. 1	친목과 훈련
정화단수련대회	68. 6. 7	〃
제주국제훈련원 성금	69.11.11	1,080,000회사
특별정진훈련	70. 6.27	특별정진 및 정화문집 발간 토의
정화문집1집출판	70. 8.15	선배정화단을 추모하고 법연을 더욱 두터이 하기 위하여 시, 수필, 감상문, 논단 등
정화단수련대회	71. 6. 6	수도정진훈련과 친목

나. 女子貞和團

1) 창 립

여자정화단은 정산종법사의 「정녀친목단체로써 정화단을 조직하라」하시고 그 정신을 「정결은 연화같이 지조는 송죽같이 하라」하신 유시에 따라 친목, 지조, 청빈을 가꾸는 목적으로 원기45년(1960) 1월 창립하고, 모임이 있을 때면 감찰원과 사무적 연관을 가지고 서로 규칙을 단속하는 정도에서 지내오다가 원기57년(1972) 다시 감찰원에서 재구성하였고 이를 밑받침하여 원기58년(1973)에는 법규를 정비 자치운영체제가 완비되었고 법규에 따라 총무부와 행정적 연관을 가지게 되었다.

창립당시 회원수는 280명이었고 초대회장은 김영신교무였다.

2) 조 직

여자정화단은 종법사를 총재로 추대하고 총단장 1인, 부단장 약간인, 각 분과별 실무위원 약간인 각 단장과 중앙 그리고 전체 단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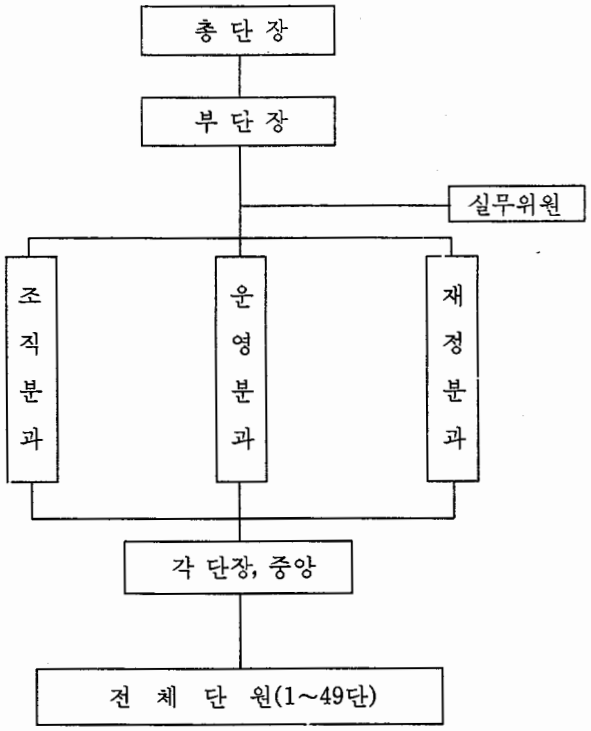

3) 현 황

원기72년(1987) 12월 31일 현재 회원수는 563명이며 연도별 회원수는 다음과 같다.

연 도	신입회원수	누 계	증감		비 고
			증	감	
59(1974)	250	250		25	열반21 퇴속4
60(1975)	30	280		1	퇴속
62(1977)	43	323		1	〃
65(1980)	97	420		2	〃
68(1983)	62	482			
71(1986)	81	563			

4) 역대임원

대	법명(호적명)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1	金永信(順得)	1908. 2. 6	45~54	자문위원:박제권, 송원철, 전팔근
2	曺專權(玉順)	1909. 11. 21	54~58	준비위원:박재현, 송순봉, 전종철
3	李敬順(慶和)	1915. 3. 15	58~61	부단장:정진숙 실무위원 조직분과:송원철, 정진숙 운영분과:박은국, 송영봉 재정분과:이성신, 박제권 총무:김이현, 간사:전종철
4	梁道信(小淑)	1918. 8. 2	61~64	부단장:정성숙 실무위원 조직분과:박성경, 양혜경, 김지현 운영분과:김이현, 정성숙, 이정은 재정분과:유성일, 전팔근, 정경호, 오희원 총무:박제현, 간사:최세진, 이성전
5	朴恩局(永愛)	1923. 1. 12	64~67	부단장:신재근 실무위원 조직분과:전이창, 송순봉, 박제현 운영분과:박은섭, 지성인, 전종철 재정분과:윤주현, 김성주, 이정무 총무:김형철, 간사:최세진, 이경옥
6	全二昌(在禮)	1925. 10. 3	67~70	부단장:장경안 실무위원 조직분과:김대관, 김보현, 김복환 운영분과:박청수, 송영지, 이재경 재정분과:송자명, 고현종, 박성덕 사무장:전종철 간사:박혜명, 이경옥, 고원선
7	金理玄(玉禮)	1930. 8. 28	70~	부단장:이현조 실무위원 조직분과:박정묵, 최세진, 남궁선봉 운영분과:김형철, 이혜정, 장경진, 박순정 재무분과:박지홍, 장혜성 간사:최지원

5) 중요행사 및 활동

원기45년(1960)1월 창립, 그동안의 중요행사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년도	사업·활동명	기간	대상 인원	활 동 내 용	비 고
45	초대金永信총단장취임 貞和團創團	1 2		 취지. 표어. 단규제정	감찰원에사무연락소두다
54	貞和團再發起 2代曺專權총단장취임	10.12		준비 자문위원 조단발표	
57	총단회개최	10.15		組團, 단운영 참고자료 지시	
58	 제1회총단회개최	1.29 10. 7		副教務, 組團指示 組職整備, 정화단규정 組團改編	정남정녀규정근거자치운영해체(총부부사무연결)
59	제2회총단회개최 제3회총단회개최 제4회총단회개최	3.31 10.10 10.15 0.27 10.29	 250	 영산성지 정화단 선서식奉告 원로단추대예물진정(연례행사로지정) 제1회정화단선서식거행(대각전)	
60	제5회총단회개최 제6회총단회개최 정화상제정	3.31 10.21	 30	 제2회 정화단 선서식거행 대각전(1회선서결석자) 제1회건강장수여 양도신단원수상	
61	수도원유지답매입 제7회총단회개최 제4대梁道信총단장취임	1.18 10.25		유지답1,200평(2,734,000) 제2회 융화장수상(정진숙단원수상) 組團改編, 團員手指수첩제작 실무위원갱질	
62	수도원유지답매입 제8회총단회개최	3. 3 11. 4	 45	유지답1,200평매입(3,947,000, 백미175가마외) 제3회 정화단선서식거행 제3회 성실장수여 백수정단원수상	
63	제9회총단회개최	11. 2			
64	수도원유지답매입 제10회총단회개최 제5대朴恩局총단장취임	3 10.21		組團改編, 정화소식발간결의 유지답 1,200평 매입 ₩5,500,000(재무관련) 실무위원갱질(10명으로증원)	
65		4.30		정화통신제1호 발행	

년도	사업·활동명	기간	대상 인원	활 동 내 용	비 고
	제11회총단회개최	10.20	97	제4회정남정녀선서식거행(정남1, 정녀97)기념관 ※ 교단행사로 주관이양	총무부에서 대상자문심, 교단에서 축하식으로거행, 종법사 선서자에 연화장 수여
66		3.18		정화통신제2호발행	
	제12회총단회개최	11. 6		수도원숙사 낙성봉불	
				유지답성금(65.66년분)건축금으로 유	
		11. 7		용 자매단 주상제실시	
		12		정화제복사 발족(이수진실무책임)	
67		1.13		정화통신 제3호 발행	
		2.25		신입예비정화단원 관례식주관	
				〃 조단관리	
	제13회총단회개최	11. 4		組團改編	제복사 현판식
				총무제를 사무장 체제로개선	
	제6대全二昌총단장취임			실무위원 갱질	
68		7. 1		정화통신 제4호발행	
		6.28~29		제1회단장·중앙훈련실시	완도소남훈련원
		7.20		정화통신 제5호발행	
	제14회총단회개최	11. 6	62	제5회정남정녀선서식거행	기념관
69		3.13		정화제복사 인계인수	
				실무책임자 장경안	
		4.20		정화통신 6호발행	
		5.17~18		제2회단장·중앙훈련실시	중앙훈련원
	제15회총단회개최	11.11			
	수도원시설후보지매입			매입금 3천만원	
	정화제복사익금활용			제복사익금 9백만원	
	제주국제훈련원방만련			제주훈련원방 마련 6백만원	
				「전주평화동1100여평확보 유지답성금67, 68년도충당, 김종일씨 500평회사받음」	
70		9.20		정화통신 제7호발행	
70	정화단창립25주년기념식	11.10		정화단기. 정화장(총단장)제정	
				원불교여성70년사 "개벽의일꾼"발간	
				경축음악회개최. 구타원법사 감사패증정	
	제16회총단회개최	〃	450	375명 참석	
				유지답 매입성금, 제복사익금	

연도	사업·활동명	기간	대상 인원	활 동 내 용	비 고
	제17대김이현단장취임			수도원 건축금으로 적립결의 제7대총단장 및 실무위원갱질	
71		1.17 1.25 7.12 11. 8 12.30	 81 490	동산선원 및 교학대 졸업예비 정화단 관례식기도 제8호 정화통신발행 제6회 정남정녀선서식거행(기념관) 402명 참석 제9호 정화 통신발행	
72	제18회총단회개최	6. 2 6. 3 11.17	98 490	제3회 정화단 단장·중앙 훈련실시(78명 참석) 436명 참석 貞和誌발간의결	중앙훈련원

〈정남정녀규정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정남정녀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정남정녀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사위원은 교정, 감찰 양원장과 남녀정화단 총단장은 당연직으로 하여 5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대표가 된다.

3)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가. 예비지원자 심사　　나. 정식서원자사정　　다. 문심

라. 동일예우자 사정　　마. 시행세칙제정

바. 선서식 및 정남정녀에 관한 풍토조성과 예우관계　　사.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예비지원 자격 및 절차) 예비지원 자격 및 절차는 다음에 의한다.

1) 예비지원은 전무출신을 서원할 때 또는 뜻이 정하여질 때 지원서를 제출한다(제1호서식)

2) 예비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미혼한 전무출신자로서 제반에 걸쳐 독신생활이 가능하다고 인증된 자.

나. 신심과 서원과 조행이 정남정녀의 품위에 손상이 없다고 인증된 자.

3) 지원자격제외:호적상 미혼이어도 결혼한 사실이 있거나 설사 혼례는 올리지 않았어도 남녀가 동거한 사실이 있는자는 지원자격이 없다.

4) 지원취소:혼별이 미상하여 미혼으로 간주되었더라도 위 3항의 사실이 나타날 때에는 정남정녀지원이 취소된다.

5) 지원변경:예비지원기에 있는자가 지원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지원변경원(제2호서식)을 제출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문심) 문심은 예비지원에서부터 정식서원자로 선서의 절차를 밟기까지를 전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문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예비지원 후 교직 3년이 되었으나 정식서원을 행하지 아니한 자(여:선서대상에 연령미달)
   나. 예비기에 있는자로서 1차문심 후 3년이 된 자(예:31세 미만의 경우)
   다. 정식서원 대상이 된 자.
   라. 선서 후 3년이 경과했으나 남40세, 여35세에 미달한 자.
   단, 전무출신 지원 후 14년이 경과한 자는 선서 후 문심을 생략할 수 있다.
2) (문심통고) 문심해당자에게 당년도 초에 통고하고 일정기간을 기도로서 뜻을 정돈하여 문심을 받게 한다.
3) (문심윤리) 문심을 하는자와 받는자는 개인의 인격으로 한하지 않고 법의 대행으로 알며 상호 신뢰로서 그 신상을 보장한다.

제5조(정식서원 및 선서)

1) 문심을 통하여 자의를 표하고 정식서원을 한자는 선서의 절차를 밟는다. 단, 여30세, 남35세가 경과하여 전무출신을 지원한 예비지원자는 미혼이 확실하다해도 선서식을 고려할 수 있다.
2) 선서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선서자는 법신불전과 삼세 제불제성전에 봉고, 명부에 날인하며 선서조항(제3호 서식)으로서 맹서한다.
   나. 선서의 요강은 1.긍지와 사명 2.정결과 정진 3.검소와 청빈 4.조행과 우의로 한다.
   다. 종법사로부터 정조에 대한 고귀성을 인증하고 순결을 다짐하는 연화장을 부여받으며 선서의 식을 행한다.

제6조(명부등록) 정남정녀로 서원 선서한 자는 순위의 번호를 갖게 되며 정남정녀부(제4호 서식)에 등록된다.

제7조(예우시행) 정남정녀 또는 동일한 예에 준하는 자는 정년이 된 후 수도원에 입원하여 일체 시봉절차에 소루함이 없게 한다.

제8조(시행) 본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화단규정〉

제1조(제정) 본 규정은 정남정녀규정 제7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본 정화단은 정남정녀의 친목단체로서 단원 상호간의 서원을 확고히하고 정의를 두터이 하며 이 공부와 사업을 권면하는 것을 목적한다.

제3조(운영) 본단은 남녀 정화단이 각각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둘 수 있다.

제4조(기본정신 및 신조) 본단의 단원은 정결은 연화같이 지조는 송죽같이 하며 이 한생을 대서원기

대적공기 대보은기로 삼는다.

제5조(자격 및 가입) 정남정녀를 지원한 자와 동일한 예에 의하여 대우된 자는 자동적으로 본단에 가입이 된다.

제6조(종별) 정남정녀 예비지원자는 예비단원이라 하며 정식지원자는 정단원이라 한다. 단원으로서 65세가 넘으면 원로단원이라 하며 일체 임직에서 은퇴한다. 단, 소정의 결의에 따라 대우단원을 둘 수 있다.

제7조(본단의 조직과 활동) 단원은 10인 1단으로 분단을 조직하고 단장, 중앙의 지도와 단원 상호협조하에 원활히 운영한다. 각 단은 소기의 활동을 위하여 자매단을 둘 수 있으며 연합행사를 가질 수 있다.

제8조(임원) 본단은 종법사를 총재로 추대하고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인, 남녀총단장, 각 1인, 부단장 약간인, 실무위원 약간인, 임원은 총단회에서 선정하며 기타 직원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단장이 위촉한다.

제9조(고문) 고문은 교단의 원로중에서 유공한 자로 추대한다.

제10조(총단장) 총단장은 본단을 대표하며 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총단장이 유고시에는 부단장이 이를 대리하며 부단장은 실무위원중 연장자가 당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본단은 총단회의와 실무위원회를 갖는다.

제13조(총단회) 총단회는 연 1회이상 총단장이 소집하고 총단장은 의장이 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하여
2. 임원 선정에 관하여
3. 예산결산에 관하여
4. 세칙의 제정 및 단의 운영에 관하여
5. 친목에 관하여
6. 기타사항

제14조(실무위원회) 본단은 운영의 실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총단장과 기타 10인이내의 단원 대표로써 구성하며 총단장이 그 의장이 된다.

실무위원회의에 조직. 운영. 재정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는 각 분단의 단장과 중앙을 포함한 연석회의를 가질 수 있다.

제15조(개회 및 의결) 본단의 제반회의는 재적 과반수로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기타는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16조(재정) 본단의 재정은 입단금과 기타 회사금으로 한다.

입단금은 총단회에서 결정하며 실무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제17조(공포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남정녀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무출신을 서원하고 미혼으로서 일생을 공헌하고자 하는 정남 정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정남정녀의 자격은 예비지원 자격과 정식서원 자격의 법을 두며 권고와 체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진 발원한 자라야 한다.

제3조(예비지원) 정남정녀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총무부에 지원서를 제출한다.

예비지원자는 정식서원에 이르기까지 심사위원회의 문심에 의하여 지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정식서원) 지원서를 제출하고 예비기에 있는 자로서 남자 35세, 여자 30세, 교직 3년 이상자는 정식서원 대상자가 되며 정남정녀 심사위원회의 사정을 받는다. 단, 기혼남녀라도 배우자를 잃고 30세내에 전무출신을 서원하여 일생에 독신생활을 하는 자는 교직 7년이상이 되면 서원대상자로 인증하여 심사를 거쳐 정남정녀의 예에 준하여 대우한다.

제5조(등록 및 선서) 심사위원회에서 인증된 자는 정남정녀의 명부에 등록하고 법에의하여 선서의 식을 갖는다.

제6조(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정화단에서 제청하여 수위단회의 인준을 얻는다.

제7조(친목단체) 정남정녀의 친목을 위하여 정화단을 둔다.

정화단 규정은 별로 정한다.

제8조(조신 및 조행) 정남정녀는 남녀교제 규정을 철저히 실행하여 지조가 결백하여야하며 신의가 일관해야 한다.

만일 과오로써 본 목적을 오손한 자는 예비, 정식을 막론하고 그에 상응한 벌칙을 감수해야 한다.

제9조(예우) 정남정녀로서 65세가 되면 축하식을 거행하여 순결한 위의를 표하며 병역치료와 노후봉양에 우선을 주고 역사에도 그 사실을 기재한다.

제10조(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별로 정한다.

제11조(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자정화단단규〉

제1조(명칭) 본단은 원불교 남자정화단(이하본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단은 단원 상호간의 서원을 확고히 하고 정의를 두터히 하며 이 공부와 이 사업을 권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조) 본단원은 이생을 대서원기 대훈련기 대적공기로 삼고 뜻은 금강같이 하고 마음은 연화같이 하는 것을 신조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중앙총부내에 둔다

제5조(자격) 단원은 본교 전무출신중 30세이상의 정남 지원자와 법에 의한 숙남지원자로서 조직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위사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6조(종별) 단원은 정단원과 예비단원으로 구분한다. 정단원은 40세이상이라야 그 자격을 얻는다.

제7조(가입) 본단에 가입시는 단원 3인이상의 추천을 얻어 지원서를 제출하고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임원) 본단은 종법사를 총재로 추대하고 지도위원회 약간인과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장	1인	부단장	2인
총 무	1인	간 사	1인

단, 단원의 증가에 따라 분단장을 둘 수 있다.

제9조(지도위원) 지도위원은 수위단원과 교단 원로중에서 추대한다.

제10조(업무) 임원의 사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1) 단장은 본단을 대표하며 단무를 총리한다.

2)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단장의 명을 받아 회원, 회의, 행사 및 재정 회계와 기타 사무를 관장한다.

4) 간사는 총무를 보좌하며 사무일체를 담당한다.

제11조(선거) 본단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로 피선될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집행위원회) 본단은 단무를 집행하기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는 단장단과 각분단장 및 단장이 필요로 하는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제14조(집행위원회의장) 집행위원회의 장은 단장이되며 단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을 결의 집행한다.

제15조(총회) 본단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정기총회는 매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고 임시총회는 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단장이 수시 소집한다.

제16조(회의및 의결) 총회는 제적단원 3분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정 2) 회칙개정 3) 사업계획 4) 예산결산 심의 5) 단원의 포상 및 징계 6) 기타중요 사항

제17조(사업) 본단은 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일을 할 수 있다.

1) 수련 및 친목행사 2) 봉공사업 3) 기타

제18조(재정) 본단의 재정은 단원의 회비와 회사금으로써 충당하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공포 및 세칙) 단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5. 靑 耘 會

가. 창 립

1) 청운회의 내역과 활동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심장부인 서울에 원불교 서울, 종로, 원남의 3개교당 청년들은 원기51년(1966) 10월 처음으로 서울지구 청년연합회를 결성하고 「교화체에서 운동체로」라는 원청의 운동방향에 발맞추어 진취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합동법회, 사상강연회, 봉사활동, 연합성가대 발족 등으로 하나되기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갔다.

그러나 결혼과 직장생활에 점차로 제약을 받게 된 성장 청년회원들은 자연히 청년회 활동에서 이탈되어졌고 일반법회에도 참여되지 않아 한동안 공백 상태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공통의 문제점을 인식한 직장 청년들은 청년회에서 맺어진 법연을 중심으로 옛 인연을 중심으로 다시 결속하여 자발적인 참여속에 20여명의 회원이 모여 원기55년(1970) 7월에 청우회(靑友會)라는 이름을 내걸고 야간법회를 가지면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렇게 결성된 청우회를 중심으로 원청운동의 무대를 서울에 형성하도록 하고 좀더 원숙한 방법으로 원청의 의지와 힘을 국가 사회에 펼치고자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해 갔다. 그리하여 원기60년(1975) 2월 원청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일련의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중앙사무국과의 이해의 불충분으로 중도에서 포기하고 약간의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돈독한 신심에 바탕한 혈심어린 의지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자각된 힘에 의하여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결집하게 되었다.

이들 원청이 길러낸 소수 엘리트 집단은 자신의 성장훈련과 교단에 대한 기여와 사회에 대한 봉사에 특별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충만되어 있었다.

이들 33명은 청운파라는 이름으로 원기62년(1977) 4월 23일 서울 반도 유스호텔에서 새로운 회칙과 행동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창립총회를 가졌다.(회장 : 金經圓)

창립발기의 뜻은 첫째로 청년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원청회원이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원불교와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원청 이후의 공백을 알차게 메워 신앙과 봉공의 길을 청운회를 통하여 더욱 숭화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둘째로 원불교에서도 YMCA나 로타리클럽 같은 외곽단체로서 교단과 사회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在家단체의 필요성이 있는데 청운회가 이를 수행해 보자는 것이다.

靑耘會란 명칭은 이운권교무가 지어주신 것으로 푸를청(靑)자는 진리의 바탕(體)자리로써 희망, 이상, 창조, 평화를 두루 지칭하고, 김맬 운(耘)자는 진리의 작용(用)자리로써 취사, 활용, 개척, 진취, 원만행을 가리킨다.

청운회는 일원대도의 성실한 수행자로서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일원대도를 선양 구현하면서 6가지 목적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교단과 사회에 봉사를 목적으로 하였다.

6대 목적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일원대도 연마
②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협력
③ 공도자 숭배 사업
④ 청소년 지도 후원사업
⑤ 지도역량 계발
⑥ 지역사회 봉사

또 목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6개항에 이르는 행동윤리 강령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다.

① 신앙과 수행으로 자아완성에 노력한다.
② 동지를 아끼고 신의를 돈독히 한다.
③ 봉공정신을 함양하고 공도자를 숭상한다.
④ 청소년의 지도와 후원에 솔선한다.
⑤ 지도자의 자세로 지행일치에 노력한다.

⑥ 청운회원의 긍지와 신념으로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와같이 목적사업과 행동윤리 강령을 정하고 성격과 운영방법을 교단의 보조와 조직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조직과 활동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자금확보와 회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자체연구와 아울러 교화와 문화사업에 노력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인 조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회원은 만 30세 이상의 건전한 교양을 갖춘 직장인으로 규정했다. 청운회는 매월 정례 월례회를 갖고 신앙과 친목을 다지면서 또한 회원의 배우자를 준회원으로 하여 모든 모임과 행사와 사업을 회원 부부가 함께 참여토록 했다. 옛 동지 찾기를 계속하고 매년 서울교구 청년회 및 학생회의 행사를 지원하고 교단내의 어려운 교당과 기관을 보조하며 양로원, 고아원 방문과 교단적인 사회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알찬 사회 봉공활동을 전개해 왔다.

2) 청운회 연합회 결성

해를 거듭 할수록 회원가입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 캠프장 설립을 목적으로 기금 모금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며 교단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교단속의 청운회로 모습을 변모해 가는 청운회의 바람직한 성장은 교단적인 큰 관심사가 되었다.

청운회의 활동과 성장속에 청운회 역할의 중요성이 교단내에 인식되어져 원불교 청운회 결성의 움직임이 전 교구 교당으로 확산되어져 중앙청년회의 지원속에 가능한 지역부터 청운회 결성을 시작했다.

원기66년(1981) 1월 17일 이리 청운회를 비롯 동년 2월 17일의 전주 청운회 등 대구, 부산, 광주,대전 등지에서 일원의 법동지들이 이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자치적인 활동을 벌여 왔다.

이와같이 여러 곳에서 지역청운회가 결성되어져 산발적이고 자치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온 청운회는 조직의 확대로 인한 대 사회활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원기66년(1981) 12월 12일에 전주청운회 주관으로 각 지역 청운회 대표들이 전주에서 회동하였고 청운회 연합회 결성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모임에서 지역 청운회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연합회 결성을 합의하고 결성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준비위원회에서 수차의 회합과 노력끝에 새로운 회칙과 행동윤리 강령을 제정하였다.

원기67년(1982) 10월 30일 중앙총부에서 각 지역 청운회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준비위원회가 마련한 회칙과 행동윤리강령을 채택하므로써 역사적인 「원불교 청운회 연합회」를 결성하였다(초대회장 고윤석).

이와함께 기존의 청운회 및 각 지역 청운회는 원불교 청운회 연합회에 소속되고 회칙도 연합회 회칙에 따르도록 했다.

연합회의 임원진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연합회의 동질화 작업에 주력하면서 회가, 회기, 회원패 등을 제작하였다.

청운회 연합회 회칙에서 밝힌 목적·행동윤리강령·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일원대도를 바탕으로 도덕발양운동(Moral Promotion Movement)을 전개하

고, 행동윤리강령을 몸소 실천하여 새사회 건설을 지향했다.

제3조(행동윤리강령) 본회 회원은 다음의 행동윤리강령을 내가 먼저 실천한다.

1. 웃는얼굴 내가먼저
2. 감사생활 내가먼저
3. 자력양성 내가먼저
4. 근검생활 내가먼저
5. 질서생활 내가먼저
6. 봉공생활 내가먼저
7. 자연사랑 내가먼저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일원대도의 선양 및 실천
2.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협력
3. 청소년의 지도훈련 및 경로사상 고취
4. 공도자 숭배
5. 지도역량 개발
6. 교단 및 사회봉사
7. 국제친교활동

나. 지역청운회 및 연합회 활동

1) 지역 청운회 활동

각 지역 청운회는 해당 교구와 밀접한 유대와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교구 교화에 활력과 편익을 도모하며, 일반 사회인 및 사회기관에 대한 가교역할을 담당하면서 교구 청년회와 학생회를 후원하고 있다.

각 지역 청운회의 특성에 따라 활동에도 많은 다양성이 있으나, 매월 정례법회, 사상강연회 및 교양강좌 개최, 자체훈련 및 친목행사, 무료의료진료, 고아원 및 양로원 방문, 교도소방문, 선행자 표창, 매년말 교구내 교역자 초대하여 사은의 밤 개최, 자연보호활동, 향토문화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실정에 맞게 전개하고 있으며, 연합회에서 펼치고 있는 보은동산의 사회복지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모든 행사를 회원부부가 같이 참여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교화에도 신선한 기풍을 진작시키고 있다.

2) 연합회 활동

청운회 연합회는 원기68년(1983)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신도안 三同院에서 제1차 회원합

동훈련을 실시한 이후 원기70년(1985) 10월 26~27일과 원기72년(1987) 4월 11~12일 각각 중앙훈련원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일체감 형성과 회원의 사명을 고취하였다.

또한 원기68년(1983) 10월 8~9일에 걸쳐 서울청운회 주관으로 제1차 도덕발양대회를 600여명의 회원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산 종법사를 모시고 성대하게 개최되었으며(총 참석인원 1,300여명), 뒤를 이어 원기69년(1984) 10월 21일에는 전주청운회 주관으로 전주덕진 종합회관에서 제2차 도덕발양대회를 개최하였고, 원기71년(1986) 4월 20일에는 마산청운회 주관으로 경남 학생회관에서 제3차 도덕발양대회를 교단의 원로와 그 지역의 기관장들을 초청하여 각기 성황리에 개최하여 행동윤리강령의 실천과 이의 확산운동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3회에 걸친 연합훈련과 3회에 걸친 도덕발양대회를 통하여 청운회는 교단내에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의 일익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어느정도 자립기반이 조성되자 자체 비판의 소리가 커졌다. 그것은 도덕발양대회를 통하여 말의 성찬을 외치기만 하고 실천과 봉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성과 교단적 차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자선활동) 기능의 주창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때를 맞추어 원기71년(1986) 서울청운회에서는 「보은동산회」, 전주 청운회에서는 「봄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키로 하고 매월 1인당 1,000원의 회비납부 회원 모집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쳐나갔다.

이에 청운회 연합회에서는 이들의 통합을 통한 연합회 차원의 봉공자선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전국단위의 보은동산회를 결성한 것을 원기71(1986)년 11월 8일 청운회 연합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하고 동년 12월 6일 청운회 연합회 이사회에서 회칙을 통과하고 임원을 선정하여 보은동산회를 정식 발족시켰다(회장 : 조정제 청운회 연합회장 당연직). 이로 인하여 서울의 보은동산과 전주의 봄동산은 보은동산회로 통합되었으며, 보은동산회는 1차적으로 이리의 사회복지법인 三同會 소속의 삼정원과 자선원을 지원키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천주교의 「꽃동네」 같은 종합복지센터를 추진키로 하고 우선 회원확보에 주력하였다.

연합회의 임원진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연합회의 동일화 작업에 주력하면서 회가, 회기, 회원패 등을 제작하였다.

다.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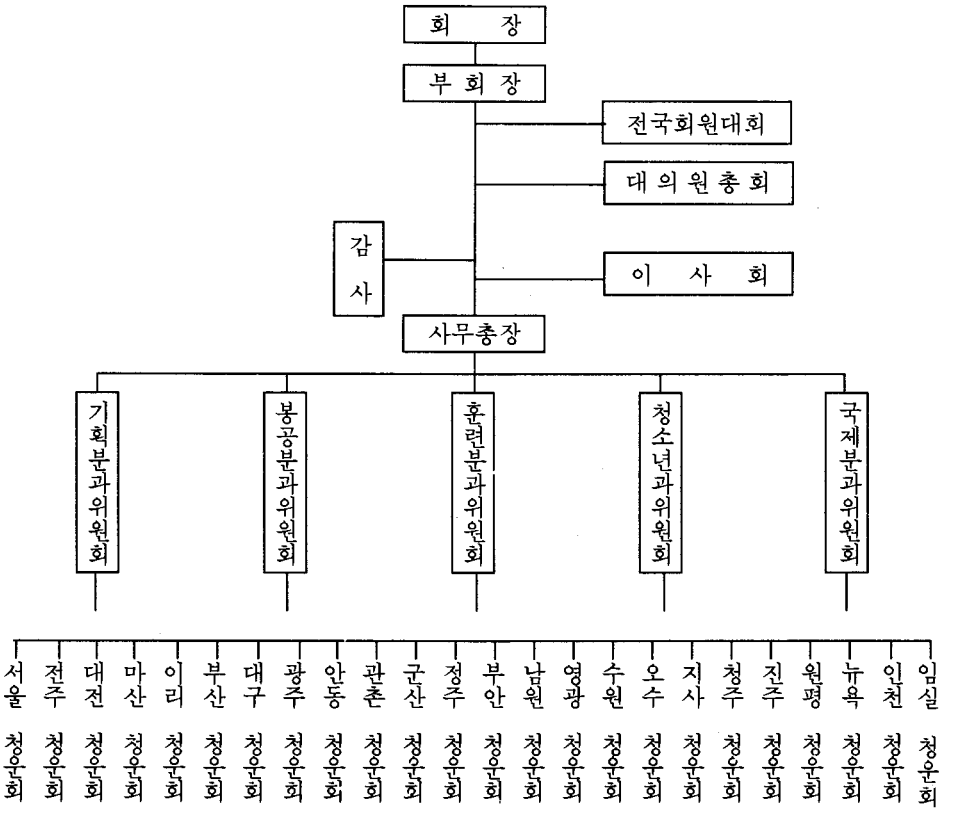

라. 역대임원

대	직 책	법 명	재 임 기 간	소 속	비 고
1	회 장	고 윤 석	67. 10~71. 10	서 울	
	부 회 장	소 수 정	〃	〃	
	〃	이 완 근	〃	전 주	
	〃	명 형 식	〃	이 리	
	〃	강 신 행	〃	대 전	
	〃	이 현 갑	〃	부 산	
	〃	박 충 용	〃	대 구	
	사무총장	조 정 제	〃	서 울	
	이 사	이 병 태	〃	〃	

	이 사	황 의 도	67. 10~71. 10	전 주	
	〃	김 평 수	〃	대 전	원불교 중앙청년회장
	〃	윤 을 중	〃	서 울	
	〃	송 경 은	〃	〃	
	〃	김 도 융	〃	당연직	
	감 사	차 재 덕	〃	전 주	
	〃	이 현 갑	〃	부 산	
	간 사	박 정 원	〃	이 리	
	명예회장	고 윤 석	71. 11~	서 울	전회장
	회 장	조 정 재	〃	〃	전사무총장
	부 회 장	전 오 원	〃	〃	
	〃	황 의 도	〃	전 주	전이사
	〃	강 신 행	〃	대 전	
	〃	이 운 조	〃	부 산	
	〃	정 장 석	〃	마 산	
	〃	김 도 융	〃	이 리	중앙청년회장
	〃	부 척 량	〃	광 주	
	사무총장	원 을 중	〃	서 울	전이사
	이 사	소 수 정	〃	〃	전부회장
	〃	방 보 웅	〃	대 구	
	〃	박 정 주	〃	이 리	전간사
	〃	신 영 길	〃	정 주	
	〃	박 청 수	〃	당연직	원불교중앙청년회장
	간 사	김 선 용	〃	서 울	

〈각 지역별 회장단 명단〉

지 역	회 장	부 회 장	사무국장
서 울	권 오 윤	김선용, 황의수, 안풍옥	윤 한 택
전 주	양 인 승	안승관, 허증훈, 이용구	양 동 욱
이 리	박 종 주	오철수, 김정화	최 대 안
대 구	이 석 은	방도웅, 임원각행	손 승 도
마 산	박 우 훈	정용섭, 김봉석	김 달 성
부 산	이 운 조	박민수, 주익생, 유종우	김 선 일
관 촌	이 기 철	박준섭	엄 규 태
영 광	이 환 식	서용진, 정인환	양 석 호
대 전	오 선 교	정도천, 정기찬, 이철한	안 도 정
오 수	양 원 경	김금두, 김승기	김 욱 태
광 주	부 척 량	김현제, 임중재	정 도 행

정 주	신 영 길	장재영, 임희동	이 건 호
부 안	김 운 하	박재경	임 청 원
남 원	문 봉 진	최효경	정 도 욱
진 주	최 은 수	박우철, 박정익	이 건 직
수 원	박 대 일	유경욱	최 경 철
군 산			
원 평			
안 동			
청 주			
지 사	이 원 봉	최금호, 이국신	신성근(총무)
인 천			
뉴 욕			

마. 중요사업 및 활동

사업 및 활동명	일 시	활 동 내 용
청운회 창립총회	67(1982) 10.30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각 지역 청운회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연합회 창립총회를 갖고 회칙과 행동윤리 강령이 채택 되었다.
청운연합회 1차연합훈련	68(1983) 8.13~15	신도안 삼동원에서 대산종법사님 모시고 회원 82명이 연합훈련 실시
제1차회원대회및 도덕발양대회	68(1983) 10. 8~9	서울청운회 주관으로 회원부부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불교 서울회관 대법당에서 대산 종법사님을 모시고 행동 윤리강령에 대한 실천결의문이 채택 되었다.(총참석인원 1,300명)
제2차도덕발양대회	69(1984) 10.21	전주덕진 종합회관에서 전주 청운회 주관으로 대산 종법사님을 모시고 성대히 거행 되었으며 이 대회에서는 도덕발양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요강이 제시 되었다.
청운회연합회 제2차연합훈련	70(1985) 10.26-27	이리중앙총부 중앙훈련원에서 1박 2일간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고 이 훈련을 통하여 도덕발양운동의 주체인 "나" 자신의 개조에 정진하였으며 이 훈련의 기념 사업으로 벌곡에 청운동산을 가꾸어 청소년 훈련에 일조가 되도록 결의 하였고 이의 1차년도 사업으로 원미 대전의 조각부분 최우수 대상을 받은 작품 '인간의 사슬'을 구입확보 하였다.
제3차도덕발양대회	71(1986) 4.20	마산 청운회 주관으로 제3차 전국 청운회 도덕 발양대회가 경남 학생회관에서 청운회원 400여명과 15개 지역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전 청운회원이 정신세력을 확장하여 참 도덕사회를 건설하자는 다짐을 하였다.

전국청운회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71(1986) 11. 8	27명의 이사 및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리 이화장에서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윤석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조정제 사무총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 하였다. 또한 무자력자 보호를 위한 대 사회 봉공활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동산회 설립을 결의하였다.
청운회연합회이사회	71(1986) 12. 6	이사회를 통하여 보은 동산회의 회칙안이 심의 채택되고 보은동산회 임원 선출이 있었다. 이어, 삼정원과 자선원을 방문하여 세탁기구입조로 100만원과 연탄 2천장을 각각 전달하였다.
제 3 차 청 운 회 연 합 회 훈 련	72(1987) 4.11－12	중앙훈련원에서 4월 11－12일 양일간에 걸쳐서 제2차 전국 청운회 연합훈련을 갖었다. "하나되어 크게 보은하자"라는 주제아래 88명의 회원이 보은 동산회의 적극적 참여와 활동을 다짐하고 삼정원 자선원 등을 방문하여 기금 100만원과 연탄 2천장을 각각 전달하였다.
청운회연합회이사회	72(1987) 7.18－19	연합회 이사회가 대전 경하장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바. 특별사업(보은동산)

1) 보은동산회 설립취지

길가에 웅크린채 신음하는 형제자매를 보고도 우리는 외면한 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동냥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이들은 구원의 손길을 내밀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은 정신질환자, 무의탁노인, 음성나환자, 심신 장애자, 부랑인 등 말로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습니다.

이 버려진 형제자매들에게 안식의 보금 자리를 마련하고자 보은동산을 가꾸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하는 보은동산의 일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감상적인 일도 아니며 한두번에 그칠 동정심도 아닙니다. 따뜻한 보은의 마음을 한데 모아 이들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는 터전을 마련코자 함이 우리들의 간절한 뜻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산하에는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이를 수용한 보육원, 병들어 의지할 곳 없이 헤매던 행려병자들을 수용한 자선원,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친지들의 곁을 떠나 방황하던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삼정원,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모신 양로원 등의 기관을 두고 있으며 정신박약아들을 보살피며 교육시킬 정박아 수용센터와 음성나환자를 수용, 자활의 터전을 닦아줄 음성나환자촌의 건립도 추진하여 물질이 풍요한 세상에서 정신의 쇠약함과 질환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보살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보은하는 마음과 마음에 불이 켜지고 작은 손과 손이 하나로 이어질때 보은동산은 우리들 가까이 있을 것이며, 버림받고 멸시받는 형제자매들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2) 보은동산회 사업계획

①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산하 삼정원 지원
② 보은동산의 부지(현장) 확보
③ 사회복지법인 보은동산회 설립
④ 정신질환장애자 복지시설 건립운영
⑤ 종합복지센터 건립운영

3)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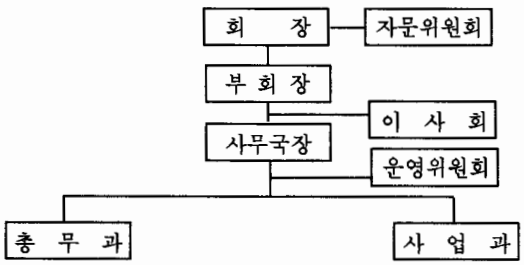

4) 임 원

회 장:조정제
부 회 장:권오윤(서울), 강신행(대전), 황의도(전주), 이운조(부산), 정장식(마산)
감 사:김팔곤(이리), 부척량(광주)
이 사:오수정(서울), 김평수(서울), 방보웅(대구), 박종주(이리), 윤을중(서울), 신영길(정주), 정청문(전주), 송정택(군산), 박청수(원청회장)
사무국장:김성원교무(서울사무소)
간 사:서광덕교무(서울사무소)

5) 현 황

보은동산회는 원불교 서울회관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원기72년(1987) 9월 현재 3,000명의 회원이 확보되었고, 컴퓨터를 구입하여 회원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 회원은 대부분이 비교도

들로써 이 사업에 기꺼히 동참하고 있다.

이제 청운회는 정신운동으로 도덕발양운동을 전개하고, 사회봉공사업으로 보은동산을 통한 자선복지사업을 펼쳐 나가는 수레의 두 바퀴를 굴리게 되었다.

6) 중요사업 및 활동

사업 및 활동명	일 시	활 동 내 용
보은동산회결성결의	71(1986) 4.26	서울 청운회 정기총회에서 오수정 회원의 발의로 꽃동네와 같은 원불교 자선사업으로 보은동산회를 결성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오수정 위원:김진식, 김성원 등의 선임 회장단과 함께 진행
실 무 작 업 추 진	71(1986) 8.26－27	장 소:우이동 아카데미 하우스(1박2일) 참석인:조정제 윤을중 김평수 오수정 김진식 김성원교무 내 용:보은동산회의 실무작업 추진
발 족 식	71(1986) 9.20	서울청운회 월례회에서 정식으로 발족식을 갖고 회원 모집에 착수
전국적으로확산결의	71(1986) 11. 8	전국 청운회 정기총회에서 조정제 회장이 연합회 회장으로 피선되고 보은동산회를 전국적으로 확산 하기로 결의
자 선 사 업	71(1986) 12.6－7	* 보은동산회의 첫 사업 * 전국 청운회 이사회가 중앙총부에서 열려 전주 봄동산과 서울 보은동산을 합하기로 하고 자선원에 연탄2,000장과 삼정원에 1,000,000원을 전달하고 보은동산회 임원을 결정
회 보 발 간	72(1987) 2.10	회원 1,000명을 돌파하면서 보은동산회의 제1호 기념회보를 발행했다.
〃	72(1987) 4.10	회원 2,000명을 돌파하면서 보은동산회의 제2호 회보를 발행했다.
자 선 사 업	72(1987) 4.11－12	제2차 전국 청운회 연합회 훈련을 중앙훈련원에서 갖었다. 주제:하나되어 크게 보은하자. 인원:88명 내용:보은동산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다짐 기타:삼정원과 자선원을 방문 기금 100만원과 연탄 2,000장을 전달
이 사 회 개 최	72(1987) 7.18－19	전국 보은동산회 이사회 개최 장소:대전 경하장 내용:보은동산의 실체를 하루속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보은동산의 부지(서울 북방과 중앙총부 인근등 몇곳을 물색) ·보은동산의 부지 확보와 함께 장애자와 음성나환자들을 함께 보살피는 일을 진행하기로 결의 ·보은동산 사업에 헌신할 교역자를 파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결의

회 보 발 간	72(1987) 9.12	회원 3,000명을 돌파하면서 보은동산회의 제3호 기념회보를 발행했다.
컴 퓨 터 도 입	72(1987) 12. 1	서울사무소와 보은동산회가 공동으로 컴퓨터도입(싯가7,000,000원)

〈회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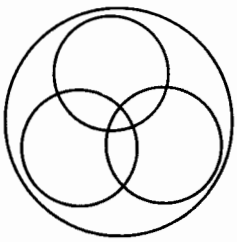

◎ 도안자－조정제(당시 청운회 연합회 사무총장)

◎ 청운회의 상징도안풀이 ◎

○ 큰 圓은 영원하고 진실하고 완벽한 우주의 진리를 상징한다.

○ 세개의 작은 원은

1. 삼라만상이 三世의 인연관계로 얽혀있음을 나타내고,
2. 三學공부를 온전히 하여 一心으로 연구하고 決行하는 三大力을 키우며,
3. 三色(황인, 백인, 흑인) 인종의 화목과 互惠를 증진시키자는 뜻이다.

사. 청운회 회가

1. 새하늘 밝혀주는 일원의 광명
   그 서광 먼저받은 우리 청운회
   우리는 도덕발양 운동의 기수
   봉공의 길 수행의 길 앞장서 가자

2. 선후진 일원가족 한몸이 되고
   세계의 이웃들이 한집안되게
   청운회 우리들이 힘을 다해서
   이상의 낙원세계 이룩해 가자

〈청운회연합회가〉

제정경위:원불교 청운회가는 1968년(1983) 10월 9일 서울 청운회 주관으로 열린 「도덕 발양 대회」(1차 회원대회)때 정식 채택 되었다. 도덕 발양 대회 준비 기간동안 각 지역 청운회에 청운회 가사 응모 기간중에서 서울 청운회에서 작사한 청운회가가 채택 되었고, 작곡은 원광대 송관은교무에 의해 작곡되었다.

〈원불교청운회연합회칙〉

제1장 총 칙

第1條(名稱) 本會는 圓佛敎 靑耘會 聯合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부른다.

第2條(目的) 本會는 一圓大道를 바탕으로 道德發揚運動(Moral Promotion Movement)을 展開하고, 行動倫理綱領을 몸소 實踐하여 새社會 建設을 指向한다.

第3條(行動倫理綱領) 本會 會員은 다음의 行動倫理綱領을 내가 먼저 實踐한다.

1. 웃는얼굴 내가먼저
2. 感謝生活 내가먼저
3. 自力養成 내가먼저
4. 勤儉生活 내가먼저
5. 秩序生活 내가먼저
6. 奉公生活 내가먼저
7. 自然사랑 내가먼저

第4條(事業) 本會는 다음의 事業을 推進한다.

1. 一圓大道의 宣揚 및 實踐
2. 會員 相互間의 親睦과 協力
3. 靑少年의 指導後援 및 敬老思想 고취
4. 公道者 崇拜
5. 指導力量 開發
6. 敎團 및 社會奉仕
7. 國際親交 活動

第5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圓佛敎中央總部에 두고 會長 駐在地域에 連結事務所를 둘 수 있다.

第6條(地域靑耘會 構成要件) ① 地域靑耘會는 會員 20名 以上으로 構成한다. ② 地域靑耘會는 會長, 直前會長, 副會長若干名, 監査 2名 事務局長 1名, 理事若干名을 두고, 地域의 必要에 따라 幹事를 둘 수 있다. ③ 地域靑耘會는 聯合會의 分科委員會에 準하는 分科委員會를 두어야 한다.

④ 行動倫理綱領, 會旗, 會歌, 會員 등은 聯合會가 定한 바에 따라 統一하여야 한다.

제2章 會 員

第7條(會員) 本會의 會員은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는 滿 30歲 以上의 健全한 敎養人으로써 各 地域靑耘會에 加入한 會員으로 한다.

第8條(會員의 權利) 會員은 本會의 目的事業에 同參할 權利를 갖는다.

第9條(會員의 義務) ① 會員은 本會의 目的을 具現하기 위하여 스스로 品位를 지키고 本會의 各種事業의 行事에 積極的으로 參與하여야 한다.

② 會員은 一個以上의 分科委員會를 參與하여야 한다.

제3章 會 議

第10條(大會) ①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具現하고 이를 總力化하기 위하여 理事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全體會員이 共同參與하는 大會를 갖는다. ②大會의 目的, 日字, 場所, 進行 등의 具體的인 事項은 理事會의 決議에 따른다. ③會長은 大會를 召集하고 大會長이 된다.

第11條(代議員總會) ① 本會는 定期代議員總會와 臨時代議員總會를 둔다.

② 代議員總會는 各 地域靑耘會 代議員 3名으로 構成한다.

③ 代議員總會는 在籍代議員 過半數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代議員 過半數의 贊同으로 議決하며, 可否同數일때는 議長이 決定한다.

第12條(定期代議員總會) ① 定期代議員總會는 每年 10月에 開催한다. ② 定期代議員總會에서는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

1) 會則制定 및 改正
2) 任員의 選任 및 解任
3) 事業計劃審議
4) 豫算 및 決算審議
5) 其他 會長이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13條(臨時代議員總會) 臨時代議員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代議員 20名 以上이 會議召集을 要求할 때 召集한다.

第14條(召集通告) 會長은 大會와 定期代議員總會 및 臨時代議員總會의 召集을 開會 15日前에 召集目的과 議案을 明示하여 地域靑耘會 會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4章 任　　員

第15條(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名	2. 副 會 長	若干名
3. 事務總長	1名	4. 理　　事	若干名
5. 監　　事	2名	6. 幹　　事	1名

第16條(會長)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모든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17條(副會長)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는 年長副會長이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18條(事務總長) 事務總長은 本會의 모든 事務 및 財政을 管理한다.

第19條(理事) 理事는 目的事業을 分離 管掌하고 理事會에 出席하여 議決에 參與하며 各 分科委員會를 分擔 運營한다.

第20條(監事) 監事는 本會의 一切事務를 隨時로 監査하고 定期代議員總會에 監査報告를 한다.

第21條(幹事) 幹事는 事務總長을 補佐한다.

第22條(任員의 選任) ①會長, 副會長, 監事는 定期代議員總會에서 選出하고, 事務總長과 理事는 會長, 副會長 合意로 會長이 任命한다. ②幹事는 事務總長의 추천으로 會長이 任命한다.

第23條(任員의 任期) ①모든 任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하고 一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任員의 任期中 缺員이 생겼을 경우에는 補選하고, 補選에 의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

다.

第24條(顧問 및 指導委員) ① 本會는 若干名의 顧問 및 指導委員을 둔다.

② 顧問 및 指導委員은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會長이 추대한다.

③ 顧問 및 指導委員은 本會의 指導 및 자문에 응한다.

第5章 機　　關

第25條(理事會) ①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事務總長, 理事로 構成한다.

② 理事會는 每年 4月과 10月에 定期로 召集하고, 臨時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와 在籍理事 3分의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③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處理한다.

1) 會則改正案 發議
2) 豫算案 및 決算案 作成
3) 事業計劃樹立
4) 代議員總會에서 議決된 豫算 및 事業計劃의 執行
5) 大會召集 및 運營에 關한 事項
6) 本會運營 및 分科委員會 運營에 關한 事項
7) 顧問 및 指導委員 推戴에 關한 事項
8) 褒賞에 關한 事項
9) 其他 代議員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第26條(分科委員會) ① 本會의 目的事業을 推進 達城하기 위하여 아래의 分科委員會를 둔다.

1) 企劃分科委員會
2) 奉公分科委員會
3) 訓練分科委員會
4) 靑少年分科委員會
5) 國際分科委員會

② 分科委員會는 委員長 1名과 所屬分科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分科委員長은 責任擔當理事가 自動的으로 任命한다.

第27條(特別委員會) ① 會長은 特別한 事業을 推進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特別委員會의 存立期限은 理事會의 決定에 따른다.

第28條(事務局) ① 本會의 事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② 事務局에는 事務總長, 幹事 및 職員을 둔다.

第6章 財　　政

第29條(財政) ① 本會의 財政은 會員의 會費와 其他 喜捨金으로 한다. ② 會費는 理事會에서 決定한다.

第30條(受益的事業) 本會는 本會의 財政을 充當하기 위하여 收益性있는 事業을 할 수 있다.

第31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0月 1日부터 翌年 9月 30日까지로 한다.

第7章 褒　　賞

第32條(褒賞) 本會의 目的 達城과 社會에 貢獻한 功績이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褒賞한다.

附 則

第1條(會則改正) 本會의 會則改正은 理事會의 發議에 따라 定期代議員總會에서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한다.

第2條(慣例) 本 會則의 解決上 疑問이 있을 때에는 理事會의 決定에 따르고 本 會則에 明記되지 아니한 事項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3條(施行) 本 會則은 通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보은동산회 회칙〉

第1章 總則

第1條(名稱) 本會는 報恩동산會라 稱한다.(이하 本會라 함)

第2條(目的) 本會는 慈悲와 博愛의 人道主義精神에 따라 社會福祉事業을 遂行함으로써 福祉社會 建設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業) 本會는 본회의 목적을 效果的으로 達城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事業을 수행한다.

1. 無依託 老人遂養사업
2. 浮浪人 善導사업
3. 精神遂養사업
4. 나환자 遂養사업
5. 社會福祉法人 三同會 後援사업
6. 기타 위 各號의 事業修行에 따른 附帶사업

第4條(會員) 1. 本會의 會員은 目的과 事業에 贊同하는 사람으로 國籍, 年金, 性別, 宗教를 超越한다.

2. 本會의 會員은 본회의 目的事業 遂行을 위하여 月1,000원이상의 會費를 喜捨, 納付한다.

第5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3 원불교 서울회관내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出張所를 둘 수 있다.

第6條(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1名
2. 副會長 5名
3. 事務局長 1名
4. 理事 10名
5. 監事 2名
6. 幹事 약간명

第7條(會長) 會長은 본회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括하며 모든 會議를 소집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8條(副會長)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회장 有故時는 年長副會長이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9條(事務局長) 1. 事務局長은 본회의 모든 事務 및 財政을 管理하고 事務局을 監理한다.

2. 事務局長은 幹事를 指揮한다.

第10條(理事)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議決에 參與한다.

第11條(監事) 1. 監事는 본회의 一切事務를 監査하고 定期理事會에 監査 報告한다.

2. 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第12條(幹事) 幹事는 事務總長의 命을 받아 事務局長을 補佐한다.

第13條(任員의 先任) 1. 會長, 副會長, 監事는 원불교 청운회聯合會의 會長, 副會長, 監事가 각각 兼任한다.

2. 事務局長과 理事는 會長, 副會長 合意로 會長이 임명한다.

3. 幹事는 事務總長의 추천으로 會長이 任命한다.

第14條(任員의 임기) 1. 모든 任員의 임기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2. 任員의 任期中 缺員이 생겼을 경우에는 補選하고, 補選에 의한 任員의 임기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3章 機　　關

第15條(理事會) 1.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事務局長, 理事로 구성한다.

2. 理事會는 每年 11月中에 定期會議를 가지며 臨時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와 在籍理事 3분의 1 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3.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處理한다.

1) 會則改正
2) 豫算 및 決算審議
3) 事業計劃確定
4) 運營委員會 議決事項
5) 諮問委員 추대사항
6) 運營委員 任免사항
7) 會의 運營細則제정사항
8) 其他 重要決定사항

第16條(自問委員會) 1. 本會는 會長을 諮問하기 위하여 諮問委員會를 둔다.

2. 諮問委員會는 20名이내의 諮問委員으로 구성한다.

3. 諮問委員은 理事會에서 추대한다.

4. 諮問委員會는 會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 이를 소집한다.

第17條(運營委員會) 1. 運營委員會는 본회의 重要 運營사항에 대하여 會長으로부터 報告를 받으며, 會의 運營全般에 관하여 理事會에 建議할 수 있다.

2. 運營委員會는 每年 1回이상의 定期會議를 召集하고 會長이 議長이 된다.

3. 運營委員會는 100名이내의 運營委員으로 구성한다.

4. 運營委員은 理事會의 認准을 받아 會長이 任命한다.

第18條(事務局) 1. 本會의 事務를 집행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2. 事務局에는 事務局長, 幹事 및 職員을 둔다.

3. 幹事 및 職員의 人員과 職務 기타 事務局組織, 運營에 관한 事項은 理事會의 決定에 따른다.

第4章 財　　政

第19條(財政) 本會의 財政은 다음의 收入金으로 한다.

1. 會員의 會費
2. 各種 寄附金品
3. 기타 收入金

第20條(剩餘金) 每 會計年度 決算 剩餘金에 대하여는 이를 翌年度에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第21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5章 褒　賞

第22條(褒賞) 本會의 目的達城에 貢獻한 功績이 현저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褒賞한다.

第6章 解　散

第23條(解散) 1. 본회는 本會의 目的과 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法人으로 轉換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理事會에서 在籍理事 3분의 2이상 出席과 出席理事 3분의 2이상의 贊成으로 發展的 解散을 할 수 있다.

2. 본회의 解散은 모든 會員에게 卽時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法人設立에 의한 解散時 본회의 모든 財産 및 財政은 新設法人에 歸屬시킨다.

第7章 附　則

第24條(會則改定) 本 會則의 改正은 會長, 在籍理事 5명이상 또는 運營委員會의 開議에 따라 定期理事會에서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3분의2 이상의 贊成으로 한다.

第25條(運營稅則) 본회의 財産管理 및 會의 運營을 위하여 理事會는 필요한 細則을 제정할 수 있다.

第26條(慣例) 本會則의 해석상 疑問이 있을 때에는 理事會의 決定에 따르고 本 會則에 明記되지 아니한 사항은 一般 慣例에 따른다.

第27條(施行) 1. 本會則의 施行은 1986年度 원불교청운회聯合會 理事會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本會 發足前에 本會目的과 相應하는 事業을 展開한 원불교청운회 聯合會 所屬의 各 地域團體는 그 事業 및 財政을 本會에 歸屬시킨다.

6. 圓佛教教授協議會

가. 창　립

원불교 교수협의회는 원기62년(1977) 8월 18일 원불교청년회 주최로 전국 각 대학 원불교 대학생회 지도교수 연석회의를 갖고 그 다음날인 19일 大山宗法師를 예방, 경과를 보고한 후에 大山宗法師의 뜻을 받들어 창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원기62년(1977)12월 5일 원광대학교에 재직하는 전무출신 교수모임에서 원불교 교수협의회 창립을 발기하게 된 경과를 검토하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위원장에 전팔근교무, 총무에 김도용·송관은교무가 각각 선임되었다.

원기62년(1977) 12월 8일 준비위원회 주최로 원광대학교에 재직하는 교도교수 모임을 소집하여 준비위원회가 기초한 회칙을 검토하였으며 창립총회 개최에 따르는 제반문제를 협의하였다.

원기62년(1977) 12월 26~27일 준비위원회 주최로 원불교 교수협의회 창립총회가 중앙훈련원에서 개최되었다. 창립총회시 참석교수는 36명(등록45명)이었으며, 5장 20조로된 회칙을 심의 채택하였고 목적사업으로는 ① 원불교 문화창달 활동 ② 원불교 교수수련 ③ 원불교 대학생회 지도육성 등을 채택하였다.

창립당시 회원수는 46명(남37명, 여9명)이었으며 초대회장으로는 박광전교무가 선임되었다. 그러나 일신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장직을 수락할 수 없다는 뜻이 전달되어 원기62년(1977) 12월 31일 긴급이사회를 소집 부회장(전팔근교무)을 회장서리로 선임하기로 하고 부회장은 차기총회시까지 유보하기로 하였다.

나. 조직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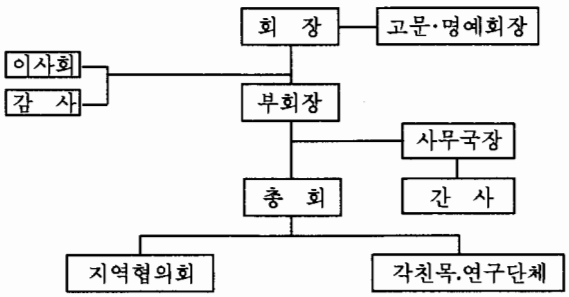

원기72년(1987) 12월 31일 현재 회원수는 180명(남164, 여16)이며 연도별회원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회원수〉

연 도	회 원 수	연 도	회 원 수
62	46	68	140
63	62	69	160
64	85	70	172
65	95	71	176
66	105	72	180
67	120		

다. 역대임원

대	직 책	법명(호적명)	성별	소 속	재 임 기 간	비 고
1~2	회 장	전팔근(팔근)	女	원 광 대	62. 12. 27~66. 2. 14	초대회장 박광전 미수락
	부 회 장	고문국(윤석)	男	서 울 대	〃	
	이 사	김승동	〃	부 산 대	〃	
	〃	양상현	男	전 북 대	〃	
	〃	임정택	〃	전 남 대	〃	
	〃	서영배	〃	경 상 대	〃	
	〃	주정선(정일)	女	숙명여대	〃	63.7.24부회장으로
	〃	오선교(회필)	男	충 남 대	〃	
	〃	한정원(기두)	〃	원 광 대	〃	
	〃	한정석(종만)	〃	〃	〃	
	〃	김재백	〃	〃	〃	
	〃	김도융(팔곤)	〃	〃	〃	
	감 사	유기수	〃	〃	〃	
	〃	임병대	〃	조선대	〃	
	사 무 장	송관은(은)	女	원 광 대	〃	
	간 사	박정원(종주)	男	원 광 대	〃	
	자문위원	교 화 부 장			〃	
	〃	문 화 부 장			〃	
	〃	청 년 회 장			〃	
3	회 장	김정용(삼룡)	男	원 광 대	66. 2. 15~66. 12. 22	
	부 회 장	고문국(윤석)	〃	서 울 대	〃	
	〃	오선교(회필)	〃	충 남 대	〃	
	이 사	김종철	〃	서 울 대	〃	
	〃	정병휴	〃	〃	〃	
	〃	주정선(정일)	女	숙명여대	〃	
	〃	김철용	男	건 국 대	〃	
	〃	유기현(병덕)	〃	원 광 대	〃	
	이 사	전팔근(팔근)	女	원 광 대	〃	
	이 사	임병재	男	조 선 대	〃	
	〃	임정택	〃	전 남 대	〃	
	〃	성종림	女	원 광 대	〃	
	〃	양상현	男	전 북 대	〃	
	〃	김승동	〃	부 산 대	〃	

	감 사	김도응(팔곤)	男	원 광 대	66. 2.15~66.12.22	
	〃	임정자	女	〃	〃	
	사 무 장	김성철(홍철)	男	〃	〃	
	고 문	교 정 원 장	男		66.12.23~69.12.20	
	〃	감 찰 원 장	〃		〃	
4	고 문	전팔근(팔근)	女	원 광 대	〃	전회장
	회 장	김정용(삼룡)	男	〃	〃	유 임
	부 회 장	고문국(윤석)	〃	서 울 대	〃	〃
	〃	오선교(회필)	〃	충 남 대	〃	〃
	이 사	정병휴	〃	서 울 대	〃	〃
	〃	김철용	〃	건 국 대	〃	〃
	〃	김종철	男	서 울 대	〃	
	〃	임정택	〃	전 남 대	〃	
	〃	임병재	〃	조 선 대	〃	
	〃	김승동	〃	부 산 대	〃	
	〃	김차균	〃	충 남 대	〃	
	〃	이용현	〃	경 북 대	〃	
	〃	송천은(천은)	〃	원 광 대	〃	
	〃	김재백	〃	〃	〃	
	〃	이성택	〃	〃	〃	
	감 사	유기현(병덕)	〃	〃	〃	
	〃	성종림	〃	〃	〃	
	사 무 장	김성철(홍철)	〃	〃	〃	
	간 사	김성택(영옥)	女	〃	〃	
5	총 재	종 법 사			69.12.21~72. 2. 7	
	고 문	교 정 원 장			〃	
	〃	감 찰 원 장			〃	
	〃	전팔근(팔근)	女	원 광 대	〃	
	〃	김정용(삼용)	男	원 광 대	〃	전회장
	자문위원	교 화 부 장			〃	
	〃	문 화 부 장			〃	
	〃	청 년 회 장			〃	
	회 장	유기현(병덕)	男	원 광 대	69.12.21~72. 2. 7	
5	부 회 장	고문석(윤석)	男	서 울 대	69.12.21~72. 2. 7	
	〃	오선교(회필)	〃	충 남 대	〃	
	이 사	정병휴	〃	서 울 대	〃	
	〃	김철용	〃	건 국 대	〃	

	이 사	김종철	男	서 울 대	69.12.21~72. 2. 7	
	〃	임정택	〃	전 남 대	〃	
	〃	임병대	〃	조 선 대	〃	
	〃	김승동	〃	부 산 대	〃	
	〃	박순달	〃	서 울 대	〃	
	〃	김차균	〃	충 남 대	〃	
	〃	이용현	〃	경 북 대	〃	
	〃	송천은(천은)	〃	원 광 대	〃	
	〃	서영배	〃	경 상 대	〃	
	〃	전경진	〃	원 보 전	〃	
	〃	차재덕	〃	전 북 대	〃	
	감 사	이만상	〃	원 광 대	〃	
	〃	정갑원	〃	〃	〃	
	사 무 장	서경전(경전)	〃	〃	〃	
	간 사	김성택(영두)	〃	〃	〃	
6	고 문	교 정 원 장			72. 2. 8~	전회장
	〃	감 찰 원 장			〃	〃
	〃	전팔근(팔근)	女	원 광 대	〃	〃
	〃	김정용(삼룡)	男	〃	〃	
	〃	유기현(병덕)	〃	〃	〃	
	자문위원	교 화 부 장			〃	
	회 장	고문국(윤석)	男	서 울 대	〃	
	부 회 장	오선교(희필)	〃	충 남 대	〃	
	〃	한정석(종만)	〃	원 광 대	〃	
	이 사	한정석(종만)	〃	원 광 대	〃	
	〃	정병휴	〃	서 울 대	〃	
	〃	김철용	〃	건 국 대	〃	
	〃	김종철	〃	서 울 대	〃	
	〃	임정택	〃	전 남 대	〃	
	〃	임병대	〃	조 선 대	〃	
	〃	김승동	〃	부 산 대	〃	
	〃	박순달	〃	서 울 대	〃	
	〃	김차균	〃	충 남 대	〃	
	〃	송천은(천은)	〃	원 광 대	〃	
	〃	박승기	〃	전 북 대	〃	
	〃	노윤환	〃	진주교대	〃	
	〃	김정관(호병)	〃	원광보건대	〃	
	〃	임정자	女	원 광 대	〃	
	사무국장	김성택(영두)	男	원 광 대	〃	

라. 중요사업 및 활동

사업·활동명	일 시	활 동 내 용
창립총회및훈련	62. 12. 16	36명 참가 장소:중앙훈련원 임원선출과 회칙심의채택 및 목적사업채택
긴급이사회	62. 12. 31	회장에 추대된 박광전교무의 회장수락 사양으로 부회장인 전팔근교무 회장서리로 선임
임원회의	63. 2. 25	협의회보 발행키로 결의
발간	63. 5	협의회보 창간호 5백부 발간
제1차정기총회및훈련	63. 7. 21~24	중앙훈련원에서 40명의 회원이 참가 훈련 제1강:자연과학도가 본 원불교(전북대 양상현교수) 제2강:종교와 예술(원광대 정승섭교수) 제3강:현대생활과 선(원광대 한정원교수) 분과토의:교수협의회 운영방안(1분과) 대종경서품중심의 교리이해(2분과) 대종경교의품중심의 교리이해(3분과) 24일 정기총회:회장추인. 부회장 선출(오회필) 안건토의에 들어가 교수협의회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회원불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다짐하였다. 이어서 교수협의회 주요 목적 사업의 하나인 대학생회 지도 육성에 관한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특히 새롭게 발족하게 되는 대학생 연합회의 지도 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광주지역교수협의회 모임	64. 4. 15	광주지역 교수협의회 모임을 광주교당에서 개최하였으며, 대학생회 지도를 비롯한 지역교화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지역교수협의회 모임	64. 7. 14	서울지역 교수협의회 모임을 원남교당에서 개최하였으며, 지역별 모임을 활성화함으로써 거리 및 시간의 제한으로 중앙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회원들에게 활력을 주고, 특히 서울지역의 모임은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간직한 행정수도의 교화활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주장이 회원들의 토론에서 제기되었다. 또한 대학생회 지도육성을 위한 협의회 회원들의 역할이 더욱 적극화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거듭 강조되었다.
제2차정기총회및훈련	64. 12. 21~22	44명 참가

제3차정기총회및훈련	66. 2. 15~16	중앙훈련원에서 제3차 정기총회가 소집되었으며 38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회칙 제4조에 본회는 필요에 따라 지구분회를 둘 수 있다는 항목을 새로 삽입하였으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 대학생 연합회로부터 대학생회 지도교수단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도 육성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이 건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학생 연합회에서 지도교수단을 추대하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교수협의회가 더욱 적극적인 지도 육성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제4차정기총회및훈련	66. 12. 22~24	중앙훈련원에서 제4차 정기총회 및 회원 수련회가 개최되었으며 75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총회 결의 사항으로 주목되는 것은 교수협의회 회원들은 대학생회 지도를 지도교수에게만 맡길것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해서 지도에 임하고, 대학생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는 대학에 결성될 수 있도록 타대학의 교수들도 적극적으로 연원 지도하자는 것이었다.
제5차정기총회및훈련	67. 12. 22~23	제5차 정기총회 및 회원 수련회가 중앙훈련원에서 개최되었으며 63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23일 정기총회에서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
이 사 회	68. 2. 6	유성 관광호텔에서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며 12명의 이사가 참가하였다. 토의사항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대학생회 지도자료」가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6차정기총회및훈련	68. 12. 22~23	제6차 정기총회 및 회원 수련회가 중앙훈련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원 65명이 참가하였다.
이 사 회	69. 12. 21	유성 경하장에서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며 9명의 이사가 참석하였다. 토의안건으로 주목을 끄는 것은 대학생회 지도교수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었다.
제7차정기총회및훈련	69. 12. 21~22	유성경하장에서 제7차 정기총회 및 회원 수련회가 개최되었으며 85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22일 정기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이 있었다.
제8차정기총회및훈련	71. 2. 2~3	참석회원:40명
제9차정기총회및훈련	72. 2. 6~8	참석회원:54명

7. 醫療人協議會

가. 창 립

의료인협의회는 一圓大道와 三同倫理의 정신에 바탕하여 인류를 병고로부터 구제하며 교단의 보건 위생문제에 관하여 협의하고 그 개선과 추진에 참여 봉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견고히 하고 제생의세의 이념구현을 목적으로 원기64년(1979) 9월 30일 창립되었다.

창립당시 회원수는 17명이었으며 초대회장에는 金仁濟교도가 선임되었다.

나. 조직과 현황

의료인 협의회의 조직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간사 1인과 회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원기72년(1987) 9월 30일 현재 회원수는 48명(남46, 여2)이며 연도별 회원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회원수〉

연도	계	남	여	증감	비 고
64	17	17		17	
65	23	21	2	23	
66	8	8		8	
계	48	46	2		

다. 역대임원

의료인협의회 활동의 주체가 되었던 역대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회 장	김 인 제	男	1925. 1. 24	64. 9~	

라. 중요사업 및 활동

의료인 협의회 6년간의 중요사업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중요사업 및 활동〉

사업·활동명	기 간	목 적
대각개교절기념 무료진료	67. 3. 26~5. 30	개교절 홍보 및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함
〃	68. 4. 16~5. 7	무의촌지역주민
〃	69. 4. 20~5. 20	〃
〃	70. 4. 11~5. 11	〃
〃	71. 4. 7~4. 30	〃
〃	72. 4. 7~5. 2	〃

〈圓佛敎醫療人協議會則〉

第一條(名稱) 本會는 圓佛敎 醫療人 協議會라 稱한다.

第二條(目的) 本會는 一圓大道와 三同倫理의 精神에 바탕하여 人類를 病苦로부터 救濟하며 敎團의 保健衛生 醫療問題에 關하여 協議하고 그 改善과 推進에 參與 奉仕하여 會員相互間의 親睦과 鞏固히 함으로써 濟生醫世의 理念具現에 精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三條(事務所) 本會 事務所는 圓佛敎 敎政院 公益部에 둔다.

第四條(會員) ① 本會는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本敎徒인 醫師·漢醫師·齒科醫師(以下 醫療人이라 稱한다)로써 構成한다.

② 本會會員이 되고자하는 者는 所定의 入會節次를 履行하여 本會總會(定期 또는 臨時를 不問한다)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③ 本會會員이 脫退를 願할 때에는 本會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경우 脫退者가 本會에 對하여 갖는 모든 權利와 利益은 抛棄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五條(任員) 本會에 다음 任員을 둔다.

會 長 1人 副會長 2人 幹 事 1人

第六條(任員選任과 任期) ① 會長·副會長은 定期總會에서 選出하며 그 任期는 三年으로 한다.

② 幹事는 會長이 任免한다.

③ 會長과 副會長에 缺員이 있을 때에는 그 缺員이 생긴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時日에 召集되는 總會에서 補選하고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七條(任員의 任務)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理하고 各種會議의 議長이 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年長順으로 會長의 權限을 代行한다.

③ 幹事는 會長의 命을 받아 所管 事務를 管掌한다.

第八條(會議)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다.

① 定期總會 ② 臨時總會 ③ 任員會

第九條(定期總會) 定期總會는 年1回로하고 會長이 이를 召集하며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① 會則改正의 일
② 任員改選의 일
③ 事業計劃 承認의 일
④ 豫算·決算審議 議決의 일
⑤ 會費策定의 일
⑥ 入會者議決 및 脫退者 承認의 일

第十條(臨時總會)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會員 三分의 一 以上의 書面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十一條(任員會) ① 監事를 除外한 任員 全員으로 任員會를 構成한다. ② 會長은 會務 執行에 있어서 隨時 任員會를 召集하여 協議한다.

第十二條(開會 및 議決定足數) ① 本會 總會는 在籍會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出席總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과 可否同數일 때 決定權을 갖는다.

③ 本 會則의 改正은 前 ①項의 出席과 出席總員의 三分의 二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十三條(事業) ① 本會의 事業計劃은 定期總會의 承認을 얻어 決定한다. ② 事業計劃에 漏落된 事業을 緊急히 施行하여야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總會召集의 時間的 餘裕가 없을 때 限하여 任員會의 議決로써 施行할 수 있다. 다만 次期總會의 追認을 얻어야 한다.

第十四條(事業內容) 本會는 第二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事業을 遂行한다.

① 敎團의 保健事業
② 醫療奉仕事業
③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爲한 行事
④ 其他 總會에서 議決한 事業

第十五條(財政) ① 本會의 財政은 會員이 納付하는 會費·特別 喜捨金·公益部後援金 等으로 充當한다.

② 本會 會計 年度는 圓佛敎 會計年度에 準한다.

第十六條(分會) ① 本會의 目的을 보다 效果的으로 達成하기 爲하여 必要한 때에는 本會 會長의 承認을 얻어 各 敎區別로 分會를 둘 수 있다.

② 分會 會則은 本會則에 準하여 制定하고 本會 會長의 承認을 얻어 施行한다.

第十七條(細則) 本會則 施行上 必要한 事項은 細則으로 定한다.

第十九條(施行) 本 會則은 創立總會에서 議決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8. 중앙교우회

가. 창 립

중앙교우회는 원기40년(1955) 5월 23일 중앙총부 대각전에서 당시 원광대학 교학과 공비생 일동이 전무출신 공비생회를 결성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후 원기42년(1957) 9월 20일 제3회 정기총회에서 정산종법사의 특별유시를 받들고 종래의 원광대학 공비생으로 조직된 전무출신 공비생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됨과 동시에 원불교 전무출신 장학생으로 재 결성 되었으며 그 명칭을 중앙교우회라 하게 되었다. 또한 이때 특별유시는 『선은 서로 권장하고 악은 서로 경계하며 정진은 서로 권장하고 解怠는 서로 경계하라』는 표어가 본회의 근본이념이 되었다.

중앙교우회의 결성동기를 보면 당시는 전체 60여명 밖에 안된 교학과생에 10여명 이상이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나 먼 私家에서도 통학을 하였다. 물론 완전 私費生도 있었으나 會費生도 묵인되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생활을 같이하는 학생과 舍外生이 믿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도 강의실에서 만나는 일 외에는 공식적인 모임과 활동이 거의 없어 친목과 혼연일체의 정신이 다소 결여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교학과생 자체 발의로 친목회를 조직하고 매월 1회 공식모임을 가져 왔었다. 그뒤 같은 여비교역자 훈련기간인 동산선원생과도 친목활동을 같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되었었다. 그때 동산선원도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부에 들어오는 일이 적었기 때문에 친목과 대화활동은 커녕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였었다. 이에 정산종법사께 이 취지를 여쭙고 그 부촉을 받들어 동산선원에 수차 접촉한 후 새롭게 폭넓은 본회의 결성총회를 갖게 되었고 종법사께서는 본회의 명칭을 「교우회」라 부르게 하였다. 그리고 후에 「중앙교우회」라 칭하게 된 이유는 당시 몇몇 교당에서 청년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총부에 그 명칭을 의뢰하여 온 결과 종법사께서 교우회라 칭하도록 하심에 따라 지방 교우회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중앙교우회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뜻으로 조직되었나를 보면 그 창립 경위로 보면 대체로 알 수 있으나 첫째는 친목을 통하여 성불제중의 서원을 같이한 인연깊은 법의 형제자매들끼리 정의를 두터히 하자는 것이다. 혈연으로 만난 인연도 소중하지만 뜻으로 뭉친 법연은 뜻을 달리할 수 없는 한 영생을 더욱 같이 할 소중한 인연으로 어떤 행동에 앞서 그 정의와 신의가 상통되고 친밀해지는데 그 본의가 있다. 그래서 정의가 달과 같이 비추고 신의가 호수같이 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대화를 통하여 우리들의 이념과 사상을 통일하고 확립해 나가자는 것이다. 모든 일에 앞서 그 일을 위한 대중의

뜻과 생각을 확립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일을 통하여 각자의 처한 위치와 맡은 바 분야는 다를지라도 한 목적 한 일임을 깨쳐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 것으로 친목과 대화와 일을 통하여 정의를 두터히 하고 사색을 통일하고 상호 협력의 정신을 배양해 나가자는 것이 중앙교우회의 이념이다.

그간의 업적을 보면 긴역사와 많은 회원과 교단의 중진으로 구성된 고문과 지도위원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속에 그 맥을 이끌어 왔다. 연례행사로는 간헐적인 것도 있긴 하나 신입회원 환영법회, 춘추계 미화작업, 모내기작업, 성가법회, 교역자강습시 선후진의 밤 개최. 자선의 달 행사, 동계수련대회, 이리보육원 어린이법회 주관, 어린이지도자강습, 졸업법회, 선진법회 등이 있어 왔다.

이러한 활동속에서 회원 상호간의 정서 함양과 소식을 전하기 위해 원기60년(1975) 5월에는 『한길』이라는 문예지를 발간 제10호까지 내고 폐간되었으며, 원기64년(1979) 11월 15일에는 『한길통신』을 내기도 하였다.

교당의 변화속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도 원기72년(1987)에는 그동안 원불교학과와 동산선원과의 친목활동을 다양하게 해 왔으나 동산선원이 폐쇄되고 예비교무 훈련도량으로 체제변화 되어지고 대신 그동안 같이 활동을 해오지 못한 영산선원이 4년제의 체제로 바뀜에 따라 중앙교우회도 익산과 영산으로 새롭게 출발을 보게 되었다.

〈역대 임원〉

연도	대	직 책	법 명	성별	연도	대	직 책	법 명	성별
40	1	회 장	吳海仁	男	45	6	회 장	金大鉉	男
		부회장	徐大峻	〃			부회장	金明徹	〃
		〃	朴世經	女			〃	李永慶	女
41	2	회 장	徐大峻	男	46	7	회 장	李廣淨	男
		부회장	梁慧經	女			부회장	黃直平	〃
		〃					〃	柳香元	女
42	3	회 장	趙頭恩	男	47	8	회 장	黃直平	男
		부회장	金仁喆	〃			부회장	丁道允	〃
			鄭福天	女			〃	朴玄道	女
43	4	회 장	金仁喆	男	48	9	회 장	金東玄	男
		부회장	李玄道	〃			부회장	韓吉良	〃
		〃	張至誠	女			〃	尹性道	女
44	5	회 장	房圓敬	男	49	10	회 장	韓吉良	男
		부회장	金大鉉	〃			부회장	尹性道	女
		〃	金智行	女			〃	金聲振	男

50	11	회 장	金聲振	男	62	23	회 장	高允誠	男
		부회장	文圓景	〃			부회장	南宮誠	〃
		〃	李玄奉	女			〃	金常重	女
51	12	회 장	張應哲	男	63	24	회 장	金中觀	男
		부회장	金文澤	〃			부회장	金敬柱	
			金光仁	女			〃	申眞圓	
52	13	회 장	金文澤	男	64	25	회 장	金大禪	男
		부회장	金宗眞	〃			부회장	金圓德	
		〃	金聖田	女			〃	崔慈恩	
53	14	회 장	金恩峻	男	65	26	회 장	徐寧秀	男
		부회장	金濟明	女			부회장	李舜圓	〃
		〃	鄭仁成	〃			〃	洪圓正	女
54	15	회 장	李聖局	男	66	27	회 장	金觀中	男
		부회장	吳光益	〃			부회장	李眞光	女
		〃	宋善萬	女				李明輪	〃
55	16	회 장	徐光圓	男	67	28	회 장	金舜益	男
		부회장	邊性默	女			부회장	李修眞	女
			金正峻	男			〃	李恩觀	〃
56	17	회 장	申明局	男	68	29	회 장	姜文成	男
		부회장	申永文	〃			부회장	金吉善	〃
		〃	文仁眞	女			〃	金慧恩	女
57	18	회 장	許光永	男	69	30	회 장	李同喜	男
		부회장	金曉明	〃			부회장	程德恩	女
		〃	韓聖勉	女			〃	황윤화	〃
58	19	회 장	薛允煥	男	70	31	회 장	曺常好	男
		부회장	張仁善	女			부회장	安明照	女
		〃	정명도	〃			〃	金賢正	〃
59	20	회 장	李敬峰	男	71	32	회 장	李眞秀	男
		부회장	金明元	〃			부회장	李聖求	
			朴貞慧	女			〃	呂德慧	女
60	21	회 장	朴井厚	男	72	33	회 장	朴誠宗	男
		부회장	李中天	〃					
		〃	金貞信	女					
61	22	회 장	鄭貴圓	男					
		부회장	姜明眞						
			林道玄						

나. 연 혁

44. 10	장성 백양사와 정읍 내장사로 친목소풍
47. 6	알봉묘지 식목행사
49. 6	회비수입 공동작업
49. 7	청년지도자 강습
49. 10	반백년기념 보은기금조성
50. 5	체육대회
51. 6	6.1대재 연예회 개최
53.	하기방학 봉사활동
53. 10	대종사 십상 연극공연
54. 11	자선의 밤 개최 자선금 모집
55. 4	반백년기념 총부 백목련 식수
55. 6	보은금 10만원 기증과 기념식수
56. 6	중앙교우회 기본자산 조성운동 시작
57. 10	낙엽제 및 미술작품 전시회
58. 9	동산선원 봉불 및 낙성 기념 낙엽 및 수예, 서예 전시회
59. 10	이리시내 추계 미화작업, 영산선원 봉불낙성기념 선진유물 및 작품전시회
60. 2.14~16	중앙교우회 동계선 결제식이 중앙총부에서 실시
60. 3. 26	춘계 이리시내 미화작업 실시. 이리지부, 익산지부, 남중동지부, 동이리지부, 학생회원 동참.
62. 9. 11	선진님 등이 고요히 잠들고 계시는 알봉묘지를 찾아 벌초 및 청소를 주위정화작업
62. 11. 20	이리시내 미화작업 이리역 광장과 버스터미널 중심
65. 9. 14	알봉묘지 정화작업
65. 10. 26	교환법회 실시 각 학년별로 선학원에서 법회를 갖고 오후에는 회화오락, 체육대회 등을 통해 한길로 가는 법형제의 친목다짐.
65. 11. 30	중앙총부 대각전에서 졸업법회 실시 설교 : 한정석교무(교학대학장)
66. 3. 22	이리교구 후원으로 오전6시에 이리역 중심으로 시가지 청소실시
66. 3. 29	교환법회 실시
66. 4. 5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 화려한 가장행렬과 배구, 풋베이스볼 게임 등 실시
66. 4. 26	총부대각전에서 예비교역자 합동법회 실시
66. 9. 5	정기총회실시 임원인준
66. 9. 6	알봉묘지 벌초 및 주위 정화작업
66. 11. 8	총부 대각전에서 합동법회
66. 11. 22	동산선원 법당에서 졸업법회. 설교 : 이중정교무
67. 4. 4	중앙총부 영모전 광장에서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 실시

67. 5. 16 동산선원에서 합동법회
67. 6. 1 6.1대재일에 선진님 유품전시에 백일장 및 작품 전시
67. 11. 21 교학대학 수련실에서 졸업법회. 설교 : 송천은교무
68. 3. 12 벽지 개척교당 방문, 선학원 28조로 활성 매주 토요일 2개조씩 벽지 개척교당을 찾아 일선교화의 현장체험 실시
68. 3. 27 교환법회 실시
68. 4. 24 배산대청소 실시 및 신입생 환영법회
68. 9. 11 총부대각전에서 합동법회 및 기도 대청소 실시
68. 10. 9 한길결성식과 임시 임원회의
69. 3. 25 신입생 환영법회
70. 3. 24 「한길운동회」 개최
70. 5. 19 합동법회 설교 : 한정원교무
71. 1. 22~25 이리보육원에 보육원교사들은 원생들과 함께 동선실시

〈중앙교우회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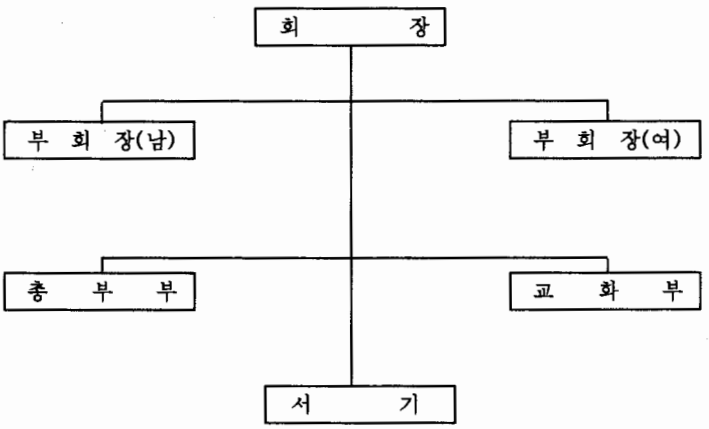

다. 중앙교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원불교 중앙교우회라 부른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원불교 예비교역자로 한다. 단, 선원은 고등선원 재학생에 한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 (회원의 활동) 이 회의 회원은 자율적인 친목행사를 가질 권리와 회칙과 내규를 지킬 의무를 가진다.

제5조 (임원)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부장 1인 차장 2인, 4) 교화부장 1인 차장 2인, 5) 서기 1인

제6조 (업무) 이 회의 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이 회의를 대표하고 모든 활동을 주도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부 : 회지, 섭외, 서무, 경리, 4) 교화부 : 친목, 봉공, 학예, 수련, 5) 서기 : 문서, 통신, 기록

제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지도위원) 필요에 따라 각종 회의에서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지도위원은 각종회의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3장 회의 및 선거

제1절 정기총회

제9조 (소집) 이 회의 정기총회는 2학기초에 연1회 소집한다.

제10조 (의결사항)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심의, 2) 임원인준, 3) 회칙개정, 4) 사업계획 심의, 5) 안건토의

제11조 (정족수) 정기총회는 회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절 임시총회

제12조 (소집)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정족수) 임시총회는 회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절 임원회

제14조 (구성)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부장, 차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회원을 출석시켜 임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 (소집)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 임원회는 이 회에 관한 모든 활동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최대의 공의로 이를 의결한다.

제4절 선 거

제17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지며 3학년(단 고등선원은 2학년)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정부의장 선의) 정부회장의 선거는 1학기 말에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전 회원의 투표로 실시한다.

제19조 (선거관리) 선거관리는 임원회에서 하며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회 및 해당 총회의 결

정에 따른다.

제20조 (당선) 정부회장은 재적회원 2/3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로 당선된다.

제4장 재 정

제21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신입회원의 입회금과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2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회칙개정) 이 회칙은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정기총회에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관례규정)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3조 (시행)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내 규

제1조 이 회의 사무소는 원불교 중앙총부에 둔다.

제2조 이 회의 입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회원서의 교부, 2) 입회원서의 접수, 3) 입회허가(단 입회허가는 특기할 만한 결격사항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한다)

제3조 부회장의 선출은 관례에 따라 학림사, 정화원, 동산선원으로 구분하여 회장이 당선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두 기관에 부회장을 안배한다.

제4조 각 부장과 차장 및 서기는 회장단이 임명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얻는다.

제5조 회장이 유고시에 2인의 부회장은 서로 협의하여 1인이 수석 부회장이 되어 이를 대행한다. 각 차장도 이에 따른다.

제6조 지도위원의 위촉에 있어 교육부장과 교화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 이 회의 입회비는 원 일반회비는 원으로 한다.

Ⅻ. 各 種 事 業 會

□ 개 요

원불교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아래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을 그 동기로 개교하였고 소태산대종사 부촉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사업목표는 교화·교육·자선의 세가지니 앞으로 이를 늘 병진하여야 우리의 사업에 결함이 없으리라」하시고 이 삼대목표의 사업기관을 고루 시설해 보시려고 노력하셨다. 해방후 『원불교교헌』에 「본교는 사업기관으로 교육 자선 등의 공익시설과 농공상의 산업시설 및 기타 특설기관을 수의 설치한다」고 규정하여 교단은 이 삼대목표 사업기관의 균형있는 확립을 지향하였고, 대산종법사는 「교단의 조직과 제도의 기본방향은 체계화·조직화·합리화·항구화·능률화·생산화·평등화로 내실을 기하는데 있다. 그러기로 하면 교단의 사업목표를 교화·교육·훈련·문화·산업·자선·원호·봉공 등 8대 사업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기관과 재단을 정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히고 「8대 사업회로 8대 교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교단 만대의 계획이니 잘 연구하도록 하라」하셨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단의 사업목표 실현을 위한 제도(체제)와 인재 재정 등의 총체적인 힘을 바탕한 종합교화의 필요성은 증대되었고, 정책 또는 교정에 수렴, 반영해야 할 시의에 따라 이 과제를 현실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분야에 걸친 사업회의 발족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각종사업회는 원기72년(1987)말 현재 총 14개로서 이를 설립연대별로 보면 원기40년(1955)대에 3개(은산육영·육영·법은), 원기50년(1965)대에 3개(교화·후생·성지), 원기60년(1975)대에 5개(유지·항원·자선·해산국제육영·문화), 원기70년(1985)대에 3개(국제교화·원창회·훈련)로 28년동안 (원기44년~71년) 14개의 사업회가 발족하였는 바 이는 연평균 0.5개의 증가를 보였으며, 분야별(형태별 : 목적사업별)로 보면 교화부문으로는 교화사업회·국제교화사업운영위원회, 교육부문으로는 은산육영사업회, 육영사업회, 해산국제육영사업회, 훈련부문으로 훈련사업회, 문화부문으로 문화사업회, 산업부문으로 유지사업회, 원창회, 자선부문으로 법은사업회, 자선사업회, 원호부문으로 후생사업회, 기타부문은 성지사업회, 항원사업회 등으로 각 분야에 고루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예산별로 보면

〈72. 9.30 현재〉

구분 \ 사업회	은산육영	육영	법은	교화	후생	유지
총자산(원)	4,259,240	438,820,361	520,801,000	106,515,694	195,567,000	108,538,000
회원수(명)	15	4,384	6,453	3,715	1,067	24
목적, 사업기관	수계농원	부산보화당	북일원광한의원 대구원광한의원	대전보화당 회산농장	부산원광한의원	——

구분 \ 사업회	자선	해산국제육영	문화	국제교화	원창회	훈련
총자산(원)	174,104,486	239,792,638	2,160,000	8,000,000	847,649,082	10,950,984
회원수(명)	172	——	26	20	995	45
목적사업기관	군산원광한의원	영등포보화당	——	——	——	——

이로써 원기44년(1959) 원불교 교역자 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에 시용(施用)함을 목적으로 발족된 은산육영사업회를 시작으로 사업회의 발족이 비롯되었으나 원기13년(1928)에 발족된 인재양성소기성연합단과 농업부기성연합단은 교육기관 및 육영재단의 근거와 사업기관과 각종 재단형성의 시원적 운동이 됨으로서 원불교 사업회 발족의 직접 요인이 되었으며 교단 초창기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여 영육쌍전하고 이사병행하는 원불교의 기본정신과 소태산대종사의 사업이념을 포괄하고 함축하는 내용으로 일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종사업회는 이러한 정신을 근간으로 발전하고 발전됨을 따라 본래의 목적하는 바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1. 은산육영사업회

가. 창 립

은산육영사업회는 원기44년(1959) 원불교 산업기관의 하나인 수계농원 기존 자산의 수익금과 은산 김현관교도가 투자한 희사금으로 이룩한 육영재단으로 그 재산수입은 원불교 교역자 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에 사용함을 그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척박한 야산 개발로부터 시작된 농원개척은 일반 발작물, 과수, 식재, 양계, 양돈 등 다각적인 소득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각처분의 위기에 처했을 때 김현관교도의 특지로서 인삼재

배에 성공, 그 수익금으로 은산육영재단이 설립되었다. 창립당시 유공인으로는 김현관, 권정진, 허인, 오미산교도 등이었다.

나. 조직과 현황

회장 1명과 상임운영위원 2명 및 운영위원 10명 그리고 감사 2명으로 구성되며 회장에는 교정원장, 상임운영위원은 교육부장과 농원장이 당연직이다.

창립당시 회원은 7명(남)으로 자산은 2,104,399원이었으나 그후 원기52년(1967)까지 9년간 인삼경작을 통한 총 수입액은 6,874,399원이었다. 이중 답 12,029평 매입과 잠실, 창고 등 시설투자에 2,615,159원이 충당되어 현재 총 자산은 4,259,240원에 이르며 회원은 15명(남12, 여3)이다.

다. 활　　동

원기50년(1965)부터 지출된 육영비 현황은 원기72년(1987)까지 총 1,760가마(80kg)이며, 원기51년(1966)부터 원기70년(1985)까지 배출된 전무출신은 무려 27명(남24, 여3)으로 명실공히 원불교 창립정신인 영육쌍전, 이사병행의 정신을 실천하는 교육도량임을 보여 주었다.

라. 恩山 金玄觀先生 喜捨內譯

원기44년(1959)도부터 원기48년(1963)도까지

人蔘間, 每年 天間씩 5年間. 金額 2,104,399원 (원기47년(1962) 6월 10일자 화폐개혁으로 10단위 인하)

원기49년도 : 인삼 2,564간채 총 190만원 수입. 답 5,529평을 매입

원기51년도 : 인삼 1,030간 채굴 210만원 수입. 잠실 60평, 공사비 60만원으로 40여장 잡종사육규모시설. 답 4천평, 80만원으로 매입

원기52년도 : 인삼 1,070간 채굴 77만원 수입. 답 25백평, 54만원 매입, 창고 55, 공사비 40만원. 총 수입 4,259,240원

마. 역대 이사진

대	직 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회 장	金 勤 修(益洙)	男	1922. 6. 9	61~68	교정원장
	이 사 장	金 玄 觀(騏錫)	〃		46~48	
	이 사	權 正 進	〃		46~61	
	〃	許 仁(善)	〃		〃	
	〃	吳 彌 山	〃		〃	
	〃	朴 光 田(吉眞)	〃	1915. 3. 23	〃	
	〃	成 丁 哲(丁鎬)	〃	1902. 11. 21	〃	
	〃	趙 曛 錫(熙燮)	〃	1910. 11. 17	〃	
	〃	李 喆 行(喆行)	〃	1928. 12. 12	〃	
	감 사	朴 將 植(天植)	〃	1911. 1. 9	46~47	
	〃	李 共 珠(慶子)	〃	1897. 12. 23	46~61	
	이 사	朴 將 植(天植)	〃	1911. 1. 9	47~48	
	〃	池 海 元(海元)	〃	1912. 8. 2	47~61	
	감 사	李 完 喆(載心)	〃	1897. 3. 27	47~50	
	〃	朴 晩 成	〃		47~61	
	이 사 장	朴 將 植(天植)	〃	1911. 1. 9	48~61	
	이 사	金 道 光(大晃)	〃		48~61	
	〃	金眞如行	女		49~61	
	〃	金 永 觀(殷錫)	男		〃	
	감 사	丁 光 薰(炳球)	〃	1917. 8. 30	50~61	
	상임위원	池 海 元(海元)	〃	1912. 8. 2	61~71	농원장당사국
	〃	朴 濟 現(英姬)	女	1932. 2. 4	〃	교육부장
	운영위원	朴 光 田(吉眞)	男	1915. 3. 23	〃	
	〃	成 丁 哲(丁鎬)	〃	1902. 11. 21	〃	
	〃	趙 曛 錫(熙燮)	〃	1910. 11. 17	61~64	
	〃	李 雲 捲(雲行)	〃	1914. 5. 3	61~71	
	〃	李 喆 行(喆行)	〃	1928. 12. 12	〃	
	〃	金 允 中(遵烈)	〃	1927. 12. 7	〃	
	〃	金 道 光(大晃)	〃		61~64	
	〃	金眞如行	女		61~63	
	감 사	丁 道 允(炳允)	男	1933. 5. 15	61~68	
	〃	田 宗 哲(淳和)	女	1934. 10. 5	〃	
	운영위원	安 理 正(重泰)	男	1918. 2. 8	63~	
	〃	金 仁 龍(判龍)	〃	1922. 10. 16	63~65	재무부장
	〃	朴 將 植(天植)	〃	1911. 1. 9	65~71	감찰처장

	운영위원	徐 大 仁(今禮)	女	1914. 12. 11	65~68	
	〃	함 정 인	〃		〃	
	〃	이 정 묵	〃		〃	
	〃	柳 正 完(珍玉)	男	1930. 11. 29	68~	
	〃	田 宗 哲(淳和)	女	1934. 10. 5	68~71	
	〃	李 聖 澤(和澤)	男	1943. 3. 13	〃	
	감 사	李 中 正(鍾行)	〃	1926. 6. 14	68~	
	〃	徐 聖 範(金成)	〃	1940. 9. 25	68~	
	회 장	金 允 中(還烈)	〃	1927. 12. 7	68~	
	상임위원	李 百 徹(致炯)	〃	1927. 4. 9	71~	
	〃	金 復 煥(復煥)	女	1938. 12. 10	71~	
	운영위원	池 海 元(海元)	男	1912. 8. 2	71~	
	〃	梁 濟 乘(承鉉)	〃	1925. 10. 12	71~	
	원 장	權 正 進	男		44~46	
	총 무	羅 聖 化	〃		〃	
	기술지도	許 仁(善)	〃		〃	
	지도위원	金 玄 觀(騏錫)	〃		〃	
	〃	李 雲 捲(雲行)	〃	1914. 5. 3	〃	
	〃	吳 彌 山	〃		〃	
	〃	李 炳 恩(炳穆)	〃	1925. 4. 9	〃	
	운영위원	黃 直 平(熙薛)	〃	1932. 3. 17	71~	
	〃	양 승 원	〃		71~	
	〃	朴 濟 現(英姬)	女	1932. 2. 4	71~	
	〃	金 法 宗(鍾鎬)	男	1937. 5. 15	71~	
	〃	宋 順 鳳(順鳳)	〃	1933. 3. 6	71~	
	〃	朴 達 識(世雄)	〃	1945. 1. 7	71~	

바. 은산재단 정관

제1조 은산재단은 은산 김현관이 이룩한 육영재단이다.

제2조 본 재단은 원불교 교역자양성의 육영사업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사호(김현관, 권정진, 허 인, 오미산)의 수양비는 본 재단에서 지급한다.

제3조 본 재단의 사무소는 원불교중앙총부내에 둔다.

제4조 본 재단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일천간식을 5년간에 시설한 오천간의 삼포. 2. 수계농원에 소재한 토지, 건물과 노무력.

제5조 본 재단에 이사 9명과 감사 2명을 둔다.

이사와 감사는 원의회에서 선거하며 종법사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한다.

사호는 자동적으로 이사에 당한다.

제6조 초대 이사장에는 김현관이 당한다.

제7조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사업을 통리한다.

제8조 이사장이 유고할 시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리한다.

제9조 감사는 본 재단의 재정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10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중임은 제한하지 않는다.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사호의 임기는 종신기로 한다.

제12조 이사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정기 개회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이를 개회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의 직을 대리하는 이사가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정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4조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과 재산의 취득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체의 직원 진퇴에 관한 사항 3. 일시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재단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5조 이사회는 전무출신규정과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한다.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해임 결의를 할 수 없다.

제16조 본 재단의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附 則

제17조 법정재단 설립은 단기4297년도 재산평가에 의하며 설립키로 한다.

사. 은산 육영 사업회 회칙

제1조 은산육영사업회(이하 본회라 함)는 원불교 수계농원 기존자산의 수익금과 은산 김현관이 투자한 회사금으로 이룩한 육영재단이다.

제2조 본 회의 재산수입은 원불교 교역자 양성의 육영사업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는 수계농원에 두고 교정원 교육부에서 관할한다.

제4조 본 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은산 김현관이 투자하여 형성된 자산 2. 수계농원의 기존 자산에 대한 수익금

제5조 본 회에 회장 1인과 운영위원 10인 및 감사 2인을 둔다. 운영위원과 감사는 원의회에서 선거하여 종법사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6조 회장에는 교정원장이 이에 당하며 교육부장과 농원장은 상임 운영위원이 된다.

제7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사업을 통리한다.

제8조 회장이 유고할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상임운영위원이 회장의 직을 대리한다.

제9조 감사는 본 회의 재정과 사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중임은 제한치 않으며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본 회의 초창당시 유공인 4호(김현관·권정진·허 인·오미산)는 종신운영위원으로 위임한다.

단, 전문운영위원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는 매년 3월중에 정기로 개회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이를 개회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결의에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결산과 자산의 취득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체의 직원 진퇴에 관한 사항. 3. 일시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는 전무출신 규정과 상벌규정에 의한 정기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원해임 결의를 할 수 없다.

아. 육영미 지출 내역

연 도	지 출	누 계	연 도	지 출	누 계
50.	20	20	62.	80.	760
51.	40	60	63.	100	860
52.	60	120	64.	100	960
53.	60	180	65.	100	1,060
54.	60	240	66.	100	1,160
55.	60	300	67.	100	1,260
56.	60	360	68.	100	1,360
57.	60	420	69.	100	1,460
58.	60	480	70.	100	1,560
59.	60	540	71.	100	1,660
60.	60	600	72.	100	1,760
61.	80	680	합 계		1,760叭

2. 육영사업회

가. 창 립

육영사업회는 원기46년(1961) 10월 12일 선원과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및 기타 교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훌륭한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교단창립의 초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아래 생계유지도 어려운 당시 일제 말엽의 상황에서 역사적 소명과 시대 개척의 주체가 될 「인간교육」의 높은 경륜과 포부로 동양척식회사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그 수확으로 인재육성을 시작하였고 원기11년(1926) 육영창립단 설립, 원기13년(1928) 인재양성기성연합단과 농업부기성연합단을 설립하였으며 원기18년(1933)에는 중앙총부에 하나의 정식 부서로 인재양성부가 설치되고 이듬해인 19년(1934) 육영부로 개칭하여 운영해 오다가 원기43년(1958) 4월에 이르러 장학회가 발족되니 이것이 육영사업회 발족의 밑거름이었다. 창립 유공인으로는 초대 이사인 박장식, 서대인, 박광전, 조희석, 이경순 교무와 문동현, 공덕종, 오철환, 이대석교도 등이었다.

나. 조직과 현황

회장 1인과 부회장 약간인 그리고 상임운영위원 1인과 운영위원 20~30인 및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

창립당시, 회원은 41명(특별회원9, 통상회원27, 기타회원5)으로 자산은 3,515,160환이었으나 원기72년(1987) 9월 30일 현재 동산 259,450,003원, 부동산 179,370,358원(매입가 기준)을 합한 총 자산 규모는 438,820,361원이며 회원수도 4,384명이 되었다. 원기59년(1974) 7월 28일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 설립한 부산보화당이 있다.

다. 활 동

교단의 전문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오늘까지(원기46~72년) 총 1,085명의 전무출신이 배출되고 현재 251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동계방학중 정기훈련 과목의 기본강화 훈련과 하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학생 지도자훈련과 실습으로 어린이·학생교화 능력을 배양, 보은활동에 임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립학교(원광고, 원광중, 원

광여종고, 원광여중) 재학생 교리수업과 간부훈련을 통해 교립학교 교화와 교리소개 및 상담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라. 연 혁

46. 10. 12 육영재단 발족승인 및 정관 제정(제3회 임시교정위원회)

47. 5. 28 육영재단 이사 및 감사 선출(제14회 원의회) 이사 : 박장식, 서대인, 박광전, 조희석, 이경순, 문동현, 공덕종, 오철환, 이대석. 감사 : 송원철, 박석원

47. 6. 5 제1회 육영재단 이사회 개최. 초대이사장 선출 : 문동현, 육영비(50,000환) 책정지급 결의 장학회원증 발급 실시. 장학기금 모금 방안 협의

48. 3 제1회 신입장학생 선서기도 실시

48. 4 제2회 육영재단 이사회 개최. 육영재단 운영규정 심의 통과. 육영규정 제정

50. 3. 24 제1회 장학회원 총회 거행. 유공인 및 유공지방 표창.
〈표창장〉 서울, 대구, 종로, 광주, 동래, 마산, 대신, 경남, 부산진, 초량, 전주지부
〈감사장〉 박효진, 김도영씨와 수계, 서성로, 군산, 서면, 이리, 정읍, 통영, 익산, 김해, 진영, 구포, 동산, 원남, 영도, 수지, 대전, 제원, 화천, 산서, 밀양, 영광, 관촌, 마령, 임실, 신태인, 화포, 목포, 진안, 좌포, 포천, 총부

51. 9. 1 『육영통신』 창간

52. 2. 출가식에 졸업생에게 법복 수여

52. 3. 25 육영문고 설립

52. 3. 26 제2회 장학회원 총회 개최. 유공지방 및 유공인 표창
〈특별유공회원〉 김도영, 고경도화, 박금용, 서경숙
〈표창장〉 부산진, 종로, 서울, 대구, 광주, 이리, 경남, 마산, 정읍, 원남, 초량, 대신지부
〈감사장〉 구포, 임실지부

56. 3. 31 육영유공자 표창
〈표창지방〉 초량, 경남, 부산진, 이리, 광주, 전주, 대구, 종로, 서울, 원남, 동래, 정읍, 진영, 서성로, 사직, 송천, 군산, 교동, 함라, 익산, 원평지부

〈유공회원〉 임제안, 김경학, 김법용심, 연덕선, 윤안택, 김귀연, 오인한, 손성인화, 김지영, 김도영, 오철환, 김대성화, 황용수, 유정덕화, 유 순, 조성재, 성의철, 장경렴, 박인옥, 정동인, 이득춘, 정진안, 소도광, 윤성규, 김성윤, 김광명화, 김법계화, 이도봉행, 전공덕해, 김일덕행, 이지인행, 송순수
〈인재육성후원공로자〉 박금용, 진명일

56. 3 『육영사진첩』 발간
58. 7 제1회 예비교역자 어린이지도자 훈련 실시
59. 1 선학원 졸업반 첫 합동수련 실시
59. 7 부산보화당 봉불 및 개업봉고식 거행
61. 육영재단을 육영사업회로 개칭
62. 4 교화, 교육용 버스구입
64. 8 예비교역자 특수과생 훈련 실시(한의학과 3명, 보육과 1명)
64. 10. 21 육영유공자 시상
〈교당표창〉 종로교당
〈개인표창〉 특공회원 : 양기태
공덕회원 : 조인명, 백은명, 김도영, 손성인화, 박기범, 김정인, 조성제, 이통운, 최행덕, 송경심, 조현경, 이경봉, 박수정화, 신원근, 김법용심, 이영관, 김학기, 백인철, 양만수, 강정창, 이동복화, 장구품화, 김보영월, 김견성화, 박원각화, 박광철, 서부귀화
64. 11 예비교역자 졸업반 문심 실시
64. 12 지방교당에서 장학법회 시작
65. 3. 1 신입육영장학생 봉고식 및 영산성지순례
66. 7. 26 예비교역자 교육담당 교무훈련
67. 3. 9 원광중앙유치원 개설
70. 3 교립학교 교리교육 실시
70. 7 교립학교 학생간부 훈련 실시
70. 12 교육기관 체제정비 : 동산선원을 훈련교무 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 영산선원을 4년제 대학과정으로 개편
71. 4 교육개혁위원회 발족준비
71. 8 외국인 초청 영어회화 학습
71. 11 교립중·고학생 합동득도식
72. 1 예비교역자 겨울훈련 실시

72. 7 예비교역자 여름훈련 실시

72. 2대말 결산결과 무등회원 13명 탄생 : 홍인천, 김혜성, 양성봉, 김서경, 오이균, 전은덕, 오인환, 김법용심, 임제안, 성현주, 이철원, 김명환, 김현관

마. 역대임원

번호	직 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奬學會長	金 大 擧(榮瀚)	男	1914. 3.16	43~44	
	부 회 장	李 完 喆(載心)	〃	1897. 3.27	43~44	
	〃	曺 專 權(玉順)	女	1909. 2. 3	〃	
	총 무	金 允 中(還烈)	男	1927.12. 7	〃	
	財 務	丁 光 薰(炳球)	〃	1917. 8.30	〃	
	慘 事	李 共 珠(慶子)	女	1897.12.23	〃	
	〃	成 丁 哲(丁鎬)	男	1902.11.21	〃	
	〃	朴 光 田(吉眞)	〃	1915. 3.23	〃	
	〃	朴 將 植(天植)	〃	1911. 1. 9	〃	
	〃	李 雲 捲(雲行)	〃	1914. 5. 3	〃	
	〃	趙 曦 錫(熙燮)	〃	1910.11. 7	〃	
	〃	金 勤 修(益洙)	〃	1922. 6. 9	〃	
	〃	李東震華(慶洙)	女	1894. 5.15	〃	
	〃	吳 宗 泰(孝順)	〃	1913.12.20	〃	
	〃	丁 盛 熟(石鎭)	〃	1922. 9. 5	〃	
	監 事	徐 大 仁(今禮)	〃	1914.12.11	〃	
	〃	李 空 田(順行)	男	1927. 3.24	〃	
	育英分科委員長	徐 大 仁(今禮)	女	1914.12.11	44~47	
	委 員	金 大 擧(榮瀚)	男	1927. 3.16	44~46	
	〃	趙 甲 鍾(孝男)	〃	1905. 5.13	44~47	
	〃	朴 光 田(吉眞)	〃	1915. 3.23	〃	
	〃	朴 將 植(天植)	〃	1911. 1. 9	〃	
	〃	李 雲 捲(雲行)	〃	1914. 5. 3	〃	
	〃	趙 曦 錫(熙燮)	〃	1910.11. 7	〃	
	〃	丁 光 薰(炳球)	〃	1917. 8.30	〃	
	〃	李 炳 恩(炳穆)	〃	1925. 4. 9	〃	
	〃	金 永 信(順得)	女	1908. 2. 6	〃	
	〃	曺 專 權(玉順)	〃	1909. 2. 3	〃	
	〃	丁 盛 淑(石鎭)	〃	1922. 9. 5	〃	

委員	金勤修(益洙)	男	1922. 6. 9	46～47		
〃	成丁哲(丁鎬)	〃	1902.11.21	〃		
〃	金允中(還烈)	〃	1927.12. 7	〃		
〃	李東震華(慶洙)	女	1894. 5.15	〃		
〃	宋順鳳(順鳳)	〃	1933. 3. 6	〃		
〃	李共珠(慶子)	〃	1897.12.23	47～47		
〃	宋圓徹(金道)	〃	1926. 5. 8	〃		
育英財團理事會長	文東賢(翔煥)	男	1909. 2.27	47～62		
常務理事	徐大仁(今禮)	女	1914.12.11	47～56		
理事	朴將植(天植)	男	1911. 1. 9	47～62		
〃	朴光田(吉眞)	〃	1915. 3.23	47～62		
〃	趙曦錫(熙燮)	〃	1910.11. 7	〃		
〃	李敬順(慶和)	女	1915. 4.24	〃		
〃	孔德宗	〃	1818. 3. 7	〃	鍾路支部長	
〃	吳喆煥	男	1913. 2.10	47～62	群山支部長	
〃	李大石(貞謨)	〃	1905. 3.13	47～53	慶南支部長	
監事	宋圓徹(金道)	女	1926. 5. 8	〃		
〃	朴碩元	男	1904. 2.28	〃	東山支部長	
〃	李建世	〃	1917.	53～56	東莘副支部長	
〃	柳永根	〃	1909.	53～62	大丘支部長	
〃	金道永	〃	1904. 1. 9	〃		
〃	黃道永	〃	1918.	53～59		
〃	梁道信(小淑)	女	1918. 8. 2	53～62		
〃	丁光薰(炳球)	男	1917. 8.30	〃		
〃	宋圓徹(金道)	女	1926. 5. 8	53～56		
감사	崔法龍	男	1913.	〃	龜浦副支部長	
〃	張慧省	〃	1917.	〃	甘谷支部長	
이사	徐大仁(今禮)	女	1914.12.11	56～62		
상무이사	宋圓徹(金道)	〃	1926. 5. 8	〃		
이사	崔法龍	男	1913.	〃		
〃	金正勇(三龍)	〃	1925.11. 1	〃		
〃	李雲捲(雲行)	〃	1914. 5. 3	〃		
〃	이영수	〃	1908. 4. 7	〃		
〃	曺聖濟	〃	1919. 2. 9	〃	全州支部長	
〃	金光準	〃	1918.11.24	〃	光州支部長	
감사	李喆行(喆行)	〃	1928.12.22	〃		
〃	金允中(還烈)	〃	1927.12. 7	〃		
이사	宋圓徹(金道)	女	1926. 5. 8	58～62		
상무이사	朴濟現(英姬)	〃	1932. 2. 4	〃		

	이 사	方省心	男	1916.10. 7	59~62	
	〃	權玄覺	〃	1915. 7. 6	〃	
	〃	秋塵捲	〃	1915.12.18	60~62	
	〃	金瑞敬(小敬)	〃	1917.10.28	〃	
	〃	金法用心	女	1924. 2.29	61.10~62	
	육영사업회회장	文東賢	男	1909. 2.27	62~	
	상임위원	朴濟現(英姬)	女	1932. 2. 4	62~71	
	위 원	朴光田(吉眞)	男	1915. 3.23	62~65	
	〃	趙曦錫(熙燮)	〃	1910.11. 7	62~63	
	〃	李敬順(慶和)	女	1915. 4.24	62~65	
	〃	梁道信(小淑)	〃	1918. 8. 2	62~63	
	〃	宋圓徹(金道)	〃	1926. 5. 8	62~65	
	〃	徐大仁(今禮)	〃	1914.12.11	〃	
	〃	金正勇(三龍)	男	1925.11. 1	〃	
	〃	李雲捲(雲行)	〃	1914. 5. 3	〃	
	〃	孔德宗	〃	1918. 3. 7	〃	
	〃	吳喆煥	〃	1913. 3. 2	62~	
	〃	柳永根	〃	1919.	〃	
	〃	崔法龍	〃	1913.	〃	
	〃	曺聖濟	〃	1919. 2. 9	62~65	
	〃	方省心	〃	1916.10. 7	62~	
	〃	秋鹿捲	〃	1915.12.18	〃	광주지부
	〃	池海元	〃	1912. 8. 2	62~65	
	〃	柳實植	〃		62~68	
	〃	金瑞敬(小敬)	女	1917.10.28	62~	
	〃	金法用心	〃	1924. 2.29	〃	부산지부
	〃	李正恩(正福)	〃	1924.11.27	〃	
	〃	鄭眞淑(賢淑)	〃	1920.10. 4	62~65	
	〃	朴恩局(永愛)	〃	1923. 1.22	62~68	
	〃	全隱德	〃	1913.12. 9	〃	
	감 사	李喆行(喆行)	男	1928.12.12	62~65	
	〃	金允中(還烈)	〃	1927.12. 7	〃	
	위 원	朴將植(天植)	〃	1911. 1. 9	〃	
	〃	鄭道仁	女		〃	
	〃	李喆行(喆行)	男	1928.12.12	65~	
	〃	金仁龍(判龍)	〃	1922.10.16	〃	
	〃	辛濟根(順任)	女	1923.12.29	〃	
	〃	丁盛熟(石鎭)	〃	1922. 9. 5	〃	

위 원	李修悟(在福)	男	1929. 4.17	65~67		
〃	柳基現(炳德)	〃	1930. 9. 2	65~70		
〃	金政仁	〃	1923. 8. 8	65~	의정부	
〃	具性俊	〃	1927. 2. 8	65~67	청 주	
〃	辛慧天	〃	1922. 7. 4	65~70	부 산	
〃	梁南根	女	1916. 4. 7	65~67	〃	
〃	鄭明德	男	1940. 5.11	65~67	마 산	
〃	高文局	〃	1926.12.10	〃	원 남	
감 사	丁慶浩(吉皓)	〃	1925.12.24	〃		
〃	李廣淨(建衡)	〃	1936. 9. 1	65~67		
위 원	柳正完(珍玉)	〃	1930.11.29	68~70		
〃	權常中(泰成)	〃	1919. 8.15	68~	초 강	
〃	吳利均(永煥)	〃	1918. 7.14	68~	사 직	
〃	尹亨運	〃		68~70	이 리	
〃	黃義碩(義度)	〃	1933. 7.24	68~70	진 북	
감 사	徐聖範(金成)	〃	1939. 8.24	68~		
〃	宋順鳳(順鳳)	女	1933. 3. 6	68~70		
명예위원	宋德田	〃		68~	통 영	
〃	李敬中	〃		68~	서 문	
〃	鄭道仁	〃		68~	서 면	
〃	金瑞敬	〃	1917.10.28	68~	종 로	
〃	全隱德	〃		68~	종 로	
위 원	金一相圓	〃		68~	거 제	
〃	任濟安	〃		68~	부 산	
상임위원	金復煥(復煥)	〃	1938.12.10	71~		
위 원	崔順哲(希順)	〃	1937. 6. 4	71~		
〃	李聖澤(和澤)	男	1943. 3.13	71~		
〃	李善宗(燕子)	女	1944. 9.15	71~		
〃	金長源(香基)	男	1942. 5. 2	71~		
〃	韓濟船(洋洙)	女	1935. 9.24	71~		
〃	權鳳安	〃		71~	신 촌	
〃	朴南鎭	〃		71~		
〃	權妙亨	〃		71~		
〃	全德業華	〃		71~		
〃	李忠和	〃		71~		
〃	金聖現(永彩)	男	1931. 3. 1	71~		
〃	백상범	〃		71~		
〃	高文起(熙錫)	〃	1929.12.14	71~		

	위 원	朴濟現(英姬)	女	1932. 2. 4	71~	
	명예위원	丁白庵	〃		71~	
	감 사	鄭性德(弼煥)	男	1929. 8.20	71~	

바. 연도별 회원수

구분 / 연도	회원수	구분 / 연도	회원수	구분 / 연도	회원수	구분 / 연도	회원수	구분 / 연도	회원수
47	59	53	474	59	1,946	65	3,438	71	4,295
48	102	54	599	60	2,060	66	3,600	72	4,401
49	125	55	994	61	2,250	67	3,787		
50	214	56	1,722	62	2,521	68	3,919		
51	277	57	1,808	63	2,770	69	4,030		
52	341	58	1,903	64	3,166	70	4,119		

사. 육영사업회정관

71. 11. 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사업회는 원불교 육영사업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영산대학 및 교학대학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진전하는 교세에 대응하여 시대에 적정한 교역자 양성을 목적한다.
단, 기타 교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코자 할 때에도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원불교 중앙총부에 둔다.

제2장 회원과 기금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입행하는 자를 말한다.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5조 (회원) 회원은 1) 동참 2) 선근 3) 보은 4) 공덕 5) 원력 6) 무등의 별을 두고 형편에 따라 일시 가입 또는 분납할 수 있다. 단 회원별 기준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예우) 1. 회원에게는 그 공적과 등급에 따라 표창과 대우를 행한다. 2. 원력회원 이상의 회원에게는 결의에 따라 장학금의 명칭을 별도 부여할 수 있으며 명예 운영위원으로 예우한다.

제7조 (기금 및 운용) 본 회의 기금은 장학회원의 회사금으로써 조성하며 그 운용은 기금의 이득금으로 한다.

제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 3. 상임운영위원 1인 4. 운영위원 20~30인 이내 5. 감사 2인

제10조 (임원선출) 1. 운영위원과 감사는 원의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운영위원은 교육부장이 이에 당한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정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3조 (회의)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임무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승인절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교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5장 부　　칙

제17조 (정관개정) 본 정관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시행) 본 정관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법은사업회

가. 창　　립

법은사업회는 원기47년(1962) 4월 26일 재생의세의 원동력이 될 교역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보건·요양사업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원기45년(1960) 9월 24일(음 팔월 초나흘) 회갑을 맞이하신 정산종법사께서 회갑행사에 대

한 일체의 의식절차를 금하게 하시고, 인사라도 표하고자 하는 동지들의 현금을 수합, 특지로 조성된 기본자금으로 설립의 효시가 되었다. 창립유공인으로는 박성림, 추로운, 나용선, 문동현, 김일덕행, 임제안, 김명수, 한보운, 이일정, 정응선, 이양인, 서인석, 최법용, 유영근, 송도영, 황정신행, 이건세, 신대명화, 김광준, 고정진, 최원혜행, 변중선 등이었다.

나. 조직과 현황

1) 조 직

회장 1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 운영위원 20~30인 및 감사 2인으로 구성되며 공익부장은 당연직 상임운영위원이 된다.

2) 현 황

창립당시 회원은 1,568(남159, 여1,409) 자산은 1,488,510원(동산)이었으나 원기72년(1987) 9월 30일 현재 동산 73,049,[illegible]0원 부동산 447,752,000원으로 420,801,000원의 자산 규모이며 회원수도 6,453명(남1,325, 여5,128)이다. 목적사업을 위하여 투자설립한 북일원광한의원과 대구원광한의원이 있으며, 기금활용을 위하여 전(농장), 답(논), 건물(점포), 버스매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다. 활 동

전무출신의 요양 및 치료를 위하여 설립한 이래 오늘까지(원기46~72년) 3,569명(평균 연인원 132명)의 교역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전문요양시설인 불목요양원, 남자요양원, 원평요양원을 개원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예방접종과 각종 검진(결핵·간염 등) 실시로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요양비 전담제 실시로 보다 많은 교역자가 부담없이 요양·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날로 늘어나는 환자의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평생회원 모집 등으로 기금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 연 혁

발 족	45. 9.24	정산종법사의 뜻을 받들어 발족 원기45년 9월 24일로서 회갑을 맞이하시는 정산종법사께서는 사무당국에 그 행사에 대한 일체의 허례낭비를 폐지케 하시고 정분으로 기어이 다소의 인사라도 표하고자 하는 동지가 있다면 이를 현금으로 수합하여 교단의 당면과제로 나의 숙원인 요양대책의 일부라도 마련했으면 하시는 뜻을 받들어 총 지부 기관의 뜻있는 동지들의 성금 1,488,510원이 본 재단의 기금이 된 것이며 정산종법사의 은혜를 깊이 기념하기 위하여 법은재단이라 이름하였다.
기 금 투 자	46	동화병원에 기금투자 원기46년 교단의 유일한 의료기관이었던 북일면 신용리 소재 동화병원이 운영난에 봉착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시 중앙동에 옮기고 교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법은재단 기금으로서 운영난의 어려움을 해소 시켰다.
제정및선출	46. 5.10	정관제정 및 운영위원회 발족 원기46년 5월 10일 제11회 정기위원회에서 법은재단 정관 3조에 의거 운영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결정된 바 박장식, 박광전, 조회석, 이동진화, 송원철씨였다.
협 조	47	원여상 고교에 협조 원기47년 원여상이 원고로부터 별립하는데 있어 교사대책이 막연할 즈음 임시교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병원정리시 회수된 850,000원을 저리로 대여하여 원여상의 기초가 되게 하다.
발 족	47. 4	정식 법은재단 발족
후원회발족	52. 7	법은재단 후원회 발족 고정된 재단의 기금만으로서는 발전하는 교세에 따라 불어나는 교역자의 요양대책을 감당할 수 없는 실무진의 고충끝에 재단 후원의 동지들을 구하는 중 원기52년 7월 변중선의 적극 협력으로 각지의 발기인 23명에 의해 후원재단이 발기되었다.
정 관 공 포	52.10	법은회 정관공포 원기52년 법은재단 후원회(법은회) 정관을 제정 공포했다.
총 회 개 최	53. 3.26	법은회 발기총회 및 제 1회 창립총회 개최 원기53년 3월 26일 총부 종법원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 회의에서는 임시 의장 변중선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운영위원회발족	35. 4	운영위원회 발족 원기53년 4월 원의회에서 법은회 정관 제7조에 의거 운영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 바 회장 : 변중선, 위원 : 박광전·정광훈·오종태·양도신·김영신·이경순·서대인·정성숙·송원철·최법용·문동현·유영근·송달준, 부회장 : 황도영, 감사 : 이공주. 이공전
혜 택	53.	원기46년 재단 발족이래 그에 이득금은 요양자 치료비에 충당하였던 바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은 170명이었다.
정 기 총 회	54. 3	제 2회 법은회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중요안건 1)기금조성에 관한 건 2)의료원개설의 건 3)법은회예산심의
〃	55. 3	제3회 법은회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중요안건 1)예산 결산심의 2)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건 3)법은회 기금을 법은 재단기금으로 통합하기로 결의되어 법은회 운영위원회가 법은재단 이사회로 개칭
정기총회개최	56. 4	제 4회 법은회 정기총회 개최 전회의 결의에 따라 법은회를 해체하고 현 위원들은 임시 이사로 위임하여 임시 이사회가 구성 임시의장에 송원철교무 선정 재단 정관 및 재단이사 선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지상통보하기로 하였다.
이 사 회 개 최	56. 7	제 1회 법은재단 이사회 개최 제 4회 법은회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상임위원에 의해 새로 선임된 법은재단 이사회는 이사 18명과 감사 2명, 이사장 : 변중선, 이사 : 박장식·문동현·나철증·정광훈·박광전·서대인·송원철·송달준·오철환·정성숙·송자명·양도신·오종태·공덕종·최법룡·황도영·최용선, 감사 : 이경순·이공전
이 사 회 개 최	57. 3	제2회 법은재단 이사회 개최 회의내용 1) 57년도 예산결산심의 2) 기금확보와 운영문제 3) 동화병원재단에서 인수하는 문제는 두고 연구
〃	58. 3.	제 3회 법은재단 이사회 개최 회의내용 1) 58년도 예산결산 심의 2) 기금확보와 운영문제에 대하여 논의 3) 이경순감사 사임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으며 원의회에서 다시 감사를 선임하도록 위임
감 사 선 임	58. 5.10	원기58년 3월 29일 법은재단 이사회에서 감사 이경순교무 사임으로 인하여 원기58년 5월 10일 제94회 원의회에서 사표수리 이병은교무 감사선임

이사회개최	59. 3	제 5회 법은재단 이사회 개최. 회의내용 1) 59년도 예산, 결산심의 2) 정관 개정에 대한 문제 3) 동화병원 인수문제 4) 법은재단 정관 12조에 의거 전위원 유임하되 최용선 황도영이사 사면, 새이사 이경순, 김인용, 김성학, 고정전, 김자안 선정 5) 제2차 법은회원 시상자 선정문제 6) 기금운영 및 확보문제
영산농원매입	59.10.31	백수면 길용리 2－14에 답 18,000평을 매입하다
동화병원개원	60. 5.19	제 7회 법은 재단 이사회에서 휴원중인 동화병원을 원대와 공공투자로 개원키로 하다.
정관개정	61. 3.30	제 8회 법은재단 이사회에서 정관을 회칙으로 이사를 운영위원으로 개정한다.
건축비보조	61. 6.30	신축요양원 건축비로 47만원을 보조하고 구요양원을 법은재단에서 관리 운영키로 하다
개원	61.11.25	대구시 중구 남성로 8－3(약정골목)에 대지 29평 건평을 3천만을(법은재단 1천8백 후생사업회 1천2백)드려 개원하다.
제주농장매입	61. 2. 1	제주도 서귀포읍 서홍리 1744－1에 밀감과수원(전) 1,000평을 매입하다. 또한 종법사께서 예비교역자 요양 몫으로 밀감 과수원 200평을 하사해 주셨다.
매입	63. 1.12	양방병원 신축부지 매입 이리시 중앙동 3가 7－68구 대동여관 대지 201평 건평 94평을 5천만원에 매입하다
불목요양원개척	65. 5.17	불목요양원 개척 그동안 방치된 완도 불목리 소남농장에 총 공사비 503,650원을 투자하여 가옥수리를 마치고 소산 황청원선생과 중산 이호준선생이 요양원 관리차 주재하다.
운영위원회발족	65.11.23	제14차 법은사업회 운영위원회 개최 회의내용 1) 변증선회장의 열반으로 인하여 조대진씨가 회장으로 선출되다. 2) 65년도 결산과 66년도 예산심의 3)완도 요양원 신축 승인
준공	66. 6.30	완도 요양원 건물 준공(건평 22평 공사비 900만원).
운영위원회개최	66. 7. 3	제15차 법은사업회 운영위원회 개최 회의내용 회의내용 1) 65년도 결산승인 2) 대구 원광한의원 투자승인
준공	67. 5.30	완도 요양원 건물준공(건평 56평, 2천 8백)
운영위원회개최	67.11	제 16차 법은사업회 운영위원회 개최 회의내용 1) 66년도 결산승인 2) 67년도 예산승인

구 입	68. 6. 4	법은사업회장 조대진회장의 회사로 환자수송을 위하여 봉고차 구입 750만원
검 사	68. 6.17~7.25	5급 교무훈련과 기관교무 훈련시 2회에 걸쳐 간염검사를 실시(34명)
개 원	68. 6.17	이리시 신동 280-5번지 대지 169평 건평 60평 되는 건물 1,950만원에 매입하여 남자요양원 개원
검 진	68.10.30	추계 교무 훈련시 150명을 대상으로 X-Ray검진
회 의	68.11. 6	제 18차 법은사업회 운영위원회 발족 회의내용 1) 67년도 결산승인 2) 69년도 예산승인 3) 회장선출(조대진)
실 시	69. 1	교역자 요양비 전담제 실시
개 정	69. 4. 3	제 9회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무출신 요양규정 개정
신 축	69. 4.20	북일원광한의원 앞 점포신축 (건평 135평)
접 종	69. 5.11, 3.25	총부직원 간염 예방 접종 실시
준 공	69. 8.16	북일원광한의원 앞 점포 준공
검 진	69. 6.23	5급 교역자 대상으로 X-Ray 검진(수혜자 100명)
증 축 (기 공)	69.10.15	북일원광한의원앞 2,3층 증축 기공함(건평 143평)
회 의	69.11. 6	제 19차 운영위원회 개최 회의내용 1) 결산승인(68년도) 2) 70년도 예산승인
신 축 기 공	70. 8.12	이리시 신룡동 산 50번지에 건평 150평 2층 스라브를 신축중임 (공사비 1억1천만원)
건 물 확 보	70. 8.25	종로교당 이철원회장의 소유 원평소재 대지 300평 건물 1동을 법은사업회에서 회사받아 420만원에 수리 원평요양원으로 활용하기로 함.
준 공	71. 2.13	이리시 신룡동 326-6번지에 신축하던 중앙요양원이 준공되므로 입주 및 봉불식을 가짐(건평 : 148평, 공사비 1억 1천만원).
영구회원모집	71. 5	법은사업회 기금확보를 위하여 1만명 영구회원 모집 운동을 전개함(목표액 : 연 1억원).
총부구내양호실설치운영	72. 3. 6	날로 증가하는 환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절감하고 환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예방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총부구내에 양호실을 설치운영함
버 스 구 입	72. 4.15	법은기금 활동방안의 일환으로 덕성여객(논산군 시내버스) 1대를 구입하여 운영함(구입금액 : 44,350,000원).

마. 역대이사진 및 임원

번호	직 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운영위원	朴 將 植	男	1911. 1. 9	47～64	
	〃	朴 光 田	〃	1915. 3. 23	〃	
	〃	趙 曉 錫	〃	1909. 11. 7	47～52	
	〃	李 東 震 華	女	1893. 5. 5	〃	
	〃	宋 圓 徹	〃	1926. 2. 27	47～64	
	회 장	邊 重 船	男		53～64	
	부 회 장	黃 道 永	〃		53～55	재 가
	감 사	李 共 珠	〃	1896. 12. 23	〃	
	〃	李 空 田	〃	1927. 3. 24	53～57	
	〃	李 敬 順	女	1917. 3. 15	56～57	
	운영위원	文 東 賢	男	1909. 2. 27	53～64	서울교당
	〃	成 丁 哲	〃	1902. 11. 21	53～55	
	〃	丁 光 薰	〃	1917. 8. 30	53～64	
	〃	金 中 默	〃	1920. 6. 22	53～55	
	〃	柳 永 根	〃	1919.	〃	재 가
	〃	崔 法, 龍	〃		53～64	〃
	〃	宋 道 永	〃	1913.	53～55	〃
	〃	金 光 準	〃		〃	〃
	〃	吳 宗 泰	女	1918. 11. 24	53～64	
	〃	梁 道 信	〃	1914. 12. 2	〃	
	〃	金 永 信	〃	1918. 8. 2	53～55	
	〃	李 敬 順	〃	1908. 2. 6	53～55,58～64	
	〃	徐 大 仁	〃	1917. 3. 15	53～64	
	〃	丁 盛 熟	〃	1914. 12. 2	〃	
	〃	宋 達 俊	〃	1922. 9. 5	〃	
	〃	曺 專 權	〃	1913. 1. 3	53～55	
	〃	朴 恩 燮	〃	1909. 2. 3	〃	
	〃	尹 周 現	〃	1924. 5. 29	〃	
	〃	羅 喆 重	男	1924.	56～57	정주교당
	〃	吳 喆 煥	〃	1913. 2. 10	56～64	군산교당
	〃	孔 德 宗	〃	1918. 3. 7	〃	재 가
	〃	黃 道 永	〃		〃	〃
	〃	宋 慈 明	女	1926. 9. 6	56～57	

	운영위원	崔 容 善	女		56~64	재 가
	〃	李 空 田	男	1927. 3.24	58~70	
	〃	金 仁 龍	〃	1922.10.16	58~64	
	〃	金 聖 學	〃		〃	재 가
	〃	高 井 振	〃	1917. 5.24	〃	〃
	〃	金 允 中	〃	1927.12. 7	58~67	
	〃	吳 曠 圓	女	1931.12.20	58~64	
	감 사	羅 喆 重	男		〃	재 가
	〃	李 炳 恩	〃	1925. 4. 9	〃	
	회 장	趙 大 震	〃		65~	재 가
	감 사	朴 濟 權	女	1925. 8. 7	65~70	
	〃	丁 道 允	男	1933. 5.15	65~70	
	운영위원	金 道 光	〃		65~67	재 가
	〃	金 聖 局	〃		65~70	〃
	〃	金 正 勇	〃	1923.11. 1	65~	
	〃	金 仁 濟	〃		65~67	재 가
	〃	高 井 振	〃		65~70	〃
	〃	羅 喆 重	〃	1917. 5.24	65~	〃
	〃	朴 道 廣	〃		65~70	〃
	〃	吳 利 均	〃		65~67	〃
	〃	吳 聖 洙	〃		65~	
	〃	吳 德 天	〃	1934.11.20	〃	재 가
	〃	尹 忠 田	〃		〃	〃
	〃	李 建 春	〃		〃	
	〃	曺 道 圓	〃	1920.12.12	65~70	재 가
	〃	金 敬 心 月	〃		〃	〃
	〃	金 理 玄	〃	1930. 8.28	65~67	
	〃	高 性 容	女		〃	재 가
	〃	朴 安 貞	〃		〃	〃
	〃	白 仁 哲	〃		65~	〃
	〃	宋 靈 智	〃	1932.10.10	〃	
	〃	梁 慧 經	〃	1930. 4.30	65~67,70~	
	〃	吳 曠 圓	〃	1931.12.20	65~	
	〃	李 聖 信	〃	1922.12. 1	〃	
	〃	鄭 眞 淑	〃	1920.10. 4	65~70	
	〃	李 普 圓	男	1934. 9.13	68~	

	운영위원	洪 正 德	男		68~70	재 가
	〃	朴 性 敬	女	1929. 2.27	〃	
	〃	白 漢 明	〃	1927. 6.13	68~	재 가
	감 사	金 聖 現	男	1938. 3. 1	70~	
	〃	宋 慧 聖	〃	1932.11. 8	〃	
	운영위원	張 仁 中	〃	1927. 6.12	〃	
	〃	牟 相 峻	〃	1923.11.27	〃	
	〃	高 文 起	〃		〃	재 가
	〃	吳 海 仁	〃	1932.12. 2	〃	
	〃	洪 正 觀	〃	1916. 2.21	〃	재 가
	〃	金 明 中	女		70~	〃
	〃	朴 成 席	〃	1934. 1. 8	70~	
	〃	丁 慶 浩	〃	1925.12.24	70~	
	〃	辛 濟 根	〃	1923.12.29	70~	
	〃	朴 圓 錫	〃	1941. 7.22	70~	
	〃	李 明 觀	〃		70~	
	〃	朴 義 俊	〃		70~	재 가
	〃	辛 敬 蘭	〃		70~	〃
	〃	朴 利 觀	〃		70~	〃
	〃	徐 仁 觀	〃		70~	〃
	〃	崔 恩 珠	〃		70~	〃
	〃	宋 主 性	〃		70~	〃
	〃	金 善 道 行	〃		70~	〃

바. 연도별 회원증가 현황

연 도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회원수	107	75	68	125	166	135	522	119	127	230
연 도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회원수	134	219	173	158	170	113	235	106	2,626	1,012

사. 연도별 수입지출 내력

연 도	수 입	지 출	연 도	수 입	지 출
48	541,254	220,510	61	22,595,765	9,799,277
49	744,730	349,277	62	38,751,846	9,735,055
50	958,749	480,718	63	37,670,136	10,573,081
51	1,155,855	621,360	64	49,078,921	8,833,207
52	2,565,330	916,323	65	52,202,807	16,259,283
53	6,085,025	877,454	66	61,018,131	39,591,064
54	9,936,727	1,483,746	67	136,305,780	70,266,571
55	14,937,673	5,708,435	68	60,869,902	60,011,975
56	13,283,130	1,943,050	69	75,705,507	55,608,907
57	2,969,159	1,344,302	70	70,855,671	75,151,200
58	4,461,788	1,771,411	71	113,685,900	58,962,462
59	15,299,775	2,156,670	72	115,326,011	78,086,080
60	2,990,576	4,463,597			

아. 회원중 포상자 내역

〈종법사상 포상자〉

변중선, 조대진, 고성용, 김서진

〈사업회장 포상자〉

박정완, 이상운, 공덕종, 박정의행, 송예성, 백한명, 이정심화, 조정명, 정도심, 김진관, 서명근, 손원섭, 박도강, 윤기도, 조경청, 박윤성, 전덕업화, 한제중화, 박승은, 백인철, 김학기, 김견성화, 변성원, 강인수, 박도경, 김경심월, 김법용심, 윤충전, 송덕전, 이경중, 장구품화, 김용훈, 이종빈, 김묘정화, 김인용, 이정화, 정진숙, 양법관, 김도영화, 이성신, 김명덕, 주원심, 김현생화, 양남근, 임제안, 강호성, 김일상원, 송도윤, 윤자혜, 김덕암, 박철성, 정성숙, 이용국, 조순열, 김응자화

자. 법은사업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사업회는 원불교 법은사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사업회는 제생의세의 원동력이 될 교역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보건 요양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금) 본 사업회는 원기46년 정산종법사의 특지로 조성된 기본자금과 그후 법은회원의 성금으로 조성한다.

제4조 (회원) 본 사업회의 회원은 본 사업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칙의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임무를 이행한자를 말한다.

제5조 (회원종별) 회원은 동참회원, 선근회원, 보은회원, 공덕회원, 원력회원, 무등회원의 6종별을 두며 회원종별 기준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회원가입 방법) 가입방법은 일시 불입제와 분납제를 두며 분납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각자의 실정에 따라 월별 혹은 연별로 분납한다.

제7조 (기금) 본 사업회의 기금은 교단의 역사와 더불어 불멸의 기본자금이 되게 하며 그 이익금만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본 사업회를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승인)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은 교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조직) 운영위원회는 20명이상 3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조직하며 2명의 감사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을 선거하여 의장이 되게하며 공익부장은 상임운영위원이 된다.

제12조 (운영위원과 감사선임) 운영위원과 감사는 원의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임기) 운영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 (예우) 회원은 그 공적과 등급에 따라 표창과 대우를 하고 원력회원 이상은 명예 운영위원으로 예우한다.

제15조 (회의) 운영위원회 정기 회의는 매년 11월중에 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개정) 이 회칙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에 준한다.

제18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교화사업회

가. 창 립

교화사업회는 원기56년(1971) 7월 20일 계획성있고 적극적인 교화로 평화로운 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해외교화 개척, 교당설립 지원, 훈련기구 운영, 교서·교재 출판 등 교화사업과 포교활동을 후원하기 위하여 창립하였다.

창립유공인은 오철환, 이의성, 권도인, 김경원, 최기원, 김성학, 박영수 등이었다.

나. 조직과 현황

회장 1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 운영위원 15~30인 및 감사 2인과 고문 약간인으로 구성되며 교화부장은 당연직 상임운영위원이 된다.

창립당시 회원은 304명으로 자산은 2,660,898원이었으나 원기72년(1987) 9월 30일 현재 동산 20,000,000원, 부동산 임야 5,731평 대지 61.8평 밭 480평 건물 21,184평을 합한 총 자산 규모는 106,515,694원이며 회원수도 3,715명이다. 원기60년(1975) 12월 3일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 설립한 대전보화당과 원기62년(1977) 8월 11일에 매입한 회산농장이 있다.

다. 활 동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도덕으로 천하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요, 이 일은 곧 대종사님의 일원대도를 널리 펴서 교화하는 것」이라 하신 대산종법사의 창립이사회 치사 말씀과 창립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카세트 성가 합창집, 입체낭독 대종경 카세트, 어린이용 정전·성가, 청소년 교재개발, 새 성가 편수 등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위한 교재 개발작업에 힘쓰고 있으며, 정책교당 보조, 유아 교육기관 설립보조, 대학생연합회 지원. 교화연구소 지원 등을 통한 교화사업 지원강화와 교전보내기 운동 전개로 교화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교화사업회 설립 취지문

동방에 새 빛이 밝았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 인류 정신개벽이 시급함을 외치시며 일원대도의 횃불을 드신지 반백년, 불안과 혼돈에서 허덕이는 온 세계 인류는 새 시대의 새 생명, 새 빛을 갈망하고 있으며 교단 반백년사업은 국내에서의 결실과 아울러 세계에로의 발돋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단의 근본사업이 무엇이며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바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 세계적으로 진리(도덕)에 바탕하고 사실(과학)에 입각한 정신 재건과 삶의 표준이 확립되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 맨주먹으로 외치거나 자연에만 맡겨버릴 수는 없습니다.

보다 계획성있고 적극적인 교화로 이 세상 도처에 교당을 설립하고 고통에 쌓인 전 생령을 정법으로 훈련하여 하루 속히 평화롭고 행복한 낙원을 이룩하자는 것이 뜻있는 이의 염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기로 하면 무엇보다 해외포교개척, 교당설립지원, 훈련기구운영, 교서교재출판, 선전, 예술, 교구 등 교화사업과 포교활동의 후원을 위한 재단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교단내외의 절실한 요청에 부응하여 이제 교화재단설립의 기치를 높이 올리는 바이오니 자신과 사회 국가와 전세계 인류의 장래를 염려하시는 모든 동지들은 이에 적극 합력하시와 불멸의 공덕탑을 다 함께 쌓아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마. 교화재단 연혁

51. 6. 13	第 11回 임시수위단회에 교화자금조성을 상정한 바 교정원장에게 일임하여 자본계획 조성토록 승인하였다.
52. 7. 5	교화자금 조성계획을 세우고 교복제작판매를 시작하다.
52. 11. 7	교화자금 성금모집운동 시작
53. 11	임시교정위원회에서 교화재단 발족을 승인받다.
54. 5. 5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교화재단 기성회 정관 초안 통과하다.
56. 5. 15	원의회에서 교화재단정관으로 재조정 통과하다.
56. 7. 20	제54회 수위단회에서 교화재단 발족에 관한 정관을 정식 승인받다.
56. 11. 20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유공회원 9명, 특별회원 59명, 보통회원 182명 찬조회원 54명의 회원을 확보하다.
58. 12. 26	제110회 원의회에서 교화사업회 이사와 감사를 선정하다.
59. 1. 6	교화사업회 이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이사장－오철환
60. 12. 3	대전보화당 개설

62. 3. 30 교화사업회 회원별 시상식

62. 6. 10 제 6회 교화사업회 운영위원회 개최 1)오철환 회장유임 2)정관개정 대전교당 법당

62. 8. 11 제주 밀감농장 매입.(제주도 남제주군 3,080평)

63. 4. 23 대전보화당 전소

63. 5. 21 제 8회 운영위원회 개최 : 대전보화당 화재수습건 교화연구소

63. 12. 12 대전 원광한의원 낙성.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222평

65. 11 카세트「성가 합창집」2조 독창집 1조 입체낭독 대종경 3조 총 6조 제작

66. 1 원불교 어린이용 정전 및 성가 어린이노래 발행 5,000부

66. 2. 1 인류에게「교전 읽히기」운동전개

66. 9. 1 교전읽히기운동사업 일환으로 전서가격을 60% 인하 염가 보급

67. 7. 1 교전 17,000부 무료 보급

68. 2. 21 교화사업회 운영위원 개선

68. 4. 1 대각개교절 교서보내기(교전 12,000부)

68. 11. 6 제17회 정기운영위원회 개최
영산성지 논은 영산 성지장학회로 회사하기로 함.

69. 4 대각개교절 기념 교서보내기 운동 일환으로 교전 : 5,400권, 소교전 : 8,559권, 대전서 : 774권, 요람 : 5,608권, 소전서 : 50권, 기타 95권 보급

70. 4 대각개교절 기념 교서보내기 운동 일환으로 교서보급. 대전서 : 136권, 소전서 : 42, 교서 : 1,013, 교전 : 5,460, 소교전 : 4,694, 정다운 친구 : 121, 입문서 I : 2084, 입문서 II : 515, 기타 289.

70. 12 교화사업회 회원중 공덕회원 이상된 분께 회원패 증정
공덕회원 : 채무성화(통영), 황성천(서면), 박화선(수원), 금삼성(반포), 김서경(종로), 김경신(종로), 박정의행(종로), 고성룡(종로), 남하원행(종로), 한자성(종로), 최현보(동래), 백상범(동전주)
개척회원 : 최준명(신촌), 김용복(신촌), 조봉경(신촌), 정동명(신촌), 이효성(신촌), 정세현(신촌), 홍제훈(신촌), 유대명화(신촌), 조응담(신촌), 유청정월(신촌), 송덕전(개포), 선유회(서울), 이정인행(영등포), 이법성(서울), 조성제(동대전), 김혜정(동대전)

72. 4 대각개교절 기념 교전보내기 운동 총 15,436권 보냄

바. 역대이사 및 위원

번호	직 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고
	이 사 장	吳 喆 煥	男	1912. 3.10	59~62	군 산
	상 무 이 사	李 廣 淨(建衡)	〃	1936. 9. 1	〃	
	이 사	李 義 聲(鉉兩)	〃	1914.10.11	〃	대 구
	〃	權 道 印	〃	1918.12. 3	〃	송 천
	〃	金 經 圓(弘準)	〃	1920. 3.16	〃	중 구
	〃	朴 和 宣(금순)	女	1924. 5.11	〃	수 원
	〃	金 成 學(青龍)	男	1914. 2.19	〃	재 원
	〃	朴 英 修	〃		〃	대 판
	〃	朴 將 植(天植)	〃	1911. 1. 9	〃	
	〃	金 勤 修(益洙)	〃	1922. 6. 9	〃	
	〃	李 喆 行(喆行)	〃	1928.12.12	〃	
	〃	李 敬 順(慶和)	女	1915. 4.24	〃	
	〃	金 智 玄(智順)	〃	1924. 6. 3	〃	
	〃	梁 慧 經(榮植)	〃	1930. 4. 3	〃	
	〃	梁 道 信(小淑)	〃	1918. 8. 2	〃	
	감 사	田 宗 哲(淳和)	〃	1934.10. 5	59~71	
	〃	金 仁 喆(永千)	男	1934.12. 4	59~65	
	회 장	吳 喆 煥	〃	1912. 3.10	62~71	
	상임운영위원	朴 正 薰(蘿煥)	〃	1934. 7.21	62~68	
	〃	李 喆 行(喆行)	〃	1928.12.12	62~65	
	〃	梁 道 信(小淑)	女	1918. 8. 2	〃	
	〃	金 智 玄(智順)	〃	1924. 6. 3	〃	
	〃	鄭 眞 淑(賢淑)	〃	1920.10. 4	62~65	
	〃	朴 恩 局(永愛)	〃	1923. 1.22	〃	
	〃	李 聖 信(玉禮)	〃	1922.12. 1	〃	
	〃	朴 性 敬(敬順)	〃	1929. 2.27	〃	
	〃	柳 聖 一(順姬)	〃	1928. 7.26	〃	
	〃	金 理 玄(玉禮)	〃	1930. 8.28	〃	
	〃	梁 慧 經(小淑)	〃	1930. 4. 3	〃	
	〃	朴 濟 權(京姬)	〃	1925. 8. 7	〃	
	〃	李 正 恩(正福)	〃	1924.11.27	〃	
	〃	李 義 聲(鉉雨)	男	1914.10.11	〃	대 구
	〃	金 經 圓(弘準)	〃	1920. 3.16	〃	중 구
	〃	朴 一 光	〃		〃	〃
	〃	金 聖 學(青龍)	〃	1914. 2.19	〃	재 원

	상임운영위원	全 八 現	男		62~65	종 로
	〃	崔 俊 明	〃		〃	신 촌
	〃	金 在 百	〃		〃	원 대
	〃	南賀圓行(賀子)	女	1922.11.22	〃	종 로
	〃	姜 德 貞	〃		〃	순 창
	〃	金緣知行(金淳)	〃	1916. 9. 9	〃	대 구
	〃	洪 降 現	〃		62~63	제 기
	〃	田 宗 哲(淳和)	〃	1934.10. 5	〃	
	〃	金 仁 喆(永千)	男	1934.12. 4	〃	
	〃	李 敬 順(慶和)	女	1915. 4.24	63~65	
	〃	李 仁 昌	男		〃	서광주
	〃	金 忠 眞	〃		〃	이 리
	〃	金 敬 信(應淑)	女	1922. 8. 9	〃	종 로
	〃	朴恩施華	〃		〃	대 신
	운 영 위 원	金 允 中(還烈)	男	1927.12. 7	65~68	
	〃	李 喆 行(喆行)	〃	1928.12.12	〃	
	〃	金 仁 龍(判龍)	〃	1922.10.16	65~71	
	〃	金 智 玄(智順)	〃	1924. 6. 3	〃	
	〃	鄭 眞 淑(賢淑)	〃	1920.10. 4	65~68	
	〃	朴 恩 局(永愛)	女	1923. 1.22	〃	
	〃	李 聖 信(玉禮)	〃	1922.12. 1	65~71	
	〃	辛 濟 根(順任)	〃	1923.12.29	65~68	
	〃	柳 聖 一(順姬)	〃	1928. 7.26	65~71	
	〃	朴 性 敬(敬順)	〃	1929. 2.27	65~68	
	〃	李 正 恩(正南)	〃	1924.11.27	65~71	
	운 영 위 원	朴 濟 權(京姬)	女	1925. 8. 7	65~68	
	〃	金 理 玄(玉禮)	〃	1930. 8.28	〃	
	〃	梁 慧 經(榮植)	〃	1920. 4.30	65~	
	〃	李 義 聲(鉉雨)	男	1914.10.11	65~68	대 구
	〃	金 成 學(靑龍)	〃	1914. 2. 9	65~71	제 원
	〃	金 經 圓(弘準)	〃	1920. 3.16	65~68	중 구
	〃	崔 俊 明	〃		〃	신 촌
	〃	李 仁 昌	〃		〃	서광주
	〃	金 忠 眞	〃		65~72	이 리
	〃	朴恩施華	〃		65~	대 신
	〃	金緣知行(金淳)	〃	1916. 9. 9	65~68	대 구
	〃	南賀圓行(賀子)	〃	1922.11.22	65~71	종 로
	〃	金 敬 信(應淑)	〃	1922. 8. 9	65~68	종 로
	〃	曺 養 善	〃		65~	부산진

	감 사	李 普 圓(萬宰)	男	1934. 9.13	65~68	
	상임위원	金 理 玄(玉禮)	女	1930. 4. 3	68~71	
	운영위원	朴 正 薰(薩煥)	男	1934. 7.21	68~72	
	〃	李 廣 淨(建衡)	〃	1936. 9. 1	〃	
	〃	徐 大 峻(榮燮)	〃	1935. 5. 9	〃	
	〃	丁 盛 熟(石鎭)	女	1922. 9. 5	68~71	
	〃	黃 圓 滿	男		〃	광 주
	〃	琴 三 省	女		68~72	중 곡
	〃	朴正義行	〃		68~	종 로
	〃	姜 性 仁	〃		68~71	종 로
	〃	朴 和 宣(금순)	〃	1924. 5.11	68~	수 원
	〃	金 裕 源(순이)	〃	1931.10.23	68~	수 원
	감 사	金 法 宗(鍾鎬)	男	1937. 5.15	68~71	
	운영위원	趙 聖 德(泰福)	女	1919.12. 4	〃	삼 덕
	〃	姜浩緣行(善寶)	〃	1921. 5. 9	〃	삼 덕
	〃	蔡茂盛華(次葉)	〃	1923. 4.24	〃	통 영
	〃	丁 中 善(裕善)	〃	1919. 2.29	〃	〃
	〃	金 聖 學	男		〃	제 원
	〃	朴 光 振(吉然)	〃		71~	원 고
	〃	金玄康玉	女		71~	홍 제
	〃	姜浩緣行	〃		71~	삼 덕
	〃	趙 聖 德(泰福)	〃		71~	〃
	〃	蔡茂盛華(次葉)	〃	1924. 4.24	71~	통 영
	〃	丁 中 善(裕善)	〃	1919. 2.29	71~	〃
	운영원원	吳 光 天(秀雄)	男		71~	군 산
	회 장	卓 正 榮(允相)	〃	1932. 5.16	71~	함 열
	운영위원	徐 慶 田(昶烈)	〃	1939.10.15	71~	
	〃	趙 正 勤(年九)	〃	1935.12. 6	71~	
	〃	崔 順 哲(希順)	女	1937. 6. 4	71~	
	감 사	趙 正 中(云記)	男	1938. 1.28	71~	

사. 연도별 회원수

연 도	회 원 수	연 도	회 원 수	연 도	회 원 수	연 도	회 원 수
59	330	62	409	68	1,865	71	3,474
60	344	63	504	69	2,809	72	3,720
61	362	67	1,629	70	3,335		

아. 교화사업회 정관

제1장 목적과 사업

제1조 (목적) 본 사업회는 전 세계를 불은화하고 일체대중을 선법화하여 제생의세하는 교화사업의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본 사업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당설립 개척, 해외교화 개척, 교서교재 출판, 선전, 문화, 예술 등 교화사업을 한다.

제2장 명칭과 주소

제3조 (명칭) 본 사업회는 원불교 교화사업회라 칭한다.

제4조 (사무소) 본 교화사업회 사무소는 중앙총부 교화부내에 둔다.

제3장 회원과 자금

제5조 (회원) 1)사업회의 회원은 본 사업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로 한다. 2)회원은 동참회원, 선근회원, 목련회원, 연화회원, 공덕회원, 보은회원, 원력회원, 개척회원의 별을 둔다.

제6조 (가입방법) 회원가입은 일시납입제, 분납제를 두며, 분납제는 1년내지 2년의 기한을 두고 각자의 실정에 따라서 분납한다.

제7조 (자금) 1)본 사업회 자금은 회원의 가입금과 회사금으로 조성하며

가. 동참회원 : 5,000 이상　　나. 선근회원 : 10,000 이상
다. 목련회원 : 30,000 이상　　라. 연화회원 : 100,000 이상
마. 공덕회원 : 1,000,000 이상　　바. 보은회원 : 10,000,000 이상
사. 준원력회원 : 30,000,000 이상　　아. 원력회원 : 50,000,000 이상
자. 개척회원 : 무연지 개척비로 한다.

2)준 원력회원과 원력회원은 원력에 따라 특수 사업회를 형성하여 길이 해당사업에 활용케 하고 명칭은 따로 하되 본 정관에 준한다. 3)개척회원은 무연지를 개척하여 교화할 수 있는 교당을 건립한 자와 본 사업회 특수 사업을 도맡아 한 자로 본 정관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8조 (자금관리) 사업회의 자금관리 및 사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정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제9조 (회계년도) 본 사업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사업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운영위원 15인 내지 30인 이내(교화부장은 상임운영위원이 된다), 감사 2인, 고문 약간인을 둔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운영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1) 운영위원과 감사는 원의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운영위원과 고문의 직무) 1) 운영위원장은 본 사업회를 대표하고 사업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상임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고문은 본 사업회 업무의 제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장 직무 대행자 지정)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운영위원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사업회의 자금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자금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자금의 예산 결산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8조 (회의) 1) 회의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위원회)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11월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소집)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나 직무대행 운영위원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2)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고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단, 출석운영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21조 (서면회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결의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대할 수 있다. 단, 과반수 운영위원이 정식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정관 변경

제22조 (정관 변경의 결정수) 본 정관은 운영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23조 (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정관효력) 본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5. 후생사업회

가. 창 립

후생사업회는 원기58년(1973) 10월 8일 전무출신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전무출신 전체 회원에게 퇴임후 후생복지금 지급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전무출신의 후생 및 원호·복지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당시 송자명 공익부장의 발의로 전 교정위원의 동의를 얻어 전무출신 후생사업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준비위원으로는 이철행, 이건춘, 김윤중, 정성덕, 조정근, 서경전, 송자명, 백지명 등이었다.

나. 조직과 현황

회장 1인과 상임운영위원 약간인, 그리고 운영위원 9~30인과 감사 3인으로 구성된다.

창립당시 회원은 488명(남185, 여303)으로 자산은 없었으나 원기72년(1987) 9월 30일 현재 동산 65,686,000원 부동산 대지 50.6평 건평 64.4평을 합한 총 자산은 195,567,000원이며 회원수도 1,067(남336, 여731)이 되었다. 원기67년(1982) 3월 13일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설립한 부산원광한의원이 있다.

다. 활 동

전무출신 정년 퇴직자에 한하여 복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원기59~61년까지는 자금을 축적하고 원기62년(1982)부터 복지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라. 후생사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원불교 전무출신 후생 사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전무출신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발족하고 회원에게 퇴임 후 후생복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에 관한 사무는 교정원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전무출신으로 한다.

제5조 (임원 ①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운영위원 40~50인 (회장포함), 3) 상임위원 7~9인 (위원장 포함), 4) 감사 2인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교정원장의 재청으로 원의회에서 선정한다.

④ 상임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총무부장이 이에 당한다.

⑤ 감사는 원의회에서 선출하며 연장자가 수석 감사가 된다.

⑥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위원장이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7조 (회의) ①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 위원회, (2) 상임 위원회

② 운영위원회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중에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8조 1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복지금 지급액 결정 및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4)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중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8조 2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운영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제9조 (집행)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은 교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 감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장한다.

① 재정 집행에 대하여 수시 감사할 사항, ② 전항 미비점의 시정 촉구에 관한 사항, ③ 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제4장 재 정

제1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회사금과 귀속금으로 한다.

제12조 (회비) 회원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한 회비를 연 2회로 분납한다. 단, 교당·기관의 실정에 따라 적절히 분납할 수 있다.

제13조 (회사금 귀속금) 회사금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특지가의 회사한 금품을 말하며 귀속금은 자격을 상실한 회원의 적립금을 말한다.

제5장 복지금

제14조 (복지금 지급) 복지금 지급 대상자는 본 회 회원중 65세 이상으로서 현직에서 퇴임하는 분으로 한다. 단, 65세 미만의 분이라도 사정이 있어 퇴임하신 분에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복지금지급기준) 복지금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운영세칙에 의하여 지급한

다.

제16조 (원로예우) 본 회 발족시 65세 이상의 전무출신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응분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7조 (세칙제정) 본 회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회칙은 원기74년(1989)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이전의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후생사업회 시행세칙

1. 세행세칙

본 세칙은 후생사업회 회칙 17조에 의해서 정한다.

2. 회원가입

전무출신은 반드시 회원이 되어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 비

가)회비는 연부금으로 연 2회 납부한다.

나)회비 정액은 급지와 직급에 따라 부과한다.

급지는 6등급으로 하고 직급은 2등급으로 한다 (1급 : 교무급 이상, 2급 : 부교무급 감원).

〈연 회비 급지별 백미배정표〉

급지 / 직급	사	가	나	다	라	마
1급	1.7말	1.2말	9말	8말	5말	3말
2급	1.1말	9말	8말	7말	3말	2말

다)휴무한 회원에게는 미급지의 회비를 납부하게 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회비 납입을 보류할 수 있다.

라)현금 환산은 당해년도 정부미 2등품 수매가를 적용한다.

4. 운 영

1)기금조성

가)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 나)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특지자의 회사금, 다)자격을 상실한 회원의 귀속금, 라)기타 운영기금

2)기금의 육성

가)사업기금의 육성 방법은 국가 금융기간을 활용하는 방안, 나)생산 기업체에 투자하는 방안, 다)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안 등으로 한다.

3) 기금의 징수나 회계

가)회비 납입기한은 1기분은 6월 말 2기분은 12월 말로한다. 나)납입기한이 1년을 경과할 때는 납입액 1할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회원으로써 퇴속 또는 자격상실 (3년 이상 미불)의 경우에는 본인의 적립한 납입액을 귀속금에 편입한다.

4)복지금 지급방법

①지급방법

가)기금조성 7년후부터 지급한다. 나)지급액 조성은 납입 평균액의 최소한 20년간 원리금을 보장한다. 원리금 환산법은 별도로 정한다.

②지급대상

가)회원으로서 회비를 7년 이상 납입한 자, 나)7년 이내에 퇴임한 회원에게는 납입한 연수에 따라 소정의 특혜금을 지급한다. 다)위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복지금을 필요로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복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액은 정부미 3.5가마로 정한다.

③지급액

가)월 백미 1가마를 현 싯가로 환산하여 지급한다. 나)1기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전무출신 (후생회원이 아닌자 포함)은 특별 대상자로 한다.

특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가급 대상자는 회원 지급액의 50%를 지급한다. ②나급 대상자는 회원 지급액의 30%를 지급한다. ③지급액중 천원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 특별 대상자

가급 : 송달준

나급 : 양경서, 정안심행, 김용식, 이진명, 유귀남, 정형선, 오연수, 이재현, 백옥련화, 박대석, 김광일, 송청진옥.

6. 중앙총부 유지사업회

가. 창 립

중앙총부 유지사업회는 원기61년(1976) 8월 15일 중앙총부 유지 기반을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중앙총부 유지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한지 6~7년 동안 13,000,000원이 확보되었으나 남한강 공사관계로 기금이 지출되어 대책이 없다가 총부유지사업회 발족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논의하던 중 원의회를 거쳐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창립유공인은 이의성이다.

나. 조직과 현황

고문 약간인과 회장 1명, 상임운영위원 1명 그리고 운영위원 15~19명 및 감사 2명으로 구성되며 재무부장은 당연직 상임운영위원이 된다.

창립당시 회원은 19명(남9, 여10)으로 자산은 13,000,000원(동산)이었으나 원기72년(1987) 9월 30일 현재 동산 35,000,000원, 부동산 73,538,000원을 합하여 총 자산은 108,538,000원으로 회원수는 24명(남15, 여9)이며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한 웅포묘지, 왕궁묘지 및 원광상사 등 총 83,538,000원이 투자되었다.

다. 특기사항

원기72년(1987) 11월 6월 제10차 운영위원회에서 몇년전 발족된 원창회가 본 사업회의 목적을 담고 있으므로 유지사업회의 목적을 담고 있으므로 유지사업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일체를 원창회로 이관하기로 하였으며, 원창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로 의결하고 이를 결성하였다.

라. 총부유지 사업회 운영위원

번호	직 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회 장	李 義 聲	男	1914. 10. 11	61. 8.15~	대 구
	운영위원	文 東 賢	〃	1909. 2. 26		서 울
	〃	吳 喆 煥	〃	1912. 3. 10		군 산
	〃	秋 塵 捲	〃	1915. 12. 28		광 주
	〃	金 正 勇	〃	1925. 11. 1		
	회 장	李 喆 行	〃	1928. 10. 16		
	운영위원	金 仁 喆	〃	1934. 12. 4		
	〃	金 載 圓	〃	1948. 1. 24		통 영
	〃	李 建 春	〃	1920. 12. 12		원여중
	〃	金 西 悟	〃	1926. 12. 16		이리보육원
	〃	李 濟 庵	〃			종 로
	〃	金 明 中	〃	1017. 1. 13		서 울
	〃	李 正 和	女	1918. 7. 19		
	〃	梁 道 信	〃	1918. 8. 2		
	〃	朴 恩 局	〃	1923. 1. 22		원 남
	〃	李 聖 信	〃	1924. 12. 1		대 전
	〃	丁 盛 熟	〃	1922. 9. 5		
	〃	朴 性 敬	〃	1928. 1. 11		서 울
	〃	梁 慧 經	〃	1930. 4. 30		부 산 진
	〃	姜 滿 善	〃	1933. 3. 5		제 기

	운영위원	尹 聖 圭	女	1930. 3. 25		정 토 회
	〃	鄭 眞 淑	〃	1920. 10. 4		
	〃	柳 永 仙	〃	1911. 3. 20		대 구
	〃	丁 道 允	男	1933. 5. 15		
	〃	金 明 煥	女			

마. 총부유지사업회 정관

61. 2. 1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원불교 중앙총부 유지사업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와 사무소는 원불교 중앙총부 재무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원불교 중앙총부유지 기반을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앙총부(이하 총부라 한다) 유지를 위한 사업체 운영. 2. 교단유지를 위한 산업기관 육성지원. 3. 기타 교단경제 전반에 걸친 사업

제2장 임원 및 고문

제5조 (임원 및 고문) 본 회는 고문 약간인과 다음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상임운영위원 1인 3.운영위원 15인~19인 4.감사 2인

제6조 (임원선출) 1.운영위원과 감사는 원의회에서 선출한다. 2.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운영위원은 교정원 재무부장이 이에 임한다. 3.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상임운영위원) 상임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 현황을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술할 수 있다.

제12조 (고문) 고문은 본 회의 업무의 제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에 응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본 회의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2.재산조성 및 운영관리 3.본 회의 예산결산 심의 4.회장선출 및 고문위촉 5.정관개정 및 시행세칙 제정 6.본교단 재정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제14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의석이 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3월중에 개회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회 소집) 모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1.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7일전에 의안을 명시하고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증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증한 때와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한다.

제4장 재정과 운영

제17조 (재정) 본 회의 재산 조성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도의 회사금과 교단 각종 타 재단 형성 등을 위한 특별사업의 회사금 중 그 일부(1/10)를 의무적 현금으로써 조성한다.

제18조 (회사금) 본 회의 회사금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및 교도의 회사금을 말한다.

제19조 (관리운영) 본 회의 자금관리 및 사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교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장 부 칙

제21조 (정관변경) 본 정관 개정은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 원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22조 (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시행) 본 정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7. 자선사업회

가. 창　　립

자선사업회는 원기65년(1980) 8월 27일 교단의 3대 사업 목표중의 하나인 자선사업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구 보육원 부지는 자선기관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자선사업에 사용하라는 대산종법사의 특별유시를 받들어 구 보육원 부지 매각금을 자산으로 발족하였다. 창립 유공인은 김서오교무이다.

나. 조직과 현황

회장 1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 그리고 운영위원 15~30인 및 감사 2인으로 구성되며 공익부장은 당연직 상임운영위원이 된다.

창립당시 회원은 없으며 자산은 동산 59,900,000원, 부동산 796평을 합한 379,400,000원이었으나 원기72년(1987) 9월 30일 현재 회원수는 172명(남68, 여104)이며, 자산은 동산 8,270,609원, 부동산 165,833,877원을 합한 174,104,486원의 규모를 이루고 있으며 원기67년(1982) 12월 12일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투자 설립한 군산 원광한의원과 기금활용을 위한 부동산매입 등 기금 축적 및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다. 활　　동

자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자선원·삼정원·노인요양원은 부랑인, 정신질환자,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로써 시설투자 및 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원기66년(1981) 대각개교절기념 무의촌지역 무료진료를 시작한 지 지금까지 총 수혜자는 9,266명에 이르며 이밖에 재해 발생시 구호사업 및 양노원·보육원 등 자선활동과 지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라. 연 혁

발 족	65.	대산종법사의 뜻을 받들어 발족. 구 이리보육원은 자선기관이기때문에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자선사업에 사용하라는 종법사의 특별유시를 받들어 구 보육원부지 매각금을 자산으로 하여 발족하게 되었다.
매 입	65. 6. 7	부동산 매입 1)이리교당 부지매입 이리시 남중동 6-11, 6-36, 6-37번지의 대지 521평을 6천5백만원에 매입
회 의	65. 8.27	제 1회 자선사업회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에서 초대 회장에 김서오교무 선출되다.
매 입	65.11. 4	이리시 남중동 7-8번지의 대지 150평을 2천만원에 매입
매 입	65.12.15	이리시 창인동 1가 152-3번지의 대지 35.3평과 건물 63평을 1억원에 매입
회 의	66. 1.21	제 1회 자선사업회 상임위원회 개최. 회의내용 1)운영위원회 소집의 건 2)유료 양노원 설립의 건 3)행려병자 수용소 설립의 건
회 의	66. 3.11	제 2차 자선사업회 운영위원회 개최 회의내용 1)행려병자 수용소 설립 2)유료 양노원 설립 3)복지사업에 관한 도서구입
무 료 진 료	66. 3.26~4.26	대각개교절 기념 무료진료 실시
효 도 관 광	66. 5.27	효도관광 실시
개 원	66.12. 1	이리자선원 개원
무 료 진 료	67.3.26~4.26	대각개교절 기념 무료진료 실시
개 원	67.12.12	군산 원광한의원 개원
운 영 위 원 회	67.12.12	제 5회 운영위원회 개최 회의내용 1)차입금 상환의 건 2)68년 예산승인의 건 3)자선원 신축의 건
개 원	68. 6.26	이리 자선원 이전
준 공 및 이 전	68.12. 4	자선원을 현 건물로 이전
무 료 진 료	69. 4.25~5.25	대각경축 무료진료 실시
기 공	70. 3. 1	정신 요양원 기공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산 61-1 (건평 150평)

무 료 진 료	70. 4. 7~5.12	대각경축 무료진료 실시 (이리지구 의료인 협의회와 원광의료원, 보화당 연합회)
자 선 원 증 축	70. 4	중앙 보조금 8,400만원으로 2층 숙소 및 부대시설을 확장공사를 시작하여 11월 6일 중축사업이 완공되므로 준공 및 봉불식을 가짐
장수양노원건물보수	70. 5	1,500만원을 드려 건물 보수 및 증축공사에 착수 7월말 완공
중앙수양원신축기공	70. 8.12	이리시 신용동산 50번지에 건평 150평 2층. 스라브를 신축중임(공사비 1억 1천만원)
정 신 요 양 원 준 공	70.10.17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 산 61-1번지에 신축하던 정신요양원을 준공하다.
무 료 진 료	71. 4.30	대각개교절 기념 무료진료를 교단 산하 의료기관과 이리지구 의료인 협의회에서 실시함 (수혜자 1천여명).
삼 정 원 증 축	71. 3.15~7.30	익산군 금마면 서고도리에 소재한 삼정원은 숙소와 법당 사무실 등 225평을 증축함(공사비 1억 1천 2백).
원광노인요양원기공	71. 8.25	이리시 신용동 235-1번지에 원광노인요양원 신축 기공식을 가짐(건평 250평 공사비 1억 8천만원)
중앙수양원증축기공	71. 8.15	이리시 신용동 280-6번지에 건평 175평을 증축 기공함 (공사비 1억 9천 2백만원)
원광노인요양원준공	71.12.23	이리시 신용동 280-6번지에 중앙수양원 증축, 준공
대각개교절기념무료진료	72. 5	원기72년도 대각개교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단산하 의료기관과 이리지구 의료인 협의회에서 4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무료진료를 실시함. (진료장소 : 11개소, 참가기관 7, 소요예산 : 천이백십만원, 수혜자 : 1,958명)
수 재 의 연 금 전 달	72. 8	지난 7월에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수재민을 돕기위하여, 전주 KBS방송국과 수해지역에 직접 의연금품을 전달함.

마. 자선 사업회 운영위원

번호	직 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회 장	洪 正 觀	男			상주
	위 원	金 仁 龍(判龍)	〃	1922.10.16		
	〃	朴 大 成(星載)	〃	1925. 2.24		
	〃	양 승 원	〃			
	〃	李 修 悟(在福)	〃	1929. 4.17		
	감 사	鄭 圓 一(均三)	〃	1939. 2.15		
	〃	吳 聖 洙(聖培)	〃	1934.11.20		
	위 원	吳 聽 圓(男苗)	女	1931.12.20		
	〃	鄭 性 德(弼煥)	男	1930. 8.20		
	〃	李 春 一	〃			
	〃	金 忠 玄(榮順)	女	1940.11.20		
	〃	沈 道 正(大變)	男	1936.11.28		
	〃	崔 俊 明	〃			
	〃	李 聖 淵(順植)	女	1954. 6.13		
	〃	李 百 徹(致炯)	男	1927. 4. 9		
	〃	姜 雲 祥(東日)	〃	1934. 8.24		
	〃	韓 濟 船(洋洙)	女	1935.10.30		
	〃	崔 康 然(金佐)	〃	1942. 5. 2		
	〃	柳 香 元(香)	〃	1935. 1.19		
	〃	柳 正 完(珍玉)	男	1930.11.29		
	〃	李 大 光(榮植)	〃	1937. 2.28		
	〃	朴 鳳 喜	女			
	〃	朴 龍 蓮	〃			
	〃	朴 恩 燮(玉南)	〃	1924. 5.29		
	〃	金 周 暎(太欽)	男	1947. 7.13		
	〃	黃 英 奎(淑熙)	女	1941. 7.23		
	〃	柳 聖 一(順姬)	〃	1928. 7.26		
	〃	曺 正 濟	男			
	〃	朴 哲 性	〃			
	〃	林 允 徹(海龍)	〃	1935.12.15		
	〃	金 允 中(還烈)	〃	1927.12. 7		
	〃	金 西 悟(書男)	〃	1926.12.16		

〈자선사업회 회원 연도별 회원수〉

연 도	신 임 수	누 계	연 도	신 임 수	누 계
67.	8	8	70.	154	166
68.	2	10	71.	2	171
69.	2	12	72.	2	173

바. 자선사업회 회칙

〈65. 8.27 제정〉

제1조 (명칭) 본 사업회는 원불교 자선사업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교단의 3대사업목표중의 하나인 자선사업을 위하여 발족하고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중앙총부 공익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양노사업. 2)보육사업. 3)의료사업. 4)사회교육사업. 5)기타 복지사업

제5조 (회원)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회원이라 한다.

제6조 (회원종별) 본 회의 회원은 동참회원·선근회원·보은회원·공덕회원·원력회원·무등회원등 6종별을 두며 회원 종별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회원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일시 불일제와 분납제를 두며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각자의 실정에 따라 월별 혹은 연별로 분납한다.

제8조 (기금) 본 회의 기금은 보육원 자선기금과 회원의 회비 및 회사금으로 하고 이 기금은 교단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한 기본자금이 되게 하며 그 이득금만을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본 회를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위원회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사업계획 수립. 2)회장 선출. 3)예산 결산 심의. 4)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 5)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기타 중요사항

제11조 (조직) 운영위원회는 15명이상 3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조직하며 2명의 감사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을 선거하여 의장이 되게하며 공익부장은 상임운영위원이 된다.

제12조 (승인)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은 교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13조 (운영위원과 감사선임) 운영위원과 감사는 원의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임기) 운영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정기 중앙교의회시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개정) 본 회칙은 재적위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하며 원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7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8. 해산국제 육영사업회

가. 창 립

해산국제육영사업회는 원기68년(1983) 8월 19일 국제교화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해산 오이균 사직교당 교도회장이 과천에 있는 개인 소유농지 약 2,500평을 회사하자 대산종법사는 이를 장차 해외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가칭 해산해외장학사업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회사한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법인에 이전함과 아울러 수익기관으로 영등포보화당을 설립토록 하명하셨다. 그후 제5회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산국제육영사업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본 사업회의 발족을 승인 결의하고 운영위원과 감사를 선임하셨다. 창립당시 유공인은 오이균, 이제성 등이었다.

나. 조직과 현황

회장 1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 운영위원 8~15인 그리고 감사 2인 및 고문 약간인이며 교육부장은 당연직 상임운영위원이 된다.

창립당시 회원은 없으며, 자산은 동산 89,472,080원, 부동산 약 500평이었으나 원기72년(1987) 12월 31 현재 동산 39,833,698원, 부동산 199,958,940원을 합하여 239,792,638원의 영등포보화당 자산 규모와 대지 500평을 소유하고 있다.

다. 운 영 위 원

번호	직 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시무년월일	재가출가별
1	운영위원	金 經 圓	男	1920. 3.16		69. 1	재 가
2	〃	吳 利 均	〃	1918. 8.22			재 가
3	〃	金 仁 喆	〃	1934.12. 4	총 부		출 가
4	〃	朴 性 敬	〃	1928. 1.11	대전시중구선화1동354		〃
5	〃	朴 恩 局	〃	1923. 1.22			〃
6	〃	朴 圓 根	〃	1936. 4.29	종로구 종로 5가 33-1		〃
7	〃	朴 濟 現	〃	1932. 2. 4	훈 련 원		〃
8	〃	柳 正 完	〃	1930.11.29	이리시 신용동 235-1		〃
9	〃	李 廣 淨	〃	1936. 9. 2	종로구 낙원동 58-9		〃
10	〃	李 濟 性	〃	1935. 5. 7			〃

11	이 사	李 宗 淑	男	1944. 8.21			출 가
12	〃	李 喆 行	〃	1928.10.16	동작구 흑석동 1-3		〃
13	〃	全 八 根	女	1927. 3. 2			〃
14	감 사	徐 聖 範	男	1939. 8.24			〃
15	〃	太 德 權	〃	1938. 4.14			〃

라. 해산 국제육영사업회 회칙

제1조 (명칭) 본 사업회는 원불교 해산 국제 육영사업회라 칭한다. (이하 본 사업회라 칭한다)

제2조 (근거) 본 사업회는 교정원 조직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조직한다.

제3조 (목적) 본 사업회는 국제교화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 사업회의 사무소는 원불교 교정원 교육부에 둔다.

제5조 (기금) 본 사업회의 기금은 해산 오이균씨가 회사한 기금과 본 사업회의 취지에 찬동한 교도의 성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산하기관) 본 사업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하에 수익사업기관을 둘 수 있다.

제7조 (임원) 본 사업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상임운영위원 1인 3.운영위원 9~15인 4.감사 2인 5.고문 약간인

제8조 (임원선출) 1.운영위원 및 감사는 원의회에서 선출한다. 2.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상임운영위원은 교육부장이 이에 당한다. 4.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 (직무) 1.회장은 본 사업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리한다. 2.상임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사업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본 회의 재정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4.고문은 본 사업회의 운영을 지도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본 회 운영에 대한 결의기구로써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2조 (회의소집) 1.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4.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승인절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교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6조 (정관개정) 본 정관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7조 (시행) 본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9. 문화사업회

가. 창 립

문화사업회는 원기68년(1983) 9월 16일 원불교 일원대도의 선양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과 후원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원기62년(1987) 교정원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부가 독립, 발족하게 되었고 초대 부장인 이광정교무가 문화활동과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원기64년(1979) 11월 문화회관을 건축하면서 건축 희사금을 내신 분에게 문화사업회 회원증을 발급, 2,483명에게 회원증이 발급되었고 문화활동을 강화해야 할 교단적 사명과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원기68년(1983) 회칙을 마련 재정하였다. 창립유공인으로는 오선교, 김도융, 조종인, 송주성, 송수은, 최준명, 조성재, 정백암, 홍정덕, 박진택, 최은수, 김심원, 김선도행, 김법용심, 이여진, 강성원, 김도홍, 윤을중 등이었다.

나. 조직과 현황

회장 1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 그리고 운영위원 20~30인 및 감사 2인으로 구성되며 문화부장은 당연직 상임운영위원이 된다.

창립당시 회원은 28명(남20, 여8)으로 자산은 없으나 원기72년(1987) 9월 30일 현재 자산은 2,160,000원을 형성하였고, 회원은 26명(남22, 여4)이었다.

다. 활 동

원기64년 교단의 문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문화회관 건축에 보조하였고, 70년 일원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원미술대전을 서울과 전주에서 2차에 걸쳐 전시하였다.

라. 연 혁

발 족 동 기	원기62년(1977) 교정원 조직법이 개정되어 문화부가 독립발족하여 초대 문화부장에 이광정교무가 임명되어 문화활동과 문화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원기64년(1979) 11월 18일 문화회관을 건축하면서 건축 희사금을 내신 분들에게 문화사업회 회원증을 발급하여 2,483명에게 회원증이 발급되었고 문화활동을 강화해야할 교단적 사명과 사회적 흐름에 부흥코자 문화사업회 회칙을 원기68년(1983)에 제정하다.

인　　사 68. 9.16　　1기 문화사업회 운영위원 위촉
재가 : 오선교, 김도융, 조종인, 송주성, 송수은, 최준명, 조성재, 정백암, 홍정덕, 박진택, 최은수, 김심원, 김선도행, 김법용심, 이여진, 강성원, 김도홍
출가 : 김정용, 이공전, 김인철, 이광정, 김법종, 한정원, 김복환, 김은준
감사 : 이성은, 윤을중

회　　의 68.11. 6　　제 1차 운영위원회 문화사업회 회장에 오선교운영위원을 선출하고 회원 모집과 문화예술 진흥의 건에 대하여 논의

회　　의 69. 5.27　　제 2차 운영위원회. 원불교 문화교화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문화사업의 표어를 정함.
표어 : 문화예술 꽃피워서 일원대도 선양하자.
일원문화 창조하여 낙원세계 건설하자.

회　　의 69.11. 4　　제 3차 운영위원회. 원미술 대전 개최키로 결의

행　　사 70.12　　제 1회 원미술대전 개최 전주전시(전북 예술회관 12.20～12.27) 서울전시(서울회관 71. 1.10～15)
총 작품 500여점 접수, 총 경비 : 6,000여만원

인　　사 71.10　　제 2기 운영위원 발족
재가 : 오선교, 홍정덕, 정백암, 김도융, 박찬석, 백도성, 이용원, 백경진, 윤석봉, 고문국, 김원도, 이상경, 윤승찬
출가 : 김정용, 이공전, 김지현, 박지홍, 박청수, 유기현, 송천은, 김은준, 한정원, 김이현
감사 : 윤을중, 이성은

마. 문화사업회운영위원

번호	직 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회 장	吳善教	男		68～	남대전
	감 사	尹乙重	〃		68～72	영 동
	〃	李聖恩(榮)	〃	1942. 5.17	68～72	
	위 원	金道降	〃		68～	남중동
	〃	金萬州華	女		68～	종 로
	〃	金元道	男		68～	화 곡
	〃	金賢基	〃		68～	이 리
	〃	白道性	〃		68～	대 전
	〃	尹道中	〃		68～	〃
	〃	尹仁宗	〃		68～72	
	〃	李俊哲	〃		68～72	
	〃	全光圓	〃		68～72	화 곡
	〃	丁白岩	〃		68～	서전주

	위 원	洪 정 덕	男		68~	이 리
	〃	李 空 田(順行)	〃	1927. 3.24	68~	
	〃	柳 基 現(炳德)	〃	1930. 9. 2	68~	
	〃	韓 正 圓(基斗)	〃	1933. 8.30	68~72	
	〃	宋 天 恩(天恩)	〃	1936. 7. 9	68~72	
	〃	金 智 玄(智順)	女	1924. 6. 3	68~72	
	〃	朴 智 洪(京順)	〃	1932.10.25	68~	
	〃	朴 淸 秀(姬淑)	〃	1937.10.21	68~72	
	〃	金 恩 峻(峻謙)	男	1943. 1.19	68~	
	〃	柳 應 現(德順)	女	1945. 3.26	72~	
	〃	李 圓 京(基八)	男	1946. 2. 2	72~	
	〃	尹 乙 重	〃		72~	영 동
	〃	金 德 權	〃		72~	여 의 도
	〃	張 賢 德	〃		72~	효 자
	〃	李 元 局	〃		72~	서 울
	〃	安 大 鍾	〃		72~	동 안 양
	〃	全 泰 仁	〃		72~	〃
	〃	徐 德 萬	〃		72~	〃
	〃	朴 大 均	〃		72~	신 촌
	〃	黃 聖 宇	〃		72~	강 남
	〃	鄭 弘 振	〃		72~	종 로
	〃	金 洪 哲	〃		72~	개 봉
	〃	崔 炳 悟	〃		72~	성 동
	〃	朴 性 連	女		72~	산 촌
	〃	李 鍾 圓(鍾甲)	男	1930.10. 6	72~	
	〃	朴 正 基(炅永)	〃	1937. 7.17	72~	
	〃	宋 官 恩(恩)	女	1941. 1.25	72~	

바. 문화사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사업회는 원불교 문화사업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원불교 일원대도의 선양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원불교 교정원 문화부에 둔다.

제2장 회원과 기금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의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5조 (회원종별) 회원 (1.동참 2.선근 3.목련 4.연화 5.공덕 6.보은 7.준원력 8.원력)을 두고 형편에 따라 일시가입 또는 분납할 수 있다. 단 회원별 기준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예우) 회원에게는 그 공적과 등급에 따라 표창과 대우를 하고 원력회원 이상은 명예 운영위원으로 예우한다.

제7조 (기금 및 운용) 본 사업회의 기금은 문화사업회 회원의 회사금으로써 조성하고 그 운용은 문화사업회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상임운영위원 1인 3)운영위원 20~30인 이내 4)감사 2인

제9조 (임원선출) 1)운영위원, 감사는 원의회에서 선출한다. 2)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운영위원은 문화부장이 이에 당한다.

제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1조 (직무) 1)회장은 본 사업회를 대표하며 사업회의 업무를 통리한다. 2)상임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본 회의 재정과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12조 (회의) 1)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임무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회칙 개정에 관한사항 4)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승인절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교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5장 부 칙

제16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 국제교화사업회

가. 창 립

국제교화사업운영위원회는 원기70년(1985) 11월 1일 일원대도를 받들어 전 세계를 불은화하고 전 인류를 선법화해 나가는 사업으로 본교가 추진하는 국제교화의 후원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원기66년(1981) 국제부가 신설, 발족하기까지 원광대학교 해외포교연구소에서 15~20년 동안 해외포교 및 국제교화를 위한 각종 국제회의 가입 및 참석 등 활동을 해 오다가 국제부의 신설, 발족이 계기가 되어 국제교화사업운영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창립유공인으로는 박심원, 홍인덕, 김서경, 유보명원, 김정해, 박영선화, 박도원행, 조성진 김명환 등이었다.

나. 조직과 현황

회장 1인과 상임운영위원 1인, 운영위원 10~30인 및 감사 2인과 서기 1인으로 구성되며 국제부장은 당연직 상임운영위원이 되며, 원광대학교 해외포교연구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창립당시 회원은 20명(남8, 여12)으로 자산은 7,000,000원(동산)이었고, 원기72년(1987) 9월 30일 현재 총 자산은 8,000,000원(동산)이며, 회원수는 창립당시 회원 그대로이다.

다. 국제교화 사업회원 명단

번호	직 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朴 將 植(天植)	男	1911. 1. 9	70~	
		朴 光 田(吉眞)	〃	1915. 3.23	70~71.12. 2	열 반
	상임운영위원	全 八 根(八根)	女	1927. 3. 2	70~	
	운 영 위 원	金 正 勇(三龍)	男	1925.11. 1	70~	
	〃	李 空 田(順行)	〃	1927. 3.24	70~	
	〃	李 喆 行(喆行)	〃	1928.12.12	70~	
	〃	柳 正 完(珍玉)	〃	1922.11.29	70~	
	〃	朴 濟 權(京姬)	女	1925. 8. 7	70~	
	〃	丁 盛 熟(石鎭)	〃	1922. 9. 5	70~	

	운영위원	文東賢(상환)	男	1909. 2. 26	70~	서울교당회장
	〃	吳善敎(熙弼)	〃	1925. 8. 19	70~	남대전교당회장
	〃	金瑞敬(小敬)	女	1917. 10. 29	70~	종로교당주무
	〃	柳普明圓(순이)	〃	1924. 5. 10	70~	원남교당주무
	〃	金正海(준)	〃	1923. 4. 13	70~	〃
	〃	朴心源(普英)	〃	1926. 11. 4	70~	원남교당부회장
	〃	洪仁德(順德)	〃	1926. 9. 22	70~	종로교당주무
	〃	朴永善華(慧敬)	〃	1927. 12. 25	70~	〃
	〃	朴道圓行(英熙)	〃	1930. 5. 20	70~	제기교당
	〃	趙性振(貞愛)	〃	1948. 11. 20	70~	천교당주무
	〃	金明煥(英熙)	〃	1931. 11. 9	70~	종로교당주무

라. 원불교국제교화사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사업회는 원불교 국제교화사업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일원대도를 받들어 전 세계를 불은화하고 전 인류를 선법화해 나가는 사업으로 본교가 추진하는 국제교화의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원불교 중앙총부 국제부에 둔다.

제2장 회원가 자금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자금) 본 회의 자금은 회원의 가입금과 회사금, 사업상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예우) 본 회의 회원 중 본 회의 유지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을 유공회원이라 부를 수 있다.

제7조 (자금관리) 본 회의 자금관리 및 사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8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상임운영위원 1인 3)운영위원 10~30인 이내 4)감사 2인 5)서기 1인.

제10조 (임원선출) 1)운영위원과 감사는 원의회에서 선출한다. 2)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상임운영위원은 국제부장이 이에 당한다. 3)원광대학교 해외포교연구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서기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제12조 (직무)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 제반을 통리하며 서기를 임명한다. 2)상임운영위원

은 본 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운영위원은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감사는 본 회의 재정사항을 감사한다. 5)서기는 본 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3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회장 선출 2)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사업 실시확인, 승인에 관한 사항. 4)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6)서기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7)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회의)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운영위원회는 회장이나 직무대행위원이 소집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2)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고 각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운영위원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단,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때는 통지사항이 아니여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 1)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회장 선출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찬반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승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교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5장 부 칙

제18조 (정관개정) 본 정관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여 원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시행) 본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1. 원 창 회

가. 창 립

원창회는 원기71년(1986) 6월 24일 중앙총부의 生佛佛事, 海外開拓佛事, 奉公佛事로 원불교의 교화·교육·자선·산업 등의 발전에 기반을 튼튼히 다져 교단 중흥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대산종법사께서 1년여동안 준비하시고 조직하시어 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여 주셨다. 창립유공인으로는 박정의행, 남하원행, 홍인덕, 이상훈, 박영선화, 김혜근, 김명환, 송경심, 김혜성, 유보명원, 박이관, 김법용심, 김선도행, 서인관, 박순덕화, 전덕업화, 권요영, 양남근, 송일신, 서향원, 조전일화, 정동호, 이덕화, 윤간중, 백상범, 박화선, 박윤철, 김현강옥, 김일상원, 윤성규, 김도융, 서영천, 최준명, 오광천, 이성련, 조대진, 정도진, 고성용, 김서경, 이의성, 나철중, 오이균, 김정도화, 임재안, 호남 33회 등이었다.

〈원창회(圓昌會) 창립취지문〉

대종사님께서 회상 창립의 준비로 저축조합을 실시하시고 단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사람이 다 하지 못하는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 바 모든 방면으로 특별한 절약과 근로로써 후진들에게 창립의 모범을 보여주자」하시고 금주·금연과 보은미저축과 공동출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원기 100년 내의 교도는 모두가 나와 같이 다니며 공부하고 사업하던 인연동지며 창립요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전해주신 일원대도와 건설해 주신 이 회상을 누 만대에 길이 전하고 발전시켜 이 세상이 일원의 전반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혈심적공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대말과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법신불 사은님과 대종사님께 보은하기 위하여 성업봉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성업을 수행하면서 특히 중앙총부의 기반을 다져 근본을 튼튼히 하고 교화·교육·자선·산업 등 각 사업을 후원 진흥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자각한 재가·출가동지들의 뜻을 접하신 대산종법사님께서는 교단만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원창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호법동지들의 뜻을 받아 원창회 설립을 준비하여 오셨습니다.

이 원창회는 성업봉찬사업의 일환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며 장차 대종사 탄생 백주년 기념성업 이후에도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단발전의 원동력으로써 모든 사업의 후원불사로써의 그 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종사님 법통 제자로서 또한 창립요인으로서 우리 후진에게 교단 중흥의 역군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 지상에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 원창회 발전에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나. 조직과 현황

회장 1인과 부회장 약간인, 분과위원장 2인과 감사 3인 및 지도위원 약간인과 사무국장 1인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교정원장이 이에 당한다.

창립당시 회원은 400명(남50, 여350)으로 자산 100,000,000원이었으나 원기72년(1987) 9월

30일 현재 부동산 362평을 합하여 총 자산 847,649,082원의 규모로 회원도 995명에 이른다.

다. 활 동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기72년(1987)부터 중앙총부 예산 세입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라. 역대임원 명단

직 책	법 명(호적명)	성별	생년월일	재임기간	비 고
회 장	金 允 中(還烈)	男	1927.12. 7	3년	
부 회 장	金 仁 龍(判龍)	〃	1922.10.16	〃	
〃	吳 利 均	〃		〃	사 직
〃	金正道華	女		〃	청 주
부 회 장	洪 仁 德	〃	1922. 9.22	3년	종 로
〃	任 濟 安	〃		〃	부 산
교화훈련분과위원장	金 理 玄(玉禮)	〃	1930. 8.28	〃	
교화훈련분과위원	宋 順 鳳(順鳳)	〃	1933. 3. 6	〃	
〃	李 慧 定(愛子)	〃	1937.12. 9	〃	
〃	金 法 宗(鎭鎬)	男	1937. 5.15	〃	
〃	金 復 煥(復煥)	〃	1938.12.10	〃	
사업재무분과위원장	徐 聖 範(金成)	〃	1940. 9.25	〃	
사업재무분과위원	金 正 勇(三龍)	〃	1925.11. 1	〃	
〃	李 喆 行(喆行)	〃	1928.12.12	〃	
〃	李 建 春(建淑)	〃	1920.12.12	〃	
〃	李 圓 京(基八)	〃	1946. 2. 2	〃	
감 사	李 中 正(鍾行)	〃	1926. 6.14	〃	
〃	羅 喆 重	〃		〃	정 주
〃	梁 慧 經(榮植)	女	1930. 4.30	〃	
지 도 위 원	鄭 道 振	男		〃	원 남
〃	高 性 容	女		〃	종 로
〃	金 慧 性	〃		〃	원 남
〃	金 瑞 敬	〃	1917.10.29	〃	종 로
〃	李 義 聲	男		〃	대 구

사무국장	李聖局(炳植)	男	1947.12.29	3년		
운영위원	黃直平(馬薛)	〃	1932.10.17	〃		
〃	金仁喆(永千)	〃	1934.12. 4	〃		
〃	全八根(八根)	女	1927. 3. 2	〃		
〃	張應哲(由錫)	男	1940. 9. 8	〃		
〃	金理玄(玉禮)	女	1930. 8.28	〃		
〃	徐聖範(金成)	男	1940. 9.25	〃		
〃	鄭眞淑(賢淑)	女	1920.10. 4	〃		
〃	金復煥(復煥)	〃	1938.12.10	〃		
〃	李慧定(愛子)	〃	1937.12. 9	〃		
〃	李聖局(炳植)	男	1947.12.29	〃		
〃	李圓京(基八)	〃	1946. 2. 2	〃		
〃	李喆行(喆行)	〃	1928.12.12	〃		
〃	全二昌(在禮)	女	1925.10. 3	〃		
〃	李空田(順行)	男	1927. 3.24	〃		
〃	丁盛熟(石鐵)	女	1922. 9. 5	〃		
〃	金正勇(三龍)	男	1925.11. 1	〃		
운영위원	辛濟根(順任)	女	1923.12.29	3년		
〃	李建春(建淑)	男	1920.12.12	〃		
〃	李普圓(萬宰)	〃	1934. 9.13	〃		
〃	金西悟(書男)	〃	1926.12.16	〃		
〃	金法宗(鍾鎬)	〃	1937. 5.15	〃		
〃	金智玄(智順)	女	1924. 6. 3	〃		
〃	趙正勤(年九)	男	1935.12. 6	〃		
〃	李正恩(正福)	女	1974.11.27	〃		
〃	李廣淨(建衡)	男	1936. 9. 1	〃		
〃	朴性敬(敬順)	女	1928. 1.11	〃		
〃	李聖信(玉禮)	〃	1924.12. 1	〃		
〃	朴恩局(永愛)	〃	1923. 1.22	〃		
〃	丁道允(炳允)	男	1933. 5.15	〃		
〃	吳曛圓(男苗)	女	1931.12.20	〃		
〃	金大觀	〃	1935. 3.24	〃		
〃	崔順哲(希順)	〃	1937. 6. 4	〃		
〃	朴成席(成男)	〃	1934. 1. 8	〃		
〃	金長源(香基)	男	1946. 5. 2	〃		
〃	太德權(海眞)	〃	1939. 1.10	〃		
〃	沈益舜(敬任)	女	1931.12.15	〃		
〃	朴正默(永愛)	〃	1937. 4.20	〃		

운 영 위 원	張敬眞(在權)	女	1937. 7.22	3년		
〃	高賢鍾(賢淑)	〃	1925.10.25	〃		
〃	高圓善(柔善)	〃	1947. 2. 3	〃		
〃	朴正義行	〃		〃	종	로
〃	南賀圓行	〃		〃	〃	
〃	洪仁德	〃		〃	〃	
〃	李相薰	〃		〃	〃	
〃	朴永善華	〃		〃	〃	
〃	金慧根	男		〃	〃	
〃	金明煥	女		〃	〃	
〃	宋敬心	〃		〃	원	남
〃	金慧性	〃		〃	〃	
〃	柳善明華	〃		〃	〃	
〃	朴利權	〃		〃	〃	
〃	金法用心	〃		〃	부 산	진
〃	金善道行	〃		〃	〃	
운 영 위 원	徐仁觀	〃		〃	서	면
〃	朴順德華	〃		〃	대	신
〃	全德業華	〃		〃	동	래
〃	權妙英	〃		〃	〃	
〃	揚南根	〃		〃	부	산
〃	宋日新	〃		〃	〃	
〃	徐香元	〃		〃	〃	
〃	曺全一華	〃		〃	〃	
〃	鄭東浩	〃		〃	〃	
〃	李德華	男		〃	재	기
〃	尹道中	〃		〃	남 대	전
〃	白相範	女		〃	동 전	주
〃	朴和善	〃		〃	수	원
〃	朴允哲	〃		〃	대	전
〃	金玄康玉	〃		〃	홍	제
〃	金一相圓	〃		〃	대	전
〃	尹聖圭	〃		〃	정 토	회
〃	金道降	男		〃	남 중	동
〃	徐永天	〃		〃	대	구
〃	崔俊明	〃		〃	신	촌

상 임 위 . 원	吳光天	男		3년	군 산
〃	李聖淵	女		〃	남 중 동
〃	趙大震	男		〃	수 원
〃	金潤中(暎禮)	〃	1927.12. 7	〃	
〃	金仁龍(判龍)	〃	1922.10.16	〃	
〃	吳利均	〃		〃	사 직
〃	金正道華	女		〃	청 주
〃	洪仁德	〃		〃	종 로
〃	任濟安	〃		〃	부 산
〃	金理玄(玉禮)	〃	1930. 8.28	〃	
〃	徐聖範(金成)	男	1940. 9.25	〃	
〃	金復煥(復煥)	女	1938.12.10	〃	
〃	金正勇(三龍)	男	1925.11. 1	〃	
〃	李喆行(喆行)	〃	1928.12.12	〃	
〃	李建春(建淑)	〃	1920.12.12	〃	
〃	李圓京(基八)	〃	1946. 2. 2	〃	
〃	李聖局(炳植)	〃	1947.12.29	〃	
〃	黃直平(熙薛)	男	1932.10. 7	〃	
〃	辛濟根(順任)	女	1923.12.29	〃	
〃	趙正勤(年九)	男	1935.12. 6	〃	
〃	朴恩局(永愛)	女	1923. 1.22	〃	
〃	金長源(香基)	男	1946. 5. 2	〃	
〃	權妙英	女		〃	동 래
〃	朴和宣	〃		〃	수 원
〃	吳光天	男		〃	군 산
〃	白相範	女		〃	동 전 주
〃	朴允哲	〃		〃	대 전
〃	尹聖奎	〃		〃	정 토 회

마. 원창회 회원수

회원수 → 총 1,160명

분 류 공덕회원 20명 (일천만원 이상)

원력회원 153명 (일백만원 이상)

〈공덕회원중에서 특별회사 하신 분〉

○ 종로교당 이철원, 김명환회원 2억원 회사

○ 종로교당 고성용(지도위원) 1억2천3백5십만원 회사

○ 정토회 윤성규(상임위원) 1억6백만원 회사
○ 정토회 이주완회원 1억1백만원 회사
○ 정토회 최정신회원 1억1백만원 회사
○ 청주교당 김정도화(부회장) 7천만원 회사
○ 수원교당 박화선(운영위원) 4천만원 회사
○ 군산교당 故 오철환회원 3천만원 회사
○ 종로교당 김서경(지도위원) 3천만원 회사

바. 연도별 중요행사 및 활동

원창회창립훈련	71. 6.24~25	원창회회원 서울원화단 부산연화단 서울호남삼삼회	①원창회 창립취지 설명 ②특별기도 및 법문 ③원창회 운영위원회 ④대산종법사님 임석법회	훈련경비 없음 (중앙훈련원)
제1회원창회상임위원회	71. 8.19	원창회 상임위원	①원창회 운영방향 ②원창회 사업설정	교정원회의실
제2회원창회운영위원회	71.11. 8	원창회운영위원		중앙총부대각전
원창회 상임위원회	72. 3.12	원창회상임위원	①원창회자금운영방안 ②원창회회원 훈련에 관한건	교정원회의실
2차 원창회훈련	72. 7.20~22	부산동,서부교구	①회원법위향상및교리연마	완도소남훈련원
3차 원창회훈련	72. 9. 9~11	서울동·서부교구	①원창회 회원친목 및 취지파악	만덕산훈련원
4차 원창회 훈련	72. 6. 4~6	원창회전회원	①회원법위향상 및 교리연마(신년법문, 교리도해) ②원창회 회원친목 및 취지파악	중앙훈련원 총부기숙사
원창회 상임위원회	72. 8.25	원창회 상임위원	①안양병원투자의 건 ②L·A건물투자의 건 ③관동교당지원의 건 ④총부예산지원의 건 (73년도 추경예산)	총부교정원회의실

아. 원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원창회라 창한다.(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원불교 중앙총부의 경제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교화·교육·자선·산업 등을

진흥시켜 교단 중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수익 사업체의 경영 2) 운영 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사업 3) 회원의 훈련 및 친목 사업

제4조 (사무소) 본 회 사무소는 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일정금액의 회비를 회사하면 회원이 된다. 2) 단체도 일정기금을 회사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1) 원력회원 2) 공덕회원 2종으로 한다.

제7조 (원력회원) 일백만원이상을 회사한 회원을 원력회원이라 한다.

제8조 (공덕회원) 일천만원 이상을 회사한 회원을 공덕회원이라 한다.

제9조 (의무 및 책임) 1) 회원은 연 1회 이상 훈련과 친목 법회를 갖는다. 2) 회원을 본 회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제1절 임 원

제10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 3) 분과위원장 2인 4) 감사 3인 5) 지도위원 약간인 6) 사무국장 1인

제11조 (임원 선임) 본 회의 임원은 원의회에서 선출하며 종법사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12조 (임원 임기) 임원, 운영위원, 상임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 (회장)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상임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교정원장이 당한다. 3) 회장은 분과위원장을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임명한다.

제14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본 회 회무 전반 사항을 감사하고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위원) 1) 회장의 자문을 위해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하여 지도위원을 둔다. 2) 지도위원은 본 회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지도한다.

제18조 (사무국장) 1) 본 회의 목적사업과 회무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국장 1인과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3) 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 및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본 회 회무를 수행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9조 (운영위원회) 1) 본 회의 총회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 매년 10월중에 정기회를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구성 및 위원 선임)

1) 운영위원회는 10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선임은 원의회에서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칙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 본회 재산 처분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절 상임위원회

제22조 (상임위원회 구성) 1)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이에 당하며 소집은 회장이 한다. 3) 상임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상임위원회내에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사업, 재무 분과위원회 (2)교화, 훈련 분과위원회

제23조 (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본 회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 분과위원 의결사항 승인의 건 6)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분과위원회) 1) 각 분과위원회는 이 회칙에 명시된 직무를 회장의 명을 받아 위원장이 사무국을 지휘하여 집행한다. 2) 각 분과위원회는 5인이내로 구성하며 1인의 위원장을 둔다. 3) 각 분과위원은 각 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각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25조 (분과위원회 직무) 각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사업, 재무 분과위원회는 본 회 (1)문서, 회비 수납, 회계 사무일체 (2)수익사업 경영 (3)목적 사업 지원 사무일체
2)교화훈련 분과위원회는 회원의 교화, 훈련 및 친목에 관한 업무 일체와 타분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제4장 재 정

제26조 (세입) 본 회의 세입은 회원의 회비와 수익금 및 이자 수입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7조 (예산) 1) 예산은 일반 예산과 특별 예산으로 한다. 2) 일반 예산은 회비 및 회비예치로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등과 본회 관리사무비 등으로 편성하고 특별 예산은 본 회가 경영하는 사업별로 예산 편성한다. 3)예산편성은 사무국장이 행한다.

제28조 (회비) 본 회 목적 사업 후원은 회비의 수익금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원불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5장 부 칙

제30조 (의결) 본 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1/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시행)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2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단 관례에 준용한다.

12. 훈련사업회

가. 창　　립

훈련사업회는 원기71년(1986) 11월 9일 원불교 훈련을 활성화하고 훈련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후원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그간 중앙훈련원에서 운영하던 훈련사업회는 각종 사업회가 교정원 각 부에 소속하게 되어 있는 교단 조직법에 의거 교정원 훈련부로 이관키로 하고 이에따라 훈련사업회의 그간 기금과 사업체는 중앙훈련원의 후원회로 넘기고, 교정원 훈련부에 훈련사업회를 새로 발족하기로 하였다.

나. 조직과 현황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상임운영위원 1인 그리고 운영위원 20~30인 및 감사 2인과 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창립당시 회원은 30명(남3, 여27)으로 자산은 2,821,000원(동산)이었으나 원기72년(1987) 9월 30일 현재 동산 7,950,984원, 부동산12,000평으로 총 자산 10,950,984원이며 회원은 45명(남5, 여40)이 되었다.

라. 훈련사업회 운영위원

번호	직　명	법　명	성별	생년월일	재 임 기 간	비　고
	회　장	李　徹　遠	男		71~	종　로
		金　復　煥	女	1938.12.10	71~	
	운영위원	金　大　觀	〃	1933.11. 1	71~	
	〃	李　正　務	〃	1932.11.15	71~	
	〃	張　敬　眞	〃	1937. 7.22	71~	
	〃	沈　益　舜	〃	1934.10.21	71~	
	〃	太　德　權	男	1938. 4.14	71~	
	〃	姜　妙　眞	女	1934. 1.30	71~	
	〃	金　普　信	〃	1934. 7.21	71~	
	〃	康　舜　常	〃	1941. 4.30	71~	
	〃	金　正　敏	〃	1945. 2.21	71~	

	운영위원	鄭 守 德	女	1937. 7.27	71~	안 동
	〃	朴 賢 一	〃	1929. 5. 2	71~	서전주
	〃	朴 正 默	〃	1937. 4.20	71~	원 남
	〃	吳 海 仁	男	1932.12. 2	71~	
	〃	安 正 眞	女		71~	대 현
	〃	安 道 正	男		71~	남대전
	〃	鄭 明 德	〃		71~	마 산
	〃	尹 聖 圭	女		71~	정토회
	〃	鄭 修 英	〃		71~	〃
	〃	鄭 順 基	〃		71~	〃
	〃	羅 貞 河	〃		71~	〃
	〃	金 性 潤	〃		71~	〃
	〃	成 寶 英	〃		71~	〃
	〃	李 性 緣	〃		71~	남중동
	〃	金 明 德	〃		71~	양 정
	〃	李 永 根	〃		71~	대 치
	〃	林 圓 覺 行	〃		71~	대 구
	〃	金 緣 智 行	〃		71~	〃
	〃	白 性 仁	〃		71~	사 직
	감 사	徐 聖 範	男	1939. 8.24	71~	
	〃	金 聖 振	〃	1939.10.13	71~	

마. 훈련사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사업회는 원불교 훈련사업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원불교 훈련을 활성화하고 훈련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후원한다. 1. 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훈련 교재 편찬 지원 3. 전문 훈련요원 양성 지원 4. 각종 훈련 지원

제4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원불교 중앙총부 훈련부에 둔다.

제2장 회원과 기금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의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의무를 이행

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 (회원종별) 회원은 ① 동참 ② 선근 ③ 보은 ④ 공덕 ⑤ 원력 ⑥ 무등의 별로 두고 형편에 따라 일시가입 또는 분납할 수 있다.

단, 회원별 기준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예우) 회원에게는 그 공적과 등급에 따라 표창과 대우를 행한다.

제8조 (기금 및 운용) 본 회의 기금은 회원의 회사금으로써 조성하며 그 기금으로 운용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3. 상임운영위원 1인 4. 운영위원 20~30인 이내 5. 명예위원 6. 감사 2인 7. 간사 1인

제11조 (임원선출) 1. 운영위원과 감사는 원의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명예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4. 상임운영위원은 훈련부장이 된다. 5. 간사는 훈련과장이 된다.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 (직무) 1. 회장은 본 사업회를 대표하며 사업회의 임무를 통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운영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4. 명예위원은 본 사업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반업무의 자문에 응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과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6. 간사는 본 회의 서무와 서기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 (회의)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정기 운영위원회는 10월 중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임무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승인절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교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5장 부 칙

제18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3. 中央奉公會

가. 창 립

소태산대종사의 일원주의 사상과 정산종사의 삼동윤리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대산종법사가 일찍이 교단적이고 세계적인 봉공기구로서 재가·출가·국가·세계의 四大奉公會를 구상 발표하시고 이 발족을 촉구하셨다.

그러던중 원기60년(1975) 3월 30일 제31회 임시교정위원회에서 사대봉공회 발족을 합의하고 정식 발족을 위해 정관 기초위원을 구성 중앙봉공회 회칙을 작성하여 중앙교의회에 상정하였다. 이에 원기62년(1977) 3월 30일 제23회 정기 중앙교의회에서 중앙봉공회를 발족시키기로 결의하고 회칙 및 세부적인 문제는 원의회에 일임하였다.

이로써 중앙봉공회는 일원대도와 삼동윤리의 정신아래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영과 육의 빈곤, 무지, 질병 및 재해로부터 구원하자는 취지 아래 출가봉공, 재가봉공, 국가봉공, 세계봉공의 四大奉公을 목표로 결성되었다.

이러한 취지와 목표로 결성된 중앙봉공회는 대산종법사께서 내려 주신 시봉금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왔으며 원기68년(1983) 1월 1일 대산종법사 특별 유시에 따라 보화당 역전 한의원을 중앙봉공회 후원기관으로 독립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나. 圓佛敎中央奉公會 會則

〈원불교 중앙봉공회 회칙 제안설명〉

소태산대종사의 일원주의 사상과 정산종사의 三同倫理중 동기연계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현종법사께서 일찌기 교단적이고 세계적인 봉공 기구로써 재가·출가·국가·세계의 四大봉공회를 구상 발표하시고 이 발족을 촉구하여 오셨습니다. 이에 지난 원기60년 3월 30일 제31회 임시 교정위원회에서는 四大봉공회 발족에 합의하고 정식발족은 교단적인 기구인만큼 중앙교의회에서 하기로 하여 그 정관 기초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정관 기초위원은 수차의 회의를 거쳐 우선 중앙봉공회 회칙을 초안하여 상정하오니 잘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가지로 미비한 점이

많으나 시행상에서 보충키로 하고 이 봉공회가 본회의에서 정식 발족되어 각 교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봉공활동의 법적인 뒷바침이 되게하여 주시고 전 인류를 한가족 삼고 상부상조해 나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圓佛敎奉公會 趣旨文〉

소태산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일원대도에 바탕하여 한울안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군으로 일원세계 건설하자 하신 정산종사의 최후 유촉을 받들어 지방세계 일체 생령이 본래 같은 포태의 동기 형제임을 서로 깨달아 전 세계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빈곤과 무지와 질병과 재해로 신음하는 동포가 없게 함으로써, 온 인류가 두루 평화롭고 넉넉하고 슬기롭고 명랑하게 살기 위하여 다음의 사대 봉공회를 결성하고자 그 횃불을 드는 바이니, 전 세계의 나라 나라와 마을 마을의 모든 동포 형제는 다함께 共盲하고 대동 결연하여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서, 하루속히 평등 원만한 세계를 이룩하자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원불교 중앙봉공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원불교중앙봉공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일원대도와 삼동윤리의 정신아래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영과 육의 빈곤·무지·질병 및 재해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봉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종별)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대봉공회의 별을 둔다.

1) 출가봉공회 2) 재가봉공회 3) 국가봉공회 4) 세계봉공회

제4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원불교 중앙총부에 둔다.

제5조 (산하기관) 1) 본 회 목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교구에 교구봉공회 교당에 교당봉공회를 둔다. 2) 각 교구 봉공회와 교당봉공회는 독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본 회칙에 준하여 각 회칙을 제정하고 중앙회장의 인허를 얻어 시행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 원불교 교도와 본 회 취지에 찬동한 자로서 본 회에 가입한 이를 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구분)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노력봉공한 자. 2) 특별회원 :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기금 조성에 참여한 자.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총재 1인, 회장 1인, 부회장 4인, 사무총장 1인 운영위원 약간인, 감사 3인, 간사 4인

제9조 (총재) 총재에는 종법사를 추재한다.

제10조 (회장) 1) 본 회 회장은 교정원장이 이에 당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한다.

제11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출가, 재가, 국가, 세계 각 봉공사업을 분담관장하며 회

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정하는 순에 따라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2조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주관하고 관하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3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본 회 업무추진과 운영에 참여한다.

제14조 (감사) 감사는 재정집행과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을 수시감사하며 이의 시정을 명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15조 (간사) 간사는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임) 1) 부회원, 운영위원, 감사는 회원총회(중앙교의회)에서 선출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총재가 임명한다. 3) 간사는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기타 직원을 사무총장이 위촉한다.

제17조 (임기) 전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8조 (회의종별)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회원 총회 2) 운영위원회의

제19조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되 그 권한은 중앙교의회가 대행한다.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시용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인사에 관한 사항. 4)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정족수) 본 회의 각 급 회원 재적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 소집) 운영위원회의는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5장 재정과 사업

제23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특지상의 회사금으로 한다.

제24조 (회비의 배당비율) 본 회 각 교구 각 교당에서 수입된 회비는 각급 봉공회에 사용하되 중앙교구교당의 배당비율은 운영위원 회의에서 정한다.

제25조 (사업) 본 회 제2조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무출신 본인이나 가정에 대한 구원사업. 2) 재가교도에 대한 구원사업. 3) 국민에 대한 구원사업. 4) 세계인류의 대한 구원사업. 5) 기타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업

제6장 부 칙

제26조 (세칙제정) 본회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27조 (시행보고) 각 교구나 각 교당 봉공회에서 사업시용한 모든 업무는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종합시행) 본 회칙 제정 이전의 봉공을 목적으로 한 모든 단체는 원기62년(1977) 4월 1일부터 이에 통합준용하여 시행한다.

XIII. 特別機構

교단은 새 종교로서의 뚜렷한 발자취를 위하여 일상의 교정기구와는 별도의 특별기구를 두어 교단의 특별사업을 수행해 왔다.

교단사 72년을 회고하여 특별기구를 연대순으로 일람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기34년~35년　제1대 성업봉찬회

원기49년~56년　개교반백년기념사업회

원기56년~67년　남한강대책위원회

원기58년~72년　영산성지사업회

원기68년~　원불교창립 제2대 및 대종사탄생백주년성업봉찬회

원기71년~　교단제3대설계특별위원회

이상의 특별기구는 교단대책으로 각기 특별한 사업과 발족의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그 수행경위 또한 독특한 관계로 별도로 정리한다.

1. 제1대 성업봉찬회

소태산대종사는 교단 창립의 한도를 36년으로 정하고 이를 창립 제1대라 하였으며, 다시 12년까지를 1회, 24년까지를 2회, 36년까지를 3회로 구분하였다. 소태산대종사는 제1대의 36년 동안에 교단 창립의 기틀을 대강 확립하려고 의도하였다. 그러나 소태산대종사는 창립한도인 제1대 성업봉찬사업의 결산을 보지 못하고 원기28년(1943) 6월 1일에 열반하였다. 그래서 제1대 성업봉찬대회는 소태산대종사 열반의 슬픔과 일제 말엽의 고난과 6·25의 수난을 겪은 채 원기38년(1953) 4월에 거행되었다.

제1대 성업봉찬사업의 개요란 제1대 성업봉찬기념대회 준비 과정에서부터 각종 사업 추진과 각종 경축행사 및 유관 행사를 말하며, 나아가 제1대 성업봉찬사업 추진을 계기로 동시에 이루어진 모든 사업과 행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리고 제1대 성업봉찬사업의 과제란 제1대 교단창립기초 확립을 위해 계획되었던 사업과,

제1대성업봉찬사업으로 확장되었으나 교단의 사정에 따라 연장된 각종 사업과 행사까지를 포함시킨 범위이다.

가. 발족경위

성업봉찬사업은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대종사가 이룩한 성업(聖業)을 기리고 받들며 축복하고 찬탄하며 더욱 발전시켜 가는 일이다.

제1대 성업봉찬사업은 교단의 창립한도를 36년으로 정하고 36년을 1대로 하였으며 1대는 다시 3회로 나누어 1회를 12년씩으로 하였다. 제1회의 12년은 남녀 제자 만나기에 노력하였으며 제2회 12년은 교서 편찬에 주력하였으며 제3회의 12년은 훈련실시로 교역자 양성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교단은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질식상태였고 소태산대종사의 열반, 8·15해방, 6·25사변 등으로 더욱 형극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소태산대종사께서 일찍 열반하였고 원기34년(1949) 4월에 성업봉찬회는 발족했으나 성업봉찬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교단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다.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원기34년(1949) 4월 26일 제2회 중앙교의회 석상에서 소태산대종사 성탑 조성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이 문제는 어떤 한 사람의 발의로 상정된 것이 아니라 벌써 수년을 두고 종법사 이하 간부들이며 각 지방 교무들 일반교도들의 현안으로 내려온 문제였다.

사실상 이전에 벌써 착공하여 왔음을 볼 수 있는데 원기34년(1949)도 사업보고서에 보면 동년 4월 10일 중앙총부에서는 종법사 이하 남녀 임원 및 기타 일반대중이 소태산대종사의 묘지로 향하여 성골이안식을 간단히 거행한 후 즉시 주위석물을 뜯어 聖骨箱를 내어 모시고와 우선 조실응접실에 안치한 후 4월 25일 오전 11시 대각전에서 성골이안식을 다시 성대히 거행하고 이어서 성탑봉안지인 송대로 향하여 성탑에 성해 입탑식을 거행함으로써 대종사 성업봉찬 보본사업은 그 막을 올리었다.

그 다음날인 4월 26일 제2회 중앙교의회에서는 尹光彦의장(경남지부)의 발의로 「대종사 성업봉찬회」 기성에 대한 발의로 시작 봉찬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그 주체는 지방임원 주체로 하자는 합의로 먼저 지방위원장 33인이 선정되었다. 이어 중앙회장은 전형위원 11인을 추천하여 일임, 오창건교무가 선정되었다.

이듬해 원기35년(1950) 4월 25일 「창립 제3회 1대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 위원장에 이공주, 위원에 박장식·송혜환·이운권·조전권·김정용교무 등 6인이 선정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6·25동란으로 준비가 부진하여 그 해 10월의 임시중앙교의회에서 기념총회를 1년 연기하기로 하고 성업봉찬회와 기념준비위원회를 「3회 성업봉찬회」로 종합 발족하

였다.

나. 성업봉찬회 임원

△총　재 : 정산종법사

△회　장 : 이공주

△부회장 : 송혜환, 윤송운

△고　문 : 오창건, 유허일, 박대완, 조송광, 오두산, 김정진, 이동진화, 황정신행, 성의철

△총무위원장 : 조갑종

　○ 위원 : 이중정

△편집위원장 : 이완철

　○ 대종경편집위원 : 이공전

　○ 창건사편집위원 : 이완철

　○ 지부지소 및 각 지방 연혁편집위원 : 이공주, 김대현

　○ 유공인 역사 및 방명록 편집위원 : 이공주

　○ 기념문집편찬위원 : 박장식, 박광전, 이은석

　○ 성가편집위원 : 이공주, 정성숙

　○ 기념사진첩편집위원 : 김정용

△건설위원장 : 조희석

　○ 위원 : 성정철, 김은봉

△행사위원장 : 이운권

　○ 기념총회위원 : 정고선

　○ 경축연극대회위원 : 서공남, 최정균

　○ 경축체육대회위원 : 전태수

　○ 경축웅변대회위원 : 전성완, 전이창

△선전위원장 : 조전권

　○ 위　원 : 김대거, 박진오

△재정위원장 : 정광훈

　○ 위　원 : 김은숙

다. 성업봉찬사업 과제

△편집사업

○대종경
○창건사
○지부·지소 및 각 기관 연혁
○유공인 역사
○기념문집
○성가집
○기념사진첩

△선전사업
○기념선전문 광고
○성업봉찬회 기념전시
○경축방송

△건설사업
○성탑완공
○대종사성비 건립
○영모전 건축
○기념비 건립

△경축행사
○기념총회 개최
○경축 웅변대회
○경축 연극대회
○경축 체육대회

라. 제1대 성업봉찬기념대회 준비와 과정

1) 大宗師聖塔의 奉建과 봉찬사업 준비

원기34년(1949) 4월 25일, 총부 구내 영모원 송림 안에 소태산대종사 성탑을 봉건하고, 성탑에 聖骸入塔式을 거행함으로써 소태산대종사 聖業奉贊 報本事業이 그 막을 올렸다. 그동안 각지 교도의 알뜰한 誠金을 모아 황등산 화강석으로 조성한 소태산대종사 성탑은 蓮花를 陽刻한 기단 위에 蓮花臺石을 받치고, 圓石을 올려 그 안에 성해를 보관한 후 오층의 塔身과 蓋石을 쌓아, 그해 10월에 준공한 바 이로써 소태산대종사 열반 후 6년만에 성해가 성탑에 봉안되었다. 다음날 열린 중앙교의회에서는 「대종사주성업봉찬회」가 조직되었고, 이듬해 원기35년(1950) 중앙교의회에서는 「창립 제3회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6·25동란으로 준비가 부진하여, 그 해 10월의 임시 중앙교의회에서 기념총회를 1년 연기하기로 하고, 성업봉찬회와 기념준비위원회를 「3회 성업 봉찬회」로 종합 발족하는 동시에 위원장 이공주의 주관 아래 교단의 연혁편찬과 소태산대종사 성비 봉건을 준비하는 한편, 제1대 전체 교도의 사업 성적 총결산 사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때 감찰원에서는 전체 교도의 법위 사정을 아울러 시작하는 한편, 원기33년(1948)에는 오창건(1887~1953)의 발기와 감역으로 蓬萊精舍 石頭庵을 重修하여 制法聖地의 면모를 일신하였으나 불행히 6·25동란으로 소실되었으며, 원기34년(1949)에는 『불교정전』의 부분 改刷로 소태산대종사의 본의에 유감되었던 점을 일차로 수정하였다.

2) 제1대 성업봉찬대회

원기38년(1953) 4월 26일에 제1대 성업봉찬대회가 열렸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원래 예정한 시기를 1년 연기하였으나 새 회상 창립 제1대를 公的으로 마감하는 동시에 제2대를 맞이하는 뜻깊은 기념행사였다. 새로 다듬은 원광대학 광장의 대회장에는 많은 축하 인사와 5,000여명의 교도가 운집한 가운데 제1대 전체 교도의 공부 사업 원성적 내역발표와 성적표 수여가 있었으나 당시 전쟁중의 상황에서는 대단한 행사로 평가할만 하였다. 그것은 오직 제1대 36년의 성업봉찬대회를 가져야한다는 재가·출가 모든 교도의 합력의 결과였던 것이다.

새 세상의 구세 성자인 소태산대종사의 위업을 길이 받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헌신 노력해온 1대 36년의 역사와, 교단 발전을 위해 더욱 다짐한 성업봉찬사업의 뜻은 원불교 성가 116장「제1대 성업봉찬가」와 117장「공덕탑노래」가사에 잘 표현되어 있다.

마. 각종 건설 사업 추진

1) 대종사 성탑과 성비 건립

제1대성업봉찬사업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소태산대종사 성탑 봉건으로부터 성업봉찬 보본사업이 시작되었다.

소태산대종사 성탑은 소태산대종사의 유해를 봉안한 탑으로, 소태산대종사는 일제 말기 원기28년(1943) 6월 1일 열반하였으나 당시 일본 경찰은 장례식조차 성대하게 치르지 못하게 간섭하여 처음에는 이리시외 금강리에 임시로 유해를 안치하였다가 열반 후 6년이 지난 원기34년(1949) 4월에야 비로소 중앙총부 구내로 옮겨 석탑을 건립하고「大宗師聖塔」이라 새기었다. 이로부터 원불교 교도들은 대종사 성탑을 참배하기 시작하였으니 교조 소태산대종사에 대한 근원적인 보본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곤궁한 교단 형편으로는 매우 힘든 공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기34년(1949)『원광』제2호에「대종사성탑 봉건사업에 대하여」란 제하의 윤광언이 쓴 글을 보면「교도들의 헤시한 정재로써 그 기본을 삼아 진행해야 할 이 사업은 創道이래 미증유의 대공사라 아니할 수 없다.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움이 없다(勤天下無難事)는 말처럼 수만의 교도가 합심하여 혼연 일체만 된다면 용이하게 준공될 수도 있으련마는…. 다만 雲中斷臂의 장쾌한 용단과 寒氷求魚의 확고한 신념만이 이사업의 成不成을 좌우하리라고 생각하였다」고 비장한 표현을 하고 있다. 또한『원광』제2호 교계소식란에「성업봉찬회에서는 그동안 총지부위원들의 성심 협력으로써 성탑 후면 석축은 마쳤으나 전면의 층계와 석축은 사업비의 각출이 중절된 관계로 착공 못하고 있는데 거룩한 이 공사의 완성을 보기 위하여 지방 위원장 및 일반

동지들의 더욱 열렬한 獻誠을 요망하여 마지 않는다」고 그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성탑 基地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소위 明堂福地를 찾아 터를 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일시 구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본래부터 구비된 명당복지를 찾느니보다 차라리 福慧兩足한 大宗師聖塔을 봉안함으로써 거칠고 천박한 땅이라도 명당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일일 것이라 하여 현재의 탑지로 터를 정하였다 하니 공부심 있고 복있는 사람은 처하는 곳마다 복된 땅으로 화하는 것이라는 진리적이고도 사실적인 교리적 신앙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도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인 사회상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의미있는 신앙적 결단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大宗師聖碑 건립도 제1대 성업봉찬사업의 하나였다.

성비는 교조 소태산대종사의 생애와 업적을 길이 추모하기 위하여 원기38년(1953) 6월 1일에 건립된 비석이다. 성업봉찬 1차 사업 예산 총3,100,000원중 500,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던 중요 사업이었다(대종사 성업봉찬회 회칙 및 사업 계획서 참조). 위치는 원불교 중앙총부 대종사성탑 동남편에 자리잡고 있다. 碑銘을 烏石에 새기고, 碑文은 정산종사가 지었으며 剛菴宋成鏞이 글을 썼다.

비문에는 구세성자로서 이땅에 탄생한 기연과 구도와 대각, 교단 창립의 과정, 교리와 사상 그리고 소태산대종사의 인격에 대한 내용이 간명한 문장과 뛰어난 문체로써 전개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비명으로 소태산대종사를 찬양하고 있다.

2) 원광대학교 교사 신축

원기31년(1946) 5월 1일에 익산총부 구내에 唯一學林을 개설한 후 5년동안 간고한 가운데서도 학림 중등부를 중학교로, 학림 전문부를 대학으로 승격 육성하고자 꾸준히 활동하여 원기36년(1951) 6월 이리에 원광중학교의 설립 인가를 얻었고, 그 해 9월에 총부 동편에 원광대학의 설립인가를 얻어 마침내 圓光大學群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원광대학은 당초 教學科 단과의 초급대학으로 총부 구내에서 출발하여, 원기37년(1952) 7월에 제1대 성업봉찬사업의 일환으로 校地확보와 校舍의 첫 건축에 착수하여 원기38년(1953) 1월에 교학과·국문학과 2과의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3월에 제1본관을 준공하고, 이듬해 원기39년(1954)에 총부 도서실 장서 약 5,000여권 전부를 이양받은 후 해마다 학과 증설과 교사 증축을 거듭하였다.

특히 원광대학 교사 신축은 교단 발전과 원광대학 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하였다. 초창기의 원광대학은 校舍다운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성업봉찬사업의 중요 건설 사업으로서 원광대학 교사 신축은 매우 중대한 의미로 교단의 역사적 평가를 받아왔다. 성업봉찬사업의 총예산이 약 25,000,000환이었는데, 그중 44%에 해당하는 11,000,000환이 원광대학 교사 신축에 소요되었다. 당시의 6·25전쟁으로 극도로 혼란한 사회상과 가난하고 영세한 교단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원광대학 교사 신축이 교단에 가져다 준 감격은 뒷날 종합대학이 되고 많은 건물을 짓게 된 몇 배 이상의 큰 것이었다. 재가·출가 전체 교도의 피땀어린 혈성이 뭉쳐진 거룩한 공덕탑으로 역사에 길이 새겨놓았기 때문이었다.

3) 永慕殿 건립

영모전 건립 추진은 원기34년(1949) 4월 제1대성업봉찬회가 설립될 때 성업봉찬회칙 제2조 사업목적에 영모전 건립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교단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원기56년(1971) 10월, 반백년기념대회를 앞두고 반백년기념관의 준공과 함께 영모전이 준공되었으니 영모전 법이 규정되고, 영모전 건립 계획이 세워진 22년만에 이루어진 盛事였다.

영모전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에 정례적으로 享禮함으로써 追遠報本의 정신을 길이 살려 계승해 나가기 위해 건설한 원불교 廟宇를 말한다.

바. 각종 편찬사업과 과제

1) 佛敎正典

불교정전은 원불교 本經이다. 이 경전은 소태산대종사가 열반을 1년 앞두고 초기교서에 발표된 교리들을 망라하여 親制한 경으로서 원기28년(1943) 3월에 출간되었다.

이 불교정전은 원기47년(1962) 9월 26일에 소태산대종사의 언행록인 대종경과 합간하여 『圓佛敎敎典』으로 발행되었다.

2) 새 예전 편성

예전은 소태산대종사가 원기11년(1926) 2월 진리에 근거하고 실생활에 적합한 예법의 시행을 통하여 허례를 지양하고 예의 근본정신을 들어내고자 신정의례를 제정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뒤 원기20년(1935)에 예전을 편성 발행하였다. 그후 정산종법사는 일반 예의 교육이 긴급함과 발전 교단의 儀禮 보완이 절실히 필요함을 통감하여 원기36년(1951) 9월에 새 예전 全三編을 탈고하고, 이듬해 7월에 이를 임시판으로 발간하였다.

새 『예전』은 제一편 操身의 예, 제二편 가정의 예, 제三편 교회의 예로 되어 있는데, 종전의 예전에 비하여 조신의 예 총 19장이 새로 편입되었고, 가정의 예에 회갑·薦度齊가 증보되었으며, 교회의 예에 奉佛·법회·득도·恩法結義·戴謝·奉告·특별기도·축하·永慕殿·영모원·大享·敎儀 등이 새로 편입되고, 그 밖에도 많이 개편 되었다.

그중 조신의 예는 개인의 몸가짐을 通禮로서 모든 사람이 예의 근본을 닦게 하는 요법이 되고, 영모전 대향 예법은 기념일과 기념 廟宇를 통일하여 소태산대종사 이하 역대 열위선령

에 공동향례를 받들도록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기38년(1953) 6월 1일, 교단은 일제히 夏享을 거행함으로써 원불교의 새 대향 예법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3) 원불교 연혁

성업봉찬 편찬사업으로 지부·지소 및 각 기관의 연혁의 편찬은 교단창립 36년동안에 설립된 40개 지부와 10개 지소 및 12개 기관의 설립과정 및 발전상황을 정리하여 원기38년(1953) 4월 26일 발행된 책자이다.

내용에는 교조 소태산대종사의 약력과 교단의 발전상황 50개 지부·지소와 12개 기관의 창립유공인 및 창립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저자 겸 발행인은 이공주교무이며 동방출판사 인쇄, 원불교 중앙총부 제1회 성업봉찬회 발행으로 되어 있다.

4) 원불교 제1대 창립유공인 역사

제1대 성업을 마친 지 오래이나 창립한도 1대내 입등 유공인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원기71년(1986) 4월에야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서문에 보면 「어느 시대를 물론하고 제생의세(濟生醫世)의 거룩한 회상이 열릴 때에는 반드시 교화를 주재하는 법의 주인이 있는 동시에 또한 그 교화를 널리 선양하고 법을 크게 호위할 사업의 주인이 있어서 이·사(理事)양면의 힘을 기우려 그 회상의 위신을 너른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어니와 우리회상에서는 수많은 재가·출가교도가 참예한 중에 창립한도 제1대내 입등(入等) 유공인(有功人)이 공부(工夫) 사업(事業) 양 방면으로 1,756인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비록 시대의 고금(古今)은 다르나 회상을 건설하는 방로(方路)는 서로 같은 것이며 특히 우리 회상은 당시의 시대 상황이 과거와 같이 단순한 시대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일반 사회의 신용 토대가 심히 박약한 가운데 사업을 일으키자니 과거에 예가 없이 큰 역량(力量)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본교의 창립 유공인 1,756인의 희유하고도 장쾌한 공적은 이미 죽백(竹帛)에 올라 천추청사(千秋靑史)에 길이 빛날 것이려니와 이제 다시금 유공인 역사집을 간행하여 보존하는 뜻은 그분들의 알뜰한 정성을 후진만대에 기리고 추원보본(追遠報本)의 근원(根源)을 삼고자 함입니다.

본교 제1대 성업봉찬회가 유공인 역사 편집을 시작한 지 이미 오래이나 업무자체가 지극히 신중을 요하는 일인데다 분량이 또한 방대하여 자료의 수집이며 개인별 내역의 정리 등에 장구한 시일을 요했거니와 오늘에 이르러 그 간행을 보게 되매 실로 감개무량 합니다.」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여곡절이 없지도 않았으나 이렇게 간행된 유공인 역사는 제1권 전

무출신 입등자 258명의 약력과 출가전기 출가후기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제2권에서 6권까지는 거진출자 입등자 1,496명의 약력과 입교전기, 입교후기를 수록하였다. 부록에는 소태산대종사 사진첩과 제1회 성업봉찬회 관계자료를 그리고 제1회 성업봉찬회 방명록, 원불교 연혁이 모아져 있다. 별책으로 사진첩에는 교당창립 제1대 36년 성업봉찬회 교당별 창립유공인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사. 각종 경축 행사와 선전 사업

1) 경축행사

원기38년(1953) 4월 26일 개교기념일을 맞아 중앙총부에서는 성업봉찬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 식전에서는 정산종법사의 봉고문과 이공주 대회장의 기념사, 그리고 당시의 국회의장, 문교부장관,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저명 인사 20여명의 축사가 있었으니 비로소 원불교가 사회인사들의 축복과 기대를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원광대학 운동장에서 수천명의 교도와 다수의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여 베풀어진 이 식전은 교단 최초의 성대한 경축식전이었다. 그러나 이 식전에 참석한 교도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 복받치는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숱한 가시밭길을 헤치고 온 교단의 역사가 감격스러웠고, 소태산대종사를 모시고 성업봉찬사업을 베풀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원기38년(1953) 4월에는 6·25동란 휴전 이전으로 교단의 형편상 성업봉찬기념식만을 거행하고, 각종 경축 행사와 창립 유공인 표창식 등은 4년 후인 원기42년(1957) 4월에야 가졌다. 이 대회는 각지에서 오천여명의 교도들이 모여 성대한 각종 행사를 베풀었다. 주요 행사 내용은 경축 체육대회·경축 예술제·경축 웅변대회·합동회갑식 등이었다. 그외 기념 강연회 등의 문화 행사도 시도되었다.

2) 선전사업

교단 창립 제1대를 마감하고 제2대를 맞이하는 뜻깊은 제1대 성업봉찬기념 경축 행사를 통하여 사회속에 원불교를 선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전 활동을 시도하였다. 선전사업은 주로 기념선전문 광고를 내고 경축 포스터를 제작하여 붙이고 경축방송 등으로 원불교를 널리 알리고 새롭게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소박한 교단의 선전문화활동에 대한 자료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역사 인식의 소중함과 함께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아. 제1대 36년 성업의 결산

1) 제1대 敎勢의 결산

창립 제1대를 총 결산한 결과, 총 교도수는 의무교도 32,244명, 일반신도 290,196명 합계 322,440명으로 되어 있으며, 전무출신은 260명이고, 교당은 익산·이리·남선(연산)·수계·삼례·영산·신흥·대마·도양·광주·봉동(불갑)·왕촌·서울·춘천·마령·전주·좌포·관촌·중길리·임실·장수·당리·경남(부산)·초량·용암·진영·다대·금산·용신·신태인·화해·정읍·승부·남원·운봉·호곡(수지)·금평·오수·군산 등 40개 교당에 함열·덕용(보절)·산서·목동(산동)·인월·창평·순창·목포·마산·부안 등 준지소를 합하여 50개 교당으로 되어 있고, 앞에 열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기26년(1941)에 장적조가 滿洲 牧丹江에 교당 설립을 하였고, 박대완교무를 일본에 파송까지 하였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철수한 일은 국외 포교의 제2차의 사실이었다.

또한 기관은 교육기관이 원광대학, 원광중·고등학교, 도양의 원광중학원 등 3개, 자선기관이 서울보화원, 익산보화원, 신용양로원, 전주양로원, 기타 등 7개, 산업기관이 삼창공사, 보화당약방, 유일정미소, 삼창과원, 이홍과원, 영산과원, 金山과원 등 7개소였고, 출판기관인 원광사를 합하여 모두 18개 기관이었다.

2) 전체 교도 공부 사업 성적 결산

제1대 전체 교도의 공부 사업 원성적 내역은 준5등 이상 입등자 1,954명 중, 전무출신 입등자 258명, 거진출진 입등자 1,496명으로 전무출신은 준특등 8명, 정1등 17명, 준1등 20명, 정2등 6명, 준2등 40명, 정3등 28명, 준3등 48명, 정4등 31명, 정5등 10명, 준5등 13명, 확정 보류자 6명이다. 거진출진은 준특등 1명, 정1등 3명, 준1등 6명, 정2등 8명, 준2등 16명, 정3등 23명, 준3등 78명, 정4등 51명, 준4등 179명, 정5등 211명, 준5등 881명, 특별추증자 39명이었다.

전무출신 준특등자는 이공주·송도성·김광선·김기천·이동안·이동진화·오창건·이재철이며 거진출신 준특등자는 황정신행이었으며, 법위 正師 이상자는 圓正師 송도성, 정사 김광선·김기천·이동안·오창건·이재철·박세철·이인의화·서동풍이었다.

공부 사업 성적 결산 후, 정산종법사는 「공부의 등위와 사업의 등급에 공정을 기하고자 애를 썼으나, 어찌 그 숨은 공부와 숨은 공로가 다 드러나기를 바랄 수 있으리요. 그런즉 우리는 참다운 사정은 호리도 틀림 없는 진리에 맡기고 이번에 나타난 등급으로는 앞날의 적공에 더욱 분발할 대중만 삼는다면, 이 분들이 참으로 알뜰한 우리의 동지요, 참으로 등급 높은 공인(功人)이니, 후일 영모전에서 등위보다 실적이 넉넉한 선영(先靈)은 제사 받기가 떳떳하지마는, 실적이 혹 등위만 못한 선영은 헛대접 받기가 얼마나 부끄러우리요」 라고 훈화하여,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간의 공정성에 대한 한계를 고백하였고, 오히려 참다

운 진리를 맡기고 더욱 분발하도록 권장한 것은, 공부·사업 성적 평가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었으며 교단의 장래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종사성업봉찬회칙

第一章 總 則

第 一 條 本會의 名稱은 圓佛敎大宗師聖業奉贊會라 한다.

第 二 條 本會는 大宗師의 성탄, 永慕殿 및 神道碑를 建立하고 其他 一切聖業을 讚揚하여 百代千孫의 奉佛弟子로 하여금 永世不滅의 紀念이 될 事業을 하기로 目的한다.

第 三 條 本會의 位置는 圓佛敎中央總部內에 둔다.

第 四 條 本會는 本會의 目的達成이 完遂되면 圓佛敎中央敎議會에 事業을 報告하고 卽時 解散하기로 한다.

第二章 役 員

第 五 條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中央에는 左의 役員을 둔다.

會 長	一人	會 計	一人
副會長	二人	工 監	一人
總 務	一人	書 記	二人

第 六 條 事業推進의 緊密한 連絡을 爲하여 各 支部·支所所在地方에는 地方委員長 一人, 委員 若干人 을 둔다.

但, 支部長 及 支所長은 地方委員長이 될 수 없다.

第 七 條 會長은 宗法師와 連絡하여 會務를 統理한다.

第 八 條 副會長은 會長을 代理하여 會務全般을 指導監督한다.

第 九 條 總務는 大宗師의 事蹟 及 聖業讚揚에 必要한 文獻募集과 編纂發刊 等의 責에 任한다.

第 十 條 會計는 會金의 收入支出을 明記하며 諸 帳簿를 備置한다.

第十一條 工監은 上司의 命令을 받아 業務指導에 從事한다.

第十二條 書記는 上司의 命을 받아 會務에 從事한다.

第十三條 地方委員長은 會長과 連絡하여 本會 目的達成에 直接協力한다.

第十四條 地方委員은 委員長과 協議하여 本會 目的達成에 協力한다.

第十五條 會長, 副會長, 地方委員長은 圓佛敎中央敎議會에서 選定한다.

但, 任期는 制定하지 않으나 特別事情이 있을 때에는 會長이 宗法師와 連絡하여 宗法師가 이를 任命한다.

第三章 業 務

第十六條 本會의 業務는 左와 같다.

一, 大宗師聖塔奉建의 件
二, 大宗師神道碑建立의 件
三, 永慕殿建立의 件
四, 大宗師事蹟編纂의 件

第十七條 本會는 左記 書類를 備置한다.

一, 現金出納簿
二, 收入支出證憑書類
三, 貯金通帳
四, 喜捨芳名錄
五, 其他 參考書類

第十八條 本會 役員會는 每年 四月中에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但, 事務形便에 따라 中央役員會를 隨時開催하여 會務의 進行方針 等을 討議한다.
第十九條 本會의 事業槪況은 每年 圓佛敎中央敎議會에 報告하기로 한다.

[事 務 計 劃 書]
總事業費 一金 參百拾萬圓也
內 譯
第一期分 百拾萬圓也
一. 造塔石工費 五拾五萬圓也
二. 周圍石築 五萬圓也
三. 昇降階段石物工費 四拾萬圓也
四. 附近造山人夫賃 拾萬圓也
第二期分 貳百萬圓也
一. 神道碑 五拾萬圓也
二. 聖塔入口標石 壹拾萬圓也
三. 造林植木及人壹拾萬圓也夫賃 貳拾萬圓也
四. 花草·天然石
五. 掘丁費 參萬圓也
六. 周圍울타리 貳萬圓也
七. 塔殿維持基金 六拾萬圓也
八. 塔殿修理費 參拾萬圓也
合 計 參百拾萬圓也

【役員名簿】
(四月二十六日 現在)
◎ 中央役員
會長 吳昌建, 副會長 尹光彦·金仁正, 總務 李共珠, 會計 李雲捲, 工監 趙曙錫, 書記 李空田·柳聖一
◎ 地方委員長
서울 成聖願, 開城 崔濟輪, 慶南 金性明華, 草梁 宋奇雲華, 堂里 金應元, 釜山 金精進, 裡里 田貴福, 全州 丁宇鎭, 南原 鄭長局, 雲峰 趙甲順, 靈山 金亨悟, 道陽 李德主華, 岫溪 李公輪, 三禮 郭玄信華, 新興 李昊春, 金山 李又慶, 龍新 李化眞, 新泰仁 柳妙根華, 進永 金三道華, 龍岩 鄭中心, 花海 金道一, 琴坪 崔仁植, 井色 李昇玄, 春川 金順玉, 承當 柳仁宗, 中吉 崔道華, 馬靈 鄭樂信華, 佐浦 安敬信, 館村 李敬元, 任實 趙法恩, 光州 朴慈善華, 好谷 崔正學
(無順)

□「圓覺聖尊 少太山大宗師 碑銘並序」

대범 천지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일월이 代明하므로 만물이 그 생성의 도를 얻게 되고 세상에는 佛佛이 繼世하고 聖聖이 相傳하므로 중생이 그 제도의 恩을 입게 되나니 이는 우주자연의 정칙이다. 옛날 영산 회상이 열린 후 정법과 상법을 지내고 계법시대에 들어와서 바른 도가 행하지 못하고 삿된 법이 세상에 편만하며 정신이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여 생령의 고해가 날로 增深하였나니 이것이 救主이신 대종사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機緣이다. 대종사의 성은 朴씨요, 諱는 重彬이요, 소태산은 그 호이시니, 석존 기원 이천구백십팔년 辛卯(1891) 3월 27일에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탄생하시었다. 부는 朴晦傾 모는 劉定天이시요 신라시조왕

박혁거세의 후예이시다. 대종사 유시로부터 기상이 늠늠하시고 도량이 웅대하시며 모든 사물에 매양 사색의 정신이 많으시고 한번 하기로 한 일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실천하는 용단력이 있으시었다. 구세시에 우주의 자연현상을 보시고 큰 의심을 발하시었으나 그 疑頭를 풀기로 한즉 생각이 막연하여 도저히 구경처를 해득하기가 어려우매 대종사의 우울하신 심경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시사 처음에는 山神에게 다음에는 道士에게 의뢰를 구하여 보시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필경은 晝宵一念이 오직 한 의심뿐으로 점점 計較頓忘하는 三昧의 경지에 드시었으니 이 사이에 생활의 곤란과 심신의 피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으시었다. 이십육세 되시던 병진 삼월 이십육일 이른 아침에 동천의 曙光을 보시고 정신이 문득 상쾌해지시며 積歲에 맺혔던 의두가 풀리기 시작하여 드디어 대각을 이루시었다. 대종사 대각을 이루신 후 前聖의 證悟處를 참고하기 위하여 諸家의 경전을 열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가라사대 서가모니불은 진실로 聖中聖이라 하시고 이에 부처님에게 연원을 정하시고, 다시 현 시국을 관찰하시매 世途가 이미 위기에 당하여 그 구제사업이 시급함을 생각하시고 처음 구인제자를 얻으사 최초법어를 설하신 후 영육쌍전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먼저 저축조합을 설치하사 길룡리 海面의 간석지를 개척하시고 무아봉공의 정신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서원을 명하시었던 바 구인이 한가지 혈인의 신성을 받치시었다. 기미 팔월에 이, 삼제자를 데리시고 錫杖을 부안 봉래산에 옮기시어 오년간 주재하시며 교리제도의 초안을 대략 마치신 후 갑자 사월에 下山하시어 총부를 익산군 신용리에 건설하시고 불법연구회라는 임시 명칭으로 교문을 공개하사 제자 수십인으로 더불어 주경야독의 艱苦한 생활을 하여 가며 교리 훈련을 시작하시었나니 교리의 대강은 一圓을 최고 宗旨로 하여 이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는 동시에 천만사리를 다 이에 통일케 하시고, 사은사요를 윤리로 하여 종전에 미달한 모든 윤리를 다 통하게 하시고, 삼학팔조를 수행으로하여 종전에 편벽된 일체 수행을 병진하게 하시며, 다시 영육쌍전 理事並行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등 大諦를 밝히사 사통오달의 원융한 도로써 모든 법을 簡易能行케 하신 것이다. 이와같이 교리훈련을 실시하는 일방 다시 생활개선에 착수하사 虛禮刪削과 미신타파며 자작 자급과 수지대조 등 방법으로써 새로운 사업기초를 쌓으사 춘풍추우 이십여년에 夙夜勤懇하시와 일정의 압제와 싸워가며 모든 고난을 극복하시어 교단 건설에 오로지 심혈을 다 하시더니 無常이 신속하여 계미(1943) 오월 십육일에 대중을 모으시고 생사진리의 대법문을 최후로 설하신후 유월 일일에 열반상을 보이시니 世壽는 오십삼이요, 開法이 이십팔년 이었다. 때에 徒衆들은 攀號僻踊하여 그칠줄을 몰랐고, 일반사회의 嗟嘆하는 소리 連하여 마지 않았으며, 허공법계와 삼라만상이 다같이 嗚咽하는 기상을 보이었다. 그후 교단은 한결같이 선사의 유업을 이어 시국의 萬難를 겪으며 대중이 一心同進하던 중 을유 팔월에 민족이 해방이 되자 신생국운의 발전과 아울러 교세가 점차 확장되매 병술사월에 교명을 원불교라 정하고 이를 천하에 公示하였다. 오오라 대종사는 일찌기 曠劫種聖으로 궁촌벽지에 생장하시어 학문에 修習이 없었으나 사업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완강한 중생을 대할지라도 제도의 만능이 구비하시였으며, 기상은 泰山喬嶽 같으시나 춘풍화기의 자비가 겸전하시고 처사는 磊磊落落하시나 세세곡절의 진정을 통해주시며, 옛 법을 개조하시나 大義는 더욱 세우시고, 시대의 병을 바루시나 완고에는 그치지 않게 하시며, 만법을 하나에 總攝하시나 분별은 오히려 역력히 밝히시고, 하나를 만법에 施用하시나 본체는 항상 여여히 들어내사 안으로 무상 妙義의 원리에 근거하시고, 밖으로는 사사물물의 支流까지 통하시어 일원대도의 바른 법을 시방삼세에 한없이 열으시었으니, 이른바 백억화신의 여래시요 集群聖而大成이시라, 영천영지 천만겁에 무량한 그 공

덕을 만일이라도 표기하기 위하여 이 돌을 세우고 이 명을 지어 가로되,

「奧苦宗師 曠劫種聖 應化機緣 救世徒衆 自修自覺 經路艱難 建教事業 平地造山 一圓大道
萬法之母 教門通達 衆聖共會 二八年間 夙夜勤懇 千萬方便 無量法門 法輪復轉 佛日重輝
人天咸戴 六衆同歸 竪亘三際 橫遍十方 雨露之澤 日月之明 無邊功德 標以斯石 永天永地
慕仰無極 圓紀 三十八年 四月 二十六一 立」

□ 제1대 성업봉찬가(성가 11장)

영산대회 삼천년에 정법상법 다지내고 법신불인 일원상은 신앙대상 수행표본
계법말이 돌아와서 온갖사도 편만하니 사은사요 계정혜는 제생의세 교재되고
한심할사 세상인심 전도되고 말았구나 무시선과 무처선은 극락가는 정로로세

비로봉에 해비치고 황하수에 물맑으며 춘풍추우 이팔성상 주야근간 하옵실새
무궁화꽃 새로피고 도덕바람 다시불어 침식구망 하옵시고 심혈경주 하옵시와
구주이신 대성종사 이세상에 오시었네 무아무공 그정신을 실천으로 뵈시더니

전남영광 길룡리에 응화탄생 하옵시니 계미오월 십육일에 남녀대중 모우시고
기상늠름 하신뒤에 도량웅대 하옵시며 생사진리 대법문을 최종으로 설하신후
의두연마 깊으시고 실천력이 강하셨네 보름지난 유월삭일 열반상을 나투셨네

병진삼월 이십육일 대원정각 하옵시고 오호애재 호호비재 유아영부 떠나시니
현시국을 관찰하사 최초법어 설하신후 청천벽력 나리운듯 남녀도중 통곡성은
우리교단 창립한도 삼십육년 정하셨네 전인류의 망극이오 온누리의 슬픔일세

제일회의 십이년은 남녀제자 만나시고 천명하신 일원대도 이땅위에 비치우사
제이회의 십이년은 교서편찬 하셨으며 만생령의 제도문을 널리열어 주셨으니
제삼회의 십이년은 훈련실시 하옵셨네 유연자는 영천영지 신수봉행 하오리다

□ 공덕탑 노래(성가 117장)

1

위대할사 이 탑 이름 공덕탑이니
총지부와 각기관의 이뤄놓은 사업
출가 재가 노력인의 결정체이요
티끌 모아 태산이 된 금자탑일세

2

영산초에 숯을 팔아 자본 세워서
조수내왕 바다 막아 언답 만들고
익산 총부 건설 당시 엿장사이며
만석평의 밭갈기도 눈물겨워라

3

기타 각지 지부기관 시작할 때도
동분서주 절약절식 단행하시어
알뜰하신 창립정신 발휘하시고
끊임없는 유지정성 바치시었네

4

황금의 탑 차지하신 탑주제위여
어찌 다행 이런 사업 하셨던가요
다생겁래 끊임없이 계속하시사
대봉도위 대호법위 얻으사이다.

□ 성업봉찬회 대회식

〈致　辭〉

信과 誠으로 쌓은 功德塔

二十六年 동안 지내온 經路를 다 말하자면 말도 많고 情曲도 많겠으나, 이 자리에서 그를 낱낱이 다 말할 수는 없는 일이고 다못 第一代를 決算함에 當하여 그간의 發展過程을 回想하고 未來를 展望할 때에, 實로 洋羊한 우리의 敎連을 三十萬 敎徒 여러분과 함께 自祝할 수 있게 된 것을 마음 든든히 여기는 바입니다. 오늘 이 紀念式典은 우리 大宗師와 本敎를 創立하신 한량없는 聖恩과 聖德을 追慕奉讚하는 同時에 創立 三十六年 동안 輔弼에 盡瘁하신 先輩諸位의 功德과 이 大業에 同參한 우리들의 榮光을 아울러 讚揚驅歌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 大宗師께서는 久遠劫來에 세우신 큰 誓願으로써 世上이 어지럽고 道德이 疲弊된 危機에 出現하시와 過去의 묵은 道德을 改革하시고 當時의 그릇된 世道人心을 바로잡기 爲하사 千萬方便과 無量法門으로써 春風秋雨 二十余 星霜을 日政의 壓迫과 싸워가며 모든 難關 中에서 이 敎團을 建設하셨습니다.

癸未 六月 時局의 緊迫이 最高度에 達한 때에 靑天霹歷같은 大宗師의 涅槃을 當하여 앞길이 크게 암담한 경우에 處하게 되었을 때에도 同志 여러분은 一心同力으로 聖業을 繼續하는 데에 더욱 精進하였습니다. 그리하여 乙酉年 民族解放과 함께 正式 敎名을 天下에 公示하고 敎化·敎育·慈善 三方面으로 長足의 發展을 보아오던 중 國初의 運路가 險難하여 六·二五 動亂의 아슬아슬한 고비를 지내며, 收復以後의 經濟的 難國을 能히 克服하고 오늘의 敎勢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實로 大宗師 聖靈이 위에서 冥護하신 餘蔭이요, 三十萬 男女 同志 여러분이 信과 誠으로 쌓아 올린 功德塔입니다.

오늘 이 式典을 當하여 第一代 중 各 方面의 業積을 表彰할 때에 宗師님의 金口로 親宣하시는 致辭를 받들지 못하는 것은 三十萬의 한결된 千秋의 遺恨이나 또 一方 그後 이만한 法位의 昇進者와 事業의 功勞者를 輩出하게 된 것을 限없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或 紐密한 點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다 드러나지 못한 點도 있을 것이나, 賢明한 同志 여러분은 참다운 功勞表彰은 陰符에 더욱 正確한 바 있다는 것을 깊히 理解하실 줄 압니다.

끝으로 한 말씀 付記하는 바는 第一代 期間 중은 모든 面에 있어서 基礎的 準備期間이었고, 宗師님의 聖業奉贊은 이제부터 새 出發이란 것을 알아서 지금까지의 成果에 自足하지 말고 第一代의 그것 보다 열배 백배의 精誠과 活動으로써 第二代의 빛나는 大業에 邁進하자는 것입니다.

始創 三十八年 四月 二十六日

宗 法 師

〈記念辭〉

眞正한 뜻으로 사회를 善導

저는 넘치는 기쁨을 抑制하지 못하고 이자리에 서 있습니다. 總支部 敎徒代表 및 有功人 여러분과 本敎設立 學校의 學生 여러분이 參集한 가운데 開敎 三十六年의 第一代 聖業奉贊紀念式典을 擧行하게 되니 脹溢하는 感激과 歡喜를 禁할 수 없습니다. 더우기 오늘은 國會議長代理로 來參하신 先生님들을 비롯하여 社會各界 各層의 指導者 諸位의 臨席을 얻게 되었음은 本敎의 길이 잊지 못할 榮光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狂風怒濤의 跳梁하는 가운데 굳센 防波堤가 되어 우리를 保護해 주시고 오늘의 이 紀念式을 安全하게 擧行할 수 있도록 守護하여 주신 國軍將兵 諸位께 甚深한 感謝를 드려마지 않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敎徒여러분! 本敎의 이 三回 三十六年이란 우리가 오래전부터 벼르고 벼르던 그날이올시다. 本敎 創建의 基礎를 닦고 오랜 歲月에 끊임없이 發展하여 나갈 터전이라 作挽한 가장 意義깊은 第一代 滿期의 날이올시다. 이와같이 慶事스러운 날에 가장 높이 받들어 뫼실 大宗師主이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여 우리 가슴 한 모퉁이에 스며드는 슬픔과 쓸쓸한 생각은 다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回顧하건대 丙辰 三月二十六日 大宗師主의 大圓正覺으로 말미암아 始作된 本敎 創設은 物質文明이 偏重하였던 社會에 오직 精神開闢의 烽火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첫 出發은 微微하였었지마는 그 發展은 比較的 堅實하였으니 海水來往의 干潟地를 막아 十餘町步의 沃畓을 만들었고 그를 基本으로 하여 敎徒敎化에 專心하였으니 自然 在家信徒에게 依賴하던 在來習慣을 是正하게 되었고 晝耕夜讀의 艱苟한 生活을 實踐窮行케 되었으며 따라서 그 中間에는 가지가지의 눈물겨운 逸話를 앎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以小成大의 事業方針은 三十六年間에 支部, 支所 等의 六十個所와 敎徒 二十餘萬名의 確乎한 基盤을 作挽할 수 있엇습니다. 그러나 그 發展過程은 決코 坦坦大路는 아니었으니 或은 엿목판을 지고 거리거리를 行脚하였고 或은 製絲工場, 고무工場에서 過重한 女工노릇으로 工夫밑천을 삼아 本敎의 敎理訓鍊을 받는 等 그 勞苦야 말할 것도 없거니와 全敎徒가 한 團結로써 生活改善에 一意邁進하여 가는 本敎의 發展이야 말로 倭警들의 頭痛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深夜二時項까지 돌아가지 않고 大宗師主를 괴롭히던 그 옛날의 憤激도 이제는 追憶으로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苦難속에서 三世衆生의 慈父이신 唯我宗師主는 忽然 涅槃相을 나투시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듯 땅이 꺼진듯 慟哭하던 十萬敎徒들의 斷腸은 果然 무엇이라 表現할 수 없습니다. 그런지 三年 그 무서운 쇠사슬은 풀리게 되었습니다. 卽 乙酉八·一五 解放은 우리 敎團蘇生의 가장 高貴한 膳物이었으니 感謝에 넘치던 그때 우리는 그를 救護事業으로서 熱烈히 表示하였던 것입니다. 裡里, 서울, 釜山 等地에서 歸還同胞 救護에 그 任務를 完遂하였고 孤兒院, 養老院, 中學, 大學 等 育英 慈善事業에 모든 誠意를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누가 뜻하였겠습니까? 一九五十年 六·二五事變이란 회오리바람이 불게 되자 數많은 志士들은 虐殺의 對象이 되고 累億의 財物은 재로 化하여 그悲慘한 戰亂은 우리 敎團의 發展에도 多大한 支障을 주었으며 오늘날 우리의 紀念式典에도 적지않은 影響을 주어 모든 것을 自肅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無事時의 豪華版 보다는 苦難中의 簡素한 式典이 우리에게는 한층 더 큰 感激를 자아내게 합니다. 本校는 一回를 十二年式하여 三回 三十六年을 一代라 하고 第一代를 創業期로 하였습니다. 一回 十二年間은 男女弟子를 求得하시어 本敎를 創設하셨고 二回 十二年間은 敎科書를 編纂하여 永遠한 앞날에 精神의 指針이될 敎理를 闡明하셨으며 三回 十二年間은 人材를 養成하여 十方世界를 佛恩化할 일꾼을 길러내었습니다. 時代의 混亂, 經濟의 逼迫은 計劃完成에 갖은 障碍가 되었으나 우리는 最善의 努力을 다해왔습니다. 今次動亂은 全世界의 耳目을 集中한 가운데 全面戰爭이냐 平和냐의 岐路에 서 있습니다. 武力보다도 思想으로 싸우려는 戰爭性格의 變化는 우리의 任務가 加一層 무거워짐을 再認識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의 過去를 回想하고 그를 밑천으로 萬年의 大計를 세우고 眞正한 뜻으로 社會를 善導하며 平和를 招來할 長久之策을 講究하여야 되겠습니다. 卽 굳은 決心과 徹天의 精誠과 盤石같은 信仰으로써 이 發展에 盡力할 것을 大宗師 聖靈前에 다시금 盟誓를 올리는 同時에 끝으로 未安한 말씀 한마디 더 드릴 것은 通化改革에 따른 誠金 未收와 金融杜絶로 말미암아 奉贊會의 二大事業인 大宗師 頌德碑와 大學校舍建築을 完了한 後 여러분을 맞이하여야 되겠는데 事情上 不得하였음을 널리 諒察

하시기 비오며 一言 紀念辭에 代하는 바입니다.

西紀 一九五三年 四月 二十六日

圓佛教 第一代 聖業奉贊會長 李 共 珠

〈祝 辭〉

民族의 거울로 이바지

貴教의 歷史 깊은 第一代 三十六年 紀念聖典을 삼가히 祝賀합니다. 貴教에서는 距今 四十年前 人智가 未開한 그때부터 「物質이 開闢되니 精神을 開闢하자」는 標語 下에 退廢하여가는 道德을 바로잡아 精神啓發에 貢獻이 크셨으며 特히 自尊心이 強한 우리 겨레는 世系 어느 民族에 못지않는 재능을 가졌으나 서로 團結心과 公益心이 부족함으로 外邦의 信任을 얻지 못하고 또한 內亂을 免치 못한 現段階에 貴教의 三十六年間 나투신 業蹟은 글자 그대로 一心團結 無我奉公의 理想을 實踐하셨으며, 또한 一般社會의 冠婚喪祭 禮法은 우리가 實行하면서도 많은 不便을 느껴 오던 바이나 누가 敢히 손을 대지 못하던 터이거늘 近 四十年 前부터 이를 改革하시어 國民生活에 便利를 주고 社會에 德音을 끼치게 하셨으니, 果然 貴教의 業蹟은 우리 民族의 거울이 되고 世界平和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宗教의 힘으로서 우리 國家·우리 民族이 全世界에 드러나도록 最善의 奮鬪와 努力이 倍前 繼續되시기를 빕니다.

檀紀 四二八六年 四月 二十六日

內務部長官 李 範 奭

圓佛教成業奉贊會 歸中

〈祝 辭〉

조국통일의 힘

親愛하는 30만 圓佛教 教徒 여러분, 여러분은 聖스럽습니다. 왜 聖스러우냐 하면 世界人類는 科學文明의 偏頗的인 發達로 因하여 제1차 제2차 大戰을 겪고 現在 제3차 大戰이 勃發하려 하여 全人類가 戰慄과 恐怖속에 싸여있는 이때에 여러분은 聖스럽게도 부처님 聖業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塗炭에든 蒼生을 건지고 混亂한 戰局을 平穩化하기 爲하여 半世에 가까운 동안 聖業完遂에 努力하였으니 여러분은 참다운 佛弟子인 同時에 平和建設에 거룩한 功勞者입니다.

앞으로도 圓佛教의 四大綱領인 正覺正行·知恩報恩·佛教報及·無我奉公을 몸으로 體得하고 精神으로 實行하여서 祖國統一과 世界平和의 決定的인 힘이 되어 주시기를 佛教를 가장 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親愛하는 圓佛教 教徒 30萬 여러분에게 誠心으로 期待하오며 더욱더욱 여러분의 健鬪가 繼續 開發되시기를 빌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檀紀 四二八六年 四月 二十六日

文教部長官 金 法 麟

圓佛教聖業奉贊會 貴中

〈閉式辭〉

드높인 濟世의 炬火

尊敬하는 貴賓여러분! 親愛하는 男女教徒同志여러분! 비바람 가고 오는 三十六年間 구름 헝클

어지고 地表 흔들리는 거센 날씨에 피로 맺히고 땀으로 쌓아올린 저 聖塔위에 꽃이 피어 오늘 복숭아꽃 휘날리고 萬生이 向榮하는 하늘 아래 歷史的 圓佛教 第一代 聖業奉贊紀念의 聖典을 非常한 感銘속에 榮華스럽게 끝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感激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人類歷史가 비롯한 後 가장 數많은 사람에 影響을 미치고 幸福을 가져다준 圓覺의 正法 부처님의 福音이 東方 우리나라에 再生의 掛鐘을 울린 지 아직 그 年條 얕으나 이 法威 가장 正當하고 眞理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같은 盛旺을 이루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轉法의 瞬息에 處하는 滄海一衆으로 여겨온 人生自體가 바로 永遠不滅의 去來를 建設하는 根源이 되고 尺度라는 것을 새로이 認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이 高貴한 感激을 가슴에 안고 許多한 人間들이 몰려가는 저 苦海에 조초로운 涅槃의 꽃송이를 우리 먼저 걱어들고 달려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를 향하여 외치고 드높인 濟世의 炬火는 無窮한 將來에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잎이 피고 가지 무성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힘차게 퍼져나갈 것을 祝願하고 確信하면서 그동안 誠心을 다해 주신 여러 貴賓 및 同志諸位께 感謝를 드리며 人事말씀에 代합니다.

제1대 성업봉찬사업회

기념대회장 李 共 珠

※ 이외 제1대 36년 성업봉찬회 대회식에 축사를 보내주신 분은 국회의장 申翼熙, 대법원장 金炳魯, 전 국회부의장 金東成·陳憲植, 한국은행부총재 金禮鎔, 총무처장관 尹錫五, 부산시장 孫永壽·李鍾郁씨 등이었으나 당시 녹음한 테이프 상태가 고르지 못해 재생이 어려워 함께 정리하지 못했음(편집자註).

□ 法勳證 증여식

〈致 辭〉

慧命과 福綠의 主人公

本教 第一代 創業元勳 九陀圓 大奉道의 法勳을 贈與하는 이 式典에 臨하여 나는 初創期 우리 會上에 貢獻한 工夫, 事業 兩方面의 偉大한 功勞와 後世萬代의 一切生靈에게 길이 미쳐질 거룩한 法勳을 모든 大衆과 함께 높이 讚揚하는 同時에 在家 出家의 男女同志들이 여기에 마음을 다시 새로이하여 다 같이 大奉道의 큰 精神을 더욱 振作해서 앞으로 우리 會上에 數많은 大奉道가 끊임없이 輩出되게 하여 주기를 빌고 바라는 바입니다. 대개 어느 時代를 勿論하고 濟生醫世의 거룩한 會上이 열릴 때에는 반드시 教化를 主宰하는 法의 主人이 있는 同時에 또한 그 教化를 널리 宣揚하고 法을 크게 護衛하는 事業의 主人이 있어서 卽 理事兩面의 同一한 힘으로써 그 會上의 威信을 넓은 世上에 드러내는 것이 마치 龍이 물을 얻어서 能히 變化를 이루고 鵬鳥가 바람을 만나서 바로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 부처님 會上에서는 十代弟子와 歷代祖師가 法의 主人이 되는 同時에 當時의 國王長者들이 事業의 主人이 되었었고 孔子의 門庭에서는 孔門十哲과 子思 孟子 程子 朱子 等이 主人이 되는 同時에 子貢 등이 事業의 主人이 되었었으며 우리 會上에서는 一代內 入等有功人이 千七百五十人이고 그 中 准正師 以上 法位者가 二十六人, 正師以上 法位者가 九人, 工夫 事業을 合한 元成績으로 准特等 有功人이 九人인 中에 오늘의 大奉道 元勳이 中心이 되어서 在家 出家의 모든 同志와 함께 工夫, 事業 兩方面의 主人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時代의 古今은 各各 다르나 會上을 建設하는 方路는 서로 같은 것이며 特히 우리會上에서는 過去世上에 比하여 또한 몇가지 어려운 일이 더 있었으니, 우리 會上의 由來가 當時의 有勢한 家門에서 始作한 바가 아니므로 처음 建設에 그 艱難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一般社會의 信用土臺가 甚히 薄弱하였는데 그러한 때에 이 土臺없는 事業을 드러내신 苦生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으며 本教 建設의 時代가 過去와 같이 單純한 時代가 아니므로 모든 機構가 甚히 複雜하게 되었는데 이 複雜한 事業들을 建設하는 데에 드신 力量이 또한 過去에 例가 없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당하여 우리 大衆들은 九人先輩로 비롯하여 歷代 專務出身들과 歷代 居塵出塵들이 우리 會上 創立을 위하여 바치신 모든 功勞들과 그 中 特히 오늘 大奉道 元勳의 거룩한 法勳를 다시금 추모하고 讚揚하는 同時에 그 분의 精神과 行蹟을 우리가 다같이 받들고 본받아서 다같이 限없는 世上에 큰 慧命과 큰 福祿의 主人公이 되기로 다시 發願을 하고 이 공부 이 事業에 끊임없이 精進하기를 거듭 부탁하는 바입니다.

圓紀 四十二年 四月 二十六日

宗法師 宋　　奎

〈祝　辭〉

曲調있게 活動하신 行範

어느 時代 어느 會上이든지 한 會上이 열리려하면 그 스승과 그 弟子의 際遇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 그 스승이 아니시면 그 弟子를 얻을 수 없고 그 弟子가 아니면 그 스승의 法을 받들어 後代에 傳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이 弟子를 만났을 때의 기쁨과 弟子가 스승을 뵈올 때의 기쁨은 이 天下의 무엇으로도 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靈山會上에서 부처님 法을 穩全히 받드신 十代弟子며 千二百五十人 大衆과 代代로 繼繼承承해서 弟子가 法을 받들어 왔으므로 그 法이 오늘날까지 傳하여 내려왔고 孔門에 十哲과 七十二賢을 비롯해서 代代로 弟子가 繼承해 왔으므로 오늘날까지 傳하여 왔고 예수님께서 十二使徒와 後代의 여러 弟子가 法을 繼承했으므로 只今까지 傳하여 내려오지 아니하였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會上에서도 처음 八山先生님을 비롯해서 八·九人 先輩와 繼繼承承 弟子가 法을 받들어 나오던 中 一代 三十六年의 總決算을 지낸 結果 等內에 入參한 有功人이 總 千七百五十人이 되시는 中 特히 准特等에 該當되는 아홉분 元勳이 계시는데 當時 法階로 專務出身中 特號 法勳을 받으신 九陀圓 李共珠선생님께서 大宗師님 法을 빛내어 왔으니 이에 對하여 교중을 代表해서 慶賀를 올리는 바입니다. 우리 大宗師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法을 가지셨다 할지라도 八·九人의 弟子가 그 法을 받들지 아니하였으면 오늘날의 이 隆昌을 어찌 볼 수 있었으며 오늘의 이 大奉道가 아니시면 後日의 우리 教勢 隆昌을 어찌 촉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大奉道께서는 大宗師님의 거룩하신 心法과 行法과 言法을 다 받으시려 專心專力하셨으며 웃어도 우리 教中을 위하여 웃으셨고 울어도 우리 教中을 위하여 울으셨으니 그 하나 하나 曲調있게 活動하신 行範은 後來同志로서 거울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萬天下 同志諸位께서는 一代內 首位의 法勳을 받으신 이 大奉道께 向하여 마음껏 慶祝을 올리는 同時 將來에 福慧가 길이 俱足하시기를 빌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마음을 묶으면서 慶慕를 올립니다. 오늘날의 이 慶祝은 韓國一隅의 이곳에 모인 우리 同志만이 慶祝을 올릴 날이 아니요 全人類 및 六途四生이 다 같이 慶慕하여야 되겠습니다. 特히 今年에 「네팔」에서는 第四次 世界佛教徒大會가 열렸고 「此律賓」에서는 全

國民이 宗教再武裝運動을 盛大히 展開하였고 앞으로 「세이론」에서 五月 中에 世界平和佛教大會가 열릴 것이요, 오늘날 이 자리에서 開教紀念과 法動贈與式이 열림으로 因해서 亞細亞 전반이 道德으로 指向하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이 聖스러운 運動이 世界萬邦 만민에게 뻗쳐나가서 가까운 時日內에 國內로는 南北統一과 國外로는 世界一元化가 되기를 함께 빌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圓紀 四十二年 四月 二十六日

總部代表 金 大 擧

〈祝 辭〉

三界衆生이 慶祝

大地江山에 봄빛이 넘쳐 흘러 萬有群生이 새 生命을 즐기는 陽春佳節에 거룩한 法動贈與式 聖典을 받들게 되오니 큰 道場에 端日이 玲瓏하고 온 누리에 榮光이 燦爛하도다. 이에 同志로서 滿恭의 祝意를 禁할 수 없습니다. 大凡 大道는 如如하여 宇宙에 充滿하고 古今을 꿰어 쉴새없이 運行하나니 自然界에 있어서는 萬物을 發育시켜 千態萬狀의 造化를 나타내나 人間界에 있어서는 或 나타날 때도 있고 或 숨어질 때도 있으니 이는 聖人이 世上에 오심에 따라 이 道가 나타나고 聖人이 世上을 떠나심에 따라 이 道가 숨어지나니 이 道가 나타날 때에는 光明時代이요 이 道가 숨어질 때에는 暗黑時代일 것입니다. 그러한 요즈음 娑婆世界에 聖人 가신 지가 이미 오래인지라 大道가 正脈이 끊어지고 邪法이 勢力을 얻어 物慾이 날로 치성하여 人類의 精神이 向路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天地에는 循環往復의 理致가 있으므로 優曇鉢羅 옛가지에 새로운 꽃봉우리가 靈山會上의 봄 消息을 傳하여 줍니다. 때마침 機緣을 따라 救世聖者이신 大聖宗師主께서 이 世上에 出現하시게 되오니 오랫동안 숨어졌던 大道가 비로소 싹을 트게 되었습니다. 大宗師主 처음 大道를 正覺하사 救世大志를 決定하셨으나 暗黑한 天地에 알아볼 자 뉘 있으리요. 胸中 가득한 큰 經綸을 의논할 곳 전혀 없어 仰天嘆息하신 적도 얼마였을 것입니다. 때마침 隣近에 한 親友이신 八山 金光旋 先生이 남먼저 大聖者의 出現을 알으시고 直接 모든 凡節을 받들어 드리며 큰 法의 실마리를 傳하여 次次 八·九人의 同志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大宗師主께서는 마치 暗液에 燈불을 얻은 것 같으셨으니 이로부터 三寶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大宗師主께서는 十方世界를 眼中에 두시고 大法輪을 널리 굴리려 하실제 두루 천하에 일꾼을 摸索하시던 중 마침 서울에 行駕하시사 九陀圓 李共珠先生을 만나셨습니다. 先生은 일찍 高潔한 志操와 超然하신 理想을 가지셔서 汚濁世界를 罪惡으로 보고 차마 몸 붙이기를 싫어하시와 그 世上 밖에의 참길을 찾으시려고 하시던 때였습니다. 한번 眞摯하신 法音을 들으신 後 一生의 大志를 決定하셨으니 大宗師께서 마치 摩尼寶珠를 얻은 듯 하였습니다. 先生은 드디어 人間世慾生活을 斷然히 淸算하시고 家財를 아낌없이 던져서 事業에 돕고, 精神을 모조리 짜내서 教化에 바쳐 집을 잊고 몸을 잊어 物心兩面으로 全生涯를 犧牲하셨나니 壯하도다! 高潔一貫한 奉公的 精神이여 쌓이고 쌓인 빛난 功勳은 一代創業中 最高位로 오늘의 大奉道의 尊號를 받게 되셨나이다. 以上 大奉道 李共珠先生께서는 瘠薄한 世上에 大道의 뿌리를 북돋고 育成시켰나니 이 大道가 널리 드러남에 따라 苦海衆生이 다 같이 救濟의 惠澤을 입게 될 것이며 暗黑이 變하여 光明이 되고, 怨望이 變하여 恩惠가 되어 平和 安樂의 大樂園이 나타나리니 여기에는 大奉道의 숨긴 功德이 따라 자랄 것입니다. 天地의 道가 끊어지지 않는 以上 이 會上道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오니 會上道法이 길이 連하여 짐에 따라 先生의 功德도 길이 길이 傳해질지라. 古今世界를 通하여 모든 事業가운데 이 功德같

이 큰 것은 없나이다. 이는 한갓 우리 敎團의 慶事만 아니라, 三世衆生이 다같이 춤추고 慶祝할 바임으로 이에 首位團을 代表하여 두어줄 祝辭를 올리는 바입니다.

圓紀 四十二年 四月 二十六日

首位團代表 李 完 喆

〈祝 辭〉

永生의 길을 摸索

偉大한 날 오늘 이 자리에서 法勳을 받으신 九陀圓 大奉道 先生님께 몇 말씀 領德辭를 올리고자 합니다. 敵國의 侵略下 風前의 燈火格인 祖國의 危機에 當하여 身命을 아끼지 않고 勇名을 一世에 떨친 戰士에게 國家는 勳章으로써 感謝의 뜻을 表하고 一國의 文化發展에 獻身의 努力을 傾注한 篤學과 萬人의 欽慕속에 一代를 風靡하는 藝術의 創造人에게 對하여도 勳章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勳章이란 이들의 빛난 功勳을 길이 欽仰하는 永遠의 紀念일 것이니 壯하고 貴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社會의 尊待와 一身의 安樂을 期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當者는 激勵되고 三者는 勸奬되어 새로운 情熱과 強烈한 意慾이 發現되는 源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의 法勳章은 本質的으로 그 意義를 달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法勳章은 世界導師이시요 四生慈父이신 靈父님께서 주시는 施賞이시요 無量劫 無量衆生으로부터 보내어지는 感謝推仰이며 時空을 超越하여 가시지 않는 光彩와 風雨에도 씻기지 않고 塵埃에 더렵혀지지도 않는 法界에 燦然히 세워진 功績塔의 化現이오니 人間이 人間에게 賦與하는 것과는 根本的으로 差異가 있다고 斷定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稀貴한 法勳章을 받으신 오늘의 主人公인 先生님께 우리들 敎務一同은 滿腔의 敬慕와 祝賀를 올려마지 않습니다. 回顧하건대 距今 40여年前 靈山의 一遇에서 濟生醫世의 旗幟 드높이 衆生濟度의 첫 걸음을 내어 딛으신 大聖宗師님께서는 初創의 多事한 가운데 많은 人材를 必要로 하였을 때 九陀圓 李共珠先生님께서는 裕足한 家門의 出生이심에 時代의 文明을 마음껏 호흡하시고 장차 女性界의 指導者가 되시려는 큰 뜻을 품으시어 하염없는 人生의 길을 걸으시려던 次 大宗師님을 뵈온후로 發한 一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이 時間까지 秋毫의 變함이 없이 精神, 肉身, 物質을 完全히 바치시어 이 工夫 이 事業推進의 原動力이 되어 오셨습니다. 些少한 事業의 進行에도 過重한 負擔이 되어 오던 그 當時 防堰工事의 資金調達에도 總支部 法堂建設에도 先生님의 힘과 精誠이 아니들은 곳이 없으셨으며 一花木庭園의 無名草에도 先生님이 힘이 스며 있지 않음이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出家修道의 그날부터 靈父님을 側近으로 모시어 法說의 受筆이며 會報의 發刊이며 事務의 整理이며 山積하는 일의 처리에 寧日이 없으셨고, 地位의 高下, 일의 貴賤을 가리심이 없으셨습니다. 더우기 敎化에는 格別의 努力을 傾注하시어 70餘個 支部, 支所 발을 아니 들이신 곳이 없으시고 밤마다 날마다 들려오는 大獅子吼는 大聖宗師님 法音을 그대로 傳하여 敎徒同志들에게 항상 法悅에 잠기에 하여 주셨으며 잘 때도 그 事業 앉아도 그修道 先生님께 對한 同志들의 欽仰의 情이 燎原의 불처럼 일어나고 있음도 결코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희들 敎務들에게는 항상 背後에는 先生님이 계시거니 하는 安堵感으로 一線敎化에 든든함을 느껴왔사오며 교단의 紀綱確立과 大小事의 處理에 一毫의 私가 없으셨습니다. 더우기 오늘날과 같이 교단의 눈부신 活躍時節도 아니요 社會의 認定을

받는 時節도 아닌 初創當時나 倭政彈壓下에서 物心을 바쳐버리신 先生님의 先見之明과 信仰力이 크심에 다시한번 推仰의 念을 禁할 길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感慨가 무량하옴은 靈父님을 모셔 直接 칭찬의 말씀을 듣지 못하옵고 大奉道 先生님을 이 자리에 모셔 저희들의 精誠을 올리게 되오니 유감 천만이옵나이다. 다만 先生님의 끼치신 功德을 입삽고 저희도 그대로 實踐躬行하여 眞實한 敎役者가 되오며 先生님을 龜鑑삼아 慧福의 터전에 永生의 길을 摸索하겠습니다. 이가 바로 先生님 德을 길이 仰慕하는 길이라 생각하옵고 功德의 말씀을 代하겠습니다.

圓紀 四十二年 四月 二十六日

敎務一同

〈祝　辭〉

—圓발에 씨 심어 붉은 꽃

萬花芳暢한 陽春佳日 오늘을 택하여 大奉道先生님의 거룩한 祝賀式에 祝福하는 말씀을 드린다는 제 自身도 空然히 勸善에 넘쳐 홀러 심장의 고동을 억제할 길이 없나이다. 式場內에는 大宗師님의 聖靈이 굽어 살피시고 鼎山宗師님 以外 여러 先輩어르신네를 모시고 이 넓은 成殿에 滿堂하신 우리 敎徒同志들이 모여 오늘 先生님을 우러러 받들어 祝賀式을 거행한다는 이 事實이 비록 地球上으로 보아서는 東半球 亞細亞州의 一隅 半島 大韓民國 더욱 그 中에서도 全北 益山郡 北一面 한 모퉁이인 얼마 안되는 面積에서 거행되고 있는 行事이지마는 이 우렁찬 움직임은 全世界의 地軸을 振動시키는 첫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오늘 이 場內에 모이신 위으로 宗法師님을 비롯해서 어린이에게 이르기까지 간직해 있는 마음 속의 기쁨은 똑 같은 하나에 一致混然되어 一末의 分別心을 容納할 수 없이 聖스러운 마음으로 꽉 찼을 것입니다. 回顧하면 大宗師主 一圓大道의 첫 깃발을 들으시고 외치시던 이미 40有餘年, 님은 가시고 안계시나 그 씨뿌리신 正法이야 東方에 떠오르는 햇살이 漸次로 全宇宙를 밝히듯이 不過 半世紀 未滿의 오늘 이와같이 成長하여 目擊하시는 바와같이 工夫와 事業面 卽 物心兩面으로 發展을 거듭하여 大宗師님의 내거신 우리의 標語 所謂 靈兩雙全의 實踐이 착착 완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再言할 必要조차 없는 大宗師님의 正法이 앞으로의 法之祖宗이 될 뿐더러 지어 놓으신 福慧兩足이 俱存하시므로 初創時부터 모든 좋은 因緣깊으신 弟子들을 糾合하사 大宗師님의 一圓宗旨를 傳授하실 手足같은 弟子들을 얻으셨으며 漸次로 多生에 盟誓하신 모든 弟子를 못얻으셨던들 어찌 오늘의 있음을 期約하리까. 勿論 大聖이 한 번 出世하사 度數를 짜실때 泛然하심이 있으리오마는 어찌도 이 凡夫等 우리가 생각할 때 저절로 滋味진 웃음이 용솟음치고 두손모아 瞑目할 때 千萬多幸과 感激과 歡喜의 눈물 저도 모르게 흐름을 깨달을 길 없나이다. 懶翁和尙같으신 큰 祖師님도 因緣을 못만나면 會上을 못펴 보시고 가신다고 들었는데 어찌도 우리 大宗師님께서는 男女老少 有無識 貴賤을 莫論하고 民主主義 平等主義의 圓滿하신 道風을 불리우신 先驅者이시던가! 더우기 封建的 固陋한 우리나라 男尊女卑思想을 쳐부수고 權利同一을 主張하신 先生님같은 거룩한 제자를 나게 하셨는지?

共珠先生님은 世上에 나올 때부터 多福한 家庭에 誕生되어 고이고이 자라는 中, 女子는 7歲부터 外出을 禁하던 世上에 五十有餘年前 舊習을 脫穀하고 새 文明의 첫 발길을 내 디디어 女子로서도 新文化의 高等敎育을 마치시고 女子로서의 豐富와 使命을 다 하셨으나 不幸히도 靑霜의 潔白을 지키시고 오로지 後日의 菩薩을 키우심에 餘念이 없으시다가 三十餘年前 大宗師님의 찾으심

을 받아 卽時로 母子 出家를 決心하고 專務出身을 誓願세워 오늘날까지 一毫의 私心없이 오직 公心에 불타는 熱情과 一貫한 精誠을 이 會上에 다 바치시고 단 하나의 生子 故 昌基先生은 一圓大道 暢達을 一生의 事業으로 大宗師님의 恩子로서 聖旨를 받들어 숨은 善行을 能事로 여기고 公에 불타는 菩薩로 認定될 만큼 남을 위하여 나의 生命까지도 헌신같이 버리는 짝할 수 없는 알뜰한 人物을 이 會上에 바쳐 基督을 낳으신 聖母 마리아를 凌駕하고 白首 휘날리는 오늘에 이 榮光이 가득찬 大奉道位의 第一號로 오르시니 어떠한 祝福의 말씀과 膳物로써 徵誠을 表할 길이 없나이다. 오직 無物中 無盡藏의 수지 白紙 한장을 올리오리.

이 先生님은 女子이시므로 이 말씀을 드리는 人間조차 自負心을 갖게 되며 同時에 이 꽃다운 先生님, 陋을 끼치지 않게 할 責任조차 느끼게 되며 어깨가 무거워지나이다.

임의 一片丹心 一圓발에 씨 심어서 붉은 꽃 푸른잎새 가지가지 무성하니 아마도 그 꽃이름 大奉道인 듯 행여나 시들세라 永劫不滅 하오고저 先生님이시어 담뿍 받으소서. 大宗師님의 聖靈이 微笑하시는 가운데 滿堂한 여러 同志들의 祝福을, 感謝의 歡喜를, 讚辭를 慰勞의 激勵를, 欽羨의 敬愛를 두팔벌려 안으소서.

圓紀 四十二年 四月 二十六日

在家教徒代表 成 義 徹

2. 개교 반백년 기념사업회

반백년 기념사업은 원불교의 70년 역사에서 가장 큰 도약을 이룬 제2의 창업이라 할 수 있다. 교단의 역사가 일제하에서는 민족수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으며 해방후 원기33년(1948) 정식교명《원불교》를 천명하고도 6·25 등의 난관으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여 원기38년(1953)의 제1대 성업봉찬 당시의 교세는 교도 3만, 교역자 260명, 교당 50개, 기관 18개의 수준이었다.

이에 대산종법사는 소태산대종사의 「사오십년 결실이요 사오백년 결복」이라 하신 경륜을 받들어 개교반백년 기념사업의 추진을 천명하였는 바, 원기40년(1955)부터 56년(1971)까지 거교적으로 전개된 개교반백년기념사업은 교세발전의 큰 계기가 되었으며, 제2의 교단창립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에 여기서는 가장 거교적으로 조직 운영된 특별기구로서의 기념사업회중 일지중심으로 자료들을 정리하기로 한다.

가. 발 족

원기48년(1963) 10월 1일, 제8회 임시수위단회는 반백년기념대회를 55주년에 갖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어서 10월 5일에 열린 제7회 임시교정위원회에서 제2안건으로 「개교5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이 총무부장 김근수의 제안으로 상정되어 중앙 10인, 지방 10인의 연구위원을 선임함으로서 개교반백년 기념사업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20인의 연구위원들에 의해 작성된 기념사업회 회칙은 원기49년(1964) 4월 28일에 개최된 제11회 정기교정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되고 이어 내정된 임원이 발표되어 이튿날 개최된 제12회 정기중앙교의회에서 개교55주년 기념사업회는 창립총회를 갖고 거교적인 발족을 하였다.

발족에 맞추어 4월 30일에는 교역자간담회에서 반백년 결실성업에 대한 종법사 특별유시가 발표되었는 바 발족의 과정에 수고한 20인 연구위원과 사업회임원 그리고 종법사 특별유시는 다음과 같다.

〈20인 연구위원〉

박장식, 이운권, 안이정, 김중묵, 이은석, 김윤중, 정자선, 김정용, 이공전, 김근수, 송원철, 김지현, 박재권, 이정무, 김이현, 이경순, 정진숙, 박은섭, 이성신, 송영봉.

〈기념사업회 임원〉

총 재 : 종법사
지도위원 : 수위단원
회 장 : 박광전
부 회 장 : 황정신행, 문동현, 김원도
사 무 장 : 정광훈.

開敎五十五週年 紀念事業推進에 對한 宗法師 特別諭示

그동안 세계적으로 전개되었던 운동들이 대개는 과학(科學)운동으로서 세상에 끼친 바 공헌도 크지마는 도리어 세상을 위태롭게도 만들어 인류를 자못 심각한 순간에 몰아 넣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위태로움에서 인류를 구제하기로 동서양의 지성인(知性人)들 간에 논의되고 있으니 참으로 이 운동이라야 오늘날 세상에 붙은 불을 끄고 인류 동포에게 새로운 생명수(生命水)를 보급하게 될 것입니다.

초창 당시에는 대종사께서도 상조조합(相助組合)을 두셨었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기브스」운동이 있으니 이 모두가 일심합력하여 세상을 한가지로 좋게 이끌어 나가려는 모임이요, 운동으로서, 아무리 위대한 힘이라 할지라도 고립(孤立)한 하나로서는 약한 것이며, 별스럽지 않은 힘이라도 합해 놓으면 위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종교와 도덕의 갈망(渴望)이 날로 더해가는 요사이 우리 교단사상(敎團史上) 영원히 빛날 큰 대회를 몇 해 앞두게 된 것을 실로 의의가 큰 일이며, 이 큰 일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해 동안을 특별보은(特別報恩)기간으로 정하고 재가, 출가가 일심합력하여 성업완수(聖業完遂)의 일대

(一大)운동을 전개하는데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고 모든 정성을 이에 뭉쳐야 할 것입니다. 이 운동이 결실(結實)되고 더욱 발전됨으로써 현 세계의 위태로움을 구원할 수 있고 치열히 타오르는 저 불들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의불가독식(義不可獨食)이며 물불진력(物不盡力)」이라,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홀로 독차지 하거나 너무 지나친 무리(無理)는 오히려 뒷날의 곤란을 부를 뿐이나, 이 점에 각별한 주의로써 이 사업의 완결을 위한 거교적인 합력(合力)이 있기를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나. 조직 및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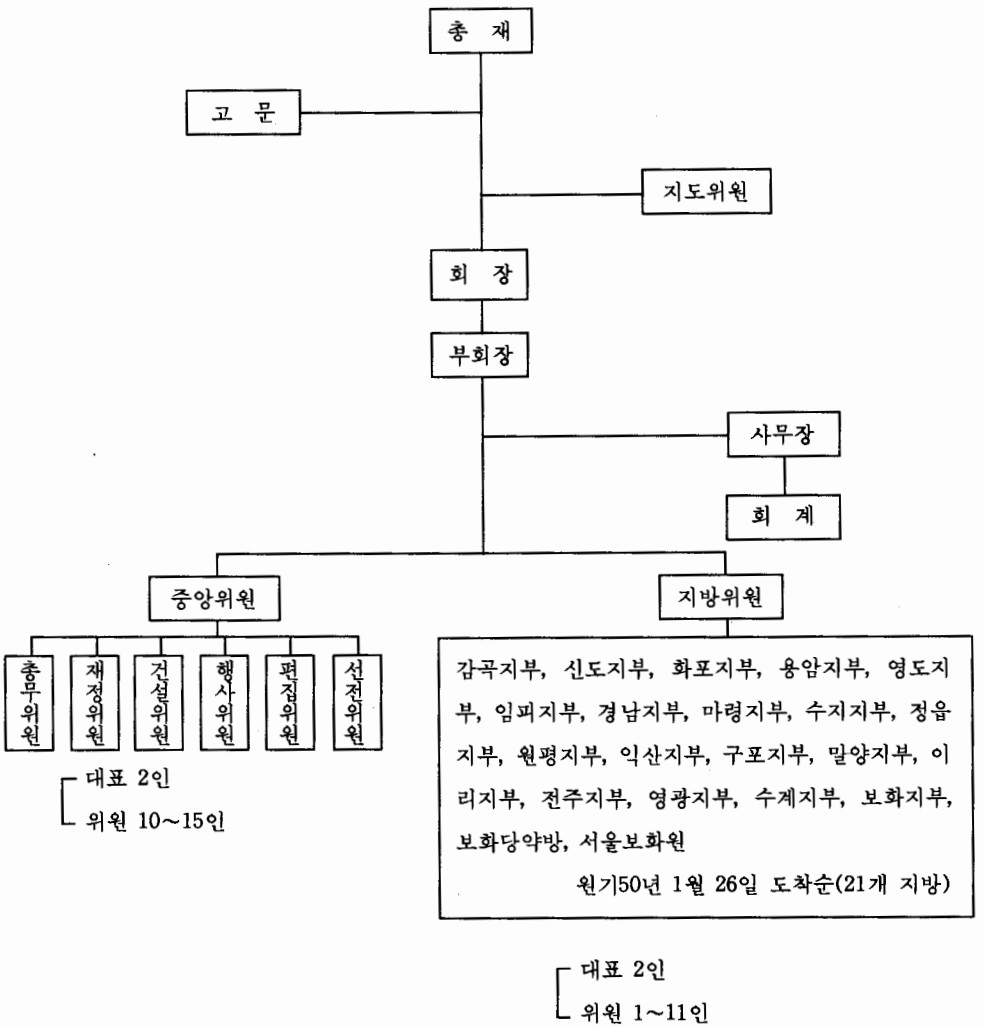

開教五十五周年 紀念事業會部署委員名單

〈가나다順〉

總　　裁　宗法師
顧　　問　(未定)
指導委員　首位團員一同
會　　長　朴光田
副 會 長　黃淨信行 文東賢 甘元道
事 務 員　丁光薰
會　　計　白水晶
事 務 員　金法宗

總務委員

代表	總務部長, 金正勇							
委員	李恩錫	李亨遠	李濟性	朴選一	朴正薰	朴東現	徐大峻	梁慧經
	丁慶浩	鄭高善	鄭性德	趙峻谷				

財政委員

代表	財務部長, 李喆行							
委員	金西悟	金成珠	金理玄	金中默	郭炳源	李建春	李聖信	李善友
	李炳恩	李正務	牟相峻	朴世經	朴恩燮	朴濟權	宋達俊	宋慈明
	宋靈智	柳壯順	尹順培	尹周現	丁盛熟	鄭潤才		

建設委員

代表	事業部長, 金仁龍							
委員	金光昌	李建春	李炳恩	李百徹	李中正	吳海仁	陸桂植	尹致聖
	丁鶴現	曺明亮	池海元					

行事委員

代表	金允中	全性完						
委員	姜妙眞	姜雲祥	金致局	朴光振	朴正薰	朴恩燮	朴性來	宋修恩
	宋靈鳳	吳曉圓	尹致聖	丁盛熟	趙正勤	崔正均		

編輯委員

代表	教務部長, 李空田							
委員	李恩錫	李鍾圓	朴性來	朴濟衆	宋順鳳	宋天恩	柳基現	全二昌
	田宗哲	全八根	鄭維誠	丁慈善	韓正圓	Svece女史		

宣傳委員

代表	曺專權	柳基現						
委員	金中默	金大鉉	金正貫	金智玄	李宗明	朴光振	朴濟現	林善揚
	張聖鎭	鄭維誠	趙正勤	韓正釋				

地 方 委 員

甘谷支部

代表　張慧省　鄭潤才
委員　韓智緣

普和堂藥房
代表　趙暻錫
委員　職員一同

新都支部
代表　鄭高奉　裵道寬
委員　鄭東鎭　吳忠信　柳三眞　金公源　卞世潤　林大輪　林富仁華

化浦支部
代表　朴賢一　金陽正
委員　金一正　成樂源　崔智允

龍岩支部
代表　鄭儒錫　李滿修玉
委員　金修全　李成均

影島支部
代表　徐世仁　黃萬德
委員　金精進行　朴法眼　張孝文　崔淨善　李如意華　柳南仁華

臨陂支部
代表　梁法寬　高藝菴

慶南支部
代表　梁道信　李大石
委員　李正慧　韓英仁　洪利他行　辛大明華　孫泰暎　金光碩　孫慈溫　金永秀

서울普和圓
代表　曺一貫　吳興仁
委員　李修悟　丁明益　曺大恩　金榮喆　李玄一　吳致雲　曺妙順　金慶珍

馬靈支部
代表　崔根淑
委員　李大釋玉　柳喜榮　金汝玉

水旨支部
代表　崔正學　金昌元
委員　朴諸相　崔眞覺　朴永哲　金奉修　房始圓　金妙淑

井邑支部
代表　朴成席　殷古川
委員　崔龍善　羅喆重　權常中　鄭大振　田永眞行　愼和淑　李潤振　林光信
辛智仁　辛東薰

院坪支部
代表　趙東悟　辛敬悟
委員　李主仁　白起德　邊致中　金公明華

益山支部
代表 朴道院 成鐵石
委員 姜洪淑 成玄珠 郭康蓮華
龜浦支部
代表 朴安宅 金裕景
委員 崔法龍 金慧圓 邊孝星 尹鶴仙 朴霽雲 金光德 裵道局 曺萬鉉
李保光 尹龍德
密陽支部
代表 張景晏 孫振經
委員 石法行 鄭濟玉 孫德宜
裡里支部
代表 金順基 郭炳源
委員 權鳳安 姜俊玉 金正雲 崔善局 姜慧烈 張法仁 黃喜徹 申寶京
李正浩華 金光明華 曺明亮
全州支部
代表 許法均 金永樂
委員 柳正德華 趙容碩 張炳道 張喜善 柳景俊 張德宣 洪世定 林裕重
靈光支部
代表 曺光哲 金靈振
委員 李敬悟 柳靈明 鄭妙蓮華 朴亨南 金濟明 宋滿燮 徐順基華 鄭正根行
岫溪支部
代表 柳成澤 柳聖春
委員 鄭滿水 李成執 金在亨 李滿淑 全貞觀玉 柳瑞完 李根明 朴淸輪
普化支部
代表 韓僥燃 崔聖順
委員 金敬智 黃永國 李善永

(一月二十六月現在 到着順)

다. 사업 경과보고.

연 월 일	내 용	자 료
48. 10. 1 10. 5	제8회 임시수위단회 : 반백년기념대회를 55주년에 갖기로 결의. 제7회 임시 교정위에서 제2안건으로 「개교5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것」이 총무부장 김근수 제안으로 상정. 지방 10인 중앙10인 등 20인의 연구위원을 선출함(박장식, 이운권, 안이정, 김중묵, 이은석, 김윤중, 정자선, 김정용, 이공전, 김근수, 송원철, 김지현, 박제권, 이정무, 김이현, 이경순, 정진숙, 박은섭, 이성신, 송영봉).	* 교정위원회 회의록

48.	교화 삼대목표추진운동 시작	원광 43호 P.14~15.
49. 4. 28	제11회 정기교정위원회에서 연구위원이 작성한 취지문과 「개교55주년 기념사업회」 회칙 심의 무수정 통과, 내정된 임원 발표 〈총 재:종법사, 지도위원:수위단원, 회 장:박광전, 부 회장:황정신행·문동현·감원도, 사무장:정광훈〉	
49. 4. 30	종법사 특별유시(원광 45호. P.86) 교역자 간담회에서	원광 45호 P.92.
49. 4. 29	창립총회, 제12회 정기중앙교의회에서 개교55주년 기념사업회 발족〈오후2시~5시 20분, 장소:대각전, 234명 출석〉. 정광훈 의장에 선임되어 진행. 사업목표 및 기금조달에 관하여 논의함	* 창립총회 회의록.
	·기념사업회 취지문 및 회칙 임원진	원광47호 P.52~61
	·사업계획	회의록및원광40P.50

연 월 일	제 목	내 용			자 료
49. 5. 14	표어 현상 모집	5월 14일부터 6월말까지 표어 현상 모집 당선작 1편:1천원. 가 작 수도인:교전1권			원광 45호 P.85
7. 10	당선작 발표	·당선작:없음. ·가 작 ·반백년 기념사업 합력하여 이룩하자〈李亨遠〉 ·다가오는 반백주년 정성다해 꽃피우자〈李鍾圓〉 ·55주년 기념향해 뭉쳐서 한맘으로〈崔敬浩〉 ·재가출가 합력하여 일원성업 이룩하자〈李大權〉			원광 46호 P.4
49.	성가제정	〈날자미상〉 123장			
49. 9. 28	성업완수특별기도	9. 28~10. 3〈제12회 교역자 강습기간중〉 기도문〈원광 47호 P.44〉 이후 매년 기도 실시.			
50. 3. 28	편집위원구성	명 칭	주 간	의 원	
		·대 회 휘 보	이공전	박제중	
		·교 사	이은석	송순봉, 이종원	
		·기 념 문 집	유기현	송천은, 전이창, 박성래	
		·기 념 사 진 첩	김정용	전종철, 오응도, 노홍원	
		·외국어판교전	전팔근	정유성, 정자선, 한정원, 스페체여사	
		·법 보	이공주 이은석		
50. 3. 29	법위사정	제13회 정기수위단회에서 제1대 성업봉찬마감 이후로 첫 법위사정실시키로 결의(반백년을 맞이하여) 그후 종법사 유시 발표			원광 48호 P.105 유시:원광 50호 P.8

52. 3. 24	사무장 경질	정광훈 후임으로 김정용사무장 취임.	
53. 1. 20	총부청사진시안	연세대 주남철교수를 초청, 4만원을 드려 총부 청사진 시안 위탁함.	52년도 55주년 사업 보고서 P.5
53. 3. 27	사업운영 계획서 마련	제2회 위원총회에서 운영계획서 마련 사업안 임원구성. 총부구내 배치시안 마련	개교55주년기념사업 운영계획서
53. 10. 1	공청회	남녀 교역자를 대상으로 사업회의 기본방향과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공청회 개최.	
11. 4	명칭 변경	공청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11월 4일 제2회 상임위원회(수위단원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함. ① 명칭:개교 반백년기념사업회로 변경. ② 총부유지재단 설립키로 함. ③ 기념관을 변경키로 함.	
54. 6. 4	기념관 설계	건설위원회에서 서울 천일건축 연구소 김영찬씨가 부산부국건축 설계사 윤근수씨에게 약설계의뢰.	
7. 7	원심회 발족	고문추대를 위한 전초작업으로 원남교당 봉불식을 기해 정계, 학계, 실업계에서 활동중인 교도와 교당대표로 구성.	원불교신보 제4호 머리기사참조.
9. 4	서울기념관 추진위 구성	·제34회 임시 수위단회의가 원남교당에서 개최 제2안건으로 서울 기념관 건립을 인준. ·앞서 오전9시 수위단원과 서울지구 교무 간부 연석회의를 개최, 종법사는 개최사에서 55주년 사업은 3대 보본사업(① 건축사업 ② 총부 양대기반사업 확립 ③ 법위향상)을 추진 완성 독려. ㄱ. 선정된 추진위원 회장:박동현. 부회장:문동현, 공덕종, 방성심.	·신보 제8호 10면 ·반백년기념사업회 사업보고서 3대 보본사업자료(신보 제10호 2면)
54. 11. 10	건물배치확정 및 설계도 확정	재정건설위원, 상임위원, 교정원 상임위원 설계사 등 24명 참석 최종확정.	신보 제13호 1면
54.	사무처보강	사무차장에 정성덕 보강	
55. 1. 25	종합협의회	원여고교장실에서 분과별추진위원 30명이 5시간동안 협의. 종합청사진 마련	신보 17호 1면
55. 2. 12	사무실이전	정화원 3층→구정원으로	

55. 2. 24	총회일자결정	제36회 임시수위단회의에서 총회의 시기는 56년 4월 하순. 개최 장소는 서울, 총부, 영산으로 함.	신보 19호 1면
〃	교무임명	수위단회의에서 송자명(수계)을 사업회 교무로 사업회 강화	
55. 3. 21	신축건물배치도 확정	대한건축협회장 강명구씨와 홍익대학 전명현교수 초청 배치도 확정.	
3. 29	종법사 특별유시	2. 24일 수위단회 결의에 의하여 종법사 특별유시 내림.	신보 22호 4면
55. 3. 29	기념관 영모전 기공	13:30분. 중앙교의회 의원 등 400명 참석	신보 21호 3면
4. 16	종법원 신축	4월 16일 착공, 11월말에 완공. 12월 4일 개원식 가짐.	
4. 22	한상철 부임	기념사업회 건축공사 감리인.	
4. 30	삼대목표결산		신보 26호 4면 〃 45호 1면
5.	법위사정 특별지시	교정원장특별지시 발표, 진행예정발표	신보 24호 4면
5. 27	훈장발송	시상기준에 의한 훈장인쇄 발송.	
7. 12	서울회관추진위 창립	종로지부에서 회의. 박장식교정원장 이운권, 이정화, 문동현외 서울지구 교무 요인 29명 참석. 위원장:박동현, 부위원장:감원도·신원관·최행덕·권봉안, 총무위원장 : 이재암, 재정위원장:장동윤, 섭외위원장:고현광, 15층 빌딩으로	신보 31호 1면 29호 1면
8. 30	서울기념관 대지 희사	김재위씨가 1,000평 희사 건축 뜻 밝힘. 기념사업회 상임 재정 건설 및 교정원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수락됨.	·55년도경과보고서 ·현황 및 기획사항 (55. 11. 10 현재)
9. 6	교리시험실시	법위사정의 일환으로	신보 26호 1면 31호 3면
9. 21	행사 일정 확정	56. 4. 25~28. 총부에서 4. 30 영산 10월경 서울예정.	신보 36호 1면
55. 10. 13	서울회관기공	56년 8월 완공예정 1,500명. 18회 교역자참석자 등 대내외인사.	신보 35호 3면
11. 19	정산종사 성탑	배형식(홍익대)교수 설계 확정(신보37호 3면) 3. 31. 제5회 위원총회에서 하반영씨 도안으로.	신보 46호 7면
12. 8	교구법위사정	일주일간	신보 37호 1면
56. 2. 24	기념문총 편집확정	4, 6배판 900페이지로 2,000부 예정	55년도 사업보고서 P.17

56. 3. 31	기념대회 10월로	제5회 위원총회에서 연기키로 사유 4월 대회중 대통령 선거 관계.	
4. 6	10. 7일 대회 확정	상임위원회에서 (신보 46호 7면)	
8. 30	교정원비상체재	대회 완수를 위해 교정원 비상체재 전환 위원회대표 경질	신보 55호 1면
9. 6	기념대회 사무실 현판	신보 56호 1면	
9. 1	대각비준공 반백년대회	신보 56호 7면 신보 58호, 59호. 역사적 의의 신보 57호 4면	

라. 기념사업의 내용

반백년 기념성업 수행 7년간의 기념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발간사업

교서발간사업은 반백년기념사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반백년을 계기로 더욱 본격적인 추진을 보았다.

정산종사의 사대경륜의 하나인 교재정비와 같은 맥락에서 교서편찬 전문기관인 정화사가 수행한 원기47년(1962)의 『원불교교전』 간행에 이어 원기50년(1965)의 『불조요경』, 원기52년(1967)의 『원불교예전』, 원기53년(1968)의 『원불교성가』, 원기56년(1971)의 『정산종사법어』와 영문판 『원불교교전』이 발행이 그것이다.

한편 원기50년(1965) 3월에는 기념사업회 편집위원을 발간기획물별로 구성하고 그 편찬을 서둘었는바 원기55년(1970) 2월 『기념문총』의 편집이 확정되었는데(4·6배판 900쪽 2,000부 간행 예정) 당시 구성된 편집위원과 『기념문총』의 편차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

명 칭	주 간	위 원
대 회 휘 보	李空田	朴濟衆
교 사	李恩錫	宋順鳳, 李鍾圓
기 념 문 집	柳基現	宋天恩, 全二昌, 朴性來
기 념 사 진 첩	金正勇	田宗哲, 吳應道, 盧弘圓
영 문 판 교 전	全八根	鄭維誠, 鄭慈善, 韓正原, 스페체여사
법 보	李共珠 李恩錫	

『기념문총』 편집확정

원기56년(1971) 2월 24일 오후2시 제7회 편집위원회에서 『원불교개교반백년기념문총』 가편집회의를 개최한 이후 그동안 가편집을 하여 3월 24일 오후2시에 제8회 편집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단권으로 합본하여 4·6 배판 900페이지로 편집 확정을 하였다(2,000부 발행예정).

圓佛教 開教半百年 紀念文叢

目 次

刊 行 辭	圓佛教 半百年 紀念事業會長	朴 吉 眞
紀 念 法 語		宗 法 師

第 一 部

題 目	枚 數	執筆者名
一圓相에 對하여	40	朴 光 田
圓佛教 教祖論	320	宋 天 恩
圓佛教의 眞理觀	300	柳 炳 德
圓佛教의 信仰論	336	韓 鍾 萬
圓佛教의 修行論	347	韓 基 斗
圓佛教의 平和觀	306	金 道 隆
圓佛教教學概說(試論)	350	李 恩 錫
性理의 研究	130	金 斗 憲
圓佛教의 哲學的 考察	170	韓 相 璉
圓佛教의 文化史的 意義	50	李 恒 寧
一圓相小考		李 箕 永
圓佛教와 兒童教育	47	朱 貞 一
無의 研究	134	田 元 培
誠實論	93	安 秉 煜
正道와 偶像崇拜	95	黃 山 德
韓國佛教思想의 進路	120	金 東 華
人間과 基督教	100	金 在 俊
韓國教育 半世紀의 回顧	101	金 鍾 喆
後進國家의 經濟	102	趙 東 弼
圓佛教에 對한 담밖에서의 堤言	32	柳 達 永

第 二 部

圓覺聖尊少太山大宗師碑銘並序		
鼎山宗師碑文		
一圓相에 對하여. 三同倫理에 關하여	30	宋 鼎 山
心月頌. 教理頌	35	金 幾 千
信仰과 修養	22	宋 道 性
學而不能	11	金 光 旋

專務出身依服制限論	11	李東安
農村改良과 敎理宣傳에 對하여	10	朴大完
新我의 修鍊	13	柳虛一
彌勒佛世界	26	徐大圓
道學을 工夫함에 대하여	20	全飮光
防堰精神의 發揚	5	宋慧煥
宗敎人의 三大要素. 合理的 祈禱를 履行하자	14	李完喆
○○○○	○○	金大擧
人生과 修養	25	李共珠
欲望과 克己	19	李雲捲
無我의 修養	22	金永信
祈禱와 心告生活	15	吳宗泰
眞實하게 살아가자	19	丁光薰
圓佛敎靑年의 나아갈 길	10	朴將植
새會上論序說. 法認節由來와 意義에 대하여	48	李空田
敎團運營의 姿勢	22	金允中
圓佛敎敎役者像	29	丁盛熟
以團治敎의 理念과 實際	100	趙正中
圓佛敎의 敎育精神	41	全敬進
圓佛敎禮法의 特性	72	韓正釋
圓哲學形成의 基礎的 方向	16	李廣淨
韓國思想史를 通해본 圓佛敎	30	金承煥
農村敎化의 問題	32	沈道正
都市敎化의 問題	35	朴淸秀
日曜敎理學校의 實態	27	徐慶田
海外布敎의 問題点	62	全八根
敎役者의 社會奉仕 精神	35	白智明
宗敎와 藝術	39	金聖澈
圓佛敎聖歌作曲 및 그 普及의 課題	42	宋官恩
敎團과 女性의 位置	30	宋圓徹
圓佛敎言論의 使命	31	孫正允
三同倫理實踐要綱	28	張聖鎭
나의 生活, 나의 工夫標準	30	全二昌
나의 誓願 나의 座標	13	辛道亨
法位等級解義	74	朴恩局
내 마음속의 大宗師	○○	首位團員
○○○○ ○○○(3편)	○○	會 說(選)

第 三 部

A Search for the Ultimate
—Are there any similarities between Nagarjuna, Whitehead and sotaesan in their way of explaining the novelty ····· Bong kil Chung
Won Buddhism as a reforming element of Korean Buddhism ····· Wi Jo Kang
Buddhism as a living religion in the modern world ····· Reo. Jack Austin Sieglinde Svece
Buddhism and Asian Technology ····· Richard A. Gard
The Practice of Faith ····· Ralph L. Goggin
The Encounter of the World Religion ····· Russell young

第 四 部

圓佛教半百年史(草稿) ····· 400枚 ····· 李 閑 山

2) 교화 3대목표 추진운동

이 운동은 교정원 교화부가 주관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원기48년(1963) 3월부터 원기56년(1971) 2월까지 8년에 걸쳐서 전개되었는 바, 양적으로 2배에 가까운 교세의 확창을 이룬 성과큰 사업이었다.

교화 3대목표 사업이란 ① 연원달기 ② 교화단불리기 ③ 연원교당만들기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위해 당시 교정원에서 발표한 요강을 전재하면 다음과 같다(원광 제43호 14~15쪽).

敎化三大目標

敎 政 院

대종사님께서 우리 회상 초창당시에 우리 회상 전도를 예언하신 가사가운데 「四, 五十년 결실(結實)이요 四, 五백년 결복(結福)」이라는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회상은 창립 四, 五十년에 이 나라에서는 완실한 결과를 볼 것이요. 四, 五백년에는 온 세상에 이 법이 편만하여 일체생령의 한가지 귀의하는 바가 될 것이라는 뜻이니 창립 五〇주년 결실기(創立五十週年結實期)를 바로 앞둔 우리 교단 출가 재가의 모든 교도는 돌아오는 새 기운과 더불어 힘을 한데 뭉쳐 다음의 교화 3대목표(敎化三大目標)를 달성해야 하겠읍니다.

◇ 교화 3대목표(敎化三大目標)

一, 연원(淵源)달기

교도는 九인이상의 연원(淵源)을 가지라는 것이 대종사 창립의 일대정신이시니 우선 한사람이 한사람 이상의 연원달기 운동을 전개 합시다.

二, 교화단(敎化團)불리기

새로 입교를 하였거나 이미 입교한 교도라도 이름뿐이요 실지 교도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분이 많으니 이단치교(以團治敎)의 법을 더욱 부흥시켜 모든 교도들이 사종의무(四種義務)를 잘 이행함과 동

시에 우선 한단에서 새로 한단씩 불리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三, 연원교당(淵源敎堂)만들기

각 교당에서 연지교당(緣地敎堂)을 이룩하여 이 나라와 세계에 일원대도(一圓大道)가 편만하도록 해야할 것이니 우선 한교당에서 한교당씩 만들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3) 법위향상운동

기념성업의 내용에 있어 외적으로 건설사업에 예산의 80%를 책정하여 교단면모를 갖추고 교화 3대목표추진으로 양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가장 소중한 성업이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법위향상운동을 내적으로 혜명의 등불을 밝히는 운동이었다.

이에 대산종법사는 원기50년(1965) 10월 교도 법위사정실시에 따른 특별유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앞서 3월에 개최된 제13회 정기수위단회에서는 제1대 성업봉찬 마감(원기38년) 이후로 반백년을 맞이하여 첫 법위사정을 함으로써 전교도의 법위향상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같은 취지로 전개된 전교도 법위향상 운동을 원기55년(1970) 4월 교정원장 특별지시로 법위사정 진행예정이 발표되고 동년 7월에는 법위사정의 일환으로 전교도 교리시험이 실시되었는 바 당시의 종법사유시와 교정원장 특별지시는 다음과 같다.

◇ 宗法師諭示〈원광 제50호 8~10쪽〉

法位査定 實施에 즈음하여

교단사상 반백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밖으로 우리 회상에 대한 기대가 자못 높아가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안으로 바삐 서두르지 않으면 아니될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 전무출신은 물론 전교도의 심중에 법의 열매가 어느 정도 알차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에 아무리 큰 기대와 환영을 받는다 할지라도 안으로 간직한 법의 열매가 알차 있지 못한다면 오히려 큰 기대가 더 큰 실망을 주고 말 것이므로 밖으로의 발전도 중요하지마는 안으로 실력을 갖추는 일이 더욱 시급함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교단 반백년사를 대 도덕의 기초 동량을 세우는 기간으로 정하여 공부에 있어서는 무등등(無等等)한 대각도인(大覺道人)과 사업에 있어서는 무상행(無相行)의 대봉공인(大奉公人)을 많이 배출시켜 교단 자체의 결실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대각도인과 대봉공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진리의 광명이 더욱 밝아서 일체생령의 복전(福田)은 더욱 기름지게 될 것이니 앞으로 五十五주년까지 전 교단적으로도 대법풍(大法風)을 불릴 것은 물론 개인 개인에 있어서도 법의 성석(成石)이 더욱 굳어지도록 일심 적공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이와같이 교단에 있어서 대법풍을 불리고 개인 개인에 있어서도 수행에 자각의 정신을 일깨우며 정진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번에 법위사정을 교단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바이니 이로써 과거 六년을 기준으로하여 이제부터 다시 더욱 큰 적공을 드림으로써 앞으로 五十五주년대에는 얼마만한 실력을 갖춘 새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각자가 채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무부에서 하는 사정(査定)은 교무부 당국에 일임하고 자기의 법위는 자기 스스로 사정하는 마음 가짐이라야 과거를 반성하고 앞날을 채찍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따라서 공부의 진취도 빨라 큰 불과(佛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니,

이와같이 큰 불과를 얻어서 제도(濟度)의 실적을 쌓음으로써 대종사님과 선종법사님과 삼세제불 제성님들의 깊으신 은혜에 보답하는 동시에 진리계를 통하여 허공법계의 대법보(大法譜) 명단에 올라서 무량한 불보살의 대 법위를 얻어야 하겠읍니다.

◇ 교정원장 특별지시 〈신보24호(55. 5. 15)〉

금년도에 전 교단적으로 시행하는 법위사정은 반백주년 성업을 향한 전교도의 정신적 법의 결실운동으로서 원기50년도의 제1회 예비사정을 기초로 실시하는 정식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하는 뜻은 각자의 법위향상을 위한 것이요, 각자의 법위 향상을 참되고 평화로운 도덕세계 건설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 믿음과 수행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향상이 이루어짐이 없다든지, 내적인 인격향상은 되었으나, 남다른 실천으로써 자기 생활을 빛내고 사회를 위한 활동의 실적이 없다면 그 의의와 보람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6년만에 한번씩 시행되는 우리의 법위사정은 중생의 세계에서 불보살 성현의 위에 오르는 법위 6등급을 표준하며, 그간 자기의 마음공부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진리계를 통하여 각자가 사정하는 것이요, 또는 사무적으로 객관적인 사정을 하는 것이니 재가 출가 전 교우는 이 뜻을 충분히 이행하고, 금번 법위 일제 사정을 통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천여래 만보살의 법보에 오르고, 교단에 있어서는 대회상 대도덕의 기초동량을 확립하여, 교단 반백년 성업에 밖으로 사업의 결실과 안으로 공부의 결실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다같이 적공하고 합력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1. 재가 출가를 막론하고 전 교도는 누구나 각자 올바른 법위표준을 잡고 꾸준한 적공을 드릴 것이며, 사무적으로는 사정은 사무당국에 맡기고, 자신의 법위는 자기가 직접 사정하여 보고 향상시켜가는 마음자세를 가져 주실 것.

2. 전 교도는 사무당국의 방침과 진행에 적극 협조하며, 담당교무의 지도에 따라 심신을 더욱 가다듬고 일대 법풍을 조성하여 다같이 정진하여 주실 것.

3. 총 지부·기관을 막론하고 관계 책임자는 이 법위향상 추진의 중대한 사명을 깊이 깨닫고 사사로움이 없는 마음으로 사정에 유감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이 일이 원만히 마치도록 하여 주실 것.

법위사정 진행 예정표

종법사님 특별유시 및 교정원장 특별지시를 발표하여 전교단적으로 공부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일대법풍을 진작시킨다.

1. 특별기도실시

4월부터 매월 첫 예회마다 법위향상추진을 위한 기원식을 올리며, 특별 공부를 실시한다.

2. 전교도교리시험

1월초부터 약 2주간에 걸쳐 교무부 출제로 재가 교도교리시험을 실시한다(암기는 근행법에 한하고 공부정도 역량측정을 위주로 한다). 출가교도는 강습시 종법실 출제, 성리문제 연마예정.

3. 교도법위 기초 조사 및 사정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교무선생은 교도법위 기초조사를 실시하며 교도 각자가 자기사정을 실시해 보도록 한다(일주전 광고 일주일기도 실시후 예회때 다 같이 실시하게 한다).

4. 교구사정을 위한 특별위원 파견

11월 20일부터 교구 법위사정 사무를 돕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위단원을 중심으로 2, 3명의 위원을

교구에 파견한다.

5. 출가교도사정

추계 및 동계 교역자 강습시 각자 사정, 또는 신분검사 등을 실시하여 56년 1월초까지 기초조사를 마치고, 1월중순부터 사정위원 사정을 실시한다.

6. 수위단사정

2월중 수위단사정위원회에서 재가 출가 교도 종합 사정을 실시한 후 수위단 본 회의

이처럼 9월의 전교도 교리시험의 실시는 10월 교당 법위사정, 12월 교구법위사정으로 이어졌으며 법위사정의 결과는 원기50년(1965) 예비사정 때 대상교도 8,000명에서 원기56년(1971) 정식사정때에는 대상교당 9,000여명으로 급증하였다.

4) 건축사업

반백년의 건축사업은 기념성업 총 예산의 80%를 투입한 비중있는 분야로 발전하는 교세에 맞추어 중앙총부와 영산성지의 면모를 갖추고자 추진된 사업들이었다.

그 결과 원기56년(1971) 총부 구내에 반백년기념관, 영모전, 정산종사성탑, 종법원 등이 건립되었고 영산성지 노루목에는 소태산대종사의 대각을 기리는 〈만고일절〉비가 건립되었다.

건설사업의 경과를 파악해 보면 원기49년(1964) 4월에 통과된 회칙에 건설분야사업으로 ① 영모전 건축 ② 정산종사성탑 건립 ③ 기념관(총부본관 고심) 건축 ④ 영산성지장엄 ⑤ 수양센터 건축 ⑥ 중앙총부 대지 확장공사의 6종사업이 명시되었는바 이는 수차의 연구검토를 거쳐 원기53년(1968) 3월 개최된 제2회 위원총회에서 개교반백주년기념사업운영계획서를 구체화되었으며 여기에는 동년 1월에 위탁해 작성했던 총부건설청사진안이 첨부되어 있었다. 건설위원회는 이어서 원기53년(1968) 신축건물 약설계를 마련하고 이를 공정에 부쳤으며 원기54년 6월 기념관 설계를 의뢰하는 한편 동년 11월 총부 신축건물 배치도를 확정 반품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신축건물 배치도는 재검토되어 원기55년 3월 제2안(현재배치)으로 조정되고 3월 29일 기념관과 영모전의 기공식이 있었으며 3월 31일에는 정산종사성탑설계안(배형식씨 설계)이 제5회 위원총회에서 확정되었다. 이어 4월 16일 종법원 신축착공 12월 4일에 개원식을 가졌으며 정산종사성탑도 11월 19일 하반영씨의 설계안으로 변경되어 착공하였다. 이와같은 건설사업의 추진은 이듬해 9월 영산성지에 대각비준공과 10월 거행된 반백년기념대회에서 낙성식을 가짐으로써 완수되었다. 한편 원기55년(1970) 7월 서울회관건립추진위의 창립으로 시작된 건설사업은 8월 김정덕(재위)교도의 대지희사 10월 기공 등으로 이어졌으나 일명 남한강사건을 낳았는바 이는 남한강대책위원회에서 별도로 정리하기로 한다.

5) 총부유지기반 조성

경제자립은 영육쌍전의 가르침에 입각한 교단의 생활강령이다. 원기9년(1924) 당시의 중앙

총부는 만석평(萬石坪)의 밭갈기, 양잠, 양계 등 산업부의 활동을 통하여 생활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교단의 발전과 더불어 중앙총부의 기능과 역할이 비대해지면서 총부 유지대책은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수위단원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원기53년(1968) 11월 4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총부 유지재단 설립을 반백년기념사업의 하나로 책정하였다. 그리하여 총부유지기반 조성은 반백년기념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대산종법사께서는 이듬해인 원기54년(1969) 10월 12일 제17회 교역자강습 해제 법설을 통하여 반백년기념사업은 3대 보본사업(報本事業)의 완수에 있다고 하시면서 보본사업으로 ① 대기념 건축사업 ② 양대 기반확립 ③ 교도 각자의 법위향상을 강조하셨다. 여기에서 양대기반확립이란 총부유지기반과 사대봉공회 기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지기반 확립에 관한 종법사의 법설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물론 그동안 계획하여 온 각종 기념건축사업은 반드시 완수하여야 하겠지만 그 이상의 실없는 허장성세는 크게 경계할 문제이니 반드시 총부의 유지기반부터 확립해야 하겠읍니다. 사람도 철이 들면 일가친척이나 주위를 보살필 줄 알게되는 것같이 우리 교단도 앞으로는 국가와 세계의 빈곤, 질병, 무지를 물리쳐 나가는데 철든 사람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봉공회의 기반을 확립해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교단 형편상 봉공회의 기반확립은 56년도 이후로 미룰지라도 총부기반 확립만은 지금부터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원불교 신보 제10호〉

총부 유지기반 확립 문제가 결의기관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것은 원기55년(1970) 4월 2일 제37회 정기수위단회의에서였다. 제안자인 성정철(成丁哲)재무부장은 반백년 이후의 교단 운영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백년기념사업 기금 가운데에서 총부 유지재단 조성금의 책정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총부 유지재단 기금을 우선적으로 책정하기로 하고 각 지방에서도 협력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전주의 육경전교도가 희사금을 쾌척, 유지기반 조성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세칭 남한강 사태와 함께 유지기반 조성작업은 주춤하게 되었고 기금의 일부도 남한강 사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원기61년(1976)에 이르러 총부유지사업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발돋움치게 되었고 재산 조성은 교도의 희사금과 교단 각종 타재단 형성을 위한 특별사업의 희사금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불입한 돈으로 하도록 하는 회칙도 제정하였다. 회장은 대구의 이의성(李義聲)이 맡았다. 그리고 전주보화당과 영모묘원을 수익기관으로 하였다.

마. 반백년기념대회

반백년기념성업을 총 결산하는 기념대회는 원기56년(1971)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중앙총부와 영산성지에서 교단사상 최대규모의 행사를 거행되었다.

그러나 원기55년(1970) 9월 21일에 확정된 일정안에는 기념대회를 원기56년(1971) 4월 25~28일 중앙총부, 영산성지, 서울에서 거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안은 기념사업회 행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시안으로서 각급 유관회의를 거쳐 지상에 발표까지 되었으며 원기56년(1971) 3월초 기념행사 종합 프로그램으로 유인물화되어 전국교당과 기관에 배포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동년 3월 31일에 개최된 제5회 위원총회에서 대회기간 중 대통령선거가 있게 되는 등 대회진행에 많은 지장이 예상되어 10월로 연기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념사업회 상임위원회는 4월 6일 긴급회의를 소집 대회일정은 10월 7~12일로 변경 확정하여 지상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8월부터는 교정원을 대회 완수를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하였다.

9월 6일 기념관 하층에 기념대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대회준비에 돌입한 행사위원회는 포상자명단작성, 건설분야준공 및 봉고식 준비, 행사일정에 따른 제반 통보와 하위프로그램의 점검에 총력을 경주하였다.

이처럼 분주하게 움직인 결과 반백년기념대회는 전국의 교도와 인근의 주민까지 동참하여 3만의 인파가 신용벌에 운집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 宗法師致辭

대종사님께서 구원겁래에 서원을 세우시고, 돌아오는 대 문명세계에 제생의세(濟生醫世)의 높은 뜻을 실현하시고자 이 회상(會上)을 펴신 지 어언 반세기의 준령을 넘어서고 있읍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되살려, 개교반백년을 기념하고, 세계적 종교로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그동안 전 교단적으로 추진해 온 반백년 기념사업에 재가 출가의 여러 혈심 동지들이 정신 육신 물질 三방면을 통해서 음으로 양으로 기울인 정성 그대로가 알차게 결실하여 오늘 이 기념대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은 다시 한번 새로운 거보(巨步)를 내어 디디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 겪은 숨은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교단 반백년사에 끼친 모든 공로를 치하해 마지않는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반백년 사업 하나하나가 앞으로 교단 운영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임은 물론이나, 제생의세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영겁토록 이어 가기 위해서는 교단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할 것임을 오늘 거듭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무성할 수 없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그 수명이 장구하지 못한 것이니, 만물의 생장은 먼저 그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본(本)이 되고, 만사의 경륜은 반드

시 그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이 주(主)가 되므로, 우리가 목적하는 제생의세의 이 대업도 먼저 그 뿌리를 찾아 더욱 깊고 튼튼하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뿌리는 도덕이요 도덕의 뿌리는 회상이며 회상의 뿌리는 불보살이요 불보살의 뿌리는 마음공부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일원대도에 근거한 마음공부로 교단과 세계의 뿌리가 될 활력을 갖추는데 있는 것이니,

첫째는 삼학(三學)공부의 바른 길로 마음을 길들여 대중화력(大中和力)을 갖추는 일입니다.

세상에 고층 건물은 날로 하늘 높이 오르고 있으나, 우리 인간의 정신력이 크게 신장되지 않은 채 밖으로 건물만 높아지면 우리의 생활은 불안과 초조가 쉴사이 없고, 공포의 나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수양의 공부를 더욱 부지런히 하여, 마음에 안정을 얻어 평탄하고 안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로 정신의 힘을 길러가야 할 것입니다.

또는 방방곡곡에 천만촉의 전등이 어제가 옛날인양 날로 휘황하게 밝혀지고 있으나, 우리 인간의 지혜가 더욱 크게 밝혀지지 않은 채 휘황한 전등으로 불야성만 이룬다면 우리의 마음은 암흑의 구렁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리연구의 공부를 더욱 부지런히 하여, 일과 이치에 걸림이 없도록 마음에 법의 등불을 날로 크게 밝혀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수륙공(水陸空)의 모든 교통 수단이 날로 편리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우리 인간의 마음에 원만하고 뚜렷한 표준의 길이 없이 밖으로 고속도로만 늘어나고 모든 문명의 수단만 가속화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방향을 잃고 사로(邪路)와 미로(迷路)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업취사의 공부를 더욱 부지런히 하여, 매사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과불급이 없는 중도(中道)를 잡아서 탄탄대로에서 활보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날로 실천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수양 연구 취사의 三학 공부로 부지런히 적공(積功)하여 마음에 대중화력(大中和力)을 갖추어야 능히 모든 과학 문명을 선용할 수 있는 새 세상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사중보은(四重報恩)의 감사생활로 대감화력(大感化力)을 나투는 일입니다.

이 몸이 사는동안 가장 많은 시주를 받는 곳은 천지이시니, 천지는 대시주은(大施主恩)을 베풀어 있는대로 전부를 맡겨 주고도 털끝만한 관념과 상(相)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로 하면 먼저 응용무념(應用無念)한 천지의 대시주은을 체받아 정신 육신 물질을 쓰되 오직 상없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이 사는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신 분은 부모이시니, 부모님은 대 자비은(大慈悲恩)을 베풀어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무자력할 때 생육해 주시고 언제나 잘 되기만을 빌고 가르쳐 주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로 하면 먼저 자력없을 때 생육해 주신 부모님의 대자비은을 체받아,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노유와 병약 등 자력 없는이를 늘 보호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이 사는동안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은 동포이시니, 동포는 대협조은(大協助恩)을 베풀어, 사농공상의 각 기관과 유정무정이 서로 돕고 의지하여, 사는 바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로 하면 먼저 자리이타(自利利他)로 도와준 동포의 대 협조은을 체받아 대인 접물에 오직 상부상조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이 사는동안 가장 많이 보호해 주는 것은 법률이시니, 법률은 대보호은(大保護恩)을 베풀어, 도덕 정치 과학 등 각 방면으로 수신(修身)을 비롯하여 생활을 개선 향상하며 평화롭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일을 밝혀주고 살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로 하면 법률의 대보호은을 체받아 오직 준법지계(遵法持戒)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몸은 사은(四恩)의 공물(公物)이요 은(恩)이 뭉쳐서 되어 있으니 배은은 하지 말고 보은을 하며, 원망은 말고 감사하는 생활로 살아가면 대감화력(大感化力)이 나타나서 하는 일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요, 가는 곳마다 덕화를 나투어 평화를 생산하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세째는 사요(四要)의 원만한 실천으로 대평등력(大平等力)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평화는 서로가 인권을 존중하는 데서 이루어지고, 참다운 인권은 스스로가 자력을 갖추는데 있는 것이니, 남녀와 인종을 가릴 것 없이, 오직 정신의 자주력과 육신의 자활력과 경제의 자립력이 확립될 때 인권은 골라지고 평화는 실현될 것입니다.

인류의 향상은 지식을 고르는 데에 있고, 밝은 인생은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도덕 과학 예술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이 배우는 성력을 놓지 않을 때 인류는 언제나 퇴보없는 발전을 거듭하게 되고 우리의 영생은 길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은 교육을 통해서 고루 발전되고 길이 유전되며 선각(先覺)의 가치는 후학(後學)을 가르치는 데에 있는 것이니, 서로가 정신 육신 물질간에 힘 미치는대로 교육과 장학사업에 합력하여 교육을 크게 골라놓아야 더욱 문명한 사회가 되어 길이 밝은 천지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생활은 공도자(公道者)가 많이 나와야 크게 골라지고 인생의 참다운 보람은 공익심이 발현될 때 얻어지는 것이니, 서로가 공도자를 높이 받들고 정신 육신 물질간에 힘 미치는 대로 남을 위해 주며, 공중을 위해 노력하는 생활이 되어야 인류의 생활은 크게 향상되고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세계는 한 집안이요 인류는 한 가족이니, 누구나 이 사요의 정신을 끝까지 실행하면 대 평등력이 발휘되어 이 세상에 낙원을 건설하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 수만대(代)를 통하여 대종사님께서 전해주신 일원대도의 광명을 세계 만방에 고루 비쳐주기로 하면 다같이 위에 밝힌 삼학공부의 대 중화력과 사중보은의 대 감화력과 사요실천의 대 평등력을 무엇보다 먼저 더욱 튼튼하게 길러 교단 만대의 뿌리를 삼고 제새의세의 활력소를 삼아야 천불만성이 쏟아져 나올 것이요 교운(敎運)이 길이 융창하여 억조창생의 홍복이 무궁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재가출가의 모든 동지와, 우리 모든 국민과, 우리 모든인류가 다 같이 이 반백년을 계기로 더욱 이 일에 일심동진하게 되기를 거듭 촉구하고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일원 세계.」

원기56년 10월 8일

종법사 金 大 擧

■ 式　辭

오늘, 원불교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를 경축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오늘을 위하여 여러해를 두고 꾸준한 정성을 기울여 주신 재가 출가의 교우 여러분과, 이 자리에 동참하여 주신 일반 참석자 여러분에게 두루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세계는 독선적 주장을 넘어서서 공존(共存)의 길을 찾으며, 과학은 달 나라에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앉아서 지켜보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지상의 여러 나라들은 아직도 자기 나라의 작은 이익만을 앞세우고, 고도로 발달된 과학은 평화적인 활용보다 전인류를 무서운 공포속으로 몰아넣는 핵무기(核武器) 경쟁에 동원되고 있으며, 모든 개인들은 지나친 편의주의에 떨어져서 물질 문명이 오히려 인간 정신을 제압하여 주종(主從)과 본말(本末)이 전도되고,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상실하는 비극을 낳고야 말았읍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 자체로 혜택을 받은 특수 사회의 특수층은 생활에 여유가 있으나, 거기에서 소외된 많은 수의 계층들은 여전히 무지와 빈곤, 질병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인류의 정신적 지주(支柱)가 되어야 할 종교들 마저 기력을 잃고 미신적인 신비와 요행만을 기다리는 퇴폐적 종교로 전락하여 마침내 인간 생활과 격리(隔離)되고 말았읍니다.

여기에, 반세기 전 한국의 남단, 전남 영광(靈光)일우에서 자수자각(自修自覺)으로 불지(佛地)에 이르신 소태산대종사(少太山大宗師)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기치를 높이 들고 종교로 하여금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길을 개척하기 시작하셨읍니다.

특히, 종교가 현실 생활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곳곳이 부처님이요 일마다 불공(佛供)」이라는 너른 신앙 길과 「언제나 선(禪) 공부요 어디나 선방(禪房)」이라는 큰 수행 길을 열으셨고,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고 영(靈)과 육(肉)을 쌍전하라」는 가르치심으로써 정신과 육신, 과학과 도학을 아울러 온전케하여 결함없는 원만한 인격을 이루도록 하시었으며, 진리 신앙과 사실 수행에 의거하여 새시대에 부응한 「인류를 위한 인류의 새 종교」를 지상에 세우시었읍니다.

원불교는 개교 이래 전변 무상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 교화 교육 자선 등의 세가지 사업으로 교단 본연의 사명을 다하여 이제 백만 신도를 내다보며 二백여 교당과 五십여 기관과 해외 三십여 개국과의 포교 연락망 등을 통하여 인류의 지상 목표인 하나의 세계 건설 사업을 하나하나 착실히 진행하고 있읍니다.

반세기의 연륜이 비록 짧으나, 교단 창립의 숭고한 역사와 사회 개조의 뚜렷한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날 표본으로 후대에게 물려 주고, 앞날의 비약을 기도하며 전 인류의 소원인 하나의 세계 낙원건설의 큰 뜻을 함께 하고자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읍니다.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의 충정을 통찰하시어, 앞으로 더욱 큰 성원(聲援)과 협력을 기울여 주시고 교우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회상이 세계적 대 종교로 크게 발전되도록 배전의 노력과 정진을 계속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기56년 10월 8일

원불교개교반백년기념대회

대 회 장　朴　光　田

■大 會 宣 言

眞理는 하나이다.

宇宙萬有는 하나의 眞理에서 生成하였다. 世界秩序와 人類 幸福을 爲하여 모든 宗教와 道德은 하나의 原理를 찾아야 한다. 많은 宗教들이 各各 그 主張과 方便을 달리하여 教化를 펴고 있으나 根源된 眞理는 하나이므로 이에 根據하여 宗教는 하나로 돌아가는 求心点을 찾아야 한다.

世界도 하나이다.

萬有가 生成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世界 또한 하나이다. 現代文明은 점차 宇宙를 開發하고 있으며 地球上에 있는 모든 國家들이 或은 東西 或은 南北으로 境界를 지으며 或은 分斷되어 있으나 宇宙가 하나인 만큼 결국 世界도 하나일 것이다.

人類는 한 가족이다.

地上에는 四色人種과 많은 民族들이 살고 있으나 그 삶의 根據는 또한 한 氣運으로 連하여 生成하고 있으니 人類는 한 家族이다.

世上은 한 일터이다.

모든 人類가 한 家族을 이루어 살고 있으니 하는 일들이 한가지요, 일터가 하나이다. 世上에는 그 主義와 體制를 달리하고 있는 여러 勢力들이 있으나 그 根源은 한가지 世上을 開拓하는데 있으며, 설사 相反되는 일이 있을 지라도 그를 善用하고 보면 한가지 일을 하는 하나의 일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眞理가 하나임을 깨달아서 모든 宗教들이 한집안을 이루어 서로 넘나들고 融通할 것이며 또는 世界가 하나임을 깨달아서 모든 國家의 지도자나 國民들이 한집안을 이루어 서로 共在하고 共榮할 때가 온 것이다. 또는 人類가 한 가족임을 깨달아서 모든 人種이나 民族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 서로 親善하고 和睦할 것이며 또는 世上이 한 일터임을 깨달아서 세상을 經營하는 모든 經世家들이 다 한 살림을 이루어 서로 鞭達하고 並進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 울안 한 理致에 한 권속이 한 일터에서 한 眞理에 根據하여 하나의 世界를 建設할 것을 宣言하는 바이다.

決　　議

1. 우리는 一切宗教를 하나로 보고 世界를 하나로 보며, 모든 人類를 한 가족으로 보고 世上의 모든 일을 한 일터로 보는 精神을 自覺하여 世界의 平和와 人類의 自由를 達成하는데 앞장서는 主人되기를 決議한다.

2. 모든 人類는 貧富의 격차없는 均等과 種族의 差別없는 平等으로서 世界의 秩序를 定立케 하고 強大國間에 軍備競爭을 終息시키며 現代文明의 公害를 防止하여 人類平和를 追求할 것을 決議한다.

3. 國力의 自主的 培養을 발판하여 善意의 競爭으로써 祖國統一을 平和的으로 達成하고 나아가 유구한 民族의 傳統的 슬기와 참됨으로 바탕하여 世界的 精神運動을 이 땅위에서 우리가 達成할 것을 決議한다.

4. 國際的인 宗教聯合機構를 通하여 모든 宗教의 教理的 融通과 宗教的 共同課題를 討議하고 나아가 眞理的 宗教의 信仰과 事實的 道德의 訓練으로서 宗教를 生活化 할 것을 決議한다.

원기56년 10월 8일

圓佛教 開教半百年 紀念大會

■대 회 일 정 표

일 자	시 간		행 사	장 소	주 관
	자	지			
10. 7 (목)	10:00		전 시 회	원 대 박 물 관	문화위원회
	16:00	16:35	영모전낙성및묘위봉안봉고제	영 모 전 광 장	실행위원회
	17:00	17:40	정산종사성탑제막식	정산종사성탑광장	〃
	19:00	22:00	전 야 제	시 내, 총 부 구 내	문화위원회
10. 8 (금)	09:00	10:00	기념관봉불낙성식	기 념 관	실행위원회
	11:00	12:30	개교반백년기념식	원 대 광 장	〃
	13:30	15:30	마스게임	〃	체육위원회
	14:00	17:00	개교반백년대사상강연회	기 념 관	문화위원회
	17:30	22:00	예 술 제	〃	〃
10. 9 (토)	09:00	15:30	체육대회	원 대 광 장	체육위원회
	10:00	12:30	교리강연대회	기 념 관	문화위원회
10. 10 (일)	10:00	11:30	교역자총회	기 념 관	
10. 12 (화)	10:00		영산성지행사	영 산 성 지	실행위원회

* 전 시 회

개 관:10:00
전시기간:07:00－19:00
때:10. 7－12
곳:원광대학박물관

○ 안내말씀

대종사님과 선진님들의 숨결이 스며있고 혼적이 담긴 유품을 여기에 전시 합니다.
대종사님의 성스러운 뜻과 선진님들의 숭고한 얼을 우리 모두 가슴에 더욱 새롭게 되살리고 영원토록 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봅시다.

○ 전시품목

1. 대종사유품 … 진영 의상 친필 생활일용품 등
2. 선 진 서 화
3. 간행물전시…… 교서·교단인쇄물
4. 기 타

* 영모전 낙성 및 묘위봉안봉고제

때:10. 7. 16:00～16:35
곳:영모전광장

○ 식 순

식사(式司):김정용
주례(主禮):김홍철

1. 개 식 …… 주 악
2. 식사(式辭) …… 박장식
3. 입 정
4. 교가(성가 2장)
5. 심 고
6. 묘위보고 …… 안이정
7. 봉 고 문 …… 종법사
8. 추모의 노래(성가 53장)
9. 폐 식 …… 주 악

*** 정산종사성탑제막식**

때:10. 7. 17:00~17:40
곳:정산종사성탑광장

○ 식 순

식사(式司):김근수
주례(主禮):김홍철

1. 개 식 ..... 주 악
2. 식사(式辭) ..... 정광훈
3. 교가(성가 2장)
4. 심 고
5. 탑명(塔銘)봉독 ..... 이공전
6. 제막 및 정산종사 찬송가(성가 13장)
7. 고 유 문 ..... 종법사
8. 삼동윤리가(성가 75장)
9. 폐 식 ..... 주 악

*** 전 야 제**

때:10. 7. 19:00~22:00
곳:중앙총부 및 이리시내

제1부 제 등 행 열

오후 6시30분 원광여자중·종합고등학교 교정집결
〃 7시 제등행열 출발
〃 8시30분 중앙총부 영모전광장 도착

○ 제등행열 코-스

원광여고→제일은행→이리극장삼거리→오고파다방사거리→시공관→남중동파출소→총부

○ 참가단체

원광여자중·종합고등학교, 원광중·고등학교, 원광고등공민학교, 이리지부, 동이리지부, 익산지부, 남녀교역자, 원불교청년회, 일반교도 일동,

○ 행열순서

선도차←원고밴드←일원상旗←旗手團←대회상징←원광여중·고←원광중·고교←원광고공←보도차←여자교역자←남녀청년부←일반교도일동←보도차←소방차

제2부 세계평화 기원 및 추모행사

오후 8시00분 제등행열도착
〃 8시30분 주악 및 인류의 합창 제창

*** 세계평화기원식**

○ 식 순

주례:김홍철
사회:심도정

1. 입 정
2. 세계평화 기원문
3. 독 경(일원상서원문 일독)
4. 묵상기도

⊙ 추 모 행 사

1. 점 화
2. 법인절 노래 제창(1절)
3. 법어봉독
4. 트럼벧 독주(운수의 정)
5. 추모의 노래 제창(1절)
6. 주 악

*** 제3부 대회경축놀이**

시간:21:10~22:30
장소:중앙총부 영모전 광장
신청마감:10. 7. 17:00까지

1. 개 회
2. 심 고
3. 다함께 성가 부르기
4. 특별출연
5. 놀 이
6. 찬조출연

*** 기념관봉불 및 낙성식**

때:10. 8. 09:00-10:45
곳:기 념 관

○ 식 순

식사(式司):김중묵
주례(主禮):김홍철

1. 개　　식 ····· 주　악
2. 식사(式辭) ····· 교정원장
3. 교　　가(성가 2장)
4. 심　　고
5. 봉불 및 법신불 찬송가(성가 4장)
6. 봉안문봉독 ····· 감찰원장
7. 독　　경(서원문일독)
8. 종법사설법
9. 폐　　식 ····· 주　악

*** 개교반백년기념식**

때:10. 8. 11:00－12:30
곳:원광대학광장

○ 식　　순

식사(式司):이은석

1. 개　　식 ····· 주　악
2. 대회장식사(式辭) ····· 박광전
3. 교　　가(성가 2장)
4. 심　　고 ····· 문동현
5. 사업보고 ····· 사무총장
6. 공로자표창
7. 종법사치사
8. 대회선언 ····· 교정원장
9. 내빈축사
10. 반백년기념가(성가 123장)
11. 폐　　식 ····· 주　악

*** 마 스 게 임**

때:10. 8. 13:30~15:00
곳:원광대학광장

1. 원광중·고등학교 악대퍼레이드
2. 원광중·고등학교
　ㄱ. 주　　제:반백년성업
　ㄴ. 참가인원:1,200명
　ㄷ. 지도교사:최정록, 권정명
　ㄹ. 소요시간:20분
3. 원광여자중·종합고등학교
　ㄱ. 주　　제:원의 향연
　ㄴ. 참가인원:1,200명
　ㄷ. 지도교사:이준자, 양여숙
　ㄹ. 소요시간:20분

4. 원광대학 체육과
　ㄱ. 시범경기:기계체조
　ㄴ. 참가인원:23명
　ㄷ. 지도교사:이상종
　ㄹ. 소요시간:20분

*** 개교반백년기념대회 대사상강연회**

때:10. 8. 14:00－17:00
곳:기 념 관

○ 연사 및 연제

사회:한정원

1. 유병덕 교수
「원불교 출현의 역사적 의의」
약력:종교문제 연구소 소장
　원광대학 교수

2. 가－드 박사
「세계종교의 방향과 원불교」
약력:미국 불교계 대표
　세계 종교개발연구소 사무장

3. 山中龍淵선생
「세계연방주의와 종교」
약력:세계연방 일본불교도협의회 상임이사
　일본불교잡지「브디스트」사장

*** 예　　술　　제**

때:10. 8. 1회공연:17:30
　　2회공연:20:00
곳:기 념 관
지도:송 관 은

제 1부 음　　악
제 2부 무　　용

○ 출 연 기 관

1. 원광대학 원불교교학과. 음악교육과
2. 서울청년회
3. 원광중·고등학교
4. 원광여중·종합고등학교

◇ 찬조출연 ····· 원광유치원

＊체　육　대　회

때:10. 9. 09:00－15:30
곳:원광대학광장
진행:성종림 김치국
　　구안복 김영준

○ 경 기 종 목

1. 마라톤(성지출발 총부도착 역전마라톤·지구별 청년연합회)
2. 축　구(지구별 청년연합회)
3. 탁　구(지구별 여자청년연합회)
4. 기타종목

출 전 기 관

1. 강원지구	청년연합회
2. 부산지구	〃
3. 서울지부	〃
4. 영남지구	〃
5. 전남지구	〃
6. 전북지구	〃

＊교 리 강 연 대 회

때:10. 9. 10:00－12:30
곳:기 념 관

○ 식　　순

사회:서경전

1. 개　회 ····· 사 회
2. 심사규정 발표 ····· 전성완
3. 강　연
4. 심 사 평
5. 시　상
6. 폐　회

＊교 역 자　총 회

때:10. 10. 10:30－11:30
곳:기 념 관

○ 식　　순

사회:손정윤

1. 개　회 ····· 사 회
2. 개 회 사 ····· 박광전
3. 교　가(성가 2장)
4. 심　고
5. 법어봉독 ····· 이경순
6. 종법사설법
7. 수덕회 노래 ····· 합창단
8. 교정, 감찰원장 훈시
9. 선후진 경애가 ····· 합창단
10. 교역자 선언문 채택 ····· 정광훈
11. 교역자의 노래
12. 만세삼창 ····· 김홍철
13. 폐　회

＊대각성지 기념비 제막식

때:10. 12. 11:00~11:45
곳:영산대각성지

○ 식　　순

식사(式司):이은석

1. 개　식 ····· 이은석
2. 식사(式辭)
3. 교가(성가 2장)
4. 심　고
5. 제막 및 대각경축가(성가 35장)
6. 고 유 문 ····· 종법사
7. 대종사찬송가(성가 6장)
8. 폐　회

*** 기 념 법 회**

때:10. 12. 14:00~15:00
곳:영산지부 대각전

○ 식 순

사회:권세영

1. 개 회 ..... 사 회
2. 입 정
3. 교가(성가 2장)
4. 심 고
5. 법어봉독 ..... 오종태
6. 법사설법 ..... 교정원장
7. 성지찬가(성가 3장)
8. 기념설교 ..... 김홍철
9. 반백년 기념가(성가 123장)
10. 폐 회

*** 특 별 기 도 식**

때:10. 12. 20:00-20:30
곳:영산성지 중앙봉

○ 식 순

사회:김복환
주례:이중화

1. 개 식
2. 입 정
3. 송 주
4. 기 원 문
5. 심 고
6. 독 경(서원문일독)
7. 폐 식

*** 대 회 임 원**

총 재 종 법 사
고 문(가나다순)

강근호	김태흡	유 청	이춘기
강석진	민복기	유달영	이항녕
강원룡	민관식	유기정	이환의
고재욱	박경원	유범수	장경순
길병전	박동묘	윤고암	장기영
김동화	박대륜	윤주영	전휴상
김두헌	박두선	윤제술	정해영
김상만	박용상	이기영	조병화
김성철	백남억	이방자	조증훈
김성곤	백 철	이병옥	진의종
김용성	신용호	이선근	차형근
김용주	안호상	이응우	최덕신
김재준	양해준	이정우	홍진기
김준수	유갑종	이청담	한상준
김찬영	유광현	이철승	황산덕

지 도 위 원(무순)

박장식	오종태	이운권	이경순
성정철	김영신	김근수	조전권
정광훈	서대인	김홍철	정양선
조희석	양도신	안이정	황정신행
박광전	이공주		

- **대회장** 박 광 전
- **부회장** 문동현 황정신행 감원도
- **사무총장** 김정용

*** 반백년사업회**

- **차장** 정성덕
- **총무** 김동현
- **회계** 유일신
- **편집담당** 권도원 박은봉
- **건축담당** 장정현 신재일 한상철
- **상임위원** 지도위원 회장 부회장 사무장 차장 대표위원
- **총무위원** 정광훈 김중묵
- **대표위원** 이은석 이제성 박선일 박정훈 서대준 신도형 황직평 양혜경 정경호 조준곡
- **재정위원대표** 정성덕 이철행

위원 이백철 김서오 이건춘
이병은 모상준 박제권
송자명 정성숙 송달준
김성주 김이현 이선우
이정무 박세경 박은섭
송영지 유장순 윤순배
윤주현 정윤재 이성신

• 건설위원대표 송자명 김인용
위원 이건춘 이백철 안이정
이병은 이중정 윤치성
지해원 오해인 조재현
김광창

• 편집위원대표 이은석 이공전
위원 이종원 유기현 한정원
한정석 송천은 박성래
박제중 송순봉 전이창
전종철 전팔근 정자선
정유성 김인철 박정기
하재창 손정윤 이성은
Svece여사

• 선전위원대표 조전권 유기현
위원 김정관 이종명 김대현
장성진 한정석 조정근
이보원 박광진 김지현
박제현 임선양 정유성
이운철, 박혜명

• 행사위원대표 김윤중 전성완
위원(생략)

대회위원(무순)

조준곡 김혜실 지해원 유수일 윤정운
장인중 김지영 이수오 이현조 한광근
김선지행 권정음 김성전 김법진 김성주
이덕심 박진홍 양혜경 심혜관 이광정
김화경 최순원 정복천 대광옥 김수인
이정환 온화중 박순정 이양권 강영문
양혜련 모성철 양제승 양법관 오은성
이보원 김은신 박제권 김원만 이순성
이경륜 최만진 고현종 박명재 최규학
태덕권 박대성 전봉선 안지숙 전경화
장선거 권성천 이도홍 김치국 심창덕
박혜순 심익순 김덕현 정윤재 이현도
박영권 김지은 한인성 박현일 최순철
박성경 강묘진 이현봉 허은진 오희원
김보신 최남정 김경인 황주남 성정재
김정신 김덕진 박인숙 김대근 송덕신
김홍신 이유관 이현숙 유일봉 유향원
이성로 이문진 정도중 유이경 최영명
김인석 김연봉 정영은 박정묵 이정은
송영봉 백수정 김대현 박성석 송영지
이혜정 장경안 박덕수 박원석 김지현
이경만 유장순 송명호 김장권 김대심
신재근 정자선 이용진 박자열 한도봉
이윤정 권덕원 송순봉 이재경 박명음
박덕준 이선우 김의선 김법종 이성신
서세인 장봉운 정양진 이순석 정경호
오신성 이정무 김충현 김봉식 권우연
이정화 정진숙 정상근 안정진 황영규
장정수 김광인 강순상 장명신 박현도
한제선 장혜성 전기철 임선양 이명인
정일중 최강연 조영진 박지홍 박세경
김삼인 유성일 지성인 이수진 박정남
정종희 김정국

• 기획위원회 대표위원 이은석(교무부장)
위원 김중묵 이공전 송원철 김윤중
정성덕 송자명 송혜성 정화성
박선일 이운철 문선혜 박정기
장정일

• 총무위원회 대표위원 김중묵(총무부장)
위원 박광진 전성완 이병은 김귀근
섭외부 권준원 이도명 이운숙 김연성
한정수 정진명
접수부 김달성 최유원 황대원 김원도
태성실 박완성 노대훈 신명국

○ 헌 공
권정후 이성희 유경회 이덕일

• 응접안내부 조정중 라도국

대회위원 법무실

○ 리본, 유인물

박남주 김선영 이선조 이명조

익산지부여학생10명

• 응접안내부 ○ 숙소 안내

장연광 김복원 김화덕 이수근

○ 식장 및 식사안내

김도종 신대성 정성만 정보인

○ 외국인 담당:송수은 이대하

○ 귀빈 담당

신도형 변중선 유병덕 한정석

한정원 전이창 전팔근 박은섭

전종철 백지명

○ 수시 안내

신자연 오덕관 최인춘 최원희

전제환 김지선 이경심 김은준

정안신 송선만 김의진 이전원

이안수 조인원 고효근 박지원

황경신 이영인 서위진 이묘신

박정혜 유현정 이선종 김법연

조효경 윤순명 신귀성 임남렬

김형모 유보상 박공원 황명조

최덕현 강주심 김남명 이효원

최회성 정연석 박영륜 유신옥

이법윤 유종신 최수원 유춘수

최인학 김혜신 한연심 양정신

박도선 김명기

• 통 신 부 송인호 박제중 이경옥

○ 전화 전보 서신

나인관 박문길 김현균 한성면

황명신 김민연 홍경봉 함성배

이원국

○ 전화 관리

박은봉 정도식

○ 서신 연락

박호정

• 후 생 부 조채기 김양수 김춘택 김재명

노성자 송성찬 김일성 이선경

김혜심

• 전 다 부 양원도

강대행 오희선 김기정 나문정

이혜진 김은주 이심안 정대안

하용현

• 재정위원회 대표위원 송원철

위원 이철행 모상준 이백철

• 경 리 부 김강인 신명실 정도윤 김이성

박도완 문인진 임인영 김혜봉

• 보 관 부 이덕조 이창원 김응현 김인경

김문택 이준일

• 숙소위원회 대표위원 송자영(공익부장)

위원 김서오 정성덕 윤치성

• 숙 소 부 김성현 마원종

익산청년회원 영송부합동

• 식 사 부 이선경 박순기 이양신 김문국

김정근 김경진 정토회원일동

• 세 면 부 정재원 한법인 김원봉 장인선

김제은 이금영

• 실행위원회 대표위원 이은석(교무부장)

위원 서대준 한정석

• 시 설 부 서삼성 오광익 고명일 이봉연

박영창 한순인 김진학 최성난

박순도 송연조 김현성 질서기동반

• 의 전 부 정원일 이대광 신혜권 최도인

오주은 정숙현 송현자 유승인

서치선 한회윤 이성전

• 진 행 부 이성길 김정민 송경호 정귀원

김정준 안세웅 조남훈 이수진

이상진 이효민 고윤성

• 공보위원회 대표위원 조정근

위원 김인용 이건축 한정원

• 사진영화부 박광진 김용환

• 녹 음 부 이종진 이종숙 이도연

• 신 호 부 정태음

• 보 도 부 이성은 김정회 이운철 이종원

하일성

• 기 록 부 김학인 박혜명 성인종 박달식

• 교통위원회 대표위원 김윤중(수위단회 사무처장)
위원 김정관 이종명 유정완 김광창 오해인
• 영 송 부 한길앙 심재철 송달준 윤현실 박찬명 황세원 이명선 이성호 소이근 박은원 윤경일 최진우 조학심 원대교우회 12명 이리 청년회원
• 배 차 부 김성철 김수규 서광원 유하명 봉선영 김화도 신영문
• 경 호 부 이도명 오성수 김은옥 조성중 남궁성 김경원 신명교 이명종 이남현
• 체육 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이공전(감찰원사무처장)
위원 정성숙 장성진 권재홍 유기현 성종림 오윤경
마스게임 성익진 이준자 양영숙 최종록 권정명
체육대회 구안복 김영준 김치국 최종록 권정명 이재호 이동재 정규남
전 야 제 심도정 김정덕 이수현 양인득 복선근 경봉식 하대연 장주현
• 사상강연대회 및 교리강연 서경전 김형철
• 예 술 제 박제현 송관은 박선일 박청수 나철중 문관수 이준자 양영숙
• 전 시 회 송천은 김성진 백혜원 나도국 변성묵 유응현 최지원 이기대 김정상 김정유
• 교역자총회 김인철 손정윤 양원도
• 청 년 부 장동윤 심도정 이법준 서경전 김호영 윤화엽 이길수 장인원
• 질서기동반 이성택 이찬원 김정복 김 현 성도종 이원경 김혜광 모현철 이성규 황인철 박정원 이원호 박정안 양천익 장도영 성시종 유진근 김성택 전봉규 강명진 이덕원 김의성 강이덕 오명성 이수음 이진훈 김영효 조도천 박진원 임묘순 한명정 김성원 박지선 정경안 이진성
• 영산행사 위원회 대표위원 오종태 이중화 조지성 권재홍 장응철 김복환 서성범 최세진 문국선 고원선 김장원
• 성지개발 위원회 대표위원 정학현 정계환
• 서울행사 위원회 대표위원 박장식 문동현 이제성 박정훈 백상원 김상익 이건인 서울지구 청년회

■ 수상자명단

〈일원상 훈장〉
황도영(목포) 송경심(원남) 이상2명
〈연 화 훈 장〉
육경전(전주) 김진여행(목포) 김경학, 임재안(경남) 김법용심, 박금용(부산진) 이상5명
〈목 련 훈 장〉
양태식(종로) 오철환(군산) 변중선(총부) 이상3명
〈모 란 훈 장〉
장명흠(목포) 홍인덕(종로) 장구품화(동래) 임미성(종로) 김도준(목포) 전공덕해, 김춘국(동래) 김일주, 김도명, 김대성화, 김광준(광주) 진명일, 길명인, 장이성, 백은명, 조법왕화(마산) 오인한,

고경도화, 현대성화, 한정년, 이양인, 김시순(부산진) 장경염(서울) 이정심화(신촌) 김도진행(원남) 이원술(진영) 김성윤, 윤성규(정토회) 김지인행(초량) 김정용(총부) 이상30명

〈매 화 훈 장〉

송수길(금산) 박순덕화(대신) 강혜선화(목포) 손성인화(사직) 김심원, 유대신행(서성로) 정백산(원남) 김명환, 한성공월, 김순근, 이철원(종로) 김일덕행(초량) 이주안(정토회) 이귀정(광주) 김명자, 김명숙, 김성배, 김창배, 김명배, 김영수(경남) 황형근(구포) 김연지행, 유정국, 권호경(대구) 박덕윤, 강정재, 김복지행(대신) 김만순, 이명남(동래) 유성운(동산) 이정봉, 김운수화(마산) 김성운, 최양정(목포) 김명수화, 윤덕봉, 최 천(부산진) 서성도행, 성의철(서울) 박지양, 이경중, 오광원(서성로) 최정학, 김창원(수지) 권봉안(신촌) 정순환, 김학진(오수) 최행덕(원남) 김광명화(이리) 나철중(정읍) 남하원행, 김지원행, 고성용(종로) 강만선(제기동) 김성학(제원) 문정명(태인) 이수천, 송덕전, 이만수화(통영) 김양정, 김응연화(화포) 이광석, 전귀순화, 정정명, 김순옥, 지도정, 황해인화, 김상생화, 김정희(광주) 신대명화, 정명진화, 김정수, 김선옥, 마달현, 조선묵, 양남근, 손자온, 김유성, 마도근, 김혜원, 석경진화, 한영인, 김광석, 정오진화, 강연산월, 박성훈, 이영수, 김성오, 김지인, 손태영(경남) 박낙윤, 장두연, 조인지화, 이귀일화, 김현행(교동) 이대숙, 김양덕화, 박인창, 이영숙, 김상은, 남법훈(군산) 최법용, 초경전(구포) 전덕종(금마) 김일윤화, 김법계화(김해) 정장국, 유청사, 윤사옥, 방성환, 오화일, 이처인, 김경완(남원) 양도경, 이한성(답십리) 이종선, 양보인(동이리) 유영현, 백자인, 박석원(동산) 김통제화(돈암) 손여진, 이현화, 김삼인화, 하정심원, 박은시화, 박대원경, 송기운화, 이현주화, 서관정, 허양언(대신) 이삼정화, 윤도원, 박원일, 박천심화, 김도선, 박인옥, 권현각, 이삼명, 유영근, 서유성, 김장윤(대구) 문자성화, 김보명월, 김건성화, 하성도, 윤인관, 백인철, 이영관, 김홍연, 김만공화(동래) 최근숙(마령) 성낙성, 김도은화, 김기만, 전호정, 박대석, 김의연(마산) 조추연, 서의관, 김덕영, 이청정옥(목포) 손덕선, 정재옥, 강대연(밀양) 고삼요, 송허실원(봉상) 소일환(보절) 강도일행, 박보인(봉덕) 윤안택, 전묘정화, 이성도, 오남진, 서경숙, 김경심월, 박수정화, 최지선, 강양진화, 최영음, 김만공화, 김조관, 김인봉, 이수철화, 김익중, 안성수, 윤도경, 장상문, 오도정, 박원재, 오도훈, 강영자, 배익선행, 유선용, 강진명행, 오성진, 김영식, 이중직, 홍상천, 윤동원, 연덕선, 조양선, 오도근, 강현춘, 김귀연, 이자득, 강애자, 이치연(부산진) 김좌원(사직) 최보덕화, 김선숙(산서) 조성덕(삼덕동) 정묘련화(서광주) 강덕성화, 정도인, 양봉진, 박익순, 송만법화(서면) 정응원, 윤장국, 허명수(서성로) 구원국, 장심인행, 정성진, 황정신행, 문동현, 김옥진, 김도광, 이정신, 박동현, 김희정, 김명중, 감원도, 김현전, 문충은, 이명관(서울) 이선영, 김경지(소성) 박경국(송천) 강덕정(순창) 유숙진(숭부) 50대봉공회, 40대봉공회, 조도운행, 함노봉, 최종업, 방양전화, 서계신화, 유청정월, 박선진행, 30대봉공회, 손정수, 오명주행, 노운명, 장득선(신촌) 이정교, 박정순(아영) 박현관(영산) 김도정(영광) 박법안, 최정선, 이여의화, 유남인화, 이영신화, 최정강월, 성보명, 이묘명심, 성건석(영도) 김남덕, 이수명(오수) 방성심, 조정복, 정원익, 김창해(원남) 임길선, 김도일, 조명양, 강준옥, 이정호화, 김순기, 황희철, 김정운, 안우웅, 조원준, 김법원, 이세옥, 김병조, 유춘수화, 송태인, 임유성, 최선국, 장법인, 유귀연(이리) 임청심(익산) 정안숙, 고성출(임산) 박효진, 고정진(정능) 권법안, 권상중(정읍) 최선정, 백봉시화, 김청공, 유정덕화, 김정익, 박락천, 육종법, 최석중, 허 원, 민제순, 김학경, 채인묵, 권형욱, 권도현, 주호준, 신시법, 정우진, 송태평화, 조성제, 서정연, 안지덕, 성인영, 청년회일동, 진중옥, 김인해, 김혜정, 이정경화, 황인덕, 심정각행(전주) 최원각, 김서경, 이천윤, 유지성, 이상운, 금삼성, 김법진, 유성원, 공덕종, 김묘영, 윤신례, 심공진, 김상만(종로) 정

여진, 정신명(지곡) 황법정행, 주수안, 조대진(진영) 정유진(제원) 이영수, 정진보(청파동) 조인덕, 서근행화, 신성길, 변묘법해, 전봉덕행, 조동운, 박효숙, 김삼덕, 정응선, 최상순, 박인건, 김계옥, 전수인, 강선일화(초량) 박성신행(춘천) 송중관(칠보) 김일직심, 김자암, 이대영화, 김영명화, 윤의정, 김인수옥, 정중선, 김선민, 홍봉연, 남충화, 김윤정, 강정광(통영) 강선득, 이도봉행(합라) 김일정(화포) 이화신, 이명조(화천) 옥운범, 윤현지행, 김복윤(동래수양원) 임영전, 양하운, 김만중(정토회) 이공주, 조전권, 양도신, 장정수, 이경순, 이건춘, 이정화, 장경진, 마명숙, 장혜성, 이동진화, 박영화(총부) 주옥형(동산) 이상402명

〈근 성 훈 장〉

유춘숙, 김순도행, 박선관, 윤춘화, 신항준, 김성인화, 김진근, 김시형, 박대도(광주) 마양진화, 이남주화, 이양원, 이인산옥, 이정혜, 최은주, 정성중, 천경호, 송경원, 석경법화, 홍이타행, 정보신, 정경주, 이임순, 서성호, 이진주화, 도윤철, 김선행, 김경원, 김대공, 박혜선, 김재홍, 안대조행, 김영심, 박성종, 김고원화, 김대천화, 정상만, 주영덕화(경남) 김숙현(관촌) 박철성(곡성) 전용주, 이만익, 정묘도화, 이정기행, 홍귀안, 홍수홍, 이현경, 오형두, 유춘성, 김덕심옥, 김화신, 장원명, 이광옥, 홍세정, 김일은행, 김학진, 이기남, 오세일, 장법인화, 김인주(교동) 유종수, 김해선, 김향묵, 서옥진, 김명숙, 이학철, 이숙선, 이장은, 유인청(군산) 조만현(구포) 정선국(금구) 최정행(금평) 김용인(김제) 김도향(기장) 김보현화, 최영복화(김해) 오현주화(계림동) 전인국, 이광명원(금마) 김진권, 고경원(남원) 조운근(남중동) 임제옥, 김철원, 이진충(남부민) 양혜성(당리) 박회성, 황대공화(다대) 김정주화, 홍덕화, 한순행(동이리) 탁이전, 하도진화, 장진영, 김도훈, 김묘전, 송성운(동산) 김명심옥, 박홍덕(대전) 이선훈, 박춘식, 현법신행, 김선향, 최정각, 최애윤, 배신안, 조현양옥, 조병주, 송길연, 장계원, 김선옥, 유정겸화, 윤용덕(대신) 김학기, 김정봉, 김묘진행, 박효윤, 하태연화, 김정각행, 정영수화, 김대원각, 학생회원 일동, 신해생계원 일동, 청년회원 일동, 최정환, 심윤광, 고양정화, 왕성일, 김준홍, 전무주원, 이동복화, 박윤성, 진정명, 최현보, 박달은, 김오도화, 조경청, 서임년(동래) 이원교, 김종환, 김성심화, 장혜상,서영천, 신은경, 김정토행, 정태형, 장연도, 서숙인, 설영근, 최남숙, 권응열, 김안국, 정성관, 최진원(대구) 박무국, 양은법화(마령) 김공덕화, 김영우, 김도광, 김인길, 남명덕(마산) 김대행옥, 이연수행, 오상묘, 김희순, 신향선화, 한봉심, 곽은광, 윤회명, 이대심(목포) 석법행(밀양) 노선근화(봉상) 김양음, 이인도, 서양행(봉덕동) 온치인, 신주도화(부안) 조현심, 강법성화, 박신화, 최낙성, 박소림, 김원신화(부산진) 정불광화(불갑) 김정행(산서) 김도영, 김홍원, 이행도(사직) 서만교, 천만덕화, 박창선, 김명훈, 신옥연화, 진태형, 이정희화, 백홍천, 최주현(서울) 김준화옥, 이견성화(서광주) 임정근, 이정의옥, 구명철(서성로) 박원도, 안경일, 조해연, 이영래, 정경재 권오진, 박금윤, 김명덕(서면) 문청진(소성) 조제선옥, 유수안(송천) 한남순(순창) 김윤중, 정만수(수계) 정봉숙(수지) 유원태, 유승도, 김문숙(승부) 이충화(신태인) 김윤식, 최인관, 김도묘, 김법원, 박향수, 조정호, 정성지, 정용득, 한명윤, 송동현화, 이효성, 안대원, 조준숙, 이영안, 김정기원, 장화전, 신태의 오대법화(신촌) 서혜인(신도) 박안정, 박제윤, 김법안(안양) 김창시화, 박일경, 오명완, 이동림, 김월정, 나여원행, 이성훈(여수) 노재천, 정정도, 박제은화, 윤복천, 주수완(영도) 김이덕, 정수원, 진충옥, 임정인(오수) 이준철, 김춘집(왕촌) 오지선행, 박은경, 이복전, 김수용, 조갑순, 윤보처화, 박공식, 문법훈, 김서중화(윤봉) 정사근(용각) 최인수, 한수성화, 유경님, 김선인, 조진숙, 송도영, 김정우, 유보명화, 강묘도, 박연권, 김혜성, 이춘택, 이은경, 한연화원, 임정관, 김정해(원남) 조동오, 백기덕, 유선의행, 이봉원옥, 한정보화, 송준영, 김수도, 이주인, 안선행, 신경오, 장상근(원평) 박마석, 오안락화, 고보선, 신

보경, 곽병원, 김덕요, 신인재, 전정관옥, 김순경, 안혜진, 소성여, 김원요, 유창옥, 김경요, 김순관, 이은실, 신덕은, 양해진, 김법인행, 조원명화, 남안성옥, 진수안, 김원신, 김안정화(이리) 진영전, 신정일화, 이남시화, 배복일, 성현주, 최수안, 권의전, 이경권(익산) 이정덕행, 청년회 일동(임산) 정순환(임실) 김정도, 임효영, 김효은화, 조현숙, 이온순행(정읍) 양지호, 장병도, 최귀은화, 노안석, 하성우, 이성익, 이좌현, 최형만, 정영근, 강수원, 전팔현, 장희선, 최용선, 조안선, 조순식, 이남권, 노순명, 허의상(전주) 박진신, 어정수, 양형선, 김순명행, 이덕희원, 염소덕, 김경원, 정덕산옥, 방신영, 이현묘행, 고혜림화, 김정업, 심숙현, 장귀만, 김의영, 박성원, 오명세, 송예성(종로) 박도옥, 이수도(좌포) 김진근, 이창운, 전의덕(진안) 김유현, 김혜광, 심덕원, 유의열, 김화숙, 이양운, 이계현, 이성연, 백정진(진영) 김성덕, 고대중화, 이도원화, 정효인, 조영산옥, 이무주행, 권일경(창평) 정해종(청파동) 공채옥, 전정도, 심보증, 송혜각, 김서식, 김수원, 박성숙, 박홍순, 최원혜행, 이지인행, 추칠공화, 이성증, 김혜윤, 서묘법혜, 허운송화, 허평은, 천덕운, 한보운, 주광윤, 박희정, 이일정, 신도연, 송순수, 방진수, 백선각, 신성준, 이순옥, 라용선(초량) 김심덕(칠보) 구창운, 김법경, 고효준, 하운진화, 백인경, 채무성화, 김장심, 김청인, 김보환, 서세원, 김명학, 김계명, 권덕진화, 오성덕, 김통일옥, 신양술, 신제덕, 이봉원, 허양명행, 김성선화, 정진묘원, 김성천, 김일성화, 원화회 일동(통영) 한청천(화해) 이충원, 오정순(합라) 조세형, 오정인(화곡) 박정시행(함양) 하청윤(합천) 엄자비화(화천) 송인흥(흥덕) 박연공(해운대) 이순덕, 구양근, 이경일(중앙 수양원) 윤성권, 이천숙, 최명윤, 김상복화, 김병무(동래수양원) 여청운, 정순영, 박길선, 최충인(정토회) 종법사님, 송순봉, 송영봉, 서대인, 이운권, 정유성, 박덕제화, 강묘진, 장경안, 김인용, 박제현, 오종태, 김정근, 박광전, 나도국, 한제선, 정양진, 정진숙, 송달준, 정성숙, 박장식, 박제권(총부) 이근수화(함양) 윤자혜, 신동훈, 김순애(정읍) 박지홍(총부) 윤법천(산서) 고시일(종로) 윤주연(남부민) 정귀법화(광주) 이상501명

〈참 가 상〉

신택은(감곡) 황이성, 유광수, 유성준, 허춘환, 유명준(강화) 최수한, 백관선, 이공도화, 임장수화(강경) 한수원, 송효은, 허정남(겸명) 김귀도화, 윤삼정, 정동심, 유충진, 이덕남, 박현순, 최현진, 김대창, 이시덕, 정성의행, 기영준, 하경운화, 손만덕, 정진관, 이춘경, 김현강, 양유경, 이백련화, 이형수, 김귀석, 최보선, 김정도행, 조승원, 황성명, 신대원화, 손도연화, 백명련화, 이영인, 김회정(광주)

3. 남한강대책위원회

가. 서울기념관 건립의 배경과 추진

少太山大宗師는 교단의 전망을 「4~50년 結實이요 4~500년 結福」이라 말씀하셨다.

결실이라 함은 원불교가 창건된 이 나라에서 드러나게 됨이요. 결복이라 함은 세계적 종교로 인류근원의 큰 사명을 다하리라는 말씀이다.

본교는 일본 식민지 시절 全南 靈光에서 개교(1916. 4. 28)되어 갖은 수난을 겪어오다가 광

복과 더불어 본격적인 교화사업을 전개하여 원기40년대에는 국내교화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50년대에는 교세를 점차 확장하여 세계적 종교로 발돋음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총부가 지방도시인 全北 裡里에 위치하고 있어 시대적 흐름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세계적 종교로 웅비하기에는 서울을 중심한 교세 확장이 선결되어야 했으므로 서울을 중심한 교화사업을 추진할 전진기지 역할을 할 건물을 생각하게 되었다.

교단의 발전을 위하여 교단의 중앙 진출은 필연적이었으며 수도 서울에 교화활동을 펼 건물을 세우는 것이 전교도의 염원으로 응집되었다.

이때 교단 창립 5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開教半百年紀念事業會(회장·朴光田)〉가 원기49년(1964) 4월 발족되면서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분야에서 서울에 〈청년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건립추진비 4백만원이 책정되었다.

이후 청년회관 건립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던 중 원기54년(1969) 1월 22일 개최된 제31회 首位團會에서는 교단이 전국 6대종교의 하나로 위상을 정립한 〈韓國宗教協議會〉 발족의 산파역이 되기로 교단체계를 세웠는데 다른 종단에 비해 중앙에 빌딩(회관)하나 갖지 못한 것이 논의되어 〈서울기념관〉을 짓기로 하고 수위단원으로 6인준비위원(朴光田 朴將植 李共珠 黃淨信行 李雲捲 李敬順)을 구성했다.

2개월 후 3월 28일 열린 教政委員會에서는 6인준비위원회를 확대하여 교단적인 위원회 구성이 제의되었고, 6인 준비위원과 서울지구 교무 및 재가요인이 회합을 갖고 서울지구를 중심으로 〈서울기념관 건축위원회〉구성하자고 결의되었으며, 이어 오후에 열린 제14회 中央教議會에서도 〈서울기념관 건축추진위원회〉 구성 결의와 함께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7월 12일에는 서울지구 재가요인들을 중심으로 〈서울기념관추진위원회(위원장·朴東現)〉가 결성되었으며, 9월 4일 원남교당에서 열린 제34회 임시수위단회에서는 회장단(회장·朴東現 부회장·文東賢 孔德宗 方省心)을 보완하고 서울지구 〈서울기념관건립추진 위원회〉에서 기념관 건립추진을 하도록 했다.

서울기념관 건립추진 위원회는 총무·섭외·재정 등 분과별로 조사활동을 하여 서울교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이 이익금으로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종합안을 마련하여 중앙총부 교정원에 보고했다.

나. 남한강사건 발단

교단에서 서울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을 때 원남교당 김정덕(재위.남한강개발 주식회사 사장)교도가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와 기술을 제공하여 주겠다는 협조 약속을 했다.

김정덕(재위)교도는 원남교당 법당 신축 때 건축기성회장으로 공이 많은 재가교도이며 이때 한강대교 옆 흑석동 한강변의 公有水面 매입 허가를 얻어 맨숀아파트를 계획 분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었다.

서울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급히 중앙총부에 보고하였다.

원기55년(1960) 7월 27일 중앙총부 종법원 회의실에서 제36회 교정원 원의회상임위원회와 반백년사업회 재정·건설위원회 연석회의가 열리었다.

朴將植 敎政院長은 서울교당 부지에 건평 600평 12층을 건립하여(연건평 7,200평) 아래 3층을 교단에서 사용하고 4층부터는 중·상급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큰 비용이 들지않아도 될 것 같다는 서울에서 보고된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는 공사착수료 5,000만원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거액을 교도들 성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회의는 서울교당 부지를 서울기념관 건립에 제공키로 하고 건축준비위원으로 朴將植 朴光田 李雲捲 丁光薰 李喆行 李建春 6인을 선정했다.

8월 2일 교정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37회 정기 상임위원회와 서울기념관 건립위원회 연석회의에는 서울기념관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이 제시되었다.

원남교당 김정덕교도는 경제적인 협력은 어려우나 건축에 대한 기술과 자본의 적극 협조 약속을 전하며 건물은 500평 12층을 예상하고 1층 수퍼마켓과 차고, 2~3층(1,000평) 교단사용, 4~12층 아파트로 하며 대지는 교단 소유로 두고 아파트는 평당 12만원 드려 14만원에 분양 예정이라 했다. 설계비·공사착수비 등 1천만원중 5백만을 기관 성금으로 하고 서울기념관 건립을 반백년사업회 주관키로 결의했다.

8월 18일 교정원회의실에서 열린 제38회 임시상임위원회와 반백년기념사업회 건설·재정 위원회 연석회에서 李雲捲서울출장소장은 이제까지의 상황보고를 하면서 지하 1층 지상 15층의 총공사비 7억이 예상되며 평당 15만원에 분양 3만원씩 이득으로 2, 3, 15, 16층의 8백20평을 교단이 소유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9월까지 1천만원, 12월까지 5천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교단에서 준비할 수 없으니 서울교당 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5천만원을 빌려서 이자로 운영을 하고 입주금이 들어오면 원금을 면제하여 주면 된다고 보고했다.

결국 서울교당 대지를 담보로 5천만원을 기채하되 교단 명의라 안되면 김정덕교도 명의로 기채키로 결의했다.

이때 김정덕교도가 교단에 새로운 제의를 해왔다.

김정덕교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한강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땅 1천평을 교단에 희사하겠으니 서울기념관 신축부지를 서울교당에서 흑석동 한강변으로 옮기고 대신 남한강개발(주)의 은행기채에 교당을 담보로 제공하면 이자는 회사가 부담하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이 되면 원금을 회사가 갚고 담보를 되돌려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교단은 제39회(55. 8. 30) 임시 상임위원회와 반백년사업회 재정·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김정덕교도로부터 평생사업으로 서울기념관을 지어 교단에 헌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직접 듣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하고, 담보교산을 서울교당으로 하며 계약 등 모든 사항을 반백년사업회장(朴光田) 교정원장(朴將植) 서울출장소장(李雲捲) 서울기념관추진위원장(朴東現)에게 4인대표위원에게 위임했다.

이틀 후 9월 1일 김정덕교도를 서울기념관건축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남한강변 매립지 2천평 회사증 수수식을 갖고 10월 13일 훈련 중이던 교역자 3백여명이 상경하여 〈서울기념관〉 기공식을 거행했다.

서울기념관 건립에 따른 문제(남한강사건)는 여기서 부터 시작이 되었다.

서울기념관 건축공사비 착수금으로 이미 5천만원 대출로 서울교당을 담보한 신탁은행은 남한강개발(주) 기채에 대해 교산의 담보를 더 요구하였고, 교단에서는 서울교당에 이어 경남교당(부산교당)을 담보로 추인하였다.

이때 남한강개발(주)은 재정적 부실을 교산의 담보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재정구조는 회복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교단에서는 원기55년(1970) 11월 8일 급기야 李濟性 白想源 두 교무를 남한강개발(주)에 파견하여 회사의 재정장부를 관장케 하고 내동을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서울기념관 공사는 계속되어 타일공사를 끝낸 東明企業(주)에 공사대금 3천5백만원을 청구하여 왔고, 골조공사를 한 三煥企業(주)은 김정덕교도를 불신임하여 원불교재단이사장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고 공사대금 4천만원을 청구하여 왔다.

여기에 원기56년(1971) 2월 삼환기업(주)과 공사 갱신 계약을 한 후 남한강개발(주)에서는 원불교 기념관 건축추진위원장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하여 17세대의 입주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그러나 5월, 남한강개발(주)이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가 무허가이며, 서울기념관은 강변도로 도시계획선상에 세워지고 있어 무허가건설 및 도시계획위반건물이라는 서울특별시장의 통보와 함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이 밝혀졌다.

서울기념관은 재정불실 회사에 교산 담보 제공, 공사대금 체불 건축공사중지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다. 남한강사건 수습

건립되던 서울기념관이 서울특별시로 부터 공사중지의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이에 따라 공사를 하던 두 회사의 이미 투자된 공사비 독촉, 그리고 남한강개발(주)에 의해 은행에 담보되었던 교산인 서울·경남(부산) 두 교당이 유실될 위기에 놓이자 이 문제를 논의하

기 위하여 원기56년(1971) 7월 20일 제45회 임시수위단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수위단회는 서울기념관의 건립을 남한강개발(주)의 직영을 피하고 은행에 신탁관리 시키거나 제3의 담보물 제공자를 찾는 방향을 논의하고 수습대책을 위하여 朴光田 朴將植 李雲捲 丁光薰 黃淨信行 文東賢 朴東現 李喆行 李建春 趙正勤 金正勇 張秀眞 등 〈12인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집책임자는 개교반백년사업회장인 朴光田, 전문위원으로 李喆行 趙正勤을 선임되었으며, 원기56년(1971) 10월 13일 열린 제46회 임시수위단회에서는 교정원 집행부장 등이 보강 25인 수습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늘어난 은행부채는 수습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교단적인 해결책으로 교단의 각 기관이 남한강개발(주)에 투자할 명목으로 분담 수납하여 상환키로 하였으나 남한강개발(주)은 도산하게 됐고 서울교당 부산교당은 은행에서 공매하게 됐다.

원기57년(1972) 1월 25일 10시 제24회 임시 교정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어 28일 12시까지 4일간 밤낮에 걸쳐 통곡속에 이문제를 논의했다.

大山宗法師는 「남한강문제 수습에 대하여」라는 특별유시에서 火急이라는 단어를 두번이나 쓰며 「성공을 보지 못한 원인은 첫째, 대종사의 이소성대의 훈계원칙을 우리가 받들지 못한 점 둘째, 이 일이 착수할 때나 진행 수습하는 과정에서 衆智를 충분히 종합하지 못한 점 세째, 시국의 변동으로 경제불황(1973년 유류파동)이 일어나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점 네째, 우리가 경제방면에 전문지식이 없는 점」이라 했다. 또 「이 일을 계기로 ① 政教同心의 계기 ② 재가출가가 다같이 교정에 참여하는 계기 ③ 선후진이 합력하는 계기 ④ 교단의 주인, 血誠法子 불보살이 수없이 배출하는 계기 ⑤ 영겁에 더욱 화합하는 계기 ⑥ 대종사님의 근본정신을 다시 각성하는 계기로 만들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성문으로된 유시에 이어 육성으로 「我死法生 法生我生」 법문을 내렸다.

회의에 보고된 서울기념관 경우 보고서는 양면괘지 34면에 이르렀으며 회계보고에서 성금 4천만원을 투입하고도 부채는 1억9천여만원이었으며 매일 은행이자는 9만여원씩 늘어나고 있었다. 부채와 이자의 비교는 서울기념관(600평으로 16층 아파트 빌딩) 건립비가 7억이었으며 쌀 1가마니가 1만7천원이었으니 반백년 대회를 치루고 난 교단은 교단의 운명이 걸린 큰 사건이었다.

제24회 임시교정위원회는 교단의 창립정신을 되새기며 공동책임·공동수습을 눈물 속에 다지며 5개항을 결의했다.

① 이 사건의 책임과 수습을 전교역자가 책임 수습하는 방향으로 한다.

② 거교적 수습위원회을 구성하여 수습에 관련된 일체 문제를 위임하기로 한다.

③ 기념관 건립문제는 일단 중지하기로 한다.

④ 교단의 총력은 부채청산에 집중하기로 한다.

⑤ 교단의 체질과 풍토개선, 전무출신의 정신자세 확립, 창립정신을 촉구한다.

이에따라 1억9천만원의 부채를 갚기위해 수위단원 4명, 총부 9명, 기관 9명, 지방지부 27명 계 49명의 위원장 丁光薰교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채상환 분담액을 조정키로 했다.

〈12인 수습위원회〉는 거교적 수습대책을 모색키 위해 자문의 지도위원 9명, 실무진으로 실행위원 10명, 교정원·기관 간부 18명, 지역대표 19명 등 64명으로 〈서울기념관 수습대책위원회 대표 丁光薰〉으로 확대 개편했다.

1월 28일 열린 교정위원회는 남한강문제 해결과 함께 교역자 정신사에 일대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전무출신 정신 반성 문제가 토의되어, 이를 정리할 13인 처리위원을 선정하여 「전무출신 정신 총화강령」으로 작성되어 채택한다.

내용은 「교단총화를 위한 방법」으로 〈1〉제도 행정적인 면에서 ① 교단운영의 민주화 및 책임행정 ② 교정원 행정기능 강화 ③ 감찰원의 공정성 강화 ④ 교단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⑤ 적성 능력 범위를 바탕한 공정한 인사관리 ⑥ 전문연구에 입각한 인사정책, 겸임제 배제 ⑦ 경제질서 확립 ⑧ 순교진 강화로 인한 지방 실정의 정확한 파악 ⑨ 수위단원의 공부 집중 ⑩ 재가교도 교정 참여 ⑪ 종법실 비서진의 강화와 순환교체 ⑫ 종법실과 교정원과의 긴밀한 유대 ⑬ 총부와 지방과의 신속한 연결. 〈2〉 교단의 체질적인 면에서 ① 인맥 형성의 타파 ② 인격평가 기준 확립 ③ 도시 지향성, 기관 지향성, 특별 지향성 지양 ④ 물량적 평가지양 ⑤ 교단지도자의 단결과 합력 ⑥ 보신지책의 公事지양 ⑦ 선후진의 이해와 대화 ⑧ 동지 상호간의 이해 협조 공경 대화 ⑨ 솔선수범 동료적 리더십의 발휘 ⑩ 후진양성의 공정화(인심집중 배제) ⑪ 보람과 희망과 용기를 넣어주는 후진양성 ⑫ 교역자 개개인은 어려워도 교단적 경제는 풍요해지는 풍토조성. 〈3〉 교역자의 정신적인 면에서 ① 각자의 진정한 참회 ② 인생관·가치관의 확립 ③ 사명감·책임감·목적의식의 철저 ④ 공부풍토 조성, 법위사정의 양성화 ⑤ 전후임 교체윤리의 앙양 ⑥ 상하 좌우 윤리의 확립 ⑦ 창립정신의 실천(허영 버리고 분수 지킨다) ⑧ 종명·공명에 순종 ⑨ 요행 무모 맹종 배격

또 「전무출신 결의문」을 전 교역자의 이름으로 채택했다.

① 우리는 대종사님의 근본정신에 돌아가 창립정신을 재발휘 시킴으로써 교단 만년대계의 기반을 굳건히 다진다.

② 서울기념관 사건은 이제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우리 공동의 책임으로 규정하며 총화에 바탕한 총력체제로 돌입하기로 한다.

③ 참 성직자의 생명은 수행과 봉공에 있음을 알아 총부와 기관과 지방에 한결같이 공부하는 풍토를 진작하며 봉공의 생활체제를 확립한다.

④ 선진은 진정으로 후진을 깨우치고, 이끌어주고 안아주고 길러주는 어버이나 형의 정의로 돌아가고 후진은 선진을 진정으로 보살피고 따르고 바르고 정성된 諫을 하는 자녀나 아우의 정의로 돌아간다.

⑤ 우리 전 교역자는 오직 교단과 전 교역자와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살며, 괴로움과 즐거움을 같이 하는 공동운명체로 알아 상하 좌우가 단결하기로 한다.

⑥ 우리 전 교역자는 최근 해이 되어가는 창립정신과 전무출신 정신을 깊이 반성하며 우리 근본정신에 돌아가도록 한다.

1월 25일부터 28일 12시까지 밤낮 4일간 개최된 긴급교정위원회는 ① 전체책임 전체수습 ② 68명의 수습위원회 구성 ③ 기념관 건립 일단 중지 ④ 부채청산에 교단총력 ⑤ 교단풍토개선과 전무출신 정신자세 확립 등 6개항을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구성된 68명의 수습위원회는 1월 28일 오후 2시30분 제1차 수습위원회가 열리었다.

제1차수습위원회는 수습을 위해 지부나 기관에서 차입한 기금은 의연금으로 돌리고, 이후 수습에 들어 갈 돈은 지부·기관의 기금을 빌어다 쓰고 교산(한남동 수도원)을 정리하여 무이자로 변상하며, 남한강사건에 대한 내용을 일체 보도 통제, 수습위원중 실행위원 선임 등 실행방안 6개항을 결의했다.

여기서 특기할 일은 수습위원회 구성이전의 빌어다 쓴 지부·기관의 기금은 강제 성금으로 처리하고, 다시 빌리는 기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는 회의 마지막까지 남은 34명의 위원이 각서를 쓰고 손도장을 찍었다.

또 하나는 예비교역자들이 수학여행비 등록금 적금 등 학년별로 모아진 돈, 새끼꼬기 가마니짜기 등으로 모아진 현금 55만9천5백원과 책이나 시계 물건 등 1백18만원을 부담하고 나섰다. 이 돈은 교역자의 전체성금 1백41만원이니 60여명의 예비교역자와 6백여명의 기성교역자와 대비하여 예비교역자들의 창립정신 고취운동을 웅변한 일이다.

원기57년(1972) 2월 8일 재경수급위원들의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사무소에서 지도위원 실행위원 재경수습위원 서울지역 교무 합동회의가 열리어 재경수습위원들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과오」라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2월 12일 중앙총부에서 총부수습위원회가 열리어 서울기념관 건립 문제가 재검토되었고, 2월 15일 수위단회·원의회·수습위원회·소교정위원회 연석회의가 열리어 포기·방관·보장·구제의 네 방향을 놓고 「구제」방향으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이후 신탁은행 부채문제는 은행에 담보되어 있는 서울·경남(부산) 두 교당을 정책적으로 경매에서 3차례 유찰시켜 은행이 유입하도록 하여 전체이자를 중지시키고, 이를 교단에서 30%할인하여 5년 거치 8년간(1973. 11. 27~1980. 5. 27) 10회 연부상환으로 매입하였다.

〈은행부채 내력〉

차 입 내 력	액 수
담보원금(1972. 5. 9이후)	70,000,000
당좌대월(보증금 원금)	21,432,832
이 자	42,216,847
합 계	133,649,679
타 결 금 액	132,508,967

삼환기업(주)가 공사를 마친 지하 2층 지상 4층의 1천9백여평의 골조공사비와 유보금·관리비·이자 등 7천71만8백60원을 원기57년(1972) 6월 8일 해결했다.

〈삼환기업(주) 변제내력〉

내 용	금 액	비 고
기성고청구액(56. 7. 2)	70,710,860	57. 1. 28 이전분
총 지 불 액	61,670,000	36,200,000포함
기 성 고 차 감 액	9,040,860	

개인부채 1천만원도 상환하고 분양된 아파트(서울기념관 건물 아파트) 17세대분도 해결하여 부채는 모두 정리되었다.

교단에서는 남한강개발(주)에 담보로 변제된 서울·경남(부산) 두 교당의 담보물에 대한 보장과 남한강변 공유수면 매립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기57년(1972) 3월 7일 회사주식 3만주(전체의 60%)를 인수하였으며, 4월 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교단측 인사 문동현(상환) 박동현(노선)교도를 이사로, 박대성(성재)·이건춘(건숙)교무를 감사로 선임하여 회사운영에 참여했다.

4명은 남한강개발(주)의 남한강변(흑석동일대) 매립권의 공구 중 서울기념관이 건립되고 있는 제1공구를 분할하여 교단이 차지하게 되었으며(57. 12. 13) 도로계획선에 걸려있는 서울기념관을 강변쪽으로 도로지를 확보하여 주는 조건의 「강변도로 계획선 변경길」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58. 4. 28) 원기58년(1973) 5월 4일 「공유수면 매립허가 名義의 일부 讓渡讓受」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원불교이사장」 명의로 이전하니 「서울기념관」은 교단의 서울기념관이 되었다.

라. 서울회관 준공

원기58년(1973) 3월 30일 중앙총부에서 열린 제18회 중앙교의회는 〈남한강사건〉 수습을 위해 구성되었던 〈남한강수습위원회〉를 해체하고 모든 업무를 교정원 재무부에 이관하기로 결의했다. 6월 18일에 열린 제27회 임시교정위원회는 수위단원과 재가교도 15인으로 지도위원, 실무위원 22명으로 〈서울회관기성회(회장 정광훈, 부회장 이철행)〉를 발족시키고, 호안매립공사 허가가 나왔으나(58. 3. 28) 서울기념관이 세워지고 있는 매립지가 교산이 되기 위해서는 9월 23일까지 공사를 마쳐야 했다.

5월 19일 열린 원의회에서는 6인 위원을 위촉하여 호안매립공사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6월 17일 열린 교정자문위원회에서도 검토되었다.

결론은 막대한 돈이 투자되었으며, 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렵게 따낸 호안매립허가이므로 추진키로 하고, 공사비 8천1백만원은 한남동수도원을 매각하여 충당하기로 했다.

한남동수도원은 공원용지에 묶여 불가능 상태에서 국방부 수용지가 되어 1억3천3백만원의 10년 상환증권의 보상을 받았다. 상환증권은 8천여만원에 처분하여 원기58년(1973) 8월 1일 기공식을 가졌다.

호안매립공사는 축조를 위해 10m길이의 철근콘크리트 기둥 3백50개를 박고 이 위에 10m 높이의 공벽을 쌓는 일이었다.

공사는 공사만료일을 원기59년(1974) 5월 4일까지 연장허가를 얻어 2월 13일 본공사를 마치고 정지작업 등 부대공사까지 4월 30일 마쳤다(공사주재감독 이백철교무).

그러나 전화선문제, 무허가 건축문제, 암거와 근거 분할측량 등 문제로 6개월 후 원기59년(1974) 10월 30일에 서울특별시와 건설부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았다.

총 매립면적은 2천5백93평이었으나 국유도로 6백97평, 암거부문 3백13평을 제외한 1천5백83평을 12월 17일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니 서울특별시 관악구 흑석동 1-1번지(1천5백83평)가 교단의 재산이 되었다.

호안매립공사가 준공을 보자 원기59년(1974) 10월 31일 제30회 임시교정위원회가 열리어 〈서울회관 기성회〉를 해체하고 공사비를 담당한 한남동수도원에 서울회관 인가소유권과 재산관리권 및 처불권을 이양하기로 결의했다.

11월 1일에는 한남동수도원 운영위원회가 열리어 서울회관 잔무처리와 차후 관리문제를 논의하여 수도원에서 투자한 기금을 반환 받는 조건으로 원기60년(1975) 4월 1일 서울회관 운영권을 다시 교정원 재무부로 넘겼다.

이에따라 시유지 점유와 건축허가, 현장관리 등 문제를 교정원 재정담당 이철행부원장

이 책임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서울회관(골조 1,600평)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명령을 내리고 자진 철거치 않을 경우 강제철거 후 철거비 교단 부담이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서울회관문제는 급박한 문제가 되었다.

교단에서는 부지(매립지)는 교단으로 확보되었으나 기존 지하 2층 지상 4층 골조만 서 있는 건물을 철거하든지 완공을 서둘러야 했다. 또한 이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으로 본래 계획대로 13층 맨션아파트를 세울 수 없었다.

이에따라 매각처분, 합작투자, 원광대 부속병원 등 방향을 잡았으나 모두 백지화되었다.

원기64년(1979) 8월 신도안 삼동원에서 대산종법사가 임석한 서울회관 보고회에서 참석한 서울회관 관계교무와 교도들은 현재의 상황을 검토하여 건축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서울회관 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이공주, 집행위원장 이철행)〉를 발족시켰다.

제38회 정기교정위원회(64. 11. 17)는 신도안 삼동원에서 구성된 〈서울회관 건축추진위원회〉를 추인하고, 이튿날 중앙교의회에서 다시 확인 결의했다.

건축추진 내용은 이미 세워진 1천6백평 골조를 2백40평만 완공하여 서울회관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외부미관만 하는데 6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제81회 임시수위단회(65. 3. 6)에서는 서울회관 건축추진위원회 조직의 방대성으로 회의소집이나 추진의 효율적 문제가 검토되어 〈서울회관 건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서울회관 추진방향, 건축비 확보 등 여러 문제를 놓고 서울공청회에서 종합된 기존 골조를 철거하고 임대사무실 위주의 고층 건물 신축, 중앙총부에서 의견종합된 기존 골조를 살리는 방향에서 완공의 두 방향을 가지고 결국 중앙총부측 안에 1층 증축의 보안안을 결정하였다.

원기64년(1979) 11월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 2층 지상 7층이내로 미관심의를 받도록 통보받고, 3차례의 심의 끝에 원기65년(1980) 1월 통과되었다.

9월 13일에는 건축허가를 얻었다.

10월 5일에는 ① 하자없이 ② 부채없이 ③ 운영관리 채산성 있게 라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재기공식을 올리었다.

원기66년(1981) 4월 18일 옥상까지 골조공사를 마치고 상량식을 가지며 상량에 「漢陽佛日 大照萬邦軒」이라 썼으니 〈서울회관〉 건립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했던가를 말해준다. 6월에는 또 한번 원광대 한의대 부속병원이 논의되어 1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공사는 입찰을 받아 1단계로 구 골조건물 철거는 원건사, 2단계 골조공사는 요진산업(株), 3단계 마감공사도 요진산업(주)이 맡았다.

원기67년(1982) 10월 10일 서울회관은 전국에서 6천여명의 교도가 모여 준공봉불식을

올리었다.

수도 서울에 〈서울기념관〉을 세우려던 꿈은 12년간 영욕의 세월을 넘어 《서울회관》이란 이름으로 교단사에 큰 획을 하나 그었다.

〈附〉 서울기념관 12인수습위원회 (56. 7. 20)

朴光田(소집책임자)

朴將植　李雲棍　丁光薰　黃淨信行　文東賢　朴東現　金正勇　李建春　張秀眞(이상위원)

李喆行　趙正勤(이상 전문위원)

서울기념관 25인 수습위원회(56. 10. 13)

朴光田　朴將植　李雲棍　丁光薰　黃淨信行　文東賢　朴東現　金正勇　李建春　張秀眞　李喆行　趙正勤　金中默　李恩錫　鄭性德　宋圓徹　宋慈明　成丁哲　趙暻錫　徐大仁　李敬順　梁道信　金允中　金仁龍　朴大成

수습대책 위원회 구성(57. 1. 28)

원기57년(1973)도 1월 11일 수위단회의 결의에 의해 구성된 수습위원회는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전교단을 망라하여 다시 수습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고　문＝金洪喆　黃道永　成丁哲　李義聲　黃淨信行　徐大仁　李敬順　梁道信　崔行德　宋敬心　趙暻錫

지도위원＝李共珠　朴光田　朴將植　李雲棍　文東賢　朴東現　金圓公

대표위원＝丁光薰

실행위원 대표＝李喆行

실행위원＝趙正勤　朴大成　宋圓徹　金理玄　張正髓　白想源

회　계＝馬圓宗　朴道完

서　무＝金祥益　金聖現

위　원＝金中默　金正勇　金允中　李恩錫　鄭性德　李建春　朴正薰　丁道允　丁盛熟　朴恩燮　宋達俊　宋靈鳳　田宗哲　李炳恩　金仁龍　金西悟　李百徹　權誠天　朴濟權　梁慧經　金成珠　朴性敬　吳暻圓　金大根　金智玄　李正恩　宋靈智　宋順鳳　李聖信　丁慶浩　柳聖一　金義善　鄭眞叔　全基徹　朴世經

감　사＝李空田　孔德宗　宋慈明

기성회 임원명단(58. 6. 18)

지도위원＝朴光田　朴將植　金勤修　李共珠　徐大仁　李敬順　黃淨信行　梁道信　文東賢　朴東現

黃道永　李義聲　金經圓　吳喆煥　孔德宗

실무위원회

회　　장＝丁光薰

부 회 장＝李喆行

총무위원＝李建春　李炳恩　金允中

외무위원＝李喆行　金正勇　趙正勤

법무위원＝金允中　全性完

공무위원＝李百徹　朴大成　金瑞悟

재무위원＝宋靈鳳　金仁龍　金理玄　丁道允

감사위원＝宋圓徹　金仁喆　朴正薰

서　　무＝金祥益

회　　계＝馬圓宗

서울회관 건축추진위원(원기62. 9)

고　　문＝朴光田　金勤修　黃淨信行　文東賢

회　　장＝李共珠

부 회 장＝徐大仁　李敬順　吳喆煥　李徹遠　李喆行　金允中　全隱德　宋敬心　金經圓　丁盛熟

위　　원＝鄭眞淑　金大根　金智玄　李聖信　李正恩　朴恩局　李修悟　朴濟權　柳聖一　徐世仁
朴恩燮　李虛藏　金理玄　朴光田　金瑞敬　趙智聖　李義聲　全二昌　朴正薰　尹周玄
朴濟現　梁慧經　尹致聖　李廣淨　朴和宣　金仁喆　金法用心　金正勇　金萬修華
朴東現　梁道信　金壯權　李空田　李炳恩　朴性敬　羅喆重

집행위원장＝李喆行

부위원장＝朴恩局

전　　무＝李百徹

사 무 장＝李普圓(총무) 丁道允(재무)

외　　무＝羅道國

회　　계＝朴道完

재　　무＝徐大仁　金允中　田宗哲　李聖恩　李普圓　吳暗圓

실행위원＝李建春　金仁龍　高文局　鄭性德　金瑞悟　朴圓根　張應哲　崔俊明　宋修恩　黃義洙
李法善　金聖現　金　玄

서울회관 건축추진 소위원(원기65)

(수위단회에서 선출)

총 부 측=金允中　金正勇　李炳恩　李喆行　李空田　金仁龍　李建春　金瑞悟　丁盛熟　金仁喆
서 울 측=文東賢　金經圓　李徹遠　金道音　金正仁　朴恩局　金理玄　朴性敬　張應哲　李法善
　　黃義洙　崔俊明　趙正勤
집행위원장=李喆行
사 무 장=李普圓　丁道允
실행소위원=金　玄　薛允煥　成道鍾　崔敬道　申明局
전　　무=朴正基
총　　무=崔敬道
출납겸교무=李心眼

4. 영산성지사업회

가. 발　족

교단은 창립반백주년기념대회(원기56. 10)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국내 종교계에 교단의 위상이 정립됨에 따라 교단의 발상지인 「영산성지」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원기58년(1973) 10월 8일 제28회 임시교정위원회에서는 영산성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산성지개발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영산성지 개발준비위원회는 「영산성지사업회」 발족에 필요한 정관준비, 성지개발 계획수립 등 활동을 시작하였다.

준비위원들은 영산성지기 내려가 사업종목을 논의하고(58. 11) 준비위원이며 국보건설회사 기사로 근무하는 황을수씨(서울교당)를 초청하여 준비위원들과 함께 영산성지 현장에 내려가 자료를 수집하여 개발계획을 세웠다.(59. 2)

원기59년(1974) 3월 29일 제19회 정기중앙교의회에서 「영산성지사업회」 발족을 결의했다.

정관 취지문에서 영산성지사업회의 발족은 ① 소태산대종사의 탄생지요 대각개교지로 교단의 근원이며 ②「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로 일원대도의 새 회상을 선도하였으니 세계 문명을 창조한 대 문명의 발생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산성지의 사업은 ① 세계의 성지인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② 소태산대종사와 선진들에 대한 감사와 경모의 뜻을 더욱 되살리고 ③ 세계의 성지로 가꾸어 본교가 목적하는 새로운 세계건설의 튼튼한 원천이 되도록 하며 ④ 교단의 근본정신이 성지를 근원하여 맥맥히 흐르게 하기 위함이라 했다.

이 근본을 세우는 거룩한 성업에 70만교도 모두가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살려 3장 25조의 영산사업회 회칙이 마련되었다. 중요 내용은 1장「총칙」에서「소태산대종사의 탄생·대각·개교의 유서깊은 영산성지를 개발·관리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각종 부대사업을 수행함」을 목적하고 있다.

2장「기관」에서 총재는 종법사를 추대하며 위원은 중앙교의회 대의원은 자동적으로 되며, 위원총회도 중앙교의회가 대행케 되어 있다. 상임위원회로 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사무장 1인, 상임위원 약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산성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기획·성역·시설·조경·문화 5개분과를 두며 분과의 업무도 ① 기획분과－종합청사진 마련, 전체기획 조정 ② 성역분과－지역확장매입, 대지정리, 도로정리 확정 ③ 시설분과－각종건물 교량시설, 각 유적지 기념시설 ④ 조경분과－조림녹화, 공원조성 ⑤ 문화분과－대외홍보, 근화작업, 대민봉사

교단적 관심과 사업으로 추진키 위하여 지도 후원을 위하여 고문과 지도위원 약간인을 두며 지부(교당)의 교무와 지부장(교도회장)으로 당연직 지방위원으로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중앙교위회에서 선임된 영산성지사업회 첫 상임위원회 및 지도위원은

회　　장:이공주　부회장:김윤중　박동현　라철중

지도위원:박광전　김홍철　김근수　박장식　정광훈　서대인　오종태　이경순　양도신　황정신행　문동현

감　　사:홍군표　이공전

사 무 장:이철행(59. 4. 5)

나. 활　동

원기59년(1974) 10월 10일 영산선원 법당에서 열린 제1회 상임위원회는 사업계획으로 제1차년도 사업계획서(원기59~63)와 분과별 사업목표를 세웠다.

＊연도별 사업계획서

59년도－조직정비, 선원신축, 사업자료 수집.

60년도－종합계획안 작성, 청사진 완성, 육묘장 마련, 조림사업, 도로확장, 각 분야별 사업종목 선택, 기념부지 설정, 기념지 표지판 세우기, 언답확장 및 도로정비.

61년도－기념지 부지 조성, 조림 녹화, 언답경지정리, 기념지 시설설계 확정.

62년도－성역확보, 조림식수, 기념지 미화작업, 본관 및 부대시설 공사

63년도－조림녹화 완성, 기념지별 조림 및 건축 박물관·전시장공사 착공, 본관 완공.

***분과별 사업목표**

기획분과－종합 청사진 완성, 종합계획 조성, 분과별 사업종목 선정, 섭외업무,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성역분과－지역확장 확보, 도로확장 및 부지정리, 언답확장 및 경지정리, 저수지 조성

시설분과－유적지 기념시설, 입비 및 건축, 교량공사.

조경분과－부근 관광지 개발, 조림녹화, 육묘사업, 공원조성, 식수사업.

문화분과－박물관, 유품·유물·사료수집, 대내외 홍보사업, 근화작업, 대민봉사, 청소년활동, 기념문집·사진첩 발간.

재정분과－자금조달, 수지결산.

다. 중요사업

59년－① 대각지앞 부지 확장 공사(3월) 대각지 앞 수로를 변경하여 하천부지를 확보하여 광장을 확장

② 선진포 순환도로공사(6월) 영산원에서 선진포를 거쳐 장산리에 이르는 도로를 연결

③ 영산원 낙성(10월 10일) 영산선원의 교사 및 법당 등 용도로 총공사비 4천만원, 2층 슬라브 연건평 250평

60년－① 정관평 확장공사(5월 24일) 방언답 확장·순환도로 개설 등 목적으로 방언답에 붙어 있는 타인소유 1만5천59평 매입하여 3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공사. 공사금4백80여만원.

② 삼발재 우물공사(9월) 대종사님이 기도하시며 마시던 우물을 개수.

61년－길룡리 일대 지적도 완성(12월)

62년－① 식목행사(4월) 푸른성지가꾸기 운동으로 옥녀봉을 중심으로 5백명 동원하여 4만주 식수

② 삼령교 공사(5월) 삼발재 가는 하천 교량건립비 지원

③ 영산원 및 가옥 1동, 팔역각 부근 임야 1천평 매입

63년－① 성탄지옆 가옥 2동과 대지 매입(6월)

② 영산 중등부 교사 준공(11월)

64년－① 평화기원대법회(4월 5~6일) 평화통일기원식, 초청인사 간담회, 북한교화위원회 발족 봉고 등 전국에서 3천여명 참석

②5천5백여평 재단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22건의 대지·논·밭 5천5백9평을 재단명의 이전

③ 임야 4만1백40평 매입 길룡리 산 156의 2만1천평

④ 백수교당 불하관계 종결(7. 26). 구수리 산 90의 3만5백40평(11. 1)

65년－① 임야 1만1천4백평(6. 10) 영산원주변 등 토지 및 가옥 3천6백84평 매입
② 문화재 보호지역 지정추진

66년－① 대종사 탄생가 복원 탄생지에 수원교당 조대진교도의 특별성금으로 원형복원.
② 영모전 신축 콘크트 기와조 70평 완공 대종사 영정과 십상도(원광대 정승섭화백 재작) 봉안

67년－① 대지·밭 등 1천9백66평의 매입
② 삼밭재 마당바위 기도터에 기념표석 설치(대학생 하계보은 수련회)
③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봉사활동

68년－① 대지·임야 등 부지 7천5백59평 매입

69년－① 길룡리 183 가옥 1동, 논 1천평 등 1천2백85평 매입
② 대각지 석등 조성
③ 대각비 보완공사(6. 1～30)
④ 구간도실 광장 조성(11. 1～30)

70년－① 논·임야·대지 등 4천1백95평 매입
② 국유지인 성탄지 1백40평 등 1천4평불하
③ 성지진입로 포장공사 망곡에서 영산성지까지 6.5㎞구간 폭 5m시멘트 포장(12. 1 국비 8억5천만원)

71년－① 대각지 조경공사(홍도전 회사금)
② 정관평 3분작 소작권 4천4백평 매입
③ 구수리 산 99번지 교단 소유 90정보의 임야에 길이 1.3㎞ 폭4m 도로개설

72년－① 삼밭재 우물 개수공사(김법용심 회사금 6. 10)
② 대각지 앞 성지 진입로 교량장엄공사(5. 20)
③ 청년의 숲 가꾸기 64년부터 식목운동을 벌여 조성한 청년의 숲 가꾸기
④ 성지 순례객 숙소. 신축 순례객 숙소·식당·사무소 등 건물 한옥 1천40평(11. 30)

附. 任員 및 委員名單(원기64～67)

지도위원:박광전 김홍철 박장식 정광훈 김근수 서대인 오종태 이경순 양도신 황정신행 문동현
회　　장:이공주
부 회 장:김윤중 박동현 라철중
사 무 장:이철행
차　　장:김인철
간　　사:장응철

감　사:이공전 홍정덕
① 기획분과:조정근 김정용 이병은 권세영 윤을중 전팔현 박정훈 심도정 황성우 전성완
김복환 조지성 조정중 라도국
② 성역분과:정도윤 이수오 김대관 정학현 김대근 송영봉 박은섭 김현오 임선양 김법종
박대성 윤치성 오해인 양현수 김정관
③ 시설분과:이건춘 김인용 이백철 박제현 송영지 이허장 임동명 이법선 최준명 김광창
이정은 양혜경 조재현 신재일 정성덕
④ 조경분과:김서오 송원철 박인현 곽계환 장정규 오회원 전종철 이정무 전이창 박은국
부혜광 한정원 류인식 김　현 정두원
⑤ 문화분과:이광정 박광진 김이현 류기현 송천은 전팔근 김도융 정성숙 이중정 이종원
박청수 박순정 이성은 손정윤 구안복 황직평
⑥ 재정분과:윤주현 박성경 김성주 박제권 신제근 이성신 정진숙 김지현 송성찬 김귀근
서대준 장경진 송순봉 김보현 장혜성
(회칙 개정후 위원 예정)

*** 영산 성지 사업회 임원(원기64~67)**

총　재:김대거
지도위원:김홍철 김영신 김근수 박광전 박장식 문동현 이운권 이중화 성정철 서대인
안이정 정양선 양도신 황정신행
회　장:이공주
부 회 장:김윤중(총무담당) 김정용(재무담당) 이철행(사무장 겸임)
오철환 라철중 김경원 이의성 이병은 추진권 정영원
사 무 장:이철행
차　장:정도윤
간　사:김　현
감　사:이공전 홍정덕
이　사:기획담당－조지성 황성우　성역담당－권세영 한원종　시설담당－김서오 김도국
조경담당－김인룡 여원식　문화담당－이광정 박광전　재정담당－정성숙 윤주현
상임위원:기획위원－조정근 이성은 심도정 김인철 김도광 이법선 김호영 박정원 윤을중
성역위원－이보원 이수오 이건춘 박재윤 서성범 정학현 오해인 윤치성 박대성
송순봉 박제현 김형오 김정호
시설위원－이백철 송영지 이정은 양혜경 정성덕 최준명 조대현 신재일 김동현
장도중 김덕일 이형철 이용성 정인곡
조경위원－장정현 오회원 전종철 전이창 이정무 한정원 김장권 부혜광 유원식
공덕종 박현응 이경호 조지석 강장수
문화위원－김이현 송천은 전팔근 이중정 이종원 라도국 박청수 손정윤 구안복
김도강
재정위원－박은국 박제권 정진숙 이성신 박성경 송성찬 서대준 서세인 김대근

김지현 권성천 이철원 정군수

*** 靈山聖地事業會 任員(원기68.~71. 12)**

총 재:김대산
지도위원:김근수 김윤중 김영신 김홍철 박광전 박장식 문동현 이운권 이정화 서대인 성정철 안이정 양도신 황정신행
회 장:이공주
부 회 장:이철행 이공전 김정용 김경원 라철중 오철환 윤충전 이도천 추진권 탁재옥 홍정관
이 사:기획담당-김인철 조정제 성역담당-권세영 한원종
시설담당-이건춘 최준명 조경담당-김인용 김도광
문화담당-장응철 김은준 재정담당-윤주현 서성범
감 사:이중정 김도융
사 무 장:유정완
차 장:김 현
상임위원:기획분과-김이현 김호영 성도종 이광정 이법선 이성은 윤을증 조정근 최경도 황직평
성역분과-김기삼 김정호 박재현 송순봉 오성수 이보원 이수오 전종철 정학현 여원식
시설분과-부혜광 송영지 양혜경 이백철 이정은 장정현 정도윤 조대진 조명량 정성덕
조경분과-박은국 박인현 심우경 양현수 오회원 전이창 곽계환 황의수
문화분과-김성택 라도국 박광진 박달식 박청수 순정윤 신명국 이종원 전팔근 정인석
재정분과-김지현 박은섭 박성경 박재권 서대준 신제근 이성신 정경호 정성숙 정진숙 장인중 유성일

5. 원불교창립 제2대 및 대종사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원불교를 창설한 少太山大宗師는 원기3년(1918) 10월에 「원불교 紀元은 少太山의 大覺의 해(1916년)로 정하고 每代를 36년으로 하되 1代를 다시 3회로 나누어 제1회 12년은 교단창립의 정신적 경제적 기초를 세우고 제2회 12년은 교법과 교제를 편성하는 기간으로 제3회 12년은 인재를 양성 훈련하는 기간」으로 발표하여 교단을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케 하여 주었다.

제1대 제1회 총회는 대종사 재세시인 원기13년(1928) 3월에 사업보고와 아울러 공부 사업

성적 발표가 있었고 제2회 총회는 원기25년(1940) 4월에 일제하의 시국관계로 기념행사는 갖지 못하고 정기총회 등만 갖게 되었다.

제1대(3회 36년)를 마감하는 성업봉찬회는 대종사 聖塔, 聖碑 奉建과 교단 연혁작성, 공부사업성적을 사정한 후 6·25동란 관계로 원기38년(1953) 4월에 개최되었다.

제2대에 들어서서는 교단내외의 사정상 매회마다 결산과 기념총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기42년(1957) 4월 총회에 法勳證 수여와 원기49년(1964) 4월에 발족하여 원기56년(1971) 10월에 마감한 개교반백년 기념사업의 업적은 성격은 다르나 매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행사 이상의 것이었다.

원불교는 원기72년(1987)에 교단창립 제2대말을 맞게되고 원기76년(1991)에는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와같이 주어진 역사적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기68년도(1983)에 《원불교 창립 제2대 및 대종사 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가 발족하였다.

이 성업봉찬회는 제1대 성업봉찬회나 개교 반백년 기념사업회와는 달리 그 명칭이 뜻하는 바와같이 서로 다른 두가지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제2대 36년을 결산하고 기념하며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을 기념 경축하는 일이다.

가. 발족경위

이 사업의 발족은 원기65년(1980) 11월 제39회 정기교정위원회에서 2대말과 소태산대종사 탄생 백주년을 향한 준비와 계획을 위하여 기구발족을 결의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 과업이 원의회로 위임되어 원기66년(1981) 1월 27일 제187회 임시원의회에서 21인의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윤중)를 구성하였다. 동년 5월 19일 영산 성지에서 제1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9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소위원회에서는 수차의 회의를 거쳐 명칭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를 거쳐 동년 11월 정기 교정위원회에 결과를 보고 발족코자 하였으나 서울회관건립 등의 교단 사정으로 발족을 연기하였다.

원기68년(1983) 11월 13일 제202회 임시위원회에서 교단 창립 제2대 및 대종사 탄생백주년 성업봉찬사업 준비위원회(가칭)를 재구성하였다. 동위원회는 수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취지문, 사업요강, 회칙,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동년 2월 21일 제203회 임시원의회에서 이를 검토한 후 수위단회에 상정하여 발족키로 결의하였다.

동년 2월 22일 제96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취지문과 회칙을 통과하고 임원을 구성하였다.

동년 8월 15일 회칙에 의한 분과위원 총회 및 각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여 전체 사업계획과 분과별 계획을 심의한 후 상임위원회를 거쳐 기본방침, 중요사업계획 및 1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11월 6일 제1회 위원총회를 개최, 종법사의 유시를 받들고 이를 통과하였으며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나. 종법사 유시

大山宗法師는 諭示를 통하여 창립 제2대말과 대종사 탄생백주년을 앞두고 재가 출가 전교도가 대신성 대적공 대보은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첫째, 각자가 거듭나고 새로나는 계기가 되고 교단이 새롭게 정비되어 크게 발전하는 기간이 되며

둘째, 많은 불보살이 배출되고 많은 공부 사업 공덕주가 배출되어 교단 만대의 기초가 확립되는 기간이 되며

세째, 대종사와 선진들께 크게 보은하고 거룩하게 받드는 기간이 되며

넷째, 교단의 저력이 쌓이고 교세가 크게 신장되어 이 법은이 온누리에 미치고 전생령이 구제받는 기간이 되며

다섯째, 政教同心 宗教聯合運動으로 국운이 개척되고 세계평화가 이룩되는 기간이 되도록 다함께 기원하고 정진하자고 하였고, 표어로써 「성업봉찬 추진하여 낙원세계 건설하자」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산 종법사의 유시는 개인이나 교단이 공부와 사업, 교화와 보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서 교운과 국운, 세계평화를 개척해 나가도록 전체적 입장에서 포괄적인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업을 성업봉찬회에서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해서도 안된다. 집행기관인 교정원에서 평소과업이나 특별과업으로써 담당하여 추진할 것은 하고 특별기관인 성업봉찬회에서는 기념사업과 행사 그리고 특별사업만을 담당해 나아가야 한다. 이 한계는 다음 사항에서 밝혀지고 있다.

다. 취 지 문

現下 世界는 科學文明의 급속한 발달로 人類生活에 限없는 便利를 가져왔으나 人間精神은 物質의 노예로 전락하였고 倫理 思想은 범람하나 人類의 참다운 價値와 도덕은 崩壞되어 標準과 秩序를 잃고 있으며, 地球는 하나의 촌락이 되어가나 세계는 對立과 투쟁이 끊일 날이 없으니 人類의 장래는 實로 암담한 실정입니다.

일찌기 원불교를 창설하신 少太山大宗師께서는 1916년 大覺과 더불어 인류의 未來를 展望하시고 「物質이 開闢되니 精神을 開闢하자」는 開教標語를 提唱하시며 天下萬法과 思想을 하

나로 統合할 수 있는 一圓大道를 천명하시고 眞理的 宗教의 信仰과 事實的 道德의 訓鍊을 실시하셨습니다. 또한 三學修行의 원만한 人格 회복의 결과 四恩四要의 참된 倫理 道德을 제시하시어 다같이 成佛을 하고 서로서로 佛供을 하여 이 世上이 한 없는 佛國淨土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在家 出家 全教徒는 굳은 信誠과 一心合力으로 이 聖業을 받들어 이제 우리의 教勢는 國內에서는 自他가 公認하는 結實을 보았고 바야흐로 世界結福을 向하여 힘찬 도약을 다짐해야 할 重大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약에 앞서 우리의 과거를 反省하고 現在를 점검하며 未來를 새롭게 設計해야 할 必要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教團 創立 第二代末과 대종사 탄생 백주년을 앞두고 全教徒의 工夫 事業 成績查定으로 무수한 佛菩薩과 法勳 功德主를 배출하고 教政의 合理化와 教勢發展을 도모하여 창립 第三代를 向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겠습니다.

또한 총부건설과 영산 성지 사업 및 각종 기념사업과 행사로 樂園道量을 만들고 大宗師의 홍은에 萬에 一이라도 보답하며 국제종교대회와 연합활동으로 교단의 威身을 國內外에 널리 宣揚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대종사님의 부촉과 같이 이 나라가 장차 精神이 指導國 道德의 父母國이 되고 이 땅에 참된 平和와 樂園을 建設하기 위하여 이에 成業奉讚 事業을 推進하오니 在家 出家 全 教徒는 물론 江湖 有志諸賢과 일체 동포는 아낌없는 合力과 성원을 해주시기를 祈願합니다.

라. 목표와 방침

성업봉찬회에서 제1회 위원총회에 제시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부 사업성적 사정, 제도 체제정비, 교정 합리화, 실력양성을 통하여 2대를 알차게 결실하고 3대를 새롭게 출발한다.

둘째, 교세를 확창하고 창립정신과 개교정신을 구현하는 교화와 정신운동을 전개하여 고통에서 헤매는 동포가 하루속히 구제받게 한다.

셋째, 총부와 성지장엄개발사업, 보본기념사업, 각종 기념행사, 교위 선양사업 등으로 소태산 대종사께 보은하고 교단의 면모를 새롭게 갖춘다.

또한 위원총회에 제시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업의 기간은 원기68년부터 76년으로 하고 3년을 1차로 3차년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매 3년마다 평가한다.

② 2대말 결산총회는 원기73년 총회로 하고 탄생백주년 기념대회는 원기76년 대각개교절 기

간에 한다.

③ 2대말 총회는 자체반성정비와 실력양성에 역점을 두고 탄생백주년 기념은 보은사업과 개교정신 구현에 역점을 두며 교세신장은 전기간을 통하여 꾸준히 추진해 가도록 한다.

④ 행정차원에서 추진할 업무는 교정원에서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보본특별사업과 기념행사 등은 성업봉찬회에서 담당추진하되 서로 합력해 나아간다.

⑤ 영산성지사업, 국제훈련원건립, 영모원 묘지사업 등 기존 교단 특별사업은 성업봉찬사업으로 통합하여 사업추진의 조정과 효율성을 도모하되 일은 해당기구에서 담당 추진한다.

⑥ 이 기간을 통하여 많은 불보살과 奉道 護法 功德主가 배출케 하고 자신과 교단이 쇄신되도록 하며 교세가 크게 발전되어 법은이 널리 미치도록 한다.

⑦ 이 기간의 특별사업으로 많은 교역자를 육성 관리할 수 있는 인재관리재단을 조성하여 교단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한다.

이상과 같이 이 지침에서는 2대말 총회와 탄생백주년 기념사업의 관계, 교정원과 성업봉찬회, 그리고 특별기구에서 담당해야할 성격과 과업을 기본적으로 잘 밝혀 상호 혼란과 모순이 없도록 정리하고 있다.

마. 주제와 강령

또한 성업봉찬회에서는 이상의 취지와 목표에 입각하여 제11회 상임위원회에서 주제는 「온누리에 은혜를」, 강령으로는 「자신에게 법력을 스승님께 보은을, 동포에게 새빛을」이라는 종합적인 주제를 채택하여 사업의 지표로 삼고 홍보하고 있다.

주제 : 온누리에 은혜를

〈주제강령〉

가. 자신에게 법력을 : 스스로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법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다같이 대종사님의 혜명의 등불을 이어받고 어느 곳이나 낙원으로 화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 동포에게 새 빛을 : 일체 동포가 다같이 낙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가족 내 이웃부터 새 진리 새 도덕의 빛을 밝히고 전하자는 것입니다.

다. 스승님께 보은을 : 대종사님과 이 회상을 만남에 감사드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보본사업 탑쌓기 운동에 정성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바. 결 의 문

우리는 教團 創立 第二代末과 大宗師 誕生百週年을 앞두고 在家 出家 全 教徒가 聖業奉讚

事業을 받들어 推進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決議하오니 法身佛 四恩님께서와 大宗師聖靈과 先進列位 諸位尊靈께서는 이에 洞燭하시고 크게 威力과 光明을 내려 주시옵소서.

1. 저희는 大宗師님을 새 世上의 主世聖者로 모시고 一圓大道가 全 生靈을 救濟할 萬古大法으로 받들며 永劫同進하겠나이다.

2. 저희는 敎團創立과 개교정신을 받들고 實踐하여 훌륭한 전통을 이루고 後進萬代에 길이 계승토록 노력하겠나이다.

3. 저희는 大誓願과 大積功으로 각자의 法位를 向上시켜 千如來 萬菩薩의 대열에 참여하고 無等等한 導人과 無相行의 奉公人이 많이 배출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4. 저희는 2代를 알차게 결산하고 3代를 새롭게 出發하며 실력양성과 교세신장으로 하루속히 많은 同胞가 이 法恩을 입도록 合力하겠나이다.

5. 저희는 大宗師님을 거룩하게 모시는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스승님께 크게 보은하고 교단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어 모범되고 견실한 교단을 이루겠나이다.

6. 저희는 政敎同心과 宗敎聯合運動으로 國運과 道運을 개척하고 世界平和에 기여하여 하루속히 참 文明世界, 樂園世界가 건설되도록 매진하겠나이다.

7. 저희는 이 성업을 봉찬하기 위하여 재가 출가 선후진 男女大衆이 大信誠, 大團結, 大奉公으로 一心合力할 것을 굳게 다짐하나이다.

사. 조 직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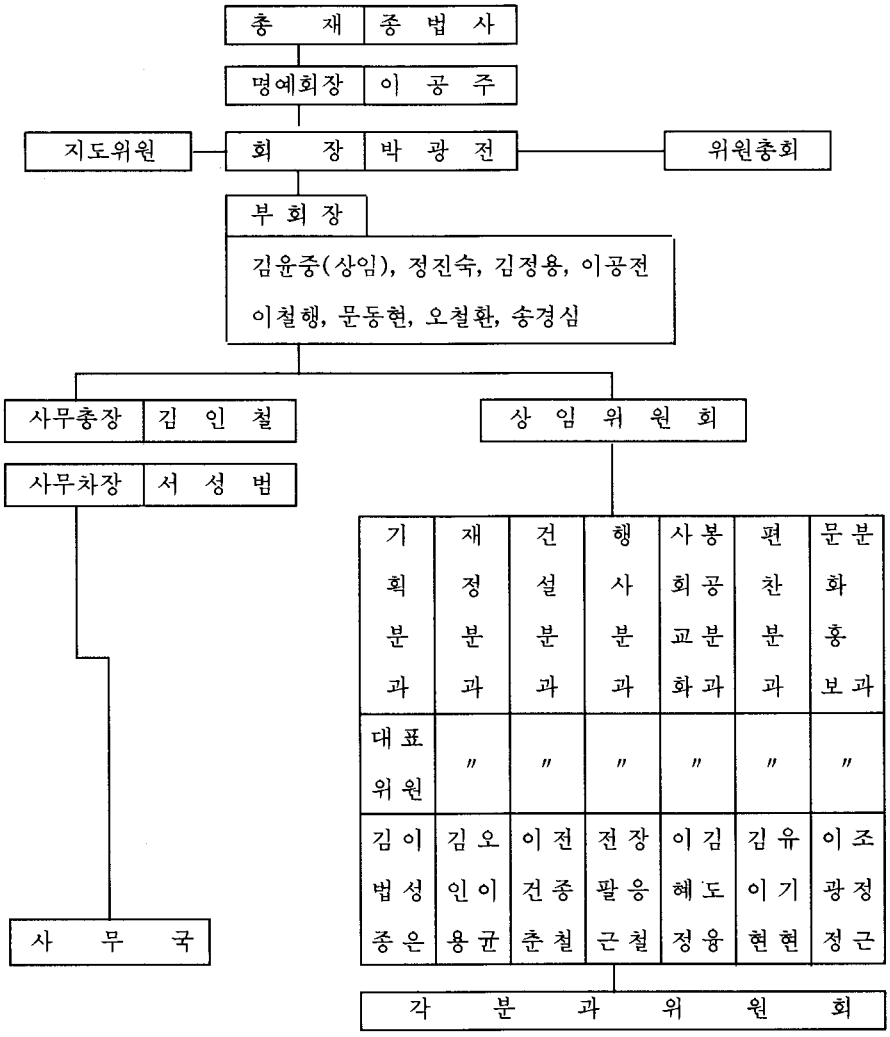
총 재 종 법 사
명예회장 이 공 주
지도위원
회 장 박 광 전
위원총회
부 회 장
김윤중(상임), 정진숙, 김정용, 이공전
이철행, 문동현, 오철환, 송경심
사무총장 김 인 철
사무차장 서 성 범
상 임 위 원 회
기획분과 재정분과 건설분과 행사분과 사회교화분과 봉공분과 편찬분과 문화홍보분과
대표위원 〃 〃 〃 〃 〃 〃
김법종 이김오인용 이전이건춘 전장팔근 이김혜정 김유이현 이조광정
사 무 국
각 분 과 위 원 회

아. 임원 및 위원명단

ㅇ 임원명단

총　　재 : 종법사

지도위원 : 김홍철　성정철　박장식　이운권　안이정　김근수　정양선　서대인　김영신
황정신행

명예회장 : 이공주

회　　장 : 박광전

부 회 장 : 김윤중　이정화　김정용　이공전　이철행　문동현　오철환　송경심

사무총장 : 김인철

차　　장 : 서성범

감　　사 : 이중정　송순봉　라철중

중앙위원 : 임원　분과위원　교정위원　교당대표(교무, 회장)

ㅇ 분과위원 명단

1. 재정분과 – 대　　표 : 유정완, 오이균

1) 총　　부 : 황직평　김중묵　김대근　김치국　조지성　박진홍　양혜련　유승인　김영택

2) 교 구 장 : 정진숙　김지현　이성신　이정은　신제근　박은국　이수오　박제권　유성일
양혜경　박은섭　정도윤　정경호　송영봉　서세인　장정현

3) 수익사업체 : 박정기　이보원　정경훈　박원근　송성찬　오성수　윤주현　이태성
박대성　양태설　지해원　양제승　김성현

4) 기　　관 : 김귀근　모상준　정성덕　서대준　정성숙　정진명　윤치성　송자명　이현도
권성천　유장순　김선지행　김정호

5) 사업회 회장 : 이의성　조대진　이철원

6) 중앙교의회 의장단 : 김경원

7) 교구교의회 의장 : 추진권　고경원　권현각　윤충전　이대현　이도천　홍정덕　고문국
여원식　최용선　송인천　김성모　황경원

8) 교구대표 : 이덕심 이현조 최영명 박성석 박세경 박성경 고현종 장경진 심익순 유향원 임선양 백수정 이영인(82)

2. 건설분과 - 대 표 : 이건춘 전종철

1) 총 부 : 이성국 김효명 안도순 최경도 강경락

2) 기 관 : 김인용 이백철 전이창 박광전 김 현 설윤환 김동현 김석원 김광창 오해인 송혜성 권준원

3) 교구대표 : 김화경 송영지 한제선 정수덕 강묘진 박정묵 유의명 최강연 조효경 이유관 박영륜 정상훈 이양신 이명선 이재경

4) 재 가 : 부혜광 이상재 유성오 곽계환 정사회 전병주 최준명 황의수 이법선 이도봉 조성재 김인수 김성오(47)

3. 행사분과 - 대 표 : 전팔근 권세영

1) 총 부 : 박제현 김법종 장응철 황인철 성도종 김도심 이대광 장연광 이선조 김주원

2) 기 관 : 전성완 송관은 김영종 한길량 이도명 김형철 김성훈 정화성 김대관 고원선 박명재 태성실 김명덕 조정중 남궁성 김복환 이성택 김혜봉

3) 교구대표 : 김정덕 강순상 김도경 박덕수 남궁선봉 강주심 박순정 김장원 이정무 박지홍 이심안 김수인 장정수 오주은 이남현 김덕현 이정수 남궁원 이경봉 김지선 김일상 김인강 김대선 박철주(53)

4. 봉공분과 - 대 표 : 오희원 심도정

1) 총 부 : 박남주 이성규 유응현

2) 기 관 : 김서오 전기철 강운상 신재일 정윤재 김춘택 장인중 김상익 손홍도 유현정 김성진 윤순명 한정수 김강인 한해선 정원일 구안복 김혜심 조성중

3) 교구대표 : 정도중 대광옥 심창덕 김삼인 한연심 정연석 김성주 박청수 장경안 김의선 강영문 이묘신 한도봉 박영화 김덕진 장명신 김남명

4) 재 가 : 김인재 김용태 홍인덕 차원경 문도권(46)

5. 편집분과 - 대 표 : 김이현 유기현

1) 총 부 : 박정훈 장성진 손정윤

2) 기　　관 : 한정원　송천은　한정석　김성철　하일성　김기원　노대훈　심도정　김성택
양현수　박광수　이건인　김대현　이종명　김도종　김성관　성인종　김학인
허광영　박용덕　한희윤　박정원　서경전

3) 교구대표 : 이제성　박혜순　송선만　조학심　나문정　송인호　박원석(35)

6. 홍보분과 – 대　　표 : 이광정　김은준

1) 총　　부 : 라도국　이성은　서광원

2) 기　　관 : 조정근　이종원　장도영　조원오　유진근　주정경　이운철　박달식　권도원
김정관　이성길　오선도　박혜명　박선일　임윤철

3) 교구대표 : 김도관　김법진　장혜성　변성묵　김지영　이혜정　송명호　김보신　김보현
이응원　이종진　최순철　박인교　마원종

4) 재　　가 : 김성육　백경진(36)

자. 중요계획

원기66년 1월 27일 발족한 〈준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는 원기72년(1987) 2대말과 76년(1991)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을 앞두고 「교정부문과 기념사업부문」으로 나누어 바람직한 교단의 방향과 해야할 바람직한 과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여기에 필요한 사업종목을 채택 정리하였다.

원기69년(1984) 11월 13일 재차 구성된 〈준비위원회〉에서는 1차 준비위원회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하되 교단의 정신적 현실적(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헤아려 꼭 해야되고 할 수 있는 가능한 선으로 사업계획을 축소 조정하고 사업요강을 정하였다. 특히 기념사업부문에서는 당초 요청되는 사업계획 예산이 너무 방대하여 후에 각종 회의를 거쳐 현재 교단실정에서 매년 염출해 낼 수 있는 경제력을 먼저 헤아린 후에 여기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였다.

1) 교정부문 계획

교정원에서는 2代를 알차게 결산하고 3代를 힘차게 출발하며 소태산대종사의 법은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그 목표를 자체정비, 실력양성, 교세발전, 정신운동에 두고 있다. 중요계획으로

는 첫째, 전교도의 공부 및 사업성적 사정이다.

원불교는 靈肉雙全 理事並行의 이념에 입각하여 원만한 생활종교인이 되고자 「공부(법위)와 사업 6등급」을 정하고 다시 이를 합하여 「원성적 6등급」을 산출해서 그에 따라 예우를 하게 되어 있다. 한 대를 마감하는 때는 36년간의 성적을 종합사정하여 원성적을 발표하고 「法勳證」을 비롯하여 각종 포상을 시행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많은 불보살과 사업공덕인을 배출하여 교단만대의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교단 각 부문의 이념정립과 종합정책수립이다.

원불교의 기본이념은 교리에 잘 확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교단내외에서 제기되는 격동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교단의 입장과 방향을 그때 그때 정립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혼란과 갈등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한 대를 종합 반성평가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종합청사진을 마련해야 이념과 정책교단으로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교단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는 제도, 조직 정비이다.

제도, 조직이란 그 집단의 이념과 정책수행에 필요한 법도요 틀이다. 따라서 이는 정책의 성격규모와 변화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가다듬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는 ① 교헌 개정 ② 교화위주의 조직체계(총부, 교구, 교당) 검토 ③ 행정조직의 효율화 ④ 교역자 제도 종합검토 등이 제시되어 있다.

넷째는 행정의 합리화 작업이다.

행정이 합리화 과학화 되어 있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면 온갖 폐단과 정체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는 ① 연구 기획평가 행정 ② 사무의 과학화, 자료화 ③ 각종 업무규칙 제정과 양식통일 ④ 행정 전문요원 양성 ⑤ 문제해결 및 지원보장 행정 등이 제시되어 있다.

다섯째는 인력개발 관리대책과 재정관리 육성대책이 재시되어 있다. 이는 교단의 기본되는 동력으로써 이 힘이 없으면 교단은 형식만 남기 때문에 기본을 튼튼히 하는 대책을 더욱 강화 하자는 것이다.

여섯째는 교세신장 운동으로써 여기에서는 ① 교역자, 교도, 교당 배가운동 ② 유년, 청소년 단체 육성 ③ 의식, 문화, 사회교화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일곱째는 정신운동으로써 교도 신심고취 운동과 국민정신운동 및 종교연합운동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에 없었던 이 계획이 폭넓은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정계획을 조직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두고 분과별로 활동하게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교정계획만 보더라도 2대말과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을 앞두고 알찬 결산을 하고 교정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교단을 융성시키고 국가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되어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해 나아가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2) 성업봉찬회 계획

성업봉찬회에서는 2대말과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을 기념하고 찬양하며 교단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보본 기념사업과 행사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부득이한 교단적 특별사업은 상호 혼란을 피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봉찬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사업은 회칙 제3조(사업)와 제18조(분과별 업무)에 밝혀져 있고 제1회 위원총회에 자세히 제시되고 있으나 후에 조정이 되어 제2회 위원총회에 제시된 중요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부 건설 장엄사업으로는 ① 종합계획 수립 ② 도로정비 및 보존건물 복원 ③ 원로원 건립 ④ 소태산대종사 성탑개수 장엄 ⑤ 소태산대종사 기념관 건립 ⑥ 정산종사 성탑 이전 건립 ⑦ 부지 및 사가 매입 등이요

둘째, 영산성지 장엄사업은 ① 종합계획 수립 ② 부지확보 및 수용시설 건립 ③ 도로정비 및 법인광장 조성 ④ 창립정신 기념탑 조성 ⑤ 사적지 기념물 조성과 장엄 등이다.

셋째, 편찬사업으로는 ① 72년총람 및 70년 정신사 ②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 기념문집 편찬 발행 등이다.

넷째, 문화홍보사업은 ① 2대말과 백주년기념 문화예술행사 ② 소태산대종사 일대기 영화제작이다.

다섯째, 행사로는 ① 2대말 기념총회 ② 소태산대종사 탄생백주년 기념대회 ③ 국제종교인회의 등이다.

여섯째, 봉공활동으로는 ① 복지기관 설립 지원 ② 보은봉사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일곱째, 특별사업으로는 ① 국제훈련원 건립 ② 해외교당 개척 ③ 영모원 공원묘지 조성 ④ 인재관리 특별재단 조성 등이다.

이상과 같이 성업봉찬사업은 기념성업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기간내에 시행되지 않을 수 없는 여러가지 특별사업을 포괄하여 추진 또는 지원하게 되어 있어 핵심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추진케 되어 있으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사업도 완실하게 이루어 놓지 못할 우려가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성업봉찬회 종합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분	내 용	시행 년도	예산액	조정예산액 (기지출액)	증 감	비 고
총부 건설	1. 보존건물 복원 및 도로정비	1차	40,000	145,600 (145,208)	+105,600	
	2. 원로원 건립	1차	120,000	140,400	+20,400	
	3. 대종사 성탑 장엄	2차	80,000	230,000	+150,000	특별회사
	4. 영모전 수리 장엄		0	14,000	+14,000	
	5. 소태산 기념관 건립	3차	200,000	600,000	+400,000	
	6. 정산종사성탑 이전 건립	3차	50,000	120,000	+70,000	
	7. 총부 부지 및 경내	1-3	100,000	350,000	+250,000	기관배 정액
	가옥 매입			(175,726)		350,000
	*종법실 신축		80,000	80,000	0	*200,000
	*수도원 신축		0	100,000	+100,000	
	*정화원 신축		0	146,000	+146,200	*150,000
영산 성지	1. -4. 영산성지 장엄	1-3	250,000	300,000	+50,000	
	*창립정신 기념탑 조성					*200,000
편찬	1. 70년사, 72년 총람 편찬	1.2	80,000	80,000	0	
	*기념문집 편찬					
문화 홍보	1. 홍보, 문화, 예술행사	1-3	30,000	50,000	+20,000	
	2. 대종사일대기 영화제작	3차	100,000	100,000	0	
행사	1. 국제종교인회의, 영어교전 증간	2차	80,000	80,000	0	
	2. 2대말 기념 총회	2차	10,000	10,000	0	
	3. 대종사탄생 백주년기념대회	3차	30,000	30,000	0	
사회 봉공	1. 청소년복지기관 설립지원	1차	40,000	23,000	-17,000	
	2. 사회보은봉사활동	3차	40,000	40,000	0	

특별사업	1. 국제훈련원 건립	1차	570,000	300,000	−270,000	
	2. 해외교당 개척	1−3	200,000	200,000	0	국내교당개척비
	3. 인재관리 특별재단조성 (원창회)	1−3	500,000	0	−500,000	1억포함
	4. 영모원 공원묘지조성	1−3	(100,000)	100,000	+100,000	
예 비 비(경상비)			0	70,000	+70,000	
계			2,600,000 (100,000)	3,309,000	+709,200	특회+기관수입 +일반회사 =709,200

3) 교단 3대운동

교정원과 성업봉찬회에서는 소관회의를 거쳐 각 계획중에서 전교도를 통하여 실천운동으로 전개해야할 사항을 선택정리하여 ① 교화훈련운동 ② 인재개발운동 ③ 감사보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① 교화훈련운동에서는 ㉮ 교도육성, 교당개척, 청소년교화, 사회교화와 ㉯ 신심고취, 법위승급, 창립정신고취 훈련에 대한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다.

② 인재개발운동에서는 ㉮ 교역자 개발하기 ㉯ 교역자 역할하기 ㉰ 좋은 인재 기르기에 대한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다.

③ 감사보본운동에서는 ㉮ 감사보은생활 ㉯ 성업봉찬 보본사업에 대한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어 실천운동에서는 교정원과 성업봉찬회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추진케 되어 있는 것이 이 계획의 특색이다.

중요계획

● 교정부문(교정원)	● 사업부문(봉찬회)
1. 공부·사업성적 사정	1. 중앙총부 건설 장엄 사업
2. 이념 및 종합정책 수립	2. 영산성지 장엄 사업
3. 제도·조직 정비	3. 문화 편찬 사업
4. 기본실력 양성	4. 사회 교화 봉공 사업
인력개발·관리대책	5. 국제종교인회의 개최
재정관리·육성대책	6. 특별사업 및 재단 조성
교재편찬보급	가. 영모원 공원묘지 사업
5. 교세신장운동	나. 국민·국제훈련원 건립, 해외교당 개척
6. 국민정신 운동과 훈련	다. 인재관리 특별재단 조성
7. 종교연합 운동	

교단 3대 운동

3대 운동	내 용	실 천 사 항	평 가·비 고
1 교화·훈련운동	가. 교화		
	1) 교도육성	· 법회, 기도 인도하기 · 이웃에 법 전하기(9인 연원) · 일원가정·마을 만들기(가족법회)	· 출석:30% 이상 교당 · 입교:9인 이상자 (출석수×5이상) · 일원 가정·마을
	2) 교당개척	· 무연지(시·군·읍·해외) · 미자립교당 돕기(자매결연)	· 1교당 이상 · 모범 후원교당
	3) 청소년 육성	· 유아교육기관 설치하기, 어린이회·학생회 · 청년회(대학생회) 육성하기	· 모범 교당 및 단체
	4) 사회교화	· 가정윤리 찾기(가훈갖고 실천하기) · 청소년 선도 교화하기	· 모범가정·교당·단체(모범 가정 대상)
	나. 훈련		
	1) 신심고취	· 스스로 훈련(상시훈련)	· 각 방면 모범 교도
	2) 법위승급	· 의무훈련 나기(정기훈련)	
	3) 창립정신고취	· 교도의무 지키기(4종의무) · 모범교도 되기(불법 생활화)	
2 개발운동 인재	가. 교역자 개발하기	· 한 사람이 한 교역자 개발하기	· 1인 이상 개발자
	나. 교역자 역할하기	· 전교도 교역자 역할하기	· 모범 역할자
	다. 좋은인재 기르기	· 한 사람이 한 인재 기르기	· 1인 이상 가르친 자
3 보본감사운동	가. 감사·보은생활	· 서로감사의 인사하기 · 은혜 찾기 보은하기 · 불우 이웃(기관) 돕기 ·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 모범 보은 봉공자
	나. 보본 운동	· 전교도 방명회원 되기(10탑이상)	· 방명회원 포상
	1) 총부건설 장엄	· 1인 1탑 쌓기(1만원)	10탑 100탑 2,000탑 20탑 200탑 5,000탑 30탑 500탑 1 만탑 50탑 1,000탑
	2) 영산성지 장엄	• 기도성금 올리기	
	3) 문화편찬 사업	• 사업별 성금 동참하기	
	4) 사회교화봉공 사업	• 사업별 담당 추진하기	
	5) 국제 종교회의		
	6) 특별사업및 재단조성		

차. 사업경과보고

65. 11. 22 교정위원회에서 2대말과 대종사탄생 백주년을 향한 계획수립과 기구발족 결의

66. 1. 27 제187회 임시원의회에서 2대말 총회 및 대종사탄생 백주년기념 사업회 준비위원회 구성

위원 : 김윤중, 이공전, 이철행, 김정용, 이보원, 박정훈, 이광정, 정도윤, 박제현, 오희원, 전종철, 전팔근, 유기현, 김인철, 손정윤, 이성은, 라도국, 김 현, 장응철, 박청수, 김주원, 황인철.

66. 5. 19 영산에서 2대말 총회 및 대종사탄생 백주년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가칭) 개최.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장 : 김윤중

위원 : 김인철, 손정윤, 이성은, 박제현, 라도국, 김 현, 전종철, 황인철.

66. 6. 17 3차에 걸쳐 기획실에서 소위원회 개최. 분과별 사업계획 검토 수립, 사업회 명칭논의

66. 11. 2 교정원 회의실에서 준비위원회 개최. 사업회 명칭, 사업계획, 사업회 발족시기 논의

66. 11 정기 교정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 결과를 보고하고 교단사정으로 발족을 연기키로 하다.

67. 11. 13 제202회 임시원의회에서 2대말 및 대종사탄생 백주년 성업봉찬사업 준비위원회(가칭) 재구성

준비위원 : 김윤중, 김인철, 유정완, 전팔근, 장응철, 김이현, 서성범, 박제현, 라도국, 김은준, 오희원, 이정화, 안이정, 이공전, 김법종, 이철행, 김정용, 이건춘, 전성완, 서대준, 정성숙, 전종철, 박은국, 이성신, 박제권, 이보원.

68. 2. 9~2.17 2차에 걸쳐 교정원 회의실에서 성업봉찬 사업회 준비위원회 개최. 취지문, 사업요강, 회칙, 사업계획 검토.

68. 2. 21 제203회 임시원의회에서 사업계획과 회칙을 심의하여 수위단회에 상정 발족키로 결의함. 또 총부 종합건설 1차 사업계획 확정.

* 총부종합건설 1차사업계획

1) 부지매입(2,500평) 2) 담장공사 3) 기숙사 2층증축 4)정문공사
5) 구내포장 및 하수구 6) 하수구 7) 기념관 수리 8) 원로원 수리

68. 2. 22 제96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성업봉찬 사업회 발족. 취지문, 회칙통과, 임원구성, 사업계획시안 논의

68. 6. 3 제205회 임시원의회에서 제주국제 훈련원 추진위원 구성

위원장 : 이철행 부위원장 : 유정완, 전팔근, 박은섭위원 및 감사 18명으로 구성

68. 6. 27 소남훈련원에서 임원회개최:임원위촉, 명칭확정, 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본방향 논의

68. 8. 15 대각전에서 분과위원총회 및 각 분과별회의 개최:경과보고, 전체방향논의, 분과대표위원 선정, 분과별 사업계획 심의

68. 8. 15 제1회 상임위원회 개최:분과별 회의보고, 정문설계, 기본방향 논의

68. 9. 7 제2회 상임위원회 개최:회칙개정심의, 종합계획 및 교정계획과 관계 논의

68. 10. 25 건설분과 소위원회 개최:총부 종합건설계획, 사업계획, 정문관계 심의

68. 10. 25 제3회 상임위원회 개최:각 분과 사업계획 조정. 1차 사업계획 수립, 총부종합개발, 위원총회준비 논의

68. 11. 6 총부 대각전에서 제1회 위원 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년도(원기68년~70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추진을 다짐하며, 결의문을 낭독하다.

68. 11. 20 총부정문을 신축 기공, 69년 5월 30일에 완공하고 11월 11일에 준공 현판식을 거행함. 정문건물의 규모는 건축면적 79㎡(24평) 처마높이 4.75m로서, 철근콘크리트 와가에 철대문을 달았으며 총공사비는 약 4천8백7십만원 정도가 소요 되었다.

69. 2. 23 제4회 상임위원회.

가. 성업봉찬회 교당·교구위원회 회칙은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작성하고 회장단 회람후 시행한다.

나. 성업봉찬 동참 방법

1) 일반사업회와 구분하여 회원종별을 정하고 매년 분할하여 성금토록 하는 방법을 더 연구하기로 하다(하부등급을 세분).

2) 성금의 모금을 구좌제로 하고 시상의 방법·방명록을 기념관, 기념탑 등에 보관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하다.

3) 매월 첫 법회시에 기도성금을 하도록 하다.

다. 후대를 위한 사업으로 생산성업체, 재단형성기금을 마련하기로 하다.

라. 사업의 변경, 사업의 전용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69년도 사업계획을 제시하기로 하다.

69. 3. 14 제5차 상임위원회.

가. 교당·교구위원회 조직문제와 회칙개정의 건은 교당·교구위원회를 조직할 경우 교당과 교구에서 건설사업 및 특별사업 등의 활동은 불가능하며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음으로 필요할 때 구성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한다.

나. 교단 3대운동 및 성업봉찬사업에 있어 교단 3대운동은 교정원 운동으로 추진하면서 서로 합력해 나가기로 하다.

다. 원기69년도 사업계획 및 회원 종별 심의에 있어서 1인 1탑 쌓기와 방명회원 종별은 계획대로 하되 연도별 사업목표 예산을 정하고 기관교당별 배정액 또는 성금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하다.

69. 6. 14 총부 구내도로 포장 및 하수도 시설 공사를 시작하여 콘크리트와 차도블록으로 총 531.7㎡의 도로를 포장하고, 총연장 920m의 하수도를 시설함과 아울러 정원을 정비하여 원불교 중앙총부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총공사비는 약 6천7백만원이 소요되다.

69. 4. 24 제6차 상임위원회.

가. 중요사업의 순위 조정은 제안대로 합의 통과하다.

나. 영모원 공원묘지 사업추진 : 성업봉찬사업중 우선 순위에 있어서 1차사업으로 추진하고 거교적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금희사자들도 모집하되 운영은 현재 영모원에서 주관하고 성업봉찬회에서는 지원 형식을 취하기로 하다.

다. 기타.

·게시홍보물 원안대로 인쇄 배부하기로 하다.

·성업봉찬 탑쌓기 통장을 발행키로 하다.

69. 6. 1 7월 20일 성업봉찬사업의 홍보를 위해 성업봉찬 중요계획, 교단 3대운동과 종법사 유시 등을 게시용과 배부용으로 인쇄하여 각 교당과 기관에 발송하고, 탑쌓기 통장을 만들어서 사업권장에 사용하도록 하다.

69. 10. 17 제7차 상임위원회.

가. 70~76성업봉찬 종합 사업계획 중 합의 변경 사항.

1. 총부건설의 5)종법실 신축, 기타를 종법실 증축, 정산종사 성탑 이전 보수로 항목을 분리한다.

2. 영산성지의 2)법인광장·기념탑·동상에 부지확보를 포함 한다.

3. 봉공의 청소년 복지회관 등은 사회봉공사업에 1억원의 기금을 두고 연구하기로 한다.

4. 특별사업에서 3)인재관리 특별재단 조성 5억을 배정하되 그중 영모원 공원묘지 사업에 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5)종교연합 창설 기금은 5천 삭제키로 하다.

나. 70년도 사업계획은 제안대로 통과하다.

다. 재정 조달 방법은 각 교당·기관에 목표액을 배정하는 안을 교정위원회에 제안 상정 하기로 한다.

라. 건설분과 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기획분과 위원회는 신설하기로 한다. 총부건설은 사무처장이 실무를 맡고, 건설분과 위원회와 합의 체제로 사업을 수행하기로 한다.

마. 1. 정문의 현판은 외측은 「원불교중앙총부」 내측은 「0 0문」으로 하자.

2. 준공식은 11월 11일 점심식후로 한다.

3. 정초의 내용은 「이 문은 총부건설 60돌(갑자년)을 기념하여 관산 조대진님의 발의 및 특별 희사와 호법 동지의 합력으로 건립되었다. 원기69년 월 일 원불교 성업봉찬회」라고 한다.

69. 11. 11 제2회 위원총회 : 성업봉찬 종합사업계획을 조정하고, 원기7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조달 방법으로 전 교당·기관에 성금 목표액을 할당 배정하기로 결의하다.

69. 12. 21 제9회 상임위원회 : 제2회 위원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성금 배당액 책정 기본방침을 설정하여 각 교당 기관에 적정액의 성금을 매년 배정키로 하고, 전문출신도 적극 참여키로 하고, 회칙을 개정하여 기획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다.

70. 1. 21 원기70년도 성업봉찬 성금 목표액 배정 : 각 교당 기관에 성금 목표액을 배정 통지함과 아울러 목표액 설정원칙, 추진방법, 시상방법, 종합사업계획 등 유인물을 작성하여 각 교당의 교무, 교도회장, 각 기관장에게 발송하고, 그 내용을 주지하며,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다.

70. 3. 5 제10회 상임위원회 : 종합사업계획에 삼동원 국제훈련원 건설을 포함키로하고 총부종합개발계획, 원로원신축, 홍보방법 등의 문제를 논의하다.

70. 5. 6 제11회 상임위원회 : 성업봉찬회에서 교정부문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키로 하고, 최초건물(세탁부) 복원, 홍보문제 등을 논의하며, 교구별로 담당위원을 위촉하여 성금추진을 적극 도모키로 하다.

70. 5. 15 「특별사업」 제주국제훈련원 준공.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산98번지에 세워진 제주국제훈련원은 총 부지면적 37,402평, 총 건평 370평(본관 1동, 별관 3동)으로 수용인원은 실내 150명.

정신개벽의 도량, 삼동윤리 실천의 도량, 일원세계의 도량, 청소년 훈련의 도량, 해외교화의 전진 기지로 적극 활용될 이 훈련원은 앞으로 5백명정도 수용의 청소년 야영장 등 2차, 3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총공사비 4억 5천만원).

70. 5.16~6.30 총부구내 주요도로 포장 마감. 학림사 앞에서 수도원 입구에 이르는 전장 215m의 도로를 두께 20cm 노폭 6m로 콘크리트 포장함으로써 총부구내 주요도로는 사실상 포장을 완료하고, 아울러 320m의 하수관매설 및 하수도 시설을 하여 부근의 배수를 원할하게 하고, 화단을 조성하여 정비하다(총 공사비:2천1백5십만원).

70. 6. 5 성업봉찬 종합홍보물 제작 발송:성업봉찬 사업의 의의, 내용, 종합사업계획, 추진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각 교당·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전 교도가 주지하고 이 사업에 동참토록 하다.

70.6.25~10.31 최초건물(도치원) 복원공사. 세탁부로 쓰이던 총부의 최초건물을 해체 복원하다. 이 건물은 본래 10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원기67년 이리-황등간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3간이 유실된데다, 훼손이 심하여 해체 복원하게 된 바, 총 8간을 원위치에 원형대로 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음(총공사비:1천3백만원).

70.7.13~11.30 원로원 신축:건물규모는 침실 10실, 응접실 및 오락실 1실, 사무실 1실, 기타 부대시설 등 2층 연건평 148평으로서 각실마다 세면욕실과 붙박이장이 설치하고,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을 하였으며, 외관은 적벽돌로 치장하고, 지붕난간에 기와를 얹어 단장하였음(총공사비:1억4천만원).

70. 10. 10 제12회 상임위원회

가. 소태산기념관 신축부지 선정의 건은 종합사무실 건축과 함께 총부종합건설계획과 연계시켜 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무당국에서 더 연구검토하여 차기회의에 안건으로 재 상정하기로 한다.

나. 영산에 기념물을 통합 조성하자는 건으로 영산성지 개발 문제는 영산에 회장단 및 영산성지사업회 관계 인사가 현지를 직접 답사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기념탑을 조성하기로 하다.

다. 영산의 진입로 확장과 포장공사가 국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자체적인 환경 정리와 성의있는 시설의 설비를 이루어 대내적으로도 준비하기로 하다.

라. 원창회는 성업봉찬사업에 포함시켜 탑쌓기 성적 및 시상에는 관계시키되, 성금 배정액에는 계상하지 않기로 하다.

마. 삼보사 지원의 건은 해외교당 개척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하다.

바. 여기숙사 신축의 건은 성업봉찬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하다.

사. 원기71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은 종합사무실 신축문제와 영산 성지 사업계획을 연구 검토하기로 보류함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여 수립하기로 하다.

아. 총부 구내 도로 포장은 화강석(사고석)을 사용하여 포장키로 하고, 하수도를 정비하기로 하다.

70. 11. 7 제13회 상임위원회.

가. 교단창립 제2대말과 대종사 탄생 백주년에 기념에 당하여 소태산 기념관(유물관)을 건립하되, 사무실 등을 함께 수용하는 종합적인 기념관이 되도록 하고, 건립부지는 총부내의 부지조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예산은 종법실 증축, 소태산기념관 건립, 인재관리 특별재단 등의 예산을 전용하여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약 10억원 정도) 추진하기로 하고 위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나. 영산성지의 장엄사업도 시급하여 현재의 예산보다 2억원 이상 추가책정되어야 하나, 종합계획의 예산 총액보다는 특지가를 개발하여 충당하기로 하다.

다. 원기7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별첨)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위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70. 11. 10 제3회 위원총회 : 성업봉찬 종합사업계획을 조정, 원창회를 육성키로 결의하였으며, 소태산기념관을 종합건물로 건립하는 안건은 보류 더 검토키로 하다. 원기7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399,500,000)을 승인하다.

70.10.5~71.7.31 여기숙사(정화원 신관) 신축 : 적공실(45평)과 방12실, 기타 부대시설을 갖춘 연건평 225평의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다(총 공사비 1억 4천만원).

70.12.1~71.10 총부종합계획수립. 원대 관계분야 교수팀(곽계환, 이양재, 정사희, 윤충렬)에게 총부 종합개발계획수립을 위촉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제공하고 수차 공청회를 거쳐 총부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 11. 4. 건설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다.

71. 1.15~17 원기71년도 성금배정액 조정. 교구장회의와 각 기관 대표회의에서 조정한 71년도 성금배정액(교당 : 445,100,000 기관 : 64,700,000 계 : 509,800,000)을 70년도 성금실적과 함께 각 교당 기관에 발송 배부하다.

71. 3. 1~ 6 도로확장부지 및 농지매입비, 대각전 영산원 학원실 등 보존건물 보수사업비 등으로 7,700만원을 지원하여 성지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고, 정부에서는 9억여원의 공사비를 들여 진입도로를 확장 포장하여 내방객의 출입을 편리하게 하였다.

71. 3.27~ 4. 영모묘원 공사지원. 원래 1억원 규모의 예산을 인재관리재단조성을 위하여 투자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장마철의 피해에 대비하여 추가사업이 불가피하므로 5천만원을 지원하여 잔디보수공사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71. 3. 14 제14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가. 총부내 보존구역 도로는 화강석을 주요 재료로 하여 견고히 포장키로 하다.

나. 대종사 일대기 영화제작에 관해서는 관계 전문분야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다. 정산종사 성탑 이전 장엄문제는 재건립키로 연구 검토하고 수위단회에 상정키로 하다.

라. 영산의 대각전 원형보존에 관하여 외관은 보존하고 내부구조는 필요에 따라 다소변경하여 사용키로 하다.

마. 영산대각비 앞 도로우회개설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고 예산은 가능한 한 지원키로 하다.

71.3.8~6.30 총부내 보존구역도로 화강석 포장. 대각전 주위와 보존구역(구조실 앞), 원로원 주위의 하수도 및 정원정비, 도로 화강석 포장공사를 4천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완공하다.

71. 3. 25 정산종사성탑 재조성 결의. 제107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정산종사 성탑을 재조성키로 하되 설계, 건립에 있어서 탑비의 선택 분리 통합의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연구 제작키로 하다.

71. 6. 16~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에 2천만원의 경비를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였고, 참석했던 200여명의 일본 및 아시아 각국의 대표들이 총부와 영산성지를 방문하였다.

71. 7. 12 제1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가. 영모원 공원묘지공사에 지원한 5,000만원을 합의 추인하다.

나. 미주 〈원불교대학〉설립 지원문제는 보류하기로 하다.

다. 교정부문의 중요계획 중 정신작업 등에 대한 의견이 많으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모임을 갖기로 하다.

라. 대종사 성탑장엄, 성비 비각조성 및 정산종사 성탑재조성 설계안을 검토하고 관계자 전문가들이 협의 추진키로 하다.

마. 원창회는 특별사업이므로 배정액에는 관계없이 탑쌓기에만 포함시키기로 하다.

71. 8. 4 성업봉찬에 관한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성업봉찬사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성업봉찬 중요계획 중 교정부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교정원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다. 50여인 참석.

71.9.24~10.8 총부내의 건물규모 및 위치, 지형의 고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측량을 실시, 정확한 지형 및 배치도를 완성함으로써 각종 계획과 안내도 작성 등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

71. 11. 6 제16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71년도 재정상황을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가. 원기7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한 후 원안대로 위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나. 총부장기개발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작성자로부터 그 내용을 보고받고 소태산 기념관, 사무실의 건립위치 등을 논의한뒤 더 연구하여 수립토록 하고 수위단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71. 11. 9 제4회 위원총회. 교구 교당 기관별 성금 수입 내역을 보고에 이어 원기70년도 결산서와 7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다(예산액 : 458,000,000).

71. 12. 20 제17차 상임위원회. 전 회장 숭산 박광전교무의 열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구타원 이공주회장의 주재로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다음의 안건을 결의하다.

가. 중앙총부 종합계획안을 검토하고,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다.

나. 정산종사성탑은 현 종법실 뒤 대종사성탑 동측에 이전 건립하기로 하고, 소태산기념관은 현 정산종사 성탑 부근에 영모전과 평행이 되도록 건립키로 하다.

다. 최초본관(본원실)은 가능한 한 원형대로 해체 복원하되, 세부 사항은 관계 전문인과 연구 시행키로 하고, 대종사성탑 및 영모전 진입로를 화강석으로 포장하기로 하다.

라. 대종사성탑 장엄사업 중 배경석 십상조각 그림은 몇 작가에게 의뢰하여 작품을 선택하며, 대종사의 성상은 먼저 석고상으로 제작하기로 하다.

마. 제주 노인요양원 설립관계 투자문제는 회장단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다.

71. 12. 24 원기72년도 성금 배정액을 전년도 대비 증감없이 각 교당 및 기관에 통지하다. 교당배정액 : 426,610,000원 기관배정액 : 64,500,000원 계 : 491,110,000원

72.2.17~8.31 총부의 확장과 장엄을 위한 부지와 경내 가옥을 다음과 같이 매입하다.

주 소	지 목	평	전소유자	매입액	비 고
1. 신룡동 320-2	전	416	김 명 순	29,120,000	평당 70,000
2. 신룡동 546-2	답	16	문 길 성		
546-3	〃	724	〃		
547	〃	668	〃		
		(1,408)		41,000,000	평당 29,120
3. 신룡동 548	답	556	김 장 수		
549	〃	1,423	〃		
550	〃	789	〃		
638	전	1,159	〃		
		(3,927)		72,650,000	평당 18,000
4. 신룡동 773-6	전	283	송 관 은	5,660,000	평당 20,000
5. 신 동 280-4	가옥	22	진 건 주	10,500,000	
6. 〃 280-9	〃	35	전 경 진	15,000,000	
합 계	부지	6,034		148,430,000	
	가옥	57		25,500,000	
경 비	중개료 및 이전등기료			1,016,300	
총 계				174,946,300	

72. 2. 27 제18회 상임위원회 및 재정분과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하다.

가. 원기71년도 결산서는 자체감사를 받은 후 차기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다.

나. 제주 투자 및 해외교당 지원을 승인하다.

다. 교단 홍보영화 제작은 계속 추진하되 구체적인 사안은 연구 보완하기로 하다.

라. 2대말 결산총회시 문화행사의 준비로 관현악단을 지원 육성하는 문제는 분과위원회에서 더 연구 검토하여 다시 상정하기로 하다.

마. 총부 종합계획안 중 사무실 및 종법실의 건립위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종사성탑 장엄 및 정산종사성탑 설계안을 검토하여 보완 시행하기로 하다.

72.3.16~8.15 총부 최초 본관(본원실) 해체 복원. 대종사께서 대중과 함께 거처하시던 총부건설 최초 건물인 본원실 복원공사를 완공하다. 조실, 종법실, 금강원 일대의 환경정비도 아울러 시행하다.

규모 : 최초본관-목조 20평, 부속건물 벽돌조적조-17평

총공사비－3천2백만원

72.4.8～6.30 대종사 성탑 진입로 포장 완공. 대종사 성탑 진입로를 화강석으로 포장하여 성탑 입구의 면모를 새롭게 하다. 총 포장 면적：150평, 경계석 설치：140미터, 총 공사비：2천5백만원(석재 대금 제외：함열회장 회사－약1천만원).

72. 6. 13 제19회 상임위원회. 대종사성탑 장엄공사 기공식을 거행한 후 상임위원회 개최, 다음 사항을 결의하다.

가. 대종사성탑 장엄공사는 추진 과정상 문제는 전문가에게 자문 시행키로 하고, 추가공사비(1억5천만원)는 조대진 회장이 전담 희사키로 하다.

나. 2대말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는 교정원 당무 부서와 협의 시행하기로 하다.

다. 十相의 대종사 별상 성화를 사건 중심으로 제작키로 하다.

72. 8. 1 대종사성탑 장엄공사 조감도 총부종합계획 구상도를 칼라로 표지한 『성업봉찬소식』(제3호)을 발행하여 각 교당·기관 및 교역자에게 배부하다.

주요 내용은 김윤중 부회장의 격려말씀, 조대진 수원회장의 「나는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와 사업 시행보고이며, 각 교당에서 10탑이상 성금자의 명단을 보고받아 게재하였고, 교당 기관의 성금실적도 싣고 있다. 2,000부 발행.

72. 9. 7 제20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가. 대종사성탑 장엄, 정산종사성탑 이전 건립, 소태산기념관 건립 등 본 사업이 시급하므로 특별사업에 우선하여 본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하다.

나. 만덕산 훈련원지원, 영모전 수리, 총부부지 매입추가 등 추경예산과 예산전용을 승인하다.

다. 인재관리재단기금은 임원진에게 일임하여 적의 조정하기로 하다.

라. 대종사성탑 십상 병풍석은 석조로 하되 전문 조각작가에게 의뢰 시행하기로 하다.

72.10.1～11.2 원기56년(1971) 완공이후 거의 수리하지 않아오던 영모전을 마루의 개수와 내외 칠공사 등 총 1천3백만원을 들여 새롭게 단장하다.

72. 11. 11 제21회 상임위원회.

1. 종합시립계획조정은 원안대로 승인하며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2. 원기7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있어 73년도의 사업계획과 총 7억1,900만원의 예산안을 승인하고 위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3. 정산종사성탑 및 소태산기념관 설계안에 있어 ① 정산종사성탑설계안은 4대경륜 삼동윤리 일원세계 8방의 중안을 상징화하며 의미부여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여 발전된 안을 제시하기로 하다. ② 소태산기념관 설계안은

규모가 작으므로 면적을 넓히고 층고를 높일 것, 작품위주로 예산에 구애없이 계획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 설계안을 발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한다.

72. 11. 15 제5회 위원총회.

1. 원기71년도 결산승인에 있어 라철중감사가 감사결과 틀림없음을 보고하고, 승인할 것을 동의함에 따라 이의없이 찬성 승인하다.

2. 원기7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이의없이 세입세출 7억1,9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하다.

3. 종합사업계획 조정에 있어 소태산기념관의 신축비, 총부부지 매입비 등의 증액과 사업계획 외의 종목채택이 요청되어 종합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26억의 종합계획예산을 33억920만원으로 증액조정안을 이의없이 박수로 찬성 승인하다.

73.1.29~6.20 동경, 프랑프푸르트, 필라델피아 등 해외교당에 114,680,000원 지원

73.1.29~6.20 교단 제3대 설계특별위원회에 7백만원 지원

72.11.14~73.5.25 영모전 내부 개수 및 지붕 방수공사, 공사비 : 9,582,500원

72.11.9~73.3.25 영산성지 장엄 및 순례객 숙소 건축비 부족액 일부지원, 지원금 : 3천5백만원

72.12.7~73.6.29 총부부지 및 경내가옥 매입. 전 2,713평, 답 1,686평, 대지 93평, 총계 4,492평을 매입. 매입비 157,384,000원

지 번	지 번	면 적	매 입 액	연 도	비 고
신룡동 320-3	전	197	8,860,000	72	
신룡동 63-6	답	616	14,784,000	72	학림사 서측
신룡동 773-6	전	500	12,500,000	73	송암농원 동측
신룡동 768외	답	860	17,200,000	73	송암농원 동측
신룡동 321-3	전	1,980	80,000,000	73	훈련원 북측
신룡동 333-33	대지	93	15,000,000	73	산업부 인접 북측
신룡동 333-34	전	36	5,040,000	73	
신룡동 761-1	답	210	4,000,000	73	

72.12.30~73.10.23 대종사성탑, 정산종사성탑, 종법실 최초건물 주위조경, 하수도, 축대 등 환경정비. 공사비 10,963,600원

72.11.3~73.10.19 대종사 성탑 장엄공사. 탑신은 보존하되 기단을 낮추어 원형판과 하단을 더넣

고, 폭을 60평에서 120평으로 넓혔다. 주위는 철근콘크리트위에 병풍석을 둘러 십상 부주를 넣게 하다(토목, 기초, 석물공사, 병풍석 십상 등 총공사비 : 114, 301,850원).

72.12.18~73.10.19 대종사 성탑 장엄 병풍석 십상조각. 원대 배형식교수(조각가)에게 제작의뢰, 동으로 주조. 한상의 크기 2.4m×1.65m

72.12.28~73. 1. 7 교단홍보영화 제작을 위해 원광사에 1천만원 지원

73.1.11~8.31 소태산 기념관 설계. 철근구조물과 석재로 건축, 건물은 사은과 삼학을 상징하고 위에 돔은 9인의 단장임을 상징하였다.
(인제건축 김인철 설계, 공사비 : 8억원 예정, 설계 및 경비 : 26,034,100원)

층	내 용	면 적	용 도	비 고
1층	전 시 실 1	54.5평	유물 전시	
	로 비	35.9	기념품 판매 및 휴게공간	
	사 무 실	17.0		
	전 시 실 2	17.0		
	설비실·기타	43.9	보일러실, 공조실, 제습기실, 화장실 등	
2층	기 념 홀	100.0	대종사성상 및 성화, 기념물 전시	
	계	268.3평		

73.1.4~8.23 교단창립 제2대말 기념「개벽의 북소리」공연. 교단창립 제2대말 기념 개벽의 북소리(소태산대종사의 생애) 전국순회공연(판소리 : 조상현, 춤 : 임이조 무용단)을 4월 17일 부산공연을 비롯 6월 19일 대전공연까지 11개 도시 13회에 걸쳐 가졌다.

공연지	일 시	장 소	관람인원	반 응
부 산	4/17(일)	시 민 회 관	2,500명	
영 광	30(토)	군 민 회 관	1,000명	
광 주	5/1(일)	남 도 예 술 회 관	1,800명	KBS·MBC뉴-스
서 울	3(화)	호 암 아 트 홀	2,000명	일요초대석(40분)
대 구	9(월)	시 민 회 관	1,400명	문화가산책(KBS)
전 주	14(토)	전 주 교 구 청	2,000명	KBS·MBC뉴-스
이 리	14(토)	원 대 학 생 회 관	2,300명	〃
마 산	15(일)	KBS 공 개 홀	2,000명	문화가산책 KBS
제 주	29(일)	시 민 회 관	1,000명	MBC라디오
인 천	6/12(일)	시 민 회 관	1,800명	경인일보
대 전	19(일)	시 민 회 관	2,000명	대전일보·KBS뉴-스
(관람인원 계 : 19,800명)				

73. 2. 9 제22회 상임위원회.

1. 원기72년도 결산승인에 있어 결산서에 의해 원기72년도의 결산을 승인하고 라철중감사의 제안을 이의없이 찬성 의결하다.

2. 소태산기념관 설계안 및 벽화제작에 있어 원미회, 원대미술 관계 교수 등에게 자문하여 차기회의에 재 상정하기로 하다.

3. 정산종사 성탑 설계안 심의의 건은 두가지 안을 검토 보완하여 발전된 안으로 다음회의에 상정 확정하기로 하다.

4. 창립 2대말 경축 예술행사는 교구장과 관계 분과에서 세부 검토 보완하여 계획대로 추진시행하기로 하다.

5. 대종사성탑 병풍석 조각 성화에 있어서 각 위원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 이를 종합 반영하여 조각작업을 추진하고, 조각재료는(석재 또는 청동재) 견본을 비교하여 차후 결정하기로 하다.

6. 부지매입예산 추가 승인에 있어 이의없이 제안대로 승인하다.

73. 3. 18 제23회 상임위원회.

1. 영산 성지 예산 지원에 있어 원기72년도 영산성지 순례객 수용시설 건축비(1억) 부족액 일부 1천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승인하다.

2. 소태산기념관 내부성상·성화제작에 관한 건은 성상·성화를 제작키로 하되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기로 하다.

3. 정산종사 성탑설계안에 있어 솥의 3발을 의미하여 받치는 3기둥은 수정 보완하기로 하여 전통양식으로 설계 건립할 것을 확정하다.

73. 4 성업봉찬 주제 및 상징마크 제작

(1) 주제 : **"온누리에 은혜를"**

(2) 상징마크와 해설

3대(밑의 3선)와 대종사탄생백주년(100)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내적인 성숙과 실력의 충실(작은 원)을 통하여 일원의 광명과 은혜가 삼계(3원선)와 사방(4황색부채꼴)에 널리 미치어 온누리(전체원판)에 진리와 희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원함을 상징한다.

73.1.29~6.4 「온 누리에 은혜를」 팜플렛 발행. 교단과 성업봉찬회 홍보용 팜플렛 1만5천부 발행 배포

73. 6. 6 소태산기념관 내부 성화 제작 의뢰. 개교정신·창립정신을 내용으로 각 1,000호

씩 2폭을 전남대학교 양인옥·정승주화백에게 의뢰

73. 6 영문 교전 개정판 발간. 행사분과 대표 전팔근 국제부장의 주관으로 1만부 발행

73.2.9~73.10 정산종사 성탑 증건. 제23회 상임위에서 전통탑 형식으로 모형 확정, 태창건축에 설계의뢰, 탑의 병풍석에는 좌우에 삼동윤리사상과 화해제우상을 원대 배형식교수가 재작 동 부조작품으로 붙이고 중앙에 탑명은 이산 박정훈교무의 글씨로 청오석에 새겼으며, 게송과 친필 영주를 각하여 넣음(총공사비:1억2천만원, 10월말 완공예정).

가) 탑의 높이:5.4m(대종사성탑:7.2m)

나) 탑의 지대석(정방향) 1변길이:3.3m(대종사성탑:5.4m)

다) 탑주위 상단면적:201㎡ 61평(대종사성탑:120평)

73. 8. 31 대종사님 성상 모형 제작. 현대조각가 배형식교수와 전통불상 조각가 윤준탁 이상배씨에게 의뢰, 장단점 비교, 작업의뢰비:1백만원

73. 10. 20 10탑 이상 성금자수

종 별	교 당	기관(정토회)	총 부	계
1만탑이상	1			1
2천탑이상~5천탑미만	3			3
1천탑이상~2천탑미만	15			15
5백탑이상~1천탑미만	21	(2)	1	24
2백탑이상~5백탑미만	92		3	95
1백탑이상~2백탑미만	500	5(14)	49	568
5십탑이상~1백탑미만	420	5(20)	45	490
3십탑이상~5십탑미만	435	17(28)	75	555
2십탑이상~3십탑미만	573	26(33)	108	740
1십탑이상~2십탑미만	3,092	81(102)	321	3,596
계	5,152	134(199)	602	6,087

73. 5. 18 제24회 상임위원회

1. 성업봉찬 주제(온누리에 은혜를)와 상징마크는 제안대로 승인하되 상징마크 주위의 영문은 다시 검토하여 Won Buddhism을 표기하도록 한다.

2. 대종사성탑 병풍석 조각재료(석재, 동) 선택에 있어 그동안 수차례 논의하여 온 건이므로 자문위원에게 위임하여 결정토록 하다.

3. 소태산기념관 내부 성화제작에 관하여 교단측과 화가측이 공동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화의 내용을 확정토록 하고 사업의 추진은 구타원 이공주회장의 1상(5천만원)의 희사와 특지가를 개발 추진하기로 하다.

4. 정산종사성탑 중건공사 시공에 있어 설계안대로 모형을 제작하여 정밀 시공시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고 시공자 선택 및 공사 추진은 건설분과 위원회에 위임하여 추진토록 하며, 후면 병풍석의 비문 및 조각(2상)의 내용은 더 연구하여 시행하기로 하다.

5. 성업봉찬 탑쌓기 방명회원 시상에 관하여는 탑쌓기 방명회원의 시상은 교구장회의를 개최하고, 시상의 방법, 범위, 대상의 구분 등을 합의하여 시행키로 하다.

6. 대종사 탄생백주년 예술 행사의 계획은 계속 연구 추진하고 오태석씨에게 作品을 의뢰하는 것은 작가의 요구대로 쓰되, 무대공연과 관계없이 역량껏 作品을 만들고, 공연할 경우 자체 극단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고 오태석씨와 조상현·임이조씨는 서로 결부시키지 않도록 하다.

7. 기타

① 동곡(구릿골) 부지매입비 1천만원은 제안대로 승인하다.

②88올림픽에 대비한 교단 홍보물의 제작은 제안대로 제작하기로 하다.

③ 제법성지 보존을 위한 실상사 복권 지원의 건은 제법성지 연고권은 확보하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하다.

73. 8. 25 제25회 상임위원회.

1. 예술행사(개벽의 북소리 공연) 추가예산 7,533,820원을 제안대로 승인하다.

2. 2대말 총회 예술행사에 있어 2대말 총회시 기념공연으로 11월 5~6일 1~2회 「개벽의 북소리」 앵콜공연을 추진키로 하고 2,500,000의 예산을 제안대로 추가 승인하다.

3. 중요시험종목 선정과 특지가 개발에 관한 건은 제안대로 특지가를 개발하여 추진키로 하다.

4. 로스앤젤레스교당 부동산 매입 투자의 문제로 성업봉찬의 사업목표 취지와 맞지 않으나 교단실정과 해외교화의 차원에서 각 기관이 합력하여 성취하려는 것이니 차후 약관 등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국제훈련원 지원비 예산을 전용하여 $125,000를 투자하기로 하다.

5. 나파교당 지원에 있어서는 교화의 차원보다도 부동산을 확보하려는 것 같으니 지원할 경우 완전매입과 재단이전이 가능한가를 보고 교정원의 방침에 따라 회장단이 처리하도록 하다.

73. 10. 11 제26회 상임위원회.

1.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 제안대로 3,500만원의 추경예산을 승인하고 조경비 잔액 1,000만원은 74년도 예산에 반영 수립하기로 하다.

2. 7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있어 제안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정산종사성탑 이전 중건에 따라 탑 후편 사진관 집, 수도원 중축부지 등 부지매입이 시급하므로 부지매입비 1억원을 증액하여 총 76,7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하다.

3. 2대말 결산총회이후 성업봉찬 성격 및 방향에 관하여 서로 명칭과 사업계획의 변경 신규사업 채택은 수위단회에서 회칙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3대이후 백주년 기념대회까지의 예상되는 사업은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선착할 수 있도록 이를 결의하며 수위단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4. 정산종사성탑 성해 이안과 옛탑신 보존에 있어 성탑해체 당일 성해를 이안하기로 하고, 옛성탑 보존 문제는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집행부에 이관 처리토록 하다.

5. 구간도실 복권의 건은 대종사께서 구간도실을 건축하시고 또 직접 이전하신 것이니 그터에 다시 복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창립정신 기념탑 등의 건립이 타당할 것이니 더 의견을 수렴하게 결정하기로 하다.

6. 금강원, 도치원 일대 성역화의 건은 제안에 따라 주위 환경까지 대종사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성역화하기로 하고 종합사업 계획으로 채택 추진키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다.

7. 기타 : 대종사성탑봉건중수기, 정산종사성탑 중건기의 문안은 좀 더 수정하여 세우기로 한다.

73. 11. 6 제6회 위원총회.

1. 원기72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있어 라철중감사가 감사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하고 승인할 것을 동의함에 따라 전원 이의없이 찬성 승인하다.

2. 원기7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의없이 세입세출 6억6,700만원의 예상을 승인하다.

3. 74년도이후 사업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총회에서 개별사업의 내용과 예산을 세밀히 심의할 수 없으므로 각 사업의 해당분과에서 이를 다시 검토 심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키로 하다.

카. 실적과 현황

1) 교정계획의 실적과 현황

앞에서 이미 교정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교정원내의 특별기구가 발족되지 않고 각 부서에서 해당계획을 평소 업무와 관련시켜 추진토록 되어 있어 그 실적과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다못 교단 3대를 향한 종합설계는 원기71년도 11월 제45회 정기교정위원회에서 제안되고 원기72년 2월 제222회 임시원의회에서 〈교단제3대설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에 그 실적도 현저하리라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교정계획 전반에 걸쳐서 가능한 한 현저한 실적과 현황만을 기록코자 한다.

(1) 공부 사업 성적사정

공부(법위)는 현 법위사정 규정에 3년만에 사정하게 되어 있다. 1대 성업봉찬 이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보류하여 오다가 원기51년부터 사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원불교는 모든 자격과 예우기준에 법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위사정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사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2대말을 결산하는 73년도 법위사정의 총 대상자수는 남자 10,370명 여자 25,653명 합계 36,023명으로써 교단역사상 가장 많은 수이요, 종전에 사정하지 않았던 출가위까지 사정한 데에 그 의미가 크다.

그것은 「종법사의 피선자격은 출가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위별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예비특신급 16,831명 정식특신급 11,754명 예비법마상전급 3,180명 정식법마상전급 12,767명 예비법강항마위 682명 정식법강항마위 797명 예비출가위 0명 정식출가위 12명

사업성적사정은 현 규정에 매년 또는 수시로 사정케 되어 있으나 2대 이후 36년간의 성적을 총 결산하였으며 또한 공부사업을 합한 원성적에 의한 등위별 입등자수는 다음과 같다.

준5등 13,005명, 정5등 1,979명, 준4등 2,228명, 정4등 770명, 준3등 1,299명, 정3등 627명, 준2등 654명, 정2등 296명, 준1등 410명, 정1등 254명, 준특등 333명, 정특등 57명, 총 21,912명

또한 공덕이 뛰어나 법훈을 서훈 받은자는 종사위 16위, 대봉도위 49위 대호법위 33위이다.

(2) 교정 종합계획수립

이는 교단 3대설계 특별위원회에서 추진중에 있고 그 예산은 성업봉찬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과업은 ㉮교단체제 및 제도개선 ㉯교화 종합계획 수립 ㉰전무출신 제도개선 ㉱인재 육성관리대책 ㉲재정산업의 육성책 및 경영의 합리화 ㉳공익 봉공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과업에 따라 6개 분과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본회의에서 확정케 되어있는데 그간의 6개 분과별 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체제 재도분과:수위단을 통치기구로 하고 수위단과 교화단 연결, 교구분권제를 지향해 나아가고 교구의 정비와 전결규정 시행, 교단 정책개발기구를 통합하고 책임행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정비, 교정기구와 재단을 합리적으로 연결하고 전무출신 전담기구 신설, 법위사정 사업성적 인사제도의 개선, 감찰기능의 강화 등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었다.

② 교화계획 분과:교화위주의 교정시행, 교화연구의 활성화, 교화의 영세성 극복, 신앙의 대상 호칭 통일과 신앙성 제고, 교역자 호칭체계의 정비통일, 교화활성화를 위한 각종 훈련 강화, 이리 지역 총력교화 등이 제시되었다.

③ 전무출신제도 분과:현행 제도의 문제점, 제도개선의 세가지 방안(전통제도 보완안, 종별제도안, 급여제 도입안) 검토, 교단 제3대 발전과 전무출신제도의 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④ 인재육성 분과:인재개발과 선발문제, 예비교역자 교육과정과 체제문제, 기숙사 제도와 교육기간의 연장문제, 전문인재양성과 교역자 재교육 문제, 교역 평가제와 휴양기간 실시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⑤ 재정 산업 분과:총부의 재정 자립기반 조성, 예산 회계체제 확립, 보화당 계열의 통합경영과 제약사 대형화, 교단구매창구 일원화와 각 사업의 통합관리 등이 제시되었다.

⑥ 공익 봉고 분과:공익 봉공체계 확립, 봉공예산의 정책적 수립, 전문인재의 양성, 자선기관 운영의 합리화, 사회와 역사에 동참하는 활동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6개 분과에서 교단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아직 언급할 필요는 없으나 희망찬 3대를 여는데 고무적인 역활이 되리라 기대된다. 다못 이러한 많은 교단 현안문제가 종합정책으로 해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교단 현실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도 생각하여 단계적 정책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3) 제도 조직 정비

제도 조직 정비중 기본법인 교헌 개정문제는 원기69년(1984) 2월 27일 제100회 수위단회에서 구성된 교헌개정 기초위원회의 1차 작업과 교단 제3대 설계 특별위원회 제도분과의 합력으로 원기72년(1987) 11월 제34회 정기 중앙교의회에서 통과되고 제119회 수위단회에서 의결공포되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前文에 본교의 개정정신과 지향하는 制度理念을 분명히 천명한다.

② 총강에 淵源佛과 教祖를 명시하고 宗旨와 목적은 正典 원문에 근거하여 수정한다.

③ 教制에서 본교의 紀元을 원기라 하고 소태산대종사 대각연도를 원기元年으로 한다.

④ 종법사 선거는 수위단회에서 한다.

⑤ 수위단회는 최고 결의기관임과 동시에 최상위 교화단으로 한다. 그 구성은 원로수위단과 정수위단원으로 한다. 원로수위단원은 정수위단원을 2기 역임자로 구성하고 정수위단은 원로수위단회에서 후보추천하여 중앙교의회의 중앙위원과 현역 4급 이상 교역자가 선거한다.

⑥ 교정위원회는 중앙교의회에 그 기능을 이관하고 폐지한다(수정과정에서 교정원장의 협의기구로서 교무회의를 설치함).

⑦ 중앙교의회는 4급이상 현역 교역자와 교구 교당의 재가대표로 구성한다. 중앙교의회에 부의할 사항을 전문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둔다로 되어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번 교헌은 교단의 기본이념과 제도, 권력체계와 의결기구를 대폭 합리화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교단운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리라 믿는다.

기타의 제도 조직은 기본법과 새로운 교단정책에 입각하여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4) 교세 발전운동

교세 발전운동은 교단 3대운동과 바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총괄하는 추진 주체가 없고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고 있기때문에 여기서는 가시적이고 평가 가능한 몇가지 상황으로 원기68년(1983) 부터 72년(1987)까지 비교해보면 ① 교화단원수는 42,637명(68년), 44,876명(69년), 47,376명(70년), 51,493명(71년), 53,835명(72년)으로 연평균 48,043명 ② 입교자수는 17,099명(68년), 17,299명(69년), 20,676명(70년), 15,294명(71년), 13,735명(72년)으로 연평균 16,806명 ③ 교당설립수는 68년 국내 24개·해외 1개, 69년 12개, 70년 1개, 71년 국내 3개·해외 1개로 매년 평균수 14개교당 ④ 기관단체 설립수는 68년 1개, 69년 3개, 70년 2개, 71년 국내 2개·해외 1개, 72년 국내 1개·해외 1개기관으로 평균 3개 설립 ⑤ 교역자배출수는 41명(68년), 52명(69명), 90명(70년), 64명(71년), 59명(72년)으로 연평균 62명으로 집계된다.

이상의 통계에서 본 바와같이 교화가 전반적으로 성장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출석수는 한때 굴곡이 심했고 입교수는 오히려 저조한 실적이다. 교당설립수나 교역자배출수도 연도별로 기복이 심한 것을 볼때 전반적으로 중앙의 정책목표와 전략에 의하여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이라기 보다 아직도 자연발생적인 교화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5) 종교연합운동

종교연합운동은 교단의 중요한 이념이요, 모든 종교와 인류의 이상이기도 하다. 그것은 세계평화의 근본은 모든 종교간의 연합과 정치 유엔과의 합력에 있기 때문이다.

대산종법사는 일찌기 종교연합기구 창설을 중요 경륜으로 삼고 원기50년도에 창립된 한국종교인협의회와 원기55년도에 일본 경도에서 개최된 세계종교자평화회의 등에서 이를 계속 제창해 왔다.

원기66년(1981) 5월에 제87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국제종교연합기구 준비위원회(위원장 박광전)가 구성되어 취지와 선언문을 작성 홍보하고 원기66년(1981) 11월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에서 제창, 차기회의를 한국에 유치하였다.

원기71년(1986) 6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종교인회의는 원불교를 국제종교사회에 널리 알리고 연합운동에 큰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국내외 저명인사에게 이 취지를 널리 홍보 하여오다가 한층 새로운 활동을 위하여 제120회 임시수위단회에서는 과거 준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정정하고 위원장(김정용)을 새로 선임하였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국제종교연합기구 추진보다 연합운동체로서 체계를 갖추고 종교간의 대화와 친목, 심전계발과 도덕회복운동, 세계평화와 복지활동 등을 통하여 궁극에는 창설을 위하여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성업봉찬회 계획의 실적과 현황

성업봉찬회 사업계획은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발족당시에는 기관 교당의 자율적 성금에 힘입어 추진하였으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기70년(1985)도부터 전 교당기관에 목표액을 배정키로 하였다.

기관수입으로는 총부부지를 매입키로 하고 교당성금은 7년간에 최저 약 26억을 목표로 대체적인 종합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었다.

그러나 원기72년(1987)도 11월 제5회 위원총회시에 교당수입에 기관수입, 특지가의 특별수입, 일반회사금까지 포함하여 33억여원으로 재조정하였다.

이 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본사업과 지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별사업을 사업종목별로 그 실적과 현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총부 건설 장엄사업

① 총부 종합건설계획 : 이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은 교리적 상징성과 창조성을 살리고 혼과 정신이 어리게 해야 한다.

한국적 전통에 바탕하되 원불교적 독창성과 동서양을 조화시킨 세계성을 띠게 한다. 모든 시설의 성격과 특성을 살려 다양하게 하되 통일적 조화를 이루게 한다. 기능별로 집합 또는 분산시키되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가져 편리하고 쾌적하게 한다. 계획은 장기적 안목에서 하되 시설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중요시설은 예술적 작품으로 역사에 남게 한다. 순례를 함으로써 교화가 되게 한다 등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총부의 성격과 기능은 新龍轉法의 益山聖地, 교단행정의 중심지, 교역자 양성의 요지, 대다수 교역자의 생활근거지, 각종 기관의 중심지로 규정하고 이에 알맞은 부지범위를 주위 小兵陵內 약 18만 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내를 구역별 기능별로 분류하여 필요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대법당, 영모전, 소태산대종사기념관, 종합사무실, 종법실, 문화전당 등 그 중요도가 기능에 따라 배치케 되어 있다.

② 총부건설 장엄사업으로는 정문신축, 보존건물 복원(최초 건물 이동), 원로원, 신정화원 신축, 영모전 수리 및 장엄, 구내 도로포장, 소태산대종사 聖塔 및 聖碑莊嚴, 부지(1만여 평) 및 私家매입에 72년(1987)말까지 3억여원이 소요되어 총부의 면모를 새롭게 하여가고 있다.

앞으로 정산종사聖塔을 소태산대종사聖塔옆에 새로운 모습으로 건립하고 영모전 옆에 소태산대종사기념관을 건립하여 조각성상을 모시고 유품을 전시하게 되면 예전에 밝혀진 바와 같이 永慕公園이 잘 조성되어 신앙적인 분위기가 크게 진작되리라 믿어진다.

(2) 영산성지장업

① 영산성지 종합개발계획(70년 1월 27일 수립)의 기본목적은 성지개발 巡禮敎化, 創立精神 체득, 자연휴양에 두고 있다.

구역은 주구역 부구역 영향권으로 나누고 主區域은 9인 기도봉 안으로 하여 약 1백만평으로 하고 다시 主區域을 保存地域 보존정비지역 신개발 지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복원, 정비, 개발케 되어 있는데 시급한 과제는 성지권의 법적고시와 개발의 잇슈문제, 토지매입이라 제시하고 있다.

② 장엄사업으로는 72년(1987)말까지 부지(전담 포함) 3만8천여평을 매입하고 대각지 보완장엄사업, 구간도실 앞 광장 조성사업(6천여 평), 성지진입로 포장(국비 8억5천만원), 대각전 영산원 보수 및 구내정비, 사무소 및 순례객 숙소 신축 등에 11억6천여만원이 투입되어 성지의 기본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앞으로도 法認廣場에 창립정신기념탑조성 9인기도봉 등 사적지 기념비 조성 등의 과업이 남아있다.

(3) 편찬사업

편찬사업으로는 『원불교70년정신사』를 학문적으로 정리하여 내외로 교단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27개 분야로 나누어 집필 편집(편집대표 한정석)중에 있으며 창립 72년간의 총부 기관 교당 단체의 역사와 현황을 일별할 수 있는 『원불교 72년 총람』(편집대표 박달식)도 편집 출판할 예정이다.

또한 영역교전 수정작업(대표 전팔근)을 완료하여 출판하였다.

앞으로 대종사 탄생백주년을 앞두고 소태산대종사의 위대한 사상을 오늘의 인류사회에 조명하여 재정립하고 또한 오늘의 인류사회문제를 소태산대종사의 사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학술작업과 기념문집 편찬이 있을 예정이다.

(4) 문화홍보사업

문화홍보사업으로는 성업봉찬사업 홍보외에 교단 안내홍보 비디오 영화를 제작(원광사 담당)중이며 대종사일대기의 영상화를 위해서 각본과 자료를 준비중에 있다.

2대말 기념 예술행사는 창립 제2대말을 경축함과 동시에 교화의 활성화와 성업봉찬 홍보를 위하여 교도 전통예술인(한국판소리협회 회장 조상현, 전통춤연구회회장 임이조)에게 소태산 대종사의 求道와 大覺, 초기교단사를 唱과 舞踊으로 제작하여 대각개교절을 전후하여 교구 순회공연을 개최한 바 12개 교구 2만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어 文化敎化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5) 행사분야

행사분야는 제3차 아시아종교자평화회의(원기70년 6월 16일~20일)에 참석하고 재정적으로 크게 지원하여 국제종교계에 원불교를 알리고 국제종교연합활동에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때 교단을 방문한 각 종교 대표단원은 200여명에 이르렀다. 앞으로 탄생백주년을 기해서는 독자적으로 국제종교회의나 국제종교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소태산대종사의 사상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인류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하며 종교연합운동의 중요한 계기를 삼을 예정이다.

(6) 특별사업

특별사업으로는 한국보육원, 제주국제훈련원, 만덕산훈련원 신축과 영모원 공원묘지사업, 해외교당(로스엔젤레스, 필라델피아, 일본교구 등) 교단 제3대 설계 특별위원회 등에 약 3억8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원창회에서는 약10억 정도의 자금을 조성하여 나가고 있어 인재관리 등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7) 사업시행 보고(68~73. 10)

① 원기68년부터 73년 10월 24일까지의 총수입은 교구 교당성금 1,918,725,000원.

기관성금	267,373,400원	특별회사	129,000,000원
일반회사	339,034,526원	이자수입	46,041,282원
		총계	2,700,174,208원이다.

② 총지출은

총부건설장엄	1,337,345,130원	영산성지장엄	232,670,000원
편찬사업	14,516,515원	홍보·예술	66,209,470원
행사	42,902,970원	• 봉공	23,500,000원
특별사업지원	344,880,000원	(해외교당개척	174,880,000원
영모원묘지사업	100,000,000원	국제훈련원	70,000,000원)
투자	20,000,000원	경상비	46,624,055원
		총계	2,228,648,140원이다.

(예산액 단위 : 천원)

사업계획		예산액	사업시행종목	시행액 계	시행기간	내 역	비고
1 총부건설·장엄	1. 보존건물 복원 및 도로정비	145,600	1) 경내도로 포장(하수구 시설)	126,944,733	69.6.14~ 71.6.30	총부구내 콘크리트. 차도블럭포장 총연장 920m 총면적 5,317㎡ 학림사-수도원 입구 콘크리트포장 총연장 215m 두께 20㎝ 노폭 6m 보존구역도로 화강석포장(대각전, 구조실 등)	
			2) 성탑진입로 포장	19,668,600	72.4. 8~ 6.30	포장면적 105평 경계석 설치140m (석재-함열회장회사 : 2천만원 정도)	
	* 정문 및 담장설치		3) 보존건물 복원	45,326,907	70.6.25~ 10.31	최초건물도치원(동서아실, 세탁부) 복원:원위치에 총8간	
			1) 담장설치			특수기관 담당	
			2) 정문건립	50,680,450		관산 조태진회장 특별회사	
	2. 원로원 건립	140,400	1) 원로원 신축	140,400,240	70.7.13~ 11.30	침실10실 응접실 및 오락실, 사무실 1실 기타 부대시설 등 2층 연건평 148평	
	3. 대종사성탑 장엄	230,000	1) 기초, 토목석물, 십상등	183,771,510	72.6.13~ 73.10.31	탑의 기단을 넓혀 판석을 깔고, 병풍석에 10상동 부조와 친필 계송을 넣어 장엄	
	4. 정산종사성탑 중건	120,000	1) 기초, 토목석물, 조각공사 등	72,774,100	73.6. 5~ 10.31	탑높이 5.48m 탑주위 상단넓이 210㎝(61평) 병풍석 중앙에 탑명을 청오석에 새겨넣고 좌우에 삼동유리상과 화해제우상을 동부조 작품으로 붙임	
	5. 소태산 기념관건립	600,000		31,007,300	72.8~	서울 인제건축에 설계 의뢰 73.2.29완성, 1층(168.3평) 전시실, 로비, 사무실 등 2층(100평) 대종사 성상 및 성화 기념물 전시 연건평 268.3평	
	6. 영모전 수리장엄	14,000	1) 영모전마루 개수및 지붕 방수 공사	15,146,600	72.10.1~ 11.12	영모전 마루를 새로 깔고 지붕 방수공사겸 전체 수리 단장	

	7. 총부부지 및경내가옥 매입	350,000		435,142,390 (348,482,390)	68.~ 73.	총부시설 확장 및 정비를 위해 경내 가옥 3동 114평, 대지 290평, 전 6,923평 등 총 25,927평을 매입	
	*정화원신축 *화장실신축 *총부종합 계획 *성탈 및 종법실 주위 조경과 환경 정비	146,220		146,179,160 (10,000,000) 6,705,700 6,660,840 12,087,100	70.10.5~ 71. 7.31 70.12.1~ 72.10.31	적공실(45평)과 방12실 연건평 225평 원대 관계분야 교수팀(곽계환, 이양재, 정사회, 윤충렬)에 의뢰 종합계획 수립	환경정비 조경
	계	1,746,220		1,650,978,020			
2 영산성지	영산성지 시설 및 장엄	300,000		232,670,000	69.~ 73.	대각전, 영산원, 학원실 등 보존 건물 보수 대각지 장엄(대각비 기단, 진입로 화강석으로 장식 석등 1조 설치, 주위조경)-이공주 회장, 원남교도 특별회사 부지매입(성탄지앞 가옥 1동, 전285평, 대각지앞 답1천평 매입, 구간도실앞 5천여평 부지확보 광장 조성) 영산사무소 및 순례객숙소(한옥3동 140평)신축	
3 편찬	1.70년 정신사 편찬 2.72년 총람 편찬 *기념 문집 편찬		1)70년정신사 편찬 2)72년 총람 편찬	7,122,500 7,388,205	70.9.14~ 72.2~	29개 분야로 나누어 집필 편찬중 각 분야별로 나누어 집필위뢰 편찬중	
	계	80,000		14,510,705			
4 문화·홍보	1.홍보·문화 예술행사	50,000	1)2대말 기념예술 행사	36,897,820	73.2.9~ 6.19	개벽의 북소리 전국순회공연(소태산대종사의 생애) 판소리-조상현, 춤-임이조무용단 4월 17일 부산공연을 시작하여 6월 19일 대전공연까지	

						11개교구 13회공연 관람인원 2만여명	
4			2) 원미술대전 지원	5,000,000			
문화·홍보	2. 대종사 일대기 영화제작	100,000	3) 교단홍보영화제작 *일반홍보	12,589,440 11,740,210	72. 69.6.1~ 73.10.30	교단홍보영화제작 지원(원광사 1천만원 지원) 성봉홍보(중요계획, 교단3대운동, 종법사유시 등) 성업봉찬 소식 『온누리에 은혜를』 팜플렛 1만5천부 발행배포	
	계	150,000		66,226,470			
5 행사	1. 국제종교인 회의	80,000	1) 아시아 종교자 회의	17,902,970	71.6.16	지원, 2백여명의 일본 및 아시아 각국대표 총부 및 영산성지 방문	
	2. 영역교전 중간		2) 영역교전 중간	25,000,000	69.11.8~ 73.6	행사분과 대표 전팔근 국제부장의 주관하에 영어교전 1만부 발행	
	계	80,000		42,902,970			
6 사회봉공	1. 청소년 복지기관 설립지원	23,000	1) 한국보육원 지원	23,000,000		한국보육원 신축에 청소년 복지기관으로 지원	
	2. 사회보은 봉사활동	40,000	2) 사회봉공 연구비	500,000		봉공활동의 기본정신 사례 방향연구를 위하여 박성원 교수팀에 지원	
	계	63,000		23,500,000			
7 특별사업	1. 국제훈련원 건립지원	300,000	1) 제주국제훈련원 지원 2) 만덕산 훈련원 지원	70,000,000 10,000,000	69.5.10~ 70.5.15	대지37,402평, 연건평370평 총공사비 4억5천만원 일부 지원	
	2. 해외교당 개척(국내 교당개척비 포함)	200,000	3) 해외교당 지원 4) 교정계획 지원	174,880,000 11,108,000		나성, 필라델피아, 독일(프랑크푸르트) 동경대관 등 지원개척 3대설계 특별위원회에 예산 담당 지원	
	3. 영모원 공원묘지 조성	100,000	5) 영모원 묘지사업투자	100,000,000	71.3.27~ 4.	임야39,683평, 묘역13,727평 수용기수 9,129기 조성(공사비5억)-일부지원투자	
	계	600,000		365,988,000			

8 투자	투 자		1) 제주토지 투자	20,000,000	72.2.24	제주 원광요양원 신축에 필요한 예산 부족 해결관계로 3,800평 토지 매입	
			2) 나성투자	50,000,000		해외교화 기반구축을 위한 공동투자	
	계			70,000,000			
경 상 비		70,000	경상운영비	37,364,945			
총 계		3,089,220		2,504,141,110			

(8) 성업봉찬 탑쌓기 시범교당 기관

① 성금을 많이 회사한 교당

○10만원 이하 배정교당(500%이상)

광 주 교 구 : 보성
군 산 교 구 : 서천, 술산
대 구 교 구 : 구미, 군위
대 전 교 구 : 도곡
목 포 교 구 : 영보, 현화
서울동부교구 : 가락
영 광 교 구 : 대마, 왕촌
이 리 교 구 : 도원, 문화, 봉황
정 주 교 구 : 무장, 해리
진 주 교 구 : 산청

○100만원 이하 배정교당(200%이상)

광 주 교 당 : 중흥
군 산 교 구 : 남군산
남 원 교 구 : 산서, 순창, 운봉
서울동부교구 : 석문, 잠실
서울서부교구 : 개포, 공항, 대치, 홍제
수 원 교 구 : 과천, 동안양, 평택
영 광 교 구 : 군남, 영광
정 주 교 구 : 고창, 신태인, 화해
진 주 교 구 : 서진주, 함양

○1000만원 이하 배정교당(100%이상)

기 관 : 전주양노원
광 주 교 구 : 광주, 동광주, 서광주
군 산 교 구 : 군산
남 원 교 구 : 관촌
대 구 교 구 : 대구, 봉덕, 삼덕, 상주, 서성로
대 전 교 구 : 남대전
마 산 교 구 : 마산, 신마산, 통영
목 포 교 구 : 목포

부산동부교구 : 광안, 해운대
부산서부교구 : 청학
서울동부교구 : 사직, 성동, 송천, 전농, 중구
서울서부교구 : 강남, 방배, 화곡
이 리 교 구 : 남중, 동이리, 이리, 익산
전 주 교 구 : 교동, 덕진, 동전주, 서전주, 전주
정 주 교 구 : 정주

○2000만원 이상 배정교당

원남, 신촌, 부산, 종로

② 동참인(방명회원)이 많은 교당(출석교도수대비 80%이상)

* 제기, 화곡, 수계, 광안, 신촌, 불광, 성동, 부산, 마산

③ 꾸준히 참가한 기관 및 단체회원

기　　관 : 정토회관, 익산수도원, 중앙
수양원

출가교화단 : 이리교구출가2단(단장 이용진)　서울동부교구출가女1단(단장 황영규)
정주교구출가 1단(단장 한인성)　춘천교구교구단(단장 한제선)
정주교구출가 3단(단장 박자열)

* 기 원 문

원기　년　월　일에 원불교　　교당 교도일동은 정심재계하옵고 삼가 법신불 사은과 대종사님 성령전에 기원하옵나이다.

현하 사회를 관찰할 때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류의 생활은 한없이 편리하고 화려해가며, 시간 공간의 단축으로 지구는 하나의 촌락이 되어, 가히 지상낙원을 방불케 하고 있으나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고 인류의 양심은 무너지고, 도덕은 땅에 떨어져 개인은 물욕과 이기에 빠지고, 사회는 불신과 갈등에서 헤매며, 세계는 상극과 전쟁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으니, 인류의 장래는 실로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조각배와 같은 운명이옵나이다.

이러한 혼란한 세상에 우리는 새부처님의 정법회상을 만나 법신불 사은의 가호아래 안심입명을 얻고, 자신의 참모습과 인생의 정로를 찾으며, 감사와 보은으로 원망과 상극에서 벗어나고, 영생과 인과를 깨달아 혜복을 자유하여 영원한 복락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아직도 창업기에 있는 우리 교단과 고통에서 헤매는 동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자비의 손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세대의 가장 큰 과업이요, 우리 생애에 다시 볼 수 없는 교단창립 제2대말과 대종사탄생 백주년의 성업봉찬을 앞두고, 대종사님의 교법과 구인선진님들의 교단창립정신을 받들어, 각자가 이 법으로 거듭나고, 내 가족과 이웃에 법을 밝히며, 스승님과 교단을 거룩하게 받들어, 일원대도가 널리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조항으로써 진실히 서원하오니, 크옵신 광명과 위력으로써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一. 저희는 대종사님을 새 세상 새 부처님으로 모시고 일원대도를 나와 전생령을 구제할 만고의 큰 법으로 받들며 영겁동진하겠나이다.

二. 저희는 대서원과 대적공으로 각자의 법위를 향상시켜 천여래만보살의 대열에 참여하고 위가 없는 대도인과 상이 없는 대 봉공인이 많이 배출되도록 정진하겠나이다.

三. 저희는 이 기간에 자신과 교단을 새롭게 하고 교세를 크게 신장시켜 이 법은이 온 누리에 미치고 고통에서 헤매는 많은 동포가 구제를 받도록 노력하겠나이다.

四. 저희는 대종사님을 거룩하게 모시는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스승님께 크게 보은하고 교단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어 건실하고 모범된 교단을 이룩하겠나이다.

五. 저희는 정교동심과 종교연합운동으로 국운과 도운을 개척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여 하루속히 참 문명세계, 낙원세계가 건설되도록 매진하겠나이다.

六. 저희는 이 성업을 봉찬하기 위하여 재가 출가 선후진 남녀 대중이 대신성 대단결 대봉공으로 일심합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오니 이 성업이 자신과 교단의 영광이 되고 스승님과 후진의 기쁨이 되며 인류사회의 은혜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아울러 저희 기원인 일동의 가정에도 특별한 법력과 광명을 내리시와, 저희들의 신성과 불공으로 가정가정이 모든 번민과 재앙과 불행이 소멸되고, 항상 건강과 복락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뜻하는 일과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여의성취되어 보은 봉공하는 힘이되게 하여 주시오며, 불안과 혼란과 갈등에서 헤매는 이 사회와 인류에게 서광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일심봉축 하옵고 사배복고 하옵나이다.

*** 성업봉찬 횃불을**

1. 동방의 새 불토에 열린 새 회상
찬란한 새 빛으로 새날을 연다.
천 여래 만보살이 쏟아져 나와
성업봉찬 횃불을 높이 들었다.
느껍다 칠십이년 제2대 마감
기리자 대종사님 성탄 백주년

2. 보본의 공덕탑을 쌓아 올리자
백주년 성업으로 세계에 서자
당대의 새불자들 모두 나서서
성업봉찬 노래를 높이부르자
느껍다 칠십이년 제2대 마감
기리자 대종사님 성탄 백주년

*** 원불교 창립 제2대 및 대종사 탄생 백주년 성업봉찬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원불교 창립 제2대 및 대종사 탄생 백주년 성업봉찬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원기72년 2대말과 원기76년 대종사 탄생 백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사업과 행사를 추진함을 목적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총부건설 및 대전권 개발사업
2) 영산성지 성역화 사업
3) 아시아 및 국제 종교인회의 개최
4) 기념대회 및 각종 경축행사
5) 문화 편찬사업
6) 사회봉공사업
7) 사대봉공회 및 영모원 공원묘지 사업
8) 국제훈련원 및 해외교당 건설 사업

9) 기타 사업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원불교 중앙총부에 두고 사업추진의 긴밀한 연락을 위하여 각 교구에 교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총재 1인 2) 고문 약간인 3) 지도위원 약간인 4) 회장 1인
5) 부회장 약간인 6) 사무총장 1인 7) 감사 3인

제6조(총재) 총재에는 종법사를 추재한다.

제7조(고문) 1) 고문은 총재가 위촉한다. 2) 고문은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지도위원) 지도위원은 본회의 지도에 당한다.

제9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한다.

제10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회장단을 보좌하여 본회의 기획·회의 및 섭외사무를 주관한다. 단 필요에 따라 사무차장을 둘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관장하며 회장은 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업무분장을 정한다.

제12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일체업무를 감사하여 위원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선임) 지도위원·회장·부회장·사무총장·감사는 수위단회에서 선임한다.

제3장 기관

제1절 부 서

제14조(명칭)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를 둔다.

1) 재정분과 2) 건설분과 3) 행사분과 4) 봉공분과
5) 편찬분과 6) 문화홍보분과

제15조(분과위원) 1) 각 분과에 30명 이상 100명 이내에 위원을 둔다. 2) 위원은 회장의 재청에 의하여 총재가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6조(대표위원) 각 분과의 위원이 호선하는 대표위원 2인(정·부)을 두고 각 분과의 직무를 관장하게 한다.

제17조(위원회 소집과 의결) 위원회는 대표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사무총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18조(각 분과의 직무) 각 분과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분과 가) 기금조달 나) 예산결산
2) 건설분과 가) 총부건설 나) 성지(영산·변산)사업
다) 대전권 개발
3) 행사분과 가) 기념대회 나) 사상 및 교리 강연회
다) 아시아 및 국제 종교인대회
4) 봉공분과 가) 자선사업 나) 봉공사업
5) 편찬분과 가) 대회 휘보 편집 및 기념 사진첩 제작
나) 2대말 총감 편찬 간행 다) 기념문집 편찬 및 간행

6) 문화홍보분과 가) 홍보 및 보도 나) 화보 및 전시
다) 촬영·영화제작 라) 문화예술행사

제2절 위원총회

제19조(구성) 1) 위원총회는 본회의 임원과 분과위원 및 교정위원 전원과 2인의 교당 대표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교당 대표위원은 교무와 회장이 이에 당한다.

제20조(위원총회) 1) 본회에 정기 및 임시 위원총회를 둔다. 2) 정기 위원총회는 매년 정기 중앙교의회를 전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총재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21회(위원총회의 기능) 위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승인 2) 예산 결산 3) 기타 중요사항

제3절 상임위원회

제22조(상임위원회의 구성) 1) 회장·부회장·사무총장·차장·감사와 각 분과 대표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상임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회의 회장은 회장이 이에 당하여 상임위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제23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2) 사업계획 집행
3) 각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승인 4) 각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사항
5) 회칙 개정안 심의

제4절 교구위원회 및 교당위원회

제24조(조직과 기능) 각 교구 교의회에 교구위원회를 두고 각 교당 교의회에 교당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본회 회칙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

제4장 재 정

제25조(세입) 1) 본회의 세입은 교단의 지원금, 특지가의 회사금, 사업별 전담자의 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회는 위원에게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26조(예산) 1) 예산은 일반 예산과 사업별 특별 예산으로 편성한다. 2) 일반 예산은 매 회계년도별로 편성하고 특별 예산은 개별 사업의 종료시까지 장기 예산으로 편성한다. 3) 매 회계년도 결산안, 개별 사업종료 결산안은 사업종결후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개회되는 정기위원총회에 제출한다.

제2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원불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5장 해 산

제28조(해산결의) 본회는 본회 사업을 완결한 후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교의회에 보고한 후 해산한다.

제29조(재산처리) 본회 해산당시 본회가 소유하는 잔여재산은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교의회에 보고한 후 원불교 재단에 귀속시킨다.

제6장 부 칙

제30조(회장정족수) 1) 본회의 회칙 개정은 상임위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수위단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 본회 해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본회의 회의중 본조 1·2항을 제외한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한다.

제31조(시행) 본 회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타. 원불교 창립 제2대 성업기념대회

원불교 제2대를 마감하는 성업기념대회와 아울러 제3대를 출범하는 교단기틀의 재정비 등 전환기의 교단 일대사를 마무리하였다.

원기73년(1988)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중앙총부와 교립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 등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성업기념대회 기간에 법훈장 수여, 종법사 취임 수위단 선거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회임원**

■ 대 회 장 : 교정원장 김윤중

■ 부 대 회 장 : 김인용 전팔근 이중정 나철중 홍정관

■ 지 도 위 원 : 박장식 이공주 이운권 황정신행 안이정 서대인 양도신 김근수
정진숙 정도진

■ 대 회 위 원 : 이공전 김정용 이철행 박은국 전이창 송영봉 박제권 문동현
김지현 이정은 박성경 이광정 김이현 송천은 윤주현 정성숙
유성일 이성신 장정현 박혜순 김대관 김법종 양혜경 이정무
조정중 박성석 송영지 정경호 박은섭 김성주 정도윤 한제선
서세인 오회원 장성진 신제근 박제중 서경전 서대준 이건춘
권세영 박정기 이종원 윤치성 권성천 김서오 이수오 오성수
유정완 송자명 이현도 유장순 전경화 전기철 장인중 이보원
정경훈 송성찬 이백철 양제승 전성완 박광전 박길선 추진권
한귀석 고경원 권현각 윤충전 김도광 이대선 문도권 김준현
고문국 김도음 김도광 여원식 홍정덕 차재덕 김정택 하여겸
송인천 심대하 탁정영 고문기 조대진 오이균 오선교 이철원
임제안 최준명 박정원 조정제

■ 기획위원장 : 조정근 이성은
위원 : 이원경 이성국 허광영 조학심 성시종 양해관 백심덕

■ 총무위원장 : 장응철 김은준
위원 : 이남현 이용정 윤정양 최세종 권도갑 김경일 노영관 박성인
한주성 김정도 이선묵 김형선 배현송 훈련교무 20명

■ 의전위원장 : 김이현 송순봉

위원 : 김주원 박진홍 이성택 성도종 박세정 김민연 장삼정 정귀원
전해덕 최심경 임도석 고진여 장성은 이종화 정천경

■ 재무위원장 : 서성범 박제현
위원 : 김영택 이경륜 고원선 김혜선 이정주 나인관 한순인 이진훈
이경봉 김성희 유덕중 김원영 이순원 강형신 이지연 이삼덕
장덕원 황효준

■ 시설위원장 : 이혜정 임윤철
위원 : 장연광 김도심 안도순 김태성 이진하 이성원 오도철 김진성
장덕훈 이중훈 이도중

■ 안전위원장 : 김복환 김강인
위원 : 최경도 노성자 이성규 박정후 이정선 신진원 김도진 강낙진
황민정 김윤태 박승룡 손영천 원불교학과 48명

■ 홍보위원장 : 이종원 김학인
위원 : 이장선 박혜명 박달식 유진근 조원오 황인철 조상원 송인걸
박인해 이도전 유용진 정인신 서광덕 김동선 김신원 이성전
배은종 강명진 이명희 황도묵 송정심 김동선

*** 종합일정표**

행 사 명	일	시간	장소	대 상	주무부서
■ 제43회 임시감찰위원회의	4(금)	15 : 00	감찰원	감찰위원	감찰원 사무처
■ 대종사 성탑장엄준공식	5(토)	13 : 00	성탑앞	참석 교도	성업봉찬회
정산종사성탑 중건 제막식.	5(토)	13 : 30	성탑앞	참석 교도	성업봉찬회
■ 제1회 정기중앙교의회	5(토)	14 : 00	기념관	중앙교의회의원	중앙교의회 사무처
*제3회 특별미행상 시상	5(토)	14 : 00	기념관	수상자	감찰원 사무처
■ 수위단원 선거	5(토)	16 : 00	대각전	선거인단	선거관리위원회
■ 제1회 정기수위단회	6(일)	08 : 30	영모전	수위단원	수위단 사무처
■ 제1회 정기중앙교의회 속회	6(일)	10 : 00	기념관	중앙교의회 의원	중앙교의회 사무처
*성업봉찬회 위원총회	6(일)	10 : 20	기념관	성업봉찬위원	성업봉찬회
*법위승급자 법락수여	6(일)	10 : 00	대각전	법위승급자	교화부
■ 봉 고 식	6(일)	11 : 00	영모전	법훈자, 수위단원, 법위승급자, 대회임원	기념대회 의전위원회

■ 창립제2대성업기념대회	6(일)	13 : 30	원광대	참석교도	기념대회
■ 종법사 추대 및 수위단원 선서식			체육관		집행위원회
*기념공연「개벽의 북소리」	6(일)	16 : 00	원대학 생회관	회망자	성업봉찬회
■ 제1회 정기수위단회 속회	6(일)	19 : 00	기념관 회의실	수위단원	수위단 사무처
■ 제1회 교무회의 *후생사업회 위원총회 *수덕회 회원총회	7(일)	09 : 00	기념관	출가교무	총무부

* 식순

창립 제2대 성업기념대회 대산종법사 추대 및 수위단원 선서식

사회/장응철 교무

● 서곡(성가126장) ……성가대

● 경종10타

1. 개 회
2. 입 정
3. 교 가(성가2장) ……다함께
4. 대회사 ……대회장 김윤중
5. 기원문 독배 및 독경(영주 3독, 기원문, 심고, 서원문)
6. 성적보고 ……집행위원장 김인철
7. 법훈장 수여 ……종법사
   * 종사장 수여 및 찬가/다함께
   * 대봉도장 수여 및 찬가/다함께
   * 대호법장 수여 및 찬가/다함께
8. 대회 치사 ……종법사
9. 기념대회가 ……다함께
10. 종법사 취임 고유문
11. 봉 헌
    * 종법사장(원로 수위단 중앙단원 이공주)
    * 법 장(교정원장 김윤중)

* 법　　의(원로 수위단원 황정신행)

12. 추대사 ……중앙교의회의장 정도진
13. 취임사
14. 종법사 찬가(성가15장) ……성가대
15. 수위단 선서
16. 수위단 찬가(성가16장) ……성가대
17. 축　장 ……김만주화(월화), 조국성(상현)
18. 폐　회(성가125장 인류의 합창) ……다함께

*** 기념대회 치사**

오늘 이 거룩한 식전을 당해서 위로 法身佛 四恩과 大宗師님 성령과 정산종법사님 성령의 가호하심과 三世諸佛諸聖과 역대 선영 열위의 음조와 인천대중의 합력과 그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고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 새 시대 새 회상 건설의 개벽 설계를 하실 때 그 운영 방법을 36년을 1대로 하는 대수를 정하시고 매 대를 三回로 나누어 개벽의 새 역사를 이루도록 해 주셨습니다.

창립 제1대에는 혈인성사와 방언역사를 통해 교단 창업의 정신적 축을 세워 주신 후 숙겁의 인연을 만나시고 만고의 대법을 제정해 주시며 교단의 기초 동량을 훈련시킴으로써 교단 만대의 터를 튼튼히 다져주시고 창립 제2대에는 선종법사님을 모시고 교재정비·기관확립·정교동심·달본명근의 四大經綸을 받들면서 결실을 맞이하는 佛事를 통하여 大法位 向上과 인재육성으로 道冠德旺의 成年世界를 맞이하는 성숙한 교단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2대를 결산하면서 4만여명이 꽃다운 법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었고 그중에도 천여명의 법강항마위와 수많은 종사, 대봉도, 대호법의 법훈자가 나와 이 법을 크게 봉대하게 되었으니 이는 대종사님과 선 종법사님께 大報恩을 한 것이며 교단과 국가 세계에는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大佛事를 이룬 것이요 인류 일체 생령에게는 大佛供으로 공양을 올린 것입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장하며 오늘의 이 경사에 기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재가 출가 전 교도는 마음껏 오늘을 경하하면서 무량세계 무량겁을 통하여 이 도운이 무궁하기를 염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법훈을 받으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숨어서 殺身成仁의 대정성을 뭉쳐 주신 수많은 재가 출가 유명 무명의 창립 공훈을 일일이 말할 수 없거니와 남녀노소가 모

두 법과 회상과 스승님을 위하여 신명을 불사했던 그 눈물겨운 노력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영명하신 진리가 소소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이날을 맞이하여 적수공권으로 일어나서 오늘의 교단이 있게 한 창립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제 교단 三代에는 하나의 세계를 향해 몰려오는 국가세계의 대운을 마음껏 活用하여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셨던 광대무량한 대 낙원으로 인도하는데 가일층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三年후의 大宗師님 탄생백주년을 기하여 世界가 함께 받드는 大宗師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報本事業에 우리의 있는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자기훈련·교도훈련·국민훈련·인류훈련을 통해 다같이 대진급하여 참문명세계 건설의 주인들이 되게 하고 교화를 위주한 교단의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세계 만방에 이 교법을 전파하고 종교연합운동으로 정교동심을 이루어 인류가 대화합하므로써 무궁한 佛國土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새회상 기틀을 세운 꽃다운 법훈을 높이 기리고 억만년 뻗어나갈 우리의 교운을 심축하며 法身佛四恩과 대종사님 성령과 정산종사 성령과 선영 열위전에 새로운 대서원과 대 신성을 다지고 하나에서 열, 열에서 백, 천, 만, 영생, 영겁을 한마음 한서원으로 나아가 교단 三代의 거룩한 공덕주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심축드리는 바입니다.

원기73년 11월 6일

宗法師 金 大 擧

*** 대회사**

교단창립 제2대 성업을 기념하여 종사, 대봉도, 대호법의 법훈을 수여하고 교단 三代를 맞이해서 새로이 선출된 종법사 추대와 아울러 수위단원을 모시는 거룩한 이 식전에 원근 각처에서 참석해 주신 재가 출가 호법동지님과 내빈여러분께 교단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73년전 민족의 고난이 극심하고 인지가 어두웠던 그 시대에 주세성자이신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시어 一圓大道의 法種子를 뿌려주신 이후 우리 교단은 갖은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九人先進의 生命을 불고하는 희생정신을 받들어 萬難을 돌파하고 오늘의 교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역사를 짐작하는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오늘 이 자리에 대종사님과 또 교단창업의 선진님들이 계셨더라면 그분들의 감회는 어떠하셨을까를 생각할 때에 환희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교단과 국가 세계의 전망을 風雨霜雪過去後 一時花發萬歲春이라 하시고 구간

도실 상량에 松收萬木餘春立 溪合千峰細雨鳴이라 소나무는 만나무의 남은 봄을 거두어 섰고 시냇물은 천봉우리의 가는 비를 합하여 운다고 예시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가도 세계도 後天의 새 光明 새 기운이 완연히 힘을 타서 一時花發萬歲春의 기운이 무르익고 우리 교단은 새 시대의 大運을 받아 나와서 이제 점차 세사에서 참으로 찾고 요구하는 때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재가 출가 호법동지님들이 모여들어 天下 인류를 다 실을 수 있는 반야용선을 능히 띄우고 운전해 나갈 거대한 長江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를 낳아주신 大宗師님, 품어주신 鼎山宗師님 세분 스승님의 은혜가 한량없고, 저희의 앞에 오셔서 교단 창업에 모든 고난과 고생만을 감수하며 창업의 주춧돌을 놓아 주셨던 선진님들의 은혜 또한 한량 없습니다. 더우기 그뒤를 이어 法을 크게 이으신 宗師제위, 교단의 어려운 살림을 크게 융성시켜 주신 대봉도, 대호법 법훈제위께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교단 三代의 결복 성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는 엄숙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명과 책무 또한 더욱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년의 세계, 성년의 교단을 말씀하신 宗法師님의 法門과 같이 우리 모두는 스승님을 모시고 진리를 모시고 세상을 받들며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성년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리에서 그간의 모든 공덕에 대하여 진심으로 아낌없는 축하를 드림과 동시에 교단 三代를 설계하는 스승님들의 경륜을 간절히 받들어 우리 모두가 다같이 一圓大道 永劫法子 一圓會上 永劫主人으로 무등등한 대각도인, 무상행의 대 봉공인이 되어 교단 만대에 거룩한 大創業主들이 되기를 간절히 심축드리며 대회사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원기73년 11월 6일

원불교 창립 제2대 성업기념대회

대회장 김 윤 중

*** 성적보고**

■ 출가교도		■ 재가교도	
• 정특등	36인	• 정특등	21인
• 준특등	292인	• 준특등	41인
• 정 1 등	171인	• 정 1 등	83인
• 준 1 등	209인	• 준 1 등	201인
• 정 2 등	102인	• 정 2 등	194인
• 준 2 등	118인	• 준 2 등	536인

• 정 3 등	36인	• 정 3 등	519인
• 준 3 등	103인	• 준 3 등	1,196인
• 정 4 등	37인	• 정 4 등	733인
• 준 4 등	53인	• 준 4 등	2,175인
• 정 5 등	27인	• 정 5 등	1,952인
• 준 5 등	272인	• 준 5 등	12,733인
계	1,456인	계	20,384인
		총계	21,840인

* 법훈서훈자 명단

宗 師

恒陀圓 李 敬 順 宗 師　崇 山 朴 光 田 宗 師　誠 山 成 丁 哲 宗 師
亨 山 金 洪 哲 宗 師　九陀圓 李 共 珠 宗 師　龍陀圓 徐 大 仁 宗 師
高 山 李 雲 捲 宗 師　薰陀圓 梁 道 信 宗 師　常 山 朴 將 植 宗 師
香 山 安 理 正 宗 師　養 山 金 中 默 宗 師　香陀圓 朴 恩 局 宗 師
睿陀圓 全 二 昌 宗 師　中陀圓 呂 淸 雲 宗 師　誼陀圓 李 永 勳 宗 師
喜 山 吳 喆 煥 宗 師

大 奉 道

五 山 朴 世 喆 大奉道　義 山 趙 甲 鍾 大奉道　惠 山 金 飮 光 大奉道
圓 山 徐 大 圓 大奉道　中 山 丁 光 薰 大奉道　東 山 李 炳 恩 大奉道
默 山 朴 昌 基 大奉道　亨陀圓 吳 宗 泰 大奉道　融陀圓 金 永 信 大奉道
達陀圓 李 正 和 大奉道　一陀圓 朴四時華 大奉道　二陀圓 張 寂 照 大奉道
四陀圓 李 願 華 大奉道　五陀圓 李 靑 春 大奉道　靈 山 朴 大 完 大奉道
柳 山 柳 虛 一 大奉道　德 山 趙 曦 錫 大奉道　根 山 池 海 元 大奉道
均 山 丁 慈 善 大奉道　凡 山 李 空 田 大奉道　梵陀圓 金 智 玄 大奉道
禮 山 李 喆 行 大奉道　惠陀圓 丁 盛 熟 大奉道　靜陀圓 李 正 恩 大奉道
均陀圓 辛 濟 根 大奉道　聖陀圓 李 聖 信 大奉道　承陀圓 宋 靈 鳳 大奉道
潤 山 金 允 中 大奉道　發陀圓 鄭 眞 淑 大奉道　文 山 金 正 勇 大奉道
亞 山 金 仁 龍 大奉道　麗 山 金 西 悟 大奉道　坤陀圓 朴 濟 權 大奉道
主陀圓 尹 調 現 大奉道　多 山 金 勤 修 大奉道　弘陀圓 朴 恩 燮 大奉道
天 山 李 建 春 大奉道　飮陀圓 鄭 潤 才 大奉道　法 山 李 百 徹 大奉道
陀 圓 全 八 根 大奉道　山陀圓 高 賢 種 大奉道　恩陀圓 徐 世 仁 大奉道
禪陀圓 柳 聖 一 大奉道　達 山 尹 致 聖 大奉道　閑陀圓 柳 壯 順 大奉道
濟陀圓 宋 慈 明 大奉道　秀陀圓 李 順 錫 大奉道　勝 山 梁 濟 承 大奉道
崇陀圓 朴 性 敬 大奉道

大護法

二山 李旬旬 大護法	六山 朴東局 大護法	七山 劉 巾 大護法
京山 康弼國 大護法	十陀圓 梁夏雲 大護法	永陀圓 林七寶華 大護法
秋山 徐中安 大護法	三陀圓 崔道華 大護法	海山 吳利均 大護法
奉山 申圓觀 大護法	規山 趙大震 大護法	修山 李徹遠 大護法
金瑞眞 大護法	教陀圓 金法用心 大護法	中山 呂圓光 大護法
中陀圓 林圓覺行 大護法	慧陀圓 尹致德 大護法	滿陀圓 金明煥 大護法
慶陀圓 高性容 大護法	寶陀圓 金瑞敬 大護法	安陀圓 任濟安 大護法
哲山 卓正榮 大護法	始陀圓 洪仁德 大護法	道陀圓 全隱德 大護法
李德化 大護法	信陀圓 金慧性 大護法	專陀圓 尹聖圭 大護法
賢山 李義聲 大護法	世山 金成學 大護法	雲山 文東賢 大護法
明陀圓 朴錦容 大護法	國山 洪仁天 名譽大護法	裕山 金德庵 名譽大護法

대회장 좌석배치도

교구	좌석	출입구
①광 주	나A, 나B, 나C	북문－입구2
②군 산	경기장(우측)	하향계단－경기장입구Ⅱ
③남 원	사A, 사C	남문－입구7
④대 구	마C, 마F	남문－입구6
⑤대 전	다A, 다D, G3	북문－입구3
⑥마 산	바A, 바B, 바C, G6	남문－입구6
⑦목 포	나D, 나E, 나F	북문－입구3
⑧부산동	다E, 다F	동문－입구4
⑨부산서	다B, 다C, G4	동문－입구4
⑩서울동	라A, 라B, 라D	동문－입구4
⑪서울서	라C, 라E, 라F	동문－입구5
⑫수 원	마A, 마D, G5	동문－입구5
⑬영 광	가C, 가F	북문－입구2
⑭이 리	경기장(좌측)	하향계단－경기장입구Ⅰ
⑮전 주	경기장(우측)	하향계단－경기장입구Ⅱ

⑯ 정	주	바D, 바E, 바F	남문－입구6
⑰ 제	주	나D	북문－입구2
⑱ 진	주	마B, 마E	남문－입구6
⑲ 청	주	G2	북문－입구2
⑳ 춘	천	G7	남문－입구7

* 재가법사 : 사B, 사C, 사E, 사F 정문－입구8
* 교 무 석 : 본부석 뒤 가A, 가B, 가D, 가E 정문－입구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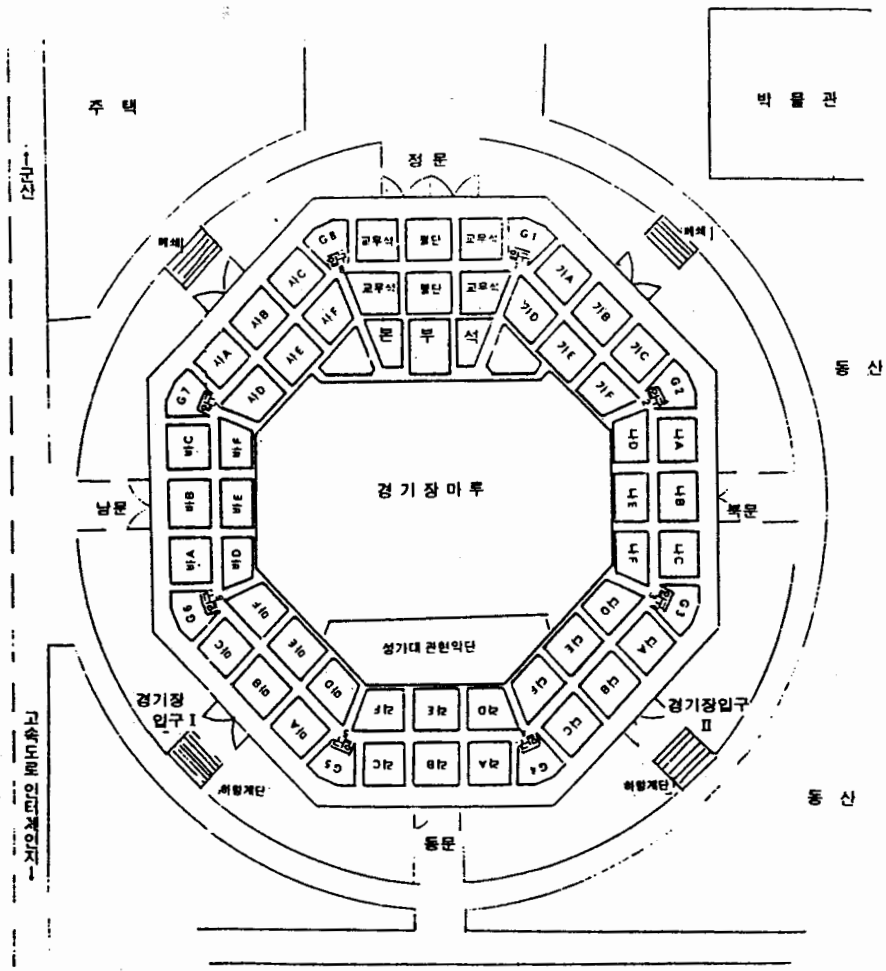

평지에 산을 쌓아

평지에 산-을 쌓아 설흔여섯 해
새 회상 기-초다진 창립 제1대
그터에 숲을 이뤄 또 삼십육년
회상-의 기틀세운 보본 제2대

아-아 칠십이년 혈성의 세월
억만년 뻗어나갈 교운의 원천
아- 칠십이년 제2대 마감
억만년 이어나갈 결실의 터전

6. 교단제3대설계특별위원회

가. 배 경

교단제3대설계특별위원회는 원기71년(1986) 11월 제45회 정기교정위원회에서 구성을 결의하고 원기72년(1987) 3월 종법사의 재가를 받아 발족된 범교단적 특별기구이다.

구성까지의 직간접적 배경을 살펴보면

원기70년(1985)에 교정원 기획실에서는 「2대결산 3대계획」이라는 교단적 과제 수행의 작업으로 「교단발전종합계획」이라는 과업을 중요업무로 삼아 과업수행의 3단계를 설정하였다.

제1단계는, 자료수집단계로서 2대의 발자취와 2대말의 교단모습을 광범하게 포괄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제2단계는, 종합평가단계로서 수집된 각종 자료를 분석 또는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제2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제3단계는, 계획수립단계로서 2대말의 종합평가에 연원하여 제3대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으로 삼았다.

이러한 단계 설정에 의하여 교정원 기획실은 원기70년(1985)에 제1단계 작업으로 다음의 5가지 작업을 수행하였는 바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원불교인의 의식조사(재가 출가 975명대상 115문항으로)
2) 교단자료의 전산처리(원기63~70년까지의 교화, 총무, 재무통계)
3) 교정에 관한 여론조사(현역교무 325명대상 8개문항)
4) 교단발전 저해요인 설문(교무 118명에 의해 논술토록)
5) 교역자의 조직몰입 형성요인 분석(김원영석사논문 재분석)

기획실의 이러한 작업진행은 제2, 제3단계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함을 기획실에서도 느끼고

있었고 제2대를 2년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는 보다 교단적 차원에서 총력을 집중하여 2대의 결산을 교단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론은 원기71년(1986) 11월 총회를 앞두고 서경전·신명국교무 등 7인의 연명으로 교무총회 소집의 안이 교정위원회사무처에 정식 접수되어 공식화 되었고 교정원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렴, 발의자들과의 절충을 통해 〈교단제3대설계특별위원회〉의 구성만을 제45회 교정위원회(원기71.11. 7)에 상정하였으며 상정안은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다.

이에 따라 제222차 임시원의회(72. 2.27)는 「교단제3대설계특별위원회 규정」(교령제34호)를 심의 통과하였으며 동년 3월 9일 90인의 위원이 종법사의 재가를 받아 위촉되고 동년 3월 19일 발족을 하게 되었다.

발족한 특별위원회는 성업봉찬회로부터 1천만원의 특별예산의 지원을 받아 1년6개월동안 활동을 거쳐 설계안을 완성하고 원기73년(1988) 8월 제12차 수위단회에 상정되어 원기73년(1988) 7월 전 교정위원에게 설계안을 서면보고하였으며 보고된 설계안은 교단제3대의 운영지침으로 채택 공포되었다.

나. 교단 제3대 설계특별위원회 활동경과

1. 위원회 구성발의(71.11. 7)

제45회 정기교정위원회에서 교단 제2대를 점검하고 제3대를 향한 바람직한 교단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교단제3대설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다(위원 60인 내외, 사무처－기획실, 구성추진은 교정원장에 위임).

2. 위원회 규정 제정(72. 2.27)

제22차 임시 원의회에서 「교단 제3대 설계특별위원회 규정」(교령 제34호)을 심의 통과하다(총 11조). 또한 위원선정은 간부회의에서 선임하여 종법사 재가를 받아 위촉하도록 결의하다.

3. 위원회구성(72. 3. 9)

위원회 규정과 원의회의 위임에 따라 발의시 60인을 조정, 6개분과 90인의 위원을 선정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위촉장을 발부하고 사무처를 구성하다(위원장 : 교정원장, 사무처장 : 기획실장, 사무차장 : 기획실 차장. 7인 연구원).

4. 제1차 상임위원회(72. 3.18)

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위하여 6개분과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무처 임원으로 구성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협의하다.

1) 특별위원회 운영방향

2) 발족 봉고 및 제1차 본위원회 운영시안 검토

5. 발족 봉고 및 제1차 본위원회(72. 3.19~20)

위원회의 발족을 영모전에 봉고하고 제1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운영과 교단 현안과제에 대한 분과별 토의를 가진 후 과제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특별 기원식을 올리다.

6. 각 분과회의의 운영(72. 4.17~6.12)

특별위원회 사무처는 각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분과의 과제들을 집중 토의하였는 바 그를 일정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17-18 전무출신 재도분과회의
4. 24-25 인재육성·관리분과회의
5. 15-16 교화계획 분과회의
5. 22-23 재정·산업 분과회의, 봉공·공익분과회의
6. 12 체제 제도 분과회의

7. 제2차 상임위원회(72. 6.18)

각 분과회의의 논의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정된 38개 항중 중요 7개항에 대한 중점 토의를 갖다.

8. 연석회의(72. 4.19~9.25)

체제 제도 분과의 성격상 교헌 개정 기초위와 연석하여 함께 토의함으로서 특위와 개헌위의 연계를 도모하였는 바 6차에 걸친 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연석(4.10-11) 2차 연석(5. 8-9) 3차 연석(6.24)
4차 연석(7. 2) 5차 연석(9.11) 6차 연석(9.25)

9. 교무훈련시 특위 경과보고(72. 7. 2~9.24)

교역자의 특위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에 대한 대응으로서 교무훈련시에 특위운영의 경과를 보고하고 교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 바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7.7) 2차(7.16) 3차(8.6) 4차(9.14) 5차(9.24)

10. 사무처 연구원 활동(72. 6. 7~10.17)

사무처는 회의에 따른 일상 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여론 수렴 및 대안창출과 관련한 별도의 작업을 수렴하였는 바 그 대강은 다음과 같다.

6. 7-12 교정 각부 사무개선안 협의 수합
6. 1-20 신보에 제언된 3대 설계방안 요약 정리
6.20-30 전무출신 제도 개선안 정리(5안, 3안)
10.12-17 각급회의 여론의 분야별 정리

11. 제3차 상임위원회(72.10.28)

사무처가 정리한 의안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한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1) 분야별 논의사항 검토(총 45개 사안)
2) 제2차 본 위원회 운영 방향

12. 제2차 본위원회(72.10.28)

사무처가 정리하고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의안들의 확정을 위하여 개최된 제2차 본위원회에서는 상정 안건에 대한 개별적 토의와 전무출신 제도에 대한 집중 토의를 진행한다.

13. 72년도 특위 자료집 발간(72.12)

72년 한해동안 위원회의 활동을 총람하기 위하여 그간의 회의록과 회의 자료, 참고자료 등을 편집 발간하고 이를 위원, 총부 각 부처, 교구 등에 배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의견

창출을 도모하다.

14. 현안 과제 유관자 간담회(73. 1)

72년도 기관 교정지도 및 그 평가에 따라 몇가지 교단 현안과제에 대해 유관자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모았는 바 그를 일정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3. 1.18 자선기관장 간담회

1.19 보화당 경영진 간담회

3. 5 전무출신 한의사 간담회

15. 사무처 연구원 집중 토의(73. 2. 1~6)

72년도 자료집에 근거하여 73년도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연구원 집중 토의를 갖고 제3대 종합보고서의 목차와 내용구성의 방향을 잡은 후 의안별 검토작업을 하다.

16. 각 분과별 설계안 정리(73. 2. 7~25)

6인의 연구원이 집중토의를 바탕으로 각 분과의 설계안을 정리하였으며 사무처는 목차의 세목과 집필의 방향을 정리하였다.

17. 연구원 토의(73. 3. 2~5)

각각 정리한 분과설계안에 대해 사무처 연구원의 토의가 있었는 바 서술 수준의 차이가 있어 설계안의 세부항목, 구체성 등을 수정 또는 조정키로 하다.

18. 상임 연구원 집중 작업(73. 3.14~21)

연구원 토의를 바탕으로 사무처 상임연구원 2인이 서술 수준의 통일 등 분과회의를 위한 설계안 수정작업을 수행하다.

19. 각 분과회의의 운영(73. 3.22~4.22)

사무처가 준비한 각 분과 설계안을 대상으로 각 분과회의를 운영하여 검토작업을 하였는 바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3. 22 봉공·공익 분과회의

3. 29 재정·산업 분과회의

4. 7 전무출신 분과회의

4. 12 인재육성·관리 분과회의

4. 19 교화계획 분과회의

4. 21 체제·제도 분과회의

4. 22 전무출신 분과회의

20. 설계안 수정 보완(73. 5. 9~20)

분과회의의 검토, 수정사항을 바탕으로 사무처 상임연구원 3인이 분과별 설계시안을 수정하는 한편, 설계종합보고서 Ⅰ·Ⅱ장의 서술 등 종합 보고서 시안을 작성하다.

21. 연구원 검토(73. 5.24)

상임 연구원이 작성한 제3대 설계 종합보고서(시안)를 검토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키로 하다.

22. 제4차 상임위원회(73. 6.10~13)

각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한 제3대 설계 종합보고서 시안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연 4일에 걸쳐 시안의 모든 내용을 면밀하게 심의하여 시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다.

23. 보고서 시안 수정 보안(73. 6.14~17)

사무처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정리하여 시안을 전문 다시 타자하고 보고서 시안을 인쇄하여 본위원회를 위해 전 위원에게 보고서 시안을 부송하다.

24. 제3차 본 위원회(73. 6.22~23)

상임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설계시안의 확정을 위해 개최한 제3차 본위원회에서는 설계시안의 자구 수정을 완료하고 2개항(문화교화, 사회교화)의 신설을 결의하였으며 문안작성은 사무처와 발의자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하다.

또한 교정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 교정위원들에게 우송키로 하였으며 확정된 설계안은 차기수위단회에 상정키로 하다.

25. 제5차 상임위원회(73. 7.12)

제3차 본회의가 위임한 2개항(문화교화, 사회교화)의 문항을 심의하다. 한편 수위단회 상정 자료 목록을 검토한 바 설계안과 함께 7종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상정키로 하다.

26. 교정 위원에 보고(73. 7.20)

확정된 설계 시안은 위원회 규정 9조에 따라 전 교정 위원에게 서면 보고 하다.

27. 제123차 수위단회에 상정

설계안을 123차 수위단회에 상정하다.

다. 교단 제3대 설계 특별위원회규정

제1조(설치 및 목적) 교단의 성장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교단 창립 제2대를 슬기롭게 마감하고, 제3대의 교화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단사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자, 제45차 교정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정원에 교단 제3대 설계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과업) 본 위원회는 다음의 과업을 수행한다.

(1) 교단체제 정비 및 제도 개선책 마련

(2) 교화 종합계획 마련

(3) 전무 출신 제도의 정비 및 개선책 마련

(4) 인재의 육성 관리 대책 마련(선발, 교육, 훈련, 후생)

(5) 재정·산업의 육성책 및 경영의 합리화 대책 마련

(6) 봉공·공익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7) 기타 제3대 종합계획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1) 본 위원회는 교단의 각계 각층을 망라하여 9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정원장이 이에 당하며,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장이 된다.

(3) 위원은 교정원장의 제청으로 종법사가 위촉한다.

(4) 기획실장, 기획실 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사무처)

(1) 실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정원 기획실에 본 위원회의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 사무차장 각 1인과 연구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3) 사무처장, 사무차장은 기획실장, 기획실 차장이 이에 당하며, 연구원은 본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5조(분과)

(1) 제2조의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6개분과를 둔다.

가. 체제·제도분과　　나. 교화계획 분과
다. 전무출신 제도분과　　라. 인재육성·관리분과
마. 재정·산업분과　　바. 봉공·공익분과

(2) 각 분과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사무처장, 사무차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연구원은 분과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각 분과의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사무차장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본회 위원장이 이에 당하며, 부의장은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이에 당한다.

(3) 상임위원회는 각 분과 및 사무처에서 마련한 안을 심의 조정한다.

제7조(회의)

(1) 본 위원회는 년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본 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확정한다.

(3)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정) 본 위원회의 예산은 성업봉찬회 교정부문 지원예산으로 편성한다.

제9조(활동기한) 본 위원회는 교단 제3대 종합계획안을 교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위단회에 상정한 후 원기73년 말에 자동 해체한다.

제10조(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단 관례에 준한다.

제11조(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 교단 제3대 설계 특별위원회 위원명단

위 원 장 : 교정원장 김　윤　중

부위원장 : 김　정　용(체제·제도 분과위원장)
이　공　전(교화계획 분과위원장)
김　인　철(전무출신 제도 분과위원장)
전　팔　근(인재육성·관리 분과위원장)
김　인　용(재정·산업 분과위원장)
이　철　행(봉공·공익 분과위원장)

사무처장 : 조　정　근　　사무차장 : 이　원　경

상임연구원 : 성 시 종

연 구 원 : 신명국, 최경도, 허광영, 김도심, 양해관

◇ 분과위원회

1) 체제·제도 분과－위원장 : 김정용, 부위원장 : 장응철

위 원 : 송천은, 황직평, 김법종, 김은준, 라도국, 김주원, 강낙진, 박은국, 이선종, 한은숙, 라철중, 전성완.

2) 교화계획 분과－위원장 : 이공전, 부위원장 : 김이현

위 원 : 이광정, 조정중, 서경전, 이종진, 김일상, 김인강, 이성신, 박청수, 조효경, 오선교, 탁정영.

3) 전물출신 제도분과－위원장 : 김인철, 부위원장 : 송순봉

위 원 : 이중정, 유기현, 이성은, 김현, 권도갑, 장연광, 성명종, 김경일, 이정무, 고원선, 이정주, 박정원.

4) 인재육성·관리분과－위원장 : 전팔근, 부위원장 : 김복환

위 원 : 한정원, 이성택, 박달식, 성도종, 김기원, 남궁성, 박윤철, 신제근, 박재현, 이선조, 김도융.

5) 재정·산업 분과－위원장 : 김인용, 부위원장 : 서성범

위 원 : 이백철, 이건춘, 이보원, 정도윤, 권세영, 김영택, 김혜봉, 김주영, 전종철, 유응현, 정상훈, 김법현.

6) 봉공·공익 분과－위원장 : 이철행, 부위원장 : 이혜정

위 원 : 김서오, 강운상, 심도정, 이준일, 이성규, 설윤환, 유진근, 오희원, 김혜심, 안자은, 고문기.

◇ 상임위원회

의 장 : 김윤중

위 원 : 김정용, 이공전, 김인철, 전팔근, 김인용, 이철행, 조정근, 장응철, 김이현, 송순봉, 김복환, 서성범, 이혜정, 이원경, 성시종, 신명국, 최경도, 허광영, 김도심, 양해관.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사무차장, 연구원)

마. 교단 제3대 설계종합보고서

〈종법사 법문〉

*** 특별위원회에 당부함**

교단창립 제2대를 마감하고 제3대를 출범해야 할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새 역사의 장을 열기 위

하여 교단 제반문제를 종합 반성하고 새롭고 밝은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하여 치하와 아울러 큰 기대를 갖는 바입니다.

특별위원 여러분은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그간 닦고 쌓은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지를 모아서 제3대를 위한 문을 크게 열고 4,5백년 결복의 초석이 되어지기를 염원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개교의 정신에 입각하여 항상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로 하나의 세계, 보은의 세계, 균등의 세계를 건설해 나아가게 할 것이요.

둘째, 낙원세계 건설은 교단과 개인 가정 국가 사회 세계의 대 성역화에 있으니 이를 위한 대도 대덕을 갖춘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으로 뒷받침할 것이요.

셋째, 일원의 원만한 신앙과 수행생활은 오직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하나에서 열까지 훈련강화의 길이 수립되게 할 것이요.

넷째, 모든 면에 개방과 수용, 평등과 조화로 공생공영하고 동고동락하고 합심합력이 되게 할 것이요.

다섯째, 교정의 조직화 합리화 원활화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교단이 되어 결국 교화에 좋은 결실을 거두게 할 것이요.

여섯째, 총부는 법륜상전의 대성지요, 신앙수행의 중심이니 중앙체제를 확고히 하되 점차 교구, 기관의 자율성을 살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창립과정상 대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자수성가식으로 교단을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교단의 규모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단치교와 법치교단의 체제를 확립하여 후진 만대에 바람직한 유산을 물려주고 제생의세의 대업을 실현케 합시다.

〈위원장 개회사〉

*** 대의를 세우고 순일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중대한 과업을 부여 받았읍니다.

교단 창립 제2대를 마감하고 제3대를 맞이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교단 제3대 설계 특별위원회의 발족은 지금까지의 교단현실을 직시함으로써 활기찬 제3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발전의지의 표현이라 하겠읍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첫째, 먼저 나를 떠나야 되겠읍니다.

교단창립에 구인선진님께서 보여주신 사무여한의 혈인정신이 오늘 우리 후진들에게 다시 살아나 공을 위해서는 사를 버리고, 법을 위해서는 신명까지도 기쁘게 바치는 우리 본연의 자세로 이 일에 참여해야 하겠읍니다.

둘째, 우리의 일이 역사적 과업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과업은 제2대말까지 우리의 선진님들이 애써 만들어 놓으신 구슬들을 한데 모아서 그 모두의 광채가 흑시라도 가리지 않도록 해야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낱낱의 구슬들을 한데 꿰어서 훌륭한 보배로 승화시켜 만인의 축복속에 제3대를 출발하게 하자는 역사적 과업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화, 교육, 자선, 훈련, 생산, 봉공의 교단 6대사업이 낙원세계 건설이라는 하나의 줄에 꿰어져서 교단의 앞날과 인류의 복됨을 밝히는 찬란한 보배가 되도록 우

리의 슬기를 모아야 하겠읍니다.

셋째, 전통정신과 창조정신을 함께 가져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제2대까지의 교단전통을 의미있게 돌아보아야 함과 동시에 제3대라는 미래를 밝게 내다보는 진취적 태도를 함께 가지고 이 일을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정신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며 또한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독선과 자기만족에 빠져서도 안될 것입니다.

제3대의 준비, 즉 새로운 것의 창조에는 단순한 모방을 거부하고 남을 흉내내는 것을 거부하는 강한 자기 자신이 필요합니다. 그 자기정신이란 옛 선진들만의 정신일 수도 없고 우리 선진 아닌 다른이들의 정신일 수도 없읍니다. 그것은 오늘 이 교단에 사는 종법사님을 위시한 우리 자신들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위로 종법사님의 뜻을 받들고 좌우로 여러동지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지금 우리의 교단을 위해 전통정신과 창조정신을 잘 조화시키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대의를 분명히 세우고 순일한 마음으로 이 일에 사심없이 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약간의 지장이 있더라도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개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Ⅰ. 교단 제3대 설계의 기본 방향
1. 제3대의 교단사적 위치
2. 제3대 설계의 배경과 의의
3. 설계의 기본 방향과 범주
Ⅱ. 제3대 설계안 (분과별)
0. 제3대 과제요목
1. 체제·제도 분과
2. 교화계획 분과
3. 전무출신 제도 분과
4. 인재육성·관리분과
5. 재정·산업분과
6. 봉공·공익분과
Ⅲ. 제3대의 전개 (과제×시간)
1. 제3대의 지향성
2. 각 회별 단계적 구상
3. 설계안과 새 집행부

1) 교단 제3대 설계의 기본 방향

1. 제3대의 교단사적 위치

교단 제3대의 설계에 있어 교단 역사속에서 제3대의 위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설계의 기본 입장과 방향을 잡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대종사께서는 원기3년(1918) 10월에 새 회상의 창립 한도를 발표하시어 회상의 대수는 기원년수로 구분하되 매 대를 36년으로 하고 창립 제1대 36년을 3회로 나누어 제1회 12년은 교단창립의 정신적 기초를 세우고 창립의 인연을 만나는 기간으로, 제2회 12년은 교법을 제정하고 교재를 편성하는 기간으로, 제3회 12년은 법을 펼 인재를 양성 훈련하여 포교에 주력하는 기간으로 잡으셨다.

그러나 일재말기의 탄압속에 대종사님의 계획사업 일부는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열반에 드시고 민족해방과 6·25의 참담한 상황속에서 제1대 성업봉찬 사업은 마무리 되었다.

1대 결산을 전후하여 제2대 운영의 대, 회별 계획의 구체적 근거는 찾을 수 없으나 정산종법사님의 4대 경륜 (교재정비, 기관확립, 정교동심, 달본명근)과 대산종법사님의 교화 3대 목표사업 (연원달기, 교화단 불리기, 연원교당 만들기), 법위향상운동, 국제교화와 종교연합운동 등을 제2대 교단역사의 중요한 흐름으로 파악해 볼 수있다.

개괄하면 창립 제1대는 교단창업의 기초를 확립한 시기로, 창립 제2대는 양적 성장에 의한 교세 신장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사오십년 결실의 성업을 이룬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볼때 원기100년안에 든 사람은 모두 창립주다 하신 법문에 연원하여 제1대－제3대까지를 크게 교단 창립기로 잡고 제3대를 「내실을 통한 교단성숙의 시기」로 설정하여 교단성숙의 의미를 다음의 셋으로 정리하였다.

(1) 제2대까지는 대종사님을 친견하고 구전심수로 이어온 선진들이 교단의 성장을 위해 혈심협성을 다해 왔다. 이제 제3대는 교법을 보고 발심하여 모여든 다음 세대들이 선진의 전통정신을 면면이 이어받고 나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창조정신을 발휘하여 조화시킴으로써 성숙된 교단운영의 틀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2) 제2대까지 교단의 창업과 성장에 주력하여 대체적인 교단의 면모를 갖추어 왔으니 제3대는 민족과 인류가 요청하는 역할을 원만수행함으로써 교단이념의 실천적 검증과 정신개벽의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여 인류역사에 성숙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3) 제2대까지 하여 사오십년 결실의 면모를 완성하였으니 제3대는 교단의 성숙에 바탕하여 세계사속에서 사오백년 결복의 성업을 향해 국제교화의 확창을 통한 세계적 종교로서의 성숙된 면모를 갖추어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원화 운동의 터전을 닦아야 할 것이다.

2. 제3대 설계의 배경과 의의

창립 제2대 성업봉찬사업의 추진과 함께 2대말 결산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교정원은 기획실을 중심으로 교정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과 기초연구에 착수하였고 공부·사업 성적의 사정을 통한 2대말 결산작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제2대의 결산은 보다 포괄적이고 정밀해야 하며 교단 제반 분야에 관한 종합진단과 함께 그동안 누적되어온 각종 현안문제의 정비를 전제로 한 범 교단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고조되면서 제3대의 종합계획 역시 모든 교역자의 중지를 모아 설계하여 제3대에는 전 교역자가 새로운 정신으로 매진해야 한다는 의식이 점차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대말을 교단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기 위해서는 전 교역자가 한자리에 모여 교단사를 함께 논의하고 과제해결의 의지를 응집해야 한다는 뜻으로 출가교무 총회소집의 요청이 있었던 바, 교정원은 이를 수용, 〈교단 제3대 설계 특별위원회〉의 설치안을 제안하여 전 교역자의 총의로 이를 결의하고 교단 각계 각층(선후진, 남녀, 근무분야, 재가 출가)을 망라한 90인 위원을 선임하여 원기72년(1987) 3월 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감이 있긴 하였으나 제3대의 설계를 교단공의로 추진하고 재가 출가 선후진 남녀 각 입장과 시각을 종합함으로써 상호간의 의식의 차를 좁힘과 아울러 교단화합과 총의를 창출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제3대 설계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3. 설계의 기본방향과 범주

제3대 설계의 기본방향을 잡는 데는 수차의 연구원 토의가 있었으나 위원회의 활동 시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과정상의 한계를 감안하여 다음의 세가지 강령으로 설계의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1) 연역적이기보다는 귀납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의 동원, 논리적 전개 등의 연역적 방법은 집중 연구 작업이 전제되는 바 위원회의 탄생 배경과 활동 시한을 고려하여 집중연구보다는 대다수의 의견을 종합하는 방향에서 귀납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

(2) 미래상보다 현안문제에 중점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삼되 구체적인 교단의 미래상을 제시하기보다는 현 교단의 현안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대안의 창출에 주력하도록 하였다.

(3) 서술적이기보다는 명제적으로 기술

설계안의 작성에 있어 설명적인 서술은 설득력은 있으나 요체를 드러내는 데는 오히려 단점이 되므로 모든 문장의 기술은 명제적으로 요약하여 간단명료함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와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제3대 설계의 범주를 구획하였는 바 그 대체는 다음과 같다.

(1) 교단문제를 6개분야 (체제·제도, 교화계획, 전무출신제도, 인대육성·관리, 재정·산업, 봉공·공익)로 대별하고

(2) 과제의 중대성과 함께 해결 가능성을 의식하면서 제3대 36년간의 단계적 구상(회별, 6년, 3년 단위 등)을 하되

(3) 이념·정신문제의 독립적 논의와 서술은 미뤄두고 또한 집행부가 수행해야 할 세부 계획은 생략하며

(4) 분과회의, 상임위원회, 연구원 작업, 전체회의를 통해 집약된 의견의 범주로 한정한다.

설계의 기본 방향에 따른 범주의 구획은 본 설계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게 됨을 시사한다.

(1) 과제영역 설정상의 한계

교단과제를 6개분야로 대별함에 따라 마땅히 선행되어야 할 이념, 정신문제의 독립적 서술과 교육분야 등 일부영역이 논의되지 않았다.

(2) 위원회 구성상의 한계

위원회를 6개 분과로 구성 운영함에 따라 90인 위원이 사실상 17인 분과위원의 폭으로 줄어 경험과 전문지식의 한계로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어려웠다.

(3) 논의과정상의 한계

각종 사안과 설계의 논의과정상 위원들간에 시각의 차가 크고 다분히 심정적인 접근이 많아 합의의 도출과 논의차원이 상승추진이 어려웠다.

(4) 시간적인 한계

원기72년(1987) 3월에 발족하여 원기73년(1988) 말에 해체키로 된 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제3대의 종합설계라는 중대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촉박한 시한이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과 구체적인 대안창출에 중의와 슬기를 총 집결하기는 어려워 대치되는 입장과 대안은 채택할 수 없었다.

이상과 같은 한계를 인정하면서 본 설계안은 6개분과 63종의 과제요목으로 2대말까지 누적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과 제3대 전개의 대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2) 제3대 설계안(분과별)

0. 제3대 과제요목

100 체제·제도분과 (12항)

110 교단체제 정비	111 교단 통치체제 확립
	112 수위단·교화단 연계
	113 교정원조직의 개편
	114 교구 분권제의 지향
	115 방계조직의 강화
120 제도 개선	121 출가재가 제도 정비
	122 법위사정제도 보완
	123 사업성적제도 개선
	124 인사제도 개선
130 각 기구 기능조정	131 교정 각부와 법인연계
	132 교단정책기구 연계
	133 각종위원회 정비

200 교화계획 분과(12항)

210 교화정책	211 교화위주 교단행정
	212 교구 교화체제 확립
	213 교화연구 기능 강화
	214 종교연합운동과 국제교화
220 교화전략	221 교화프로그램 개발
	222 교당교화의 전문화
	223 훈련의 강화
	224 문화교화의 활성화
	225 청소년교화 강화
	226 이리지역 교화강화
230 교화상 과제	231 신앙성의 제고
	232 교화영세성의 극복
	233 교역자 호칭 정비
	234 사회교화의 활성화

300 전무출신 제도 분과 (7항)

310 제도 정비	311 직종과 직급 체계 정비
	312 복무형태의 정립
	313 전무출신 관리행정 개선
320 처우 개선	321 용금체계의 확립
	322 사가 지원책 수립

	330 복지 대책	331 의료·요양 대책
		332 노후 대책
400 인재육성·관리분과(13항)		
	410 인재개발	411 학생·청년회를 통한 발굴
		412 교립학교를 통한 발굴
		413 일원가정을 통한 발굴
		414 인재개발운동 전개
		415 인재 선발과정 정립
	420 인재육성	421 교육과정의 정비
		422 진급심사와 고시제도
		423 양성기관의 체제 정립
		424 장학과 근무 제도의 개선
		425 전문인재의 양성
	430 인력관리	431 교역평가제 도입
		432 재교육 체계 정립
		433 휴양제도 실시
500 재정·산업분과(10항)		
	510 재정 합리화	511 예산회계제도 확립
		512 기관교금제 개선
		513 제기금 통합 운영
		514 재무행정의 개선
	520 산업육성	521 보화당계열 통합운영
		522 교단산업의 육성
		523 산업행정의 활성화
	530 교단경제자립	531 총부 재정기반 확립
		532 영세교당·기관의 자립
		533 구매창구의 일원화
600 봉공·공익분과(7항)		
	610 봉공정책의 수립	611 공익행정의 개선
		612 봉공예산의 확보
	620 봉공인력의 확충	621 봉공인재의 양성
		622 봉공조직의 활성화
	630 자선기관운영개선	631 시설사업의 전문화
		632 자선기관 인사확립
		633 봉공과 교화의 연계

100. 체제·제도 분과

체제·제도분과는 교헌개정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제외한 분과회의(3회), 총무부에서 마련한 의견안,

타분과에서 모아진 체제 제도와 관련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작성하였다.

그동안 모아진 체제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들은

ㅇ. 교단의 전통제도를 시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외형적으로는 전통을 지켜왔으나 내용적으로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ㅇ. 제도를 운영하는 교단 구성원의 의식변화도 부족하였다.

ㅇ. 교역자들이 심정적으로 교화의 성과가 부진한 원인을 교단제도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ㅇ. 체제 제도의 개선은 먼저 교단이념에 관한 진진한 토의와 연구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이러한 이념에 관한 논의는 유보한 채 제도면의 개선을 먼저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ㅇ. 교화현장의 많은 교무들은 교단의 체제가 교화위주로 개선되어야 한다.

등의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에 바탕하여 본 설계안은 교단 체제정비, 제도 개선, 각 기구 기능조정의 세가지로 큰 방향을 잡아 교단통치체제 확립, 수위단과 교화단의 연계, 교정원조직 개편, 교구분권제의 확립, 방계조직의 강화, 출가재가제도, 법위사정제도, 사업성적제도, 인사제도, 교정 각 부와 법인 연계, 교단 정책기구 연계, 각종 위원회 정비 등 12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요약 정리하였다.

111. 교단통치체제 확립

1) 배경

1. 교화단 정신이나 공화제 이념으로 볼 때 수위단을 통치기구로 해야 한다.
2. 교단 통치 체제를 이단치교의 단지도 체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다.
3. 교단의 모든 문제의 최종 결정권이 종법사에 집중됨에 따라 그 책임까지도 모두 종법사에게 미쳐 종교적 권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2) 방향

1. 수위단 단장이 종법사가 되면 종법사는 교단대표권과 수위단회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2. 가급적 수위단원이 중앙총부의 보직을 맡아 수위단 통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서 편정권, 교리해석권, 법위사정권 등의 교법권은 수위단회가 갖는다.
4. 입법, 행정, 사법의 통치권은 수위단회가 관장하되 중앙교의회, 교정원, 감찰원에 분산 운영하며 수위단회의 최종 동의를 얻도록 하여 거부권을 갖는다.

112. 수위단과 교화단의 연계

1) 배경

1. 수위단은 교화단에 그 시원을 두고 있다.
2. 수위단과 교화단이 연계되어야 교화조직과 교정조직이 균형조화를 이루어 이단치교의 교화가 실현될 수 있다.
3. 교화단 조직의 활성화는 교화위주의 교단체제 확립의 기초가 된다.

2) 방향

1. 수위단을 정점으로 교화단을 조직하여 수위단이 최상위단이 되도록 한다.
2. 교당단위로 교화단을 조직하고 교무는 교당 교화단 단장단의 단장이 된다.
3. 교화단 업무를 수위단호에서 관장하여 교화와 훈련상황을 지도 권면토록 한다.
4. 교화단을 통한 의견안 제출을 활성화하여 수위단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113. 교정원 조직 개편

1) 배경

1. 교정원이 부장중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시행과 업무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있다.
2. 교화위주 교정조직을 요구하는 교화일선의 의견이 많다.
3. 유관업무의 통일적 운영과 함께 고유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수업무의 분리가 필요하다.

2) 방향

1. 교정원 운영을 원장책임으로 운영한다.
2. 부서간 유관업무와 부수업무 등을 조정하여 분리 이관한다.
3. 업무분석에 바탕한 전결규정을 제정하여 책임행정을 확립한다.
4. 교화부를 교정원 수석부로 한다.
5. 전무출신 관리업무를 연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차 전무출신국(가칭)을 신설한다.
6. 중앙총부의 시설 관리, 순례객 안내, 상주인훈련 등의 총부 관리업무를 분리 운영한다.

114. 교구분권제의 지향

1) 배경

1. 지역실정에 맞는 교화정책과 실행이 필요하다.
2. 한정된 중앙의 행정력으로는 일선교당의 실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3. 법인 업무를 중앙총부에서 관장하므로써 인적, 물적, 시간적 낭비가 많다.
4. 지방자치제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교화가 요청되고 있다.

2) 방향

1. 교구의 기본 규모를 적정화하여 대교구를 지향한다.
2. 교구장의 교정 참여의 길을 넓히도록 교구장회의를 활성화한다.
3. 입교사무, 일정수준의 법위사정, 사업성적 사정과 주무, 단장, 중앙의 임명권을 1단계로 이양한다.
4. 부교무 인사권과 일정부분의 교단재정업무를 2단계로 이양한다.
5. 법인 관리권의 일정사항과 교구 법인설립권을 3단계로 이양한다.

115. 방계 조직의 강화

1) 배경

1. 교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 봉공과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다.
2. 다양한 사회 봉공활동을 전개하는 데는 교단 주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3. 사회 봉공과 사회교화는 방계조직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때 보다 효과적이며 폭넓고 다양한 활동을 펼 수 있다.

2) 방향

1. 교단내 단체의 활동영역을 사회에로 확장하여 활동폭을 넓혀 간다.
2. 사회봉공 활동의 법적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단체별 법인등록의 길을 열어준다.
3. 다양한 사회 봉공활동에 다각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 단체를 조직하도록 권장한다.

121. 출가·재가 제도 정비

1) 배경

1. 출가와 재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데서 그 역할과 기능을 구별하는 것마저도 차별로 인식되어

혼란이 있다.

2. 출가·재가의 구분은 거주상태가 기준이 되므로 재가생활하는 전무출신이 늘어남에 따라 그 구분이 애매해졌다.
3. 출가교도의 경우도 전무출신, 교역자, 교무 등 명칭이 많고 재가교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 방향

1. 교도는 전무출신과 평교도로 구분한다.
2. 전무출신은 교무와 교행(가칭)으로 구분한다.
3. 현행의 재가교무는 그 취지는 살리되 명칭은 교무와 달리한다.
4. 법위는 법계로 호칭하고 법사호칭은 정사이상이 설법권에 당할 때만 사용한다.

122. 법위사정제도 보완

1) 배경

1. 법위사정기준이 너무 수월하여 법위에 대한 존엄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2. 사정 방법에 있어서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법위의 공개가 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2) 방향

1. 사정 기준을 강화하여 법위의 존엄성을 높인다.
2. 사정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계량화한다.
3. 사정과정을 체계화하여 공정성을 높인다.
4. 법위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정시 주위의 여론을 청취하여 평판을 참고한다.

123. 사업성적제도 개선

1) 배경

1. 무상·무념 보시의 정신을 흐리게 한다는 의견이 많다.
2. 사정의 비중이 물량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다.
3. 사업권장 방편화되어 교단에 물질주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4.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점수의 타당성이 감소되었다.

2) 방향

1. 사정기준을 강화하고 물질보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신적 보시의 기준도 함께 세운다.
2. 사정방법의 상대적 적용기준을 정하여 절대평가와 함께 병행한다.
3. 전무출신 근무실적에 의한 사업성적 사정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4. 일정 등위 이하의 사정업무는 교당과 교구에서 관장하도록 한다.

124. 인사제도 개선

1) 배경

1. 순환제, 임기제가 교당교화의 연속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기도 하다.
2. 순환제, 임기제의 적용이 교당 교무들에만 한정되고 기관교무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3. 인사운용이 합리적인 근무 평정에 바탕하고 있지 못하다.
4. 겸직인사가 많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년제도 공정하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5. 교당간, 교역자간 격차가 큰 현 실정에서는 순환제가 오히려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2) 방향

1. 근무 평정규정, 경력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게 한다.
2. 직능별 순환과 임기제를 교당, 기관, 총부에 공평하게 적용한다.
3. 성공적인 교당의 경우 교화연속성을 위해 임기연장을 고려한다.
4. 보조적인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겸직인사를 지양하고 예우나 위인설관식 인사는 금한다.
5. 정년퇴임 후 예우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정년제를 정착시킨다.
6. 교당교무 인사위원회에 해당 교구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다.
7. 교정원 각 부장은 관련기관, 교당 등의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건의를 제도화한다.

131. 교정 각부와 법인연계

1) 배경

1. 교단법과 사회법의 이중 구조에 원만하게 대처하려면 각종 법인과 교정 각 부가 연계되어야 한다.
2. 재무부가 법인사무에 치중되어 고유의 재무행정의 개발이 어렵게 되어 있다.
3. 현재의 법인사무는 재산관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연계되어야 정책개발과 대외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

2) 방향

1. 교정원장은 재단법인 원불교 이사장을 맡는다.
2. 재단법인 원불교를 제외한 법인은 점차로 전임 이사장을 두어 법인업무를 전문화한다.
3. 관련부장이 관련법인의 상무이사를 맡는다.
4. 법인 사무국은 통합 운영하되 관련부서와 결재과정을 갖도록 하여 연계적으로 운영한다.

132. 교단 정책 기구 연계

1) 배경

1. 수위단회 사무처, 교정원 기획실, 교화연구소, 법무실 등의 정책기구가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2. 각 기구가 교단정책 수립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전문 연구인력의 확보 등 교단적 환경이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2) 방향

1. 수위단회 사무처의 정책수립 기능과 교정원의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연구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확립하여 수위단회 사무처, 교정원 기획실, 교화연구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2. 상임 전문 연구원을 배치하여 전문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3. 연구활동을 위한 예산의 지원과 기금의 조성을 교단적 의지로 실천한다.
4. 정책유관기구간에 긴밀한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수립과정의 체계를 잡고 필요시에는 연구인력을 집중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토록 한다.

133. 각종 위원회의 정비

1) 배경

1. 한정된 인원이 여러 위원을 겸하고 있다.
2. 교정 간부들이 여러위원회에 임명되어 잦은 회의로 인한 시간 소모가 많다.

3. 위원회가 의결기구화되어 각 기구의 책임 행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4. 위원회가 많아 소집 운영의 어려움이 많다.

2) 방향

1. 각 위원회는 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숫자와 인원을 줄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3.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4.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정책 기획기구에서 적절히 통제해 간다.
5. 위원회의 기능을 전문적인 자문 수준으로 한정하여 책임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00. 교화계획 분과

교화계획 분과는 분과회의(3회), 교화부에서 마련한 의견안, 교화 정책 심의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동안 모아진 교화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들은

○. 교단 분위기가 성장중심으로 흘러 교화정체현상을 가져왔다.
○. 인재양성이 교화자양성위주로 되지 못하여 교화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 중앙총부가 교화의식이 부족하여 인사재정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교화위주의 행정이 되지 못하였다.
○. 사회변화에 대처할 교화전략과 각종 교화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교화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 교화자의 사명의식과 교화정체극복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부족하였다.

는 등이다.

이러한 의견들에 바탕하여 본 설계안은 교화정책, 교화전략, 교화상 과제의 3가지로 큰 방향을 잡아 교화위주의 교단행정, 교구교화체제 확립, 교화연구기능강화, 종교연합운동과 국제교화, 교화프로그램의 개발, 교당교화의 전문화, 훈련의 활성화, 문화교화의 활성화, 청소년 교화강화, 이리지역 교화 강화, 신앙성의 제고, 교화영세성의 극복, 교역자호칭정비, 사회교화의 활성화의 14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요약 정리하였다.

211. 교화위주의 교단 행정

1)배경

1. 근래의 교단 행정이 사업위주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여 교화 일선의 사기가 저하되었다.
2. 교화 종합계획, 장단기 계획 등이 없어 교화정책의 체계와 적극성이 미흡하였다.
3. 교정원의 인사나 재정운용이 교화우선으로 되지 못하였다.

2) 방향

1. 교정원의 수석부를 교화부로 하고 교화부원장을 두어 교정원을 교화중심체제로 개편한다.
2. 교정원은 교화에 상당기간 경험과 실적이 있는 교무로 구성하여 교정원의 교화의식을 높인다.
3. 기관 편중의 남자교역자를 교화일선에 많이 배치한다.
4. 교단 중요정책 결정과정에 일선 교당 교무들의 참여 비중을 높여 교화현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5. 예비교무의 교육과정에 실천교학 과목의 비중을 확대하여 교화자 양성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한다.

6. 교무 훈련과정에도 교화학 과목을 편성토록 한다.

212. 교구교화 체제 확립

1) 배경

1. 교단이 커지고 전국 각지에 교당이 널리 분포됨에 따라 총부의 교당 통제상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2. 지방자치제에 대응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화를 전개하기 위해서도 교구단위의 교화체제가 절실한 실정이다.
3. 현재의 교구는 교당연합회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여 협의수준에 머물러 있다.

2) 방향

1. 교구단위의 교화·훈련·문화·봉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2. 입교·일정수준의 법위사정 등의 기능을 교구에 이관한다.
3. 교구의 인사를 보강하고 교구 순교감제를 신설하여 교구교화체계를 보강한다.
4. 교구교화에 필요한 교구재정의 자율권을 확대해 간다.
5. 교구장의 교화지휘권을 확대해 간다.
6. 교화·교육·자선사업의 전개를 교구단위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간다.

213. 교화 연구기능의 강화

1) 배경

1. 교화연구에 관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하였다(인사, 재정).
2. 분화, 전문화 되어가는 사회의 각 대상을 효과적으로 교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부단한 교화연구가 필요하다.
3. 교단이 제3대를 맞이하면서는 이제 교화 전반에 있어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방향

1. 교화연구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 및 재정의 보강과 함께 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2. 문화적 특성별로 교화모델 교당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교화연구의 현장성을 높인다.
3. 교학대 부설 교당을 설립하여 개발된 교화 프로그램의 실험과 함께 교화실습의 전문성을 높인다.
4. 교구단위로 교화 연구활동과 함께 교화 연구기구를 설치 운영해 나아간다.

214. 종교연합운동과 국제교화의 강화

1) 배경

1. 하나의 세계건설은 교의정신이므로 종교연합운동과 국제교화는 교단의 과제이다.
2. 국제적으로 맨 먼저 종교연합의 창설을 제창해 온 우리 교단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연합운동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2) 방향

1. 종교연합운동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수립한다.
2. 종교연합운동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기금을 마련한다.
3. 국제교화의 확산과 종교연합운동의 연계로써 종교연합창설의 주창을 실천해 나아간다.
4. 북한, 중공 등 공산권교화를 비롯하여 국제교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221. 교화프로그램 개발

1) 배경

1. 교화방법, 교화정보, 교화자료 등의 미흡으로 현장교화의 심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
2. 원불교적인 교화 패턴이 정립되지 못하여 기성 종교의 방법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

2) 방향

1. 교화단 교화, 훈련교화를 우리 교화의 특성으로 삼아 교화패턴을 정착시켜 나아간다.
2. 교화단 교화에 관련한 각종 관리 프로그램과 훈련교화에 필요한 각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교화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교화 프로그램을 누적해 갈 수 있도록 정보 교환체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 보급한다.
4. 교화 프로그램의 분화, 전문화를 기하여 대상별 분야별 영역별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22. 교당교화의 전문화

1) 배경

1. 단위 교당의 교화가 전문화되지 못하여 교화의 활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2. 교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화, 전문화가 필수의 요건이 된다.

2) 방향

1. 교당운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교무의 교화업무(교화 고유영역)를 체계화하고 교화보조인력(재무관리, 시설관리, 서무 등)을 분화한다.
2. 교당 설치규정을 강화하여 적정교당 규모(교무수, 교도수, 건물의 크기 및 용도, 재정규모)를 설정하고 기준 미달시에는 출장법회로 대한다.
3. 교무생활관을 법당과 분리하여 법당의 신성성을 보장하고 교무생활과 교화활동의 장을 분리함으로써 교화의 효율을 높인다.
4. 한 교당에 교무 2~5인이 공동으로 교화에 임하여 교화업무를 분장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5. 대도시 등의 인구집중지역과 교당밀집지역에서는 교당별로 교화영역을 분담하도록 한다(예 : 어린이, 학생, 대학생, 청년, 예술인 등).

223. 훈련의 활성화

1) 배경

1. 훈련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훈련의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2. 훈련법(정전)에 근거한 각급 훈련의 시행 세부 계획이 구획화 되지 못하여 훈련기관의 통재체제가 모호하다.
3. 원불교 교화는 훈련을 특징으로 삼아 종교적 인격도야를 순숙하여 교화를 완성해야 한다.

2) 방향

1. 훈련정책을 수립하여 상시훈련, 정기훈련의 관리체계를 구체화 한다.
   각급 훈련기관은 교정원의 통재를 받도록 한다.
3. 훈련부는 각급 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적합한 훈련기관에 배분하여 시행토록 한다.
4. 훈련요원을 양성 배치하고 재가 인력을 활용한다.
5. 훈련성적은 법위사정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 한다.

6. 국민훈련을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국민훈련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간다.

224. 문화교화의 활성화

1) 배경

1. 월말 통신, 월보, 회보 등 대종사님 당대부터 활자매체가 교화에 활용되어 왔다.
2. 대중문화와 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대중적 교화를 하려면 문화적인 교화 방법의 개발 활용이 필요하다.

2) 방향

1. 문화기구와 문화기관간의 연계를 원활히 하여 운영의 효율을 통한 문화교화의 활로를 열어 간다.
2. 문화 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과 함께 문화교화의 정책과 장단기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3. 중앙과 교구단위로 각종 문화매체의 활용을 권장하고 출판물의 저술을 권장 지원하며 방송 신문 등 언론의 길도 열어가 문학교화의 활성화를 기한다.
4. 분야별 예술인 동호인회의 조직을 권장하고 기존의 동호인회 활동을 촉진하여 문화교화의 저변을 확대해 간다.
5. 교당, 교구, 해외의 순회 공연을 위한 각종 예술 공연단을 조직 활용하고 교구 단위의 문화예술 행사를 활성화한다.

225. 청소년 교화 강화

1) 배경

1. 청소년 교화의 침체로 청장년 교도층이 엷어지고 있다.
2. 교단의 미래는 청소년 교화의 성패에 달려 있다.

2) 방향

1. 교단, 교구, 총부의 각급 예산에 청소년 교화를 위한 교화비를 책정한다.
2. 청소년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고 부단히 교화방법을 개선해 나아간다.
3. 교구단위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일생동안 청소년 교화에 전념할 청소년 전담 교무를 양성 교구에 배치한다.
5. 청소년 육성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의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청소년 훈련시설을 확충해 간다.
6. 청소년국을 두어 청년회, 대학생회, 학생회, 어린이회 등 청소년 교화를 전담하도록 한다.

226. 이리지역 교화 강화

1) 배경

1. 중앙총부가 위치한 이리지역은 일원고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2.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중앙총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리지역 집중교화가 시급하다.
3. 이리시에 위치한 많은 교단기관이 교화장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평이 많다.

2) 방향

1. 이리지역을 총부 직할교구로 운영한다.
2. 시내 교단기관을 교화장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 교화전담 교무를 배치한다.
3. 교당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교화를 위해 기관임직원 법회는 각 교당에 분산 운영하도록 한다.

4. 정토회를 신행봉공단체의 표본으로 발전시켜 이리지역사회에 간접교화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5. 총부를 비롯한 지역내 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문화, 사회봉사 등의 시민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6. 이리지역의 입체적인 교화를 위해서 교당, 교구, 기관, 총부를 연계하여 지역교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231. 신앙성의 재고

1) 배경

1. 교의에 장엄성이 미흡하여 귀의의 정서가 깊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우리의 교화가 수행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일상수행의 요법은 있어도 일상심고문은 없다. 상시응용주의사항,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에 신앙조항 없다).
3. 교역자들의 교리해석이나 일반적인 설교내용이 윤리, 도덕, 수행 중심적이다.

2) 방향

1. 입교의식, 법회의식 등 교의의 신앙성을 높이고 4축 2재의 신앙의식적 문화를 개발한다.
2. 교당설계시 교무생활관 분리 등 법당구조의 장엄성 경건성을 건축 문화적 입장에서 재고한다.
3. 신앙대상의 호칭을 「법신불 사은」으로 통일한다.
4. 법신불 신앙체계를 강화하여 인격신앙적 경향을 극복한다.
5. 예전의 수정보완으로 식순, 예문 등의 신앙성을 높인다.

232. 교화 영세성의 극복

1) 배경

1. 그동안 성장을 위한 교당 수 불리기 정책에 따라 교당규모가 대부분 영세성을 띠게 되었다.
2. 도시화에 따른 이농현상에 따라 농촌교당은 자연히 영세화 되었다.
3. 영세교당에서 교무가 혼자 봉직함에 따라 활발한 교화활동이 어렵고 교당 재정도 힘겨운 실정이다.
4. 교당규모가 영세하여 장엄이 어려운 관계로 초임자 등의 발심 입문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2) 방향

1. 현 교당들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당분간(3대1회) 정책지역외의 교당신설을 중지하고 한 교당에 교무 2인 이상 복무할 수 있도록 충원해 간다.
2. 근접교당끼리 통폐합 하거나 단독 교무들의 공동생활관을 마련하여 합숙하고 출장법회로 전환하도록 한다.
3. 신설교당의 규모를 엄격히 상향조정하여 출발부터 일정규모의 교당이 되도록 한다.

233. 교역자 호칭의 정비

1) 배경

1. 부교무, 교무, 교감, 교구장, 법사 등 너무 많은 호칭이 혼용되어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흐른 경향이 있다.
2. 재가 교도들간에 「우리 교무는 교감도 아니고 법사도 아니다」라는 등의 선입견으로 교무의 교화활동에 지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재가교무, 재가법사, 재가교령 등의 호칭사용으로 인해 출가교역자 교화권의 고유성과 전문성의 위상이 침해받고 있다는 일선의 의견들이 많다.

2) 방향

1. 직책, 직급, 법위 등에 따른 호칭은 지양하고 「교무」 하나로 호칭을 통일하여 사용한다.
2. 교무의 직책은 부교무, 교무, 교구장으로 하며 정년퇴임후의 교무에게는 원로교무로 예우한다.
3. 교감의 호칭은 없애고 부교무도 반드시 「교무」로 호칭한다.
4. 재가교도에게 주어진 교무, 법사, 교령 등은 출가교도와 구별되는 별도의 용어를 선정 사용한다.
5. 모든 공식서한이나 공적 행사에서의 호칭을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여 정착시켜 나아간다.

234. 사회 교화의 활성화

1) 배경

1. 그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단적 입장 표명이 미흡하여 청소년 교화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의견이 많다.
2. 제3대에는 교단의 사회적 역할을 확창함으로써 성숙된 교화의 성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2) 방향

1. 산업 현장, 농촌 도시 빈민지역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 교화 차원의 관심을 높여 간다.
2.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과 연구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사회 교화의 전개를 모색한다.
3.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교의적 해석을 시의 적절하게 펼쳐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한다.
4. 사회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 교화의 영역, 방향, 방법 등의 구체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교화 일선과 연결 하도록 한다.

300. 전무출신 제도 분과

전무출신 제도분과는 분과회의(6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전체위원회의 집중 토의과정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동안 모아진 전무출신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들은

○. 전통적인 전무출신 규정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워 상당부분 사문화되었다.
○. 전무출신의 처우가 근무지에 따라 차등이 심하여 생활의 격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질병, 노후대책 등의 미흡으로 전무출신들의 심리적 불안이 싹트고 있다.
○. 그간 제시된 전통제도 보완안, 종별 구분안, 급여제 도입안 등의 개선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는 어렵다.

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에 바탕하여 본 설계안은 제도 정비, 생활보장, 복지대책의 3가지로 큰 방향을 잡아 직종과 직급체계의 정비, 복무형태의 정립, 전무출신 관리행정의 개선, 용금체제의 확립, 사가 지원책 수립, 의료요양 대책, 노후대책 등 7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요약 정리하였다.

311. 직종과 직급체계의 정비

1) 배경

1. 현 5종직(교화직, 교육직, 행정직, 봉공직, 기능직)의 구분이 애매하여 유동적이어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2. 직급사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며 직급에 따른 관리가 불분명하다.
3. 직종별, 자격요건, 근무범위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2) 방향

1. 전무출신은 교무와 교행(가칭)으로만 구분한다.
2. 직급 사정기준을 구체화하여 관리하고 진급에 따른 연수교육 과정을 설치한다.
3. 교행의 직무영역과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 훈련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토록 한다.

312. 복무형태의 정립

1) 배경

1. 전무출신은 본교의 교직외에 타직무를 겸대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교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타직무 겸대에 대한 해석이 어렵게 되었다.
2.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사회교화의 영역이 확대되어 전무출신의 사회적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3. 교단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전무출신의 공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4. 연한에 있어 3기의 구분이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적 시행이 정지된 실정이다.

2) 방향

1. 전무출신의 교직영역과 복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교단의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전무출신의 사회적 활동을 위해 영리를 목적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직무 겸대의 허용폭을 넓혀간다.
3. 단체의 조직 및 가입 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자율성을 열어간다.
4. 일선교당 봉임교무의 세대봉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적 검토를 서두른다.
5. 일선교당 단독교무의 합숙 등을 포함한 공가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과 방안을 마련하고 결혼교무의 공동생활과 사가생활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6. 기별 연한제 실시를 위한 행정적 장치를 마련한다.

313. 전무출신 관리행정 개선

1) 배경

1. 전무출신 규정의 상당부분이 사문화되었거나 시행보류된 상태이다.
2. 전무출신에 관련된 자료들이 산재되어 총괄적 정보로서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3. 전무출신 유관업무가 교정 각 부에 산만하게 걸쳐 있어서 각 부 고유업무의 개발과 수행이 소홀해진 경향이 있다.

2) 방향

1. 전무출신 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성과 시행성을 재고함으로써 전무출신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2. 전무출신에 관한 제반 자료의 일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모든 전무출신 관리업무의 근거로 삼는다.
3. 전무출신 유관업무의 유기적 관리체계를 세우고 나아가 전무출신 유관업무만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 기구의 설치를 모색한다.

321. 용금체계의 확립

1) 배경

1. 근래 전무출신의 처우가 전체적인 균형과 형평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 경제생활의 격차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 현재 전무출신의 용금체제가 와해되어 전무출신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3. 전무출신의 품위유지를 위해서도 용금수준의 현실화가 요청되고 있다.

2) 방향

1. 급여에 따른 종별구분은 지양하고 모든 전무출신에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연봉체계를 마련하여 전무출신 근무성적 계상의 합리적 근거를 세운다.
2. 연봉의 2할 내지 3할을 표준 용금으로 하며 용금분은 근무성적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연봉급을 현금수령하는 전무출신은 2할 내지 3할 성금을 의무화하며 성금분은 당인의 성적에 계상한다.
4. 급여에 있어서 연봉 초과금은 본교수입에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전무출신의 용금지급은 각 근무지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322. 사가 지원책 수립

1) 배경

1. 전무출신이 사사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사회구조의 변화로 일정기간 사가에 돌아가 돌보고 오기가 어렵게 되었다.
3. 결혼하는 전무출신이 많아짐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2) 방향

1. 우선적으로 직계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보조한다.
2. 사가지원의 범위, 지원의 정도, 지원기간, 지원방법, 지원여부 결정과정 등을 내용으로 한 사가지원 규정을 마련한다.
3. 사가지원을 위해 후원회를 조직하여 재원을 확보하며 사가 생활 지도를 위한 기구를 둔다.
4. 사가지원에 따른 교단 부담금은 각자의 사업성적에서 공제한다.

331. 의료 요양 대책

1) 배경

1. 전무출신의 의료보장이 미흡하여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발맞추어 교단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2) 방향

1. 전무출신 진료에 있어 검사, 치료, 요양에 따른 체계적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2. 요양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공익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요양실무의 요양원에서의 이관을 검토한다.
3. 정남 정녀의 진료·간병을 위한 전문 간병요원을 양성, 배치한다.
4. 교단적 차원에서 모든 전무출신이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무출신의 보험료와 치료비는 교단이 전담하도록 한다.
5. 용금만을 받는 전무출신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332. 노후 대책

1) 배경

1. 일생 헌신한 전무출신의 노후 정양대책은 교단적 과제라 할 수 있다.
2. 현재 원로원, 수도원, 수양원 등으로 구분되는 수양원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3. 65세 이후 정년퇴임하는 전무출신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 방향

1. 노후보장의 범위를 설정하여 용금 봉양 정양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년퇴임한 전무출신의 예우와 역할 등을 포함하여 그 수요에 따른 노후 대책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3. 수양원, 양로원, 수도원의 통일적 운영체제를 확립하여 노후 대책의 평준화를 기한다.
4.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교단의 후생복지금과 병행 운영한다.

400. 인재육성·관리분과

인재육성·관리분과는 교육개혁위원회와 연석한 분과회의(3회), 교육부에서 마련한 의견안, 교과과정 심의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동안 모아진 인재양성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들은

○. 바람직한 교역자상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 교역자 자질향상의 교육보다는 양적인 충원에 치우쳐 왔다.

○. 교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요원을 정책적으로 양성하지 못하였다.

○. 교화자양성을 위주로 한 교육을 요구하는 일선교화현장의 요구가 많다.

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에 바탕하여 본 설계안은 인재개발, 인재육성, 인재관리의 3가지 큰 방향을 잡아 학생, 청년회, 교립학교, 일원가정을 통한 인재발굴과 인재개발운동 전개, 인재개발 과정 정립, 교육과정의 정비, 진급심사와 고시제도, 양성기관의 체제정립, 장학과 근무제도의 개선, 전문인재의 양성, 교역평가제 도입, 재교육 체제 정립, 휴양제도 실시 등 13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요약 정리하였다.

411. 학생·청년회를 통한 발굴

1) 배경

1. 학생·청년 교화와 인재 개발을 연계시킬 수 있다.
2. 학생·청년의 활동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신앙심 및 인성과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2) 방향

1. 교구별로 학생·청년회 활성화를 위한 장학제도를 설치한다.
2. 정책적으로 교당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3. 학생·청년훈련에 인력자원과 경제적 후원을 통하여 인재개발을 위한 적극적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학생·청년회를 통해 전무출신에 관한 홍보를 활성화한다.

412. 교립학교를 통한 발굴

1) 배경

1. 교립학교는 가장 쉽게 인재발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인재개발은 곧 교립학교 교화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3. 교립학교 근무자들의 긍지와 보람을 높일 수 있다.

2) 방향

1. 전 학년에게 교리수업을 실시하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2. 교리교육 전담교무를 각 교립학교에 인사배치한다.
3. 매주 1회 법회를 의무적으로 진행한다.
4. 상담실을 마련 교무가 상주하여 상담하도록 한다.
5. 교립학교 학생은 반드시 원불교 훈련을 실시하여 원불교를 체험토록 한다.
6. 교립학교 인재개발을 위한 장학지원을 실시한다.
7. 교직원 교화를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간접교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413. 일원가정을 통한 발굴

1) 배경

1. 신앙경력이 깊은 가정을 통하여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교무의 신앙성이 높고 탈락율이 적다.
2. 전무출신 가정에서 세대를 이어 배출함으로써 신앙의 뿌리를 깊게 할 수 있다.

2) 방향

1. 일원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정책적이고 집중적으로 인재를 개발하도록 교당에 지원한다.
2. 일원가정 부모들에게 전무 출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장학 지원을 한다.
3. 정토회의 인사와 운영에 있어 인재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한다.
4. 원친회원을 위한 장학을 확대하여 전무출신할 수 있도록 한다.

414. 인재개발 운동전개

1) 배경

1. 전 교역자가 후진양성에 동참하여 신앙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이고 조직적인 인재개발이 요청된다.
2. 찾아오는 인재양성에서 찾아내는 인재양성으로 전환해야 교단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2) 방향

1. 전 교역자의 1인 1인재 개발 및 양성운동을 전개한다.
2. 추천인을 2인 이상으로 하여 공동책임으로 지도 양성토록 한다.
3. 전 교도의 육영장학에 동참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4. 교립학교 교사를 비롯한 재가교도 교사 모임체를 구성하여 인재개발에 대한 협의체로 활용한다.
5. 교구장 산하에 인재 예비양성소를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 대상의 신앙지도와 진학상담을 실시한다.

415. 인재 선발과정 정립

1) 배경

1. 선발과정의 체계 미흡으로 우수인재 선발이 어렵다.
2. 개인적 인연으로 인재가 선발되어 공적인 관리가 어렵다.
3. 중앙 면접과정을 통한 심사만으로는 완전한 평가가 어렵다.

2) 방향

1. 신심과 서원의 구체적인 평정 기준을 설정하고 객관적인 표준화 검사를 실시한다.
2. 질적 향상을 위해수준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선발기준을 강화한다.
3. 성장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평정기준을 설정한다(가족의 신앙, 가족환경, 생활기록, 사회경제적 지위).
4. 교무와 교행(가칭)을 분리하여 선발한다.
5. 지원자 심사는 교당-교구-중앙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 중앙에서는 추천자와 지원자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한다.

421. 교육과정의 정비

1) 배경

1. 교화자 양성위주의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2. 사회변화와 국제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3.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2) 방향

1. 교무양성과정을 교양 및 전공기초, 교의학, 교무학으로 대별하여 설정한다.
2. 여름, 겨울방학을 훈련기간으로 편성하여 전체적인 학사일정을 조정한다.
3. 동산훈련원은 대학교육과 연계시켜 훈련과정을 정비하고 장차 대학원과정을 목표로 발전시켜 나아간다.
4. 교육내용과 과정을 심의 평가하는 교육심의 위원회를 강화한다.

422. 진급심사제도와 고시제도

1) 배경

1. 진급 심사제가 없어 입학이 곧 졸업이 된다
2. 현행 2차에 걸친 고시제도가 효율이 낮고 형식적인 경향이 있다.
3. 4~5년간의 생활관리와 평가체제가 미약하다.

2) 방향

1. 예비교역자 생활규정을 강화하여 지도인으로서의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생활평가 체제를 갖춘다.
2. 진급심사제도를 두어 매학년 진급할 때는 수양과 연구과 취사과의 성적을 종합사정하여 진급심사를 한 후 진급과 유급을 결정한다.
3. 유급자의 수학경비는 자담하게 하고 유급 2회면 퇴사토록 한다.
4. 현행 고시제도를 일원화하여 1차고시는 수학과정을 서류로 전형하고 5년차후의 고시(종합고사+전공분야논문)만을 실시한다.

423. 양성기관의 체제 정립

1) 배경

1. 선·학원으로 분립된 체제가 정착되지 못하여 일원화와 이원화의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2. 선원 졸업생 배출에는 사회적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2) 방향

1. 영산선원을 4년제 대학규모로 발전시켜 나아간다.

2. 교육기간 연장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대학원과정을 설치 운영한다.
3. 교육시설 및 복지향상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해 간다.
4. 교행(가칭) 양성과정과 재가요원 훈련과정을 기존의 교무 양성기관에 병설 운영한다.
5. 수도권이나 대교구 및 해외단위로 각종 교립학교와 교무양성대학의 설립을 추진한다.

424. 장학과 근무제도의 개선

1) 배경
1. 장학에 대한 세부규제조치가 없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 현행 근무제도가 장학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본래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

2) 방향
1. 식비와 생활용금을 교육부에서 통일해서 관리 지급한다.
2. 진급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학혜택을 유보한다.
3. 인재육성기금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교무지원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근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적 차원에서 적성과 지도방침에 따라 배치하여 관리한다.

425. 전문인재의 양성

1) 배경
1. 교단이 성장함에 따라 교단조직이 전문화 분화되고 있다.
2. 사회의 다변화에 따라 전문인재의 요청이 늘어간다.

2) 방향
1. 교단의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 그에 따른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2. 동산훈련원 과정 일부를 전문분야별로 분화하여 교육한다.
3. 필요한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하여 장학 지원한다.
4. 예비교무의 교육을 담당할 교수요원을 정책적으로 양성하고 일정기간 교화·훈련직에 순환시켜 근무케 한다.

431. 교역평가제 도입

1) 배경
1. 교역평가를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2) 방향
1. 실적평가, 근무평정, 교육훈련평정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한다.
2. 평가내용을 반드시 인사와 근무성적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432. 재교육체제 정립

1) 배경
1. 11과목 중심의 훈련에 치중되어 교직년수나 급수에 따른 재교육 내용이 적다.
2. 현직 분야에 따른 전문 연수가 없는 실정이다.

2) 방향
1. 교무 정기훈련과 함께 전문연수를 위한 재교육과정을 설치한다.
2. 현직과 연계된 능력개발을 중심으로 재교육을 실시한다.
3. 인사와 승급에 따라 전문분야별 교육과정을 설치한다.

4. 임지 파견에 따른 집무능력배양을 위한 단기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5. 교무 정기훈련 성적은 법위에 반영하고 직능별 훈련성적은 근무성적에 반영한다.

433. 휴양제도 실시

1) 배경

1. 교역자의 건강관리상 재충전이 절실한 실정이다.

2. 인사 순환과정과 재교육과 연계하여 휴양이 요구된다.

2) 방향

1. 3대 제1회는 20년 이상 교직복무 또는 50세 이상 교역자에 적용하여 실시해 본다.

2. 3대 제2회는 전 교역자 6년 복무후 3~6개월 이상 휴양기를 실시한다.

3. 3대 제3회는 6년 복무후 1년을 휴양한다.

4. 휴양기는 재교육, 특별연수 등과 연계하여 운용한다.

5. 휴양에 필요한 기관설립을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6. 매주 교무의 1일 휴일제를 실시한다.

500. 재정·산업분과

재정 산업분과는 분과회의(3회), 재무부에서 마련한 의견안, 보화당 관계자 협의모임 등을 통하여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동안 모아진 재정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들은

○. 산업기관들이 개체적으로 운영되어 투자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

○. 총부를 비롯한 교당 기관의 모든 재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경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교단기관 운영에 따라 수반되는 수익사업은 그 이익이 다시 교단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교단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 교단의 산업은 물론 교당 기관 등에도 재투자를 해야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등이다

이러한 의견들에 바탕하여 본 설계안은 재정 합리화, 산업육성, 교단 재정자립의 3가지로 큰 방향을 잡아 예산 회계제도 확립, 기관교금제 개선, 재 기금 통합 운영, 재무행정의 개선, 보화당 계열 통합운영, 교단산업의 육성, 산업행정의 활성화, 총부 재정 자립기반 화립, 영세교당 기관의 자립, 구매창구의 일원화 등 10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요약 정리하였다.

511. 예산 회계제도 확립

1) 배경

1. 교단재정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재정 통제가 어렵다.

2. 예산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장치가 미비하다.

2. 교단 전 재정의 일괄적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2) 방향

1. 처무 규정의 「예산과 회계」편을 독립시켜 「예산회계 규정」으로 재정한다.

2.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맞도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한다.

3. 중앙총부의 현금 출납창구를 단일화해 간다.

4. 각 기관과 교당의 예산 결산은 교정원에서 승인하도록 한다.

5. 각종 기금이나 성금의 모집은 목표액과 방법 등에 관해서 교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산에 편입한다.

512. 기관 교금제 개선

1) 배경

1. 기관에의 교금배정이 어렵다.
2. 교금배정이 총부의 기관통제 기능을 약화시켰다.

2) 방향

1. 수익사업체는 해당기관에 그 수익금을 전출하도록 한다.
2. 수익사업체 기관의 교금은 배정방식을 지양하고 재직자의 성금에 근거한다.
3. 기관근무 전무출신의 모든 성금은 중앙총부에서 직접 관장한다.
4. 기관근무 전무출신의 수를 적정화한다.
5. 수익사업체 이외의 기관은 종전과 같이 하되 교금 배정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한다.

513. 제 기금 통합운영

1) 배경

1. 대종사님 당대에도 상조부에 각부 자금을 저축, 기금을 일원화하여 사용하였다.
2. 산업부에서는 교단 산업의 진흥을 위해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다.
3. 교단 경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다.
4. 투자에 대한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성이 요구된다.

2) 방향

1. 사업회 등의 각종 기금을 통합하여 자금을 대형화 한다.
2. 각 부는 고유업무에 전념하고 투자사업은 산업부에서 관장하도록 한다.
3.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투자회사를 설립, 자본의 전문적 운영을 도모한다.
4. 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 유가증권 투자, 산업투자를 주로 한다.

514. 재무행정의 개선

1) 배경

1. 재무부는 총부관리, 법인 사무에 치중되어 있다.
2. 재무행정에 필요한 제반 규정이 미비하다.
3. 재무행정 요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2) 방향

1. 재무부의 총부관리 업무는 분리 운영한다.
2. 법인사무국은 재무부에서 독립시켜 운영한다.
3. 예산 회계중, 재산관리규정, 각종 모금규정, 보조금 요청 및 지급규정 등을 정비하여 재무행정의 차원을 높인다.
4. 회계실무자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회계수준 향상과 통일을 도모한다.

521. 보화당 계열 통합운영

1) 배경

1. 각 보화당 분립된 관계로 자금의 집중과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
2. 전 보화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약재구입 등 전국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다.

3. 현대경영의 추세가 대형화를 요구하고 있다.

2) 방향

1. 보화당을 교정원 산업부 관할로 한다.
2. 각 법인 수익사업체는 구분하여 통합한다.
3. 일정 시점의 자산을 재평가하여 주식회사의 출자금 형태를 취한다.
4. 업적과 능력에 따라 인사를 순환한다.
5. 산지에 위치한 지점을 통하여 건재사업을 확장한다.
6. 약재 구입창구를 일원화한다.
7. 한방진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도시지역은 한방병원으로 확장한다.

522. 교단산업의 육성

1) 원광상사의 육성

1. 중앙총부의 직속 사업기관으로 하여 교단적인 합의로 이용토록 한다.
2. 원창회 자금을 확대투자하여 종합 유통상사로 육성한다.
3. 무역업으로 발전시켜 교단재정의 수입원확보와 아울러 해외 교화의 거점을 확보한다.
4. 건축 사업부는 건축 상조조합으로 발전시킨다.

2) 보화당 제약사의 육성

1. 이리보화당에서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경영한다.
2. 제약업의 성격과 교단적인 신용의 바탕위에 점차 대형화하며 중앙총부 직속 산업기관으로 운영한다.
3. 각 보화당은 의무적으로 일정 지분을 출자하도록 하고 각 보화당을 영업소로 활용한다.

523. 산업행정의 활성화

1) 배경

1. 산업부가 유명무실하여 산업정책의 개발이 없었다.
2. 산업기관의 수적 증가에 따른 산업행정이 요청된다.

2) 방향

1. 산업부를 정상화시켜 산업정책을 개발한다.
2. 산업부가 산업기관의 관리 감독업무를 관장한다.
3. 산업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한다.
4. 산업기관간 인사를 순환한다.
5. 산업기관 근무자의 급여체계를 통일적으로 수립한다.

531. 총부 재정기반 확립

1) 배경

1. 총부 재정 자립이 선행되어야 중앙총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2. 교당, 기관의 재투자를 위해서도 총부 재정자립은 선행되어야 한다.

2) 방향

1. 3대 1회(원기84년) 이내에 중앙총부의 재정자립을 완성한다.
2. 재정자립의 범위는 근무자의 주거비, 식비, 급여외 건물보수비, 환경유지비로 한한다.
3. 수입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중앙총부 직속 사업기관으로 전주보화당, 원광상사, 원창회 사업기관

을 육성한다.

4. 영모원 사업을 범 교단적으로 추진하여 그 수입을 교화, 교육, 자선, 봉공, 훈련, 문화 등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532. 영세교당·기관의 자립

1) 배경

1. 교당 기관의 영세성이 교역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2. 교당 기관들 간의 심한 격차현상으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어렵다.
3. 사회변화에 따라 영세화된 교당, 기관에 대해 재조정하는 행정이 미흡했다.

2) 방향

1. 총부보조를 받는 교당, 기관은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자립하도록 한다.
2. 영세교당, 기관의 자립을 위해 교금 부담액을 연차적으로 축소 또는 면제해 간다.
3. 중앙사업을 지양하며 지방 교당, 기관들이 자체 성장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533. 구매창구의 일원화

1) 배경

1. 교단의 재화가 교단안에서 순화하도록 하여 유통차익이 교단에 환원하도록 한다.
2. 교단적인 유통구조를 확립함으로서 교단재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때이다.

2) 방향

1. 교단기관의 구매창구를 일원화하여 정부의 조달청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다.
2. 일원화를 위한 종합 유통상사를 육성하여 교단 수익사업체로 발전 시킨다.
3. 종합유통상사를 총부 직속기관으로 하여 교단적 합의로 이용토록 한다.

600. 봉공·공익분과

봉공·공익분과는 분과회의(3회), 공익부에서 마련한 의견안, 자선기관장 협의모임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동안 모아진 봉공·공익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들은

- ○. 교단의 자선 봉공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타분야에 비하여 발전이 적었다.
- ○. 교화 침체 원인이 도와주고 베풀어 주는 봉공교화의 부족이 크므로 봉공의 내용이 있는 교화와 사업이 되어야 한다.
- ○. 청년, 대학생들 젊은 교도들이 교단의 사회인식에 대한 둔감성을 우려하고 있다.
- ○. 어렵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이 설교장이 되는 봉공교화의 시대를 열어 교단발전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 ○. 교화를 비롯한 교단의 모든 사업은 궁극적으로 봉공이 목적므로 제3대의 성격은 자선·봉공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등이다

이러한 의견들에 바탕하여 본 설계안은 봉공정책의 수립 봉공인력의 확충, 자선기관운영개선의 3가지 큰 방향을 잡아 공익행정의 개선, 봉공예산 확보, 봉공인재의 양성, 봉공조직의 활성화, 시설사업의 전문화, 자선기관 인사확립, 봉공과 교화의 연계 등 7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요약 정리하였다.

611. 공익행정의 개선

1) 배경

1. 공익부가 전무출신 요양업무에 치중되어 자선·봉공업무가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2. 복지법인 사무를 재무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공익부와 연계한 정책의 개발이 어렵다.
3. 각급 봉공회를 비롯한 봉공단체를 지도하고 관장하는 교정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2) 방향

1. 전무출신 요양업무와 자선·봉고업무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공익부를 보강한다.
2. 공익부는 법인사무국과 연계하여 자선·봉공정책의 개발을 우선한다.
3. 공익부장은 복지법인 상무이사가 되어 복지법인 사무를 관장해 나간다.
4. 봉공회의 조직과 봉공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관리업무는 공익부에서 맡도록 한다.
5. 중앙 봉공회(4대 봉공회)사무국을 공익부에 둔다.

612. 봉공 예산의 확보

1) 배경

1. 예산규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여 자선·봉공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2. 봉공회비 갹출 및 사용방향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3. 봉공 기금 조성을 위한 장기 계획이 미흡하다.

2) 방향

1. 의식 헌공금은 교화·교육·자선에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2. 봉공회 조직을 확대하여 봉공 회비를 정착시켜 나간다.
3. 각급 봉공회는 장기적인 봉공 기금 조성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4. 봉공 회비, 봉공 기금은 자선·봉공 사업에 쓰이도록 한다.

621. 봉공인재의 양성

1) 배경

1. 자선기관은 인사행정의 면에서 다른 분야에 비하여 좋은 인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2. 정책적인 인재양성의 부재로 자선분야의 인재가 부족한 실정이다.
3. 자선 기관에 비전문인을 채용하고 있어 전문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어 있다.

2) 방향

1. 교화·교육·자선의 목적 사업을 위해 교역자의 일정인원은 정책적으로 자선인재로 양성해 간다.
2. 자선기관에 근무하는 전무출신들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다.
3. 자선기관에 필요한 기능직 전무출신을 계획적으로 양성한다.
4. 예비 교무 교육과정에서 사회 복지 기본과목을 편성·교육한다.
5. 실습과정에도 자선현장을 거치도록 하여 자선 인재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622. 봉공 조직의 활성화

1) 배경

1. 중앙 봉공회 활동이 미약하여 산하 봉공회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 봉공회를 관리해 주는 교정부서가 없어 적극적인 조직이 어렵다.
3. 교구·교당의 봉공 활동이 지역에 따라 부진한 곳이 많다.

2) 방향

1. 교당봉공회－교구봉공회－중앙 봉공회를 연계적으로 조직한다.
2. 단위 봉공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가입, 별도 법인 설립 등을 보장해 간다.

3. 재가교도를 중심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교구 또는 지역단위 봉공단체로 조직하고 협의체도 구성해 간다.

631. 시설 사업의 전문화

1) 배경

1. 복지 시설의 발달로 수용하여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2.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연계되기 위하여 전문화가 더욱 요구된다.
3. 정부에서도 사회변화에 따라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2) 방향

1. 시설의 성격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천해 간다.
2. 중앙 수양원은 전무출신 수양원과 양노원으로 분리 운영한다.
3. 법인 운영체제를 강화하여 각 시설의 연계적 운영을 모색한다.
4. 자선 사업회를 육성하여 자선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간다.

632. 자선기관 인사확립

1) 배경

1. 자선기관이 공개념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기관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2. 필요한 요원을 전무출신으로 배치하지 않고 있다.
3. 인사행정과 법인사무가 공익부의 감독이 어렵게 되어 있다.
4. 교화직 근무가 어려운 사람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2) 방향

1. 자선기관간에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을 순환 근무시킨다.
2. 자선기관 운영의 필수요원(보모, 카운셀러, 생활지도원 등)은 전무출신으로 배치한다.
3. 공익부장에게 자선기관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부여한다.
4. 자선기관 인사배치시에는 전문연수교육을 받도록 해간다.

633. 봉공과 교화의 연계

1) 배경

1. 자선기관이 주로 총부지역에 위치하여 일선교화현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2. 교구·교당이 주체가 되거나 관련하여 설립되지 않았다.
3. 자선기관이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있지 못하고 폐쇄적이다.
4. 봉공회 활동의 미약으로 재가교도들의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2) 방향

1. 교구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구단위 봉공시설 및 기관을 설립한다.
2. 도시지역에 종합복지관을 설립하여 교화와 연계적으로 운영한다.
3. 교구 회관에는 상담사업을 비롯한 봉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4. 교구·교당의 시설을 지역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한다.

3) 제3대의 전개

1. 제3대의 지향성

교단 제3대의 전개에 있어서 설계안으로 작성된 각 대안들이 지향하는 바를 대관해 본다는 것은 앞

으로 전개될 제3대의 전체적인 성격과 흐름을 파악하여 제3대 교단운영의 지표를 더우 잡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Ⅰ장의 서술과 Ⅱ장의 분과별 설계안에 일관되게 흐르는 제3대의 지향성은 「내적 성숙을 통한 세계적 종교에로의 발돋움」이라 할 것이다.

내실, 성숙, 세계적 종교의 지향을 이제 다시 강령잡아 분야별 실천목표로 지표를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교리정신과 이념의 객관화, 세계화.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실천해온 원불교의 교리정신과 이념을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삼아 세계사상, 동서양 종교 사상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객관화하고 세계화 함으로써 우리 교리정신의 회통성, 우월성을 널리 드러내야 할 것이다.

2) 전무출신제도를 포함한 교단체재, 제도의 정착

원불교 교리이념의 원만한 실현을 위한 교단체제와 제도를 보다 구체적인 검증을 통해 미래사회의 전개를 예견한 견지에서 정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교화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원불교 문화의 창달

교단의 이념지향에 맞는 교화방법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여 원불교 교화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원불교 고유의 문화를 창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종교적 품성과 교화역량을 겸비한 인재의 양성

교화의 주체자로서의 교역자상을 정립하고 교리의 실천력과 전문지식에 바탕한 종교적 지성을 두루 갖추게 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예화된 인재를 양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5) 교단산업의 육성을 통한 교단경제의 자립

영육쌍전 정신에 입각, 교도성금은 사회 봉공차원의 환원을 위하여 교단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교단경제의 자립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6) 봉공·공익사업의 사회적 실천

평등세계 실현의 사요정신에 입각하여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자선 봉공의 사회적 실천을 확대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교리정신의 실천적 해석을 성숙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각 회별 단계적 구상

제3대 36년(원기 73~108년)의 단계적 구상 역시 대종사님의 1대 3회 구분에 연원하여 각 회를 12년씩으로 하여 구분하고

제1회 12년(73~84)은 누적된 현안 문제들의 정비에 주력하는 시기로

제2회 12년(85~96)은 대부분의 중심과제를 완수하는 시기로

제3회 12년(97~108)은 모든 과제의 완결과 평가의 시기로 각회별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각 회별 단계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설계안의 과제요목 63항에 대해 실천시한을 구상해 보았는바

30항목을 1회 12년내에 정비하고

23항목은 2회 12년까지 완수하며

10 항목을 3회가지 지속하여 모든과제를 완결하도록 하였다.

단계별 구상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1) 사안의 시급성, 중대성,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2) 착수의 시점과 완수의 시점을 잡아 시한을 정하는데
(3) 사안별로 잡아진 시한은 최대시한으로 하여
(4) 추진자의 취사선택에 따라 조정의 여지를 남겨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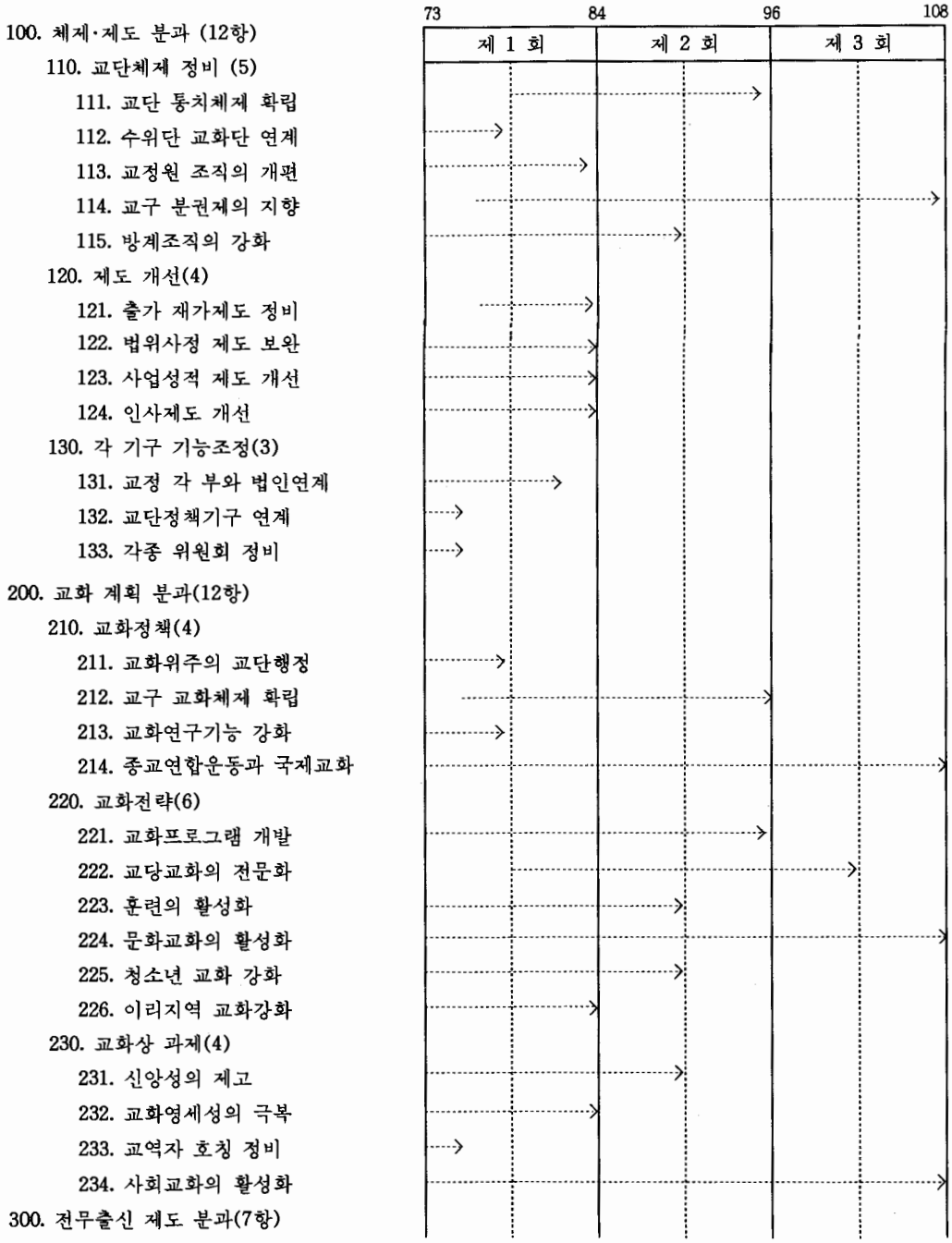

310. 제도 정비(3)
311. 직종과 직급체계의 정비
312. 복무형태의 정립
313. 전무출신 관리행정 개선
320. 생활 보장(2)
321. 용금체계확립
322. 사가지원책 수립
330. 복지 대책(2)
331. 의료 요양 대책
332. 노후 대책
400. 인재육성·관리분과(13항)
410. 인재개발(5)
411. 학생·청년회를 통한 발굴
412. 교립학교를 통한 발굴
413. 일원가정을 통한 발굴
414. 인재개발 운동전개
415. 인재선발과정 정립
420. 인재 육성 (5)
421. 교육과정의 정비
422. 진급심사와 고시제도
423. 양성기관의 체제정립
424. 장학과 근무 제도의 개선
425. 전문 인재의 양성
430. 인력관리 (3)
431. 교역평가제 도입
432. 재교육 체계 정립
433. 휴양제도 실시
500. 재정·산업분과 (10항)
510. 재정 합리화 (4)
511. 예산 회계제도 확립
512. 기관 교금제 개선
513. 제기금 통합 운영
514. 재무행정의 개선
520. 산업 육성 (3)
521. 보화당계열 통합 운영
522. 교단산업의 육성
523. 산업행정의 합리화
530. 교단경제 자립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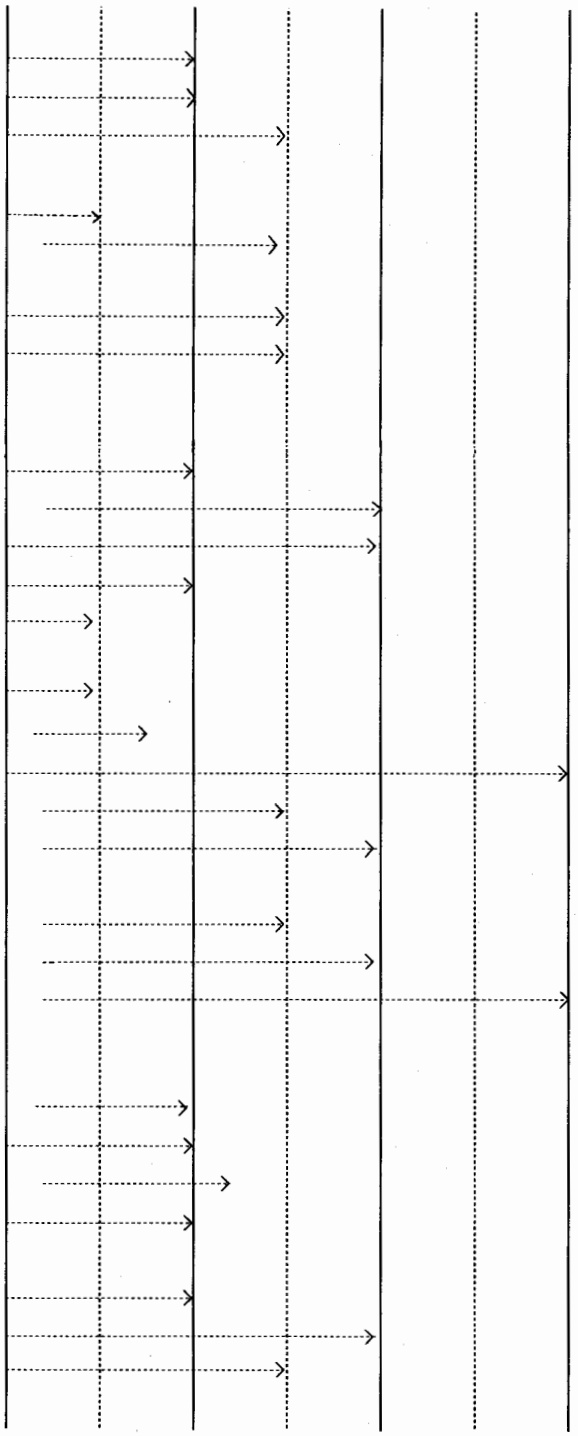

531. 총부 재정기반 확립
532. 영세교당·기관의 자립
533. 구매창구의 일원화
600. 봉공·공익분과 (7항)
610. 봉공정책의 수립(2)
611. 공익행정의 개선
612. 봉공예산의 확보
620. 봉공인력의 확충 (2)
621. 봉공인재의 양성
622. 봉공조직의 활성화
630. 자선기관 운영 개선 (3)
631. 시설사업의 전문화
632. 자선기관 인사확립
633. 봉공과 교화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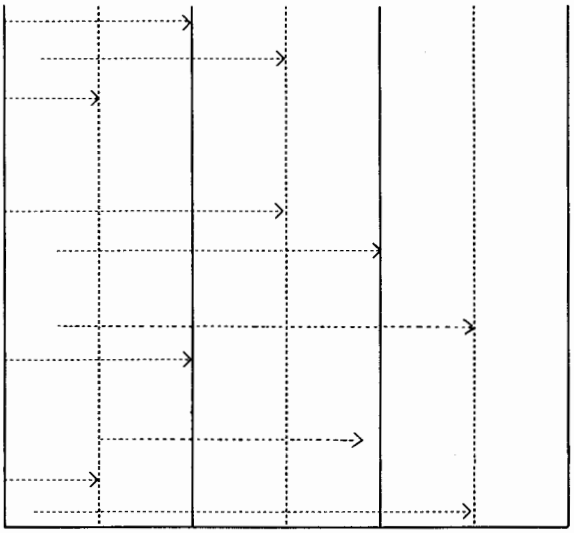

3. 설계안과 새 집행부

본 설계안은 교단 각계 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범 교단적 합의요, 공적인 결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과간 논의 수준과 대안의 구체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분과간 구획과 연계를 염두에 두고 정리하였으나 일부 사항의 누락과 중복도 피할 수 없었음을 밝혀 둔다.

어느 계획이든지간에 설계안은 누가 어떻게 작성하였고 그 내용이 어떠하는냐 하는 문제보다는 누가 그 안을 채택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설계안의 성과와 실효가 판가름되는 것이다.

그동안 교단에서는 기구연구회, 기획실, 수위단 사무처 등을 통해 여러가지 교단 현안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안들이 채택되어 제대로 실천된 일은 거의 없어 문제는 더욱 중첩되고 교단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에 이르렀다.

즉, 지금까지 교단 현안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대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또 제시된 대안이 부적절하였다기보다는 교단적 실천의지의 부족에 더 큰 원인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설계안의 실천 여부는 대안의 한계성보다는 교단적 실천의지와 추진력의 정도에 달렸다고 본다.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유보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른 오늘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실천의지와 추진력의 탄탄한 뒷침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는 지도층을 비롯 전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지지와 배려로써 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설계안의 추진능력을 고려한 인사구성, 지도층과 실무중간층이 조화를 이룬 인사배치, 충분한 예산의 동원 등 최우선적으로 새 집행부 구성에 교단적 지지와 배려가 집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새 집행부는 설계안의 세부 추진 계획을 준비하고 착실하게 교단 현안 과제들을 차근차근 차서를 세워 해결해 가면서 제3대 교단을 운영해야 할 것이며 전 구성원도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통해 새 집행부에 힘을 모아주어야 할 것이다.

원불교 창립 제2대 및 대종사 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圓佛敎七十二年總覽 發刊委員

총　　재 : 대산종법사

회　　장 : 이공주

부 회 장 : 김경원 김윤중 김정용 문동현 이공전 이철행 정도진 정진숙

사 무 총 장 : 김인철

편찬분과대표 : 김이현 류기현

편찬분과위원 : 김기원 김도종 김성관 김성택 김성훈 김정관 김학인 김형철
노대훈 박광수 박용덕 서경전 성대진 송천은 신명국 심도정
장연광 정현인 한정석 한정원

감 수 위 원 : 김윤중 김인철 김정용 김지현 박은국 박장식 서대인 안이정
양도신 이공전 이광정 전이창

편 집 위 원 장 : 박달식

편 집 위 원 : 박용덕 성시종 안도순 양해관 이덕도 장덕훈 장연광

집 필 위 원 : 김경일 김도심 김원영 김주원 김학종 김혜광 박달식 박용덕
박윤철 백심덕 성대진 성도종 성시종 손정윤 송인걸 신대성
안도순 양해관 양현수 유진근 이덕도 이삼덕 이성은 이용환
이원조 이정광 장경도 장덕훈 장연광 최경도 최세종 최심경
허광영

자 료 정 리 원 : 김명자 김이성 모경희 박진성 사영인 서원중 서인정 신중경
심상원 양인경 여덕혜 원익선 유승규 육관응 이건중 이경진
이명은 이윤성 이이성 이이원 장오성 정부원 조향진 주인지
진선원 최중원

〈가나다순〉

□ 編輯後記 □

歷史를 아는가

우리는 역사에서 두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되풀이 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큰 사건일 수록 이것은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圓佛敎七十二年總覽』을 발행하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아는 교단의 의지인 것입니다. 수록된 자료들 하나하나가 지금은 사료적 가치를 찾을 수 없고, 부분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당대에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니며, 역사는 부분적인 것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역사도 한 토막 한 토막의 자료들을 관련시킬 때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圓佛敎七十二年總覽』에서는 노인 5, 6명이 모여 올리는 기도식, 어린이들이 글씨를 손수 써 복사해서 발행된 회보 한장의 기록까지도 놓치지 않고 수록하려 애썼습니다. 「자료(資料)」를 모으면서 어떤 가치를 논하지도 않았고, 정리하면서 자료들에 어떤 의도적인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수록된 자료들이 개교 백년을 맞아서는 백년대를 여는 「사료(史料)」가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들은 백년대의 주인들이 이 속에서 앞 세대의 교훈을 찾아낼 것이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진들은 「역사」를 알았습니다. 빚에 쪼들이면서도 묵사본 『月末通信』을 발행하여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당시는 어느 선진이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려 하루 밤 자고 간 것이 무슨 기록사항이 되느냐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줄 동정소식이 창립 3대를 맞은 지금은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자세하게 수록되지 못한 지면의 부족이 아쉬울 뿐입니다.

『月末通信』은 프린트판으로 발전하여 『月報』로 발행되지만 식민지 정책의 탄압으로 강제폐간이 되었고, 본격적인 잡지로 발전된 『會報』는 식민지시절 물자품귀로 또 정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교단의 초창기인 원기13년(1928)에서 원기26년(1941)사이에 이루어 졌으며 우리 민족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인 1920년대 후반기에서 40년대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기록문화에 철저했던 우리 선진들은 깨어있는 세대였으며 교단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들은 교단의 중요 계기마다 기록의 역사를 남겨 왔습니다.

『圓佛敎七十二年總覽』은 창립 제2대말 기념대회가 열리는 원기73년(1988)에 발행하기 위하여 원기71년(1986)년 1월 《원불교 창립 제2대 및 대종사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의 학술편찬분과

에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넘게 흩어진 자료를 모으는 어려움과 교단창립 제2대를 총정리하는 『圓佛敎七十二年總覽』으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창립 제2대말 기념대회가 전부 수록되어야 한다는 검토에 따라 발행날짜를 변경하여 대종사 탄생백주년 기념의 해에 발행키로 했습니다.

자료정리와 집필, 편집에 이르기까지 동원된 연인원은 1천명이 넘었으며 편집기간도 5년이 걸렸습니다.

수록된 자료량도 처음 계획은 3천여 페이지의 2권이었으나 5천여 페이지의 3권으로 발행되게 되었습니다.

원고량도 최종 정리된 원고는 2만4천여 매이지만 자료수집에서 정리를 거쳐 편집에까지 재집필된 원고량을 합하면 20만장이 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해냈다」는 생각뿐입니다.

『圓佛敎七十二年總覽』 발행에 동참되었던 모든 분들에게 少太山大宗師 탄생백주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심축드리며 이 자료들이 교단 만대의 역사이길 기원합니다.

원기76년(1991) 4월

소태산대종사 탄생1백주년 기념의 해에 中央總部 成佛堂에서

편집위원장 朴 達 識

圓佛教七十二年總覽

圓紀76(1991)年 2月 10日 印刷
圓紀76(1991)年 4月 28日 發行

編輯：圓佛教七十二年總覽編輯委員會
發行：圓佛教創立 第二代 및 大宗師誕生百周年 聖業奉贊會
印刷：圓 佛 教 圓 光 社

570－754 全北 裡里市 新龍洞 344－2
圓 佛 教 中 央 總 部
TEL. (0653) 50－3310

登錄 番號 (1967. 7. 1)第 7 號